

2024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10월 19일(토) 09:30~18:20

서울대학교 SK경영관(58동)

후원 김&장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가온, 법무법인 두현, 법무법인 엘케이비 앤 파트너스, 법무법인 택스로, 법무법인(유)화우,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법무법인(유한)광장, 법무법인세종, 법무법인위즈, 법무법인율촌, 사단법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삼덕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서현회계법인, 세무법인 BKL, 세학사, 신한금융지주, 신한라이프, 신한은행, 아성ENL, 안진회계법인, 이안세무법인, 이정회계법인, 이현세무법인, 재정회계법인, 전국은행연합회, 정교순세무회계사무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공항공사, 한국리츠협회, 한국세무사회, 한길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 한울회계법인, 회계법인 아성, BnH세무법인, IMM인베스트먼트㈜, IMM희망재단, KB국민은행

(사)한국세무학회
KOREAN ACADEMIC SOCIETY OF TAXATION



2024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10월 19일(토) 09:30~18:20

서울대학교 SK경영관(58동)

후원 김&장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가온, 법무법인 두현, 법무법인 엘케이비 앤 파트너스, 법무법인 택스로, 법무법인(유)화우,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법무법인(유한)광장, 법무법인세종, 법무법인위즈, 법무법인율촌, 사단법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삼덕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서현회계법인, 세무법인 BKL, 세학사, 신한금융지주, 신한라이프, 신한은행, 아성ENL, 안진회계법인, 이안세무법인, 이정회계법인, 이현세무법인, 재정회계법인, 전국은행연합회, 정교순세무회계사무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공항공사, 한국리츠협회, 한국세무사회, 한길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 한울회계법인, 회계법인 아성, BnH세무법인, IMM인베스트먼트㈜, IMM희망재단, KB국민은행

(사)한국세무학회
KOREAN ACADEMIC SOCIETY OF TAXATION

개 회 사



존경하는 한국세무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세무학회 학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시립대학교 최원석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에 참석해 주신 회원 및 내빈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시간을 내어 참석하시어 축사를 하실 강민수 국세청장님과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추계학술발표대회의 대주제는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중장기 개편방향”입니다.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바람직한 조세정책의 개편방향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제시하고 논의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대주제 특별세션에서는 기획재정부 중장기조세정책심의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전오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으시고,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중장기 개편방향”이란 대주제 하에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상속증여세 등 네 개 주요 세목으로 나누어 기조발제가 진행 예정입니다. 법인세는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님, 소득세는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님, 부가가치세는 홍순만 연세대학교 교수님, 상속증여세는 고윤성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님께서 기조발제를 하시고, 이어지는 토론은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님,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님 및 정형 기획재정부 세제실 법인세제과장님께서 맡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박사과정생들을 위한 Doctoral Consortium에서 이전오 명예교수님께서 “조세법 해석의 기준 –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이란 주제로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12개 분과로 나뉘어 모두 34편의 논문이 발표되는데, 조세법, 세무회계, 조세정책, 조세제도, 조세일반 및 지방세 등으로 주제가 매우 다양하며, 서현파트너스와 한국리츠협회의 특별세션도 열립니다.

이번 추계학술발표대회를 준비하느라 수고해주신 박석진 준비위원장님, 홍성훈 학술이사님, 이우종 서울대학교 교수님, 학회 임원 및 사무국 그리고 우리 학회의 학술활동을 후원해 주시는 후원기관에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발표, 토론 및 좌장을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가을 기운이 완연한 서울대학교 캠퍼스도 학술발표대회 중간에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19일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학회장 최 원 석

축 사



우리나라 최고의 조세학회인 한국세무학회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세무사회 회장 구재이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멋진 캠퍼스에서 조세학의 요람인 한국세무학회 귀한 학술대회에서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2024년도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대회를 열면서 학회 중흥기를 이루고 계신 최원석 회장님과 학회 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한국세무학회는 1988년 창립 이래 40년 가까이 조세법, 조세정책, 그리고 세무회계 분야에서 훌륭한 통찰과 제언을 통해 우리나라 조세정책과 조세학 발전에 큰 기여와 역할을 해왔습니다. 공공성있는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권익보호와 성실납세에 이바지하는 사명을 가진 한국세무사회는 누구보다 한국세무학회의 연구와 활동에 큰 혜택을 받고 있는 곳 중 하나가 아닌가 합니다. 1만 6천 세무사공동체의 수장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중장기 개편 방향'을 주제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논의는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이 도출되어 우리나라 조세정책과 조세제도로 국민과 전문가에게 다가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분과별 세션에서 다양한 주제의 논문 발표와 토론을 통해 조세학을 탐구하고 연구에 갈급한 학계와 실무계 전문가들이 함께 학문적 교류와 실무적 발전을 이루는 소중한 기회로도 흥분됩니다.

한국세무사회도 오늘 발표한 귀한 논문과 연구보고서를 중심으로 실무전문가들이 현업에서 국민과 기업에게 제공할 정보로 활용하고 앞으로 우리 국민과 기업의 삶의 현장에서 꼭 필요한 조세정책과 조세제도로 정책화하고 입법을 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멋진 학술대회를 만들어 주신 최원석 학회장님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학회 임원님, 그리고 모든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최고의 세무전문가단체인 한국세무사회는 최고의 조세학술단체인 한국세무학회와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10월 19일

한국세무사회 회장 구 재 이

2024년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 **일　　시**　2024년 10월 19일 (토) 09:30～18:20

◆ **장　　소**　서울대학교 SK경영관(58동)

◆ **후　　원**　김&장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가온, 법무법인 두현, 법무법인 엘케이비 앤 파트너스, 법무법인 택스로, 법무법인(유)화우,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법무법인(유한)광장, 법무법인세종, 법무법인위즈, 법무법인율촌, 사단법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삼덕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서현회계법인, 세무법인 BKL, 세학사, 신한금융지주, 신한라이프, 신한은행, 아성ENL, 안진회계법인, 이안세무법인, 이정회계법인, 이현세무법인, 재정회계법인, 전국은행연합회, 정교순세무회계사무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공항공사, 한국리츠협회, 한국세무사회, 한길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 한울회계법인, 회계법인 아성, BnH세무법인, IMM인베스트먼트㈜, IMM희망재단, KB국민은행

◆ **행사일정**

09:30～10:00　Doctoral Consortium　수펙스홀

09:00～10:00　Doctoral Consortium 등록

10:00～11:30　Doctoral Consortium

장소 : 수펙스홀　사회자 : **배성호 교수** (경북대)

시　간	연구 분야	발표자
10:00 ～ 11:30	조세법 해석의 기준 -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 -	**이전오**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본회 고문)
	연구윤리교육	**배성호** (경북대학교 교수)

11:30～12:30　추계학술발표대회 등록 및 오찬 (동원생활관)
상임이사회

12:30～12:40　휴　식

12:40～13:00　추계학술대회 개회식　수펙스홀

사회 : **김완용 교수** (한양사이버대)

개 회 사　**최원석 한국세무학회 학회장**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축　　사　**강민수 국세청장**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

단체사진 촬영

13:00~14:50 대주제 특별세션 수펙스홀

사회 : **이전오 교수** (기재부 중장기조세정책심의위원장, 본회 고문)

주 제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중장기 개편방향**

발표자 : 법 인 세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소 득 세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부가가치세 **홍순만** (연세대학교 교수)
상속증여세 **고윤성**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토론자 :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
정 형 (기획재정부 세제실 법인세제과장)

14:50~15:00 휴 식

15:00~18:10 분과별 학술발표대회 (12개 분과)

[제 1 분과 : 세무회계]

장소 : 324호 사회자 : **최기호 교수** (서울시립대)

시 간	발표논문 제목	저자 및 발표자*	토론자
15:00 ~ 16:30	조세 복잡성 인식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성태 (대한법률구조공단) 정상훈 (한영회계법인) **이혜영*** (서울대)	**황인규** (강남대)
	ESG 등급 상승이 조세회피를 억제하는가? – 감사보수 증가 또는 감사시간 증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박종일 (충북대) **이윤정*** (충북대)	**김민희** (숭실대)
	공인회계사와 세무사의 성격유형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변정희*** (단국대) 조경민 (단국대) 김 훈 (순천향대)	**윤양인** (서울과기대)

[제 2 분과 : 세무회계]

장소 : 325호 사회자 : **우용상 교수** (이화여대)

시 간	발표논문 제목	저자 및 발표자*	토론자
15:00 ~ 16:30	경영전략이 세무계획과 부채조달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김영철 (경상국립대) **강정연*** (선문대)	**김임현** (대구대)
	Optimization of Tax and Financial Reporting Plans and Reporting of Impairment Losses	**강나라*** (한경국립대) Ron, Singleton (Western Washington University)	**정태진** (한양대)
	공인회계사 세무서비스 제공 관련 독립성 규정의 현황과 개선방향 : 국제기준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오선영 (서울대) **신일항*** (가천대)	**정준양** (한영회계법인)

[제 3 분과 : 조세정책]

장소 : 326호 사회자 : **박성욱 교수** (경희대)

시 간	발표논문 제목	저자 및 발표자*	토론자
15:00 ~ 16:30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한국기업의 경제적 효과분석	이창섭 (세종대) **전홍민*** (성신여대)	**김완용** (한양사이버대)
	상속세법상 밸류업 기업에 관한 연구	**심충진*** (건국대)	**고윤성** (한국외국어대)
	How should we prepare for the coming AGI Era?	**강철승*** (한국수산정책포럼)	**배성호** (경북대)

[제 4 분과 : 조세법]

장소 : 119호 사회자 : **윤재원 교수** (홍익대)

시 간	발표논문 제목	저자 및 발표자*	토론자
15:00 ~ 16:30	A Study on Sanctions Related to Tax Invoices – Focusing on Comparisons Between Korea, the EU, and the UK –	**송보경*** (서울시립대) 박 훈 (서울시립대)	**정용헌** (세무법인 정윤)
	서울형 주택세제에 관한 소고 – 미국 및 일본 도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서영진*** (서울시립대) 박 훈 (서울시립대)	**문필주**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유세 과세의 개념 재정립에 관한 연구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예지** (서울시립대)

[제 5 분과 : 지방세]

장소 : 327호 사회자 : **윤성만 교수** (서울과학기술대)

시 간	발표논문 제목	저자 및 발표자*	토론자
15:00 ~ 16:30	상속에 따른 취득세 과세 개선 방안 – 유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와 신고를 중심으로 –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김진태** (중앙대)
	토지 조성과 지목변경 취득세 체계 개선방안	**류 진*** (강남대)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김민수** (경북대)

[제 6 분과 : 서현파트너스 특별세션]

장소 : 120호 사회자 : **조광희 교수** (동국대)

시 간	발표논문 제목	저자 및 발표자*	토론자
15:00 ~ 16:30	소급감정 과세의 적법성에 관한 연구	**김수경*** (법무법인 두현)	**홍성익** (숭의여대)
	스마일게이트 소송사건으로 본, 전환사채에 부여된 콜옵션 성격에 대한 소고	**정시영*** (PKF 서현회계법인)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16:30~16:40 휴 식

[제 7 분과 : 대학원 석박사과정 세션]

장소 : 324호 사회자 : **유지선 교수** (국민대)

시 간	발표논문 제목	저자 및 발표자*	토론자
16:40 ~ 18:10	지방국세청 신설이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최민주*** (삼화회계법인)	**이지혜** (서울시립대)
	지역별 탈세제보율이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전소미*** (교보증권)	**이혜영** (서울대)
	산업별 유효세율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김병용*** (삼덕회계법인)	**곽 송** (서울시립대)
	부정적 언론보도가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이선호*** (현대오토에버)	**김묘정** (서울시립대)

[제 8 분과 : 조세정책]

장소 : 325호 사회자 : **임태균 교수** (전북대)

시 간	발표논문 제목	저자 및 발표자*	토론자
16:40 ~ 18:10	증권형 토큰의 도입에 따른 과세제도의 정비방안	**전병욱*** (서울시립대)	**박수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및 기업업무추진비의 매입세액불공제 개선방안	서정우 (강남대) **서정화*** (협성대)	**이창규** (중앙대)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한 합산분할과세 시나리오 분석	**이예지*** (서울시립대) 조형태 (홍익대) 차상권 (칼빈대)	**강민지** (경북대)

[제 9 분과 : 조세제도]

장소 : 326호 사회자 : **이영한 교수** (서울시립대)

시 간	발표논문 제목	저자 및 발표자*	토론자
16:40 ~ 18:10	다국적 기업 과세소득 안분방식과 공평과세 : 미국 주(State)법인세와 디지털세의 안분방식과 과세단위를 중심으로	**차명기*** (미국 캘리포니아주 조세국) 김수성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	**문예영** (배화여대)
	특정법인을 통한 증여이익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김민경*** (서울시립대) 이상신 (서울시립대)	**박석진** (인덕대)
	농지 관련 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고윤성*** (한국외국어대) 이은자 (이은세무회계)	**홍성훈** (서울시립대)

[제10분과 : 조세일반]

장소 : 119호 사회자 : **박상연 교수** (배재대)

시 간	발표논문 제목	저자 및 발표자*	토론자
16:40 ~ 18:10	한국 세무학회 창립과 세무학 학문의 정립	**서희열*** (강남대)	**송쌍종** (서울시립대)
	세무사 일부 보수의 표준화 필요성과 그 방안에 관한 연구	이전오 (성균관대) **황인규*** (강남대)	**김병일** (강남대)

[제11분과 : 세무회계]

장소 : 327호 사회자 : **정희선 교수** (한양대)

시 간	발표논문 제목	저자 및 발표자*	토론자
16:40 ~ 18:10	ESG 지배구조(G) 반부패 활동 관점에서 살펴 본 조세관리 : 조세회피 측정치를 중심으로	신상훈 (청주대) **김선미*** (전남대)	**이동헌** (고려대)
	조세피난처 직접투자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	**왕 람*** (Zhejiang Industry Polytechnic College) 박희우 (가톨릭대)	**기은선** (강원대)
	취득세 세율의 인상 또는 인하가 부동산 매매거래에 미친 영향	박성욱 (경희대) 이종탁 (경희대) **김서현*** (경희대)	**권오현** (숭의여대)

[제12분과 : 한국리츠협회 특별세션]

장소 : 120호 사회자 : **유호림 교수** (강남대)

시 간	발표논문 제목	저자 및 발표자*	토론자
16:40 ~ 18:10	임대주택리츠 주거안정성 확보방안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중심으로	노희천 (숭실대) **김민희*** (숭실대) 김형준 (법무법인 지평)	**선우희연** (세종대)
	리츠의 배당가능이익 관련 세무상 이슈 및 개선방안	신일항 (가천대) **문태곤*** (연세대)	**조선애** (단국대)
	리츠활성화를 위한 배당유보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연구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김완용*** (한양사이버대)	**현지원** (서울과학기술대)

18:10~18:20 폐 회

목 차

Doctoral Consortium

• 조세법 해석의 기준
—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 — ····· 3
이전오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본회 고문)

• 연구윤리교육 ····· 41
배성호 (경북대학교 교수)

대주제 특별세션

• 법인세의 중장기적 개선방안 ····· 51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소득세제도의 개편방향 ····· 65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부가가치세의 개혁과 쟁점 ····· 91
홍순만 (연세대학교 교수)

•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중장기 개편방향
: 상속세 및 증여세 ····· 105
고윤성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분과별 학술발표

• 조세 복잡성 인식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123

박성태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정상훈 (한영회계법인 세무사)
이혜영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 ESG 등급 상승이 조세회피를 억제하는가?
－감사보수 증가 또는 감사시간 증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159

박종일 (충북대학교 교수)
이윤정 (충북대학교 박사)

• 공인회계사와 세무사의 성격유형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209

변정희 (단국대학교 경영학박사)
조경민 (단국대학교 겸임교수)
김 훈 (순천향대학교 외래교수)

• 경영전략이 세무계획과 부채조달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 227

김영철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강정연 (선문대학교 교수)

• Optimization of Tax and Financial Reporting Plans and
Reporting of Impairment Losses ····· 257

강나라 (한경국립대학교 교수)
Ron, Singleton (Western Washington University 교수)

• 공인회계사 세무서비스 제공 관련 독립성 규정의 현황과 개선방향
: 국제기준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293
오선영 (서울대학교 객원교수)
신일항 (가천대학교 교수)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한국기업의
경제적 효과분석 ····· 325
이창섭 (세종대학교 교수)
전홍민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상속세법상 밸류업 기업에 관한 연구 ····· 351
심충진 (건국대학교 교수)

• How should we prepare for the coming AGI Era? ····· 377
강철승 (한국수산정책포럼 대표)

• A Study on Sanctions Related to Tax Invoices
－Focusing on Comparisons Between Korea,
the EU, and the UK－ ····· 441
송보경 (서울시립대학교 석사과정)
박 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서울형 주택세제에 관한 소고
－미국 및 일본 도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463
서영진 (서울시립대학교 박사과정)
박 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부유세 과세의 개념 재정립에 관한 연구 ····· 495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 상속에 따른 취득세 과세 개선 방안
－유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와 신고를 중심으로－ ····· 517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 토지 조성과 지목변경 취득세 체계 개선방안 ····· 553
류 진 (강남대학교 박사과정)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 소급감정 과세의 적법성에 관한 연구 ····· 585
김수경 (법무법인 두현 대표변호사)

• 스마일게이트 소송사건으로 본,
전환사채에 부여된 콜옵션 성격에 대한 소고 ····· 603
정시영 (PKF 서현회계법인 세무본부 파트너)

• 지방국세청 신설이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 617
최민주 (삼화회계법인)

• 지역별 탈세제보율이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 661
전소미 (교보증권)

• 산업별 유효세율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 709
김병용 (삼덕회계법인)

• 부정적 언론보도가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 749
이선호 (현대오토에버)

• 증권형 토큰의 도입에 따른 과세제도의 정비방안 ····· 775
전병욱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및 기업업무추진비의
매입세액불공제 개선방안 ····· 803
서정우 (강남대학교 교수)
서정화 (협성대학교 교수)

•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한 합산분할과세 시나리오 분석 ····· 837
이예지 (서울시립대학교 박사)
조형태 (홍익대학교 교수)
차상권 (칼빈대학교 교수)

• 다국적 기업 과세소득 안분방식과 공평과세
: 미국 주(State)법인세와 디지털세의 안분방식과
과세단위를 중심으로 ····· 871
차명기 (미국 캘리포니아주 조세국 공무원)
김수성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 직원)

• 특정법인을 통한 증여이익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899
김민경 (서울시립대학교 박사과정)
이상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농지 관련 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931

고윤성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이은자 (이은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한국 세무학회 창립과 세무학 학문의 정립 ····· 959

서희열 (강남대학교 명예교수)

• 세무사 일부 보수의 표준화 필요성과 그 방안에 관한 연구 ····· 987

이전오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황인규 (강남대학교 교수)

• ESG 지배구조(G) 반부패 활동 관점에서 살펴 본 조세관리
: 조세회피 측정치를 중심으로 ····· 1025

신상훈 (청주대학교 교수)
김선미 (전남대학교 교수)

• 조세피난처 직접투자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 ····· 1051

왕 람 (Zhejiang Industry Polytechnic College 교수)
박희우 (가톨릭대학교 교수)

• 취득세 세율의 인상 또는 인하가
부동산 매매거래에 미친 영향 ····· 1079

박성욱 (경희대학교 교수)
이종탁 (경희대학교 박사)
김서현 (경희대학교 박사(수료))

• 임대주택리츠 주거안정성 확보방안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중심으로 ····· 1109
노희천 (숭실대학교 교수)
김민희 (숭실대학교 겸임교수)
김형준 (법무법인 지평 전문위원)

• 리츠의 배당가능이익 관련 세무상 이슈 및 개선방안 ····· 1137
신일항 (가천대학교 교수)
문태곤 (연세대학교 박사과정)

• 리츠활성화를 위한 배당유보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연구 ····· 1165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김완용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Doctoral Consortium

장소 : **수펙스홀** 사회자 : **배성호 교수** (경북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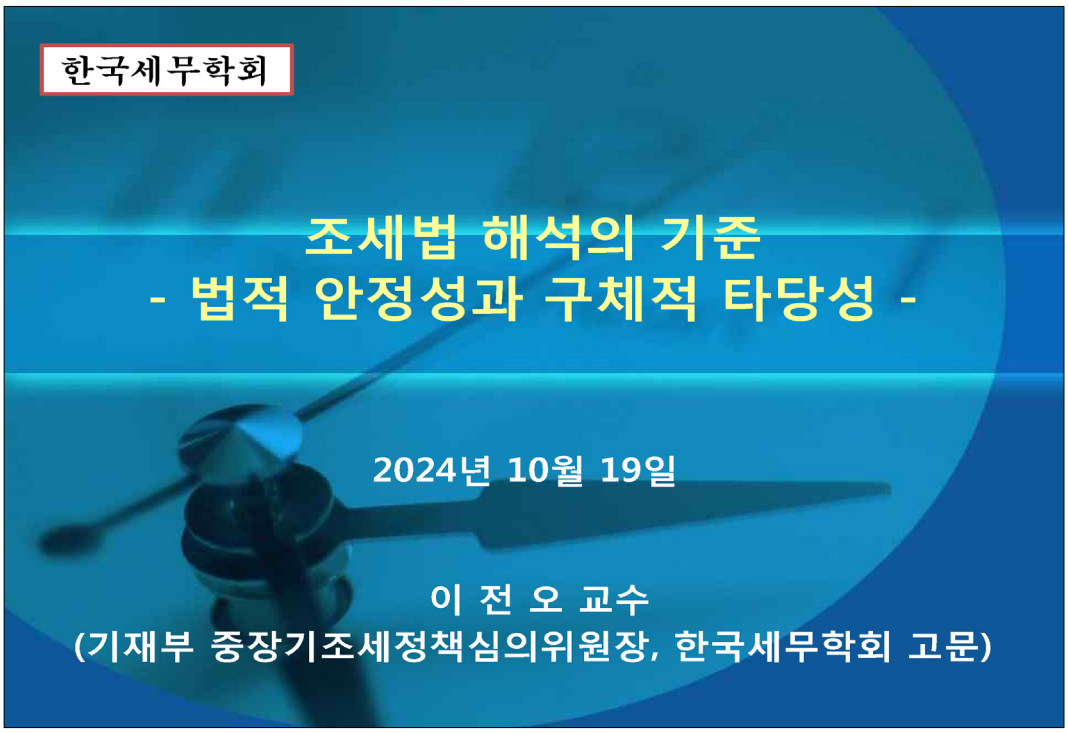
시 간	연구 분야	발표자
10:00 ~ 11:30	조세법 해석의 기준 -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 -	**이전오**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본회 고문)
	연구윤리교육	**배성호** (경북대학교 교수)

조세법 해석의 기준

-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 -

이 전 오

(성균관대학교)



목 차

I. 라드브루흐의 세 가지 법 이념

II. 법해석의 원칙

Ⅲ. 황금들녘 판결

IV. 수원교차로 판결

V. 법관의 법형성 권한

VI. 맺는 말

I. Radbruch의 세 가지 법이념

○ Gustav Radbruch(1878~1949), 독일의 법철학자



3

I. Radbruch의 세 가지 법이념

○ Three Elements in the "Idea of Law"

1. 정의(Gerechtigkeit)
2. 합목적성(Zweckmäßigkeit)
3. 법적 안정성(Rechtssicherheit)

-「법철학」(Rechtsphilosophie), 1932

○ 법의 이념은, 평등을 요구하는 정의, 법 내용의 개별화를 요구하는 합목적성, 정의와 합목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실정법의 효력을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법적 안정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 세 이념 사이에는 모순과 긴장이 발생한다.

4

I. Radbruch의 세 가지 법이념

○ Radbruch의 초기 견해

▶ 법관은 법규의 효력의지를 효력으로 실현시키고 자기의 법감정을 권위적인 법명령에 희생시켜야 하며, 오로지 무엇이 법인지를 물을 뿐이고, 결코 그것이 정당한가를 묻지 말아야 한다.

▶ 물론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물을 수 있을 것이다. "법관의 임무란 지성을 희생시키는 것인가?". "자기의 인격을 백지위임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올바른가?"라고.

그러나, 내용적으로 아무리 부정의한 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법도 이미 그 존재에 의하여 하나의 목적, 즉 법적 안정성이라는 목적을 충족시킨다. 그리하여 법관은 정의를 고려하지 않고 법규에 봉사하는데, 그것은 단지 자의적(恣意的)인 목적에 봉사하는 것은 아니다. 법규가 원하기 때문에 재판관은 정의에 대한 봉사자가 되지 못할 때일지라도 그는 여전히 법적 안정성에 봉사하는 것이다.

5

II. 법해석의 원칙

1. 문언 해석의 원칙(textualism) : 법률의 해석은 문언에 충실하여야 하고, 이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 문언주의자(textualist)는 법률의 문언 그대로의 의미(plain meaning)가 불합리하다고 하여 판사가 법률을 수정하는 것은 사법입법(judicial legislature, judicial lawmaking, judge-made law)에 해당하고, 이는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생각한다.

가.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장 조 희 대

6

II. 법해석의 원칙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중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조희대의 보충의견

법률을 해석할 때 그 법률에서 따로 정의된 용어의 해석은 그에 따르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일반 국민들이 사용하고 이해하는 통상의 의미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논리에 따라 법률 문언을 해석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해석이라야 누구나 승복할 수 있다. 법률의 각 조항 사이에 존재하는 논리적 의미체계와 언어의 통상적 의미로부터 하나의 분명한 해석이 도출된다면, 설령 그것이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와 다른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률의 문언과 다른 해석은 존재하고 있는 규범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규범을 창설하여 입법자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7

II. 법해석의 원칙

○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며(헌법 제101조 제1항), 사법권에는 재판에 적용할 법률의 해석권한이 포함된다. 법관은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여야 하지만, 법관의 법률해석 권한이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다. 법률해석의 출발점은 법률의 문언이다. 법률의 해석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정·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8

II. 법해석의 원칙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두35083 판결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 주심 조희대 대법관

【사실관계】

- 원고(남편)와 처는 1997. 9. 25. 혼인신고
- 원고는 2003. 5. 21. 쟁점 아파트 취득
- 원고와 처는 2008. 1. 11. 협의이혼신고
- 원고는 2008. 9. 8. 쟁점아파트 양도
- 양도 당시에 처는 아파트 8채 소유
- 원고와 처는 이혼신고 후에도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

【쟁점】

원고에게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있는가?

9

II. 법해석의 원칙

【판결요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거주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거주자가 주택의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없다면, 그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배우자와는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혼하였다거나 이혼 후에도 소외인과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한 소외인과는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검토】

타당한 판결인가?

10

II. 법해석의 원칙

■ Antonin Scalia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1936~2016)



11

II. 법해석의 원칙

■ Antonin Scalia 대법관(1936~2016)의 문언주의(textualism)

○ 법률해석이론에서 주관설(또는 의사설)은 입법자의 역사적·심리학적 의사를 탐구하는 것을 해석의 목적으로 하는 견해이고, 객관설(또는 법률에 내재하는 의미설)은 법률 그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를 해명하는 것을 해석의 목적으로 하는 견해이다.

○ Scalia 대법관의 문언주의는 의도주의(주관설, 의사설)에 반대하고, 법은 형식적으로 해석·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법률의 문언에 의하여 표현된 법의 의도, 즉 객관적 의도를 밝히는 것이 해석의 목적이라고 본다.

○ Scalia 대법관은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서 문언의 통상적 의미(plain meaning)를 중시하고, 그 문언의 의미를 벗어나거나 문언의 의미에 반하는 해석은 입법권에 대한 침해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강력히 반대한다.

12

II. 법해석의 원칙

■ John Roberts 미국 연방대법원장(1955 ~). 2005년부터 대법원장에 재직 중



13

II. 법해석의 원칙

■ "... 판사와 대법관은 법의 종이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판사는 심판과 같습니다. 심판은 규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적용합니다. 심판과 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심판과 판사는 모든 사람이 규칙을 지키도록 하지만, 그 역할은 제한적입니다. 아무도 심판을 보러 야구 경기에 간 적이 없습니다.

"...Judges and Justices are servants of the law, not the other way around. Judges are like umpires. Umpires don't make the rules, they apply them. The role of an umpire and a judge is critical. They make sure everybody plays by the rules, but it is a limited role. Nobody ever went to a ball game to see the umpire."

- John Roberts에 대한 2005년 미국 상원 인준 청문회(Chief Justice Roberts Statement - Nomination Process)

14

II. 법해석의 원칙

□ 문언중심 해석 원칙(textualism)을 지나치게 고수하면?

사례 : M 교회 목사 세습 사건

가. 사안

(1) A 목사는 1980년 신도 20명의 조그마한 교회를 개척한 후, 꾸준히 성장시켜 등록교인 10만명의 초대형 M 교회로 키움.

(2) A 목사는 퇴임을 앞두고 담임목사직을 아들 B에게 물려주고자 의도함.

(3) M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헌법 정치편 제28조 제6항은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목사로 청빙(請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15

II. 법해석의 원칙

(4) A 목사는 2014년 3월 경기도 하남에 '새노래M교회'를 세워서 아들인 B 목사를 취임시켰음. 2015년 12월 A 목사가 은퇴한 뒤에 M교회는 새로운 목사 청빙 없이 임시체제로 운영을 하다가 2017년 3월 'M교회'와 '새노래M교회'를 합병하는 결의를 하였고, 아울러 B 목사를 M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하는 안건을 통과시킴.

(5) B 목사는 2017. 11. 12. '새노래M교회' 오전 예배에서 사임을 알리고, 그날 저녁 'M교회'에서 위임식을 통하여 아버지 A 목사에 이어 M교회의 담임목사로 공식적으로 부임함.

(6) 쟁점: 교회 헌법 제28조 제6항 위반인가?

-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 재판국은 8:7로 B 목사의 청빙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 이유: A 목사는 이미 은퇴하였기 때문에 교회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은퇴하는 목사'가 아니므로 그 아들을 담임목사로 청빙하더라도 교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 검토

수긍이 가는 판결인가?

16

II. 법해석의 원칙

2. 합목적적 해석

가.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9두56333 판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17

II. 법해석의 원칙

나.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08두150 전원합의체 판결【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특수관계자의 범위

【사실관계】

- 갑은 원고인 A법인의 대표이사로서 A법인 주식 48.57%를 소유하고 있고, 아울러 B법인 주식 20%를 소유하고 있다.

- 원고인 A법인은 B법인에게 X회사 주식을 저가양도하였다.

- 과세관청인 피고는 원고인 A법인의 저가양도행위를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원고인 A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18

II. 법해석의 원칙

【적용법령】

2001. 12. 31. 개정 전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이하 생략)

19

II. 법해석의 원칙

【쟁점】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적용된다. 양도인인 A법인은 B법인과 특수관계자인가? 즉, ① 양도인인 A법인 입장에서 볼 때에, B법인은 위 시행령 제1항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A법인과 B법인은 특수관계자가 아닌가(소위 일방관계설), 아니면 ② B법인 입장에서 볼 때에, 갑은 B법인의 주주이고(위 시행령 제1항 제2호), A법인은 갑이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므로(위 시행령 제1항 제4호), 결국 A법인과 B법인은 특수관계자라고 보아야 할 것인가(소위 쌍방관계설)?

【판결요지】

[다수의견] 법인세법상의 특수관계자는 문언상 납세의무자인 법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와 각 호 1의 관계에 있는 자만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납세의무자인 법인(A법인)과 거래를 한 상대방(B법인)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각 호 1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위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위 시행령 조항의 문언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위 시행령 조항을 문언과 달리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방법으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넓혀야 할 이유도 없다.

20

II. 법해석의 원칙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차한성의 반대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문의 가능한 의미 내에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까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인 법인과 같은 항 각 호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관계'란 둘 이상의 주체가 서로 관련을 맺는 것을 의미하므로 납세의무자인 법인을 기준으로 하여 거래상대방이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을 기준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거래상대방이 납세의무자인 법인과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2011. 12. 31. 개정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규정)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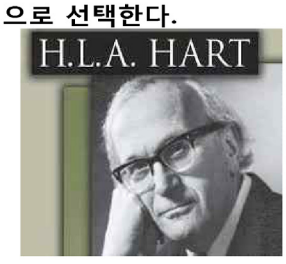
21

II. 법해석의 원칙

3. 법창조적 해석/사법입법(judicial legislation)

가. H. L. A. Hart(1907~1992, 영국 법철학자·옥스포드 대학 법학교수)의 사법재량론(judicial discretion) :

판사가 어려운 사건에서 기존의 법규칙(1차 규칙)의 애매성 또는 열린 구조 속에서 하나의 답을 찾지 못할 때 판사는 2차 규칙에 의하여 재량을 갖고 규칙창설적 또는 입법적 행위에 종사하게 되는데, 이때 판사는 정책(policy)에 의하여 선택가능한 여러 답 중에서 하나의 답을 재량적으로 선택한다.



22

II. 법해석의 원칙

나. William N. Eskridge Jr.(1951~, 예일대 로스쿨 교수)의 역동적 해석 이론 (Dynamic Statutoty Interpretation Theory):

제정법의 해석은 새로운 정치적 연대, 새로운 해석자 그리고 새로운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변경된다.



23

II. 법해석의 원칙

▶ 해석이 필요한 것은, 예견되지 않았거나 정치적으로 무시된 쟁점에 제정법을 적용할 경우이다. 이러한 간격이나 모호성이 존재할 때 그 제정법에 찬성한 입법자들의 투표는 당 시대의 행정관료들 또는 판사들(또는 실제로 다른 입법자들)의 해석과 다른 해석에 기초하였을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가 변하고, 사회가 그 제정법에 적응하고, 사회가 그 제정법의 주된 적용대상인 문제에 새로운 다양성을 만들어 냄에 따라 그 간격과 모호성은 더욱 커진다.

▶ 예견되지 않은 상황에 그 제정법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정법의 본래의 의미(original meaning) 또는 입법자의 본래의 의도(original intent)는 점차 관련성을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사안에 접한 해석자는 제정 이후의 법 발전, 현재의 입법적 선택 그리고 다른 해석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결과에 의하여 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된다.

24

II. 법해석의 원칙

다. 동독 국경 경비병 판결(독일연방대법원, 1993)

⇒ 통일 전 동독 국경경비대원이, 베를린장벽을 넘어 서독으로 탈출하려는 시민을 사살한 경우에, 통일 후에 독일 법원이 그 국경경비대원을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 사실관계

▶구 동독 형법 213조 (3)항 ("무단 불법 월경 행위")에 따르면 베를린 장벽을 넘는 행위는 중범죄 행위(重犯罪 行爲, Verbrechen)로 간주되며, 2년 이상의 징역형(Freiheitsstrafe)에 처한다.

▶구 동독국경법 제27조 제2항 제1호는 "정황상 범죄로 여겨지는 범행의 직접적인 실행이나 속행(續行)을 저지하기 위한 총기 사용은 정당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경경비대원들은 '무단 월경(越境)은....어떤 경우에도 허용해서는 안된다. 무단 월경자(越境者)는 정지(停止)시키거나 소멸(消滅)시켜야 한다.'는 평소 명령에 따라 근무하였다.

▶독일형법 제212조[고살(故殺)] ① 모살자(謀殺者)가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사람을 살해한 자는 고살자(故殺者)로서 5년 이상의 직역형에 처한다. ② 제I항의 행위가 특히 중한 경우에는 무기징역형에 처한다.

25

II. 법해석의 원칙

○ 라드브루흐의 후기 견해 ⇒ '라드브루흐 공식(公式)' (Radbruchsche Formel)

▶ Gustav Radbruch, "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 법(Gesetzliches Unrecht und übergesetzliches Recht"(1946)

"규정(Satzung)과 권력에 의해 보장된 실정법은 그 내용이 정의롭지 못하고(ungerecht) 비합리적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정의(正義)의 원칙보다는 우선권을 갖는다. 그러나 실정법이 참을 수 없을(unerträglich) 정도로 정의(正義)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부정당한 법'(unrichtiges Recht)이 되며 그 법률은 정의(正義)에게 자리를 내어주어야 한다."

"온갖 실정법규보다 더 강력한 법원칙이 존재하고, 따라서 이에 반하는 실정법은 효력이 없다. 사람들은 이러한 원칙들을 자연법 또는 이성법이라 부른다. ... 우리는 모든 법률 위에 존재하는 인권을, 그리고 정의에 대해 적대적인 법률의 효력을 박탈하는 자연법을 기억하여야 한다."

▶ 베를린지방법원과 독일연방대법원(BGH)은 이른바 장벽수비소송(Mauerschutzenprozesse)에서 라드브루흐의 1946년 논문인 '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 법(gesetzliches Unrecht und ubergesetzliches Recht)'의 명제를 인용하여 유죄판결(1년 5개월형, 1년 9개월형)을 선고하였다.

26

III. 황금들녘 판결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건물명도 등]

1. 사실관계 및 법령

【사실관계】

- 원고는 임대주택사업을 하고 있는 대한주택공사이다.

- 원고는 1999년 2월 19일 임대주택 한 채(24평형)에 관해 피고 이명화와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피고 이명화는 피고 이종명의 딸이다. 피고 이명화는 1988년 혼인한 후 분가하여 자기 소유 주택에 따로 살고 있다.

- 피고 이종명은 무주택자이고 고령인데, 처의 병수발 때문에 직접 대한주택공사를 찾아갈 수 없어서 자신의 돈을 관리하고 있던 딸인 피고 이명화를 통해 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딸인 피고 이명화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아버지인 피고 이종명이 임대주택에 입주하여 혼자 생활하였다.

27

III. 황금들녘 판결

-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임대주택법이 규정한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자 원고는 위 임대주택 전부를 분양전환하기로 하였다.

- 구 임대주택법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는 우선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를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 피고 이종명은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명의자는 형식상 딸로 되어 있을 뿐이고, 실제로는 자신이 거주하기 위해 임차한 것이며, 자신이 계속해서 위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해당 임대주택을 자신의 명의로 분양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임대주택의 계약상 임차인인 피고 이명화 부부는 이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위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었다.

- 원고는 피고 이종명의 요청을 거절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임대주택의 명도를 청구하였다.

28

III. 황금들녘 판결

【관련법령】

○ 2005. 7. 13. 개정 전의 구 주택임대차법 제15조 (건설임대주택의 무주택세대주에의 우선분양전환)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주택세대주인 임차인에게 우선분양전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임대주택을 우선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의 방법·절차 및 가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건설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 등)

②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1.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29

III. 황금들녘 판결

【쟁점】

아버지인 피고 이종명이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의 '무주택자인 임차인'인가?

2. 대전고등법원 2006. 11. 1. 선고 2006나1846 판결 [건물명도 등]

【판결요지】

임대주택의 실수요자인 고령의 무주택자가 처의 병수발 때문에 직접 대한주택공사를 찾아갈 수 없어 자신의 돈을 관리하고 있던 딸을 통해 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혼자서 임대주택에서 생활해 온 경우, 임대주택법 제15조 제1항 제1호가 실제 거주한 임차인을 우선분양권의 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한정된 자원의 분양에 있어서 실수요자를 우선 배려하기 위한 목적 때문인 점, 거주자의 딸이 자신의 명의로 아버지의 주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어떠한 이익을 얻거나 법적 규제를 회피하려 하였던 것이 아니고, 다만 법적 권리에 관하여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저지른 실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거주자의 주거안정은 당초부터 임대주택법의 정책목표와 계획상의 보호범위 내에 있었다고 하여야 하므로, 위 거주자를 우선분양권에 관한 임대주택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임차인'으로 보아야 한다.

30

III. 황금들녘 판결

【판결이유 중 일부】

법률용어로서의 '임차인'이라는 단어가 임대차계약의 양 당사자 중 부동산을 빌리는 측 당사자를 의미한다는 사실은 굳이 법률가가 아니더라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법률 문언의 올바른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법률용어로서의 의미만이 아니라 그 법률이 달성하고자 한 정책목표와 우리 사회가 법체제 전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가치를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위 법률의 문언만이 아니라 위 법률이 달성하고자 한 정책적 목표와 위 법률이 의도한 계획의 관점에서 보면, 피고 이종명의 주거안정은 당초부터 위 정책목표와 계획상의 보호범위 내에 있었던 것이지 그 바깥에 있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정책적 목적과 계획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된 언어가 그 정책적 목적과 계획의 실행을 제한하고 억제하는 방향으로 해석되고 집행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31

III. 황금들녘 판결

이러한 법해석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에서 피고 이종명이 무주택자이고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실수요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특별한 사정 때문에 임대차계약상의 임차명의인이 아니라고 하여 그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 이 법의 공익적 목적과 계획에 부합한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법상의 임차인의 요건을 그렇게까지 문언적, 법형식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 사안에서 임대차계약의 목적과 재정적 부담과 실제 거주자라는 실질적 측면에서 사회적 통념상 임차인으로 충분히 관념될 수 있는 피고 이종명이 위 법상의 임차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 위 법의 공익적 목적과 계획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32

III. 황금들녘 판결

가장 세심하고 사려 깊은 사람도 세상사 모두를 예상하고 대비할 수는 없는 법이다. 가장 사려 깊고 조심스럽게 만들어진 법도 세상사 모든 사안에서 명확한 정의의 지침을 제공하기는 어려운 법이다. 법은 장래 발생 가능한 다양한 사안을 예상하고 미리 만들어두는 일종의 기성복 같은 것이어서 아무리 다양한 치수의 옷을 만들어 두어도 예상을 넘어 팔이 더 길거나 짧은 사람이 나오게 된다. 미리 만들어 둔 옷 치수에 맞지 않다고 하여 당신의 팔이 너무 길거나 짧은 것은 당신의 잘못이니 당신에게 줄 옷은 없다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 다소 번거롭더라도 옷의 길이를 조금 늘이거나 줄여 수선해 줄 것인가? 우리는 입법부가 만든 법률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집행하는 법원이 어느 정도 수선의 의무와 권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의회가 만든 법률을 법원이 제멋대로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이 의도된 본래의 의미를 갖도록 보완하는 것이고 대한민국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체제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33

III. 황금들녘 판결

가을 들녘에는 황금물결이 일고, 집집마다 감나무엔 빨간 감이 익어 간다. 가을걷이에 나선 농부의 입가엔 노랫가락이 흘러나오고, 바라보는 아낙의 얼굴엔 웃음꽃이 폈다. 홀로 사는 칠십 노인을 집에서 쫓아내 달라고 요구하는 원고의 소장에서는 찬바람이 일고, 엄동설한에 길가에 나앉을 노인을 상상하는 이들의 눈가엔 물기가 맺힌다.

우리 모두는 차가운 머리만을 가진 사회보다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함께 가진 사회에서 살기 원하기 때문에 법의 해석과 집행도 차가운 머리만이 아니라 따뜻한 가슴도 함께 갖고 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이 사건에서 따뜻한 가슴만이 피고들의 편에 서있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머리도 그들의 편에 함께 서있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이다.

34

III. 황금들녘 판결

3.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건물명도 등]

【판결요지】

[1]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정법이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즉 구체적 타당성을 가지도록 해석할 것도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35

III. 황금들녘 판결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서 본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에 관하여 그 법률 및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당해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36

III. 황금들녘 판결

[2] 구 임대주택법(2005. 7. 13. 법률 제7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차인'이란 어디까지나 그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본인으로서의 임차인을 의미하고, 이와 달리 당사자 일방의 계약 목적, 경제적 부담이나 실제 거주 사실 등을 고려한 **'실질적 의미의 임차인'까지 포함한다고 변경, 확장 해석하는 것은 법률 해석의 원칙과 기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37

III. 황금들녘 판결

4. 검토

가. 고등법원은 법창조적 해석/사법입법을 한 것인가?

나. 아니면, 고등법원은 합목적적 해석을 한 것인가?

다. 대법원은 엄격해석을 한 것인가?

라. 양 법원의 견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

마. 어느 쪽 해석이 타당한가?

38

IV. 수원교차로 판결



고 황필상 회장
(1947~2018)

39

IV. 수원교차로 판결

1. 황필상 회장 약력

- 1947년 서울 청계천 빈민촌에서 출생
- 어려운 학창시절
- 고학으로 26세에 아주대학교에 입학
- 프랑스 국립과학응용연구소에서 박사학위 취득
-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역임(1984~1992)
- 1991 주식회사 수원교차로 창업

40

IV. 수원교차로 판결

2. 사건 경위

○ 황필상이 1991년에 주식회사 수원교차로 설립.

○ 황필상 등이 3억 1천만원을 출연하여 2002. 10. 17. '황필상 아주장학재단' 설립 인가를 받음(2005. 4. 4. 설립등기).

○ 주식회사 수원교차로의 총발행주식 120,000주 중 황필상이 84,000주(70%), 그의 6촌 동생 황만상이 36,000주(30%)를 보유. 황필상은 2003. 2. 20. 보유주식 중 72,000주(발행주식총수 중 60%)를, 황만상은 보유주식 전부(30%)를 '황필상 아주장학재단'에 출연 ⇒ 위 주식 합계 90%는 시가 약 180억원. 그외 현금 15억원도 기부.

○ 기증의 변(辯):
"'자식에게 상자에 가득 찰 정도의 황금을 남겨주는 것보다 한 권의 책을 남겨주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하시던 어머니의 유지(遺旨)와 더불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200억원 상당의 회사는 제 능력에 넘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장학재단)에 기증한다." 41

IV. 수원교차로 판결

○ 2005. 4. 4. 재단명칭을 '재단법인 九元장학재단'으로 변경(父 黃潤九와 母 趙福元의 이름을 한자씩 딴 것).

○ 2005. 12. 15. 구원장학재단 제3대 재단이사장에 황필상 취임.

○ 수원세무서장은 2008. 9. 3. 재단법인 구원장학재단에 증여세 약 140억원을 부과
- 처분사유: 구원장학재단이 이 사건 주식을 출연받은 것은 공익목적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것이기는 하나, 구원장학재단이 ㈜수원교차로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한 이 사건 주식을 출연받았고, 황필상과 ㈜수원교차로는 특수관계에 있다.

○ 구원장학재단은 2008. 11. 11.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9. 9. 17. 청구 기각됨. 42

IV. 수원교차로 판결

○ 구원장학재단은 2009. 12. 18.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 2010. 7. 15. 제1심 판결 선고(수원지방법원 2009구합14096) ⇒ 원고 승소

○ 피고(수원세무서장)가 2010. 8. 17. 항소

○ 2011. 8. 19. 제2심 판결 선고(서울고등법원 2010누26003) ⇒ 파기환송(원고 패소)

○ 2011. 9. 8. 원고(재단법인 구원장학재단)가 상고

○ 2015. 10. 13. 수원세무서장은 구원장학재단의 증여세 체납을 이유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부자인 황필상(연대납세의무자)에게 225억원을 납세고지, 황필상의 아파트 등을 압류.

○ 황필상 인터뷰: "기부를 안 했더라면 이런 욕도 보지 않고 여전히 부자로 남아 있었을 텐데 나를 죄인·범죄자 취급하니 전 재산 기부를 되돌리고 싶다."

○ 2017. 4. 20. 대법원판결 선고(2011두21447) ⇒ 파기 환송
황필상 인터뷰: "이번 판결은 진실의 승리"

○ 서울고등법원 2017. 12. 6. 선고 2017누154 판결 ⇒ 항소기각(원고 승소)

43

IV. 수원교차로 판결

3. 수원지방법원 2010. 7. 15. 선고 2009구합14096 판결⇒ 합헌적 법률해석

【판결이유】

공익법인에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한 경우 그 주식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시키는 제도의 취지는 주로 그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익을 지주회사화함으로써 경제력을 집중하거나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경제력을 세습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차단함으로써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공익법인에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한 것이 경제력 집중이나 경제력 세습과 무관하다면 당해 공익법인이 국가를 대신하여 공익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우리의 법공동체 구성원들의 재정적 부담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므로 당해 공익법인에게도 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마련하는 재원에 대하여 조세를 부담하지 않게 하는 것이 조세정의에 부합한다.

44

IV. 수원교차로 판결

그리고 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아 관련 규정의 형식적 요건에만 해당하면 기계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고 그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헌법 규정의 취지나 관련 법령의 입법목적에 심히 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공익법익에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한 것이 경제력 집중이나 경제력 세습과 관계가 있는 것인지를 아울러 고려하여 그 예외를 인정함이 합헌적 법률해석의 방법으로서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현행 규정을 살펴보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서 공익법인에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한 자와 당해 내국법인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정한 두 가지 유형의 경우에는 경제력 집중이나 경제력 세습과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이 경우에는 경제력 집중이나 경제력 세습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하여 과세요건이 성립되었다고 보되, 다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공익법인이 그 주식 출연이 경제력 집중이나 경제력 세습과 무관하다는 점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45

IV. 수원교차로 판결

황필상은 애초에 이 사건 주식을 아주대학교에 기부하여 장학사업에 사용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을 뿐 처음부터 원고 공익법인의 설립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황필상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10%의 주식도 아주대학교의 부탁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것일 뿐 이 사건 내국법인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황필상의 주식 출연이 원고 공익법인을 이 사건 내국법인의 지주회사로 만듦으로써 경제력을 집중시키거나 경제력을 세습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6

IV. 수원교차로 판결

4. 서울고등법원 2011. 8. 19. 선고 2010누26003 판결⇒ 합헌적 법률 해석 부인

【판결이유】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조항은 입법자의 입법 재량의 범위 내에서 도입된 것으로 그 자체가 헌법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조항이 입법자가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을 이미 반영하여 주식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일 경우에 과세 예외를 둔 이상 위 조항의 해당 여부는 주식의 출연자와 주식출연자의 내국법인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 여부나 공익 목적 사업의 수행 여부와 상관없이 판단되어질 수밖에 없다.

47

IV. 수원교차로 판결

황필상의 원고 공익법인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출연이 경제력 승계의 의도가 없고, 또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가액 불산입조항을 도입한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는 점을 들어 법령의 해석으로 다시 한 번 법령에서 정한 한계를 재설정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조항에 관한 법률해석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합헌적 조세법률을 적법하게 적용하여 한 과세처분이 구체적인 경우에 형평에 반하는 등의 위헌적인 결과에 이른다고 할지라도 독일 국세기본법 제163조와 제227조와 같이 입법을 통한 구체적인 구제제도가 없는 이상 헌법 제107조 제2항에 의하여 법원에게 이를 시정할 권한이 주어졌다고 볼 수 없다.

황필상의 구원장학재단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출연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금지하고자 하는 경제력 집중이나 경영권 편법 승계와 무관한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식의 78% 가량을 국가가 거두어 가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지라도 이러한 결과가 원고 공익법인의 존속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매우 불합리한 면이 있을지언정 위헌적인 결과라고 보기도 어렵다.

48

Ⅳ. 수원교차로 판결

5.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1두21447판결

【쟁점】

❶ 최대주주 판단 시점

출연자가 주식을 출연하기 이전에 보유하던 주식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의 최대주주였는지를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출연자가 주식을 출연한 결과 출연자에게 남은 주식과 특수관계인 공익재단의 보유주식을 모두 합하여 최대주주가 되었는지를 판단할 것인지 여부

❷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 여부

쟁점 1에서 후자로 볼 경우, 출연자가 공익재단의 설립과정에서 출연만 하더라도 공익재단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으로 되어 그 공익재단의 보유주식까지 포함하여 최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출연자가 정관작성·이사선임 등 공익재단의 설립과정에 실질적인 영향력까지 행사하여야만 특수관계인이 되어 그 공익재단의 보유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49

Ⅳ. 수원교차로 판결

가. 다수의견(9명) : 쟁점 2의 후자 견해 채택⇒ 파기환송

(1) 최대주주 요건은 주식 출연 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2)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자'는 정관작성·이사선임 등의 과정에서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실질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라야 함.

(3) 구체적 판단: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 파기

황필상 등이 원고에게 주식을 출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으로서는 나아가 황필상 등이 원고의 정관작성·이사선임 등의 설립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원고를 설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더 면밀하게 심리할 필요가 있다.

50

IV. 수원교차로 판결

나. 반대의견(3명) ⇒ 상고기각 의견

(1) 출연 직전을 기준으로 최대주주 여부를 판단해야 함.

(2) 설립과정에의 관여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음.

(3) 원심의 결론은 정당함 ⇒ 상고기각
원고가 주식출연 이전에 최대주주였던 황필상 등으로부터 수원교차로 주식을 출연받은 이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원고 재단이 황필상이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1

IV. 수원교차로 판결

6. 판결에 대한 평가

가. 제1심 판결은 합목적적 해석인가, 법창조적 해석인가?

나. 항소심 판결은 문언해석

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평가

(1) 선의의 기부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다수의견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다수의견과 같은 논리가 법률해석론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의문임.

(2) 문언상으로는 반대의견이 타당하다고 보여짐.

(3) 다수의견은 합목적적 해석을 한 것인가, 아니면 해석론을 넘어서 사법입법을 한 것인가?

52

V. 법관의 법형성 권한

1. 문제의 제기

Q 1 : 황금들녘 판결의 제1심 판결, 수원교차로 사건의 제1심 판결 및 대법원 판결은 합목적적 해석을 한 것인가? 아니면 합목적적 해석을 넘어선 유추해석 내지 확대해석을 한 것인가? 더 나아가 법창조적 해석 내지 사법입법행위(Judicial Legislation)를 한 것인가?

Q 2 : 법관의 법형성권한으로서의 법창조적 해석 내지 사법입법은 금지되는가?

Q 3 : 합목적적 해석과 법창조적 해석 내지 사법입법은 어떻게 다르며 그 경계는 어디인가?

Q 4 : 입법목적에 반하는 과세처분 또는 불형평한 위헌적인 과세처분에 대해 법관이 목적론적 축소적용 또는 합헌적 축소적용을 할 수 있는가?

53

V. 법관의 법형성 권한

2. 합목적적 해석 vs 유추해석/확장해석

가. 합목적적 해석 ⇒ 허용

◯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나. 유추해석/확장해석 ⇒ 금지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54

V. 법관의 법형성 권한

다. 합목적적 해석과 유추해석/확장해석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가?

○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08두150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

……이와 달리 납세의무자인 법인과 거래를 한 상대방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각 호 1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위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위 시행령 조항의 문언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위 시행령 조항을 문언과 달리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방법으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넓혀야 할 이유도 없다.

(반대의견)

……'관계'란 둘 이상의 주체가 서로 관련을 맺는 것을 의미하므로 납세의무자인 법인을 기준으로 하여 거래상대방이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을 기준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거래상대방이 납세의무자인 법인과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관계'의 의미를 위와 같이 해석하여야 하고, 이것이 법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55

V. 법관의 법형성 권한

3. 법관의 법형성 권한

가. 법형성 권한 비판론

○ 법관이 법형성 권한을 가진다면, 이는 역사적인 규범목적의 탐구를 의식적으로 포기하고 민주주의적 법치국가의 원리들에 맞서 법률에의 복종을 거부하는 것이다.

○ 뤼터스(Rüthers)

- '입법의 의사' 내지 '역사적 규범목적의 탐구'가 법률적용 및 법형성의 제일단계이고, 법원은 오로지 법률의 종복으로서 '사유하는 복종' 속에서 법률에 합치되게 법을 형성해야 한다.

- '법관법'을 허용하면, 법은 사법(Judikate)으로 대체되고 법치국가를 대신해 사법과 법관이 지배하는 법관국가(Richterstaat)만이 남게 될 것이다.

- 법률텍스트와 입법자의 의사에 충실한 해석이 곧 헌법적 권력분립과 법률구속성에 충실한 사법이다.

56

V. 법관의 법형성 권한

나. 법형성권한 찬성론

◯ 시대에 뒤지거나 흠결 있는 법률을 목적론적 관점에서 새롭게 적응시키고 재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하는 사법의 과제이다.

◯ 라렌쯔(Karl Larenz, 1903~1999) : 독일 법학자·법철학자

- 법관의 법률해석과 법형성은 본질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사유과정의 서로 다른 단계이다.

- 법률의 해석과 법형성은 텍스트 기속적인 동시에 텍스트 창조적인 활동이다.

- 법률의 해석은 법률텍스트가 스스로 말하는 바를 옮겨 발언하는 작업이지만, 그러기 위해 올바른 방식으로 질문하고 텍스트의 언어를 이해하는 해석자가 필수적이다. 그런 점에서 모든 해석은 이미 이해주체의 창조적 활동이며, 법형성의 경우에는 주체의 창조적 몫이 더 커지게 된다.

57

V. 법관의 법형성 권한

다. 검토

(1) 원칙적으로 법관은 주어진 법률에 따라 판결해야 하지만, 모든 사례의 해결을 보장하는 완벽한 입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법 자체의 한계와, 법원은 어떤 경우에도 판결을 거부할 수 없다는 사법의 본질적 속성으로 인하여, 법관의 법형성적 판결이 논란이 되는 것이다.

(2) 법관이 자기 자신의 실체적 정의관념으로써 입법자의 정의관을 대체하는 데 이르러서는 아니 될 것이다. 법관의 법형성 권한은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즉, 법원이 규범 적용자의 역할을 벗어나 규범 정립자의 지위로 이행하여 법과 법률에의 기속에서 벗어남으로써 헌법상 입법자에게 유보된 권능들을 행사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리상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58

V. 법관의 법형성 권한

(3) 영·미 보통법 체계가 아닌 대륙시민법 체계의 연혁과 전통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 대륙시민법 체계 하의 근대 입법은, 법률은 시민이 자신의 권리의무 상태를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간명해야 하며 법관이 오로지 법률 규정에 따라 판결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어야 한다는 요구, 즉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 및 '법관의 법률에의 기속' 원리에 근거하여 '전 시민을 지도하기 위한 간단명료한 입법'과 '모든 법관을 구속하기 위한 상세한 입법'을 추구하였다.

- 형사법이나 조세법처럼 개인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법관의 법형성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법관의 법형성은 피고인이나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뿐만 아니라 불리하게 작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피고인이나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론에 다다를 우려가 있다.

59

V. 법관의 법형성 권한

4. 입법목적에 반하는 증여세 부과처분 또는 불형평한 위헌적인 과세처분에 대해 법관이 목적론적 축소적용 또는 합헌적 축소적용을 할 수 있는가?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의 입법목적

◯ 본문(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의 입법목적 :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에도 증여세를 부과한다면 국가가 공익실현을 방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이런 모순을 제거하려는 것.

◯ 단서의 입법목적 :

공익법인이 악용될 소지를 막기 위하여, 공익법인을 실질적인 지주회사로 삼는 등의 편법이용이 가능한 주식 등의 출연에 대해서는 본문을 적용하지 않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60

V. 법관의 법형성 권한

나. 문제점

○ 주식 등의 출연행위이지만 조세회피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할 것인가, 단서를 적용할 것인가?

○ 이런 경우에 과세한다면 본문 및 단서의 입법목적에 어긋나는 불형평한 과세가 됨. 출연자(황필상)는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으로 장학사업을 위해 공익법인에게 기부한 것이 아니라 국가에게 기부한 결과가 되고 말았음.

○ 제1심 법원은 목적론적 축소적용을 통해 원고 승소 판결.

○ 제2심 판결은, 법률 조항의 문구가 간직하고 있는 말의 뜻을 넘어선 합헌적 해석은 실질적 의미에서의 입법작용을 뜻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입법권자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

○ 대법원은 기교적 해석을 통하여 선한 기부행위를 구제. 61

V. 법관의 법형성 권한

다. 합당한 논리가 무엇일까?

(1) 형평면제판결의 의의

합헌적 법률을 적법하게 적용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불형평한 과세에 대해 조세형평을 이유로 법관이 문언의 축소적용을 통해 납세자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

Cf.) 형평과세판결 : 유추적용을 통해 내려진 과세처분을 조세공평을 이유로 법관이 인정하여 납세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 예: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조항 사건에 대한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419 판결

62

V. 법관의 법형성 권한

(2) 독일의 입법례

◯ 독일 국세기본법 제163조【형평을 근거로 법률과 다른 조세 확정】

조세의 징수가 개별적인 상황에 비추어 불형평하다면 더 낮게 조세를 확정할 수 있고 조세부담을 상승시키는 개별적인 과세대상을 조세확정절차에서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소득에 관한 조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부담을 상승시키는 개별적 과세대상은 차후의 과세연도의 조세확정절차에서 고려될 수 있고, 조세부담을 하락시키는 경우에는 미리 고려될 수 있다. 상이한 조세의 확정에 대한 결정은 조세부과처분과 함께 결합될 수 있다.

◯ 독일 국세기본법 제227조【면제】

조세행정청은 조세채무관계로 인한 청구권을, 그 징수가 개별적 상황에 비추어 불형평하다면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동일한 요건 하에 이미 징수된 세액은 환급 또는 충당될 수 있다. ⇒ 과세관청의 형평면제처분(Billigkeitserlass)

63

V. 법관의 법형성 권한

(3) 우리나라에서 적용 가능성

(가) 헌법 제107조 제2항 :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나) 헌법 제107조 제2항은 위헌법률심사와는 관계없는 불형평한 처분에 대해 법원이 헌법합치적 또는 목적론적 축소적용으로 그 위헌성을 개별적으로 제거하는 형평면제판결을 허용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즉, 입법자가 인식하지 못한 예외사례에 대해 원칙규정을 그대로 적용한 결과가 입법취지에 반하는 위헌적인 결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위헌성을 법적용 기관(과세권자, 법원 등)에서 헌법상의 의무에 합당하게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그 위헌성을 제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다) 그렇다면 수원교차로 사건의 증여세 과세처분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세금 부과가 몰수(Konfiskation)의 상황이 되거나 또는 소위 "압살적 조세(Erdrosselungssteuer)"에 해당하는 경우인가?

64

V. 법관의 법형성 권한

(라)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의 함의

1)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세법해석의 기준) :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위 조항의 운용 현실 – 드물게 적용

①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두32416 판결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이 2003. 12. 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원인이 당해 법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서 비롯되었을 경우에는 재평가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②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0두3138 판결 [종합부동산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등에 위반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소재지에 따라 그 감면 여부를 달리 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위 조항이 한국판 형평면제조항으로 기능할 수 있는가?

65

V. 법관의 법형성 권한

5. 우리나라 대법원의 성격 : 정책법원인가 아니면 제3심인가?

가. 정책법원에 대한 갈망

- ◯ 미국 연방대법원의 예 - certiorari
- ◯ 상고법원 설치 논의

나. 정책법원화에 대한 장해 요소

- ◯ 헌법재판소의 존재
- ◯ 엄청난 사건 부담
- ◯ 사법부에 대한 낮은 신뢰

66

VI. 맺는 말

1. 법해석론의 본질은 결국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의 갈등 및 조화 문제임.

가. 문언해석은 대개 '법적 안정성'을, 합목적적 해석은 대개 '구체적 타당성'을 지향한다.

나. 우리 대법원은 대개 '법적 안정성'에 우위의 가치를 둔다.
▶문제점 :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달라짐에 따라 법과 실제 생활과의 사이에 불가피하게 간격이 생길 수 있으며, 이 때에 만일 명문규정의 엄격한 적용만을 고집한다면 법적 안정성이 유지될지는 모르나, 사회생활의 유동·발전에 대한 적응성을 결여하는 중대한 결함이 생길 수 있으므로 법규정을 실제 생활에 부합하게 해석할 사회적 필요가 생기게 된다. 67

VI. 맺는 말

2. 지금보다는 구체적 타당성을 더 고려해야 한다.

가. 대법원은 법적 안정성에 무게를 두고 문언해석을 위주로 하고 있으나, 문언해석에 너무 기울어지면 법적 안정성에 치우친 나머지 구체적인 사안의 결론에서 보편적 법감정에 어긋난 판결을 할 우려가 있다.

○ 해석이 법문언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결론이 타당한 판결이 좋은 판결인가? 아니면, 법문언에 충실하고 논리가 정연하지만 결론을 수긍하기 어려운 판결이 좋은 판결인가?

○ 법원이 지나치게 문언해석 중심에 머무르게 되면 Radbruch가 제시한 법이념 중 '정의'와 '합목적성'의 이념을 외면할 우려가 있다.

○ Radbruch가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던 초기의 견해에서 벗어나, 후기에 왜 '정의'를 중시한 '라드브루흐 공식'으로 기울어갔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68

VI. 맺는 말

나. 법학방법론상 "법문의 가능한 의미"를 한계로 하는 법발견은 허용된다.

○ 법발견(Rechtsfindung)은 해당 사안에 대한 해결책을 '법문의 가능한 의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반면(secundum oder intra legem)에, 해당사례에 대한 기준을 '법문의 가능한 의미' 안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경우는 법형성(Rechtsfortbildung)이다.

○ 합목적적 해석은 법발견의 영역이다.

○ 그러나, '법문의 가능한 의미'라는 개념 자체는 모호한 척도가 될 수밖에 없다. 해석자는 법의 해석과정을 통해 이것의 범위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

예 : 내 집 앞의 '주차금지' 팻말
- 내 차도 못 세우나?
- 오토바이도 못 세우나?

69

VI. 맺는 말

3. 법창조적 해석 내지 사법입법에는 찬성할 수 없다.

□ '법률에 반하는(contra legem) 법형성'도 법해석론으로 허용할 것인가?

○ 논점 : 입법자의 제한된 예측력, 자원, 시간의 제약 속에서 제정된 법령의 문언적 의미가 사회에서 널리 공유되는 가치에 반하는 결과를 낳는 경우에도 문언해석을 따를 것인가?

○ "문언 또는 문법구조대로 해석하는 것이 평가모순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가능한 어의(語義)와 의미 관련의 범위 안에서 이를 피할 수 있는 해석이 요구되며, 비상(非常)의 경우에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때로 「법에 반하는(contra legem)」해석도 허용되는 것이다." - 양창수 전 대법관

○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체계에서, 대법원 이외에 헌법재판소가 따로 존재하는 사법구조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지 않은 현실 아래에서, 법관에게 법형성적·법창조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위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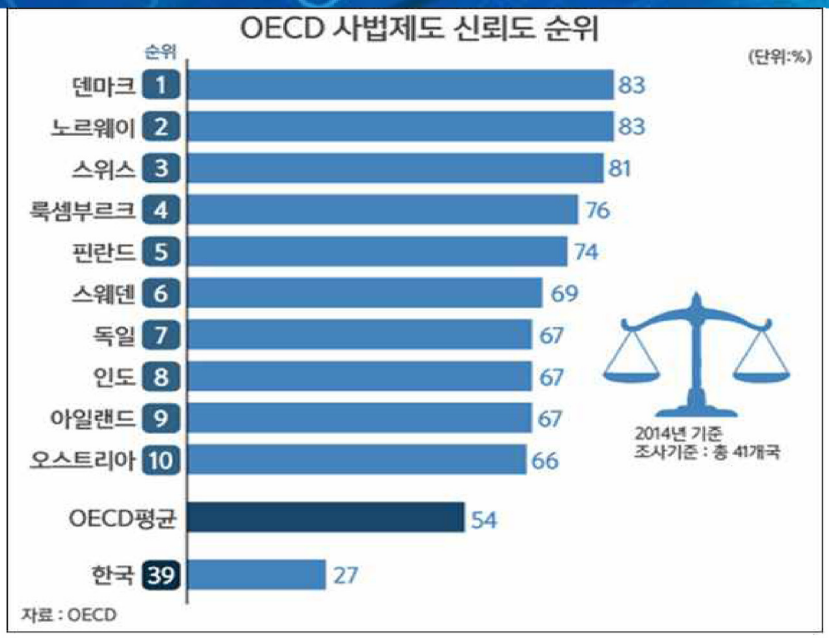
70

VI. 맺는 말



71

VI. 맺는 말



72

연구윤리교육

배 성 호
(경북대학교)

한국세무학회
KOREAN ACADEMIC SOCIETY OF TAXATION

연구윤리교육

연구이사: 배성호 (경북대)

10월 19일 서울대학교 수펙스홀

-2024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대회-

▪ 새 과학계 골칫거리… 'AI 대필 논문' 작년에만 1만건 이상 '철회' (2024.06.10)

- 세계적 학술 출판사 엘스비어가 간행하는 한 학술지에 지난 3월 발표된 논문이 최근 삭제되는 일이 벌어졌다. '영상의학 사례 보고'라는 학술지에 게재된 이 논문은 미국 하버드대, 이스라엘 히브리대 연구진이 공동으로 간이 손상된 생후 4개월 환자를 관찰한 내용에 관한 것이다. 논문 삭제 이유 중 하나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논문 작성에 여과 없이 사용했다는 점이다. **논문의 결론 격인 '논의' 부분에 "미안하지만 나는 AI 언어모델이기 때문에 환자의 실시간 정보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다"는 황당한 문장이 나온다.** AI가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붙여 넣은 것이다. 해당 학술지는 "저자들은 논문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사용했다는 것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는 저널의 정책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2022년 11월 오픈AI가 개발한 '챗GPT' 출시 이후, 생성형 AI가 학계의 골칫덩이로 떠올랐다. 학술 논문에 AI가 만들어낸 텍스트와 이미지가 무분별하게 사용됐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생성형 AI에 데이터를 넣어 손쉽게 논문을 작성하고, 그 결과물을 별다른 검증 없이 발표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것이다. 일부 학술지는 돈을 받고 이런 저급 논문을 게재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논문 작성에 AI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학계에선 AI 관련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졌다. 과학 저널의 양대 산맥인 네이처와 사이언스는 AI의 저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네이처는 연구 방법 등 항목에 AI 도구를 사용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고 정했다.** 네이처는 "연구 방법의 투명성과 저자의 진실성이야말로 과학 발전의 기초"라고 했다. 사이언스는 "기계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설계하고 결과를 이해하는 사람들을 위한 도구일 뿐"이라며 비슷한 원칙을 내세웠다. 연구의 효율을 위해 통계 분석이나 자료 수집에 AI를 활용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이를 명시하고 그 결과물을 사람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AI는 창의성이 없지만, 화려하고 현란하게 글을 써주기 때문에 연구자 입장에서는 유혹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며 "AI가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논문에 쓸 수도 있는 만큼, 과학계의 신뢰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했다.

한국세무학회
KOREAN ACADEMIC SOCIETY OF TAXATION

▪ 생성형 AI도구, 윤리적이고 책임있는 사용이 중요 [연구재단 웹진 2024년 3월]

- **생성형 AI도구의 사용은 보편화**
- 연구설계과정에서 방대한 자료를 요약
- 유사연구를 분석 또는 방법론 제시

- **생성형 AI 도구의 연구활동에 활용 관련 가이드라인 동향**
- 국정원 [챗GPT등 생성형 AI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2023.1.)]
- 질병권리청 [보건의료 분야 인공지능 연구자를 위한 연구윤리 지침 (2023.8.)]
- 세계의학편집인위원회 [학술출판에서 챗GPT 및 챗봇 사용에 관한 권고사항 (2023.1.)]
- 학술단체, 대학에서 시작된 움직임은 각국 연구지원기관의 가이드라인 발표로 이어짐
- 미국 NIH(2023.6.), 독일 DFG(2023.7.), 호주 ARC(2023.7.), 미국 NSF(2023.12), 중국 과기부 (2023.12)

3

한국세무학회 KOREAN ACADEMIC SOCIETY OF TAXATION

▪ **생성형 인공지능(AI)도구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2024. 03)**
-한국연구재단 지원 연구개발과제의 신청 및 평가 관련-

- **생성형 AI의 부정적인 사용을 지양하고 바람직한 활용을 유도하기 위함**
-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은 각종 평가자료를 생성형 AI도구에 입력(업로드) 금지
  -> 평가위원 :
  온, 오프라인에서 서면 또는 패널 방식으로 과제의 선정, 중간, 결과 평가에 참여하는 위원
  -> 평가자료 :
  연구개발계획서, 단계/최종보고서, 평가의견, 평가위원 리스트 등 과제평가와 관련된 제반 자료

- 만약 업로드 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0조 비밀 유지 의무에 위반될 수 있음

-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의 신청자 및 수행자는 연구개발계획서 및 단계/최종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생성형 AI 도구를 사용한 경우, 해당 계획서 및 보고서에 AI 도구 사용 내역을 기술할 것을 권장**
- 생성형 AI 도구의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용 당부

4

한국세무학회 KOREAN ACADEMIC SOCIETY OF TAXATION

▪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의 개념

- **연구윤리(Research Ethics)란?**
- 연구의 전 과정에서 책임 있는 태도로 바람직한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
- 연구내용의 윤리는 물론, 연구절차의 윤리를 포함하는 것! 내용과 절차는 매우 밀접한 관계

- **연구윤리의 키워드는 '진실성(integrity)'**
- 진실성은 바람직한 연구가 무엇인지를 압축해서 표현한 단어
- 절차적 투명성과 내용적 객관성을 포괄하는 개념

- **연구진실성(Research Integrity)이란?**
- 연구의 전 과정(제안, 계획, 수행, 보고, 검토, 확산 등)에서 연구의 핵심가치인 객관성, 정직성, 개발성, 공정성, 책무성, 관리 등을 지켜 나가는 것을 의미함.
- 절차적 투명성과 내용적 객관성을 포괄하는 개념

5

한국세무학회 KOREAN ACADEMIC SOCIETY OF TAXATION

▪ 연구윤리의 범위

- 연구윤리의 정의나 학문 분야 및 기관 특징 등에 따라 각각 달리 규정 됨.

- **좁게는** 연구자가 연구 수행과정과 발표에서 흔히 'FFP'로 일컫는 위조(fabrication), 변조(falsification), 표절(plagiarism) 등의 연구부정행위에 한정하기도 하고,
- **넓게는** 이것에 더하여 차별 문제나 연구공동체에서 공통으로 지켜야 할 연구윤리, 생명 연구윤리와 같은 특정 연구대상이나 방법에서 연구윤리,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등을 포함하기도 함.

▪ 연구 부정행위의 정의

- 연구진실성을 직접적으로 저해하고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위조, 변조,표절, 부당한 저자 표기,

부당한 중복게재, 부정행위 조사를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으로 규정됨

6

한국세무학회 KOREAN ACADEMIC SOCIETY OF TAXATION

▪ 연구 부정행위의 유형

1)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설문지 및 인터뷰의 허위작성, 실험 및 관찰 등에서 나타나지 않은 데이터를 실재하는 것처럼 제시, 통계학적인 유효성을 추가하기 위해 허구의 자료를 첨가, 연구 기록 허위로 삽입 등

2) 변조 : 연구 재료, 기기, 연구 과정(절차)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연구 자료를 의도적으로 실제와 다르게 변경, 통계 분석 결과 분명하지 않은 것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릇되게 설명, 통계학적 근거 없이 연구 자료들을 선택적으로 생략, 삭제, 은폐하는 경우, 연구 자료를 과장, 축소 또는 변형함으로써 왜곡된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

7

한국세무학회 KOREAN ACADEMIC SOCIETY OF TAXATION

▪ 연구 부정행위의 유형

3) 표절 : 해당 분야의 일반 지식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 또는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기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 이미 발표(게재)된 타인의 저작물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였으면서도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타인의 저작물 상당 부분을 참조했다고 표기했지만, 말 바꿔 쓰기를 하지 않았거나 요약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다 쓴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기 :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8

한국세무학회 KOREAN ACADEMIC SOCIETY OF TAXATION

▪ 연구 부적절행위

→ 연구의 독창성을 해할 정도로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이후 자신의 저작물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중복게재

- 자기표절 : 자신이 이미 발표(게재)한 저작물의 일부를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시 활용
- 이중게재 : 자신의 이전 저작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선행 저작물의 존재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다시 발표(게재)

1. 출처표기를 하지 않고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자신의 이전 저작물의 일부나 상당 부분이 이후의 자신의 저작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출처 표기를 하지 않아, 마치 새로운 것을 처음 발표하는 것으로 오해케 하는 경우

2. 활용한 자신의 이전 저작물 중 일부에만 또는 정확하지 않게 출처표기를 한 경우

9

한국세무학회 KOREAN ACADEMIC SOCIETY OF TAXATION

▪ 연구기관별 및 전담기관별로 소관규정에 따라 조치

▪ 대학 등 연구기관) 기관별 특별위를 거쳐 참가자에 소명을 받고 연구부정행위, 연구자윤리 등의 관점에서 인사 등 개인별 징계

* (연구부정행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에 따라 논문 등의 위조, (중략)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등을 지칭

** (정부) 연구기관의 처분이 미진한 경우, 기관평가 반영, 참여제한 등 기관단위 제재 또는 불이익 부여

끝.

10

한국세무학회 KOREAN ACADEMIC SOCIETY OF TAXATION

대주제 특별세션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중장기 개편방향”

장소 : **수펙스홀** 사회자 : **이전오 고문** (기재부 중장기조세정책심의위원장)

시 간	발표주제	발표자*	토론자
13:00 ~ 14:50	법인세의 중장기적 개선방안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 형**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도의 개편방향	**정지선*** (서울시립대)	
	부가가치세의 개혁과 쟁점	**홍순만*** (연세대)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중장기 개편방향 : 상속세 및 증여세	**고윤성*** (한국외국어대)	

특별세션 1

법인세의 중장기적 개선방안

윤 성 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14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대회

법인세의 중장기적 개선방안

2024.10.19(토)

윤성만(서울과학기술대학교)

목 차

1. 법인세 체계의 과거와 현재

2. 법인세 체계의 문제점

3. 법인세 체계의 중장기적 개선방안

1. 법인세 체계의 과거와 현재

- ❖ 법인세 세수와 비중
- ❖ 법인세 세율 및 체계
- ❖ 법인세 조세지출 현황

법인세 세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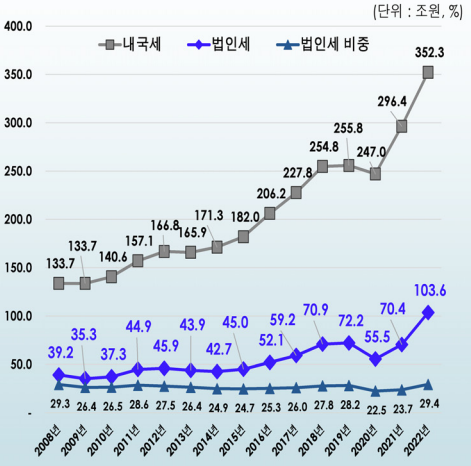
❖ 코로나19 발발 직전인 2019년까지 내국세 세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20년 일시적인 감소 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

- 2008년 약 134조원에서 2013년 166조원, 2019년 256조원까지 증가
- 그러나 2020년 247조원으로 일시적인 감소 후 다시 2021년 296조원, 2022년 352조원까지 증가

❖ 법인세 세수는 매년 증감 변동이 존재하지만 전체적으로 완만한 증가 추세이고 내국세 세수의 22.5%~29.4% 수준

- 2008년 약 39조원에서 2013년 44조원, 2019년 72조원까지 증가
- 그러나 2020년 56조원으로 일시적인 감소 후 다시 2021년 70조원, 2022년 104조원까지 증가
- 2019년까지 법인세 비중은 평균 26.8%였지만, 코로나19 기간은 하락하였다가 2022년에 29.4%으로 소득세 다음의 세수규모

(단위 : 조원, %)



출처 : NABOSTATS 국회예산정책처 재정경제통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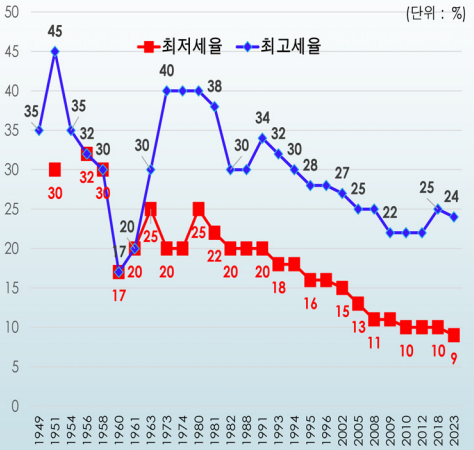
최저 및 최고 법인세율의 추이

❖ 최고세율은 1951년 45% 최고치, 1960년 7%의 최저치를 나타냄

- 1949년 11월에 법인세법을 제정하면서 35%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였다가, 1951년 2월에 45%의 최고세율 이후 1960년 17%까지 지속적으로 인하
- 다시 1961년부터 1973년 40% 최고세율까지 인상되었고 이후 최고세율이 인하되어 2023년부터 최고세율 24%를 적용

❖ 최저세율도 최고세율 추세를 따라 변동되었는데, 1956년 32% 최고치, 2023년 9% 최저치를 보임

- 1956년 32%에서 1960년 17%로 인하되었다가 다시 1963년까지 인상 이후 지속적으로 인하
- 2023년부터 최저세율 9%를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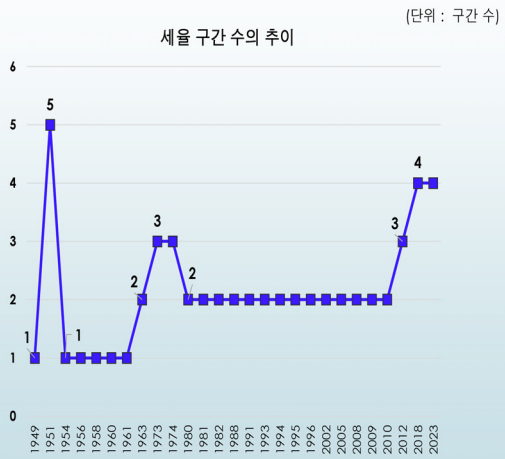


출처 : 정지선(2024), NABOSTATS 국회예산정책처 재정경제통계시스템

과세표준 구간의 추이

❖ 1949년 11월에 법인세법을 제정할 당시 단일세율(35%)이었으나, 1951년 2월에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 후 다시 1954년 단일세율 체계

- 그 이후에 1954년-1961년에 모두 단일세율의 형태
- 1963년부터 2단계, 1973년-1974년에는 3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 후 1980년-2011년까지 2단계 초과누진세율 체계
- 다시 2012년-2017년 3단계 그리고 2018년 이후 4단계 초과누진세율 체계를 적용



출처 : 정지선(2024),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

최저한세율 체계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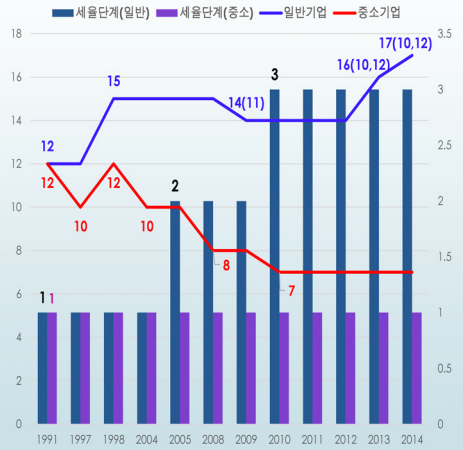
❖ 일반기업의 최고세율은 점진적으로 인상되는 반면, 중소기업의 최고세율은 2010년까지 인하

- 2014년 이후 일반기업의 최고세율이 17%, 최저세율이 10%→일반법인세율 최저세율 9%와 충돌
- 중소기업의 최저한세 세율은 2010년까지 인하되었다가 이후 7%를 유지

❖ 중소기업의 최저한세 세율은 계속하여 단일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일반기업은 2005년 이후 다단계 세율체계를 적용

- 2005년-2009년까지 2단계 초과누진세율, 이후 3단계 초과누진세율 체계로 개정

(단위 : 단계 수, %)



출처 : NABOSTATS 국회예산정책처 재정경제통계시스템

조세지출항목 수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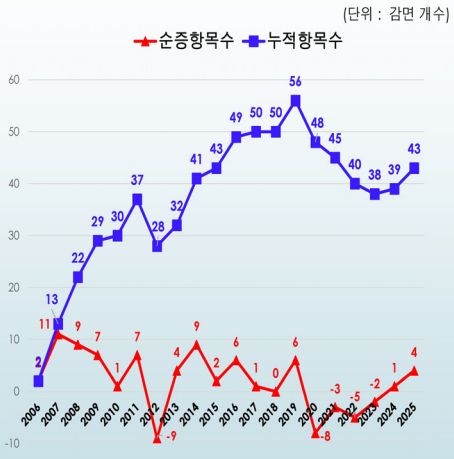
❖ 2010년부터 각 연도 예산안에 조세지출예산서 첨부하도록 규정

❖ 2006년 당시 조세지출항목(과세특례)이 158개였던 것이 2019년까지 거의 매년 추가 신설이 있어 왔고, 2020-2023년 축소(일몰)되어 2025년 조세지출예산서상에는 280개 항목이 편성

- 일시적으로 2012년에 9개 항목이 축소
- 2025년 조세지출항목은 2006년 대비 약 77%가 증가

❖ 방대한 조세지출항목은 그만큼 다양한 정책이 세제에 반영되고 있다는 점과 납세자 입장에서 조세회피의 수단이 풍부해졌다는 점을 시사

(단위 : 감면 개수)



출처 :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

법인세 조세지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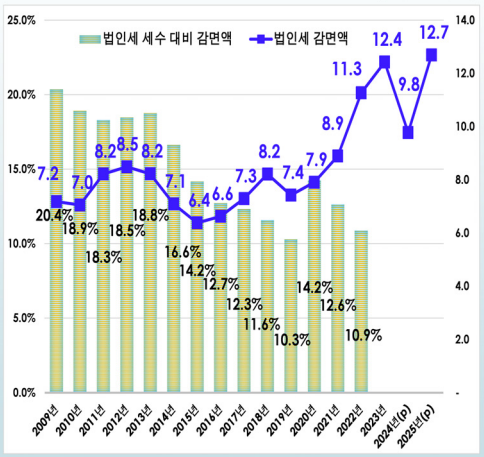
❖ 2022년까지 법인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8조원 수준으로 최대 11조원, 최소 6조원 수준이며, 2015년 이후 증가추세

- 2012년까지 증가하였나 이후부터 2015년까지 감소세
- 그러나 전망치로서 2023년 12조원, 2025년 약 13조원 수준을 최대치

❖ 법인세 세수 대비 감면액 수준은 2022년까지 연평균 15%로 최대 20%, 최소 10% 수준이며 전체적으로는 이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

- 이러한 비중의 변화는 세수가 증가할 때 감면액 비중이 감소하는 패턴

(단위 : 조원, %)



출처 :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

2. 법인세 체계의 문제점

❖ 법인세 체계의 복잡성과 충돌 문제

❖ 지속적인 조세지출항목의 증가

❖ 납세협력비용 부담의 가중

2.1 법인세 체계의 복잡성과 충돌 문제

다단계 초과누진체계와 조세형평성

- 법인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다단계 세율체계라고는 하지만 과연 조세형평성의 제고효과가 존재하는지는 의문
- OECD국가 중 코스타리카(5단계)를 제외한 우리나라만이 4단계 초과누진 세율 체계를 유지
  - •비OECD국가 중에서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소기업 세율체계(4단계)는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전체 기업 적용 4단계 초과누진체계는 없음

일반세율과 최저한세율 간 충돌

- 법인세법에서는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는 9%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최저한세율의 일반기업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10%를 적용해야 하는 상황
  - 최저한세 적용 기업의 경우,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에 일반세율(9%)보다 높은 최저한세율(10%)를 적용해야 하는 문제

2.2 지속적인 조세지출항목의 증가

정책세제 성격으로 고착화

- 조세지출항목의 일몰 전 (임의)심층평가의 타당성과 효과성 분석결과와 무관하게 일몰연장되는 것이 다수
  - 대부분 정치적 합의에 따라 신규 도입 및 일몰연장되는 항목이 다수 존재
- 특히, 2011년 기준 법인세 세수 103.6조원 중 약 11%인 11.3조원이 감면액인 만큼, 조세정책으로 인해 세수의 11%가 움직이는 현상
  - 법인입장에서 조세정책 이행여부에 따라 조세부담 11%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법인세가 정책세제의 성격이 강화
  - 이는 세수오차의 심화될 가능성을 의미

법인의 풍부한 조세회피 수단

- 2006년 158개의 조세지출항목이 2025년 예산안에는 77%가 증가한 280개 항목으로 법인이 활용 가능한 항목이 다수 존재
- 다양한 과세특례제도는 촘촘한 조세정책의 결과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법인의 조세회피 수단을 풍부하게 하는 결과
  - 다양한 조세회피 수단을 활용하여 조세부담을 낮출 수 있는 조세환경
  - 한편, 조세정책 이행의 효과성은 제고될 수 있지만 조세형평성을 저해하는 결과

2.3 납세협력비용 부담의 가중(1/2)

지속적인 납세협력비용 가중

- 총납세협력비용이 약 7조원(2007년) → 9조 9천억원(2011년) → 11조 1천억원(2016년) → 15조원(2022년) 수준으로 증가
  - 1-4차 평균 : 법인사업자가 전체 납세협력비용의 46.4%(최대 56%), 법인세는 25%(최대 28%)를 부담
  - 2022년의 총납세협력비용이 2016년 대비 5.1배 증가하였으며, 법인사업자 납세협력비용이 4.1배, 법인세 납세협력비용은 4.5배 증가
  - 물론 법인세 세수는 5.7배 증가

<제1-4차 납세협력비용 측정결과>

(단위 : 억원)

	연도	총납세협력비용	법인사업자	법인세	법인세수
1차 조사	2007년	70,140	39,435	19,573	353,942
		총납세협력비용 대비	56.2%	27.9%	
		법인세 세수 대비	11.1%	5.5%	
2차 조사	2011년	98,878	50,416	23,920	448,728
		총납세협력비용 대비	51.0%	24.2%	
		법인세 세수 대비	11.2%	5.3%	
3차 조사	2016년	111,179	57,097	30,813	521,154
		총납세협력비용 대비	51.4%	27.7%	
		법인세 세수 대비	11.0%	5.9%	
4차 조사	2022년	150,442	52,655	32,947	1,035,704
		총납세협력비용 대비	35.0%	21.9%	
		법인세 세수 대비	5.1%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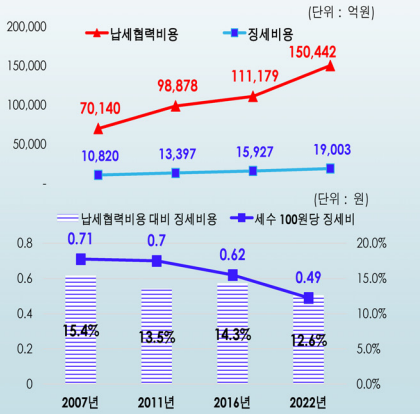
출처 : 국세청 제1-4차 납세협력비용 측정결과.

2.3 납세협력비용 부담의 가중(2/2)

지속적인 징세비용의 감소

-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징세비용은 완만하게 증가하는 정도
  - 2022년의 납세협력비용이 2007년 대비 2.14배가 증가한 반면, 징세비용은 1.76배 수준
- **납세협력비용과 징세비용 간 상충관계** : 세수 100원당 징세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납세협력비용 대비 징세비 비중은 감소
  - 납세자들은 세부담 증가와 함께 추가로 협력비용까지 가중되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의 징세비 부담은 경감되는 결과
  - 첨단 전자세정, IT기술 활용 세금계산 등 세무행정 편이는 제고되었지만, 과연 납세편의는 제고되었는지가 의문

<징세비용의 추세>



출처 : 국세청 제1-4차 납세협력비용 측정결과. 각연도 국세통계연보

3. 법인세 체계의 중장기적 개선방안

- ❖ 단일세율체계로 전환과 조세지출항목의 간소화
- ❖ 최저한세 폐지
- ❖ 납세협력비용의 보전제도 확대

3.1 단일세율체계로 전환과 조세지출항목의 간소화

단일세율체계로 전환

- **Simplicity**의 국제적 동향에 부합되도록 단일세율체계로 개선이 필요
  - 영국, 미국, 독일 및 이탈리아 등 26개국이 단일세율체계
- **일반기업과 중소기업 구분**한 단일세율체계를 고려할 필요
  -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체계를 동일하게 중소기업에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
  - 호주, 캐나다, 프랑스, 일본, 벨기에 등 16개국이 중소기업과 일반기업 구분한 단일세율체계를 도입

조세지출항목의 간소화

- 조세지출항목을 단순화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되도록 개선이 필요
  - 다단계 세율체계로 복잡한 가운데 조세지출항목이 방대한 수준으로 정부정책과 규제 덩어리 수준
  - 이로 인한 법인의 조세회피 가능성↑
  - 이를 정부정책을 법인들이 집중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인센티브 기능이 작동**되도록 해야 함

3.2 최저한세 폐지

최저한세 폐지를 통한 단순화

- 단일세율체계와 조세지출제도 간소화로 최저한세 기능이 없게 됨에 따라 이 제도를 폐지하는 개선이 필요
  - 최저한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5개 국가이며, 해외 국가들은 우리나라처럼 복잡한 최저한세제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고 **기업규모(일반기업, 중소기업)에 따른 차등도 없음**
  - 캐나다: 온타리오 지방세에 적용되며 2.7%의 세율 적용
  - 헝가리: 조정된 연간 총수입금액(총 매출액)의 2% 세율
  - 라트비아: 50유로의 최저한세율 적용
  - 룩셈부르크: 최소순자산세율(net wealth tax)로서 순자산 규모에 따라 535~32,100유로 부과

3.3 납세협력비용의 경감제도 확대(1/3)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

- 2002년 홈택스서비스를 개통하고 2004년 전자신고를 하는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
  - 2002년 홈택스 서비스를 개통하고 2004년부터 전자신고를 하는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에게 세액공제를 제공
  - 납세자의 소득세 및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2만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1만원 공제
  - 세무대리인 소득세 및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납세자 1인당 2만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1만원 공제(한도 세무대리인 연 300만원, 세무·회계법인 연 750만원)

전자고지세액공제제도

- 2021년 납세자가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납부고지서 송달을 신청한 경우 납세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
  - 납부고지서 1건당 1,000원

3.3 납세협력비용의 경감제도 확대(2/3)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의 문제점

- 제도 도입 후 세액공제 한도를 지속적 확대하였으나 2012년 이후 한도를 축소
  - 첨단 전자세정의 일환으로 징세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려는 도입취지
  - 그러나 전자신고율(2012년 기준 98.2%)이 높아짐에 따라 2012년 이후 한도 축소
- 이는 **과세관청이 전자신고가 단순 세무행정 편의의 목적으로만 운용하는 제도로 인식**하는 문제
  -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 경감과 세무대리인 주도 전자신고율 제고에 대한 보상하는 관점도 존재
  - 고령자, 소상공인 등 디지털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진 납세자의 경우 전자신고로 전환
  - 만약 본 세액공제 축소 및 폐지로 인한 서면신고로의 전환 가능성도 존재→이는 징세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가능

〈주요 연혁〉

개정일	내 용
2003.12.31	제도신설 - 납세자 : 소득세·법인세(2만원), VAT(1만원) - 세무대리인 : 소득세·법인세(1만원, 연100만원한도) - 세무법인 : 소득세·법인세(1만원, 연 한도=MIN(사원수 x 100만원, 300만원)
2005.12.31	회계법인 추가 및 공제한도 조정(연300만원)
2008.2.22	세무대리인 공제한도 확대 : 납세자 1인당 2만원 -세무대리인 300만원, 세무·회계법인 500만원
2009.2.4	세무대리인 공제한도 확대 -세무대리인 300만원, 세무·회계법인 800만원
2012.2.2	세무대리인 공제한도 확대 -세무대리인 400만원, 세무·회계법인 1,000만원
2018.2.13	세무대리인 공제한도 축소 -세무대리인 300만원, 세무·회계법인 750만원
2021.2.17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추가(건당 2만원)

3.3 납세협력비용의 경감제도 확대(3/3)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의 문제점

- 2022년 기준 법인세(99.6%), 종합소득세(99.5%), 부가가치세(97.1%)의 전자신고율이 거의 100%에 근접했지만 최근 도입된 양도소득세는 여전히 48.6% 수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
  - 지속적인 전자신고 항목 확대정책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세액공제제도는 확대가 필요
- 일본의 경우, 청색(e-Tax)신고시 추가 10만엔 세액감면을 2024년부터 시행
- 특히, 전자신고세액공제 명칭을 오히려 납세협력지원세제로 변경이 필요
  - 납세협력지원세제로 명칭개정하고 신고납세제도에서 지속가능한 세제·세정협력 및 성실납세를 유도할 필요
  - 전자신고 등 전자세정에 필수적인 전산장비 구입·유지관리비, 전산인력 채용·운용 및 영세사업자 신고비용 경감요인 등을 감안해 신고납부방식 세목 전부를 공제대상으로 유지하고 그 한도를 확대할 필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세션 2

소득세제도의 개편방향

정 지 선
(서울시립대학교)

소득세제도의 개편방향

정지선(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목차

1 소득세 과세단위 문제점과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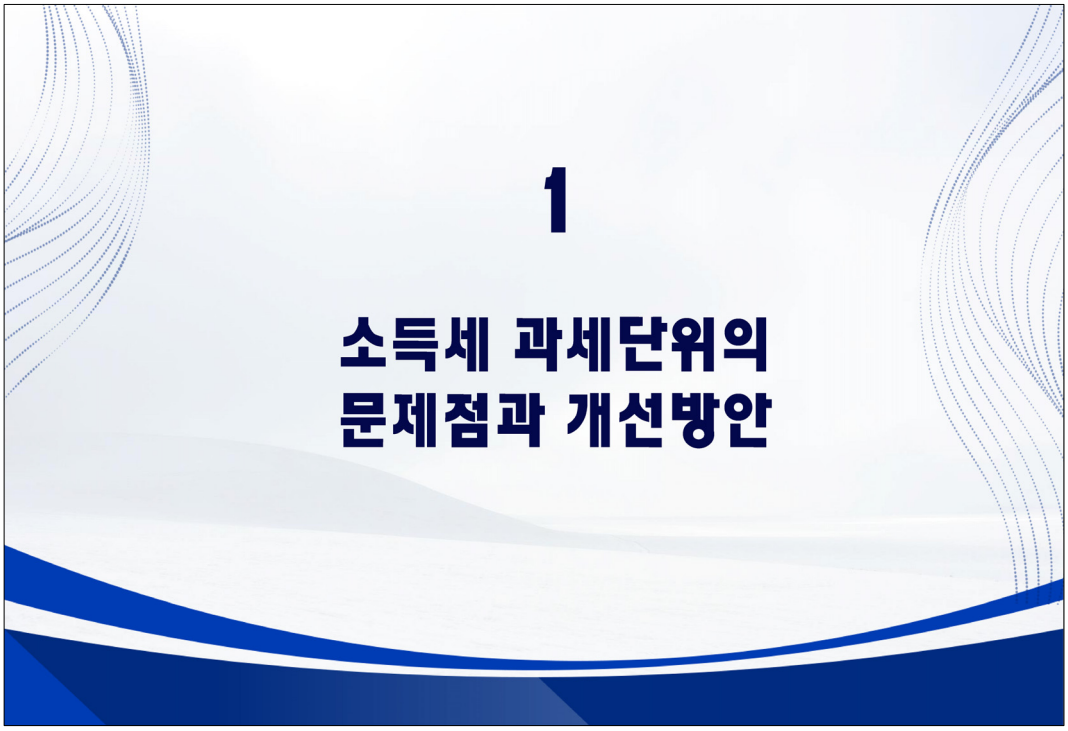
2 소득종류간 과세 형평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금융투자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종합소득에 대한 세율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 요약 및 결론



Ⅰ. 소득세 과세단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과세단위 개요

-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개인단위주의**를 채택하여 각 거주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소득금액에 대하여 해당 거주자별로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음.
- 종래에는 **개인단위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자산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에 한하여 부부단위 합산비분할주의**를 채택하고 있었음.
- 헌법재판소가 자산소득에 대한 부부단위 합산비분할주의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합산대상 자산소득이 있는 혼인한 부부를 소득세 부과에 있어서 차별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시함으로써 완전한 **개인단위주의**로 전환되었음.

Ⅰ. 소득세의 과세단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과세단위 문제점과 개선방안

문제점

- 재산형성에 있어 부부의 공동 공헌을 배려하지 못함.
- 재산분할청구제도 및 상속에 있어 기여분제도와 조화를 이루지 못함.
- 실질과세의 원칙 및 부부의 생활실태에 부합하지 않음.
- 소득의 인위적인 분산을 초래하여 과세의 형평이 침해를 받고 행정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Ⅰ. 소득세의 과세단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과세단위 문제점과 개선방안

개선방안

개인단위주의와 부부단위 합산분할주의(2분2승제) 중 납세의무자가 선택하는 방법을 적용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함.

① 재산형성에 있어서의 공동 공헌의 배려와 재산분할청구제도와의 조화
② 부부재산계약제와의 조화
③ 실질과세의 원칙에의 적합성
④ 부부의 생활실태에의 부합성
⑤ 조세부담의 형평성 확보

2

소득종류간 과세 형평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Ⅱ. 소득종류간 과세 형평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근로소득세

문제점

근로소득자의 경우 사업소득자에 비해 세원 파악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다음의 조치를 통해서 그 불합리함을 시정하고 있음.

-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
- 종합소득공제에 있어서 항목별 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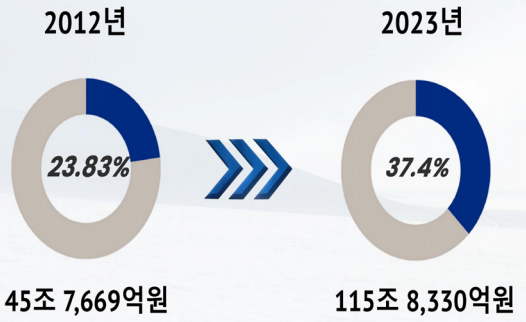
①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 및 종합소득공제에 있어서 항목별 **공제 금액을 지속적으로 축소함.**

② 종전에 소득공제를 하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및 기부금 등을 **세액공제로 전환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Ⅱ. 소득종류간 과세 형평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근로소득세

소득세 현황



- 소득세 세수 자체 증가
- 전체 국세에서의 소득세 비중 증가
- 소득세율의 인상 영향
- **근로소득자의 세수가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이유**

Ⅱ. 소득종류간 과세 형평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근로소득세

개선방안

1.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이하	총급여액의 70/100
500만원초과 1천500만원이하	35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1천500만원 초과 4천500만원 이하	750만원 +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천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천200만원 +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1억원 초과	1천475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

※ 공제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원**을 공제

- 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률 98%
- 공제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률 100%

실액공제 또는 표준공제 중에서 근로소득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

표준공제 금액도 일정 부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Ⅱ. 소득종류간 과세 형평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근로소득세

개선방안

2. 근로세액공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액
130만원이하	산출세액의 55%
130만원초과	71만5천원+1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 총급여액에 따라 한도를 설정

- 지속적으로 인하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 여부 검토 필요함.

Ⅱ. 소득종류간 과세 형평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근로소득세

개선방안

3. 종합소득공제

종전	2014년 개정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및 기부금 등 소득공제 적용	세액공제로 전환

-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에서 한도액의 설정을 통해 고소득자가 과도한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였기 때문에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은 세수 증대를 위한 조치**로 볼 수 밖에 없음.
- 기부금의 경우 세액공제로 전환한 후에는 기부 자체가 감소

- 근로소득자의 담세력 감소가 발생하므로 보험료나 의료비 등의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부금 감소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항목별 공제는 소득공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Ⅱ. 소득종류간 과세 형평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연금소득세

문제점

① 연금소득 수령자와 금액이 과거와 비교하여 대폭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연금소득 과세 기준이 **지난 10년간 연 1,20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어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고령가구 생활비 증가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② 과세기준이 고정액인 연 1,200만원을 초과하면 **전체 금액에 대해 세율이 적용**됨.
- ⇒ 1만원 초과인 1,201만원 수령시 전체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의 세율이 적용됨.
- ⇒ 과세기준을 초과하면 세금이 급격히 증가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함.

③ 소득세 최저세율 과표가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개정됨에도 불구하고 **연금액 기준이 종전 소득세 최저세율(6.6%)이 적용되는 과세표준과 같은 1,200만원 이하로 유지**되고 있음.

Ⅱ. 소득종류간 과세 형평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연금소득세

개선방안

① **과세기준 개정의 필요**
- 2013년 이후 고정되어 있는 과세기준인 연 1,200만원을 현실적인 생활비에 맞게 조정이 필요함.
- 소득세 최저세율 구간의 과세표준의 개정에 따른 연금기준액 개정이 필요함.
- 물가상승률에 맞춰 주기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음.

② **세율구조 개정의 필요**
- 과세기준을 1원이라도 초과하게 되면 세부담이 급증하는 현재 구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3

금융투자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금융투자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금융투자소득세 개념

기본적으로 주식 등의 투자를 통해서 얻은 이익에 대하여 2025년부터 부과하기로 함.

- 세율 구조

양도차익 구간	세율
5,000만원 이하	비과세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시 납세의무자 및 세수 증가 예상
  ⇒ 납세의무자는 15,000명에서 150,000명으로 약 10배 정도 증가 예상
  ⇒ 세수는 약 1조 5,0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Ⅲ. 금융투자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금융투자소득세 문제점

문제점

1. 국내 증시 급락 우려

- 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도에 입법되어 2023년에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2년 말 시행을 2년 간 유예함.
-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투자 규모가 2019년 11조원에서 2024년 115조원으로 10배가량 급증
-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으로 미국 주식과 동일한 세금 부과시 한국 주식 보유 매력이 감소하여 주가 추락 가능성이 큼.

2.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 여부의 미확정으로 인한 혼란

-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 지출 문제 및 투자자의 혼란 발생.
- 과세유에 또는 폐지 결정시 불필요한 비용 지출이 발생하게 되는 셈.

3. 비거주자 외국인 투자자의 과세 불가 문제

-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거주지국 과세(국내 투자자에게만 소득세 과세하는 역차별 문제 발생)

Ⅲ. 금융투자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금융투자소득세 문제점

문제점

4. 소득구분의 문제

- 소득구분에 따른 세율이 달라 세부담이 적은 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을 선호하게 됨.
- 소득구분에 따른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간 다툼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5.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 구조 정당성 여부 문제

-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구조가 산정된 근거가 불확실함.
- 최초 입법시의 기준소득금액이 개인투자자의 반발 등의 이유로 인상되었으나, 해당 인상의 이유와 근거 또한 불확실함.

6. 예상치 못한 세수 감소의 가능성

- 5년간 양도차손의 이월공제에 따른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음.
- 5년 이월공제의 기간에 대한 근거가 없음.
- 금융투자소득세 취지에 따라 거래세를 없애고 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옳다는 전제에서 증권거래세를 없애게 되면, 증권거래세 세수인 약 6조원의 세수가 감소하게 됨.

Ⅲ. 금융투자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금융투자소득세의 개선방안

개선방안

- 금융투자소득세는 현재 기본적으로 여러 논란이 많은 제도임.
- 자본의 효율적 배분 및 다양한 투자 기회 제공으로 부의 재분배가 가능하므로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함.
- 기업의 자본조달 및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증시 부양이 필요함.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더불어 **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보완이 바람직함.**

4

종합소득에 대한 세율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율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우리나라 소득세율 변천과정

• 1996년~2001년 귀속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000만원 이하	10	0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20	1,000,000
4,0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30	5,000,000
8,000만원 초과	40	13,000,000

• 2002년~2004년 귀속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000만원 이하	9	0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18	900,000
4,0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27	4,500,000
8,000만원 초과	36	11,700,000

Ⅳ.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율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우리나라 소득세율 변천과정

• 2005년~2007 귀속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000만원 이하	8	0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17	900,000
4,0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26	4,500,000
8,000만원 초과	35	11,700,000

• 2008년 귀속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천200만원 이하	8	0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17	1,080,000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26	5,220,000
8천800만원 초과	35	13,140,000

Ⅳ.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율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우리나라 소득세율 변천과정

• 2009 귀속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천200만원 이하	6	0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16	1,200,000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25	5,340,000
8천800만원 초과	35	14,140,000

• 2010년~2011년 귀속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천200만원 이하	6	0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15	1,080,000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24	5,220,000
8천800만원 초과	35	14,900,000

Ⅳ.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율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우리나라 소득세율 변천과정

• 2012년~2013년 귀속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천200만원 이하	6	0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15	1,080,000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24	5,220,000
8천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5	14,900,000
3억원 초과	38	23,900,000

• 2014년 귀속 이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천200만원 이하	6	0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15	1,080,000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24	5,220,000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0,000
1억5천만원 초과	38	19,400,000

Ⅳ.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율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우리나라 소득세율 변천과정

• 2017년 귀속 이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천200만원 이하	6	0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15	1,080,000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24	5,220,000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0,000
1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8	19,400,000
5억원 초과	40	29,400,000

• 2018년 귀속 이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천200만원 이하	6	0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15	1,080,000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24	5,220,000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0,000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0,00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0,000
5억원 초과	42	35,400,000

Ⅳ.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율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우리나라 소득세율 변천과정

• 2021년 귀속 이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천200만원 이하	6	0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15	1,080,000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24	5,220,000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0,000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0,00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0,00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400,000
10억원 초과	45	65,400,000

• 2023년 귀속 이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천400만원 이하	6	0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15	1,260,000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24	5,760,000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5,440,000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940,00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940,00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940,000
10억원 초과	45	65,940,000

Ⅳ.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율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주요 국가의 소득세율

• 미국

(단위:달러, %)

과세소득구간				세율
부부합산	세대주	독신자	부부개별	
22,000 이하	15,700 이하	11,000 이하	11,000 이하	10
22,001~89,450	15,701~59,850	11,001~44,725	11,001~44,725	12
89,451~190,750	59,851~95,350	44,726~95,375	44,726~95,375	22
190,751~364,200	95,351~182,100	95,376~182,100	95,376~182,100	24
346,201~462,500	182,101~231,250	182,101~231,250	182,101~231,250	32
462,501~693,750	231,251~578,100	231,251~578,125	231,251~346,875	35
693,750 초과	578,100 초과	578,125 초과	346,875 초과	37

Ⅳ.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율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주요 국가의 소득세율

• 영국

(단위: GBP(파운드), %)

세율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종합소득세율
기본공제	12,570 이하	0
기본세율	12,571 이상 50,270 이하	20
고세율	50,271 이상 125,140 이하	40
추가세율	125,140 초과	45

Ⅳ.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율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주요 국가의 소득세율

• 프랑스

(단위: 유로, %)

과세소득 구간			세율
2022년	2023년	2024년	
~10,225	~10,777	~11,294	0
10,226~26,070	10,778~27,478	11,295~28,797	11
26,071~74,545	27,479~78,570	28,798~82,341	30
74,546~160,336	78,571~168,994	82,342~177,106	41
160,337~	168,995~	177,106~	45

Ⅳ.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율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주요 국가의 소득세율

• 독일

(단위: 유로, %)

구간	과세표준		한계세율	세 부담 범위(공동신고의 경우 2배)
	개인별 신고	공동신고(기혼자 또는 동성파트너)		
1	10,908 이하	21,816 이하	0	0
2	10,909이상 15,999이하	21,817이상 31,998이하	14~23.97	0~967
3	16,000이상 62,809이하	31,999이상 125,618이하	23.97~42	967~16,407
4	62,810이상 277,825이하	125,619이상 555,650이하	42	16,407~106,714
5	277,826 이상	555,650 이상	45	

Ⅳ.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율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주요 국가의 소득세율

• 일본

과세표준	세율	공제액
195만엔 이하	5%	0엔
195만엔 초과 330만엔 이하	10%	97,500엔
330만엔 초과 695만엔 이하	20%	427,500엔
695만엔 초과 900만엔 이하	23%	636,000엔
900만엔 초과 1,800만엔 이하	33%	1,536,000엔
1,800만엔 초과 4,000만엔 이하	40%	2,796,000엔
4,000만엔 초과	45%	4,796,000엔

Ⅳ.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율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제점

-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 세율구조는 8단계 누진구조로 되어있음.
- 다른 국가에 비해 세율구조가 누진적이고, 최고세율이 높은 편임.
- 준조세 부담까지 고려했을 때, 실질적으로 60% 세부담 발생.
- 개인의 소득세 부담이 높은 편임.

개선방안

- 누진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최고세율의 완화가 필요함.

5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양도소득세의 문제점

1) 양도소득세의 복잡화

- 정책목표의 빈번한의 변경으로 인해 감면요건 및 예외조항을 납세자가 인지하지 못해 의도치 않게 조세법을 어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잦은 법 개정으로 인해 전문가의 업무수행시 법령 확인이 반드시 필요함.
- 복잡한 법 규정으로 서면질의가 폭증하는 등 납세자의 혼란이 가중됨.

Ⅴ.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양도소득세의 문제점

2) 양도소득세의 회피

• 법인을 통한 매수 및 매도

⇒ 법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간접적으로 소유하면 개인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을 피해 법인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종합부동산세의 세율도 낮게 적용 받을 수 있음.

Ⅴ.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양도소득세의 문제점

2) 양도소득세의 회피

• 가족 간 증여가 증가하고 있음.

- 부담부증여 사례 증가하고 있음.

⇒ 양도소득세 부담 및 기타 투자처 부재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 세목의 분산(양도소득세와 증여세)으로 세부담 감소

• 입법취지와의 반대 결과 초래하고 있음.

- 양도소득세 과세강화가 부동산 가격의 하락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음.
- 전 정부의 다주택자의 중과세제도 시행이 집값 상승의 결과로 이어짐.

* 다주택자의 양도세율 1% 증가시 아파트 매매가격 0.206% 증가
(연합뉴스, 2024.5.13 "주택가격 상승기 양도세 강화, 집값 더 올렸다")

Ⅴ.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양도소득세의 문제점

2) 양도소득세의 회피

• 조세평등주의의 침해

- 양도소득 중과세는 기본적으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며, 국민들의 재산증식에 대한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평준화 정책에 지나지 않음.

-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현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한시적 적용(2025년 5월 9일까지 시행)

①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다주택자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지역의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는 자보다 과도한 세부담을 지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됨.

* 현재 서울의 서초·강남·송파·용산구를 제외하고는 조정대상지역 제외

② 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다른 자산과 비교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됨.

Ⅴ.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양도소득세의 문제점

2) 양도소득세의 회피

• 과도한 중과세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조항은 실질적으로는 조세가 아니라 **제재에 해당함.**

- 또한, 현재의 중과세율 제도는 **몰수에 가까운 세율구조임.**

*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0%의 단일비례세율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의 자들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에 30%를 더한 세율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도 배제하도록 하고 있음.

Ⅴ.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양도소득세의 개선방안

현재의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너무 복잡하므로 **단순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
조세의 기본 원리에 맞게 **예외적인 규정은 되도록 폐지**하고,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

① 고가주택 기준의 타당성 여부

연도	고가주택 기준	조건
~2002년	고급주택기준	아파트 : 전용면적 45평 이상 & 6억원 초과 단독주택 : 대지 150평 이상 & 6억원 초과 20평 이상의 수영장/엘리베이터 보유 : 가격 무관
2003년	매매가 6억원 초과	아파트와 단독주택, 면적 구분 없음
2008년	매매가 9억원 초과	
2021년	매매가 12억원 초과	

-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 10억원 초과
-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 11억159만원 (2024년 8월 기준)
  ⇒ **현재의 고가주택 기준의 타당성 확인 필요.**
-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 이전의 자유를 보장해 주기 위한 목적.
  ⇒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의 현실화 필요, 기준금액의 상향 조정이 필요.
  ⇒ 최소한 **15억원 정도**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Ⅴ.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양도소득세의 개선방안

②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에 있어서의 보유기간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
  - 주택의 보유기간 2년 이상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 :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2년 이상 &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 보유기간을 중심으로 판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거주요건을 추가하고 있음.
  ⇒ 1세대 1주택 비과세 취지로 보아, 보유기간 중심이 아닌 **거주기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Ⅴ.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양도소득세의 개선방안

③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 개선방안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는 장기간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양도소득세의 특성상 물가상승분에 해당하는 명목이득을 과세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설정하고 있는 제도.

- 토지 또는 건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적용.
- 최소 6%에서 최고 30%를 적용.
-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서 최소 12%에서 최고 40%를 적용.

1)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 요건 제거 &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타당.
* 보유기간 요건은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의 과세상 우대조치기능에 부합하지 않음.

2)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시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필요**.
*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는 인플레이션으로 늘어난 명목이득 제거 장치이므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도 보유기간의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하는 것이 타당
*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2주택 이상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될 가능성 존재.

3) **1세대 1주택자의 추가적인 혜택은 바람직하지 않음**.
* 비과세 기준금액 초과액에 대한 추가적 우대의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
* 타 부동산 대비 1세대 1주택자의 상대적으로 높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될 가능성 존재.

Ⅴ.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양도소득세의 개선방안

④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개선방안

양도소득세 적정 세율은 헌법상 재산권 보호와 세금부과 문제를 이론적으로 연결하여 이해하면서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일정한 지점에서 재산권 보호와 과세권의 행사에서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음.

- 단기보유 및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중에서 **50%를 초과하는 세율구조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단기보유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율의 적용에 있어서 **중과세율을 적용하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6

요약 및 결론

Ⅵ. 요약 및 결론

소득세과세단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개인단위주의와 부부단위 합산분할주의 중 납세의무자가 선택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재산형성의 부부 공동 공헌을 배려하지 못하며 소득의 인위적인 분산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 제기되고 있음.

소득종류간 과세형평성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근로소득세
- 근로소득공제 : 실액공제 또는 표준공제 중 근로소득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표준공제금액도 상향조정 필요함
- 근로세액공제 : 일정부분 상향 조정 필요함.
- 종합소득공제 : 세액공제로 전환된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등 공제를 소득공제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연금소득세
- 10년간 고정되어 있는 연금소득 과세기준인 연 1,200만원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과세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급증하게 되는 세율 구조 개정이 필요함.

금융투자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국내 증시하락 우려 등 여러 문제가 존재하며 해당 규정의 폐지여부의 미확정으로 인한 혼란이 가중되어있는 상황임.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하고, 주식의 양도소득세 보완이 바람직함.

Ⅵ. 요약 및 결론

종합소득 소득세율 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우리나라 세율구조가 다른 국가에 비해 누진적이고 최고세율이 높음.
- 누진도를 완화하고 최고세율의 완화가 필요함.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양도소득세의 복잡성으로 인해 납세자 및 전문가의 혼란 가중.
-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로 인한 회피 시도 발생.
- 양도소득세의 단순화가 필요하며 예외적인 규정은 되도록 폐지하는 것이 필요.
- 1세대 1주택 적용 요건을 거주기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의 조세형평성 제고 필요.

THANK YOU

특별세션 3

부가가치세의 개혁과 쟁점

홍 순 만
(연세대학교)



부가가치세의 개혁과 쟁점

홍순만 (연세대학교)

2024년 10월 1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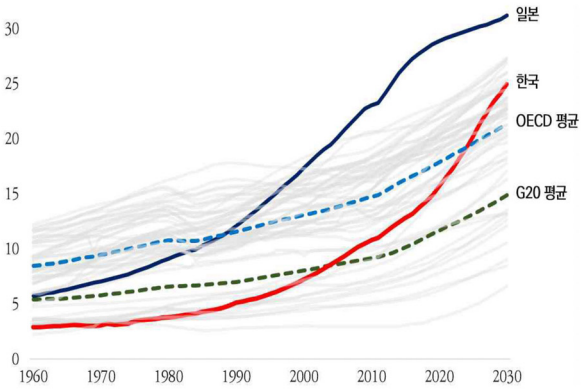


다가오는 재정적 도전

인구고령화와 다가오는 재정적 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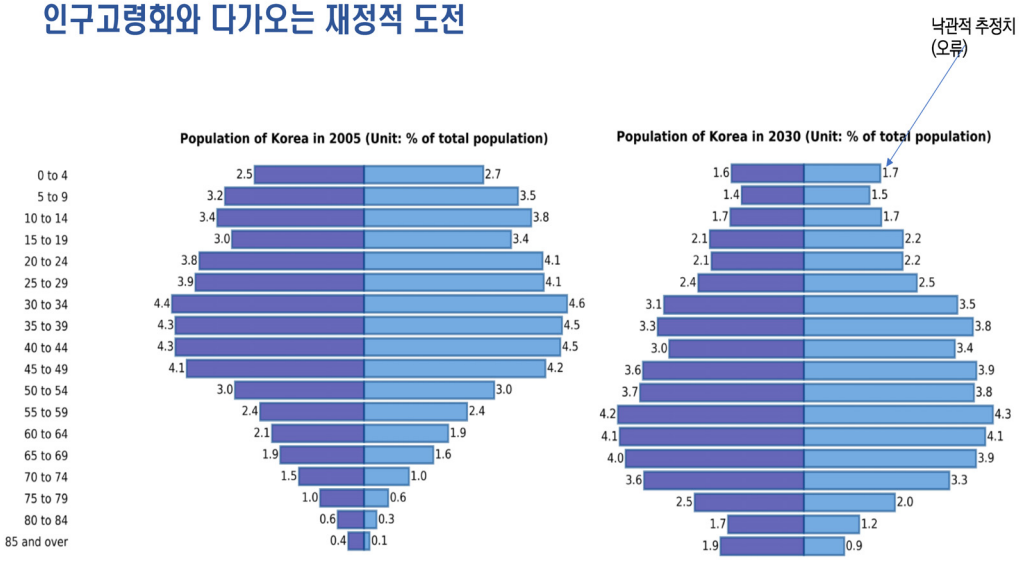
- 인구 고령화는 전세계적인 현상
- 극단치인 일본 사례에 주목
- 한국도 2020년 전후로 고령인구 비율이 급증하여 2050년 전에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
- 고령인구 비율 증가는 연금재정과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일반 복지지출(노인 빈곤 등)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자료: OECD Database에 자료가 있는 모든 국가 포함; 2019년부터 2030년은 추정치; 단위는 %

인구고령화와 다가오는 재정적 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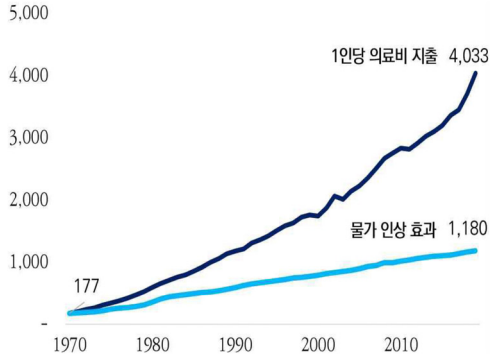


Source: Open Public Finance (**https://open-public-finance.streamlit.app**)

증가하는 의료비 지출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

- 전세계적으로 국민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음 (그 원인에 대해서 학계에서 논쟁 존재)
- 1970년 1인당 170달러를 지출하였으나, 약 50년 후 4,033달러로 약 24배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물가도 올랐지만, 의료비지출 속도는 물가인상율을 크게 상회

1인당 의료비 지출 (OECD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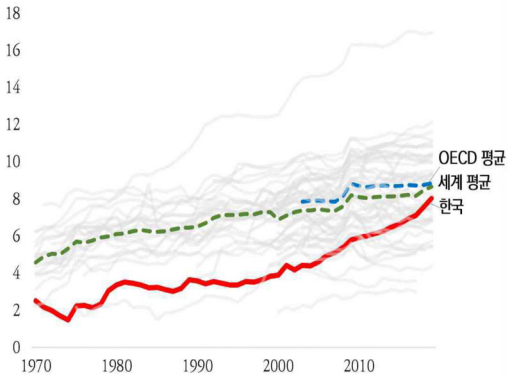


OECD Health Spending Database에서 데이터가 존재하는 모든 국가의 평균치를 사용; 의료비는 경상의료비 기준; 단위는 미국 달러

증가하는 의료비 지출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

- 한국의 국민 의료비 지출이 지나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 않아 세계에서 의료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나라 중 하나가 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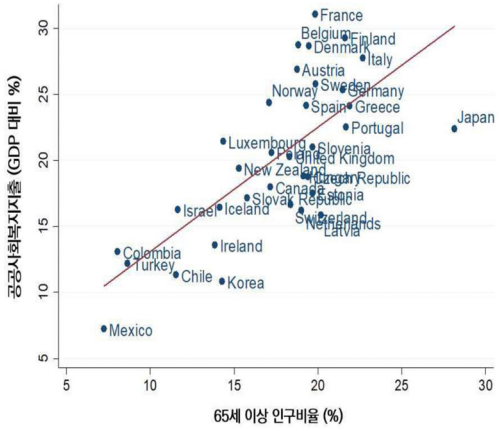
GDP 대비 국민 의료비 지출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지출 증가는 필연적

-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지출 증가는 필연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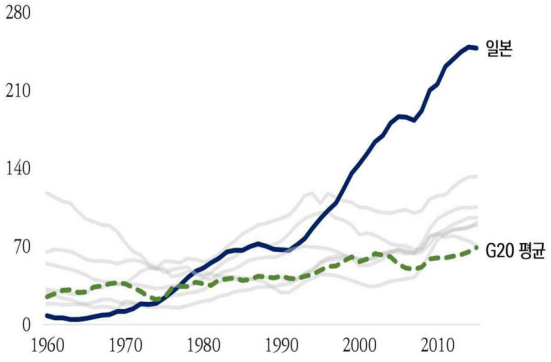
65세 이상 인구비율과 공공사회복지지출 (2018)



인구고령화와 다가오는 재정적 도전

- 개혁 없이 현재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60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로만 소득의 30%를 납부해야 연금이 운영될 것으로 추산
- 개혁은 시간이 경과하며 더욱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 (연금의 수혜자인 노인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 일본 정부의 채무가 90년대 초반이후 급속도로 증가 (노인인구 비율이 증가와 상관관계)
- 일본은 2020년 현재 국가채무 상환(이자상환 등)에 **중앙정부 예산의 약 23%를 지출**

주요 선진국 정부채무 비율



자료: IMF Historical Public Debt Database: 일반정부의 GDP 대비 채무비율(%)이며, G7 선진국과 G20평균을 분석에 포함



재정적 도전과 VAT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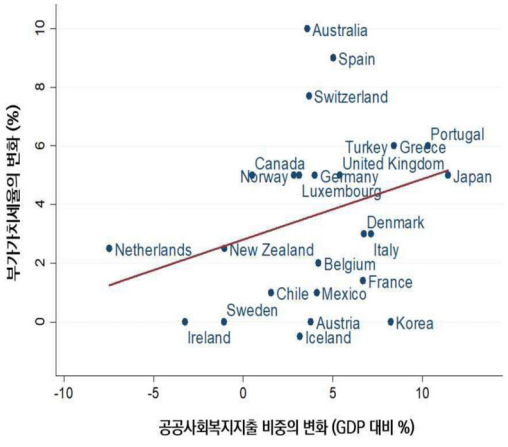
세계 많은 선진국은 부가가치세 증세를 통해 사회복지지출 수요에 대응

- 대안은?
- 첫째, 복지지출 증가를 억제 ☞ 다만 이 대안은 노인빈곤, 소득 양극화 등 또 다른 사회문제
- 둘째, 보편복지를 지향한다면 증세가 필요

☞ 부자증세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보편증세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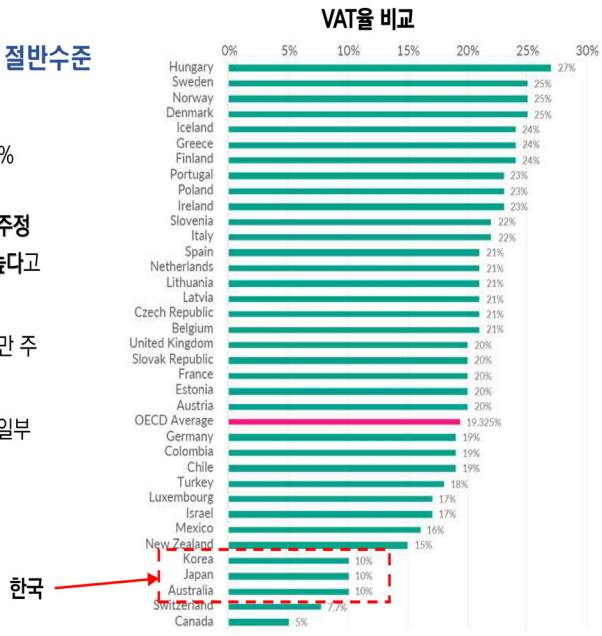
- 셋째, 성장
- 중장기적으로는 부가가치세의 증세가 **히든 카드** 또는 **최후의 수단**이 될 수 있음 (다만 **그 이전에 비효율적인 현재의 조세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순서**일 것)

공공사회복지지출과 부가가치세율의 변화 (1990~2018)



한국의 부가가치세 부담은 OECD평균의 절반수준

- OECD회원국의 평균 부가가치세율은 19.32%
- 그러나, 부가가치세와 다를바 없는 **소비세를 주정부에서 부과하는 사례를 고려하면 평균은 더 높다**고 봐야 함
  -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의 부가가치세가 없지만 주정부에서 부과하는 소비세
  - 캐나다의 표준 부가가치세율은 5%이지만, 일부 지역은 더 높은 소비세를 부과



주: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지 않은 미국은 제외; 지방정부에서 부과하는 소비세 제외; 캐나다는 연방정부의 부가가치세(Goods and Services Tax)만을 포함

부가가치세의 장단점

- **장점1:**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에게 유리함
  - 법인세 vs.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로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효과
  - 수출산업 지원은 WTO 규정 위반이지만, 간접세를 통한 지원은 규정 위반이 아님
  - 특히 법인세율이 누진적일 경우, 수출을 많이 하는 대기업에게 불리함 (국내 기업이 해외로 이전 가능성)
- **장점2:** 투자금액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과세 안됨 (투자를 유도하는 효과 있음)
- **단점:** 단기적으로 경기에 부정적 (정치적으로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임)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면 소비침체와 경기위축으로 이어지는가?

- 부가가치세의 단점 중 하나는 경기에 부정적이라는 점
- 일본의 소비세 = 부가가치세
- 일본의 소비세는 1989년 4월 1일 3%로 처음 도입 ☞ 1997년 4월에 5% ☞ 2014년 4월에 8% ☞ 2019년 10월에 10%로 인상
- 일본의 소비세 인상 목적은 사회보장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함 (현재 일본은 국세로 징수되는 소비세 수를 전액 복지지출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

일본의 소비세 인상과 GDP 추세 (1994-2021)



주: 일본 분기별 실질 GDP 추세이며, 계절변동조정(seasonally adjusted)되고 기준연도는 2015년임; 단위는 10억 엔

부가가치세는 역진적이지만 저소득층에게 유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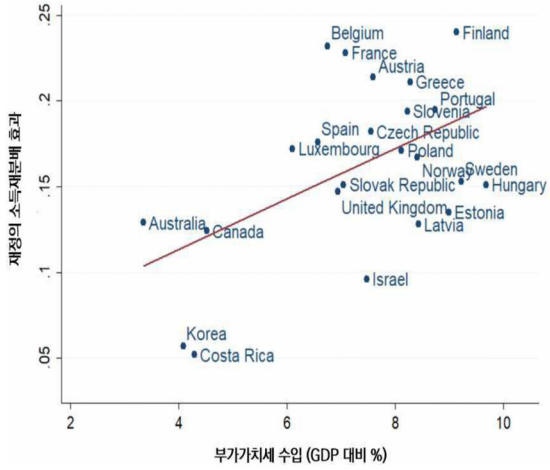
- 부가가치세는 납세자의 선택을 왜곡시키는 부작용이 적고 정부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재정을 확충할 수 있으며, 수출 산업에도 유리함
- 그러나 역진적

〈표 6-2〉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에 대한 이해

구분	소득	소비	부가가치세 부담	소득 대비 부가가치세 부담
A씨	10,000만원	5,000만원	500만원	5%
B씨	1,000만원	1,000만원	100만원	10%

부가가치세는 역진적이지만 저소득층에게 유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논할 때는 정부가 그 돈을 어디에 쓸 지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할 필요
-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많은 유럽 선진국들은 복지지출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역진적인 부가가치세 증세를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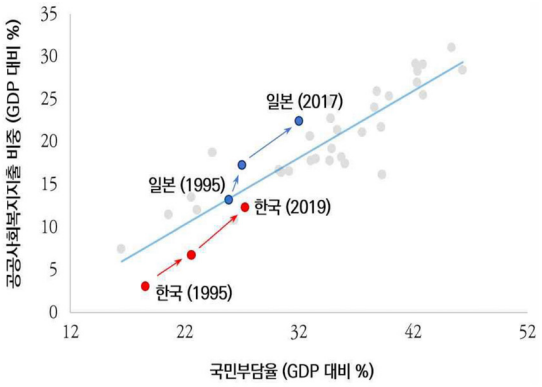


일본 사례

일본 사회복지지출의 현황

- 2019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15%이다. 일본의 90년대 중반 수치와 유사
- 일본이 한국보다 약 25년 먼저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나, 앞으로는 두 나라 간 격차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 전망
- 추세선 위쪽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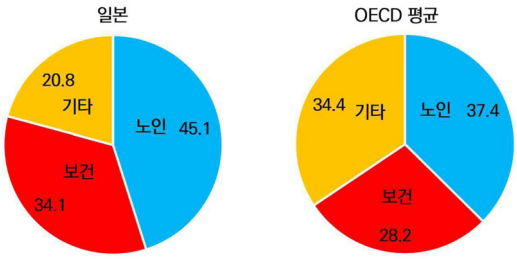
국민부담율과 공공사회복지지출의 비중



일본 사회복지지출의 현황

- 일본과 한국의 고령화 진행속도를 고려하면, 2030년대 초중반 전후로 한국의 재정지출 상황이 일본의 2017년과 유사해질 가능성
- 일본의 2017년 사회복지지출의 구성을 보면, 노인과 보건 분야 지출이 전체의 약 79%
- 일본의 노인 분야 지출 비중은 세계에서 가장 높음

일본 공공사회복지지출의 구성



일본 사회복지지출의 현황

- 채무상환비용 규모 (저금리 상황)
- 사회복지지출 증가
- 기타 지출의 정체
- 국가채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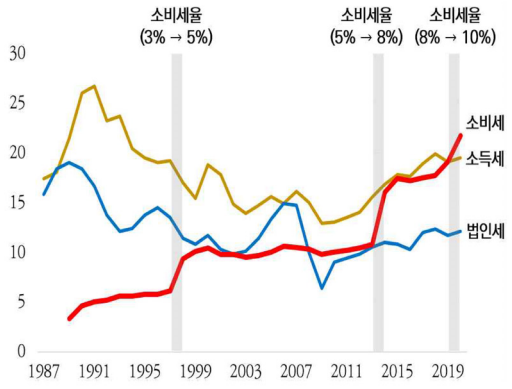
일본 중앙정부 예산 (1990년과 2020년)



부가가치세는 사회복지재원으로 적합한가?

- 일본은 부가가치세 인상을 선택
- 부가가치세가 급증하는 사회복지지출의 재원으로 적합한 이유는
- 첫째, 안정적인 재원 확보 가능 (법인세, 소득세에 비해 경기에 덜 민감)
- 둘째, 세대간 공평성 확보 가능
- 셋째, 소득세의 열거주의, 법인세의 다국적기업 소득문제 등 문제에서 자유로움 (대한민국 땅에서 소비하는 모든 사람이 세금 부담)

일본 3대 세목의 수입 변화



결론

- 향후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빠른 속도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
- 미래에 다가올 재정적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과 계획이 필요함
- 많은 선진국의 경우, 보편복지 체계를 만들기 위하여 보편 증세의 성격이 강한 부가가치세 증세를 선택한 경우가 많이 있었음 (특히 북유럽)
  - 부가가치세를 10%에서 15% 수준으로 인상하는 대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대안**
  - 다만, **부가가치세 증세 이전에 비효율적인 현재의 조세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순서**일 것으로 판단됨

끝

홍순만 (연세대학교)
sounman_hong@yonsei.ac.kr

특별세션 4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중장기 개편방향 : 상속세 및 증여세

고 윤 성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2024년 한국세무학회 추계 학술대회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중장기 개편방향
: 상속세 및 증여세

고윤성(한국외국어대학교)



1.배경



출처: 2000~2024.9.20까지의 일간지 및 경제지 상속 및 증여 관련 핵심 연관어(www.bigkinds.or.kr)

2. 연혁(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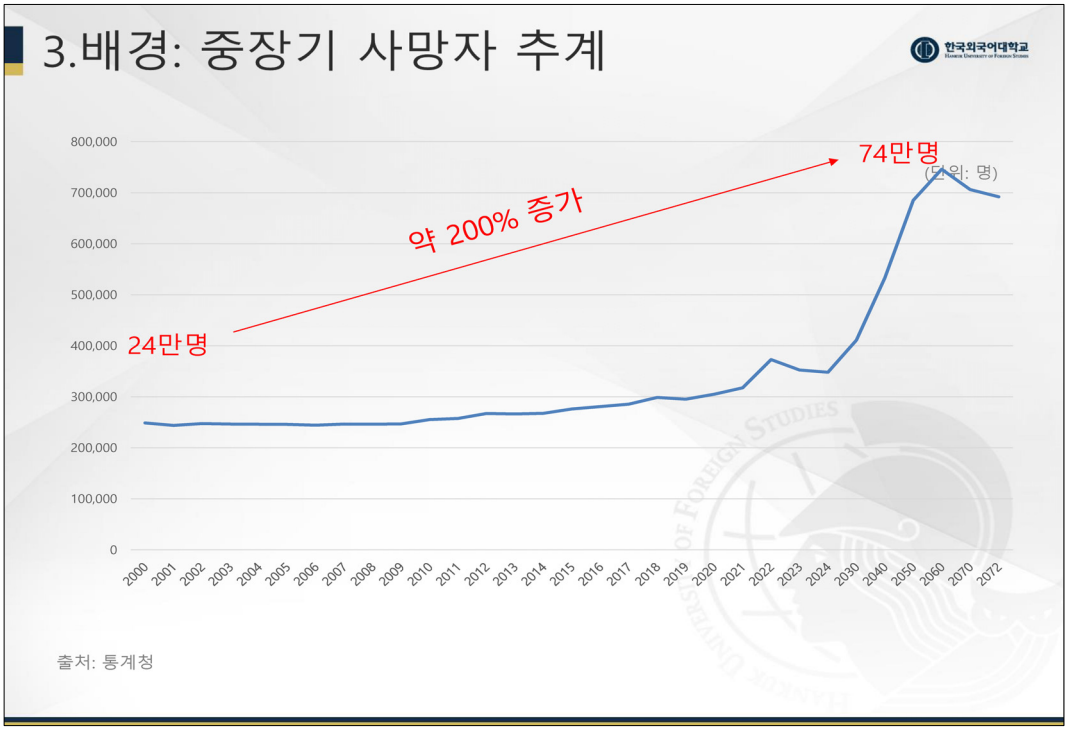
한국외국어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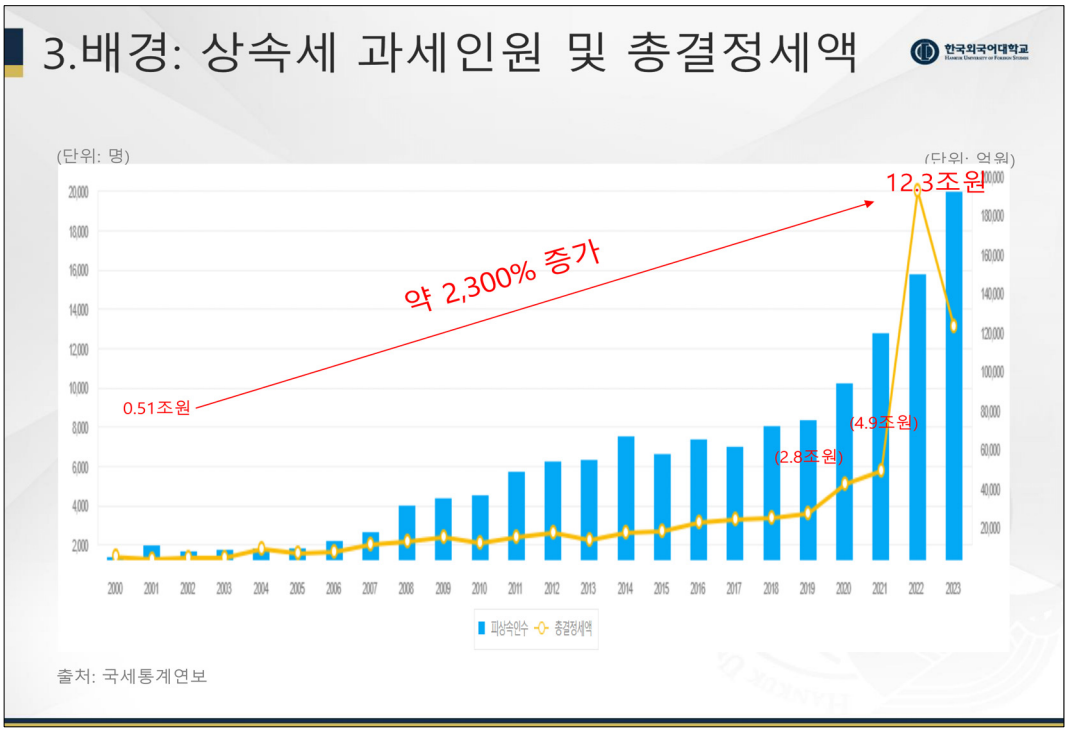
개정시기	개정내용
1950	• 「상속세법」 제정: 소득세 보완, 재정수입 확보, 과세형평 실현 취지 • 「증여세법」 제정: 세부담 균형, 재산분배 형평 도모, 상속세 보완 취지
1952	• 「증여세법」이 「상속세법」에 통합
199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정 (현행 법률)**
2003	• **상속 및 증여에 대한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 도입**
2009	• 가업상속공제 확대: 공제율 상향 (20% → 40%), 공제한도 상향 (30억 → 100억) • 동거주택 상속공제 도입: 상속개시일 전까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경우 주택가격의 40% 공제 (5억원 한도)
2010	•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 완화: 전체 가업의 영위 기간 중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80% → 60%
2011	• 가업상속공제 중소기업 요건 완화: 상장기업 최대주주 지분비율 하향 (40% → 30%), 매출 1,500억원 미만 회사 확대 적용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완화: 10년 간 동일주택 거주 → 이사 포함 10년 간 동거
2012	• 가업상속공제 확대: 공제율 상향 (40% → 70%), 공제한도 상향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60억~100억 → 100억~300억) • 가업상속공제 고용요건추가: 상속 후 10년 간 상속 당시 1배 이상 고용 유지 • 가업상속공제 재산범위 조정 • 영농상속공제금액 확대: 한도 상향 (2억 → 5억)
2013	• 상속인이 영리법인의 주주인 경우 면제된 상속세 중 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상속세로 납부 • 가업상속공제 확대: 대상기업 매출액 상향 (1,500억 → 2,000억) • 무주택 직계비속이 주택 상속 시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가능
2014	•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 완화: 전체 가업의 영위기간 중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60% → 50% • 가업상속공제 확대: 대상기업 매출액 상향 (2,000 → 3,000억), 공제율 상향 (70% → 100%), 공제한도 상향 (100억~300억 → 200억~500억) • 사후관리 요건 완화 및 고용유지 요건 보완

2. 연혁(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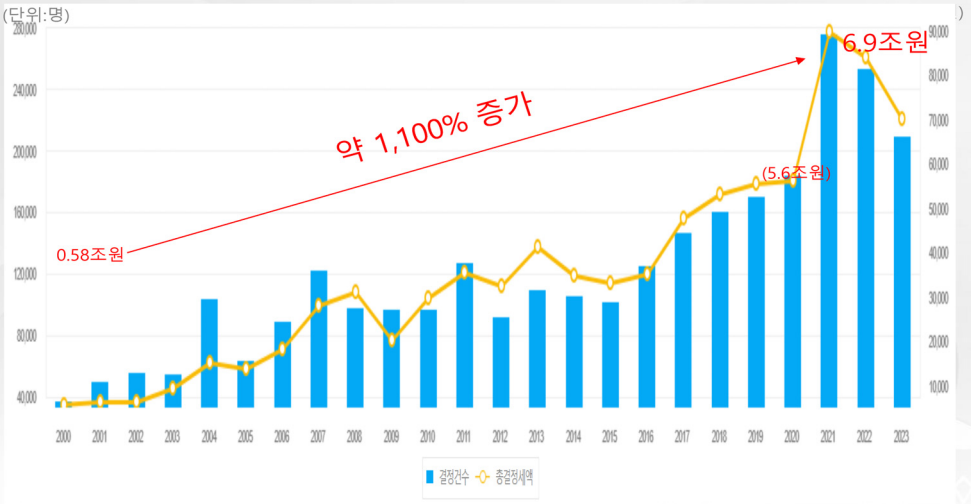
한국외국어대학교

개정시기	개정내용
2015	•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 재산 범위 확대 및 요건 보완
2016	•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 적용 업종 명확화, 상속인 요건 완화 • 영농상속공제 확대: 공제한도 확대 (5억 → 15억) • **인적공제 확대: 자녀공제 (3천 → 5천), 연로자공제 (3천 → 5천, 연령 60세 → 65세), 장애인·미성년자 공제 (5백 → 1천, 연령 20세 → 19세)** • 동거주택 상속공제율 상향: 상속주택가액의 40% → 80% • 미성년자에 대한 세대생략 할증과세 할증률 상향: 30% → 40%
2017	•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범위 명확화 • 개인 가업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 개선: 순자산가액 산출 시 사업용 부채가액 차감 • 동거주택 상속공제 계산방법 개선: 상속주택가액에 주택에 담보된 채무 차감 • 일시적 1세대 2주택 보유 시 동거주택 판정
2018	• 가업상속공제한도 조정: 300억, 500억에 대한 가업영위기간 각각 15년 → 20년, 20년 → 30년 • 신고세액 축소, 가업상속재산 연부연납 확대, 물납요건 강화, 결정기한 연장
2019	• 가업상속공제 가업용 자산 처분 시 추징제도 합리화, 가업 상속 후 지분 유지 의무 합리화, 가업상속 후 합병분할시 고용유지 여부 판단기준 신설, 가업상속 대상 업종 재분류 • 영농상속공제 영농종사기간 요건 완화
2020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준 완화, 탈세 회계부정 기업인의 가업상속 혜택 • 동거주택 상속공제 확대: 공제율 (80% → 100%), 공제한도 (5억 → 6억)
2022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매출액 3천억 → 4천억 • 영농상속공제 공제한도 확대: 15억 → 20억 •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 확대: 직계비속의 배우자 허용 •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일반 상속재산 5년 → 10년 •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특례 신설
2023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매출액 4천억 → 5천억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단축 및 요건 완화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저율의 증여세율(10%) 적용구간을 기존 '10억 초과 ~ 60억 이하'에서 '10억 초과 ~ 300억 이하'로 확대 •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에 태아 포함 • 결혼비용결혼비용에 대한 조세부담 완화를 위해, 10년간 5천만 원의 기본 증여재산공제와는 별개로,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즉 총 4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 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3.배경: 중장기 사망자 추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단위: 명)
74만명
약 200% 증가
24만명
800,000
700,000
600,000
500,000
400,000
300,000
200,000
100,000
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30 2040 2050 2060 2070 2072
출처: 통계청


3.배경: 상속세 과세인원 및 총결정세액
한국외국어대학교
(단위: 명)
(단위: 억원)
12.3조원
약 2,300% 증가
0.51조원
(4.9조원)
(2.8조원)
20,000
18,000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180,000
160,000
140,000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피상속인수
총결정세액
출처: 국세통계연보

3.배경: 증여세 과세인원 및 총결정세액



출처: 국세통계연보

4.선행연구: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주된 연구

◆ 첫 번째, 재산가액 평가 연구

- 오윤, 2013; 오원선, 2014; 임승순, 김용택, 2021; 김수정, 2023; 서광채, 2023

◆ 두 번째, 제도 개선 연구

- 박성만·정범식(2011): 배우자 상속공제 및 증여공제의 한도액 폐지
- 김두복·서희열(2018):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취득세 체계로 전환
- 홍승현·오문성(2019): 가업상속 관련 제도 개선을 현행 제도의 준수 요건의 완화
- 이상신(2019): 사전 상속 가산 기간의 단축, 물가상승률 반영, 배우자 공제 한도 폐지

- 서정우(2018): 가업상속공제 요건의 강화
- 이총희·최한수(2019): 국제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 상속세가 높다는 주장에 대해 반론
- 박준(2021): 금융재산상속공제 및 동거 주택 상속공제 폐지, 가업상속공제의 축소 등

5-1.문제점

한국외국어대학교

◆첫째, 지속해서 자산 가격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고정된 공제 한도가 거의 개정 없이 적용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 지난 10년 동안 평균적으로 상속재산 중 52.9%를 차지하는 부동산의 가격 급등.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액이 2000년에는 2억 382만 원이었으나, 2023년 7월 기준 12억 9,490만 원으로 535%로 매우 큰 폭으로 급상승.
- 과도한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은 재산 보전 및 자산 이전에 대한 경제적 의사결정을 왜곡함. 또한 재산 이동을 억제하는 요인이 됨.
- 상속세는 이미 과세된 소득으로 형성된 재산을 다시 한번 이중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부담임.
- 급변하는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해 자녀 수의 감소 및 고령자가 증가하여 상속 및 증여가 증가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 가액이 증가함에 따라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은 실질 자산의 감소를 유발하여 상속인과 수증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증가시킴.

5-2.문제점

한국외국어대학교

◆둘째, 배우자상속공제 한도는 1996년 말부터 지금까지 27년간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음.

- 27년간 약 지속적으로 물가상승이 이루어짐에 따라 실질 배우자상속공제 한도는 감소함.
- 상속세가 형평성 차원에서 세대 간 부의 이전에 대해서 과세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바 재산 형성에 피상속인과 동등하게 기여한 동일 세대인 생존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특히나 고령의 상속 배우자의 경제적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고령자에 대한 예후 차원을 넘어서 공정의 차원에서 논의해야 함.

5-3.문제점

한국외국어대학교

◆셋째, 고령화 사회에서는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의 재산 이전은 매우 중요한 문제임.

- 상속세 및 증여세는 재산 이전 시 발생하는 세금부담으로 인하여 고령자들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전달할 때 추가적이고 큰 경제적 부담.
- 상속세 및 증여세 공제액은 2014년 이후 10년째 5,000만 원(성인기준)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공제되고 있음에 따라 재산 이전이 억제되어, 자원의 순환이 억제되고 있음.
- 특히나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하여 경제성장률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세대 간 부의 이전은 소비와 생산을 증대를 통한 경제 선순환 및 성장에 매우 중요한 수단임.

5-4.문제점

한국외국어대학교

◆넷째, 상속세의 인적공제는 배우자, 자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과 형제자매인 동거가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증여세의 인적공제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급속한 저출산 및 고령인구의 증대로 인하여 평균수명이 증가된 상태에서 고령의 배우자, 자녀, 동거가족만으로는 고령자에 대한 부양이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 대두됨에 따라 고령자의 부양을 책임지는 다양한 기여자가 존재하게 될 것임.
- 그에 따라 피상속인 및 증여자의 상속재산 및 증여 재산이 배우자 및 자녀 등 친인척이 아닌 기여자 혹은 제3의 자에게 이전되는 경우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가족 외의 기여자 및 제3의 자에게 상속 및 증여로 인하여 재산의 이전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상속재산공제 및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이 더욱 증가하게 됨.

5-5.문제점

한국외국어대학교

◆다섯째, 고령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복잡한 상속세와 증여세 제도는 납세순응도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조세 행정비용이 발생하며 조세저항도 증가함.

- 고령자가 증가할수록 복잡한 상속세 및 증여세 제도로 인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못 할 가능성이 증가됨에 따라 오히려 불평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존재함.
- 특히나 사전증여재산, 공제제도 등에 대한 복잡한 과세 및 공제 제도 등으로 인하여 고령자들은 스스로 합리적인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임.

5-6.문제점

한국외국어대학교

◆여섯째, 고액의 상속세와 증여세로 인해 일부 기업 및 부유층 개인들이 국외로 자본 유출하거나 해외 거주 등 탈루 조치를 선택하는 경우가 발생

- 상속세 및 증여세는 조세수입 확보 및 소득재분배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 비현실적인 공제액,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인구구조가 급변함에 따라 납세 부담이 커지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 회피가 증가하고 있음.

6-1.개선방안

한국외국어대학교

◆첫째, 물가 연동을 통한 공제액 상향 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과는 무관하게 상속 및 증여 재산의 가치는 상승한 반면 공제액은 거의 고정되어 있음에 따라 실질 공제액은 감소하였고, 그로 인해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 **따라서 해당 기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1996년 당시 설정했던 각 공제 한도 기준 금액은 2024년 현재 시점에서 약 2배 정도의 공제 한도로 상향해야 함.**
- 즉, 상속시 배우자 공제 60억 원, 기초공제 4억 원, 자녀 공제 1억 원, 연로자 공제 1억 원, 미성년자 공제 2천만 원×19세까지의 잔여 연수, 장애인공제는 2천만 원×기대여명연수, 그리고 일괄공제 한도 10억 원으로 상향조정을 해야만 합리적인 공제액이 적용될 것임. 증여시에도 상향 조정 필요.
- 물론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제금액과 과세표준 등을 물가와 연동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과 합리적인 결정 과정이 필요함에 따라 세무 행정비용이 수반될 것이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고령자의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상속 및 증여 재산의 50% 이상 차지하는 부동산의 가격이 증가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대상 역시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공제 한도를 정함에 있어서 물가를 연동시키는 것이 합리적임.**

6-2.개선방안

한국외국어대학교

◆둘째, 배우자 공제 확대

- 상속재산은 피상속인과 그의 배우자가 전 생애 동안 균등한 노력을 통하여 형성한 재산이고, 상속재산이 명의상 부부 중 한 사람에게 귀속되어 있을 뿐 재산 형성의 기여도 및 실질과세 원칙상 상속재산의 귀속 주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즉, 부부가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은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고 봐야 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 시 명의가 배우자에게 이전된다고 해서 상속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함.
- 곧 초고령사회에 곧 진입하게 되는 상황에서 고령의 생존 배우자의 생활 수준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은 부부가 합심하여 일평생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의 도리이며, 공정 과세를 위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사항임.
- **따라서, 1세대에 1회 과세의 원칙을 준수하고, 재산 형성 및 소비의 실질적인 단위가 부부 단위임을 인정하여, 배우자 간 재산 이전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함.**
- 또한 우리나라의 상속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피상속인 명의의 상속주택 상속 시 해당 상속주택을 피상속인의 고령의 배우자가 상속하면 상속주택 가액은 우선하여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전액 제외하여야 할 것임.

6-3.개선방안

한국외국어대학교

◆셋째, 증여재산공제 확대

-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시대에서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의 재산 이전은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제 한도 및 세율 등을 합리적으로 설계함으로써 부모 세대가 자녀세대 등에게 재산을 이전할 때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특히 고령화로 인하여 경제성장률이 지속해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특히, **증여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자녀 세대 등으로의 신속한 재산 이전은 예상되는 경제침체에 활력을 제공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임.**
- 또한 세대 간 재산 이전을 확대하기 위하여 사전 증여재산가액 누적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 등으로 단축함이 타당할 것임.

6-4.개선방안

한국외국어대학교

◆넷째, 자본이득세 전환

- 상속세 과세 대상은 기본적으로 창출한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 후 남은 세후 소득 중 소비하고 남은 잔여분에 대한 이중과세임에 따라 소비수준이 높거나, 사교육 등을 통해 많은 자원을 사용한 납세의무자에 비하여 저축 등을 통하여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의무자가 더 많은 부담을 하게 되는 조세임.
- 이러한 불합리한 이중과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등의 국가들은 취득 원본을 제외한 보유기간에 발생한 자본이익만 과세하기 위하여 자본이득세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상속세의 중요성이 급증하는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것이 공평하고 합리적임.**

6-5.개선방안

한국외국어대학교

◆다섯째, 공제 대상자 확대

- 저출산 및 고령화, 경제침체 등 복잡한 경제적 및 사회적 영향으로 인하여 1인 가구가 2015년 520만3,440명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2년 750만 2,350명으로 급증함에 따라, 1인 가구 비중은 2005년 전체 가구 중 20%에서 2050년 39.6%가 될 것으로 전망임.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고령자에 대한 부양이 가족 중심만으로는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음.
- 따라서 상속 및 증여 재산의 이전 역시 가족 외의 기여자 혹은 제3자에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증가했음에 따라 현행「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가족만을 대상으로 각종 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 상속 및 증여 재산의 사회적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행 가족 중심의 인적공제 대상을 가족 외 기여자 및 제3자 등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6-6.개선방안

한국외국어대학교

◆여섯째, 단순화

- 고령자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사회시스템은 더욱 명확하고 단순화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특히 매우 종합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속 및 증여와 관련해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결정하는 과정은 고령자들에게 너무나 복잡하여 현실적으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황임. 물론 세무 대리인을 통한 조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로서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해야 할 사항이 너무나 복잡한 현행 상속세와 증여세는 조세저항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큼.
-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간소화를 통해 복잡한 규정을 단순화하는** 것은 상속세와 증여세 회피와 징수 오류를 줄일 수 있음.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 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등 고령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적극적인 세무 행정을 해야 할 것임.

7. 결론 및 정책 제언

한국외국어대학교

- 첫째, 합리적인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를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제 한도를 정함에 있어서 **물가를 연동**시켜야 한다.

- 둘째, 고령화 시대의 자산의 원활한 이전 및 고령 배우자에 대한 최소한의 대우를 위하여 **배우자 간의 상속 및 증여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해야 한다.

- 셋째, 고령자인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집중된 재산을 자녀 세대에게로 이전을 촉진시켜 경제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하여 **증여재산공제를 확대**하고, **증여재산가액 누적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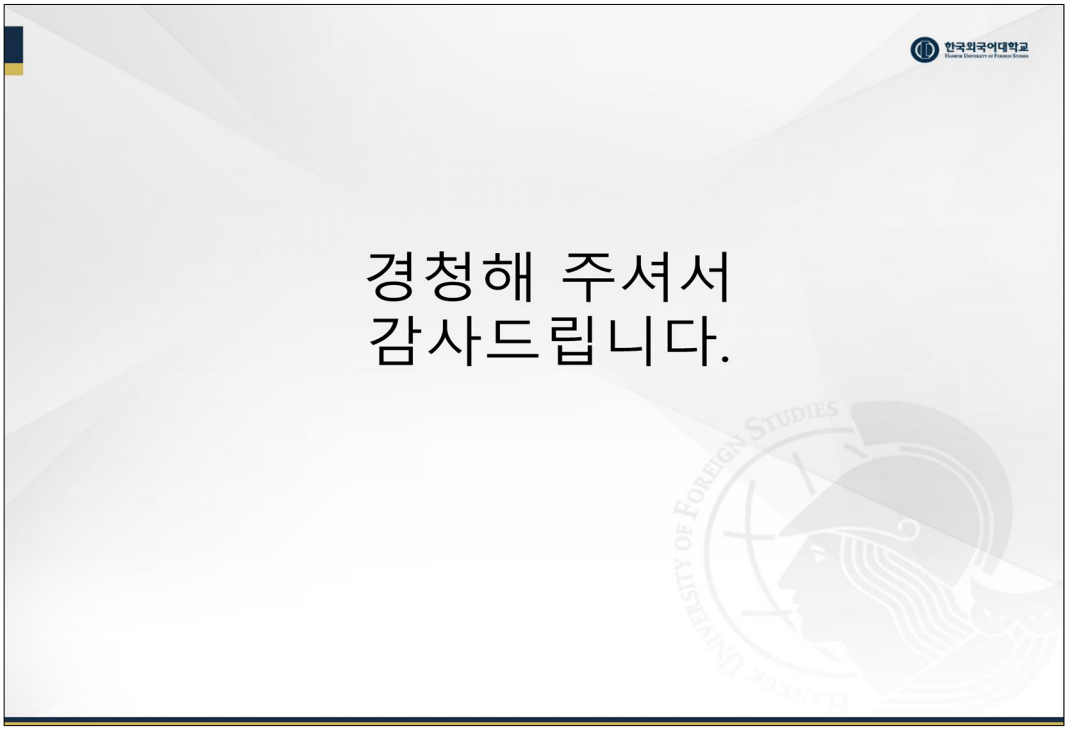
6. 결론 및 정책 제언

한국외국어대학교

- 넷째, 상속세의 중요성이 급증하는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속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현행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

- 다섯째, 급변하는 가구 형태 등을 반영하여 현행 **가족 중심의 인적공제 대상을 가족 외 기여자 및 제3자 등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 여섯째, 고령자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현행 너무나 복잡한 상속세 및 증여세 의사결정과정을 명확하고 **단순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학술발표대회

[제 1 분과] 세무회계
[제 2 분과] 세무회계
[제 3 분과] 조세정책
[제 4 분과] 조 세 법
[제 5 분과] 지 방 세
[제 6 분과] 서현파트너스 특별세션
[제 7 분과] 대학원 석박사과정 세션
[제 8 분과] 조세정책
[제 9 분과] 조세제도
[제10분과] 조세일반
[제11분과] 세무회계
[제12분과] 한국리츠협회 특별세션

제 1 분과

세무회계

장소 : 324호 사회자 : **최기호 교수** (서울시립대)

시 간	발표논문 제목	저자 및 발표자*	토론자
15:00 ~ 16:30	조세 복잡성 인식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성태 (대한법률구조공단) 정상훈 (한영회계법인) **이혜영*** (서울대)	**황인규** (강남대)
	ESG 등급 상승이 조세회피를 억제하는가? – 감사보수 증가 또는 감사시간 증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박종일 (충북대) **이윤정*** (충북대)	**김민희** (숭실대)
	공인회계사와 세무사의 성격유형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변정희*** (단국대) 조경민 (단국대) 김 훈 (순천향대)	**윤양인** (서울과기대)

조세 복잡성 인식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 성 태 · 정 상 훈 · 이 혜 영
(대한법률구조공단) (한영회계법인) (서울대학교)

조세 복잡성 인식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성태* · 정상훈** · 이혜영***

〈요 약〉

최근 언론에서는 양도세 계산이 지나치게 복잡하여 세무전문가인 세무사가 양도세 수임을 꺼리는 이른바 '양포세'라는 용어가 보도된 바 있다. 이는 다양한 경제생활과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세법의 복잡성이라는 고유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세무전문가조차 법령이 지나치게 복잡하여 실무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수준까지 이를 수도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조세의 복잡성은 납세자로 하여금 법률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공정한 과세행정을 담보하지 못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조세에 대한 복잡성 인식이 납세자의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실제 세금 계산과 납부 절차에 관한 복잡성 사례를 제시하여, 입법 정책적인 해결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한정된 표본을 통해 복잡성 인식을 확인하였던 선행연구들과 달리 재정패널 데이터를 통하여 4,921개 표본을 이용하여 납세자의 조세 복잡성 인식이 납세 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납세자가 세법상 세금 계산과 납부 절차에 대해 복잡하다고 인식할수록 납세 순응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법 그 자체의 형식적 복잡성 이외에도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빈번한 개정이 초래한 조세 복잡성으로, 결국 납세자가 조세에 대해 순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통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는 조세 복잡성이 납세자의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세법 개정 시에 복잡성을 완화할 수 있는 완충장치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입법정책적 공헌점이 있다.

〈주제어〉 조세 복잡성, 납세순응, 예측가능성, 세금 계산, 납부 절차

*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법학박사, vhspst@hanmail.net, 제1저자
** 한영회계법인 세무사, 세무학석사, shjeong0826@naver.com, 공동저자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박사과정, hyeonglee@snu.ac.kr, 교신저자

Ⅰ. 서 론

Milliron(1985)는 조세 복잡성(Tax complexity)을 납세자들이 세법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데 있어서 겪는 어려움이라고 정의하였으며, Alm(1991)은 납세 순응도(Tax compliance)를 납세자가 세법을 준수하여 정확하고 완전하게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납세 순응은 국가의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핵심 요인으로, 세금은 정부가 사회적 인프라와 교육, 의료와 같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주요 자원이다(Alm and Torgler 2006 ; Slemrod 2007). 결국, 납세 순응도가 높을수록 정부는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고, 이러한 재정은 국가의 장기적인 경제 성장과 사회 복지를 도모할 수 있으므로 국가 차원에서 납세자의 납세 순응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조세 복잡성은 세금의 계산 및 납부 절차와 관련된 복잡성 및 인식을 의미하며, 세금의 계산 및 납부 절차는 세법에서 제시된 규정을 따른다. 이에 따라, 세법의 복잡성이 납세자들에게 불확실성 및 혼란을 초래하여 탈세나 무신고와 같은 납세 비순응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점이 존재한다(Vogel 1974 ; Blumenthal and Slemrod 1992). 미국 상원 예산위원회의 2023년 4월 18일 청문회 발표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세법을 준수하기 위해 65억 시간 이상을 소비하고 있으며, 이는 연간 3,130억 달러의 손실로 이어진다고 한다.[1] 즉, 조세 복잡성으로 인해 납세자는 세법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데 많은 시간과 상당한 비용을 소비하게 되며, 이는 잠재적으로 낮은 납세 순응도로 이어진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2021년 당시 빈번한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으로 양도세 계산이 복잡하고 어려워지자 조세 전문가들도 납세자가 의뢰한 부동산 양도 건에 대해 세금계산을 잘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2] 이는 잦은 세법 개정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계산이 복잡해져서 세무사들조차 양도세 사건을 기피한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다. 이 사례는 조세 복잡성이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이해도를 감소시키고, 납세의무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켜 종국적으로 납세 순응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같은 조세 복잡성과 그에 따른 납세 순응도 감소는 특정 국가 및 조세체계에만 국한된 문

---

1) 2023년 4월 18일 미국 상원 예산 위원회 청문회에서, Dr. William McBride의 “A Rigged System : The Cost of Tax Dodging by the Wealthy and Big Corporations.” 발표 증언을 보도한 기사 내용으로 (https ://taxfoundation.org/testimony/federal-tax-complexity-costs-reform/ 방문일자 : 2024. 09. 12.).

2) 2021년 당시 추경호 의원이 제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에 접수된 양도세 서면질의 건수는 3천 243건으로 전년 대비 1천 763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양도세 계산이 복잡하고 어려워짐에 따라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한다(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51615 방문일자 : 2024. 09. 12.).

제가 아니고 전 세계 공통의 본질적인 문제이다.[3] 조세복잡성은 객관적 조세 복잡성과 주관적 조세 복잡성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객관적 조세 복잡성은 세법 자체의 규정과 절차가 얼마나 복잡한지를 의미하며, 이는 법령, 규제, 납부 절차 등이 얼마나 명확하고 간단하게 설계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반면, 주관적 조세 복잡성은 납세자가 체감하는 세금 계산과 납부의 복잡성을 뜻한다. 객관적 조세 복잡성이 높아지면, 납세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조세 복잡성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조세 복잡성에 대한 인식은 종국적으로 납세 순응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즉, 납세자들이 세금 계산과 납부 절차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그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에 따라 납세 순응도가 달라진다. 세금 계산과 납부 절차가 복잡해지면 그만큼 납세자가 복잡하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함께 커지며, 납세 순응도가 감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세금 계산 및 납부 절차를 복잡하다고 인식할수록, 본인의 납세의무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납세자의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납세자가 실수를 하거나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이러한 상황은 납세자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세금 계산 및 납부 절차를 복잡하다고 인식하는 경우, 납세자들은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입해야만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다고 인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납세자들이 조세회피나 탈세를 선택할 가능성도 함께 높아진다. 나아가 이러한 복잡성 문제로 인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온라인 앱과 같은 간편한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A. Smith는 이상적인 세제가 갖추어야 할 조건적 특성으로서, 공평성(Equity), 명확성(Certainty), 편리성(Convenience), 그리고 경제성(Economy)을 제시하였다.[4] 학계에서는 이상적인 세제에 관하여 이와 같은 특성들이 주장되었지만, 그 내용에는 큰 차이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오늘날 이상적인 조세제도가 갖추어야 할 조건적 특성으로서 일반적으로 형평성(Equity), 효율성(Efficiency), 단순성(Simplicity), 유연성(Flexibility)을 들고 있다. A. Smith가 제시한 특성 중 명확성(Certainty)과 편리성(Convenience)은 법률의 단순성(Simplicity)이 갖춰져야만 충족될 가능성이 높은 특성이다. 법제처는 2006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이래 현재까지 복잡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령용어 순화작업, 법률 한글화 사업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조세와 같이 법령이 내용과 형식 모두가 복잡성이 문제되는 분야는 2023년부터 법령문장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5]

---

3) 프랑스 중앙행정재판소(Conseil d'Etat)인 꽁세이데따는 프랑스 내에서 법률의 복잡하게 증가하는 현상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여 대책이 필요하다고 한 바 있으며(Conseil d'Etat, 2006), 영국 입법조사처도 영국 제정법령의 복잡성 증대 현상을 경고한 바 있다(Office of the Parliamentary Counsel, 2013).

4) Smith, A. 1776.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 Volume One. London : printed for W. Strahan ; and T. Cadell : 6－17.

5) 법령 정비 사업의 연혁적 내용에 관해서는, 법제처. 2023.「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열번째판－」, 2

A. Smith가 조세의 특성을 언급하였던 때부터 2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세제도에 관해 복잡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조세 복잡성은 국가와 시대를 초월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 데이터(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NaSTaB)) 중 조세 복잡성에 관하여 유일하게 조사된 2017년(10차 조사) 데이터(4,921개 표본)를 이용하여 납세자의 조세 복잡성 인식이 납세 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 기간을 포함하여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세금 계산 및 납부 절차는 복잡성이 유지되거나 심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는 원천적으로 2017년으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조세 복잡성에 대한 인식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즉, 2024년 현재에도 조세 복잡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문제로서, 조세 복잡성이라는 본질적인 사안에 대해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조세 단순화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동일하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실증분석 결과, 납세자가 우리나라 세금 계산 및 납부 절차를 복잡하다고 인식할수록, 납세 순응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결과는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 PSM)과 엔트로피 균형(Entropy balancing) 방법을 통해 세금 계산 및 납부 절차를 복잡하다고 인식하는 집단과 가구원별 연간 소득 총액(PINC), 가구원별 세부담(ETR), 가구별 연간 총 소득금액(HINC), 성별(GENDER), 결혼 여부(MARRY), 교육수준(EDU), 나이(AGE)가 유사한 통제집단을 구성하여, 납세자의 납세 순응도를 분석한 경우에도 강건하였다.

본 연구자들이 조사한 범위 내에서 본 연구는 4,000개 이상의 표본을 대상으로 실질적 납세자의 조세 복잡성 인식과 납세 순응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세법이나 조세 제도의 도입과 개편에 있어서의 납세자 인식과 납세 순응도를 검증한 첫 번째 연구이다. 객관적인 조세 복잡성과 납세 순응도에 대해서는 다수의 연구가 존재하지만, 이에 대한 절대적 다수의 표본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은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본 연구는 추가로 표본기간인 2017년부터 2024년까지의 실제 세금 계산 및 납부 절차에 대한 복잡성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납세자의 복잡성 인식이라는 －계속적으로 입법 정책적 측면에서 문제 해결을 해야 할－ 본질적인 문제를 다룸으로써 추후 세법이나 조세제도 설계와 관련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Ⅱ)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실제 세금 계산 및 납부 절차에 대한 복잡성 사례를 제시한다. 제3장(Ⅲ)에서는 본 연구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소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구가설을 제시한다. 제4장(Ⅳ)에서는 표본 설정과 연

쪽 이하.

구모형을 설명한다. 제5장(Ⅴ)에서는 실증분석결과를 보고하고, 제6장(Ⅵ)에서는 정책적 제언점을 제시하고 결론으로 마무리한다.

Ⅱ. 연구 배경

우리 사회의 조세제도는 사회국가[6]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정책과제 실현을 위해 빈번한 변천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국가는 조세라는 한정적인 재원을 가지고,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조치, 정책과제의 추진, 복지의 실현 등에 모두 분배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7] 세법의 영역은 국가 최고법인 헌법 및 기타 법률에 비하여 그 속성상 경제 현실을 즉각적으로 법에 반영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복잡한 변화가 있어왔다.[8] 하지만 법률의 빈번한 변화는 규범의 수범자인 납세자로 하여금 충분한 이해와 안정적인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를 불러왔다.[9] 특히 조세는 헌법 제23조[10] 재산권 조항에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납세자에 대해 법률이 명확하고 충분히 이해되어야만 조세저항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이 때문에 다른 법률 영역에 비해서 입법 정책적으로 조세 영역의 복잡성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이해도를 증진시킬 방안이 주요한 과제로 논의될 수 있는 것이다.

조세의 분야는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복잡성을 갖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11] 예를 들어 형식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관세법 제164조에서 “장부에 기재하

---

6) 사회국가의 정의에 대해서는 “국가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특히 사회적·경제적 약자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적 급부 등의 적절한 조치와 배려를 하는 것을 그 목적과 과제로 삼는 국가”라고 설명한다. 이에 대해 김하열. 2022.「헌법강의」(제4판). 박영사, 139쪽.

7) 조세가 각종 정책수단으로 오늘날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설명으로, 이태로. 한만수. 2020.「조세법강의」(신정14판). 박영사, 5쪽 이하 ; 또한 이 책 6쪽 이하에서는 조세의 기능으로 공공재의 조달기능, 소득의 재분배 기능, 경기의 조절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8) 조세 시스템의 성격상 복잡성은 불가피한 부분이라는 설명으로, 권영모. 송복천. 2002. “세법 복잡성 인식에 관한 실증연구”.「경영교육논총」제25집. 18쪽 이하.

9) 김재윤(2017)에 따르면 국내 법률의 수는 1985년 788개였던 것에 비해 2015년 1,391개로 증가한 바 있고, 법률에서 하위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같은 시기에 7,777개에서 41,902건으로 증가하여 보다 복잡해지는 양상을 보인다고 한다.

10)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여야 한다"를 "기록하여야 한다"로,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서 "시가에 미달하는"을 "시가보다 낮은"과 같이 용어를 순화하기도 하였고, 개별소비세법 제26조 제3항 "세무공무원은"을 "세무공무원이"로 주술 구조를 정비하기도 하였다. 관세법 제287조 제1항에서 "인장을 소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무인을 찍어야 한다"라는 내용은 부수적인 사항으로 긴 문장을 짧은 문장으로 정비하기 위해 후단으로 "이 경우 도장을 지니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손도장을 찍어야 한다"라고 개정하기도 하였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 시행령에 있었던 '단수(端數)'라는 불필요한 용어는 삭제하여 조문의 이해를 높이는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12] 이 밖에도 조세 영역의 법령 개선 작업은 상당히 폭넓게 진행되고 있다.

위와 같은 형식적 복잡성 못지않게 우리 조세는 내용적 복잡성도 다수 산재한다. <표 1>에서는 내용적 조세 복잡성의 사례로 구체적인 재정패널 자료의 문항에 따라 내용적 복잡성을 크게 ① 세금 계산 자체의 복잡성과 ② 계산한 세금을 납세자가 신고 및 납부하는 과정의 복잡성으로 나누어 사례를 제시하였다.

세금 계산의 복잡성은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ⅰ) 정부의 빈번한 세법 개정은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정부가 다양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법을 자주 변경함에 따라, 납세자들은 최신 세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예를 들어, 최근 10년간 종합소득세 세율이 5차례나 변경되었는데, 세수 확보나 세부담 완화 등을 위해 이뤄졌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세액 계산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13]

ⅱ) 금융 환경도 세금 계산의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경제가 고도화되고 새로운 금융상품들이 등장하면서, 기존 금융상품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 예로, 동일한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ETF(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하더라도 상장지역에 따라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ETF의 자본차익은 양도소득세로,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ETF의 자본차익은 배당소득세로 과세하는데 이는 납세자들의 투자결정을 왜곡시키게 된다.[14]

ⅲ) 복잡한 과세 제도 역시 세금 계산을 어렵게 만든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를 예로 들면,

---

11) 형식상 복잡성은 체계의 복잡성, 표현의 난해성, 법령의 통일성 부재 등에서 기인하며, 내용적 복잡성은 과세 형평성 확보 및 조세회피 행위 규제, 정책수단의 역할 수행, 복잡다기화 되는 경제현상으로 비롯된다. 이에 대해 김완석, 2006.「조세법체계의 개편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5쪽 이하.

12) 이 사례들에 대해서는 법제처, 앞의 책, 33쪽 이하.

13) 소득세법 제55조.

14) ETF는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매매되는 펀드로 주식과 펀드의 성격 모두를 갖고 있는데, 과세관청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ETF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상장 ETF는 '해외주식'으로, 국내상장 ETF는 '펀드'로 취급하고 있다. 관련 해석으로 서면-2022-법규재산-5398, 2024. 06. 27.

금융소득의 합계가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되, 2천만 원까지는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초과액 중 일부는 배당세액공제를 위해 배당가산액(Gross－up)을 더하되 비교과세액을 최저한으로 두는 등 복잡한 규정이 적용된다.[15] 이러한 복잡성으로 인해 전문가가 아닌 일반 납세자가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해 부담해야 할 세액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마지막으로, ⅳ) 법조문 자체의 장황함도 세금 계산의 복잡성을 가중한다.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관련 법조문들은 조세회피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경우를 열거하고, 예외의 예외를 붙이다 보니 그 길이가 매우 길어졌다.[16] 또한, 세액 계산과정을 도표나 계산식이 아닌 서술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가독성이 떨어지고 이해하기 어려운 조문도 흔하다.[17]

한편, 신고 및 납부 과정의 복잡성도 우리나라 조세 제도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세금 신고는 법정 서식에 따라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신고서에 사용되는 용어가 전문적이고 어려워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들다.[18] 또한, 같은 종합소득세라 하더라도 소득 종류에 따라 신고 서식이 달라지며, 실제 작성례나 가이드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이다.[19] 더불어, 소득 종류별로 신고 기한이 다르고, 특정 상황에서는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를 다시 해야 하거나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가로 해야 하는 등 신고 절차가 복잡한데,[20] 이러한 절차를 놓친다면 납세자는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납세자들은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신고서 작성의 난해함, 이용절차와 방법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전자신고 과정에서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21]

---

15) 소득세법 제62조.

16) 상증세법은 새로운 형태의 편법 증여를 과세하기 위해 열거주의, 유형별 포괄주의,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입장을 취했었다.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개별증여의제 조항을 신설하는 식으로 대응하기도 하였으나 이로 인해 법률의 체계정합성이 떨어지고 불명확성이 가중되며, 위헌성이 높아졌다는 평가에 관한 문헌으로, 박성태. 박훈. “완전포괄주의의 한계에 대한 소고”. 조세와 법 제17권 제1호, 3쪽 이하.

17) 관련 기사로 “양도세 비과세 조항만 74개 … “국세청 직원도 이해하기 힘든 法 됐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2071083421 방문일자 : 2024. 09. 19.).

18) 관련 기사로 “양도소득세 간편 신고서, 진짜 간편하게 만들어봤습니다” (https://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95342 방문일자 : 2024. 09. 19.).

19)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20) 소득세법 제70조, 제73조, 제105조 및 제110조.

21) 관련 기사로 ““신고서 작성 어려워” 불만 사라질까 … 홈택스 대수술” (https://www.joseilbo.com/news/htmls/2022/07/20220722461438.html 방문일자 : 2024. 09. 20.).

〈표 1〉 내용적 조세 복잡성 대표 사례

구분	사례	구체적 내용
① 계산	종합소득세 세율 변경	세수확보 또는 세부담 완화 등을 근거로 최근 10년 간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이 5차례에 걸쳐 인상 및 인하를 반복하면서 계산의 복잡성이 증대됨
	금융상품별 과세체계 상이	경제적 실질이 같아도 금융상품별 과세여부 및 과세방법이 상이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을 왜곡함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도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되나, 2천만원까지는 14% 세율을 적용하고, 비교과세를 최저한으로 두고 있는 등 제도가 복잡하여 일반인은 계산이 어려움
	조세회피방지 규정의 난해함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은 조세회피 행위 규제를 위해 법률에 가능한 모든 경우를 열거하고 새로운 회피행위가 등장할 때마다 이를 추가하는 식으로 규정되어 조문이 길고 난해함
	흐름도, 도표, 산식의 부재	세법상 세액 계산과정이 글로만 기재되어 있어 조문이 장황해짐
② 신고 및 납부	신고서 작성의 복잡성	신고서 내 용어가 어렵고 작성례 또는 가이드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납세자가 도움 없이 신고서를 작성 및 신고하기가 상당히 어려움
	신고의 번거로움	소득 종류에 따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를 해야 하거나,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를 다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놓칠 시 가산세도 부담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존재함
	홈택스 사용의 어려움	홈택스(국세청이 제공하는 전자 세무 서비스)를 도입 및 시행 중이나, 제공 정보가 산만하고 메뉴 체계가 복잡하여 사용자 친화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음

본 연구는 자료의 제한으로 인하여 2017년 한정으로 납세자의 조세복잡성 인식이 납세 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지만, 2017년 이후로 최근까지 세금 계산 및 납부 절차는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과세 대상의 확대, 세율 인상 및 요건이 추가되는 등 간단해지기보다는 오히려 복잡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조세 투명성을 높이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도 분명 존재한다. 또 부동산 경기의 침체, 코로나-19, 저출산, 기후위기 등과 같은 복잡한 정책과 경제 현실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대응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변화는 납세자들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다양한 공제요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 정책적 목적이 우선시

되어 온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 새로운 세율 구간의 도입은 납세자들이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 상당한 혼란과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조세 복잡성은 납세자의 납세 부담을 가중시키고, 납세 순응도를 낮출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컨대 <표 2, 3>에서 보듯이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선 일정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는데,[22] 그 기간은 2017년 이후 2024년까지 총 5차례 개정되었다. 조정대상지역 또한 같은 기간 동안 16차례에 걸쳐 지정과 해제가 반복되었다. 이처럼 빈번한 개정으로 세법이 매우 복잡해졌으며, '양포세'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세무전문가조차 정확한 세액 계산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납부 절차 또한 연도별로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의 수가 늘었다 줄기를 반복하고 유형별로 <표 4>와 같이 안내문의 종류가 13가지에 달한다. 심지어 13가지 유형의 전달방법, 신고방법, 필요서류가 상이하여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 세무대리인으로서는 가장 적합한 세무신고를 해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지 않고 한 번에 위임받은 업무를 마무리해야 하지만, 종류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난해하여 정정해야 할 경우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보면, 조세 복잡성 및 납세자의 조세 복잡성 인식은 2017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해결해야 할 본질적인 과업인 것이다.

〈표 2〉 계산 복잡성 사례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 양도기한 요건 변경 연혁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아래의 기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기간	~'18.9.13.	~'19.12.16.	~'22.5.10.	~'23.1.12.	'23.1.13.~
양도기한	3년 이내	2년 이내*1	1년 이내*2,3	2년 이내	3년 이내

*1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9242호 제2조**
'18. 10. 23.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되, 조정대상지역에 종전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8. 9. 13. 이전 신규주택을 취득 또는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까지 지급한 경우는 종전 규정에 따름

*2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0395호 제15조**
'20. 2. 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되, 조정대상지역에 종전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9. 12. 16. 이전 신규주택을 취득 또는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까지 지급한 경우는 종전 규정에 따름

*3 **종전주택 1년 이내 양도 후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요건도 추가**

2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표 3〉 계산 복잡성 사례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 양도소득세 계산

甲은 ’18. 7. 1. 서울 용산구 소재 A아파트를 5억원에 취득 후 계속 거주하던 중, ’23. 1. 1. 서울 강남구 소재 B아파트를 10억원에 취득한 뒤, ’24. 1. 1. A아파트를 15억원에 양도함. (세대 내 다른 주택 및 기타 비용은 없다고 가정)

구분	가액	비고 (단위 : 원)
양도차익	1,000,000,000	15억 − 5억
과세대상 양도차익	200,000,000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
장기보유특별공제	80,000,000	거주 및 보유 각 5년 = (20% + 20%)
양도소득금액	120,000,000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1인당 연간 250만원 공제
과세표준	117,500,000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세율	35%	과세표준 8,800만 ~ 1억5천만 구간
산출세액	25,685,000	누진공제 1,544만

1단계. 일시적 2주택 요건 검토

① 종전주택(A아파트)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뒤 신규주택(B아파트)을 취득하였고, ②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였으므로 요건 충족

2단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검토

①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양도일 현재 1주택으로 간주하며, ②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으로 2년 이상이고, ③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용산구)이었으므로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5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요건 충족

3단계.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검토

① ’21.12.8. 이후 양도하는 고가주택은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며, ② ’21.1.1. 이후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각각 따로 적용

4단계.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당해 연도 중 부동산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 다음 해 5월 중 확정신고 및 납부를 추가로 해야 함

〈표 4〉 납부 복잡성 사례 :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동일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라고 할지라도, 소득종류, 소득의 크기 등에 따라 13가지의 유형으로 나뉘고 각 유형별로 기장의무, 신고서종류 및 신고방법 등이 상이함

안내문 유형	신고안내 대상	소득종류	기장의무	신고안내
(S)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사업소득	복식부기 /간편장부	홈택스/모바일
(A)	외부조정대상자	〃	복식부기	〃
(B)	자기조정대상자	〃	〃	〃
(C)	복식부기의무자 중 전년 복식부기의무 추계 신고자(무신고 간주자)	〃	〃	〃
(D)	간편장부대상자	〃	간편장부	〃
(E)	단순경비율 대상자(모두채움 제외)	〃	〃	〃
(F)	모두채움(단순경비율사업, 근로, 연금, 기타)	종합소득	〃	홈택스/서면
(G)	모두채움(단순경비율사업, 근로, 연금, 기타)	〃	〃	〃
주택임대 (V)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 모두 채움	사업소득 (부동산임대)	복식부기 /간편장부	홈택스/서면
(Q)	종교인기타소득만 있는 대상자 중 납부할 세액	종교인 기타소득	비사업자	〃
(R)	종교인기타소득만 있는 대상자 중 납부할 세액	〃	〃	〃
(T)	금융, 근로, 연금, 기타(종교인 기타* 포함) 소득 * 단일 종교인소득자(Q,R 제외)제외	종합소득	〃	홈택스/모바일
사전안내 (I)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	사업소득	복식부기 /간편장부	〃

Ⅲ. 선행연구 및 연구가설

조세 복잡성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연구는 대부분 조세 복잡성과 납세순응 간의 양의 관련성

의 존재 여부를 입증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Vogel(1974)는 세법의 복잡성이 납세순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즉, 세금 시스템의 복잡성이 납세자들이 세금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시스템이 복잡할수록 납세자들은 납세순응 과정에서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더 높으며, 이는 납세순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Charles(1983)는 세금 시스템의 복잡성 중 특히 세금 신고서의 복잡성이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관찰하였다. Milliron(1985) 또한 세금 신고의 복잡성이 신고 행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특히, 세금 신고의 복잡성이 형평성과 탈세 가능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납세자의 납세 행태가 달라짐을 관찰하였다. Jackson and Milliron(1986)은 세제의 복잡성이 높은 경우 납세자들의 납세순응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세제가 점점 복잡해짐에 따라 상반된 연구결과 또한 관찰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Richardson and Sawyer(2001)의 결론과도 같다. 다만, 이때까지는 주로 복잡성을 중심으로만 측정되었다. Karlinsky and Koch(1987)은 조세 전문가의 목적 달성에 세법 복잡성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고, Watanabe, Bean and Stolen(1987)은 세법 복잡성에 관하여 비교 실험하기 시작하였다.

Slemrod(1989)는 세제의 간소화가 납세순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세제 복잡성이 줄어들면 납세의무자들의 납세 순응도가 높아지며, 탈세 유인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Eichfelder et al.(2014)는 세금 복잡성은 납세의무자 대상별로 납세순응에 다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부담을 증가시킴을 발견하였다. Natrah(2014) 또한 세무 지식과 세무 복잡성은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소득세제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납세 순응도를 낮출 수 있음을 관찰하였다. Borrego et al.(2016)은 조세 복잡성에 미치는 요인을 입법적, 조세전문가, 조세행정의 3가지 분류로 그룹화 및 지수화하여 평가하였으며, 조세 복잡성은 조세 전문가로 하여금 의도치 않게 납세 순응도를 낮추거나 조세회피를 야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국내에서 실제 납세자의 인식을 일정 수치 이상 포함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조세 복잡성과 납세순응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연구자들이 조사한 범위 내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다. 대한상공회의소(2006)는 제조・건설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기업관련 법령의 복잡성 현황과 정책과제'를 수행한 바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업체의 52.3%가 현행법령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 관련해서는 34.4%가 '관련법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라고 응답하였다. 석기준 외(2009)는 조세전문가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계산과정의 항목별 복잡성 수준 및 복잡성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제도가 가장 복잡한 항목이었으며, 복잡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계산과정이라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문광

주(2008)는 부동산 양도인의 세제 복잡성 인식이 성실납세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발견하였다.[23] 한편, 김기성 외 (2014)는 지방세제의 복잡성과 납세순응 간의 음(−)의 관련성을 가설로 하였으나, 지방세제 복잡성이 지방세 납세순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관찰함으로써, 지방세제의 복잡성과 납세순응 간에는 관련성이 없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24]

이처럼, 국내외의 선행연구 조세 복잡성과 납세순응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일관적인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다수의 선행연구는 조세 복잡성과 납세순응 간의 양의 유의한 관련성이 존재한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납세자의 조세 복잡성 인식이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 납세자의 조세 복잡성 인식이 높을수록(낮을수록) 납세 순응도는 감소(증가)할 것이다.

Ⅳ. 표본 설정 및 연구모형

1. 표본 설정

〈표 5〉 Sample Selection

Description		Obs.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가구원 패널데이터 기초 표본 (2017년)		5,318
가구원별 연간 소득 총액에 결측치가 존재하는 경우	(−)	20
가구별 연간 총 소득금액에 결측치가 존재하는 경우	(−)	114
통제변수에 결측치가 존재하는 경우	(−)	263
Final sample		4,921

본 연구를 위해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KIPF NaSTaB :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database)상의 가구원 데이터를 통해 2017년 자료를 활용하여 표본을 설정하였다. 가구

23) 부동산 양도 관련 비과세제도의 지나친 세밀성과 부동산 양도 관련 세제의 복잡한 계산방법들은 성실납세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성실납세를 저해하는 중요한 변수라고 볼 수 있다.

24) 이와 유사하게, 홍성선(2015)은 납세자의 납세의지와 지방세 복잡성은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이는 연구의 대상자들을 주로 직장인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조세제도를 복잡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납세의지는 높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원 의식 조사에 실패한 경우와 가구원별 연간 결정세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 기초 표본 대상은 5,318명이었으며, 이 중 가구 및 가구원 연간 총 종합소득에 무응답이나 결측치가 존재하는 경우와 통제 변수 등에서 변수값에 결측치가 존재하는 경우를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선정된 최종 표본은 4,921명으로 나타났다.

2. 연구모형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한 연구모형은 다음 식 (1)으로 제시된다. 식 (1)은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모형이다(변수설명은 Appendix A를 참조).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Tax\,comply$'는 납세자의 납세 순응도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클수록 납세순응이 높다고 해석한다.

"C씨는 떡볶이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매출액을 계산한 결과 8천 만 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6천 만 원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발행을 통한 매출이었고, 2천 만 원은 별다른 증빙서류 없이 현금으로 거래된 매출이었습니다. C씨는 신용카드 등을 통한 매출액 전액은 국세청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질문] 귀하는 C씨가 증빙서류 없는 현금 소득 중 얼마의 금액을 국세청에 신고해야한다고 생각합니까?

① 현금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② 현금소득의 10%(200만 원) 정도
③ 현금소득의 20%(400만 원) 정도
④ 현금소득의 30%(600만 원) 정도
⑤ 현금소득의 40%(800만 원) 정도
⑥ 현금소득의 50%(1,000만 원) 정도
⑦ 현금소득의 60%(1,200만 원) 정도
⑧ 현금소득의 70%(1,400만 원) 정도
⑨ 현금소득의 80%(1,600만 원) 정도
⑩ 현금소득의 90%(1,800만 원) 정도
⑪ 현금소득 2천 만 원 전액

Equation (1)에서 관심변수 '$Tax\,comply$'는 우리나라 세금 계산 및 납부 절차에 대한 인식이 복잡하다고 인식하는 경우 '1', 아닌 경우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다. $Tax\,comply$의 계수값 β_1이 작을수록, 납세순응은 감소함을 의미한다.

[질문] 귀하는 우리나라의 세금 계산 및 납부 절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복잡한 편이다
② 대체로 복잡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간편한 편이다
⑤ 매우 간편한 편이다

Equation (1)

$$Tax\,comply = \alpha_0 + \beta_1 Tax\,complexity + \beta_2 PINC + \beta_3 ETR + \beta_4 HINC + \beta_5 GENDER + \beta_6 MARRY + \beta_7 EDU + \beta_8 AGE + \epsilon$$

본 연구의 가설검정을 위해, 선행연구를 고려하여 종속변수인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통계적 변수인 가구원별 연간 소득 총액(PINC), 가구원별 세부담(ETR), 가구별 연간 총 소득금액(HINC), 성별(GENDER), 결혼 여부(MARRY), 교육수준(EDU), 나이(AGE)를 통제하였다(Jackson and Milliron 1986).

Ⅴ. 실증분석 결과

1. 기술통계량

<표 6>은 연구모형에서 제시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나타낸다. PANEL A는 전체 표본 4,921개의 기술통계량 분석 결과를 제시한 것이며, PANEL B와 PANEL C는 각각 세금 계산 및 납부 절차에 대한 인식이 복잡하다고 인식하는 경우(Tax complexity (1))와 그렇지 않은 경우(Tax complexity (0))를 구분하여 기술통계량을 분석한 결과이다.[25] 모든 연속형 변수는 극단치가 연구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 각각 1%와 99% 수준에서 winsorization하였다.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PANEL A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평균 납세 순응도(TAX COMPLY)

25) 우리나라의 세금 계산 및 납부 절차에 대해 '매우 복잡한 편이다', '대체로 복잡한 편이다'라고 인식하는 경우 '1'의 값을 갖으며, '보통이다', '대체로 간편한 편이다', '매우 간편한 편이다'라고 인식하는 경우 '0'의 값을 갖는다.

는 6.06으로서, 응답자는 현금 소득 중 50.6% 정도를 국세청에 신고해야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 복잡성 인식(TAX COMPLEXITY)의 평균값은 0.50로 나타나서 응답자들의 절반이 세금 계산 및 납부 절차에 대한 인식이 복잡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가구원별 성별을 제시하는 GENDER 변수의 평균값은 0.57로 나타나, 응답자의 57% 정도가 여성, 43% 정도가 남성임을 추정할 수 있다. 가구원의 기혼여부를 나타내는 MARRY 변수의 평균값은 0.86으로서, 응답자의 86% 정도가 기혼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의 최종 교육수준을 나타내는 EDU 변수의 평균값은 4.04로 제시되어, 대다수의 가구원이 고등학교 수준의 교육을 받았음을 나타낸다.[26] 가구원의 나이를 나타내는 AGE 변수의 평균값은 55.69로 제시되었다.

PANEL B에서는 우리나라 세금 계산 및 납부 절차에 대해서 복잡하게 인식하는 집단의 기술통계량을 제시하고 있으며, 납세 순응도(TAX COMPLY)의 평균값은 5.95로 나타났다. PANEL C에서는 우리나라 세금 계산 및 납부 절차에 대해서 복잡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집단의 기술통계량을 나타내며, 납세 순응도(TAX COMPLY)의 평균값은 6.18로 제시되어 우리나라 세금 계산 및 납부 절차를 복잡하게 인식하는 집단의 납세 순응도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더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Descriptive Statistics

PANEL A : *Total Sample* (n=4,921)								
VARIABLES	N	Mean	S.D.	Min	p25	p50	p75	Max
TAX COMPLY	4921	6.06	4.09	1.00	2.00	6.00	11.00	11.00
TAX COMPLEXITY	4921	0.50	0.50	0.00	0.00	0.00	1.00	1.00
PINC	4921	6.996	0.973	4.697	6.284	7.291	7.783	8.987
ETR	4921	0.001	0.007	0.000	0.000	0.000	0.000	0.060
HINC	4921	8.025	0.859	5.886	7.474	8.083	8.672	9.776
GENDER	4921	0.57	0.50	0.00	0.00	1.00	1.00	1.00
MARRY	4921	0.86	0.35	0.00	1.00	1.00	1.00	1.00
EDU	4921	4.04	1.54	1.00	3.00	4.00	5.00	8.00
AGE	4921	55.69	16.86	23.00	43.00	55.00	69.00	89.00

26) EDU는 가구원의 최종 교육기관을 나타내며,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미취학 포함), '1', 최종 교육기관이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경우 '2', 중학교에 해당하는 경우 '3', 고등학교 해당하는 경우 '4', 대학교(4년제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5', 대학교(4년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6', 대학원 석사에 해당하는 경우 '7', 대학원 박사에 해당하는 경우 '8'의 값을 갖는다.

〈표 6〉 Descriptive Statistics (계속)

PANEL B : *TAX COMPLEXITY* (1) (n=2,454)								
VARIABLES	N	Mean	S.D.	Min	p25	p50	p75	Max
TAX COMPLY	2454	5.95	4.16	1.00	1.00	6.00	11.00	11.00
PINC	2454	6.997	0.992	4.697	6.284	7.313	7.783	8.987
ETR	2454	0.001	0.008	0.000	0.000	0.000	0.000	0.060
HINC	2454	8.026	0.861	5.886	7.478	8.108	8.670	9.776
GENDER	2454	0.56	0.50	0.00	0.00	1.00	1.00	1.00
MARRY	2454	0.87	0.33	0.00	1.00	1.00	1.00	1.00
EDU	2454	4.00	1.51	1.00	3.00	4.00	5.00	8.00
AGE	2454	55.84	16.46	23.00	44.00	55.00	69.00	89.00
PANEL C : *TAX COMPLEXITY* (0) (n=2,467)								
VARIABLES	N	Mean	S.D.	Min	p25	p50	p75	Max
TAX COMPLY	2467	6.18	4.01	1.00	2.00	6.00	11.00	11.00
PINC	2467	6.996	0.953	4.697	6.277	7.272	7.749	8.987
ETR	2467	0.001	0.007	0.000	0.000	0.000	0.000	0.060
HINC	2467	8.025	0.856	5.886	7.462	8.053	8.672	9.776
GENDER	2467	0.58	0.49	0.00	0.00	1.00	1.00	1.00
MARRY	2467	0.85	0.36	0.00	1.00	1.00	1.00	1.00
EDU	2467	4.09	1.56	1.00	3.00	4.00	6.00	8.00
AGE	2467	55.54	17.25	23.00	43.00	55.00	70.00	89.00

2. 상관관계분석

<표 7>은 본 연구에서의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상관관계 검증을 통해 제시한다. 납세순응도(Tax comply)와 조세 복잡성 인식 더미변수(Tax complexity)의 상관계수는 −0.028로서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성이 제시되었다. 위 결과는 납세자가 세금계산 및 납부 절차에 대해 복잡하게 인식할수록 납세 순응도가 낮아짐으로 해석될 수 있다. 납세 순응도(Tax comply)와 가구별 연간 총 소득금액(HINC)의 상관계수는 0.031로서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계수가 제시되었다. 위 결과는 가구별 연간 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납세 순응도는 더 높아짐으로 해석될 수 있다.

조세 복잡성 인식 더미 변수(Tax complexity)와 가구원의 기혼 여부를 나타내는 MARRY 변

수의 상관계수는 0.036으로서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계수가 제시되었다. 이는 납세자가 기혼 상태에 해당할수록 조세 복잡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세 복잡성 인식 더미 변수(Tax complexity)와 가구원의 최종 교육수준을 나타내는 EDU 변수의 상관계수는 −0.031로서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계수가 제시되었다. 위 결과는 납세자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우리나라 세금 계산 및 납부 절차를 더 복잡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 7〉 Correlation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 Tax comply	1.000								
(2) Tax complexity	−0.028**	1.000							
(3) PINC	0.002	0.000	1.000						
(4) ETR	−0.015	0.026*	0.249***	1.000					
(5) HINC	0.031**	0.001	0.549***	0.170***	1.000				
(6) GENDER	0.005	−0.016	−0.257***	−0.116***	0.016	1.000			
(7) MARRY	−0.015	0.036**	−0.163***	0.058***	−0.140***	0.053***	1.000		
(8) EDU	0.013	−0.031**	0.454***	0.090***	0.439***	−0.164***	−0.314***	1.000	
(9) AGE	−0.012	0.009	−0.468***	−0.017	−0.476***	−0.028**	0.561***	−0.653***	1.000

*** p<0.01, ** p<0.05, * p<0.1

3. 다변량 분석 결과

<표 8>은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Ordered probit model을 추정한 결과를 나타낸다. 납세자의 납세 순응도(Tax comply)에 영향을 미칠 유인이 존재하는 가구원별 연간 소득 총액(PINC)과 가구원별 세부담(ETR), 가구별 연간 총 소득금액(HINC), 성별(GENDER), 결혼 여부(MARRY), 교육수준(EDU), 나이(AGE)를 통제하였다. 종속변수인 납세 순응도(Tax comply)의 경우, 증빙서류 없는 현금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1’, 현금소득의 10%(200만원) 정도를 국세청에 신고해야한다고 생각하면, ‘2’ 현금소득의 20%(400만원) 정도를 국세청에 신고해야한다고 생각하면, ‘3’, 현금소득의 30%(600만원) 정도를 국세청에 신고해야한다고 생각하면, ‘4’, 현금소득의 40%(800만원) 정도를 국세청에 신고해야한다고 생각하면, ‘5’, 현금소득의 50%(1,000만원) 정도를 국세청에 신고해야한다고 생각하면, ‘6’, 현금소득의

60%(1,200만원) 정도를 국세청에 신고해야한다고 생각하면 '7', 현금소득의 70%(1,400만원) 정도를 국세청에 신고해야한다고 생각하면, '8', 현금소득의 80%(1,600만원) 정도를 국세청에 신고해야한다고 생각하면, '9', 현금소득의 90%(1,800만원) 정도를 국세청에 신고해야한다고 생각하면, '10', 현금소득 2천만원 전액을 국세청에 신고해야한다고 생각하면, '11'의 값과 같은 순서형 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독립변수가 지시변수로서 종속변수와의 선형 관계를 가정하기 어렵고, 종속변수가 순서형 변수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선형 회귀 모형인 OLS회귀식과 달리 순서형 프로빗 모형(ordered probit model)을 이용하였다.

〈표 8〉 Ordered probit regression analysis

Model (1) The Effect of Taxpayer's Perceived Tax complexity on Tax compliance		
VARIABLES	Predic. Sign	(1) dep. *Tax comply*
Tax complexity	−	**−0.082***** **(−2.64)**
Controls		
PINC		−0.018 (−0.84)
ETR		−1.536 (−0.70)
HINC		0.058** (2.49)
GENDER		0.003 (0.08)
MARRY		−0.029 (−0.53)
EDU		0.015 (1.04)
AGE		0.001 (0.50)
Pseudo R^2		0.0009
Observation		4,921

*** p<0.01, ** p<0.05, * p<0.1, z−statistics in parentheses
<Table 4> reports the Ordered probit regression results for Equation (1)
See <Appendix A> on the definitions of the variables.

연구 모형 (1)에서의 독립변수는 조세 복잡성(Tax complexity)이다. 세금 계산 및 납부 절차가 복잡해질수록 납세자는 세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세금을 신고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이러한 시간과 노력은 납세자 입장에서 일종의 비용으로 인식된다. 또한, 복잡한 세금 절차는 납세자가 실수를 유발하거나 세금을 잘못 신고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납세자의 납세 순응도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Vogel 1974 ; Charles 1983 ; Valerie 1985 ; Jackson and Milliron 1986 ; Slemrod 1989 ; Eichfelder et al. 2014 ; Natrah 2014 ; Borrego et al. 2016), 계수값을 음(−)의 방향으로 예상하였다. <표 8>에서 나타나는 Model (1)의 회귀분석결과, Tax complexity 변수의 경우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계수값(−0.082)가 나타났다. 연구 모형 (1)의 분석결과는 납세자가 우리나라 세금 계산 및 절차의 복잡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납세 순응도가 감소함을 나타내는 결과로서 연구 가설 (1)을 지지하는 결과로서 해석된다.

4. 강건성 검증 결과

<표 9>에서는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 PSM)과 엔트로피 균형(Entropy balancing) 방법을 통해 세금 계산 및 납부 절차를 복잡하다고 인식하는 집단과 가구원별 연간 소득 총액(PINC), 가구원별 세부담(ETR), 가구별 연간 총 소득금액(HINC), 성별(GENDER), 결혼 여부(MARRY), 교육수준(EDU), 나이(AGE)가 유사한 통제집단을 구성하여, 납세자의 납세 순응도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PANEL A>는 PSM 비복원 추출방법으로 통제 집단을 구성한 경우의 결과를 나타낸다. 분석결과, 조세 복잡성 인식 더미(Tax complexity)의 경우, 1% 유의수준에서 −0.082의 음(−)의 계수값이 제시되었다. <PANEL B>에서는 PSM 최근접 이웃매칭(Nearest neighbor matching)으로 통제집단을 구성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조세 복잡성 인식 더미(Tax complexity)의 경우, 5% 유의수준에서 −0.067의 음(−)의 계수값이 제시되었다. <PANEL C>에서는 엔트로피 균형(Entropy balancing)방법을 통해 통제집단을 구성한 결과를 나타낸다. 분석결과, 조세 복잡성 인식 더미(Tax complexity)의 경우, 1% 유의수준에서 −0.083의 음(−)의 계수값이 제시되었다.

위 결과를 종합해보면, 납세자가 우리나라 세금 계산 및 절차의 복잡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납세 순응도가 감소함을 나타냄으로써, <표 8>의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로서 해석된다.

〈표 9〉 Robustness test using different sampling methods

Model (1) The Effect of Taxpayer's Perceived Tax complexity on Tax compliance		
Panel A : Robustness test using PSM without replacement		
VARIABLES	Predic. Sign	(1) dep. *Tax comply*
Tax complexity	−	**−0.082***** **(−2.63)**
Controls		
PINC		−0.018 (−0.84)
ETR		−1.519 (−0.70)
HINC		0.056** (2.41)
GENDER		0.002 (0.07)
MARRY		−0.025 (−0.45)
EDU		0.015 (1.08)
AGE		0.001 (0.50)
Pseudo R^2		0.0009
Observation		4,908
Panel B : Robustness test using PSM with nearest neighbor (3)		
VARIABLES	Predic. Sign	(1) dep. *Tax comply*
Tax complexity	−	**−0.067**** **(−2.14)**
Controls		
PINC		−0.027 (−1.20)
ETR		−1.524 (−0.71)

〈표 9〉 Robustness test using different sampling methods (계속)

VARIABLES	Predic. Sign	(1) dep. *Tax comply*
HINC		0.065***
		(2.71)
GENDER		0.015
		(0.42)
MARRY		−0.018
		(−0.32)
EDU		0.018
		(1.23)
AGE		0.001
		(0.41)
Pseudo R^2		0.0009
Observation		4,719
Panel C : Robustness test using Entropy Balancing		
VARIABLES	Predic. Sign	(1) dep. *Tax comply*
Tax complexity	−	**−0.083***** **(−2.69)**
Controls		
PINC		−0.022
		(−1.00)
ETR		−1.375
		(−0.68)
HINC		0.058**
		(2.47)
GENDER		0.000
		(0.00)
MARRY		−0.016
		(−0.29)
EDU		0.014
		(1.02)

〈표 9〉 Robustness test using different sampling methods (계속)

VARIABLES	Predic. Sign	(1) dep. *Tax comply*
AGE		0.000
		(0.32)
Pseudo R^2		0.0009
Observation		4,921

*** p<0.01, ** p<0.05, * p<0.1, z-statistics in parentheses
<Table 4> reports the Ordered probit regression results for Equation (1)
See <Appendix A> on the definitions of the variables.

Ⅵ. 정책적 제언점 및 결론

실증분석 결과, 납세자가 조세를 복잡하다고 인식할수록 납세 순응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납세 순응 감소는 국가의 재정 행위에 관한 목적 달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납세 순응을 높이기 위해 조세의 복잡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빈번한 세법 개정은 납세자의 이해를 어렵게 만들고 예측가능성을 낮추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법 개정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세법 개정은 행정부가 주도하는 정부입법 형태로 진행되므로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27] 따라서 일관된 방향의 세제 개편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아닌 공무원, 학계, 실무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이뤄진 상설기구를 설치 및 전담하게 하거나, 객관성과 중립성이 담보된 입법부 내 입법지원기관을 개정 작업에 참여시키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정치·경제 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세법 분야는 별도의 기관 설립을 통해 복잡성과 같은 입법적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한편,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현상과 갈수록 고도화, 지능화되는 조세회피행위를 구체적 입법을 통해 과세 또는 규제하려는 과정에서 조문이 장황해지고 복잡해졌으므로, 포괄주의 세제를

27) 이는 조세 영역이 경제현실이나 전문적인 기술의 발달을 법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커서 국회가 제정한 법률보다 개정이 용이한 행정입법이 다수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같은 견해로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9헌바92 결정 등 ; 한편, 국회의원이 공천을 받기 위해 발의하는 의원입법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는 의원입법 발의 건수를 성과지표로 활용하는 경향 때문이라는 평가가 있다(음선필, 2012).

도입하는 방안도 복잡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이때의 포괄주의 세제는 무조건적인 과세 제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자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하는 한도 내의 의미이다. 특히 새로운 거래구조 및 상품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금융세제에 있어서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거나, 금융소득과 비금융소득을 구분하여 과세하는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이미 제안된 바 있다.[28] 또한, 다른 법과 구분되는 세법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관규정을 도입하거나, 법조문에 흐름도나 도표, 산식 등을 사용하여 계산과정을 시각화하는 것, 장황한 조문을 내용별로 세분화하는 것 등 또한 조세 복잡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29]

이와 관련하여, 과거 세법 조문의 개정 사례 중 참고할 만한 대표적인 사례를 <표 10, 11, 12, 13>에 제시하였다. 먼저, <표 10>은 양도소득세 개관규정 도입 전과 후를 비교한 사례이다.[30] 개관규정 도입 전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과정에 대하여 병렬적으로 서술하였지만, 도입 후에는 같은 항(項)에서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을 양도차익, 양도소득금액과 같이 세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호(號)별로 순차 서술하고 있어 양도소득세 계산 내용과 절차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표 10>과 유사하게, <표 11>도 마찬가지로 중간예납 조문의 개괄규정 도입 전·후 비교 사례를 제시한다. 세법 조문의 개괄규정 도입 전에는 내국법인의 중간예납의무와 관련하여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법인과 중간예납기간, 납부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단순 나열식의 장문으로 기술하였으나, 도입 후에는 중간예납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단문을 사용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표 12>에서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도표 도입 전과 후를 비교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세법 조문 내 도표 도입 전에는 피출자법인의 구분 및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과 익금불산입률에 대한 내용을 서술식 장문으로 기술하였지만, 도입 후에는 이를 도표화하여 유형별 불산입률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 도표 도입 사례에 더해, <표 13>에서는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식 도입 전과 후를 비교한 가상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계산식 도입 전에는 감가상각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시인부족액에 대한 계산

---

28) 보다 상세한 우리나라의 금융상품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에 관해서는 홍범교, 이상엽. 2013.「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9) 관련 보도자료로 “알기 쉽게 새로 쓴 소득세법, 법인세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1=MOSF_00000000001572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 방문일자 : 2024. 09. 21.).

30) 기획재정부에서 보도한 2023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2023)에 따르면, 일반 국민이 세금에 대해 최소한 개략적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세금 계산구조 및 관련 조문을 설명하는 것은 ‘개관’규정이고, 한 제도 내에 여러 세부 유형 존재 시, 세부 유형 제목 및 핵심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개괄’규정이라고 명칭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2023.「2023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43쪽.

구조를 지나치게 긴 문장으로 기술한 반면, 계산식 도입 후에는 감가상각비 계산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동시에 납세자의 세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납세자 교육을 활성화하거나, 신고서식의 간소화 및 충분한 설명 또는 예시자료 제공, UI/UX[31] 개편을 통한 사용자 친화적인 전자세정 도입 등의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Appendix B 참고).

마지막으로 이제까지 본 연구에서 제안한 사항은 헌법 원칙인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를 준수해야 함은 당연한 부분이다.[32] 본 연구에서는 조세 복잡성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 14>와 같이 조세의 성격에 부합하는 체크리스트를 제안한다. 이로써 조세법 영역에서 법률개정으로 인한 납세 순응도를 줄이는 한편, 복잡성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의 문제가 해소되길 바란다.

〈표 10〉 세법 조문의 개관규정 도입 전・후 비교[33]

도입 전	도입 후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100조부터 제102조까지 및 제118조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1. 양도차익 :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 2. 양도소득금액 : 제1호의 양도차익(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 3.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2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 ③ 양도소득세액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31) UI(User Interface)는 사용자가 공공 웹・앱 서비스를 접하는 화면배치, 구성요소 등을 의미하고 UX(User eXperience)는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전반에 대해 느끼는 반응, 감정과 같은 총체적인 경험을 의미한다.

32) 법제처. 2023.「법령입안심사기준」; 위 책 361쪽 이하에서 조세법의 특성에 부합한 심사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33) 소득세법 제92조 참조.

〈표 10〉 세법 조문의 개관규정 도입 전·후 비교 (계속)

도입 전	도입 후
	1. 양도소득 산출세액 :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2. 양도소득 결정세액 : 제1호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제90조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계산 3. 양도소득 총결정세액 : 제2호의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제114조의2,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

〈표 11〉 세법 조문의 개괄규정 도입 전·후 비교[34)]

도입 전	도입 후
① 내국법인(「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제외한다)으로서 각 사업연도(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는 제외한다)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中間豫納期間)으로 하여 그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는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	①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한다) 중 중간예납기간(中間豫納期間)에 대한 법인세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34) 법인세법 제63조 참조.

〈표 11〉 세법 조문의 개괄규정 도입 전·후 비교 (계속)

도입 전	도입 후
여 계산한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그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법인은 제외한다)이거나 그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인 경우와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마. 「초·중등교육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2.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② 제1항의 중간예납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간예납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내국법인이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64조 제2항을 준용하여 분납할 수 있다.

〈표 12〉 세법 조문의 시각적 기법 : 도표 도입 전·후 비교[35]

도입 전	도입 후
①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	①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피출자법인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피출자법인의 구분 /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 익금불산입률 가.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 100퍼센트 / 100퍼센트 3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미만 / 50퍼센트 30퍼센트 이하 / 30퍼센트

35) 舊 법인세법 제18조의2조(법률 제16008호) 참조.

〈표 12〉 세법 조문의 시각적 기법 : 도표 도입 전・후 비교 (계속)

도입 전	도입 후
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table><tr><td rowspan="3">나.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td><td>100퍼센트</td><td>100퍼센트</td></tr><tr><td>5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미만</td><td>50퍼센트</td></tr><tr><td>50퍼센트 이하</td><td>30퍼센트</td></tr></table>

〈표 13〉 세법 조문의 시각적 기법 : 계산식 도입 전・후 비교[36]

도입 전	도입 후
⑦ 감가상각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 전체의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에 양도부분의 가액이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전체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⑦ 감가상각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A \times \frac{B}{C}$$ A: 감가상각자산 전체의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 B: 양도자산가액 C: 전체자산가액

〈표 14〉 조세법령 입안 체크리스트

항목	여부	참고사항
1. 개관규정이 있는 지		
2. 불확정개념을 활용하였는 지		* 소득세법 부당행위계산 규정
2－1. 사용하였다면, 불확정개념이 하위법령으로 불명확성이 해소되는 지		
3. 진정소급입법인지		* 헌법재판소 2014. 7. 24. 선고 2012헌바105 결정
3－1. 부진정소급입법이더라도 경과규정이 있는지		
4. 위임입법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과 인용 관계가 명확한지		* 국세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개별세법에서 국세기본법 특례규정 신설 불가함 * 법령간의 관계가 명확하도록 해야 함

36) 법제처에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정보를 이용할 때 국민의 이해도와 편의성을 높이고자 그림・사진・절차도・관계도・표 및 계산식과 같은 시각적인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이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해당 조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참조.

〈표 14〉 조세법령 입안 체크리스트 (계속)

항목	여부	참고사항
5. 조세감면의 우대조치 등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규정이 아닌지		* 헌법재판소 1996. 6. 26. 선고 93헌바2 결정
6. 계산, 납부 절차와 관련한 조항인지		
6－1. 산식, 그림, 표를 비롯한 시각적 기법 활용이 가능한지		
7. 법문이 단문인지		
8. 해당 조항이 헌법재판 등으로 다툼의 대상이 된 적이 있는지		

참고문헌

권영모. 송복천. 2002. “세법 복잡성 인식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영교육논총 제25집 : 15－29.

김기성. 김종순. 홍근석. 2014. “지방세 납세순응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부산광역시 납세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제28권 제4호 : 391－416.

김완석. 2006.「조세법체계의 개편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김재윤. 2017. “법률의 총량 및 복잡성 증대 추세 분석”. 입법과 정책 제9권 제1호 : 5－29.

김하열. 2022.「헌법강의」(제4판). 박영사.

대한상공회의소. 2006. “기업관련 법령의 복잡성 현황과 정책과제 실태조사”. https://www.korcham.net/nCham/Service/Economy/appl/KcciReportDetail.asp?SEQ_NO_C010=20060118006&CHAM_CD=B001

문광주. 2008. “부동산양도인의 세제인지도가 성실납세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성태. 박훈. 2024. “완전포괄주의의 한계에 대한 소고”. 조세와 법 제17권 제1호 : 1－51.

법제처. 2023.「법령입안심사기준」

법제처. 2023.「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열번째판－」

석기준. 박삼식. 김진태. 김병기. 2009. “조세전문가의 양도소득세법 복잡성 인식에 관한 연구”. 세무회계연구 제25권 : 17－38.

음선필. 2012. “국회 입법과정의 분석과 개선방안 －제18대 국회를 중심으로－”. 홍익법학 제13권 제2호 : 131－175.

이태로. 한만수. 2020.「조세법강의」(신정14판). 박영사.

홍범교. 이상엽. 2013.「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홍성선. 2015. “지방세체납경험자의 납세의식제고방안”. 지방세논집 제2권 제1호 : 85－106.

황진영. 2007.「세법체계 개편작업의 동향분석」. 국회예산정책처.

A.C. Borrego, C.M.M. Lopes, C.M.S. Ferreira. 2016. Tax complexity indices and their relation with tax noncompliance : Empirical evidence from the Portuguese tax professionals. *Tékhne* 14(1) : 20－30.

Alm, J., and Torgler, B. 2006. Culture differences and tax morale in the United States and in Europe.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7(2) : 224－246.

Charles Clotfelter. 1983. Tax Evasion and Tax Rates : An Analysis of Individual Return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5(3) : 363－373.

Conseil d’Etat. 2006. Sécurité juridique et complexité du droit. Rapport public 2006 : 1－4.

Eichfelder, Sebastian and Vaillancourt, François. 2014. Tax Compliance Costs : A Review of Cost Burdens and Cost Structures. Available at SSRN : https://ssrn.com/abstract=2535664 or http://dx.doi.org/10.2139/ssrn.2535664

Erard, B., & Ho, C.－C. 2001. Searching for Ghosts : Who Are the Nonfilers and How Much Tax Do They Owe?.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1(1) : 25－50.

Jackson, B. R., and V. C. Milliron. 1986. Tax Compliance Research : Findings, problems, and prospects. *Journal of Accounting Literature* 5 : 125.

Karlinsky, S. S., & Koch, B. S. 1987. Impact of Tax Law Complexity on Professionals.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9(1) : 24－34.

Milliron, V. C. 1985. A Behavioral Study of the Meaning and Influence of Tax Complexity.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3(2) : 794－816.

Natrah Saad. 2014. Tax Knowledge, Tax Complexity and Tax Compliance : Taxpayers' View. *Procedia －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109 : 1069－1075.

Office of the Parliamentary Counsel. 2013. When Laws Become Too Complex －A review into the causes of complex legislation－. Office of the Parliamentary Counsel Cabinet Office : 1－33.

Richardson, M., & Sawyer, A. J. 2001. A taxonomy of the tax compliance literature : Further findings, problems and prospects. *Austl. Tax F.* : 16 : 137.

Slemrod, J. 1989. The Return To Tax Simplification : an Econometric Analysis. *Public Finance Quarterly* 17(1) : 3－27.

Slemrod, J. 2007. Cheating ourselves : The economics of tax evas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1(1) : 25－48.

Smith, A. 1776.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 Volume One. *London : printed for W. Strahan ; and T. Cadell* : 6－17.

Vogel, J. 1974. Taxation and public opinion in Sweden : An interpretation of recent survey data. *National Tax Journal* 27(4) : 499－513.

Watanabe, J. E., Virginia, L. B., & Stolen, J. D. 1987. An Empirical Study of Complexity Experienced by Taxpayers. *Advances in Taxation*, 1 : 153－168.

<Appendix A> : The definitions of variables

Tax comply =As dependent variable, An indicator of the taxpayers' perception of tax compliance, takes a value of '1' if tax payers think that don't have to report cash income without documentation to the National Tax Service, '2' if think that should report 10% of cash income (KRW 2 million) to the National Tax Service, '3' if think that should report 20% of cash income (KRW 4 million) to the National Tax Service, '4' if think that should report 30% of cash income (KRW 6 million) to the National Tax Service, '5' if think that should report 40% of cash income (KRW 8 million) to the National Tax Service, '6' if think that should report 50% of your cash income (KRW 10 million) to the National Tax Service, '7' if think that should report 60% of your cash income (KRW 12 million) to the National Tax Service, '8' if think that should report 70% of your cash income (KRW 14 million) to the National Tax Service, '9' if think that should report 80% of your cash income (KRW 16 million) to the National Tax Service, '10' if think that should report 90% of your cash income (KRW 18 million) to the National Tax Service, '11' if think that should report the entire cash income(KRW 20 million) to the National Tax Service.

Tax complexity =As independent variable, An indicator of the taxpayers' perception of tax complexity, takes a value of '1' if taxpayers perceive the process of calculating and paying taxes to be complicated, and '0' otherwise.

PINC =The natural logarithm of Household members' total annual income.

ETR =As an indicator of tax rate by household member, the determined tax amount on annual total income by household member divided by the total annual total income by household member.

HINC =The natural logarithm of Household's total annual income.

GENDER =A dummy variable with a value of '1' if the household member is female and '0' if the household member is not female.

MARRY =A dummy variable that is '1' if the household member is married and '0' if the household member is not married.

EDU =As a variable representing the educational level of household members, '1' for no education (including preschool), '2' for elementary school, '3' for middle school, '4' for high school, '4' for university (less than 4－year university) A continuous variable of '5', '6' for university (four－year university or higher), '7' for graduate master's degree, and '8' for graduate doctoral degree.

AGE =The natural logarithm of Household member age.

〈Appendix B〉 : 납세자 친화적 변경 전·후의 홈택스 비교[37]

(변경 전)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한 메뉴를 제공하여 메뉴가 너무 많고 복잡함

| 납세자 맞춤형 메뉴(개인납세자 예시) |



(변경 후) 납세자 유형별(개인, 대리인, 사업자 등) 사용 가능한 메뉴만 보이게끔 간소화

37) 국세청. 2023.『홈택스,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로 새롭게 선보입니다!』(https://in.nts.go.kr/kimpo/na/ntt/selectNttInfo.do?nttSn=1326560&mi=2201 방문일자 : 2024. 09. 15.).

The Study on the Impact of Perceived Tax Complexity on Tax Compliance

Sung-Tae Park · Sang-Hoon Jeong · Hye-Yeong Lee

<Abstract>

Recently, the media has reported on the so-called “yang-po-se”, a term that refers to the reluctance of tax professionals to accept transfer taxes because the calculation of transfer tax is too complicated. This demonstrates that despite the inherent complexity of tax laws, which reflects the diversity of economic life and interests, they can be so complex that even tax professionals are unable to interpret them in practice. In turn, this complexity can lead to a lack of predictability and trust for taxpayers.

To address these issues,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perceived tax complexity on taxpayer compliance. We also provide examples of complexity in the actual tax calculation and payment process and explore legislative and policy solutions.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examined complexity perceptions using limited samples,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taxpayers’ tax complexity perceptions on tax compliance using 4,921 samples from th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ax compliance decreases as taxpayers perceive the tax calculation and payment process to be more complex. This statistically indicates that tax complexity, which is not only the formal complexity of the tax law itself, but also issues such as frequent amendments to reflect rapidly changing economic conditions, ultimately leads to taxpayer non-compliance.

By analyzing the impact of tax complexity on taxpayer compliance, this study makes a legislative policy contribution in that it suggests the need for a buffer to reduce complexity when amending tax laws.

<Key words> tax complexity, tax compliance, predictability, tax calculation, tax payment process

ESG 등급 상승이 조세회피를 억제하는가?

- 감사보수 증가 또는 감사시간 증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박 종 일 · 이 윤 정
(충북대학교) (충북대학교)

ESG 등급 상승이 조세회피를 억제하는가?*

- 감사보수 증가 또는 감사시간 증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박종일** · 이윤정***

〈요 약〉

본 연구는 ESG 평가등급의 변화와 조세회피의 관계, 또한 ESG 등급 변화와 조세회피의 관계에 조절효과로서 감사노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한국ESG기준원에서 제공하는 ESG 자료를 이용하고, 종속변수로 네 개의 조세회피 측정치를, 감사노력의 대용치로는 감사보수의 증가 또는 감사시간의 증가를 이용하였다. 분석기간 2012년부터 2023년까지 ESG 자료가 존재하는 상장기업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ESG 수준과 조세회피는 대체로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ESG 변동은 조세회피에 대해 유의미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지시변수를 이용하면 ESG 변동이 증가한 경우보다 감소한 경우에서 주로 조세회피와 양(+)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이는 ESG 등급이 감소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조세회피 성향이 높음을 나타낸다. 둘째, ESG 변동과 조세회피의 관계는 감사보수가 증가할수록 유의하게 음(−)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이는 ESG 등급이 전기보다 상승하고 감사인의 감사보수가 증가할수록 조세회피 성향이 낮아짐을 나타낸다. 또한 앞서의 결과는 Big 4 회계법인에게 감사받은 경우, 코로나19 이후 및 재무분석가가 존재하는 기업에서 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인의 감사시간이 증가한 경우에도 ESG 변동과 조세회피 간에 음(−)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감사인의 경제적 동기인 감사보수가 증가하거나, 감사노력이 증가할수록 ESG 등급 변화와 조세회피의 관계에 긍정적인 조절효과로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상의 본 연구의 발견은 ESG 등급 변화와 조세회피의 관계에서 감사인의 감사보수 및 시간의 증가가 조세회피 억제에 중요한 조절효과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학계에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뿐 아니라, 향후 재무제표에 ESG와 관련한 공시에 관심이 있는 규제당국이나 정책입안자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주제어〉 ESG 등급 변화, ESG 수준, 조세회피, 감사노력, 감사보수의 증가, 감사시간의 증가, 조절효과

* 본 논문은 2024년 한국세무학회 세무연구지원사업으로 연구되었음.
** 충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parkjil@chungbuk.ac.kr, 주저자
*** 충북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박사, ckoz17@naver.com, 교신저자

Ⅰ. 서 론

본 연구는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평가등급의 변화가 조세회피 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또한 ESG 등급 변화와 조세회피의 관계에서 외부감시주체인 감사인의 감사노력이 증가할 때 긍정적인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의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는 데 있다. 특히 ESG 수준과 조세회피의 관계를 분석한 과거 연구들(Yoon et al. 2021 ; Jiang et al. 2024 ; 정현아 · 유순미 2021 ; 김용기 외 2022 ; 박종일 · 이윤정 2022 ; 신영효 2022)의 접근방법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ESG 수준보다는 ESG 등급 변화에 초점을 두고 조세회피 수준과의 관계를 알아본다. 구체적으로, 전년보다 ESG 등급이 상승한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이 더 낮은지, 아니면 높은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ESG 등급 변화와 기업의 조세회피와의 관계가 감사인의 감사노력이 증가할 때 긍정적인 조절효과의 역할(moderating role)을 하는지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1)]

세무학 또는 세무연구 분야에서 경영자의 조세회피(tax avoidance)[2)] 행위는 그동안 학계뿐만 아니라, 실무계의 과세당국 그리고 투자자 측면에서도 부정적 영향(negative effect)을 초래할 수 있다는 관점의 논의들이 다루어졌다(Hanlon and Slemrod 2009 ; Kim et al. 2011 ; Donohoe and Knechel 2014 ; Balakrishnan et al. 2019 등).[3)] 이처럼 학술적으로 세무연구 분야 중 연구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과 분석 대상으로 삼은 주제가 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을 알아보는 것이다.

---

1) 본 연구에서는 감사노력(audit effort)의 대용치로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자료를 이용한다. 학계나 실무계에서는 감사보수가 증가하거나 감사시간이 증가하면 감사인의 감사노력이 증가하여 감사품질이 향상되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 따라서는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을 감사노력의 대용치로 보는 연구들도 있다(안종훈 · 최수미 2023 ; 박종일 · 이윤정 2024). 그러한 점에서 앞서의 선행연구들의 기술방법과 유사하게, 본 연구는 기술의 편의상 감사보수의 증가 또는 감사시간의 증가를 모두 감사노력으로 지칭하여 설명한다.

2) Hanlon and Heitzman(2010)의 연구는 그동안의 세무연구 주제를 검토하면서 조세회피의 정의를 세금비용(tax costs)을 줄이는 일련의 기업행위로 보는 포괄적인 측면에서 다루었다.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국내 선행연구들은 기업의 조세회피를 명시적(explicit) 조세를 낮추는 모든 행위로 정의한다(기은선 2012 ; 강정연 · 고종권 2014 등).

3) 예를 들어, Hanlon and Slemrod(2009)는 조세피난처거래로 발생한 기업의 뉴스는 주식시장의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Kim et al.(2011)은 기업의 조세회피가 증가할수록 차기의 주가폭락 위험이 높고, Hasan et al.(2014)과 김은주 · 조용언(2012)은 조세회피는 기업의 차입이자율을 증가시킴을 보고하였다. 또한 Donohoe and Knechel(2014)과 박종일 · 지승민(2016)은 조세회피는 감사인의 감사위험을 높여 감사보수를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Balakrishnan et al.(2019)은 기업의 공격적인 조세회피 활동이 높은 기업일수록 재무분석가들의 이익예측의 정확성을 낮고, 기업투명성이 낮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기업의 조세회피행위는 주주(투자자) 측면에서 대리비용(agency costs) 문제를 발생시킨다. Slemrod(2004)와 Desai and Dharmapala(2006)는 소유와 경영이 잘 분리된 현재와 같은 상장기업들에서는 정보비대칭 문제가 심화되어 있을 때 경영자는 자신의 효익을 위해 주주 부의 극대화와는 일치하지 않는 기회주의적 행동이나 사적편익 추구활동을 할 수 있기에 기업에서의 조세회피는 주주가치와 대리 비용 측면에서 상충(trade off) 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기업의 조세회피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대리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경영자의 조세회피행위가 내부현금창출에 기여할 수도 있으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대리비용 문제를 발생시켜 기업의 비세금비용(nontax costs)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 중 강정연・고종권(2014)의 연구는 조세회피와 기업가치는 음(−)의 관계로 나타나며, 저자들은 이에 대해 대리인 관점에서 조세회피에 따른 세금절감 효과보다 비세금비용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기 때문에 조세회피는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는 경영자의 조세회피행위가 기업가치를 창출한다기보다 기업가치를 오히려 파괴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앞서의 선행연구는 조세회피와 기업가치 간에 음(−)의 관계는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할 때 완화되었다. 이는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행위의 부정적인 효과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우수한 기업지배구조는 경영자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와 통제기능을 통해 조세회피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역할을 하여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계를 개선시키는 효과로 작동할 수 있다(강정연・고종권 2014). 또한 김진수・김임현(2016)의 연구는 조세회피와 정보비대칭은 양(+)의 관계로 나타나며, 이에 대해 저자들은 경영자의 적극적인 조세회피 전략이 기업의 복잡성을 증가시켜 기업과 투자자 사이에 정보비대칭을 높이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앞서의 선행연구는 대형회계법인이 감사하거나 재무분석가 수가 많은 기업은 조세회피와 정보비대칭 간에 양(+)의 관계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실증적 증거에 기초해 볼 때, 기업의 내부지배구조뿐 아니라 외부지배구조에 해당하는 외부감시주체(예로, 감사인, 재무분석가, 기관투자자 등)의 통제메커니즘이 경영자의 조세회피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들어 ESG 경영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측면에서 부각되면서 기업의 내부지배구조에 해당하는 ESG와 조세회피의 관계를 살펴본 실증적 연구가 하나의 연구주제로 학계에 등장했다(Yoon et al. 2021 ; Duong and Huang 2022 ; Jiang et al. 2024 ; 정현아・유순미 2021 ; 김용기 외 2022 ; 박종일・이윤정 2022, 2024 ; 신영효 2022). 이들 선행연구는 ESG 등급이 높을 때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이 낮은지, 또는 높은지에 초점이 있다. 이러한 데에는 ESG 경영이 환경경영, 사회적책임경영 및 기업지배구조를 포함한 기업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대한 통합된 지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ESG 등

급이 높은 기업은 미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경제적 성과와 기업가치가 높고, 회계정보의 질이 우수하며, 감사품질이 높고 조세회피의 성향은 낮을 것으로 학계의 연구자들은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한종수 외 2021).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국내 회계학 연구를 검토한 한종수 외(2021)는 앞서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기대와 관련하여 나타난 결과들은 일관된 측면보다는 기업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국내 문헌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ESG와 조세회피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 역시 그 결과 측면에서 혼재된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Yoon et al.(2021), Jiang et al.(2024), Pantazi(2024) 및 김용기 외(2022)의 연구는 ESG와 조세회피 간에 음(−)의 관계를 보고한 반면, Duong and Huang (2022), 정현아・유순미(2021) 및 박종일・이윤정(2022, 2024)의 연구는 ESG와 조세회피 간에 양(+)의 관계를 보고하고 있으며, 신영효(2022)의 연구는 평균적으로 ESG와 조세회피 간에 유의미한 관계로 나타나지 않아 해당 주제는 아직까지 합의된 결론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그런데, 앞서의 선행연구들 모두는 ESG와 조세회피의 관계를 살펴볼 때 ESG 수준변수에 초점을 두어 분석된 경우였다. 최근 박종일 외(2024)는 ESG 변동변수와 이익조정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 ESG 등급 상승과 이익조정 간에 체계적인 양(+)의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에 대해 저자들은 전년보다 ESG 등급이 상승한 기업에서 경영자는 기회주의적인 보고이익의 상향조정을 하려는 유인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처럼 앞서의 선행연구에서 ESG 수준 자체보다 ESG 변동 측면에 초점을 둔 데에는 ESG 수준의 경우는 장기적으로 누적된 기업의 상태 또는 일반적인 기업특성의 성향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반면, 전년 대비 ESG 등급 변화의 경우는 만약 ESG 등급이 상승한 기업일 때 한 회계기간의 ESG 경영과 관련된 경영자의 전략적 활동(strategic activities) 또는 정책적인 사항에 대한 단기적 의사결정 측면이 더 잘 반영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와 같은 맥락에서 ESG와 조세회피와의 관계에서도 ESG 수준보다 ESG 등급 변동이 경영자의 당기 조세회피 수준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와 관련한 ESG 변동사항이 한 기간의 기업에 대한 조세정책을 보다 잘 포착(capture)할 것으로 예상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ESG 등급 변화가 기업의 조세회피와는 어떤 체계적인 관련성이 있는지를 먼저 탐구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탐구대상은 앞서 ESG 등급 변화와 조세회피의 관계가 외부지배구조의 역할을 수행하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노력이 증가할수록 어떤 조절효과로 작동하는지를 알아보는 데 있다. 전자의 주제는 선행연구인 박종일 외(2024)의 ESG 등급 상승과 이익조정의 관계를 ESG 등급 변화와 조세회피로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한편으로, ESG와 조세회피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이 주로 ESG 수준 측면만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ESG 변동과 조세회피 수준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관련연구에 실증적인 새로

운 증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후자의 주제는 감사인의 감사노력에 따라 ESG 변동과 조세회피의 관계에 어떤 조절효과의 역할을 하는지 알아본다는 점에서 규제당국에게도 감사품질을 제고시키기 위한 그동안의 정책적 노력과 관련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국내의 규제당국은 2017년 10월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신외부감사법)의 개정을 통해 감사인의 감사품질을 제고시키려는 여러 제도들을 새롭게 도입한 바 있었다.[4] 따라서 만일 ESG 변동과 조세회피의 관계에 외부감사인의 감사노력이 긍정적인 조절효과의 역할을 한다면 이는 신외부감사법의 개정을 통한 규제당국의 새로운 제도 도입과 관련된 노력들이 감사인의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를 증가시켜 감사품질의 향상뿐 아니라 기업의 조세회피 감소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그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 탐구하려는 두 가지 주제와 관련한 실증적 증거는 학계뿐만 아니라 규제당국에게도 시의적절성이 있고, 또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이후 본 연구에 대한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은 ESG 성과와 조세회피의 관계를 살펴본 그동안의 선행연구에 대해 검토한 후 본 연구주제와 관련된 가설들을 제시한다. 제Ⅲ장은 가설의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이를 분석하기 위한 표본의 선정절차에 대해 설명한다. 제Ⅳ장은 실증분석의 결과를 제시하고, 또한 추가분석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며 이들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은 본 실증결과를 요약한 후 본 연구의 시사 및 공헌을 제시하고, 본 연구에서의 분석상의 한계도 같이 설명한다.

Ⅱ. 선행연구 검토와 가설 설정

1. ESG 성과와 조세회피와 관련한 선행연구 검토

조세회피 측면에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다룬 초반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기업의 사회적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이하 CSR) 활동과 조세회피의 관계를 살펴본 경우가 있

4) 규제당국은 2017년 신외부감사법의 개정을 통해 기업의 감사시간과 감사보수를 크게 증가시키는 3대 회계제도로, 2019년에 표준감사시간제도의 도입, 또한 같은 해인 2019년부터 자산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의무화를 하였고, 2020년에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외에도 회계법인 감사인 등록제, 회사의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할 경우 감사인의 과징금 신설 및 형벌 상향조정 등이 현재 시행 중이다. 이들 제도 모두는 감사인의 감사품질을 제고시켜 기업이 공시하는 재무정보에 대한 회계투명성을 높임으로써 투자자 등의 이해관계자를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고(Lanis and Richardson 2012 ; Hoi et al. 2013 ; Davis et al. 2016 ; Zeng 2019 ; 박준령 · 김요환 2014 ; 김요환 2015 ; 홍미경 · 박준령 2017 ; 이균봉 · 박수경 2019 등),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한층 증대됨에 따라 ESG 활동과 조세회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이 있다(Yoon et al. 2021 ; Jiang et al. 2024 ; Pantazi 2024 ; 정현아 · 유순미 2021 ; 김용기 외 2022 ; 신영효 2022 ; 박종일 · 이윤정 2022, 2024). 본 연구의 주제는 전자의 경우보다는 후자의 경우와 보다 더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본 절에서는 ESG 활동과 조세회피를 분석한 그동안의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검토한다.[5)]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동안의 ESG 등급 수준과 조세회피 수준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혼재된 결과(mixed evidence)를 보여 왔다. 예를 들어, ESG와 조세회피 간에 음(−)의 관련성을 보고한 선행연구들이 있는가 하면(Yoon et al. 2021 ; Jiang et al. 2024 ; Pantazi 2024 ; 김용기 외 2022), ESG와 조세회피 간에 양(+)의 관련성을 보고한 선행연구들도 있고(Duong and Huang 2022 ; 정현아 · 유순미 2021 ; 박종일 · 이윤정 2022, 2024), 또한 ESG와 조세회피 간에 유의한 관련성을 발견하지 못한 연구도 있다(신영효 2022). 따라서 아직까지 두 변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합의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실정이다. 먼저 전자에 해당하는 ESG 등급이 높은 기업이 조세회피 감소에 긍정적인(positive) 영향을 미침을 보고한 Yoon et al.(2021)은 국내의 한국ESG기준원(종전 한국기업지배구조원 ; 이하 KCGS) 자료를 이용하여 ESG 등급점수가 조세회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조세회피 측정치로 book−tax income difference(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 이하 BTD)를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이다. 분석결과는 ESG 등급 점수가 높은 기업일수록 조세회피 수준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SG 등급의 구성별로 나누어 분석하면 환경경영 및 사회적책임경영 등급에서 주로 조세회피와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업지배구조 등급은 조세회피와 유의한 양(+)의 관계로 나타났다. 또한 앞서의 결과를 재벌기업과 비재벌기업으로 나누어 살펴본 경우 비재벌기업보다는 재벌기업에서 ESG와 조세회피 간에 음(−)의 관계가 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저자들은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는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좋은 CSR 성과의 기업은 과세이익을 조작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KCGS 자료를 이용한 김용기 외(2022)는 유가증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ESG와 경영전략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앞서의 주제에 대해 조세회피 측정치로 Desai and Dharmapala(2006)에서 제안한 재량적 BTD(이하 DBTD)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의 분석결과 중 ESG는 조

5) 전자의 경우인 CSR과 조세회피를 분석한 국내 선행연구에 대한 개관은 비재무적 측정지표를 활용한 연구동향을 살펴본 배창현 외(2021)의 연구(p.243) 또는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문헌연구들을 리뷰한 한종수 외(2021)의 연구를 참조하기 바란다(pp.298−299).

세회피에 유의하게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ESG 구성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본 경우 앞서의 음(−)의 관계는 주로 사회적책임경영 등급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저자들은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기업은 기업이미지 등을 위하여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조세회피를 줄이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 외의 국외 연구로 Jiang et al.(2024)은 중국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에서 ESG 성과가 높을 때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이 감소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Pantazi(2024)는 그리스 자료를 이용한 결과에서 조세회피 측정치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ESG 성과는 조세회피와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고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ESG의 구성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앞서의 관계는 주로 환경과 지배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사회적책임경영은 조세회피와 양(+)의 관계였다. 전반적으로 ESG와 조세회피 간에 양(+)의 관련성을 보고한 선행연구들은 앞서의 발견에 대해 ESG 성과가 우수할수록 기업의 조세회피 감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후자의 경우인 ESG 성과가 높을수록 조세회피가 증가하는 부정적인(negative) 결과를 보고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현아・유순미(2021)는 KCGS 자료를 이용하고, 조세회피 측정치로 Desai and Dharmapala(2006)의 DBTD를 이용한 결과에서, ESG와 조세회피 간에 유의하게 양(+)의 관계를 보고하였다. 이 연구는 이에 대해 지속가능경영을 이용하여 기업의 이미지마케팅을 실시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과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에는 사회적 책임활동에 발생하는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에 조세회피는 오히려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앞서의 결과에 대해 저자들은 CSR과 조세회피 간에 양(+)의 증거를 보고한 Davis et al.(2016) 및 김요환(2015)과 일치하는 증거라고 주장한다.[6] 박종일・이윤정(2022)은 경영자 과신성향과 ESG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또한 경영자 과신성향과 조세회피의 관계에 ESG가 조절효과의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았다. 이 연구는 KCGS 자료를 이용하고, 조세회피 측정치로 BTD 계열인 DBTD와 BTD뿐 아니라 ETR 계열인 Cash ETR(effective tax rates ; 유효세율)과 GAAP ETR의 네 가지의 경우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는 경영자 과신성향은 BTD 계열(DBTD, BTD)과 주로 유의하게 양(+)의 관계로 나타났고, ESG와 조세회피의 관계는 GAAP ETR를 제외한 나머지 조세회피 측정치인 DBTD, BTD 및 Cash ETR을 종속변수로 하면 관심변수 ESG는 유의한 양(+)으로 나타났다. 또한 ESG 구성별로 나누어 조세회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환경경영(E) 또는 기업지배구조(G) 부분에서 조세회피와 양(+)의 관계로 나타났다.[7] 이에 대해 저자들은 ESG 경영이 추구하는 지속가능경영과는 조세회피 측면

6) 예를 들어, Davis et al.(2016)은 ESG 경영에 적극적인 기업은 지속가능경영에 사용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세회피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7) 환경경영과 조세회피 간에 양(+)의 관계에 대해 저자들은 Velte(2020)에서의 주장인 그린워싱(위장환

에서 상반되는 증거로 보았다. 한편, 앞서의 연구는 경영자 과신성향과 조세회피의 양(+)의 관계가 ESG 수준에 따라 조절효과가 있다는 뚜렷한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앞서의 후속연구로 박종일・이윤정(2024)은 ESG와 조세회피의 관계에 감사인의 감사노력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ESG 수준과 조세회피 측정치 간에 대체로 유의한 양(+)의 관계로 나타났고, 앞서 ESG와 조세회피의 양(+)의 관계는 감사인의 표준감사시간 대비 실제감사시간의 차이 비율이 클 때, 전년 대비 시간당보수가 증가할수록 약화되는 증거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연구는 ESG와 조세회피의 양(+)의 관계가 감사인의 감사노력이 증가하거나 보수가 증가할수록 기업의 조세회피를 줄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국외연구로 Duong and Huang(2022)은 아세안(ASEAN ; 동남아국가연합)의 상장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ESG가 자본구성, 조세회피 그리고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중 앞서의 연구는 ESG와 조세회피 간에 평균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한편, 신영효(2022)의 연구는 KCGS 자료를 이용하여 다국적기업의 ESG가 조세회피 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조세회피 측정치로 BTD와 DBTD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는 국제다각화 수준이 높을수록 조세회피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는 ESG 수준과 조세회피 간에는 평균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국제다각화와 ESG의 상호작용변수는 조세회피와 유의하게 음(−)의 관계로 나타나 이에 대해 저자는 국제다각화 정도에 따른 조세회피의 증가가 ESG 수준에 따라 완화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앞서의 선행연구들을 정리해 보면, 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살펴본 최근 연구들은 혼재된 증거를 보이고 있다. 즉, ESG 경영의 특성인 기업의 지속가능성 측면과 일치하게 ESG와 조세회피는 음(−)의 관련성이 나타난 연구도 있고(Yoon et al. 2021 ; Jiang et al. 2024 ; Pantazi 2024 ; 김용기 외 2022), 또한 ESG 경영은 지속가능경영을 위해서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를 충당하거나, 또는 그린워싱경영 측면에서 조세회피 성향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주장과 일치하게 ESG와 조세회피 간에 양(+)의 관계가 나타난 연구도 있다(Duong and Huang 2022 ; 정현아・유순미 2021 ; 박종일・이윤정 2022, 2024). 그리고 ESG와 조세회피 간에 평균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연구도 있다(신영효 2022). 따라서 ESG와 조세회피의 관계는 아직까지 연구마다 상이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그동안의 선행연구 모두는 ESG 등급과 조세회피의 관계를 주로 ESG 수준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앞서 전술한 바와 같이, ESG 수준은 장기적 측면에서 누적된 기업의 상태를 보여주는 반면, 전년 대비 ESG 변동은 경영자의 ESG 경영과 관련된

경경영)과 부합하는 증거로 해석하였다.

한해 기간의 전략적 활동이나 정책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단기 측면을 보다 잘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ESG 성과와 조세회피 수준의 관계에 대한 분석에서 ESG 등급 변화에 초점을 두고 조세회피 수준과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살펴본 실증 연구는 아직까지 국내외로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ESG 변동에 초점을 맞추어 조세회피 수준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ESG 변동과 조세회피의 관계에 외부감시주체인 감사인의 감사노력(예로, 감사보수, 감사시간)이 긍정적인 조절효과의 역할로 작동하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2. 가설 설정

본 연구의 목적은 ESG 변화는 조세회피 수준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또한 외부감시주체의 역할로서 감사인의 감사노력이 증가하면 ESG 변화와 조세회피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동하는지를 조사하는 데 있다.

먼저 가설 1의 사항인 ESG 변화와 조세회피의 관계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ESG 개념은 과거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기업에서 ESG 경영이 보다 중요하게 사회적으로 부상한 데에는 외생적 충격(exogenous shock)인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를 불러왔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들어 전 세계는 공급망 가치사슬에 문제가 발생하여 운송, 에너지 공급, 여행 및 대다수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 산업에서 경영실적이 악화되었고, 또한 유가 급등과 환율 변화는 실물 경제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워 미래의 경제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험을 고조시켰다. 따라서 코로나19 팬데믹 초반 기간은 전 세계에 걸쳐 국가의 성장성이 이 시기에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경기침체를 가져왔다.[8] 이러한 외생적 충격이 발생하면서 기업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과 ESG 경영의 실천이 기업의 생존과 관련해서 중요하다는 관점이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부각되었다. ESG는 기존 기업지배구조(governance) 체계에 환경경영(environmental)과 사회적책임경영(social)이 같이 통합된 측면에서 투자와 사업 및 경영활동을 시행해 나가면서 근시안적 관점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경영전략의 개념이다. 그러한 점에서 ESG 경영을 추구하는 기업은 ESG 성과가 높을 수 있고, 기업의 단기적 측면의 이익극대화 또는 주주만의 주가극대화보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s ; 거래처, 소비자, 정부 등)에 대한 공유가치의 극대화를 장기적 관점에서 추구하여 지구환경을 보호하고, 또한 기업의 사회적책임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

8)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2020년 12월에 발표한 경제전망의 경우 전 세계의 실질GDP의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4.2%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는 경영을 보다 강조한다. 더불어, ESG 경영은 보다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통한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경영을 추구한다. 따라서 앞서와 같은 ESG 경영의 개념이 내포된 실천을 수행하는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을 도모하기 때문에 기업가치를 파괴하는 행위보다 기업가치를 창출하는 행위에 더 몰두하고 관심을 가진다. 그런데, 기업의 조세회피행위는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강정연・고종권 2014), ESG 성과가 높은 기업은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조세회피에 덜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조세회피는 자본시장의 이해관계자들(투자자, 채권자, 재무분석가, 감사인 등)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Hanlon and Slemrod 2009 ; Kim et al. 2011 ; Donohoe and Knechel 2014 ; Balakrishnan et al. 2019 ; 김은주・조용언 2012 ; 박종일・지승민 2016), ESG 등급이 높은 기업일수록 조세회피에 소극적일 수 있다. 이러한 논의의 맥락에서 보면, ESG 등급이 전년보다 상승한 기업일수록 미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조세회피를 통한 내부현금창출이 가져오는 효익보다 조세회피로 발생하는 비세금비용(예로, 적발시 기업평판 및 이미지 실추,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감사비용 증가, 투자자 및 채권자들의 부정적인 시장반응 등)이 더 클 수 있기에 경영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세회피행위를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즉, 앞서의 논의에 기초하면 ESG 변화와 조세회피 수준은 음(−)의 관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ESG 변화와 조세회피의 관계에는 앞서와는 다른 경쟁적(competing) 이론의 관점 역시 존재할 수 있다. ESG 경영은 기업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보험의 역할을 제공할 수 있다(Godfrey and Hatch 2005). 또한 ESG 경영에 적극적인 기업은 추가로 환경보호 및 사회적책임경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잠재적 비용을 보다 증가시키게 된다(Davis et al. 2016). 따라서 만일 ESG 경영에 보다 적극적인 경영자가 ESG 성과를 마케팅 홍보전략으로만 이용하고, 숨긴 행동(hidden action)으로 그린워싱(greenwashing)[9] 정책을 전략적으로 추구할 수도 있다(박종일・이윤정 2024). 즉, 환경경영 및 사회적책임경영과 관련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전략적으로 마케팅 홍보를 하고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충성도를 높이면서, 한편으로 앞서 발생한 비용을 조세회피를 통해 충당하는 숨겨진 행위를 할 수 있다(Davis et al. 2016 ; 정현아・유순미 2021). 이런 경우는 ESG 등급 변화가 높은 기업일수록 경영자는 이를 기회주의적 전략으로 이용하여 감춘 행동에서는 오히려 조세회피행위에 더 적극적일 수 있다. 따라서 앞서의 논의에 기초하면 ESG 변화와 조세회피 수준은 양(+)의 관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될 수 있다.

이처럼 ESG 변화와 조세회피 수준 간에는 이러한 두 가지 관점에 대한 논의가 존재하므로, ESG 등급 변화와 조세회피 간에 음(−) 혹은 양(+)의 관계 모두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9) 그린워싱은 녹색경영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여 기업이미지를 제고시키나, 실제로는 별다른 실천 없이 홍보만 하는 위장환경주의를 일컫는다.

ESG 변화와 조세회피 수준의 관계와 관련된 가설 1에 대해 양방향 논의가 모두 가능하다는 점에서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고, 이러한 의문사항에 대해 경험적 분석을 통해 알아본다.

가설 1 : ESG 등급 변화는 조세회피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다음으로, 가설 2는 ESG 변화와 조세회피의 관계에 외부감시주체인 감사인의 감사노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절효과로 작동하는지에 관한 사항이다. ESG 경영활동의 내부에는 기업지배구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배구조의 특성상에 내부지배구조(internal corporate governance)의 메커니즘이 작용한다. 그런데 현재의 경영은 소유와 경영이 잘 분리되어 있으므로, 대리 문제(agency problem) 역시 발생한다. 따라서 내부지배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외부감시주체로서 외부지배구조가 중요한 모니티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Armstrong et al.(2015)은 경영자와 주주 사이에 조세회피에 대해 서로 간에 상이한 선호도가 있을 때 건전한 외부지배구조체계는 이러한 경영자의 조세회피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외부감시주체 중 하나로서 외부감사인은 피감사기업의 재무제표감사를 독립된 관점에서 수행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조세회피행위에 직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세회피와 감사위험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기업의 조세회피가 증가할수록 감사인이 부담하는 감사위험이 증가하므로, 그로 인해 감사시간이 증가하고, 감사보수가 증가된다는 실증결과를 보고하였다(Donohoe and Knechel 2014 ; 박한순 2014 ; 박종일 · 지승민 2016).[10] 이는 기업의 조세회피는 감사인이 부담하는 감사위험을 보다 증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연구에서는 실제감사시간과 표준감사시간의 차이 비율로 측정된 감사인의 감사노력이 증가할수록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이 감소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이정희 외 2023). 또한 김진수 · 김임현(2016)의 연구는 경영자의 조세회피행위는 기업의 투명성을 감소시켜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어 조세회피와 정보비대칭은 양(+)의 관계로 나타나지만, 감사품질이 높은 대형회계법인에게 감사받은 기업은 앞서의 양

10) 감사인이 기업의 조세회피를 억제할 유인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발생한다. 첫째, 기업에서 조세회피를 하면 기업과 주주 간의 대리 문제를 가속화하고, 그로 인해 감사인이 부담하는 감사위험(audit risk)은 증가한다(Kanagaretnam et al. 2016). 둘째, 조세회피에 보다 적극적인 기업을 감사하는 감사인은 감사위험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을 감사한 기업에서 사후에 조세회피 문제가 과세당국에 적발되면 감사인은 감사실패로 인한 소송위험이 추가로 발생한다(Heninger 2001). 셋째, 선행연구에서는 기업의 조세회피가 증가할수록 주가폭락위험의 가능성이 높음을 보고하였다(Kim et al. 2011). 이는 조세회피에 더 적극적인 기업은 주주의 부를 침해하는 잠재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은 기업뿐 아니라 감사인에게도 감사실패에 따른 책임을 물어 감사인은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에게 소송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잠재적 소송비용(litigation costs)이 발생한다. 이러한 감사 환경에서 감사인은 조세회피를 억제할 유인이 있다.

(+)의 관계가 완화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는 감사인이 조세회피와 같은 감사위험이 높은 감사 환경에서 대형회계법인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전문적이고 질적인 외부감사를 하여 기업에 대한 외부감시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외부감시주체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박종일・이윤정(2024)의 연구는 ESG 수준과 조세회피는 양(+)의 관계가 있으나, 감사노력(예로, 실제감사시간과 표준감사시간의 차이 비율이 높거나, 또는 시간당보수가 증가하면)이 증가할수록 앞서의 양(+)의 관계가 약화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기초하여 추론해 보면, ESG 변화와 조세회피의 관계에 외부감사주체인 감사인의 감사노력 정도는 중요한 조절효과의 역할(moderating role)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조세회피행위로 인한 감사위험을 일정 목표수준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는 감사노력을 더 투입할 유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감사인의 감사노력이 증가할수록 법규의 미비점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나 부적절한 조세회피를 억제할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박한순 2014). 앞서와 같은 실증적 증거와 논의에 기초해 볼 때, ESG 변화와 조세회피의 관계에 감사인의 감사노력(예로, 본 연구에서는 감사보수의 증가 또는 감사시간의 증가)이 증가할수록 ESG 변화와 조세회피 수준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positive effect)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만약 ESG 등급의 변화와 조세회피 간에 음(−)의 관계가 주로 나타난다면 감사인의 감사노력이 증가할수록 앞서의 음(−)의 관계는 더 강화될 수 있다. 앞서와 달리, 만약 ESG 등급 변화와 조세회피 간에 오히려 양(+)의 관계가 주로 나타난다면 감사인의 감사노력이 증가할수록 앞서의 양(+)의 관계는 약화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만일 ESG 변화와 조세회피 간에 평균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면 이들의 관계에 감사인의 감사노력이 증가할수록 조세회피 수준을 억제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초래함으로써 음(−)의 관계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의문사항에 대해 경험적 분석을 이용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의 가설 2를 다음과 같은 형태로 설정하였다.

가설 2 : 감사인의 감사노력이 증가할수록 ESG 변화와 조세회피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Ⅲ. 연구모형의 설계 및 표본의 선정

1. 연구모형의 설계

본 연구는 ESG 등급 변화와 조세회피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가설 1), 또한 ESG 등급 변화와 조세회피의 관계에 감사인의 감사노력이 증가할 때 긍정적인 조절효과의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는 데 있다(가설 2). 이를 위해서 다음의 식(1)과 식(2)의 연구모형을 통해 본 연구는 검증한다.

$$TAVO_t = \beta_0 + \beta_1 \boldsymbol{ESG_dif_t} + \beta_2 ESG_t + \beta_3 CHAF_t + \beta_4 SIZE_t + \beta_5 MTB_t + \beta_6 LEV_t + \beta_7 RND_t + \beta_8 PPE_t + \beta_9 INTA_t + \beta_{10} ROA_t + \beta_{11} NOL_t + \beta_{12} DA_t + \beta_{13} Zscore_t + \beta_{14} AGE_t + \beta_{15} FOR_t + \beta_{16} OWN_t + \beta_{17} BIG4_t + \beta_{18} MKT_t + \Sigma YD + \Sigma IND + \varepsilon_t \quad (1)$$

$$TAVO_t = \beta_0 + \beta_1 ESG_dif_t + \beta_2 CHAF_t + \beta_3 \boldsymbol{ESG_dif_t \times CHAF_t (or\ CHAH_t)} + Control\ variable_t + \Sigma YD + \Sigma IND + \varepsilon_t \quad (2)$$

여기서, ***Dependent variable***

TAVO =t년도 조세회피 측정치[① DBTD(Desai and Dharmapala(2006) 모형에 기초하여 추정된 재량적 BTD), ② BTD(=(세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기초총자산), ③ CETR(=법인세부담액/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1)을 곱함), ④ GETR(=법인세비용/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1)을 곱함) ;

Test variable

ESG_dif =t년도 한국ESG기준원의 ESG 등급에서 당기와 전기의 차이 변동(=$ESG_t - ESG_{t-1}$), 여기서 ESG 등급(예로, A+, A, B+, B, C, D 등급)을 서열순위변수(예로, 1~6)로 재측정함 ;

CHAF =t년도 감사보수의 변화(=[감사보수$_t$−감사보수$_{t-1}$]/감사보수$_{t-1}$) ;

CHAH =t년도 감사시간의 변화(=[감사시간$_t$−감사시간$_{t-1}$]/감사시간$_{t-1}$) ;

ESG_dif×CHAF =t년도 ESG_dif와 CHAF의 상호작용변수 ;

ESG_dif×CHAH =t년도 ESG_dif와 CHAH의 상호작용변수 ;

Control variable

ESG =t년도 ESG 등급 수준 ;

SIZE =t년도 기말총자산에 자연로그 ;

MTB =t년도 자본에 대한 시장가치/장부가치 ;

LEV =t년도 총부채/총자산 ;

RND =t년도 연구개발비/매출액 ;

PPE = t년도 감사상각 유형자산/기초총자산 ;
INTA = t년도 무형자산/기초총자산 ;
ROA = t년도 당기순이익/기초총자산 ;
NOL = t년도 이전 10년간의 손실발생 빈도 ;
DA = t년도 Kothari et al.(2005) 모형에 기초하여 추정된 ROA성과통제 재량적 발생액 ;
Zscore = t년도 Altman(1968)의 재무적 제약 측정치인 Z-score에 (-1)을 곱함 ;
AGE = t년도 기업의 설립연수에 자연로그 ;
FOR = t년도 외국인지분율 ;
OWN = t년도 대주주지분율(특수관계자를 고려) ;
BIG4 = t년도 Big 4 회계법인(예로, 삼일, 삼정, 안진, 한영)에게 감사받은 기업이면 1, 아니면 0 ;
MKT = t년도 코스닥기업이면 1, 거래소의 유가증권기업이면 0 ;
ΣYD = 연도 더미변수 ;
ΣID = 산업 더미변수 ;
ε = 잔차항
편의상 기업 i의 아래첨자는 생략

위의 식(1) 및 식(2)의 모형에서 종속변수는 조세회피(tax avoidance ; 이하 TAVO) 측정치이다. 본 연구는 앞서의 가설 1과 2를 보다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김선미 외(2020) 및 박종일・이윤정(2022)에서 사용되었던 네 가지 조세회피의 대용치(proxy)를 이용한다. 두 개의 경우는 BTD 계열로 book-tax differences(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 이하 BTD)와 Desai and Dharmapala(2006) 모형에 따라 추정된 잔차 값인 재량적 BTD(이하 DBTD)[11]이다. 또 다른 두 개의 경우는 ETR 계열로 Cash ETR(cash effective tax rates, 현금유효세율 ; 이하 CETR)과 GAAP ETR(GAAP 유효세율 ; 이하 GETR)이다.[12] ESG 수준과 조세회피의 관계를 분석한 과

11) 본 연구는 Desai and Dharmapala(2006)에서의 조세회피 추정모형을 이용하여 DBTD를 추정한다. Desai and Dharmapala(2006) 추정모형은 식(3)과 같다. DBTD는 식(3)에서 산업과 연도별 횡단면 패널자료가 이용된 OLS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되는 개별기업에 대한 잔차(ε) 값이다. 여기서 BTD의 측정상에 과세소득의 경우 선행연구 방법인 추정과세소득을 이용하였다(기은선 2012 ; 김용기 외 2022 ; 박종일・이윤정 2024 등).

$$BTD/A_{t-1} = \beta_1(TA/A_{t-1}) + \varepsilon_t \quad (3)$$

여기서, *BTD* = t년도 세전이익-과세소득 ;
TA = t년도 당기순이익-영업현금흐름 ;
A = t년도 총자산 ;
ε = 잔차

12) 구체적으로, CETR은 법인세부담액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하 세전이익)으로 나눈 값이고,

거 선행연구들의 경우처럼 본 연구는 이들 네 가지 조세회피 측정치에 대해 모두 당기 기준으로 측정하였다(김선미 외 2020 ; 김용기 외 2022 ; 박종일 · 이윤정 2022 등).[13] 또한 BTD 계열(DBTD, BTD)과 달리, ETR 계열(CETR, GETR)은 앞서 BTD 계열과 일관된 해석을 위해서 해당 측정치에 대해 (−1)을 곱해 분석에 이용한다(강정연 · 고종권 2014 ; 박종일 · 이윤정 2022 등). 이렇게 하면,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네 개의 조세회피 측정치(TAVO)인 DBTD, BTD, CETR 및 GETR 값이 클 때 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가설 1에 대한 관심변수는 식(1)의 ESG_dif(ESG 등급 변화)이다. 본 연구는 ESG와 조세회피를 분석한 선행연구에 따라 ESG의 대용치로 한국ESG기준원(이하 KCGS)에서 공시한 ESG 통합등급 자료를 이용하였다. KCGS는 상장사에 대해 ESG 등급을 7등급으로 평가한다(예로, S(탁월), A+(매우우수), A(우수), B+(양호), B(보통), C(취약), D(매우취약)). 그러나 분석기간 중 S 등급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의 방법과 같이 ESG 등급을 가장 높은 A+ 등급을 6으로, 가장 낮은 D 등급을 1로 치환해서 1~6 사이의 서열순위변수로 측정하였다(마희영 2020 ; 신상이 · 박종일 2020 ; 박종일 · 이윤정 2022, 2024 등). 그런 후 관심변수 ESG_dif는 당기 ESG 등급에서 전기 ESG 등급을 차감하여 측정하였다(=ESG_t−ESG_{t-1}).[14] 또한 관심변수 ESG_dif(ESG 변동변수)가 조세회피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데 있어 본 연구는 ESG 수준변수를 모형식에 같이 통제한 후 살펴본다. 즉 본 연구에서는 ESG 수준변수가 조세회피 수준에 미치는 영향 외에도 ESG 변동변수가 조세회피에 대해 추가적인(incremental)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방법은 선행연구 중 유정은 · 손성진(2024)에서도 ESG 변동변수와 ESG 수준변수를 같이 모형에 고려한 바 있다.[15]

GETR은 법인세비용을 세전이익으로 나눈 값이다. 여기서 CETR 측정상에 법인세부담액은 과거 선행연구들의 방법에 따라 법인세비용에 이연법인세자산 항목의 변동은 가산하고, 이연법인세부채 항목의 변동은 차감해 계산된다(기은선 2012 ; 김선미 외 2020 등).

13) 본 연구의 경우 가설 1의 관심변수는 ESG 등급 변화인 변동변수를 이용하고 있으나, 종속변수는 선행연구들의 방법처럼 조세회피 수준을 이용하였다. 그러한 데에는 대부분의 조세회피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의 경우 종속변수로 조세회피의 변동변수를 이용하기보다는 수준변수 측면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김선미 외 2020 ; 김용기 외 2022 ; 이정희 외 2023 ; 박종일 · 이윤정 2022, 2024 등).

14) 본 연구의 추가분석의 경우 연속변수인 ESG_dif 외에도 ESG 등급의 상승과 하락을 더미변수로 측정한 경우에 대해서도 알아본다(예로, ESG_up, ESG_down). 여기서, ESG_up은 당기 ESG 등급이 전년보다 상승하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이고, ESG_down은 당기 ESG 등급이 전년보다 하락하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이다.

15) 유정은 · 손성진(2024)은 ESG 경영과 그 변동이 전망이론 관점에서 기업가치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할 때 ESG 수준과 변동변수에 대해 같이 고려하였다. 따라서 앞서의 선행연구 방법을 준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ESG 변동과 조세회피 수준의 관계를 분석할 때 ESG 수준변수를 모형에 같이 고려한다.

따라서 만일 가설 1의 경우 ESG 수준을 통제한 후에도 ESG 등급 변화와 조세회피 수준 간에 음(−)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면 식(1)의 관심변수 ESG_dif는 종속변수 TAVO(예로, DBTD, BTD, CETR, GETR)에 대해 유의한 음(−)의 계수값이 나타날 것이다($\beta_1<0$). 또한 만일 ESG 수준을 통제한 후에도 ESG 등급 변화와 조세회피 간에 양(+)의 관련성이 있다면 식(1)의 관심변수 ESG_dif는 종속변수 TAVO에 대해 유의한 양(+)의 계수값이 나타날 것이다($\beta_1>0$). 그렇지 않고 만일 ESG 등급 변화가 ESG 수준을 통제한 후에 조세회피 수준에 추가적인 설명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관심변수 ESG_dif는 종속변수 TAVO에 대해 유의한 값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beta_1=0$). 이러한 검증가능한(testable) 의문을 알아보는 것이 가설 1의 사항이다.

가설 2의 관심변수는 식(2)에서 상호작용변수(interactive terms)인 ESG_dif×CHAF 또는 ESG_dif×CHAH이다. 여기서 ESG_dif와 함께 상호작용변수를 구성하는 CHAF와 CHAH는 각각 감사보수의 변화와 감사시간의 변화이다. 본 연구는 이들 CHAF와 CHAH를 감사인의 감사노력의 대용치로 이용한다. 구체적으로, 전자인 CHAF는 전년 대비 감사보수의 증감율(=[감사보수$_t$-감사보수$_{t-1}$]/감사보수$_{t-1}$)로 측정하였고, 후자인 CHAH는 전년 대비 감사시간의 증감율(=[감사시간$_t$−감사시간$_{t-1}$]/감사시간$_{t-1}$)로 측정하였다(박종일・이윤정 2024). 본 연구에서는 가설 2와 관련된 상호작용변수 중 ESG_dif×CHAF를 주된 분석으로 살펴보고, ESG_dif×CHAH의 경우는 추가분석에서 다룬다.

따라서 만일 가설 2의 기대처럼 ESG 등급 변화와 조세회피의 관계가 감사인의 감사노력에 따라 긍정적인 조절효과의 역할을 한다면, 가설 2의 관심변수인 ESG_dif×CHAF(또는 ESG_dif×CHAH)는 유의하게 음(−)의 계수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beta_3<0$).[16]

ESG_dif와 조세회피 또는 ESG_dif×CHAF(또는 ESG_dif×CHAH)와 조세회피 수준의 관계를 조사할 때 본 연구는 통제변수의 선정을 ESG 수준과 조세회피 수준의 관계를 분석한 김상명 외(2021), 김용기 외(2022) 및 박종일・이윤정(2022, 2024) 등의 선행연구들에 기초하였다. 우선 김용기 외(2022)는 조세회피에 영향을 주는 통제변수로 기업규모(SIZE), 자본의 장부가치 대비 시장가치(MTB), 부채비율(LEV),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RND), 총자산 대비 유형자산비

16) 만일 가설 1의 검증결과에서 ESG_dif와 조세회피 간에 유의한 음(−)의 관계이고 가설 2의 관심변수 ESG_dif×CHAF가 유의하게 음(−)의 관계로 나타난다면 이런 경우는 ESG 등급 상승과 조세회피의 음(−)의 관계가 감사노력에 따라 강화되는 결과이다. 그렇지 않고 만일 가설 1의 검증결과에서 ESG_dif와 조세회피가 유의한 양(+)의 관계이고 가설 2의 관심변수 ESG_dif×CHAF가 유의하게 음(−)의 관계로 나타난다면 이런 경우는 ESG 등급 상승과 조세회피의 양(+)의 관계가 감사노력에 따라 약화되는 결과일 것이다. 또한 만일 가설 1에서 ESG_dif와 조세회피 간에 평균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가설 2의 관심변수 ESG_dif×CHAF가 유의하게 음(−)의 관계로 나타날 경우는 ESG 등급 변화와 조세회피의 관계에서 감사노력이 중요한 조절효과로 작용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율(PPE), 총자산 대비 무형자산비율(INTA) 및 총자산순이익률(ROA)을 연구모형에 포함하였다.[17] 또한 본 연구는 추가 통제변수로 박종일・이윤정(2022, 2024)의 방법에 따라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월결손금(NOL), 재량적 발생액(DA),[18] 재무적 제약(Zscore), 외국인지분율(FOR), 대주주지분율(OWN), 대형회계법인여부(BIG4) 및 시장유형(MKT)를 모형에 고려하였다.[19] 그리고 김상명 외(2019)는 기업의 수명주기에 해당하는 설립연수(AGE)를 연구모형에 고려한 바 있다. 더불어 연도와 산업 간 차이인 고정효과(fixed effect)를 모형에 통제하기 위한 연도더미(ΣYD)와 산업더미(ΣIND)를 포함하였다(김상명 외 2019 ; 김용기 외 2022 ; 박종일・이윤정 2022, 2024). 앞서의 변수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측정사항은 식(2)의 하단에 제시하였다. 한편, 식(1) 및 식(2)에 대한 OLS 회귀분석을 실시할 때 본 연구에서는 개별기업 수준의 클러스터링(clustering)을 조정한 t 값으로 분석결과를 살펴본다.

2. 표본의 선정

본 연구의 분석기간은 2012년부터 2023년까지이고,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를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1) 금융업에 해당하지 않는 12월 결산기업, (2) KCGS에서 ESG 평가등급을 산정하여 공시한 기업 중 당기와 전기 ESG 자료가 모두 수집가능한 기업, (3) FnGuide의 DataGuide에서 분석에 필요한 재무정보, 감사인 명단, 외국인지분율, 재무분석가 수 등의 자료가 입수가능한 기업, (4) (사)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TS2000에서 감사보수, 감사시간 및 대주주지분율 자료가 수집가능한 기업, (5) 세전이익, 추정과세소득 그리고 ETR 값이 모두 양(+)인 기업, (6) 감사보수가 1천만원 이상이고, 감사시간이 100시간 이상인 기업, (7) 자본잠식이 아닌 기업이다.

먼저 본 연구는 한국ESG기준원(KCGS)의 홈페이지에서 ESG 등급 자료를 공시한 기업을 대

17) 지면상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인 SIZE, MTB, CFO, ROA, LEV, RND, PPE, INTA를 모형에 고려한 이유에 대한 설명은 김용기 외(2022)의 연구를 참조하기 바란다(pp.62－63).

18) 본 연구에서 DA는 Kothari et al.(2005)에서의 ROA 성과통제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한다. 본 연구는 박종일・전규안(2018)의 연구를 참고하여 DA를 추정하였다. ROA성과가 통제된 DA의 연구모형식은 지면상 앞서의 선행연구를 참조하기 바란다(p.26).

19) 박종일・이윤정(2022)은 소유구조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FOR와 OWN을, 또한 이익조정이 높은 기업이 조세회피에도 더 적극적일 수 있어 DA를,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기업은 조세회피 수준이 낮을 수 있어 NOL를, 재무적 제약에 처한 기업들은 조세회피 성향이 높을 수 있으므로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Zscore를, 시장 간 차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MKT를 모형에 고려하였다. 본 연구는 NOL를 선행연구에 따라 과거 10년간 손실이 발생한 빈도로 측정하였다(박종일・이윤정 2022).

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진다. KCGS에서 ESG 통합평가의 실시는 2011년부터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관심변수로 ESG 변동변수를 이용하고 있어 분석기간이 2012년부터 2023년까지 12개년도이다. KCGS는 ESG 등급을 모든 상장사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매년 약 1,000여개의 상장회사 평가, 회사별 900개 이상의 기초데이터를 수집하여 ESG 등급평가를 수행한 후 이를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한다.[20] 본 연구는 이 자료원을 연도별로 수집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ESG 통합평가 자료가 당기와 전기 모두 존재하는 기업이 분석의 대상이다. 그리고 TS2000에서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 자료가 당기와 전기 모두 수집가능한 기업이 분석대상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금융업과 12월 결산이 아닌 기업을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연구모형에 사용되는 재무정보, 회계법인, 지분율 자료는 DataGuide 및 TS2000에서 추출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표본의 선정조건인 (5)−(7)의 경우는 선행연구들의 방법을 준용한 것이다. 예를 들어, (5)의 경우 종속변수인 BTD와 ETR의 측정은 선행연구들에서 BTD를 분석할 때 세전이익과 과세소득 모두가 양(+)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박종일 외 2009 ; 강주훈・최미화 2010 ; 박종일・이윤정 2024). 그러한 데에는 ETR을 분석할 때 세전이익이 음(−)일 경우 그 경제적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선행연구들은 세전이익 및 ETR 값이 모두 양(+)인 기업을 표본으로 분석한다(Guenther et al. 2017 ; 박종일・이윤정 2024). (6)의 경우 선행연구들은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자료를 이용할 때 감사보수가 1천만원 미만이거나 감사시간이 100시간 미만이면 극단치로 간주해 표본에서 제외한다(권수영・기은선 2011 ; 박종일・전규안 2022). 또한 (7)의 경우 선행연구에서는 자본잠식 기업은 재무제표 신뢰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어 표본에서 제외하였다(박성원 외 2014 ; 박종일・이윤정 2024).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최종표본은 분석기간(2012−2023) 동안 5,127개 기업/연 자료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는 식(1)의 모형에서 극단치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변수 중 자연로그를 취한 값과 더미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상하 1%에서 조정하여 분석한다.[21]

<표 1>은 분석에 이용된 표본의 산업별/연도별 분포를 나타내었다. 지면상 산업 분류는 대분류로 보고한다. 하지만 연구모형에 대한 회귀분석 시에는 산업 구분을 중분류로 수행하였다.

---

20) https://www.cgs.or.kr/business/esg_tab01.jsp

21) ETR 계열의 변수(CETR, GETR)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의 방법을 준용하여 [0, 1] 사이로 극단치를 조정한 후 분석에 이용하였다(Dyreng et al. 2008 ; 박종일・이윤정 2024).

〈표 1〉 표본의 산업/연도별 분포

Panel A : 산업 분포

Industry	*N*	%
제조업	3,316	64.7%
건설업	182	3.5%
도매 및 소매업	384	7.5%
서비스업	877	17.1%
기타	368	7.2%
합계	5,127	100.0%

Panel B : 연도 분포

Year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12－2023
N	179	354	384	409	443	425	432	427	441	510	548	575	5,127

주) 표본의 분석기간은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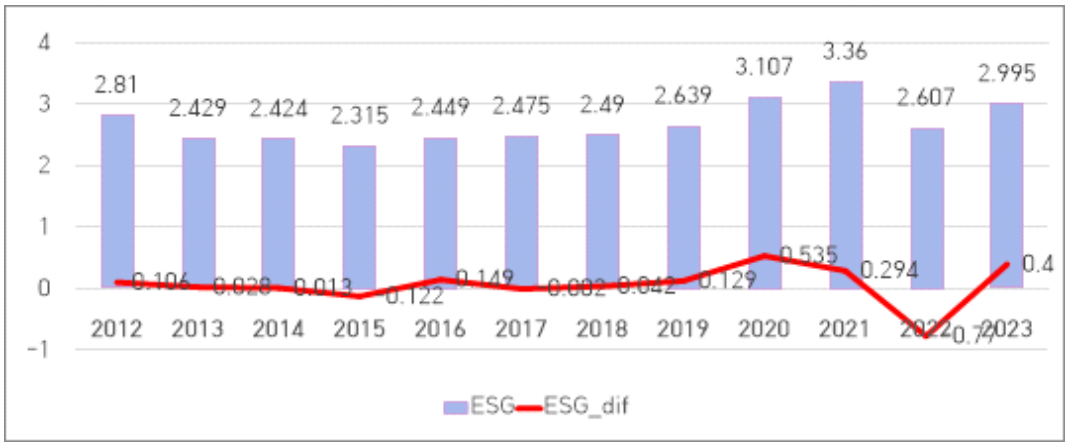
<표 1>의 Panel A에서 산업 중 제조업의 경우가 표본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64.7%), 다음은 서비스업(17.1%)이고, 도매 및 소매업(7.5%), 기타(7.2%), 그리고 건설업(3.5%) 순으로 표본의 비중이 많다. Panel B에서 분석에 이용된 연도별 표본은 전반보다는 후반으로 갈수록 더 많았다.

<표 2>에서는 관심변수인 ESG 등급 변화, 또한 ESG 수준을 연도별로 같이 제시하였다. 제시된 값은 연도별 평균이다. 또한 앞서의 보고된 수치의 시각적 패턴 추이를 보여주는 <그림 1>도 같이 제시하였다.

〈표 2〉 ESG 변동과 ESG 수준의 연도별 평균 추이

Year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12－2023
ESG_dif	0.106	0.028	0.013	－0.122	0.149	－0.002	0.042	0.129	0.535	0.294	－0.770	0.400	0.062
ESG	2.810	2.429	2.424	2.315	2.449	2.475	2.490	2.639	3.107	3.360	2.607	2.995	2.695
N	179	354	384	409	443	425	432	427	441	510	548	575	5,127

〈그림 1〉



<표 2>를 보면, 전반적으로 국내 상장사의 경우 ESG 점수의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표본의 분석기간 동안 KCGS에서 6등급으로 평가된 평균의 점수가 2.695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초반에 해당되는 2020년과 2021년의 ESG_dif(ESG 변동)가 각각 0.535와 0.294로 상승하여 ESG 수준이 3등급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다른 연도들과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는 외생적 충격인 코로나19 위기 시에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한 ESG 활동에 대한 관심이 확대된 시점에서 국내 상장기업들의 ESG 등급 역시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Ⅳ. 실증분석의 결과

1. 기술통계

<표 3>은 식(1)의 연구모형에서 고려된 변수들에 대한 기초통계인 평균, 중위수, 표준편차, 최솟값과 최댓값을 보고하였다. 이중 평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종속변수(TAVO)의 대용치 중 BTD 계열의 DBTD(Desai and Dharmapala(2006) 모형에 기초하여 추정된 재량적 BTD)의 평균은 0.002이고,[22] BTD(세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의 평균도 0.002이다. 반면, ETR 계열인

22) 본 연구는 식(3)을 이용하여 DBTD를 추정할 때 산업－연도별로 추정이 가능했던 기업들을 대상으로 먼저 추정하였다. 그런 다음에 식(1)의 연구모형식에 이용가능한 기업을 표본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

CETR(현금유효세율)의 평균은 0.270이고, GETR(GAAP 유효세율)의 평균은 0.233으로 나타나 현금유효세율의 평균이 GAAP 유효세율의 경우보다 좀더 높았다. 즉 분석에 이용된 표본의 상장기업들은 세전이익 대비 법인세부담이 평균 27%이고, 세전이익 대비 법인세비용은 평균 23.3%로 나타났다. 한편,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후 분석들은 CETR과 GETR 변수에 대해서는 (−1)을 곱한 후 분석에 고려한다.

본 연구의 관심변수 ESG_dif(ESG 등급 변화)의 평균은 0.062로 양(+)의 값이다. 이는 표본의 분석기간 중 기업에서 ESG 등급이 하락한 경우보다는 상승한 경우가 더 많음을 의미한다. 한편, ESG 수준의 평균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695이다. 감사노력의 대용치인 CHAF(감사보수의 변화율)의 평균은 0.141이고, CHAH(감사시간의 변화율)의 평균은 0.105이다. 즉, 전년대비 감사시간의 변동이 평균 10.5% 상승한 반면, 감사보수의 변동은 14.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변수의 기술통계

Variable	평 균	중위수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DBTD	0.002	0.002	0.039	−0.202	0.246
BTD	0.002	0.000	0.043	−0.126	0.343
CETR	0.270	0.227	0.221	0	1
GETR	0.233	0.221	0.170	0	1
ESG_dif	0.062	0	0.822	−3	3
ESG_up	0.196	0	0.397	0	1
ESG_down	0.156	0	0.363	0	1
Control variable					
ESG	2.695	2	1.199	1	6
CHAF	0.141	0.043	0.313	−0.476	1.667
SIZE	27.177	26.903	1.426	23.652	33.192
MTB	1.407	0.955	1.417	0.246	9.019
LEV	0.360	0.364	0.187	0.012	0.802
RND	0.012	0.000	0.028	0	0.171
PPE	0.164	0.134	0.137	0	0.650
INTA	0.019	0.008	0.033	0	0.208

라서 이러한 측면에 기인해서 추정된 DBTD의 평균값이 영(0)과 다소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표 3〉 변수의 기술통계 (계속)

Variable	평 균	중위수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ROA	0.053	0.040	0.050	−0.005	0.275
NOL	1.143	0	1.676	0	9
DA	0.000	−0.001	0.060	−0.411	0.406
Zscore	−1.232	−1.196	0.609	−3.245	−0.079
AGE	3.547	3.761	0.646	1.099	4.844
FOR	0.113	0.059	0.133	0	0.606
OWN	0.452	0.458	0.153	0.101	0.808
BIG4	0.650	1	0.477	0	1
MKT	0.060	0	0.238	0	1
Other variable					
CHAH	0.105	0.032	0.266	−0.403	1.278
IA	0.656	1	0.500	0	1

주1) 변수의 정의 : *DBTD*=t년도 Desai and Dharmapala(2006) 모형에 기초하여 추정된 재량적 BTD) ; *BTD*=t년도 (세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기초총자산 ; *CETR*=t년도 현금유효세율(=법인세부담액/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GETR*=t년도 GAAP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ESG_dif*=t년도 한국ESG기준원의 ESG 등급에서 당기와 전기의 차이 변동(=ESG_t−ESG_{t-1}), 여기서 ESG 등급(예로, A+, A, B+, B, C, D 등급)을 서열순위변수(예로, 1~6)로 재측정함 ; *ESG_up*=t년도 ESG 등급이 전년보다 상승하면 1, 아니면 0 ; *ESG_down*=t년도 ESG 등급이 전년보다 하락하면 1, 아니면 0 ; *ESG*=t년도 ESG 등급 수준 ; *CHAF*=t년도 감사보수의 변화(=[감사보수$_t$−감사보수$_{t-1}$]/감사보수$_{t-1}$) ; *SIZE*=t년도 기말총자산에 자연로그 ; *MTB*=t년도 자본에 대한 시장가치/장부가치 ; *LEV*=t년도 총부채/총자산 ; *RND*=t년도 연구개발비/매출액 ; *PPE*=t년도 감사상각 유형자산/기초총자산 ; *INTA*=t년도 무형자산/기초총자산 ; *ROA*=t년도 당기순이익/기초총자산 ; *NOL*=t년도 이전 10년간의 손실발생 빈도 ; *DA*=t년도 Kothari et al.(2005) 모형에 기초하여 추정된 ROA성과통제의 재량적 발생액 ; *Zscore*=t년도 Altman(1968)의 재무적 제약 측정치인 Z−score에 (−1)을 곱함 ; *AGE*=t년도 기업의 설립연수에 자연로그 ; *FOR*=t년도 외국인지분율 ; *OWN*=t년도 대주주지분율(특수관계자를 고려) ; *BIG4*=t년도 Big 4 회계법인(예로, 삼일, 삼정, 안진, 한영)에게 감사받은 기업이면 1, 아니면 0 ; *MKT*=t년도 코스닥기업이면 1, 거래소의 유가증권기업이면 0 ; *CHAH*=t년도 감사시간의 변화(=[감사시간$_t$−감사시간$_{t-1}$]/감사시간$_{t-1}$) ; IA=t년도 재무분석가가 존재하는 기업이면 1, 아니면 0임.

주2) 분석기간은 2012년부터 2023년까지임.

기타 통제변수의 경우 중 SIZE(총자산)의 평균이 27.177이다. 이 변수의 자연로그 전의 값은 28,207억원이었다. MTB(자본의 시장가치/장부가치)의 평균은 1.407로 자본의 시장가치가 장부가치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고, LEV(부채비율)의 평균은 0.360으로 나타나 타인자본보다 자기

자본의 비중이 더 높았다. RND(연구개발비/매출액)의 평균은 0.012인 반면, PPE(유형자산/기초총자산)의 평균은 0.164이며, 또한 INTA(무형자산/기초총자산)는 0.019인 것으로 나타났다.

ROA(총자산이익률)의 평균은 0.053이고, NOL(과거 10년간 손실발생 빈도)의 평균은 1.143이며, DA(Kothari et al.(2005) 모형에 기초하여 추정된 ROA성과통제의 재량적 발생액)의 평균은 0.000이다. 재무적 제약 측정치인 Zscore(Altman(1968)의 Z－score)의 평균은 －1.232이고, AGE(설립연수)의 평균은 3.547이다. AGE의 자연로그 값을 취하기 전의 값은 평균이 39.780이다. 이는 평균 약 40년 역사의 상장기업들이 표본으로 구성되었음을 나타낸다. 소유구조 변수인 FOR(외국인지분율)의 평균은 0.113이고, OWN(대주주지분율)의 평균은 0.452로 나타나 이들 수치 값은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박종일・이윤정 2022). BIG4(대형회계법인 여부)의 평균은 0.650이고, MKT(시장구분)는 0.060이다. 이는 표본에서 대형회계법인이 감사한 경우가 더 많고, 한국ESG기준원의 경우 코스닥기업보다는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에 대해 주로 ESG 평가를 수행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추가분석에 이용된 기타 변수로 IA(재무분석가 수의 존재여부)의 평균은 0.656이다. 이는 ESG 등급이 공시된 기업의 경우 재무분석가가 존재하는 경우가 65.6%임을 의미한다.

2. 상관관계

<표 4>에 식(1)의 모형에 대한 변수들 간의 피어슨 상관관계를 보고하였다. 먼저 분석에 이용된 네 개의 종속변수(DBTD, BTD, CETR, GETR) 간에 유의하게 양(＋)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심변수 ESG_dif는 네 개의 종속변수 중 DBTD를 제외하면 유의한 상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즉 ESG_dif와 DBTD 간에는 양(＋)의 상관성을 보인다. 그러나 앞서의 결과들은 두 변수 간의 단순 상관성에 대한 사항이고, 가설 1의 경우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제변수를 고려한 연구모형 식(1)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23]

한편, 수준변수인 ESG는 네 개의 종속변수 중 GETR을 제외한 나머지 DBTD, BTD 및 CETR과 유의하게 양(＋)의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 이중 ESG와 DBTD 및 BTD의 결과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박종일・이윤정 2024). CHAF는 네 개의 종속변수 중 GETR의 경우만 유의하게 음(－)의 상관성이다. 그러나 가설 2의 관심변수는 상호작용변수(ESG_dif×CHAF)이므로, 연구모형인 식(2)을 통해 회귀분석 결과로 살펴볼 사항이다.

23) 한편, ESG_dif와 ESG 간에는 0.41로 양(＋)의 상관성을 보인다. 이는 전년보다 ESG 등급이 상승하면 ESG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후술하겠지만, 이들 두 변수를 같이 고려해도 다중공선성 문제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피어슨 상관관계

Variabl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1]	*DBTD*	1																					
[2]	*BTD*	0.92***	1																				
[3]	*CETR*	0.65***	0.63***	1																			
[4]	*GETR*	0.38***	0.37***	0.55***	1																		
[5]	*ESG_dif*	0.03**	0.01	0.00	−0.01	1																	
[6]	*ESG*	0.07***	0.05***	0.03**	0.00	0.41***	1																
[7]	*CHAF*	−0.01	−0.00	−0.02	−0.03**	−0.02	0.01	1															
[8]	*SIZE*	0.02	0.01	−0.03**	−0.03**	0.05***	0.61***	0.02	1														
[9]	*MTB*	0.02	0.03*	0.01	0.02*	0.05***	0.08***	0.04**	0.00	1													
[10]	*LEV*	−0.08***	−0.09***	−0.14***	−0.14***	0.01	0.09***	−0.01	0.17***	0.04***	1												
[11]	*RND*	0.04***	0.04***	0.01	0.05***	0.01	0.10***	0.02	0.06***	0.24***	−0.11***	1											
[12]	*PPE*	0.06***	0.02	0.02	0.01	0.03**	0.12***	0.01	0.16***	0.07***	0.30***	0.02	1										
[13]	*INTA*	0.00	−0.03*	−0.04**	−0.03**	0.03**	0.19***	0.03**	0.18***	0.17***	0.08***	0.16***	0.05***	1									
[14]	*ROA*	0.28***	0.39***	0.26***	0.19***	−0.02*	0.04***	0.05***	0.00	0.32***	−0.21***	0.10***	0.04***	0.03**	1								
[15]	*NOL*	0.12***	0.14***	0.04**	−0.02	−0.03**	−0.08***	−0.03*	−0.12***	0.05***	0.30***	−0.03*	0.00	−0.04***	−0.10***	1							
[16]	*DAK*	−0.10***	0.07***	−0.02	0.02	−0.03**	−0.09***	−0.02	−0.05***	−0.08***	0.07***	−0.00	−0.04***	−0.10***	−0.10***	0.07***	1						
[17]	*Zscore*	0.00	−0.01	−0.03*	0.06***	0.03**	0.03**	−0.01	0.11***	−0.13***	−0.13***	0.09***	−0.11***	−0.04***	−0.42***	0.11***	0.13***	1					
[18]	*AGE*	−0.02	−0.01	−0.04***	−0.02	−0.04***	−0.11***	−0.03**	−0.04***	−0.14***	−0.01	−0.08***	−0.04***	−0.10***	−0.15***	0.12***	0.04***	0.10***	1				
[19]	*FOR*	−0.01	−0.03**	0.00	−0.01	0.02	0.32***	0.02	0.49***	0.20***	−0.11***	0.09***	0.07***	0.13***	0.21***	−0.19***	−0.15***	−0.08***	−0.07***	1			
[20]	*OWN*	−0.01	−0.02	0.03*	0.05***	0.01	−0.13***	0.00	−0.15***	−0.14***	−0.08***	−0.16***	0.00	−0.09***	−0.10***	−0.13***	0.02	0.07***	−0.05***	−0.31***	1		
[21]	*BIG4*	−0.03*	−0.04***	−0.03**	−0.01	0.07***	0.33***	0.00	0.41***	0.04***	0.04***	0.09***	0.08***	0.15***	0.01	−0.14***	−0.06***	−0.02	−0.11***	0.25***	−0.02	1	
[22]	*MKT*	0.04***	0.05***	0.02	0.02	0.03**	−0.04**	0.07***	−0.06***	0.22***	−0.05***	0.17***	−0.04***	0.10***	0.18***	0.01	−0.05***	0.01	−0.16***	0.01	−0.06***	−0.07***	1

주1) 변수 정의는 <표 3>을 참조. 표에 보고된 사항은 피어슨 상관계수임.
주2) 표본은 분석기간 2012년부터 2023년까지 5,127개 기업/연 자료임.
주3) *, **, ***는 각각 0.1, 0.05, 0.01 이내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양측검증).

기타 통제변수의 경우 네 개의 종속변수(DBTD, BTD, CETR, GETR)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로 유의미한 상관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SIZE, LEV, INTA, DA, AGE, FOR, BIG4는 종속변수에 대해서 대체로 음(−)의 상관성이 나타났고, MTB, RND, PPE, ROA, NOL, OWN, MKT는 종속변수에 대해 양(+)의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 다만, Zscore는 조세회피 측정치(CETR, GETR)에 따라 음(−) 또는 양(+)의 상관성을 보인다.

이러한 앞서의 상관성의 결과로 볼 때,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무형자산의 비중이 클수록, 재량적 발생액 수준이 높을수록, 기업의 설립연수가 길수록, 외국인지분율이 높을수록, 대형회계법인이 감사하면 조세회피 수준이 낮은 반면, 자본의 시장가치가 클수록, 연구개발비 투자가 많거나 유형자산의 비중이 클수록, 총자산이익률이 높을수록, 과거 손실발생 빈도가 많을수록, 대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코스닥기업에 속하면 조세회피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3. 가설 1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표 5>는 본 연구의 가설 1인 ESG 변동과 조세회피 수준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식(1)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표 5>의 추정모형 (1)부터 (4)까지는 각각 네 개의 종속변수(TAVO)에 해당하는 DBTD, BTD, CETR 및 GETR일 때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에서 추정모형 (1)~(4)의 경우 연도 및 산업과 관련한 고정효과를 통제한 회귀분석 결과이고, 개별기업 수준의 군집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클러스터링이 조정된 t 값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앞서 전술한 것처럼 ESG 수준을 통제한 후에 ESG 변동(ESG_dif)의 효과가 조세회피에 어떤 추가적인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는 ESG 수준변수를 변동변수와 같이 모형에 고려하였다.

먼저 F 값은 추정모형 (1)부터 (4)까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본 연구모형의 설정은 적합성이 있다.[24] 설명변수에 대한 모형의 설명력($Adj.\ R^2$)은 추정모형 (2), (1), (3), (4)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종속변수가 BTD일 때 설명력은 0.254, DBTD일 때 0.166, CETR일 때 0.125, GETR일 때 0.103이다.

---

24) <표 5>의 회귀분석 결과에서 설명변수 간에 다중공선성 문제를 알아보기 위하여 VIF(분산팽창요인) 값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추정모형 (1)부터 (4)까지는 통제변수가 같으므로,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VIF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변수는 SIZE로 그 값은 모두 2.66이었다. VIF 값에서 10 이상이 나타날 때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표 5>의 회귀분석 결과는 다중공선성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았다.

〈표 5〉 ESG_dif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의 회귀분석 결과 : H1

Variable	종속변수			
	DBTD	*BTD*	*CETR*	*GETR*
	(1)	(2)	(3)	(4)
ESG_dif	**0.000** **[0.068]**	**−0.000** **[−0.562]**	**−0.003** **[−0.807]**	**−0.002** **[−0.623]**
ESG	0.002** [2.485]	0.002** [2.452]	0.010** [2.211]	0.003 [0.901]
CHAF	−0.004** [−1.974]	−0.003 [−1.514]	−0.020* [−1.796]	−0.014 [−1.475]
SIZE	0.000 [0.396]	0.001 [0.750]	−0.008** [−1.989]	−0.007** [−2.238]
MTB	−0.002*** [−3.550]	−0.003*** [−3.914]	−0.011*** [−3.549]	−0.002 [−1.067]
LEV	−0.009** [−2.160]	−0.008* [−1.673]	−0.109*** [−4.503]	−0.053** [−2.511]
RND	0.053* [1.715]	0.058* [1.854]	0.074 [0.554]	0.204* [1.739]
PPE	0.023*** [3.959]	0.014** [2.238]	0.112*** [3.556]	0.081*** [3.148]
INTA	0.025 [1.048]	0.023 [0.877]	−0.040 [−0.341]	−0.003 [−0.027]
ROA	0.287*** [10.166]	0.441*** [11.983]	1.267*** [11.644]	0.871*** [11.259]
NOL	0.004*** [8.701]	0.004*** [8.731]	0.011*** [4.320]	0.000 [0.200]
DAK	−0.061*** [−4.296]	0.061*** [3.654]	−0.004 [−0.071]	0.083** [2.179]
Zscore	0.007*** [4.699]	0.009*** [5.428]	0.013 [1.457]	0.038*** [5.564]
AGE	−0.000 [−0.259]	0.000 [0.350]	−0.008 [−1.450]	0.001 [0.157]
FOR	−0.021*** [−2.748]	−0.030*** [−3.481]	−0.005 [−0.150]	−0.014 [−0.524]
OWN	0.003 [0.562]	0.001 [0.194]	0.030 [1.168]	0.051** [2.337]
BIG4	−0.002 [−1.219]	−0.001 [−0.794]	−0.010 [−1.258]	0.004 [0.587]

〈표 5〉 ESG_dif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의 회귀분석 결과 : H1 (계속)

Variable	종속변수			
	DBTD	*BTD*	*CETR*	*GETR*
	(1)	(2)	(3)	(4)
MKT	−0.004 [−1.122]	−0.005 [−1.529]	−0.042*** [−2.906]	−0.031** [−2.412]
Constant	−0.029 [−1.490]	−0.036 [−1.619]	−0.138 [−1.294]	−0.096 [−1.130]
Fixed−Effects	Year and Industry	Year and Industry	Year and Industry	Year and Industry
Clustered SEs	Firm	Firm	Firm	Firm
Adj. R^2	0.166	0.254	0.125	0.103
F Value	9.939***	9.588***	9.794***	7.586***
N	5,127	5,127	5,127	5,127

주1) 변수 정의는 <표 3>을 참조.
주2) 괄호 [ ] 수치는 OLS 회귀분석 시에 개별기업 수준의 클러스터링이 조정된 t 값임.
주3) *, **, ***는 각각 0.1, 0.05, 0.01 이내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양측검증).

<표 5>에서 먼저 ESG 수준변수의 결과는 조세회피 측정치 중 GETR을 제외하면 나머지 DBTD, BTD 및 CETR과 5% 이내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계수값이 나타났다. 이는 ESG 등급 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조세회피 성향이 높다는 결과로, 선행연구 중 박종일・이윤정(2022)과 일치한다.

본 연구의 가설 1에 대한 관심변수인 ESG_dif는 네 개의 조세회피 측정치(DBTD, BTD, CETR, GETR) 모두에 대해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평균적으로 ESG와 조세회피의 관계에서 ESG 수준과 달리, ESG 변동은 추가적인(incremental) 설명력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달리 말해, ESG와 조세회피의 관계에서 ESG 변동분보다 ESG 수준 자체가 더 설명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표 5>의 결과로 볼 때 한해 연도의 ESG 등급 변화보다는 ESG 수준 자체가 높은 기업이 더 조세회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결과로 볼 때 ESG 변동이 조세회피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던 가설 1의 경우 이를 지지하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한편, CHAF는 네 개의 조세회피 측정치와 주로 음(−)의 값을 보이며, 종속변수가 DBTD와 CETR일 때 유의한 음(−)의 관계로 나타나 전년 대비 감사보수가 증가한 기업일수록 조세회피 수준은 낮음을 의미한다. 이는 감사인의 감사노력의 대용치 중 감사보수가 증가할수록 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이 감소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기타 통제변수들의 경우 조세회피 측정치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INTA, AGE, BIG4를 제외하면 유의미한 관계로 나타났다. 즉 SIZE, MTB, LEV, DA, FOR, MKT는 종속변수에 대해서 대체로 음(−)의 관계를, RND, PPE, ROA, NOL, Zscore, OWN는 양(+)의 관계이다. 이 중에서 MTB와 MKT를 제외하면 나머지 변수들은 <표 4>의 상관성과 일관된다.

4. 가설 2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표 6>은 본 연구의 가설 2인 ESG 변동과 조세회피의 관계에 감사인의 감사노력이 증가할수록 조절효과의 역할을 하는지 식(2)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앞서 가설 1에 대한 <표 5>의 경우 ESG 변동과 조세회피 간에 평균적으로는 유의미한 결과가 관찰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앞서 <표 5>의 경우에서 CHAF는 조세회피와 음(−)의 상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ESG 변동과 조세회피의 관계에 외부감시주체 중 하나인 감사인의 경제적 동기(economic motive)에 해당하는 감사보수가 증가할 경우 긍정적인 조절효과로 작동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사항이 <표 6>의 결과이다. 표의 보고방법은 앞서와 유사하다. <표 6>에서 관심변수는 추정모형 (1)~(4) 모두 상호작용변수인 ESG_dif×CHAF이다.

<표 6>의 결과에서 관심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5] 본 연구의 가설 2에 대한 관심변수인 ESG_dif×CHAF는 종속변수에 대해 전반적으로 음(−)의 값을 보이며, 주로 종속변수가 DBTD, CETR 및 GETR일 때 각각 5%, 10%, 5% 이내에서 유의하게 음(−)의 값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가설 1의 증거인 <표 5>에서는 ESG_dif와 조세회피 간에 평균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감사인의 감사보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기업일수록 감사노력이 증가되어 조세회피 억제에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즉, 앞서 <표 6>의 결과는 전년 대비 ESG 등급이 상승하고 감사보수 역시 전년보다 증가할수록 기업의 조세회피 억제에 긍정적인 조절효과로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한편으로, 감사보수의 증가라는 감사인의 경제적 동기가 클수록 ESG 변동과 조세회피 간에 긍정적인 조절효과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감사인의 감사노력이 증가할수록 ESG 변화와 조세회피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던 가설 2의 경우 조세회피 측정치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지지된 증거를 보였다.

---

25) <표 6>의 회귀분석 결과에 대해서 변수 사이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는지 VIF 값으로 확인해 보았다. 추정모형 (1)~(4) 모두 VIF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변수는 SIZE로 그 값은 모두 2.66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의 결과로 볼 때 <표 6>의 회귀분석 결과는 다중공선성 문제가 그리 심각하지 않았다.

〈표 6〉 ESG_dif와 조세회피의 관계에 CHAF의 조절효과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H2

Variable	종속변수			
	DBTD	*BTD*	*CETR*	*GETR*
	(1)	(2)	(3)	(4)
ESG_dif	0.001 [1.148]	0.000 [0.212]	0.000 [0.105]	0.001 [0.439]
CHAF	−0.004* [−1.867]	−0.003 [−1.438]	−0.019* [−1.707]	−0.013 [−1.384]
ESG_dif×CHAF	**−0.004**** **[−2.284]**	**−0.003** **[−1.639]**	**−0.019*** **[−1.737]**	**−0.017**** **[−2.224]**
ESG	0.002** [2.491]	0.002** [2.455]	0.010** [2.212]	0.003 [0.902]
SIZE	0.000 [0.452]	0.001 [0.788]	−0.008* [−1.942]	−0.007** [−2.186]
MTB	−0.002*** [−3.534]	−0.003*** [−3.901]	−0.011*** [−3.532]	−0.002 [−1.047]
LEV	−0.009** [−2.160]	−0.008* [−1.672]	−0.109*** [−4.504]	−0.052** [−2.516]
RND	0.052* [1.709]	0.058* [1.850]	0.072 [0.541]	0.202* [1.729]
PPE	0.023*** [3.932]	0.014** [2.218]	0.111*** [3.533]	0.081*** [3.127]
INTA	0.026 [1.073]	0.023 [0.894]	−0.038 [−0.323]	−0.001 [−0.009]
ROA	0.288*** [10.206]	0.442*** [12.006]	1.270*** [11.704]	0.873*** [11.356]
NOL	0.004*** [8.679]	0.004*** [8.718]	0.011*** [4.308]	0.000 [0.181]
DAK	−0.060*** [−4.283]	0.061*** [3.667]	−0.003 [−0.054]	0.084** [2.201]
Zscore	0.007*** [4.701]	0.009*** [5.428]	0.013 [1.455]	0.038*** [5.561]
AGE	−0.000 [−0.247]	0.000 [0.359]	−0.008 [−1.443]	0.001 [0.168]
FOR	−0.021*** [−2.757]	−0.030*** [−3.488]	−0.005 [−0.161]	−0.015 [−0.535]
OWN	0.003 [0.606]	0.001 [0.226]	0.031 [1.202]	0.052** [2.370]

〈표 6〉 ESG_dif와 조세회피의 관계에 CHAF의 조절효과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H2 (계속)

Variable	종속변수			
	DBTD	*BTD*	*CETR*	*GETR*
	(1)	(2)	(3)	(4)
BIG4	−0.002 [−1.214]	−0.001 [−0.790]	−0.010 [−1.254]	0.004 [0.592]
MKT	−0.004 [−1.125]	−0.005 [−1.530]	−0.042*** [−2.908]	−0.031** [−2.414]
Constant	−0.031 [−1.570]	−0.037* [−1.667]	−0.145 [−1.356]	−0.103 [−1.204]
Fixed−Effects	Year and Industry	Year and Industry	Year and Industry	Year and Industry
Clustered SEs	Firm	Firm	Firm	Firm
Adj. R^2	0.167	0.254	0.126	0.104
F Value	9.939***	9.522***	9.710***	7.570***
N	5,127	5,127	5,127	5,127

주1) 변수 정의는 <표 3>을 참조.
주2) 괄호 [ ] 수치는 OLS 회귀분석 시에 개별기업 수준의 클러스터링이 조정된 t 값임.
주3) *, **, ***는 각각 0.1, 0.05, 0.01 이내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양측검증).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ESG 변동과 조세회피의 관계는 ESG 수준과 조세회피의 관계와 달리, 두 변수 간에 평균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감사인의 감사보수가 전년보다 증가할수록 ESG 변동과 조세회피의 관계는 음(−)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감사보수의 증가는 조세회피 감소에 긍정적인 조절효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추가분석 결과

본 절에서는 다음의 몇 가지 추가분석을 별도로 수행하였다. 첫째, 가설 1과 관련한 <표 5>의 분석에서는 관심변수 ESG_dif에 대해 연속변수를 이용한 결과였다. 본 절의 첫 번째 추가분석에서는 ESG_dif 대신 지시변수를 이용하여 ESG가 상승한 경우와 하락한 경우에 각각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이 차별적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절에서는 전년보다 당기의 ESG가 상승한 경우(ESG_up) 또는 하락한 경우(ESG_down)를 지시변수의 형태로 구성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ESG_up은 전년보다 당기의 ESG가 상승하면 1, 아니면 0이고,

또한 ESG_down은 전년보다 당기의 ESG가 하락하면 1, 아니면 0이다. 식(1)의 모형에 ESG_dif 대신 ESG_up과 ESG_down으로 대체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의 제시방법은 앞서 <표 5>의 경우와 유사하다. 다만, 이후 추가분석들에 대해서는 지면관계상 관심변수의 사항만 중심으로 요약된 표를 보고하였다.

〈표 7〉 추가분석 1 : H1에 대해 지시변수(ESG_up, ESG_down)를 이용한 경우

Variable	종속변수			
	DBTD	*BTD*	*CETR*	*GETR*
	(1)	(2)	(3)	(4)
ESG_up	**0.001** **[0.605]**	**0.000** **[0.247]**	**−0.000** **[−0.036]**	**0.002** **[0.287]**
ESG_down	**0.001** **[0.691]**	**0.002** **[1.006]**	**0.018*** **[1.793]**	**0.015*** **[1.910]**
ESG	0.002*** [2.594]	0.002** [2.534]	0.011** [2.511]	0.004 [1.210]
Control variable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N	5,127	5,127	5,127	5,127

주1) 변수 정의는 <표 3>을 참조.
주2) 괄호 [ ] 수치는 OLS 회귀분석 시에 개별기업 수준의 클러스터링이 조정된 t 값임.
주3) *, **, ***는 각각 0.1, 0.05, 0.01 이내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양측검증).

<표 7>의 결과를 보면, 관심변수 중 ESG_up은 네 개의 조세회피 측정치에 대해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이와 달리, ESG_down은 네 개의 조세회피 측정치 중 ETR계열에 해당하는 CETR과 GETR에 대해 모두 10% 이내에서 유의하게 양(+)의 값이 나타났다. 조세회피 측정치 중 4개 중 2개의 경우에서 유의한 값이 나타나고 있어 제한된(limited) 증거이기는 하나, ESG가 상승한 경우보다는 하락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조세회피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ETR 계열의 측정치는 ESG가 상승한 경우와 하락한 경우 간에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이 차별적이었다. 특히, ESG가 상승한 기업들은 별다른 차이가 없는 반면, ESG가 하락한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조세회피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설 2와 관련해서 <표 6>의 분석에 대해 감사인 특성, 코로나19 전후, 그리고 정보비대칭 여부에 따라 표본을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즉 앞서 <표 6>의 결과인 ESG_dif× CHAF와 조세회피 간에 유의한 음(−)의 관계가 Big 4 감사인 여부에 따라, 또는 코로나19 전후기간에 따라, 그리고 재무분석가의 존재여부로 측정한 정보비대칭 정도에 따라 차별적인 반

응을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절의 두 번째 추가분석에서는 먼저 대형회계법인 여부(Big 4 vs. non-Big 4)로 표본을 나누어 살펴본 회귀분석 결과를 <표 8>에 보고하였다. <표 8>의 Panel A는 Big 4 표본의 결과를, Panel B는 non-Big 4 표본의 결과에 해당한다.

<표 8>을 보면, Big 4 표본의 결과인 Panel A의 경우 관심변수 ESG_dif×CHAF는 네 개의 종속변수 중 DBTD, CETR 및 GETR일 때 각각 10%, 5%, 5% 이내에서 유의한 음(-)의 값이 나타나 앞서 <표 6>와 전반적으로 일관된다. 반면, non-Big 4 표본인 Panel B의 경우 관심변수 ESG_dif×CHAF는 네 개의 조세회피 측정치 모두에서 유의한 값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 미뤄볼 때, <표 6>에서 ESG_dif×CHAF와 조세회피 측정치 간에 유의한 음(-)의 관계로 나타난 경우가 주로 Big 4 감사인에게 감사받은 표본에 기인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외부감사기능을 수행할 때 규모가 큰 대형회계법인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ESG 변동과 조세회피의 관계에 보다 긍정적인 감시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가설 2에서 예상한 ESG_dif×CHAF와 조세회피 간에 음(-)의 관계는 대형회계법인 여부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표 8>의 증거는 보여주고 있다.

〈표 8〉 추가분석 2 : H2에 대해 Big 4 vs. non-Big 4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Panel A : Big 4

Variable	종속변수			
	DBTD	*BTD*	*CETR*	*GETR*
	(1)	(2)	(3)	(4)
ESG_dif	0.001 [0.920]	0.000 [0.132]	0.005 [0.907]	0.003 [0.727]
CHAF	−0.005 [−1.492]	−0.003 [−0.770]	−0.021 [−1.266]	−0.028** [−1.967]
ESG_dif×CHAF	**−0.005*** **[−1.701]**	**−0.003** **[−1.028]**	**−0.031**** **[−2.189]**	**−0.028**** **[−2.535]**
ESG	0.002*** [2.596]	0.002** [2.248]	0.010* [1.923]	0.002 [0.640]
Control variable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N	3,334	3,334	3,334	3,334

〈표 8〉 추가분석 2 : H2에 대해 Big 4 vs. non-Big 4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계속)

Panel B : non-Big 4

Variable	종속변수			
	DBTD	*BTD*	*CETR*	*GETR*
	(1)	(2)	(3)	(4)
ESG_dif	0.002 [1.218]	0.001 [0.643]	−0.007 [−0.804]	0.004 [0.523]
CHAF	−0.002 [−0.847]	−0.003 [−1.276]	−0.015 [−0.969]	0.008 [0.619]
ESG_dif×CHAF	**−0.004** **[−1.613]**	**−0.004** **[−1.553]**	**−0.004** **[−0.205]**	**−0.002** **[−0.138]**
ESG	−0.000 [−0.038]	0.001 [0.316]	0.011 [1.195]	0.001 [0.188]
Control variable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N	1,793	1,793	1,793	1,793

주1) 변수 정의는 <표 3>을 참조.
주2) 괄호 [ ] 수치는 OLS 회귀분석 시에 개별기업 수준의 클러스터링이 조정된 t 값임.
주3) *, **, ***는 각각 0.1, 0.05, 0.01 이내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양측검증).

본 절의 세 번째 추가분석은 앞서와 같은 맥락에서 코로나19 전후기간(예로, 2012−2019 vs. 2020−2023)에 따라 ESG_dif×CHAF와 조세회피 간에 유의한 음(−)의 관계에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본다. 이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9>에 제시하였다. <표 9>의 Panel A는 코로나19 이전기간(2012−2019) 표본의 결과를, Panel B는 코로나19 이후기간(2020−2023) 표본의 결과에 해당한다.

<표 9>를 보면, 코로나19 이전의 표본인 Panel A에서 관심변수 ESG_dif×CHAF는 네 개의 종속변수 모두에서 유의한 값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달리, 코로나19 이후의 표본인 Panel B에서 관심변수 ESG_dif×CHAF는 네 개의 조세회피 측정치(DBTD, BTD, CETR, GETR) 모두 10% 또는 5% 이내에서 유의하게 음(−)의 값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표 6>에서 ESG_dif×CHAF와 조세회피 측정치 간에 유의한 음(−)의 관계로 나타난 경우가 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기간 표본에 기인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외생적 충격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ESG 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보다 높아진 시점에서 주로 ESG_dif×CHAF와 조세회피 간에 음(−)의 관계는 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2017년 신외부감사법의 개정 이후 규제당국은 감사인의 감사품질 향상을 위하여 여러 새로

운 제도(표준감사시간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등)를 도입하고 이를 시행함에 따라 감사인의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가 과거보다 크게 증가되었기 때문에 코로나19 이전보다 이후 들어서 ESG_dif×CHAF와 조세회피 간에 음(−)의 관계가 보다 강화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설 2에서 예상한 ESG_dif×CHAF와 조세회피 간에 음(−)의 관계는 코로나19 전후기간에 따라 차별적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표 9>의 증거는 보여준다.

〈표 9〉 추가분석 3 : H2의 경우 코로나19 전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Panel A : 코로나19 이전 (2012−2019)

Variable	종속변수			
	DBTD	*BTD*	*CETR*	*GETR*
	(1)	(2)	(3)	(4)
ESG_dif	0.001 [1.244]	0.001 [0.381]	0.004 [0.652]	0.002 [0.544]
CHAF	−0.009** [−2.578]	−0.008** [−2.115]	−0.044** [−2.040]	−0.031* [−1.762]
ESG_dif×CHAF	**−0.001** **[−0.464]**	**−0.000** **[−0.147]**	**−0.005** **[−0.243]**	**−0.012** **[−0.915]**
ESG	0.001 [0.784]	0.001 [0.869]	0.004 [0.627]	−0.001 [−0.184]
Control variable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N	3,053	3,053	3,053	3,053

Panel B : 코로나19 이후 (2020−2023)

Variable	종속변수			
	DBTD	*BTD*	*CETR*	*GETR*
	(1)	(2)	(3)	(4)
ESG_dif	0.000 [0.094]	−0.000 [−0.230]	0.000 [0.014]	0.002 [0.304]
CHAF	−0.002 [−0.824]	−0.002 [−0.602]	−0.007 [−0.565]	−0.002 [−0.217]
ESG_dif×CHAF	**−0.005*** **[−1.958]**	**−0.005*** **[−1.741]**	**−0.025*** **[−1.854]**	**−0.019**** **[−1.993]**
ESG	0.003*** [2.620]	0.003** [2.507]	0.010* [1.906]	0.004 [0.924]
Control variable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N	2,074	2,074	2,074	2,074

주1) 변수 정의는 <표 3>을 참조.
주2) 괄호 [ ] 수치는 OLS 회귀분석 시에 개별기업 수준의 클러스터링이 조정된 t 값임.
주3) *, **, ***는 각각 0.1, 0.05, 0.01 이내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양측검증).

본 절의 네 번째 추가분석은 앞서와 같은 측면에서 재무분석가의 존재여부로 측정한 정보비대칭 여부(예로, 재무분석가가 존재하는 기업 vs. 재무분석가가 미존재 기업)에 따라 ESG_dif×CHAF와 조세회피 간에 유의한 음(−)의 관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재무분석가는 해당 기업에 대한 이익예측치 정보를 시장에 제공함으로써 기업과 투자자 간의 정보환경을 개선시켜 정보비대칭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한다(Das et al. 1998). 따라서 재무분석가가 존재하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정보비대칭 수준은 더 낮을 수 있다(김진수 · 김임현 2014 ; 박형주 · 조중석 2019). 이와 관련된 회귀분석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의 Panel A는 재무분석가 수가 존재하는 표본의 결과를, Panel B는 재무분석가 수가 미존재하는 표본의 결과이다.

<표 10>을 보면, 재무분석가 수가 존재하는, 즉 정보비대칭이 낮은 집단의 표본인 Panel A에서 관심변수 ESG_dif×CHAF는 네 개의 종속변수 중 DBTD, BTD, GETR에서 주로 1%, 5%, 10% 이내에서 유의한 음(−)의 값이 나타났다. 이와 달리, 재무분석가 수가 미존재하는, 즉 정보비대칭이 높은 집단의 표본인 Panel B에서 관심변수 ESG_dif×CHAF는 네 개의 조세회피 측정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10〉 추가분석 4 : H2에 대해 정보비대칭 여부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Panel A : 재무분석가 수가 존재

Variable	종속변수			
	DBTD	*BTD*	*CETR*	*GETR*
	(1)	(2)	(3)	(4)
ESG_dif	0.002 [1.593]	0.001 [0.888]	0.003 [0.497]	0.003 [0.915]
CHAF	−0.004 [−1.114]	−0.003 [−0.813]	−0.034** [−2.256]	−0.021* [−1.693]
ESG_dif×CHAF	**−0.007***** **[−2.621]**	**−0.006**** **[−2.061]**	**−0.021** **[−1.468]**	**−0.016*** **[−1.771]**
ESG	0.002* [1.842]	0.001 [1.561]	0.006 [1.203]	−0.001 [−0.296]
Control variable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N	3,361	3,361	3,361	3,361

〈표 10〉 추가분석 4 : H2에 대해 정보비대칭 여부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계속)

Panel B : 재무분석가 수가 미존재

Variable	종속변수			
	DBTD	*BTD*	*CETR*	*GETR*
	(1)	(2)	(3)	(4)
ESG_dif	0.000 [0.152]	−0.001 [−0.543]	−0.011 [−1.130]	−0.008 [−1.082]
CHAF	−0.004 [−1.319]	−0.003 [−1.028]	0.001 [0.043]	−0.001 [−0.091]
ESG_dif×CHAF	**0.001** **[0.229]**	**0.001** **[0.397]**	**−0.009** **[−0.494]**	**−0.010** **[−0.697]**
ESG	0.002 [1.434]	0.003** [2.069]	0.022** [2.506]	0.017** [2.397]
Control variable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N	1,766	1,766	1,766	1,766

주1) 변수 정의는 <표 3>을 참조.
주2) 괄호 [ ] 수치는 OLS 회귀분석 시에 개별기업 수준의 클러스터링이 조정된 t 값임.
주3) *, **, ***는 각각 0.1, 0.05, 0.01 이내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양측검증).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표 6>에서 ESG_dif×CHAF와 조세회피 측정치와 유의한 음(−)의 관계는 주로 정보비대칭 수준이 낮은 표본에 기인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 중 하나는 재무분석가가 외부감시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김진수・김임현 2014 ; 박형주・조중석 2019)의 주장에 기초해 볼 때, 재무분석가가 존재하는 기업들에서 ESG_dif×CHAF와 조세회피 간에 음(−)의 관계가 더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설 2에서 예상한 ESG_dif×CHAF와 조세회피 간에 음(−)의 관계는 정보비대칭 정도에 따라 차별적인 반응이 있음을 <표 10>의 증거는 보여준다.

본 절의 다섯 번째 추가분석에서는 가설 2와 관련해서 ESG_dif×CHAF와 조세회피 간에 유의한 음(−)의 관계가 CHAF 대신 감사시간의 변화(이하 CHAH)로 분석한 경우에도 앞서와 유사한 증거가 관찰되는 현상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식(2)의 모형에서 CHAF와 ESG_dif×CHAF 대신 CHAH와 ESG_dif×CHAH로 대체한 후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표 11>에 보고하였다.

<표 11>을 보면, 가설 2와 관련한 관심변수 ESG_dif×CHAH는 네 개의 종속변수 중 DBTD와 CETR에 대해 모두 10% 이내에서 유의한 음(−)의 값이 나타났다. 그러나 ESG_dif×CHAH는

종속변수가 BTD와 GETR에서 음(−)의 값이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가설 2의 관심변수를 ESG_dif×CHAH로 분석한 경우 <표 6>에서의 ESG_dif×CHAF의 결과와 비교해 좀 더 제한된 증거를 보이고는 있으나, 대체로 <표 6>의 결과인 ESG_dif×CHAF와 유사한 증거로 나타났다.[26] 즉, 전년 대비 ESG 등급이 상승하고 감사시간이 증가한 경우도 기업의 조세회피 억제에 긍정적인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인의 경제적 동기인 감사보수의 증가뿐 아니라, 감사인의 감사시간이 증가한 경우도 ESG 변동과 조세회피의 관계에 긍정적인 조절효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11〉 추가분석 5 : H2에 대해 ESG_dif×CHAH를 이용한 경우

Variable	종속변수			
	DBTD	*BTD*	*CETR*	*GETR*
	(1)	(2)	(3)	(4)
ESG_dif	0.001 [0.766]	0.000 [0.021]	−0.000 [−0.057]	−0.002 [−0.548]
CHAH	−0.003 [−1.283]	−0.003 [−1.043]	−0.019 [−1.560]	−0.011 [−1.133]
ESG_dif×CHAH	**−0.005*** **[−1.815]**	**−0.004** **[−1.536]**	**−0.027*** **[−1.766]**	**−0.002** **[−0.261]**
ESG	0.002*** [2.589]	0.002** [2.530]	0.010** [2.273]	0.003 [0.950]
Control variable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N	5,127	5,127	5,127	5,127

주1) 변수 정의는 <표 3>을 참조.
주2) 괄호 [ ] 수치는 OLS 회귀분석 시에 개별기업 수준의 클러스터링이 조정된 t 값임.
주3) *, **, ***는 각각 0.1, 0.05, 0.01 이내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양측검증).

마지막으로, 가설 1과 2와 관련하여 관심변수 ESG_dif 및 ESG_dif×CHAF가 공격적(aggressive) 조세회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즉, 앞서 <표 5> 및 <표 6>의 결과는 종속변수인

26) 한편으로, <표 11>에서 ESG_dif×CHAH와 조세회피의 음(−)의 관계보다 <표 6>에서 ESG_dif×CHAF와 조세회피의 음(−)의 관계가 보다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은 감사인의 감사노력의 대용치로 감사시간의 증가보다 경제적 동기가 포함된 감사보수가 증가될 때 ESG 변동과 조세회피의 음(−)의 관계에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 중 하나는 감사인이 감사시간을 추가로 투입하는 데 있어 감사보수의 증가라는 경제적 유인책인 보상이 있을 때 감사노력을 더 하게 될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해 ESG 변화와 조세회피의 관계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조세회피 측정치에 대해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세회피에 보다 적극적인 성향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지는 않은 결과였다. 이를 위해 본 절에서는 조세회피의 공격성 여부를 Donohoe and Knechel(2014) 및 박종일 · 지승민(2016)의 방법에 따라 각 조세회피 측정치(DBTD, BTD, CETR, GETR)를 기준으로 상위 5분위수 이상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로 측정하였다. 이하 agg_DBTD, agg_BTD, agg_CETR, agg_GETR로 지칭한다. 여기서 1의 값을 가진 기업은 보다 공격적 조세회피 성향이 있는 것이고, 0이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해석한다. 식(1) 및 식(2)에서의 종속변수 대신 더미변수로 측정된 네 개의 종속변수(agg_DBTD, agg_BTD, agg_CETR, agg_GETR)로 대체한 후, 본 절에서는 Logit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에서 Panel A는 가설 1에 대한 사항이고, Panel B는 가설 2에 대한 사항이다. 앞서와 같이 지면상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요약된 표로 제시하였다.

〈표 12〉 추가분석 6 : H1 및 H2에서 종속변수가 공격적 조세회피인 경우의 Logit 회귀분석 결과

Panel A : H1

Variable	종속변수			
	agg_DBTD	*agg_BTD*	*agg_CETR*	*agg_GETR*
	(1)	(2)	(3)	(4)
ESG_dif	**−0.066** **[−1.128]**	**−0.115*** **[−1.820]**	**−0.127**** **[−2.107]**	**−0.067** **[−1.145]**
ESG	0.126** [2.162]	0.151*** [2.577]	0.236*** [3.679]	0.049 [0.789]
Control variable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Pseudo R^2	0.1512	0.1852	0.1663	0.1546
Wald chi2	434.73	503.35	441.94	408.71
N	5,127	5,127	5,127	5,127

Panel B : H2

Variable	종속변수			
	agg_DBTD	*agg_BTD*	*agg_CETR*	*agg_GETR*
	(1)	(2)	(3)	(4)
ESG_dif	−0.019 [−0.296]	−0.088 [−1.301]	−0.083 [−1.254]	−0.017 [−0.270]
CHAF	−0.211* [−1.650]	−0.189 [−1.488]	−0.155 [−1.199]	−0.153 [−1.240]

〈표 12〉 추가분석 6 : H1 및 H2에서 종속변수가 공격적 조세회피인 경우의 Logit 회귀분석 결과 (계속)

Variable	종속변수			
	agg_DBTD	*agg_BTD*	*agg_CETR*	*agg_GETR*
	(1)	(2)	(3)	(4)
ESG_dif×CHAF	**−0.248*** [−1.752]**	**−0.149 [−0.959]**	**−0.232* [−1.794]**	**−0.260** [−2.209]**
ESG	0.126** [2.159]	0.151*** [2.578]	0.236*** [3.669]	0.049 [0.787]
Control variable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Pseudo R^2	0.1519	0.1855	0.1669	0.1553
Wald chi2	440.15	508.36	442.69	408.93
N	5,127	5,127	5,127	5,127

주1) 변수 정의는 <표 3>을 참조. 다만, *agg_DBTD*=t년도 DBTD를 기준으로 상위 5분위수 이상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 *agg_BTD*=t년도 BTD를 기준으로 상위 5분위수 이상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 *agg_CETR*=t년도 CETR를 기준으로 상위 5분위수 이상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 *agg_GETR*=t년도 GETR를 기준으로 상위 5분위수 이상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임.
주2) 괄호 [ ] 수치는 Logit 회귀분석 시에 개별기업 수준의 클러스터링이 조정된 z 값임.
주3) *, **, ***는 각각 0.1, 0.05, 0.01 이내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양측검증).

<표 12>를 보면, Panel A에서 가설 1에 대한 관심변수 ESG_dif는 네 개의 종속변수 모두 음(−)의 값이나, 이중 공격적 조세회피 측정치가 agg_BTD와 agg_CETR의 경우만 각각 10%와 5% 이내에서 유의한 음(−)의 값이 나타났다. 앞서 <표 5>의 경우 조세회피 측정치를 이용한 경우는 ESG_dif는 평균적으로 네 개의 조세회피 측정치와 유의미한 관계가 관찰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면, 종속변수를 공격적 조세회피 여부로 분석한 결과는 종속변수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네 개의 종속변수 중 2개에서 ESG_dif는 공격적 조세회피 성향 여부와 유의하게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제한된 증거이긴 하나, 전년 대비 ESG 등급이 상승할수록 공격적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1의 경우 종속변수를 조세회피 대신 공격적 조세회피 여부를 고려하여 분석하면 제한된 증거를 보이고 있으나, ESG 변화와 공격적 조세회피 간에는 음(−)의 관련성이 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적으로 전년보다 ESG 등급이 상승한 기업일수록 적극적인 조세회피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Panel B에서 관심변수 ESG_dif×CHAF는 네 개의 종속변수에 대해 모두 음(−)의 값을 보이나, 주로 종속변수가 agg_DBTD, agg_CETR 및 agg_GETR일 때 각각 10%, 10%, 5% 이내에서 유의하게 음(−)의 값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년 대비 ESG 등급이 상승하고 감사보수 역

시 전년보다 증가할수록 기업의 공격적인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한편으로, 이 결과는 앞서 가설 2에 대한 주된 결과인 <표 6>과도 질적으로 일관된다. 따라서 주된 결과인 <표 5>와 <표 6>과 비교해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가설 1의 사항이다. 즉 조세회피 수준을 연속변수로 측정한 경우와 달리, 공격적 조세회피 여부로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할 경우 네 개의 공격적 조세회피 측정치 중 2개에서 ESG_dif는 공격적 조세회피와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한 기간의 ESG 등급 상승이 공격적 조세회피 성향의 억제에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Ⅴ. 결 론

종전 논문들과 달리, 본 연구는 ESG 평가등급의 변화가 조세회피 수준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또한 ESG 등급 변화와 조세회피의 관계에서 감사인의 감사노력이 조절효과의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았다.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관심변수로 ESG 변동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ESG기준원에서 제공하는 ESG 통합평가 등급 자료를 이용하고, 종속변수로 네 가지 조세회피 측정치를, 또한 조절변수인 감사노력의 대용치로는 감사보수의 증가 또는 감사시간의 증가를 이용하였다. 분석기간은 2012년부터 2023년까지 ESG 자료가 존재하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ESG 수준변수와 조세회피 간에는 대체로 유의하게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ESG 변동변수와 조세회피 간에는 평균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ESG 등급 변동을 지시변수로 측정하여 분석한 경우에는 전년보다 ESG 변동이 상승한 경우보다는 하락한 지시변수에서 주로 조세회피와 유의하게 양(+)의 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ESG 등급이 상승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조세회피 성향에 차이가 없으나, ESG 등급이 하락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조세회피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둘째, ESG 등급 변동과 조세회피의 관계는 감사보수가 증가할수록 유의하게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ESG 등급이 전기보다 상승하고 감사인의 감사보수가 전기보다 증가할수록 조세회피 수준을 낮춘다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감사보수 증가에 따른 감사인의 경제적 동기가 클 때 ESG 변동과 조세회피 수준 간에 긍정적인 조절효과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표본을 나누어 분석할 경우 앞서의 관계는 대형회계법인이 감사한 경우, 코로나19 이후,

그리고 재무분석가가 존재하여 정보비대칭이 낮은 집단에서 더 뚜렷한 결과를 보였다.

셋째, 감사인의 감사시간이 증가한 경우에도 ESG 변동과 조세회피 간에 유의하게 음(−)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이는 감사보수 증가에 따른 감사인의 경제적 동기뿐만 아니라, 감사노력을 감사시간으로 측정한 경우에도 ESG 등급 변화와 조세회피의 관계에 긍정적인 조절효과로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를 공격적 조세회피 여부로 측정하여 로짓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에서는 ESG 변동변수는 공격적 조세회피와 유의하게 음(−)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하지만 네 개의 종속변수 중 2개의 경우만 나타나 제한된 증거였다. 이러한 결과는 ESG 등급 변화가 상승할수록 공격적 조세회피 성향의 가능성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또한 ESG 등급 변동과 공격적 조세회피의 관계 역시 감사보수가 증가할수록 유의하게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두 번째 결과와 일관된다.

이상을 요약하면, 본 연구는 ESG 등급 변화와 조세회피의 관계에서 ESG 등급 변화 자체보다는 외부감사주체인 감사인의 감사보수가 증가 또는 감사시간이 증가하는 경우 조세회피 억제에 중요한 조절효과 역할을 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발견은 규제당국 및 정책입안자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왜냐하면 ESG 경영은 내부지배구조에 따른 영향을 받으므로, ESG 등급 변화는 평균적으로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메커니즘으로써 외부지배구조 중 하나인 외부감사인의 감사노력이 증가할수록 ESG 등급 변화와 조세회피의 관계에 긍정적인 조절효과로 작동한다는 것을 본 연구는 이들을 서로 연계하여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규제당국은 2017년 10월에 신외부감사법 개정을 통해서 감사인의 감사노력을 제고하려는 여러 제도의 도입을 시행하는 꾸준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본 연구결과는 ESG 등급 변화와 조세회피의 관계에서 ESG 등급 변화 자체보다 외부감시주체인 감사인의 감사노력이 보다 증가할 때 조세회피 수준 감소에 대한 긍정적인 조절효과의 역할로 작동하고 있음을 실증적 증거로 제공해 주고 있으므로, 규제기관이나 정책입안자들이 신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른 실효성을 판단할 때 유익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앞서의 실증적 발견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분석상의 한계는 존재한다. 첫째, 한국ESG기준원의 ESG 등급 자료는 모든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특정 규모 이상의 대략 900～1,000개 정도의 기업만 선별하여 평가 후 공시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전체 상장사로 투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이용된 네 가지 조세회피 측정치(DBTD, BTD, CETR, GETR) 모두 변수의 측정 시에 세전이익, 추정과세소득 및 ETR 값이 모두 양(+)인 기업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수익성이 있는 상장사

만 표본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분석상에 자기선택 편의의 문제는 남아 있다. 마지막으로, 식(1) 및 식(2)의 연구모형에서 추가로 포함하지 못한 생략변수의 문제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사항은 ESG 자료와 조세회피를 분석한 과거 선행연구들의 경우에도 쉽게 관찰되는 동일한 방법론상의 한계일 수는 있다.

"본 연구는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강정연・고종권. 2014.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39권 제1호 : 147－183.

강주훈・최미화. 2010.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와 이익성장성－비정상적 BTD와 정상적 BTD를 중심으로”.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제10권 제3호 : 151－170.

권수영・기은선. 2011. “발생액의 질이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회계학연구 제36권 제4호 : 95－137.

기은선. 2012.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조세회피 및 조세회피에 대한 시장반응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제29권 제2호 : 107－136.

김상명・박성욱・정희선. 2019. “경영자의 과신성향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제20권 제6호 : 35－61.

김선미・유승원・홍준용. 2020.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와 이익조정 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제21권 제5호 : 193－220.

김요환. 2015. “코스닥 기업에 관한 사회적 책임과 조세회피와의 관계”. 국제지역연구 제19권 제2호 : 200－213.

김용기・박성욱・김서현. 2022. “ESG, 경영전략과 조세회피”. 세무와회계저널 제23권 제5호 : 53－78.

김은주・조용언. 2012. “조세회피와 감사품질과 타인자본비용의 관련성”. 국제회계연구 제44호 : 279－300.

김진수・김임현. 2016. “조세회피가 정보비대칭에 미치는 영향 : 대형회계법인과 재무분석가의 외부감사효과를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제33권 제3호 : 111－141.

마희영. 2020. “기업지배구조 및 이익조정이 법인세비용과 현금납부법인세 차이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제37권 제2호 : 71－96.

박성원・고종권・김영철. 2014. “재무적 제약과 조세회피”. 회계저널 제23권 제4호 : 339－382.

박종일・이윤정. 2022. “경영자 과신성향 및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 ESG 평가를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제39권 제1호 : 9－59.

박종일・이윤정. 2024. “감사노력이 ESG와 조세회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제25권 제2호 : 9－51.

박종일・전규안. 2018. “비정상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과 감사품질 간의 관계 재분석”. 세무와회계저널 제19권 제5호 : 9－53.

박종일・전규안. 2022. “시간당 감사보수의 증가가 감사품질을 향상시키는가?”. 회계・세무와 감사연구 제64권 제3호 : 197－248.

박종일・전규안・노희천. 2009.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일시적 차이 및 순이연법인세 변동 정보가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치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제10권 제2호 : 225－260.

박종일・지승민. 2016. “세무보고 공격성이 감사인이 인지한 기대감사시간, 실제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 회계저널 제25권 제2호 : 389－434.

박준령・김요환. 2014.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상업교육연구 제28권 제6호 : 313－326.

박한순. 2014. “과세소득의 측정 및 감사노력과 조세회피의 관계”. 회계연구 제19권 제5호 : 73－102.

박형주・조중석. 2019. “회계이익의 불투명성과 정보비대칭 및 주가동조화”.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제61권 제4호 : 267－302.

배창현・김태동・신세찬. 2021. “비재무적 측정지표를 활용한 연구동향 및 ESG 이슈”. 회계저널 제30권 제2호 : 235－276.

신상이・박종일. 2020. “기업지배구조와 이익의 질이 지속적인 세무전략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제21권 제6호 : 75－122.

신영효. 2022. “다국적기업의 ESG경영과 조세회피 관계 분석”. 2022년 한국회계학회 발표논문.

안종훈・최수미. 2023.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 감사노력에 따른 영향을 중심으로”.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제65권 제2호 : 1－35.

유정은・손성진. 2024. “COVID－19 팬데믹 기간에도 ESG 경영과 ESG 경영 수준의 변동은 기업 가치를 증대시켜 주는가?”. 경영학연구 제53권 제4호 : 971－995.

이균봉・박수경. 2019. “CSR활동으로 구축한 기업신뢰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경영교육연구 제34권 제1호 : 311－339.

이정희・이유선・전규안. 2023. “실제감사시간과 표준감사시간의 차이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48권 제1호 : 69－109.

정현아・유순미. 2021. “ESG경영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경영교육연구 제36권 제6호 : 119－144.

한종수・강정윤・강소현. 2021.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회계실무 및 정책시사점 중심 문헌연구”. 회계저널 제30권 제5호 : 263－336.

홍미경・박준령. 2017. “기업특성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조세회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 KOSPI기업과 KOSDAQ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경영학회지 제14권 제6호 : 103－122.

Altman, E. 1968. Financial ratios, discriminant analysis and the prediction of corporate bankruptcy. *Journal of Finance* 23(4) : 589－609.

Armstrong, C. S., J. L. Blouin, A. D. Jagolinzer, and D. F. Larcker. 2015. Corporate governance, incentives, and tax avoidance.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60(1) : 1－17.

Balakrishnan, K., J. L. Blouin, W. R. Guay. 2019. Tax aggressiveness and corporate transparency. *The Accounting Review* 94(1) : 45－69.

Das, S., C. Levine, and K. Sivaramakrishnan. 1998. Earnings predictability and bias in analysts' earnings forecasts. *The Accounting Review* 73(2) : 277－294.

Davis, A., L. Krull, and B. Williams 2016. Do socially responsible firms pay more taxes? *The Accounting Review* 91(1) : 47－68.

Desai, M. and D. Dharmapala. 2006. Corporate tax avoidance and high powered incentive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79(1) : 145－179.

Donohoe, M. P. and W. R. Knechel. 2014. Does corporate tax aggressiveness influence audit pricing?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31(1) : 284－308.

Duong, T. Q. and Y. C. Huang. 2022. The mediation effects of tax avoidance between ESG and cost of debt, firm value : Evidence from ASEAN listed corporations. *Journal of Entrepreneurship, Business and Economics* 10(2S2) : 201－232.

Dyreng, S. D., M. Hanlon, and E. L. Maydew. 2008. Long－run corporate tax avoidance. *The Accounting Review* 83(1) : 61－82.

Godfrey, P and N. W. Hatch. 2005. Research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An agenda for the 21st Century. *Journal of Business Ethics* 70(1) : 87－96.

Guenther, D. A., S. R. Matsunaga, and B. M. Williams. 2017. Is tax avoidance related to firm risk? *The Accounting Review* 92(1) : 115－136.

Hanlon, M. and J. Slemrod. 2009. What does tax aggressiveness signal? Evidence from stock price reaction to news about tax shelter involvemen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3(1－2) : 126－141.

Hanlon, M. and S. Heitzman. 2010. A review of tax research.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50(2－3) : 127－178.

Hasan, I., C. K. Hoi, Q. Wu and H. Zhang. 2014. Beauty is in the eye of the beholder : The effect of corporate tax avoidance on the cost of bank loan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113(1) : 109－130.

Heninger, W. 2001. The association between auditor litigation and abnormal accruals. *The Accounting Review* 76(1) : 111－126.

Hoi, C. K., Q. W. Zhang, and H. Zhang. 2013. I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associated with tax avoidance? Evidence from irresponsible CSR activities. *The Accounting Review* 88(6) : 2025－2059.

Jiang, H., W. Hu, and P. Jiang. 2024. Does ESG performance affect corporate tax avoidance? Evidence from China. *Finance Research Letters* 61(1). 105056.

Kanagaretnam, K., J. Lee, and G. J. Lobo. 2016. Relation between auditor quality and tax aggressiveness : Implications of cross－country institutional differences. *Auditing : A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35(4) : 105－135.

Kim, J., Y. Li, and L. Zhang. 2011. Corporate tax avoidance and stock price crash risk : Firm level analysi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100(3) : 639－662.

Kothari, S., A. Leone, and C. Wasley. 2005. Performance matched discretionary accruals measure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9(1) : 163－197.

Lanis, R. and G. Richardson. 2012.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ax aggressiveness : An

empirical analysis.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31(1) : 86－108.

Pantazi, E. 2024. The effect of ESG on the tax avoidance. *Working paper*. International Hellenic University.

Slemrod, J. 2004. The economics of corporate tax selfishness. *National Tax Journal* 57(4) : 877－899.

Velte, P. 2020.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earnings management : A literature review. *Corporate Ownership & Control* 17(2) : 8－19.

Yoon, B. H., J. H. Lee, and J. H. Cho. 2021. The effect of ESG performance on tax avoidance : Evidence from Korea. *Sustainability* 13(12) : 1－16.

Zeng, T. 2019.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ax avoidance : International evidence. *Social Responsibility Journal* 15(2) : 244－257.

Does an Increase in ESG Ratings Constrain Tax Avoidance?

: Focus on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Increases in Audit Fees and Audit Hours

Jong-Il Park · Yun-Jeong Lee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test the effect of the change in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 ratings on tax avoidance. This study also examines whether auditors' efforts (i.e, increase in audit fees, increase in audit hours) have a positive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 between the change in ESG ratings and tax avoidance. For the purpose, this study used the aggregated ESG-score data from KCGS (the Korea Institute of Corporate Governance and Sustainability) from 2012 to 2023. We use four tax avoidance measure the discretionary BTD (book-tax income difference), BTD, cash ETR (effective tax rate), and GAAP ETR and we also use increases in audit fees or increases in audit hours as proxies for auditors' effort.

This study first find that the level in ESG ratings is positively related to tax avoidance, while we do not find that it i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change in ESG ratings and tax avoidance.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change in ESG ratings does not significantly affect direct impact on their level of tax avoidance. Nevertheless, we the second found that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nge in ESG ratings and tax avoidance strengthens as the auditors' audit fees increase, or as audit hours increas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an increase in auditors' economic compensation or audit efforts as a moderating effect, which strengthening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nge in ESG ratings and tax avoidance. Furthermore, the results that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nge in ESG ratings and tax avoidance when the auditors' efforts increase is stronger when their audit firm is Big 4 auditors, during the post-COVID19 pandemic, and high analyst coverage. In addition, by using Logit analysis method, we find that the increase in ESG ratings is lower for tax-aggressive avoidance, we also find that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nge in ESG ratings and tax-aggressive avoidance strengthens as the auditors' audit fees increase. The result showed that the increase in ESG ratings can reduce tax aggressiveness which is not captured by the level in ESG itself.

To sum up, the statistical results in this study did not exhibit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change in ESG ratings and tax avoidance. There is however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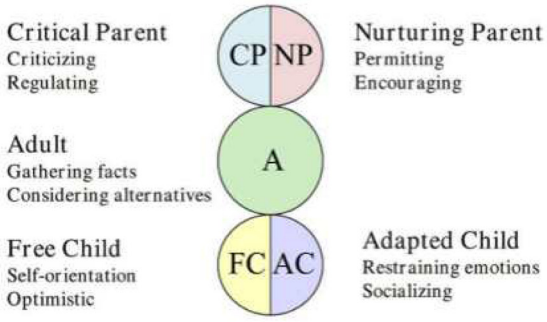
between the change in ESG ratings and tax avoidance when the auditors' efforts increase. This findings provided that the auditors' effort increase importantly moderate the relation between the change in ESG ratings and tax avoidance or tax aggressiveness. Thus, this study suggests that auditors' effort is an implicit factor in the reduction of tax avoidance related with the change in ESG rating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on the mechanisms that discourage tax avoidance and the literature on the relationship ESG and tax avoidance by shedding light on the role of auditors' coverage.

<Key words> the change in ESG ratings, the level in ESG, tax avoidance, auditors' effort, increase in audit fees, increase in audit hours, moderating effect

공인회계사와 세무사의 성격유형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변 정 희 · 조 경 민 · 김 훈
(단국대학교) (단국대학교) (순천향대학교)

공인회계사와 세무사의 성격유형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출처 : Bando(2018), 변정희 등(2019)

변정희(단국대 경영학박사)
조경민(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부동산법학과 겸임교수)
김 훈(순천향대 경영학과 외래교수)

2024. 10. 19(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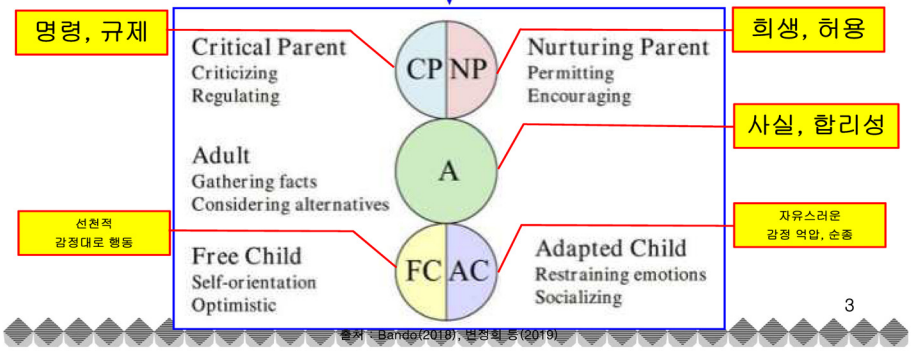
차 례

1. 서 론
1.1 연구배경 1.2 연구목적
2. 선행연구와 가설설정
2.1 선행연구와 가설1 2.2 선행연구와 가설2
2.3 선행연구와 가설3 2.4 선행연구와 가설4
3. 연구방법
3.1 변수 선정과 측정 3.2 자료수집
3.3 자아상태의 선정과 측정
4. 실증분석
4.1 '자아상태 성격유형'에 대한 기술적 통계량
4.2 '전반적 직무만족도'에 대한 기술적 통계량
4.3 '영역별 직무만족도'에 대한 기술적 통계량
4.4 '영역별 직무만족도'의 요인분석
4.5 경로분석(가설1) 4.6 경로분석(가설2) 4.7 경로분석(가설3) 4.8 경로분석(가설4)
5. 결 론
5.1 가설검정 종합 5.2 시사점 5.3 한계점

1. 서 론

1.1 연구배경

한 수험생 학부모의 논문(회계사의 성격유형과 직무적성 관련 연구) 요청
1. 공인회계사와 세무사의 성격유형



출처 : Bando(2018), 변정희 등(2019)

1. 서 론(계속)

1.1 연구배경(계속)

회계법인에서 근무하셨던 교수님의 경험담
2. 공인회계사와 세무사의 직무만족도

구 분
01) 귀하는 현재 하는 업무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02) 귀하는 현재의 직장을 주위의 지인(知人)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전반적 직무만족도'

출처 : 박양순 등(2011), 변정희 등(2017)

1. 서 론(계속)

1.2 연구목적

1. 자아상태의 성격유형에 따라 '영역별 직무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
2. '영역별 직무만족도'와 '전반적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
3. 성격유형에 따라 '전반적 직무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나는가

4. 추가로 조직(빅4 회계법인, 로컬회계법인, 세무 전문가)을 구분 후 1, 2, 3의 차별적 특성이 나타나는가

성격유형에 따라 각 '영역별 직무만족도'를 증가시킬 방안
궁극적으로 '전반적 직무만족도'를 증가시킬 방안

5

2. 선행연구와 가설설정

2.1 선행연구

1. '자아상태'와 '영역별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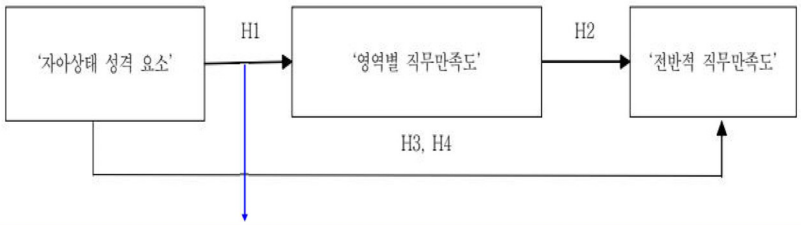
① 소방공무원(김엽래와 이해영 2019)
→ '양육적 부모(NP)' 유형이 가장 많은 영역(과제 난이도, 보수, 승진, 동료)에 해당하는 직무만족도가 높음

② 세무대리인 사무실 근무(변정희 등 2017)
→ '양육적 부모(NP)' 유형은 영역(관계)에, '성인(A)' 유형은 영역(업무/보상, 조직체계, 직장문화)의 직무만족도가 높으나 '순응하는 어린이(AC)' 유형은 영역(업무/보상)의 직무만족도가 낮음

6

2. 선행연구와 가설설정(계속)

2.1 가설1



가설 1 : 공인회계사와 세무사의 '자아상태 성격 요소'에 따라
공인회계사와 세무사가 업무에서 느끼는
'영역별 직무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7

2. 선행연구와 가설설정(계속)

2.2 선행연구

2. '영역별 만족도'와 '전반적 직무만족도' 간의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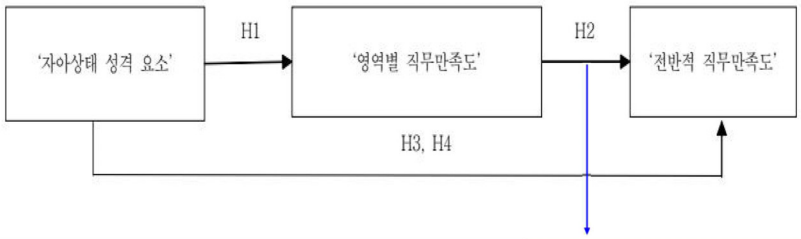
① 세무대리인 사무실 근무자(박양순 등 2011)
→ 영역(업무량과 시간, 급여 및 복리후생, 직원의 불만 수용)에서 느끼는 직무만족도가 전반적 직무만족도에 긍정적 영향

② 세무회계 종사자(변정희 등 2017)
→ 영역(업무/보상, 조직체계)에서 느끼는 직무만족도가 전반적인 직무만족도 긍정적 영향

8

2. 선행연구와 가설설정(계속)

2.2 가설2



가설 2 : 공인회계사와 세무사가 느끼는 '영역별 직무만족도'는
'전반적 직무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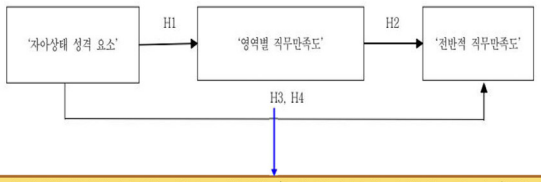
9

2. 선행연구와 가설설정(계속)

2.3 선행연구와 가설3

3. '자아상태'와 '전반적 직무만족도' 에 관한 연구

세무회계 종사자(변정희 등 2017)
→ '양육적 부모(NP)' 유형은 '전반적 직무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가설 3 : 공인회계사와 세무사의 '자아상태 성격 요소'에 따라
공인회계사와 세무사가 느끼는
'전반적 직무만족도'는 다를 것이다.

10

2. 선행연구와 가설설정(계속)

2.4 선행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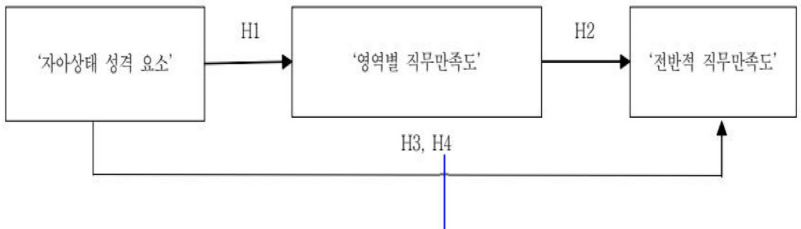
4. '자아상태'와 '전반적 직무만족도' 에 관한 연구(매개효과)

세무회계 종사자(변정희 등 2017)
→ '성인(A)' 유형이 '영역별 직무만족도'를 경유한 간접효과와 총효과가 '전반적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
→ '순응하는 어린이(AC)' 유형이 '영역별 직무만족도'를 경유한 간접효과와 총효과가 '전반적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

11

2. 선행연구와 가설설정(계속)

2.4 가설4



가설 4 : 공인회계사와 세무사의 '자아상태 성격 요소'에 따라 공인회계사와 세무사가 느끼는 '영역별 직무만족도'를 통하여 '전반적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다.

12

3. 연구방법

3.1 변수 선정과 측정

1. 설문지의 응답 대상
   서울지역이나 경기지역 등에 소재하는 빅4 회계법인, 로컬회계법인, 세무법인, 세무회계사무소의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를 대상

2. 설문지의 구성
① 공인회계사와 세무사의 '자아상태 성격 요소'에 대한 측정 : 50개 항목
② 공인회계사와 세무사의 '영역별 직무만족도'에 대한 측정 : 18개 항목
③ 공인회계사와 세무사의 '전반적 직무만족도'에 대한 측정 : 2개 항목

3. 설문지의 마련
① 선행연구를 근거로 설문지의 초안 마련
② 설문지 확정

13

3. 연구방법(계속)

3.2 자료수집

구분		빈도(명)	비율(%)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166	78.3%	근무 지역	서울	175	82.5%
	여성	46	21.7%		경기	29	13.7%
결혼 여부	미혼	33	15.6%		기타	8	3.8%
	기혼	179	84.4%	학력	고졸 이하	3	1.4%
연령	30세 미만	8	3.8%		전문대졸/재학	2	0.9%
	30~39세	40	18.9%		대졸/재학	128	60.4%
	40~49세	81	38.2%		대학원졸/재학	78	36.8%
	50~59세	60	28.3%	현재 근무처 (중복표시)	빅4 회계법인	60	28.2%
	60세 이상	19	9.0%		로컬회계법인	75	35.2%
직업	공인회계사	129	60.8%		세무법인	78	36.6%
	세무사	83	39.2%		세무회계사무소		

주) 설문 항목별로 무응답은 통계량 계산 시 항목별로 제거

14

3. 연구방법

3.3 자아상태의 선정과 측정

〈표 1〉 자아상태의 성격 요소를 측정하기 위한 항목 구성

구 분		부록 <Type A>의 항목 번호	항목 개수
자아상태	CP	02, 06, 13, 24, 28, 31, 34, 43, 48, 50	10
	NP	01, 07, 12, 14, 23, 25, 26, 30, 40, 45	10
	A	05, 09, 15, 19, 20, 22, 33, 37, 41, 46	10
	FC	04, 08, 10, 16, 27, 32, 36, 38, 44, 49	10
	AC	03, 11, 17, 18, 21, 29, 35, 39, 42, 47	10

1. 자아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항목은 Heyer(1979) 등에 의해 개발
2. 우재현(1995, 1998)에 의하여 한국인에게 적합한 표준화한 측정 도구 개발
3. 자아상태에 따른 성격 요소를 측정하는 5가지 성격 요소(CP, NP, A, FC, AC)는 요소당 10개, 총 50개 문항은 5점 척도로 측정

15

4. 실증분석

4.1 '자아상태 성격유형'에 대한 기술적 통계량

〈표 3〉 '자아상태' 에 따른 기술적 통계량

자아상태	남성		여성	
	한국인 평균	평균 (표준편차)	한국인 평균	평균 (표준편차)
CP	25.8	30.29 (3.071)	21.7	32.20 (4.303)
NP	34.9	30.91 (3.554)	35.8	29.67 (3.830)
A	33.7	33.36 (4.406)	29.3	30.72 (5.687)
FC	27.0	28.04 (4.507)	28.8	28.35 (4.164)
AC	25.7	33.34 (3.516)	27.8	32.52 (4.416)

16

4. 실증분석(계속)

4.2 '전반적 직무만족도'에 대한 기술적 통계량

아래의 항목별로 **귀하의 의견**에 해당하는 곳('**매우 불만족** 또는 **결코추천안함**'이면 ①점에, '**매우 만족** 또는 **적극추천**'하면 ⑤점)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구 분	평균[1]	표준편차	*Cronbach α*
01) 귀하는 현재 하는 업무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4.00	0.812	0.835
02) 귀하는 현재의 직장을 주위의 지인(知人)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3.89	0.899	
'전반적 직무만족도'	3.94	0.793	–

주) ① : "매우 불만족 또는 결코추천안함", ⑤ : "매우 만족 또는 적극추천"

17

4. 실증분석(계속)

4.3 '영역별 직무만족도'에 대한 기술적 통계량

아래의 항목별로 **귀하의 직무**를 하면서 **느낌**에 해당하는 곳('**매우 불일치**'하면 ①점에, '**매우 일치**'하면 ⑤점)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구 분	순위	평균[1]	표준편차
01) 일상적인 업무량과 근무시간이 적절하다.	17	3.11	1.087
02) 담당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12	3.44	0.929
03) 주요 업무(감사, 세무, 인수합병 등) 기간동안 업무량과 연장 근무시간이 적절하다.	18	3.08	1.075
04) 업무량과 근무시간에 비해 현재의 급여수준은 적절하다.	13	3.37	0.992
05) 경력에 비해 현재의 급여수준은 적절하다.	14	3.33	0.991
06) 급여 외의 복리후생은 적절하다.	16	3.25	1.035
07) 거래처나 상사의 업무요구가 적절하다.	15	3.28	0.856
08) 거래처나 상사가 건의나 불만 사항을 수용한다.	10	3.65	0.709
09) 거래처나 상사가 능력향상에 노력한다.	11	3.50	0.879
10) 동료들 간의 친밀성과 인간관계가 좋다.	7	3.91	0.746
11) 동료 간에 서로 업무의 지원과 도움을 준다.	2	3.97	0.691
12) 동료 간에 의사소통 또는 업무지원이 이루어진다.	5	3.95	0.683
13) 주요 업무(감사, 세무, 인수합병 등)에서 본인의 능력을 발휘 할 기회가 주어진다.	8	3.90	0.718
14) 주요 업무(감사, 세무, 인수합병 등) 후 거래처나 상사로부터의 좋은 평판을 받을 기회가 주어진다.	6	3.92	0.705
15) 업무결과로 거래처나 상사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3	3.96	0.684
16) 집↔사무실 출, 퇴근 소요시간과 거리가 적절하다.	9	3.66	1.134
17) 사무실의 구조, 인테리어, 청결상태가 적절하다.	3	3.96	0.899
18) 주차시설이나 대중교통 또는 주변 편의시설(은행, 공공기관)을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1	4.02	0.871

주) ① : "매우 불일치", ⑤ : "매우 일치"

18

4. 실증분석(계속)

4.4 '영역별 직무만족도'의 요인분석

구분	설문 항목 번호	요인	요인 적재값	Communality	Cronbach α	평균 (순위[1])
1	15	계발 기회	0.865	0.864	0.916	3.928 (2)
	14		0.861	0.872		
	13		0.835	0.826		
2	05	급여와 복리후생	0.918	0.883	0.866	3.321 (5)
	04		0.876	0.854		
	06		0.731	0.667		
3	10	동료관계	0.876	0.830	0.926	3.942 (1)
	11		0.874	0.894		
	12		0.858	0.901		
4	01	업무와 근무	0.871	0.792	0.807	3.211 (6)
	03		0.837	0.817		
	02		0.741	0.678		
5	08	개선 의지	0.774	0.677	0.747	3.475 (4)
	09		0.773	0.716		
	07		0.667	0.701		
6	17	물리적인 환경	0.797	0.723	0.642	3.879 (3)
	18		0.713	0.707		
	16		0.690	0.561		

주) 각 요인의 평균 순위(① : "매우 불일치", ⑤ : "매우 일치")

4. 실증분석(계속)

4.5 경로분석(가설1)

〈표 7〉 자아상태의 '성격 요소' 와 '영역별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

영역별 만족도 / 자아상태	전체조직					
	계발 기회	급여와 복리후생	동료관계	업무와 근무	개선 의지	물리적인 환경
CP	−0.013	−0.032	0.091	−0.09	−0.05	0.101
NP	0.131 *	0.033	0.228 ***	0.112	0.161 **	0.001
A	0.154 **	0.176 **	0.03	0.226 ***	−0.006	−0.038
FC	0.085	−0.095	−0.097	0.174 **	−0.029	0.015
AC	0.01	0.125	0.11	−0.017	0.214 ***	0.202

주) ***, **, *는 1%, 5%, 10% 수준에서 유의적임.

4. 실증분석(계속)

4.6 경로분석(가설2)

〈표 8〉 '영역별 직무만족도' 와 '전반적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

영역별 직무만족도 \ 전반적 직무만족도	전체조직
계발 기회	0.071
급여와 복리후생	0.198 ***
동료관계	0.241 ***
업무와 근무	0.029
개선 의지	0.165 **
물리적인 환경	0.211 ***

주) ***, **, *는 1%, 5%, 10% 수준에서 유의적임.

21

4. 실증분석(계속)

4.7 경로분석(가설3)

<표 9>'자아상태'와 '전반적 직무만족도' 간의 직접효과

자아상태 \ 전반적 직무만족도	전체조직
CP	-0.2 ***
NP	0.207 ***
A	0.362 ***
FC	-0.078
AC	-0.302 ***

주) ***, **, *는 1%, 5%, 10% 수준에서 유의적임.

22

4. 실증분석(계속)

4.8 경로분석(가설4)

<표 10>'자아상태'와 '전반적 직무만족도' 간의 간접효과

전반적 직무만족도 / 자아상태	전체조직
CP	0.025
NP	0.101 **
A	0.05
FC	-0.033
AC	0.129 **

주) ***, **, *는 1%, 5%, 10% 수준에서 유의적임.

23

5. 결 론

5.1 가설검정 종합

〈표 8〉 '영역별 직무만족도' 와 '전반적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

전반적 직무만족도 / 영역별 직무만족도	전체조직
계발 기회	0.071
급여와 복리후생	0.198 ***
동료관계	0.241 ***
업무와 근무	0.029
개선 의지	0.165 **
물리적인 환경	0.211 ***

주) ***, **, *는 1%, 5%, 10% 수준에서 유의적임.

〈표 7〉 자아상태의 '성격 요소' 와 '영역별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

영역별 만족도 / 자아상태	전체조직					
	계발 기회	급여와 복리후생	동료관계	업무와 근무	개선 의지	물리적인 환경
CP	-0.013	-0.032	0.091	-0.09	-0.05	0.101
NP	0.131 *	0.033	0.228 ***	0.112	0.161 **	0.001
A	0.154 **	0.176 **	0.03	0.226 ***	-0.006	-0.038
FC	0.085	-0.095	-0.097	0.174 **	-0.029	0.015
AC	0.01	0.125	0.11	-0.017	0.214 ***	0.202

주) ***, **, *는 1%, 5%, 10% 수준에서 유의적임.

24

5. 결 론(계속)

〈표 3〉 '자아상태'에 따른 기술적 통계량

자아상태	남성		여성	
	한국인 평균	평균 (표준편차)	한국인 평균	평균 (표준편차)
CP	25.8	30.29 (3.071)	21.7	32.20 (4.303)
NP	34.9	30.91 (3.554)	35.8	29.67 (3.830)
A	33.7	33.36 (4.406)	29.3	30.72 (5.687)
FC	27.0	28.04 (4.507)	28.8	28.35 (4.164)
AC	25.7	33.34 (3.516)	27.8	32.52 (4.416)

영역별 만족도 / 자아상태	전체조직					
	계발 기회	급여와 복리후생	동료관계	업무와 근무	개선 의지	물리적인 환경
CP	−0.013	−0.032	0.091	−0.09	−0.05	0.101
NP	0.131 *	0.033	0.228 ***	0.112	0.161 **	0.001
A	0.154 **	0.176 **	0.03	0.226 ***	−0.006	−0.038
FC	0.085	−0.095	−0.097	0.174 **	−0.029	0.015
AC	0.01	0.125	0.11	−0.017	0.214 ***	0.202

직접효과

자아상태 \ 전반적 직무만족도	전체조직
CP	−0.2 ***
NP	0.207 ***
A	0.362 ***
FC	−0.078
AC	−0.302 ***

간접효과

자아상태 \ 전반적 직무만족도	전체조직
CP	0.025
NP	0.101 **
A	0.05
FC	−0.033
AC	0.129 **.

25

5. 결 론(계속)

5.2 시사점

① 공인회계사와 세무사의 성격 요소 중 '통제적 부모(CP)' 성향은 억제하고, '양육적 부모(NP)' 성향을 보다 활성화하여 공인회계사와 세무사가 느끼는 '영역별 직무만족도' 및 '전반적 직무만족도'를 개선

② 즉 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약자와 노약자를 잘 돌봐주기, 상대와 친근하고 부드럽게 말하기,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도록 노력하기 등

③ '순응한 어린이(AC)' 성향을 소유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를 위하여는 각 '영역별 직무만족도'를 높이면 궁극적으로 '전반적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

26

5. 결 론(계속)

5.3 한계점

① 일부 문항이 불완전할 가능성 존재

② 일부 지역에 소재하는 공인회계사와 세무사에 국한하여 설문조사를 하였기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주의 필요

이상의 한계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공인회계사와 세무사'와 관련된 추가적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

27



28

제 2 분과

세무회계

장소 : 325호 사회자 : **우용상 교수** (이화여대)

시 간	발표논문 제목	저자 및 발표자*	토론자
15:00 ~ 16:30	경영전략이 세무계획과 부채조달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김영철 (경상국립대) **강정연*** (선문대)	**김임현** (대구대)
	Optimization of Tax and Financial Reporting Plans and Reporting of Impairment Losses	**강나라*** (한경국립대) Ron, Singleton (Western Washington University)	**정태진** (한양대)
	공인회계사 세무서비스 제공 관련 독립성 규정의 현황과 개선방향 : 국제기준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오선영 (서울대) **신일항*** (가천대)	**정준양** (한영회계법인)

경영전략이 세무계획과 부채조달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김 영 철 · 강 정 연
(경상국립대학교) (선문대학교)

경영전략이 세무계획과 부채조달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김영철* · 강정연**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부채감세수단으로 효과적 세무계획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며, 부채조달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전략에 따른 차별점이 세무계획과 부채조달 간 대체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세무계획은 김영철 · 마희영(2021)에 따라 CCR－자료포락분석을 통해 측정되며, 경영전략은 최규담 등(2015)에 따라 6개 변수기반 통합측정치로 측정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계획을 통해 내부자금 보유수준을 높일 수 있는 경우 파산 등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부채의 활용도는 감소된다. 두 번째 시장개척 및 제품개발 등 투자에 적극적인 선도형 경영전략 채택 기업의 경우 부채를 활용한 자금조달에 적극적이다. 마지막으로 투자 등 지출을 위한 부채조달에 적극적인 선도형 경영전략기업의 경우 세무계획보다 투자활성화를 위한 자금조달에 의한 부채조달의사결정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하여 보수적 부채 사용으로 인한 세금 증대와 자금 부족의 대안으로 적극적인 세무계획을 활용한다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기업의 고유 목적인 주주이윤 극대화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대하여 세무계획과 부채조달의사결정 측면에서 이해를 제공한다는 시사점이 있다.

〈주제어〉 경영전략, 세무계획, 부채조달, 부채감세효과

* 제1저자, 경상국립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E－mail : kim.yc@gnu.ac.kr

** 교신저자, 선문대학교 IT경영학과 교수, E－mail : jykang@sunmoon.ac.kr

Ⅰ. 서 론

투자 측면에서 세금은 투자안의 세후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이며, 재무보고 측면에서 소득에 대한 세금은 법인세비용으로 당기순이익의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 따라서 세금은 투자 등 기업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요인이다(전규안 2004).

자금조달 측면에서 자본의 사용대가인 배당과 달리 부채의 사용대가인 이자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이자비용으로 인한 세금 감소효과는 자본구조의 결정요인으로 언급되어 왔다(Myers and Majluf 1984 ; Graham 1996 ; 고종권 2003).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의 부채조달수준과 한계세율은 양(+)의 관련성을 나타낸다(Graham 1996 ; 고종권 2003).

외환위기 이후 부채의 세금효과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부채조달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보수적 부채조달현상이 원인을 탐색하는 것은 세무회계분야의 흥미로운 연구주제 이다. Ko and Yoon(2011)은 보수적인 부채조달의 원인으로 파산비용 등 부채조달비용의 증가현상을 언급하고 있으며, 김영철 등(2015)은 재무유연성에 대한 확보노력으로 해석하고 있다.

세금효과는 부채감세효과(debt tax shield, 이하 DTS)와 비부채 감세효과(non-debt tax shield, 이하 NDTS)로 구분될 수 있다. DTS는 부채의 사용대가인 이자비용의 감세효과이며, NDTS는 부채 외 항목에 의한 감세효과를 의미한다. NDTS 대부분이 감가상각비 및 투자세액공제 등 투자와 관련된 항목이므로 투자 관련 감세효과로 인식되기도 한다(전규안 2004).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이 한정적이라는 측면에서 NDTS의 수단이 많은 기업의 경우 DTS의 효과가 감소할 것을 우려하여 부채보다 주식을 발행하려는 유인을 갖는다. 또한 기업은 부채조달에 따른 파산비용 및 대리인비용 등으로 인하여 DTS보다 NDTS를 선호할 수 있으므로 DTS와 NDTS의 대체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DeAngelo and Masulis 1980). 이러한 대체효과는 조세고갈효과로 인하여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기업보다 적은 세금을 부담하는 기업에서 크게 나타날 수 있다(MacKie-Mason 1990).

Basu(2005), Qiang(2007) 등 선행연구는 비조건부 보수주의를 통해 NDTS를 설명하고 있으며, Graham and Tucker(2006), Lim(2012) 등 선행연구는 조세피난처, 조세회피 등 세무계획을 통해 NDTS를 설명하고 있다.

NDTS로 설명되는 효과적인 세무계획은 모든 세금과 세금비용을 고려하여 세후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업의 의사결정이다(Scholes et al. 2014). 효과적 세무계획과 관련된 연구는 강정연 · 고종권(2014) 등 선행연구에 의해 조세회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조세회피는 세전이익, 현금흐름의 단위당 명시적 세금 감소를 위한 기업의 의사결정으로 정의된다(Dyreng et al.

2008). 다만 이렇게 정의된 조세회피는 감세 혜택에 따른 결과만을 고려하며,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로 인한 정보비대칭, 대리인비용, 평판하락 등의 비용 및 세무위험의 효과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다(Chen et al. 2010 ; 강정연 · 고종권 2014). Schwab et al.(2019)는 이러한 비판에 대한 대안으로써 Schwab et al.(2019)은 조세회피에 따른 감세혜택과 비용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효과적 세무계획의 측정치를 제시하고 있다. Schwab et al.(2019)은 조세회피에 따른 감세혜택은 세후이익으로 정의하며, 공격적 조세회피로 인한 비용은 McGuire et al.(2013) 등 선행연구에 따라 현금유효법인세율의 변동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Schwab et al.(2019)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포괄적인 세무계획을 통해 국내기업의 보수적 부채조달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기업은 제한된 자원의 활용과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위하여 경영전략을 수립하며, 수립된 경영전략을 기반으로 기업의 의사결정을 수행한다(박삼복 · 이화득 2014). 경영전략은 혁신전략(Ittner et al. 1997), 원가우위 및 차별화(Porter 1980)등으로 정의하였으며, Miles and Snow (2003)는 기업의 경영전략을 선도형, 분석형, 방어형으로 구분하였다. Miles and Snow(2003)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등 6가지 재무제표 요인을 중심으로 선도형 경영전략, 분석형 경영전략, 방어형 경영전략으로 구분하고 있다. 선도형 경영전략을 취하는 기업은 지속적인 혁신을 추가하는 집단으로써 불확실성을 수용하고 지속적인 신시장 개척과 제품개발에 투자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방어형 경영전략을 추구하는 기업은 혁신보다 조직운영의 안정성과 위험최소화를 추구하며, 현재 경영의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단으로써 새로운 투자보다 원가절감에 따른 성과개선을 수행하는 집단으로 해석한다. 또한 산업 내에서 대체재가 많이 없는 경우 선도형 경영전략을 취할 수 있으며, 산업 내 대체재가 많은 경우 투자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기 위하여 방어형 경영전략을 취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분석형의 경우 선도형과 방어형 중간의 경영전략 집단으로써 기업 환경 변화에 따라 효율적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집단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경영전략은 기업의 부채조달 의사결정과 세금계획을 의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선도형 기업은 지속적인 투자로 개발비 등 지출이 많고 투자세액공제 등 NDTS 수단을 많이 보유한 집단이므로 조세고갈효과로 인하여 DTS와 NDTS의 대체효과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선도형 기업이 효과적인 세무계획을 수립하면 부채조달이 감소할 것이고 효과적인 세무계획은 선도형 기업의 보수적 부채조달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방어형 기업은 혁신보다 원가우위전략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투자를 위한 자금확보 요인이 크지 않으며 투자세액공제 등 NDTS의 수단이 적고 상대적으로 연구개발 등 지출유인이 작아 조세고갈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방어형 기업에서 DTS와 NDTS의 대체효과는 상대적

으로 약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며, 기업은 효과적인 세무계획과 부채조달간의 관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선도형 기업이 지속적인 투자를 위하여 자금의 유동성 확보를 우선 과제로 설정하면 적극적 세무계획을 통한 내부유보금 확보와 부채를 통한 외부조달을 모두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따라서 선도형 기업에서 DTS와 NDTS의 대체효과는 다른 기업보다 작아질 수 있으며, 효과적인 세무계획은 선도형 기업에서 보다 분석형과 방어형 기업에서 보수적 부채조달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효과적 세무계획과 부채조달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보수적인 부채조달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세무계획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업의 경영전략에 따른 세무계획과 부채의 차별적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경영전략에 따른 보수적인 부채조달의 원인으로써 세무계획의 차별적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는 기업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전략이 부채조달 및 세무계획에 모두 영향을 미치며, 경영전략에 따라 DTS와 NDTS의 대체 관계가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업의 경영전략에 따라 보수적 부채조달의 결정요인으로써 세무계획의 의미가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선행연구

1. 부채조달 의사결정

DeAngelo and Masulis(1980)는 감가상각비, 투자세액공제, 이월결손금과 같은 비부채감세수단(non debt tax shields : NDTS)이 많아질수록 부채감세수단인 이자비용의 감세효과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NDTS가 많은 기업들은 부채를 상대적으로 적게 조달하게 되어 NDTS과 DTS간에는 대체효과가 존재한다는 이론적인 가설을 제시하였다. Mackie-Mason(1990)은 조세관련특성이 자본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업이 부채나 자기자본을 통해 자본구조를 변경할 때는 NDTS과 DTS간에 대체효과가 발생하며, 대체효과는 감세수단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이 연구에서는 감세수단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경우 부채보다는 자기자본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Dhaliwal et al.(1992)은 비부채감세수단과 부채감세수단간에는 대체효과와 조세소모효과, 그리고 부채담보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을 실증하였는데, 이 연구는 감세수단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서 대체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난다는 Mackie-Mason(1990)의 주장을 재검증한 것이다. 부채담보효과(부채비율과 고정자산간의 양의 관계를 예측함)를 통제한 후, 비부채감세수단과 부채감세수단간에 음의 관계를 보임으로써 조세소모가설과 일치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Graham(1996)은 기업의 한계세율과 부채조달은 양의 관계가 있음을 실증하였고, Harwood and Manzon(2000)에서는 미래 발생할 이자가 기업의 단기 및 장기부채의 조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Myers(2000)는 세금이 영향을 미친다는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기업이 연금 계획을 자본구조에 대한 대안으로 선택하는 경우 기업의 세금혜택은 연금 자산을 회사채에 할당하는 비율에 비례하여 증가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신승묘(1999)는 비부채감세수단이 많을수록 부채비율이 낮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업무무관자산을 많이 보유한 기업일수록 부채비율이 낮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2. 세무계획

Schwab et al.(2022)은 세금비용 및 비세금비용을 고려한 세무계획 측정치를 고안하여 제시하였다. Schwab et al.(2022)의 효과적인 세무계획(Effective Tax Planning ; 이하 ETP)은 납부하는 세금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을 최소화하여 세후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chwab et al.(2022)은 Scholes-Wolfson 패러다임(이하 SW패러다임)이 제시하고 있는 실증세무회계 연구의 목적을 기반으로 DEA분석을 통한 새로운 세무계획 측정치를 제시하고 효과적인 세무계획 측정치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효과적인 세무계획의 측정관점에서 살펴보면 지금까지의 현금유효법인세율(Cash ETR)보다 Schwab et al.(2022)의 측정치가 이론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보이고, 국내자료를 이용한 김영철・마희영(2021)에서도 그러한 결과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이윤경과 강정연(2023)은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을 모두 고려하여 측정한 효과적인 세무계획을 이용하여 효과적 세무계획과 기업가치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효과적인 세무계획과 기업가치는 유의한 양(+)의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을 모두 고려하여 효과적인 세무계획을 할 경우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조세회피가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과는 상반된 연구결과로 기업이 효과적인 세무계획을 위해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결과이다.

3. 경영전략[1)]

기업의 경영전략에 대하여는 다양한 이론이 존재한다. 경영전략에 대한 이론은 Miles and Snow(1978, 2003) 이론 이외에도 Porter(1980), March(1991) 및 Treacy and Wiersema (1995) 등이 있다.

Bentley et al.(2013)은 경영전략이 감리지적 여부, 재무제표 재작성 여부 및 회계 관련 소송 여부로 측정한 재무보고위반과 감사보수로 측정한 감사노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는데, 선도형 경영전략에 가까운 기업에서 재무보고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고 이에 따라 감사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Miles and Snow(1978, 2003)는 환경에 대한 기업의 적응패턴에 초점을 두어 생존 가능한 경영전략으로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양 극단에 위치하는 선도형(prospector)과 방어형(defender)을, 양 극단 사이에 위치하여 두 전략의 주요 특징을 겸비한 유형으로 분석형(analyzer)을 제시하고 있다. '선도형(prospector)'은 사업이 진행되는 시장 방향을 예측하거나 자체적인 연구개발 노력으로 시장 방향을 스스로 만들어 냄으로써 '최초'가 되어 성공을 일구는 기업으로 '지속적으로 새로운 제품, 서비스, 기술 및 시장을 추구'한다. 이 유형은 항상 신제품이나 신시장을 선도적으로 찾아 나서기 때문에 항상 변화의 중심에 있으므로 조세회피기회(tax planning opportunities)를 가지게 된다. 그런데 제품에 있어 항상 이용가능한 대체재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부정적 여론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덜하며 제품과 시장에서 위험을 선택하는 행위 등으로 조세회피에 더 적극적이게 될 것이다. 반대로, '방어형(defender)'은 다양한 유형의 제품이나 서비스 영역에서 사업을 시도하지 않고 그 대신 상대적으로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예측가능한 영역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려고 한다. 이 유형은 원가를 절감하는데 관심이 많으므로 조세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지만 평판위험(reputation risk) 등 조세회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과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하는 특성 때문에 조세회피기회(tax planning opportunities)가 주어져도 적극적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어 결국 조세회피가 최소화될 것이다. 한편, '선도형(prospector)'과 '방어형(defender)'의 주요 특징을 겸비하여 양 극단 사이에 위치한 '분석형(analyzer)'은 대외 환경의 변화와 불확실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경쟁기업의 이에 대한 반응을 지켜본 후 '선도형(prospector)'의 전략을 면밀히 분석한 다음 보다 효율적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제공함으로써 시장점유율을 늘려나가는 전략을 구사하는 유형이다.

---

1) 경영전략과 관련된 내용은 최규담 외(2015)을 참조하였음

Ⅲ. 연구방법

1. 연구 가설

1.1 세무계획과 부채조달의사결정

기업의 자본구조는 상충관계이론과 자본조달순위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상충관계이론은 부채사용에 따른 세금절감의 혜택과 부채조달에 따른 파산비용, 대리인비용 등을 의미한다(DeAngelo and Masulis 1980 ; Jensen 1986 ; Stulz 1990). 자본조달순위이론이란 시장의 정보비대칭으로 인하여 조달방법에 따라 비용이 차별적이며 이에 따라 자본조달의 순위가 있다는 이론이다(Myers 1984). DeAngelo and DeAngelo(2007)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보수적 부채조달현상은 상충관계이론과 자본조달순위이론에 의해 설명될 수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Graham(2000)은 부채조달에 따른 절세효과가 존재함에도 한계세율 수준에 못 미치는 부채를 사용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으며, Ko and Yoon(2011)에 따르면 이러한 보수적 부채조달현상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하는 현상임을 보고하고 있다. Molina(2005)는 보수적 부채조달현상이 파산비용에 대한 시장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Ko and Yoon(2011)은 우리나라의 보수적 부채조달현상은 부채의 세금효과보다 부채조달에 따른 파산 등의 비용을 중요하게 고려한 이유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영철・이윤경・고종권(2015)은 보수적 부채조달현상은 비용 관점에서 외환위기 이후 재무유동성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한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Graham et al.(2004) 등의 선행연구는 보수적 부채조달수준의 원인으로 부채감세효과(DTS)와 비부채 감세효과(NDTS)의 대체효과를 언급하고 있다. DTS는 부채사용에 따른 세금절감 혜택으로 부채사용의 대가인 이자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됨에 따라 과세소득과 법인세납부액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를 의미한다. NDTS는 부채와 관련 없는 감가상각비, 투자세액공제 등의 감세수단을 의미한다. NDTS는 비조건부 보수주의로 측정되기도 하였으며(김영철・이창수 2013) 세무계획 관점에서 조세회피로 측정될 수 있다(Lim 2012).

명시적 세금의 감소로 조세회피를 정의한 Dyreng et al.(2008)에 따라 장기 ETR이 조세회피의 측정치로 사용됐으며, Desai and Dharmapala(2006)의 연구를 기반으로 세무이익과 회계이익의 차이인 BTD로 조세회피가 측정됐다.

세무계획은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을 고려한 세후이익의 극대화를 의미한다(Scholes et al. 2014), 따라서 ETR이나 BTD와 같이 세금의 절세 혜택을 고려하고 조세회피에 따른 정보비대

칭 등 세무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측정치는 세무계획을 적정하게 반영할 수 없다(Schwab et al. 2019).

Scholes et al.(2014)에 따라 정보비대칭과 같은 조세회피에 따른 비용을 고려하고 세후이익을 극대화하는 효과적인 세무계획을 수행하면 비효율적인 투자와 의사결정이 감소하여 미래성과 및 세후이익이 증가할 수 있다(김영철・마희영 2021 ; 박종일・신상이 2020 ; 박성원과 이윤경 2016). 따라서 세무계획의 효과성이 증가할수록 미래 세금은 감소하고 세후이익과 내부유보금은 증가하여 절세를 위한 부채조달의 유인은 감소할 것이다. 이러한 기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첫 번째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1 : 효과적인 세무계획이 증가할수록 부채조달은 감소할 것이다.

1.2 경영전략에 따른 세무계획과 부채조달의사결정

Miles and Snow(2003)는 기업의 경영전략을 선도형, 분석형, 방어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선도형 기업은 시장에서 지속적인 제품, 기술 개발 및 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투자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대체재가 적은 시장에서는 선도형 전략이 주로 수행되므로 투자 실패에 따른 위험이 적고 평판 감소에 따른 영업수준 하락 위험이 적다. 지속적인 투자를 수행하는 선도형 기업은 투자세액공제 등 NDTS의 수단이 많고 조세회피에 따른 평판 감소 등의 위험 수용도가 높아서 적극적인 세무계획을 수행할 수 있다. 반면에 방어형 경영전략은 대체재가 많은 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전략으로 투자를 통한 혁신보다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수행한다. 또한 방어형 기업의 경우 시장 내의 경쟁 강도의 심화로 조세회피에 따른 평판 비용 하락의 영향이 매우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선도형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조세회피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더 높은 조세 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Higgings et al. 2015 ; 최규담 등 2015).

지속적인 혁신과 투자를 수행하며, 조세 위험 부담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선도형 기업의 경우 투자세액공제 등 NDTS의 수단을 많이 보유할 것이며, 연구개발에 대한 지출이 지속되어 과세소득 역시 크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위험회피 성향을 지닌 방어형 기업은 투자보다 원가절감에 따른 수익 확대를 추구하며 NDTS의 수단이 상대적으로 적고 조세고갈효과가 크지 않아 DTS와 NDTS의 대체효과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선도형 기업이 지속적인 투자를 위하여 자금의 유동성 확보를 우선 과제로 설정하면 내부자금 확보를 위하여 세무계획과 부채조달에 적극적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조세고갈효과에도 선도형 기업에서 DTS와 NDTS의 대체효과가 감소할 수 있으며, 오히려 선도형 전략기업에서 분석형 또는 방어

형 기업보다 세무계획이 보수적 부채조달현상을 설명하지 못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 경영전략에 따른 세무계획과 부채조달 의사결정은 상반된 견해가 존재하므로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설은 다음과 같이 귀무가설로 설정한다.

가설2 : 선도형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은 세무계획과 부채조달 간의 차별적 관련성이 없을 것이다.

2. 연구모형

2.1 세무계획과 부채조달의사결정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검증을 위하여 연구모형을 식(1)과 같이 설정한다.

식(1)의 종속변수는 t+1기 부채조달수준 DEBT이며, 설명변수는 세무계획 ETP이다.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과 같이 세무계획이 효과적일수록 부채조달은 감소된다면 TP의 회귀계수는 음(−)의 값을 가질 것이다. ETP의 회귀계수가 음(−)의 값을 가진다면 세무계획의 효과성은 보수적 부채조달수준의 설명요인으로써 의미가 있을 것이다.

$$\begin{aligned} DEBT_{it+1} = {} & \alpha_0 + \alpha_1 ETP_{it} \\ & + \alpha_2 EM_{it} + \alpha_3 SIZE_{it} + \alpha_4 PPE_{it} + \alpha_5 ITA_{it} \\ & + \alpha_6 ROA_{it} + \alpha_7 CX_{it} + \alpha_8 RD_{it} + \alpha_9 STDS_{it} + \alpha_{10} STDC_{it} \\ & + \alpha_{11} CR_{it} + \alpha_{12} KR_{it} + \alpha_{13} FO_{it} + \alpha_{14} OB_{it} + \alpha_{15} BIG_{it} \\ & + YD + ID + \varepsilon \end{aligned} \quad \text{식(1)}$$

여기서, DEBT = t+1장단기 부채 / 총자산 ;
ETP = t기 세무계획 측정치(Schwab et al. 2019 ; 김영철 · 마희영 2021) ;
통제 변수 EM = t기 경영효율성 측정치(Demerjian et al. 2012) ; [2)]
SIZE = t기 총자산의 로그값 ;
PPE = t기 유형자산총계 / 총자산 ;
ITA = t기 무형자산총계 / 총자산 ;
ROA = t기 영업이익 / 총자산 ;
CX = t기 자본적지출 / 총자산 ;

2) Demerjian et al.(2012)에 따라 아래 식에 따라 CCR 자료포락분석으로 측정된다. 산출변수는 매출액, 투입변수는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 유형자산(토지와 건설중인자산 제외), 무형자산(영업권 제외)이다.

$$\max_v \theta = \frac{SALE}{v_1 COGS + v_2 SGA + v_3 PPE + v_4\ INTG}$$

여기서, *SALE*=매출액, *COGS*=매출원가, *SGA*=판매비와관리비, *PPE*=유형자산(토지와 건설중인자산 제외), *INTG*=무형자산(영업권 제외)

RD = t기 연구개발비 / 매출액 ;
STDS = t기부터 t−4기까지 5년간 (매출액/총자산) 표준편차 ;
STDC = t기부터 t−4기까지 5년간 (영업현금흐름/총자산) 표준편차 ;
CR = t기 유동자산 / 유동부채 ;
KR = t기 K−SCORE(Altman et al. 1995) ;
FO = t기 외국인 지분율 ;
OB = t기 사외이사 비율 ;
BIG = t기 외부감사인이 대형회계법인이면 1, 아니면 0 ;
ID = 산업더미 ;
YD = 연도더미 ;

식(1)의 통제변수는 다음과 같다. 경영효율성에 따라 자금조달수준이 결정될 수 있으므로 경영효율성 차이에서 발생되는 자금조달수준을 통제하기 위하여 Demerjian et al.(2012)에 의해 측정된 EM을 포함한다. 기업규모에 따라 자금조달 수단이 다양하고 부채조달에 따른 비용이 다를 것이므로 규모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기업 규모 SIZE를 포함한다. 기업의 유형자산은 부채조달에 대한 담보가치를 가질 수 있으므로 유형자산 PPE와 무형자산 ITA는 부채 담보 효과를 통제한다. 자본조달순위이론에 따라 내부자금 수준을 통제하기 위하여 기업의 수익성 ROA를 포함하며, 부채조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투자활동을 통제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 RD, 자본적지출 CX를 포함한다. 보수적 부채조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부채조달비용 및 기업위험을 통제하기 위하여 매출액 변동성 STDS, 영업현금흐름 변동성 STDC, 유동비율 CR, 파산비용 KR을 포함한다. 성장성이 높은 기업의 경우 주주, 채권자 간 정보비대칭은 기업의 투자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외국인 지분율 FO를 포함한다.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의 수준을 통제하기 위하여 사외이사비율 OB를 포함하며, 감사위험을 통제하기 위하여 외부감사인이 대형회계법인임을 나타내는 BIG을 포함한다. 산업 및 연도별 차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YD, ID를 포함한다.

2.2 경영전략에 따른 세무계획과 부채조달의사결정

본 연구는 두 번째 가설검증을 위하여 식(2)에 따라 연구모형을 설정한다.

식(2)는 식(1)에 선도형 경영전략 PG와 세무계획과 선도형 경영전략의 상호작용변수 TP×PG를 포함한 모형이다. 식(2)에서 선도형 경영전략의 상호작용변수 TP×PS의 회귀계수가 음(−)의 값을 가진다면 선도형 기업이 분석형 또는 방어형 기업보다 세무계획과 부채조달 수준 간 대체효과가 증가함을 의미하며, 분석형 또는 방어형 기업보다 선도형 기업에서 세무계획은 보수적 부채조달수준의 설명요인으로써 의미가 있을 것이다. 반면에 상호작용변수 TP×PS의

회귀계수가 양(+)의 값을 가진다면 선도형 기업은 분석형 또는 방어형 기업보다 DTS와 NDST의 대체효과가 약화됨을 의미하며, 투자와 혁신을 위한 자금확보를 위하여 부채조달과 세무계획을 모두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할 것이다. 더불어 선도형 기업보다 분석형 또는 방어형 기업에서 세무계획은 보수적 부채조달수준을 설명하는 요인으로써 의미가 있을 것이다.

$$DEBT_{it+1} = \alpha_0 + \alpha_1 ETP_{it} + \alpha_2 PG_{it} + \alpha_3 ETP \times PG_{it} + \alpha_4 SIZE_{it} + \alpha_5 PPE_{it} + \alpha_6 ITA_{it} + \alpha_7 ROA_{it} + \alpha_8 CX_{it} + \alpha_9 RD_{it} + \alpha_{10} STDS_{it} + \alpha_{11} STDC_{it} + \alpha_{12} CR_{it} + \alpha_{13} KR_{it} + \alpha_{14} FO_{it} + \alpha_{15} OB_{it} + \alpha_{16} BIG_{it} + YD + ID + \varepsilon$$ 식(2)

여기서 PG = Bentley et al.(2013)에 따라 측정된 경영전략지수를 기반하여 선도형 기업이면 1, 아니면 0

* 종속, 설명, 통제변수의 정의는 식(1)과 같음

3. 변수의 측정

3.1 세무계획의 측정

Graham and Tucker(2006) 등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본 연구는 모든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을 고려한 세후이익의 극대화로 세무계획을 정의한 Scholes et al.(2014)에 부합된 측정치를 통해 보수적 부채조달 수준을 설명하고자 한다.

Schwab et al.(2019)은 Scholes et al.(2014)의 정의에 부합된 세무계획을 측정하기 위하여 자료포락분석을 이용하여 세무계획 TP를 측정하고 있다. TP측정을 위하여 Schwab et al.(2019)은 다음 식(3)을 제시하고 있다. 김영철 · 마희영(2021)은 우리나라 주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식(3)을 통해 세무계획 TP를 측정하고 미래 세후이익과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식(3)을 통해 측정된 세무계획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max_v \theta = \frac{ATR_{t-4,t} \mid ITR_{t-4,t}}{v_1 RD_{t-4,t} + v_2 PPE_{t-4,t} + v_3 TH_t + v_4 IA_{t-4,t} + v_5 IV_{t-4,t} + v_6 DB_{t-4,t}}$$ 식(3)

여기서,

$ATR_{t-4,t}$ = t기부터 t−4기까지 5년간 (법인세차감전순이익−법인세납부액)/기초총자산

$ITR_{t-4,t}$ = t기부터 t−4기까지 5년간 (법인세납부액/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산업별 표준편차의 최댓값에서 t기부터 t−4기까지 5년간 (법인세납부액/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표준편차를 차감한 값

$RD_{t-4,t}$ = t기부터 t−4기까지 5년간 연구개발비/기초총자산 ; 값이 없는 경우 0으로 조정

$PPE_{t-4,t}$ = t기부터 t−4기까지 5년간 유형자산/기초총자산 ; 값이 없는 경우 0으로 조정
TH_t = t기 log(1+조세피난처에 관계기업의 수) ; 값이 없는 경우 0으로 조정
$IA_{t-4,t}$ = t기부터 t−4기까지 5년간 무형자산/기초총자산 ; 값이 없는 경우 0으로 조정
$IV_{t-4,t}$ = t기부터 t−4기까지 5년간 재고자산/기초총자산 ; 값이 없는 경우 0으로 조정
$DB_{t-4,t}$ = t기부터 t−4기까지 5년간 부채/기초총자산 ; 값이 없는 경우 0으로 조정

Scholes et al.(2014)의 정의에 따라 식(3)의 산출변수는 세후이익 ATP와 세무위험의 역수 ITP이다. ATP는 세무계획에 따른 5년간 성과를 의미하며, ITP는 조세회피에 따른 세금비용 및 비세금비용의 최소화를 의미한다.

투입변수는 다음 6가지로 세무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 특성이다. 첫 번째는 연구개발비 RD이다. 연구개발 활동은 NDTS의 수단이 되는 투자세액공제 활용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며, 연구개발 결과에 따라 향후 세후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두 번째는 유형자산 PPE이다. 감가상각 대상 유형자산이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세무계획과 NDTS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조세피난처 TH이다. 관계기업이 조세피난처에 위치하면 소득 이전 등의 방법을 통해 세무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네 번째는 무형자산 IA이다. 무형자산은 기업 연구개발의 결과로써 투자활동을 의미하며, 감가상각을 통해 세무계획과 NDTS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재고자산 IV이다. 재고자산은 기업의 영업환경을 설명할 수 있으며, 재고자산 저가법에 따른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세무계획과 NDTS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여섯 번째는 부채이다. 부채는 파산에 따른 기업위험 및 정보비대칭 환경을 설명할 수 있으므로 자본조달 환경을 설명하는 기업 특성으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Schwab et al.(2019), 김영철・마희영(2021)에 따라 세무계획의 성과 및 위험을 의미하는 두 개의 산출변수와 세무계획과 관련성이 있는 기업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여섯 개의 투입변수를 기반으로 세무계획을 측정한다. 식(3)의 변수는 세무계획의 장기성과 및 기업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t기부터 t−4기까지 5년간 측정되며, 연도−산업별 CCR−자료포락분석을 통해 세무계획 TP를 산출한다.

3.2 경영전략의 측정

경영전략은 Bently et al.(2013), 최규담 등(2015)에 따라 측정한다. 경영전략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 6가지 변수를 도입한다. 첫 번째 변수는 매출액과 연구개발비의 비율이다(과거 4년 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높을수록 적극적인 투자가 존재함을 의미하므로 선도형 경영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두 번째 변수는 매출액 대비 종업원의 수이다(과거 4년 평균). 선도형 경영전략을 취할수록 사업 확장을 위한 종업원을 많이 보유할 것이므로 매출액 대비 종업원의 수가 클 것이다. 세 번째 변수는 자산의 장부가치 대비 시장가치 비율(과거 4년 평균)이다.

자산의 장부가치 대비 시장가치가 큰 경우 미래 성장성에 대한 자본시장의 기대가 크게 반영된 것이므로 성장성이 높은 선도형 경영전략을 취할수록 자산의 장부가치 대비 시장가치 커질 수 있다. 네 번째 변수는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이다(과거 4년 평균). 선도형 경영전략 기업일수록 신시장 개척을 위한 광고 홍보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므로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가 클 것이다. 다섯 번째 변수는 종업원 수의 변동이다(과거 4년 표준편차). 신시장 개척에 대한 노력과 새로운 제품개발 노력을 기울일수록 신규 직원의 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기존 직원의 해고 역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종업원 수의 변동이 클수록 선도형 경영전략기업을 의미할 것이다. 여섯 번째 변수는 총자산 대비 유형자산이다(과거 4년 평균). 방어형 경영전략을 취할수록 대량생산에 따른 원가최소화를 목적으로 하므로 유형자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 따라서 총자산 대비 유형자산이 작을수록 선도형 경영전략을 구분될 수 있다.

이상의 6개의 개별 변수는 연도−산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별로 5분 위수로 구분한 후 1~5점(가장 큰 값)을 부여한 후 합산한다. 합산된 경영전략지수는 30점에서 6점으로 측정되며, 30점에서 24점 이내이면 선도형 경영전략 집단, 23점에서 13점 이내면 분석형 경영전략 집단, 12점에서 6점 이내면 방어형 경영전략 집단으로 구분한다.

4. 연구표본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22년까지 12월 결산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주권상장법인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한다. 금융위기 이후기간인 2011년부터 종속변수인 부채수준이 t+1기 값으로 적용되므로 현재 시점에서 분석할 수 있는 최대기간인 2022년까지 분석이 수행한다. 2011년부터 2022년까지 10,587개 표본 가운데 t기를 포함하여 과거 4년까지 재무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으며, 현금납부액을 획득할 수 있는 총 7,067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자본잠식 기업은 제거되었으며, 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모두 연도별 상하위 1% 수준에서 winsorization 된다.

구체적인 표본의 연도별・산업별 구성은 다음 <Table 1>과 같다.

〈Table 1〉 연구표본

연도	N
2011	542
2012	552
2013	558
2014	571
2015	563
2016	575
2017	579
2018	596
2019	610
2020	623
2021	640
2022	658
총계	7,067

산업명	N
식료품등제조업	393
의복, 가죽, 목재 제조업	47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797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제조업	397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제조업	257
비금속광물 제품제조업	192
1차금속제조업	618
전자부품, 컴퓨터 등 제조업	364
전기장비, 광학기기 제조업	326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38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38
종합건설업	243
도매 및 상품중개업	596
운송업	252
전문서비스업	625
기타 서비스업	207
기타	407
total	7,067

Ⅳ. 실증분석

1.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

1.1 기술통계량

본 연구의 분석에서 사용된 변수의 기술통계량은 다음 <Table 2>와 같다. <Table 2>의 Panel A는 변수의 기술통계량이며, Panel B는 경영전략 집단의 t+1기의 부채조달수준 DEBT과 세무계획 ETP의 평균, 중위수 차이이다.

Panel A에 따르면, 부채조달수준 DEBT의 평균은 0.207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 부채는 이자발생 부채인 단기차입금, 단기사채, 유동성대체 장기차입금, 장기차입금. 장기 사채로 구성되므로 총자산 대비 약 20%의 이자발생부채를 조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세무계획 ETP의 평균

은 0.526이며, 중위수는 0.451이다. 본 연구는 ETP를 측정하기 위하여 연도−산업별 CCR−자료포락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최대값 1에 근접할수록 세무계획이 효과적임을 나타낸다. 규모수익불변의 규정을 완화한 BCC−자료포락분석을 통해 ETP를 측정할 경우 평균값은 0.765 중위수는 0.814로 측정된다. ETP는 김영철・마희영(2021)의 세무계획 측정치와 유사한 평균과 중위수를 갖는다. 최규담 등(2015)에 따라 측정된 경영전략 지수의 합 SP는 6부터 30점까지 분포하며 평균은 18.062, 중위수는 18.000으로 나타난다. 선도형 집단 PG는 0.084로 나타나며, 전체 7,067 표본의 약 8.4%(592개 표본)가 PG로 구분됨을 의미한다. 분석형 집단 MG의 평균은 0.820으로 전체 7,067 표본의 약 82%(5,795개 표본)가 MG로 구분됨을 의미한다. 방어형 집단 DG의 평균은 0.096으로 전체 7,067 표본의 약 9.6%(680개 표본)가 DG로 구분됨을 의미한다.

〈Table 2〉 기술통계량

PANEL A : 변수의 기술통계량

변수	N	Mean	STD	Min	Median	Max
$DEBT_{it+1}$	7,067	0.207	0.143	0.001	0.191	0.689
ETP_{it}	7,067	0.526	0.331	0.016	0.451	1.000
SP_{it}	7,067	18.062	4.012	6.000	18.000	30.000
PG_{it}	7,067	0.084	0.277	0.000	0.000	1.000
MG_{it}	7,067	0.820	0.384	0.000	1.000	1.000
DG_{it}	7,067	0.096	0.295	0.000	0.000	1.000
EM_{it}	7,067	0.683	0.251	0.063	0.736	1.000
$SIZE_{it}$	7,067	20.078	1.484	17.006	19.820	24.567
PPE_{it}	7,067	0.161	0.138	0.000	0.129	0.773
ITA_{it}	7,067	0.019	0.034	0.000	0.008	0.265
ROA_{it}	7,067	0.036	0.059	−0.223	0.032	0.256
CX_{it}	7,067	0.036	0.044	0.000	0.021	0.334
RD_{it}	7,067	0.017	0.036	0.000	0.003	0.270
$STDS_{it}$	7,067	0.120	0.129	0.002	0.082	1.217
$STDC_{it}$	7,067	0.047	0.035	0.002	0.038	0.199
CR_{it}	7,067	2.716	5.707	0.072	1.388	63.476
KS_{it}	7,067	−52.302	83.464	−350.140	−32.891	101.422
FO_{it}	7,067	0.099	0.125	0.000	0.046	0.627
OB_{it}	7,067	0.328	0.190	0.000	0.333	0.889
BIG_{it}	7,067	0.632	0.482	0.000	1.000	1.000

〈Table 2〉 기술통계량 (계속)

PANEL B : 경영전략 집단의 부채수준과 효율적 세무계획의 평균 및 중위수 차이

변수	PG N=592		MG N=5,795		DG N=680		PG−DG Diff.		T−test	Wilcoxon −test
	평균	중위수	평균	중위수	평균	중위수	평균	중위수	t−value	z−value
$DEBT_{it+1}$	0.245	0.233	0.206	0.191	0.179	0.146	0.066	0.087	8.35***	8.49***
ETP_{it}	0.350	0.259	0.517	0.441	0.760	1.000	−0.410	−0.741	25.77***	20.69***

1) 변수정의 : DEBT=t+1장단기 부채/ 총자산 ; ETP=t기 세무계획 측정치(Schwab et al. 2019 ; 김영철 · 마희영 2021) ; EM=t기 경영효율성 지수(Demerijan et al. 2012) ; SP=Bentley et al.(2013)에 따라 측정된 t기 경영전략지수 ; PG=t기 선도형 기업이면 1, 아니면 0 ; MG=t기 분석형 기업이면 1, 아니면 0 ; DG=t기 방어형 기업이면 1, 아니면 0 ; SIZE=t기 총자산의 로그값 ; PPE=t기 유형자산총계 / 총자산 ; ITA=t기 무형자산총계 / 총자산 ; ROA =t기 영업이익 / 총자산 ; CX=t기 자본적지출 / 총자산 ; RD=t기 연구개발비 / 매출액 ; STDS=t기부터 t−4기까지 5년간 (매출액/총자산) 표준편차 ; STDC=t기부터 t−4기까지 5년간 (영업현금흐름/총자산) 표준편차 ; CR=t기 유동자산 / 유동부채 ; KR=t기 K−SCORE(Altman et al. 1995) ; FO=t기 외국인 지분율 ; OB=t기 사외이사 비율 ; BIG=t기 대형회계법인이 외부감사법인이면 1, 아니면 0

2) ***, **, *는 0.01, 0.05, and 0.1 의 유의수준을 의미함

본 연구의 통제변수인 경영효율성 EM은 Demerjian et al.(2012)에 따라 연도−산업별 CCR−자료포락분석을 통해 측정되며, 평균은 0.683으로 나타난다. 기업규모 SIZE의 평균은 20.078, 유형자산 PPE의 평균은 0.161, 무형자산 ITA의 평균은 0.019로 나타난다. 이는 평균적으로 총자산 대비 약 16%의 유형자산을 보유하고 1.9%의 무형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ROA의 평균은 0.036으로 평균적으로 총자산 대비 3.6%의 영업이익을 보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CX의 평균은 0.036, RD의 평균은 0.017로 총자산 대비 약 3.6%의 자본적 지출이 있으며, 매출액 대비 1.7%의 연구개발비 지출이 있음을 의미한다. 기업의 위험을 나타내는 STDS의 평균은 0.120, STDC의 평균은 0.047이며, 평균적으로 매출액 변동이 영업현금흐름 변동보다 큰 것으로 나타난다. 유동비율 CR의 평균은 2.716으로 유동부채 대비 약 2.7배의 유동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파산위험 KS의 평규은 −52.302로 나타난다. 외국인 지분율 FO의 평균은 0.099로 평균적으로 외국인 지분율이 9.9%임을 의미하며, OB의 평균은 0.328로 이사회 중 사외이사 비율이 약 32.8%임을 의미한다. BIG의 평균은 0.632로 대형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택하는 비율이 약 63%임을 나타낸다.

Panel B에 따르면, 선도형 집단의 부채조달수준 평균은 0.245, 분석형은 0.206, 방어형은 0.179로 나타나며, 선도형 집단의 중위수은 0.233, 분석형은 0.191, 방어형은 0.087로 나타난다.

선도형 집단의 부채조달수준 평균과 중위수가 유의수준 1% 수준에서 방어형 집단 보다 큰 것으로 관찰된다. 이는 선도형 경영전략을 수행하는 기업일수록 투자 등 미래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킴에 따라 투자의 자금 확보를 위하여 부채조달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선도형 집단의 효과적 세무계획 평균은 0.350, 분석형은 0.0.517, 방어형은 0.0.760로 나타나며, 선도형 집단의 중위수은 0.0.259, 분석형은 0.0.441, 방어형은 1로 나타난다. 선도형 집단의 세무계획 측정치의 평균과 중위수가 유의수준 1%에서 방어형 집단 보다 작은 것으로 관찰된다. 이는 선도형 경영전략을 수행하는 기업보다 방어형 경영전략을 선택하고 있는 기업의 세무계획이 효과적임을 의미하며, 부채조달 증 외부자금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려는 의사결정 외 세무계획을 통해 내부자금 조달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1.2 상관관계

본 연구의 분석에서 사용된 변수의 상관관계는 다음 <Table 3>와 같다. <Table 3>의 Panel A는 변수의 상관관계이며, Panel B는 경영전략 집단의 t+1기의 부채조달수준 DEBT과 세무계획 ETP의 상관관계 이다.

Panel A에 따르면, 세무계획과 t+1기 부채조달수준은 유의수준 1%에서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세무계획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기업의 경우 법인세를 적게 납부함으로서 내부자금 보유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부채비용을 통해 파산 등의 위험을 부담하고 부채조달을 통해 자금조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영전략지수의 SP와 t+1기 부채조달수준은 유의수준 1%에서 양(+)의 값을 가진다. 이는 선도형 경영전략을 추구하는 기업일수록 투자 등 지출을 위한 자금확보를 위하여 부채조달수준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선도형 경영전략 집단 PA와 t+1기 부채조달수준은 유의수준 1%에서 양(+)의 값을 가지며, 분석형 NG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방어형 경영전략 집단 DG와 t+1기 부채조달수준은 유의수준 1%에서 음(−)의 값을 가진다. 이는 선도형 경영전략을 추구하는 집단을 그렇지 않은 집단 보다 부채조달을 통해 자금확보 노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방어형 경영전략집단일수록 자금확보를 통해 미래수익성 개선보다 파산위험 등 부채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선택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Table 3〉 Correlation

PANEL A : 상관관계

변수	ETP_{it}	SP_{it}	PG_{it}	MG_{it}	DG_{it}
$DEBT_{it+1}$	−0.229***	0.148***	0.081***	−0.010	−0.064***
EM_{it}	0.226***	−0.344***	−0.166***	−0.040***	0.209***
$SIZE_{it}$	−0.173***	0.205***	0.129***	0.000	−0.121***
PPE_{it}	−0.102***	0.371***	0.195***	0.034***	−0.228***
INT_{it}	−0.157***	0.093***	0.020*	0.021*	−0.046***
ROA_{it}	0.080***	−0.145***	−0.085***	−0.014	0.098***
CX_{it}	−0.118***	0.192***	0.073***	0.063***	−0.151***
RD_{it}	−0.167***	0.274***	0.170***	−0.023**	−0.130***
$STDS_{it}$	−0.045***	−0.092***	−0.047***	−0.016	0.066***
$STDC_{it}$	−0.006	−0.079***	−0.061***	0.023**	0.027**
CR_{it}	0.223***	−0.159***	−0.061***	−0.036***	0.104***
KS_{it}	−0.111***	−0.064***	−0.087***	0.052***	0.014
FO_{it}	−0.013	0.087***	0.064***	−0.018	−0.037***
OB_{it}	−0.029**	0.043***	0.023*	0.005	−0.027**
BIG_{it}	−0.107***	0.132***	0.054***	0.021*	−0.078***

PANEL B : 경영전략 집단의 세무계획과 부채조달수준의 상관관계

변수	PG N=592	MG N=5,795	DG N=680
	$DEBT_{it+1}$	$DEBT_{it+1}$	$DEBT_{it+1}$
ETP_{it+1}	−0.064	−0.217***	−0.298***

1) 변수정의는 <Table 2>와 같다.
2) ***, **, *는 0.01, 0.05, and 0.1 의 유의수준을 의미함

Panel B에 따르면, 선도형 경영전략 집단에서 세무계획과 t+1기 부채조달수준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분석형 경영전략 집단에서 세무계획과 t+1기 부채조달수준은 유의수준 1%에서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방어형 경영전략 집단에서 세무계획과 t+1기 부채조달수준은 유의수준 1%에서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분석형과 방어형 경영전략 집단에서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세무계획을 효율적일수록 t+1 부채조달수준이 낮음을 의미하며, 세무계획을 통해 세금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경우 세금감소를 위한 부채조달수준을 증가시키지 않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선도형 경영전략 집단의 경우 세무계획을 통해 내부자금조달을 수행하더라도 투자 등 지출을 위한 자금확보를 위하여 부채조달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선도형 경영전략 집단의 경우 투자 등을 높이기 위한 부채조달 의사결정이 세금감소를 위한 부채조달의사결정보다 우위에 있음을 시사한다.

2. 회귀분석 결과

2.1 세무계획, 경영전략과 부채조달수준과의 관계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을 검정하기 위한 식(1)의 회귀분석결과와 경영전략과 부채조달수준에 대한 추가적인 회귀분석결과이다. <Table 4>의 Panel A는 가설1 검정을 위한 t+1기 부채조달수준과 세무계획의 회계분석결과와 가설2의 검정과 해석을 위한 부채조달수준과 경영전략변수를 회귀분석 결과이다. Panel B는 t+1기의 부채조달수준와 선도형, 분석형, 방어형 경영전략 집단을 나타내는 더미변수의 회귀분석결과이다.

Panel A에 따르면, 세무계획의 회귀계수는 −0.087로 나타나며 유의수준 1%에 음(−)의 값을 가진다. 이는 정보비대칭과 같이 조세회피에 따른 비용을 고려하고 세후이익을 극대화하는 효과적인 세무계획을 수행하면 비효율적인 투자와 의사결정이 감소하고 부채를 낮은 수준에서 조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세무계획의 효과성이 증가할수록 미래 세금은 감소하고 세후이익과 내부유보금은 증가하여 절세를 위한 부채조달의 유인은 감소함에 따라 부채조달수준을 감소시키고 있음을 시사한다.

경영전략지수인 SP의 회귀계수는 0.003으로 유의수준 1%에서 양(+)의 값을 가진다. 이는 선도형 경영전략을 추구할수록 부채조달수준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선도형 경영전략집단의 경우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혁신적 제품 개발, 시장 선점 및 개척을 위하여 과도한 투자가 발생될 수 있다(구교진・김영철 2022). 선도형 경영전략을 선택할수록 미래에 대한 적극적인 도전적 투자 또한 낙관적 기대에 기반하여 과도한 투자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높은 수준의 부채를 조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통제변수에 대한 회귀계수는 다음과 같다. 기업규모, 유형자산과 부채조달수준은 양(+)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부채에 대한 담보효과가 높을수록 부채조달수준이 증가됨을 의미한다. 수익성과 연구개발비는 부채조달수준과 음(−)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수익성이 낮을 경우 내부자금보유보다 외부자금조달에 의존함을 의미하며, 연구개발비 지출이 높을수록 부채의 세금효과가 낮아짐에 따라 부채조달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자본적 지출과 영업현금흐름의 변동성이 높을수록 투자를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하여 부채조달수준이 높아지며 유동비율이 낮고 파산비용이 낮을수록 부채조달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업

의사결정에 대한 외부 모니터링 효과를 나타내는 외국인지분이 낮아질수록 외부감사인이 대형 회계법인이 아닐수록 부채를 적극적으로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외이사비율이 높을수록 부채조달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Table 4〉 세무계획, 경영전략, 부채조달수준

PANEL A : 세무계획, 경영전략 지수와 부채조달수준

변수	회귀계수	t-value	변수	회귀계수	t-value
Int.	0.137***	4.73	Int.	−0.020	−0.67
ETP_{it}	**−0.087*** **	**−15.76**	**SP_{it}**	**0.003*** **	**6.72**
EM_{it}	0.058***	6.82	EM_{it}	0.048***	5.29
$SIZE_{it}$	0.003**	2.26	$SIZE_{it}$	0.007***	4.67
PPE_{it}	0.124***	8.94	PPE_{it}	0.091***	5.97
INT_{it}	0.031	0.64	INT_{it}	0.075	1.54
ROA_{it}	−0.362***	−11.97	ROA_{it}	−0.390***	−12.66
CX_{it}	0.125***	2.88	CX_{it}	0.140***	3.19
RD_{it}	−0.173***	−3.5	RD_{it}	−0.209***	−4
$STDS_{it}$	−0.018	−1.38	$STDS_{it}$	−0.005	−0.39
$STDC_{it}$	0.259***	5.14	$STDC_{it}$	0.245***	4.79
CR_{it}	−0.005***	−16.68	CR_{it}	−0.006***	−19.11
KS_{it}	0.001**	2.02	KS_{it}	0.001	1.19
FO_{it}	−0.143***	−9.27	FO_{it}	−0.170***	−10.88
OB_{it}	0.019*	1.91	OB_{it}	0.018*	1.82
BIG_{it}	−0.008**	−2.15	BIG_{it}	−0.008**	−2.22
ID, YD	included		ID, YD	included	
adj(R^2)	0.1872		adj(R^2)	0.1639	

PANEL B : 경영전략 집단과 부채조달수준

변수	회귀계수	t-value	회귀계수	t-value	회귀계수	t-value	회귀계수	t-value
Int.	0.031	1.09	0.036	1.27	0.026	0.92	0.031	1.08
PG_{it}	**0.024*** **	**3.89**					**0.024*** **	**3.88**
MG_{it}			**−0.011*** **	**−2.78**				
DG_{it}					**0.001**	**0.22**	**0.001**	**0.09**
EM_{it}	0.028***	3.39	0.022***	2.69	0.023***	2.74	0.028***	3.29

〈Table 4〉 세무계획, 경영전략, 부채조달수준 (계속)

변수	회귀계수	t-value	회귀계수	t-value	회귀계수	t-value	회귀계수	t-value
$SIZE_{it}$	0.008***	5.23	0.008***	5.53	0.008***	5.52	0.008***	5.23
PPE_{it}	0.118***	8.17	0.129***	9.11	0.130***	9.06	0.118***	8.06
INT_{it}	0.076	1.55	0.071	1.44	0.070	1.43	0.076	1.55
ROA_{it}	−0.414***	−13.52	−0.424***	−13.9	−0.424***	−13.82	−0.414***	−13.46
CX_{it}	0.150***	3.41	0.154***	3.49	0.148***	3.35	0.150***	3.41
RD_{it}	−0.140***	−2.76	−0.114**	−2.27	−0.105**	−2.09	−0.140***	−2.74
$STDS_{it}$	−0.008	−0.62	−0.010	−0.71	−0.009	−0.63	−0.008	−0.62
$STDC_{it}$	0.235***	4.59	0.231***	4.51	0.227***	4.43	0.235***	4.59
CR_{it}	−0.006***	−19.52	−0.006***	−19.62	−0.006***	−19.56	−0.006***	−19.51
KS_{it}	0.000	1.57	0.000	1.59	0.000	1.47	0.000	1.58
FO_{it}	−0.172***	−11.01	−0.172***	−11.03	−0.172***	−10.97	−0.172***	−11.01
OB_{it}	0.020**	1.99	0.021**	2.05	0.021**	2.02	0.020**	1.99
BIG_{it}	−0.007*	−1.93	−0.007*	−1.92	−0.007**	−1.99	−0.007*	−1.93
ID, Y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adj(R^2)	0.1603		0.1594		0.1585		0.1602	

1) 변수정의는 <Table 2>와 같다.
2) ***, **, *는 0.01, 0.05, and 0.1 의 유의수준을 의미함

Panel B에 따르면, 선도형 경영전략 집단의 더미변수 PG의 회귀계수는 0.024로 유의수준 1%에 양(+)의 값을 가진다. 선도형 경영전략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부채를 통해 외부자금을 적극적으로 조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선도형 경영전략집단의 경우 시장개척과 제품개발을 위한 미래 수익성 확보를 위하여 부채를 이용한 자금조달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분석형 경영전략 집단의 더미변수 MG의 회귀계수는 −0.011로 유의수준 1%에 음(−)의 값을 가진다. 이는 분석형 기업의 경우 과도한 확장 및 적극적 투자보다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위하여 부채조달을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부채조달에 의한 효과보다 비용적 측면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방어형 경영전략 집단의 더미변수 DG의 회귀계수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방어형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 부채조달수준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의미한다. PG와 DG를 모두 모형에 포함하여 분석할 경우 PG의 회귀계수는 0.024로 유의수준 1%에서 양(+)의 관련성이 가지나 DG의 회귀계수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선도형 경영전략 집단

의 경우 분석형 기업보다 적극적인 부채조달을 수행하지만 방어형의 경우 분석형의 부채조달수준과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선도형 경영전략 집단이 분석형과 방어형보다 투자 등 지출을 위한 자금확보를 위하여 외부조달 수단인 부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2 세무계획과 경영전략에 따른 부채조달수준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설을 검정하기 위한 식(2)의 회귀분석결과이다. <Table 5>의 Panel A는 가설2 검정을 위한 t+1기 부채조달수준과 세무계획 및 경영전략지수의 상화작용변수 및 세무계획과 경영전략집단의 상호작용변수의 회계분석결과이다. Panel B는 Panel A의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선도형, 분석형, 방어형 경영전략 집단별로 t+1기의 부채조달수준과 세무계획의 회귀분석결과이다.

Panel A에 따르면, 세무계획과 경영전략지수의 상호작용변수 ETP×SP의 회귀계수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세무계획의 효과성이 증가하고 선도형 경영전략을 수행할수록 부채조달이 증가된다는 선형적인 비례 관계가 나타나지 않음을 의미한다.

세무계획과 선도형 경영전략집단의 상호작용변수 ETP×PG의 회귀계수는 0.040으로 유의수준 5%에서 양(+)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선도형 전략을 수행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세무계획과 부채조달간 음(−)의 관련성이 감소됨을 의미한다. 또한 지속적인 투자를 수행하는 선도형 기업은 투자세액공제 등 NDTS의 수단이 많고 조세회피에 따른 평판 감소 등의 위험 수용도가 높아서 적극적인 세무계획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부채조달을 통해 감세노력을 크게 사용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선도형 전략집단 PG와 방어형 전략 집단 DG의 상호작용변수를 모두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ETP×PG의 회귀계수는 0.041으로 유의수준 5%에서 양(+)의 관련성이 나타났으나 ETP×DG의 회귀계수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분석형보다 선도형 전략 집단에서 세무계획과 부채조달간 음(−)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의미하며, 분석형과 방어형의 경우 세무계획과 부채조달간 음(−)의 관련성의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선도형 전력집단에서 방어형과 분석형 전략 집단보다 세무계획과 부채조달수준간 대체효과가 크지 않음을 의미하며, 선도형 기업이 지속적인 투자를 위하여 자금의 유동성 확보를 우선 과제로 설정하므로 내부자금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인 부채조달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Table 5〉 세무계획과 경영전략에 따른 부채조달수준

PANEL A : 부채조달수준에 대한 세무계획과 경영전략 집단의 상호작용 효과

변수	회귀계수	t-value	변수	회귀계수	t-value	회귀계수	t-value
Int.	0.118***	3.67	Int.	0.140***	4.83	0.137***	4.74
ETP_{it}	−0.105***	−4.76	ETP_{it}	−0.088***	−15.59	−0.089***	−15
SP_{it}	0.001	1.41	PG_{it}	0.003	0.3	0.002	0.22
$ETP \times SP_{it}$	**0.001**	**1.06**	DG_{it}			0.023	1.6
			$ETP \times PG_{it}$	**0.040****	**1.95**	0.041**	1.97
			$ETP \times DG_{it}$			**−0.014**	**−0.79**
EM_{it}	0.069***	7.67	EM_{it}	0.061***	7.18	0.057***	6.64
$SIZE_{it}$	0.003**	2	$SIZE_{it}$	0.003**	2.11	0.003**	2.2
PPE_{it}	0.103***	6.86	PPE_{it}	0.114***	8.01	0.119***	8.26
INT_{it}	0.037	0.76	INT_{it}	0.036	0.74	0.033	0.67
ROA_{it}	−0.347***	−11.37	ROA_{it}	−0.355***	−11.72	−0.360***	−11.85
CX_{it}	0.122***	2.82	CX_{it}	0.130***	2.99	0.135***	3.13
RD_{it}	−0.223***	−4.34	RD_{it}	−0.192***	−3.83	−0.182***	−3.63
$STDS_{it}$	−0.017	−1.24	$STDS_{it}$	−0.019	−1.4	−0.021	−1.56
$STDC_{it}$	0.267***	5.3	$STDC_{it}$	0.264***	5.24	0.265***	5.26
CR_{it}	−0.005***	−16.47	CR_{it}	−0.005***	−16.69	−0.005***	−16.69
KS_{it}	0.000**	−2.04	KS_{it}	0.000*	−1.88	0.000*	−1.88
FO_{it}	−0.144***	−9.31	FO_{it}	−0.144***	−9.31	−0.144***	−9.33
OB_{it}	0.018*	1.81	OB_{it}	0.019*	1.89	0.020*	1.96
BIG_{it}	−0.008**	−2.27	BIG_{it}	−0.008**	−2.11	−0.008**	−2.05
ID, YD	included		ID, YD	included		included	
adj(R^2)	0.1887		adj(R^2)	0.1884		0.1888	

PANEL B : 경영전략 집단의 부채조달수준과 세무계획

변수	PG (N=592)		MG (N=5,795)		DG (N=680)	
	회귀계수	t-value	회귀계수	t-value	회귀계수	t-value
Int.	0.399***	4.09	0.109***	3.42	0.126	1.2
ETP_{it}	**−0.053****	**−2.41**	**−0.089*****	**−14.68**	**−0.092*****	**−4.69**
EM_{it}	0.071**	2.16	0.057***	6.02	0.104***	3.53
$SIZE_{it}$	−0.008	−1.59	0.004***	2.76	0.003	0.66

〈Table 5〉 세무계획과 경영전략에 따른 부채조달수준 (계속)

변수	PG (N=592)		MG (N=5,795)		DG (N=680)	
	회귀계수	t-value	회귀계수	t-value	회귀계수	t-value
PPE_{it}	0.188***	4.1	0.135***	8.5	−0.167**	−2.01
INT_{it}	0.001	0	−0.010	−0.2	0.291*	1.75
ROA_{it}	−0.461***	−3.97	−0.375***	−11.16	−0.122	−1.23
CX_{it}	0.078	0.53	0.145***	3.11	0.208	1.03
RD_{it}	−0.542***	−3.96	−0.209***	−3.63	0.897**	2.21
$STDS_{it}$	0.063	1.05	−0.044***	−3.02	0.063	1.63
$STDC_{it}$	0.052	0.26	0.290***	5.26	0.001	0.01
CR_{it}	−0.010***	−5.55	−0.005***	−14.68	−0.004***	−7.06
KS_{it}	0.000***	−2.76	0.000***	−3.03	0.000***	2.64
FO_{it}	−0.209***	−4.51	−0.140***	−8.05	−0.105*	−1.88
OB_{it}	−0.029	−0.86	0.029***	2.59	−0.057*	−1.89
BIG_{it}	−0.011	−0.82	−0.010**	−2.45	0.013	1.13
ID, YD	included		included		included	
adj(R^2)	0.2683		0.1864		0.2385	

1) 변수정의는 <Table 2>와 같다.
2) ***, **, *는 0.01, 0.05, and 0.1 의 유의수준을 의미함

Panel B에 따르면, 선도형, 분석형, 방어형 전략 집단에서 모두 세무계획의 회귀계수는 −0.053, −0.089, −0.092로 유의수준 1%에서 음(−)의 값을 가진다. 이는 경영전략과 무관하게 세무계획과 부채조달수준 간 대체효과가 존재함을 의미하며, 세무계획에 적극적일수록 비부채감세수단으로 인하여 부채를 통한 세금감소 노력이 크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Panel A의 결과는 선도형 전략집단에서 세무계획과 부채조달간 대체효과가 존재하지만 방어형과 분석형보다 대체효과가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선도형 기업이 지속적인 투자를 위하여 자금의 유동성 확보를 우선과제로 설정하므로 내부자금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인 부채조달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Ⅴ. 결 론

유동성 부족에 따른 파산을 고려한 부채의 위험 관리적 측면과 유동성 확보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유동성에 대한 중요한 기업들의 인식변화는 외환위기 이

후 한계세율이 높아 부채의 세금효과가 존재함에도 한계세율 수준으로 부채를 조달하지 않는 보수적 부채조달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Ko and Yoon 2011). 이러한 현상을 기반으로 Graham and Tucker(2006) 등 선행연구는 부채와 비부채감세수단 간 대체효과를 통해 보수적 부채조달 의사결정의 결정요인을 검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부채감세수단으로 효과적 세무계획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며, 부채조달의 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전략에 따른 차별적이 세무계획과 부채조달 간 대체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세무계획은 김영철・마희영(2021)에 따라 측정하며, 경영전략은 최규담 등(2015)에 따라 측정하여 세무계획과 부채조달 의사결정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세무계획의 효과성이 클수록 부채조달수준은 감소한다. 이는 세무계획을 통해 내부자금 보유수준을 높일 수 있는 경우 파산 등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부채의 활용도를 감소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세무계획과 부채조달수준 간 대체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 선도형 전략집단에서 분석형 방어형보다 부채조달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시장개척 및 제품개발 등 투자에 적극적인 선도형 기업의 경우 부채를 활용한 자금조달에 적극적임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선도형 전략집단에서 분석형과 방어형보다 세무계획과 부채조달의 대체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투자 등 지출을 위한 부채조달에 적극적인 선도형 기업의 경우 세무계획보다 투자활성화가 부채조달의사결정에 우선순위임을 의미하며, 분석형, 방어형 전력기업에서 보수적 부채조달수준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세무계획의 의미가 증가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회계 관점에서 비부채감세수단인 세무계획을 중심으로 보수적 부채조달 현상 해석한다는 의미가 있다. 둘째, 재무관리 등 분야에 보수적 부채조달 의사결정에 대한 회계학적 요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세 번째 ETR 등에 의한 조세회피 측정치가 아닌 포괄적인 의미의 세무계획 측정치를 이용한 실증결과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부채감세수단과 비부채감세수단의 대체효과는 Lim(2012) 등 선행연구에서 언급되었듯이 조세고갈효과뿐만 아니라 경영전략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해관계자의 이윤 극대화를 위하여 보수적 부채 사용으로 인한 세금 증대와 자금 부족의 대안으로 적극적인 세무계획을 활용한다는 증거를 제공하고, 기업이 고유 목적인 주주이윤 극대화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세무계획과 부채조달 의사결정 측면에서 이해를 제공한다는 시사점이 있다.

참고문헌

강정연, 고종권. 2014.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39 (1) : 147－183.

고종권. 2003. 한계세율과 부채조달의사결정. 회계학연구 28(1) : 49－77.

김영철・이윤경・고종권 2015, 외환위기 전후의 부채조달의사결정에 재무유연성과 세금효과가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40(6) : 241－281.

김영철・마희영. 2021. 효과적 세무계획, 지배구조와 미래 세후이익의 관계. 회계학연구 46(5) : 41－83.

김영철・이창수, 2013, 비부채 감세수단으로써 비조건부 보수주의가 부채정책에 미치는 영향. 국제회계연구 52 : 265－290.

이윤경・강정연, 2023, 효과적인 세무계획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상업교육연구 37(2) : 69－90.

박성원, 이윤경. 2016. 조세회피와 이익성장성. 회계연구 21 (1) : 101－137

박종일, 신상이. 2020. 지속적인 세무전략과 미래의 기업성과 및 기업가치. 회계학연구 45 (4) : 209－252

이화득・박삼복, 2014, 기업전략에 따른 연구개발집중도와 미래 경영성과의 관련성, 회계저널 23(5) : 115－143

전규안, 2004, 조세와 자본구조, 세무학연구 21(3) : 67－96.

최규담・김갑순・유현수, 2015, 경영전략과 조세회피. 회계학연구, 40(5) : 1229－1296.

Basu, S., 2005, Discussion of “Conditional and Unconditional Conservatism : Concepts and Modeling”, Review of Accounting Studies 10(2・3) : 311－321.

Bentley, K. A., T. C. Omer, and N. Y. Sharp. 2013. Business strategy, audit fees and financial reporting irregularitie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30(2) : 780－817.

Chen, S., X. Chen, Q. Cheng, and T. J. Shevlin. 2010. Are family firms more tax aggressive than non－family firm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95 : 41－61.

DeAngelo, H., and R. W. Masulis, 1980, Optimal Capital Structure under Corporate and Personal Taxation,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8(1) : 3－29.

Desai, M. and D. Dharmapala. 2006. Corporate Tax Avoidance and High Powered Incentive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79 : 145－179.

Demerjian, P., B. Lev, and S. McVay, S. 2012. Quantifying Managerial Ability : A new measure and validity Tests. Management Science 58 (7) : 1229－1248.

Dyreng, S., M. Hanlon, and E. Maydew. 2008. Long－run corporate tax avoidance. The Accounting Review 83 (1) : 61－82.

Graham, J. R., 1996, Debt and the Marginal Tax Rat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41(1) : 41－73.

Graham, J. R., M. H. Lang, and D. A. Shackelford,. 2004, Employee stock options, corporate taxes

and debt policy. Journal of Finance 59(4) : 1585－1618.

Graham, J. R. and A. L. Tucker. 2006. Tax shelters and corporate debt policy.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81 (3) : 563－594.

Higgins, D., T. Omer, and J. Phillips., 2015, The influence of a firm's business strategy on its tax aggressivenes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32(2), 674－702.

Ittner, C. D., Larker, D. F., Rajan M. V., 1997, The use of performance measures in annual bonus contracts. The Accounting Review 72 (2), 231－255.

Jensen, M. 1986. Agency costs of free cash flows, corporate finance and takeovers. American Economic Review 76(2) : 323－329.

Ko, J. K., and S. S. Yoon. 2011. Tax benefits of debt and debt Financing in Korea. Asia－Pacific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40 : 824－855.

Lim Y., 2012, Tax avoidance and underleverage puzzle : Korean evidence. Review of Quantitative Finance and Accounting 39 : 333－360.

Mackie－Mason, J. K., 1990, Do Taxes Affect Corporate Financial Decisions?, Journal of Finance 45(5) : 1471－1493.

McGuire, S. T., S. S. Neuman, and T. C. Omer, 2013. Sustainable tax strategies and earnings persistence. Working Paper.

Miles, R. E., and C. C. Snow. 1978. Organizational strategy, structure and process. New York : McGraw－Hill.

Miles, R. E., and C. C. Snow. 2003. Organizational strategy, structure, and process. Stanford, CA : Stanford University Press.

Molina C. A. 2005. Are firms underleveraged? An examination of the effect of leverage on default probabilities. Journal of Finance 60(3) : 1427－1459.

Myers, S. C., and N. S. Majluf. 1984. Corporate financing and investment decisions when firms have information that investors do not.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13(2) : 187－221.

Porter, M. E. 1980. Competitive strategy. New York : Free Press.

Qiang, X., 2007, The Effects of Contracting, Litigation, Regulation, and Tax Costs on Conditional and Unconditional Conservatism : Cross－Sectional Evidence at the Firm Level, The Accounting Review 82(3) : 759－796.

Scholes, M., M. Wolfson, M. Erickson, M. Hanlon, E. Maydew, and T. Shevlin. 2014. Taxes and business strategy : A Planning Approach. 5th Edition. Pearson Publishing.

Schwab, C., B. Stomberg, and B. Williams. 2019. Effective tax planning. Working Paper.

Stulz, R. M. 1990. Managerial discretion and optimal financing policie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26(1) : 3－27.

Optimization of Tax and Financial Reporting Plans and Reporting of Impairment Losses

강 나 라 · Ron, Singleton
(한경국립대학교) (Western Washington University)

Optimization of Tax and Financial Reporting Plans and Reporting of Impairment Losses

Na Ra, Kang* · Ron, Singleton**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interaction between impairment loss recognition and tax planning in corporate financial reporting. It explores how financial reporting strategies change based on the impact of impairment losses on tax costs and potential tax saving effects. While impairment losses contribute to the book tax gap, they do not directly affect after tax cash flows, making them less relevant to tax planning optimization. Therefore, recognizing impairment losses is key to understanding the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tax planning and financial reporting. Firms with high marginal tax rates are less likely to recognize impairment losses due to the high opportunity cost of forgone tax savings, whereas firms with lower tax rates may be more inclined to recognize these losses. The empirical analysis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impairment loss recognition and tax costs using various metrics, including Cash ETRs, GAAP ETRs, marginal tax rates derived from deferred taxes, and an overall tax cost measure. The results consistently show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impairment loss recognition and tax costs across all measures, supporting the study's hypothesis. These findings offer valuable insights into how impairment loss recognition affects financial reporting and tax planning, helping to clarify the balance between tax and non tax costs in corporate financial strategy.

<Key words> Impairment loss, Tax planning, Trade－off, Optimization

*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Western Washington University, Professor

Ⅰ. INTRODUCTION

Tax planning is a crucial aspect of corporate strategy, aimed at maximizing a company's post－tax cash flows and financial health. Traditional measures such as the effective tax rate (ETR) and the book－tax gap have been used to gauge a firm's tax planning aggressiveness. While the ETR provides a snapshot of potential tax savings, it does not always reflect the true optimization of post－tax income or cash flows (Phillips 2003). Similarly, the book－tax gap can be misleading, particularly when driven by impairment loss recognition－an accounting entry that creates a book－tax gap but does not directly impact post－tax cash flows, making it a less reliable indicator of tax planning.

This raises a key question for understanding corporate decision－making : What role does impairment loss recognition play in optimizing both tax planning and financial reporting? Unlike most deductible costs, which provide direct tax－saving benefits, impairment losses pose a challenge since they lack an immediate tax－saving effect. Recognizing impairment losses can lead to an opportunity cost in the form of forgone tax savings, influenced largely by a company's marginal tax rate. For firms with higher marginal tax rates, this opportunity cost is greater, leading to fewer recognized losses. Conversely, companies with lower marginal tax rates face a smaller opportunity cost, which may lead to more frequent recognition of impairment losses.

By exploring this nuanced relationship, this study sheds light on the strategic decisions firms faces when balancing the financial reporting benefits of impairment loss recognition against the potential tax planning costs. Managers often aim to report higher earnings by reducing reported costs. Given a choice between recognizing deductible and non－deductible costs, they are likely to prioritize deductible costs for their tax－saving benefits. The tendency to avoid recognizing non－deductible costs, such as impairment losses, intensifies as the marginal tax rate and potential tax savings increase. Thus, firms with higher marginal tax rates have a greater incentive to recognize fewer impairment losses.

We test our hypotheses by measuring tax costs using five－year Cash Effective Tax Rates (Cash ETRs) and five－year GAAP Effective Tax Rates (GAAP ETRs) (Dyreng et al., 2008 ; Armstrong, 2012 ; Davis, 2016). Additionally, we analyze marginal tax based on deferred corporate tax related to impairment losses as a measure of tax costs. In the first hypothesis test,

we use tax cost (***TaxCost***[1]) as the independent variable and Impairment (Impair) as the dependent variable in the regression model. The regression results show that the coefficient of tax cost is significantly negative. In the second hypothesis test, we use the interaction variable between pre－tax income before impairment loss recognition and tax cost (***TaxCost*AdjPI***) *as the independent variable and Impairment (Impair) as the dependent variable.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coefficient of* ***TaxCost*AdjPI*** is also significantly negative.

These findings reveal that tax costs play a significant role in the decision to recognize impairment losses. The significantly negative coefficient of tax cost in the first hypothesis test suggests that firms recognize fewer impairment losses when marginal tax costs are higher. The significantly negative coefficient of the interaction variable between pre－tax income before impairment loss recognition and tax cost (***TaxCost*AdjPI***) in the second hypothesis test demonstrates that the effect of tax costs on impairment losses varies based on the relative importance of non－tax costs that a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reported earning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both direct and indirect tax costs are critical factors influencing firms' financial reporting and impairment loss recognition decision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financial accounting and taxation literature by examining the interplay between tax planning and financial reporting strategies thr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costs and impairment loss recognition. Building on the foundational work of Scholes and Wolfson (1992) from a microeconomic perspective, our study shows that impairment losses, though not directly affecting post－tax cash flows, are closely tied to tax costs. This link arises from tax－saving opportunities that balance both direct and indirect tax costs against non－tax costs. By offering a detailed analysis of how tax－saving effects shape firms' financial reporting strategies, this study provides new insights into the decision－making processes behind corporate financial strategies.

The study is structured as follows : Section Ⅱ reviews prior literature and presents the research hypotheses. Section Ⅲ outlines the sample selection and research models. Section Ⅳ discusses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Finally, Section Ⅴ provides the conclusion and contributions.

---

1) In this study, ***TaxCost*** is specifically measured using three key metrics : five－year Cash Effective Tax Rates (Cash ETRs), five－year GAAP Effective Tax Rates (GAAP ETRs), and marginal tax based on deferred corporate tax related to impairment losses.

Ⅱ. RELATED RESEARCH

2.1 Scholes and Wolfson (1992) and Subsequent Research

Scholes and Wolfson (1992)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the theoretical framework for tax research by integrating microeconomic perspectives. They emphasized that corporate tax planning should not only consider the tax burden borne directly by the company but also factor in a wider spectrum of costs, including non－tax costs influenced by various stakeholders. This approach introduced the concept of implicit taxes and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a trade－off between tax expenses and non－deductible costs. They argued that efforts to minimize tax expenses could inadvertently increase non－deductible costs, such as opportunity costs, underscoring the necessity for a balanced approach to tax planning and financial reporting.

This framework has been empirically supported by subsequent studies that align closely with the hypotheses of this study. For example, Klassen (1997) explored the relationship between asset disposition transactions and effective tax rates, revealing that companies with significant ownership stakes tend to increase realized losses and reduce earnings. This behavior is less pronounced in companies with lower tax rates, suggesting that the trade－off between tax and financial reporting incentives diminishes as tax costs decrease.

Further research has extended this theoretical framework to examine the interaction of tax costs with other financial considerations. Burgstahler, Hail, and Leuz (2006**)** compared the earnings management practices of public and private firms, underscoring the importance of reporting incentives. They found that public firms are more likely to engage in earnings management, driven by the need to balance tax optimization with favorable financial reporting. This resonates with the idea that managerial incentives play a crucial role in decisions involving the trade－off between tax savings and financial reporting. Mills and Newberry (2001) analyzed the differences in financial reporting earnings and taxable earnings between public and private companies, discovering that public companies generally incur higher non－deductible expenses. This finding supports the notion that managers in public firms face greater incentives to manage tax costs while maintaining financial reporting objectives, a central consideration of this study.

Other research has explored how tax planning affects different accounting choices and their

implications for financial reporting. Hanlon (2005) examined how book－tax differences affect the persistence and pricing of earnings, accruals, and cash flows. The study provides insight into how financial reporting and tax planning intersect, particularly in firms where these differences are pronounced, aligning with our study's focus on the trade－offs between tax optimization and financial reporting transparency.

Blaylock, Shevlin, and Wilson (2012) contributed to the literature by exploring how tax avoidance influences large positive book－tax differences and earnings persistence. They found that firms engaging in tax avoidance exhibit greater book－tax differences, supporting the idea that firms' tax planning strategies directly impact their financial reporting practices.

From a corporate financial strategy perspective, Dhaliwal, Trezevant, and Wang (1992)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investment－related tax shields and a firm's capital structure. They concluded that tax shields influence corporate financial decisions, particularly the balance between tax and non－tax costs, and play a role in shaping a firm's broader financial strategy.

In addition, Graham, Hanlon, and Shevlin (2011) investigated the real effects of accounting rules on multinational firms' investment location and profit repatriation decisions. The study demonstrated that accounting regulations and tax considerations significantly affect firms' operational and strategic decisions, highlighting how tax planning is integrated into broader corporate strategies beyond domestic tax concerns.

These studies collectively provide empirical support for the nuanced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reporting and tax planning, particularly the trade－offs between tax－deductible and non－tax－deductible expenses. By building on the theoretical foundation established by Scholes and Wolfson (1992), our study seeks to extend this discourse, focusing specifically on how corporate tax rates and pre－tax earnings influence the balance between financial reporting strategies and tax considerations.

2.2 Prior Research on Impairment Losses

The adoption of IFRS and the implementation of SFAS 142 in the United States have significantly elevated the importance of recognizing impairment losses as a key aspect of financial reporting. Both frameworks mark a departure from the routine amortization of indefinite－lived intangible assets, such as goodwill, toward a more rigorous approach to impairment

testing. Under IFRS, intangible assets with indefinite lives undergo annual impairment tests, as stipulated in IAS 36, while SFAS 142 mandates impairment testing in lieu of amortization. This transition represents a tightening of impairment recognition rules, requiring firms to recognize impairment losses whenever an asset's recoverable amount falls below its carrying value, replacing previously more lenient conditions.

Several studies have explored how these accounting standards have influenced impairment loss recognition across different countries. Glaum et al. (2013) analyzed European Union countries and found significant variation in managerial discretion based on each country's regulatory environment and accounting culture. They suggest that weaker regulatory oversight allows greater managerial discretion, resulting in diverse patterns of impairment loss recognition. Similarly, Barker and McGeachin (2015) studied the adoption of IFRS in Canada, noting that it led to a more rigorous approach to impairment loss recognition compared to the previous Canadian GAAP. This change effectively reduced managerial discretion and improved the transparency of financial reporting.

In the context of non－Western countries, Duh et al. (2009) examined the behavior of manufacturing and service firms in Taiwan. Their findings indicate that managers often underreport impairment losses to manage earnings, with industry characteristics playing a role in influencing impairment decisions. This highlights how local economic environments and regulatory frameworks shape impairment recognition behaviors.

Research on managerial incentives has been a focal point in understanding impairment loss recognition. Ramanna and Watts (2012) studied how executive compensation tied to stock performance can drive impairment decisions, revealing that managers often adjust impairment losses to achieve performance targets. Beatty and Weber (2006) explored the influence of debt covenants, finding that firms with higher leverage tend to delay or minimize impairment losses to avoid covenant breaches. This occurs despite the regulatory requirements of IFRS, underscoring the tension between accounting standards and managerial incentives. Li and Sloan (2017) provide a comprehensive critique of goodwill accounting under SFAS 142, questioning whether the shift from amortization to impairment effectively captures the economic realities of intangible assets. Their work emphasizes the subjective nature of impairment testing, leading to potential inconsistencies in financial reporting.

The role of regulatory changes also garners attention in impairment loss research. Zhang

(2008) examined the economic impact of the Sarbanes－Oxley Act (SOX), finding that increased regulatory oversight curtailed managerial discretion in recognizing impairment losses, thereby enhancing transparency. Additionally, Francis and Martin (2010) examined the timing of impairment recognition, particularly in the context of acquisitions, demonstrating that the profitability of acquisitions influences how promptly firms recognize impairment losses.

Collectively, these studies underscore the substantial influence of managerial discretion on impairment loss recognition. They also highlight a variety of factors, including regulatory environment, industry type, and managerial incentives, that contribute to the recognition and reporting of impairment losses. While the adoption of IFRS has generally increased transparency and led to stricter impairment testing, its application is not uniform across countries and industries, leaving room for managerial judgment. These findings are reflected in the increasing frequency of impairment losses being highlighted as key audit matters within audit reports, underscoring their significance in financial reporting under IFRS.

Ⅲ. HYPOTHESES DEVELOPMENT

The first hypothesis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tax expenses and the reporting of impairment losses. This investigation is grounded in the trade－off theory between tax expenses and non－deductible expenses as articulated by Scholes and Wolfson (1992), alongside the premise that tax－saving effects vary across corporations. Based on this framework, the following logical flow is proposed：

1. **Managers Prefer to Report Higher Earnings**：Managers are likely to report higher earnings to present the company's financial status positively (Dechow et al., 1996；Kothari et al., 2009；Hutton et al., 2009). By underreporting costs, reported earnings can be increased. Underreporting costs can increase net income, thereby raising reported earnings.
2. **Underreporting Non－Tax－Deductible Costs**：Given the choice between deductible and non－deductible expenses or losses for the purpose of taxable income, managers are inclined to underreport non－deductible expenses or losses, favoring deductible expenses which afford tax savings. Non－deductible expenses or losses are prone to underreporting,

a tendency that varies according to the corporate tax burden.

3. **Influence of Marginal Tax Rate**：Companies subjected to high tax rates, and thus a significant corporate tax burden, are likely to make a clear distinction between deductible and non－deductible expenses for tax planning purposes. Conversely, companies with lower tax rates and minimal tax burdens might see less benefit in differentiating between the two types of expenses. Therefore, managers prefer to underreport non－tax－deductible costs rather than tax－deductible costs. As the marginal tax rate increases, the tax－saving effect of deductible costs becomes more significant, making managers more likely to underreport non－tax－deductible costs. For example, when the marginal tax rate approaches zero, the tax－saving effect diminishes, reducing the preference difference between the two options.
4. **Negative Correlation Hypothesis**：Consequently, the higher the corporate tax expenses, the stronger the incentive to underreport non－deductible expenses to bolster financial earnings, indicating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corporate tax expenses and the reporting of impairment losses.

This hypothesis can be illustrated through the lens of the trade－off between tax expenses and non－deductible expenses. Tax planning and financial reporting are intertwined activities, with managers aiming to minimize both tax liabilities and non－deductible expenses. In scenarios where taxable income aligns with financial earnings, an increase in financial earnings would result in higher tax expenses but reduced non－deductible expenses. The optimization of tax planning and financial reporting occurs when the marginal costs of tax expenses and non－deductible expenses, as they relate to changes in financial earnings, are balanced. The introduction of factors that lead to impairment losses alters this balance, pushing the curve of non－deductible expenses upward and increasing the marginal cost associated with non－deductible expenses prior to the recognition of impairment los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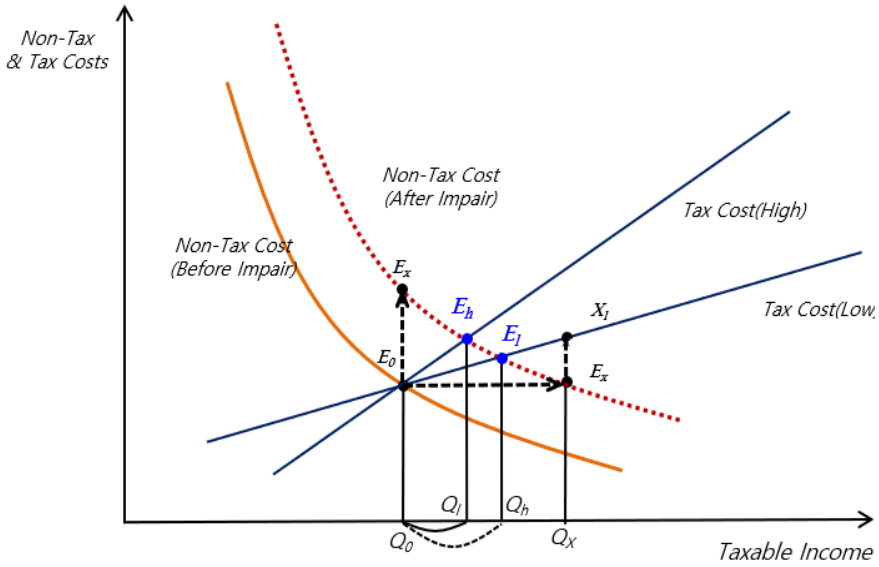
In Figure 1, with the assumption that reported earnings and taxable income are congruent, the curve for non－deductible expenses initially slopes downward, represented by the solid line labeled "***Non－Tax Cost (Before Impair)***". Upon recognizing impairment losses from Q_0 to Q_x, the curve for non－deductible expenses related to financial earnings pre－impairment experiences an upward shift, depicted by the dashed line "***Non－Tax Cost (After Impair)***". This shift indicates that the marginal cost of non－deductible expenses surpasses that of tax expenses post－impairment recognition, prompting a recalibration of tax planning and financial reporting

strategies. Consequently, to minimize non-deductible expenses, managers may opt to report higher earnings despite incurring additional tax liabilities. For companies facing high tax rates, this optimization involves elevating their reported earnings from Q_0 to Q_h, which leads to an increase in tax expenses from E_0 to E_h but a simultaneous reduction in non-deductible expenses from E_x to E_h. Conversely, companies with lower tax rates might find their optimal strategy involves increasing reported earnings from Q_0 to Q_l, resulting in higher tax expenses from E_0 to E_l, but with a reduction in non-deductible expenses from E_x to E_l.

After recognizing impairment losses and adjusting for optimal tax planning and financial reporting strategies, the total cost increase is represented as E_0E_hX2 for companies with high tax rates and E_0E_l for those with low tax rates. Despite both high and low-tax-rate companies recognizing the same amount of impairment losses, the cost increase attributed to impairment recognition is notably higher by E_lE_hX2 for high-tax-rate companies. This additional cost burden on high-tax-rate companies may incentivize a more cautious approach toward recognizing impairment losses. Consequently, it is anticipated that companies facing higher corporate tax expenses will report fewer impairment losses.

This strategic adjustment is illustrated in Figure 1.

〈Figure 1〉 The Relationship Between Non-Tax Costs, Tax Costs, and Taxable Income Pre- and Post-Impairment Recognition



In Figure 1, the curve representing non－tax expenses before recognizing impairment losses can be expressed by Equation (1－1) (Carmichael 1928). Equation (1－1) shows that when x is a certain value, y reaches a maximum value of 1, and as x increases, $y_{_before}$ decreases in a decelerating manner. This equation corresponds to the solid line in Figure 1 labeled as Non－Tax Cost (Before Impair).

$$y_{_before} = \frac{1}{(1+x)^2}, \quad s,t \quad \delta < x < \frac{\pi}{2} \tag{1－1}$$ [2]

After recognizing impairment losses ($=\delta$), the non－tax expense $y_{_after}$ can be represented as shown in Equation (1－2). The reporting of impairment losses (δ) results in a decrease in reported earnings, leading to an increase in non－tax expenses from, $y_{_before}$ to $y_{_after}$ This corresponds to the dashed line in Figure 1 labeled as Non－Tax Cost (After Impair).

$$y_{_after} = \frac{1}{1+(x-\delta)^2}, \quad s,t \quad \delta < x < \frac{\pi}{2} \ \ and \ \ 0 < \delta \tag{1－2}$$

To optimize tax planning and financial reporting when moving from, $y_{_before}$ to $y_{_after}$, reported earnings Δx must be increased. Consequently, the additional tax expense incurred, Δz, can be expressed as shown in Equation (1－3), where r represents the tax rate.

$$\triangle z = r \cdot \triangle x \tag{1－3}$$

Based on this discussion, the following first research hypothesis is established：

Hypothesis 1：Managers are more likely to minimize the recognition of impairment losses to enhance tax savings, and this tendency becomes more pronounced as the corporate tax rate increases.

The second hypothesis builds upon the first by considering the impact of pre－tax earnings on

2) The use of trigonometric functions in Equation (1－1) provides a convenient way to model the decelerating nature of non－tax expenses as taxable income increases. The function reaches a maximum at a certain point and then decreases, reflecting the realistic scenario where the marginal benefit of additional taxable income diminishes after a certain level. This is analogous to the concept of diminishing marginal returns in economics.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tax rate and the recognition of impairment losses. This hypothesis posits that the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he corporate tax rate and the recognition of impairment losses strengthens as pre－tax earnings increase.

1. **Impact of Pre－Tax Earnings**：The incentive to underreport non－tax－deductible costs to enhance tax savings becomes more significant as pre－tax earnings rise. Higher pre－tax earnings provide a larger base from which tax savings can be realized, making the optimization of tax planning and financial reporting more critical.
2. **Strengthened Negative Correlation**：As pre－tax earnings increase, the marginal benefit of tax savings from underreporting non－tax－deductible costs becomes more pronounced. This leads to a stronger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he corporate tax rate and the recognition of impairment losses.

This relationship can be further illustrated through the following partial derivative analysis. When reported earnings are increased by Δx, the change in non－tax expenses can be expressed as shown in Equation (1－4).

$$\triangle y = \frac{1}{\{-1+(x-\delta)\}} \cdot \triangle x \qquad (1-4)$$

The optimization of tax planning and financial reporting occurs when the condition $\Delta z = y_{_after}$ is met. That is, after recognizing impairment losses δ, reported earnings Δx must be increased to satisfy Equation (1－5).

$$r \cdot \triangle x = \frac{1}{(1+x^2)} \cdot \triangle x \qquad (1-5)$$

Equation (1－5), when rearranged in terms of Δx, becomes Equation (1－6)：

$$\triangle x = h = \frac{\delta}{r(1+x^2)+1} \qquad (1-6)$$

To further understand the dynamics between these variables, the total differential can be expressed as：

$$dh = f_x(x,y)dx + f_r(x,r)dr = \frac{\partial h}{\partial r}dr + \frac{\partial h}{\partial x}drx \quad (1-7)$$

This can be expanded to show the individual partial derivatives as follows :

$$\frac{\partial h}{\partial x}dr = -\frac{\delta}{r^2(1+x^2)^2} \quad (1-8)$$

Equation (1－8) illustrates the change in the function h with respect to changes in the tax rate r. As the tax rate increases, the partial $\partial h/\partial r$ becomes negative, indicating a decrease in the tax －saving effect.

$$\frac{\partial h}{\partial x}drx = -\frac{2x\delta}{r^2(1+x^2)^2} \quad (1-9)$$

Equation (1－9), on the other hand, represents the partial derivative of h with respect to the earnings x. The positive sign indicates that as pre－tax earnings increase, the incentive to report higher earnings also increases, thus amplifying the tendency to underreport non－tax－deductible costs. This relationship underscores the significance of pre－tax earnings in influencing the overall tax planning and financial reporting strategy.

The partial derivative coefficient ($= \frac{\partial h}{\partial x}drx$) in Equation (1－9) is positive (+). This indicates that in Equation (1－7), the larger x is, the more the first term ($= \frac{\partial h}{\partial x}dr$) expands. In essence, the greater the financial earnings before recognizing impairment, the stronger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tax expenses and the costs associated with recognizing impairment losses.

Based on this discussion, the following second research hypothesis is established :

Hypothesis 2 : The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he corporate tax rate and the recognition of impairment losses becomes stronger as pre-tax earnings increase. This suggests that as pre-tax earnings rise, the incentive for managers to underreport non-tax-deductible costs, such as impairment losses, to enhance tax savings becomes more pronounced.

Ⅳ. RESEARCH DESIGN

Sample Selection

The analysis is based on firms for which stock prices and financial statement data are available from Compustat. The sample period covers from 2002 to 2023, following the adoption of SFAS 142 (Goodwill and Other Intangible Assets). The following cases were excluded from the analysis :

a. Firms that operate in the financial industry.
b. Firm－years with missing financial data.
c. Firm－years where the Cash effective tax rate is less than 0 or greater than 1.
d. Firm－years where the GAAP effective tax rate is less than 0 or greater than 1.
e. Firm－years with pretax income before deducting goodwill impairments less than 0.

We require firms covered by Compustat that reported goodwill impairments from 2001 to 2023 and have five consecutive years of non－missing data for cash taxes paid, total income tax, and pretax income. Initially, we identified 14,054 firm－year observations where goodwill impairments were reported. We further focused on 8,985 firm－year observations from this group that met the criteria of having five consecutive years of non－missing cash taxes paid, total income tax, and pretax income, along with available data for control variables. We then exclude firm－years where the cash effective tax rate or the GAAP effective tax rate is less than 0 or greater than 1 and firm－years with pretax income before deducting goodwill impairments and special items less than 0. After applying these exclusions, the final sample comprises 4,596 firm－year observations for analysis.

RESEARCH MODEL

Tax Cost Measurement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cost (TaxCost) and impairment (Impair),

focusing on these two key variables. Before designing the research model, it is essential to measure tax cost (TaxCost) and impairment (Impair) accurately.

In this study, the independent variable is theoretically presented as the marginal tax cost. However, since it is practically difficult to directly measure marginal tax cost, most tax studies use the effective tax rate as a proxy(Givoly et al,. 1992). This study measures tax cost using four methods. The first method calculates the sum of cash tax payments from year t－4 to t (using Compustat data item TXPD) divided by the sum of pre－tax income (PI) over the same period, excluding special items (SPI) (Dyreng et al., 2008 ; Davis et al., 2016). In this study, we additionally exclude goodwill impairment from the denominator of the formula used in prior studies. This is because goodwill impairment does not affect cash tax payments, which are the numerator of Equation (2). By excluding not only special items but also goodwill impairments, the true tax cost can be significantly improved. Moreover, if goodwill impairment is included in the denominator of pre－tax income in Equation (2), a mechan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ble of interest and the dependent variable could be formed in the research model. To eliminate this mechanical effect, we excluded goodwill impairment from the denominator of Equation (2). This Cash ETRs is expressed in Equation (2) as follows :

$$Cash\,ETRs = \frac{\sum_{i=t-4}^{t} Cash\,Paid\,Tax}{\sum_{i=t-4}^{t} Pretax\,Income - \sum_{i=t-4}^{t} Special\,Item - Impairment\,of\,goodwill} \quad (2)$$

The second method calculates tax cost by taking the sum of GAAP tax expenses over five years, from t－4 to t (using Compustat data item TXT), and dividing it by the sum of pre－tax income (PI) over the same period, while excluding special items (SPI). Unlike Equation (2), the denominator of the GAAP ETRs in Equation (3) does not exclude goodwill impairment. This is because the numerator, which represents GAAP tax expense, already includes the tax implications of goodwill impairment due to deferred tax. This GAAP ETRs is expressed in Equation (3) as follows :

$$GAAP\,ETRs = \frac{\sum_{i=t-4}^{t} Tax\,Expense}{\sum_{i=t-4}^{t} Pretax\,Income - \sum_{i=t-4}^{t} Special\,Item} \quad (3)$$

The third method measures deferred tax cost by calculating the estimated deferred tax impact on impairment, which is the difference between pre-tax impairment and after-tax impairment losses divided by the pre-tax impairment loss. This approach captures the delayed tax savings effect related to recognition of impairment, effectively quantifying the opportunity cost of the tax savings effect compared to recognizing immediately deductible expenses.

$$Defered\ Tax = \frac{Pretax\ Impairment - After\ Tax\ Impairment}{Pretax\ Impairment} \quad (4)$$

The fourth method takes the average of the tax costs measured by the three previous methods. By averaging the three different measures, this approach reduces the measurement errors and biases inherent in each individual method. Since each method may have its unique inaccuracies or tendencies, averaging them helps to offset these errors, leading to a more accurate and reliable estimate of the tax cost. This method leverages the strengths of multiple approaches, providing a balanced and robust measure that minimizes the impact of any one method's limitations.

Firm-year observations with values measured by the first to the third methods that are less than 0 or greater than 1 were excluded from the analysis, as the tax cost cannot be less than 0 or greater than 1. This exclusion is consistent with prior research, which also excluded such observations to maintain the validity of the analysis and ensure that the results reflect realistic and meaningful measures of tax cost.

Research Model

The first hypothesis of this study posits that tax cost is expected to have a negative (-) impact on the recognition of impairment losses. Equation (2) represents the research model designed to test this hypothesis. In this model, the dependent variable is Impair, as described earlier. If Hypothesis 1 is supported, the coefficient of TaxCost in the regression analysis will show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 value.

$$Impair = \beta_0 + \beta_1\ TaxCost + \beta_2\ AdjPI + \beta_3\ Size + \beta_4\ BM + \beta_5\ Lev + \beta_6\ Sales + \beta_7\ Goodwill + \Sigma_t\ Year_t + \varepsilon \quad (2)$$

where :

TaxCost =*Includes Cash ETRs, GAAP ETRs, Deferred Tax, and Average Tax*

AdjPI =*Pre-tax income before deducting impairment loss, divided by total assets at the*

beginning of the fiscal year
Size =*The natural logarithm of total assets*
BM =*The book-to-market ratio*
Lev =*Total liabilities at the end of the fiscal year divided by total equity*
Sales =*The natural logarithm of sales*
Σ_t *Year*$_t$ =*Year fixed effects*

The second hypothesis of this study posits that the negative (-) association between tax cost and impairment reporting will be more pronounced when pre-tax income before recognizing impairment is higher. This suggests that tax cost interacts with adjusted pre-tax income, influencing the reporting of impairment losses. To test this hypothesis, we designed the research model in Equation (3), where the interaction term between TaxCost and AdjPI is the variable of interest, and impairment is the dependent variable. If Hypothesis 2 is supported, the regression analysis of the research model will show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 coefficient for the interaction term between ***TaxCost*** and ***AdjPI***.

$$Impair = \beta_0 + \beta_1\ TaxCost + \beta_2\ AdjPI + \beta_3\ Tax*AdjPI + \beta_4\ Size + \beta_5\ BM + \beta_6\ Lev + \beta_7\ Sales + \beta_8\ Goodwill + \Sigma_t\ Year_t + \varepsilon$$

where :
*Tax*AdjPI* =*Interaction term between tax cost and adjusted pre-tax income*

Ⅴ. EMPIRICAL ANALYSIS

Sample Selection

The analysis is based on firms for which stock prices and financial statement data are available from Compustat. The sample period covers from 2002 to 2023, following the adoption of SFAS 142 (Goodwill and Other Intangible Assets). The following cases were excluded from the analysis :

a. Firms that operate in the financial industry.
b. Firm-years with missing financial data.

c. Firm－years where the Cash effective tax rate is less than 0 or greater than 1.
d. Firm－years where the GAAP effective tax rate is less than 0 or greater than 1.
e. Firm－years with pretax income before deducting goodwill impairments less than 0.

We require firms covered by Compustat that reported goodwill impairments from 1998 to 2023 and have five consecutive years of non－missing data for cash taxes paid, total income tax, and pretax income. Initially, we identified 14,054 firm－year observations where goodwill impairments were reported. We further focused on 8,985 firm－year observations from this group that met the criteria of having five consecutive years of non－missing cash taxes paid, total income tax, and pretax income, along with available data for control variables. We then exclude firm－years where the cash effective tax rate or the GAAP effective tax rate is less than 0 or greater than 1 and firm－years with pretax income before deducting goodwill impairments and special items less than 0. After applying these exclusions, the final sample comprises 4,440 firm－year observations for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Table 1 presents the descriptive statistics for the variables used in this study. The mean Cash ETRs is 0.204 with a standard deviation of 0.137, indicating variability in effective tax rates across the sample firms. The GAAP ETRs has a slightly higher mean of 0.245 and a standard deviation of 0.146. Deferred Tax has a mean of 0.254, and Average Tax shows a mean of 0.234, with respective standard deviations of 0.148 and 0.096, reflecting the spread in tax metrics among companies. Impair has a mean of 0.071 and a standard deviation of 0.140, suggesting a right－skewed distribution given the median (0.021) is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mean. AdjPI has a mean of 0.109 and a standard deviation of 0.091, with its median slightly lower than the mean, implying the presence of few firms with significantly higher adjustment ratios. Firm Size (measured in logarithmic terms) averages 7.295 with a standard deviation of 2.036, indicating a broad range of firm sizes within the sample. The book－to－market ratio (BM) has a mean of 0.581, with considerable dispersion (standard deviation of 2.735), indicating varying growth expectations among firms. Leverage (Lev) has a high standard deviation of 5.357, which, compared to its mean of 2.038, suggests significant variability in firms' leverage ratios. Sales,

also log−transformed, have a mean of 7.047 and a standard deviation of 2.015, highlighting the diversity in revenue sizes among the sample firms. Finally, Goodwill exhibits a mean of 0.159 with a standard deviation of 0.160, showing that the proportion of goodwill to total assets varies moderately across firms in the sample.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	Mean	Std. Dev	25%	Median	75%
Cash ETRs	*0.204*	*0.137*	*0.106*	*0.201*	*0.284*
GAAP ETRs	*0.245*	*0.146*	*0.150*	*0.242*	*0.326*
Defered Tax	*0.254*	*0.148*	*0.099*	*0.350*	*0.350*
Average Tax	*0.234*	*0.096*	*0.176*	*0.236*	*0.295*
Impair	*0.071*	*0.140*	*0.004*	*0.021*	*0.072*
AdjPI	*0.109*	*0.091*	*0.048*	*0.088*	*0.141*
Size	*7.295*	*2.036*	*6.040*	*7.378*	*8.667*
BM	*0.581*	*2.735*	*0.345*	*0.613*	*1.027*
Lev	*2.038*	*5.357*	*0.645*	*1.264*	*2.418*
Sales	*7.047*	*2.015*	*5.847*	*7.182*	*8.377*
Goodwill	*0.159*	*0.160*	*0.025*	*0.116*	*0.246*

Table 2 shows th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the variables used in this study. Cash ETRs and GAAP ETRs exhibit a strong positive correlation (0.409, $p<0.01$), suggesting that firms with higher cash effective tax rates also tend to have higher GAAP effective tax rates. Deferred Tax shows a weak and statistically insignificant correlation with both Cash ETRs (0.068) and GAAP ETRs (0.006), indicating minimal direct association between deferred taxes and the effective tax rates reported. Average Tax is highly correlated with both Cash ETRs (0.714, $p<0.01$) and GAAP ETRs (0.729, $p<0.01$), reflecting the consistency in tax reporting measures across firms. Impair exhibits a negative correlation with Cash ETRs (−0.160, $p<0.01$) and GAAP ETRs (−0.049), although the latter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suggesting that impairment charges are associated with lower tax rates. AdjPI shows a notable positive correlation with Impair (0.584, $p<0.01$), indicating that firms with higher impairment charges tend to have higher adjusted pretax income metrics. Firm Size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Cash ETRs (0.094, $p<0.01$) and

GAAP ETRs (0.106, p＜0.01), which implies that larger firms generally report higher effective tax rates Other firm characteristics such as BM, Lev, and Sales demonstrate varying levels of correlation with the tax－related variables. Notably, BM (Book－to－Market ratio) is negatively correlated with GAAP ETRs (－0.133, p＜0.05), while Lev (Leverage) shows positive correlations with both Cash ETRs (0.141, p＜0.01) and GAAP ETRs (0.117, p＜0.01). Sales a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Size (0.956, p＜0.01), confirming the expected relationship between firm size and revenue. Overall, the correlations suggest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certain tax measures and firm characteristics, highlighting the interconnected nature of financial reporting metrics.

〈Table 2〉 Pearson Correlation among Variables

	Cash ETRs	*GAAP ETRs*	*Defered Tax*	*Average Tax*	*Impair*	*AdjPI*	*Size*	*MB*	*Lev*	*Sales*
GAAP ETRs	*0.409* *(0.000)*									
Defered Tax	*0.068* *(0.000)*	*0.057* *(0.000)*								
Average Tax	*0.714* *(0.000)*	*0.729* *(0.000)*	*0.574* *(0.000)*							
Impair	*−0.292* *(0.000)*	*−0.160* *(0.000)*	*−0.174* *(0.000)*	*−0.308* *(0.000)*						
AdjPI	*−0.160* *(0.000)*	*−0.049* *(0.001)*	*−0.118* *(0.000)*	*−0.160* *(0.000)*	*0.584* *(0.000)*					
Size	*0.094* *(0.000)*	*0.027* *(0.063)*	*0.013* *(0.367)*	*0.065* *(0.000)*	*−0.408* *(0.000)*	*−0.214* *(0.000)*				
BM	*0.059* *(0.000)*	*0.007* *(0.625)*	*0.000* *(0.987)*	*0.032* *(0.033)*	*−0.183* *(0.000)*	*−0.128* *(0.000)*	*0.046* *(0.002)*			
Lev	*0.030* *(0.041)*	*0.023* *(0.114)*	*−0.048* *(0.001)*	*0.001* *(0.930)*	*−0.077* *(0.000)*	*−0.115* *(0.000)*	*0.146* *(0.000)*	*0.103* *(0.000)*		
Sales	*0.148* *(0.000)*	*0.072* *(0.000)*	*0.049* *(0.001)*	*0.131* *(0.000)*	*−0.420* *(0.000)*	*−0.150* *(0.000)*	*0.906* *(0.000)*	*0.012* *(0.398)*	*0.077* *(0.000)*	
Goodwill	*0.017* *(0.256)*	*−0.037* *(0.013)*	*0.063* *(0.000)*	*0.021* *(0.145)*	*−0.070* *(0.000)*	*0.042* *(0.005)*	*0.208* *(0.000)*	*−0.019* *(0.205)*	*−0.044* *(0.003)*	*0.201* *(0.000)*

Quintile Matrix (5×5) Analysis

Before conducting the regression analysis, this study performs a preliminary analysis in which the sample is divided into quintiles based on corporate tax expenses and pretax income before impairment. The values of impairment losses (Impair_total) are subsequently arranged in a matrix format. This analysis aims to elucid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tax expenses and the reporting of impairment losses, exploring how this relationship varies according to the level of pretax income.

In Table 3, the rows labeled from Tax(1) to Tax(5) represent quintiles of corporate tax expenses. These expenses are calculated based on the average of Margin Tax derived from Cash Effective Tax Rates (ETRs), GAAP ETRs, and deferred tax data. Tax(1) indicates the portfolio group with the lowest tax expenses, while Tax(5) reflects the group with the highest tax expenses. Each of these portfolio groups is further subdivided into five sub－portfolios, ranging from AdjPI(1) to AdjPI(5), based on pretax income before impairment. Notably, AdjPI(1) represents the sub－group with the lowest pretax income before impairment, whereas AdjPI(5) signifies the sub－group with the highest pretax income before impair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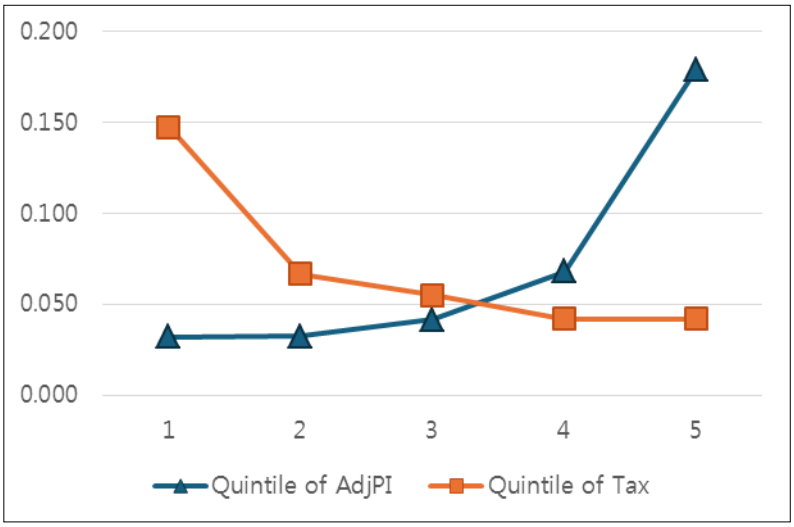
The cell at the intersection of Tax(1)*AdjPI(1) represents the sample group with both the lowest tax expenses and the lowest pretax income before impairment. In contrast, the cell at Tax(5)*AdjPI(5) denotes the sub－portfolio with the highest tax expenses and the highest pretax income before impairment. The value in each cell reflects the pretax goodwill impairment losses for each portfolio, thereby providing insight into how tax expenses and pretax income correlate with impairment losses.

〈Table 3〉 Impairment Matrix by Earning and Tax

	AdjPI(1)	*AdjPI(2)*	*AdjPI(3)*	*AdjPI(4)*	*AdjPI(5)*	*Average*
Tax(1)	*0.060*	*0.048*	*0.061*	*0.126*	*0.441*	*0.147*
Tax(2)	*0.022*	*0.027*	*0.042*	*0.075*	*0.168*	*0.067*
Tax(3)	*0.025*	*0.028*	*0.034*	*0.056*	*0.132*	*0.055*
Tax(4)	*0.024*	*0.027*	*0.032*	*0.045*	*0.083*	*0.042*
Tax(5)	*0.027*	*0.034*	*0.039*	*0.038*	*0.071*	*0.042*
Average	*0.032*	*0.033*	*0.042*	*0.068*	*0.179*	*0.071*

The last column of Table 3 shows the average impairment loss values for the portfolios from Tax(1) to Tax(5). As we move from Tax(1) to Tax(5), we generally observe a decrease in the average impairment loss values. This indicates that firms with higher tax expenses report fewer impairment losses, which is consistent with Hypothesis 1. Meanwhile, the last row of Table 4 shows the average impairment loss values for each portfolio categorized by AdjPI(1) to AdjPI(5). It can be seen that as we move from AdjPI(1) to AdjPI(5), the reporting of impairment losses increases. Based on these results, Figure 2 graphically represents the impairment loss values as we move from Tax(1) to Tax(5) and from AdjPI(1) to AdjPI(5). In Figure 2, the curve for TaxCost slopes downward, whereas the curve for Adjusted Pretax Income slopes upward. The upward slope of the Adjusted Pretax Income curve can be interpreted, as shown in Figure 1, as a result of the diminishing non－tax costs associated with increased reported earnings. Conversely, the downward slope of the TaxCost curve aligns with the observation from Figure 1 that high－tax－rate firms recognize fewer impairment losses compared to low－tax－rate firms. Therefore, the theoretical graph in Figure 1 and the empirical results displayed in Figure 2 can be considered consist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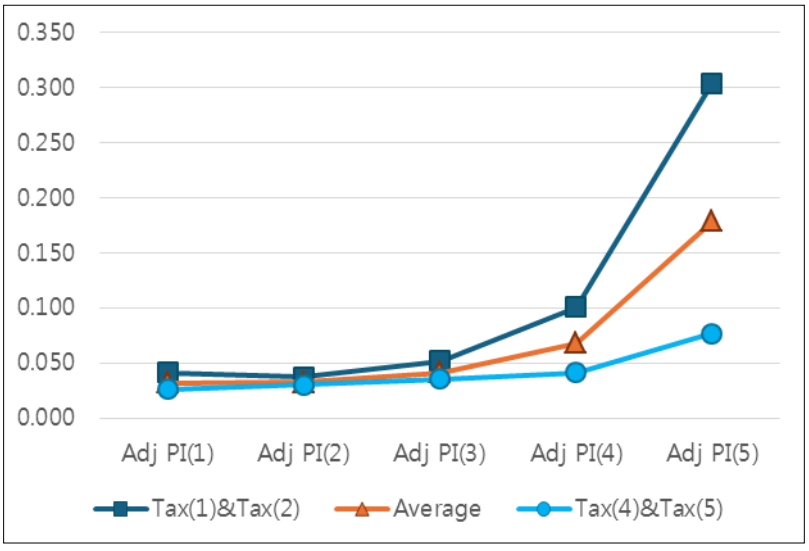
〈Figure 2〉 Quintile Analysis of Goodwill Impairment by Adjusted Pretax Income and Tax Expense



<Figure 3> shows a line representing the average of Tax(1) and Tax(2), the average of Tax(4) and Tax(5), and the overall average values. In <Figure 3>, the line representing the average of

Tax(1) and Tax(2) is positioned higher than both the overall average line and the line representing the average of Tax(4) and Tax(5). This is consistent with Hypothesis 1, which suggests that firms with lower tax expenses are more likely to actively recognize impairment losses. Additionally, all the lines representing the average of Tax(1) and Tax(2), the average of Tax(4) and Tax(5), and the overall average show an upward trend. However, the line for low－tax firms (Tax(1) and Tax(2)) shows the steepest upward slope, while the line for high－tax firms (Tax(4) and Tax(5)) shows the most gradual upward slope. Furthermore, in the range of AdjPI(1) to AdjPI(3), where pretax income before impairment is not high, the differences in impairment losses based on tax expenses are minimal. However, in the ranges of AdjPI(4) and AdjPI(5), where reported income is higher,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reported impairment losses based on tax expenses. This observation is consistent with the second hypothesis, which posits that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tax rates and impairment recognition becomes more pronounced as pretax income before impairment increases.

〈Figure 3〉 Graph of Impairment Matrix



The results of the regression analysis

Table 4 presents the empirical results for Hypothesis 1,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costs (***TaxCost***) and the impairment variable (Impair) across various tax measures, including Cash ETRs, GAAP ETRs, Deferred Tax, and Average Tax. The coefficients for ***TaxCost*** are consistently nega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across all specifications, indicating that higher tax costs are associated with lower impairment charges. Specifically, the coefficient for ***TaxCost*** is −0.156 (t−stat =−11.47) when Cash ETRs is the tax measure, −0.108 (t−stat =−7.70) for GAAP ETRs, −0.088 (t−stat =−7.27) for Deferred Tax, and −0.262 (t−stat =−11.68) for Average Tax, all significant at the 1% level.

〈Table 4〉 The Effect of Tax Costs on Impairment Recognition

		Dep. Var=Impair					
	Predicted Sign	*Cash ETRs (t−stat.)*[a]		*GAAP ETRs (t−stat.)*[a]		*Deferred Tax (t−stat.)*[a]	
Intercept	*?*	*0.185*		*0.177*		*0.187*	
		(14.30)	***	*(13.41)*	***	*(13.37)*	***
TaxCost	**−**	***−0.156***		***−0.108***		***−0.088***	
		(−12.00)	*****	***(−7.00)***	*****	***(−6.81)***	*****
AdjPI	*+*	*0.756*		*0.782*		*0.773*	
		(16.18)	***	*(16.71)*	***	*(18.63)*	***
Size	*?*	*0.003*		*0.005*		*0.004*	
		(1.14)		*(1.78)*	*	*(1.61)*	
BM	*−*	*−0.005*		*−0.006*		*−0.006*	
		(−4.72)	***	*(−5.21)*	***	*(−4.97)*	***
Lev	*?*	*0.000*		*0.000*		*0.000*	
		(1.20)		*(1.15)*		*(0.65)*	
Sales	*−*	*−0.024*		*−0.026*		*−0.027*	
		(−6.97)	***	*(−7.38)*	***	*(−8.74)*	***
Cash	*−*	*−0.124*		*−0.133*		*−0137*	
		(−5.67)	***	*(−6.22)*	***	*(−6.34)*	***
Goodwill	*?*	*−0.015*		*−0.019*		*−0.012*	
		(−1.53)		*(−1.94)*	*	*(−1.31)*	
Year Dummy		Yes		Yes		Yes	
Number		4,440		4,440		4,440	
Adj R^2		50.38%		49.44%		49.08%	

1) Regressions that are clustering standard errors by stock (Petersen 2009) ; *, ** and *** represent levels of significance at 10%, 5%, and 1%.

The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supports the hypothesis that firms with higher tax costs are likely to report lower impairment charges, possibly as a strategy to manage earnings. The control variable ***AdjPI*** is positively and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Impair across all models, reinforcing the robustness of the main findings. Other control variables, such as Size, BM, and Sales, show varying degrees of significance, but the key takeaway remains the strong, consistent effect of tax costs on impairment reporting behavior.

Overall, the results provide robust support for Hypothesis 1, demonstrating that tax costs play a crucial role in firms' financial reporting decisions, particularly in their recognition of impairment charges. The models exhibit high explanatory power, with adjusted R−squared values ranging from 49.08% to 51.26%, suggesting that the variables included in the analysis effectively capture the variations in impairment reporting.

Table 5 presents the empirical results for Hypothesis 2, which investigates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tax costs (***TaxCost***) and adjusted pretax income (***AdjPI***) on impairment (***Impair***). The interaction term, ***TaxCost*AdjPI***, is nega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across all models, indicating that the association between tax costs and impairment is moderated by adjusted pretax incomes. Specifically, the coefficient for the interaction term is −4.124 (t−stat=−17.83) for Cash ETRs, −2.124 (t−stat=−6.05) for GAAP ETRs, and −1.99 (t−stat=−8.44) for Deferred Tax, all significant at the 1% level.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negative impact of tax costs on impairment charges is more pronounced for firms with higher adjusted pretax incomes. This finding supports the hypothesis that firms with strong financial performance (as indicated by higher adjusted pretax incomes) are more likely to reduce impairment charges when faced with higher tax costs, potentially as a strategy to present a more favorable financial position.

Additionally, the main effects of ***TaxCost*** and ***AdjPI*** remain significant and in the expected directions, with positive coefficients for both variables across all models. Control variables, such as Size, BM, and Sales, show varying significance levels but generally align with expectations based on their impact on impairment.

〈Table 5〉 Interaction Effects of Tax Costs and Financial Performance on Impairment Recognition

		Dep. Var=Impair					
	Predicted Sign	Cash ETRs (t-stat.)[a]		GAAP ETRs (t-stat.)[a]		Deferred Tax (t-stat.)[a]	
Intercept	?	0.114		0.135		0.145	
		(9.74)	***	(10.72)	***	(11.32)	***
TaxCost	?	0.134		0.079		0.091	
		(9.15)	***	(3.71)	***	(5.07)	***
AdjPI	+	1.158		1.020		0.963	
		(26.50)	***	(16.80)	***	(21.03)	***
TaxCost*AdjPI	**−**	**−3.308**		**−1.616**		**−1.391**	
		(−17.55)	***	**(−6.28)**	***	**(−7.92)**	***
Size	?	−0.007		−0.003		0.000	
		(−4.01)	***	(−1.32)	***	(−0.10)	***
BM	−	−0.004		−0.004		−0.004	
		(−4.82)	***	(−5.06)	***	(−4.72)	***
Lev	?	0.000		0.000		0.000	
		(−0.42)		(0.20)		(0.29)	
Sales	−	−0.009		−0.016		−0.020	
		(−4.48)	***	(−7.24)	***	(−8.72)	***
Cash	−	−0.093		−0.133		−0.127	
		(−5.11)	***	(−6.80)	***	(−6.32)	***
Goodwill	?	−0.019		−0.021		−0.021	
		(−2.05)	**	(−2.06)	**	(−1.99)	**
Year Dummy		Yes		Yes		Yes	
Number		4,440		4,440		4,440	
Adj R^2		59.26%		54.54%		53.59%	

1) Regressions that are clustering standard errors by stock (Petersen 2009) ; *, ** and *** represent levels of significance at 10%, 5%, and 1%.

Robustness checks and alternative models for tax cost and impairment loss analysis

The analyses in this section are designed to enhance the robustness and reliability of our primary finding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costs and impairment loss recognition. To

ensure that results are not driven by specific model structures or assumptions, we conduct robustness checks and apply alternative model specifications to confirm the consistency and validity of our findings.

Figure 1 suggests a potential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non－tax costs, tax costs, and taxable income before and after impairment recognition. To explore this, we conducted additional analyses to assess whether our results exhibit such nonlinearity. By incorporating nonlinear terms and interactions into our model, we aimed to verify if the empirical outcomes align with the theoretical patterns depicted in the figure. These tests help capture the potential nonlinear nature of the relationship, adding depth to our understanding of how tax costs interact with financial conditions and marginal tax rates.

Overall, these extended analyses reinforce the validity of our main results and support their applicability across diverse contexts. Showing that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tax costs and impairment loss recognition holds consistently across various model frameworks provides strong empirical backing for the theoretical foundations of tax planning behavior and financial reporting choices.

To further test Hypothesis 1, we use equation (4) as our regression model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costs and impairment loss recognition. While our main analysis includes the component ‘marginal tax rate derived from impairment－related deferred taxes’ in the construct of Tax Costs, we excluded it in the additional analysis. This decision was driven by the distribution of its observations, which are highly concentrated around specific values (0, 0.35, 0.4), with approximately 77% of the observations falling within these values. Such clustering can limit the variable’s ability to capture the nuanced relationship between tax costs and impairment recognition, potentially skewing the results. Therefore, to maintain the robustness and reliability of our findings, we focused on alternative measures of tax costs that offer more variation and insight. This model examines the nonlinear effects of tax costs (***TaxCost*** and its squared term) on impairment recognition while controlling for firm－specific characteristics, such as adjusted pre－tax income (AdjPI), size, book－to－market ratio (BM), leverage (Lev), sales, cash holdings, goodwill, and year effects. The predicted sign for ***TaxCost*** is negative (－), as higher tax costs generally discourage the recognition of impairment losses. Meanwhile, the predicted sign for its squared term, $\boldsymbol{TaxCost^2}$, is positive (＋), reflecting the possibility of diminishing marginal effects as tax costs increase.

$$Impair = \beta_0 + \beta_1\ \textbf{\textit{TaxCost}} + \beta_2\ \textbf{\textit{TaxCost}}^2 + \beta_3\ AdjPI + \beta_4\ Size + \beta_5\ BM + \beta_6\ Lev + \beta_7\ Sales + \beta_8\ Cash + \beta_9\ Goodwill + \Sigma_t\ Year_t \quad (4)$$

Table 6 presents the results of the supplementary analysis for Hypothesis 1, using equation (4). As expected, the coefficient for ***TaxCost*** is nega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across both model specifications (Cash ETRs and GAAP ETRs), confirming that higher tax costs are associated with reduced impairment loss recognition. Specifically, the coefficients for ***TaxCost*** are −0.424 and −0.429 for Cash ETRs and GAAP ETRs, respectively, both significant at the 1% level.

The coefficient for ***TaxCost²***, representing the squared term, is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all models, with values of 0.517, 0.543, and 0.230 for Cash ETRs, GAAP ETRs, and Average Tax, respectively. This finding supports the hypothesized nonlinear relationship, suggesting that the marginal effect of tax costs on impairment loss recognition decreases as tax costs rise, potentially reflecting diminishing disincentives to recognize impairment losses at higher tax cost levels.

Moreover, the positive coefficient for ***TaxCost²*** indicates that while higher tax costs generally reduce the likelihood of impairment loss recognition, this effect weakens at higher levels of tax costs. In other words, the negative impact of tax costs on impairment recognition is most pronounced at lower tax cost levels and diminishes as tax costs increase. This finding suggests that firms may reach a threshold at which the marginal disincentive of tax costs becomes less impactful, potentially due to a balancing of other financial or reporting incentives.

The results further imply that firms facing moderate tax costs may be more sensitive to the implications of impairment recognition, as the benefit of reducing tax liabilities is weighed more heavily against the reporting of impairment losses. However, for firms with particularly high tax costs, the effect on impairment recognition is tempered, possibly due to a diminishing return on the tax savings achieved through reduced impairment recognition or due to strategic financial considerations beyond tax costs.

Overall, these findings provide robust evidence for the hypothesized nonlinear relationship, confirming that while tax costs play a significant role in firms' decisions to recognize impairment losses, the strength of this effect varies depending on the level of tax costs incurred.

〈Table 6〉 Nonlinear Effects of Tax Costs on Impairment Recognition

		Dep. Var=Impair	
	Predicted Sign	*Cash ETRs (t-stat.)*[a]	*GAAP ETRs (t-stat.)*[a]
Intercept	*?*	*0.203* *(17.82)* ***	*0.203* *(17.77)* ***
TaxCost	**−**	***−0.424*** ***(−14.32)*** ***	***−0.429*** ***(−14.95)*** ***
TaxCost²	**+**	***0.517*** ***(10.80)*** ***	***0.543*** ***(13.63)*** ***
AdjPI	*+*	*0.640* *(19.68)* ***	*0.674* *(20.69)* ***
Size	*?*	*−0.004* *(−1.87)* *	*−0.001* *(−0.43)*
BM	*−*	*−0.004* *(−3.84)* ***	*−0.004* *(−4.18)* ***
Lev	*?*	*0.000* *(0.87)*	*0.000* *(0.53)*
Sales	*−*	*−0.014* *(−6.31)* ***	*−0.017* *(−7.82)* ***
Cash	*−*	*−0.119* *(−5.64)* ***	*−0.137* *(−6.57)* ***
Goodwill	*?*	*−0.015* *(−1.37)*	*−0.0198* *(−1.88)*
Year Dummy		Yes	Yes
Number		4,440	4,440
Adj R^2		50.91%	50.71%

1) Regressions that are clustering standard errors by stock (Petersen 2009) ; *, ** and *** represent levels of significance at 10%, 5%, and 1%.

To further test Hypothesis 2, we employ equation (5) as our regression model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costs, adjusted pre−tax income (***AdjPI***), and impairment loss recognition. This model allows us to examine how the interaction between tax costs and adjusted pre−tax income, including their nonlinear effects, influences impairment recognition. Specifically, the model includes interaction terms between ***TaxCost*** and ***AdjPI***, as well as between ***TaxCost²*** and ***AdjPI,*** to capture the potential moderating effect of financial performa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costs and impairment recognition. Additionally, the model controls for firm−specific

characteristics, such as size, book−to−market ratio (BM), leverage (Lev), sales, cash holdings, goodwill, and year effects.

The primary variables of interest are the interaction terms ***TaxCost * AdjPI*** and ***TaxCost² * AdjPI***. The expected sign for ***TaxCost * AdjPI*** is negative (−), as higher adjusted pre−tax income is likely to strengthen the negative effect of tax costs on impairment recognition. This suggests that firms with greater pre−tax income are more sensitive to tax costs and therefore more inclined to reduce impairment recognition to minimize their tax burden.

On the other hand, the expected sign for ***TaxCost² * AdjPI*** is positive (+), reflecting the potential diminishing effect of tax costs at higher levels. As tax costs increase and their impact on impairment recognition becomes nonlinear, the moderating effect of adjusted pre−tax income may reduce the strength of the relationship, leading to a less pronounced disincentive to recognize impairment losses.

$$\begin{aligned} Impair = {} & \beta_0 + \beta_1\ TaxCost + \beta_2\ \mathbf{TaxCost^2} + \beta_3\ AdjPI + \beta_4\ TaxCost{*}AdjPI \\ & + \beta_5\ \mathbf{TaxCost^2{*}AdjPI} + \beta_6\ Size + \beta_7\ BM + \beta_8\ Lev + \beta_9\ Sales \\ & + \beta_{10}\ Cash + \beta_{11}\ Goodwill + \Sigma_t\ Year_t \end{aligned} \quad (5)$$

Table 7 displays the results of the additional analysis for Hypothesis 2, examining the nonlinear interactions between tax costs and financial performance (adjusted pre−tax income) on impairment loss recognition. The table shows that the coefficient for ***TaxCost * AdjPI*** is nega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across all models (Cash ETRs, GAAP ETRs), with values of −5.828, and −4.561, respectively. This indicates that higher adjusted pre−tax income strengthens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tax costs and impairment recognition. In other words, firms with higher pre−tax income are more sensitive to tax costs, resulting in a greater disincentive to recognize impairment losses as tax costs rise.

The coefficient for ***TaxCost² * AdjPI*** is positive and significant across all models, with values of 6.839, 5.637, and 1.638 for Cash ETRs and GAAP ETRs, respectively. This suggests a nonlinear moderating effect of adjusted pre−tax incom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costs and impairment recognition. Specifically, while high pre−tax income intensifies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tax costs and impairment recognition (as evidenced by the negative sign of ***TaxCost * AdjPI***), this effect diminishes at higher levels of tax costs.

〈Table 7〉 The Nonlinear Interactions Between Tax Costs and Financial Performance in Impairment Recognition

		Dep. Var=Impair	
	Predicted Sign	*Cash ETRs (t-stat.)[a]*	*GAAP ETRs (t-stat.)[a]*
Intercept	?	0.106 (8.70) ***	0.118 (9.02) ***
TaxCost	−	0.182 (5.50) ***	0.064 (1.61) ***
TaxCost²	+	−0.196 (−4.17) ***	−0.051 (−0.86)
AdjPI	+	1.276 (26.91) ***	1.266 (23.43) ***
TaxCost*AdjPI		**−5.828 (−15.06) *** **	**−4.561 (−11.36) *** **
TaxCost²*AdjPI		**6.839 (8.51) *** **	**5.637 (7.84) *** **
Size	?	−0.009 (−5.09) ***	−0.005 (−2.54) **
BM	−	−0.004 (−4.39) ***	−0.004 (−3.80) ***
Lev	?	0.000 (−0.20)	0.000 (−0.04)
Sales	−	−0.015 (−6.85) ***	−0.015 (−6.85) ***
Cash	−	−0.090 (−5.26) ***	−0.124 (−7.06) ***
Goodwill	?	−0.0152 (−1.44)	−0.0152 (−1.44)
Year Dummy		Yes	Yes
Number		4,440	4,440
Adj R^2		50.38%	49.44%

1) Regressions that are clustering standard errors by stock (Petersen 2009) ; *, ** and *** represent levels of significance at 10%, 5%, and 1%.

Overall, these results support the hypothesi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costs and impairment recognition is influenced by financial performance in a nonlinear manner. The interaction terms demonstrate that as adjusted pre−tax income increases, the marginal effect of

tax costs on impairment loss recognition becomes stronger initially but weakens at higher tax cost levels. This finding provides insight into how firms balance tax planning and financial performance considerations when making impairment recognition decisions.

Ⅵ. Conclusion

This study explores the interaction between tax planning and impairment loss recognition, emphasizing the strategic decisions firms make to balance tax costs and financial reporting outcomes. By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tax expenses and the reporting of impairment losses, this research provides insights into how firms navigate the trade－offs between tax－deductible and non－deductible expenses.

The findings support the hypothesis that higher tax costs are associated with a lower likelihood of recognizing impairment losses, as firms seek to minimize their tax liabilities by avoiding non－deductible expenses. Hypothesis 1 confirm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ax costs and impairment loss recognition, illustrating that firms facing higher marginal tax rates are more likely to underreport impairment losses to optimize tax savings. This aligns with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Scholes and Wolfson (1992), which posits that firms strategically adjust their financial reporting to manage tax－related costs effectively.

Furthermore, Hypothesis 2 extends this relationship by introducing the moderating effect of pre－tax earning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ax costs and impairment loss recognition strengthens as pre－tax earnings increase. This suggests that as firms report higher earnings, the incentive to underreport non－tax－deductible costs, such as impairment losses, becomes more pronounced to preserve financial performance metrics while managing tax expenses. This behavior reflects a strategic recalibration, where firms prioritize deductible costs in high－earnings scenarios, leveraging tax－saving opportunities to maintain favorable financial outcomes.

These findings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both policymakers and practitioners. Policymakers should be aware that tax regulations can have significant effects on firms' financial reporting behaviors, potentially leading to strategic underreporting of impairment losses.

Understanding this behavior can help design more effective tax policies that minimize unintended incentives. For practitioners, the results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considering both tax costs and financial performance in reporting decisions. Firms can benefit from strategically balancing tax planning and financial reporting to optimize tax liabilities while maintaining favorable financial outcomes.

This study makes several contributions to the literature on financial accounting and taxation. By analyzing the interaction between tax planning and financial reporting strategies, it offers a more nuanced understanding of how firms manage tax-related costs. The study builds on the foundational work of Scholes and Wolfson (1992), extending it with a microeconomic perspective that highlights the role of pre-tax earnings in moderating the impact of tax costs on impairment loss recognition. Additionally, this research bridges the gap between tax planning and financial accounting theories, providing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how firms strategically navigate the complex trade-offs between tax-deductible and non-deductible expenses, contributing to the broader discourse on corporate financial strategy and decision-making.

REFERENCES

Beatty, A., and J. Weber. 2006. Accounting discretion in fair value estimates : an examination of SFAS 142 goodwill impairment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44(2) : 257－288.

Blaylock, B., Shevlin, T., & Wilson, R. J. 2012. Tax avoidance, large positive temporary book－tax differences, and earnings persistence. *The Accounting Review*, 87(1) : 91－120.

Burgstahler, D. C., Hail, L., & Leuz, C. 2006. The importance of reporting incentives : Earnings management in European private and public firms. *The accounting review*, 81(5) : 983－1016.

Carmichael, F.L. 1928. The arc tangent in trend determin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23 : 253－262.

Chen, S., Wang, Y., and Zhao, Z. 2009. Regulatory incentives for earnings management through asset impairment reversals in China. *Journal of Accounting, Auditing and Finance* 24(4) : 589－620.

Cloyd, B., J. Pratt, and T. Stock. 1996. The use of financial accounting choice to support aggressive tax positions : Public and private firm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4(1) : 23－43.

Cushing, B., and Leclere, M., 1992. Evidence on the determinants of inventory accounting policy choice. *The Accounting Review* 67(2) : 355－366.

Dhaliwal, D., Trezevant, R., & Wang, S. W. 1992. Taxes, Investment－Related Tax Shields and Capital Structur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4(1).

Dechow, P. M., R. G. Sloan, and A. P. Sweeney. 1996. Causes and consequences of earnings manipulation : An analysis of firms subject to enforcement actions by the SEC.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13(1) : 1－36.

Duh, R. R., Lee, W. C., & Lin, C. C. 2009. Reversing an impairment loss and earnings management : The role of corporate governanc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ccounting*, 44(2) : 113－137.

Francis, J., J. Hanna, and L. Vincent. 1996. Causes and effects of discretionary asset write－off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4(3) : 117－134.

Francis, J. R., & Martin, X. 2010. Acquisition profitability and timely loss recognition.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49(1－2) : 161－178.

Frankel, M., and R. Trezevant. 1994. The year－end LIFO inventory purchasing decision : An empirical test. *The Accounting Review* 69(2) : 382－398.

Graham, J. R., Hanlon, M., & Shevlin, T. 2011. Real effects of accounting rules : Evidence from multinational firms' investment location and profit repatriation decision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49(1) : 137－185.

Guenther, D., 1994. Earnings management in response to corporate tax rate changes : Evidence From the 1986 Tax Reform Act. *The Accounting Review* 69(1) : 230－243.

Hanlon, M. and S. Heitzman. 2010. A review of tax research.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50 (2－3) : 127－178.

Hanlon, M. 2005. The persistence and pricing of earnings, accruals, and cash flows when firms have large book－tax differences. *The Accounting Review*, 80(1) : 137－166.

Hutton, A. P., A. J. Marcus, and H. Tehranian. 2009. Opaque financial reports, R2, and Crash risk.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94(1) : 67－86.

Klassen, K., 1997. The impact of inside ownership concentration on the trade－off between financial and tax reporting. *The Accounting Review* 72(3) : 455－474.

Kothari, S. P., S. Shu, and P. Wysocki. 2009. Do Managers withhold Bad New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47(1) : 241－276.

Li, K. K., & Sloan, R. G. 2017. Has goodwill accounting gone bad? *Review of Accounting Studies*, 22 : 964－1003.

Mills, L. F. and K. J. Newberry. 2001. The influence of tax and nontax costs on book－tax reporting differences : Public and Private Firms. *The Journal of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23(1) : 1－19.

Mills, T. C., and K. D. Patterson. 2015. Modelling the trend : The historical origins of some modern methods and ideas. *Journal of Economic Surveys* : 29(3) : 527－548.

Petersen, M. A. 2009. Estimating standard errors in finance panel data sets : Comparing approaches. *Review of Financial Studies* 22(1) : 435－480.

Ramanna, K., & Watts, R. L. 2012. Evidence on the use of unverifiable estimates in required goodwill impairment. *Review of accounting studies*, 17 : 749－780.

Scholes, M. and Wolfson, M., 1992. Taxes and Business Strategy : A Planning Approach. Prentice Hall, Englewood Cliffs, NJ.

Strong, J., and J. Meyer. 1987. Asset write downs : managerial incentives and security returns. *Journal of Finance* 42(3) : 643－661.

Zhang, I. X. (2007). Economic consequences of the Sarbanes－Oxley Act of 2002.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44(1－2) : 74－115.

Zang, Y. 2008. Discretionary behaviour with respect to the adoption of SFAS No. 142 and the behaviour of security prices. *Review of Accounting and Finance* 7(1) : 38－68.

Zucca, L., and D. Campbell. 1992. A closer look at discretionary writedowns of impaired assets. *Accounting Horizons* 6(3) : 30－41.

공인회계사 세무서비스 제공 관련 독립성 규정의 현황과 개선방향

: 국제기준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오 선 영 · 신 일 항
(서울대학교) (가천대학교)

공인회계사 세무서비스 제공 관련 독립성 규정의 현황과 개선방향
: 국제기준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오선영* · 신일항**

〈요 약〉

공인회계사가 제공하는 비감사용역 중 대표적인 업무가 세무업무이다. 그런데 현재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이나 공인회계사법에서 감사인이 감사업무와 세무업무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반면, 국제윤리기준은 세무업무를 5가지 업무로 구분하고 업무별로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여부를 각각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상이하다.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으로 인해 야기되는 회계정보의 무결성 훼손과 이로 인해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공인회계사 세무서비스 제공 관련 독립성 규정의 현황과 개선방향을 국제윤리기준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탐색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연구로 볼 수 있다.

국제윤리기준에서 금지되는 비감사업무와 공인회계사법, 외감법, 공인회계사윤리기준에서 금지되는 비감사업무 범위가 각각 상이하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 간의 차이와 모호한 해석으로 파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대부분의 세무업무는 세법 및 관련 규정과 해석에 근거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과물에 대해서는 세무관청에서 적정성 여부에 대해 판단을 한다. 따라서 독립적인 감사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윤리기준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둘째, 국제윤리기준의 비감사업무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져 상장사 감사인은 중요성과 관계없이 자기검토위협을 발생시킬 수 있는 모든 업무가 제한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국제윤리기준 체계와 같이 세무업무를 세분화해서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세무조정, 세무 자문 등 제공 가능한 업무까지 업무제한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해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주제어〉 비감사업무, 세무업무, 독립성, 공인회계사윤리기준

* 서울대학교 객원교수
** 가천대학교 교수

Ⅰ. 서 론

독립성이란 감사절차의 수행, 그 결과의 평가 및 감사보고서 작성에까지 모든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편부당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독립성은 감사품질 제고에 매우 중요하다. 감사인이 전문가적 적격성을 발휘해서 피감사회사의 재무제표 상의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 해도 감사인이 피감사회사와 결탁되어 있어서 독립성에 문제가 있어 중요한 재무제표 상의 왜곡표시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감사품질이 하락함은 물론이고 자본시장의 이해관계자들에게 해당 재무제표에 대한 왜곡된 시그널을 보내게 된다. 따라서 감사인은 감사절차의 수행, 그 결과의 평가 및 감사보고서 작성에까지 모든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감사회사와 결탁되지 않고 불편부당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독립성을 갖춰야 한다.

감사인이 갖춰야 하는 독립성은 정신적 독립성과 외관상 독립성으로 나눌 수 있다. 정신적 독립성은 피감사회사에 대해 전문가적 의구심을 발휘하여 공정하게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정신 자세를 의미한다. 반면에 외관상 독립성은 피감사회사와 특별한 결탁 관계가 없어 보이는 외관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감사의견을 담고 있는 감사보고서는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라는 제목으로 발행된다. 이와 같이 독립성은 감사보고서가 발행되기 위한 기본 전제이므로 정신적 독립성과 외관상 독립성이 모두 유지되어야 하며 정신적 독립성과 외관상 독립성은 상호보완 관계에 있다. 즉 감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전문가적 판단을 손상시키는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고 불편부당하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정신적 상태인 정신적 독립성이 실질적 독립성이기는 하지만 외관상 독립성이 의심되면 정신적 독립성 여부에 관계없이 감사보고서 신뢰성은 떨어지므로 외관상 독립성은 감사보고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다.

공인회계사가 제공하는 업무는 감사업무와 비감사용역으로 나누어진다. 비감사용역은 가치평가업무, 재무제표 작성지원 업무, 세무업무, 경영자문업무 등 감사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말한다. 감사업무와 함께 비감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감사할 때 기업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고 대신에 기업으로부터 비감사용역을 수임할 수 있으며, 이는 부실감사를 유도하고 특정 기업에 대한 감사인의 경제적 의존도를 증가시켜 감사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한다. 금융감독원도 기업이 감사인에게 비감사용역보수를 과도하게 지출하는 행위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고, 감사품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신 외부감사법의 시행에 맞추어 공인회계사법도 개정되어 기업에 대한 비감사용역 제한을 강화하였다. 비감사용역 금지

대상회사를 확대하여 감사대상회사뿐만 아니라 그 종속회사에 대한 비감사용역 제공도 금지되었고, 직무제한 비감사용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매수 목적의 자산 등 실사 가치평가 업무, 자금조달 투자 관련 알선 및 중개 업무, 경영자의 역할이나 의사결정에 해당하는 업무도 금지대상 비감사용역에 포함되었다.

공인회계사가 제공하는 비감사용역 중 대표적인 업무가 세무업무이다. 대부분의 회계법인에는 감사업무를 제공하는 부서와 세무업무를 제공하는 부서가 있다. 또한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업무와 세무업무를 같이 수행하기도 한다. 그런데 현재 감사인이 감사업무와 세무업무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을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이나 공인회계사법에서 제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제윤리기준의 내용은 세무업무를 5가지 업무로 구분하고 업무별로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여부를 각각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사뭇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문헌연구 및 국제 비교연구가 아직 미흡하다.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으로 인해 야기되는 회계정보의 무결성 훼손과 이에 따른 자본시장의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공인회계사 세무서비스 제공 관련 독립성 규정의 현황과 개선방향을 국제기준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탐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비감사업무 제공 관련 독립성 규정에 대해 살펴보고 제Ⅲ장에서는 세무서비스 제공 관련 독립성 규정의 국내외 현황에 대해서 고찰한다. 제Ⅳ장에서는 공인회계사 세무서비스 제공 관련 국제기준 대비 상대적 규율수준을 국제기준과의 비교검토를 통해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제언한다.

Ⅱ. 비감사업무 제공 관련 독립성 규정

2.1 독립성과 비감사업무 제공 간의 관련성

2.1.1 독립성의 개념

독립성이란 감사절차의 수행, 그 결과의 평가 및 감사보고서 작성에까지 모든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편부당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감사품질 제고에 매우 중요하다. 감사인이 전문가적 적격성을 발휘해서 피감사회사의 재무제표 상의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 해도 감사인이 피감사회사와 결탁되어 있어서 독립성에 문제가 있어 중요한 재무제표 상의 왜곡표시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감사품질이 하락함은 물론이고 자본시

장의 이해관계자들에게 해당 재무제표에 대한 왜곡된 시그널을 보내게 된다. 따라서 감사인은 감사절차의 수행, 그 결과의 평가 및 감사보고서 작성에까지 모든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감사회사와 결탁되지 않고 불편부당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독립성을 갖춰야 한다.

감사인이 갖춰야 하는 독립성은 정신적 독립성과 외관상 독립성으로 나눌 수 있다. 정신적 독립성은 피감사회사에 대해 전문가적 의구심을 발휘하여 공정하게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정신 자세를 의미하는 반면에 외관상 독립성은 피감사회사와 특별한 결탁 관계가 없어 보이는 외관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윤리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개념의 차이를 서술하고 있다.

〈Table 1〉 윤리기준 상 독립성 개념

구 분	정신적 독립성(실질적 독립성)	외관상 독립성(형식상 독립성)
정 의	정신적 독립성은 실질적 독립성을 의미함. 이는 전문가적 판단을 손상시키는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정신적 상태를 의미함. 이는 개인으로 하여금 성실성과 공정함을 유지하며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외관상 독립성은 정신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조건임. 이는 안전장치를 포함한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합리적인 제3자가 회계법인 또는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의 성실, 공정 및 전문가적 의구심이 손상된 것으로 판단하게 만드는 중요한 상황이나 사실을 회피하는 것을 의미함

2.1.2 독립성 관련 규정체계

우리나라의 공인회계사 윤리관련 규정은 공인회계사법, 외감법, 회계감사기준, 공인회계사윤리기준에서 다루고 있다. 이밖에 금융감독원의 실무의견서(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자문 관련)와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인증기준위원회가 공표한 회계감사 실무지침(재무제표 작성업무 금지관련) 등에서 감사인 독립성에 관하여 지침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다음의 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Table 2〉 윤리 및 독립성 관련 규정

윤리 및 독립성 관련 규정	주요내용	비 고
공인회계사법 (유권해석)	• 직무제한 규정(재무적 이해관계, 고용관계, 비감사업무) • 공정・성실 규정(윤리기준의 법적 효력)	금융위

〈Table 2〉 윤리 및 독립성 관련 규정 (계속)

윤리 및 독립성 관련 규정	주요내용	비 고
외감법 (유권해석)	• 동일이사 교체 • 상장회사 업무보조자 교체규정 • 재무제표 작성자문 및 대리작성 금지조항 • 부정행위 보고조항	금융위
회계감사에 관한 실무의견서	• 외부감사인이 피감사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자문업무의 범위(2005－2)	금감원
윤리기준	• 일반 공인회계사 윤리 • 독립성 적용사례	한공회
윤리기준 적용지침	• IFRS 도입용역을 제공한 회사에 대한 외부감사업무 수임제한 (2009－1)	한공회

2.1.3 비감사업무 제공과 독립성 간의 관계

공인회계사가 제공하는 업무는 감사업무와 비감사용역으로 나누어진다. 비감사용역은 세무업무, 경영자문업무 등 감사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말한다. 2001년 말 미국의 거대 석유기업인 엔론의 회계부정 사건 때 당시 엔론을 감사했던 아더앤더슨 회계법인은 엔론으로부터 2020년에 감사보수로 2,500만 달러를 받은 반면, 비감사용역을 제공하고 비감사보수로 2,700만 달러를 받았고 과도한 비감사용역로 인한 유착관계 및 이기적 위협 등으로 엔론의 분식회계를 발견하고 보고하는 대신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지적이 있다. 아더앤더슨은 2002년 해산되었고, 미국은 사베인스－옥슬리법을 제정하여 여러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그중 하나가 감사인이 회계감사를 하고 있는 기업에게 일정한 비감사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2016년부터 EU는 감사인의 독립성과 감사품질 강화를 목적으로 비감사용역보수를 감사보수의 70% 이내로 규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감사업무와 비감사용역의 동시 제공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감사인이 기업을 감사하면서 동시에 비감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감사할 때 기업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고 대신에 기업으로부터 비감사용역을 수임할 수 있으며, 이는 부실감사를 유도하고 특정 기업에 대한 감사인의 경제적 의존도를 증가시켜 감사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한다. 반면에 감사업무와 비감사용역의 동시 제공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회계감사와 비감사용역의 동시 제공은 비감사용역을 통해 얻은 기업에 대한 지식을 회계감사에 활용하는 '지식전이'가 발생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회계감사가 가능하게 되어 오히려 감사실패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찬반양론이 존재하지만 현재는 감사업무와 비감사용역의 동시 제공이 독립성과 감사품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더 큰 힘을 얻고 있으며, 따라서 감사업무와 비감사용역 동시 제공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금융감독원도 기업이 감사인에게 비감사용역보수를 과도하게 지출하는 행위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고, 감사품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신 외부감사법의 시행에 맞추어 공인회계사법도 개정되어 기업에 대한 비감사용역 제한을 더욱 강화하였다. 첫째, 비감사용역 금지대상회사를 확대하여 감사대상회사뿐만 아니라 그 종속회사에 대한 비감사용역 제공도 금지되었다. 둘째, 직무제한 비감사용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매수 목적의 자산 등 실사 가치평가 업무, 자금조달 투자 관련 알선 및 중개 업무, 경영자의 역할이나 의사결정에 해당하는 업무도 금지대상 비감사용역에 포함되었다.

2.2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상 비감사업무 제공 관련 규정

2.2.1 개요 및 제정취지

공인회계사가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전문직이 되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전문가 윤리를 실천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이를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06년에 국제회계사연맹(IFAC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 산하 국제윤리기준위원회(IESBA : International Ethics Standards Board for Accountants)가 제정 공표한 국제윤리기준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을 제정하였다.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은 제1부 일반사항, 제2부 개업공인회계사, 제3부 비개업공인회계사, 용어의 정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인회계사의 독립성 관련 사항은 제2부 개업공인회계사에 자세히 나와 있다. 제2부의 [290 독립성]의 앞부분(문단 290.1－290.34)에서는 독립성의 의미, 독립성에 대한 개념체계의 적용, 인증업무의 내용, 독립성 유지기간 등을 설명하고 있다. 제2부의 문단 290.100부터－290.214에서는 '구체적 상황에 대한 개념체계의 적용사례'라는 제목으로 기존의 윤리기준 제정 전의 윤리규정 별표 2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예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현재 공인회계사법과 외감법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는 독립성 요구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무적 이해관계, 가족관계 및 개인적 관계와 관련된 독립성 훼손위협과 안전장치, 동일한 파트너 교체제도, 감사의뢰인에게 비감사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등이 있다.

2.2.2 독립성 관련 사항의 내용

감사인은 감사대상회사를 포함한 독립성 준수대상회사(감사대상회사의 특수관계자로 모회사, 자회사,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관계회사와 동일지배하에 있는 자매회사 등이 포함된다. 그렇지만 공인회계사법상에서는 연결대상 종속회사만 금지된 비감사업무 규제 대상에 해당된다)에 대하여 감사계약기간 동안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먼저 재무적 이해관계로는 회계법인 및 감사인은 감사의뢰인과 금지된 재무적 이해관계(주식 등의 보유, 금지되는 대출과 보증)를 가져서는 아니된다. 가족관계 및 개인적 관계는 본인 및 배우자의 고용관계(현직, 전직, 겸직 등의 관계)와 직계가족과 측근가족의 고용관계 등을 규제하고 있으며, 감사대상회사의 임원 또는 재무보고와 관련되는 직위에 있는 경우를 주로 규제하고 있다. 동일한 파트너 교체제도는 감사인과 감사의뢰인과의 장기간의 업무 관계로 인한 유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윤리기준에서는 7년) 동안 감사업무를 수행한 감사 파트너를 반드시 교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외감법은 상장회사 등의 경우 연속하여 3년간 감사업무를 수행한 파트너는 그 이후 연속하는 3년 동안 해당회사 감사업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의뢰인에게 비감사업무를 제공하는 경우는 비감사업무 제공으로 인한 독립성 훼손위협의 심각성을 평가하고 적용가능한 안전장치를 강구하여 독립성 훼손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 아래로 낮출 수 있는 경우 비감사업무를 제공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비감사업무를 제공하지 못한다. 공인회계사법은 자기검토위협, 이기적 위협을 발생시킬 것으로 판단되는 비감사업무를 감사의뢰인과 감사의뢰인의 종속회사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Table 3〉 공인회계사윤리기준 제2부 문단 290의 독립성 관련 내용

구분	내 용
290 독립성 －인증업무	독립성에 대한 개념적 접근 주장기준 인증업무 직접보고 인증업무 제한된 정보이용자를 위한 인증보고서 다수의 책임자 기타 고려사항 이 장의 목적과 구조 업무수임기간 보수와 보수의 산정 선물과 접대 소송 또는 소송발생 위협

〈Table 3〉 공인회계사윤리기준 제2부 문단 290의 독립성 관련 내용 (계속)

구분		내 용	
290 독립성 －인증업무	구체적 상황에 대한 개념체계의 적용사례	개요 재무적 이해관계 대출과 보증 인증의뢰인과의 친밀한 사업관계 가족관계 및 개인적 관계 인증의뢰인과의 고용관계 인증의뢰인과 고용관계에 있던 자가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이 된 경우 인증의뢰인의 임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회계법인의 고위구성원이 인증의뢰인과 장기간의 업무수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인증의뢰인에게 비인증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 회계기록과 재무제표 작성업무 • 가치평가업무 • 재무제표감사 의뢰인에게 세무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 재무제표감사 의뢰인에게 내부감사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 재무제표감사 의뢰인에게 재무정보기술시스템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 재무제표감사 의뢰인에게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 • 재무제표감사 의뢰인에 소송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재무제표감사 의뢰인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고위경영자를 모집해 주는 경우 • 기업금융 및 이와 유사한 활동

2.2.3 비감사업무 제공 관련 독립성 규정[1)]

비인증업무를 제공함으로써 인증업무팀은 인증의뢰인의 사업과 영업정보를 입수하게 되며, 이는 인증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된다. 인증업무팀이 사업내용에 관하여 많은 지식을 가질수록, 인증의뢰인의 절차와 통제, 사업위험과 재무적 위험을 더 잘 이해할 것이다. 반면, 비인증업무의 제공은 회계법인등 또는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에게 독립성 훼손위협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비인증업무의 제공에 의하여 발생하는 독립성 훼손위협의 심각성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경우에는 안전장치의 적용을 통해 동 위협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며, 다른 경우에는 동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존재하지

1) 공인회계사윤리기준 290.158에서 290.165까지의 내용을 요약 및 발췌하였다.

않을 것이다.

독립성에 대한 잠재적 위협은 재무제표 감사의뢰인에게 비인증업무를 제공할 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다. 재무제표는 해당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거래 및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재무제표감사외의 인증업무의 인증대상정보는 그 특성상 제한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독립성 훼손위협은 회계법인이 재무제표감사외의 인증업무의 인증대상정보와 관련된 비인증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해당 인증대상정보에 대한 회계법인의 관여 정도를 평가하여야 하며, 이기적 위협이 발생하는지, 안전장치의 적용을 통해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해당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 또는 해당 업무를 거절해야 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비인증업무가 재무제표감사외의 인증업무의 인증대상정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독립성 훼손위협은 일반적으로 명백하게 경미할 것이다.

신규사업 개척, 자본시장의 발전, 정보기술의 빠른 변화 및 이로 인한 경영과 통제의 변화로 인해, 인증의뢰인에 대한 비인증업무의 제공이 독립성 훼손위협을 발생시킬 수 있는 모든 상황과, 해당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 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서로 상이한 모든 안전장치를 빠짐없이 나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회계법인은 독립성 훼손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비인증업무를 제공할 수 있다.

회계법인은 인증의뢰인과 비인증업무 제공계약을 체결하기전에 이러한 비인증업무의 제공이 독립성 훼손위협을 발생시키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협이 명백하게 경미한 경우외에는 해당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는데 적절한 안전장치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인증업무의 수임을 거절하여야 한다.

2.3 공인회계사법 상 비감사업무 제공 관련 규정

2.3.1 개요 및 입법취지

공인회계사법은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공인회계사법은 일본 공인회계사법과 기본체계가 유사하며 일본 공인회계사법의 일부 직무제한 규정을 참고하여 재무적 이해관계, 고용관계 및 비감사업무와 관련한 직무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에 더해 1990년대 말 외환위기와 회계스캔들을 겪으면서 미국의 Sarbanes－Oxley Act의 영향을 받아 미국의 SEC rule 2－01의 비감사업무 금지규정을 계속적으로 반영하여 현재는 미국 상장법인에 적용되는 비감사업무 금지규정이 우리나라의 공인회계사법에 모두 반영되어 있다. 전문가 윤리기준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실정법이 독립성에 대하여 규제하는 것은 윤리기준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반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필수적인 사항의 강행성을 법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공인회계사법은 공인회계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5조 제1항). 또한 제21조와 제33조에 직무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공인회계사법은 독립성 규정 이외에도 공정, 성실의무, 비밀유지의무, 부당한 경쟁을 금지하는 규정 등을 정하고 있다. 또한 공인회계사 윤리규정을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원은 이 윤리규정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인회계사법에서 금지되는 재무적 이해관계, 고용관계 및 비감사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감사대상회사가 상장법인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금지된 재무적 이해관계, 고용관계와 비감사업무가 규제대상이 되고 있다.

2.3.2 독립성 관련 사항의 내용

공인회계사법 제21조에 따르면, 감사인의 성실, 공정 및 전문가적 의구심이 손상된 것으로 판단하게 만드는 중요한 사실이나 상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보아 직무를 제한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금지된 고용관계 : 자기 또는 배우자가 임원(또는 임원에 준하는 직위)이나 직원(배우자의 경우 재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한정)으로 재직중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경우
- 금지된 재무적 이해관계 : 자기 또는 배우자가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3천만원 이상의 금지된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
- 금지된 비감사업무 제공 :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 금지된 비감사업무를 감사의뢰인이나 감사의뢰인의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에는 법으로 금지된 비감사업무 이외에는 독립성 훼손위험을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필요한 안전장치를 강구하고 나서 비감사업무 제공이 가능하다.

한편, 공인회계사법 제33조(직무제한)는 회계법인이 감사 및 증명 관련 직무의 수행이 제한되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공인회계사법 제21조(직무제한)의 내용을 참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4 외부감사법 상 비감사업무 제공 관련 규정

2.4.1 입법 취지

외감법은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의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4.2 재무제표 작성자문 및 대리작성 금지조항

외감법 제6조에 따라 감사인 및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을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회사도 감사인 및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이러한 행위를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금지되는 재무제표 작성업무 및 대리업무는 외감법 시행령 제8조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이사를 대신하여 작성하는 행위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행위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 분개를 대신하여 해주는 행위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방법의 결정에 관여하는 행위

Ⅲ. 세무서비스 제공 관련 독립성 규정의 국내외 현황

3.1 세무서비스의 제공과 감사품질

감사인이 제공하는 비감사서비스 중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는 세무용역(Tax Service)이다. 세무용역은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모든 법인에게 수요가 많으며, 회계・경영・경제 등 다양한 지식이 요구되어 새로운 경쟁자의 진입장벽이 높다. 또한, 세무용역은 감사인의 독립성을 해치지 않으며, 기업은 감사용역과 세무용역을 동시에 계약해 감사인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세무용역은 최적의 조세수준을 맞추고 조세소송에서 승소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김성태와 박성욱, 2022).

세무서비스와 감사품질에 대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Maydew and Shackelford(2005)는 감사인과 세무대리인이 다를 때 감사 품질이 높아진다고 보고했다. Cook et al.(2006)은 세무조정을 받는 기업에서 세무서비스 보수가 높을수록 유효법인세율이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세무 관련 서비스를 감사인이 아닌 제3의 세무대리인으로 하더라도 여전히 이익조정의 동기가 있는 집단에서는 세무 관련 서비스 보수가 높을수록 유효법인세율 감소를 통한 이익조정 행위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Desai and Dharmapala(2009)는 세무서비스 제공이 감사인의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Paterson and Valencia(2011)은 반복적인 세무서비스는 독립성을 해치지 않지만, 비반복적인 세무계획 서비스는 독립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De Simone et al.(2015)은 감사인이 제공하는 세무서비스가 내부통제의 약점 공시 가능성을 감소시킨다고 분석했다. 윤성만(2011)은 세무서비스를 제공받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이익조정의 크기가 크고 감사인의 독립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결과는 감사인의 세무서비스를 구매한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이익조정의 크기가 증가한다는 것과 감사인의 독립성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김성태와 박성욱, 2022).

반면, Kinney et al.(2004)은 세무서비스 보수가 증가하면 재무제표 재작성 빈도가 감소한다고 보고하여 세무서비스 보수가 증가함에 따라 감사품질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Gleason and Mills(2006, 2008)는 감사인으로부터 세무서비스를 받는 것이 감사인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지만, 감사와 세무 분야 간의 시너지 효과도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Krishnan and Visvanathan (2011)은 감사인이 제공하는 세무서비스가 손실회피 이익조정을 억제한다고 분석했다. 이영한과 윤성만(2011)은 조세유인의 대용변수인 한계세율이 높은 경영자일수록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세무서비스를 구매할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현상은 조세순응(tax compliance)성격의 서비스보다는 세무계획(tax planning)성격의 서비스에서 확연하게 나타났음을 제시하였다. 이는 조세부담이 큰 기업일수록 감사분야와 세무분야 간의 지식전이효과를 발생시켜 효율적으로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부감사인에게서 세무서비스를 구매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희규와 신승묘(2019)는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한 기업의 경우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실제이익조정 수준이 낮고 이러한 현상은 세무서비스의 보수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관찰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감사서비스와 세무서비스를 동일한 회계법인이 제공할 경우에는 세무서비스로부터 얻는 통찰력이 감사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지식전이효과 가설과 부합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도 감사인이 제공하는 세무용역과 감사품질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명확한 결론이 나타나지 않았고 연구마다 다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기존 선행연구는 비감사용

역의 제공과 감사품질간의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서 피감기업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증가하거나 외관상 독립성의 훼손으로 감사품질이 악화된다는 결과와 비감사용역 수행 과정에서 축적된 기업 전반적인 경영에 대한 지식이 감사로 이전되어 보다 높은 품질의 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혼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세무서비스의 제공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김성태와 박성욱, 2022).

그럼에도 불구하고 Enron 사태 이후 강화된 감사인 독립성에 대한 이슈는 아직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인회계사법과 외감법이 개정될 때 마다 감사인의 직무제한 범위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유럽집행위원회(Europian Commission)는 감사인의 세무업무까지 제한하는 것을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일부감사인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우려해 감사의뢰인에 호의적인 감사를 수행하고 이로써 발생하는 감사실패에 따른 피해는 온전히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투자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규제당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태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로써 감사인의 독립성 관련 규정에 관심을 갖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비감사업무 중 특히 세무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국내외 독립성 규정을 검토함으로써 국내 독립성 규정의 이슈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3.2 국내 독립성 규정 현황

3.2.1 세무서비스 제공 관련 공인회계사 윤리규정

회계법인은 재무제표감사의뢰인으로부터 세무업무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다. 세무업무에는 세무규정의 준수, 세무계획의 수립, 공식적인 세무의견의 제공 및 세금분쟁 해결의 지원 등 광범위한 업무가 포함된다. 이러한 업무는 일반적으로 독립성에 대한 위협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2].

3.2.2 세무서비스 제공 관련 공인회계사법 및 외부감사법 규정

회계분개 목적의 세액(당기 법인세 및 이연법인세액) 산정에 해당 되는 업무는 공인회계사법상 금지업무인 '회계기록 및 재무제표 작성금지'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금지된다.

또한 세무자문의 효과성이 특정회계처리 등에 좌우되는 경우나, 세무자문의 결과가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외감법상 감사 의뢰인에 제공할 수 없는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2) 공인회계사윤리기준 290.180의 내용이다.

3.3 미국 기준 현황

3.3.1 독립성 규정 개요

미국의 감사인 관련 독립성 관련 법규 및 규정은 미국공인회계사회 (AICPA) 윤리기준과 SEC/PCAOB에서 제정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미국공인회계사회의 윤리기준(Code of Professional Conduct)는 원칙(Principles), 규정(Rules), 해석 및 지침(Interpretations and Other guidance)의 3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칙은 규정들의 개념체계를 제공하며, 규정은 미국공인회계사회 회원들이 제공하는 전문가적 책임 이행에 대한 규율을 의미하며, 해석 및 지침은 규정의 범위와 적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 공인회계사회 윤리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Part 1 :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멤버들 (Members in Public Practice)에게 적용되는 윤리기준의 원칙, 규정, 해석 및 지침 기술.
- ○Part 2 : 기업에 소속된 멤버들 (Members in Business)에게 적용되는 윤리기준의 원칙, 규정, 해석 및 지침 기술.
- ○Part 3 : 어느 조직에도 소속되지 않거나 퇴직한 멤버들 (Other Members)에게 적용되는 윤리기준의 원칙, 규정, 해석 및 지침 기술.

둘째, SEC의 독립성 규정은 미국 증권시장 상장법인과 기타 특정 법인의 재무제표 감사를 포함하여 미국 연방 증권법에서 요구하는 감사를 위해 준수되어야 한다.

이 중 Regulation S－X는 감사 독립성 요건을 포함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재무제표의 형식과 내용 및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Regulation S－X의 규칙 2－01은 감사인이 사실과 외관 모두에서 자격을 갖추고 감사의뢰인으로부터 독립적일 것을 요구하며 규칙 2－01은 회계사와 감사의뢰인 사이의 재무적 이해관계, 고용관계 및 비즈니스 관계 및 회계사가 감사의뢰인에게 특정 금지된 비감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규칙 2－01(b)는 감사 독립성의 일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위원회는 회계사 또는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알고 있는 합리적인 투자자가 회계사가 회계사의 업무에 포함된 모든 문제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경우 그 회계사는 감사의뢰인에 대하여 독립적이지 않은 것으로 인식함. 회계사가 독립적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위원회는 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와 관련된 사항뿐만 아니라 회계사와 감사의뢰인 간의 모든 관계를 포함한 모든 관련 상황을 고려할 것임.
- ○회계사와 감사의뢰인과의 관계 또는 비감사업무의 제공이 아래 상황을 발생시키는지를 고

려함.

✓ 회계사와 감사의뢰인 사이에 상호 또는 상충되는 이해 관계를 생성하는 경우

✓ 회계사가 본인이 판단한 사항이나 수행한 감사하는 위치에 배치되는 경우

✓ 회계사가 감사의뢰인의 관리자 또는 직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 회계사가 감사의뢰인을 옹호하거나 대변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

셋째, 미국 상장회사 및 그 특수관계자에게 전문 회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계사 및 회계법인은 Sarbanes－Oxley Act of 2002(SoX법)에 따라 미국 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 : PCAOB)의 규제도 받고 있다. PCAOB는 PCAOB 규칙(Rules)에 따라 독립성기준을 제정하고 있으며 미국공인회계사회 (AICPA) 윤리기준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PCAOB 독립성 규정에 의하면, 증권 상장회사(및 브로커－딜러)에 대한 감사는 SEC의 승인을 받은 후 PCAOB의 요구 사항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PCAOB에서 발행한 윤리 및 독립성 기준 및 규칙(PCAOB 규칙)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3501 규칙의 섹션 3, 파트 5에 사용된 용어 정의

○3502 고의로 또는 무모하게 위반에 기여하지 않을 책임

○3520 감사인의 독립성

○3521 성공보수

○3522 세금 거래

○3523 재무 보고 감독 역할을 하는 사람을 위한 세무 서비스

○3524 감사위원회에 의한 특정 세무 서비스 사전 승인

○3525 감사위원회에 의한 재무보고와 관련된 내부통제에 대한 비감사서비스 사전 승인

○3526 감사위원회와의 독립성 관련 커뮤니케이션

SEC 독립성 규정과 PCAOB 독립성 규정 등이 동등하지 않은 경우 증권 상장회사(및 브로커－딜러)의 감사인은 더욱 엄격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PCAOB Rule 3520은 PCAOB 등록 회계법인 및 관련 개인이 PCAOB 및 SEC 독립성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3.2 세무서비스에 대한 독립성 규정

SEC 독립성 규정(§ 210.2－01 Qualifications of accountants.) 에서는 명시적으로 세무업무 를 금지업무에 포함하거나 제한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

PCAOB 규정의 경우, 회계법인이 세무업무를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윤리 및

독립성 고려사항을 다루도록 다음과 같이 설계되었다.

○PCAOB Rule 3522

악용될 수 있는 세금 포지션에 대한 조언(기밀 거래 및 공격적인 세금 포지션 거래) 금지

즉, PCAOB는 감사 의뢰인이 시작한 일상적 및 비일상적 사업 거래와 관련하여 감사 의뢰인에게 조사 및 세무 계획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감사인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함[3)]

- 감사 의뢰인은 세무 업무, 세금 관련 계정 표시 및 기타 재무제표 문제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짐
- 회계법인은 금지된 공격적인 세금 전략과 관련된 비감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PCAOB Rule 3523

재무 보고 감독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세무 서비스 금지

3.4 국제윤리기준 현황

3.4.1 독립성 규정 개요

국제회계사연맹의 규약에 따라 각 회원단체들은 국제윤리기준위원회에서 제정한 국제윤리기준을 수용하고 실천할 의무를 가진다. 각 국가의 윤리기준이 국제윤리기준보다 더 엄격하거나 강력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윤리기준에 따르도록 하지만 국제윤리기준이 해당 국가의 기준보다 엄격한 경우에는 국제윤리기준을 수용하고 따를 것을 요구한다.

국제윤리기준은 개념체계에 의한 원칙 중심(Principle－based) 접근법을 채택하여 법 조문식이 아닌 문단 형식으로 기술하여 구성된다. 국제윤리기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Part 1 : 일반사항－개요 및 윤리강령, 윤리기본원칙 및 개념체계에 대한 내용을 기술.

○Part 2 : 비개업공인회계사－비개업공인회계사에게 적용되는 윤리강령과 개념체계의 적용 및 비개업공인회계사가 소속기관에서 겪을 수 있는 윤리적 갈등 및 위협의 내용과 이를 제

---

3) PCAOB Release No. 2004－015 (December 14, 2004)
이 부분에 대한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PCAOB has stated that the provision of research and tax planning services to audit clients in connection with routine and even non－routine business transactions initiated by the audit client generally would not raise auditor independence concerns, provided that
- The audit client makes the decisions relating to, and takes responsibility for, both the tax work and the presentation of tax related accounts and other matters in the financial statements, and
- The firm does not provide non－audit services relating to aggressive tax strategies that are prohibited

거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에 대한 내용을 기술.

○ Part 3 : 개업공인회계사－개업공인회계사에게 적용되는 윤리강령과 개념체계의 적용 및 비개업공인회계사가 소속법인에서 겪을 수 있는 윤리적 갈등 및 위협의 내용과 이를 제거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에 대한 내용을 기술.

○ Part 4A/4B : 감사와 검토업무의 독립성 및 감사와 검토업무를 제외한 인증업무의 독립성에 대한 내용과 윤리강령을 기술.

국제윤리기준은 감사의뢰인에게 세무업무를 제공하면 자기검토위협 또는 변호위협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might create)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윤리기준의 프레임워크에 따라 대부분의 세무업무는 안전장치(safeguards)를 적용하고 제공할 수 있으며 안전장치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감사팀 구성원이 아닌 전문가를 활용하여 세무 서비스를 수행함.
- 서비스 제공에 관여하지 않은 적절한 검토자가 수행된 감사업무 또는 세무업무를 검토함.
- (적절한 경우) 세무당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음.

감사의뢰인이 공익실체인 경우 회계분개 목적의 세액산정업무는 금지되며, 세무 서비스 제공으로 자기검토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성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업무 제공은 금지된다.

감사의뢰인에게 세무업무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협의 수준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업무의 구체적 특징, 감사의뢰인 임직원의 세무 전문성 수준, 세무당국이 세무문제를 평가하고 운용하는 시스템과 그 과정에서 회계법인의 역할과 관련 세법 및 세무제도의 복잡성과 이를 적용하는데 필요한 판단의 정도를 고려한다.

3.4.2 세무서비스에 대한 독립성 규정

국제윤리기준에서는 세무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5가지 업무로 구분하고 일부 세무업무 제공 금지하고 있다.

○ 세무신고서 작성

세무신고서 작성업무는 다음을 포함한다.

- 해당 세무 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납부 세액(일반적으로 표준화된 형식)을 포함하여 정보 초안을 작성하고 수집하여 고객의 세금 보고 의무를 지원.
- 과거 거래의 세금 환급 처리에 대한 조언.
- 감사의뢰인을 대신하여 과세당국의 추가 정보 및 분석 요청에 대응(예 : 취해진 접근 방식

에 대한 설명 및 기술 지원 제공).

우리나라의 세무조정 업무가 상기 세무신고서의 작성업무에 해당될 것이다. 세무신고서 작성업무는 일반적으로 역사적 정보에 근거하여 수행되며 해당 역사적 정보를 현행 세법(사례와 관행 등 포함)에 따라 분석하고 표시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며, 세무신고서는 세무당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검토 또는 승인절차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세무신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는 일반적으로 위협이 발생하지 않는다.

○회계분개 목적 세액 산정

세액 계산 서비스는 감사의뢰인의 재무제표에서 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를 뒷받침하는 회계분개를 준비할 목적으로 당기 및 이연법인세 부채(또는 자산)을 계산하는 것이 포함된다. 회계분개를 준비할 목적으로 감사의뢰인을 위한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부채(또는 자산)에 대한 세금 계산을 준비하는 것은 자기검토위협을 발생시킨다. 이 때 감사의뢰인을 위해 세액 계산을 준비할 때 발생하는 자기검토위협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관련된 요소는 세액 계산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이다. 회계법인은 공익실체인 감사의뢰인을 위하여 감사대상 재무제표에 회계분개를 목적으로 당기・이연법인세부채(또는 자산)를 계산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공인회계사법에서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을 금지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외감법에서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 분개를 대신하여 해주는 행위'를 금지업무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감사고객이 공익실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금액적 중요성과 관계없이 회계분개를 목적으로 법인세 등을 계산하는 업무는 모두 금지업무에 해당한다.

○세무자문 및 세무계획 수립 업무

세무자문 및 세무계획(Tax Planning) 서비스는 감사고객에게 세금을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조언이나 세법 또는 규정의 적용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는 등 광범위한 서비스로 구성된다.

감사 의뢰인에게 세무자문 및 세무계획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서비스 결과가 회계법인이 의견을 표명하는 회계기록이나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경우 자기검토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변호위협을 야기할 수도 있다.

감사의뢰인에게 세무자문 및 세무계획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자기검토위협 또는 변호위협을 식별하고 그러한 위협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관련된 요소는 다음과 같다.

▪세무자문에 대한 재무제표에 적절한 처리를 결정하는 데 관련된 주관성 정도.

- 세금 처리가 판결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또는 재무제표 작성 전에 세무 당국에 의해 승인되었는지 여부.
- 세무자문의 결과가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

따라서 회계법인은 공익실체인 감사 의뢰인에게 세무자문 및 세무계획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자기검토 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세무자문의 효과가 특정 회계처리나 재무제표의 표시에 의해 좌우되고, 감사업무팀이 관련 재무보고체계에 따른 해당 회계처리 또는 표시의 적절성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 회계법인은 세무계획수립 및 관련 자문서비스를 감사의뢰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세무자문 및 세무계획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자기검토위협이 발생하지 않는다.

- 세무 당국 또는 기타 판례의 지원을 받음.
- 확립된 관행(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관련 과세당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관행)을 기반으로 함.
- 회사가 승소할 것으로 확신하는 세법상의 근거를 갖추고 있음.

과거 거래에 대한 세금환급 처리 업무는 세무신고서 작성업무의 예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세무 자문 및 세무계획 업무는 주로 미래의 거래 또는 세무상 회계처리 등과 관련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가 자기검토위협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 명확한 경우(판례나 세무관행으로 뒷받침되는 경우 등) 외에는 세무자문 및 세무계획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제회계사연맹은 공격적인 세무자문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국제윤리기준 개정안을 현재 확정하였으며, 이는 PCAOB Rule 3522 내용에 대한 국제윤리기준의 대응이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서비스는 변호위협을 야기할 수도 있다. 공익실체인 감사 의뢰인에게 세무자문 및 세무계획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변호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안전장치를 적용한다.

○가치평가 포함 세무업무

가치 평가를 포함하는 세무 서비스는 합병 및 인수 거래, 그룹 구조 조정 및 기업 재편성, 이전가격 연구, 주식 기반 보상 제도 등을 포함한다. 감사의뢰인에게 세무목적으로 가치 평가를 제공하는 것은 서비스 결과가 회계법인이 의견을 표명하는 회계기록이나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경우 자기검토위협을 발생시킬 수 있고 또한 변호위협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회계법인이 감사의뢰인의 세금보고 의무를 지원하기 위해 또는 세금계획을 위해 세무목적의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위협에 대한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세금과 관련된 회계분개를 제외하고는 회계기록이나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예를 들어 자산에 대한 세무목적의 평가가 자산의 재평가로 이어지는 경우와 같이 세금과 관련된 회계분개에만 국한되지 않고 회계기록이나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친다.

감사의뢰인을 위해 세무 목적으로 평가를 수행하더라도 자기검토위협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기본 가정은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 확립되었거나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는
- 사용되는 기술 및 방법론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표준을 기반으로 하거나 법률 또는 규정에 규정되어 있으며, 평가는 세무당국 또는 유사한 규제당국의 외부 검토를 받는다.

공익실체가 아닌 감사의뢰인을 대상으로 세무목적으로 가치평가를 제공하는 경우와 공익실체인 감사의뢰인을 대상으로 세무목적으로 가치평가를 제공하는 경우를 각각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공익실체가 아닌 감사의뢰인을 대상으로 세무목적으로 가치평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평가 결과가 세금 관련 회계분개를 통해서만 회계기록이나 재무제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세무목적으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거나 세금 신고서나 기타 서류에 포함된 평가가 세무당국 또는 유사한 규제당국의 외부 검토 대상인 경우 일반적으로 위협이 발생하지 않는다. 세금 목적으로 수행된 평가가 세무당국 등의 외부 검토 대상이 아니고 재무제표에 중요한 경우, 자기검토위협 또는 변호위협을 식별하는데 관련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 평가 방법론이 세법 또는 규정, 기타 선례 또는 확립된 관행에 의해 뒷받침되는 정도.
- 평가에 내재된 주관성의 정도.
- 기본 데이터의 신뢰성과 범위.

이러한 공익실체가 아닌 감사 의뢰인에게 세무목적의 가치평가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변호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안전장치를 적용할 수 있다.

반면에 회계법인은 해당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자기검토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공익실체인 감사 의뢰인에 대해 세금 목적으로 가치 평가를 수행해서는 안된다. 또한 공익실체인 감사의뢰인에게 세금 목적으로 가치 평가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변호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안전장치를 적용할 수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상증법에 의한 세무상 평가가 자기검토위협이 발생하지 않는 사례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무분쟁 해결 지원

세금 분쟁 해결에 있어 감사의뢰인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비인증업무는 세무 당국의 세금 계산 및 세무처리 고려 사항에서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무 당국이 감사의뢰인에게 특정 문제에 대한 논쟁이 기각되었음을 통지하고 세무 당국이나 감사의뢰인이 재판소나 법원의 공식 절차에서 결정을 위해 해당 문제를 회부할 때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감사의뢰인에게 세금 분쟁 해결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서비스 결과가 회계법인이 의견을 표명하는 회계기록이나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경우 자기검토위협을 일으킬 수 있고 변호위협을 일으킬 수도 있다. 세금 분쟁 해결에 있어 감사의뢰인을 지원함으로써 발생하는 자기검토위협 또는 변호위협을 식별하고 그러한 위협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관련된 요소는 다음과 같다.

- 분쟁 해결에서 경영진의 역할.
- 분쟁의 결과가 회계법인이 의견을 표명하는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
- 회계법인이 세금 분쟁의 대상이 되는 조언을 제공했는지 여부.
- 해당 문제가 세법이나 규정, 기타 선례 또는 확립된 관행에 의해 뒷받침되는 정도.
- 절차가 공개적으로 진행되는지 여부.

공익실체가 아닌 감사의뢰인을 대상으로 세금분쟁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와 공익실체인 감사의뢰인을 대상으로 세금분쟁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각각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금 분쟁 해결에서 공익실체가 아닌 감사의뢰인을 지원함으로써 발생하는 자기검토위협 또는 변호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안전장치를 적용할 수 있다. 반면에 회계법인은 세무분쟁에 대한 지원 제공이 자기검토위협을 야기할 수 있는 경우 공익실체인 감사의뢰인에게 세금 분쟁 해결에 대한 지원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또한 공익실체인 감사의뢰인에 대한 변호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장치를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회계법인은 조세 분쟁 해결에 있어 재판소나 법원에서 감사의뢰인을 위한 변호 역할이 포함되고 관련 금액은 회계법인이 의견을 표명할 재무제표에 중요한 경우 공익실체가 아닌 감사의뢰인에게 조세 분쟁 해결 지원과 관련된 세금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재무제표에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안전장치를 적용하고 업무 수행 가능하다.

반면에 회계법인은 서비스가 재판소 또는 법원에서 감사의뢰인을 위한 변호 역할을 포함하는 경우, 공익실체인 감사의뢰인에게 조세 분쟁 해결 지원을 포함하는 세무 서비스를 제공해서

는 안된다. 다만, 재판소 또는 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안과 관련하여 회계법인이 감사의뢰인을 위하여 계속적인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아니며, 이러한 자문역할의 예는 다음과 같다.

- 구체적 정보요청에 대한 대응
- 수행된 업무에 관한 사실 설명이나 증언 제공
- 세무문제의 분석 지원

재판소와 법원의 정의는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Tax Tribunal)이 윤리기준에서 정한 Tribunal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여러가지 논의가 있었으나 조세심판원이 공개재판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해석이 있다.

Ⅳ. 국제기준과의 비교 분석

4.1 비감사업무 제공 관련 독립성 규정에 대한 비교 평가

국내 및 국제 윤리기준과 SEC Rule 모두 감사 의뢰인을 대상으로 특정한 비감사업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비감사업무가 의뢰인의 감사 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비감사업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 조항을 제공한다. 즉 국내 및 국제 윤리기준 하에서는 감사 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not subject to audit) 감사 의뢰인에게 금지된 비감사업무를 제공할 수 있지만 SEC Rule은 not subject to audit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경영자 역할(management functions), 고위직 임직원 채용업무, 브로커/딜러 또는 투자자문 업무, 법률 서비스, 감사와 무관한 전문가 서비스는 여전히 금지업무에 해당하고 아래 5가지 비감사업무만 not subject to audit 예외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제공할 수 있다.

- 회계처리 및 기장대리업무
- 회계정보 시스템의 설계 및 구축
- 가치평가 업무
- 보험계리업무
- 내부감사 아웃소싱

또한 국제윤리기준의 경우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이 비감사업무를 제공할 수 있는 감

사 의뢰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조건을 상세히 나열하고 있으나 국내 윤리기준의 경우 상세한 조건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공인회계사법은 제21조에서 감사의뢰인과 그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제공이 금지된 비감사업무를 열거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SEC 독립성 기준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무와 거의 유사하다. 다만 SEC 독립성 기준은 금지업무라도 감사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가지고 있는 반면 공인회계사법은 자기검토위협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금지업무 모두는 예외 없이 무조건 금지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2 세무서비스 제공 관련 독립성 규정에 대한 비교 평가

4.2.1 상장사 기준 비교 평가 및 시사점

국제윤리기준은 공익실체인 감사의뢰인에게 자기검토위협을 생성하는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SEC 독립성 규정은 감사 의뢰인에게 세무 서비스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SEC release은 SEC는 회계법인이 감사의 독립성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감사 의뢰인에게 세무업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오랜 입장을 반복한다고 설명하고 있다[4].따라서 회계법인은 감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으면 감사 의뢰인에게 세금 준수, 세무 계획 및 세무 조언과 같은 세무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다. PCAOB 규칙 3522 및 3523은 회계법인이 세무업무를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윤리 및 독립성 고려 사항을 다루도록 설계되었다.

반면에 우리나라 공인회계사법은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금지업무로 하고 있고 외감법은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 분개를 대신하여 해주는 행위를 금지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즉 공인회계사법과 외감법에 의해 감사의뢰인의 상장여부와 무관하게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해당하는 세무업무와 회계분개 목적의 당기 및 이연법인세 산정 업무 등이 제공이 금지된다.

이와 같은 내용에 기반하여 상장사인 감사의뢰인의 경우, 공인회계사법과 외감법에 의해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세무업무와 회계분개 목적의 당기 및 이연법인세 산정 업무 등이 제공이 금지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내 규정이 국제윤리기준 상 비감사업무 제공 관련 규정과 상대적 규율수준이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

4) SEC Release No. 33－8183 (January 28, 2003), Strengthening the Commission's Requirements Regarding Auditor Independence, Section Ⅱ B 11

또한 SEC 독립성 규정은 감사의뢰인에게 세무 서비스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현행 공인회계사법과 외감법에 의한 규제수준이 SEC 규정과 비교시에도 더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4.2.2 비상장사 기준 비교 평가 및 시사점

비상장사인 감사의뢰인의 경우, 국제윤리기준에서는 공익실체인 감사의뢰인에게만 자기검토위협을 생성하는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공인회계사법과 외감법에 의해 비상장사에 대해서도 상장사와 동일하게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해당하는 세무업무와 회계분개 목적의 당기 및 이연법인세 산정 업무 등이 제공이 금지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내 규정이 국제윤리기준 상 비감사업무 제공 관련 규정보다 상대적 규율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세무신고 서비스나 세무목적의 가치평가 업무는 국내 규정과 국제 규정보다간의 상대적 규율수준이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먼저 세무신고 서비스의 경우, 국제윤리기준은 감사 의뢰인에게 세무신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국제윤리기준에 의하면, 세무신고 서비스는 역사적 정보를 기반으로 하며 주로 판례 및 확립된 관행을 포함하여 기존 세법에 따라 그러한 역사적 정보를 분석하고 제시하는 것을 포함하며, 세무신고는 세무 당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검토 또는 승인 절차를 따르므로, 세무신고 서비스의 제공이 일반적으로 독립성 위협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PCAOB는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세금신고서의 작성과 tax compliance 업무는 독립성 이슈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는 경영진이 부담하여야 할 세금을 계산 및 할당하고 감사인이 법인세 등 계정이 적정하게 기재되고 적절한 공시가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기 위해 법인세 계정을 감사한 이후에 감사인은 세무신고를 작성하며 세무신고서를 준비하면서 감사인은 감사의뢰인을 옹호하는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공인회계사법이나 외감법에서 세무신고 서비스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세무신고 업무는 국내 규정과 국제 규정보다간의 상대적 규율수준이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세무목적의 가치평가 업무의 경우, 국제윤리기준은 자기검토위협을 발생시키지 않는 세무목적의 가치평가업무를 금지하지 않으며, 다만 변호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안전장치 적용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SEC는 비재무 보고를 위한 서비스[평가 또는 감정업무, fairness opinion, 또는 현물출자 보고서](예 : 이전 가격 연구, 비용 분리 연구(cost segregation study) 및 기타 세무 목적을 위한 평가)를 허용하고 있다. 공인회

계사법에서는 매수 또는 매도 목적의 가치평가 업무를 금지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세무목적의 가치평가업무는 일반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 목적의 가치평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증여세법에 의한 가치평가는 일반적으로는 매수 또는 매도 목적의 가치평가와 함께 참고목적으로 수행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세무목적의 가치평가를 공인회계사법상 금지된 매수 또는 매도 목적의 가치평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세무목적의 가치평가 업무는 국내 규정과 국제 규정 간의 상대적 규율수준이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Ⅴ. 시사점 및 개선사항

국제윤리기준에서 금지되는 비감사업무와 공인회계사법, 외감법, 공인회계사윤리기준에서 금지되는 비감사업무 범위가 각각 상이하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 간의 차이와 모호한 해석으로 파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세무신고서 작성이나 세무분쟁 해결 등과 같은 세무업무는 시기적으로는 감사가 종결된 이후에 제공되며 또한 기존 세법 및 관련 규정과 해석에 근거해서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된 결과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세무관청에서 적정성 여부에 대해 판단을 한다. 따라서 독립적인 감사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현행 공인회계사법과 외감법과 마찬가지로 세무신고서 작성과 세무분쟁 해결 업무를 윤리기준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둘째, 국제윤리기준의 비감사업무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져 공익실체(PIE, Public Interest Entity) 감사인은 중요성과 관계없이 자기검토위협을 발생시킬 수(might create) 있는 가치평가 포함 세무 업무, 세무분쟁 해결 지원 업무, 회계 분개 목적 세액 산정 업무, 세무자문 및 세무계획 수립 업무를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치평가 포함 세무 업무는 일반적으로 세무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상증법에 의한 평가가 그 대상이 될 것이다. 상증법상 평가는 평가에 내재된 주관성이 낮고 평가방법론이 상증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자기검토위협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다. 세무분쟁 해결 지원 업무는 세무분쟁 사항에 대하여 세무당국에 의한 최종적인 판단이 이루어진 이후 회계처리로 반영될 수 있기에 일반적으로 자기검토 위협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회계 분개 목적 세액 산정 업무는 외감법 제6조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8조 제6항에서 금지되는 업무(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 분개를 대신하여 해주는 행위 등)에 해당하므로 동 규정

으로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업무를 윤리기준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업무와 허용되지 않는 업무로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 허용여부에 대한 예시(허용 : 상증법상 평가업무, 금지 : 회계 분개 목적 법인세와 이연법인세 산정 업무)를 보여주면 실무적으로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세무자문 및 세무계획 수립 업무는 세무자문에 대한 적절한 회계처리를 결정할 때 수반되는 주관성의 정도가 자기검토위협을 발생시키는 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이와 관련된 관행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동안 수행되었던 세무자문 업무 등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

셋째, 국제윤리기준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는 나라도 있지만 각국의 필요에 따라 일부 규정은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필요한 규정을 보완하는 나라도 많이 있다. 우리나라도 윤리기준을 개정할 때 불필요한 오해 및 부적절한 업무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정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공인회계사가 감사고객에게 제공하는 세무서비스에 대하여 기존의 관행과 해당 세무업무 수행이 자기검토위협을 중심으로 감사인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제윤리기준과 같이 세무업무를 세분화해서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세무조정, 세무목적의 가치평가업무, 세무 자문업무 등과 같이 자기검토위협이 발생하지 않아 감사고객에게 제공 가능한 세무 업무까지 금지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필요는 없겠다.

참고문헌

김성태, 박성욱. 2022. 감사인이 제공 세무서비스는 그 자체로 독립성을 저해시키는가? : 공격적 조세회피 중심으로. 2022년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 217－245.

김희규, 신승묘,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가 기업의 실제이익조정 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20권 3호, 137－164

이영한, 윤성만, 조세유인과 비조세유인이 기업의 외부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 구매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2011. Vol 36, No. 2, 185－219

회계감사기준위원회. 2005. 공인회계사윤리기준 290. 독립성－인증업무. 한국공인회계사회.

Cook, K. A., Huston, G. R., Omer, T. C. 2008. Earnings management through effective tax rates : The effects of tax planning investment and the Sarbanes－Oxley Act of 2002.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25(2).

Desai, M. A., Dharmapala, D. 2009. Corporate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1(3), 537－546.

Gleason, C. A., Mills, L. F. 2008. Evidence of differing market responses to beating analysts' targets through tax expense decreases. Review of Accounting Studies, 13(2), 295－318.

Kim, S. T., Park, S. W. Do tax services provided by auditors in themselves undermine independence?. Collection of papers presented at the 2022 Korean Taxation Association Spring Conference. [printed in Korean]

Kinney, W., Z. Palmrose, and S. Scholz. 2004. Auditor independence, nonaudit services, and restatements : was the U.S. government right?.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42 : 561－588

Korean Institute of the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KICPA). 2005. Overview of the Revised Code of Ethics Auditing Standards. KICPA. [printed in Korean]

Krishnan, G. V., Visvanathan, G. 2011. Is there an association between earnings management and auditor－provided tax services?.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33(2), 111－135.

Maydew, E. L., Shackelford, D. A. 2005. "The Changing Role of Auditors in Corporate Tax Planning", NBER Working Papers 11504,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Inc.

McGuire, S. T., Omer, T. C., Wang, D. 2012. Tax avoidance : Does tax－specific industry expertise make a difference?. The accounting review, 87(3), 975－1003.

Paterson, J. S., Valencia, A. 2011. The effects of recurring and nonrecurring tax, audit－related, and other nonaudit services on auditor independence.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28(5), 1510－1536.

Rho, J.－H. 2023. New ISA Auditing 2024, The 11th Edition (Nov. 2023). Tamjin Book－publishing. [printed in Korean]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Independence Regulations Related to Tax Services Provided by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Abstract>

When an auditor provides both audit and tax services, there are no specific restrictions imposed by the Certified Public Accountant Code of Ethics or the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ct. However, the content of the International Code of Ethics is different from the Korean Code of Ethics in that it classifies tax services in detail and determines whether the auditor's independence is impaired for each classification of tax services. Considering the impact to the integr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caused by impairment to the independence of auditors, the direction for improvement of independence regulations related to the provision of tax services by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can be considered as a very timely research.

Improvements are required to address differences between the regulations and areas that may result from ambiguous interpretations. First, the majority of tax services has no direct impact on the performance of independent audits, it is considered appropriate not to mention it separately in the Korean Code of Ethics. Second, International Code of Ethics have been revised for non-audit services, so auditors of PIE such as listed companies should consider restricting all non-audit services that might create a self-review threat, regardless of materiality. Finally, subdividing tax services in detail the same as in the International Code of Ethics and analyzing the impact on independence might mislead to a conception that tax compliation and tax consulting is prohibited even though such services are permitted under the International Code of Ethics. Therefore, subdividing tax services in detail is not recommended.

<Key words> Non-audit services, tax services, independence, Code of Ethics for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제 3 분과

조세정책

장소 : 326호 사회자 : **박성욱 교수** (경희대)

시 간	발표논문 제목	저자 및 발표자*	토론자
15:00 ~ 16:30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한국기업의 경제적 효과분석	이창섭 (세종대) **전홍민*** (성신여대)	**김완용** (한양사이버대)
	상속세법상 밸류업 기업에 관한 연구	**심충진*** (건국대)	**고윤성** (한국외국어대)
	How should we prepare for the coming AGI Era?	**강철승*** (한국수산정책포럼)	**배성호** (경북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한국기업의 경제적 효과분석

이 창 섭 · 전 홍 민
(세종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한국기업의 경제적 효과분석*

이창섭** · 전홍민***

〈요 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 자료를 활용하여,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도입이 전면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2030년의 탄소배출권 가격, 탄소배출량 직접배출 여부, 한국의 저탄소정책 및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정책 등을 고려한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정책 지원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더불어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전문가 집중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 EU CBAM 도입은 대EU 수출금액을 고려해도 우리나라 기업에게 최소 1조원 내외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었으며, 저탄소정책 및 CCUS 정책을 수행함에도 이러한 기업의 부담이 유의하게 감소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기업의 부담 감소를 위한 정부의 선제적인 세제 및 금융관련 혜택의 입법과 후속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EU CBAM의 경우, 관련 사례를 역사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정책이므로, 개별 기업이 이에 대한 대비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가 EU CBAM 도입에 따른 정책적인 방향과 기업이 준비해야할 관련 청사진을 사전적으로 제시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제어〉 탄소국경조정제도, 저탄소정책, CCUS 정책, 세제 및 금융정책

* 본 연구는 2024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네트워크 미래세원분과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한국기업의 경제적 효과 사전분석”을 일부 수정하여 진행하고 있는 연구입니다. 본 연구는 2024년도 한국세무학회 연구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진행하고 있는 연구입니다.

** 제1저자,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E－mail : crhee2@sejong.ac.kr)

*** 교신저자, 성신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E－mail : hmchun@sungshin.ac.kr)

Ⅰ. 서 론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낮은 국가가 높은 국가에 상품 및 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받는 무역 관세이다. CBAM의 목적은 EU내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생산시설의 역외 이전, 역내기업의 생산원가 상승 등의 탄소누출(Carbon Leakage) 방지에 있다. 전 세계는 코로나19를 통해 환경이 전체 인류의 생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험하였으며, 탄소배출량이 해당 기업의 주가 및 공시전략에도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국내외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다(Bolton and Kacpeczyk, 2021 ; Ding et al., 2023 ; 전홍민 · 양승희, 2024). 2015년 유엔 기후변화 회의의 채택된 파리협정에서는 지구 온도를 현재보다 1.5도 미만으로 상승시키기 위해, 2050년까지 배출된 온실가스와 흡수한 온실가스의 합이 제로가 되는 Net Zero(순 배출량 제로)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앞으로 투자자는 기업투자 의사결정시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을 더욱 많이 고려하게 되었다. Bolton and Kacpeczyk(2021)의 연구에서 투자자는 탄소위험을 오히려 주가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향후 투자자는 탄소배출량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 기업가치 평가 상의 재조정을 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유럽연합(EU)은 2021년 7월 Fit for 55라는 입법 패키지를 통하여 탄소중립 달성 수단으로 CBAM 도입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Fit for 55의 주요 내용은 <표 1>과 같다. CBAM은 EU 배출권거래제와 별개로 수입 상품에만 적용되는 배출권 시장에서 수입품에 내재된 배출량에 해당하는 CBAM 인증서를 수입업자가 매입 및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시작할 예정에 있다. 전환기간에는 탄소배출량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기의 5개 품목에 대해서만 생산과정에서 배출된 직접배출만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하며, 더불어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는 국가에 대한 감면 혹은 면제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한국에도 이러한 부분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된다(전홍민, 2024). 이와 관련하여 CBAM을 시행할 경우, 탄소누출이 감소되거나 증가한다는 실증결과는 일관되지 않았다(Bohringer et al., 2012 ; Branger and Quirion, 2014 ; Ghosh et al., 2012 ; Lowe 2021 ; Pauer, 2018). 정훈 등(2021)은 CBAM 도입 효과의 경제적 추산과 관련하여 탄소배출량의 도입범위에 있어서 Scope3배출까지를 포함하여 약 8조 원에서 10조 원사이의 금액을 부담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CBAM 도입 대응 및 산업부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측면의 통합적 정책 지원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기업의 유럽연합의 CBAM 도입에 대한 사전효과에 대해서 종합적인 분석을 수행한 연구는 매

우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EU와 미국이 톤당 50달러의 CBAM을 부과한다고 가정하였을 때에 한국의 수출은 약 1.1%(한화 8.1조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EU(3.6조 원), 미국(4.5조 원)이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CBAM은 막대한 추가 자원을 투입하여 친환경적인 제조공정을 갖춘 기업과 환경을 오염시키며 값싼 제품을 생산한 기업을 동일한 규칙으로 경쟁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석탄발전 비중은 약 41.5%로 미국의 23.6%와 EU의 17.5%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므로, 탄소 집약적인 제조업의 조세부담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CBAM은 해당 제도의 도입효과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기업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및 이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는 관련된 실증연구가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다. 정훈 등(2021)에서는 직접배출, 간접배출, Scope 3 배출까지를 총 포괄하여 CBAM 도입 시의 부담액을 계산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직접배출과 간접배출만을 가정하여 CBAM 도입 효과를 살펴보았으며,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기의 5개 품목을 기반으로 향후 2030년의 CBAM 도입으로 인한 부담액을 추산하였다. 나아가, CBAM 도입과 관련한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 방향을 함께 제시하기 위해, 정량적 분석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분석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가 FGI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제Ⅱ장에서는 선행연구 및 CBAM 도입 논의경과검토를 수행하고, 제Ⅲ장에서는 CBAM과 기존제도와의 관계분석을 한다. 제Ⅳ장에서는 연구방법론 및 실증분석을 제시하며, 제Ⅴ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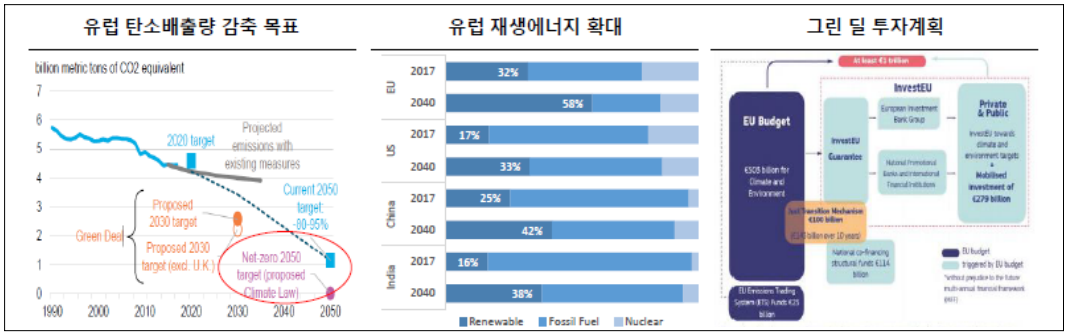
Ⅱ. 선행연구 및 CBAM 도입 논의 경과 검토

1. 선행연구 검토

한국은 제조업 강국인 독일, 일본과 같이 수출 집약형인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대표 국가로써 수출 대상국의 규제나 정책변화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 기업 중 특히 대 EU 수출 현황을 고려해 볼 때, 철강 및 석유화학 부문에 대한 탄소국경조정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석유화학기업은 수출액의 약 5%, 철강은 10%까지 CBAM을 부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기업은 2026년까지 친환경원료를 활용한 제품생산 라인과 배출 데이터 관리 체계를 2026년까지 구축해야 하며,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한 중장기적인

공정 효율화와 수출품목 다변화 등을 계획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출범하여 EU 및 미국의 CBAM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으며, EU의 탄소배출권 가격이 매년 상승함에 따라 이에 대한 국가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대응이 요구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탄소가격제도 중 탄소배출권거래제만 시행하고 있어, 탄소배출권 가격이 약 2~3만 원정도로 EU의 가격인 58유로 대비하여 50%정도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그림 1>은 유럽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 유럽 재생에너지 확대, 그린 딜 투자계획을 정리한 내용이다.

〈그림 1〉 유럽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 유럽 재생에너지 확대, 그린 딜 투자계획



출처 : EU, World Energy Outlook

CBAM이 기업의 탄소 누출 수준과 경쟁력 저하를 낮출 수 있다는 연구(Bohringer et al., 2012 ; Branger and Quirion, 2014 ; Ghosh et al., 2012)가 있으며, CBAM의 탄소 누출 감소 효과에 대한 실증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CBAM은 국제무역의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하는 상반된 연구가 존재한다(McKibbin et al., 2008 ; Kuik and Hofkes, 2010 ; Pauer, 2018 ; Lowe, 2021). Aylor et al.(2020)의 연구에서는 EU의 CBAM 도입 이후 산업 제품별 수익이 약 20달러 감소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Kussi et al.(2020)의 연구에서는 CBAM이 EU의 수입품 수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Chepeliev(2021)는 연산가능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 이용하여 CBAM의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는데, CBAM 시행이 대부분의 EU 교역국가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CBAM이 화석연료 가격이나 EU 역외의 탄소저감에 미치는 영향을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Krenek et al.(2020)는 동태적 새로운 케인지언(dynamic new keynesian) 모형을 기반으로 CBAM 도입에 따른 국경조정세 수입을 추산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국경조정세 수입으로 다자간 기후 재원의 5~7%를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충당가능하며, 2050년에는 16%까지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

였다. 즉, CBAM은 EU의 환경과 재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Motha et al.(2023)은 구조적 중력 모형(Structural gravity model)을 활용해서 EU의 CBAM 도입으로 인해 아시아지역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실증 시뮬레이션 연구를 수행한 결과, CBAM이 사회복지분야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수출이 약간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Magacho et al.(2024)는 CBAM이 개발도상국 국가의 수출교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CBAM은 러시아, 중국, 터키, 우크라이나의 수출에 유의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개발도상국이 적절한 녹색기술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CBAM의 도입이 해당 개발도상국의 경제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박슬기 등(2023)은 CBAM에 대응해서 EU 국가들 간 역내 교역은 증가하나 비EU 국가와의 교역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으므로, 국내 기업은 이러한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조문영・정서용(2024)은 CBAM에 대하여 산업 중 고탄소산업으로 평가 받는 철강업종이 더욱 큰 영향을 받을 예정이며,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 바 있다. Cho et al.(2024)은 CBAM의 적극적인 도입이 전 세계적인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킬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주로 철강업종, 화학업종을 주요 수출업종으로 하는 한국의 경우 단기적으로 큰 타격이 불가피함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한국기업들이 CBAM 도입에 따른 대응을 적절히 하기 위해서는 기업레벨에서의 탄소회계, 유럽에서도 인증에 대해서 검증이 가능한 기관의 설립, 유럽와 한국의 탄소배출권에 대한 상호인정 등의 정책이 필요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전홍민(2024)은 국내의 규제적 탄소배출권 및 자발적 탄소배출권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에 대한 공시 및 인증이 선결되어야 함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과정이 결국 EU의 CBAM 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2. CBAM 도입 논의 검토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을 2019년 12월 11일에 발표하였으며,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규정하고, EU 회원국들의 탄소배출 감축 목표 상향과 함께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조치로 선별된 일부 산업에 대해 CBAM을 도입예정을 언급하였다. 또한, 2020년 7월 7,500억 유로 규모의 경제회복기금(NGEU : Next Generation EU)과 1조 740억 유로 규모의 다년간 지출예산(MFF : 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조성에 합의하며 이 예산의 30%를 기후변화 대응 사업에 할애하기로 결정하였다. MFF의 재원확보를 위해 플라스틱세(2021년 1월 발효), 탄소국경세, 디지털세, 금융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계획 아래, 2023년 1월 1일 발효를 목표로 2021년 상반기까지 탄소국경조정 법안을 제출할 예정임을 발표하며 CBAM 도입을 위한 기반을 단계적으로 다져왔다. CBAM은 일방적인 관세 부과가 아닌 수출국 내의 규제비용을 고려한 조정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으로 지칭되었으며, 구체적인 이행 수단으로 세금 부과/면제, 배출권 매입・제출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금으로 부과하는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tax)보다 원칙적으로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 EU는 CBAM 도입과 관련하여 와 같은 세 가지 정책 옵션을 고려하였다. 첫째, EU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이다. 두 번째는 EU－ETS를 EU로 수입되는 상품에도 적용하는 방안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EU로 수입되는 제품 및 국내 제품 모두에 대해 물품세 또는 부가가치세 형태로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EU 집행위원회는 2021년부터 EU－ETS 4기가 출범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이 세 가지 옵션에 EU－ETS와 별개로 수입상품에만 적용되는 배출권 시장에서 수입업자가 배출권 매입 의무를 부담하는 방식의 옵션을 추가하여 2020년 7월 22일부터 10월 28일까지 공공협의(public consultation)를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마지막 옵션에 해당하는 방식이 제안되었다. 본 입법 패키지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EU 배출권거래제 내에 수송과 건물 부문 포함, ② 배출권거래에 의한 수익을 기후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 ③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의 생산 및 판매 금지, ④ 2030년 재생에너지 40% 달성, ⑤ 토지 이용, 산림 및 농업 부문의 자연 흡수를 통한 이산화탄소 제거, ⑥ 항공과 선박 연료규제를 통한 친환경적 전환, ⑦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⑧ 기후기금 조성, ⑨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의 도입 등이 있다. EU 집행위는 EU－ETS 4단계가 2021년부터 이미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하여 수입상품을 EU－ETS에 직접 편입하지 않고, 수입상품에만 적용하는 별도의 배출권으로서 CBAM 인증서(Certificate)를 수입업자가 매입, 제출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입법안의 주요 내용도 CBAM 적용 대상 및 범위, 승인된 신고인으로 지칭된 수입업자 의무, CBAM을 집행하는 권한당국(competent authority), CBAM 인증서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표 1>은 EU CBAM의 주요 내용이며, <표 2>는 탄소국경조정메카니즘 입법안의 조문 구성이다.

〈표 1〉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주요 내용

비 고	내 용
도입 시점	－2023년부터 전환기간인 3년 이후인 2026년부터 전면시행, 실제과세 시작 및 CBAM 인증서 구매의무부과
배출량 포괄범위	－직접배출량(Scope 1)만을 대상으로 함

〈표 1〉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주요 내용 (계속)

비 고	내 용
적용대상 범위	−5개 품목(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에 우선 적용 −탄소배출량 및 무역거래량이 많아 탄소누출 위험성이 큰 품목을 우선적으로 선정 −생산 공정에서 배출된 직접배출에만 적용하되, 향후 간접배출 및 탄소누출 위험이 큰 다른 부문으로 확대 적용 검토
적용 방식	−EU에서 승인된 수입업자가 CBAM 적용 품목 수입 시 상품유형별 수입 총량과 수입상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만큼의 CBAM 인증서를 구매(CBAM 인증서 가격 : 이산화탄소 1톤 배출량에 대해 EU−ETS 탄소배출권의 주간 평균가로 판매) −내재된 배출량은 실제 배출량에 기초하여 결정하되, 사용 가능한 실제 배출량 자료가 없을 경우 수출국별 해당 상품의 배출집약도 평균치를 기본 값으로 적용하여 산정 −신고인은 이전 연도의 배출량에 대해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며, 국가검증기관에서 공인한 CBAM 검증인이 제출된 내재 배출량을 검증
적용대상 국가	−모든 비 EU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적용 −EU−ETS에 참여하고 있거나 EU−ETS에 연계된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면제 * (4개국 및 5개 영역 : 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 뷔징겐, 헬골란트 섬, 리비뇨, 캄피오네 디탈리아, 세우타, 멜리야)

출처 : European Commission 요약

〈표 2〉 탄소국경조정메카니즘 입법안의 조문 구성

장	조	제목	장	조	제목
제1장 적용 대상, 범위 및 정의	제1조	적용대상	제5장 상품의 국경관리	제25조	상품 수입 시 국경에서의 절차
	제2조	범위			
	제3조	정의	제6장 집행	제26조	과태료
제2장 상품에 대한 승인된 신고인의 권리・의무	제4조	상품의 수입		제27조	우회
	제5조	승인을 위한 신청	제7장 위임권한의 행사 및 이사회 절차	제28조	위임권한의 행사
	제6조	CBAM 신고		제29조	위원회의 이행권한 행사
	제7조	내재 탄소배출량의 산정			
	제8조	내재 탄소배출량의 검증			

〈표 2〉 탄소국경조정메카니즘 입법안의 조문 구성 (계속)

장	조	제목	장	조	제목
제2장 상품에 대한 승인된 신고인의 권리・의무	제9조	원산지국에서 지불된 탄소가격	제8장 보고 및 재검토	제30조	위원회에 의한 보고 및 재검토
	제10조	제3국 운영자 및 시설 등록			
제3장 권한당국	제11조	권한당국	제9장 EU－ETS하 배출권 무상할당과의 조정	제31조	EU－ETS내 무상할당과 CBAM 인증서 제출 의무
	제12조	위원회			
	제13조	직무상 비밀 및 정보공개			
	제14조	국가등록부와 중앙데이터베이스			
	제15조	중앙 행정청	제10장 경과조항	제32조	범위
	제16조	국가등록부에의 계정		제33조	상품의 수입
	제17조	신고인에 대한 승인		제34조	특정 관세 절차를 위한 보고 의무
	제18조	검증인의 공인			
	제19조	CBAM 신고의 검토		제35조	보고 의무
제4장 CBAM 인증서	제20조	CBAM 인증서의 판매	제11장 최종조항	제36조	발효
	제21조	CBAM 인증서의 가격	부속서 Ⅰ	상품 및 온실가스 목록	
	제22조	CBAM 인증서의 제출	부속서 Ⅱ	이 규정의 범위 밖에 속하는 국가 및 영역	
	제23조	CBAM 인증서의 재구매	부속서 Ⅲ	내재 탄소배출량의 산정 방법	
	제24조	CBAM 인증서의 소각	부속서 Ⅳ	내재 탄소배출량 산정을 위한 자료 기록보관 요건	
			부속서 Ⅴ	검증원측 및 검증 보고서의 내용	

출처 : 정훈 등 (2021)

Ⅲ.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기존제도와의 관계분석

1. 탄소국경조정제도와 탄소배출권거래제와의 관계파악 및 검토

<표 3>의 주요 국가의 탄소배출권 거래제 현황에 따르면, EU, 미국 동부, 중국은 탄소배출량이 높은 전력발전 산업을 중심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활용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정부와 민간 주도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정부주도로 실행되고 있다.

〈표 3〉 주요 국가의 탄소배출권 거래제 현황

구 분	국 가	시 기	분 야
EU-ETS	E U	2005년 ~ 2030년	전력발전 산업, 항공
RGGI[1)]	미국 동부	2009년 ~ 2023년	전력발전 산업
China National ETS	중 국	2021년 ~ 미정	전력발전 산업
Korea ETS	한 국	2015년 ~ 2025년	전력발전 산업, 항공, 상업, 폐기물

출처 : International Carbon Action Partnership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주도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여, 기업 자율적인 관점에서의 탄소 활용 억제정책이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탄소의 전체 배출 총량을 정하여 개별 오염원들에게 배출권의 형식으로 할당한 다음, 탄소의 초과 배출이나 감축이 있는 기업이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와 판매하도록 허용함으로써, 탄소 배출 감축량의 예측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만, 배출권거래제는 전체 배출 총량이 정해지므로, 배출 감축량의 예측이 가능하나 배출 가격을 확실히 예측하기는 어렵다. 탄소세의 경우, 세율을 통하여 배출 가격이 확정되므로 배출 감축량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크다. 아래의 <표 4>와 <그림 3>은 국내 탄소 배출권 거래제의 1차, 2차, 3차 계획 기간의 주요 내용과 국내 배출권 거래량 및 가격 추이이다. 우리나라는 2022년 현재 3차 계획기간에 해당하며, 정부의 탄소중립 로드맵에 따라 배출허용총량 설정을 강화 및 탄소배출권의 유동성을 향상을 위한 방안을 수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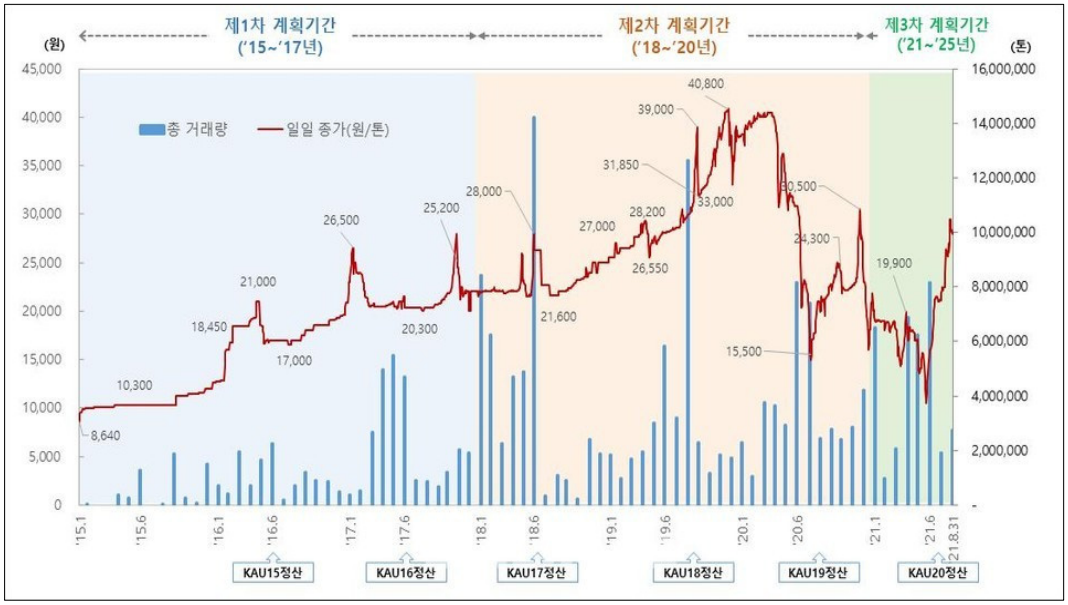
1)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표 4〉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

기 간	1차 계획기간	2차 계획기간	3차 계획기간
	2015년 ~ 2017년	2018년 ~ 2020년	2021년 ~ 2025년
내 용	-상쇄 인정 범위 제고 -유연성 제고 -정확한 탄소검증체계 집행 위한 인프라구축	-거래제 범위 확대 및 목표 상향 조정 -배출량 보고/검증 등 각종 기준 고도화	-로드맵에 따른 배출허용 총량 설정 강화 -신기후 체제 대비 자발적 감축 유도 -유동성 공급자 제도 도입 -선물거래 도입
할당비율	-전량 무상할당 -목표관리제 경험 활용 -조부조항 방식	-유상할당 개시 -무상 97%+유상 3% -벤치마킹 방식 도입	-유사할당 비율 확대 -무상 90%+유상 10% -벤치마킹 방식 정착

출처 : 한국환경공단, 기획재정부

〈그림 3〉 국내 배출권 거래량 및 가격 추이



출처 : 환경부 2021

2. 탄소국경조정제도와 해외 주요국의 상황검토

Kussi et al.(2020)은 EU의 탄소조정국경세 부과가 수입품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CBAM 탄력성을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직접배출과 간접배출 모두를 부과 대상으로 전력 이외 간접배출을 포함하였는가에 따라 시나리오를 구축하였다. 연구결과, 탄소국경조정제도의 탄력성이 가장 높은 수출국은 중국과 EU 외 유럽국가(영국, 스위스, 러시아)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다른 한편, UNCTD(2021)년 보고서에서는 CBAM이 이산화탄소배출량과 교역량에 유의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CBAM에 대한 우려와 달리개발도상국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지는 않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우리나라 기업 중 특히 대 EU수출 현황을 고려해 볼 때, 철강 및 석유화학 부문에 대한 탄소국경조정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석유화학기업은 수출액의 약 5%, 철강은 10%까지 탄소조정국경세를 부담할 전망이다. 이는 관련된 업종에게는 추가관세와 같은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나라 관련 기업은 친환경원료를 활용한 제품생산 라인과 배출데이터 관리 체계를 2026년까지 구축해야 한다. <표 5>는 미국의 탄소조정국경 세재의 주요 내용이다.

〈표 5〉 미국과 중국의 탄소조정국경세제관련 대응 주요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미 국	−무역대표부(USTR)가 의회에 제출한 통상정책 연례보고서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 국경 조정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20.3.2)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일지는 모르나 EU와 같이 자국 내 산업이 부담하게 된 비용만큼 국경세로 부과하는 방식 유력
중 국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보완 −탄소중립서비스를 주력으로 하는 거래시장 구축 및 향후 탄소세[2] 제도 재정방안 종합적으로 모색

출처 : UNCTD(2021)

2) 중국은 환경보호세를 중심으로 탄소세 제도를 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해당 방안 중 하나는 현행 자원세, 소비세를 개정하여 연료소비기준을 근거로 과세를 하는 것이다.

Ⅳ. 연구방법론 및 실증결과

1. 연구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연구방법론을 활용한다. 첫째, 기존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선행연구와 해외사례를 조사하여, 이를 기반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나아가,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사점을 도출한 다음 전문가 FGI분석을 수행한다. 둘째, 정량적 방법으로 거시 및 산업별 탄소배출량, 유럽으로의 수출상황과 같은 정량적 데이터를 이용하여,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사전적 도입효과를 시나리오분석 및 민감도분석으로 계산한다. 본 연구에서는 2030년에 EU CBAM을 환경산업연관분석(EEIO, Environmentally Extended I－O Analysis 모형)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추가비용 부담규모를 산출하고 저탄소 정책 시행에 따른 변화분을 계산한다.

2. 표본의 선정 및 자료의 수집

<표 6>은 본 연구에서 이용한 정량적 데이터의 기술통계량이다. 본 연구에서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2022년에 발표한 유럽으로의 수출금액에 대해서 환율을 고려하여 톤당 직접배출량 및 간접배출량을 추정하고자 한다. 직접배출 및 간접배출과 관련된 계수는 환경부의 자료를 역시 참조하였다. 추정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가장 최근에 발표한 유럽수출자료(2022년 기준)를 활용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2022년 기준 유럽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총량을 약 8,394,532톤당으로 추산하고, 해당 값을 향후 추정할 2030년 기준의 CBAM 도입에 의한 경제적 부담액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표 6〉 기술통계량

구 분	총금액(원)	원/달러	직접배출	간접배출	톤	배출량
철 강	4,460,000,000	1,218	2.01	0.27	3,661,741	7,360,099
알루미늄	540,000,000	1,218	2.31	7.49	443,350	1,024,138
비 료	5,400,000	1,218	2.32	0.07	4,433	10,286
시멘트	10,000	1,218	1.16	0.10	8	10
총 배출량						8,394,532

<표 7>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연도별 대EU 수출액과 수출증감률 분석 결과이다. 이 기간 동안 평균 연간 증감률은 약 4.6%이지만 향후 한국기업의 대 EU 수출액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는 힘들 것으로 평가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연간 성장률을 보수적으로 4%로 설정하였다.

〈표 7〉 연도별 대EU 수출액과 수출증감률

연도별	대EU 수출액/백만 유로	수출증감률/%
2023년	6,657,890	−2.1
2022년	6,799,607	21.2
2021년	5,608,184	16.6
2020년	4,808,224	−14.5
2019년	5,623,431	2.7
2018년	5,474,040	4.7
2017년	5,226,059	7.6
2016년	4,857,099	−0.1
2015년	4,860,956	4.8

본 연구에서는 1) BAU 시나리오, 2) REN 시나리오, 3) REN & CCUS 시나리오를 <표 8>과 같이 제시하였다. BAU 시나리오는 저탄소 정책이 이행되지 않아, 정책적인 충격이 없는 상황이다. REN 시나리오는 산업별 사용 전략이 저탄소로 전환되는 상황이며, REN & CCUS 시나리오는 전력 저탄소 전환과 CCUS 기술이 동시에 확대되는 상황이다. 즉 REN & CCUS 시나리오는 정책적으로도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저탄소로 전환이 되는 것을 가정한다.

〈표 8〉 분석 시나리오 제시

구 분	개 요	세 부 가 정
BAU 시나리오	저탄소 정책 이행 X (정책충격 X)	
REN 시나리오	산업별 사용 전력의 저탄소 전환	−BAU 시나리오에 추가로, 「제9차 전력수급기본 계획안」 내 2030년 기준 발전믹스 비중 전망치 달성 가정 −2030년 발전비중 전망치 : 신재생 20.8%, 석탄 29.9%, LNG 23.3%
REN & CCUS 시나리오	전력 저탄소 전환 및 CCUS 기술 확대	−REN 시나리오에 추가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 내 CCUS를 통한 감축 목표 달성 가정 −2030년 CCUS를 통한 감축 목표량 : 10.3 백만 톤

3. 실증결과

시나리오별로 CBAM의 경제적 효과가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으며, 2030년에 유럽의 톤당 탄소배출권가격의 전망에 대응해서 한국기업의 영향이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 <표 9>는 2030년 기준 CBAM 도입 경제적 효과 추산액 결과이다. 2030년 이후의 유럽의 톤당 탄소배출권가격은 보수적 전망(톤당 50,000원), 공격적 전망(톤당 145,423원), 평균 값(톤당 97,762원)의 3가지 전망에 대응해서 각각의 값을 계산하고자 한다.[3] 먼저 평균값에 대응해서 각각의 시나리오별로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BAU 시나리오별로 보면 가장 보수적인 직접배출만을 포함하였을 때는 약1.1조 원, 간접배출까지를 고려하면 약 1.699조 원로 추산된다. 다만, 산업별 사용 전력의 저탄소 전환(REN) 및 전력 저탄소 전환 및 CCUS 기술 확대(REN & CCUS)를 고려한 시나리오로 가면 직접배출(간접배출)이 각각 9,563억 원(1.447조 원), 9,547억 원(1.444조 원)으로 각각 추산되었다. 기대와 달리 산업별 사용 전력의 저탄소전환 그리고 CCUS 기술을 확대가 되어도 CBAM의 영향이 매우 감소하지는 않는 것으로 추산된다.

〈표 9〉 실증결과 : 2030년 기준 CBAM 도입 경제적 효과 추산액#1

구 분	추산액(2030 유럽의 톤당 탄소배출가격 추정 : 97,762원)
직접배출	1,123,138,371,894원
간접배출	1,699,746,667,864원
REN 직접배출	956,391,943,459원
REN 간접배출	1,447,394,247,893원
REN & CCUS 직접배출	954,792,158,013원
REN & CCUS 간접배출	1,444,973,148,188원

<표 10>은 일부 기관에서 추정하는 유럽의 탄소배출권 가격이 2030년에 정부정책의 확대 및 공급물량 증대로 인해서 톤당 가격이 50,000원에 대응해서 각각의 시나리오별로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BAU 시나리오별로 보면 가장 보수적인 직접배출만을 포함하였을 때는 약5744억, 간접배출까지를 고려하면 약 8693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산업

3) EU당국은 CBAM 인증서를 EU-ETS배출권의 주간 거래종가 평균의 가격에 수입자에게 판매할 계획이다. 특히 인증서는 이산화탄소배출량 톤당으로 판매를 예정하고 있다(심일 2021). 특히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부속서와 관련하여 검증보고서와 관련하여 독립된 검증업체로부터 검증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별 사용 전력의 저탄소 전환(REN) 및 전력 저탄소 전환 및 CCUS 기술 확대(REN & CCUS)를 고려한 시나리오로 가면 직접배출(간접배출)이 각각 4,891억 원(7400억 원), 4,883억 원(7,390억 원)로 각각 추산된다. 해당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판단해 보면 2030년의 유럽의 톤당 탄소배출 가격이 한국기업의 CBAM의 경제적 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0〉 실증결과 : 2030년 기준 CBAM 도입 경제적 효과 추산액#2

구 분	추산액(2030 유럽의 톤당 탄소배출가격 추정 : 97,762원)
직접배출	574,424,813,268원
간접배출	869,328,915,051원
REN 직접배출	489,142,991,888원
REN 간접배출	740,264,237,584원
REN & CCUS 직접배출	488,324,787,757원
REN & CCUS 간접배출	739,025,975,424원

<표 11>은 일부 기관에서 추정하는 유럽의 탄소배출권 가격이 2030년에 탄소배출권 가격이 오히려 공격적으로 활용되어 톤당 가격이 145,523원에 대응해서 각각의 시나리오별로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BAU 시나리오별로 보면 가장 보수적인 직접배출만을 포함하였을 때는 1.67조 원, 간접배출까지를 고려하면 약2.53조 원으로 추정된다. 다만, 산업별 사용 전력의 저탄소 전환(REN) 및 전력 저탄소 전환 및 CCUS 기술 확대(REN & CCUS)를 고려한 시나리오로 가면 직접배출(간접배출)이 각각 1.42조 원(2.15조 원), 1.42조 원(2.1조 원)로 각각 추산된다. 해당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판단해 보면 2030년의 유럽의 톤당 탄소배출가격이 공격적으로 가치 평가될 경우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를 국내에서 이미 도입해서 수행하고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1년 기준 약 13~15조원), 배출권거래제 수입(약 3,000억 원) 그리고 서울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입(약 1,000억 원)과 비교해 보더라도 배출권거래제 수입 그리고 서울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입보다는 약 4배~10배 이상 높은 세수금액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해당 기업에게 있어서, 사전적인 기술투자 비용 및 추가적인 탄소국경조정제도로 인한 추가관세를 고려해 볼 때 상당히 의미있는 금액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사전적으로 유럽의 톤당 탄소배출권을 헤징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의 과제가 될 수 있다.

〈표 11〉 실증결과 : 2030년 기준 CBAM 도입 경제적 효과 추산액#3

구 분	추산액(2030 유럽의 톤당 탄소배출가격 추정 : 145,523원)
직접배출	1,671,840,442,023원
간접배출	2,530,147,034,099원
REN 직접배출	1,423,631,112,170원
REN 간접배출	2,154,509,452,918원
REN & CCUS 직접배출	1,421,249,761,774원
REN & CCUS 간접배출	2,150,905,540,433원

4. 전문가 FGI (Focused Group Interview)

본 연구는 앞서 분석하였던 정량적 분석결과를 보완하기 위해서 한국의 기후금융에 대한 전문가 중 연기금 및 사모펀드의 기후금융 전문가와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관련하여 전문가심층인터뷰(FGI)를 수행하였다. <표 12>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견해, <표 13>은 탄소국경조정제도가 국내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 <표 14>는 향후 CBAM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요약한 것이다.

〈표 12〉 CBAM에 대한 견해에 대한 답변 요약

구 분	내 용
전문가 FGI 인터뷰 답변 요약	−CBAM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들에게는 EU의 무역 장벽 제도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탄소 배출이 적었으나 현재 탄소 배출이 증가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는 과거에 많은 탄소를 배출한 EU의 CBAM가 매우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탄소 배출 수준이 높은 철강 및 석유화학 제품의 EU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CBAM은 경제적으로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탄소 배출에 대한 비용 부담과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생산 공정 개선 투자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의 대외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후 위기에 대한 국제적 흐름은 계속해서 거세질 것으로 예측되므로, 우리나라 기업은 CBAM에 대한 대비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표 12〉 CBAM에 대한 견해에 대한 답변 요약 (계속)

구 분	내 용
전문가 FGI 인터뷰 답변 요약	-경영자는 단기적 성과에 집중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성과를 위해 CBAM에 대응해야 합니다. CBAM과 같은 글로벌 제도의 영향력은 기업 차원에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국내 기업과 협력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정부는 EU와의 국제 협상에서 국내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고, 탄소 배출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을 제공하며, 국내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완화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기후 위기 대비 역량을 국제적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으며, 이는 미래 국가 경쟁에서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표 13〉 탄소국경조정제도가 국내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답변 요약

구 분	내 용
전문가 FGI 인터뷰 답변 요약	[긍정적 영향] -환경 보호 강화 : CBAM은 글로벌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기후 변화 위험을 줄여, 연기금의 장기적 투자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 투자 촉진 : 이 제도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투자 기회를 확대합니다. 연기금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요소를 고려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탄소 리스크 관리 :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탄소 배출 관리를 강화하게 되어, 연기금의 투자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탄소 가격 변동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 영향] -비용 증가 : CBAM으로 인해 일부 산업의 생산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기금이 투자한 기업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포트폴리오의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글로벌 무역 분쟁 가능성 : CBAM은 무역 국가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연기금의 투자 환경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전환 비용 :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단기적으로 기업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표 14〉 향후 CBAM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답변 요약

구 분	내 용
전문가 FGI 인터뷰 답변 요약	-정책 개발 및 실행 : 정부는 CBAM 도입을 위한 법적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관련 법률의 제정 및 개정, 시행 규칙의 수립 등을 포함합니다. CBAM과 관련된 정책들이 일관되게 시행되도록 관리하고, 다른 환경 및 에너지 정책들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국제 협력 및 조정 : CBAM은 국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므로, 정부는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동의 목표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자간 협의체 및 협력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주요 무역 파트너와의 협상을 통해 CBAM 도입에 따른 무역 마찰을 줄이고,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산업 지원 및 전환 촉진 : 저탄소 기술 및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와 혁신을 촉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 인프라와 자금을 제공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탄소배출 모니터링 및 정기 평가 및 개선

5. 전문가 FGI 기반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 제안

위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CBAM에 대한 한국기업의 대응에 있어 정부의 지원 정책이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다. 실증분석을 기반으로 한 분석 및 전문가인터뷰를 통해서 탄소조정제도의 영향이 상당히 커질 수 있으며, 탄소배출 및 탄소가격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저탄소기술로의 투자가 장기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정책은 향후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CBAM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에 대해서 해당 기업의 규모에 대응하여 맞춤형 정책을 지원하는 것일 필수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CBAM에 대해서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된 제도를 혁신적으로 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CBAM 도입에 따른 국내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가능 정책을 <표 15>와 같이 세제혜택, 금융지원, R&D지원, 보급상용화 지원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의 경우 타 선진국 대비 고탄소산업의 형태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 저탄소경제로의 전환 및 투자가 수행되어야 하므로 직접적인 감세를 수행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나아가, 기존의 비슷한 형태의 세금에 대해서 중복과세를 최소화 시키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탄소경제로의 직접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기존의 연구개발투자에 추가해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 정부의 세제 혜택 및 금융지원이 이뤄져야지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이 빠르게 수행될

수 있다. 이에, R&D투자에 대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세제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정책적인 부분을 통해서 고탄소산업에서 저탄소산업으로의 녹색전환 형태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15〉 CBAM 도입에 따른 국내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가능 정책

산업정책	정책세부내용	정책수단
세제혜택	−탄소중립 전환에 수반되는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으로 혁신기술 R&D 투자 및 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 공제 −비과세 등[구체적으로 해당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기업이 해당 탄소비용을 장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저탄소경제로의 기술투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공제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감세, 세액공제, 비과세
금융지원	−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설비투자 등의 비용부담 완화 및 손실상쇄를 위한 보조금, 융자 지원 등	보조금, 특별기금
R&D 지원	−업종별 온실가스 저감 혁신기술의 선제적 확보를 위한 R&D 투자 확대 및 차별화 지원	업종별 혁신 기술개발지원, R&D 사업 체계 개선
보급·상용화 지원	−온실가스저감 혁신기술의 보급과 상용화를 위한 지원 정책	보급 및 상용화 지원

Ⅴ. 결 론

본 연구는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26년부터 유럽에서 도입이 예고되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해당 예측치를 추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재무적 정보를 활용하여 시나리오 분석 방법을 통해 한국기업의 2030년을 기준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효과를 추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BAU 시나리오별로 가장 보수적인 직접배출만을 포함하였을 때는 약 1.1조 원, 간접배출까지를 고려하면 약 1.699조 원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산업별 사용 전력의 저탄소 전환(REN) 및 전력 저탄소 전환 및 CCUS 기술 확대(REN & CCUS)를 고려한 시나리오로 가면 직접배출(간접배출)이 각각 9,563억 원(1.447조 원), 9,547억 원(1.444조 원)으로 각각 추산되었다. 이러한 금액을 기반으로 판단해 볼 때,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은 한국기업에게 관세 이상의 상당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

며, 이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추정된 금액은 이미 수행되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 수입인 1년 기준 3,0,00억 원보다 약 3~4배 이상으로 국내 관련 기업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크게 네 가지의 부분을 제시하였다. 세부적으로, 세제혜택, 금융지원, R&D지원, 보급·상용화 지원을 제시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 세제혜택, 금융지원관련 입법, 후속 정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부분은 기업들의 부담완화 및 탄소국경조정제도 대비를 위해서 선결조건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용 가능한 경제,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EU CBAM 도입이 전면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는 2030년을 대상으로 탄소배출권 가격, 직접배출여부, 한국의 저탄소정책 및 CCUS 정책 등을 고려하여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였다.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해당 분석을 수행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전문가 FGI를 수행하여, 정부정책 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종합하면, EU CBAM의 도입은 대EU 수출금액을 고려해 보아도 한국기업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으며 저탄소정책 및 CCUS 정책을 수행함에도 이러한 부담이 유의하게 감소하지 않을 수 있어, 기업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선제적인 세제 및 금융관련 혜택에 대한 입법 및 후속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 이전에 배출권 거래제와 유류세 등으로 이미 탄소로 인한 일정 부분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추가적인 비용부담, 즉 증분적인 비용 부담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향후 다양한 후속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증분적인 비용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론이 개발된 후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U CBAM의 경우 해당 사례를 역사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정책이다 보니 개별 기업이 CBAM에 대한 대비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을 것이므로, 우리나라 정부는 CBAM 관련 정책 방향 및 정보 자료에 대한 청사진을 사전적으로 제시하여 국내 기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CBAM은 글로벌 기후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집행이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CBAM에 영향을 받는 국가는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국의 탄소 감축 노력을 강화할 수 있고, 이 메커니즘은 배출 감소를 목표로 하는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국제 무역 협정 협상에는 CBAM 관련 조항을 포함한 환경 기준이 점점 더 통합될 수 있으므로, 국내 기업이 불리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적인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본 논문은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김현정. 2023,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역내외 논란 및 법적 정합성.” 국제정치연구 제26권 : 167－187.

문병효. 2018, “유럽연합(EU)의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과 법제도.” 유럽헌법연구 제26호 : 29－52.

박슬기, 정인교, 정석진. 2023,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의 경제적 파급영향 분석.” 통상정보연구 제25권 제4호 : 129－147.

삼일회계법인, 2021,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윤호영. 2015, “배출권거래제의 현황과 개선 방안 : 탄소세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강원법학 제45권 : 393－431.

조문영, 정서용. 2024, “글로벌지속가능철강협정(GSSA)과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국제통상법적 영향과 대응 : 글로벌 철강 시장과 탄소배출 규제를 중심으로.” 통상법률 제162권 : 57－97.

전홍민. 2024, “탄소배출권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한 정책연구. : Korea Business Review 제28권 제2호 : 1－20.

전홍민, 양승희. 2024, “ESG Performance, Economic Policy Uncertainty and Labor Investment Efficiency.” 회계학연구 제49권 제3호 : 1－38.

정훈, 여영준, 조해인. 2021, “탄소국경조정 대응 산업지원정책과제와 정책효과 예측연구.” 국회미래연구원 연구보고서.

환경부. 2020,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 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1, “2019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

Aylor, B., Gilbert, M., Lang, N., McAdoo, M., Öberg, J., Pieper, C., Sudmeijer, B., and Voigt, N. 2021. How an EU Carbon Border Tax could Jolt World Trade. *Boston Consulting Group*.

Bohringer, C., Balistreri, E. J., and Rutherford, T. F.. 2012. The Role of Border Carbon Adjustment in Unilateral Climate Policy : Overview of an Energy Modeling Forum Study (EMF 29). *Energy Economics* 34 : 97－110.

Branger, F., and Quirion, P. 2014. Would Border Carbon Adjustments Prevent Carbon Leakage and Heavy Industry Competitiveness Losses? Insights from a Meta－Analysis of Recent Economic Studies. *Ecological Economics* 99 : 29－39.

Bolton, P., and Kacperczyk, M. 2021. Do Investors Care about Carbon Risk?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142(2) : 517－549.

Chen, J., Chepeliev, M., Garcia－Macia D., M Lakova, D., Roaf, J., Shabunina, A., Mensbrugghe, D., and Wingender, P. 2020. *EU Climate Mitigation Policy*. International Monetary Fund.

Chepeliev, M. 2021. Possible Implications of the European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for Ukraine and Other EU Trading Partners, *Energy Research Letters*, 2(1), https://doi.org/10.46557/001c.21527

Cho, Bong－Kyung, Hail Jung, Ji－Bum Chung, Chang－Keun Song, 2024. Implications of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on South Korean industries：Challenges and policy recommendations,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444,141278.

Ding, D., Liu, B., and Chang, M. 2023. Carbon Emissions and TCFD Aligned Climate－related Information Disclosures. *Journal of Business Ethics* 182：967－1001.

Ghosh, M., Luo, D., Siddiqui, M. S., and Zhu, Y., 2012. Border Tax Adjustments in the Climate Policy Context：CO2 versus Broad－based GHG Emission Targeting. *Energy Economics* 34(2)：S154－S167.

Pauer, S. U. 2018. Including Electricity Imports in California's Cap－and－Trade Program：A Case Study of a Border Carbon Adjustment in Practice. *The Electricity Journal* 31(10)：39－45.

ICAP. 2021. *Emissions Trading Worldwide：ICAP Status Report 2021*. International Energy Agency HOMEPAGE.

Kuusi, T., Björklund, M., Kaitila, V., Kokko, K., Lehmus, M., Mechling, M., Oikarinen,T., Pohjola, J., Soimakallio, S., and Wang, M. 2020.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s and Their Economic Impact on Finland and the EU*, Prime Minister's Office, Helsinki.

Lowe, S. 2021. *The EU's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How to Make It Work for Developing Countries*. Centre for European Reform.

Kuik, O., and Hofkes, M. 2010. Border Adjustment for European Emissions Trading：Competitiveness and Carbon Leakage. *Energy policy.* 38(4)：1741－1748.

Krenek, A., M. Sommer and M. Schratzenstaller. 2020. A WTO－compatible Border Tax Adjustment for the ETS to Finance the EU Budget. WIFO Working Papers, 596.

Magacho, G., Espagne, E., & Godin, A. 2023. Impacts of the CBAM on EU trade partners：consequences for developing countries. *Climate Policy*, 24(2)：243－259.

Metcalf, Gilbert E. and James H. Stock. 2020. Measuring the Macroeconomic Impact of Carbon Taxes. *AEA Papers and Proceedings* 110：101－06.

McKibbin, W. J., Wilcoxen, P. J., Braathen, N. A., and Levinson, A. 2008. *The Economic and Environmental Effects of Border Tax Adjustments for Climate Policy*. In Brookings Trade Forum, Brookings Institution Press.

Mortha, A., Arimura, T., Rakeda, S., and Chesnokova, T. 2023. *Effect of a European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on the APAC Region：A Structural Gravity Analysis.* RIETI Discussion Paper Series.

UNCTD, 2021. *A European Union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Implica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Economic Impact of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CBAM) on Korean Firms

Ree, Chang-Seop* · Chun, Hong Min**

<Abstract>

This study utilizes available economic and statistical data from Korean companies to perform scenario analyses targeting the year 2030, when the EU's CBAM is expected to be fully implemented. The analyses consider factors such as carbon pricing, direct emissions, South Korea's low-carbon policies, and the extent of CCUS policies. Efforts were made to conduct these scenario analyses independently and objectively, and the results were supplemented with expert interviews and comprehensive discussions on government policy support.

The empirical analysis indicates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EU's CBAM could impose a burden of approximately 1 trillion won on Korean companies, even after considering exports to the EU. Despite implementing low-carbon and CCUS policies, this burden is not significantly reduced, indicating the need for proactive legislative and policy measures related to tax and finance to alleviate corporate burdens. Particularly, since the EU CBAM represents a historically unique policy, it is expected to be challenging for companies to prepare individually. Therefore, it is deemed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provide policy directions and information in a blueprint format in advance.

<Key words>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Low-carbon Policy, CCUS Policy, Tax and Financial Policy

*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Sejong University (E-mail : crhee2@sejong.ac.kr)

** Full Professor, Business Department, Sungshin Women's University (E-mail : hmchun@sungshin.ac.kr)

상속세법상 밸류업 기업에 관한 연구

심 충 진
(건국대학교)

상속세법상 밸류업 기업에 관한 연구*

심충진**

〈요 약〉

본 연구는 이론적 연구로서 상속세법상 밸류업 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할 때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내용을 세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법과 주주환원율 이외 추가적인 허용 요건을 제시하는데 있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서 명확하게 제정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인지를 판단할 때 필요한 기업의 업종 구분, 중소·중견기업 구분, 대표이사와 그 가족의 근무 현황(직책 포함)을 포함하며, 약식 재무정보, 사업현황 진단, 지표분석은 삭제한다. 과세요건의 명확성을 위해 시장평가는 PBR과 PER, 자본효율성에는 ROE, COE, 주주환원에는 배당금액,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성장성에는 영업이익률, 총자산 증가율, 건전성에는 부채비율만을 공시 요건으로 한다.

둘째, 기업지배구조 투명성의 평가 항목을 주주 관점에서 배당정책 및 배당계획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보, 현금배당 예측 가능성 공시, 모든 주주를 위한 소통채널 확보, 주주변동 내역 즉시 공시가 필요하지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제출기업이 아닐 경우 전자투표실시 여부는 강제 평가항목에서 배제한다. 이사회 측면에서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사외이사 운영, 이사회 개최 및 결의내용 공시,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이 필요하지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제출기업이 아닐 경우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는 강제 평가항목으로 하지 않았다. 감사기구 측면에서 내부감사기구(감사위원회, 내부감사)에 회계·세무 또는 재무 전문가의 참여, 공인회계사의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공시 이외 투명성 실천 여부에 대한 사후 검증절차도 필요하다.

셋째, 세법 개정안에서 제시한 주주환원율 대신 다음의 3개 요건 중 2개 이상의 요건이 충족되면 주주환원율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 ① 자기자본이익률(ROE) > 자기자본비용(COE), ② 배당성향 > 자기자본비용(COE), ③ 기업가치 증가율 > 은행 평균 정기예금 이자율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의 150%

본 연구 결과는 상속세법상 가업상속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할 경우 밸류업 기업의 범위 또는 요건을 설정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주제어〉 밸류업, 기업가치 제고, 기업지배구조, 가업상속공제, 주주환원율

* 본 연구는 2024년 6월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한국조세제정연구원)" 발표자료를 수정·보완한 것임.
**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chjshim@konkuk.ac.kr

Ⅰ. 서 론

최근 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1]에 의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는 주식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주식 가치평가 수준이 유사한 외국 상장기업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현상을 말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 원인으로는 배당금 지급 등 주주환원의 미흡과 재무적 특성으로는 낮은 수익성과 성장성 그리고 취약한 기업지배구조가 있다. 박성욱 외2인(2024)의 연구에서도 2023년 기준 한국기업 평균 PBR(주가순자산비율 : 1.0)은 선진국의 평균 PBR 3.2, 신흥국의 평균 PBR 1.7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다.

정부도 기업의 지속가능성 유지와 기업의 건전한 성장·발전을 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2024년 5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여 위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공시항목으로 선정하여 기업 스스로 기업정보를 시장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내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정보를 선택하고 “기업 밸류업 통합페이지”[2]에 공시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기업 밸류업(value－up)을 위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 중 기업 밸류업 우수법인에 대해서는 매년 5월 10개 기업을 선정하여 경제부총리상(1사), 금융위원장상(3사), 거래소 이사장상(6사)을 수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금 번 7월 상속세 관련 세법 개정안에서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코리아 디스카운를 해소하기 위해 밸류업 기업에 해당될 경우 가업상속공제한도액을 현행보다 2배 상향하였다. 세법 개정안에서 밸류업 기업이라고 명시했지만 상법이나 세법에서 밸류업 기업에 대한 개념 정의가 명확하게 제시된 것은 없다. 다만, 세법을 개정하면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고 당기순이익에서 배당금과 자사주 소각액의 합계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동종업종보다 120% 이상 높은 기업을 밸류업 기업으로 간주하고 있다.

회계적 측면에서 경영자는 주주등 외부정보이용자에게 기업의 재무정보 또는 비재무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들이 합리적 투자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경영자는 회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기업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거래소도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포함될 보고 내용은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금 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밸류업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시하

1)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분석(김준석, 강소현, 이슈보고서 23－05), 자본시장연구원

2) https://kind.krx.co.kr/main.do?method=loadInitPage&scrnmode=1

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요건 중 하나로 포함하고 있다. 기업이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계획서 제출만으로 세제혜택을 부여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회계상 밸류업 기업과 세무상 밸류업 기업을 동일시 할 수 있는지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세법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의해 과세요건과 부과, 징수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법률이나 그 위임규정에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며 불확정 개념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밸류업 기업에 대한 상속세 세제혜택을 부여할 때에도 그 요건에 해당하는 공시 항목과 내용을 세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 기업보다는 기업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인 기업이 상대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더 높고 우리 경제에 더 큰 기여를 한다. 가업상속이나 가업승계를 통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인 기업을 밸류업 기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금 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기업가치 제고의 판단 요건으로 배당금지급과 자사주 소각액만으로 판단했는데, 기업가치는 주식시장에서 주식가치로 나타나며, 주주 입장에서는 자본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도 중요하다.[3] 이에 밸류업 기업을 판단하는 요건으로는 세법 개정안 이외 다른 평가 항목도 포함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상속세법상 밸류업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할 때 회계상 자율공시되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내용을 상속세법에서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법과, 밸류업 기업을 판단할 때 주주환원율 이외 추가적인 허용 요건을 제시하는데 있다.

논문의 구성은 서론에 이어 제Ⅱ장에서는 상속세법상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살펴보고 제Ⅲ장에서는 밸류업 기업에 대한 고찰, 제Ⅳ장에서는 밸류업 기업 요건에 대한 세법 개정안의 한계점을 설명한다. 제Ⅴ장에서는 가업상속 지원을 위한 밸류업 기업의 요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며, 제Ⅵ장에서는 결론을 기술한다.

Ⅱ. 상속세법상 가업상속공제제도

1. 가업상속공제 대상자

현행 가업상속공제 대상자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의 상속(이하

3) 이상철・이윤근(2017, 57)의 연구에 의하면 토빈－q를 시차변수로 측정하여 검증한 결과 총자산순이익률은 기업가치에 5% 유의수준에서 양(＋)의 유의성이 있다.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상증세법 §18의2). 가업상속공제 요건으로는 매출액기준과 10년 이상 계속 기업을 경영해야 하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요건은 <표 1>에 제시한 내용을 충족해야 한다.

〈표 1〉 가업상속공제 요건

구분	요건
공통 요건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 평균액 5,000억 미만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
중소기업	<아래 모든 요건 충족해야 함> ① 시행령 [별표1]에 규정한 농업 등 특정 업종 영위 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 규모기준(매출액) 이내일 것 ③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을 것,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영위하지 아니할 것 ④ 자산총액 < 5,000억원
중견기업	① 시행령 [별표1]에 규정한 농업 등 특정 업종 영위 ② 중소기업이 아닐 것 ③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또는 법인)이 해당기업의 주식(출자지분)의 30% 이상 소유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④ 직전 3개년 평균매출액 < 5,000억원

(주) 개인사업자 포함

2. 밸류업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 세법 개정안

가. 취지 및 가업상속공제 확대 요건

최근 정부는 기업의 지속 성장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 및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우대정책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밸류업 우수기업 등에 대해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업상속공제한도를 확대하였다. 다만,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에 대해서는 한도가 없다. 금 번 7월 세법 개정에서 제시한 밸류업 기업의 범위는 <표 2>와 같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과 주주환원 정책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표 2〉 밸류업 기업의 요건

구 분	요 건(동시 충족)
① 기업가치 제고 계획	5년간(2025년부터 2029년까지)「기업가치 제고 계획」공시해야 함
② 주주환원 정책	5년간(2025년부터 2029년까지)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환원액(배당금＋자사주 소각액) 비율이 업종별 평균의 120% 이상일 것

금 번 개정안에 따르면 중견기업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기존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였고, 공제한도의 경우 ① 밸류업, ② 스케일업 우수기업은 기존의 2배로, ③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은 한도를 없애는 방향으로 한도를 상향조정하였다.

나.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 방안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4] 밸류업 기업에 해당될 경우 공제한도는 300억원에서 600억원, 400억원에서 800억원,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2배를 증액하였다.

〈표 3〉 가업상속공제 한도 개정안

피상속인 경영기간	공제한도(주1)	2024.7.개정안(주2)
10년 이상 ~ 20년 미만	300억원	600억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	400억원	800억원
30년 이상 ~	600억원	1,200억원

(주1) 2023년 1월 1일 개정 시행, 개정 전 금액은 200억원, 300억원, 500억원임
(주2) 밸류업 기업에 대한 공제확대 안

3. 피상속인 요건

피상속인은 주식보유 기준과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다음과 같이 충족하여야 한다.

4) [①중견기업 + ②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가액] > 해당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아니할 경우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2배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배제 규정이 적용된다.

〈표 4〉 피상속인의 요건

주식보유 기준	피상속인(최대주주 포함) 지분 40%(상장법인 20%) 이상+10년 이상 계속 보유
대표이사 재직 요건 (3가지 중 1가지 충족)	①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대표이사 재직 ② 10년 이상의 재직(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시) ③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4. 상속인의 요건

상속인의 요건은 <표 5>와 같으며 연령, 가업종사, 취임기준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표 5〉 상속인의 요건

연령	18세 이상
가업종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함 <예외 규정> ①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시 ② 피상속인 천재지변 및 인재 등으로 사망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병역·질병 등의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봄
취임기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취임 및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배우자	상속인의 배우자가 요건 충족시 상속인 요건 충족으로 간주함

5. 사후관리 요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속세가 부과된다.(상증세법 §18의2⑤)

① (가업유지)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주된 업종을 변경(중분류 내 변경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시 예외)하는 경우

② (가업종사)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지분유지)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④ (고용확대)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정규직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

세기간(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2)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6. 가업상속공제 이용실태

가. 최근 12년간 신고 건수

2011년 46건, 2016년 76건, 2022년 147건으로 증가하고 있음

나. 최근 12년간 가업상속공제금액

2011년 325억원, 2016년 3,183억원, 2022년 3,429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다. 평가 : 증가추세임. 이는 창업주의 고령화에 따른 상속의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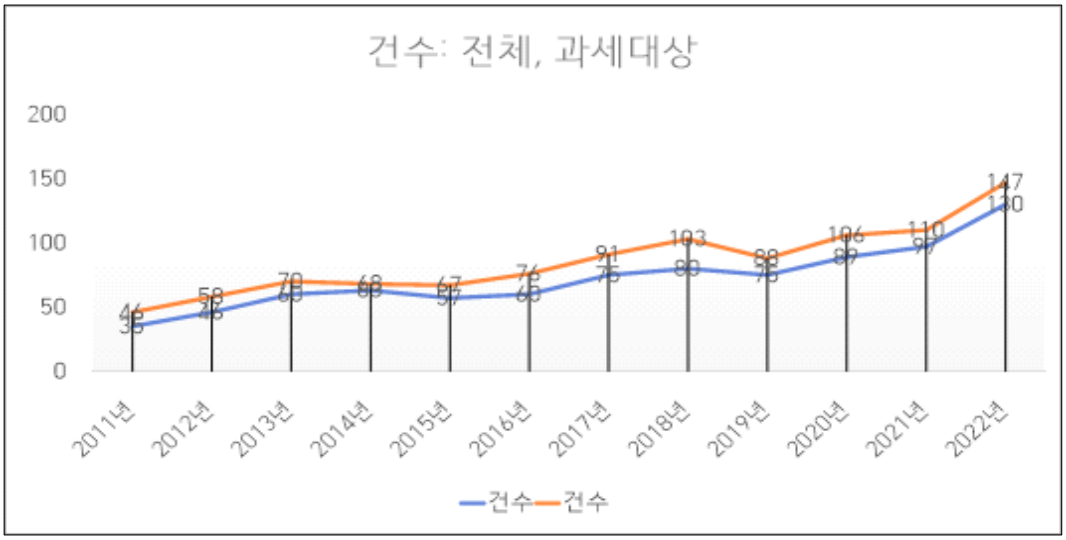
〈표 6〉 가업상속공제신고 건수와 공제금액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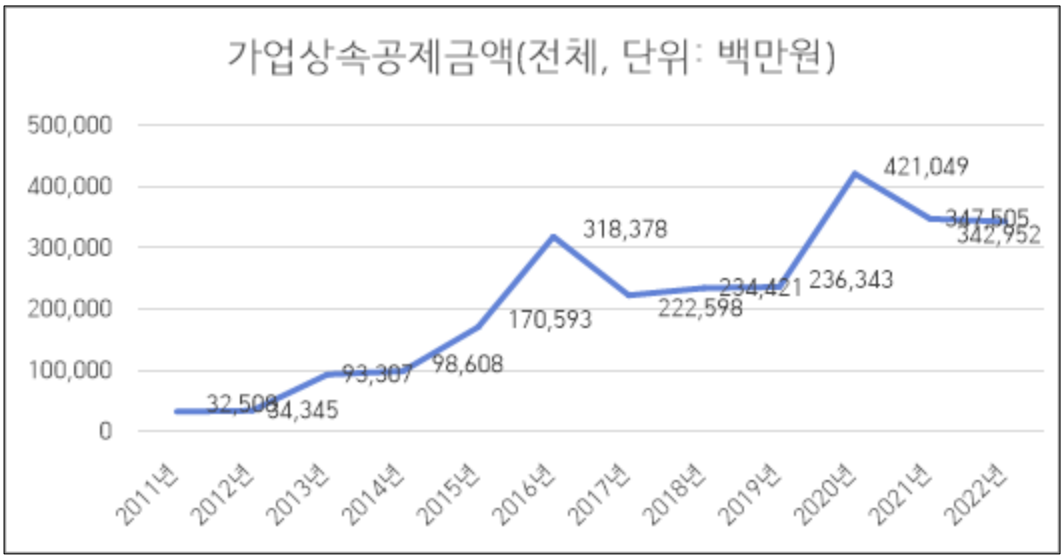
귀속연도	과세		과세미달		합계	
	건수	공제금액	건수	공제금액	건수	공제금액
2011년	35	30,091	11	2,417	46	32,508
2012년	46	30,707	12	3,638	58	34,345
2013년	60	86,694	10	6,613	70	93,307
2014년	63	94,405	5	4,203	68	98,608
2015년	57	164,454	10	6,139	67	170,593
2016년	60	295,420	16	22,958	76	318,378
2017년	75	189,667	16	32,931	91	222,598
2018년	80	212,724	23	21,697	103	234,421
2019년	75	224,053	13	12,290	88	236,343
2020년	89	401,109	17	19,940	106	421,049
2021년	97	326,544	13	20,961	110	347,505
2022년	130	327,932	17	15,020	147	342,952

(자료) 국세통계포탈 : 접속일자 2024.06.16.

〈그림 1〉 가업상속공제 신고 건수 : 전체, 과세대상



〈그림 2〉 가업상속공제금액(전체)



Ⅲ. 밸류업(value-up) 기업에 대한 고찰

1. 밸류업(value－up : 기업가치를 높이는) 기업의 의미

가. 재무회계적 의미

밸류업 기업이란 회사가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면서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와 채권자뿐만 아니라 근로자 등 회사의 내·외부 정보이용자에게 투명한 경영활동을 제공하여 기업의 본질적(내재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나. 밸류업(value－up) 기업의 한글 용어

밸류업은 가치를 향상시키는 의미로, 밸류업 기업은 현재 저 평가된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지만 수정안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한 기업”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⑴안) 기업가치를 높이는 기업	(장점) 한국거래소 「기업가치 제고」의 용어를 한글화함 (단점) 제고(提高) : 높이는 것의 뜻으로 한자를 사용하지 않아 압축되지 않은 느낌이 듬 (수정안) 기업가치를 제고한 기업
⑵안)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 기업	(장점) 한글로 이해하기는 쉽지만, 장문으로 기술됨 (단점) 모든 기업이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데 별도 세법 조문에 해당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 수 있음
⑶안) 기업가치 제고	(장점) 용어의 통일성 : 한국거래소 자율공시 항목임 (단점) 회계적 관점과 세법적 관점에서의 차이점이 반영되지 않음

다. 기업의 자율성 강조

현재 한국거래소에서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2024년 5월에 발표하였다. 현재 한국거래소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상장기업이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수립하는 발전 전략이라고 한다. 이러한 발전 전략을 통해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투자자들로부터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이는 다시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선순환적 자본시장 구축을 통해 기업, 투자

자, 시장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으며, 우리 상장기업과 한국 증시 전체가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한다. 즉, 상장기업과 투자자 중심으로 정의되고 있다.

라. 기본 방향과 진행사항

한국거래소에서 공시하고 있는 밸류업 기업의 기본방향은 상장기업이 회사의 현황진단과 목표설정, 계획수립 및 이행・소통을 통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강화하는데 있다. 이러한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통해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이 투자자들로부터 선택을 받도록 적극 지원하려는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를 위해 스튜어드쉽을 반영한 코리아 밸류업 지수・ETF를 개발하고 있다. 2024년 9월 24일 '코리아 밸류업지수'를 발표하였다.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100종목은 주주환원 및 자본효율성이 반영된 ROE(자기자본이익률)가 높은 기업들이다.

2. 한국거래소 자율공시 항목인「기업가치 제고 계획」내용

가. 의의

한국 증시의 저평가 현상,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은 필요하다. 기업가치란 기업이 보유한 자산과 미래현금흐름 등을 기반으로 산정되는 총가치로서, 기업의 경영성과, 성장 가능성, 시장 환경, 사회적 책임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된다.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증시를 통해 조달한 자본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주주와의 관계에서 소통과 환원을 확대하는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나.「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핵심 특징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5대 핵심은 자율성, 미래지향성, 종합성, 선택과 집중, 이사회 책임이다.

〈표 7〉「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5대 핵심 특징

핵심 특징	내 용
① 자율성	• (기업자율)「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수립, 공시, 참여 여부 판단
② 미래지향성	• 과거, 현재의 현황＋미래의 계획을 적극적으로 설명
③ 종합성	• 종합보고서 성격＝f(사업보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주요경영사항공시 등) • 종합적・입체적 시각에서 현황을 진단하고 목표・계획을 수립하여 기업의 현재 및 미래상을 주주 및 시장참여자에게 제기한다.

〈표 7〉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5대 핵심 특징 (계속)

핵심 특징	내 용
④ 선택과 집중 가능성	모든 사항을 열거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가치 제고에 의미가 크고,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소통할 필요가 있는 내용에 초점을 두고 작성함
⑤ 이사회 책임	이사회의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친 경우, 개최일자, 심의내용 등 기재

(1) 자율성

기업이 자신의 본질적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투명하게 회사 정보를 제공할지는 기업의 자율에 있다. 비상장기업은 상장기업에 비해 공개시장에서 주식이 공개되지 않아 기업의 많은 정보가 투명하게 공시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상장기업 또한 기업 경영활동에 대한 중요한 계획은 내부 이사회에 보고되지만 외부 투자자까지 공개되지 않고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

(2) 미래지향성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은 상장회사가 과거에 발생한 거래나 사건을 중심으로 공시해야 될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밸류업 기업은 연초 그리고 중장기적 경영계획(배당금 지급계획, 투자계획, 자본조달계획, 성과배분계획 등)을 제시하는데 그 핵심이 있다.

(3) 종합성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는 기업가치 제고에 초점을 두어 기업정보를 사업보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등으로 구분하여 종합적이고 입체적 시각에서 현황을 진단하고 목표를 계획하고 수립하여 기업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주주와 시장참여자에게 제시한다.

(4) 선택과 집중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는 기업의 업종, 사업구조 등 특성을 반영하여 기업가치 제고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주주 등과 소통할 필요가 있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한다. 이는 종합적 측면과 달리 개별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강조할 부분을 선정하여 공시한다.

(5) 이사회 책임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다. 연초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위한 연차계획 및 중장기계획 수립시 이사회의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친 경우 이사회 개최일, 심의내용 등을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기재한다.

다. 공시방법 및 공시주기

자율공시 항목으로 연 1회 등과 같이 주기적으로 공시할 것을 권장한다. 공시의 수정・보완이 가능하다.

라.「기업가치 제고 계획」기재 사항 요약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포함될 기재 사항을 요약하면 <표 8>과 같다.

〈표 8〉 「기업가치 제고 계획」기재 사항

구 분	기재 사항		
① 사업 개요	기본적인 기업정보	기업의 업종, 연혁, 제품・서비스, 재무실적 등	
② 현황진단	사업현황 진단	사업모델, 시장환경, 경쟁우위요소, 리스크요인	
	지표선정	재무지표	시장평가, 자본효율성, 주주환원, 성장성 등
		비재무지표	기업지배구조(기업지배구조보고서 참조)
	지표분석	시계열분석, 산업분석, 경쟁사와의 분석 등 파악	
③ 목표설정	중장기적 목표 제시	계량화된 수치 또는 비재무지표 가능 : 수정보완 가능, 최소 3년 이상의 중장기 목표 제시, 구체적인 목표수준 및 도달시점 설정	
④ 계획수립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수립	현황진단에서 제시한 사업현황과 연계하여 계획수립 : 개별계획수립, 리스크요인 고지, 보상체계와 연계	
⑤ 이행평가	연 1회 주기공시	주기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기재	
⑥ 소 통	주주와 시장참여자와의 소통	소통현황, 계획, 실적 기재, 영문공시도 필요시 함	

마.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국내 증시에서 기업가치가 저평가되는 원인 중의 하나는 기업지배구조의 불투명성에 있다. 김여진 외 (2020)의 연구에 의하면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자발적 공시는 기업가치와 양(+)의 관계가 있다. 비재무지표 중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내용은 한국거래소의「기업지배구조보고서」가이드라인(2024년부터는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 대상이며 2026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기업이 대상 예정임)이 제시하는 공시항목 등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공시한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의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과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 현황이 드러나도록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기재항목을 모두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표 9>와 같다.

〈표 9〉 지배구조보고서 주요 내용

구분	주요 공시 내용	
① 기업개요	최대주주등(지분율), 업종, 주요 제품, 기업집단명, 요약 재무현황	
② 기업지배구조 정책	•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의 운영방향 및 중점사항(경영 투명성, 건전성, 안정성 확보, 견제와 균형 추구 등) • 지배구조 특징(이사회 내 사외이사 구성, 위원회 구성, 위원회 내 전문성 강화 등)	
③ 주주	핵심원칙1	주주의 권리 : 정보제공, 적법절차에 의한 권리 행사
	핵심원칙2	주주의 공평한 대우 : 공평한 의결권부여, 기업정보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노력
④ 이사회	핵심원칙3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의사결정, 경영진 감독기능
	핵심원칙4	이사회 구성 : 효율적 의사결정과 경영진 감독할 수 있는 구성
	핵심원칙5	사외이사의 책임 : 독립성, 경영진 감독·지원
	핵심원칙6	사외이사 활동의 평가 :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재선임 결정
	핵심원칙7	이사회 운영 :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의사결정, 효율성, 합리성
	핵심원칙8	이사회 내 위원회 :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
⑤ 감사기구	핵심원칙9	내부감사기구 : 감사위원회, 내부감사 등은 독립성 유지
	핵심원칙10	외부감사인(CPA) : 독립성, 공정성

바. 현재 공시 사례

한국거래소 자율공시규정에 의하여 상장회사가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면 된다. 2024년 9월 20일 현재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공시(안내공시 포함)한 기업은 40개 기업이다. 현재는 기업이 준비 중에 있어서 공시 및 공시 예고를 한 기업은 많지 않다.

〈표 10〉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공시 내용	해당 기업 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예고(안내공시)	28개 기업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	12개 기업

(주) kind.krx.co.kr 한국거래소 접속일자 : 2024.09.20.

사. 시사점

현행 한국거래소에서 자율공시항목으로 규정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는 중장기 경영계획과 주주와의 소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기업마다 공시내용이 다르다. 이러한 공시제도는 기업이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이행과정을 외부정보이용자에게 제시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실질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했다고 기업가치가 100% 증가되지는 않는다.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은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가치가 증가되지 않을 경우에도 상속세법상 가업상속공제한도 확대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는 한계점이 있다.

현재는 상장기업만 적용되므로 만약, 비상장기업까지 확대된다면 비상장 중소·중견기업은 상장기업의 자율공시항목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사항을 준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특히, 상장회사는 객관적인 주식가격이 있지만 비상장회사의 경우 주주환원 지표로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수익비율)을 사용할 경우 주가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시가 대용치)만을 사용해 되는지 아니면 회계법인에서 평가한 기업가치를 이용할지를 판단해야 한다.

Ⅳ. 밸류업 기업 요건에 대한 세법 개정안의 한계점

밸류업 기업이 될 수 있는 요건에 대한 명확성과 충분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금 번 세법 개정안에 의하면 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하는 밸류업 기업의 요건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1. 가이드라인에 의존한 위임입법의 한계

현행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자율에 의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자율

공시 내용은 한국거래소 가이드라인에 의해 회사가 자율적으로 공시 내용을 선택하므로 기업별로 공시 내용도 달라진다. 조세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한 규정을 한국거래소 가이드라인에 의존한다면 세법상 위임입법의 한계가 존재한다. 조세혜택을 부여하는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에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을 경우 세법적 측면보다 회계적 측면이 과도하게 반영되어 기업 간 공시항목의 불일치성과 불명확성이 높아진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기업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시될 필요가 있음에도 현재 공시항목에 대한 차별성은 없다.

2.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주주환원액 요건의 불확실성

주주환원액은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과 자사주 소각액의 합으로 측정되며 「업종별 평균」의 120% 이상이 되어야 한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하더라도 동종업종의 주주환원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경우 밸류업 기업에 해당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주주환원액 평가금액을 상대적 평가 방법으로 인해 실제 기업가치를 제고한 기업이 가업상속공제한도 추가 공제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다.

3. 자본효율성 평가 항목의 누락

투자자가 은행 예·적금, 채권 등 다른 투자안보다 기업에 주식투자를 하는 것은 다른 투자안 보다 주식 투자수익률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경영자가 주주가 투자한 자금으로 회사 자본을 효율적으로 운영[5]하여 투자자의 투자수익률 욕구를 충족했는지에 대한 평가 항목은 없다.

4. 주식가치 증대에 대한 평가 미반영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결과는 주식가치로 반영된다. 주식가치가 연초 대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될 경우 해당 기업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평가 항목은 없다. 예를 들면, 연초 대비 연말 주식가치 증가액 또는 증가율에 대한 인정 요건은 없다.

---

5) 자기자본이익률(ROE)로 측정할 수 있다.

5. 재무구조 평가항목의 자율성

세법 개정안에 의하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자율적 공시로 제한하고 재무비율에 대한 특별한 요건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재무구조는 기업가치에 큰 영향[6](백인영・최우석 2022, 144)을 미치나 재무구조를 대변하는 부채비율 기준 평가 항목은 없다.

6. 주주환원율 평가시 동종업종 범위의 명확성

주주환원율 계산시 동종업종의 주주환원율을 기업 스스로 계산해야 되는데, 산업분류표[7]상 대분류, 세분류(중분류), 세세분류(소분류) 중 어떤 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판단해야 한다. 세세분류(소분류)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비교대상 기업이 없을 경우 동종업종의 판단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7.「기업가치 제고 계획」공시 후 검증절차의 필요성

「기업가치 제고 계획」공시 후 평가를 통해 조세정책 목적을 달성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때 기업이 공시한 내용에 대한 검증절차가 필요하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내 공시항목에 대해 단순히 공시를 했다고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기에는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강하다. 밸류업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내 평가항목의 달성 여부에 따라 부여할 필요가 있다.[8]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검증절차가 필요하다. 검증절차의 주체와 검증결과를 어떻게 공시 또는 보고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는「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기업 스스로 자율공시로 하고 있지만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요건에 맞는 계획서 내용이 공시되었는지 사후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

6) 백인영・최우석(2022)연구 결과, 부채비율과 기업가치 간에는 1% 유의수준에서 음(−)의 관련성이 있다.

7)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고시(통계청 고시 제2024−2호), 2024.7.1. 시행

8) 이상철・이윤근(2017, 57)연구에 의하면 기업지배구조 평가점수로 측정한 기업지배구조는 기업가치(토빈 Q)에 1% 유의수준에서 양(+)의 유의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8. 상장 여부에 대한 차별성 존재

현재 밸류업 기업은 상장기업만 해당된다. 비상장기업의 경우 밸류업 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서 상장기업만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할 수 있지만 향후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도 밸류업 기업에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Ⅴ. 가업상속 지원을 위한 밸류업 기업의 요건에 대한 개선방안

밸류업 기업의 요건에 대한 한계점을 바탕으로 가업상속 지원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한 위임입법을 통한 명확화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포함될 내용은 한국거래소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에 의존하기 보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서 조세혜택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할 구체저인 내용은 <표 11>과 같다.

〈표 11〉 기업가치 제고 계획 내용의 명확성

① 사업개요	기본적인 기업정보	• 회사설립일, 상장여부 • 기업의 업종 및 업종 분류 • 중소·중견기업 구분 • 대표이사와 그 가족의 근무 기간(직책 포함) • 약식 재무정보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 → 삭제 가능

〈표 11〉 기업가치 제고 계획 내용의 명확성 (계속)

② 현황진단	사업현황 진단	• 삭제 가능	
	지표선정	재무지표	(시장평가) PBR, PER (자본효율성) ROE(자기자본이익률), COE(자기자본비용) (주주환원) 배당금액,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성장성) 영업이익률 또는 총자산증가율 (건전성) 부채비율
		비재무지표	<표 12>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투명성 충족 요건
	지표분석	• 시계열분석, 산업분석, 경쟁사와의 분석 등 파악 → 삭제 가능	
③ 목표설정	중장기적 목표 제시	• 계량화된 수치 또는 비재무지표 가능 : 매년 수정보완 가능	
④ 계획수립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수립	• 단기 및 중장기적 계획수립 －단계별 계획수립(고용계획, 투자계획 포함), 리스크요인 고지, 보상체계와 연계	
⑤ 이행평가	연 1회 주기공시	• 주기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기재	
⑥ 소 통	주주와 시장참여자와의 소통	• 소통현황, 계획, 실적 기재 • 외국인 주주가 있을 경우 영문공시	

(1) 기업 개요 공시

기업 개요에는 기업의 일반사항을 포함하되, 가업상속기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항목도 추가한다. 다만, 약식 재무제표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신고하는 재무정보가 있으므로 생략한다.

① 회사설립일, 상장여부

② 기업의 업종 및 업종 분류 : 가업상속 업종요건 체크됨

③ 중소·중견기업 구분 : 가업상속기업 규모 체크됨

④ 대표이사와 그 가족의 근무 기간(직책 포함) : 피상속인, 상속인 요건 체크됨

⑤ 약식 재무정보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를 통해 가업상속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2) 현황진단

성과와 연결성이 낮은 사업현황 진단과 지표분석은 세법규정에서는 삭제 가능하며, 지표선정에서는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될 항목을 제시한다.

(3) 목표설정

현행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중장기적 목표 제시는 계량화된 수치 또는 비재무지표 가능(수정 보완 가능)하다고만 되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수익성(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안정성(부채비율, 유동비율, 당좌비율, 이자보상비율), 성장성(매출액증가률, 이익증가율, 총자산증가율, 자기자본증가율)을 중심으로 목표를 설정한다.

(4) 계획수립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수립으로 단기 및 중장기 계획수립. 단계별계획수립, 리스크요인 고지, 보상체계와 연계한다.

(5) 이행평가

연 1회 주기 공시를 통해 주기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를 기재한다.

(6) 소통

주주와 시장참여자와의 소통으로 소통현황, 계획, 실적 기재, 필요시 영문공시도 한다.

2. 재무지표 평가방법

가. 자기자본이익률(ROE)과 자기자본비용(COE)을 활용한 평가방법

자기자본비용은 주주가 요구하는 요구수익률이며, 경영자는 회사 자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이 자기자본비용(COE)보다 크다면 기업은 추가적인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밸류업 기업에 포함될 수 있다.

나. 주주환원율의 절대평가 도입

해당 기업의 주주환원율이 절대적으로 높아도 동종업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을 경우 밸류업 기업에 해당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주주환원율의 절대평가 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즉, 배당성향이 자기자본비용보다 높을 경우 밸류업 기업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한다.

다. 주식가치 증대를 평가 항목에 도입함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주식가치가 상승할 경우 해당 기업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한 기업으로 판단된다. 연초 대비 연말 기업가치의 증가율이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 보다 150% 이상 증가할 경우 밸류업 기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라. 재무구조 관련 부채비율의 요건

기업의 가치는 주주환원액 이외 재무구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부채비율 평가 항목을 밸류업 기업 요건에 포함시킬 수 있다. 직전연도 업종 평균 부채비율보다 낮거나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이 1.0 이하이어야 한다.

마. 동종업종 범위의 명확화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고시(2024.7.1. 시행)에 따른 분류 중 세분류 또는 세세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관련성이 가장 높은 것은 세세분류(소분류)이지만 비교대상 기업이 없거나 3개 이하일 경우는 세분류(중분류)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범위를 확대한다.

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후 검증 절차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내용에 대한 재무적 지표에 대한 검증 절차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지만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독립적인 제3자의 검증 절차를 통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시 해당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의 검증 절차를 받게 한다.

사. 상장 여부에 따른 조세의 중립성 유지

현재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므로 향후 비상장기업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충족 여부 판단

국내 증시에서 기업가치가 저평가되는 원인 중의 하나는 기업지배구조의 불투명성에 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의무법인(2024년부터 직전년도 연결재무상태표 기준 자산총액 자산 5천억원 이상, 2026년부터 전체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은 2025년 제출 보고서부터 밸류업 계획

의 공시 여부와 접근방법, 투자자와의 소통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밸류업 기업이 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갖추기 위한 요건은 다음 <표 12>와 같다.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다음의 평가항목을 모두 충족할 경우 「기업가치 제고 계획」 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내용이 충족된 것으로 한다. 즉,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요건을 확인하는 사후 검증절차도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9]는 2013년 아베 내각에서 '일본재흥전략'을 발표하면서 기업의 경쟁력에 기반하여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기업지배구조를 개편하고 스튜어드쉽 코드[10]를 정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를 개혁하였다.

밸류업 기업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표 12>의 평가항목 모두를 충족해야 되는지 아니면 일부만 충족해도 밸류업 기업에 해당된다고 할지는 추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표 12〉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충족 요건

항목	평가 항목	비고
주주	① 전자투표실시 여부	△
	②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③ 현금배당 예측 가능성 공시	○
	④ 모든 주주(소액주주, 해외투자자, 외국인 주주 등)를 위한 소통채널 보유	○
	⑤ 주주변동 내역 즉시 공시	○
이사회	①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②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
	③ 사외이사 운영	○
	④ 이사회 개최, 결의내용 등 공시	○
	⑤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
감사기구	① 내부감사기구(감사위원회, 내부감사)에 회계・세무 또는 재무 전문가 참여	○
	② 공인회계사의 외부회계감사	○

(주) △ : 다만, 기업지배보고서 의무제출기업이 아닐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충족 여부는 임의 평가항목으로 한다.

9) 삼일회계법인, 2024.8., Value 業 하라!, p.19 참조

10) 한국ESG기준원(https://www.cgs.or.kr/business/stewardship_tab02.jsp, 접속일자 2024.09.26.)에서 공시한 스튜어드쉽 코드 목적은 다음과 같다.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은 국내 상장사에 투자한 기관투자자가 타인의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세부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다.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를 잘 점검하고 우려사항이 발견되면 투자대상회사와 적극 대화하는 등 주주활동을 통해 수탁자로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이는 회사의 중장기적 발전을 유도하고, 고객과 수익자의 이익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자본시장과 경제 전반의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다.

4. 소결

상속세법상 지속 가능한 가업상속기업에 대해 추가적인 공제한도액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밸류업 기업에 해당되어야 한다. 밸류업 기업은 회계적 관점에서 출발하지만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한국거래소 가이드라인 내용이 아니라 위임 입법 규정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서 조세혜택 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기업가치를 제고한 기업을 판단할 때 금 번 세법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주환원율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요건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때 한국거래소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 보다 좀 더 정제되고 구체적인 내용을 세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경우는 핵심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별도 규정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에서 제시한 주주환원율[11] 대신 다음의 3개 요건 중 2개 이상의 요건이 충족되면 주주환원율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

① 자기자본이익률(ROE) > 자기자본비용(COE)

② 배당성향 > 자기자본비용(COE)

③ 기업가치 증가율 ≥ 은행 평균 이자율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의 150%

Ⅵ. 결 론

금 번 7월 세법 개정안에 의하면 밸류업 기업은 가업상속공제한도액을 현행보다 2배로 확대한다. 밸류업 기업의 요건으로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공시와 주주환원율이 충족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회계상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의해 공시할 경우 위임 입법의 한계점을 검토하고 시행규칙에서 공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주주환원율의 요건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한국거래소 가이드라인보다 세법적 측면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조세혜택 요건을 명확히 한다. 공시 내용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인지를 판단할 때 필요한 기업의 업종 구분, 중소·중견기업 구분, 대표이사와 그 가족의 근무 기간(직책 포함)을 포함한다. 과세표준 및 세액

11) (배당금+자사주 소각액)÷당기순이익≥동종업종 평균의 120%

신고시 제공되는 재무정보가 있으므로 약식 재무정보의 공시와 성과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현황 진단과 지표분석은 생략한다.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재무지표와 관련된 현황진단에서 시장평가는 PBR과 PER, 자본효율성에는 ROE, COE, 주주환원에는 배당금액,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성장성에는 영업이익률, 총자산 증가율, 건전성에는 부채비율만을 공시 요건으로 하였다.

둘째, 기업지배구조 투명성의 평가 항목을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를 중심으로 명확히 하였다. 주주관점에서 배당정책 및 배당계획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보, 현금배당 예측 가능성 공시, 모든 주주를 위한 소통채널 확보, 주주변동 내역 즉시 공시가 필요하지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제출기업이 아닐 경우 전자투표실시 여부는 강제 평가항목에서 배제하였다.

이사회 측면에서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사외이사 운영, 이사회 개최 및 결의내용 공시,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이 필요하지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제출기업이 아닐 경우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는 강제 평가항목으로 하지 않았다. 감사기구 측면에서 내부감사기구(감사위원회, 내부감사)에 회계·세무 또는 재무 전문가의 참여, 공인회계사의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기업지배구조의 단순 보고 이외 실제 투명성을 달성했는지에 대한 사후검증절차도 필요하다.

셋째, 세법 개정안에서 제시한 주주환원율 대신 다음의 3개 요건 중 2개 이상의 요건이 충족되면 주주환원율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

① 자기자본이익률(ROE) > 자기자본비용(COE)

② 배당성향 > 자기자본비용(COE)

③ 기업가치 증가율 > 은행 평균 이자율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의 150%

본 연구 결과는 상속세법상 가업상속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할 경우 밸류업 기업의 범위 또는 요건을 설정하거나 밸류업 지수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

참고문헌

박성욱・김영우・김서현. 2024, “기업 밸류업에 관한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25(4) : 131－158.

김여진・안성희・황문호. 2020,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자발적 공시와 기업가치”. 세무와회계저널 21(2) : 127－156.

김준석・강소현. 2023,「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분석」, 이슈보고서 23－05, 자본시장연구원

백인영・최우석. 2022, “이연법인세자산의 기업가치관련성 및 기업지배구조의 역할”. 세무학연구 39(4) : 131－159.

이상철・이윤근. 2017, “기업지배구조가 효율성 및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효율성의 매개효과와 대리인문제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금융지식연구 15(3) : 33－73.

한국거래소. 2024.「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_____. 2024.「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해설서」

How should we prepare for the coming AGI Era?

강 철 승
(한국수산정책포럼)

How should we prepare for the coming AGI Era?

강철승*

〈요 약〉

국가 인프라(National Infrastructure)는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시설, 재화, 시스템, 서비스, 네트워크 등을 일컬은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간접자본 또는 사회기반시설로 불리나, 대부분 국가에서 복지 시설, 서비스와 차별화하기 위해 국가 인프라를 공식 용어로 사용하는 추세이다. 특히 안보, 국민 건강, 경제 안정, 환경, 정부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프라를 국가 핵심 인프라(National Critical Infrastructure 또는 Critical National Infrastructure)로 분류한다. 기술의 발전은 국가 인프라의 변화와 확장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생활 방식과 사회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산업의 창출에도 기여한다. 디지털 기술의 경제・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 서비스가 멈추면 경제・생활이 마비될 정도로 큰 타격이 발생했다. 2012년 딥러닝의 부활과 2016년 알파고의 등장으로 전세계는 시각・언어 분야 등에서 인공지능을 경쟁적으로 개발했다. 다만, 하나의 인공지능은 하나의 과업에만 활용 가능한 좁은 인공지능 위주로 개발되어, 범용 인공지능(AGI)으로의 도약에는 한계가 있다. 2020년부터 초거대 AI GPT−3가 전 세계에 공개되며, 인공지능 분야의 새로운 혁신을 촉발하고 범용 인공지능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후, 멀티모달 인공지능 DALL・E, 대화형 인공지능 Chat GPT 등 생성형 초거대 AI가 연달아 공개되며, 빅테크 기업 간 경쟁 가속화하고 있다. 초거대 AI는 다양한 과업을 수행하는 등 무한한 가능성이 확인되어, 향후 산업・사회 전 분야의 필수 인프라 역할 수행 전망이다.

국가 인프라로서 AI 인프라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국가 인프라로서 AI 인프라를 구축, 도입 및 활용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 사회 문제 해결과 공공 서비스 개선 등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경제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 둘째 사회 문제 해결과 공공 서비스 개선, 셋째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규제, 넷째 공공 안전과 보안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대체 AGI가 무엇이며, 그 빌전과정과 속도와 현황은 어떻게 진화되고 활용 범위와 다가오는 미래에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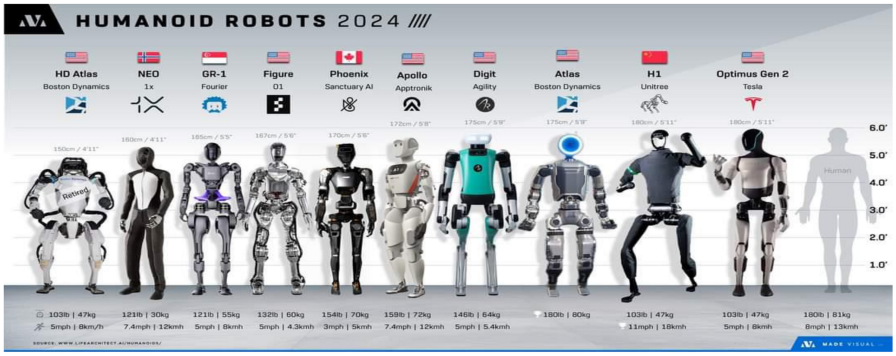
〈주제어〉 AI, 메타버스, 3D, 게임, 사이월드, 메타버스 경제, DX, AGI, 경영의사결정

* 한국수산정책포럼 대표


2024 韓國稅務學會
秋季學術大會發表資料
How should we prepare for the coming AGI Era?
일 시 :2024. 10 .18 (금)
장 소 : 서울 대학교
발표자 : 韓國水產政策포럼 代表 姜哲勝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i


AGI가 다가오는가?





요즘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



Generative AI
(생성 AI)

Artificial Intelligence는...

Natural = X



=



Artificial Intelligence는...

일일히 가르쳐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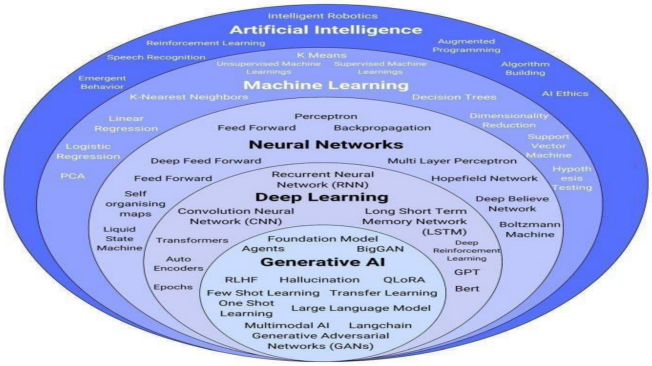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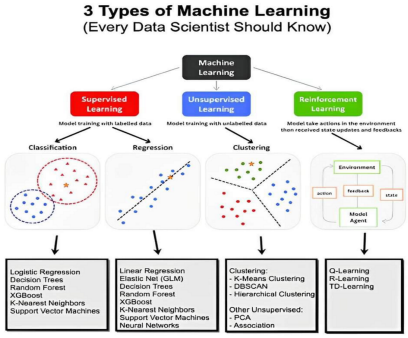
LLM이 인간처럼 추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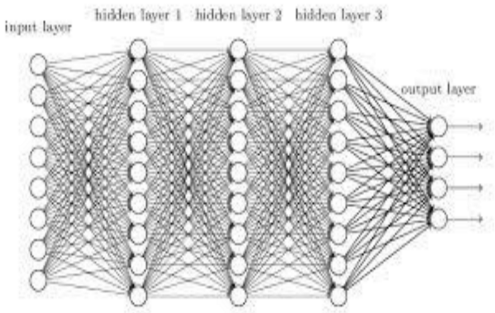
학습방법 = 알고리즘

Artificial Intelligence의 쉼없는 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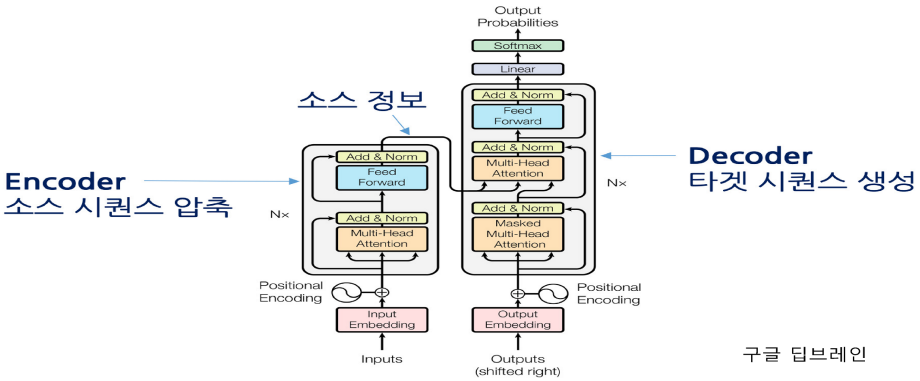


클래식 ML 그리고 뉴럴네트웍의 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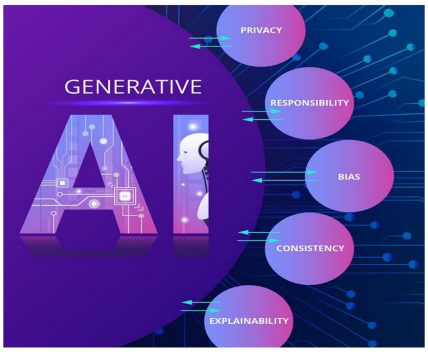


이제는 트랜스포머를 모두 채용하는 딥러닝....



구글 딥브레인

AI 미래의 투트랙....융합?



생성형 AI – 부정확한 답
오픈에이아이/구글



최적화 AI : 정확한 답변
딥마인드, 알파폴드2

최근 AI, Generative AI(생성AI)



분류/추론 인공지능
(Discriminative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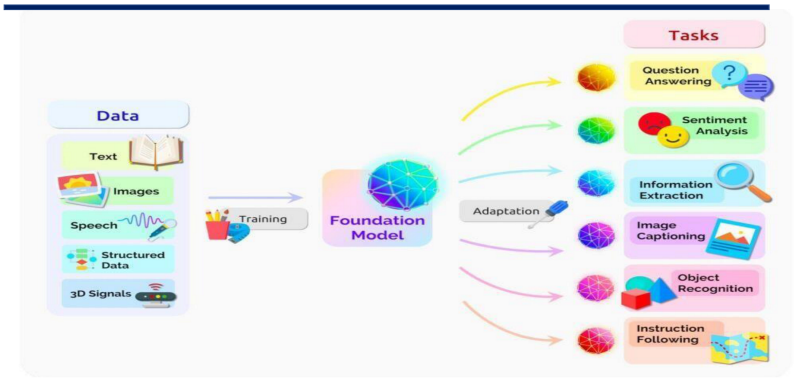
고양이

고양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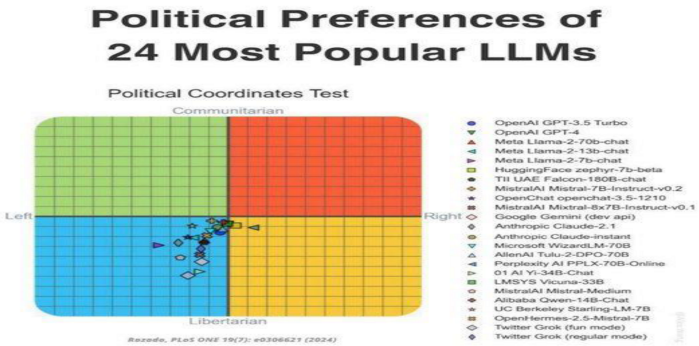
생성 인공지능
(Generative Model)



Generative AI(생성AI)..파운데이션 모델



Generative AI(생성AI)..전세계 주요 FM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선..

알고리즘 : 지도, 비지도가 아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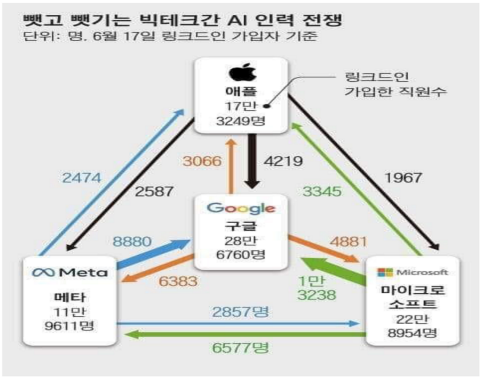
알고리즘은 누가?AI개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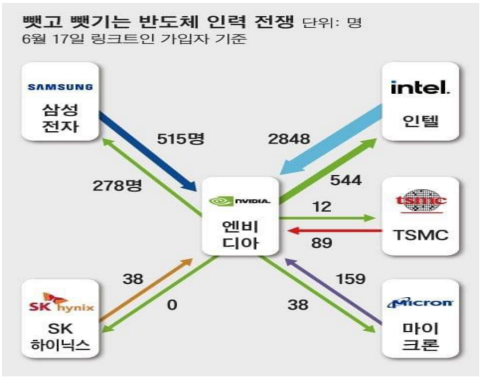
미국도 잘하는 AI개발자가 500명도 안된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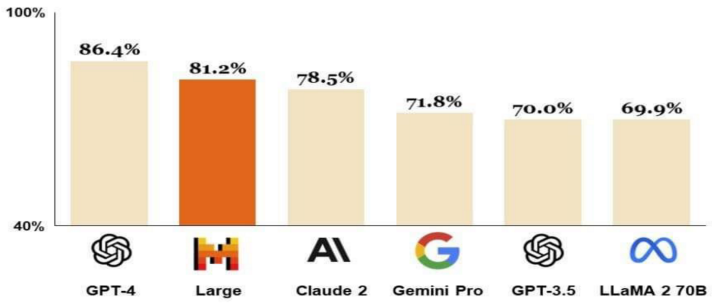
18

AI는 인력 전쟁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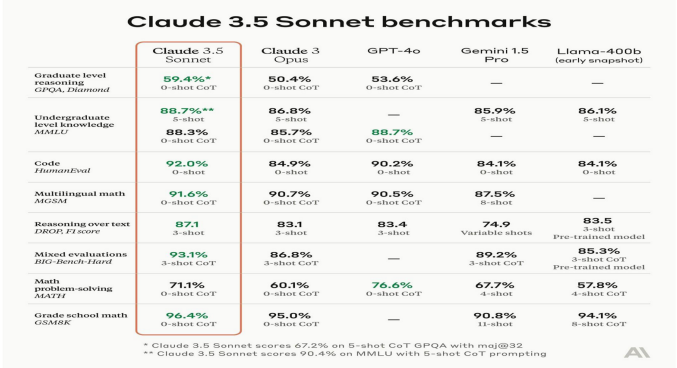




LLM, GPT4를 넘으려는 시도들이 올라오는, Claude, Mixtral



GPT4를 넘으려는 시도들이 올라오는, 제미나이, Claude, Mixtral, 라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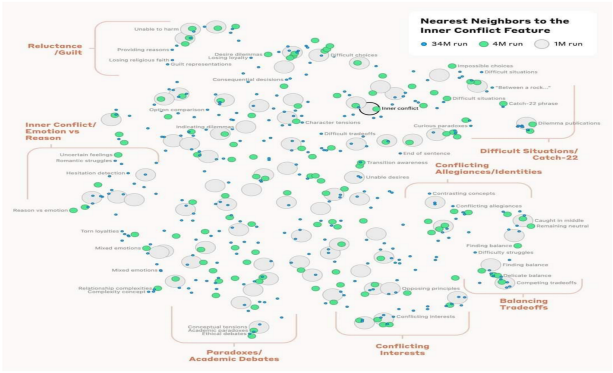


Claude 3.5 Sonnet benchmarks

	Claude 3.5 Sonnet	Claude 3 Opus	GPT-4o	Gemini 1.5 Pro	Llama-400b (early snapshot)
Graduate level reasoning *GPQA, Diamond*	59.4%* 0-shot CoT	50.4% 0-shot CoT	53.6% 0-shot CoT	—	—
Undergraduate level knowledge *MMLU*	88.7%** 5-shot 88.3% 0-shot CoT	86.8% 5-shot 85.7% 0-shot CoT	— 88.7% 0-shot CoT	85.9% 5-shot —	86.1% 5-shot —
Code *HumanEval*	92.0% 0-shot	84.9% 0-shot	90.2% 0-shot	84.1% 0-shot	84.1% 0-shot
Multilingual math *MGSM*	91.6% 0-shot CoT	90.7% 0-shot CoT	90.5% 0-shot CoT	87.5% 8-shot	—
Reasoning over text *DROP, F1 score*	87.1 3-shot	83.1 3-shot	83.4 3-shot	74.9 Variable shots	83.5 3-shot Pre-trained model
Mixed evaluations *BIG-Bench-Hard*	93.1% 3-shot CoT	86.8% 3-shot CoT	—	89.2% 3-shot CoT	85.3% 3-shot CoT Pre-trained model
Math problem-solving *MATH*	71.1% 0-shot CoT	60.1% 0-shot CoT	76.6% 0-shot CoT	67.7% 4-shot	57.8% 4-shot CoT
Grade school math *GSM8K*	96.4% 0-shot CoT	95.0% 0-shot CoT	—	90.8% 11-shot	94.1% 8-shot CoT

* Claude 3.5 Sonnet scores 67.2% on 5-shot CoT GPQA with maj@32
** Claude 3.5 Sonnet scores 90.4% on MMLU with 5-shot CoT prompting

LLM 내부 신경망 원리 파악.....



트랜스포머를 넘으려는 시도들이 올라오는, Mamba,,,



트랜스포머를 넘으려는 시도들이 올라오는, 팔콘 Mamba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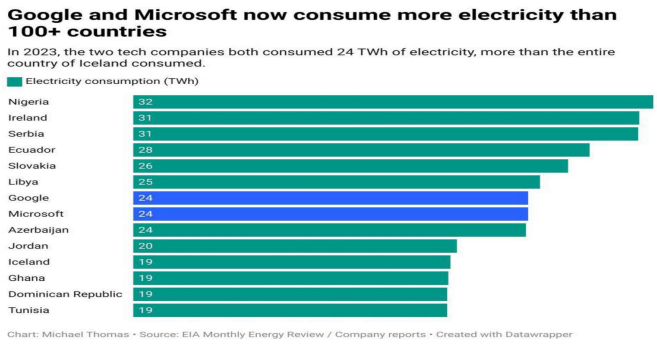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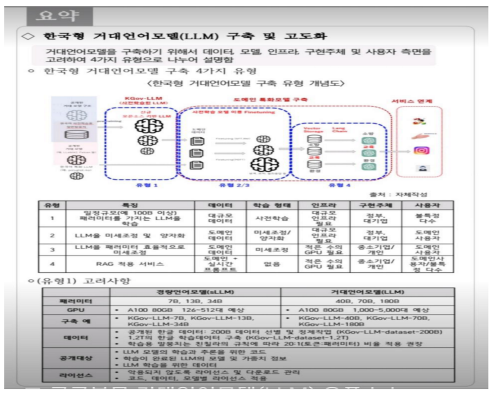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선..



파운데이션 모델, 전기세??



한국형 LLM 구축


요약

◇ 한국형 거대언어모델(LLM) 구축 및 고도화

거대언어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데이터, 모델, 인프라, 구현주체 및 사용자 측면을 고려하여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함

○ 한국형 거대언어모델 구축 4가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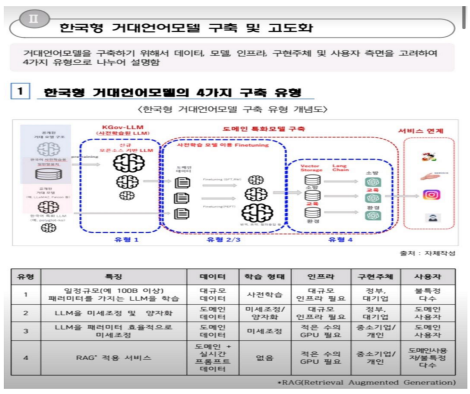
〈한국형 거대언어모델 구축 유형 개념도〉

출처 : 자체작성

유형	특징	데이터	학습 형태	인프라	구현주체	사용자
1	일정규모에 100B 이상) 파라미터를 가지는 LLM을 학습	대규모 데이터	사전학습	대규모 인프라 필요	정부, 대기업	불특정 다수
2	LLM을 미세조정 및 양자화	도메인 데이터	미세조정/ 양자화	대규모 인프라 필요	정부, 대기업	도메인 사용자
3	LLM을 파라미터 효율적으로 미세조정	도메인 데이터	미세조정	적은 수의 GPU 필요	중소기업/ 개인	도메인 사용자
4	RAG 적용 서비스	도메인 + 실시간 프롬프트	없음	적은 수의 GPU 필요	중소기업/ 개인	도메인사용자/불특정 다수

○ (유형1) 고려사항

경량언어모델(sLLM)	거대언어모델(LLM)
파라미터	7B, 13B, 34B	40B, 70B, 180B
GPU	• A100 80GB 1~2ea 이상	• A100 80GB 1,000~5,000ea 이상
구축 예	• KGov-LLM-7B, KGov-LLM-13B, KGov-LLM-34B	• KGov-LLM-40B, KGov-LLM-70B, KGov-LLM-180B
데이터	• 공개된 한글 데이터: 200B 데이터 선별 및 정제작업 (KGov-LLM-dataset-200B) • 1.27억 한글 학습데이터 구축 (KGov-LLM-dataset-1.27) • 학습용 말뭉치는 천일각의 규칙에 따라 20:1(토큰:파라미터) 비율 적용 권장
공개대상	• LLM 모델의 학습과 추론을 위한 코드 • 학습이 완료된 LLM의 모델 및 가중치 정보 • LLM 학습을 위한 데이터
라이선스	• 악용되지 않도록 라이선스 및 다운로드 관리 • 코드, 데이터, 모델별 라이선스 적용


II 한국형 거대언어모델 구축 및 고도화

거대언어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데이터, 모델, 인프라, 구현주체 및 사용자 측면을 고려하여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함

1 한국형 거대언어모델의 4가지 구축 유형

〈한국형 거대언어모델 구축 유형 개념도〉

출처 : 자체작성

유형	특징	데이터	학습 형태	인프라	구현주체	사용자
1	일정규모(예 100B 이상) 파라미터를 가지는 LLM을 학습	대규모 데이터	사전학습	대규모 인프라 필요	정부, 대기업	불특정 다수
2	LLM을 미세조정 및 양자화	도메인 데이터	미세조정/ 양자화	대규모 인프라 필요	정부, 대기업	도메인 사용자
3	LLM을 파라미터 효율적으로 미세조정	도메인 데이터	미세조정	적은 수의 GPU 필요	중소기업/ 개인	도메인 사용자
4	RAG* 적용 서비스	도메인 + 실시간 프롬프트 데이터	없음	적은 수의 GPU 필요	중소기업/ 개인	도메인사용자/불특정 다수

*RAG(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인프라 투자는 끝없이 하나?


경제 IT

빌게이츠 "컴퓨팅 강화전략은 한계...AI 돌파구는 '메타인지'"

범용 인공지능 도달 전략 논쟁

기자 구본권

수정 2024-08-05 09:21 등록 2024-08-05 09: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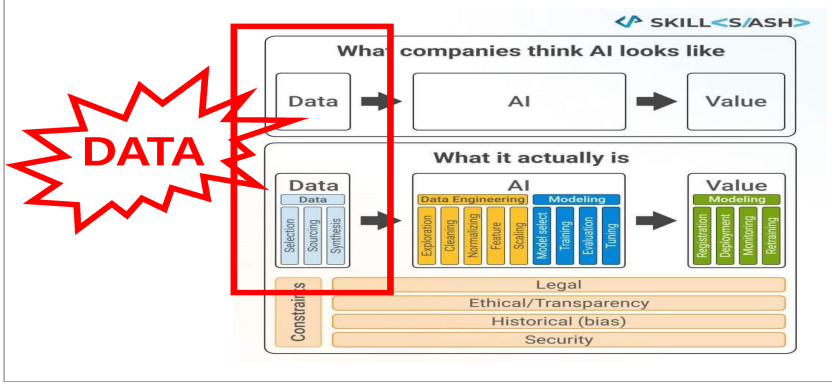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5:40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는 지난 6월 팟캐스트에서 "메타인지가 인공지능의 다음 개척지"라고 주장했다. 유튜브 제공

메타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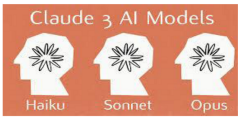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선..



자체 LLM이 필요한 이유

상용 LLM(폐쇄형)

OpenAI



Gemin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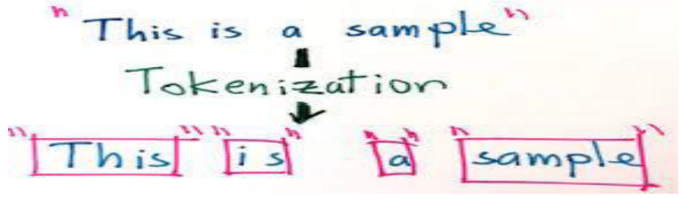
데이터 투명성 부족, 새로운 지식 습득 한계, 호환성 부족

오픈소스 LLM (공개형)



데이터 편향성, 라이선스, 종속성이라는 문제를 해결 불가능

자체 LLM이 필요한 이유



9.11 〉 9.9

더 큰 숫자는?

Strawberry

R은 몇 개인가?

토큰화의 문제 :
9.11, 9.9의 소수점 이하 부분을 하나의 토큰(각각 11과 9)로 인식하거나 Strawberry를 'Str / aw / berry' 3개 토큰으로 인식

자체 LLM이 필요한 이유



Figure 2. (a) Original images, (b) Ground Truth transcriptions text file (single file for all words), (c) Ground Truth relative coordinates text file (single file for all words).

데이터 세트 자체가 특정 인종, 국가, 교육 수준, 가치관 등 실리콘밸리 기준으로 편향돼 있을 뿐 아니라
데이터 세트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 출력이 나왔을 때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 수 없음.
결과적으로 문제를 수정하거나 고치는 게 거의 불가능.

자체 LLM이 필요한 이유

PyTorch

Hugging Face

FastAPI

파이토치, 허깅페이스, 패스트API(FastAPI) 등 오픈 소스 도구, 플랫폼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체 LLM을 구축 -> 특정 기업에 종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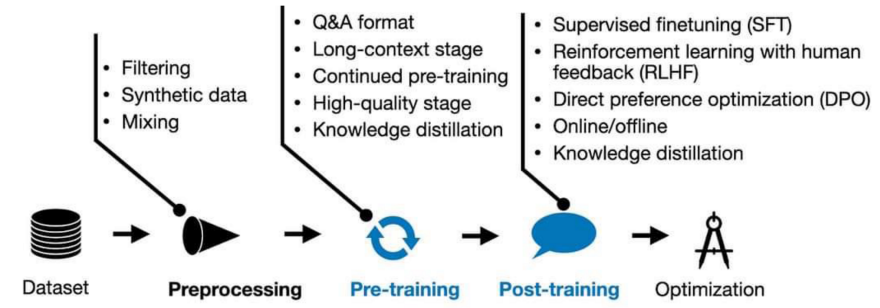
자체 LLM이 필요한 이유=? 로슈 규모되어야(연매출 100조)



제약회사 로슈 : 전용 AI 모델을 구축
생물학, 의학, 과학 기사, 보고서 등의 공개 데이터, 로슈 내부 독점 데이터, 실험 결과 데이터 등을
활용해 특정 영역 특화 모델로 학습을 진행

조경현 뉴욕대 교수의 인터뷰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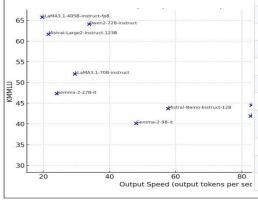
최근 LLM의 동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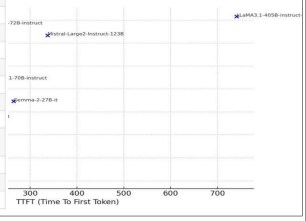


-데이터 품질 중시: LLM 훈련에서 데이터의 양보다 품질이 중요하며, 필터링 및 데이터 혼합이 점점 더 중시되고 있음.
-모델 크기 및 파라미터: 다양한 모델 크기와 파라미터 수의 중요성 강조. 각 모델이 특정 목적에 맞게 최적화됨.
-사후 훈련의 중요성: 사용자의 선호도에 맞춘 훈련(DPO, RLHF)이 모델 성능 향상에 핵심적 역할.
-컨텍스트 길이 확장: 긴 문맥 길이에 맞춰 훈련하는 단계적 접근이 효과적임.
-지식 증류 활용: 작은 모델에도 지식 증류를 통한 성능 개선이 점점 더 활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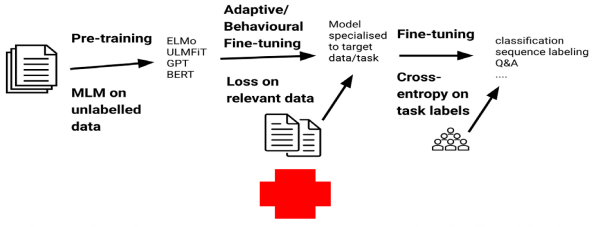
최근 LLM의 동향은?

Model	Size	KMMLU	LogicKor	Token Throughput (token/s)	Time To First Token (ms)
EXAONE-3.0-7.8B-instruct	7.8B	44.5	8.62	82.9	72.0
[LLaMA3.1]					
LLaMA3.1-8B-instruct	8B	41.9	5.39	82.6	71.4
LLaMA3.1-70B-instruct	70B	52.1	7.2	29.5 (4GPU)	206.6
LLaMA3.1-405B-instruct-fp8	405B	65.8	8.79	19.6 (8GPU)	740.8
[Gemma-2]					
Gemma-2-2B-it	2B	30.1	2.67	110.0	34.5
Gemma-2-9B-it	9B	40.1	7.99	48.0	120.7
Gemma-2-27B-it	27B	47.3	1.6	24.0	264.5
[Qwen2]					
Qwen2-1.5B-instruct	1.5B	36.4	2.87	206.7	19.2
Qwen2-7B-instruct	7B	46.4	6.19	87.5	68.4
Qwen2-57B-A14B-instruct	57B	53.2	5.7	111.8 (4GPU)	61.2
Qwen2-72B-instruct	72B	64.1	8.6	33.8 (4GPU)	212.6
[Mistral]					
Mixtral-8x7b-instruct	47B	40.7	5.98	106.5 (4GPU)	54.7
Mistral-Nemo-Instruct-12B	12B	43.7	6.32	57.7	105.8
Mistral-Large2-Instruct-123B	123B	61.7	9.01	21.5 (4GPU)	337.5
[GPT]					
GPT-3.5-Turbo	-	42.4	7.76	-	-
GPT4 (gpt-4-0125-preview)	1.8T	59.9	9.13	-	-





But, 프라이빗 데이터를 반영하기 위한 기술들



화인튜닝
(Fine-Tu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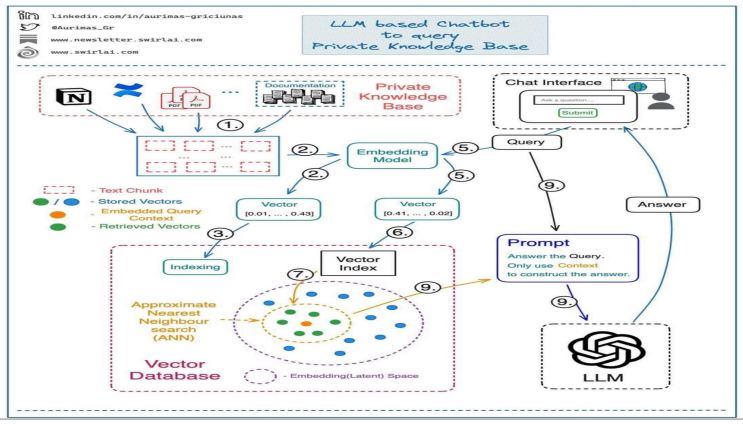
증강검색생성
(RAG)

화인튜닝 구축

챗봇에게
"20대에게 가장 좋은 금융 상품이 뭘까?"
라고 물었을 때

파인튜닝이 안 된 LLM 모델	VS	금융지식으로 튜닝한 LLM 모델
20대에게 가장 좋은 금융 상품이 뭘까?		20대에게 가장 좋은 금융 상품이 뭘까?
국민연금일 수 있습니다.		1. 저축 계좌 : 저축 계좌 개설은 기본적인 단계 … 2. 퇴직 적금(401(k) 또는 IRA) : 퇴직을 위해 일찍 … 현재 귀하 또래의 고객님이 가장 많이 가입한 상품은 …

RAG 활용



AI 비즈니스? 결국 바로 나만의 데이터

1) 알고리즘	2) 하드웨어	3) 데이터
서비스 LLM GPT, Gemini	훈련용 거대 GPU들	파인튜닝 RAG 훈련용 Public Data
오픈소스 LLM 경량화 모델	추론용 가벼운 하드웨어들 (+모바일)	비즈니스용 Private Data

구글, 애플, 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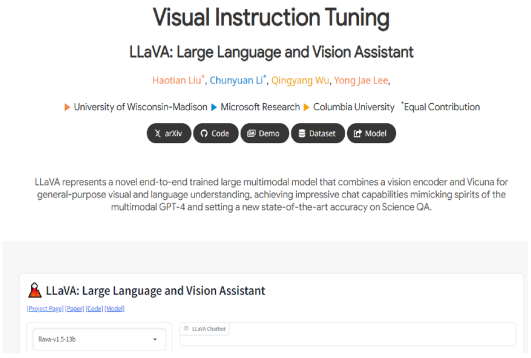
또한, 대형멀티모달모델(LMM)도 이제 대세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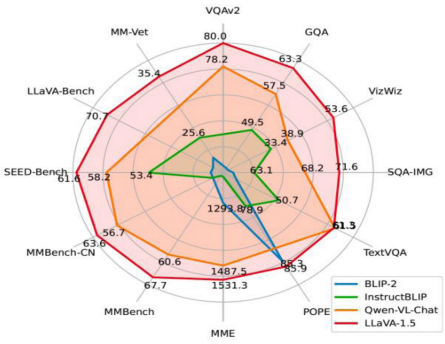


또한, 대형멀티모달모델(LMM)의 시대로....**GPT 4o?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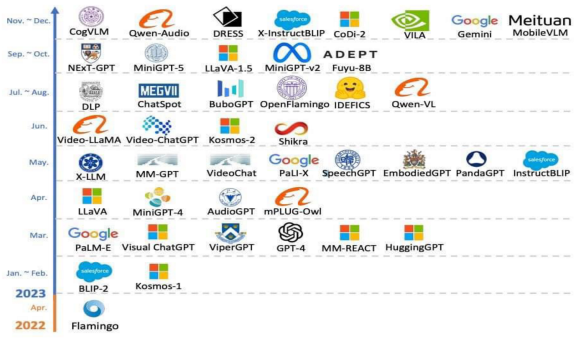
Models	Prompting	Overall	Biology	Business	Chemistry	ComputerScie
GPT-4o	CoT	0.7149	0.8504	0.7852	0.7428	0.7512
Claude-3-Opus	CoT	0.6454	0.8019	0.7286	0.6832	0.6889
GPT-4-Turbo-0409	CoT	0.6258	0.8186	0.6621	0.6325	0.6914
Claude-3-Sonnet	CoT	0.5793	0.6717	0.6658	0.5424	0.5933
Yi-Large	CoT	0.5753	0.7479	0.6587	0.5460	0.6340
Gemini 1.5 Flash	CoT	0.5726	0.7853	0.6570	0.6080	0.5813
Llama-3-70B-Instruct	CoT	0.5541	0.777	0.5804	0.4733	0.61
DeepSeek V2	CoT	0.5444	0.6856	0.6219	0.5284	0.4833
Yi-1.5-34B-Chat	CoT	0.5070	0.6994	0.5854	0.4742	0.5646

오픈소스도 대형멀티모달모델(LMM)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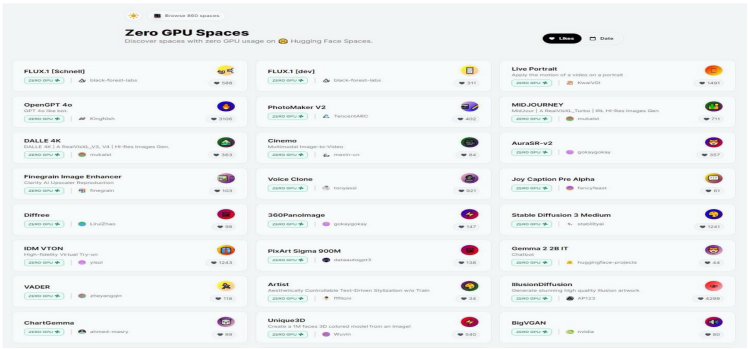
대형멀티모달모델(LMM)도 이제 대세로



Generative AI 공부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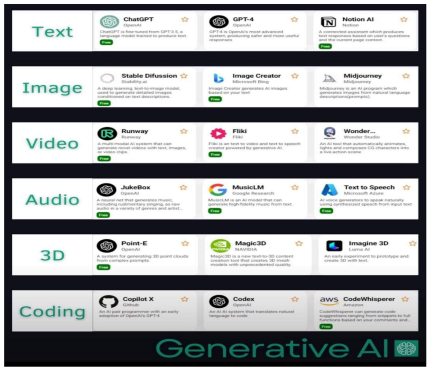


허깅페이스, 놀라운 서비스



https://huggingface.co/

Generative AI 도구 모음





Generative AI 도구 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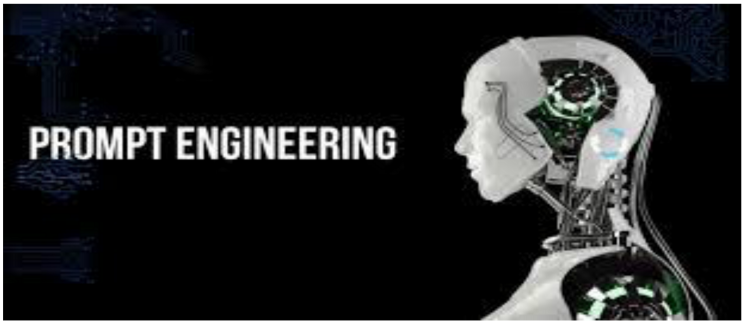




생성AI로 나를 스킬업, Upgra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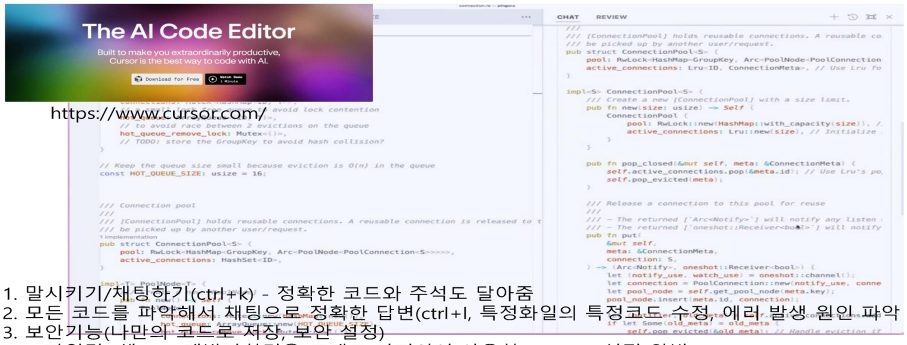


Generative AI – 전문가가 더 잘 써....



인터넷 – 부자나라만 써, MOOC – 기존 지식인이 더 풍부해져, LLM – 전문가가 더 잘 써

생성AI로 나를 스킬업, Upgrade~~



https://www.cursor.com/

1. 말시키기/채팅하기(ctrl+k) - 정확한 코드와 주석도 달아줌
2. 모든 코드를 파악해서 채팅으로 정확한 답변(ctrl+l, 특정화일의 특정코드 수정, 에러 발생 원인 파악 수정)
3. 보안기능(나만의 코드로 저장, 보안 설정)
4. 코파일럿+챗GPT, 개발자환경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함(VS Code설정 완벽)

생성 AI로 회사 업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1.챗GPT로 홍보 시나리오를 만들고
https://chat.openai.com/auth/login?next=/chat

2.미드저니로 AI 그림을 그린 후에
https://www.midjourney.com/home/?callbackUrl=%2Fapp%2F

3.네이버 클로바로 음성을 합성하고
https://clova.ai/vo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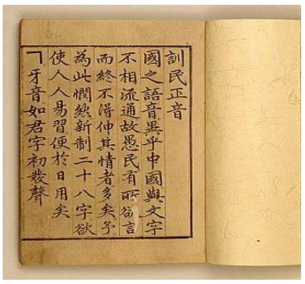
4.D-ID로 모양 AI영상과 자막맞춤 AI기능을 사용하여
https://www.d-id.com/

저희 파트너사의 회사 홍보 영상을 30분만에 뚝딱 만들어 낸 결과물
https://www.youtube.com/watch?v=WZLTGDkGeww

생성AI의 한글, 아...대왕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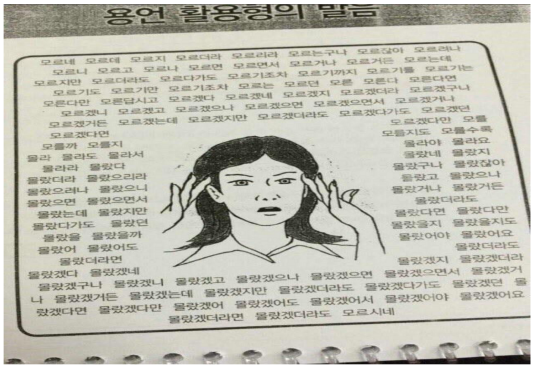


1397년생



1443년 제작, 1446년 반포

생성 AI – 음성/문자 인식 – 아, 한글...



Generative AI 활용분야는?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생성형 AI는 이미 게임이나 영화를 위한 더욱 사실적이고 몰입감 있는 가상 환경을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생성형 AI는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고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인화된 추천을 생성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마케팅·판매 전략을 개선하고 고객 만족도와 충성도를 높일 수 있다.

의료: 생성형 AI를 사용하여 의료 이미지를 분석하고, 의사가 질병을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식별하고 진단할 수 있다. 또 다양한 질병에 대한 신약·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교육: 생성형 AI를 사용하여 학생을 위한 개인화된 학습 경험을 만들고 대화형 교육 콘텐트를 생성할 수 있다.

제조 및 설계: 생성형 AI를 사용하여 새로운 제품 설계·제조 프로세스를 생성하고 공급망·물류 운영을 최적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한국어는 금융, 건설, 법률 등 각 산업분야별 전문 생성AI가 출시될 듯...

Generative AI 활용은 -> 나의 디지털트윈, ㅎㅎㅎ



나의 AI버전???

Generative AI의 끝판왕은 -> Contextual AI(맥락 이해 AI), 역시 MS AI PC



그 석달전에 사당에서 만났던 사장님 이름이 뭐더라, 어느 회사였지?
작년에 만든 00보고서가 어디 있드라? 이메일 보낸거 같은데.....
문서 다 넣어서 이거 다 알아서 짜집기해서 요약해...

Generative AI의 끝판왕은 -> 역시 애플 인텔리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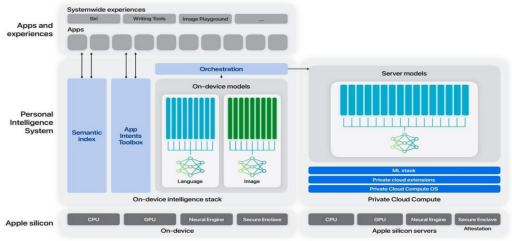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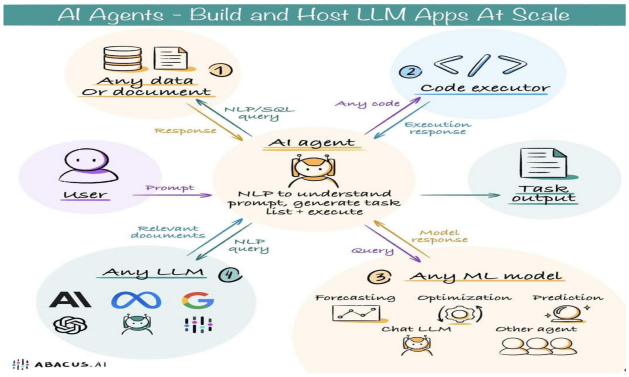


Figure 2: Architecture of Apple Intelligence with adapters for the language on-device and server models and the image models. In this report we are only describing the text models.

Generative AI의 끝판왕은 -> AI 에이전트

PC용 AI 에이전트

-AI가 모든 PC 작업 수행



개인 비서

-AI가 데이터 수집, 계획 수립, 일정 통보

LLM 성능평가는?

누가 누가 잘하나?



컴퓨터 평가



벤치마크



휴먼 평가

컴퓨터에 의한 평가

BLUE **BERTScore**

ROUGE **CIDEr**

METEOR **SPICE**

정확성이 별로

벤치마크에 의한 평가

GLUE **MMLU** **BigBench**

KMMLU

KLUE
www.klue-benchmark.com

KoBEST
5개 항목 테스트

Open KO LLM Leaderboard
www.aihub.or.kr/leaderboard/view.do

사람에 의한 평가

모델 언어능력 성능 평가 지표
- 정확성
- 유창성
- 일관성

모델을 사용한 시스템의 성능 평가 지표
-각 시스템 사용의 목적에 맞게 답변을 해야 함

모델의 평가자
- 도메인 지식 보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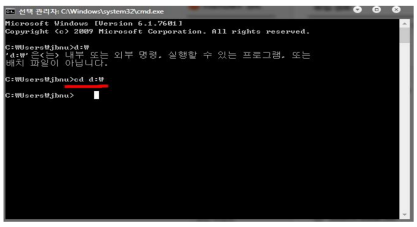
LLM 대표주자인 ChatGPT와 활용안

빅데이터, AI가 시작될 무렵 고객이 진정 원하는 건 ->
진정한 KMS, 의사결정 시스템





ChatGPT, 혁명의 시작





컴 명령어 -> 자연어 명령어로

ChatGPT, 혁명의 시작



모델링하다 휴가 감. GPU는 오버핏 이상으로 더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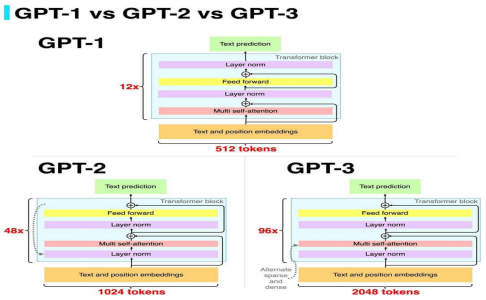
갑자기 답변을 엄청 잘함. 검증 시작

ChatGPT, 혁명의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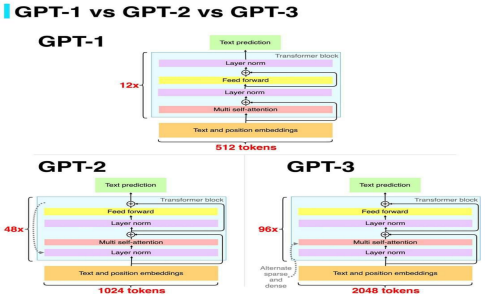
GPT? 오랜시간 삽질의 결과....



데이터셋

45TB
5T 데이터셋
1400억개 파라미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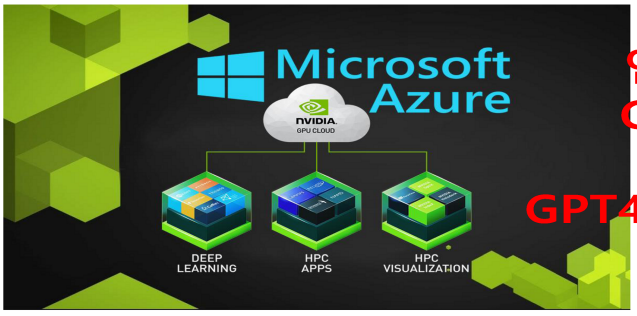
GPT4, 어마무시한....



데이터셋

700TB
1조 7천억개 파라미터
A100 25,000개
100일소요

GPT? 어마무시한 GPU 인프라가 필요



연간 4천억치
GPU 무상임대

GPT4부터는 더 많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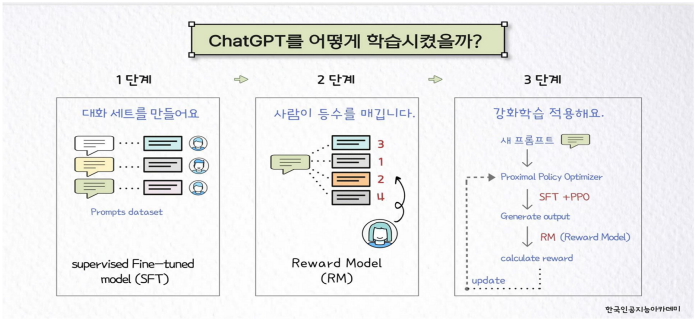
ChatGPT란

✅ Open AI가 만든 초거대 언어 생성 모델을 이용한 AI 챗봇

Make	The	World	Smarter	with	SOSLAB
Make	The	World	?	with	SOSLAB

- 단어 가리고 맞추기 형태로 사람의 개입 없이도 수 많은 데이터를 학습 가능
- 자가 지도(Self-supervised)를 이용한 사전 학습(Pre-training)이 가능
- 초거대 모델의 경우 언어를 단순 기호로 처리하는 성능이 발현되어 프롬프트 만으로 새로운 걸 학습이 가능: In-Context Learning / Prompt Learning
- 프롬프트를 어떻게 잘 쓰는지에 따라 모델의 동작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근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라는 분야도 생김

ChatGPT란



ChatGPT 사용법

GPT3 : Fine-Tunning

Fine-Tuning지원, 매우 높은 사용료, API 3.5의 100배

78

둘 다 인터넷 연결이 항상 되어야 하며 클라우드 기반임(로컬 구축이 안됨)

ChatGPT : API

1. GPT 3.5
- API 사용
- 화인튜닝 지원 8/24 시작됨 10배 비쌈(4.0의 50%)

2. GPT 4.0
- API만 지원, 3.5보다 높은 사용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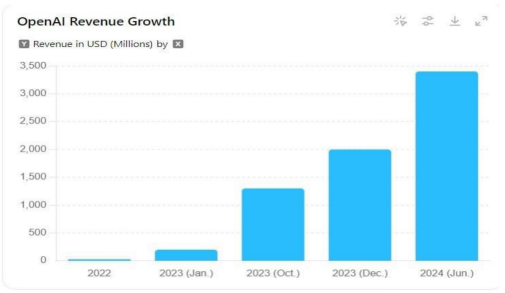
3. GPT 4o
- 화인튜닝 지원, 일반 공짜, 기업 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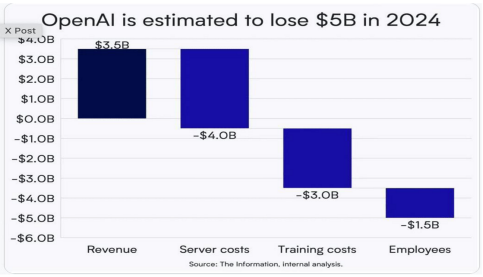
ChatGPT 사용법

1.Install Python 3.7 or later. You can download Python from the official website (https://www.python.org/) and follow the instructions to install it on your machine.
2.Install the OpenAI API client. You can do this by running the following command: pip install openai
3.Set up an API key. To use the OpenAI API, you will need to sign up for an account and obtain an API key. You can sign up for an API key at the OpenAI website (https://beta.openai.com/signup/).
4.Install the required libraries. ChatGPT requires several libraries to be installed, including requests, numpy, and tqdm. You can install these libraries by running the following command: pip install requests numpy tqdm
5. You can now use ChatGPT by importing it in your Python code and using the openai.Completion.create() method. Here is an example of how to generate text using ChatGPT:

```
import openai
# Set the API key
openai.api_key = "YOUR_API_KEY"
# Use the ChatGPT model to generate text
model_engine = "text-davinci-002"
prompt = "Hello, how are you today?"
completion = openai.Completion.create(engine=model_engine, prompt=prompt, max_tokens=1024, n=1,stop=None,temperature=0.7)
message = completion.choices[0].text
print(mess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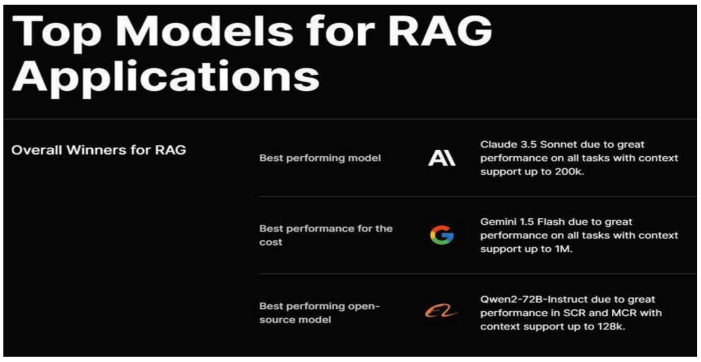
GPT-4o .... 돈은 벌고 있나요?? 망하는 건 아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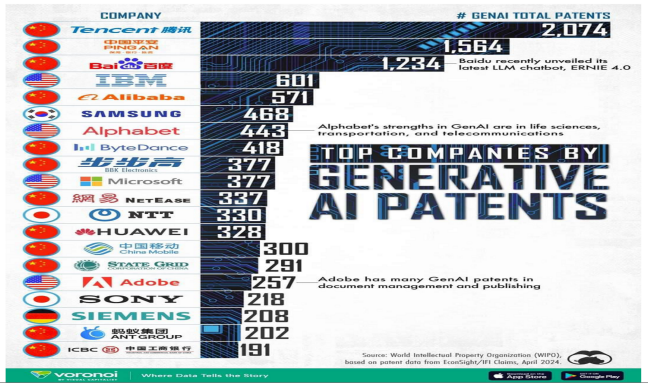




GPT-5가 혁신적이어야 시장에서 살아남을듯..



GAI, 경쟁의 끝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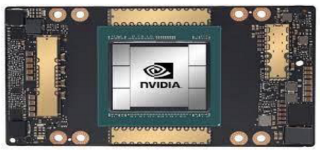
로컬 LLM 구축은?

Kor-Meri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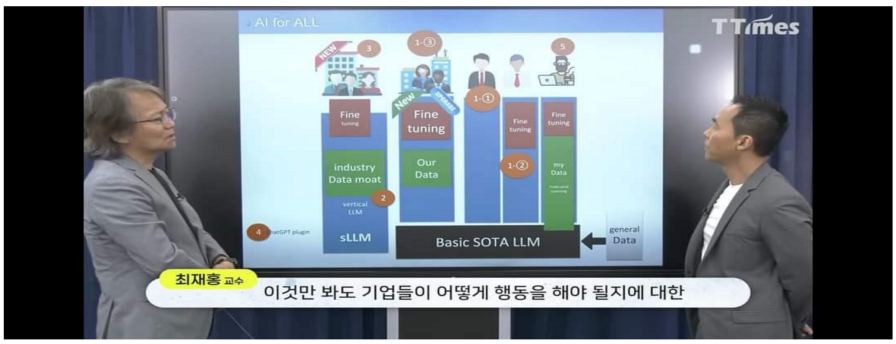
1000억이상의 고객의 예산 or 자체 R&D 비용으로 해야 하는 프로젝트를 오픈소스로 준다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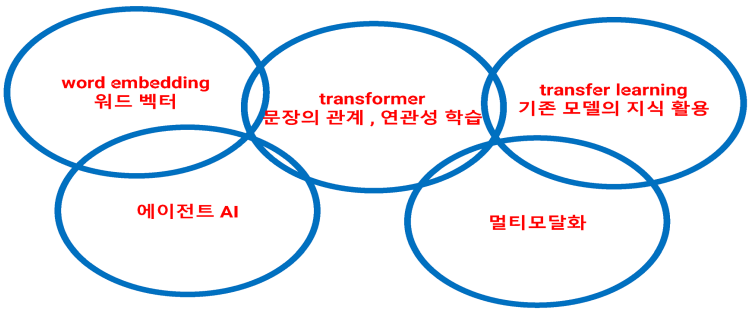
LLM 시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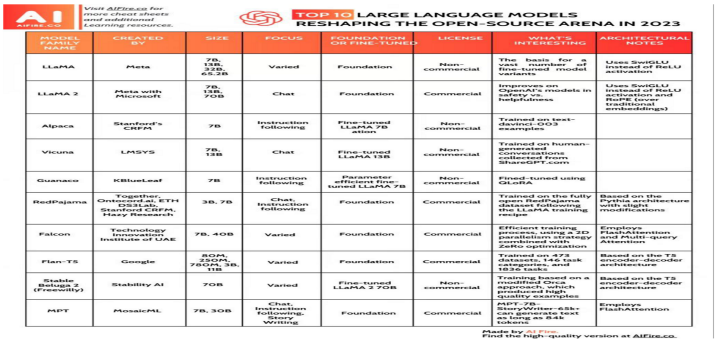
LLM(Large Language Model)이란?

- 아주 큰 모델과 아주 많은 양의 텍스트를 사용해서 자연어를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도록 학습된 모델
- attention과 transformer를 기반으로 한 BERT, ELMo, GPT 시리즈 등
- 언어 모델링, 문장 생성, 질의응답, 요약, 번역 등 다양한 자연어 처리 작업을 수행

LLM의 기본기술은?



최근 상용-오픈 LLM 동향



TOP 10 LARGE LANGUAGE MODELS RESHAPING THE OPEN-SOURCE ARENA IN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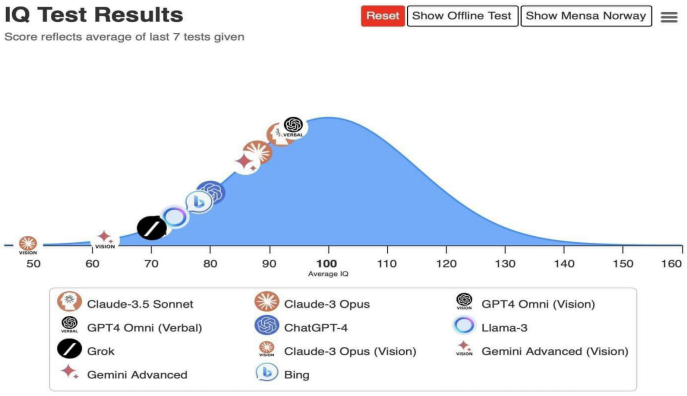
MODEL FAMILY NAME	CREATED BY	SIZE	FOCUS	FOUNDATION OR FINE-TUNED	LICENSE	WHAT'S INTERESTING	ARCHITECTURAL NOTES
LLaMA	Meta	7B, 13B, 33B, 65.2B	Varied	Foundation	Non-commercial	The basis for a vast number of fine-tuned model variants	Uses SwiGLU instead of ReLU activation
LLaMA 2	Meta with Microsoft	7B, 13B, 70B	Chat	Foundation	Commercial	Improves on LLaMA 1, models in safety vs helpfulness	Uses SwiGLU activation, BPE activation and RoPE (over absolute embeddings)
Alpaca	Stanford's CRFM	7B	Instruction following	Fine-tuned LLaMA 7B ation	Non-commercial	Trained on text-davinci-003 examples	
Vicuna	LMSYS	7B, 13B	Chat	Fine-tuned LLaMA 13B	Non-commercial	Trained on human-generated conversations from platform ShareGPT.com	
Guanaco	KBlueLeaf	7B	Instruction following	Parameter efficient fine-tuned LLaMA 7B	Non-commercial	Fined-tuned using QLoRA	
RedPajama	Together, Ontocord.ai, ETH DS3Lab, Stanford CRFM, Hazy Research	3B, 7B	Chat, Instruction following	Foundation	Commercial	Trained on the fully open-source dataset following the LLaMA training recipe	Based on the GPT-NeoX architecture with slight modifications
Falcon	Technology Innovation Institute of UAE	7B, 40B	Varied	Foundation	Commercial	Efficient training process, using a 2D parallelism strategy combined with ZeRO optimization	Employs FlashAttention and Multi-query attention
Flan-T5	Google	80M, 250M, 780M, 3B, 11B	Varied	Foundation	Commercial	Trained on 473 datasets, 146 task categories, and 1836 tasks	Based on the T5 encoder-decoder architecture
Stable Beluga 2 (Freewilly)	Stability AI	70B	Varied	Fine-tuned LLaMA 2 70B	Non-commercial	Training based on a modified Orca dataset, which employed high-quality examples	Based on the T5 encoder-decoder architecture
MPT	MosaicML	7B, 30B	Chat, Instruction following, Story Writing	Foundation	Commercial	MPT-7B-StoryWriter-65k+ can read and write as long as 84k tokens	Employs FlashAttention

Made by AI Fire. Find the high-quality version at AIFire.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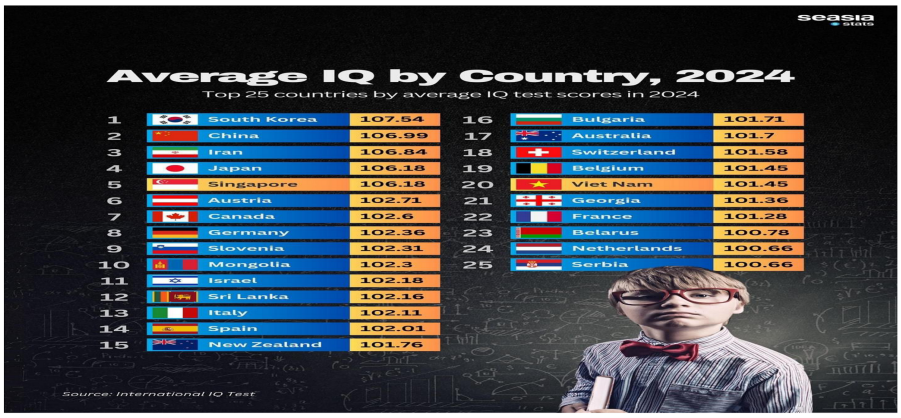
오픈소스 LLM 성능지표, 한글은 누가 잘하나?

Model	Size	KMMLU
[LLaMA3]		
LLaMA3-8B-instruct	8B	38.6
LLaMA3-70B-instruct	70B	54.5
[LLaMA3.1]		
LLaMA3.1-8B-instruct	8B	41.9
LLaMA3.1-70B-instruct	70B	52.1
LLaMA3.1-405B-instruct	405B	65.8
[Gemma-2]		
Gemma-2-9B-it	9B	40.1
Gemma-2-27B-it	27B	47.3
[Qwen2]		
Qwen2-7b-instruct	7B	46.4
Qwen2-57b-a14b-instruct	57B	53.2
Qwen2-72b-instruct	72B	64.1
[GPT]		
GPT-3.5-Turbo	-	42.47
GPT4 (gpt-4-0125-preview)	1.8T	59.95

최근 오픈소스 LLM 성능지표



사람은???



최근 LLM의 학습 데이터셋의 출처는?

	RedPajama	LLaMA*
CommonCrawl	878 billion	852 billion
C4	175 billion	190 billion
Github	59 billion	100 billion
Books	26 billion	25 billion
ArXiv	28 billion	33 billion
Wikipedia	24 billion	25 billion
StackExchange	20 billion	27 billion
Total	1.2 trillion	1.25 trill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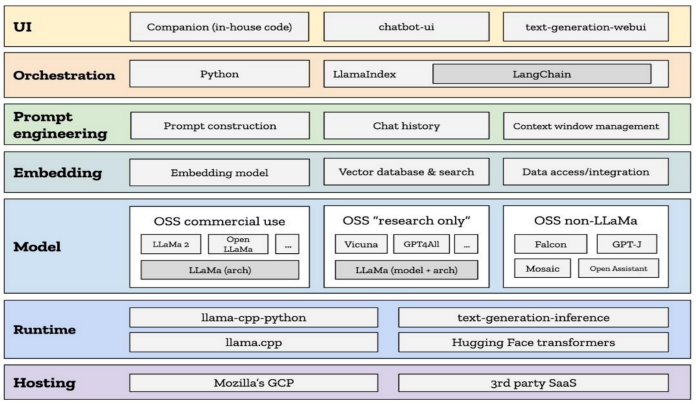
NCSoft, VARCO

로컬로 구축가능한 LLM 작업, **Kor-Meri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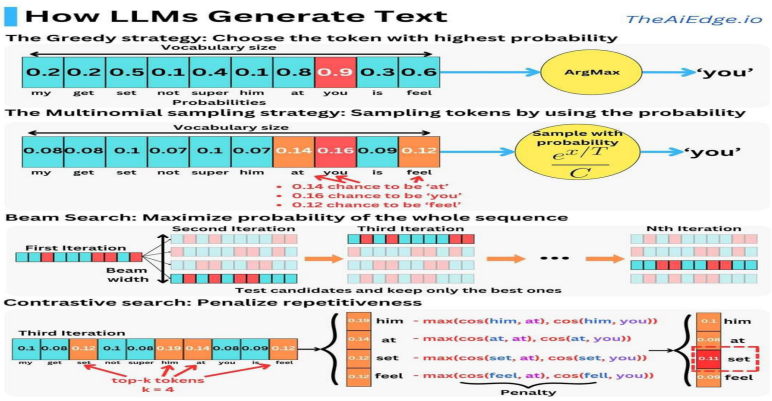


Kor-merino는
DX 전문업체 Kosena의 sLLM 구축 패키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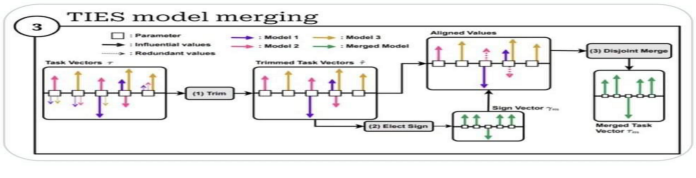
로컬로 구축가능한 LLM 작업, **Kor-Meri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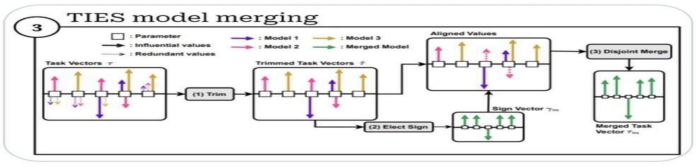


로컬로 구축가능한 LLM 작업, **Kor-Meri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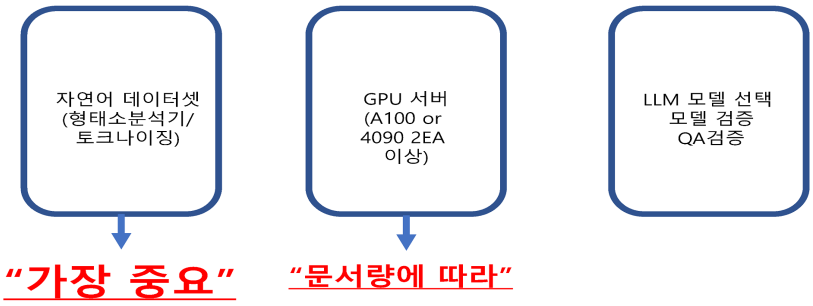


로컬로 구축가능한 LLM 작업, **Kor-Merino**





로컬로 구축가능한 LLM 작업, Kor-Merino



로컬로 구축가능한 LLM 작업, Kor-Merino

LLM기반 질의 응답 구축 문서 a4 1,000만장 기준 ,1,800자 기준, 18,000,000,000 글자

방법	자원	소요 기간 및 작업량
특정 BERT모델 기반 fine-tuning (많이 적용된 방식)	**학습서버 - 최소 NVIDIA A100 16GB** **추론서버 - 최소** GeForce RTX 3090	< 6~7개월 소요 > ✓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 3달 ✓ 학습 및 검증 : 3개월 (학습당 ~2일) ✓ 웹서비스 개발 (추론)
ChatGPT API 사용 (GPT3는 fine-tuning 가능)	**학습서버 - 최소 NVIDIA A100 16GB** **추론서버 - 최소** GeForce RTX 3090	< 5~6개월소요 > ✓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 3달 ✓ 학습은 용량에 따라 과금 (현재 기능 제한적) ✓ 웹서비스 개발 (추론)
ChatGPT 오픈소스 사용 (최신 방식)	**학습서버 - 최소 NVIDIA A100 16GB** **추론서버 - 최소** GeForce RTX 3090	< 6~7개월 소요 > ✓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 3달 ✓ 학습 및 검증 : 3개월 (학습당 ~3일) ✓ 웹서비스 개발 (추론)

LLM 구축 아키텍처

DeepKMS 은 빠르게 변화하는 LLM 기술을 로컬로 적극 수용하기 위해 매우 오픈된 아키텍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LLM 구축 아키텍처

상용 하드웨어에 설치 및 운용 가능한 LLM챗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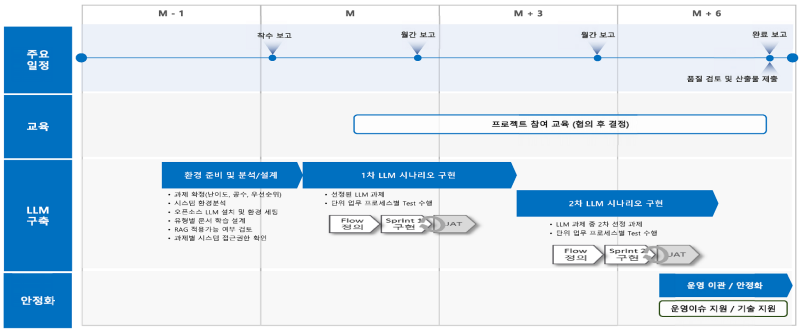
LLM 기본 모델	원래크기(FP16)	양자화(INT4)
Llama 2 7B	13.5G	3.9GB
Llama 2 13B	26.1GB	7.3GB
Llama 2 70B	138GB	40.7GB

LLM 구축 아키텍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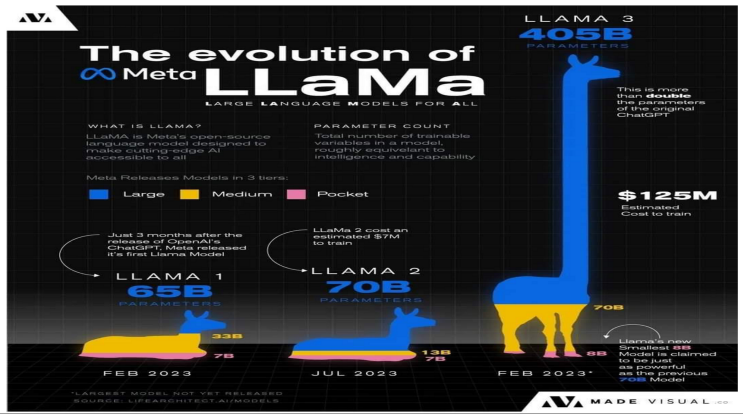
상용 하드웨어에 설치 및 운용 가능한 LLM챗봇

구분	sLLM (소형언어모델) 추론용 패키지	LLM (대규모언어모델) 추론용 Standard 패키지	LLM (대규모언어모델) 추론용 Enterprise 패키지	LLM 전문 학습용 패키지
동시 접속자수	30명 ~ 50명	50명 ~ 100명	100명 ~ 200명	-
모델명	HPE DL360 Gen11	HPE DL380 Gen11	HPE DL380 Gen11	HPE DL380 Gen11
프로세서	Intel Xeon Silver 4410 (2.0Ghz 12c)	Intel Xeon Silver 4410Y (2.0Ghz 12c) x 2ea	Intel Xeon Gold 5515+ (3.2Ghz 1P/8C) x 2ea	Intel Xeon Gold 5515+ (3.2Ghz 1P/8C) x 2ea
메모리	DDR5 64GB	DDR5 64GB	DDR5 128GB	DDR5 256GB
GPU	NVIDIA L4 24GB PCIe x 1ea	NVIDIA L40 48GB PCIe x 2ea	NVIDIA L40S 48GB PCIe x 4ea	NVIDIA H100 NVL 94GB PCIe x 4ea
네트워크	1GB 4포트 Base	1GB 4포트 Base	1GB 4포트 Base	1GB 4포트 Base
HDD(OS)	SSD 480GB x 2ea (Raid1)	SSD 480GB x 2ea (Raid1)	SSD 800GB x 2ea (Raid1)	SSD 800GB x 2ea (Raid1)
HDD(Data)	별도(Case by Case)	별도(Case by Case)	별도(Case by Case)	별도(Case by Case)
비고				

LLM 도입 일정



Meta에서 공급하는 LLaMA 시리즈



Meta에서 공급하는 LLaMA 3



24K H100 GPU Cluster 2 Set



15T Token



사람 Annotator/평가자, 10M 데이터 활용

Meta에서 공급하는 LLaMA 3.1

	gpt-4o	Meta-Llama-3.1-405B	Meta-Llama-3.1-70B	Meta-Llama-3-70B	Meta-Llama-3.1-8B	Meta-Llama-3-8B
boolq	0.905	0.921	0.909	0.892	0.871	0.82
gsm8k	0.942	0.968	0.948	0.833	0.844	0.572
hellaswag	0.891	0.92	0.908	0.874	0.768	0.462
human_eval	0.921	0.854	0.793	0.39	0.683	0.341
mmlu_humanities	0.802	0.818	0.795	0.706	0.619	0.56
mmlu_other	0.872	0.875	0.852	0.825	0.74	0.709
mmlu_social_sciences	0.913	0.898	0.878	0.872	0.761	0.741
mmlu_stem	0.696	0.831	0.771	0.696	0.595	0.561
openbookqa	0.882	0.908	0.936	0.928	0.852	0.802
piqa	0.844	0.874	0.862	0.894	0.801	0.764
social_iqa	0.79	0.797	0.813	0.789	0.734	0.667
truthfulqa_mc1	0.825	0.8	0.769	0.52	0.606	0.327
winogrande	0.822	0.867	0.845	0.776	0.65	0.56

Let me know if there's any other models you want from the folder(https://github.com/Azure/azureml-assets/tree/main/assets/evaluation_results). (or I can give my script I gu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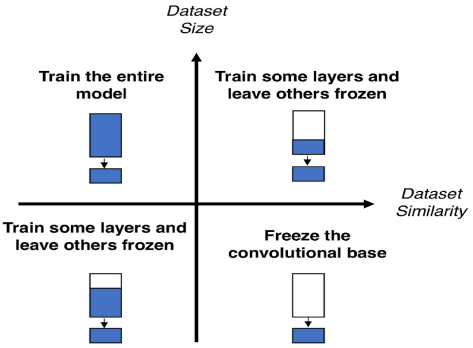
Note that this is the base model not instruct. Many of these metrics are usually better with the instruct ver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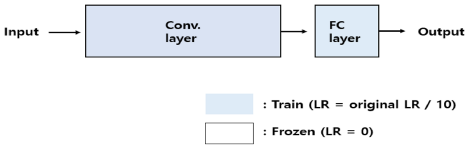
드디어, FALCON 18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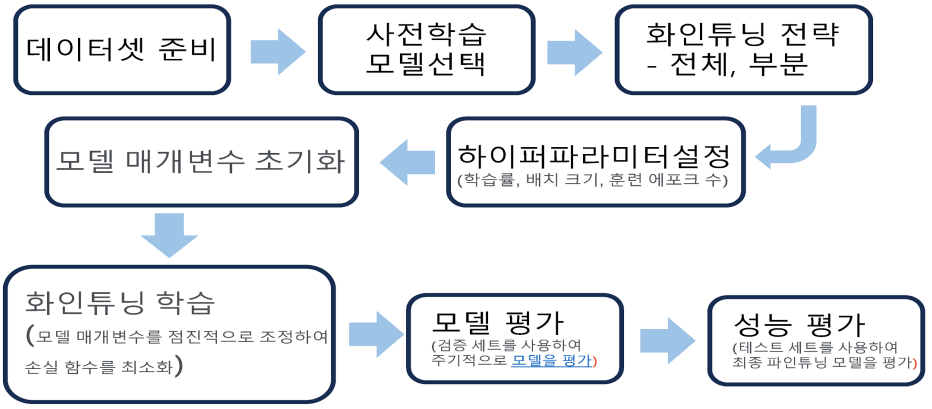


-Trained on 3.5T Tokens
-180B parameter version
-Commercial use allowed but very restrictive. No "hosting" without a license
-2048 default context window (can be increased)
- Competes with OpenAI GPT-3.5 and Googles PaLM-2
-uses multi-query attention (MQA)
-Trained on 4096GPUs on Amazon SageMaker
-Chat models for dialogue use cases

LLM의 구축 예시, 화인튜닝







환각 (hallucin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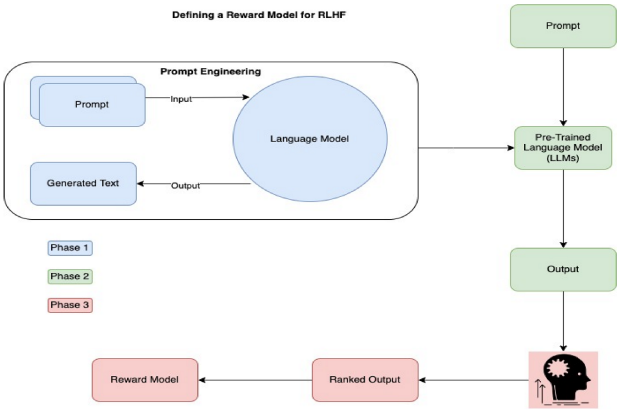
수집데이터의 진실유무???

생성AI의 생성자체의 실수



제거 또는 최소화 방안은?

환각 제거 예시



환각 제거 예시

Q. 내부 문서의 검색 정확도와 정확한 요약을 위해 환각을 100% 없앨수 있나?

A. 내부 문서의 검색 정확도와 요약을 위해 환각**(hallucination)**을 완벽히 없애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환각을 최소화하여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훈련 데이터의 질과 양을 높인다. 내부 문서 데이터로 모델을 화인튜닝하면 정확도 향상에 도움이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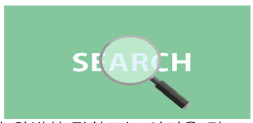
-검증/테스트 데이터셋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정확도를 점검한다.

-모델의 확신도(confidence) 값을 출력하게 하여 신뢰성 있는 결과와 그렇지 않은 결과를 구분한다.

-외부 지식 소스(팩트 데이터베이스 등)을 연계하여 정보를 검증하는 기능을 추가한다.

-결과 생성 시 중요 키워드/개체명 체크, 문맥 일관성 체크 등 추가 로직을 거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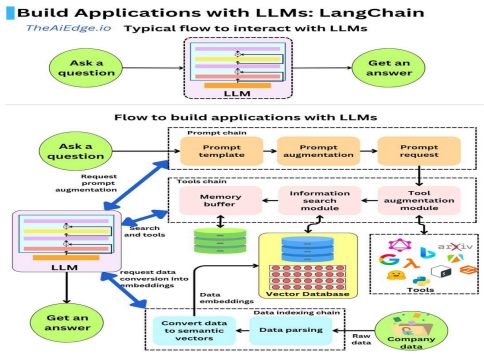
-생성된 검색 결과와 요약문을 사람이 검토하고 피드백하는 과정을 거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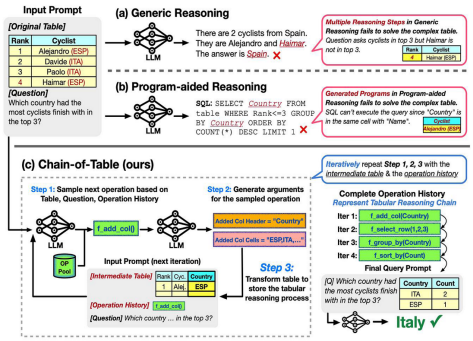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환각을 대폭 줄이고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완벽한 정확도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LLM의 구축 예시, RA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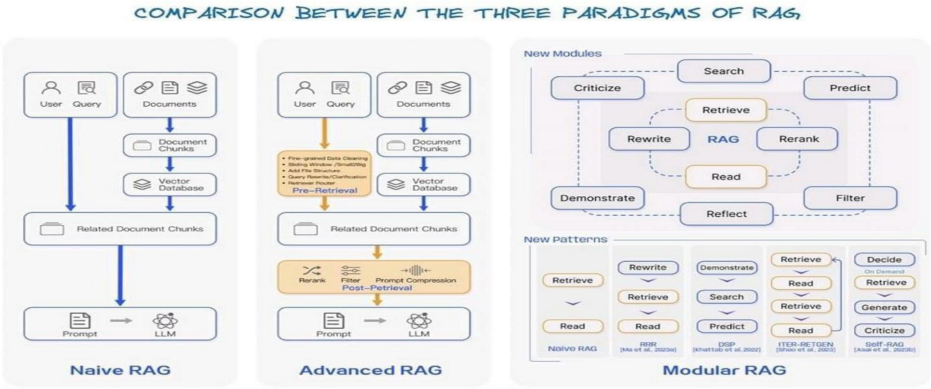
랭체인



LangGraph



RAG도 계속 발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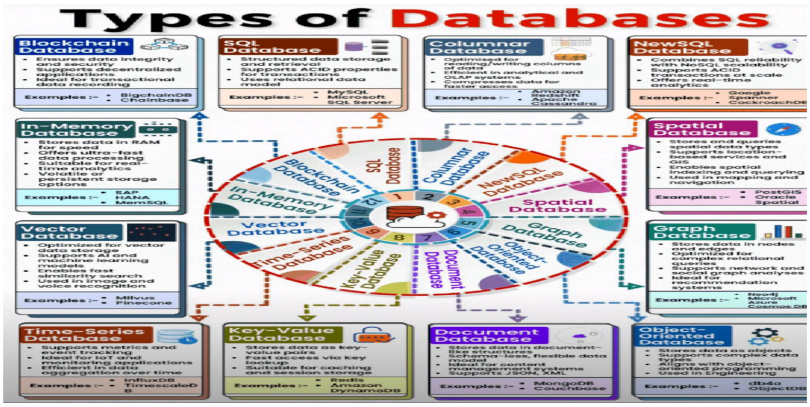


Vector DB

View Table

	Pinecone	Weaviate	Milvus	Qdrant	Chroma	Elasticsearch	PGvector
오픈소스 여부 / Is open source	✗	✓	✓	✓	✓	✗	✓
자체 호스팅 / Self-host	✗	✓	✓	✓	✓	✓	✓
클라우드 관리 / Cloud management	✓	✓	✓	✓	✗	✓	(✓)
벡터 전용 / Purpose-built for Vectors	✓	✓	✓	✓	✓	✗	✗
개발자 경험 / Developer experience	👍👍👍	👍👍	👍👍	👍👍	👍👍	👍	👍
커뮤니티 / Community	Community page & events	8k☆ github, 4k slack	23k☆ github, 4k slack	13k☆ github, 3k discord	9k☆ github, 6k discord	23k slack	6k☆ github
초당 쿼리 수 / Queries per second (using text nytimes-256-angular)	150 *for p2, but more pods can be added	791	2406	326	?	700-100 *from various reports	141
지연 시간, ms / Latency, ms (Recall/Percentile 95 (milla), nytimes-256-angular)	1 *batched search, 0.99 recall, 200k SBERT	2	1	4	?	?	8
지원하는 인덱스 종류 / Supported index types	?	HNSW	Multiple (11 total)	HNSW	HNSW	HNSW	HNSW/IVFFlat
하이브리드 검색 / Hybrid Search (i.e. scalar filtering)	✓	✓	✓	✓	✓	✓	✓
디스크 인덱스 지원 / Disk index support	✓	✓	✓	✓	✓	✗	✓
역할-기반 접근 제어(RBAC) / Role-based access control	✓	✗	✓	✗	✗	✓	✗
동적 세그먼트 배치 vs. 정적 데이터 샤딩 / Dynamic segment placement vs. static data sharding	?	Static sharding	Dynamic segment placement	Static sharding	Dynamic segment placement	Static sharding	-
무료 호스팅 티어 / Free hosted tier	✓	✓	✓	(free self-hosted)	(free self-hosted)	(free self-hosted)	(varies)
가격 (5만 벡터 @1536) / Pricing (50k vectors @1536)	$70	fr. $25	fr. $65	est. $9	Varies	$95	Varies
가격 (2천만 벡터, 2천만 요청 @768) / Pricing (20M vectors, 20M req. @768)	$227 ($2074 for high performance)	$1536	fr. $309 ($2291 for high performance)	fr. $281 ($820 for high performance)	Varies	est. $1225	Varies

RDB진영도 Vector DB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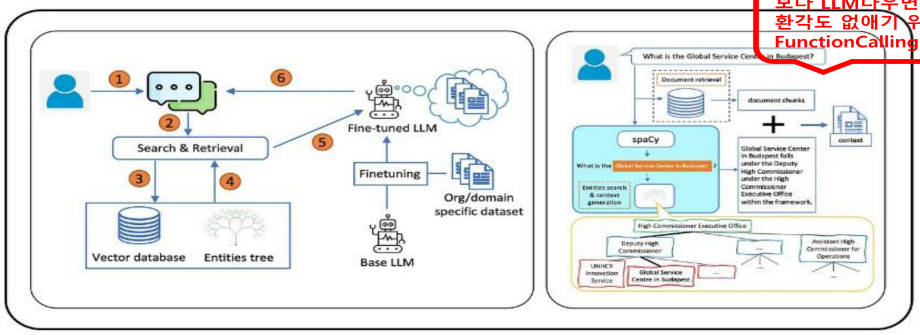


RAG vs Fine-Tuning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RAG; 검색증강생성)	Fine-tuning (파인튜닝)
정의	최신의 외부 데이터에서 적절한 문서 검색 및 답변을 생성해 LLM 모델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방식	사전 학습된 모델에 각 개별 기업의 도메인 특화 데이터를 추가 학습시켜 맞춤형 모델로 업데이트하는 방식
이점	외부 데이터에 대한 상시적 접근이 가능함 데이터의 최신성 유지에 용이함 근거가 확실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 생성	양질의 라벨링 데이터만 있다면 높은 품질의 모델 생성 가능 업데이트가 빈번하지 않은 특정 도메인에서 유용함
도전과제	관련 없는 문서를 검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검색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함	충분한 데이터가 없거나 양질의 데이터가 아닌 경우 모델의 퀄리티가 낮아질 수 있으며, 모델의 지식은 마지막 훈련 데이터까지만 한정됨
유스케이스	새로운 데이터가 자주 업데이트 되는 기업 (이커머스, 금융, 공공기관 등)	특정 작업용 애플리케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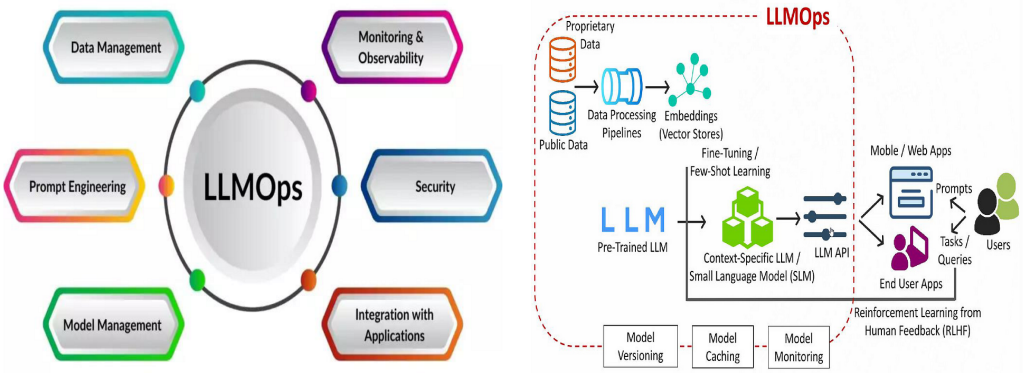
환각을 없애고 정확한 답변을 사람처럼....

보다 LLM다운면서 환각도 없애기 위한, FunctionCalling 등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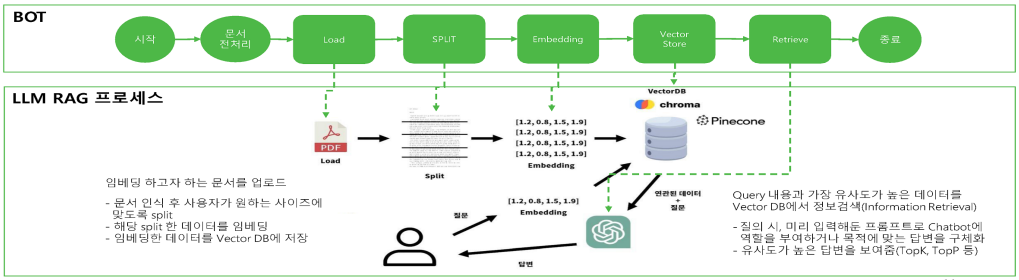
LLM FineTuning + RAG

LLMOPS



LLM + RPA 융합

업무	설명
LLM 전처리: 전자문서 변환 및 저장	- 저장된 PDF 파일들을 다운받아 임베딩 처리 후, 신규 벡터 DB로 저장



11
9

LLM +SQL 융합

AiQuery



- 생성형AI(LLM) 기반 No Code 솔루션
- 자연어(한국어)로 입력하면 SQL 쿼리를 생성함
- 생성된 Query를 이용하여 데이터검색

LLM +SQL 융합

자연어 Query

2024년에 많이 팔린 상품순서는? 상품코드, 상품명, 판매수량, 판매금액으로 보여주세요.

생성

SQL

실행

상품코드	상품명	판매수량	판매금액
S18_3232	1992 Ferrari 360 Spider red	1461	223861.7
S18_1662	1980s Black Hawk Helicopter	896	125850.89
S18_1342	1937 Lincoln Berline	889	81507.84
S700_2610	The USS Constitution Ship	889	58077
S12_1108	2001 Ferrari Enzo	884	165339.7
S18_4600	1940s Ford truck	879	94499.08
S700_4002	American Airlines: MD-11S	877	58441.45
S18_2319	1964 Mercedes Tour Bus	872	97037.17
S18_2949	1913 Ford Model T Speedster	866	80419.65
S10_1678	1969 Harley Davidson Ultimate Chopper	864	74786.37
S50_1341	1930 Buick Marquette Phaeton	856	33022.73
S12_4473	1957 Chevy Pickup	856	89744.92
S24_2011	18th century schooner	854	95865.25
S18_3856	1941 Chevrolet Special Deluxe Cabriolet	850	81618.49
S24_3949	Corsair F4U (Bird Cage)	848	50264.55
S18_2238	1998 Chrysler Plymouth Prowler	847	121455.12
S12_3891	1969 Ford Falcon	842	133949.98
S24_2300	1962 Volkswagen Microbus	837	96175.84

LLM +SQL 융합

Query 샘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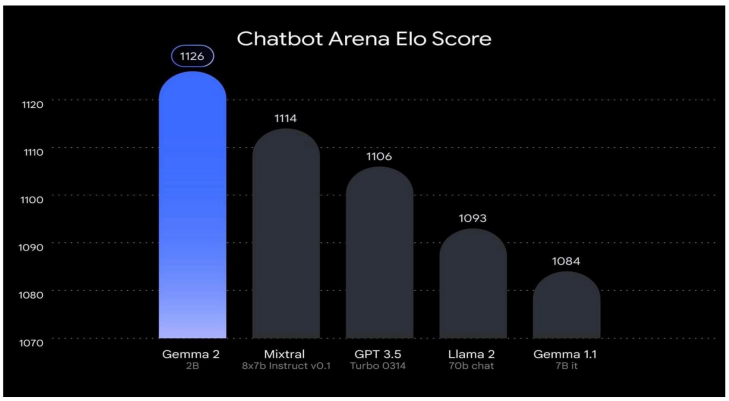
상품카테고리별 매출현황을 보여주세요.(매출수량, 매출금액)

```
SELECT
  p.productLine AS "상품카테고리",
  SUM(od.quantityOrdered) AS "매출수량",
  SUM(od.priceEach * od.quantityOrdered) AS "매출금액"
FROM products AS p
JOIN orderdetails AS od
  ON p.productCode = od.productCode
GROUP BY
  p.productLine
LIMIT 0, 1000;
```

AI가 생성한 SQL쿼리

metaBot confidential (수신자) 122

이제 LLM 소형 모델도 괜찮네....



LLM 구축방안은?

자체 생성AI 포털 구축?...내부직원, 외부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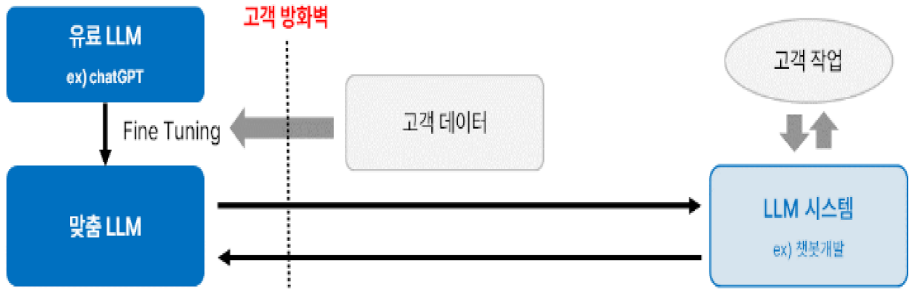


오픈소스? 상용버전?





1. 유료 LLM을 파인 튜닝하는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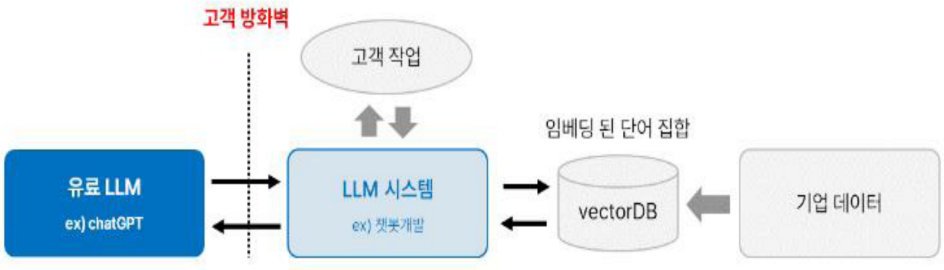
[구축 방식 요약]

유료 LLM은 고객이 손쉽게 모델을 파인튜닝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API를 통해 이용되며, 고객은 유료 모델을 사용하여
파인튜닝을 진행할 수 있다.

앞서 소개한 3.2.3 오픈소스 LLM을 파인튜닝하는 방식과의 주된 차이점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파인튜닝 하는 과정이 전적으로 제공 기업의
클라우드상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와 대비된다.
유료 모델을 사용할 때, 고객은 모델의 세부적인 파라미터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이나 수정 권한이 없다. 따라서, 모델이 고객의 데이터에
맞게 작동하거나 필요한 경우 모델을 고객의 데이터에 맞추어 파인튜닝 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데이터가 기업의 클라우드 서버로 이전되어야 한다. 학습 데이터와 프롬프트 데이터는 고객의 소유이지만, 직접 개발하는 것만큼의
보안성은 보장되지 않는다. 그래서 기본 모델의 성능뿐만 아니라, 유료 모델을 제공하는 기업의 보안 신뢰성도 중요하다. 이 방식의 장점 중 하나는 인퍼런스와 파인튜닝이 LLM 제공 기업의 클라우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객은 컴퓨팅 자원에 대한 부담을 덜고 쾌적한 환경에서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OpenAI의 GPT-3.5 turbo를 활용하여 파인튜닝 하여 개발하는 경우가 이러한 방식의 예이다.
고객은 해당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유료 LLM 비용을 지불해야 되지만, 파인튜닝과 인퍼런스를 위한 GPU를 요구하지 않는다.

2. RAG & 유료LLM API를 이용하는 방식



[구축 방식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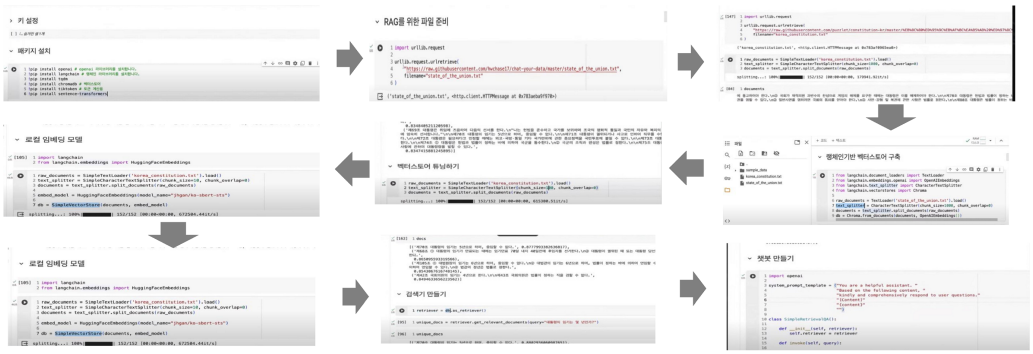
유료 LLM API를 구매하여 내부 LLM 시스템(예: 챗봇)을 개발한다. 사용자가 프롬프트 창에 입력한 질문에 기업 내부 데이터 기반으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RAG방식을 활용한다. 이 방식은 유료LLM 자체를 변형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우선 기업데이터는 벡터 DB (Vector DB)에 벡터화하여 저장한다. 사용자의 질문에 맞는 데이터를 벡터 DB에서 검색하여 이를 유료 LLM에 전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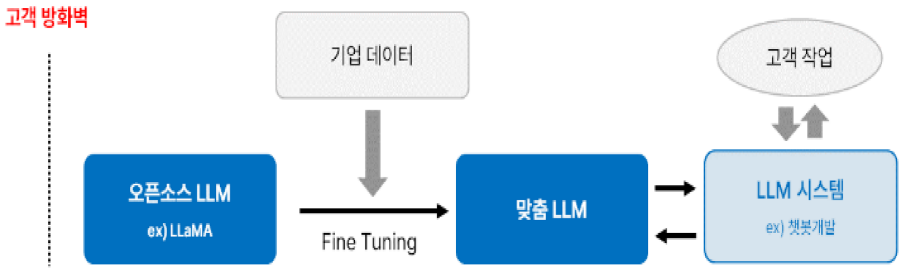
LLM은 이 데이터 기반으로 추론하여 사용자에게 맞는 답변을 생성, 제공한다. 추론 과정이 유료 LLM 회사의 클라우드에서 이루어지므로, 고객의 컴퓨팅 자원을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별도의 GPU 준비가 필요 없다. 사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 데이터는 LLM 회사의 클라우드로 전송되지만, 이 데이터는 다른 곳에 사용되지 않는다. 보안 측면에서, 기업의 데이터가 LLM 회사로 이동하고 사용 시에도 다시 받아오는 과정에서 데이터의 이동이 발생한다. 이로 인한 데이터 통신의 문제나 LLM 회사의 해킹 가능성 때문에 데이터의 안전성을 완전히 보장하기 어렵다.

고객은 해당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벡터 DB를 제작·관리해야 되고 유료 LLM 비용을 지불해야 되지만, 인퍼런스를 위한 GPU는 필요하지 않다.

ChatGPT 구축 예시(랭체인, RAG)



3. 오픈소스 LLM을 파인 튜닝하는 방식



[구축 방식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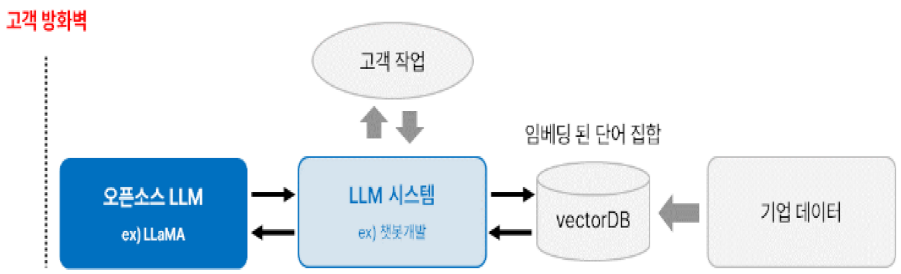
고객은 오픈소스 LLM을 자체 데이터로 파인튜닝 하여 자사에 특화된 LLM을 제작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소개한 RAG를 이용하는 방식들과 다르다.
여기서 핵심은 기존의 파운데이션(기본) 모델을 가져와서 파인튜닝 하는 과정을 거쳐 맞춤 LLM을 만든다는 점이다. 따라서 따로 벡터 DB를 만들 필요가 없다.

파인튜닝을 마친 모델은 일반 LLM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고객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해당 데이터를 바탕으로 맞춤 LLM에서 답변을 생성하여 고객이 제작한 내부 LLM 시스템(예: 챗봇)을 통해 출력한다. 오픈소스 LLM은 소스 코드, 데이터셋, 가중치 등을 공개하므로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다. 또한, 고객의 작업 정보가 외부로 이동하지 않으므로 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이 없다.

이 방식은 파인튜닝을 위해 기계학습(ML) 전문가와 우수한 개발 환경이 필요하다. 더욱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개발 인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작업을 외부 업체에 맡길 경우 상당한 비용이 들 수 있다.
LLaMA 모델을 활용해 알파카와 비쿠냐를 개발한 경우가 이 방식의 예이다. 이들 모델은 스탠퍼드 대학과 버클리 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이 공동 개발했으며, 특정 기업의 요구에 맞춰 제작된 것은 아니지만 파운데이션 모델을 파인튜닝 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고객은 해당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파인튜닝과 인퍼런스를 위한 GPU가 필요하며, 파인튜닝을 위한 전문인력이 없을 경우 이에 대한 비용도 고려해야 된다. 파인튜닝을 위한 GPU는 인퍼런스를 위한 GPU보다 더 높은 수준을 필요로 한다

4. 오픈소스 LLM과 RAG를 사용하는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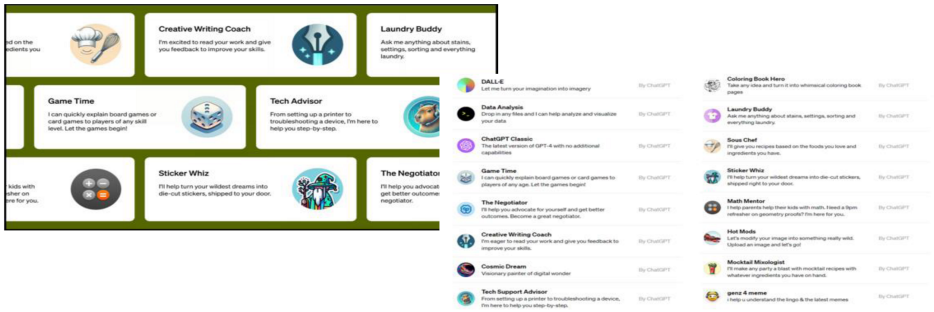


RAG와 오픈소스 LLM을 사용하는 방식은 3.2.1 RAG & 유료LLM API를 이용하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사용하는 LLM이 무료이고 기업 데이터의 외부 이동이 없다는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오픈소스 LLM은 Hugging Face와 같은 플랫폼에서 API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며, 사용하는 LLM의 종류에 따라 온프레미스(on-premise) 환경에서도 인퍼런스(추론)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온프레미스 방식을 사용할 경우, 프롬프트 데이터가 LLM 기업의 클라우드에 저장되지 않아 보안상의 우려가 적다. 그러나 온프레미스 방식은 모델의 인퍼런스를 위해 상당한 컴퓨팅 자원이 필요하다.

오픈소스 LLM은 유료 LLM보다 성능이 다소 떨어질 수 있지만, 비용이 적게 든다. 따라서 적절한 모델 선택에 따라 비용과 성능의 균형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팀의 서비스 개발에 특히 유용하다. 고객은 해당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벡터 DB를 제작·관리해야 되며, 인퍼런스를 위한 GPU가 필요하다.

5. GPTs를 활용한 마이 챗봇



이제 기업의 문서를 챗GPT에 보내고 챗봇을 자연어 입력으로 제작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경우 이 챗봇 앱을 이용하려는 고객도 이 서비스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11월말 현재 7000-20000개가 제작됨....한 사람이 700개 이상 만든 경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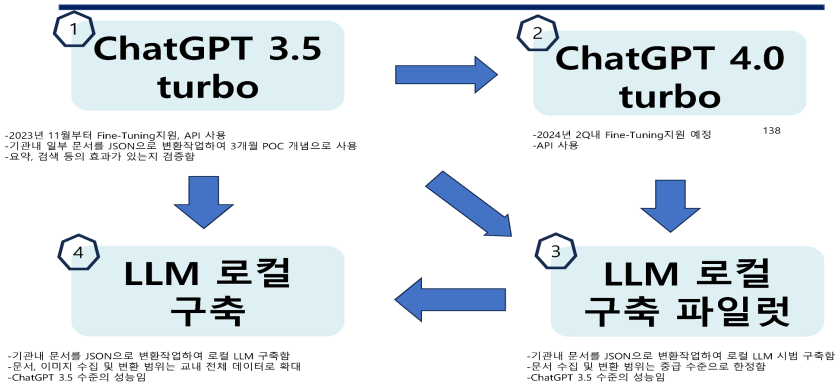
[구축 방식 요약]

GPTs는 GPT 빌더 대화창에서 간단한 채팅을 통해 생성할 수 있다. 사용방법은 ChatGPT에서 "Explore → Create a GPT"를 클릭하고, Create 창에서 대화를 통해 커스텀 GPT를 생성한다. 이름과 대표 이미지가 자동으로 제안된다. Configure 창에서 이미지, 이름, 설명, 답변 방식을 수정할 수 있다.
GPTs는 설정 지침에 대한 질문에 자동으로 답을 해주기도 하고 수정할 수도 있다. 보안 유지를 위해 "Instructions" 섹션에 기밀 유지 문구를 추가할 수 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Knowledge”란에서 파일을 업로드를 해서 커스텀 GPT의 특징을 더욱 두드러지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문 분야에 대한 GPTs라면 해당 분야의 자료를 업로드 하여 그것을 기반으로 사용자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특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OpenAI사가 시범적으로 만들어 놓은 GPTs는 “Explore →Made by OpenAI”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gptstore.ai/, https://gpts-store.net/

GPT 구축 로드맵 (2024년도)



LLM 활용방안 & 구축사례

생성 AI 미션이 내려오면은.....



생성 AI도입도 기존 솔루션/서비스에 **스며드는** 게 최상.....특히 , **Agentic 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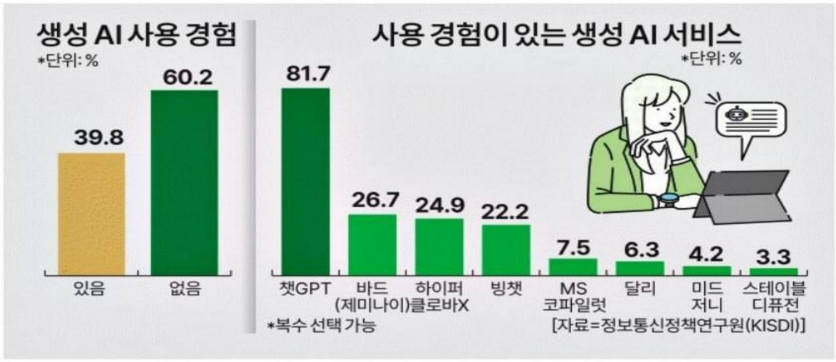
STT, Chatbot, RPA, ERP, SIEM, EMS, ShoppingM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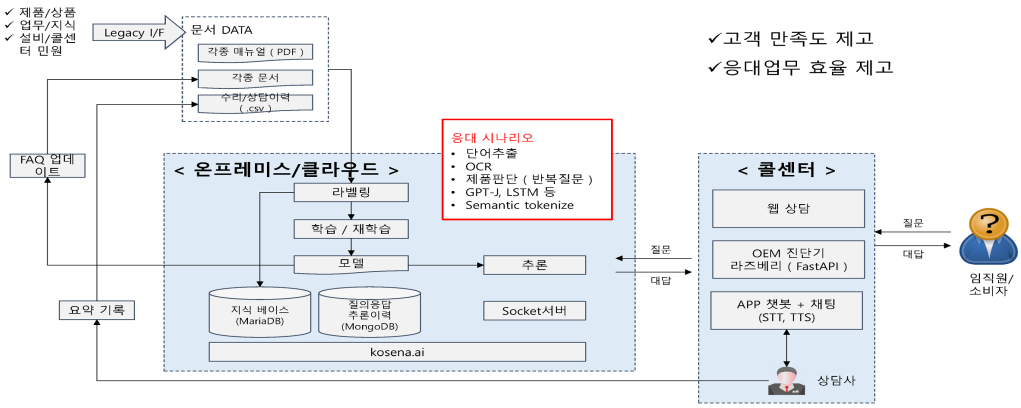


공공, 금융, 서비스 , 의료, 유통, et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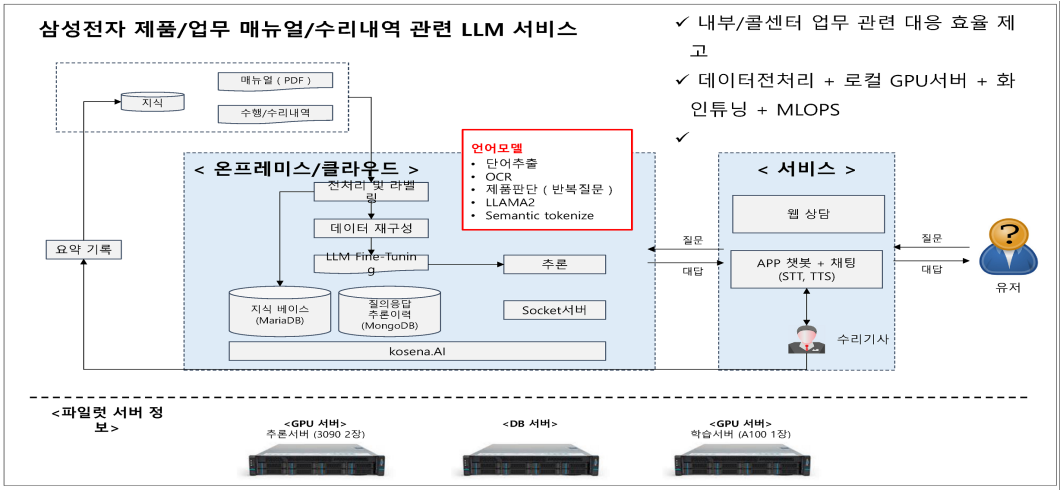
생성 AI , 이제 시작.....



LLM기반의 KMS (매뉴얼, 업무문서, 지식문서, 콜센터 등)



OO 전자





제조공정 설비/공정/제조 매뉴얼 검색 및 요약, 절차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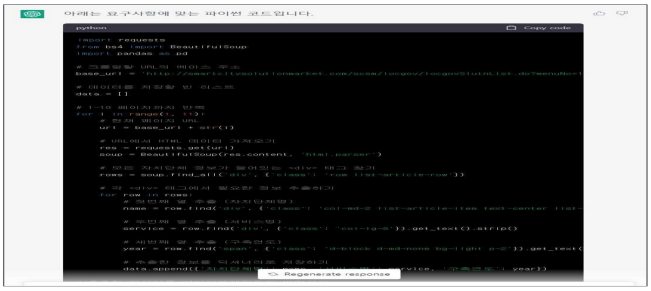
제조공정 설비 매뉴얼 번역





영업 프로젝트 검색, 요약, 특정포인트 검색
구매/경비 업무 프로세스 자동 응답

마케팅 초안, 기획, 시장조사, 업체/설문 분석



AI 코딩, IT 지원



삼성 AI '루비콘 프로젝트'
MS·구글·팔란티어 3파전

가전 데이터 분석, 고객맞춤 답변
PoC 검증…조만간 본사업 추진
자체 AI 개발 넘어 외부협력 확대

삼성전자가 주요 가전제품 데이터를 분석해서 고객 맞춤형 답변을 제공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에 나선다.

일명 '루비콘 프로젝트'로 불리는 이 사업에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팔란티어테크놀로지스 등 주요 AI 업체 세 곳이 경쟁을 벌인다.

삼성전자가 자체 AI 기술을 개발하고 있기만 이와 별도로 실력 있는 글로벌 기업과 협업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DX부문은 지난 7월 1개월 동안 MS(오픈AI), 구글(제미나이), 팔란티어테크놀로지스 등 3개 기업을 대상으로 개념증명(PoC)을 진행했다.

이번 PoC는 DX부문 내 루비콘 태스크포스(TF)가 진행, 회사 내부에선 루비콘 프로젝트로 불린다.

루비콘TF는 3개 기업에 갤럭시 스마트폰 최신 기종 관련 주요 데이터를 학습시키도록 했다. 이후 DX부문 내 주요 부서 10여군데 소속 직원이 각자 시스템에 접속해서 다양한 질문을 했다.

갤럭시 최신 기종 관련 정보부터 사후관리(AS) 등 직원이 쏟아낸 질문에 이들 3개 기업의 AI가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하는지를 테스트하는 데 PoC 초점이 맞춰졌다. AI 약점으로 꼽히는 환각현상(함부시네이션·잘못된 정보를 그럴듯한 말로 표현)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중점 살폈다.

삼성전자는 조만간 3사 가운데 하나를 선정해서 본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 내 다양한 가전 데이터를 학습시켜 삼성닷컴 등 고객 응대에 활용할 AI 서비스를 만드는 게 궁극적 목표"라면서 "일단 PoC 이후 사내 테스트를 더 거친 후 점차 외부 고객 서비스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최근 삼성전자가 강조하는 AI 확장 기조와도 맞물린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자체 생성형 AI '가우스'를 개발, 내부와 주요 제품에 결합하고 있다. 구글 제미나이와 함께 갤럭시S24 시리즈에 탑재, 세계 시장에서 성능을 평가받고 있기도 하다.

삼성전자는 이 밖에도 삼성리서치에서 생성형 AI 관련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자체 개발 AI 외에 글로벌 주요 AI와의 협력도 이어 간다. 루비콘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이번 PoC에 국내 AI 업체는 참여가 배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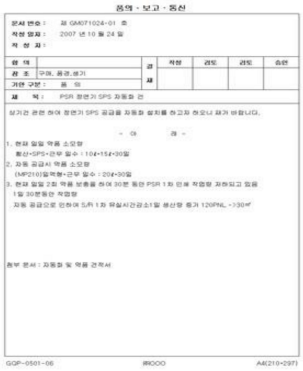
김지선·배옥진기자 river@etnews.com

▶관련기사 8면

삼성전자 루비콘 프로젝트 개념증명(PoC) 개요

프로젝트명	개념증명(PoC) 특징	PoC 참여 사업자	추후일정
루비콘	고객 질문에 맞춤 답변을 제공하는 생성형 AI 개발	-마이크로소프트(오픈AI) -구글(제미나이) -팔란티어테크놀로지스	조만간 PoC 결과 1위 사업자 결정, 프로젝트 제안요청서(RFP) 전달 예정, 연내 시스템 개발 목표

OO공사



보도자료를 위한 내부 조사 및 품의자료

5만쌍



실제 보도자료



행안부, 과기부, 법제처 법령 및 IT 시행문서, RFP

- ✓ 내부 직원의 업무 수행 효율 제고
- ✓ 2023 POC, 2024 내부 사용, 2025 본사업(50억 이상) 예정임
- ✓빅4 POC중임(네/카/KT/SKT)



공공 담당자에 대한
문서 검색, 요약, 절차 안내 등의 지원

OOOO밴드



콜센터 챗봇 도우미



생성 AI 포털, 그룹웨어 연동

OO닥

멀티모달 AI 활용예시 –자동차 사고 접수



사고 접수
가입한 보험 검색
피해 예상 견적

두번째 사례입니다. 차량 파손 사진을 전송하면, 사진속 장소를 분석하여 사고현장으로 출동, 내가 가입한 보험 검색, 피해예상 금액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OO일렉트릭

LLaMa2 기반의 화인튜닝
전기에 쓰이는 제품들
제품의 매뉴얼/수리내역 등을 학습



Smart Power Solu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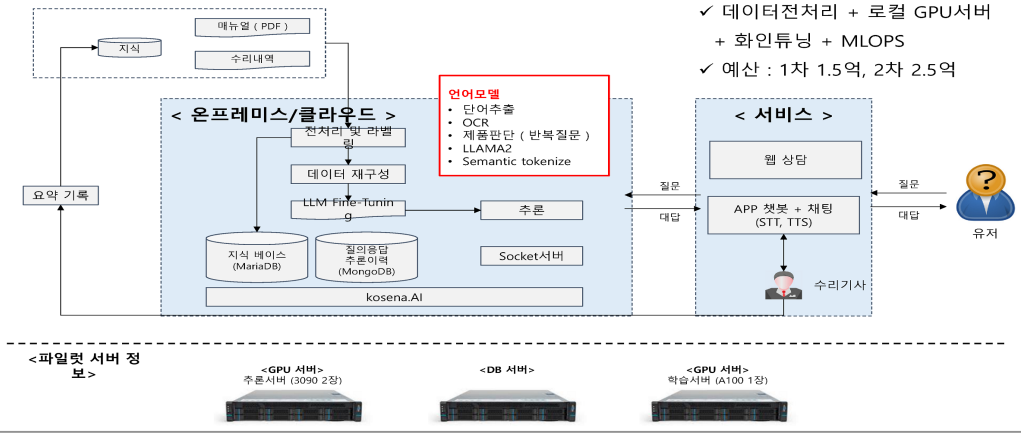
Solutions	Systems	Devices
GridSol CARE	Power Transmission	저압기기(LV)
EMS	Power Distribution	고압기기(MV)
SCADA	Modular Substation	계전/계측/계량기기
DMS	PV System	DC 전력기기
xEMS	ESS	스마트 기기
Micro Grid		
EV-CHARGER		
AMRS		

Smart Automation Solution

Solutions	Products
자동차	저압드라이브
식/음료	고압드라이브
수처리	소프트스타터
냉난방공조	PLC
에너지절감	Servo/Motion
	HMI
	유성감속기
	SOFTWARE

LS 일렉트릭 매뉴얼/수리내역 관련 LLM 서비스

✓ 내부 업무 관련 대응 효율 제고
✓ 데이터전처리 + 로컬 GPU서버 + 화인튜닝 + MLOPS
✓ 예산 : 1차 1.5억, 2차 2.5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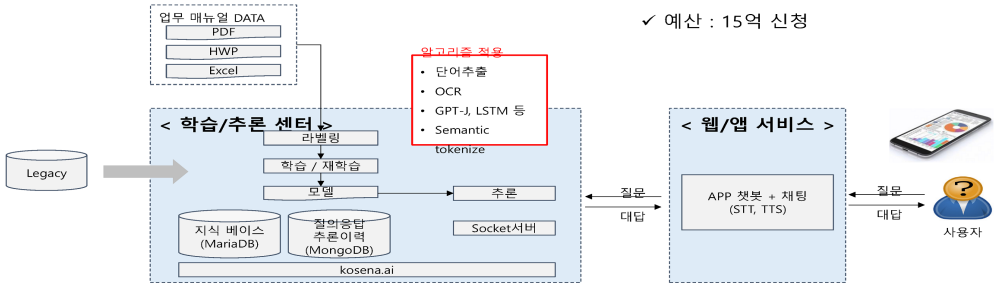


<파일럿 서버 정보>

OOOO공사

인천공항
LLM기반의 업무 매뉴얼 챗봇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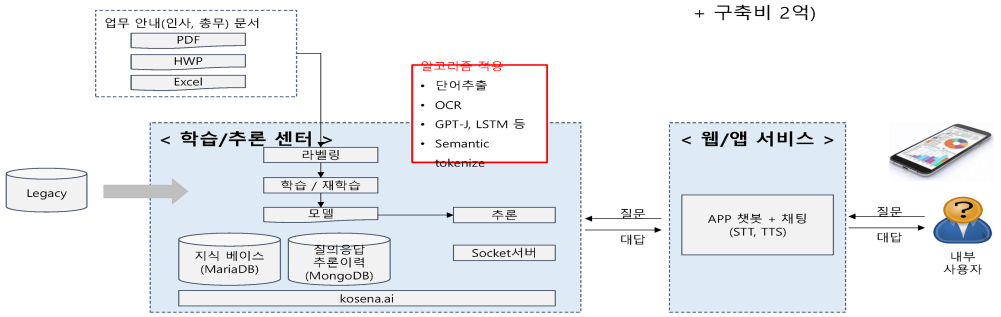
- ✓ 공항 업무 관련 대응 효율 제고
- ✓ 데이터전처리 + 로컬 GPU서버 + 화인튜닝 + MLOPS
- ✓ 예산 : 15억 신청



OOO공사

수자원공사
LLM기반의 업무 안내 챗봇 서비스

- ✓ 인사, 총무 업무 안내
- ✓ 예산 : 4억(H100장착서버 2억 + 구축비 2억)



OOOO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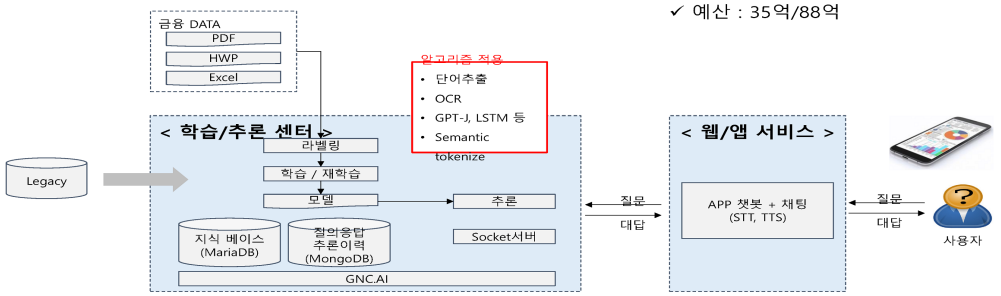


LH 고유 업무 문서, 유관 분야 전문 데이터
: 편람, 매뉴얼, 현행법령 및 행정규칙, 표준·전문시방서

OO은행/O협

LLM기반의 금융 서비스

- ✓ 금융 업무 관련 대응 효율 제고
- ✓ 데이터전처리 + 애저 클라우드 + 화인튜닝 + MLOPS
- ✓ 예산 : 35억/88억



OOOO원



재무 부문에서 생성형 AI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례는 계약 및 문서 검토, 재무 및 경영 보고 초안 작성, 정책 해석, 코딩 지원, 예측 및 예산 편차 설명이다. 생성형 AI는 계약서에서 특정 용어를 검색하고, 오류를 발견하며, 핵심 내용을 요약할 수 있다. 또한, 일상적인 언어로 질문을 하면 관련 약관이나 조항 등에 답변을 얻을 수 있어 계약 관련 문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재무팀이 평가하고 수정해야 하는 다양한 업무 문서는 물론이고, 의사 결정에서 참고가 되거나 반드시 필요한 경영 보고서 초안을 작성할 때도 유용하다. 이미 작성된 보고서에서 필요한 항목을 검색하거나 요약하고, 회의 내용을 정리하고 요약한 후 이를 기반으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무 정책을 검토하고 재무 업무에서 행당 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권장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재무나 금융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코볼(COBOL)과 같은 오래된 코딩 언어 코드를 SQL이나 파이썬(Python) 같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번역할 때 생성형 AI의 코딩 능력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예측 및 예산 편차에 대한 설명 제공이나 경영진과 이사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있도록 이러한 추세와 인사이트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

OOO넥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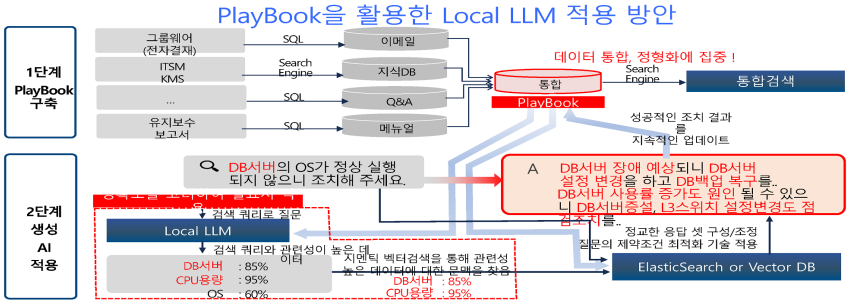


정교한 대화형 검색 기능을 제공하며, 법률 문서 초안 작성, 사례 요약, 문서 업로드
-> 사용자가 법률 문서에서 핵심 인사이트를 몇 분 안에 분석, 요약, 추출

OO원/OO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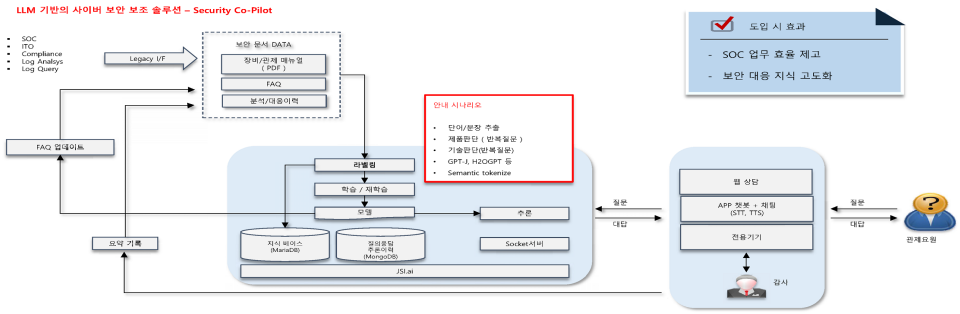
LLM기반의 IT관제 지식서비스/내부 코딩 지원

PlayBook을 활용한 Local LLM 적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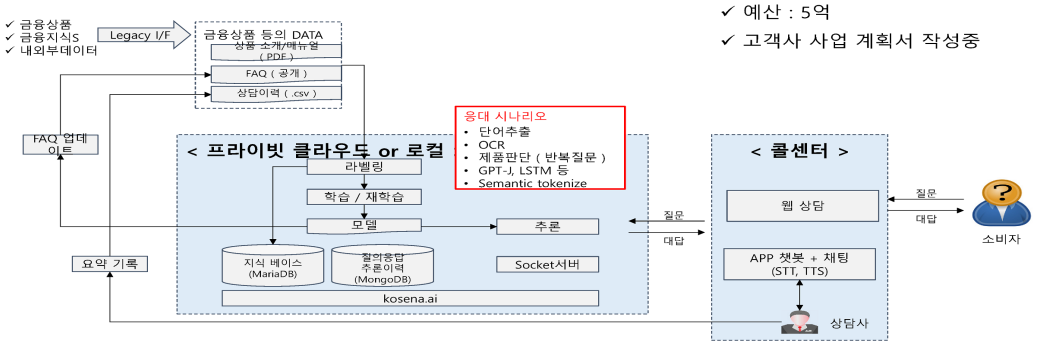
OOOO원

LLM기반의 보안관제 지식서비스



OO금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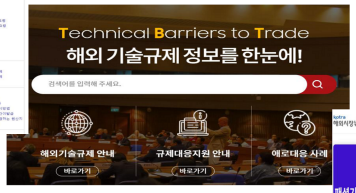
- ✓고객 만족도 제고
- ✓응대업무 효율 제고
- ✓ 정부 R&D 과제로 신청
- ✓ 예산 : 5억
- ✓ 고객사 사업 계획서 작성중



OO플라자

- ✓ 플랫폼 정보제공 대응 효율 제고
- ✓ 영문, 데이터전처리 + 로컬 GPU서버 + 화인튜닝 + MLOPS
- ✓ 예산 : 자체 배정, 과제/R&D 예산 신청 or SI 사업 성과로 패키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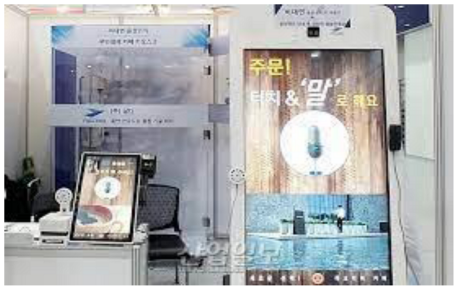
LLM기반의 무역 플랫폼 고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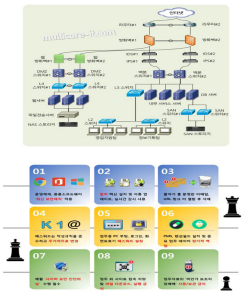
OO시스

- ✓ 키오스크 음성주문 효율 제고, 멀티모달 활용
- ✓ 서비스 주문 메뉴/소상공인 주문 데이터전처리 + 로컬 GPU서버 + 화인튜닝 /검색스킬 + MLOPS
- ✓ 예산 : 자체 배정, 추후 과제/R&D 예산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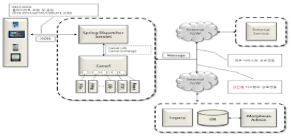
대형멀티모달모델(LMM) 기반 보안 가이드



서버구축 가이드
보안 규정
보안 가이드



멀티모달 LLM
화인튜닝 or RA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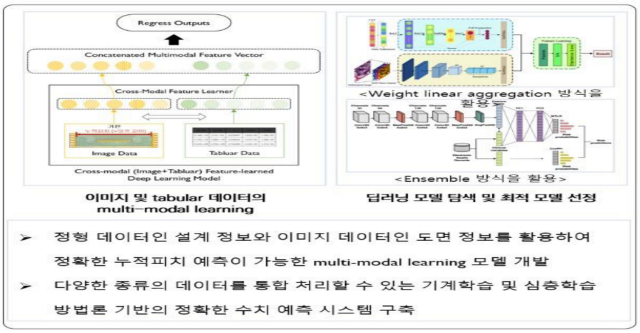




서비스 구축 안내
보안 규정 안내

멀티모달 기존 사례

▪ 이미지 및 Tabular 데이터를 활용한 누적피치 예측



이미지 및 tabular 데이터의 multi-modal lear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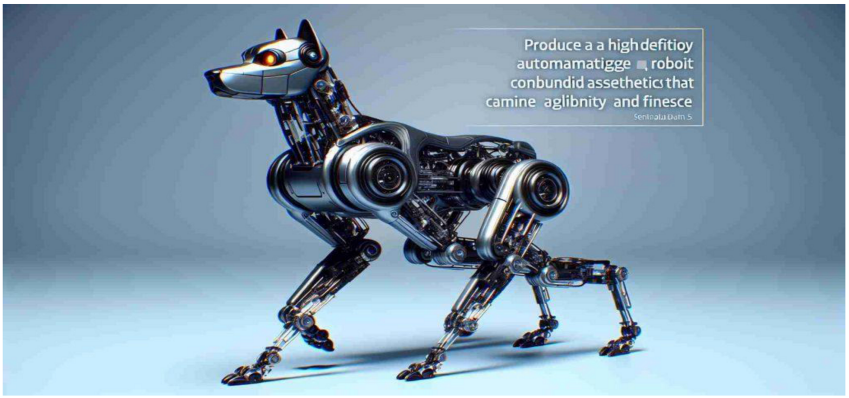
딥러닝 모델 탐색 및 최적 모델 선정

- 정형 데이터인 설계 정보와 이미지 데이터인 도면 정보를 활용하여 정확한 누적피치 예측이 가능한 multi-modal learning 모델 개발
-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통합 처리할 수 있는 기계학습 및 심층학습 방법론 기반의 정확한 수치 예측 시스템 구축

코딩이란? -> 영어를 쓴다는 것..!!!!







1인 기업이 충분히 가능, 수익율을 최대로

Chatgpt 팀장, Claude 차장, Dall-E 과장,
RPA 대리, Excel 사원.....



두통, 우울증, 불면증 및 스트레스 치료



참고문헌

장철승(2022), '메타버스 경제와 일자리창출전략,' 한국상업교육학회 춘계학술발표자료, 3033. 05.28.
(3033),' 글로벌 메타버스경제와 기업경영전략,' 한국경영교육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 2022.05.07.
(2022), '메타버스경제와 소비자활용사례,' 한국소비자학회 춘계공동 학술발표논문, 2022.04.28.
고선영 · 정한균 · 김종인 · 신용태(2021). '메타버스의 개념과 발전 방향. 정보처리학회지, 28(1), 7-16.
김광집(2021). 메타버스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현실과 가상세계의 진화. 한국방송 · 미디어공학회,26(3), 10-19.
김기홍 · 유정민(2021). 문화상품을 활용한 디지털 문화유산 모바일 증강현실 응용 개발.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6(1), 85-92.
김용일(2011). "모바일 관광정보 서비스품질 측정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서울.
김윤정(2021). 게임과 비게임 메타버스 콘텐츠에서 나타나는 유형의 융합화에 관한 연구. 에니메이션연구, 17(3), 80-99.
김철민(2022), '메타버스메타버스(Metaverse)관광의 개념,사례,이슈,발전방안에 관한연구,' 한국관광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 2021.12.13.
석대건(3022), '2030년 메타버스 관련 일자리 2300만개 이상 창출 예상,' SBIZNEWS, 2022.01.31.
장제익(2021). "가상현실관광체험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경기도.
전자신문(2021). 아이폰12 프로 '라이다 센서' 활용 · 틱톡 AR 필터 "실감 나네" 2021.01.07.
정병욱(2015). ICT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관광의 추진사례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11), 509-523.
정보통신기획평가원(2022), " 메타버스 최근 동향과 시사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이슈분석 211호], 2022.3.31.
최재붕(2022)' 디지털 대전환시대의 미래산업일자리 전략,' 국회 국민의힘 일자리 특별위원회 세미나, 2022.4.28.
한겨레b(2021). 스토킹에 유사성행위까지 · · · '신종' 메타버스 아동 성범죄, 처벌 가능한가. 2021.09.23
한겨레신문(2021). 머스크, 뇌에 뉴럴링크 칩 심은 돼지 공개. Retrieved from 제91차 한국관광학회 국제학술대회 및 연구논문
발표대회,2021.12.02.https://www.hani.co.kr/arti/science/technology/959856.html
한라일보(2021). 제주도, 메타버스로 '헬로 제주(Hello Jeju)' 맵 구현..
타임스(2021). 여성 아바타 뒤만 쫄쫄 따라가 '성희롱' · · · 사이버 범죄 사각지대에 놓인 '메타버스' 의 그림자. 2021.08.18.
Batson, T.(2008). The institutional path for change in this age: Andragogy, not pedagogy. Campus Technology, 10(08).
Haufe-Lexware.Motor Trend(2021.09.03.).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로운 트렌드의 시작
SBSNEWS(2021). '버튜힘' 박원 · 박지도, UN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 2021.12.06.
Sheridan, T. B.(1992). Musings on telepresence and virtual presence. Presence: Teleoperators &Virtual Environments, 1(1
"생성형 AI-3"… 공공분야 활용 방안
"생성형 AI-2"… 공공분야 활용 방안
"생성형 AI-1"… 공공분야 활용 방안
"인공지능(AI)"… 모든 곳에 스며들고 있다
"ChatGPT"… 보안 위협에 따른 대응
"인공지능"… 바꿀 미래
"인공지능"… 활성화와 글로벌 사례
"인공지능"… 활성화의 필요성
"인공지능"… 활용·확산 배경과 동향
"생성 AI"… 부상과 산업의 변화
"인공지능"… 국가안보 관점의 기술 도전
"인공지능"… 국가안보와 전략 기술
"인공지능"… 인프라를 둘러싼 오늘날의 환경 변화
중국 미국보다 6배 많은 AI 특허 출원으로 특허 경쟁 심화
"인공지능 시대"… 공공의 역할과 할 일
"AI 반도체 시장"… CPU·GPU 등 영역을 넘나드는 개발 경쟁 치열
"챗GPT"… 몰고 온 생성 AI 열풍은 어디까지

제 4 분과

조 세 법

장소 : 119호 사회자 : **윤재원 교수** (홍익대)

시 간	발표논문 제목	저자 및 발표자*	토론자
15:00 ~ 16:30	A Study on Sanctions Related to Tax Invoices –Focusing on Comparisons Between Korea, the EU, and the UK–	**송보경*** (서울시립대) 박 훈 (서울시립대)	**정용헌** (세무법인 정윤)
	서울형 주택세제에 관한 소고 –미국 및 일본 도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영진*** (서울시립대) 박 훈 (서울시립대)	**문필주**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유세 과세의 개념 재정립에 관한 연구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예지** (서울시립대)

A Study on Sanctions Related to Tax Invoices

-Focusing on Comparisons Between Korea, the EU, and the UK-

송보경 · 박 훈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A Study on Sanctions Related to Tax Invoices

-Focusing on Comparisons Between Korea, the EU, and the UK-

Bogyeong Song* · Hun Park**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sanctions imposed for tax invoice violations, with a specific focus on comparing the approaches of Korea, the European Union (EU), and the United Kingdom (UK). Tax invoices are vital for ensuring transparency and compliance within tax systems, yet violations related to their issuance or use can result in significant financial penalties and legal repercussions. This paper provides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legal frameworks governing tax invoice sanctions in Korea, the EU, and the UK, exploring both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ir enforcement mechanisms, penalty structures, and underlying policy objectives. Through the review of case studies and relevant legislation across these jurisdictions, the research highlights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each system, offering insights for enhancing tax compliance policies. The findings reveal that, despite shared principles in addressing tax invoice violations, there are notable differences in the severity and application of sanctions. For example, Korea distinguishes between fictitious tax invoices for non-existent transactions and inaccurate tax invoices for real transactions with incomplete information, yet applies the same level of input tax deduction disallowance to both. This paper compares the tax enforcement systems of Korea, the EU, and the UK, recommending reforms to address the relatively harsher sanctions in Korea's system. It also advocates for increased international cooperation among tax authorities to create a more harmonized and effective global tax compliance framework.

<Key words> Tax Invoices, Taxation, VAT, Sanctions, Korea, European Union (EU), United Kingdom(UK)

* Master's student, The Graduate School of Science in Taxation, bksong419@uos.ac.kr, First Author
** Professor, Department of Taxation, University of Seoul, phn@uos.ac.kr, Corresponding author

Ⅰ. Introduction

Taxation is a cornerstone of every nation's fiscal policy, providing essential resources for public services and ensuring social stability. In this framework, tax invoices play a pivotal role in promoting transparency and accuracy in tax collection between businesses and the government. These invoices provide clear records of a company's sales and expenses, which are critical for the precise calculation and payment of taxes. Given the structure of the Value-Added Tax (VAT), the tax invoice system is rigorously managed to ensure transparency in transactions and the accurate identification of the tax base. However, issues such as improper issuance, non-issuance, or fraudulent use of tax invoices can result in substantial revenue losses for governments and create imbalances within the tax system.[1)]

Korea's VAT law imposes strict sanctions for the issuance of fabricated or misrepresented tax invoices, including disallowing input tax deductions, imposing additional taxes, and in more serious cases, pursuing criminal penalties. Since the VAT system was introduced in 1977, tax invoices have served as crucial documents for VAT collection, verifying that businesses have collected VAT from their counterparties. Despite their central role, fraudulent practices such as issuing false invoices or failing to issue them altogether remain persistent challenges.[2)]

Fraudulent activities in this context include unreported transactions where tax invoices are not issued, the misuse of collected taxes for personal gain instead of remitting them to the tax authorities, and the issuance of false invoices to claim deductions for input tax that was never collected. In response to these issues, Korea implemented an electronic tax invoice system in 2010, mandating both the issuance and transmission of tax invoices.[3)] Despite these efforts, Korea's tax invoice system continues to face higher compliance and collection costs compared to other countries, and challenges remain in effectively verifying tax compliance through financial

---

1) Brockmeyer, Anne, Giulia Mascagni, Vedanth Nair, Mazhar Waseem, and Miguel Almunia. "Does the Value-Added Tax Add Value? Lessons Using Administrative Data from a Diverse Set of Countrie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38, no. 1 (2024) : 107-132.

2) Kwon, Hyungki. "A Study on Classification of Fictitious Tax Invoices and Misrepresented Tax Invoices, and its related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The Korean Association of Tax Law 4(2) (2019) : 51-92.

3) Ahn Changnam & Yang Suyoun, "A Study on the Tax Crimes Associated Tax Invoic." Journal of Tax Law Research. 22(2) (2016) : 471-507.

information.

Korea's VAT law enforces disallowances of input tax deductions and imposes additional taxes for misrepresented tax invoices, with criminal penalties in severe cases. Since the 2010s, the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has been applied to VAT regulations, prompting concerns about the rigid enforcement of sanctions for tax invoice errors resulting from minor mistakes or oversights. In response, the government has revised relevant laws to safeguard taxpayers' rights while preserving the integrity of the tax invoice system.

Despite this, Korea still prioritizes the formalities of tax invoice preparation and verification over the substance of the underlying transactions. As a consequence, both fabricated tax invoices —issued without any actual transaction—and inaccurate tax invoices, where genuine transactions occurred but failed to meet formal requirements, are subjected to the same penalty : the disallowance of input tax deductions.[4] While some inaccurate tax invoices may have defects equivalent to those of fabricated ones, many do not. Thus, imposing uniform sanctions in all cases calls for a more nuanced and rigorous reassessment.

Tax invoices serve as essential documentation for VAT collection and form the backbone of accurate tax reporting. In Korea, tax invoices are used for cross-checking to detect fraudulent transactions, whereas most countries, including the EU, rely on financial data without employing such cross-checking mechanisms. Since 2010, the Korean government has worked to prevent fraud by mandating the submission of tax invoice summaries and implementing an electronic tax invoice system.[5]

Despite these efforts, fraudulent transactions continue to occur. To tackle these challenges,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have reinforced sanctions related to tax invoices, recognizing their pivotal role in tax administration. This paper seeks to compare and analyze the tax invoice sanctions in Korea, the EU, and the UK, aiming to identify th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strengths, and weaknesses of each system, with a focus on proposing improvements to Korea's tax invoice sanctions.

---

4) Jang, Myungwon, Jang Jaehyng. (2024). A Study on Sanctions for the Incorrect Tax Invoice, on its Excessiveness and Mismatch. Tax and Accounting Journal. Vol. 25, No. 4. 53-76.

5) Hwang, J. M. & Lee, C. D. (2016). The Introducing of Electronic Tax Invoice System as a Factor to User Satisfaction and Tax Payment Compliance. Journal of CEO and Management Studies Vol. 19 No. 2. 267-288.

In Korea, additional taxes and criminal penalties are imposed under the Tax Offenders Punishment Act for failing to issue or for issuing false tax invoices, with the electronic tax invoice system mandating both issuance and transmission. In contrast, the EU and UK impose fines and conduct tax audits in cases of non－issuance or false issuance, while also enhancing enforcement through mandatory tax invoice issuance and transmission.

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tax invoice sanctions in Korea, the EU, and the UK, examining the distinctive features of each system. Korea's sanctions are relatively strict, but the electronic tax invoice system presents potential challenges, such as errors in issuance and transmission. On the other hand, the EU and UK have more lenient sanctions, though they employ strong enforcement mechanisms such as fines and tax audits.

Through this comparative analysis of tax invoice sanctions in Korea, the EU, and the UK, the paper seeks to identify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each system and propose improvements for Korea. A cross－country comparison of sanction systems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more harmonized tax invoice regulations across borders. Ultimately, this research aims to inform policy recommendations that enhance tax compliance and optimize the efficiency of tax systems, while offering targeted suggestions for refining Korea's electronic tax invoice system and reinforcing tax invoice－related sanctions.

Ⅱ. The Significance of Tax Invoices and Related Sanctions in Korea

In Korea, tax invoices play a critical role in the administration of the VAT system, which is one of the primary sources of government revenue. Tax invoices are legally mandated documents used to record the details of taxable transactions between businesses and consumers. Their proper issuance is crucial for ensuring transparency in financial transactions, preventing tax evasion, and maintaining the integrity of the tax system.

1. Significance of Tax Invoices in Korea

In Korea, tax invoices serve as official records of sales and purchases, detailing the quantity and value of goods or services exchanged, the tax amount, and the identities of the buyer and seller. This enables the National Tax Service (NTS) to verify the accuracy of tax filings and to ensure that all taxable transactions are properly accounted for.

Tax invoices are essential for businesses to claim VAT deductions on purchases. By collecting and submitting valid tax invoices, businesses can accurately calculate the VAT owed or refundable, ensuring compliance with the country's VAT regulations. The proper management of tax invoices is integral to avoiding discrepancies in tax filings and ensuring the smooth operation of the VAT system.

One of the primary functions of tax invoices in Korea is to prevent tax fraud. By requiring businesses to issue tax invoices for each taxable transaction, the Korean tax authorities can minimize the risk of underreporting income, creating fraudulent deductions, or fabricating transactions. Tax invoices thus play a pivotal role in safeguarding the integrity of the tax system.

Beyond their role in taxation, tax invoices in Korea serve as legal documentation in the event of disputes between parties involved in a transaction. These documents provide legally recognized proof of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transaction, offering protection to both buyers and sellers.

2. Sanctions Related to Tax Invoices in Korea

To ensure compliance with tax invoice regulations, Korea has implemented a range of sanctions for violations, including the failure to issue invoices, issuing incomplete or inaccurate invoices, and engaging in fraudulent activities related to tax invoices.

Businesses that fail to issue tax invoices or issue incorrect or incomplete invoices are subject to fines. These penalties are designed to ensure that all taxable transactions are properly documented and that the VAT system operates smoothly. For example, non－compliance with the issuance of tax invoices can result in penalties equivalent to a percentage of the unissued or incorrectly issued amount.

Korea enforces strict sanctions for tax fraud involving the manipulation or falsification of tax invoices. Offenses such as issuing fake invoices to claim fraudulent VAT deductions or evading taxes through improper invoicing practices can lead to heavy fines and, in some cases, criminal prosecution. The severity of these penalties reflects the government's commitment to preventing tax evasion and protecting public revenue.

In addition to penalties, Korea has introduced incentives to encourage compliance with tax invoice regulations. For instance, businesses that voluntarily disclose errors in their tax invoices or participate in government programs aimed at improving tax compliance may receive reduced penalties or other benefits.[6)]

The Korean National Tax Service (NTS) also conducts regular audits to ensure that businesses comply with tax invoice regulations. These audits not only help identify discrepancies and violations but also serve as a deterrent to non－compliance. Businesses found to be in violation of tax invoice regulations during these audits may face additional penalties and corrective measures.

In Korea, tax invoices are fundamental to the proper functioning of the VAT system, ensuring transparency, compliance, and the prevention of tax fraud.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a robust system of sanctions to penalize non－compliance and fraudulent practices related to tax invoices, with a focus on safeguarding public revenue. By maintaining strict penalties and conducting regular audits, the Korean tax authorities aim to foster greater accountability and compliance within the country's tax system.

Ⅲ. The Significance of Tax Invoices and Related Sanctions in the EU

In the EU, tax invoices play an integral role within the VAT system, which is a harmonized

6) Sung, Myung Jae, Rajul Awasthi, and Hyung Chul Lee. "Can tax incentives for electronic payments reduce the shadow economy? : Korea's attempt to reduce underreporting in retail businesses." Korea's Attempt to Reduce Underreporting in Retail Businesses (January 9, 2017).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7936 (2017).

tax framework applied across all member states. VAT is one of the EU's primary sources of revenue, and tax invoices are crucial for ensuring the transparency, accuracy, and compliance of taxable transactions within the single market. The significance of tax invoices in the EU extends beyond individual countries, as they also serve to standardize tax documentation for cross-border transactions and help to maintain the integrity of the EU's tax system.

1. Significance of Tax Invoices in the EU

One of the key features of the EU's VAT system is the harmonization of tax rules across member states. Tax invoices are essential tools that enable businesses operating across different countries within the EU to comply with VAT regulations that are standardized across borders. The uniformity of tax invoices ensures consistency in how VAT is reported, collected, and remitted throughout the EU.

In the EU, tax invoices are vital for verifying cross-border transactions within the single market. They provide detailed records of the value of goods or services, the applicable VAT rate, and the identities of the buyer and seller. This transparency allows tax authorities across different member states to verify the accuracy of tax filings, ensuring that VAT is properly applied and collected, even in transactions that span multiple jurisdictions.

The standard VAT rate in the EU is set at a minimum of 15%, with no upper limit.[7] This rate applies to the majority of goods and services supplied across member states. Additionally, certain derogations allow some member states to apply reduced rates, not lower than 12% (referred to as the "parking rate"), on specific goods and services that are not included in Annex Ⅲ of the VAT Directive.[8] To ensure equal treatment, all member states have had the opportunity to introduce a parking rate for these goods and services under the same conditions, by a specified date.

Tax invoices are critical for both domestic and cross-border compliance with VAT regulations. Businesses must issue tax invoices for all taxable transactions, allowing them to reclaim VAT on their purchases and ensuring that the correct amount of VAT is charged on

7)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taxation/vat/vat-rates_en

8) *ibid.*

sales. Properly issued tax invoices are fundamental for ensuring that VAT is accounted for correctly in both B2B and B2C transactions across the EU.

One of the EU's key challenges is the prevention of VAT fraud, particularly cross-border fraud, such as carousel fraud. Carousel fraud is particularly harmful because it involves organized criminal networks that abuse the VAT system, leading to significant financial losses for EU governments. It is estimated that carousel fraud accounts for a substantial portion of the 'VAT gap', which represents the difference between expected and actual VAT revenue. Some estimates place carousel fraud at up to a quarter of uncollected VAT across the EU annually.[9] Tax invoices are pivotal in preventing such fraudulent activities by providing an official record of transactions. Accurate and transparent tax invoices reduce opportunities for VAT fraud and contribute to the overall integrity of the EU's tax system.

In addition to their role in VAT compliance, tax invoices serve as legal documentation in the event of disputes between businesses or between businesses and tax authorities. They provide clear and legally recognized proof of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ransactions, which can be critical in resolving cross-border disputes.

2. Sanctions Related to Tax Invoices in the EU

According to the EU Taxation and Customs Union, member states lost approximately €61 billion in VAT due to fraud in 2021.[10] In response, the EU has implemented strict sanctions to enforce compliance with tax invoice regulations and prevent fraudulent practices. Given the complexities of cross-border transactions and the harmonized VAT system, enforcement mechanisms are designed to protect the integrity of the single market and ensure consistency across member states.[11]

---

9) European Anti-Fraud Office. OLAF and partners target VAT carousel fraud in cross-border operation. retrieved on September 5, 2024. https://anti-fraud.ec.europa.eu/media-corner/news/olaf-and-partners-target-vat-carousel-fraud-cross-border-operation-2018-10-03_en

10)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taxation/vat_en#fight-against-vat-fraud

11) Turksen, Umut, Donato Vozza, Reinhard Kreissl, and Fanou Rasmouki, eds. Tax Crimes and Enforcement in the European Union : Solutions for law, policy and practice. Oxford University Press, 2023.

Member states within the EU impose financial penalties for businesses that fail to issue tax invoices, or that issue incorrect or incomplete invoices. These penalties are designed to ensure that all taxable transactions are properly documented and that VAT is accurately reported and collected. The specific penalties can vary by country, but all member states impose fines or sanctions for non－compliance with VAT invoice requirements.

The EU is particularly vigilant in addressing VAT fraud,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cross－border transactions. Fraudulent activities, such as issuing false invoices to claim fraudulent VAT refunds or manipulating invoices to evade VAT, are subject to severe penalties. These sanctions can include significant fines, legal action, and even criminal prosecution for those involved in large－scale VAT fraud.

EU member states conduct regular audits to ensure that businesses comply with tax invoice regulations. These audits help identify discrepancies, non－compliance, and potential fraud. In cases of non－compliance, businesses may face additional penalties and corrective measures. Audits also serve as a deterrent, encouraging businesses to maintain accurate and transparent tax records.

One of the unique aspects of the EU's approach to VAT compliance is the high level of coordination between tax authorities in different member states. The VAT Information Exchange System (VIES) facilitates the sharing of data on cross－border transactions, allowing tax authorities to track and verify the accuracy of tax invoices issued across different countries. This coordination helps prevent cross－border VAT fraud and ensures that businesses operating within the EU face consistent regulations and enforcement mechanisms.

The EU has worked to harmonize not only VAT regulations but also the sanctions imposed for violations. This harmonization ensures that businesses operating in multiple EU countries face consistent penalties for non－compliance, reducing the complexity of cross－border operations and promoting a more level playing field within the single market.

In the EU, tax invoices are fundamental to the functioning of the VAT system, ensuring transparency, compliance, and the prevention of tax fraud, particularly in cross－border transactions. The EU has implemented a robust framework of sanctions to address non－compliance and fraudulent practices, with a focus on safeguarding the integrity of the single market and ensuring that tax revenue is accurately collected. By maintaining strict penalties, regular audits, and fostering coordination between member states, the EU aims to promote greater

accountability and compliance with VAT invoice regulations across its member states, while also supporting the efficient functioning of the broader European economy

Ⅳ. The Significance of Tax Invoices and Related Sanctions in the UK

In the United Kingdom, tax invoices hold significant importance within the context of the VAT system, which is a primary source of government revenue. Tax invoices are essential for documenting taxable transactions, ensuring that both businesses and consumers comply with VAT regulations, and providing transparency in tax reporting. The proper issuance and handling of tax invoices are critical to the integrity of the UK tax system, as they serve not only to verify VAT payments but also to prevent tax evasion and fraud.

1. Significance of Tax Invoices in the UK

Tax invoices in the UK provide a detailed record of transactions, including the value of goods or services, the VAT amount, and the identities of the buyer and seller. These invoices serve as a key mechanism for Her Majesty's Revenue and Customs (HMRC) to verify that businesses are accurately reporting their taxable transactions and paying the correct amount of VAT.[12)]

The UK's VAT system requires businesses to issue tax invoices for all taxable transactions above a certain threshold. These invoices allow businesses to reclaim VAT on their purchases and ensure that the correct amount of VAT is charged on sales. Properly issued tax invoices are essential for compliance with the VAT system and play a pivotal role in the accurate calculation of VAT liabilities and deductions.

Tax invoices are a crucial tool in preventing VAT fraud, such as carousel fraud or false claims for VAT refunds. By maintaining accurate and transparent records of all taxable transactions, tax invoices reduce the opportunities for fraudulent practices, such as underreporting of income,

12) James, Malcolm. The UK Tax System－An Introduction. Spiramus Press Ltd, 2021.

falsifying invoices, or inflating VAT claims. This contributes to maintaining the integrity of the tax system.

Beyond their role in taxation, tax invoices in the UK also serve as legally recognized documents that can be used in the event of disputes between businesses or between businesses and HMRC. They provide clear, verifiable proof of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ransactions, protecting the rights of both buyers and sellers.

2. Sanctions Related to Tax Invoices in the UK

The UK has implemented a comprehensive system of sanctions to address non－compliance with tax invoice regulations and to deter fraudulent practices. These sanctions are designed to ensure that businesses adhere to VAT requirements and that tax revenue is accurately collected.

Businesses that fail to issue tax invoices or issue incorrect or incomplete invoices may be subject to financial penalties. These fines are intended to ensure that all taxable transactions are properly documented and that VAT is correctly reported. The penalties may vary depending on the severity of the violation, with larger fines imposed for repeated or deliberate non－compliance.

The UK enforces strict sanctions for VAT fraud involving tax invoices. Offenses such as issuing false invoices to claim fraudulent VAT deductions or engaging in invoice manipulation to evade taxes can result in severe penalties, including substantial fines and, in some cases, criminal prosecution. The UK government has demonstrated a strong commitment to preventing VAT fraud and protecting public revenue through these stringent measures.[13)]

In addition to penalties, the UK tax system offers incentives for businesses that voluntarily correct errors in their tax invoices or come forward to disclose non－compliance before an investigation begins. Businesses that proactively report discrepancies may receive reduced penalties, encouraging voluntary compliance with VAT regulations.

Her Majesty's Revenue and Customs (HMRC) conducts regular audits of businesses to ensure compliance with VAT and tax invoice regulations. These audits are designed to detect discrepancies, non－compliance, and fraudulent practices. Businesses found to be in violation

13) James, Malcolm. The UK Tax System－An Introduction. Spiramus Press Ltd, 2021.

during these audits may face additional penalties and enforcement actions.

Although the UK has exited the European Union, the VAT systems of the UK and EU remain closely aligned in many areas. This alignment includes similar approaches to tax invoice regulations and sanctions. Harmonization efforts ensure that businesses engaged in cross-border trade face consistent rules and penalties, facilitating smoother international transactions.

In the UK, tax invoices are vital to the proper functioning of the VAT system, ensuring transparency, compliance, and the prevention of tax fraud.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a robust framework of sanctions to penalize non-compliance and fraudulent practices related to tax invoices, with a focus on safeguarding public revenue and maintaining the integrity of the tax system. Through strict penalties, regular audits, and voluntary compliance incentives, the UK aims to foster a culture of accountability and compliance within its tax system, ensuring that businesses adhere to tax invoice regulations and that VAT is correctly collected and reported.

Ⅴ. Differences in Sanctions Between Korea, the EU, and the UK

1. Nature and Purpose of Sanctions

In Korea, sanctions related to tax invoices are primarily designed to enhance tax transparency and prevent tax evasion. Violations such as incorrect issuance or misuse of tax invoices can result in substantial financial penalties, with more serious offenses potentially leading to criminal prosecution.

In the European Union, the emphasis is on combating tax fraud and ensuring harmonization across member states. Although enforcement mechanisms vary by country, financial penalties remain the predominant form of sanction for tax invoice violations.[14] The VAT system plays a central role, and non-compliance with VAT regulations is particularly subject to strict sanctions.

Post-Brexit, the UK has implemented an independent tax regime with a strong focus on tax

14) Costaş, C. F. (2018). Questions Concerning Investigative Powers and Sanctions in Cases of VAT Frauds. A Comparative Analysis. In Cluj Tax Forum (Vol. 1, No. 2, pp. 5-24). Editura Hamangiu SRL.

compliance and evasion prevention. While financial penalties are commonly imposed for tax invoice violations, repeat or severe offenses may also trigger compliance improvement orders and other corrective measures.

2. Severity of Sanctions

Korea imposes stringent sanctions for tax invoice violations, with penalties ranging from fines for minor infractions to criminal prosecution in cases of deliberate tax evasion. The severity of these penalties is determined by the nature and magnitude of the violation. In the case of misrepresented tax invoices, penalties include additional taxes and the disallowance of VAT deductions. Substantial surcharges are also levied for failing to comply with the mandatory issuance of electronic tax invoices. Unlike the disallowance of input tax for fabricated invoices, which considers the taxpayer's ability to pay VAT under the VAT Act, the disallowance for misrepresented invoices serves as an additional financial penalty for administrative noncompliance related to the tax invoice system.[15)]

Although misrepresented tax invoices typically qualify for VAT deductions, the level of sanctions is widely regarded as overly severe. As such, it is important to adjust the penalties in proportion to the severity of the violation, and to clearly separate and itemize any administrative penalties listed on tax notices.[16)] Korea's strict enforcement of these sanctions acts as a strong deterrent against tax evasion, with legal proceedings conducted swiftly to ensure prompt accountability for violations.

Within the European Union, the strictness of sanctions varies across member states. While some countries may issue lenient fines for minor infractions, others impose harsher penalties for deliberate fraud or large-scale tax evasion. Despite these differences, most EU countries apply significant sanctions for serious violations.

In the UK, post-Brexit reforms have led to tougher sanctions for tax invoice violations. Intentional or repeated offenses can result in substantial financial penalties, and in cases of

15) Kwon, Hyung-Gi. 2019. A Study on Administrative Penalties and Legislative Improvements for Misrepresented Tax Invoices. Tax Review, 4(2), 51-92.

16) Kwon, Hyung-Gi. 2019. A Study on Administrative Penalties and Legislative Improvements for Misrepresented Tax Invoices. Tax Review, 4(2), 51-92.

severe breaches, offenders may face criminal prosecution.

3. Enforcement Mechanisms

In Korea, tax invoice violations are monitored and enforced by the National Tax Service (NTS), which leverages digital systems to enhance transparency and prevent fraud. These systems allow for real-time detection of violations, enabling immediate enforcement actions.

In the European Union, the enforcement of tax invoice sanctions is carried out by individual member states, although the harmonized VAT system provides a unified framework. Many member states are increasingly adopting e-invoicing systems to streamline compliance processes and improve monitoring efforts.

In the UK, Her Majesty's Revenue and Customs (HMRC) oversees the enforcement of tax invoice regulations. The UK's digital tax reporting systems facilitate real-time detection of violations, ensuring swift and efficient sanctions for non-compliance.

4. Policy Flexibility

Korea has introduced electronic tax invoice systems since 2010, significantly enhancing transparency and enabling stricter enforcement of tax-related violations.[17] The integration of technology has made the detection of offenses more efficient, thereby increasing the likelihood of sanctions for non-compliance.

The European Union aims to harmonize tax policies across its member states, though enforcement mechanisms and the severity of sanctions can vary. Despite these differences, tax evasion remains a key focus throughout the union, with consistent and substantial penalties imposed for severe offenses.

The UK has increasingly adopted digital tax policies, allowing for efficient, real-time enforcement of tax invoice sanctions. Since its departure from the EU, the UK has independently strengthened its sanctions regime, particularly in the areas of tax compliance and evasion

17) Shim, Tae Sup, and In Kuk Song. "Critical success factors of the web-based tax invoice system in Korea."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 Information Systems 10, no. 9 (2016).

prevention.

5. Comparative Case : Failure to Issue an Invoice for a 1 Billion KRW Transaction

When an invoice is not issued for a transaction valued at 1 billion KRW, the penalties imposed differ significantly between Korea, the EU, and the UK. Each jurisdiction enforces strict regulations regarding invoice issuance, with varying degrees of penalties depending on the country's specific legal framework.

1) Penalties in Korea

In Korea, failure to comply with the obligation to issue a tax invoice is subject to strict penalties under the Value Added Tax Act. First, according to Article 10, Paragraph 1, Clause 1 of the Punishment of Tax Offenses Act, "Any person who fails to issue a tax invoice as required by the Value Added Tax Act" may be subject to imprisonment for up to one year or a fine of up to twice the amount of VAT calculated based on the supply value.[18] Second, under Article 60, Paragraph 2 of the Value Added Tax Act, "If a tax invoice is not issued within the prescribed period, but is issued after the final filing deadline for the taxable period in which the supply occurred, an additional penalty of 2% of the supply value" will be imposed.[19] For a 1 billion KRW transaction, this results in an additional penalty of 20 million KRW. Third, in cases where the failure to issue a tax invoice is intentional and aimed at tax evasion, the violator may face not only monetary fines but also criminal penalties, including imprisonment.

2) Penalties in the EU

In the EU, penalties for failing to issue a tax invoice vary between member states, but typically involve financial penalties. The specific amount and type of sanction depend on the national regulations of each country. For instance, in Germany, fines can amount to up to 10%

18) Punishment of Tax Offenses Act, Article 10, Paragraph 1.

19) Value Added Tax Act, Article 60, Paragraph 2.

of the transaction value or a fixed amount of up to 5,000 euros.[20]

VAT Invoice Guide for Germany 2024. In Ireland, failure to issue a tax invoice can result in a fixed penalty of up to 4,000 euros.[21]

Because penalty rates differ by country, businesses must verify the specific regulations applicable in each jurisdiction. Furthermore, failure to issue a tax invoice may disqualify the transaction from VAT deductions, leading to increased costs for the company. In cases of repeated or intentional non－compliance, additional administrative sanctions, including a comprehensive audit of the company's tax returns and financial records, may be imposed across the EU.

3) Penalties in the UK

In the UK, penalties for failing to issue a tax invoice are enforced by HMRC.[22] First, the penalty for late VAT registration, imposed by HMRC, is calculated based on the VAT due from the date the business should have registered until the date HMRC becomes aware that registration was required. The penalty rate depends on the length of the delay : 5% for delays of less than 9 months, 10% for delays between 9 and 18 months, and 15% for delays of more than 18 months.[23]

Ⅵ. Conclusion

This study aims to compare and analyze the tax invoice sanction systems in Korea, the EU, and the UK, assess the effectiveness of each country's approach, and propose potential improvements to Korea's system. The main findings from the analysis are as follows :

---

20) UStG, Umsatzsteuergesetz, Chapter 14. https://www.vat-germany.com/blog/vat-invoice-guide-for-germany-2024/

21) https://www.revenue.ie/en/vat/interest-and-penalties/when-are-penalties-payable-to-revenue/fixed-penalties.aspx

22) https://www.avalara.com/vatlive/en/country-guides/europe/germany/vat-invoice-requirements.html

23) https://blog.shorts.uk.com/what-is-vat

Tax invoices play a pivotal role in ensuring transparency and accuracy in tax collection, and their proper issuance and usage are critical to preserving the integrity of the tax system. However, the enforcement of sanctions for tax invoice violations varies significantly across countries. In Korea, sanctions are primarily implemented through the VAT system, with stringent penalties designed to prevent the issuance of false or inaccurate tax invoices and to combat tax evasion and revenue loss.

While Korea's VAT law is based on the EU's VAT system and shares operational similarities, a key difference lies in the emphasis placed on the formal requirements of the tax invoice over the substance of the transaction. Specifically, if the information required on a tax invoice does not align with the facts, the taxpayer's right to deduct input tax is denied. The Korean system prioritizes deterring illegal activity by imposing comparatively strict penalties on those involved in fraudulent tax invoices.[24] However, these severe penalties can impose an excessive burden on small businesses.

In contrast, EU member states do not uniformly deny input tax deductions for incorrectly stated invoice details. Even in the absence of an invoice, taxpayers can still exercise their right to deduction if the transaction can be substantiated by other means. For instance, countries like Italy and Sweden allow taxpayers to deduct input tax if substantial requirements are met, even if certain formal requirements are not fully satisfied.

Since the introduction of VAT, Korea has consistently prioritized formal requirements, leading to the denial of input tax deductions when the information on tax invoices does not match the facts. While this strict approach has helped maintain transactional order in the early stages of VAT implementation, denying deductions solely due to formal errors, even when actual transactions occurred and sales tax was paid, risks failing to distinguish between legitimate and fraudulent transactions.[25]

Although tax invoices with discrepancies should generally qualify for deductions, excessively rigid sanctions suggest the need for a more balanced approach that takes the severity of the violation into account. While Korea's sanctions have been effective in swiftly punishing

---

24) Jang, Myungwon, Jang Jaehyng. (2024). A Study on Sanctions for the Incorrect Tax Invoice, on its Excessiveness and Mismatch. Tax and Accounting Journal. Vol. 25, No. 4. 53－76.

25) Kwon Hyung－Gi, 2019. A Study on Administrative Penalties and Legislative Improvements for Misrepresented Tax Invoices. Tax Review, 4(2), 51－92.

violations through rapid legal procedures and deterring tax evasion, there is a need for reevaluation. The system would benefit from a more nuanced sanction structure that considers the gravity of the violation and its impact on transaction integrity.[26)]

In contrast, the EU operates a harmonized VAT system across member states, but the enforcement of sanctions differs between countries, reflecting their unique characteristics. Following its exit from the EU, the UK established its own regulatory framework with a strong focus on transparency and compliance in its tax system.

Compared to Korea, the EU and the UK employ more flexible approaches to tax invoice sanctions. Although specific penalties for tax invoice violations vary across EU member states, fines tend to be more lenient, focusing on administrative sanctions that offer opportunities for rectification. Post－Brexit, the UK has maintained a sanction system similar to the EU's, with a focus on education and guidance for minor or unintentional violations.

In terms of effectiveness, Korea's strict sanctions have been successful in deterring illegal activities but risk increasing economic burdens.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these sanctions, penalties could be applied in a phased manner according to the severity of the violation, with expanded administrative guidance for minor infractions. By contrast, the EU and UK adopt a more flexible and pragmatic approach, minimizing negative impacts on economic activity while ensuring sufficient compliance, even with less severe penalties.

The comparative analysis highlights that while each country has developed effective sanctions for tax invoice violations, there are clear differences in the scope, severity, and enforcement methods. Korea emphasizes strict penalties aimed at deterring tax evasion, while the EU and UK focus on harmonizing tax regulations and promoting compliance through cooperative enforcement.

This study underscores the potential for greater international harmonization of tax invoice sanctions, particularly as global trade and cross－border transactions continue to grow. A more standardized approach could streamline tax administration, reduce tax fraud, and ensure consistent revenue collection across borders.

In conclusion, Korea's tax invoice sanction system could be improved by adopting the more flexible approaches seen in the EU and UK. Expanding educational and administrative measures

---

26) *Ibid*, p.51.

for minor violations and applying penalties progressively would reduce burdens on businesses while still deterring illegal activities. This balanced approach would enhance the overall effectiveness of tax invoice sanctions and support both tax justice and economic growth.

Future research could broaden the analysis to include other regions and explore how technological advancements, such as digital invoicing, may affect the enforcement of tax invoice regulations.

References

Ahn Changnam & Yang Suyoun, “A Study on the Tax Crimes Associated Tax Invoic.” Journal of Tax Law Research. 22(2) (2016) : 471－507.

Brockmeyer, Anne, Giulia Mascagni, Vedanth Nair, Mazhar Waseem, and Miguel Almunia. “Does the Value－Added Tax Add Value? Lessons Using Administrative Data from a Diverse Set of Countrie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38, no. 1 (2024) : 107－132.

Cha, Sam－Jun. (2021).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Multi－Purpose Tax Invoice System for the Improvement of Value Added Tax System. Tax and Accounting Research. 24(1). 215－263.

Costaş, C. F. (2018). Questions Concerning Investigative Powers and Sanctions in Cases of VAT Frauds. A Comparative Analysis. In Cluj Tax Forum (Vol. 1, No. 2, pp. 5－24). Editura Hamangiu SRL.

European Anti－Fraud Office. OLAF and partners target VAT carousel fraud in cross－border operation. retrieved on September 5, 2024. https://anti-fraud.ec.europa.eu/media-corner/news/olaf-and-partners-target-vat-carousel-fraud-cross-border-operation-2018-10-03_en

Hwang, J. M. & Lee, C. D. (2016). The Introducing of Electronic Tax Invoice System as a Factor to User Satisfaction and Tax Payment Compliance. Journal of CEO and Management Studies Vol. 19 No. 2. 267－288.

James, Malcolm. The UK Tax System－An Introduction. Spiramus Press Ltd, 2021.

Jang, Myungwon, Jang Jaehyung. (2024). A Study on Sanctions for the Incorrect Tax Invoice, on its Excessiveness and Mismatch. Tax and Accounting Journal. Vol. 25, No. 4. 53－76.

Kwon Hyung－Gi, 2019. A Study on Administrative Penalties and Legislative Improvements for Misrepresented Tax Invoices. Tax Review, 4(2), 51－92.

Shim, Tae Sup, and In Kuk Song. “Critical success factors of the web－based tax invoice system in Korea.”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 Information Systems 10, no. 9 (2016).

Sung, Myung Jae, Rajul Awasthi, and Hyung Chul Lee. “Can tax incentives for electronic payments reduce the shadow economy? : Korea’s attempt to reduce underreporting in retail businesses.” Korea’s Attempt to Reduce Underreporting in Retail Businesses (January 9, 2017).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7936 (2017).

Turksen, Umut, Donato Vozza, Reinhard Kreissl, and Fanou Rasmouki, eds. Tax Crimes and Enforcement in the European Union : Solutions for law, policy and practice. Oxford University Press, 2023.

서울형 주택세제에 관한 소고

-미국 및 일본 도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 영 진 · 박 훈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형 주택세제에 관한 소고

-미국 및 일본 도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영진* · 박 훈**

〈요 약〉

본 연구는 서울과 인구규모 및 도시의 성장 양상이 비슷한 일본 도쿄와 미국 뉴욕의 주택세제를 전반적으로 비교연구하여 합리적인 서울형 주택세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택의 취득, 보유, 처분 시의 세제를 전반적으로 일본 도쿄, 미국 뉴욕과 비교하며 우리나라 주택세제의 특이점과 문제점을 살피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일본 도쿄는 주택 취득단계에서 부동산취득세를 과세하며 고정자산세의 과세표준인 고정자산과세대장에 등록된 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주택에 대해 본칙세율 4%, 특례세율 3%를 적용한다. 주택 보유세는 고정자산세라는 명목으로 과세되며 과세대장에 등록된 고정자산의 평가액이 과세표준이다. 고정자산세는 표준세율인 1.4%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비례세이다. 주택 처분 시 주택의 보유기간 5년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율을 달리 적용한다.

미국 뉴욕은 주택 거래에 대해 부동산이전세와 맨션세 등을 부과한다. 모든 거래세는 단순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보유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세제혜택를 제공한다. 주택 재산세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과세표준은 평가가치에서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가치는 부동산시장가치에서 뉴욕시가 정한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세율은 뉴욕시 의회의 결정에 따라 매년 변하고 각 유형별로 구분하여 적용된다.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연방정부, 뉴욕주, 뉴욕시가 각각 소득세를 과세하고 주거주지로 사용한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상을 토대로 우리나라와 일본 도쿄, 미국 뉴욕의 주택세제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취득세와 관련하여 현행 우리나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해 사실상의 취득가격 범위를 합리적으로 명확화할 것을 제시한다. 일본과 같이 모든 취득원인에 일률적으로 시가평가액을 적용하도록 하거나 미국 뉴욕과 같이 유상취득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무상취득 등에 대해서는 시가평가액을 적용하도록 이원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둘째, 취득세율은 일본과 미국 뉴욕이 취득세 중과세를 하지 않고 단일비례세율(일본) 혹은 단순누진세율(미국 뉴욕)을 적용하는 것에 주목하여 우리나라도 납세자의 선택이 왜곡되지 않도록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세부담을 완화할 것을 제안한다.

* 주저자,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과정, yjsuh624@naver.com

** 교신저자,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phn@uos.ac.kr

셋째, 재산세는 편익원칙을 기반으로 작동하며 대물세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에 일본, 미국과 같이 단일비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원화되어 있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사실상 동일한 과세체계를 적용함에 따라 하나의 조세체계를 운영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가 독립적인 세목보다는 재산세로 통합되는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주택 양도소득의 과세에 대하여 실거주를 장려하고 장기보유를 장려하는 취지에 더 부합하도록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에 대하여 거주요건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미국 뉴욕이 소득공제를 위해 2년 이상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한 것처럼 비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도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조정대상지역과 같이 최소 거주요건을 추가하여 실거주를 더 장려할 수 있어야 한다.

Ⅰ. 서 론

우리나라의 주택세제는 서울의 부동산 문제와 연계되어 설계되고 개정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서울의 주택 문제에 대해 각 정권별로 다르게 대응하면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거나 개정됨을 반복하였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2003년 수도권 재건축시장이 주택가격의 상승을 초래하면서 단기차익을 위한 투기수요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2003년 5월, 2주만에 서울지역은 0.8%, 강남지역은 1.2%의 주택가격 상승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주거안정과 투기 근절을 목표로 한 정책이 도입되었다.[1]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투기지역을 지정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2] 이후 2005년 주택가격공시제도, 2006년 실거래가신고제가 도입되었다. 그리고 서울 강남지역 소재 아파트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낮아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3] 이에 따라 2005년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었고 이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을 인하하고 과세표준적용률을 인상하며 세부담상한율을 인상하였다.

한편,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서울을 포함한 국내 부동산시장에 경기침체가 발생하였고, 증세정책에 대한 조세저항이 심화된 배경이 있었다.[4] 따라서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투기지역을 해제하고 재건축 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정책이 시행되었다.

---

1) 박지현 · 박상수 · 주만수 · 박훈 · 김수빈 · 이주현, “부동산세제 쟁점 분석 및 정책제언”, 한국지방세연구원 기획보고서, 2022, 17면.

2)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3) 박지현 · 박상수 · 주만수 · 박훈 · 김수빈 · 이주현, 위의 논문, 18면.

4) 위의 논문, 21면.

또한,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를 완화하였다. 이후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면서 민간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 주택세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2014년 이후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에 대해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에 대해 2%, 9억 원 초과에 대해 3%의 취득세율을 적용했다. 또한, 1세대 1주택 포함 9억 원 이하 신규분양과 미분양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폐지했고 주택임대사업 지원을 통한 주거안정화 정책을 실시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대폭 상승하면서 주택세제가 다시 강화되었다.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했다. 2017년 6월 부동산정책을 시작으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주택세제의 과세표준을 인상하며 주택보유세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단기거래인 경우와 다주택자인 경우에 세부담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한 주택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세율이 높아졌고 다주택자라면 더욱 중과되었다. 그리고 2020년 7월에는 조정대상지역[5]의 다주택자에 대하여 취득세를 강화하였다. 최대 12%까지 취득세율이 중과되도록 하였다.[6]

이처럼 서울 주택시장의 현황과 주택가격이 급변하면서 정책도 자주 바뀌었고 이에 따라 전체적인 주택세제의 틀도 변화하였다. 따라서 서울형 주택세제에 관하여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세계 주요 인구 대도시(일본 도쿄, 미국 뉴욕)와의 비교연구를 통해 서울 주택세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도 미국 뉴욕의 부동산 보유세, 거래세 각각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 부동산세제와 비교연구를 했었다.[7] 본 연구는 서울형 주택세제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일본 도쿄 및 미국 뉴욕과 비교법적 검토를 하여 주택세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

5)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거나 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이다(주택법 제63조의2). 2024년 기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만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6) 박지현 · 박상수 · 주만수 · 박훈 · 김수빈 · 이주현, 위의 논문, 27－30면.

7) 박민, “부동산 보유세 증세에 대한 소고 －미국의 보유세를 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 제81권, 한국토지공법학회, 2018 ; 박지현 · 안성서, “주택 거래과세의 세부담수준과 정책방향”, 한국지방세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

Ⅱ. 주택세제의 기본구조와 우리나라의 현행제도

1. 주택의 구분

1) 주택의 정의

주택법상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된다.[8] 지방세법 제11조에서 취득세, 제104조에서 재산세와 관련하여 주택을 정의하고 있다. 취득세와 재산세 모두 주택을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정의한다. 취득세와 관련하여 주택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재산세와 관련해서는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을 제외한다. 취득세와 달리 공부상의 용도에 대한 언급이 없고 주택법에서의 정의에 따라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이면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주택으로 구분한다.[9]

소득세법상 주택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10] 소득세법상 주택은 지방세법과는 달리 건축법상의 용도를 우선하거나 주택법상의 주택으로 정의하지 않고, 그 실질이 주거에 이용되는지를 우선 고려한다. 다만, 실질이 불분명한 때에만 공부상의 용도를 따르도록 한다. 대법원은 일시적으로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 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시[11]하였다. 사실상 주거용에 대한 판단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12]

---

8) 주택법 제2조 제1호.

9) 정혜윤·박훈, "부동산 관련 세제상 보유주택 수(數) 판단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지방세논집』, 제8권 제2호, 한국지방세학회, 2021, 26면.

10)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11)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4304 판결.

12) 정혜윤·박훈, 위의 논문, 27면.

2)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비교

단독주택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13)]

2022년 기준 서울의 전체 주택 재고 중 공동주택은 89.7%를 차지했다. 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59.5%의 비중을 차지했다. 2015년 공동주택 재고가 전체의 86.2%였고 그 중 아파트는 58.6%였다.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재고가 증가하였다. 반면 단독주택의 경우 2015년 재고가 전체의 12.7%였는데 2022년 9.4%로 감소하였다. 단독주택 중 20년 미만의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9.8%로 신규 공급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 준공량에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22년에 준공된 주택 중 단독주택 비율은 4.7%에 불과하며, 아파트와 다세대・연립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60.2%, 35.1%로 나타났다.[14)]

2. 취득, 보유, 처분단계별 주택 과세체계

1) 취득단계의 취득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원인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한다.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가액에 따라 1%～3%의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15)] 상속으로 인한 취득이라면 2.8%의 세율을 적용[16)]하고 증여로 인한 취득이면 3.5%의 세율을 적용[17)]한다.

한편,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및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가 도입되었다. 당시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4%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였다.[18)] 이후 2020년 7월 10일에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가 재차 개정되었고, 2020년 8월 12일 이후부터는 1가구 1주택 및 2주택 중 1주택은 조정대상 외의 지역에 소재한 경우에 대해 1～

13) 주택법 제2조 제3호.
14)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서울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리포트－ 서울의 주목할만한 현주소(2023)".
15)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16)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17)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18)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 제11조 제4항 제2호.

3%의 세율을 누진 적용하였다. 그 외의 경우에는 단일세율 8%, 12%를 적용하여 다주택자는 세부담이 대폭 강화되었다.[19] 또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증여할 때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이면 12%의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 이상을 정리하면 1세대 3주택(조정대상지역 1주택) 이상의 유상거래 및 조정대상지역 증여거래에 대해 취득세가 중과세율로 과세되는 것이다.[21]

한편,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가 납세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부동산 거래시장을 전체적으로 침체하게 만들어 서민의 주거안정을 해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현 정부는 3주택자 취득세율을 8%에서 4%로 낮추고, 조정지역 2주택자는 중과를 폐지해 기본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22]

2) 보유단계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주택에 대한 보유세는 재산세(시・군・구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라는 이원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재산세는 물건별로 과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전국 합산 기준으로 고액 주택자산에 대해 과세한다.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은 주택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60%가 원칙이다. 다만, 2024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이 3억 원 이하일 때 43%, 3억 원을 초과하고 6억 원 이하일 때 44%, 6억 원을 초과하면 45%를 적용한다.[23]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은 토지・건축물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4개의 과세표준구간에 대해 0.1%~0.4%로 과세된다.[24]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도시지역에 소재한 주택에는 도시지역분 세율 0.14%가 추가된다.[25]

한편,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자에 대해 과세하는 국세이다.[26]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액은 납세자가 국내에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인별로 합산한 금액에 과

19)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
20)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
21) 최진섭・이슬이, “다주택 중과세제 분석과 정책방향”, 한국지방세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22, 2면.
22) 2022년 12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예정인 것으로 밝혔다. 다만, 여야 합의가 완료되지 않아 국회 입법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23) 지방세법 제110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호.
24)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25) 지방세법 제112조.
26)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세기준금액(일반 6억 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해 산출된다.[27]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소유한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되어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세율로 과세가 이뤄진다.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0.5%～2.7%의 초과누진세율로 과세되지만, 3주택 이상을 소유하면 0.5%～5%의 초과누진세율로 과세된다.[28]

3) 처분단계의 양도소득세

주택 양도소득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과 구분되어 과세되며 양도소득세에서 과세대상 주택은 허가나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29] 주택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별개의 대상으로서 과세된다.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에서 기본공제액 250만 원을 제한 금액이다.[30] 이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해 양도소득을 계산한다.[31]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질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한다.[32] 그러나 실질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액, 기준시가 등을 기준으로 한다.[33]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및 조합원입주권에 대해 보유 1년에 2%씩 가산하여 최대 30%까지의 공제율을 양도차익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다.[34]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세율은 종합소득에 대한 세율과 동일하다. 다만, 2년 미만의 단기로 보유한 주택에는 세율 40%～70%로 중과한다.[35]

한편,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2주택과 3주택 이상으로 구분하여 각각 20% 및 30%의 세율이 가산되어 과세가 이뤄진다.[36] 그래서 1세대 2주택에 대한 세율은 26%～65%, 1세대 3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35%～75%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 이상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30%까지 적용되는 양도소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

27)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문재인 정부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에서 95%까지 인상되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60%로 하향조정되었다.
28) 2022년분 기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29)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30) 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
31)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32)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33)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34)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35)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
36)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된다.[37] 다만, 현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있으며 2025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기한을 연장했다.[38]

한편,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39] 소득세법상 '1세대'는 거주자 및 배우자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요건으로 규정하면서 납세자의 실거주를 장려하는 제도이다.[40]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주택법[41]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일 경우 보유기간요건에 더해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1세대 1주택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42] 또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확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1주택자에게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43]

또한, 세대가 2채의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여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44] 종전 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시행령에 열거된 특정 상속주택, 동거봉양 주택, 문화재 주택, 농어촌 주택, 귀농주택, 장기임대주택 등을 소유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4) 주택 상속세 및 증여세

주택 상속 시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상속세의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와 상속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다.[45] 상속세는 5단계의 초과누진세율체계(10%～50%)를 적용한다.[46] 주택 관련 상속공제로는 대표적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있다. 현행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23조의2에 규정되어 있다.[47] 크게 4가지 요건

37)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38) 오상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내년 5월9일까지 연장", 한국세정신문, 2024.1.23. 보도.
39)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4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41)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42)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43)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4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45) 상증세법 제25조.
46) 상증세법 제26조.
47) 서영진・정인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으로 전환되는 동거주택", 『중앙법학』, 제26권 제1호, 중앙법학회, 2024, 265면.

을 충족해야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48]이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어야 한다.[49] 그리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50] 마지막으로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여 상속공제를 받으면 주택가액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의 과세가액에서 공제받는다. 다만, 공제한도는 6억 원이다.

주택을 증여하면 수증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증여세를 과세하고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 및 증여재산가산액을 합한 값에서 채무부담액과 증여재산공제를 제외한 값이 된다.[51] 증여재산가액은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시가상당액을 기준으로 한다.[52]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평가기간 내의 매매 및 감정가액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다.[53] 아파트의 경우 매매 거래가 활발하기에 증여가액 산정 시 증여일 현재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택 시가 산정의 보충적 평가 기준으로 원칙적으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혹은 국세청장이 결정한 고시주택가격을 따른다. 증여세율은 상속세율과 동일하다.

한편, 현 정부에서는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이하, 상증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상증세 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하여 10%의 세율 적용구간을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장하고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을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한다. 중산층 및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개정이다. 주택시장 과열 및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라 주택 1채만을 보유하고 거주하는 중산층의 주택 상증세의 부담이 증가한 것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이 50억 원일 때 상속세액이 약 2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54]

---

48)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49)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 피상속인의 동거주택 보유기간은 동거기간과 관련이 없다.

50) 상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에서 소득세법 제89조의 1세대 1주택 개념을 준용한다. 주택과 부수하는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도 포함한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그리고 무주택 기간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51) 상증세법 제55조.

52) 상증세법 제31조.

5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54) 함영진, “[부동산 진단] 2024년 세제개편안 부동산부문 주요 내용과 시장 영향 분석”, 한국건설신문,

3. 주택 관련 세부담 비교

1) 부동산 거래세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세의 부담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이다. 총조세, 자산, GDP 대비 지표 모두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하며 가장 높은 수준의 거래세 부담을 보인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조세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6.12%로 가장 높았다. OECD 국가 평균인 2.08%를 크게 상회하며 1위를 차지하였다.[55] 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 역시 우리나라가 1.35%로 비교대상 국가 중 첫 번째로 높았고 OECD 평균(0.51%)의 2～3배 수준이었다.[56] 한편, 일본은 2020년 기준 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의 부담이 0.07%로 매우 적었다. 총조세 대비 부동산 거래세 부담 수준은 0.36%였다.[57] 우리나라가 최상위 수준인 것과 비교하였을 때 편차가 매우 크고 일본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량 자체가 높아서 부동산 거래세 부담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도 사실이다. 다만, 2021년 이후에는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주택 거래량은 2020년 202.2만 건(매매 127.9만 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후 2022년 93.3만 건(매매 50.9만 건)으로 급감하였다.[58] 현 정부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 완화 정책 등 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 기조가 차후 부동산 거래세의 부담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2) 부동산 보유세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1.23%로 OECD 국가 평균인 0.97%를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59] 또한, 우리나라의 최근 10년간 부동산 보유세의 부담은 2018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GDP 대비 및 총조세 대비 모두 OECD 국가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총조세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1.13%p 증가하였다.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 역시 OECD 평균은 1%대로 매우 안정적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0.51%p 증가하여 OECD 국가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60] 다만, 이러한 세부담 증가

2024.7.26. 보도.

55) 2022 OECD Revenue Statistics 참조.

56) 이슬이, “OECD 주요국의 부동산 거래세 세부담 비교”, 한국지방세연구원, 2023, 5면.

57) 위의 논문, 6면.

58) 위의 논문, 11면.

59) 2022 OECD Revenue Statistics 참조.

60) 신미정, “OECD 국가별 부동산 보유세 세부담 현황”, 한국지방세연구원, 2024.

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와 종합부동산세 강화로 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부동산 보유세 완화와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하의 기조가 생기면서 우리나라의 보유세 세부담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61]

한편, 2020년 기준 일본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1.99%였고 총조세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10.14%였다. 미국은 2021년 기준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2.71%, 총조세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13.6%였다.[62] 보유세의 경우 미국과 일본 등에 비해 우리나라가 비교적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Ⅲ. 미국 및 일본 도시와의 주택세제 비교

1. 비교대상 도시 선정 및 근거

서울의 주택세제와 비교하기 위해 일본 도쿄, 미국 뉴욕을 선정하여 비교연구하였다. 해당 도시들은 각 대륙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대도시들이다. 그리고 서울과 인구규모와 면적에서 유사성을 갖는 대도시이다. 2024년 기준 일본 도쿄의 인구수는 약 1,413만 명이고 면적은 약 2,193㎢이다. 뉴욕시의 경우 2024년 기준 인구수는 약 809만 명이고 면적은 약 1,214㎢이다. 인구가 1,000만 명에 이르는 서울을 인구와 도시 규모가 유사한 대도시와 비교하면서 서울 주택세제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

서울은 한국전쟁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겪으며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196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한국전쟁 이후 베이비붐 세대가 성장했고,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지방에서 서울로 인구가 대거 유입되었다. 1960년 244만 명이었던 서울 인구는 1970년 553만 명, 1980년 836만 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1988년에는 1,000만 명을 돌파하며 소위 메가시티로 성장했다. 이에 따라 주택공급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단독주택 위주였던 주택 유형은 아파트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했다. 고층아파트 건설이 증가했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었다. 2022년 기준 서울시의 총 주택 호수는 3,111,323호였다. 일반가구 소유주택은 2,709,652호였고 총 아파트 호수는 1,851,242호였으며 일반가구 소유아파트 호수는 1,545,062호였다.[63]

---

61) 신미정, “부동산 보유세 부담의 국제비교('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2023, 2면.

62) 위의 논문, 4면.

63)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2023. 전국 총 주택호수는 2022년 기준 19,155,585호였다.

일본 도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과 인구 증가를 경험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전후 복구 과정에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경험하며 1950년 627만 명이었던 도쿄도 인구는 1960년 968만 명으로 급증했고, 1970년에는 1,162만 명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주택공급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대응하여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층아파트 건설이 증가했고, 단지형 아파트가 등장했다. 인구 증가를 수용하기 위해 도쿄도 주변의 사이타마현, 치바현, 가나가와현 등 수도권 지역으로 도시가 확장되며 새로운 주택 개발이 이루어졌다. 일본 정부가 주도하여 공공주택 건설, 민간주택 건설 지원, 주택 금융 지원 등을 통해 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했다. 현재는 도시 재생, 주택 리모델링 지원, 고령자 주택공급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도쿄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개발방향, 그리고 인구규모와 밀도를 가지고 있다. 서울의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는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뉴욕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걸쳐 산업화와 이민 유입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1860년 81만 명이었던 인구는 1920년 562만 명으로 7배 가까이 증가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주택공급이 부족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19세기 후반에는 저층 주택이 주를 이루었으나 인구 증가와 토지 부족 문제로 인해 고층 아파트가 등장했다. 이에 더하여 인구 증가를 수용하기 위해 도시가 외곽으로 확장하였다. 맨해튼(Manhattan)에서 브루클린(Brooklyn), 퀸즈(Queens), 브롱스(The Bronx) 등으로 도시가 확장되면서 새로운 주택개발이 이루어졌다. 20세기 초, 뉴욕시 정부는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법을 제정하고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쳤다. 근래에는 2023년 뉴욕시 아파트 공실률이 196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유입 증가에 비하여 주택공급이 부족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 뉴욕시 주택 및 공실 조사(New York City Housing and Vacancy Survey) 결과, 2023년 기준 뉴욕 지역 아파트 공실률은 1.4%를 기록했다. 뉴욕시 내 전체 거주용 주택은 370만 5000가구이다.[64] 이에 뉴욕시는 오래된 오피스 빌딩을 주거용 건물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처럼 급격한 인구 증가 시기가 있었고 여전히 인구 유입이 있어 주택공급 부족의 문제가 지속된다는 점에서 서울과 비교될 만하다. 200여 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성장을 경험한 거대도시로서 주택세제 관련 서울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64) 홍성환, “美 뉴욕 아파트 공실률 1968년 이후 최저치”, 더구루, 2024.3.1. 보도.

2. 일본 도쿄의 주택세제

1) 주택 취득세로서의 부동산취득세

일본 부동산취득세는 도도부현세로 유통세의 성격을 가진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부동산취득세는 유통세에 속하고, 부동산의 이전 자체에 주목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이익에 주목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일본 지방세법 제73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 유효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해 부동산의 취득 전체를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판시하였다.[65] 취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불문하고 유통세로서 과세하는 것이다. 부동산취득세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다.[66]

일본 지방세법상 부동산은 토지와 가옥을 총칭한다. 가옥은 주택, 점포, 공장, 창고 그 밖의 건물로 규정된다. 가옥의 범위는 고정자산세에서 말하는 가옥 또는 부동산등기법상 건물의 의미와 동일하며 지붕과 주벽을 가지고 토지에 정착한 건조물로서 그 목적으로 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67] 과세표준상 토지는 10만 엔, 신축 및 증・개축한 가옥은 1호당 23만 엔, 그 밖의 가옥은 1호당 12만 엔 미만이면 부동산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국가 등이 취득하거나 토지개발공사의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동산취득세는 비과세되고[68] 종교・학교・의료・사회복지법인, 학술연구 또는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이 법으로 규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된다.[69] 또한,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도 비과세한다.[70]

부동산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부동산의 실제 구매가격과 관계없이 고정자산세의 과세표준인 '고정자산과세대장에 등록된 가격(평가액)'으로 한다.[71] 본래 부동산취득세 과세표준은 부동산을 취득한 때의 부동산의 가격으로서 적정한 시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된다.[72] 여기서 적정

65) 最高裁(二小) 昭48.11.16判決.
66) 일본 지방세법 제73조의2.
67) 일본 총무성 통지, 『지방세법의 시행에 관한 취급에 대하여(도부현세 관계)(地方税法の施行に關する取扱について(道府縣税關係))』 제5장.
68) 일본 지방세법 제73조의3～제73조의6.
69) 일본 지방세법 제73조의4.
70) 일본 지방세법 제73조의7.
71) 일본 지방세법 제73조의13 제1항.
72) 일본 지방세법 제73조의13 제1항 및 제73조 제5호.

한 시가란 불공정한 거래에 의한 가격을 배제한 시가를 의미하므로 실제 매매가격이나 건축공사비는 활용되지 않는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토지에 대한 고정자산세는 토지의 자산가치에 주목해 소유라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해 과세하는 일종의 재산세로서 개별 토지의 수익 유무에 관계없이 그 소유자에 대해 과세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적정한 시가'는 정상적인 조건하에 성립되는 해당 토지의 거래가격, 즉,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므로 토지과세대장 등에 등록된 가격이 부과기일에 있어 해당 토지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상회한다면 해당 가격의 결정은 위법하게 된다고 판단하였다.[73]

고정자산 과세대장 등록가격은 고정자산세 과세표준으로 시정촌에서 일본 지방세법 제38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총무대신이 고시하는 고정자산 평가기준에 의하여 가격을 결정한 후 과세대장에 등록하는 것이다. 토지와 가옥을 구분하여 평가하되, 과세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3년 주기로 재평가하여 자산변동액을 반영한다. 가옥은 평가대상이 되는 가옥과 동일한 물건을 평가시점에 신축할 때 필요한 재건축비용과 건축 후 경과연수에 따른 감가비용 등을 고려하여 가격을 산정한다(재건축가격방식). 동경지방법원은 고정자산세가 물세로서 과세객체인 고정자산 그 자체의 가격에 착안해 과세하는 재산과세라고 보았다. 따라서 담세력은 객관적 가치에 상응해 결정해야 하는 것이므로, 건물의 고정자산세 과세표준에 대해서도 건물 자체가 가진 객관적 가치, 즉, 적정한 시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건물을 신축한 때의 시가와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평가객체와 동일한 것을 재건축해 소요된 비용에 각종 증감액을 반영하여 그 가격을 결정하는 재건축가격방식은 적정한 시가를 산출하는 최고의 타당한 방법이라고 판시하였다.[74]

한편, 증・개축, 지목 변경 등으로 등록된 가격을 적용하기 어렵거나 신축 등으로 고정자산 과세대장에 가격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고정자산 평가기준에 의해 도도부현이 조사 및 결정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75] 토지와 가옥의 본칙세율은 4%이고 2008년 4월 1일부터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는 특례세율인 3%를 적용하였다.[76] 취득원인이나 과세표준 구간과 관계없이 단일비례세율로 부과된다.

2) 주택 보유세로서의 고정자산세

일본의 주택에 대한 보유세는 고정자산세라는 명목으로 과세된다. 고정자산세는 일본의 기

73) 最高裁平成15年6月26日判決(判例時報1830号29頁).

74) 京都地裁昭和50年12月12日判決・昭和48（行ウ）12.

75) 일본 지방세법 제73조의21 제2항.

76) 2024년 3월 31일까지 적용하였다.

초자치단체인 시정촌에서 과세한다. 과세대상은 고정자산이며 토지, 가옥 등을 포함하며 우리나라의 재산세보다 더 포괄적이며 종합자산과세의 성격이 강하다.[77] 가옥은 주택, 점포, 공장, 창고 등의 건물이며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과세한다. 대장과세주의로 과세기준일인 매년 1월 1일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내용을 근거로 과세한다.[78] 주택에 대해서는 등기부 또는 건물보충과세대장에 등록된 자로서 매년 1월 1일 기준 실제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주택의 과세표준은 과세대장에 등록된 고정자산의 평가액이다. 이는 총무대신이 정한 고정자산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된 액수를 지사 또는 시정촌장이 결정하여 고정자산 과세대상에 등록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주택은 재건축가격 및 경년감정 보정률에 따라 평가액을 산정한다. 재건축가격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것을 평가시점에 동일한 장소에 신축하는 경우 필요한 건축비용이다. 경년감정 보정률은 주택 건축 후 연수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감가를 기초로 정한 비율을 반영하는 것이다.

고정자산세는 표준세율인 1.4%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비례세이며 조례로 시정촌에서 세율을 정할 수 있다. 면세의 한도는 주택의 경우 20만 엔이다. 또한, 일본은 고정자산세와 함께 부동산에 대해 도시계획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도시계획사업 등에 근거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과세 여부와 세율은 기초지방자치인 시정촌에서 조례로 결정한다. 주택 소유자에 대해 고정자산세의 과세표준에 고정자산세와 함께 고지・부과한다.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0.3%를 최고세율로 하며 시정촌별로 조례로 결정하여 부과한다.[79]

3) 주택 처분으로 인한 소득세 및 주민세

부동산 이외의 자산은 양도로 인해 자본이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자본이득은 별도로 분리과세된다. 그리고 일본에서 자본이득에는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인 주민세가 별도로 부과된다. 주택을 매도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자본이득은 매각 수입에서 취득비용 및 수수료, 매각수수료 등을 빼는 방법으로 도출한다. 여기서 과세자본이득액은 자본이득에서 공제액(1주택에 대하여 3,000만 엔)

77) 국종호, 『일본의 지방세 제도』, 한국지방세연구원, 2012, 134면.

78) 김필헌, “일본의 토지와 가옥에 대한 고정자산세 산출과정”, 『지방세포럼』, 통권 제5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

79) 신미정・안성서, “해외 부동산 취득세 및 보유세 제도 : 일본, 영국, 미국을 중심으로”, 『지방세포럼』, 제63호, 한국지방세연구원, 2022, 104면.

을 빼주어 계산한다. 해당 과세자본이득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한다. 일본 도쿄도의 경우 자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다른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개인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이면 소득세에 대해 30%, 주민세에 대해 9%의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소득세에 대해 15%, 주민세에 대해 5%의 세율을 적용한다. 만약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00만 엔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소득세 10%, 주민세 4%를 적용하고 6,000만 엔 초과인 경우 소득세 15%, 주민세 5%를 적용한다.[80] 거주주택의 경우 3,000만 엔의 특별소득공제를 허용하며 이때 거주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 또한, 도쿄의 경우 2013년부터 도쿄부흥세를 도입하여 2037년까지 운용하도록 하였고 소득세액의 2.1%를 세율로 적용받는다.[81]

3. 미국 뉴욕의 주택세제

1) 주택 거래에 대한 부동산이전세와 맨션세

뉴욕시에 소재한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부동산이전세(real estate transfer tax, RETT)[82], 고가주택에 대한 맨션세(mansion tax), 그리고 모기지세(mortgage recording tax) 등이 부과된다. 주세인 부동산이전세와 100만 달러 이상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맨션세가 부과되며 모기지를 통해 구입한 부동산에 대해 모기지세가 부과된다.

뉴욕시의 모든 거래세는 단순누진세율이 적용되어 가격구간에 따라 평균세율이 비연속적으로 상승한다. 2019년 4월 뉴욕주 상원 및 의회가 인구 100만 이상인 주 내 도시에서 거래된 부동산에 대하여 세금을 인상하는 법안[83]을 채택함에 따라 뉴욕시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율이 인상되었다. 이에 따라 부동산이전세는 기존 0.4%에서 300만 달러 이상 주거용 부동산(상업용 200만 달러)에 대하여 0.25%p의 세율이 추가 적용되었다. 그리고 맨션세는 기존 1%에서 매매가액에 따라 1%～3%까지 차등 적용이 되도록 개정되었다. 뉴욕시는 주정부의 부동산이전세에 추가적으로 시의 차원에서 부동산 매도자에게 부동산이전세를 과세한다. 매매가격이 2.5만 달러 이하이면 세금이 면제되고 2.5만 달러를 초과하면 매매가격과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한다. 주거용 주택에 대한 세율은 매매가격이 50만 달러 이하일 경우 1%, 50만 달러를 초과

80) 일본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a.go.jp).

81) 하능식・이주현, “주택 양도소득세 세부담 분석 및 정책시사점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기획보고서, 2021, 47－48면.

82) 뉴욕주와 뉴욕시 각각에 납부해야 한다.

83) Senate Bill 1509/Assembly Bill 2009.

하는 경우 1.425%의 단순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50만 달러 이하일 때 1.425%, 50만 달러 초과일 때 2.625%의 세율이 적용된다.[84]

한편, 부동산이전세와 맨션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서로 다르다. 부동산이전세의 납세의무자는 우리나라와 달리 매도자이며, 맨션세는 매수자이다. 하지만 각 세금 모두 납세의무자가 미납부하거나 비과세 대상자라면 매도자 혹은 매수자가 대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다.[85]

뉴욕시는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보유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세제혜택를 제공한다. 1년 이하 단기보유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지만, 1년 초과 보유주택의 양도소득은 저율과세하고 주거주지로 사용한 주택은 50만 달러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부동산이전세는 거래의 대가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일반적으로 상속 및 증여는 대가를 지급한 거래가 아닌 무상이전이므로 부동산이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상속 및 증여시 부동산 담보대출까지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는 담보대출의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부동산이전세를 일반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86]

2) 주택 재산세

(1) 주택 재산세의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뉴욕주에서는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재산세법에서 토지와 건축물 등의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87] 뉴욕시는 부동산을 4가지 유형(class)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88] 제1유형은 1가구~3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조합소유 토지에 위치한 단독주택, 주거용 빈 토지, 3층을 초과하지 않는 대부분의 콘도 등을 포함한다. 대부분의 주택이 제1유형에 속한다. 제2유형은 제1유형을 제외한 주거용 부동산과 임대용 부동산 등을 포함한다. 제3유형은 공기업의 부동산, 제4유형은 위 3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을 포함하며 상업용 부동산이 해당한다.[89]

과세표준은 평가가치에서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가치는 부동산시장가치에서 뉴욕시가 정한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평가가치 증가율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상한선을 두어 제한

84) 박지현 · 안성서, 앞의 논문, 2020, 50면.
85) 위의 논문, 49면.
86) 위의 논문, 75면.
87) NY Property Tax Law Sec. 102(12).
88) NY Property Tax Sec. 1802(1).
89) New York City Property Tax System Background(NYC Department of Finance, 2018)

하고 있다. 시장가치는 유형에 따라 평가방식이 상이하다. 제1유형은 최근 3년간 매각된 인근 지역의 유사한 주택가격을 고려하는 유사매매가격 접근법을 사용한다. 제2유형과 제4유형은 해당 부동산이 임대되었을 때 발생하는 예상소득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제3유형은 감가상각 등을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평가액은 시장가격에 제1유형은 6%, 나머지 유형은 45%를 적용하여 산출한다.[90] 다만, 평가가치 증가율은 제1유형의 경우 전년 대비 6% 이상 또는 5년간 20%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제2유형 중 10가구 이하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하여 전년 대비 8% 이상 또는 5년간 30%를 초과할 수 없다.

세율은 뉴욕시 의회의 결정에 따라 매년 변하며 각 유형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2020년~2021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제1유형의 부동산은 21.045%, 제2유형 12.267%, 제3유형 12.826%, 제4유형 10.694%를 적용받았다. 법정세율은 높은 편이나 과세표준반영률이 낮고 평가가치의 상한을 제한하는 제도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납부하는 재산세액은 이보다 낮은 수준이다.[91]

(2) 주택 재산세의 감면 및 공제제도

미국에는 주택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지방세 납부세액에 대한 연방소득세 공제제도가 있다. 연방정부가 간접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공제방식을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데 매년 발표되는 표준공제액을 적용하거나, 실제 발생비용을 기초로 항목별로 공제금액을 적용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항목별 공제에 포함되는 공제항목은 지방세 납부세액, 의료비, 이자비용, 기부금, 상해・도난 손실 등이 있다. 2018년 개정을 통하여 지방세 납부세액공제는 한도가 1만 달러이다.[92]

또한, 뉴욕주와 뉴욕시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첫 번째로 서킷 브레이커(NYC enhanced real property tax credit) 제도가 있다. 소득 대비해서 보유세가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보유세액에 대하여 소득세의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이다. 뉴욕주는 가구 총소득이 18,000달러 이하인 65세 이상 거주민을 대상으로 부동산세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과세기간 동안 뉴욕주에 거주함과 동시에 동일한 주거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고, 다른 납세자의 세금신고에 부양가족으로 신고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그 밖에 주택 소유자는 납부한 재산세를

90) 박민, 앞의 논문, 11면.
91) 위의 논문, 12면.
92) 박지현・안성서, 앞의 논문, 53면.

전액 면제받지 않고, 본인이 소유한 모든 부동산의 현재 시장가격이 85,000달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한편, 뉴욕시는 총소득 기준을 20만 달러로 완화하여 'NYC의 강화된 부동산세 공제제도(New York City enhanced real property tax credit)'를 운영한다. 뉴욕주 내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소득수준과 주거비용이 독보적으로 높은 현실을 제도에서 반영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학교세 세액공제(NYC school tax credit)가 있다. 뉴욕시가 교육구 거주민의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 액수를 지방소득세 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정액공제와 정률공제가 있으며 전자는 연간소득이 25만 달러 이하인 경우 부부합산신고이면 최대 125달러, 개인 또는 부부개별신고이면 63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후자는 연간 소득이 50만 달러 이하인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커지도록 설계되어 있다.[93]

세 번째로 학교세 경감제도(School Tax Relief, STAR)가 있다. 뉴욕주가 운영하는 제도로 뉴욕 거주민의 주거주주택에 대한 학교구 보유세를 경감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STAR 프로그램은 소득에 따라서 기본 STAR(basic STAR)와 강화된 STAR(enhanced STAR)로 구분된다. 기본 STAR의 대상은 연간소득 50만 달러 이하이며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한 자로 주거주주택가치 중 30,000달러에 대해서 학교구 보유세를 공제한다. 즉, 실제 주택가격에서 3만 달러를 제외한 부분만 학교구 보유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강화된 STAR는 뉴욕주에 주거주지를 두며 조정 총소득이 2020년~2021년 회계연도의 경우 88,050달러 이하인 65세 이상 거주자를 위한 제도이다. 주거주주택가치 중 매년 변동되는 액수에 대한 학교구 보유세를 공제하는 제도이다.[94]

3) 주택 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자본이득세)

주택을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연방정부, 뉴욕주, 뉴욕시가 각각 소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과 처분비용을 배제한다. 해당 주택을 거래할 때 발생한 부동산 거래세를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연방정부에서 과세하는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2020년 기준 보유기간이 1년 이하인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일반소득세율인 10%~37%를 적용하고, 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장기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인 0%~20%를 적용한다. 주거주지로 사용한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부합산일 때 50만 달러까지, 그 외의 납세자는 25만 달러까지 소

93) 박지현 · 안성서, 앞의 논문, 55면.
94) 위의 논문, 56면.

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시점으로부터 최근 5년 중에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어야 하고, 양도시점으로부터 최근 5년 내에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거주했어야 한다. 또한, 과거 2년 이내 주택양도로 인한 소득공제를 신청한 적이 없어야 한다.[95]

뉴욕주와 뉴욕시는 보유기간을 구분하지 않는다. 또한, 양도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다. 2020년 기준 뉴욕주는 소득구간을 8개로 구분하여 4.5%~8.82%의 세율을 적용했고, 뉴욕시는 주 소득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여 4개의 소득구간에 대하여 3.078%~3.876%의 세율을 적용했다.[96]

Ⅳ. 주택세제 관련 비교법적 검토

1. 주택 취득세의 비교 및 개선방안

1) 주택 취득세의 과세표준 비교 및 개선방안

일본의 부동산취득세 과세표준은 부동산의 적정한 시가로 규정되어 고정자산세 과세평가액에 의하며, 유상취득뿐만 아니라 무상취득, 원시취득에 모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모든 취득원인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정한 시가에 기초한 과세평가액에 의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한편, 유상취득만 과세하는 미국의 경우 유상취득에 대해서 매매가격만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지 않고 시가에 가까운 실거래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정리하면, 일본과 미국 뉴욕의 부동산취득세는 시가평가액 또는 그에 가까운 실거래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적 과세평가액이 시가평가액 수준보다 낮은 일본의 경우 유상취득이나 무상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이 동일한 과세평가액에 의하기 때문에 과세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취득세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의 원칙처럼 이해하기 때문에 실거래가격보다 낮은 수준의 시가표준액으로는 불충분하고, 시세에 근접한 평가액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면서 유상취득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주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함에 따라 무상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에 의하게 되면 취득원인 간 과세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97]

---

95) 위의 논문, 57면.

96) 위의 논문, 58면.

97) 마정화 · 안성서, “부동산 취득세의 과세표준 체계 정비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기획보고서, 2021, 85면.

현행 우리나라의 취득세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과세표준이 높아졌고 실거래가격 정보가 축적되고 있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열거되지 않은 실거래가격도 고려해볼 수 있게 되었다. 신고가액, 시가표준액,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관계를 재검토하여 납세자의 성실신고 가능 범위를 벗어나 예측하지 못한 가산세까지 부과되지 않도록 사실상의 취득가격 범위를 합리적으로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일본과 같이 모든 취득원인에 일률적으로 시가평가액을 적용하도록 하거나 미국 뉴욕과 같이 유상취득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무상취득 등에 대해서는 시가평가액을 적용하도록 이원화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다양한 평가방식 중 납세행정비용을 고려하여 시가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원시취득에 대해 취득물건 자체의 대가로 볼 수 있는 부대비용과 그렇지 않은 비용의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사실상의 취득가격 범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토지, 주택, 건축물에 대한 공적 가격평가 제도를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합리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98]

2) 주택 취득세의 세율과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 비교 및 개선방안

일본과 미국 모두 주택 거래 시 유통세로서 부동산취득세나 부동산이전세를 과세한다. 우선 취득원인에 따른 과세의 양상에 대해 일본과 우리나라는 유사하고 미국 뉴욕은 차이가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유상취득, 무상취득, 원시취득에 대해 광범위하게 과세하는 반면, 미국은 유상취득에 한정하여 과세한다. 다만, 일본은 무상취득 중 증여에 대해서만 부동산취득세를 과세하고, 상속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

일본은 취득원인이나 취득물건의 종류에 상관없이 단일비례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취득물건과 취득원인에 따라 누진세율, 단일비례세율을 다르게 적용한다는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주택에 대하여 누진세율이 신설된 특징이 있다. 미국 뉴욕시는 부동산 용도별로 구분하여 단순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일본과 미국 뉴욕은 모두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적용하고 있다는 큰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특히 서울의 경우 주택 증여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다른 부동산 증여와의 형평성을 왜곡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하기 어려워서 주택을 양도하는 등 납세자의 선택을 왜곡시키는 문제도 있다. 주택 증여는 중산층도 널리 활용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상위층은 주택 외의 기업이나 빌딩 등을 활용하여 세대 간 부의 이전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오히려 세부담의 역진성을 초래할 수 있다. 증여세의 부담이 매우 높은 수준임에도 불

98) 위의 논문, 119－121면.

구하고 취득세까지 중과세하는 경우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하여 증여가 위축될 수 있다.[99] 따라서 서울도 도쿄와 뉴욕과 같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납세자의 선택이 왜곡되지 않도록 취득세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2. 주택 보유세의 비교 및 개선방안

일본과 미국 뉴욕은 이전 연도와 비교하여 세부담 또는 과세표준의 상승을 제한하고 있다. 일본은 재산세 과세표준 상승률을 제한하는 부담조정조치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뉴욕시는 주택에 대하여 평가가치 상승률이 전년 대비 6% 또는 5년간 20%를 증가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과세표준상한제를 운영한다. 또한, 뉴욕주는 주헌법을 통하여 뉴욕시 부동산 재산세액이 5년 평균 부동산 평가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100]

우리나라도 주택 재산세에 대하여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하였다. 지방세법 제110조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의2에 따라 과세표준이 이전 연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하였다. 과세표준상한율은 소비자물가지수와 주택가격변동률,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0%~5% 범위 이내로 정한다. 과세표준상한액은 직전 연도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 상당액에 과세기준일 당시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 과세표준과 과세표준상한율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이다. 당해 연도 과세표준과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 가량 인상한 금액을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주택 보유세, 재산세에 대하여 과중한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능하고 있는 제도로서 지속적으로 시행할 실익이 있다.

뉴욕에서는 부동산을 4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각각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일본도 재산세에 대해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주택에 대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4단계로 나누어 0.1%~0.4%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주택 재산세의 경우, 대물세[101]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부동산 보유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행정서비스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 높은 점을 감안한다면 누진세율보다는 비례세율을 채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102] 재산세는 편익원칙을 기반으로 가격기능이 작동하여야 한다. 공공서비스의 편익이 주택의 가치에 따라서 누진적으로 증가

99) 박지현 · 박상수 · 주만수 · 박훈 · 김수빈 · 이주현, 앞의 논문, 142면.
100) 박지현, “주택분 재산세의 개편방안 검토 :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2022, 12면.
101) 특정한 물건의 소유, 취득 따위에 관하여 부과하는 세금.
102) 박민, 앞의 논문, 19－20면.

하지는 않기 때문에 재산세가 누진세율로 적용될 당위성은 없다.[103]

한편, 우리나라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라는 이원적 세제를 운영한다는 특징이 있다. 두 세목 모두 누진적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 재산세는 편익원칙을 기반으로 가격기능이 작동해야 하는데 수직적 형평성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반면, 수직적 형평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과세체계를 그대로 따르면서 그 기능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세목이 이원화되어도 동일한 과세체계를 적용함에 따라 하나의 조세체계를 운영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현행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 부과액에 조세부담을 추가하는 구조로 설계됨에 따라 재산세 과세체계를 그대로 따르고 있어서 수직적 형평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리고 세무행정 측면에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의 부과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자체가 세수 전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입장에서 세수를 적극적으로 징수할 유인도 낮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가 현행대로 재산세의 과세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독립적인 세목보다는 재산세로 흡수되는 것이 세무행정 측면에서 효율적이다.[104]

3. 주택 양도소득세의 비교 및 개선방안

앞선 목차에서 보았듯이 주택 양도소득 과세에 대해 일본은 주택 보유기간의 기준을 5년으로 하고 있다. 5년 미만이면 소득세에 대해 30%, 5년 이상이면 소득세에 대해 15%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부 등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특례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본은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3,000만 엔의 특별소득공제를 허용한다. 양도일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과거 자신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고 거주하지 않게 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105]

뉴욕시는 주택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보유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세제혜택을 제

---

103) 우리나라의 재산세는 편익세가 아닌 자본세 특성이 있어 주택을 대상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대인과세의 특성을 복합적으로 내포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다른 oecd 국가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편익원칙 대신 능력원칙 주도하에 편익원칙을 보완하는 특이한 형태로 운영된다고 분석하고 있다(임성일, “우리나라 재산세의 편익과세 기능 강화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기획보고서, 2019, 122면). 편익원칙은 공공에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그에 대한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104) 박지현 · 박상수 · 주만수 · 박훈 · 김수빈 · 이주현, 앞의 논문, 149－151면.

105) 정현경 · 박정우,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세제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양도소득 과세상 문제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34권 제3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4, 892면.

공한다. 1년 초과 보유주택의 양도소득은 저율과세하고 주거주지로 사용한 주택은 50만 달러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1세대 2주택자까지 25만 달러(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50만 달러)까지 양도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양도 시점으로부터 최근 5년 중에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 시점으로부터 최근 5년 내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소득공제 기준의 초과분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되어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1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여러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자신이 실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106)]

한편, 우리나라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며 2년 이상 보유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에 대하여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거주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또한, 장기보유 주택에 대한 세율을 완화하여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실거주자의 주거안정을 보호하고 있다. 실거주를 장려하고 장기보유를 장려하는 취지에 더 부합하려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에 대하여 거주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여전히 보유만으로 1세대 1주택자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특히 12억 원 이하 비과세 효과로 인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의 효과가 매우 작아질 수 있다. 비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도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조정대상지역과 같이 최소 거주요건을 추가하여 실거주를 더 장려할 수 있어야 한다.[107)]

4. 주택시장의 과열기 혹은 침체기에 따른 정책 비교

미국 뉴욕의 경우 주택시장이 과열될 때 1989년 맨션세 과세가 시행되면서 고가주택의 가격 급등을 억제하고자 하였다. 2019년 개편을 통하여 누진세율 구조를 도입하고 현재 매매가액에 따라 1%~3%까지 세율이 차등 적용되고 있다. 또한,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인상하여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활용하였다. 한편, 주택시장 침체기에는 대표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일정 소득 이하 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확대하였다. 또한, 첫 주택을 구매한 사람에 대하여 세금공제 혜택을 확대하기도 했으며[108)], 2015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장가격보다 낮은 저렴한 주택, 이른바 ‘어포더블 하우징(affordable housing)’ 20만 호를

106) 위의 논문, 891면.

107) 하능식 · 이주현, 앞의 논문, 100면.

108) 2009년부터 시행되었고 최대 8,000달러까지 공제되었다.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저렴한 주택 건설 투자자에 대한 세금감면 제도를 확대했었다. 2024년 뉴욕시는 저렴한 주택 공급에 다시금 투자하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50만 채 주택을 신규 공급하기 위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 개발업체에 세금혜택을 주고자 계획하고 있다.[109]

일본의 경우 2000년대 중반 주택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부동산이전세율을 인상하여 투기수요를 억제했다. 또한, 주택 보유세인 고정자산세율을 인상하여 주택가격을 안정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한편, 1990년대 소위 말하는 버블 붕괴의 시기 이후 주택시장이 침체되었을 때 부동산취득세를 감면하였다. 2000년대 초반에는 주택 구매자금의 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시장이 과열되던 2005년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여 고가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강화했다.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주택가격을 안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시행하였다. 또한, 다주택자 및 단기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기도 하였다. 취득세율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취득할 때 세율을 높게 설정하여 직접적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시장을 안정화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높여 주택을 추가적으로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 부담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활용하였다. 한편,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였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때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감면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세율을 인하했다.

이처럼 우리나라, 일본, 미국 모두 주택세제를 유연하게 개정하며 주택시장의 침체기와 과열기에 대응하였다. 각 시기별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무엇인지 지속해서 고려한 것이다.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맞는 세금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 침체기에는 감면 정책을 통해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고, 과열기에는 실거주자를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세제 강화를 통해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는 등 전체적으로 비슷한 기조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Ⅴ. 결 론

주택시장 침체기와 과열기 때 원칙 없이 복잡한 주택세제가 시행되면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침해되고 의사결정이 왜곡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틀의 주택세제가 시행되

109) 김은별, “뉴욕시 저렴한 주택 개발업체 세금감면”, 코리아데일리, 2024.6.17. 보도.

어야 한다. 그러한 틀을 설계하기 위해 서울과 인구규모 및 성장의 양상 등이 비슷한 일본 도쿄와 미국 뉴욕의 주택세제를 전반적으로 비교연구하였다. 주택의 취득, 보유, 처분 시의 국세와 지방세를 전반적으로 일본 도쿄, 미국 뉴욕과 비교하며 우리나라 주택세제의 특이점을 살펴보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우리나라의 현행 주택세제를 취득단계의 취득세, 보유단계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처분단계의 양도소득세와 상증세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일본 도쿄와 미국 뉴욕의 주택 취득, 보유, 처분 단계별 주택세제를 정리하였다.

일본 도쿄는 주택 취득단계에서 부동산취득세를 과세하며 고정자산세의 과세표준인 고정자산과세대장에 등록된 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했다. 주택에 대해서는 본칙세율 4%, 특례세율 3%를 적용하였다. 주택 보유세는 고정자산세라는 명목으로 과세되었으며 과세대장에 등록된 고정자산의 평가액이 과세표준이었다. 고정자산세는 표준세율인 1.4%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비례세였다. 주택 처분 시 주택의 보유기간 5년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율을 달리 적용하였다.

미국 뉴욕은 주택 거래에 대해 부동산이전세와 맨션세 등을 부과하였다. 모든 거래세는 단순누진세율이 적용되었고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보유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세제혜택를 제공했다. 주택 재산세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과세했다. 대부분의 주택이 제1유형에 속했으며 과세표준은 평가가치에서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가치는 부동산시장가치에서 뉴욕시가 정한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했다. 세율은 뉴욕시 의회의 결정에 따라 매년 변하고 각 유형별로 구분하여 적용되었다. 또한, 서킷 브레이커 제도, 학교세 세액공제, 학교세 경감제도 등의 재산세 감면제도가 규정되어 있었다. 주택을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연방정부, 뉴욕주, 뉴욕시가 각각 소득세를 과세했다. 주거주지로 사용한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졌다. 다만,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뉴욕주와 뉴욕시는 보유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양도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였다.

이상과 같이 현행 제도를 정리하면서 우리나라와 일본 도쿄, 미국 뉴욕의 주택세제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취득세와 관련하여 현행 우리나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해 사실상의 취득가격 범위를 합리적으로 명확화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일본과 같이 모든 취득원인에 일률적으로 시가평가액을 적용하도록 하거나 미국 뉴욕과 같이 유상취득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무상취득 등에 대해서는 시가평가액을 적용하도록 이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취득세율과 관련해서는 일본이 단일비례세율을 적용하고 미국 뉴욕시는 부동산 용도별로 구

분해 단순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취득물건과 취득원인에 따라 누진세율, 단일비례세율을 다르게 적용한다는 차이점에 주목했다. 또한, 일본과 미국 뉴욕은 모두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가졌다. 서울의 경우 주택 증여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다른 부동산 증여와의 형평성을 왜곡하는 문제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아 주택 매도를 강요받는 등 납세자의 의사결정이 왜곡되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서울도 도쿄와 뉴욕과 같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납세자의 선택이 왜곡되지 않도록 취득세의 부담을 완화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주택 재산세와 관련하여 과세표준상한제를 일본, 미국과 같이 도입하고 시행하여 과중한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능하는 실익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한편, 재산세는 편익원칙을 기반으로 작동하며 대물세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에 일본, 미국과 같이 단일비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시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이원적으로 운영하며 두 세목 모두 누진적 성격이 강화되고 있었다. 동일한 과세체계를 적용함에 따라 하나의 조세체계를 운영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가 현행대로 재산세의 과세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독립적인 세목보다는 재산세로 흡수되는 것이 세무행정 측면에서 효율적임을 제시하였다.

주택 양도소득의 과세에 대하여 실거주를 장려하고 장기보유를 장려하는 취지에 더 부합하려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에 대하여 거주요건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미국 뉴욕이 소득공제를 위해 2년 이상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한 것처럼 비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도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조정대상지역과 같이 최소 거주요건을 추가하여 실거주를 더 장려할 수 있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보편적으로 안정적인 주택세제가 무엇인지 모색하고자 하였고 우리나라 서울의 특수성을 조화롭게 고려하여 주택세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2024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도 주택세제 관련 개정이 포함되어 있고 주로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과 혼인에 대한 세제혜택과 관련이 있었다. 차후에는 서울형 주택세제에 대해서도 일본 도쿄, 미국 뉴욕과 비교하며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 세법 개정이 이뤄지기를 희망해 본다.

참고문헌

국종호,『일본의 지방세 제도』, 한국지방세연구원, 2012.

김필헌, “일본의 토지와 가옥에 대한 고정자산세 산출과정”,『지방세포럼』, 통권 제5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 138－149.

마정화・안성서, “부동산 취득세의 과세표준 체계 정비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기획보고서, 2021.

박민, “부동산 보유세 증세에 대한 소고 －미국의 보유세를 중심으로－”,『토지공법연구』, 제81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18, 1－24.

박지현, “주택분 재산세의 개편방안 검토 :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2022.

박지현・박상수・주만수・박훈・김수빈・이주현, “부동산세제 쟁점 분석 및 정책제언”, 한국지방세연구원 기획보고서, 2022.

박지현・안성서, “주택 거래과세의 세부담수준과 정책방향”, 한국지방세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

서영진・정인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으로 전환되는 동거주택”,『중앙법학』, 제26권 제1호, 중앙법학회, 2024, 261－303.

신미정, “부동산 보유세 부담의 국제비교('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2023.

신미정・안성서, “해외 부동산 취득세 및 보유세 제도 : 일본, 영국, 미국을 중심으로”,『지방세포럼』, 제63호, 한국지방세연구원, 2022.

이슬이, “OECD 주요국의 부동산 거래세 세부담 비교”, 한국지방세연구원, 2023.

임성일, “우리나라 재산세의 편익과세 기능 강화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기획보고서, 2019.

정현경・박정우,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세제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양도소득 과세상 문제를 중심으로—”,『법학연구』, 제34권 제3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4, 873－911.

정혜윤・박훈, “부동산 관련 세제상 보유주택 수(數) 판단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지방세논집』, 제8권 제2호, 한국지방세학회, 2021, 23－62.

최진섭・이슬이, “다주택 중과세제 분석과 정책방향”, 한국지방세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22.

하능식・이주현, “주택 양도소득세 세부담 분석 및 정책시사점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기획보고서, 2021.

Reflections on Seoul's Housing Tax System

-Focused on Comparisons with Tokyo and New York-

Young Jin Suh* · Hun Park**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reasonable housing tax system for Seoul by comparing the housing tax systems of Tokyo, Japan and New York, USA, which have similar population sizes and urban growth patterns to Seoul. This study compares the tax system for acquiring, holding, and disposing of housing with Tokyo, Japan, and New York, U.S., and examines the peculiarities and problems of Korea's housing tax system and seeks ways to improve it.

In Tokyo, Japan, real estate acquisition tax is levied at the stage of home acquisition, and the tax base for the acquisition tax is the price registered in the fixed asset tax book, which is the tax base for fixed asset tax. A general tax rate of 4% and a special tax rate of 3% are applied to houses. The home ownership tax is levied under the name of fixed asset tax, and the tax base is the assessed value of fixed assets registered in the tax assessment book. The fixed asset tax is a proportional tax with a standard rate of 1.4%. When disposing of a home, a different capital gains tax rate is applied based on the five-year holding period of the home.

New York imposes a real estate transfer tax and a mansion tax on housing transactions. All transaction taxes are applied at a simple progressive tax rate, and a capital gains tax exemption is provided for long-term single-family homes to protect real estate buyers. For residential property taxes, real estate is classified into four types. The tax base is the assessed value minus deductions, which is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market value of the property by the levy rate set by the City. Tax rates are set annually by the New York City Council and are applied separately to each type of property. The gain on the sale of a home is subject to income tax by the federal government, New York State, and New York City, and a tax credit is available for the sale of a home used as a principal residence. However, you must meet the requirements of owning the home for at least two years and living in it for at least two years.

Based on the above, this article examines the housing tax systems of Korea, Tokyo, Japan, and New York City and suggests the following improvements.

* First Author, Ph.D Student, The Graduate School of Science in Taxation, University of Seoul, yjsuh624@naver.com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The Graduate School of Science in Taxation, University of Seoul, phn@uos.ac.kr

First, regarding the acquisition tax, it is suggested that the current Korean acquisition tax tax base should be rationally clarified to define the actual acquisition price range. It is proposed to apply the market value uniformly to all sources of acquisition, as in Japan, or to dichotomize it to apply the de facto acquisition price for paid acquisitions and the market value for gratuitous acquisitions, as in New York, USA.

Second, with regard to the acquisition tax rate, noting that Japan and New York apply a single proportional tax rate (Japan) or a simple progressive tax rate (New York) without applying the acquisition tax bracket, we propose that Korea should also apply the acquisition tax bracket without applying the acquisition tax bracket to ease the burden so as not to distort taxpayers' choices.

Third, since property tax is based on the benefit principle and has an in-kind component, it is appropriate to apply a single proportional tax rate like Japan and the United States. In addition, since the separate property tax and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apply virtually the same taxation system, it is no different from operating a single tax system. Therefore, it is proposed that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be integrated into the property tax rather than being an independent tax.

Finally, it is proposed to strengthen the residency requirement for the one-family one-housing capital gains tax exemption system to better align with the purpose of encouraging residency and long-term ownership. Just as New York requires a minimum residency of two years to qualify for the tax deduction, non-adjusted areas should also have a minimum residency requirement to discourage speculative demand and to further encourage residency in adjusted areas.

부유세 과세의 개념 재정립에 관한 연구

마 정 화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유세 과세의 개념 재정립에 관한 연구*

마정화**

Ⅰ. 서 론

종합부동산세가 2005년에 도입된 이후 종합부동산세 강화 정책과 완화 정책이 번갈아 가면서 적용되면서 도입 20년이 된 현재 다시금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한 찬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반대하는 입장은 부동산 가격 안정과 조세부담의 공평[1], 지역균형발전[2]을 근거로 하는 반면,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찬성하는 입장은 부동산가격 안정에 필요한 수단의 부적정성과 다주택자 중과세의 문제점, 1세대 1주택자 뿐만 아니라 노령층의 경우 징벌적 과세라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4년 기획재정부가 우리나라의 종합부동산세는 부유세가 아니라고 명확히 밝힌 바 있지만, 언론이나 국민들 상당수는 종합부동산세를 부유세의 일종 또는 부자세로 이해하며, 전문가조차 해외의 부유세와 우리나라의 종합부동산세를 비교하기도 한다[3].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자에 대한 영향이나 부동산 시장,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적 맥락을 제외하더라도 국민 정서상 종합부동산세는 자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차선책 또는 부유한 상위 계층이 사회에 환원해야 하는 부담으로 이해되는 듯하다[4].

---

* 2024년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를 위해 새롭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수정・보완하여 논문으로 완성하겠습니다.

**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1) 최근 헌법재판소는 “현실적으로 다주택자 또는 고가 주택 소유자의 경제적 능력은 1주택 소유자 또는 무주택자보다 높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주택분 종부세 조항들이 2주택 이하 소유자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를 달리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헌재 2024.8.29. 선고 2024헌바59등 결정

2) 종합부동산세는 서울 등 수도권 거주자가 전체 70% 이상을 납부하고 상당 부분 비수도권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사용된다.

3) 임동원, “종합부동산세의 국제 비교 및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2021.

4) 시사경제용어사전에서 부유세는 많은 재산을 가진 특정 상위 계층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정의된다.

소득과 부(wealth)의 불평등은 오늘날 전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문제되는 의제로서 부유세의 개념과 기원, 변천을 분석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시행된 부유세는 그다지 인기가 없어 운영 국가가 축소된 가운데 최근 IMF는 부유세(wealth tax)를 도입하는 것보다 자본소득세를 개선하는 것에 우위를 두도록 권고하면서 매우 높은 수준의 부에 적용되는 경우 자본소득세를 보완하게 위해 순부유세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5].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부유세로서 기능을 논하기에 앞서 부유세의 개념을 명확히 살피고 우리나라에서의 부유세 과세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Ⅱ. 우리나라에서 부유세 개념과 보유세 제도

1. 부유세 개념

(1) 조세의 분류와 부유세

강학상 조세의 분류는 여러 가지로 소개되고 있다. 과세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세수의 용도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 납세의무자와 담세자의 일치 여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 납세의무자의 인적 요건 고려 여부에 따라 인세와 물세, 과세대상의 측정단위에 따라 종가세와 종량세, 다른 조세에의 부가 여부에 따라 독립세와 부가세로 구분되고 있다[6]. 국세에 대해서는 OECD 분류체계에 따라 소득과세(income and profits), 재산과세(property), 소비과세(consumption), 기타(other taxes)로 분류하여 부유세의 구분은 나타나지 않는다[7].

우리나라는 일본 세법의 영향을 받아 담세력을 표상하는 과세물건을 기준으로 강학상 수득세, 재산세, 소비세, 유통세로도 구분하고 있다[8]. 여기서 수득세(收得稅)는 인(人)이 수입을 얻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종합적 담세력의 표식인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소득세)와 어떠한 자가 소유하는 생산요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

---

5) IMF, “How to Tax Wealth”, 2024, p.32

6) 국회예산정책처, 2024 대한민국 조세, p.8 ;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2023, p.3

7) 기획재정부, 앞의 책, p.4

8) 우리 헌법재판소도 같은 표현을 쓰고 있다. 다만 수득세에 대한 설명에서 인(人)을 “사람”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민법상 자연인만이 아닌 법인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잘못 번역된 것으로 보인다. 1994.8.31. 선고 91헌가1 결정 등

조세(수익세)로 나뉜다[9]. 또한 강학상 재산세는 재산을 소유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지방세법상 재산세 뿐만 아니라 자동차세도 이에 포함된다.

특히, 국내에서 강학상 재산세는 과세대상인 재산의 범위에 따라 일반재산세와 개별재산세로 분류되는 것으로 소개되고 순자산에 대한 부유세 개념은 소개되고 있지 않다. 이에 반해 일본 문헌에서는 일반재산세는 어떠한 재산 전체 또는 순자산(net welath, net worth)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것이 있고, 그 중에서도 임시적으로 과세하는 것과 매년 반복적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분류되는데 후자는 재분배기능이 큰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10]. 이와 함께 개별재산세는 지가세, 고정자산세, 자동차세와 같이 특정 종류의 재산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재산의 소유라는 사실에 착안하여 과세하는 것인지, 해당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예상해서 과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것이 많다고 한다.

(2) 부유세 특징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된 지 20년이 되었지만 국내에서 부유세(wealth tax)의 개념은 다양하게 제각각 통용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가 부유세의 일종이라거나 부유세와 보유세의 기능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일반 국민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자세”로 인식하기도 한다[11].

이에 반해 2004년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는 부유세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12]. 부유세는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한 순재산(net wealth)에 대해 전체적으로 과세하는 세금”으로 재산을 보유한다는 사실에 부과하는 보유세와 근본적으로 다르고, 부동산의 종류별로 과세 여부와 세율을 각각 정하기 때문이다. 즉, 채무를 공제하지 않고 보유하는 자산가액 자체에 과세하는 점과 자산 전체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 점을 주된 근거로 하고 있다.

학계에서도 우리나라의 종합부동산세가 부유세와 일치한다고 보지는 않고, 부유세의 특성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면서 간접적으로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노영훈(2004)은 순부유세를 시행하는 국가들에서 발견되는 특징을 모아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즉, 매년 과세하는 국세이고, 개인소득세와 밀접한 연계성을 가지며, 부부 또는 가구가 소유한 총 자산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재산가액에 대해 인세로서 과세하는 방식이며, 부를 구성하는 과세대상 자

9) 金子宏, 租税法, 弘文堂, 2017, p.14

10) 金子宏, 앞의 책, p.15～16

11) 매일경제(2024.6.16.) 기사, “난 중산층인데 왜 부자세 내죠” … 종부세・상속세・금투세 ‘3종 세트’ ; 손본다 ; KB 국민은행의 「2023년 한국 부자 보고서」에 의하면 전국에 거주하는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의 ‘한국 부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부자 가구의 총자산은 부동산자산 56.2%, 금융자산이 37.9%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 보도자료(2004.11.19.), 보유세제 개편방안, p.28

산이 상당히 포괄적이라는 것이다[13].

최근에 부유세의 일반적 정의를 “개인 또는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에서 면제 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부과되는 연간 세금”[14]이라 하는 견해는 개인 또는 가구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점, 면제 기준액을 초과하는 부분, 매년 과세되는 방식을 추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면 우리나라에 소개된 (순)부유세의 공통된 특징은 ① 채무 공제, ② 자산 전체 합산, ③ 반복 과세, ④ 개인 또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조부유세(gross wealth tax) 또는 부동산세(real property taxes)

일부 문헌에서는 종합토지세를 토지에 대한 조(粗)부유세 또는 총부유세(gross wealth tax)라 설명하기도 한다[15]. 이러한 설명은 마치 순부유세와 총부유세가 광의의 부유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 그러나 부유세에서 부(wealth)는 애초에 빚부자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순부유세만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다. 조부유세 또는 총부유세는 채무를 공제하지 않고 자산가액 자체에 과세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종합부동산세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상 재산세도 해당된다.

부동산세(real property taxes)는 종종 부유세의 한 예로 설명되지만, ① 대부분의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부동산세는 한 가지 유형의 자산에 대한 세금이며, ② 무엇보다 세금이 부과되는 부동산에 대한 모기지를 포함하여 모든 부채를 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순자산이 최소인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부유세와 구분된다[16]. ①과 관련하여 매우 부유한 사람들은 보유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중산층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지만, 중산층 가구의 경우 가족 주택이 주요 자산이 되기 때문이다.

2. 재산세 제도

우리나라의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체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 귀속되는 지방세로서 토지, 건축물, 주택의 부동산과

---

13) 노영훈, “부유세 도입과 세제개혁 방향”,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2004, p.37～38

14) 김태근, 미국의 부유세(wealth tax) 도입 논의에 관한 고찰, 국제사회보장리뷰 통권 제29호, 2024, p.71

15) 노영훈, “부유세와 종합부동산세 : 부유세의 조세정책적 의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 p.23 ; 하능식, 토지 보유세 과세대상 구분체계 개편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6, p.16

16) IMF, “How to Tax Wealth”, 2024, p.25

선박,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과세된다. 강학상 재산세로서 자동차세는 별도의 세목으로 과세된다. 주요 재산세 세수는 부동산이 중심이 되는데, 종래 토지와 건물로 구분하여 재산세가 과세되다가 2005년 이후 부속토지를 포함한 개념의 주택, 토지와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체계로 변경되었다.

〈표 1〉 재산세 과세체계

구분	내 용		
납세의무자	사실상 소유자, 공부상 소유자 등, 사용자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과세표준	Min [과세표준상한액,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 과세표준상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연도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 상당액+(과세기준일 당시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과세표준×과세표준상한율)		
시가표준액	토지, 주택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공시가격 건축물, 항공기, 선박 : 지방자치단체 장이 정하는 시가표준액		
공정시장가액 비율	토지, 건축물 : 70% 주택 : 60%(2024년도분 1세대 1주택 : 43~45%)		
표준세율	토지	종합합산	5천만원 이하 : 0.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0.3% 1억원 초과 : 0.5%
		별도합산	2억원 이하 : 0.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0.3% 10억원 초과 : 0.4%
		분리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 0.07% 골프장용, 고급오락장용 : 4% 그 밖의 토지 : 0.2%
	건축물		골프장용, 고급오락장용 : 4% 일정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 0.5% 그 밖의 건축물 : 0.25%
	주택		6천만원 이하 : 0.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0.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0.25% 3억원 초과 : 0.4% *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특례 : 표준세율에서 0.05%p 인하
	선박		고급선박 : 5% 그 밖의 선박 : 0.3%
	항공기		0.3%

재산세 과세표준은 부동산 공시가격 등 시가표준액에 물건별 공정시장가액비율과 해당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즉, 해당 재산에 대한 부채는 공제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물건별로 과세표준을 각각 산정한다. 토지의 과세표준은 특정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 보유하는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하여 과거 종합토지세의 (전국) 합산체계가 일부 남아있으며, 합산범위도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되는 한편, 분리과세 토지는 합산 없이 건별로 과세하는 구조이다. 2023년 기준으로 토지분 재산세가 과세된 물건은 2,993만건으로 이 중 종합합산토지는 782만건(26.1%), 별도합산토지는 613만건(20.5%), 분리과세토지가 1,598건(53.3%)에 이르고 있다. 재산세 세액기준으로 종합합산의 경우 1조 280억원(13.2%), 별도합산 4조 5,476억원(58.4%), 분리과세 2조 2,048억원(28.3%)으로 종합합산 토지의 비중이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2〉 2023년 기준 토지분 재산세 과세현황

(단위 : 만건, 억원)

합계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2,993	77,805	782	10,280	613	45,476	1,598	22,048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우리나라의 재산세는 지방세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과 연계되어 과세되는 다른 국가들과 다르게[17] 국회가 정한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되는 구조이다. 지방세법에서 조례에 의한 탄력세율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재산세는 세출 구조와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 의회에서 탄력세율의 활용은 미미하다. 주택 공시가격이 급증하던 시기에 조례에 의한 재산세 부담을 인하하는 탄력세율이 규정되었을 뿐이다. 무엇보다 2005년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면서 재산세 세율 체계를 정비한 후 지방세법에 의한 세율 개정은 2009년 2월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외에는 없었다.

17) 재산세율은 지방정부의 예산 등에 따라 매년 책정된다.(국회예산정책처, 앞의 책, p.354)

〈표 3〉 2005년 이후 지방세법상 재산세 세율 개정

과세표준	2005년	2009년	2021년 (1세대 1주택 특례)
4천만원 이하	0.15%	0.1%	0.05%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0.3%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0.15%	0.1%
1억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0.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0.25%	0.2%
3억원 초과		0.4%	0.35%

대신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공시가격과 시행령에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에 의해 세부담이 실질적으로 정해져 왔다. 특히, 2024년부터 주택에 한정하여 종래 세부담상한제 대신 과세표준상한제가 도입되었다. 다만,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2023년까지 주택 재산세가 과세된 주택에 대해서는 2028년말까지 종래 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어 2024년부터 주택 재산세가 과세되는 신축 주택에 대해서만 과세표준상한제가 적용된다.

3. 종합부동산세 제도

2005년에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중 건축물이 제외되고, 토지에서도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부동산을 포괄하여 과세하지는 않는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5년 도입 당시와 달리 2023년 기준으로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물건이 53.3%까지 늘어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꼬마빌딩부터 초고층빌딩까지 건축물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023년 기준으로 건축물 재산세 과세건수는 542만건으로 부동산 재산세 전체 건수의 9.9%, 재산세액은 2조 784억원으로 부동산 재산세 전체 세액의 12.6%에 이르고 있다.

〈표 4〉 2023년 기준 부동산 재산세 과세현황

(단위 : 만건, 억원)

소계		재산세(토지분)		재산세(건축물분)		재산세(주택분)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5,484	165,590	2,993	77,805	542	20,784	1,949	67,001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합산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 이상인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되는데,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표 5〉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

<table>
<tr><th>구분</th><th colspan="5">내 용</th></tr>
<tr><td>납세의무자</td><td colspan="5">사실상 소유자, 공부상 소유자 등, 사용자(개인, 법인 불문)</td></tr>
<tr><td>과세대상</td><td colspan="5">토지, 주택</td></tr>
<tr><td rowspan="3">과세표준</td><td colspan="2">주택</td><td colspan="3">(공시가격 합산액－공제액*)×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 1세대 1주택자 : 12억원, 법인 등 : 없음, 기타 : 9억원</td></tr>
<tr><td rowspan="2">토지</td><td>종합합산</td><td colspan="3">(공시가격 합산액－ 5억원)×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td></tr>
<tr><td>별도합산</td><td colspan="3">(공시가격 합산액－80억원)×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td></tr>
<tr><td>공정시장가액
비율</td><td colspan="5">토지 : 100%
주택 : 60%</td></tr>
<tr><td rowspan="3">세율</td><td rowspan="2">주택</td><td>2주택
이하 소유</td><td rowspan="2">3억원 이하 : 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0.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1%</td><td colspan="2">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 1.3%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5%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2%
94억원 초과 : 2.7%</td></tr>
<tr><td>3주택
이상 소유</td><td colspan="2">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 2%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3%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4%
94억원 초과 : 5%</td></tr>
<tr><td rowspan="2">토지</td><td>종합합산</td><td colspan="3">15억원 이하 : 1%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 2%
45억원 초과 : 3%</td></tr>
<tr><td>별도합산</td><td colspan="3">200억원 이하 : 0.5%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 0.6%
400억원 초과 : 0.7%</td></tr>
</table>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토지분 재산세와 유사하게 공시가격 합산액에 물건별 공정시장가액비율과 해당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인데,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일정 금액의 공제액이 적용되어 최소 과세기준으로서 작동한다. 또한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해당 재산에 대한 부채는 공제하지 않으며,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를 각각 구분하여 합산과세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달리 만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연령별 공제(20～40%)가 적용되고, 5년 이

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도 보유기간별 공제율(20～50%)을 적용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납부세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 약 50만명 중 주택분 납세의무자가 약 41만명으로 대부분(82%)을 차지하지만, 세액 기준으로는 9,486억원으로 22.6%를 부담하고 있다.

〈표 6〉 2023년 기준 종합부동산세 과세현황

(단위 : 만명, 억원)

합계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인원	결정세액	인원	결정세액	인원	결정세액	인원	결정세액
50	41,950	41	9,486	9	18,884	1	13,580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

Ⅲ. 해외의 부유세 제도와 논의

1. 부유세 기원

우리나라에서 부유세를 최초로 도입한 것은 1910년 스웨덴으로 알려져 있으나, 국가 간 비교 가능한 정보가 축적되면서 진행된 연구에 의하면 국가 수준에서 영구적인 부유세를 도입한 최초의 국가는 1892년 네덜란드이다[18)19)].

부유세가 도입된 이유는 세수 확보란 공통점을 제외하면 단순하지 않고 부유세의 역할에 대해서도 국가마다 다르다. 최초기 부유세 도입 동기 중 하나는 소득과 달리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과세라는 관리상의 편리성이 있었다고 한다. 특히 부의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시대에는 소득 등 과세대상이 파악되지 않는 문제는 부유세에 의해 최소화되었다. 그러나 현대적인 징세 기관의 발전과 세금 부담의 공평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부유세의 관리상 우위는 없어졌다. 실제로 부유세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의 대부분은 관리상의 복잡성과 그에 필요한 비용으

18) Julian Limberg & Laura Seelkopf, The historical origins of wealth taxation,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29：5, 2022, p.673 ; 山口　和之, 富裕税をめぐる歐州の動向, 2015, p.6

19) 19세기 중반에 도입된 미국의 종합재산세(General Property Tax)는 개인 및 가구가 보유한 모든 유형의 자산에 세금을 적용하였고 특별 조항에 따라 부채와 모기지를 재산세 과세기준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최초의 부유세로 소개되기도 한다.(Dray 2023) 하지만, 전국 합산의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수준에서 합산하는 부유세와는 구분된다.

로 인해 그 도입을 포기하였다. 한편, 부유세 도입국은 부유세 과세 과정에서 얻은 자산 보유 정보를 소득세 등의 납세 신고와의 상호 검증에 이용함으로써 각 세금 간의 모순을 밝혀 조세 회피를 발견할 수 있었다[20].

〈표 7〉 OECD 부유세 도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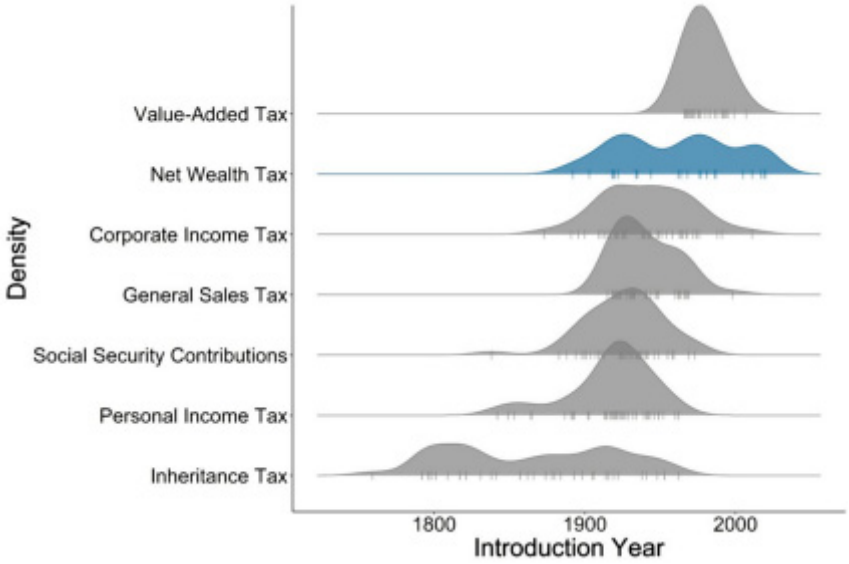
국가	존속기간	비고
오스트리아	1923－2000	
덴마크	1903－1995	
핀란드	1920－2006	
프랑스	1982－1987, 1989－2018	
독일	1923－1997	
아이슬란드	1981－2006, 2010－2014	
아일랜드	1975－1977	
일본	1950－1952	고액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보완세로 창설, 집행 곤란성으로 폐지
룩셈부르크	1913－2006	
네덜란드1)	1892－2001	
노르웨이	1882－	1882년(지방세), 1914년(국세 및 지방세)
스페인	1978－2008, 2011－	
스웨덴	1910－2007	
스위스	13세기－	국세 없음, 지방세로 운영

주 : 네덜란드는 부유세를 폐지했지만, 저축과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세자의 1월 1일 기준 순자산(예금잔고, 투자목적 부동산, 보유주식 중 일부)에 일정 비율로 과세함.
자료 : 山口 和之(2015), p.6 일부 수정

이러한 부유세는 현대 누진세의 중심인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상속세가 확립된 후에 도입되었고 보편적으로 단기간에 보급되지 않았는데, 경기 침체와 같은 주요 충격 이후 추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비상 세금으로 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20) 山口　和之, 富裕税をめぐる歐州の動向, 2015, p.4

〈그림 1〉 주요 세목별 보급시기



자료 : Julian Limberg & Laura Seelkopf, <표 3>

20세기 이전에 부유세를 도입했던 나라(노르웨이, 스위스[21])에서는 면세점이 낮기 때문에 납세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세율은 낮은 점에서 이들 국가의 부유세는 분배의 평등 촉진보다는 소득세의 보완세(수평적 공평)로서의 역할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1970년대 이후 도입한 국가(프랑스, 스페인)에서는 면세점이나 최고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불평등의 축소(분배의 평등)가 중시되는 것으로 평가된다[22].

부(wealth)는 미래 소비를 위해 저축한 노동 소득 뿐만 아니라 기부금, 과거 임대료, 조세회피 또는 탈세한 소득, 범죄 수익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부유세는 부의 원천을 묻지 않기 때문에 소득으로부터 납세 가능한 소득 삭감형 부유세(substitutive wealth tax)와 자산 처분을 실시하지 않으면 납세 불가능한 자본 삭감형 부유세(additive wealth tax)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자본 삭감형 부유세가 도입된 예가 없다[23].

자본은 일반적으로 자본소득세와 자산세를 통해 과세되는데, 자산세는 자산양도세와 자산 사

21) 스위스의 부유세는 낮은 세율로 광범위하지만 실용적으로 평가된 세금을 기반으로 하여 자본이득세와 상속세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국민 사이에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다. Peter Hongler & Matthias Valta(2021), p.17

22) 山口　和之, 富裕税をめぐる歐州の動向, 2015, pp.15～17

23) 山口　和之, 富裕税をめぐる歐州の動向, 2015, p.3

용・소유에 관한 세금으로 분류된다. 자본소득세와 자산세는 경계가 모호한 특성이 있는데, OECD는 추정 순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납세자의 개인적 상황을 고려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소득세로 분류한다[24].

2. 부유세 제도의 설계[25]

(1) 정부 수준과 세금 단위

부유세는 국가 수준 세금, 지방 수준 세금 또는 두 가지의 조합일 수 있다. 관행적으로 부유세의 세금 단위(납세의무자)는 가족을 기준으로 한다. 배우자에게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가계 자산의 소유권을 결정하고 분할하고 부양가족의 재산을 부모 중 한 명에게 할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가족 기반 재산 세금 부과는 개인 기반 소득 세금을 선택한 국가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2) 과세 최저한

부유세는 항상 특정 순자산 수준 미만의 납세자에게는 과세최저한을 설정하여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특히 높은 과세 최저한의 주된 정당화 근거는 형평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높은 과세 최저한 한도는 매우 부유한 사람만 세금을 내고, 라이프사이클 저축에 대한 과세를 방지하며, 자산에 대한 추정 수익에 대한 과세 문제를 완화하여 결국 저수익 자산 보유자에게 패널티로 작동하지 않게 한다. 높은 과세 최저한 한도는 행정 및 규정 준수 비용을 제한하는 이점도 있다. 수입 증가 관점에서 볼 때, 부는 부의 분포의 최상위에 고도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부유세는 과세 최저한 한도가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도 정부가 상당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과세 최저한 한도도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매년 또는 몇 년마다 개정해야 한다.

(3) 과세대상 자산, 면제 및 감면

부유세는 소스 기반 과세와 거주 기반 과세가 혼합된 것이다. 거주자의 전 세계 순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주요 이유는 납세자의 자산 합계가 어디에 있든 재산세를 낼 수 있는 능력을 결정하기 때문이다(IMF, 1996). 다만, 거주자에 대한 전 세계적 과세와 비거주자에 대한 소스 기

24) OECD(2018), The Role and Design of Net Wealth Taxes in the OECD, p.48
25) OECD(2018), The Role and Design of Net Wealth Taxes in the OECD를 참고함.

반 과세는 이중 과세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중 과세를 방지하는 조항이 필요하다.

부유세에서 면제 또는 감면은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공정성 강화(예 : 주거용 부동산) 및 사회적 문제(예 : 연금 자산), 유동성 문제(예 : 소유자가 재산세를 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입을 창출하지 못할 수 있는 농장 자산), 기업가 정신 및 투자 지원(예 : 사업 자산), 평가 및 기타 행정적 어려움 회피(예 : 예술 작품, 보석, 비상장 기업의 주식), 국가의 문화 유산 보존(예 : 예술 작품, 골동품)이 그 예이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과 같은 다른 자산은 종종 부유세에 따라 우선적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은 주로 주거용 부동산으로 구성된 중산층의 부담을 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화되지만,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은 세금을 내는 데 필요한 소득을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4) 부채와 평가 규칙

부유세는 순자산에 부과되므로 부채는 공제 가능합니다. 자본 관점에서 순자산은 납세자의 지불 능력을 더 잘 반영하기 때문에 순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수평적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평가 규칙은 자산 간에 유사해야 하며 시장 가치를 기반으로 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자산과 국가 간에 평가 규칙이 다르다. 자산세의 가장 큰 실질적인 어려움 중 하나는 거래가 거의 없는 자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평가하기 어려운 자산이 면제되었다. 또한 자산 가치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하므로 행정 및 규정 준수 비용이 더욱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자산 평가는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약간 할인된 비율로 해야 하며 평가 규칙은 단순해야 한다. 자산은 시장 가치로 평가해야 하지만, 평가 분쟁을 방지하고 자산을 보유하거나 유지하는 데 발생할 수 있는 특정 비용을 고려하기 위해 과세 기준을 해당 시장 가치의 고정 비율(예 : 80－85%)로 제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 간에 큰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칙은 자산 클래스 간에 비교 가능해야 한다.

(5) 세율 및 세부담상한

순 재산세율과 세율 구조는 국가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국가는 정액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가장 낮은 한계 세율은 일반적으로 0.2% 미만에서 1.5% 사이였고, 가장 높은 한계 세율은 일반적으로 0.5%에서 2.5% 사이였습니다(McDonnell, 2013). 부의 세율 일정이 2002년 이후로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순자산세율은 낮아야 하며, 특히 이 보고서는 광범위한 세금 기반을 유지할 것을 권장하기 때문입니다. 낮은 세율은 자본에 대한 전반적인 세금 부담을 제한할 것이며, 자본 소득에 대한 세금에 재산세가 부과될 때 특히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세율은 더 큰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가급적 점진적이어야 하며, 특히 순자산세가 고수익 자산 보유자보다 덜 부유한 경향이 있는 저수익 자산 보유자에게 처벌을 가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상한 조항 또는 세금 상한은 순 재산세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이는 종종 순 재산세와 개인 소득세 책임의 합산 총액에 대한 한도를 소득의 최대 부분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부당하게 높은 세금 부담과 순 재산세를 내기 위해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유동성 제약을 방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3. 해외 제도

1) 현행 부유세 개관

2024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콜롬비아, 스위스, 스페인, 노르웨이 4개국만 순부유세(net wealth tax)를 시행하고 있다. 즉, 1990년 기준으로 부유세를 운영하던 OECD 12개국 중 2018년 OECD에 가입한 콜롬비아를 제외하면 현재 3개국만 운영하는 것이다. 그 이유로 세수가 적은 대신 행정비용이 크고, 부유층과 자본이 유출되며,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점이 지적되며, 일부 국가에서는 헌법 위반으로 결정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첫째, 낮은 세율과 넓은 과세기반을 갖추고 억만장자가 많은 스위스만 개인 순부유세로 인한 세입이 GDP에 1%에 이르는 외에 부유세의 세수 조달 기능은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1997년 독일 헌법재판소는 부유세가 위헌이라 선언했고, 2021년 네덜란드 대법원은 부유세가 재산권 및 차별금지에 관한 유럽법에 위반한다고 판결하였다.

최근 IMF(2024)는 자본소득세 개선이 순부유세 대체보다 더 공평하고 효율적이므로, 부유세 도입보다는 자본소득세 개선을 우선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다만 매우 높은 수준의 부에 적용되는 경우 자본소득세를 보완하기 위해 순부유세가 여전히 기능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순부유세 대신 프랑스나 이탈리아와 같이 부동산과 같은 특정 자산에 대한 부유세를 운영하는 국가도 있다.

〈표 8〉 유럽 국가의 부유세(2024년 기준)

국가	유형	내용
노르웨이	순부유세 (net wealth tax)	순자산 170만 NOK(약 2억원) 초과시 : 1%(0.7% 지자체, 0.3% 중앙) * 순자산 2천만 NOK(약 25억원) 초과시 : 1.1%
스페인		70만 유로(약 11억원) 이상의 순자산 : 3.5%(지방정부 따라 공제율 다름)
스위스		0.02～1.03%(지방정부마다 요율 다름)
벨기에	특정자산에 대한 부유세	평균가치가 100만 유로 이상인 증권계좌 : 0.15%
프랑스		프랑스 거주자의 전세계 순 부동산 가치 또는 프랑스 비거주자의 프랑스 내 순 부동산 가치가 130만 유로(약 20억원) 이상 : 1.5%
이탈리아		해외 부동산 : 0.76%, 해외 금융자산 : 0.2%

자료 : 마정화(2024), 실거주 중심의 이탈리아 주택 보유세와 시사점, p.11

2) 스위스

스위스의 부유세 납세의무자는 각 지역 내 거주자이며, 비거주자는 해당 지역과의 경제 관계에 따라 한정적인 납세의무를 진다. 납세 단위는 독신 또는 부부이다.

모든 칸톤(광역지자체)은 전세계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잔액을 기준으로 순부유세를 부과하며, 일부 칸톤은 추가적으로 사회적 공제를 허용할 수 있다. 자산가치는 공정가치에 따르므로 일부 자산은 감가상각이 적용되고, 임대자산은 부유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세 최저한이나 세율 모두 지방자치단체마다 다양하다. 예를 들어, 취리히 칸톤세는 0.05～0.3%의 세율이 직접적으로 적용되며, 추가적인 지방세는 0.72～1.30 범위에서 지방세율(취리히시 : 1.19)을 적용하며, 교회세는 기본세에 교회세 요소(0.06～0.17)를 곱하는 것으로 한다.

〈표 9〉 스위스 취리히 순부유세 세율

독신		초과 세율(%)	부부	
과세표준(CHF)	칼럼 1에 대한 기본세(CHF)		과세표준(CHF)	칼럼 1에 대한 기본세(CHF)
0～ 80,000	－	0.00	0～ 159,000	－
80,000～ 318,000	－	0.05	159,000～ 398,000	－
318,000～ 717,000	119	0.10	398,000～ 795,000	120
717,000～1,353,000	518	0.15	795,000～1,432,000	517
1,353,000～2,309,000	1,472	0.20	1,432,000～2,387,000	1,473
2,309,000～3,262,000	3,384	0.25	2,387,000～3,342,000	3,383
3,262,000～	5,767	0.30	3,342,000～	5,771

자료 : https://taxsummaries.pwc.com/switzerland/individual/other-taxes

3)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국가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부유세를 과세하는 국가로서 지방세인 부유세는 1882년 세법에 도입되었고 1914년부터 지방세와 국세로서 운영되고 있다. 부유세 납세의무자는 170만 크로네가 넘는 순자산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과세단위는 독신 또는 부부(자산을 공유하는 경우)이다. 순자산의 가치는 과세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시장가격으로 평가한다. 또한 주거용, 상업용 부동산, 지분 및 고정자산 등 특정 자산의 가치에 평가할인이 적용되어 순자산이 최소액을 초과하는 경우 순부유세가 과세된다. 예를 들어, 주거주택에 대해서는 75% 평가할인이 적용되는데, 매매가 1천만 크로네(한화 약 12.6억원)를 초과하는 경우 30% 평가할인이 적용된다.

〈표 10〉 노르웨이 자산별 평가할인(valuation discount)

유형	2021	2022	2023
본토 주거주택	75%	75% (매매가 1천만 크로네 초과시 50%)	75% (매매가 1천만 크로네 초과시 30%)
주거주택이 아닌 본토 2주택	10%	5%	0%
본토 상업용 부동산 또는 스발바르섬 또는 해외에서 임대되는 상업용 부동산	45%	25%	20%
본토 상업용 부동산 또는 스발바르섬 또는 해외에서 임대되지 않은 상업용 부동산	45%	25%	20%
농업 및 임업용 부동산	45%	25%	30%
소득 창출 활동에 사용되는 다른 부동산	45%	25%	30%
파트너쉽으로 평가되는 사업 단위	45%	25%	20%
지분	45%	25%	20%
증권 펀드에서 단위들 중 지분 요소	45%	25%	20%
소득 창출 활동에 사용되는 그 밖의 고정자산	45%	25%	30%

자료 : 노르웨이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skatteetaten.no/en/person/taxes/get-the-taxes-right/valuation-discount-in-connection-with-assessment-of-wealth

노르웨이의 부유세 세율은 평가할인을 적용한 자산가치가 170만 크로네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지자체에 0.7%, 광역지자체에 0.3% 또는 0.4%가 적용된다. 이는 단일 납세자에 대해 적용되는 기준이고, 공동자산에 대해 공동으로 평가받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기준액은 2배가 적용된다.

〈표 11〉 노르웨이 순부유세 세율

순자산 가치	세율	
	지방	중앙
0～1,700,000 크로네	0.0%	0.0%
1,700,001～20,000,000 크로네	0.7%	0.3%
20,000,001 이상 크로네		0.4%

자료 : 노르웨이 국세청 홈페이지

4) 스페인

스페인 부유세는 순부유세와 거액 재산에 대한 임시 연대세로 구성된다. 순부유세는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1978년에 신생국가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비상조치로 도입된 후 1991년 실질적으로 개혁되었고 이후 거의 동일하게 유지된다[26]. 스페인 순부유세는 거주자 여부와 거주 지역에 따라 비과세・공제액과 부과세율에 차이가 있다. 거액 재산에 대한 임시 연대세는 부유세를 보완하는 직접세로서 지방 의회에서 결정한 자산의 지적 가치에 기초하여 0.4～1.1% 세율로 과세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구분된다[27].

거주자에 대한 순부유세는 전세계 자산을 대상으로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대한 순부유세는 스페인 자산만을 대상으로 과세한다. C. Valenciana에서 1인당 50만 유로, Murcia는 1인당 70만 유로(자치단체가 최소 면제금액을 설정하지 않을 경우 스페인 법률에 따라 일괄 면제액 적용)까지 면제된다. 추가적으로 거주자의 주거주 주택에 대해 30만 유로를 공제받는다. 누진세로서 순부유세 세율은 0.2～3.5%로 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다.

순부유세는 자산 유형에 따라 자산가치를 적용하는 규칙에 차이가 있다[28]. 주택은 매수가격, 지적 가치, 행정부가 정한 가치 중 가장 높은 가치로 평가된다. 반면, 은행 계좌는 12월 31일과 지난 분기의 평균 잔액 중 가장 높은 잔액으로 평가한다. 거액 재산에 대한 임시 연대세는 3백만 유로(약 45억원)를 초과하는 개인의 순자산에 과세되며,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순부유세는 공제된다.

2023년과 2024년 임시적으로 주정부세로 운영하였다. 자치단체에서 순부유세가 과세되지 않은 자산에 대해서만 연대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순부유세 납부액은 연대세 납부시 공제된다.

---

26) https://www.spenceclarke.com/wp-content/uploads/A-Guide-to-Wealth-Tax-2023-1.pdf

27) https://www.taxesforexpats.com/country-guides/spain/us-tax-preparation-in-spain.html

28) https://www.pellicerheredia.com/en/wealth-tax-spain/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기획재정부, “부유세, 알아봅시다”, 재정경제부, 2004.

김영훈・박성욱・이준규, “순부유세 도입시 문제점에 관한 연구”, 회계저널 제23권 제5호, 한국회계학회, 2014.

김태근, “미국의 부유세(wealth tax) 도입 논의에 관한 고찰”, 국제사회보장리뷰 통권 29호, 2024.

노영훈, 부유세 도입과 세제개혁 방향, 재정포럼 제97호, 한국조세연구원, 2004.

_____, 부유세와 소득 및 자산관련 조세개혁 방향, 재정포럼 제191호, 한국조세연구원, 2012.

_____, 부유세와 종합부동산세 : 부유세의 조세정책적 의미, 재정포럼 제203호, 한국조세연구원, 2013.

_____, Piketty(2014)를 통해 살펴본 불평등도 심화와 조세정책적 대응방안, 재정포럼 제218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박성욱, “부유세 도입시 문제점은 없는가”, 세무사 제32권 제4호, 한국세무사회, 2015.

박종국・이권석, “부유세의 도입과 조세공평성”, 세무와 회계저널 제7권 제1호, 한국세무학회, 2006.

박지현, “상위 2%에 대한 과세, 종합부동산세는 부유세인가?”, 한국지방세연구원, 2021.

원윤희, “부유세의 도입과 변천”, 국세 통권 제645호, 국세청, 2020.

KB금융그룹, 2023 한국 부자 보고서, 2023.12.

2. 해외문헌

IMF, How to Tax Wealth, 2024.

Julian Limberg & Laura Seelkopf, The historical origins of wealth taxation,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29：5, 670－688, 2022.

OECD, The Role and Design of Net Wealth Taxes in the OECD, 2018.

Peter Hongler & Matthias Valta, International Perspective on Wealth Taxation, IFF－HSG Working Papers Working Paper No.2021－8, 2021.

Sacha Dray Camille Landais Stefanie Stantcheva, Wealth and Property Taxation in the United States, 2023.

山口　和之, 富裕税をめぐる欧州の動向, レファレンス　平成27年 5 月号, 2015.

제 5 분과

지 방 세

장소 : 327호 사회자 : **윤성만 교수** (서울과학기술대)

시 간	발표논문 제목	저자 및 발표자*	토론자
15:00 ~ 16:30	상속에 따른 취득세 과세 개선 방안 -유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와 신고를 중심으로-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김진태** (중앙대)
	토지 조성과 지목변경 취득세 체계 개선방안	**류 진*** (강남대)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김민수** (경북대)

상속에 따른 취득세 과세 개선 방안

- 유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와 신고를 중심으로 -

임 상 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상속에 따른 취득세 과세 개선 방안

-유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와 신고를 중심으로-

임상빈*

〈목 차〉

Ⅰ. 서론
Ⅱ. 상속과 조세제도
1. 민법상 상속 제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 과세 체계
3. 지방세법상 상속에 따른 취득세 제도
4. 시사점
Ⅲ. 상속의 유형과 취득의 유형과의 관계
1. 문제의 제기
2. 해외사례의 검토
3. 취득의 본질과 상속유형 검토
4. 검토
Ⅳ. 상속 취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지방세법상 상속취득의 문제점
2. 지방세법상 상속취득 개선방안
Ⅴ. 결론

Ⅰ. 서 론

1950년 제정된 상속세법은 잦은 개정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세금이다. 한마디로 부자들을 위한 세금이었다. 하지만 최근 상속세 대상이 중산층으로 넘어오고 있다. 1997년 이후 상속세 공제액을 조정하지 않은 결과다.

그간 상속에 대한 취득세는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다. 최근 인구 고령화에 따라 사망이 증가하면서 상속의 문제가 일반화되고 있다. 상속세가 중산층세가 되면서 상속에 따른 취득세도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지방세에서는 1995년까지 상속에 따른 취득세는 형식적 취득으로 보아 비과세를 하였다.

*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법학박사, 경영학박사, sbin.lim@kif.re.kr

1996년부터 상속에 대해서 취득세를 과세한 것이다. 1962년 지방세법 제정이후 형성된 비과세 관행이 과세로 전환되었다. 일부 상속주택 중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하고 있다. 이러한 상속에 대한 과세는 2014년에 다시 한번 강화되었다.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라 상속분을 초과하는 취득은 증여로 간주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취득세에서는 상속에 대해서 과세를 강화하는 입법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은 1995년까지 비과세 관행이 있었고 과세 전환 이후에 큰 입법적인 이슈가 크지 않았다. 최근 인구고령화에 따라 상속이 크게 증가하면서 상속에 따른 취득세 세제에 대한 불합리한 문제가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세법상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에서 규정한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의 구분을 중심으로 상속에 따른 불합리한 취득세 신고기한의 문제점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Ⅱ. 상속과 조세제도

1. 민법상 상속 제도

가. 민법상 상속 제도

"상속(相續)"이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1] 여기서 "피상속인(被相續人)"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相續人)"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한다.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2] 사람의 사망 시점은 생명이 절대적·영구적으로 정지된 시점을 말하며, 이와 별개로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도 사망한 것으로 보아 상속이 개시된다.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유언(遺言)"이란 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를 말하는데,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독립한 의사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 행위로,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유언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 이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반면, "유증"이란 유언을 통해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하며, 유증은 유언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유증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 받을 수 있으며,

1) 민법 제1005조.

2) 민법 제997조.

상속인도 유증을 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지만, 피상속인이 미리 유언을 통해 유증한 경우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한다. 유증이 있으면 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언의 유효를 주장하여 상속인에게 모든 상속재산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데, 유증이 이행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원래 상속인이었던 사람은 가까운 친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을 모두 잃게 된다.

따라서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유류분으로 하여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침해의 원인이 된 사람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결국 유류분의 한도에서는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다.

나. 유류분 위헌 결정

한편,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①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헌으로 결정하고, ②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3)]

헌재는 가족으로서 도리를 다하지 않는 구성원에게 유류분권을 빼앗을 수 있는 보완제도를 두지 않은 것은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반면, 헌재는 유류분제도의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 “일부 유류분 제도 조항으로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류분제도는 오늘날에도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가족의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결의 의의를 밝혔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 과세 체계

가. 상속세법상 상속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에 대해서 정의를 두고 있다.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

3)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른 상속을 말하며, 유증과 사인증여, 상속재산의 분여,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을 포함하고 있다.[4] "상속세"란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말한다. 수유자는 상속세의 납부의무자가 된다. 현행 「민법」에서는 증여를 받은 사람, 유증을 받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수증자'라고 칭하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재산을 받은 자를 '수증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9호)로 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으로,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를 수유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5호)라 하여 상속세의 과세대상(「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으로 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수증자와 유증을 받은 자를 '수유자'는 구분되고 있다. 수유자의 상속세 납세의무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성립하며, 그 시점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가 된다.

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5] 이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이 기간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계산한다.[6] 이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

---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遺贈)
나.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
다.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라.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이하 "유언대용신탁"이라 한다)
마.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이하 "수익자연속신탁"이라 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3항.

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7]

이와 같이, 상속세의 과세표준의 신고는 6개월을 원칙으로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의 지정 등을 고려하여 신고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3. 지방세법상 상속에 따른 취득세 제도

가.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Ⅲ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8] 이와 같이 지방세법에서는 상속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지 않고, 상속에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상 상속에 따른 납세의무 연혁

1) 상속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관행

취득세란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취득가액의 일정비율을 부담시키는 조세이다. 그러나,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이란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9] 상속인이 담세력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상속을 포함한 모든 무상취득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취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거에는 상속에 대해서 비과세 관행이 있었다. 즉, 비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형식적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형식적 취득으로 비과세한 것이다. 이러한 배경은 우리나라의 재산은 가족 중심의 소유로 인식되던 문화에 기인한 것이다.

---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5항.

8) 지방세법 제7조 제7항.

9) 지방세법 제6조 제1호.

다른 한편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은 부자에 대한 세금으로 인식되고 있었고 서민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었던 사회환경도 있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상속은 가족의 재산이 다음 세대로 이전되는 것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재산의 원본을 침해하므로 형식적으로 등기의 변경으로 보아 형식적 취득으로 인식되어, 비과세 규정을 두었다.

〈표 1〉 구 지방세법 제110조 형식적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종류 관련규정	내 용	비고
1995. 12. 6. <개정>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 12. 6.> 1. 신탁(信託法에 의한 信託으로서 信託登記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다. 수탁자의 경질로 인하여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2. (생 략) 3. 상속으로 인한 취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나. 제2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4. ~ 5. (생 략).	

2) 상속에 대한 형식적 소유권의 비과세와 과세 전환

1991년 호주상속제가 호주승계제도로 바뀌고 상속은 재산상속에 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기여분 제도가 신설되었으며, 딸의 경우 동일가적 내에 있고 없고를 불문하고 아들과 상속분이 동일하게 되었다. 처뿐만 아니라 남편도 상속분이 50% 가산되게 되었고(이전에는 재산이 남편 명의로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부부가 별도로 또는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추세가 되자 이를 반영한 것임), 호주상속자가 50% 가산받는 규정이 폐지되었다.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호주가 아니라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상속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따라 지방세법상 상속에 대한 비과세 관행도 과세로 전환되는 배경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1995년 개정에서 상속에 의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상속개시일부터 30일이내에서 6월이내로 연장하고, 납세의무의 범위를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분으로 하되, 상속인 상호간에 연대납세의무를 지도록 하였다.

구 지방세법에서는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10] 이러한 비과세 대상은 1. 상속(包括遺贈 및 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할 遺贈을 包含한다)으로 인한 취득, 2.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3.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4. 신탁의 종료 또는 해제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위탁자 또는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5. 신탁의 수탁자 경질로 인한 신수탁자의 취득, 6. 귀속농지불하로 인한 신수탁자의 취득, 7.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8. 임대차방식에 의한 연불수출선박으로서 채권확보를 목적으로 선박제조자명의로 등기하는 선박의 취득. 다만, 임대차방식에 의한 연불수출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한다. 9.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이 있었다.

1995. 12. 6. 지방세법 개정으로 상속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로 전환하고, 상속에 따른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 및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상속취득에 대해서만 비과세하도록 개정되었다.

3) 상속 이후 재분할에 대한 증여간주

2014년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한 이전시 상속이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증여로 간주하도록 증여간주 규정을 신설하였다.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였다.

상속재산 증여간주에 대한 예외로서, ①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②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③「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를 규정하였다.

---

10) 구 지방세법 제110조.

2018. 12. 31. 개정에서 상속재산 증여간주에 따른 예외에서,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를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등을 모두 마친 경우”로 규정하여 재분할 취득시점을 명확화하였다. 재분할의 경우 증여의사 표시로 보면 취득의 시기는 증여의사시기 또는 증여계약시점이 되나, 간주로 취득를 과세할 경우 이 시점을 특정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어 등기등을 마친 경우로 명확화한 것이다.

〈표 2〉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른 증여간주 규정 개정연혁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개정 내용	비고
2014. 1. 1. <신설>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1. 1.> 1. 제20조에 따른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2018. 12. 31. <개정>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1. 1., 2018. 12. 31.> 1. 제20 조제1항에 따른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등을 모두 마친 경우**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재분할에 의한 취득시기 명확화

다. 지방세법상 상속에 따른 납세의무

상속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1995년 신설된 규정이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 2001년에는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 법령이 개정되었고, 2010년에는 지방세법 분법에 따라 개정되었다. 1995년 이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과 포괄유증, 신탁재산 유증을 상속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 3〉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 개정 연혁

종류 관련규정	내 용	비고
1995. 12. 6. <신설>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9항	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5. 12. 6.>	과세전환
2001. 12. 29. <개정>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9항	⑨ 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5. 12. 6., 2001. 12. 29.>	관련규정 개정
2010. 12. 27. <개정> 지방세법 제7조 제7항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 12. 27.>	관련규정 개정

라. 취득세 신고기한

현재 취득세 신고는 일반적으로 60일 이내, 상속의 경우 6개월, 증여의 경우 3개월 적용하고 있다. 취득의 원인 및 적용세율에 따라 신고기한이 다르다. 그러나, 구지방세법에서는 조례에 따라 30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2010년 지방세법이 분법되면서, 취득세 신고기한은 일반적인 경우 60일, 이내고 신고하도록 하였다.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 또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011년 개정에서 신고납부시기를 상속개시일에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변경하였다.

〈표 4〉 취득세 신고 규정 연혁

종류 관련규정	내 용	비고
지방세법 [시행 1962. 1. 1.] [법률 제827호, 1961. 12. 8., 폐지제정]	**제114조(납기)** 취득세의 납기는 당해도의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조례 규정 일반 30일
지방세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21호, 2010. 3. 31., 전부개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일반 : 60일 상속 : 6개월
지방세법 [법률 제11137호, 2011. 12. 31, 일부개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일반 : 60일 상속 : 6개월 (상속)

〈표 4〉 취득세 신고 규정 연혁 (계속)

종류 관련규정	내 용	비고
지방세법 [법률 제12153호, 2014. 1. 1, 일부개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토지허가 구역 특례 신설
지방세법 [법률 제14475호, 2016. 12. 27, 일부개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토지허가 구역 근거법 개정
지방세법 [법률 제18655호, 2021. 12. 28, 일부개정]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으로 인한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일반 : 60일 증여 : 3개월 상속 : 6개월

〈표 4〉 취득세 신고 규정 연혁 (계속)

종류 관련규정	내 용	비고
지방세법 [법률 제19860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 또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부담부증여 무상취득 3개월 신설

4. 시사점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지방세에서 상속에 대한 취득세는 과거 비과세 관행에서 과세전환된 것으로 종전 비과세에 규정되어 있던 상속의 범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상속에 따른 취득은 상속과정에서 상속세 납부를 중심으로 새로운 재산의 취득에 대한 과세로 상속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지방세의 상속과 국세의 상속 범위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상속의 차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는 실무운영상의 문제일 수 있으나 제도적으로 양자를 일치시키는 것이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따라서 상속의 범위와 상속에 따른 신고기한 일치시킬 수 있는지, 양자를 다르게 운영하는 실익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Ⅲ. 상속의 유형과 취득의 유형과의 관계

1. 문제의 제기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무상취득의 취득세 신고기한은 상속은 6개월이나 증여는 3개월을 적용하고 있다. 취득세는 취득원인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고 그 신고기한도 달리하고 있다.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해외의 상속에 따른 신고제도를 중심으로 그 특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해외 사례의 검토

가. 미국의 사례

1) 미국 상속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그의 재산상의 권리, 의무가 상속인에게 모두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의 상속법은 주법으로 되어 있어서 각 주마다 다른 내용의 상속법을 가지고 있다. 대체로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거주하던 주의 법이 동산의 처분 및 승계에 관하여 적용되고, 피상속인의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주의 법이 부동산에 적용되므로,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은 관할과 준거법을 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긴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상속보다 유언이 우선 적용된다. 미국에서는 한국과 달리 유류분[11]을 인정하지 때문에 유언장의 내용이 절대적이다. 유언장에 언급이 되었고 적법하다면 상속 법원에 제출된 후 유언장 속에서 지정된 상속 관제인을 통해서 법원의 확정을 받고 고인의 유언대로 집행되게 된다. 상속 절차 과정의 시간이 또 소요되는데, 보통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2) 미국의 상속세 신고

연방세의 경우 피상속인(사망자)이 미국 시민 또는 미국 상속세법상 미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전세계의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사망일 또는 사망 후 6개월이 된 때의 시가

11) 유류분이란 상속인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재산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Fair Market Value)가 당해 연도의 상속세 면제한도를 초과할 때 상속세가 부과 된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인 경우에는 미국 내에 소재하거나 미국과 관련 있는 상속재산(U.S. Situs Proporty)이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 시 소유한 모든 재산, 사망시 이 전키로 한 재산, 취소가능 신탁의 재산, 생명보험 수령액, 부적합한 증여 및 매도로 이전한 재산, 공동소유권의 피상속인 지분, 피상속인이 수익자를 지명할 수 있는 권리(Power of Appointment)를 가진 신탁의 재산권 등이 포함된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연간 증여세 면제액을 초과하여 증여한 금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된다. 단, 취소 불가능한 신탁 (Irrevocable Trust)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

상속세 납세의무자의 경우 사망일(상속개시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하기 전, 상속세 신고와 동시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상속세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속세를 내야 할 경우에는 상속 집행인이나 유산 상속인 등이 상속세 신고서(Form 706)를 이용해 미국국세청(IRS)에 사망 후 9개월 내에 신고해야 한다. 상속세 납부는 사망일 이후 최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미국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Form 706으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고, 비거주자 외국인(Nonresident Alien)가 사망한 경우, Form 706-NA으로 각각 다르게 신고를 해야 한다. 상속세 신고 시에는 사망 확인 서류와 주정부 상속세 납부확인 서류, 유언장이 있다면 유언장 사본과 증여세 보고 서류, 재산평가 서류 등이 필요하다.

종래 수익자연속신탁의 효력을 우리 법상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으나, 신탁법 제60조는 “신탁행위로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이 소멸하고 타인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뜻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사망에 의하여 차례로 타인이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탁법에서 수익자연속신탁의 유효성을 인정한 이유는, 우리나라에는 영미신탁법과 같은 영구불확정금지의 원칙(rule against perpetuities)이 없고, 위탁자가 생전에는 자신을 수익자로 하되 자신의 사후에는 부인을 수익자로, 부인의 사후에는 다시 자녀를 연속하여 수익자로 하는 유형의 신탁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3) 미국의 증여세 신고

미국의 경우 증여계약에 의하여 재산을 무상 또는 낮은 가액으로 이전하는 증여자(Donor)가 증여세 납세의무자이다. 증여자가 미국 시민 또는 미국 증여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는 전 세계의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보고 및 납세의무가 있고, 증여자가 비거주 외국인인 경우에는 미국 내에 소재하거나 미국과 관련있는 자산(U.S. Situs Proporty)을 증여한 경우에만 납세

의무가 있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연간 증여재산 총액에서 연간 증여세 면제액, 배우자공제, 자선단체 기부공제 등을 차감하여 과세대상 증여가액을 산출하고, 그 이전의 과세대상 증여가액 누계액을 더해 평생 과세대상 증여가액(Lifetime Taxable Gifts)을 구한다. 여기에 누진세율을 (2016년 최고 40%까지)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그 이전의 과세대상 증여가액에 대한 세액을 차감하여 잠정 증여세액을 산출한다.

증여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증여세법상 거주자인 경우 특정 수증자에게 연간 증여세 면제액보다 많은 재산을 증여한 때에는 증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증여세 신고서(Form 709)를 제출하여야 한다. 증여재산의 가액이 연간 증여세 면제액보다 적더라도 부부가 함께 분할증여(Split Gifts)를 한 때에는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일본의 사례

1) 일본의 상속세

일본 민법 제964조는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으로 나누어 법률효과를 달리하는 법률규정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처분한 때는 물론 특정재산을 지정하여 처분하는 방식의 유증도 유효함을 밝히는 법률규정이다.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을 나누는 제964조 본문을 둔 사실을 제외하면, 일본 민법의 유증은 실제 그 구조와 내용에서 현행 민법의 유증과 거의 일치한다.[12)]

일본 상속세법에서는 상속세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 또는 유증(증여한 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에 따라 재산을 취득한, 일시거주자가 아닌 개인, 일시거주자인 개인[해당 상속 또는 유증에 관련된 피상속인(유증한 자를 포함)이 일시거주 피상속인 또는 비거주 피상속인인 경우를 제외]자로서, 해당 재산을 취득한 때에 이 법 시행지에 주소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13)] 다만, 유증에서 증여한 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12) 일본 민법 제964조(包括遺贈及び特定遺贈) 遺言者は、包括又は特定の名義で、その財産の全部又は一部を處分することができる。

13) 일본 상속세법 제1조의3(相續稅の納稅義務者) ①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掲げる者は、この法律により、相續稅を 納める義務がある。
ー 相続又は遺贈(贈与をした者の死亡により効力を生ずる贈与を含む。以下同じ。)により財産を取得した次に掲げる者であつて、当該財産を取得した時に おいてこの法律の施行地に住所を有するもの
ィ 一時居住者でない個人
ロ 一時居住者である個人(当該相續又は遺贈に係る被相續人(遺贈をした者を含む。以下同じ。) が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고 있다.[14]

상속세의 과세재산의 범위는 납세의무자가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의 전부이다.[15] 상속세 납세무자는 상속세 신고서는 상속세액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의 다음날부터 10개월 이내에 과세가격, 상속세액, 그 밖에 재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납세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6] 즉, 상속 또는 유증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 및 상속시 정산과세 적용자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나 배우자의 세액경감 등을 적용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속의 개시가 있다는 것을 안 날(통상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의 다음 날부터 10개월 이내에 피상속인 사망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속세액을 납부해야 한다.[17]

이와 같이 일본의 상속세는 상속세의 납세의무자는 상속과 유증을 포괄하여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10개월의 신고납부 기한을 두고 있다.

2) 일본의 취득세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상속을 하게 되면,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 취득세 납세여부가 판단해야 한다. 일본의 지방세법에서는 우리나라 취득세에 해당하는 부동산취득세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지방세법에서 “부동산 취득세는 토지나 가옥을 구입하거나, 가옥을 건축하는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에,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의 취득은 유상・무상 여부, 등기 유무 등 취득 원인을 묻지 않으며, 증여나 등가 교환에서도 과세가 된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나 경감제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一時居住被相續人又は非居住被相續人である 場合を除く。)

14) 일본 상속세법 제1조의3 제1항 제5호 贈与(贈与をした者の死亡により効力を生ずる贈与を除く。以下同じ。) により第二十一條の九第三項の規定の適用を受ける財産を取得した個人(前各号 に掲げる者を除く。)

15) 일본 상속세법 제2조 (相續税の課税財産の範囲) ① 第一條の三第一項第一号又は第二号の規定に該当する者については、その者が相續又は遺贈により取得した財産の全部に對し、相續税を課する。

16) 일본 상속세법 제27조 (相續税の申告書) (중략) その相續の開始があつたことを知つた日の翌日から十月以内(その者が國税通則法第百十七條第二項(納税管理人) の規定による納税管理人の届出をしないで当該期間内にこの法律の施行地に住所及び居所を有しないこととなるときは、当該住所及び居所を有しないこととなる日まで) に課税価格、相續税額その他財務省令で定める事項を記載した申告書を納税地の所轄税務署長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17) 일본의 증여세의 경우,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납부해야할 세액이 있는 경우나 배우자공제 등의 특례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해의 다음 해 2月 1日부터 3月 15日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증여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 소재의 도부현에서 해당 부동산의 취득자에게 부과한다.[18] 일본의 취득세는 형식적 취득세 대해서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다. 도부현은 상속(포괄유증 및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행해진 유증을 포함)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부동산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19]

일본의 부동산취득세 납기[20] 및 부동산취득세 부과징수에 과한 신고의무[21]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고 있다. 부동산 취득세 부과징수에 과한 신고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소관하는 도세 사무소(도세지소)・지청 에 신고해야 한다. 미등기물건을 취득한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하다. 다만,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는 불필요하다.[22] 부동산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하여 십만엔 이하의 과료를 부과한다.[23]

---

18) 일본 지방세법 제73조의2(不動産取得税の納税義務者等) 不動産取得税は、不動産の取得に對し、当該不動産所在の道府縣において、当該不動産の取得者に課する。

19) 일본 지방세법 제73조의7(形式的な所有權の移轉等に對する不動産取得税の非課税) 道府縣は、次に掲げる不動産の取得に對しては、不動産取得税を課することができない。
一 相續(包括遺贈及び被相續人から相續人に對してなされた遺贈を含む。) による不動產の取得

20) 일본 지방세법 제73조의16(不動産取得税の納期) 第七十三條の十六 不動産取得税の納期については、当該道府縣の條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る。

21) 일본 지방세법 제73조의18(不動産取得税の賦課徵收に關する申告又は報告の義務) 不動産を取得した者は、当該道府縣の條例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條例で定める期間内に、不動産の取得の事實その他不動産取得税の賦課徵收に關し條例で定める事項を申告し、又は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当該不動産の取得について、当該期間内に不動産登記法第十八條の規定により表示に關する登記又は所有權の登記の申請をした場合(同法第二十五條の規定により当該申請が却下された場合を除く。)は、この限りでない。

22) 일본 도쿄도 도세 조례 제45조(不動産取得税の賦課徵收に關する申告義務等) 不動産取得税の納税義務者は、不動産取得税を課されるべき不動産を取得した日から三十日以内に、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た申告書を知事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当該不動産の取得について、当該不動産を取得した日から三十日以内に不動産登記法(平成十六年法律第百二十三号)第十八條の規定により表示に關する登記又は所有權の登記の申請をした場合(同法第二十五條の規定により当該申請が却下された場合を除く。次項において同じ。)は、この限りでない。

23) 일본 도쿄도 도세 조례 제46조(不動産取得税に係る不申告に關する過料) 不動産取得税の納税義務者が、前條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つて申告すべき事項について正当な事由がなくて申告をしなかつた場合においては、その者に對し、十万円以下の過料を科する。

다. 해외사례의 시사점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상속은 유언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다수이다. 미국의 경우 유언에 따른 상속을 상속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일본과 우리나라도 유언에 따른 상속을 상속세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취득세 과세 과정에서 일본은 상속과 유증을 형식적 취득으로 보아 비과세를 하고 있으나 우리나는 상속의 범주에 피상속인이 상속이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만을 포함하고 있다. 특정유증의 경우 상속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취득세에서 상속의 범위를 상속세와 달리 규정함에 따라 상속이 특정유증인지 아닌지가 취득세 신고기한에 영향을 주게 된다.

〈표 5〉 상속의 과세 범위

구분	미국	일본	한국
상속세	상속, 유증	상속, 유증	민법상 상속, 유증, 사인증여, 상속재산분여,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취득세	–	형식적취득 비과세 (상속 및 유증)	상속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 산탁재산의 상속)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미국과 일본의 경우 상속에 따른 신고기한을 10개월 부여하고 있다. 상속세의 경우 유증을 포함하고 있어, 상속에 따른 신고기한 10개월이 적용된다. 일본의 경우 상속과 유증에 대해서 형식적 취득으로 보아 비과세를 하고 있고 신고의무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 같이 형식적 취득으로 보아 비과세를 하였으나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신고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신고의무는 유증을 상속으로 보는가 아니면 증여로 보는가에 따라 신고기한이 달라진다. 유증의 경우 상속세법에서는 상속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취득세에서는 증여로 보고 있어 신고기한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

〈표 6〉 상속에 따른 신고기한 차이

구분	미국	일본	한국
상속세	10개월	10개월	6개월
취득세	–	30일/ 등기 미신고	6개월

이를 종합해보면, 취득세에서 상속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특정유증은 제외하도록 규정함에 따

라 특정유증은 증여에 해당하게 되고 상속에 따른 상속과정에서 특정유증된 재산과 포괄유증된 재산의 신고기한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3. 취득의 본질과 상속유형의 검토

가. 취득의 본질

1) 취득의 정의 규정 검토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다.[24] 이와 관련하여 통칙에서는 '취득'이라 함은 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등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잔금지급, 연부금 완납 등)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으나 취득이 무엇인가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취득의 유형을 열거하고 이와 관련된 모든 취득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취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취득이 본질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취득은 모든 유형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2) 기존의 판례 검토

대법원은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3자 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어,[25] '사실상 취득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또한, 대법원은 "부동산 등을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의 시기는 사실상의

24) 지방세법 제6조 제1호.

25) 대법원 2007.5.11. 선고 2005두13360 판결

잔금 지급일이라 할 것이고, 이는 원칙적으로 잔금 청산일을 가리키는 것이나, 한편으로 취득세 자체가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상의 취득행위는 비록 잔금 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극히 미미한 금액의 잔금만이 형식상 미지급되고 있을 뿐이어서 그와 같은 미미한 금액의 형식상의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될 경우라면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26)]

반면 형식적 취득은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여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써,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27)]

나. 상속과 유사 유형 검토

1) 유증

유증은 일반적으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사인처분(Verfügung Todes wegen) 또는 사후처분의 성질을 가진다고 한다.[28)]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낙성·불요식의 계약으로서, 사인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562조). 그러나 사인증여는 계약이므로 유언능력에 관한 제1061조에서 제1063조와 유언의 방식에 관한 제1065조에서 제1072조, 그리고 유언의 철회에 관한 제1108조와 같이 단독행위를 전제로 하는 법률규정은 사인증여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포괄적으로 사인증여를 약정한 때에도 포괄유증의 효력을 규정한 제1078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인증여가 엄격한 유언방식을 우회하여 실질적으로 상속과 같은 기능을 담당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유언을 요식행위화한 법률규정들이 그 의미를 잃을 것이기 때문이다.[29)]

(가) 포괄유증과 특정유증

지배적 견해와 판례에 따르면 유증은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을 나누어져 각각 법률효과를 달

---

26) 대법원 1971.3.31. 선고 71다352, 353, 354 판결 등

27) 대법원 2002.7.12. 선고 2000두9311 판결

28) 박동섭, 693면 :

29) 대법원 1996.4.12, 94다37714.

리한다. 대판 2003.5.27, 2000다73445도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나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라고 판시한다. 그러나 포괄유증의 효과를 법정한 제1078조 외에 민법은 포괄유증과 그의 법률효과를 담은 법률규정이 없다. 반대로 현행 민법 어디에서도 특정유증을 언급하는 법문을 찾을 수 없다.[30]

지배적 견해와 판례의 태도를 요약하면, “현행민법의 유증은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민법은 포괄수증인이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외에는 그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효과를 밝히지 않는다”는 어색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제1078조는 포괄승계 외에는 법률효과에 관한 모든 사항을 아울러 규율하는 법률규정이라고 하기 어렵다.[31]

무엇보다 지배적 견해와 판례는 제1078조를 근거로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을 나눈 점에서는 타당하나 포괄유증을 민법이 배척한 상속인 지정으로 유용하고 특정유증만을 고유한 유증의 법리에 포섭한 점에서는 법률규정을 떠나 직관에 기댄 잘못에서 자유롭지 않다.

2) 사인증여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을 원인으로 증여의 효력이 생기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32] 즉, ‘증여자가 사망하게 되면, 수증자에게 어떤 재산을 증여한다.’는 형식의 증여계약을 의미한다. 만일 수증자가 상속인이라면 얼핏 유언과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으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점이 있다.

유언의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여기서는 유증(유언으로 재산의 소유권을 수유자에게 이전하도록 하는 행위)을 중심으로 설명하겠다. 유증은 계약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단독행위이다. 따라서 유언자가 수유자(＝유언으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사람)에게 자신의 재산을 남길 때, 꼭 수유자가 알도록 할 필요가 없다. 수유자가 모르는 상태에서도 유언의 요건만 충족한다면, 사후에 유언집행자가 유증을 집행할 수 있다. 하지만 사인증여는 증여계약의 일종이며 다만 그 효력이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계약은 단독으로는 할 수 없고, 계약자 상호간의 동의가 필요하다. 비유하자면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상인이 물건을 사라고 권유하고(＝청약), 소비자가 그에 응하여 돈을 주고 물건을 가져와야(＝승낙) 한다.

---

30) 민법상에서 특정유증에 대한 구체적인 법문이 없으나, 지방세법에서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을 구분하여 그 효과를 달리규정하고 있다.

31) 또한 최병조, 197 주15는 “민법 제1078조는 포괄수유자는 [재산]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그 권리의무의 내용만을 규정할 뿐 상속재산 자체가 포괄수유자에게 어떻게 귀속하는가에 관하여는 침묵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32) 민법 제562조.

즉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사인증여를 하겠다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알려야 하며(=청약), 수증자가 이를 승낙해야 한다. 만일 증여자가 사인증여를 하려 하여도 수증자가 이를 거절하거나, 수증자에게 이를 알리지 못했다면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이 없다.

3) 신탁법상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

「신탁법」은 신탁행위로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이 소멸하고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뜻을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익자의 사망에 의하여 차례로 타인이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여(법 제60조) 유언형의 수익자 연속신탁을 인정하고 있다.

(가) 유언대용신탁

2012년 전부개정 신탁법을 통해 위탁자가 살아있을 때는 위탁자가 수익자로서 신탁의 이익을 누리고, 위탁자가 사망한 뒤에는 위탁자가 미리 정하여 둔 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는 '유언대용신탁' 제도가 도입되었다.[33] 피상속인이 생전에는 수탁자에게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면서 본인은 신탁의 이익을 누리고, 사후에는 이러한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뜻대로 처분하고 활용되기를 희망하는 의사를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엄격한 유언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유언법정주의의 제한도 받지 않으면서 그 실질은 유증이나 사인증여와 유사했기 때문에 유언'대용'신탁으로 불리고 있다. 실무상 피상속인이 생전에 본인의 재산에 대해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할 때 피상속인을 위탁자 겸 생전수익자로, 상속인 중 1인을 수탁자 겸 단독 사후수익자로 지정하는 방식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나) 수익자연속신탁

종래 수익자연속신탁의 효력을 우리 법상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으나, 신탁법에서 신탁행위로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이 소멸하고 타인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뜻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사망에 의하여 차례로 타인이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4] 신탁법에서 수익자연속신탁의 유효성을 인정한 이유는, 우리나라에는 영미신탁법과 같은 영구불확정금지의 원칙(rule against perpetuities)이 없고, 위탁자가 생전에는 자신을 수익자로 하되 자신의 사후에는 부인을 수익자로, 부인의 사후에는 다시 자녀를 연속하여 수익자로 하는 유형의 신탁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

33) 신탁법 제59조.

34) 신탁법 제60조.

(다) 유증과의 관계

수익권의 순차적인 취득이 수익자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민법상 유증과의 관계에서 그 효력의 유무가 문제된다. 예를 들면 A가 유언으로 처에게 특정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처의 사망 시에는 자식들 중 장남에게, 장남이 사망 시에는 손자들 중 장손에게 이 부동산의 권리를 귀속시키도록 하였다면 이 유언은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처의 수유자 또는 상속인에게 승계하여야 할 민법상 재산승계절차가 A의 의사로 왜곡되고, 처의 소유권은 생존 동안만 인정되는 결과가 되어 민법상의 소유권의 법리와 모순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수유자가 연속되는 유증은 무효지만 위 같은 경로로 수익자가 연속하는 신탁은 유효하다. 연속하는 수익자는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아닌 수익권을 순차적으로 취득하는 것이고 그 소유권자는 여전히 수탁자이며 신탁재산원본이 이전되면 신탁의 종료를 의미하고 더 이상 연속하는 수익자가 등장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익자의 사망에 의해 수익권이 소멸하는 것은 신탁행위로 수익자가 향유할 수 있는 기한이 제한된 권리내용으로 보면 되기 때문이다.

다. 상속과 유언에 따른 취득유형 검토

1)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의 구분에 대한 해석 검토

(1) 판례

대법원은 포괄유증 및 특정유증 구분기준은 다음과 같다. 유증이 포괄적 유증인가 특정유증인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그 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통상은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의 의미로 유증이 된 경우는 포괄적 유증, 그렇지 않은 경우는 특정유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유언공정증서 등에 유증한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정유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속재산이 모두 얼마나 되는지를 심리하여 다른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 유증이라고 볼 수도 있다.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나,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므로,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당해 유증이 포괄적 유증인가 특정유증인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그 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구된 유증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통상은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의 의미로 유증이 된 경우는 포괄적 유증, 그렇지 않은 경우는 특정유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유언공정증서 등에 유증한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정유증이라고 단

정할 수는 없고 상속재산이 모두 얼마나 되는지를 심리하여 다른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 유증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35]

(2) 조세심판원

유증이 포괄유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있다.[36]

(가) 쟁점 부동산이 상속의 취득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유증자가 남긴 금융재산의 가액 정도, 그 소유권 이전과 사용 용도(유증자의 의사에 따라 상속세 등 관련 세금, 장례비용 등에 충당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등의 제반 사정에 더해, 유언장의 전체적인 표현 및 다른 법정상속인들이 그 유증내용에 이의가 없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포괄유증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그 외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증자의 의사를 탐구하고, 이에 따라 포괄유증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78.12.13. 선고 78다1816 판결 참조).

(나) 청구인들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은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특별히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각 법정기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유증자의 사망(2021.3.9.) 이후 장례식을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21.3.30. 법원에 유언 검인을 신청하였으나, 유증자의 법정상속인 중 OOO 시민권자(FFF)가 포함되어 있었고, 코로나 사태가 겹쳐져서 2021.9.30.에 이르러 비로소 법원으로부터 유증자의 유언장 검인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들은 2021.8.19. 이전부터 유선통화로 취득세 관련 문의를 하였으나, 처분청 담당 공무원은 유언검인조서 없이는 취득신고를 받아 줄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들은 2021. 1.1.에 겨우 취득세 신고·납부를 할 수 있었다.

2) 유언대용신탁의 취득세

조세심판원은 유언대용신탁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신탁재산(쟁점아파트)의 처분대금을 배당받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상속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서, 신탁재산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시기를 규정한 지방세

35)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36) 조세심판원 2023. 9. 5. 조심2022지0709.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 것이고 쟁점신탁재산은 상속개시일 당시 부동산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위탁자의 상속개시일에 청구인가족들에게 쟁점신탁재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37]

라. 검토의견

통설과 판례는 포괄유증인지 특정유증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유언의 표현 뿐만아니라, 상속재산의 상황까지 고려한다. 그리고 포괄유증의 경우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채무도 승계하고, 상속재산을 등기나 인도 등이 없이도 직접 취득한다고 한다. 그리고 포괄유증의 경우 승인이나 포기에 관하여 유증이 아니라 상속에 관한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한다.[38]

유언은 법률행위이므로 그로 인한 물권변동에는 등기나 인도가 필요한 것이 현행법의 기본원칙이다. 그리고 유언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상속채무 부담자가 정해진다는 것은 수유자의 입장에서나 상속채권자의 입장에서나 정당화될 수 없다. 수유자에게 포기의 기회가 부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르지 않다. 포괄유증도 적극재산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따라서 포괄유증에 의한 승계는 포괄승계가 아니라 특정승계이다. 포괄유증을 상속과 같이 다룰 수 없으며, 제1078조는 상속인들과의 상호관계에 있어서만 제한된 의미를 가질 뿐이다. 한 마디로 포괄유증도 유증의 대상이 특정 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적극재산)에 대한 일정한 비율이라는 점 외에는 특정유증과 다르지 않다는 견해가 있다.[39]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입장에서 종래 포괄유증에 관하여 문제된 중요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포괄유증은 상속채무와는 무관하고, 포괄수유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해 유증이행청구권을 취득하고, 등기나 인도가 있어야 물권을 취득하게 된다. 수유자의 청구권에는 유증의 승인을 한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수유자가 유증을 승인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시사점

앞에서 검토한 것과 같이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을 구분하는 실익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대

---

37) 조세심판원 2023. 3. 10. 결정 조심2021지2796

38) 민법 제1078조 및 제187조)

39) 박영규, “유증의 법률관계 －포괄유증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26권 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3.,

립하고 있다. 특정유증만을 상속에 범주에 포섭할 것인지 유언을 모두 상속이 아닌 증여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러한 민법상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세법상에서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을 구분하고 있다.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지방세법은 다른 신고기한을 적용하고 있다.

〈표 7〉 유증에 대한 세법상 차이점

구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차이
포괄유증	상속	상속	
특정유증	상속	증여	적용과표 및 신고기한
사인증여	–	증여	

취득세 신고 납부기한은 일반적으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이나, 상속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과 동일하다. 유증 받은 재산이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유증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지방세법에서는 유증을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으로 다시 구분해서 판단하고 있으며, 특정유증이란 특정한 상속재산으로 한정하여 유증한 것을 말하고, 전체 상속재산에 일정비율을 유증하는 식의 유증은 포괄유증으로 구분하고 있다. 상속인이나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하는 것은 상속의 일종이므로 상속으로 인한 취득으로 보아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이나, 상속인 외의 자에게 한 특정유증은 제외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인 60일이 적용된다.

며느리나 손자 등 상속인이 아닌 자가 특정한 부동산을 유증 받으면 상속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해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포괄유증은 어차피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이 확정되어야 하나, 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특정유증은 일반적인 증여처럼 취득대상이 분명하다고 보는 입장에서 신고기한을 설정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

Ⅳ.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지방세법상 상속취득의 문제점

가. 문제의 사례 검토

1) 상속세 납부 사례

유족인 부인 1명과 자녀 1명,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1명이 있고, 상속인과 수유자가 상속 또는 유증을 통해 재산을 차지하는 비율이 3/7, 2/7, 2/7인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이 700만원이 나온 경우에는 각자의 상속세 부담액은 어떻게 부담하는지를 살펴본다.

A. 부인은 300만원, 자녀는 200만원, 수유자는 200만원의 세금을 부담한다. 다만, 공동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세를 체납하는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 등은 여전히 납세의무를 진다.

취득세의 경우 수유자는 특정유증으로 보아 증여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며, 신고기한은 3개월에 신고를 해야 한다. 나머지 상속인 2명은 6개월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2) 사례의 검토

상속과 관련 포괄유증을 하여, 농지의 일부를 자녀들에게, 일부는 손자손녀들에게 주도록 유증을 한 경우, 조세심판원의 사례를 보면 포괄유증의 경우 취득세의 신고는 상속의 신고기한과 같이 6개월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조세심판원 등의 사례를 보면 포괄유증의 경우 그 원인이 상속으로 상속세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상속에 따라 신고시 상속인인 6개월 내에 상속으로 신고하였으나, 손자손녀은 증여에 해당한다고 하여 60일 초과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게된다. 손자손녀는 상속인의 지위에 있지 않고, 포괄유증에 행하지 않으므로 특정유증에 해당하게 된다. 즉, 특정유증은 증여로 보아 3개월 내에 신고를 해야하고, 가산세 감면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 상속에 따른 취득유형에 따른 신고 차이 문제

1)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상속인이 유증받았다면, 그에 따른 취득세 신고도 6개월 기한이 적용된다. 지방세법 제105조

제9항 및 제12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에 대하여는 상속에 포함하여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되는 것이나, 상속인이 아닌 자의 유증에 대하여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40]

2) 조세심판원 결정

지방세법상 포괄유증은 상속에 해당하지만, 특정유증은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자녀가 생존하고 있는 한 외손자는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을 상속이 아닌 무상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을 6월이 아닌 30일(구 지방세법상 30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41]

「민법」에서 정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부동산의 일정비율이 유증되었고, 바로 피상속인 명의에서 수유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완료되었으므로 포괄유증에 해당하기 때문에, 등록세율은 상속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고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30일이 아닌 6월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42] 더구나 포괄유증의 경우에는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도 승계되며, 상속재산의 배분 등과 관련하여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도 검토해 보아야 하므로, 유증의 승인 또는 포기 여부에는 상당한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한 것임에도 일반적인 증여와 같이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세법」상 상속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을 상속(포괄유증)에 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증여에 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가산세와 쟁점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율을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로 적용하여 신고 납부토록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소결

유권해석상 과세권자가 판단하여 특정유증의 경우 신고기한을 6개월이 아닌 3개월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법령에 충실한 해석으로 제도적의 모순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있다.

다. 형식적 취득의 과세 전환에 따른 문제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일본의 부동산취득세는 1990년대 우리나라 취득세와 매우 유사한

40) 행정안전부.

41) 조세심판원 2012. 7. 12. 조심2011지0566.

42) 조세심판원 2012. 6. 18. 조심2011지0462.

형태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취득세는 형식적 취득설을 원칙으로 사상실 취득설을 수용하고 있는데, 상속의 경우 형식적 취득의 개념을 적용하여 일본은 아직까지 비과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형식적 취득에 따른 비과세를 과세전환하면서 새로운 과세요건을 구성하였는데, 형식적 취득에 있던 비과세 요건을 그대로 과세요건으로 전환하여 현재의 납세자 혼란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

2. 지방세법상 상속취득 개선방안

가. 개선방향

상속에 따른 취득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상속세와 취득세는 각각 다른 법령으로 각각의 특성을 고려한 과세범위와 신고기한을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일련의 상속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문제를 통일된 기준으로 정립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상속에 대한 취득세는 구 지방세법에서 비과세에 해당하던 것으로 과세전환한 것으로 상속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로 운영하지 않는 이상 취득세만의 독자성을 인정하여 별도의 기준을 운영할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납세자편의 관점에서도 일관된 기준을 통해서 상속에 따른 효율적인 신고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속주택에 대한 특례와 같이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규정을 제외하고는 통일적으로 개념과 요건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특히, 상속의 개념과 관련하여 상속의 범주를 명확히 하고 신고절차에서도 기한을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하에서, 절차적 개선방안으로 취득세 신고기한의 개선방안과 실체적 개선방안으로 상속의 범주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나. 유증에 대한 취득세 신고기한 개선 방안

그러나, 상속과정의 절차를 고려하면, 포괄유증과 특정유증 구분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의 문제가 있다. 특히,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데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이전이라는 담세력을 전제로 할 때, 특정유증과 포괄유증을 구분하는 실익이 크지 않다. 다만, 절차상의 포괄유증은 6개월의 취득세 신고기한이 적용되고 특정유증은 3개월의 취득세 신고기한이 적용되게 된다.

이러한 차이는 큰 틀의 상속이라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유증에 대해서 증여로 보아 신고기한을 3개월로 하는 것은 절차적 측면에서 형평을 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상속 관계가 정리되는데는 충분한 시간이 소요되고 6개월이라는 기간내에 신고하도록 제도를 두면서 특정유증

만 분리하여 3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증의 경우 사인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므로 재산의 정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신고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속과 같이 사인을 원인으로 하는 신고는 6개월의 신고기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8〉 법령 개정방안

현 행	개정안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 또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 또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유증을 포함한다.)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 지방세법상 상속의 개념 명확화

우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지방세법상 상속의 개념을 일치시켜서 납세자의 혼란을 축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방세법 제6조에 상속을 정의를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고려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9〉 지방세법 제6조 상속의 개념 명확화 방안

현 행	개정안
제6조(정의) 21. <신설>	**지방세법 제6조(정의)** 2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遺贈) 나.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 다.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라.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이하 “유언대용신탁”이라 한다) 마.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이하 “수익자연속신탁”이라 한다)

상속의 개념을 정의에서 규정하고 이에 따라 지방세법 제7조에 규정한 납세의무자를 범위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고려한 지방세법 개정방안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0〉 상속에 따른 납세의무 개선방안

현 행	개정안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⑦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상속의 범위와 일치하게 되면, 그간 발생한 납세의무 관련 신고의 혼란이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Ⅴ. 결 론

앞에서 지방세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와 신고절차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지방세법에서는 1995년 이후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을 구분하여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세율과 취득세 신고기한을 달리 운영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상속에 따른 재산의 취득과정에서 취득세 신고기한을 달리하는 것은 상속 절차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

첫째, 상속에 따른 취득세에 대해서 형식적 취득에 대해서 비과세했던 시기에 과세전환하는 과정에서 포괄유증과 특정유정에 대한 신고상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특정유증의 경우 증여와 같이 3개월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상속에 따른 재산분할 과정에서 특정유증의 경우만 증여로 보아 신고기한을 달리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둘째, 취득세는 상속세와 달리 상속의 범위를 더 좁게 설정하고 있고, 사인증여, 특정유증, 상속에 따른 재분할의 경우 모두 증여로 과세하고 있는데, 이는 상속세법상의 상속의 범위를 충분히 반영한지 못한 문제가 있다.

셋째, 취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의 상속 범위에 따른 차이는 납세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선의의 미신고자에게 가산세의 부담을 지우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에 대한 차이를 세법상에서 차이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타당성 이유를 찾기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면,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기한은 납세자의 상속재산 처리 과정을 고려한 신고기한 설정이 필요해 보인다. 즉 특정유증과 포괄유증을 구분하지 말고 유증에 의한 신고기한은 6개월로 통일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현행 지방세법상 상속에 따른 납세의무도 장기적으로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정유증은 증여취득세 세율이 적용되나, 앞에서 민법상의 논의에서 본 것과 같이 특정유증과 포괄유증을 구분하는 민법상 근거가 세법상 적용의 실익이 약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포괄유증과 특정유증 모두를 상속의 범주에 포섭시키는 있는 점을 고려하여, 조세법상 체계성을 위해서도 지방세법에서 특정유증을 상속에 포섭시키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참고문헌

곽윤직, 상속법, 2004.

김용한, 신친족상속법론, 2002.

김주수・김상용, 친족・상속법, 2015.

박영규, “유증의 법률관계 －포괄유증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26권 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이전오, “신탁 관련 상속세제 및 증여세제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22호 (제9권 제3호),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20.

이진기, “유증제도의 새로운 이해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의 효력에 관한 의문을 계기로－”, 가족법연구 제30권 제1호, 한국가족법학회, 2016.

임상빈, 차승민, “경매 취득시 원시취득 취득세 세율 적용기준 고찰 －취득세 세율체계 구조 및 원시취득 해석을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제37권 제1호, 한구세무학회, 2020.

정구태, “유류분권리자의 승계인의 범위 포괄적 유증의 법적 성질에 대한 종래 통설의 비판적 검토,” 안암법학 제28호, 2009, 115－153.

토지 조성과 지목변경 취득세 체계 개선방안

류 진 · 임 상 빈
(강남대학교) (한국지방세연구원)

토지 조성과 지목변경 취득세 체계 개선방안

류 진* · 임상빈**

〈목 차〉

Ⅰ. 서론
Ⅱ.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체계
1. 취득세 개념과 과세 체계
2.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 취득과세 체계
3. 토지 지목변경 취득세 개정연혁과 쟁점
Ⅲ.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의 문제점
1. 사실상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의 문제
2. 토지 조성에 대한 지목변경 과세의 문제
3. 토지 취득과세의 구조적 한계
Ⅳ. 토지 지목 변경 과세체계 재정립 방안
1. 토지 조성에 대한 지목변경 과세 재정립 방안
2. 사실상 지목변경에 따른 토지 과세체계 재정립 방안
Ⅴ. 결론

Ⅰ. 서 론

지방세법상 ‘취득’은 제6조 제1호에서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으로 취득의 방식을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취득의 유형은 원시취득, 승계취득과 간주취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토지의 지목변경, 차량의 종류변경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취득으로 간주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 지목변경이 본질적인 취득인가에 대한 논란은 있으나 지방세법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이는 취득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지목변경은 이전등기와 관계없이 가액 증가를 취

* 강남대학교 대학원 세무학 박사과정, 경기도 양주시 팀장
**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법학박사, 경영학박사, sbin.lim@kif.re.kr

1) 지방세법 제7조 제4항.

득의 요소로 간주하여 취득의 개념을 확장하고 있다.[2] 공부상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경우 사실상 지목변경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지목변경은 토지의 적법한 개발행위 및 불법 개발행위 모두에서 발생하므로 토지의 불법 개발행위의 진행과정에서 사실상 지목변경을 확인하고 과세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아, 사실상 지목변경 취득세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정원, 조형물 설치 등 조경공사와 도로포장공사 등은 지목변경 비용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고 있으나 지목이 대인 택지에서 건축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토지의 실질적 가액이 상승함에도 형식상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아 간주취득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납세자 간 조세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택지지구에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지목변경 간주취득을 인정하는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었다.[3]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는 일반적인 지목변경과 대규모 개발사업의 지목변경으로 구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지목변경 과세체계는 소규모 지목 변경에 부합하는 제도이다. 그러면, 대규모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개발에 따라 지목변경 취득세를 어떻게 과세할 것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개발사업 완료에 따라 원시취득으로 과세할 것인지 아니면 지목변경 취득세를 과세할 것인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실상 지목변경 및 토지조성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의 문제를 검토하고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과세요건 및 과세기준 적용 시 주요쟁점을 검토하였다. 간주취득세 관련 법원 판례 및 유권해석 등을 검토하여 다툼이 되는 주요쟁점과 이슈를 검토하였다.

사실상 지목변경(실질과세)과 간주취득 과세(형식과세)의 혼재의 문제점 검토하고, 지목변경은 실질과세를 구현하는 방법으로 과세의 현황판단이 중시되나 간주취득세는 간주과세로 공부등 변경을 요건으로 하는 형식과세의 성격이 있다.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환지방식으로 개발이 이어지게 되면, 환지처분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는데 이는 지목변경에 따라 가치가 증가한 성격도 있으나 근본적으로 물건의 동질성이 존속된다고 보기 어렸다.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의 문제는 간주취득이라는 형식과세에 사실상 지목변경이라는 실질과세의 요건을 부여하여, 과세요건인 취득시기, 과표적용 등 실무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상 상충된 개념적용에 따른 실무상 적용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지목변경 과세체계 재정립 방안을 제시하였다.

---

2) 박천수, 취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2023, 21면.

3)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

Ⅱ.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체계

1. 취득세 개념과 과세 체계

가. 취득의 개념과 유형

지방세법상 '취득'은 그 본질에 맞추어 정의하지 않고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취득의 방식을 예시적으로 열거하면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지방세법상 취득으로 전제하고 있다.[4]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에서는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취득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등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잔금지급, 연부금 완납 등) 그 자체를 말하는 것(지법 6−8)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지방세법상 취득의 성격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보는 형식설(소유권취득설)과 단지 법률상 형식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경제적·실질적 관점에서도 소유권의 모든 권능의 이전을 동반하는 완전한 소유권의 취득을 말한다고 보는 실질적 가치취득설이 대립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지방세법상 취득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은 취득의 정의를 형식설의 입장에서 입법한 것으로 보여진다. 대법원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어 형식설을 지지하고 있다.[5]

나. 실질취득과 간주취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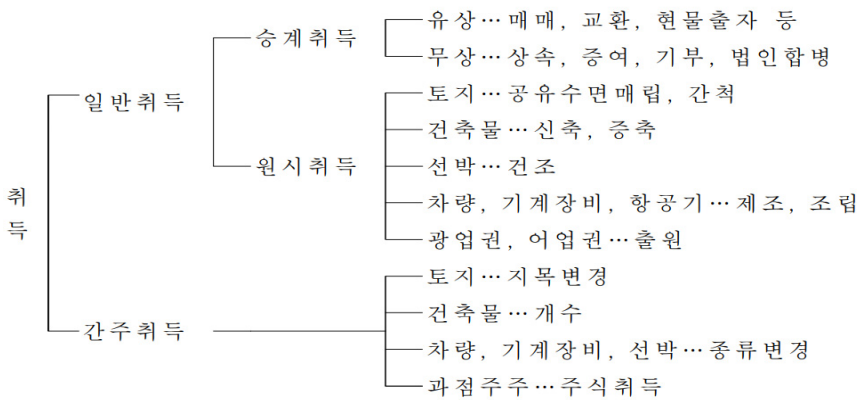
지방세법 취득의 정의에서 규정한 취득의 유형은 아래의 표와 같이 구분 가능하다. 취득행위는 우선 일반취득과 간주취득으로 구분이 가능하고 취득의 권원에 따라 승계취득과 원시취득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승계취득은 댓가성을 기준으로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으로 구분하고 원시취

4) 박천수, 전게서, 21면.

5) 대법원 2007.4.12.선고 2005두9491 판결 등.

득은 일반적으로 물건에 따라 토지, 건축물, 선박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지방세법상 취득의 유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1〉 취득의 유형



출처 : 박천수, 취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세전원 박사학위논문, 27면.

취득개념의 확장규정인 간주취득을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지방세법 제6조 제6호에서 '개수'에 대해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 나목에서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 다목에서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서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환지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에는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토지는 조합원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규정들은, 일반취득이 이전등기·등록과 관련된 것과는 달리,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는 가액 증가, 실질적 지배 등의 요소를 취득으로 간주하여 취득의 개념 자체를 확장하고 있다.

종합하면, 간주취득의 경우 통상 그 과세대상을 취득하면서 별도의 이전등기·등록 등을 수

반하지 않는 과세대상의 경우에 대하여도 실질주의 입장에서 그 부동산 등에 대한 사용·수익·처분의 이익을 누리거나 누릴 수 있는 시기에 그 부동산 등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6]

2.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 취득과세 체계

가. 지적과 지목의 개념

지적은 국토의 전반에 걸쳐 일정한 사항을 국가 또는 국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 등록하여 이를 국가 또는 국가가 지정하는 기관에 비치하는 기록을 말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부동산종합공부(不動產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7] 즉,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8]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하며,[9]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10]

나. 지목의 종류와 지목변경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로 구분하며 그 종류는 28종으로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垈)·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堤防)·하천·구거(溝渠)·유지(溜池)·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로 구분한다.[11] 지목의 설정은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

6) 박천수, 전게서, 27면.
7) 공간정보관리법 제1조.
8) 공간정보관리법 제64조 제1항.
9) 공간정보관리법 제2조 제19호.
10) 공간정보관리법 제2조 제24호.
11) 공간정보관리법 제67조.

정할 것을 원칙으로 하며,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해야한다.[12]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13]

토지의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4]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15]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지목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16] 지목변경을 신청은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②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③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다. 지목변경 취득과세 요건

1) 납세의무자

지방세법에서는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서는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목변경 납세의무의 요건은 첫째,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해야하고 둘째, 토지가액의 증가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다는 것은 공부상 지목이 변경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음에도 토지의 이용 상황이 변경된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토지의 사실상 이용 변경으로 토지 가액의 증가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일시적 토지 이용의 변경의 경우, 토지의 이용이 변경되었으나 가액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있는지 논의가 있으며, 이는 이하에서 별로도 검토한다.

최근,「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만 해당한다)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조합원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12)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13)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14) 공간정보관리법 제2조 제33호.
15) 공간정보관리법 제81조.
16)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67조.

사업시행자가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개정하였다.[17]

2) 지목변경 취득의 과세표준

구 지방세법에서는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18]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또한, 구 지방세법시행령에서는 지목 변경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세부 규정을 규정하였다.[19] 즉, 취득세 납세의무자나 그 취득물건에 관하여 그와 거래관계가 있었던 자가 관련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1호), 이에 따른 관련 장부나 증명서류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 중 취득경비 등의 금액이 해당 취득물건과 유사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드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재비, 인건비, 그 밖에 취득에 필요한 경비 등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가액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2호). 이러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토지의 지목구변경의 경우 별도의 가액산정 기준을 두었다.[20]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기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한 것이다. 여기서,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또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은 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다만, 이러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인 인정되는 지목변경의 과세표준은 취득가격의 범위 등에 규정된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2021. 12. 28. 전문이 개정되었다.[21] 취득세 과세표준의

---

17)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의 단서로 2023. 3.14. 신설되었다.

18) 구 지방세법[법률 제18655호, 2021. 12. 28,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19) 구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293호, 2021.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20) 구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293호, 2021.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21) 지방세법[법률 제18655호, 2021.12.28.일부개정] (시행 2023.1.1.).

기준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22]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가액은 그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다.[23]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표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다.[24] 여기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당시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25] 가목의 가액 즉,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그런데, 나목의 가액 즉, 지목변경 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현재 해당 토지의 변경 전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다만, 변경 전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득세 과세표준의 전문개정으로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 경우 법인이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없는 경우에 즉,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목변경 전·후의 시가표준액 차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취득세 과세표준 전문개정은 실질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취득원인별로 조문체계를 명확히 한 것으로 개수·지목변경·구조변경 등 의제취득에 따른 과세표준은 기존 법률체계와 동일한 측면이 있기에 더욱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구체적 사안은 다음 편 지목변경 개정 후 쟁점에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한다.

부동산 등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 가액은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며,[26]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당시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27]

---

22) 지방세법 제10조.
23) 지방세법 제10조의6 제1항.
24) 지방세법 제10조의6 제2항.
25)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6.
26) 지방세법 제10조의4 제1항.
27) 지방세법 제10조의4 제2항.

3) 취득의 시기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한다.[28]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즉, 지목변경의 시기는 취득시기 기본원칙에 따라 공부 변경 시와 사실상 변경 시, 사용 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택지개발의 경우 공부상 지목변경보다 사실상 변경이 먼저 발생하게 되고, 택지개발시 선수협약에 따라 택지개발 이전에 건축 공사가 이루어지는 등 다양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지목변경 취득시에 대한 다툼이 있다.[29]

3. 토지 지목변경 취득세 개정 연혁과 쟁점

가. 지목변경 연혁

부동산 취득세 지목변경은 1970년에 신설되었다. 지목변경 취득세에 관한 규정은 지방세 연혁상 1970년 1월 1일 추가 신설되었으며,[30] “선박·거량과 중기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지목변경에 대하여 취득을 착안하여 담세력을 인정하여 납세의무를 부여하였다. 이후 1967년, 1970년 개정을 통하여 지목변경 취득세에 대하여 구체적인 과세표준을 규정하였다.

「건물을 증축한 경우 또는 건물의 개축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주·거량 및 중기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 증축에 소요되는 금액 또는 개축과 종류변경이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하였다. 이 경우에 있어서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조사·결정하였다.

1970년에 입법된 지목변경 취득세는 수차례 개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으며, 2024년 현재,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7조(납세의무자), 지방세법 10조의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지방세법시행령 18조의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에 과세 근거를 두고 있다.

---

28)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

29) 대법원2024.2.15.선고 2023두59636판결, 대법원2018.6.15.선고 2018두38673판결 등.

30) 구 지방세법[법률 제1803호, 1966. 8. 3., 일부개정] 제105조 제5항에서 선박·주·차량과 중기의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최초 신설하였으며, 이후 1970년 개정을 통하여 토지의 지목변경을 추가하였다.

2023년 개정에서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부동산 취득 기준을 명확화하였다.[31] 즉,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경우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조합원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각각 취득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였다. 또한,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건축물은 그 소유자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토지는 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을 초과한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하였다.[32]

〈표 1〉 지방세법 제7조 제4항 및 제16조 개정 연혁

구 분	납세의무 요건	차이
지방세법 [법률 제10221호, 2010. 3. 31, 전부개정]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신설>
지방세법 [법률 제19230호, 2023. 3. 14, 일부개정]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이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만 해당한다)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조합원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단서 추가>
	⑯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받거나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받는 건축물은 그 소유자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며, 토지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승계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는 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한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종전에는 재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관련 취득세를 조합원이 취득하는 부동산 가치의 증가액에 대해 과세하였으나, 과세대상(건축물·토지) 및 취득원인(원시·승계·지목변경)이 불분명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재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관련 과세체계를 개선하여 과세대상별로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먼저 건축물은 원시취득으로 과세하고, 토지는 증가한 면적에 대

31) 지방세법 제7조 제4항 후단 및 같은 조 제16항 신설.

32) 지방세법 [법률 제19230호, 2023. 3. 14., 일부개정] 개정이유.

해 과세하며[33],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지목변경에 대해서는 환지면적 기준 지목변경 취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였다. 지방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 취득원인을 규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도시개발사업 등 감면을 규정 하도록 동시 개정을 하였다.[34] 재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과세체계 개선에 따른 세율・취득시기・과표를 정리한 표이다.

〈표 2〉 재개발・도시개발사업 과세체계 개선에 따른 세율・취득시기・과표

구분		과세대상		취득원인 (세율)	취득시기	과세표준
재개발 사업	조합원	신축		2.8%	신축준공일 등	전체공사비 등 신축비용을 조합원 취득면적별로 안분
		당초토지초과지분 *건축물부속토지		4%	잔금지급일	과세면적×분양가액/㎡
	조합 (시행자)	체비지 보류지	신축	2.8%	신축준공일 등	전체공사비 등 신축비용을 조합원 취득면적별로 안분
			건축물 부속토지	3.5%	이전고시 익일	과세면적×분양가액/㎡
도시 개발 사업	조합원	지목변경		2%	조성공사 준공일	전체공사비 등 지목변경비용을 조합원 취득(환지)면적별로 안분
		당초토지 초과지분		4%	잔금지급일	과세면적×분양가액/㎡
	조합 (시행자)	지목변경		2%	조성공사 준공일	전체공사비 등 지목변경비용을 조합원 취득면적별로 안분
		체비지 보류지 *일반분양토지		3.5%	이전고시 익일	과세면적×분양가액/㎡ * 지목변경 취득가액 공제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령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2023

다음은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 개정 연혁이다. 종전에는 택지를 분양 받아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지목변경 비용이 발생하여도 지목변경을 과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도록 과세근거를 마련하였다.[35] 2020년 시행 지목변경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33) 지방세법 제7조 제16항.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2항을 삭제하고 도시개발사업・재개발사업 조합원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지방세법 제7조 제16항으로 이관하였다.

35)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

〈표 3〉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 개정 연혁

구 분	납세의무 요건	차이
지방세법 [법률 제13636호, 2015. 12. 29, 일부개정]	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垈)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신설>
지방세법 [법률 제16855호, 2019. 12. 31, 일부개정]	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垈)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건축물에 부수되는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단서 추가>

종전에는 건축물 건축 시 조경·도로포장 등의 공사비에 대해여, 모두 토지 지목변경 비용에 포함시켜 지목변경 취득세 2%를 과세를 하였다. 최근 개정은 공사 목적에 따라 지목변경을 구분하여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지목변경비용에 포함하여 과세하나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건축물 건축에 수반되는 비용은 신축 건축물의 원시취득 비용에 포함하도록 하여 원시취득 취득세율 2.8%를 과세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개정에 따라 정원, 조형물 설치 등 조경공사와 도로포장공사 등 건축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건축물의 건축비용에 포함하여 과세하고, 택지 조성 등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에 설치되는 조경공사비 등은 지목변경 비용에 포함 과세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건축 수반에 따른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 기준

공사목적	건축이 수반되는 경우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지목변경)
과세방법	건축물 취득에 포함하여 과세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으로 과세
납세의무자	건축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
과세표준	건축비+조경공사비 등	토지 지목변경 공사비+조경공사비 등
세 율	2.8%	2%
사 례	건물 부속토지 內 도로포장	건물 부속토지 이외 부지 內 도로포장 등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령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2020

앞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지목변경은 공부상의 지목변경 행위이나 지목변경을 통해서 토지의 이용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 취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어떻게 과세할것인가가 주요 이슈로 최근 법령개정에 반영되어 있다. 특히, 2015년 개정사항은 사실상 지목변경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2019년 개정은 지목변경 비용의 범위를 건축물과 토지로 구분하도록 범위를 명확화 하였다. 또한, 2023년 개정은 재개발·도시개발사업 취득세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납세의무자를 명확화 하였다. 그러나 지목변경은 과세표준 산출 및 취득 시기와 관련하여 토지 개발행위와 건축과정의 절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다양한 다툼의 원인이 되고 있다.

나. 법령 개정 후 쟁점

1) 개정사항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시행(2023.1.1.)으로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종전에는 공사착공일의 시가표준액에서 개정후 취득일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단서조항 신설을 통한 실질가치를 반영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표 5〉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 개정사항

개정 전	현 행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나. 지목변경 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제18조의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나. 지목변경 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현재** 해당 토지의 변경 전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다만, 변경 전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시행령 개정 후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6의 나목에 대한 조문 해석을 취득일 현재 해당 토지의 변경 전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목변경일 현재 공시된 지가로 적용하여 시가표준액 차이가 사실상 없어 과세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에, 지목변경 前 지가 산정 시 지가 상승분이 이미 반영된 경우 지가 없는 토지[36]로 보아 취득일 현재 변경 前 지목의 지가로 재산정하되, 재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착공일 현재 변경 前 지목에 대한 공시지가로 적용하여 과세누락되지 않도록 운영기준을 통일하였다.

2) 개정 후 쟁점

법인소유의 토지가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용지 등”에서 “대”로 변경이 되었고,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없는 경우에 지목변경 전·후의 시가표준액 차액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37] 행정안전부는 본 사안의 경우에서는 우선적으로 지목변경에 따른 사실상 취득가격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사실상 취득가격이 확인도지 않을 경우에는 지목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다. 그 이유로 다음과 같이 ① 개정 전·후의 「지방세법」에서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이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 ② 「지방세법」(법률 제18655호, 2023.1.1. 시행)의 주요 개정 취지는 무상 취득의 과세표준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지목변경의 과세표준에 대해 기존 법률체계와 동일하다는 내용이 공문(지방세정책과-34, 2022.14., [붙임 2] 7페이지)에서 확인되는 점, ③ 기존 법률체계에서는 납세의무자의 유형(개인법인)과 관계없이 시가표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산출하도록 규정하면서 이에 따라 운영하였다는 것이 공문(지방세운영과-1264, 2011.3.18.)에서 확인되는 점, ④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장부를 통해 지목변경에 대한 사실상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나, 본 사안은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인 점을 들고 있다.

Ⅲ.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의 문제점

1. 사실상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의 문제

가. 불법이용 과세에 대한 검토

공부상 지목변경이 불가능하여 불법적으로 사실상 용도를 변경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를 사실상 변경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적정한지 문제 시 된다. 지방세법상 사실상 용도변경은 적

36)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6의 단서조항을 활용하여 운영.

37)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2669, 2024. 8. 2.

법한 지목변경 절차를 거치지 못하는 토지에 대한 사실상 요건을 판단하여 과세하는 제도로 사실상 용도변경을 과세하지 않으면 적법하게 용도변경된 토지와 과세형평성이 발생하게 되므로 용도변경된 사실상에 기하여 과세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반면, 불법적 토지이용 변경은 산지전용부담금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고, 본래의 용도로 변경하도록 강제이행금이 부과됨을 볼 때 이는 일시적인 토지이용으로 보아야 하며, 사실상 지목변경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불법적인 이용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이와 관련, 소득세에서 불법소득에 대한 판례를 검토해 보고 지방세법에서 불법형질 변경된 토지에 대해서 지목변경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나. 위법 및 불법 소득 관련 판례 등 검토

소득세에서는 위법소득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와 관련하여 위법소득도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최근 위법소득 몰수 관련 납세의무 성립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성 관련 대법원은 위법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인정하나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없게된 경우 과세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38]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기본전제 하에(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납세의무 성립 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아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38)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납세의무가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함에도 과세관청이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러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납세자는 항고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의 견해는 위법소득는 소득과세 대상이 되나 위법소득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 당초 납세의가 전제를 잃게 되므로 과세는 위법한 것으로 보았다. 불법적 이용에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였다가 이행강제금 등의 부과로 불법성이 해소된 경우 간주취득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문제시 될 수 있다. 대법원은 사정변경의 경우 성립된 납세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 불법사용에 대한 대법원의 검토

우리나라 대법원은 불법사용에 다음과 같이 불법이용에 대해 고유 목적 이용을 배제하고 있다. 대법원은 불법으로 고유업무에 사용한 경우라도 직접사용으로 볼 수 있는 지와 관련하여 자금사정은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고, 행정청의 사용승인 없이 임시・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은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등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39] 해당 임야를 본래 용도가 아닌 농지로 사용하여 불법전용산지로 신고하고 수리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 의거 사실상 토지 지목이 변경된 것은 물론 가액의 증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이에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다. [40]

대법원은 불법건축물 등 관련 불법에 대한 과세를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 있다. 2004년 취득한 제1불법건축물에 대한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무효이나, 이 사건 제3, 4 불법건축물을 무상취득한 경우 건축물을 증축한 자가 증축을 하면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증축된 부분에 대하여 등기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다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41] 이를 종합하면 대법원은 불법이용 관련 조세법상 특례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배제하고 있고 과세하는 경우 불법이용을 인정하고 있다. 불법이용에 대한 과세는 제

39)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4두39562 판결.

40) 서울고등법원 2013.03.29. 선고 2012누29570 판결.

41)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두44899 판결.

재적 수단으로 보아 이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 불법이용에 따른 혜택은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실질과세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이용현황에 대해 다른 판단기준을 적용하게 되어 판단기준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라. 소결

앞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소득과세에서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를 인정하고 있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과세도 인정하고 있다. 불법소득이든 불법이용이든 조세법상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는 과세할 수 있으며, 불법소득과 이용이 과세를 통해서 합법화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 불법이용을 과세요건으로 지목변경을 과세하게 되면, 형식적 변경시 과세를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취득세의 개념은 형식적 취득과 실질적 취득으로 구분하여 양자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기준도 형식적인 측면과 실질적인 측면을 함께 과세요건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즉, 불법적으로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시점에 지목변경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형식적으로 합법화 되어 지목을 변경할 경우 그 간의 과세표준의 차이에 대해서 과세를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면,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형식 요건과 실질요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2. 토지 조성에 대한 지목변경 과세의 문제

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42] 환지계획은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지목·면적·토질·수리(水利)·이용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43]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은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지목·면적·토질·수리·이용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44]

---

42) 도시개발법 제29조.

43) 도시개발법 제28조.

44) 도시개발법 제41조.

나. 환지방식과 지목변경 취득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지 않은 환지예정지의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의 지목, 용도 등 현황을 기준으로 과세한다.[45] 그런데, 현황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면서도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46] 주거・상업용 등으로 조성완료된 대지를 나지 상태에서 다년간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조성 택지의 본래 용도 등을 감안하여 종합과세하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는 일반적인 지목변경과 대규모 개발사업의 지목변경으로 구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지목변경 과세체계는 소규모 지목 변경에 부합하는 제도이다. 그러면, 대규모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개발에 따라 지목변경 취득세를 어떻게 과세할 것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개발사업 완료에 따라 원시취득으로 과세할 것인지 아니면 지목변경 취득세를 과세할 것인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대규모 택지개발은 개발사업을 통해서 토지의 지목변경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현행과 같이 지목변경 취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일면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환지방식으로 개발이 이어지게 되면, 환지처분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는데 이는 지목변경에 따라 가치가 증가한 성격도 있으나 근본적으로 물건의 동질성이 존속된다고 보기 어렸다. 따라서 환지처분에 따라 취득하는 환지는 새로운 물건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취득의 본질에 부합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환지는 종전 토지와 동일 물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환지를 받는 토지는 토지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의 가치에 대한 보상 만큼을 권리가격으로 인정하고 새로운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으로 보기 어렸다.

둘째, 환지의 경우 사실상 수용과 같은 개발사업으로 종전의 토지소유자에게 받는 환지는 종전의 소유권과는 별개의 토지라는 것이다. 즉, 물적 연속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종전토지에 대한 평가는 소유권의 권리에 대한 평가로 이에 종전 토지를 매각에 갈음하여 권리가치을 인정하는 것으로 환지에 대해서 지목변경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다. 개발방식과 환지방식에 따른 과세 형평성 문제

개발방식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이전 승계를 받게 되므로 4%의 취득세가 발생하게

45)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지법112…시행령111－1【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도시개발구역】.
46) 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

된다. 그러나 환지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로 2%를 과세하게 된다. 그러나, 환지방식에 따라 취득하는 것은 소유권의 권리는 존속하며서 새로운 물건을 취득하는 것으로 물적 개념에서 새로운 소유권자가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권리적 차원에서 보면 종전의 권리가 존속된 상황에서 물건만이 변경되는 것으로 권리의 존속성을 고려하면 새로운 취득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개발방식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개발방식을 떠나 물건을 기준으로 새로운 소유권자가 새로운 물건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는 것으로 이는 이전 승계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렇다면 환지방식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환지에 대한 권리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물건을 취득하는 것으로 환지방식에도 불구하고 이는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있다. 환지에 대한 권리를 갖는 다는 것은 새로운 물건에 대한 권리를 갖는 권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환지처분에 의해서 새로운 물건을 취득하게 되는 것으로 보면, 이는 새로운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으로 보는 것을 타당성이 낮다고 보여진다. 환지방식에 따라 취득하는 것을 지목변경으로 인정하게 되면, 물건이 변경되었는데 이를 지목변경으로 보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대규모 환지방식에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라. 택지개발지구의 지목변경 취득세

택지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과정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각종 부담금을 납부하는데, 이러한 비용이 토지지목에 대한 사실상 변경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과세되는지에 대해 그동안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다. 최근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두56654 판결에서 간주취득으로 볼 수 있는 사실상의 변경이란 지목변경을 위해 수반되었거나 지목변경과 관련된 비용이 토지의 가액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택지개발과정에서 기반시설 설치공사비, 기반시설 부담금이 비록 건축물의 이용을 위해 지출한다고 하더라도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간주취득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다.

한편, 토지의 지목변경과 관련하여 비용의 지출이 일어난 이후 토지의 가액이 증가하였다는 의미는 간주취득의 취득시기와도 연관된다.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 시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에서 공부상 변경된 날과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 중에서 빠른 날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건물의 신축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지목의 용도변경이 필요하고,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신축된 건물의 이용을 위한 것이라도 필수적으로 지목을 변

경시키는 행위가 먼저 일어나므로 취득세 과세시기가 건축물의 준공시기보다 앞서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단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지방세법」은 지목변경의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상 취득과 그 가액을 증가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않아서 판례의 해석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실무적으로도 납세자의 신고행위에 대하여 토지의 취득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였는지 검증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법령에 간주취득이 되는 토지의 취득원가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간주취득세의 신고 과정에서 취득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대하여 성실신고 및 외부조정제도를 통해 자기검증의 절차를 거치도록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47)]

3. 토지 취득과세의 구조적 한계

가. 사실상 지목변경의 과세 판단 문제

지목의 사실상 변경을 판단할 경우 다음과 같은 판단의 문제가 있다. 사실상 지목이 변경 이후에 다시 본래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취득세 부과의 타당성이 문제시 될 수 있다.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더라도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지목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사실상 지목변경을 인정하여 과세하면, 지방세법상 지목과 공간정보관리법상 지목이 달라지게 되는 문제가 있다.

사실상 지목변경을 인정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후 공간정보관리법상 지목변경이 허가되어 공부상 변경이 허용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취득세를 부과해야 하는지 문제시된다.

사실상 지목변경을 인정하는 범위가 납세자 및 세무공무원의 인식 차이가 있어 토지의 어느 정도 변경을 변경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일시적 사용으로 보아야 하는지 판단의 자의성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이 사실상 지목변경을 인정하게 되는 경우 간주취득세 과세에서 지목변경 과세 판단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나. 사실상 지목변경 과세표준의 문제

2023년 시행된 취득세 과세표준 체계 개선으로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당시 가액이다. 취득당시 가액은 그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다.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당시 가액은 시가표준액 차이로 한다. 그런데, 불법건축물이 변경되는 경우 표준지 및 개별토지가격 산출시 불법이용을 배제하

47) 김신언,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범위, 조세와 법 제16권 제1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고 평가하고 있어 사실상 시가표준액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과세하면 세액이 미미한 경우가 있어 문제시 된다.

또한, 지방세법 제10조의6 제2항에서는 언급한 바와 같이 법인이 아닌 자가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인의 경우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사실상 과세표준을 추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로, 법인의 경우 불법 건축에 따른 지목변경 비용을 산출해야 하나 적법한 신축이 아니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경우 납세자가 과세표준 산출에 협력하지 않아 사실상 과세표준을 추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다. 사실상 지목변경 시기의 문제

사실상 지목변경은 불법적인 이용의 경우에 주로 발생하게 되며 과세관청이 지목변경의 시점을 특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즉, 전이 잡종지로 변경되는 경우 사후에 지목변경을 인식하게 되면, 실제 변경된 시점을 특정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 불법건축물이 신축 중에 단속된 경우 사실상 지목은 전에서 대로 변경되었으나 취득의 시기 규정상 준공, 사용승인, 사용이 발생하지 않아 취득의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후 건물을 멸실하게 되면 사실상 지목변경이 있었다고 판단해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Ⅳ. 토지 지목 변경 과세체계 재정립 방안

1. 토지 조성에 대한 지목변경 과세 재정립 방안

지방세법에 정의 규정에 토지조성이 취득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지방세법상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여기서,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의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표 6〉 지방세법 제6조 제1호 개선안

현 행	개선안
제6조(정의)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6조(정의)**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택지 및 산업단지 등 개발에 따른 토지의 조성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이와 같이 취득의 개념에 토지조성에 따른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 등을 원시취득으로 편입하게 되는 경우, 납세의무, 과세표준에 취득의 시기는 기존의 토지의 조성에 따른 기준을 적용 받게 된다.

이러한 대규모 개발은 지목은 수반하게 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가 있는데, 개발사업지 전체적으로 지번 및 지목이 전부 개편됨으로 조성공사비를 반영하여 전체를 원시취득의 범위에 넣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지목은 변경되었으나 대에서 대로 변경된 경우 지목변경에 따른 공사비용을 건물등의 공사원에 포함시키는 모호한 과세기준을 명확화할 수 있다.

2. 사실상 지목변경에 따른 토지 과세체계 재정립 방안

가. 납세의무자 과세요건 개선

최근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 규정 개정은 종전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의 문제를 일부 해결하였으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와 관련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아직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지목변경 취득세에 대한 과세범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며, 실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목변경 취득세에 대한 과세기준을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과세요건과 실무상 부정합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론적 실무적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지목변경 취득세는 차량, 선박 간주취득과 달리 사실상 변경이라는 요건을 갖고 있어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시 장부가 아닌 사실이 중시되고 있다. 사실상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지목변경

으로 가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 과세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지목변경으로 가격이 변동하는 것은 사후에 발생하게 되므로 가액이 증가한다는 요건을 과세요건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보인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부변경에 따른 과세요건으로 변경하되, 사실상 지목변경의 경우 예외적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는지를 요건으로 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지목변경의 과세요건을 변경하여 차량, 선박 등의 종류 변경과 같이 지목변경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목변경 취득 과세요건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 지목변경 신청의 경우 취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지목변경 신청이 없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경우는 취득으로 보도록 규정한다.

〈표 7〉 지방세법 제7조 제4항 개선안

현 행	개선안
제7조(납세의무자 등) …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이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만 해당한다)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조합원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 지목변경 신청의 경우 취득으로 본다. 다만, 지목변경 신청이 없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경우는 취득으로 본다.

나. 사실상 지목변경 기준 개선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사실상 지목변경의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① 공부상 지목과 달리 이용현황이 상향되어 이용되는 경우, ② 토지 및 건물의 용도가 사실상 변경된 경우, ③ 1년 이상 공사가 중단되어 토지가 당초의 공부상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로 정할 수 있다.

한편,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이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지목이 변경 되었으나 1년이 경과하도록 원상회복되지 않은 경우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는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할 수 있다.

〈표 8〉 지방세법 시행령 18조의7 신설안

현 행	개선안
제18조의7(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 (신 설)	**제18조의7(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 ① 법 제7조 제4항에 따른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공부상 지목과 달리 이용현황이 상향되어 이용되는 경우 2. 토지 및 건물의 용도가 사실상 변경된 경우 3. 1년이상 공사가 중단되어 토지가 당초의 공부상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이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나 1년이 경과하도록 원상회복되지 않은 경우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는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다. 지목변경 과세표준 개선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요건 변경에 따라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은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지목변경 취득의 과세표준은 토지의 공부상 또는 사실상 지목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한다.

〈표 9〉 지방세법 제10조 제3항 개선안

현 행	개선안
제10조의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취득 당시 가액은 그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한다. 1.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	**제10조의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취득 당시 가액은 그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한다. 2. 토지의 지목을 공부상 또는 사실상 변경한 경우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의 지목변경 취득의 시기를 기준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명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10〉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 6조 개선안

현 행	개선안
제18조의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법 제10조의6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1. 법 제10조의6 제1항 제1호의 경우 :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뺀 가액 가. ~ 나. (생 략)	**제18조의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법 제10조의6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1. 법 제10조의6 제1항 제1호의 경우 : 토지의 지목이 제20조 제10항의 시기를 기준으로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뺀 가액 가. ~ 나. (생 략)

사실상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요건 명확화가 필요하다. 과세요건으로 사실상은 간주되는 과세요건으로 추상성이 있어 이를 구체성이 있는 요건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67조의 지목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를 과세요건으로 하여 과세요건을 명확화하는 것이 필요한다. 또한, 과세요건으로 지목변경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지목변경이 되지 않더라도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어 토지 가격이 증가한 경우 예외적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원칙과 예외를 명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Ⅴ. 결 론

지방세법에서는 도로공사, 정원공사 비용 등의 공사비용을 지목변경 비용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택지에서 건축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게 되어, 과세형평 차원에서 택지지구에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지목 변경 공사비용을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지목변경은 지목을 변경하여 토지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이를 사실상 취득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나 최근에는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지목변경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범위를 확대한 측면이 있다. 사실상 지목변경은 토지의 적법한 개발행위 및 불법개발행위 모두에서 발생하게 되므로 토지의 불법개발행위의 진행과정에서 사실상 지목변경을 확인하고 과세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아, 사실상 지목변경 취득세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지목변경 취득세의 당초의 취지와 개념이 최근 확대됨에 따라 사실상 변경에 대한 논란이 있

었다. 최근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사실상 변경에 따라 지목변경 비용의 범위를 토지와 건물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사실상 지목변경 관련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되었다. 그러나 취득세 지목변경과 관련하여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변경도 지목변경으로 과세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아직 남아 있다. 또한, 법인과 개인간의 과세표준 차이, 취득의 시기 등 지목변경 취득세 쟁점은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실상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는 사실상 변경을 판단하는 세부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사실상 지목변경 사례분석을 통해서 공간정보관리법상 지목변경 유형별 취득시기와 과세표준 판단기준에 대한 세부 운영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공간정보관리법상 변경에 한하여 지목변경 취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간주취득세를 부과함은 공부상 변경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사실상 지목변경을 폭 넓게 인정하게 되면, 공부상 변경이 불가능 경우도 지목변경이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토지이용규제와 다른 용도를 조세에서 인정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지목변경 과세원칙을 명확화하고 예외적인 사안인 사실상 지목변경의 요건을 강화하되, 세부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목변경은 간주취득으로 지목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 이를 취득으로 간주하는 제도인데, 지목변경에 따라 가액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 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공부상 과세를 넘어 사실상 변경이라는 과세요건으로 간주취득세 판단에 있어 사실상 입증의 문제가 남게 되는 문제가 있다. 조세법상 간주는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족하고 반증을 허용하지 않으나, 추정과세는 반증을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사실상 지목변경은 공부상 지목변경은 없으나 사실상 지목변경이 있었다는 사실, 가격이 증가하였다는 사실,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간주취득에 반증이 허용되는 추정과세 성격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법정 과세요건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실상 지목변경 취득세에 대한 과세요건 강화는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가 있다. 첫째, 토지의 지목변경 요건을 공간정보관리법에 맞게 입법하여 과세요건을 명확화 할 수 있다. 둘째,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에만 있는 모호한 사실상 변경을 예외적 요건으로 규정하여 과세다툼 및 입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셋째, 공부상 지목변경은 과세라는 원칙을 명확화하고 공부상 변경이 없으나 사실상 변경하여 가액이 증가한 경우 예외로 허용하여 과세의 합리성을 제고 한다. 넷째, 사실상 변경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여 과세요건을 보충하도록 하여 현재와 같이 다툼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실상 지목변경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정 과세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법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태호,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 개선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8.

임상빈, “사실상 지목변경 과세 개선방안,” KILF REPORT vol 94한국지방세연구원, 2020.

임상빈,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본질규명과 취득시기의 개선방안”,「세무학연구」제37권 제1호, pp.9－35, 2020.

정지선,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본질규명과 취득시기의 개선방안”,「세무학연구」제23권 제2호, pp. 57－88, 2006.

현기수・임상빈・전인렬,「지방세 법인세무조사 이론과 실무」, 삼일인포마인, 2017.

김신언,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범위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두 56654 판결을 중심으로 —”, 조세와 법 제16권 제1호, 서울시립대학교법학연구소, 2023.

박천수, “취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취득개념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학위청구 논문, 2023. 2.

제 6 분과

서현파트너스 특별세션

장소 : 120호 사회자 : **조광희 교수** (동국대)

시 간	발표논문 제목	저자 및 발표자*	토론자
15:00 ~ 16:30	소급감정 과세의 적법성에 관한 연구	**김수경*** (법무법인 두현)	**홍성익** (숭의여대)
	스마일게이트 소송사건으로 본, 전환사채에 부여된 콜옵션 성격에 대한 소고	**정시영*** (PKF 서현회계법인)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소급감정 과세의 적법성에 관한 연구

김 수 경
(법무법인 두현)



국세청

소급감정 과세의 적법성에 관한 연구

2024. 10.

법무법인 두현 대표변호사 김수경

Contents

1. 국세청 감정평가사업- 도입, 취지, 근거규정, 시행변화 및 문제점

2. 감정가액의 시가인정- 상속·증여재산 평가의의, 입법 연혁

3. 소급감정에 관한 판례의 동향- 2024. 4. 12. 선고 2020두54265 판결

4. 관련 연구 및 비교법

5. 현행 국세청 소급감정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요건 적합성

6. 현행 국세청 소급감정 대상 선정- 조세법률주의 공평과세원칙

1 국세청 감정평가사업-도입

국세청은 시가가 없는 증여·상속재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과세

2019. 2. 12.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제49조 제1항 단서)	2020. 1. 31. 보도자료 배포	2023. 10. 1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평가기간 외 감정가액 인정 범위를 평가기준일 이후 법정결정기한까지로 확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규정의 개정을 근거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국세청의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의 문제점 지적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3년간 535건 진행, 그 중 관련 불복소송이 54건에 달함.

1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취지

시행배경 상속, 증여세는 시가 평가가 원칙이나, 비주거용 부동산은 비교대상 물건 및 거래가 적어 시가 대비 저평가되어 형평성 논란이 있어 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개정을 법적 기반 삼아 감정평가사업을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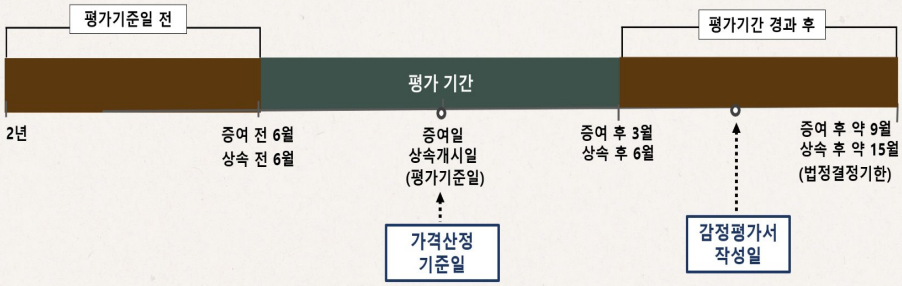
평가대상 비주거용 부동산 및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를 대상으로 하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

평가절차 감정평가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고, 평가가 완료된 후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감정가액으로 상속, 증여 재산을 평가

기대효과 상속, 증여세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자발적인 감정평가를 유도하여 성실납세 문화확산에 도움될 것으로 전망

1 국세청 감정평가사업-근거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근거로 **평가기간이**(상속일 전,후 6개월, 증여 전 6개월, 후 3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상속일이나 증여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평가기간 경과 이후를 감정평가서 작성일로 한 감정가액으로 과세



1 국세청 감정평가사업-근거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상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괄호생략)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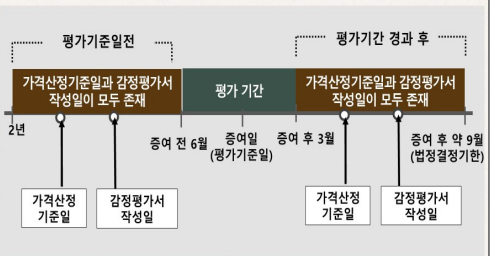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요건

01 **평가기간 전 2년, 평가기간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작성일 모두 존재할 것**

02 **증여일로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사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

03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것**



1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시행변화 및 문제점



1,2단계

령 49조 1항 단서 규정 따라 **소급감정 안함**
평가기간 경과 밖에
가격산정기준일, 감정평가서작성일 모두 있음

2단계

령 49조 1항 단서 위반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요건 입증 용이 위해
가격산정기준일을 최대한 증여일에 가깝게
평가기간+1로 변경(기재부 유권해석을 받아 시행)
기재부 재산세제과-480 "평가가간 다음날을 가격산정 기준일로 하고, 감정평가서 작성일을 법정결정 전까지로..."

3단계

령 49조 1항 및 2항 위반 소급감정 시행
가격변동 없음 입증을 피하기 위해
평가기준일=가격산정기준일로 하는 소급감정 시행

2 감정가액의 시가인정-상속·증여재산 평가의 의의

∘ 재산의 평가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화폐라는 공통된 척도로 환가하는 것

상속, 증여 재산 평가액을 기초로 과세하기에 상속세, 증여세액의 산출에 있어 중요한 사항

∘ 평가시점, 평가방법

상증세법 제60조에서 시가 개념과 펑가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시행령에 구체적인 평가 방식을 규정

시가주의를 기본으로 하나 평가기간의 제한을 두어 시가를 인정함으로써,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필연적으로 전제되어 있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하여 상증세법에 보충적 평가방법을 두고 있음

2 감정가액의 시가인정-입법연혁

1996. 12. 30. 이전	1996. 12. 30.
구 상속세법 제9조 재산평가 최초 규정하였으나, 시가 개념 전무 대법원 판례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부개정, '시가'의 의미 입법하고, '감정가액'이 최초로 시가로 도입**
• 구 상속세법 §9는 '**상속 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만 규정, **무엇이 시가에 해당할지**에 대한 **판단기준 전무** **구 상속세법 (1981. 12. 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된 것)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① 상속재산의 가액...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단서 생략) **구 상속세법시행령 (1981. 12. 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된 것)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대법원 감정가액을 시가의 하나로 인정**하고, **소급감정을 시가로 인정한 최초 판례도 이 시기에 선고 됨**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 (대법 1984. 11. 27. 선고 84누322 판결) '과세당국' 소급감정 **시가 불인정**(대법 1989. 6. 27. 선고 88누11698) **'납세자'의 소급감정 시가로 인정(대법 1990. 9. 28. 선고 90누4761)**	• **현재 규정과 유사하게** 감정가격을 시가로 인정하고 **구체적 기준 시행령 위임**(§ 60조 2항) **상증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0조[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 감정가액의 시가인정-입법연혁

96. 시행령에서 감정가액 인정 요건 입법 후, 지속적 개정으로 감정요건 강화 - 임의 감정 방지, 소급감정 방지 목적

개정일	내용	조문
'96.12.30.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 상속세 6개월, 증여세 3개월부터 과세표준 신고기간) 중의 감정가격만** 상속세,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 감정가격일 것	령 49조 1항 령 49조 1항 2호
'99.12.31.	상증세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감정가액, **평가기준일 현재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감정가액 제외** **보충평가액 대비 80% 미달 감정 시, 세무서장이 재감정 의뢰**하여 다시 감정한 가액으로 할 것 원감정기관 **1년간 시가 불인정기관 지정**	령 49조 1항 2호 규칙 15조 3항
'02.12.30.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 내**에 있는 감정가액만 인정 평가기간 외 감정가액 중(**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만**)**가격변동 특별한 사정** 없으면, **평가심의회** 거쳐 인정	령 49조 2항 2호 령 49조 1항 단서 훈령 22조
'14.02.21.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내에 있는 감정가액만 인정 *소급감정 방지 명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만** 인정하던 훈령 규정 시행령으로 입법	령 49조 2항 2호 령 49조 제1항 단서
'15.12.15.	종전 시행령, 규칙에 있던 감정가액 **임의성 방지규정**(2개 감정기관, 80%룰) **법에 규정**	법 60조 제5항
'19.02.12.	평가기간 외 감정가액 인정 범위를 **평가기준일 이후 법정결정기한까지 확대**	령 49조 1항 단서

2 감정가액의 시가인정- 입법연혁

2014. 2. 21. 개정 도입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2호

감정평가서 작성일과 가격산정기준일 모두 평가기간(증여 전 6월, 증여 후 3월) 내에 있어야 적법한 감정가액으로 인정.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개정취지를 소급감정 방지를 위한 요건 강화로 밝힘

상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이하 생략)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상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② 동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②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 요건 보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가. 개정취지

○ 소급감정 방지를 위해 요건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요건 (① + ②)	□ 감정가액 요건 보완
① 2 이상의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가액의 평균일 것	① (좌 동)
②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 이내일 것 *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 3개월) 이내	② 가격산정 기준일, 감정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 이내일 것

3 소급감정에 대한 판례의 동향

소급감정 금지(14년 개정) 후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는 납세자 소급감정을 인정하지 않음

	현재까지 소급감정을 인정한 모든 대법원 판례
2014년 개정 시행령 적용되기 전	• **소급감정을 인정한 최초 판례**(대법 90누4761) **와 이후 일련의 대법원 판례는** 소급감정 금지 시행령(2014.12. 30) 시행 전 납세의무 성립 사안 • **납세자 소급감정 인정해 줌** 92누4840, 92누8897, 94누5472, 96누10423, 97누8366, 98두13942, **2000두5098**, 2002두10377, 2004두2356, 2006두12005, 2007두24364, **2010두8751**, 2010두14442, 2012두21109, 2014두3204, 2021두61062 판결(2013 증여분)
	상증세법 시행령이 쟁점이 된 사안에서 하급심 판례는 납세자의 소급감정 불인정
2014년 개정 이후	•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년 8개월이 경과하여 소급감정을 한 것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제5항에서 정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서울행법 2021. 9. 17. 2021구합55869) •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구 상속세법령 제49조 제1항의 문언 내용 및 판례 내용에 의하면, 무분별한 소급감정으로 인한 조세관계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감정 주체와 감정 시기·감정 목적 등에 관한 엄격한 제한 요건을 규정하고,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객관적인 신빙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감정가격만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상속재산에 있어서 평가기간을 벗어나서 한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에 있어서 그 객관성이나 신빙성 평가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소급감정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서울행법 2021. 8. 13. 선고 2020구단 65404 판결)

3 소급감정에 대한 판례의 동향

소급감정 금지(14년 개정) 후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는 납세자 소급감정을 인정하지 않음

- **소급감정을 인정한 대법 판례는 모두 상증법령에서 감정에 대한 시가요건을 명문으로 정하기 전 판결**
- **소급감정을 인정한 최초 대법판례 당시 구 상속세법은 시가 규정은 시가의 개념과 판단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므로 대법원 판례 등에서 감정가격 및 소급감정가격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타당**

구 상속세법(1993.12.31.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 대법원 2000두5098 판결을 비롯한 소급감정 인정 판례는 2014년 이전 시행규정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당시에는 **시행령에서 소급감정을 금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법원**이 소급감정을 인정하기 위해 **시가주의를 근거로 시행령 규정이 예시규정이라 판시한 것은 당시 법리상 문제 없음**

- 현재 상증세법령은 소급감정을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음. 과거 2001. 8. 21. 선고 2000두5098판결 등 소급감정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만으로 상증세법 위반 위법성이 치유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현재는 **이를 직접 쟁점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이 없음**

3 소급감정에 대한 판례의 동향

개정일	감정가액 등 주요 상증세법령 개정 내용	판 례
'81.12.31. ~'96.12.29	법령에 시가산정에 관한 구체적 규정 없음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이며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누4761 등)
'96.12.30.	감정가격을 시가로 인정(법 제60조 제2항) 평가기간 중의 감정가격만(령 제49조 제1항)	
'99.12.31.	시가 인정요건을 강화(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보충적평가액의 80%에 미달하면 재감정 의뢰	
'02.12.30.	감정가액의 경우 (감정평가기준일이 아닌)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시가 평가기간 해당여부를 판단(령 제49조 제2항 제2호) -대법원 판례가 소급감정을 인정함에 따라 소급감정을 통해 상속세, 증여세 낮추려는 시도 방지	위 판례와 동일 내용 판시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28328)
'14.02.21.	감정평가의 경우 "가격산정 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내에 속할 것 (령 제49조 제2항 제2호) -소급감정 금지를 더욱 명확히 -국세청 개정세법 해설책자에서도 확인	취득 당시로 소급하여 한 감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5. 10. 15.선고 2011두24286): 소급감정 부인
'15.12.15.	감정가액 임의성 방지 규정(법제60조 제5항)	
'19.02.12.	법정결정기한까지 평가기간 밖의 감정가액을 예외적 시가로 인정(령제49조 제1항) -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것	

3 소급감정에 대한 판례의 동향- 2024. 4. 12. 선고 2020두54265 판결

최근 대법원은, 상증세법령상 정한 재감정사유가 없음에도 재감정한 것에 대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가 예시적인 성격을 갖는 규정이라는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을 원용하면서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를 위반한 감정가액은 시가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으로써 소급감정 과세사례는 아니나, 시행령을 위반한 감정가액은 시가가 아니라며 시행령의 법규성을 우위에 둠

사실관계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원고들이 합병비율 산정을 위해 피합병법인 주식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은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을 상증세법 제60조의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하였는데, 과세당국은 이를 부인하고 재감정을 의뢰하여 재감정한 가액으로 과세

원고들의 감정가액이 기준가액을 상회하고 있었으므로 과세관청이 재감정을 의뢰하려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 두 번째 괄호 규정에 따라 '원고들의 감정가액이 감정평가 목적 등을 감안할 때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어야만 하나 피고들은 이를 무시하고 재감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감정 사유

01 감정가액이 기준금액(법 제61조 · 제62조 ·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 이하 '기준금액'이라 합니다)에 미달하는 경우

02 감정가액이 기준금액을 상회하더라도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할 때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두번째 괄호규정)

4 선행 연구 및 비교법

양인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 평가규정의 해석론에 관한 소고", 조세법연구, 2023

- 체계적 법 해석 관점에서 소급감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
- 손쉬운 소급감정은 시가평가원칙 규정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보완이라는 재산평가규정의 체계가 흔들릴 우려 있음

곽태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 평가규정의 체계적 해석론", 세무와 회계연구, 2023

- 상증세법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
- 명문의 근거가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과세 목적의 소급감정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 2019. 2. 12.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내용은 과세관청에 감정평가 권한을 부여하는 취지가 아님

곽장미, "현행세법상 시가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세무회계학회, 2021

- 소급감정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무시할 수는 없으나,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보단 합리적인 방안 찾아야
- 소급감정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일관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 국가에서 인정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소급감정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4 선행 연구 및 비교법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상속세 과세 방식	유산세	유산세	유산취득세	유산세
시가 규정 체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재산의 시가 평가방법 규정	법령에 공정시장가치에 대한 용어만 존재할 뿐 구체적인 규정은 없음	• 상속세법: 지상권, 정기금, 입목 평가방법 규정 • 재산평가 기본통달: 토지, 주택, 구축물, 과수 및 임목, 동산, 무형자산, 주식 및 채권 평가방법 규정	법률에서 원칙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기준들은 SAV 지침을 통해 제시
평가방법의 범위	•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수용·경매·공매가액 등 • 보충적 평가방법	• 공정시장가치에 의한 평가만을 규정할 뿐, 평가 방법에 대한 규정 없음 • 대부분의 부동산 평가 사안에서 **전문가 감정 활용**	• 원칙: 국세청이 정한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 • 예외: 재산평가 기본통달에 의해 평가가 어려운 경우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방법으로 평가 가능	• 별도의 규정 없음
소급감정 과세여부	국세청 감정평가사업 시행 중	• **별도의 소급감정평가 규정 없음** • 한국의 상증세법과 달리 일정한 평가기간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 밖의 경우에 평가의 정당성을 인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지 않음		

5 현행 국세청 소급감정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요건 적합성

문언 해석

법령해석의 출발점은 문언해석이다. 법령의 문언과 달리 해석을 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된다. 특히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1. 상증세법 60조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상증령 제49조의 요건
2. 소급감정은 상증령 제49조 제1항 본문 요건 위반
3. 소급감정은 상증령 제49조 제1항 단서 요건 위반
4. 소급감정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및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요건 형해화

체계적 해석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석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8.02.15. 선고 2007두4438).

5. 소급감정은 예외규정의 해석으로 본문을 폐지하는 결과
6. 소급감정이 시가로 인정될 경우, 매매 등 다른 시가는 시가로 인정될 수 없음
7. 소급감정이 시가로 인정될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은 형해화됨
8. 소급감정을 금지해온 입법과정 및 단서 도입취지에 반함

5-1 상증세법 60조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상증령 제49조의 요건

상증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 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 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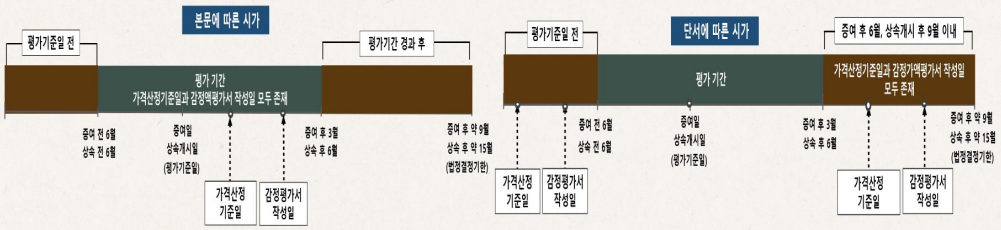
5-1 상증세법 60조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상증령 제49조의 요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감정가액의 시가요건

01 **평가기간 전 2년이나 평가기간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존재할 것**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날'은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모두 해당)

02 **실체적 요건 - 평가기준일로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사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
(평가기간 밖의 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의 시가로 인정해주기 위한 추가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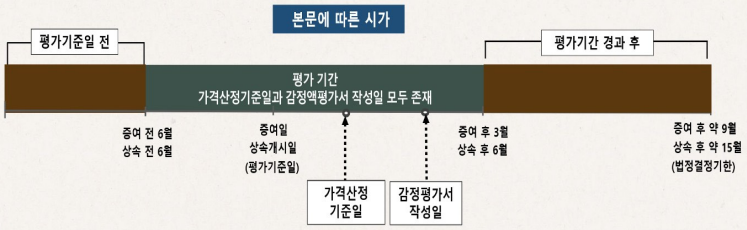
03 **절차적 요건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것**



5-2 소급감정은 상증령 제49조 제1항 본문 요건 위반

∘ **상증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평가기간 이내에 감정이 있는 경우에만 시가로 인정하고,**
상증령 제4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내에 있어야 함
감정평가 작성일이 평가기간 경과 후에 있는 소급감정은 시가가 될 수 없음

∘ 소급감정에 관하여 최근 판시된 서울고등법원 2024누34520 판결은 본문에 **감정가액평가서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며, "본 규정의 취지는 **감정의 시가 인정범위가 제한없이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며 "**반대해석상**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밖에 있거나, 하나라도 밖에 있다면 본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본문에서 소급감정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시



5-3 소급감정은 상증령 제49조 제1항 단서 요건 위반

∘ **상증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 밖에 시가 등이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의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①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법정 결정기한까지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있어야하며, ②실체적 요건(가격변동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과 ③절차적 요건(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칠 것)을 충족해야 함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8439 판결 "감정 등이 상증세법령 등의 각 규정의 내용에 형식적으로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도 그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며 **시가주의**를 근거로 '가격산정기준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시가 평가기간 및 법정결정기한을 모두 포함하는 기간** 안에 있으면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

∘ 항소심 서울 고등법원 2024누34520 판결 "**단서는** 시가 평가기간 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 공매, 경매, 감정 등에 따른 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가격산정기준일이 반드시** 시가 평가기간 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원심의 판결 내용 인정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8439 판결 : 상증령 위반 하자가 대법원 판결(2007두23200 판결)만으로 치유될 수는 있는가
->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426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누34520 판결: 상증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상증령 제49조 제2항 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
-> 상증령 제49조 제2항 "1항을 적용할 때" 라 규정

5-4 소급감정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및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요건 형해화

∘ 상증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 밖의 시가를 예외적으로 시가로 인정해주기 위한 **추가 요건으로**
"평가기준일로부터 당해 매매등이 있는 날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라는 **실체적 요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라는 **절차적 요건 둠**

∘ 단서 규정은 **문언 자체**로 **평가기준일**과 **매매 등의 가액이 존재하는 날**이 **서로 다른 날**을 **전제로 함**
즉, 단서의 취지에 따라 매매 등의 가액은 평가기간 밖에 존재하므로 **평가기준일의 시가로 되기 위해서는 그 두 시점의 기간 사이에 가격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것

∘ 그런데, **평가기준일(증여일 또는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는 소급감정은 양 기간사이에 차이가 없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으므로 **실체적 요건이 불필요하게 됨**
그로인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확인하는 **"평가심의위원회 회부"라는 절차적 요건도 필요 없게 됨**

∘ 상증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소급감정을 허용할 목적이었다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라는 실체적 요건을 둘 이유도 없고, 이를 **검증하는 절차적 요건을 둘 이유도 없음.**

5-5 소급감정은 예외규정의 해석으로 본문을 폐지하는 결과

∘ 입법자가 상증령 제49조 제1항 본문에서 금지되는 소급감정을 허용하고자 했다면, **직접 본문을 개정**하여 소급감정을 허용하였을 것이지, **본문을 놔두고 단서로 본문을 폐지하는 방식의 입법을 할 이유가 없었을 것**

∘ "조나 항의 주된 내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거나 규율 대상 중 **일부에 대해 달리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접속사 '다만'을 사용하여 단서로 규정한다. 단서의 앞 문장을 본문이라고 부르며, **단서는 본문에 규정된 행위 주체 중 일부를 제외**하거나 **특정 행위 주체에만 행위·절차 등을 달리 정하는** 경우, **일정한 상황**에서 의무나 요건 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경우, **적용 대상을 일부 배제**하는 경우 등을 규정할 수 있다(법제처 발간 2020년 법령입안심사기준, 744면).
즉, 단서는 **본문의 일부에 대해서만 달리 규율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적용하는 법령입안 방식**이므로 **단서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본문을 내용 전부를 실질적으로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방식으로 해석할 수 없음**

∘ **국세청도 단서에서 소급감정이 불허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권해석을 받아 감정평가 과세를 진행한 것임**

∘ **서울고등법원 2024누34520 판결**은 상증령 제49조 제1항 본문에 대해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을 엄격하게 하기 위한 취지"라며 반대해석상 본문에서 소급감정이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는, 단서에서 소급감정을 허용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본문의 엄격해석 근거를 무색케 하는 모순**

5-6 소급감정이 시가로 인정될 경우, 매매 등 다른 시가는 시가로 인정될 수 없음

∘ 상증령 제49조 제2항은 평가기간내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둘 이상 존재하는 경우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기준으로 시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상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②...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 소급감정은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한 날이므로 **소급감정일보타 평가기준일에 가까운 날을 기준으로 하는 시가는 존재할 수 없어,** 상증령에서 시가로 인정한 매매사례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 등은 소급감정이 있는 한 시가로 인정될 수 없음

∘ 입법자의 의도와는 달리 소급감정가액을 다른 시가에 우선하는 우월적 시가로 인정하는 결과 초래

∘ 거래당사자들이 협상을 통해 매매거래를 체결하더라도 사적감정을 받아 검증하지 않는다면 추후 부인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납세자의 거래비용을 증가**시키고, **가격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

5-7 소급감정이 시가로 인정될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은 형해화 됨

∘ 보충적 평가방법은 평가기간을 전제하지 않는 미국, 일본과 달리, 평가기간에만 시가를 인정하는 우리 시가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이므로, **평가기간과 무관하게 시가로 인정되는 소급감정이 시가로 인정되면 보충적 평가규정은 형해화 됨**

상증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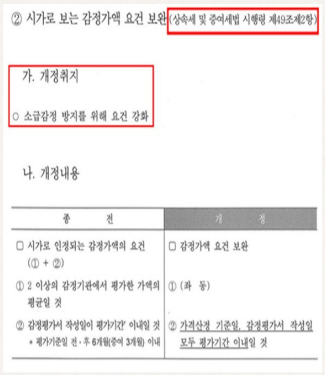
∘ 따라서 소급감정을 인정하는 것은 단순히 시가를 추가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안에서만 시가를 인정하고 그 밖에 기간에 있는 가액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시가로 볼 여지가 있다하더라도 시가로 보지 않고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획일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시가평가의 체계를 변경하는 것**

∘ 대법원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를 포기하고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보충적 평가방법 등을 유추 적용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할 수 있다고 하므로 재판과정에서의 소급감정은 제한할 필요가 있음(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5-8 소급감정을 금지해온 입법 과정 및 단서 도입 취지에 반함

96. 시행령에서 감정가액 인정 요건 입법 후, 지속적 개정으로 감정요건 강화 - 임의의 감정 방지, 소급감정 방지 목적

개정일	내용	조문
'96.12.30.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 상속세 6개월, 증여세 3개월부터 과세표준 신고기간) 중의 감정가격만** 상속세,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 감정가격일 것	령 49조 1항 령 49조 1항 2호
'99.12.31.	상증세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감정가액, **평가기준일 현재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감정가액 제외** **보충평가액 대비 80% 미달 감정 시, 세무서장이 재감정 의뢰**하여 다시 감정한 가액으로 할 것 원감정기관 **1년간 시가 불인정기관 지정**	령 49조 1항 2호 규칙 15조 3항
'02.12.30.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 내**에 있는 감정가액만 인정 평가기간 외 감정가액 중(**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만**)**가격변동 특별한 사정** 없으면, **평가심의회** 거쳐 인정	령 49조 2항 2호 령 49조 1항 단서 훈령 22조
'14.02.21.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내에 있는 감정가액만 인정** ***소급감정 방지 명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만** 인정하던 훈령 규정 시행령으로 입법	령 49조 2항 2호 령 49조 제1항 단서
'15.12.15.	종전 시행령, 규칙에 있던 감정가액 **임의성 방지규정**(2개 감정기관, 80% 룰) **법에 규정**	법 60조 제5항
'19.02.12.	평가기간 외 감정가액 인정 범위를 **평가기준일 이후 법정결정기한까지 확대**	령 49조 1항 단서


②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 요건 보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가. 개정취지

○ 소급감정 방지를 위해 요건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요건 (① + ②)	□ 감정가액 요건 보완
① 2 이상의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가액의 평균일 것	① (좌 동)
②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 이내일 것 * 평가기준일 전 · 후 6개월(증여 3개월) 이내	② 가격산정 기준일, 감정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 이내일 것

6 현행 국세청 소급감정 대상 선정-조세법률주의 공평과세원칙

모든 재산이 아니라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만 보충적평가 신고 부인 후 소급감정 과세를 시행하였습니다.

- **시가평가의 원칙을 규정한 상증세법 제60조는 모든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 평가에 동일하게 적용됨**
-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고 **소급감정 과세가 용인되는 것이 아님**
- 비주거용부동산에 대하여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전 **감정가액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법적근거는 전혀 없음**
- **법령 근거 없이 비주거용부동산에 대한 과세관청의 소급감정과세는 조세법률주의에 명백히 위배됨**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선정한 일부 납세자의 보충적평가 신고 부인 후 소급감정으로 과세하였습니다.

- **보충적 평가액과 시가의 차이가 큰 고가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배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자의적으로 선정하였음**
- **예산의 범위내에서 임의적으로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하여 납세자를 자의적 기준으로 차별하여 공평과세원칙에 위배됨**



감사합니다.

Thank You

스마일게이트 소송사건으로 본,
전환사채에 부여된
콜옵션 성격에 대한 소고

정 시 영
(PKF 서현회계법인)

스마일게이트 소송사건으로 본,

전환사채에 부여된 콜옵션 성격에 대한 소고

October 2024

PKF서현회계법인

Contents

01.	국내 전환사채 시장 동향	03
02.	해외 전환사채 시장 현황	04
03	콜옵션이 부여된 전환사채의 거래 개요	05
04	콜옵션이 부여된 전환사채 관련 회계처리	07
05	스마일게이트 소송사례	08
06.	콜옵션부 전환사채에 대한 최근 과세사례(과세전적부심 중심으로)	10
	[쟁점1] 콜옵션의 자산성 여부	
	[쟁점2]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쟁점3] 콜옵션의 평가방법 및 적용시점	
07.	시사점 및 논의사항	14
08.	관련 규정 및 판례 등	15

PKF 서현회계법인

01. 국내 전환사채 시장 동향(*)

- **전환사채***(CB)는 **중소·벤처기업** 등이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자금 조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아 왔음
  * Convertible Bond: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 비교적 안전한 채권의 성격과 수익성이 높은 주식의 특성을 동시에 보유
- **23년 CB 발행*은 약 5.6조원으로 전년('22년, 약 6.0조원) 대비 다소 낮은 수준**
  * CB 발행규모(조원) : ('18)8.1 ('19)8.0 ('20)8.1 ('21) 9.9 ('22) 6.0 ('23) 5.6
- **CB는 대부분 사모 1) (99.0%) 방식으로 발행되며, 주로 코스닥 상장기업 2) (74.0%)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
  1) 이사회 결의만으로 발행할 수 있고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 없어 발행 용이, 2) 저금리 시기 풍부한 유동성 및 주가 상승세에 힘입어 코스닥 기업이 적극 활용
- **CB의 경우, 보다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콜옵션 1) , 리픽싱 2) 등 투자매력도를 제고하는 다양한 조건을 적극 활용중**
  1) 미리 정한 가액으로 전환사채 등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매수선택권) 2)주가 변동 시, 전환가액(전환사채→주식 간 전환비율)을 조정하는 행위
- **다만, 해당 조건이 최대주주 등의 편법적 지분확대 및 이익 취득에 이용되는 등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의견에 따라 최근 CB 관련 제도개선*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음.**
  * CB 발행 및 유통공시 강화, 전환가액 조정(refixing) 합리화 등

(*) 전환사채시장 건전성 제고방안 보도자료, *2024.1.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PKF 서현회계법인

02. 해외 전환사채 시장 현황(*)

미국의 경우 **콜옵션**의 경우 대부분 **발행회사**가 회사의 부채비율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리픽싱에 대한 규제는 없으나 시장 관행상 리픽싱 조건을 부가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움. 일본의 경우에도 **발행회사** 외에 최대주주 등에게 **콜옵션**을 부여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고** 전환사채에 **리픽싱 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으나, 전환사채 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낮아** 전환사채 **시장 자체**가 **침체**된 모습임

[미국]

✓ 일반적으로 전환가격은 발행일 이전 일정기간의 주가평균에 프리미엄이나 디스카운트를 한 가격을 기준으로 설정, 리픽싱에 대한 규제는 없으나 시장 관행상 리픽싱 조건을 부가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움

✓ **전환사채 콜옵션 부여** : 대부분 **발행회사**가 회사의 부채비율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

✓ 전환사채 발행이 2019년 이후 크게 감소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주식시장의 불확실성 증가로 기업들의 전환사채 발행에 제약이 존재한 가운데 낮은 이자율로 전환사채 발행의 메리트가 감소

[일본]

✓ 전환사채에 리픽싱 조건 부여, **발행회사 외에 최대주주 등에게 콜옵션을 부여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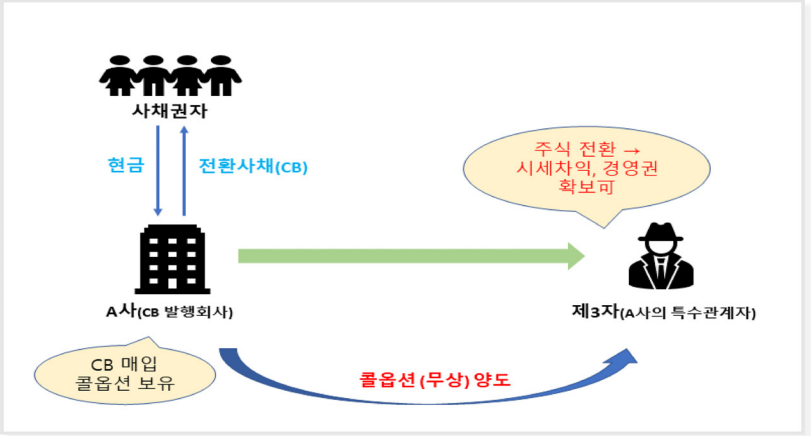
✓ 2006년 이후 연간 10건 미만의 저조한 실적을 보임. 전환사채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가 낮아 지속적인 침체기록

(*) 전환사채시장 건전성 제고방안, *2023.7. 자본시장연구원, 김필규 연구원*

PKF 서현회계법인

03. 콜옵션이 부여된 전환사채의 거래 개요

회사는 일반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함과 동시에, 같은 거래 당사자와 동 **전환사채**의 일부를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콜옵션 계약**을 **체결**



PKF 서현회계법인

03. 콜옵션이 부여된 전환사채의 거래 개요, *계속*

< 전환사채 및 콜옵션 발행 조건 (사례) >

■ 전환사채 조건(전환권, 풋옵션 포함)

ㅇ 발행금액 : 100억원(만기 5년)

ㅇ 표면이자 : 0% (단, 만기까지 전환권 미행사시 연 2% 이자를 보장)

ㅇ **전환권*** : 특정 산식에 기초하여 회사의 주가에 따라 전환가액 변동

→ 전환주식수 변동 (주가하락시 전환주식수 증가)

* 전환사채 보유자는 전환권 행사로 사채의 권리(원금과 이자) 대신 주식의 권리를 획득

ㅇ 풋옵션* : 발행금액에 연 2% 복리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행사가능

* 전환사채 보유자가 행사할 수 있으며, 발행자(회사)에게 행사금액으로 만기전에 사채상환을 요구할 권리

■ **콜옵션*** 조건

* 행사 시 특정 행사금액으로 기 전환사채 보유자로부터 전환사채에 대한 권리를 획득

ㅇ '전환사채 발행자(회사)'나 '**그 발행자가 지정한 제3자**'가 **보유·행사**할 수 있음

ㅇ 콜옵션 보유자는 전환사채 약 30%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발행금액에서 연 2% 복리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행사가능

※ 회사가 해당 콜옵션을 회사의 임직원에게 무상 부여할 경우, 그 임직원은 콜옵션을 행사하여 행사금액(예: 100원)보다 가치가 높은 전환사채(예: 시장가치 120원)를 취득하여 경제적 이익(예: 20원 = 120원–100원)을 얻을 수 있음

PKF 서현회계법인

04. 콜옵션이 부여된 전환사채 관련 회계처리

과거 **'콜옵션부 전환사채의 발행기업의 콜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논란이 많았으나 **2022.5.4 금융위원회**는 K-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 논의결과 **해당 콜옵션**은 향후 제3자 지정을 통해 **발행자 외**의 자에게 **이전**될 수 있으므로 **전환사채와는 분리된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처리 하도록 감독지침 제공

관련 규정	**[K-IFRS 제1109호 문단 4.3.1]** 내재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복합상품의 구성요소로, 복합상품의 현금흐름 중 일부를 독립적인 파생상품의 경우와 비슷하게 변동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내재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이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의 계약에 따른 현금흐름의 전부나 일부를 특정된 이자율, 금융상품가격, 일반상품가격, 환율, 가격 또는 비율의 지수, 신용등급이나 신용지수 또는 그 밖의 변수에 따라 변동시킨다. 이 때 해당 변수가 비금융변수인 경우는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않아야 한다. **특정 금융상품에 부가되어 있더라도, 계약상 해당 금융상품과는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거나 해당 금융상품과는 다른 거래상대방이 있는 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이 아니며, 별도의 금융상품**이다.
판단 근거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4.3.1에 따르면, 특정 금융상품에 부가되어 있는 파생상품이더라도, **해당 금융상품과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거나, 해당 금융상품과는 다른 거래상대방이 있는 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이 아니라 별도의 금융상품**임 (2) 회사가 콜옵션의 행사자로서 회사가 아닌 제3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은 **회사가 실질적으로 해당 콜옵션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그 지정된 제3자가 콜옵션을 행사하여 전환사채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면 질의의 콜옵션은 별도로 양도할 수 있다고 판단 가능 (3) 즉, 회사가 콜옵션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이자, 원금의 지급, 전환권 행사에 따른 지분상품의 발행 등 전환사채에 대한 발행자의 의무를 여전히 회사가 부담**한다면, 해당 콜옵션은 동 기준서 문단 4.3.1의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는 요건을 충족하므로 내재 파생상품이 아닌 **별도의 금융상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

PKF 서현회계법인

05. 스마일게이트 소송 사례

흥행 대박 터트린 '스마일게이트RPG'…1000억원대 CB 소송전

2022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스마일게이트RPG는 7369억원의 매출에 3641억원의 영업수익을 올렸다. 이같은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2022년 회계상 1426억원 순손실을 낸 것으로 기재됐다. 비상장사가 주로 쓰는 일반회계기준(GAAP)에서 K-IFRS로 변경되면서 전환가액 옵션이 달린 CB가 5360억원 규모 '파생상품 평가손실'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라이노스 측은 파생상품 평가손실은 '회계적 손실'일 뿐 상장하지 못할 이유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CB가 보통주로 전환되면 평가손실은 제거된다. 회사측은 "CB 투자는 기본적으로 상장을 전제로 이뤄진다"며 "대주주가 회계상 손실을 이유로 상장추진 등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스마일게이트 측은 계약서의 상장추진 요건을 그대로 준수한 것이라고 맞섰다. 회사는 CB 발행 시 '당기순이익실 120억원 이상일 때 상장을 추진한다'는 계약조건을 달았으며 이에 따라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CB상환이라는 입장이다.

증권 > 시장

"전환사채는 부채인가 자본인가" 스마일게이트 vs 라이노스 천억대 소송의 핵심

바로 이 지점에서 스마일게이트RPG와 라이노스 측 주장이 엇갈린다. 스마일게이트RPG는 CB 전환권을 회계 원칙에 따라 부채로 인식하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라이노스 측은 이것이 '선택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회사의 의지에 따라 부채로도, 자본으로도 인식할 수 있었는데 스마일게이트RPG 측이 상장하지 않기 위해 '이례적으로' 부채로 계상했다는 게 라이노스 측 주장이다.

CB 전환권을 자본으로 계상해도 된다는 주장은 2011년 금융감독원의 질의회신 '회제이-00094'를 근거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금감원은 신주인수권부사채에 포함된 신주인수권을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봐야 한다는 비공식 유권해석을 내놓았으며, 2019년 금융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코스닥 상장사 코리아센터의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자본과 부채로 회계 처리하는 게 모두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금감원의 유권해석은 13년 전에 나온 것이며 그 당시에도 많은 논란을 낳은 바 있다. 한 회계사는 "지정 감사인이 K-IFRS에 따라 전환권을 부채로 계상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이상, 회사 입장에서 이를 거부하고 자본으로 반영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PKF 서현회계법인

05. 스마일게이트 소송 사례

스마일게이트RPG 실적 추이 (억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매출액	35	333	796	835	4,898	7,370	5,237
영업이익	-273	-253	43	68	3,055	3,641	2,690
파생상품평가이익	-					0	5,416
파생상품평가손실						5,357	0
당기순이익	-284	-286	-29	84	2,290	-1,427	6,548

스마일게이트 CB 발행조건

(당기말) (단위:천원)

구 분	내용	내용
특수사채	전환사채(+1)(+2)	전환사채(+3)
발행일	2017-12-20	2018-04-17
액면가액	14,000,000	4,200,000
발행가액	14,000,000	4,200,000
액면이자율	2.0%	2.0%
상환보장수익률	109.7%	109.7%
행사가격	46,350원	46,350원
전환청구기간	전환조건이 충족된 다음 날로부터 2023년 11월 20일까지	전환조건이 충족된 다음 날로부터 2024년 3월 17일까지
상환청구기간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4년이 되는 2021년 12월 20일 및 2022년 12월 20일까지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4년이 되는 2022년 4월 17일 및 2023년 4월 17일까지

스마일게이트RPG 파생상품평가이익

(단위:천원)

구 분	당기	전기
이자수익	9,248,936	8,978,603
외환차익	974,915	611,689
배당금수익	11,382,46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946,677	84,51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채분이익	14,368,677	1,460,689
파생상품평가이익	541,592,601	1,689
합 계	578,514,266	11,137,167

- 상장요건 : CB만기 직전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120억 이상
- **상장 추진 시 위하여 채택 회계기준을 K-GAAP 에서 K-IFRS로 변경하면서 2022년 CB로 인한 대규모 평가손실 발생**
- K-GAAP에서 전환권은 자본으로 인식, K-IFRS에서는 부채로 인식. 즉, **회계기준 변경으로** CB 만기일(2023년 12월 20일)의 직전 사업연도인 2022년에 약 3,641억원의 영업이익에도 불구하고 약1,427억원의 당기순손실 발생

PKF 서현회계법인

06. 콜옵션부 전환사채에 대한 최근 과세사례

최근 과세관청(적부-국세청-2022-0035, 2022.07.20. ; 적부-국세청-2023-0126, 2023. 12. 06. ; 적부-국세청-2023-0075, 2023. 12. 20.)에서는 금융위원회에서 쟁점 콜옵션을 전환사채와는 분리된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하도록 안내한 사유 등을 근거로 **쟁점 콜옵션의 자산성을 인정**하면서 **전환사채 발행법인이 무상으로 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지정**한 경우 **자산의 무상이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해당하므로 발행법인 및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지정 받은 특수관계자에게 과세처분

콜옵션부 전환사채 발행기업 VS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 받은 특수관계자의 과세사례 주요 쟁점

(쟁점 1)	콜옵션이 법인의 세무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 2)	콜옵션의 행사자를 발행법인 외 특수관계인(대주주 등)에게 지정한 행위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 3)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한다면 콜옵션 시가의 산정방법 및 적용시기

PKF 서현회계법인

06. 콜옵션부 전환사채에 대한 최근 과세사례 : *[쟁점 1] 콜옵션의 자산성 여부*

회계상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처리되는 **쟁점 콜옵션이 세무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논란이 존재함

세무상 자산에 해당함	세무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 **2022.5.4. 금융위원회**는 제3자 지정 콜옵션이 부여된 경우 발행자는 재무제표에서 해당 콜옵션을 전환사채와는 분리된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처리** 해야 한다고 안내함. ✓ **2021.7.6. 금융감독원**은 쟁점 콜옵션을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금융투자 상품**(전환사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상품인 특정증권)으로 보아 주식취득 후 6개월 이내 매매하여 얻은 매매차익을 청구 법인에 반환하도록 요구함.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8.16. 선고 2011고합25,74** : 콜옵션은 청구법인의 주식을 전환가액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로서 향후 주식가격이 전환가액보다 상승하면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되고, 주식가격이 전환가액보다 하락하면 권리행사를 포기할 수 있으므로 **그 자체로 재산적 가치가 존재함**. ✓ 발행법인 스스로 외부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분기별로 쟁점전환사채(콜옵션 가치 포함)의 공정가치 평가함.	✓ 콜옵션회계지침은 주주들에게 정확한 재무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단순히 회계처리 방법을 알려준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세법상 청구법인의 자산인지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음.**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상환에 따른 세무상 처리방법 :** 법인이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환권. 신주인수권가치를 별도로 인식하고, 상환할증금 등을 전환사채 등에 부가하는 형식으로 계상하더라도 세법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PKF 서현회계법인

06. 콜옵션부 전환사채에 대한 최근 과세사례 : *[쟁점 2]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발행법인 외 제3자에게 부여하는 행위가 자산의 무상이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함.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함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지 않음
✓ **「법인세법」 제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부당행위 대상으로 규정 ✓ 경제적 합리성 판단의 대상은 전환사채 발행행위나 대주주 등을 콜옵션 권리행사자로 지정한 행위가 아니라 **콜옵션 권리의 무상이전 행위**가 되어야 하며 경제적 가치가 있는 콜옵션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할 때에는 어떤 식으로든 그 가치를 평가하여 적정한 대가를 수취하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아야 함. ✓ **회계상, 세법상 경제적 가치가 있는 별도 파생상품(금융상품) 자산**에 해당하는 콜옵션 권리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아무런 대가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무상 이전한 바, 이는「법인세법」상 자산의 무상이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콜옵션 권리의 제3자 부여는 시장에서 통용되는 전환사채 발행방법으로 **각 경제적 주체간의 경제적 합리성 존재하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아님** 청구법인 : 부채가 자본으로 전환되어 재무구조 개선 사채권자 : 최대주주 등이 전환권 행사기회를 부여받게 함으로 책임경영 유인하여 주가상승을 통한 전환이익 기대 상승 특수관계자 : 지분율 범위 내 콜옵션 행사 가능하므로 지분율 확대목적 아님 ✓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 경제적 합리성 유무는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PKF 서현회계법인

06. 콜옵션부 전환사채에 대한 최근 과세사례 : *[쟁점 3] 콜옵션의 평가방법 및 적용시점*

콜옵션에 대하여 현행 규정상 **명확한 세무상의 평가방법**이 존재하지는 않으므로 평가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

상증법상 전환사채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함	전환사채와 별개의 자산이므로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함
✓ **대법원 2015.11.26. 선고 2014두335 판결, 대법원 2023.3.16. 2022두64921 판결** : 주식 및 신주인수권에 부여된 콜옵션의 경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권의 시가(평가액)에서 콜옵션 전환가액(행사가액, 취득원가)을 차감한 형태로 평가액을 산정 ✓ 쟁점 콜옵션도 전환사채 발행 당시 부여된 전환사채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전환사채의 평가방법을 준용한 가액에서 콜옵션 전환가액을 차감하는 형태로 평가하여야 하함. ✓ **다양하게 출현되는 금융상품에 대해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평가방법이 없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시가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 쟁점 콜옵션은 사채권자들로부터 쟁점전환사채를 취득(매입)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별도의 금융자산이므로 쟁점콜옵션 자체를 전환사채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 **별도로 쟁점콜옵션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함. ✓ 한편,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점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 2016.1.18.).** 이므로 전환사채 콜옵션(Call Option) 권리 무상이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시, **콜옵션 권리의 시가산정 시점은 '기존 사채권자 공문 통보일'**이 타당함.

PKF 서현회계법인

07. 시사점 및 논의사항

✓ **전환사채 등을 활용한 불공정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의지 강화**
콜 옵션부 전환사채는 '13년 10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사모 발행이 금지된 직후 처음 발행되어, 기업 사주일가가 경영권 강화 등에 악용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에서는 현재 콜옵션부 전환사채 발행 기업 중 대주주 등에게 주가 상승에 따른 콜옵션 전환이익을 무상으로 분여한 사례 등을 선별하여 조사 대상자 선정

✓ **콜옵션부 전환사채 관련 회계처리의 변화를 과세논리에 활용**
2022.5.4 금융위원회에서 해당 콜옵션은 향후 제3자 지정을 통해 **발행자 외**의 자에게 **이전**될 수 있으므로 **전환사채와는 분리된「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처리 하도록 감독지침을 내린 이후 과세관청에서는 쟁점 콜옵션에 대한 자산성을 더욱 명확히 하는 과세논리로 활용

✓ **콜옵션이 자유로운 유통이 가능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인지?**
발행자가 콜옵션 행사자를 지정하여 사채권자에게 통보하기 전에는 콜옵션을 누구도 행사할 수 없으며 **발행자의 지정행위를 통하여 콜옵션 행사자에게 귀속**되는 것임. 이러한 관점에서 전환사채 발행자에게 온전한 권리가 있는 자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 **콜옵션 행사에 대한 법적인 의미?**
전환사채는 원칙적으로 부채에 해당하며 콜옵션의 행사는 부채의 상환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행위가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인지?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전환사채 발행자가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발행자가 지정한 특수관계자가 행사할 경우 발행자(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볼 수 있는지?

PKF 서현회계법인

08. 관련 규정 및 해석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의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9.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단서 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4【파생상품】

영 제88조 제1항 제7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선도거래, 선물, 스왑, 옵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거래 또는 계약을 말한다.

PKF 서현회계법인

08. 관련 규정 및 해석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그 밖의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조건부권리등의 평가】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및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조건부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

PKF 서현회계법인

08. 관련 규정 및 해석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투자상품】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特定)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하 "투자성"이라 한다)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2.「신탁법」제78조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이 아닌 신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제103조제1항제1호의 재산을 신탁받는 경우는 제외하고 수탁자가「신탁법」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분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이하 "관리형신탁"이라 한다)의 수익권

가.위탁자(신탁계약에 따라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수익자를 포함한다)의 지시에 따라서만 신탁재산의 처분이 이루어지는 신탁

나.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하여 보존행위 또는 그 신탁재산의 성질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개량 행위만을 하는 신탁

3.그 밖에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하더라도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

② 제1항의 금융투자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 2. 파생상품

가. 장내파생상품 나. 장외파생상품

PKF 서현회계법인

08. 관련 규정 및 해석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 차익 반환】

① 주권상장법인의 임원(괄호안 생략) 또는 주요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을 매수(권리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로서 매수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특정증권등의 매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서 매도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특정증권등의 매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특정증권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법인은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그 이익(이하 "단기매매차익" 이라 한다)을 그 법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익의 산정 기준·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괄호안 생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증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

PKF 서현회계법인

08. 관련 규정 및 해석 등

[대법원2014두0335, 2015.11.26]

특수관계 있는 사람들 사이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구 국제조세조정법에서 정한 이전가격세제의 적용이 어렵고 거래의 실질이 내국법인의 국외 특수관계자에 대한 이익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3조의2 각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자와 함께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보유하다가 보유비율에 상응하는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권리의 전부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행위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에서 정한 '자산의 무상이전'에 준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의2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

[적부-국세청-2022-0035, 2022.07.20.]

경제적 가치가 있는 쟁점콜옵션 행사자를 특수관계인으로 지정하면서 대가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쟁점콜옵션 가액은 조건부 권리 평가방법 등에 따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함

[적부-국세청-2023-0126, 2023. 12. 06.]

경제적 가치가 있고 양도가능한 자산인 쟁점콜옵션 행사자를 특수관계인으로 지정하면서 대가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나, 쟁점콜옵션의 가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적부-국세청-2023-0075, 2023. 12. 20.]

이 건 콜옵션의 시가를 콜옵션행사를 공문으로 통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Thank you

PKF Seohyun is a member of PKF Global, the network of member firms of PKF International Limited,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and does not accept any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the actions or inactions of any individual member or correspondent firm(s).

PKF 서현회계법인

제 7 분과

대학원 석박사과정 세션

장소 : 324호 사회자 : **유지선 교수** (국민대)

시 간	발표논문 제목	저자 및 발표자*	토론자
16:40 ~ 18:10	지방국세청 신설이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최민주*** (삼화회계법인)	**이지혜** (서울시립대)
	지역별 탈세제보율이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전소미*** (교보증권)	**이혜영** (서울대)
	산업별 유효세율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김병용*** (삼덕회계법인)	**곽 송** (서울시립대)
	부정적 언론보도가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이선호*** (현대오토에버)	**김묘정** (서울시립대)

지방국세청 신설이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최 민 주
(삼화회계법인)

지방국세청 신설이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최민주*

〈요 약〉

국세청은 인천지방국세청 신설로 안정적 세수확보 및 세원관리 강화효과를 기대하지만, 일부에서는 단순한 조직규모 확대로 끝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신설전후로 인근기업의 조세회피 행태 변화를 통해 인천지방국세청 신설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은 감독기관과 기업들의 지리적 근접성을 향상시킨다. 이는 감독효율성을 상승시켜 궁극적으로 조세회피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반대로 기업들 역시 감독동향이나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조세회피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존재한다. Kubick et al.(2017)은 거리적 근접성이 가져오는 상반된 효과 중 어느 요소가 더 크게 작용할 지는 감독기관의 전문성에 달려있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이라는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사건전후의 기업들의 유효세율을 비교하는 이중차분법을 사용하였다. 기존 중부지방국세청 관할지역에서 인천지방국세청 관할로 변경된 인천과 경기서북부, 강원도 철원지역의 기업들을 처리집단, 변동이 없는 경기도 남부 및 강원도지역의 기업들을 통제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인천지방국세청이 개청된 2019년부터 이후 2022년까지 총4개년을 Post=1 집단으로, 이전 4개년(2015년-2018년)을 Post=0집단으로 처리하였다. 인천지방국세청 신설 전 처리집단과 통제집단의 유효세율 차이와 신설 후 유효세율 차이를 차감하여 이중차분값을 계산하였다. 조세회피추정치로는 국내외선행논문에서 많이 사용되는 Cash ETR, Gaap ETR을 적용하였으며, 21,700개의 기업-연도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비상장기업에서 Cash ETR, Gaap ETR 모두 통계적으로 5% 유의한 수준에서 음(-)의 값이 제시되었다. 성향점수기법을 통해 처리집단과 통제집단을 1 : 1로 대응시킨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값이 제시되었다. 이는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이후에 비상장기업의 유효세율이 낮아졌다는 의미이고, 이전보다 조세회피가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Kubick et al.(2017)의 선행논문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아직까지는 감독기관의 전문성이 미흡하여 기업이 감독기관보다 정보의 우위성을 선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상장기업에서는 계수값이 거의 0에 수렴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는데 이는 명성비용과 같은 비조세비용등으로 인하여 상장기업은 행동에 제한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이 기업의 조세회피를 억제하거나 통제하는 효과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이러한 결과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세공무원의 숙련도가 향상되고, 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이 강화된다면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논문은 다음의 측면에서 공헌점을 지닌다. 첫째, 이중차분법 및 거리변수를 통해 지방국세청 신설이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선행논문과 차별점을 갖는다. 둘째, Kubick et al.(2017)의 미국논문결과가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

* 한국공인회계사, 삼화회계법인, choimj225@gmail.com, 주저자

다는 점에서 경험적인 의의가 있다. 셋째, 기업의 조세회피에 국세공무원들의 전문성의 중요함을 피력하고, 향후 지방국세청의 개선방안과 관련해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대상기간동안 코로나19의 영향이 존재한다는 점, 자료수집의 한계로 연구대상기간 동안의 본점이동내역을 파악할 수 없었다는 점, 조세회피측정치의 본질적인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어 해석에 주의를 요하는 바이다.

<주제어> 지방국세청, 조세회피, 지리적 근접성, 전문성

Ⅰ. 서 론

2019년 4월 3일 인천지방국세청이 개청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으로 통합된 지 20년 만이다. 인천권, 경기 북부권의 인구증가와 송도, 청라 등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경제 규모 확대에 따라 세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방국세청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인천지방국세청 신설로 인하여 지역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납세자권리를 보호하고 향상시킬 수 있게 된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한다.[1)]

국세청에서는 인천지방국세청 신설로 인하여 행정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납세편의가 개선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세수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관점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단순히 조직의 규모의 확대, 국세청 내 인사적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심도 제기된다.[2)] 이에 본 연구는 인천지방국세청 신설 이후 인근 기업의 조세회피 행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만약 인천지방국세청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다면, 인근 기업들의 조세회피 경향이 감소하는 등의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야 할 것이다. 이러한 효과는 감독기관과 기업들의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짐에 따라 감독기관이 정보 우위를 점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이전보다 감독 효율성이 향상되기 때문일 것이다. Audretsch and Feldman(1996)은 지리적 근접성이 정보획득을 조장하여 투자가, 분석가, 규제담당자와 같이 기업을 관찰하는 외부인들의 의사결정을 향상시킨다고 주장하였다. Kedia and Rajgopa(2011)은 규제담당자들과 관련해서 기업들이 재무제표 재작성을 공표한 후에 SEC는 그들의 사무실과 가까운 곳에 있는 기업들을 더 많이 조사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감독기관과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정보접근비용과 정보의 불안정성이

1) “20년만의 개청 … ‘인천지방국세청’ … ”지역경제 성장동력 극대화 힘쓸 것”. 세정일보. 2019.04.03.
2) “기대감은 부풀어 있지만 … 점점 멀어지는 인천국세청 신설”. 세정일보. 2017.7.27.

낮아지고 감독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향상되기 때문에 기업이 이전보다 조세회피 행동에 제약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반대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존재한다. Kubick et al.(2017)에 따르면 감독기관과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전반적인 조세회피가 증가하는데 이는 정보우위를 기업들이 선점하여 효과적인 세무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다만 선행연구의 주장은 감독기관의 전문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기각된다. 이를 인천지방국세청의 사례에 적용하면 신설 이후로 전반적인 조세회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이유는 인천지방국세청의 경우에는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신입직원이 다수이고 경력직원의 비율이 낮기 때문에 전문성이 완전히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리적 근접성의 효과가 조세회피 감소에 기여하지 않고 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Katz and Kahn(1978)에서는 구성원들은 새로운 조직환경에서 변화와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을 느끼게 되고 조직 내 업무분장, 분위기, 업무스타일, 승진 등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는 구성원들은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이라 주장한다. 이러한 역할 모호성이나 역할갈등이 높을수록 직원의 스트레스와 불안이 증가하며 이는 조직의 효율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은 조직구조론 관점에서 업무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더불어 기업의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다양한 관점에서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이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귀무가설의 형태로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이중차분법 실증분석 결과 상장기업에서는 인천지방국세청 신설효과를 찾지 못하였지만, 비상장기업에서는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이후로 기업의 조세회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ubick et al.(2017)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지리적 근접성이 가까워질수록 감독기관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정보획득이 수월해지는 데, 현재로서는 감독기관의 전문성이 아직 충분하지 않아 기업들이 정보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이 기업의 조세회피를 통제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국세공무원의 숙련도가 향상되고, 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이 강화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더불어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은 그 자체로 지역 실정에 맞는 세정서비스 제공과 납세자권리 향상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측면에서 공헌점을 지닌다. 첫째, 이중차분법 및 거리변수를 통해 지방국세청 신설이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선행논문과 차별점을 갖는다. 둘째, Kubick et al.(2017)의 미국논문결과가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경험적인 의의가 있다. 셋째, 기업의 조세회피에 국세공무원들의 전문

성의 중요함을 피력하고, 향후 지방국세청의 개선방안과 관련해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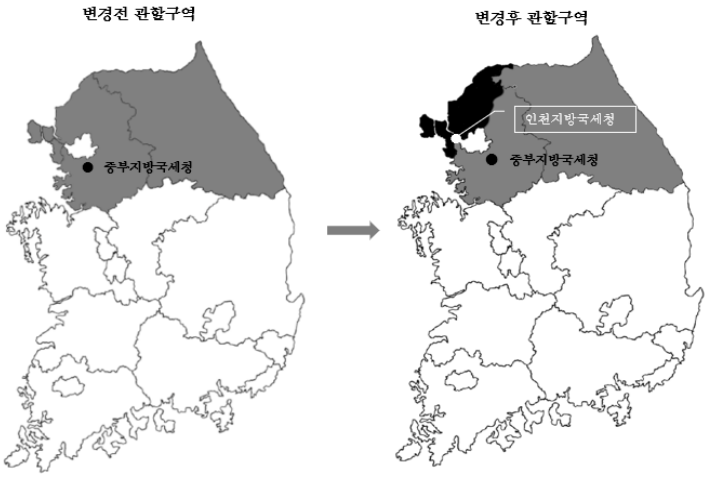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Ⅱ장에서는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가설을 설정하고, 제Ⅲ장에서는 표본과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제Ⅳ장에서는 실증분석 및 추가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제Ⅴ장에서는 결과 및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Ⅱ. 연구의 배경 및 선행연구검토

1. 지리적근접성에 대한 연구

기존 중부지방국세청청은 경기지역과 인천지역, 강원지역 전반에 걸쳐 있는 세무서를 모두 관할하였다. 따라서 6개 지방청 중 산하 세무서 수가 가장 많고 세원관리 지역도 넓어 관리가 어려웠다. 인천지방국세청 신설로 인하여 아래 <그림 1>과 같이 관할구역 및 관할세무서가 편제되었으며 국세청은 기존 6개의 지방국세청 체제에서 7개의 지방국세청 체제로 확대개편되었다.

〈그림 1〉 인천지방국세청 신설 이전, 이후 관할구역[3)]



3) 신설이후 각 지방국세청별 관할세무서
① 중부지방국세청 : 25개 세무서(안양, 동안양, 안산, 동안산, 수원, 동수원, 화성, 동화성, 평택, 성남, 분당, 이천, 경기광주, 남양주, 구리, 시흥, 요인, 기흥, 춘천, 홍천, 원주, 영월, 삼척, 강릉, 속초)
② 인천지방국세청 : 15개 세무서(인천, 부평, 계양, 서인천, 남동, 연수, 김포, 부천, 남부천, 광명, 의정부, 포천(동두천), 고양, 동고양, 파주)

<그림 1>에서 같이 중부지방국세청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인천지방국세청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자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대표적인 관할구역 중심지와 지방국세청과의 직선거리에 대한 변화는 아래 <표 1>과 같다. 이러한 지리적 근접성의 변화는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북부지역에 위치한 기업들에게 심리적 변화를 야기한다.

〈표 1〉 관할구청과 지방국세청까지의 직선거리

관할구역	직선거리(km)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거리변동분
인천 남동구청	27.47	2.31	25.16 ↓
인천 강화군	65.67	38.19	27.48 ↓
인천 부평구청	32.20	6.42	25.78 ↓
경기 김포시청	41.59	18.42	23.17 ↓
경기 파주시청	53.15	34.90	18.25 ↓

출처 : https://www.google.co.kr/maps

국내연구로 남혜정과 최종학(2010)에 따르면 기업의 본사위치가 서울 및 경기지역에 위치할수록 이러한 기업을 분석하는 재무분석가의 수가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익예측치 역시 낙관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기업과 재무분석가의 지리적 근접성이 재무분석가의 분석대상 기업선정과 이익예측치 특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명건・박우진(2017)에 따르면 정보수요가 크고, 감독기관의 감독용이성이 큰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이 스스로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를 만들고자 실제이익조정을 감소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Malloy(2005)은 분석가들이 가까운 기업에 대해서 더 잘 예측하고 그들이 다른 분석가에 비하여 정보우월성을 가지며, 이러한 정확도는 소도시나 외딴지역에 위치한 기업에서 더욱 우수하다고 제시하였다. Ivkovic and Weisbenner(2005)는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어음할인 중개투자의 대규모 포본을 이용하여 가계들이 지역투자에 대한 강한 선호를 보였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성향은 우월한 정보획득력에서 기인한 것으로 비S&P500주식중에서 지역주식들이 높은 연간수익률을 올리는 결론을 가져왔다. Coval and Moskowitz(1999) 역시 미국 뮤츄얼펀드 매니저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현지주식에 대한 강한 선호도를 보인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French and Poterba(1991)에 따르면 국제적 분산투자로 인한 상당한 이익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국내주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이러한 연구에 따르면 지역편향은 주로 투자자와

원거리 투자자간의 정보비대칭에 의해 주도된다고 주장한다. 기업의 인근에 위치한 투자자 및 애널리스트가 정보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우위를 통해 우수한 수익률을 달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리적 근접성은 기업지배구조 및 인수과정에도 명확한 연관성이 존재한다. 구매자들은 근접한 목표기업들을 선호하고 취득이후에도 더 적극적으로 경영활동에 참여한다. 이러한 선호현상은 지리적으로 가까울수록 효과적인 감시가 가능하고 관리비용을 절감할수 있으며, 인수자와 매수자간의 신뢰관계가 강화될수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Kang and Kim, 2008).

지리적 근접성은 피감시자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SEC사무실 근처에 있는 기업들이 왜곡보고에 덜 참여하는 경향이 있지만 기업들과 SEC관계는 독립적인 감사인의 개입으로 복잡해진다는 것을 발견했다(Kedia and Rajgopal, 2011). 실망스러운 수익률을 마주한 관리자들이 주주총회를 거리가 먼 곳에서 개최한다는 빈도가 높은데 이는 장소가 멀어질수록 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더 많은 이동시간을 보내야 하고, 참석이 어려워지므로 관리자들에게 질책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이다(Li and Yermack, 2014). 감시자가 피감시자와 보다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감사인이 재무적으로 어려운 기업에게 계속기업의심보고를 발행할 가능성은 낮아지는데, 이는 Non Big4 회계법인에서 동일한 결과를 가져왔고, 일부 감사인들은 그들이 SEC 제재위험이 낮다고 인식하면 그들의 독립성을 타협한다고 주장하였다(DeFond et al. 2015). 이러한 논문들은 감시자가 더 멀리있는 경우에는 피감시자들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체로 선행연구들은 지리적 근접성이 의사결정자들 간의 정보비대칭을 완화시키고, 감시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제시한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에 따르면 납세자들은 감독기관과 멀어질수록 더 공격적인 세무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이러한 가정의 근거는 지리적 근접성이 멀어질수록 정보비대치성으로 인해 정보획득에 어려움을 얻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거를 당해 연구에 적용해보면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은 거리적근접성이 가까워지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인천 및 경기북부지역 기업들은 이전보다 보수적인 세무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유효세율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지리적 근접성이 조세회피와 관련성이 없거나 오히려 음(−)의 관계를 가진다고 주장하는 논문도 존재한다. Beck 외(2015)는 소규모사무실과 가까운 대형사무실간 물리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소규모 사무실의 감사품질이 저하된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물리적 거리증가로 인해 지식 및 자원공유 감소가 감사품질에 영향을 준다는 설명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지는 못하였다. Brown(2011)은 특정한 절세수단의 사용은 지리적 기반으로 확산 된다는 주장에 약한 증거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경영자모임과 같은 지역기반의 오프라인모임도 존재하지만 온라인채널을 통한 SNS, 메일, 화상미팅 등 통신의 발달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더 많은 방법이 발달됨

에 따라 물리적 거리와 상관없이 정보공유가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감독기관과의 거리가 조세회피와 중요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지리적 근접성은 기업의 납세순응[4]의 크기도 변동시키는데, 그 이유는 정보우위가 납세자에게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감독기관과의 근접성은 납세자에게도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며, 이는 감독기관이 가지는 이점을 상회할 수도 있다. 납세자가 얻게 되는 지역 지식은 대체로 지방국세청 조사요원의 경험과 조사기술, 업무성향, 가치관 등의 정보를 포함하는데 기업의 세무조사에 작용하기도 하고 동일한 지역 경영자들에게 공유되기도 한다. 즉 지리적 근접성이 가까운 기업일수록 먼 기업보다 감독기관에 대하여 더 많고 유용한 정보를 가지며 이는 이를 이용하여 더욱 공격적인 세무계획을 세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

Kubick et al.(2017)에서도 기업 본사와 IRS 지역사무국 간 지리적 근접성이 가까워질수록 조세회피수준이 높아지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IRS 지역사무국 근처에 소재하는 기업들은 과세관청의 우선순위와 관심사항을 잘 알 수 있으므로 세무조사 가능성이 낮은 영역들을 파악하여 이를 통해 조세전략을 수립하기 때문에 조세회피의 증가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감독기관의 전문성이 높을 경우 상쇄된다.

2. 인천지방국세청 연혁 및 조직구조론에 대한 연구

과거 중부지방국세청은 경인지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2012년 4월 조사4국(인천별관)을 설치하였고, 조직강화차원에서 2017년 1월 조사4국에 납세자보호2담당관실 등을 추가하였다. 다만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세수증가로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이 절실해졌으며, 2019년 4월 인천지방국세청 개청이 확정되고 아래와 같이 인력구성이 증원, 개편되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납세지원분야 인력이 177명이나 증가하여 성실납세 지원을 강화할 기판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한다(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보고서 업무현황보고서 2019). 지방청 산하에 있던 일개 1개의 국에서 지방청 규모로 확장되면서, 인원이 2배이상 증가하였으며 기존의 조사분야와 납세자보호부서가 확장되었으며 추가적으로 감사관, 성실납세지원국(개인납세1, 개인납세2, 법인납세, 전산관리과), 체납자재산추적과가 신설[5]되었다. 조사나 제제중심보다는 납세자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성실납세지원국이 신설됨에 따라 자발적인 성실납세가 유도되고 납세편의성이 증진되었을 것으로 파악된다.

---

4) 납세순응이란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지 않고 성실하게 조세를 납세하고자 하는 행동이나 태도를 의미한다(임영규, 2012).

5) 신설된 분야의 자세한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부록에 기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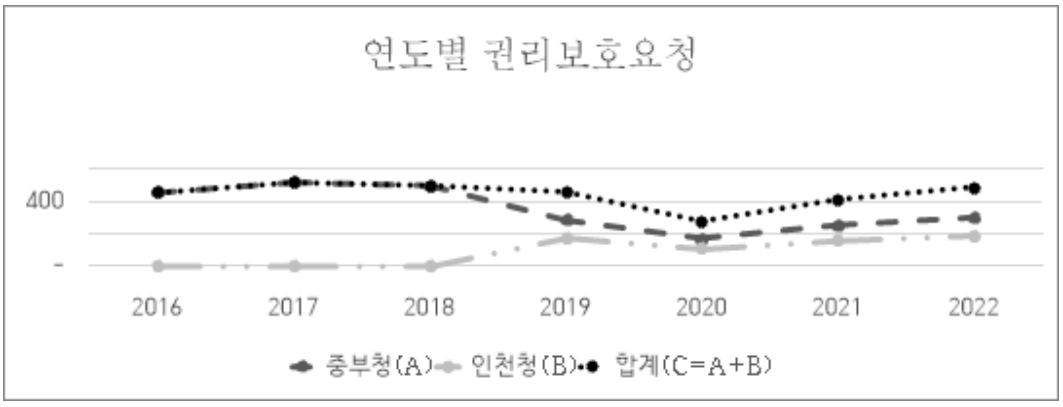
〈표 2〉 인천지방국세청 이후 인력개편현황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관할 (2018년 12월기준)			인천지방국세청 (2019년 12월 기준)	
부서	정원		부서	정원
징세송무과	18명		성실납세국	96명
조사1과	36명	→	징세송무국	51명
조사2과	56명		조사1국	96명
조사3과	55명		조사2국	70명
기타(운영,납세자보호)	16명		기타(운영, 감사, 납세자보호)	64명
전체	181명		전체	377명

출처 : 삼일아이닷컴 세무인명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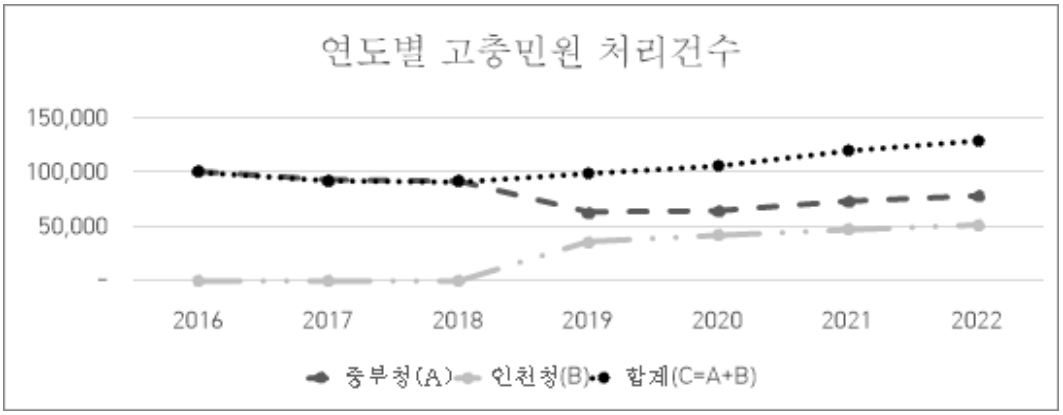
실제로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인천지방국세청 신설로 인하여 연도별 고충민원 처리건수 및 연도별 권리보호요청 시정 건수가 기존 중부지방국세청만 존재할 당시와 비교하여 소폭 상승하였다.

〈그림 2〉 연도별 고충민원[6] 처리건수 및 권리보호요청(일반)[7] 시정건수



6) 고충민원 처리실적이란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에 대해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접수하여 처리하는 제도를 의미함.

7) 권리보호요청 처리실적이란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관할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를 의미함.



출처 : TASIS 국세통계포털 국세통계표

이를 통해 납세자들의 권리가 보호되고 취약계층에게 이전보다 더 나은 세정지원서비스가 제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천청 신설로 인하여 단순한 세수확보 이외에 납세자들과의 소통증대를 통해 공감을 이끌어내고 신뢰관계를 구축할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부지방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을 제외하고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세수와 인구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1급 지방청으로 분류되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고위공무원 가급에 해당한다.[8] 반면 인천지방국세청은 서울, 중부, 부산청에 이어 네 번째로 큰 규모의 지방국세청이며 대구, 광주 등과 비슷한 세수를 확보하고 있다.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중부지방국세청장보다 한 단계 낮은 2급 지방청으로 고위공무원 나급에 해당한다. 통상적으로 국세청은 산하지방청을 1급지방청, 2급지방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1급 지방청의 경우 더 많은 세무공무원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만이 1

8)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지방국세청)
① 서울지방국세청장·중부지방국세청장 및 부산지방국세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인천지방국세청장·대전지방국세청장·광주지방국세청장 및 대구지방국세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지방국세청에 운영지원과·성실납세지원국·징세송무국·조사1국 및 조사2국을 두고, 지방국세청장 밑에 감사관 1명 및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을 각각 둔다. 다만,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서울청"이라 한다)에는 운영지원과·성실납세지원국·송무국·조사1국·조사2국·조사3국·조사4국 및 국제거래조사국을 두고, 청장 밑에 감사관 1명·징세관 1명·납세자보호담당관 1명 및 과학조사담당관 1명을 각각 두며, 중부지방국세청(이하 "중부청"이라 한다)에는 운영지원과·성실납세지원국·징세송무국·조사1국·조사2국 및 조사3국을 두고, 청장 밑에 감사관 1명 및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을 각각 둔다.

급지로 구분되어 있다. 국세청이 국정감사시 제출한 업무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9월자로 인천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은 주된 차이는 아래와 같다.

〈표 3〉 중부지방국세청과 인천지방국세청 차이비교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비고
조직구성	5국 18과 1팀	4국 16과 1팀	
세수실적	616,586	217,247	2022년기준 (단위 : 억원)
	지방청 중 2위	지방청 중 4위	
관할세무서	25개서, 3개지서 (1급지 21, 2급지 4)	15개서, 1개지서 (1급지 15)	
국세공무원수	3,582명	2,259명	휴직등을 제외한 현원기준
직원현황 : 5급이상 / 6급이하	274명 (8%) / 3,308명 (92%)	116명 (5%) / 2,143명 (95%)	
직원현황 : 6급이하 중 경력5년미만	3,308중 898명 (27%)	2,143 중 694명 (32%)	관리운영직 포함

출처 :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보고서 업무현황보고서.

상기 <표 3>과 같이, 인천지방국세청은 중부지방국세청은 외형부터 크게 차이가 발생하고 인사적으로도 고위간부들이 적고 경력기간이 5년미만인 공무원이 더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022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지방국세청의 경우 5년미만 근무 공무원이 다른 곳에 비하여 10%정도 높은 수준이며, 퇴직률도 굉장히 높으므로 효율적인 업무를 위하여 직원들의 역량 향상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표 4>에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인천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 소속된 국세공무원 중 경력 5년 미만 6급이하 직원수를 전체근무 직원수로 나누어 비율을 계산하였다. 2023년까지 비율 차이가 점차 나아지는 추세를 보이지만 개청 초기에는 중부청과 거의 11%(=42%−31%)까지 경력직 비율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5년미만 경력을 보유한 국세공무원 수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인천청	6급이하	795	731	713	637	683
	전체	1,915	1,948	2,016	2,014	2,089
	비율	42%	38%	35%	32%	33%
중부청	6급이하	928	824	822	761	882
	전체	2,968	2,973	3,128	3,061	3,203
	비율	31%	28%	26%	25%	28%

출처 :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보고서 업무현황보고서.

일반적으로 행정관료 조직은 위계문화가 가장 부각되는 조직이다. 김호정(2002)은 행정조직에서 어떠한 조직문화가 조직효과성을 향상시키는지 연구하였으며 공무원의 조직몰입과 직무만족 향상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집단문화와 발전문화이며 이를 위해 인간중심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이 강조하며 조직구조의 경직성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새로운 행정조직의 수장은 조직의 성공적인 출범과 안정화를 최우선의 목표로 삼을 것이다. Pfeffer(1992)역시 수장이 조직 내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를 잘 구축하는 것이 조직의 성과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조직의 초기출범 단계인만큼 인천지방국세청은 세수예산 확보보다는 내부적으로 부서간 협력을 강화하고 외부적으로는 지역사회 및 납세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한편 정홍준, 최용득, 이동섭(2023)에 따르면 구성원들의 변화에 대한 저항은 직무스트레스와 양의 관계를 가지며, 이는 조직변화에 따른 개인의 심리적 상태가 직무스트레스를 유발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구성원들은 전반적인 업무 프로세스의 변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된 압박감과 불안감을 느끼며 변화 이전에 비해 조직에 대한 애착이나 소속감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조직은 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에게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변화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하여 구성원이 느끼게 될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장은미(1997) 역시 경력에 대한 몰입 정도가 이직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종업원들은 조직에 대한 몰입정도가 감소할수록 이직을 하게 되는데, 그 정도는 경력에 대한 몰입이 낮은 경우에 더욱 심각하게 나타났다. 개인들의 태도 및 행동을 설명하는데 개인의 경력이 지니는 중요성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류은영 · 류병곤(2012)에 따르면 조직구조와 직무만족간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며, 특히 공조직이 사조직에 비해 조직몰입의 매개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직에 대한 규범성, 충성심, 일체감 등의 태도와 밀접한 조직몰입을 동기부여할수록 구성원의 직무만족도가 개선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역으로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면 직무만족도가 하락함을 의미한다.

조경호(1993)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문화적 상황에서 공직에 대한 긍정적이미지는 공무원 자신들의 명예의식을 제고시켜, 결국 그들의 조직몰입도를 진작시킨다. 사조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적, 제도적으로 경직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공무원들은 융통성과 현실성이 결여된 성과에 상응하는 보수나 승진체계를 맹신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조직내의 온정적 분위기 속에서 일하는 기분이 들며 공무원으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라는 인식이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Kotter(1996) 역시 새로운 조직은 변화를 받아들이고 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리더는 이러한 변화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야하고 구성원들이 변화에 반감을 갖지 않도록 도와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변화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조직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직행동론 관점에서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은 국세공무원에게 새로운 지역 및 조직분위기 적응과정에 대한 압박감과 불안감을 야기시키고 직무스트레스를 고조시킨다. 증가된 직무스트레스는 업무비효율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우에는 이직이나 퇴사로 이어질 수 있다. 즉, 조직구성원 각자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고, 업무분장이 모호하다면 이러한 조직변화가 업무의 비효율성을 가져올 것은 저명해 보인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지방국세청이 신설됨에 따라, 감독기관과 기업의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지는 이점이 발생한다. 거리가 가까워지면 납세편의향상과 더불어 지방국세청이 납세자들의 정보를 보다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고, 이는 감독효율성을 동반상승시켜 궁극적으로 조세회피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대로 기업들 역시 지방국세청이 가까워짐에 따라 감독동향이나 내부정보를 보다 잘 파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Kubick et al.(2017)에 따르면 이러한 두 가지 상반된 효과 중 어느 부분이 더 크게 작용할 지는 감독기관의 전문성에 달려 있다. 국세공무원의 경험과 숙련도는 정보우위를 누가 선점하는지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이(지리적근접성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혼잡해 있으므로, 귀무가설 형태로 가설을 기술하였다.

가설 :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은 기업의 조세회피와 무관하다.

Ⅲ. 연구의 설계

1. 모형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이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 모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기업의 조세회피 측정치(TAV)로 국내외선행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1) Cash ETR과 (2) Gaap ETR 두가지를 사용하여 종속변수를 설정하였다. 유효법인세율은 손익계산서를 통해 바로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Cash ETR은 이연법인세자산의 변화에 대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현금기준으로 인식함에 따라 세무조사 등의 다른 결산기간의 납부세액까지 당기결산의 세액으로 인식되는 단점이 존재한다(최보람 2012). 각 종속변수가 작을(클)수록 조세회피 경향이 증가(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begin{aligned}\mathbf{TAV}_{i,t} = {} & \alpha_0 + \beta_1 \mathbf{Treat}_i + \beta_2 \mathbf{Post}_t + \beta_3 (\mathbf{Treat}_i \times \mathbf{Post}_t) + \beta_4 \mathbf{SIZE}_{it} + \beta_5 \mathbf{ROA}_{it} + \beta_6 \mathbf{LEV}_{it} + \beta_7 \mathbf{CAP}_{it} \\ & + \beta_8 \mathbf{INTAN}_{it} + \beta_9 \mathbf{OCF}_{it} + \beta_{10} \mathbf{RE}_{it} + \beta_{11} \mathbf{CR}_{it} + \beta_{12} \mathbf{TAT}_{it} + \beta_{13} \mathbf{BIG4}_{it} \\ & + \sum \mathbf{YEAR} + \sum \mathbf{INDUS} + \varepsilon_{it} \end{aligned} \quad \textbf{(1)}$$

여기서 i는 기업, t는 시점을 의미하며 각 통제변수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SIZE	: 기말 총자산의 자연로그값
ROA	: 당기순이익/기말총자산
LEV	: 부채비율(기말총부채/기말총자산)
CAP	: 기말유형자산/기말총자산
INTAN	: 기말무형자산/기말총자산
OCF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기말총자산
RE	: 기말 이익잉여금/기말총자산
CR	: 기말 유동자산/기말 유동부채
TAT	: 매출액/기말총자산
BIG4	: 대형회계법인(삼일,안진,한영,삼정) 감사대상 법인이면 1, 그렇지않으면 0
YEAR	: 연도 더미
IND	: 산업 더미
ϵ	: 오차항

본 연구의 주요관심변수는 인천지방국세청 신설 이후의 조세회피 변동치를 보여주는 β_3 계수값으로, 해당 값이 양수이면 신설이후로 유효세율 격차가 작아졌다는 의미이므로 기업이 낮은 조세회피수준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고 해당값이 음수이면 신설이후로 격차가 커졌다는 의미이므로 기업이 높은 조세회피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힌다. Gaap ETR은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을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으로 나누어 산출하였고, 현금납부세액[9]은 법인세비용차감

전순이익으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식(1)에 포함되어 있는 통제변수는 국내,외논문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업의 총 자산(SIZE), 부채비율(LEV), 총자산이익률(ROA), 유형자산비율(CAP), 무형자산비율(INTAN), 영업현금흐름비율(CFO), 이익잉여금비율(RE), 유동비율(CR), 총자산회전율(TAT), 대형회계법인감사여부(BIG4＝1) 등을 반영하였다. 그리고 각 통제변수의 극단치는 1%에 해당하는 값으로 조정(Winsorization) 하였다. 그 외 업종별, 연도별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산업 더미변수 및 연도 더미변수를 모형에 포함하였고, 산언별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를 기준으로 하였다.

김진희와 정재욱(2006)에 따르면 기업규모의 차이에 따라 기업의 조세회피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극단치를 조정하고 정규분포화를 위해 총 자산(SIZE)에 자연로그값을 취하여 기업 규모를 통제하였다. 누진세율 구조하에서 수익성이 좋을수록,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조세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상승할 것이기에 총자산이익률(ROA)을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박종국과 홍영은 2009 ; 배성호와 오광욱 2016). 한편 기업은 이자비용 및 감가상각비를 통해 회계상 이익을 조절할 수 있으며, 이는 법인세신고 과정상 실질적으로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부채비율(LEV)과 유형자산비율(CAP). 무형자산비율(INTAN)에 대하여 통제변수를 설정하였다(Hoopes et al. 2012). 이익잉여금이 많은 회사일수록 보유한 이월결손금이 낮기 때문에 부담세율이 높아 조세회피를 하려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이익잉여금비율(RE)을 통제변수에 포함시켰다. 법인세 납부는 실제 기업의 현금을 사외로 유출시키기 때문에 유동비율이 낮은 기업일수록 법인세 납부액을 낮추려는 유인이 클 것으로 예상하여 유동비율(CR)을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 총자산대비 매출회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운영이 순조롭고, 수익률이 높다는 의미이므로 조세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총자산회전율(TAT) 변수를 추가하였다. 대형회계법인에게 감사를 받을수록 감사품질이 상승하고 내부통제가 잘 구축되어있기 때문에, 조세회피에 대한 행동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아 대형회계법인감사여부(BIG4＝1) 역시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박미영 2012). 마지막으로 연도별, 산업별로 거시적이고 고유한 특성이 조세회피에 미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를 고정효과를 반영하였다.

2. 표본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인천지방국세청 신설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신설이전 4개년(2015년~2018년), 신설이후 4개년 (2019년~2022년)의 사업연도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기간은 2015년부터 2022년

9) 개별기업들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차감납부세액은 공시되지않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에서 이연법인세자산, 부채 증감분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현금납부세액을 추정하였다.

까지이나, 현금유효세율 파악을 위해 이연법인세자산, 부채변동분을 확인해야 하는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TS－2000을 통해 2014년～2023년간의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표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수감 받는 회사 중 비상장기업(이하,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산업적 특성을 고려해 금융업 및 SPC 기업 등을 제외하였으며 결산 시점의 통일성을 위해 12월이 결산법인을 제외하였으며 당해 연구모형의 이중차분법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본점 주소지가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제외하였다. 종속변수로 활용한 Gaap ETR, Cash ETR이 음수(－)이거나 0인 경우를 제외하여 총 21,700개의 관측치를 최종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인천지방국세청 설립일은 2019년 4월로, 2019년 과세기간에 대한 법인세신고일은 2020년 3월 31일이다. 따라서 인천지방국세청 신설로 인한 기업의 조세회피행동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2019년은 신설효과를 받는 연도로 포함하였다. 따라서 2019년 결산연도 이후 기간은 Post＝1 (이전은 Post＝0)로 설정하였으며, 인천지방국세청 신설로 관할지방청이 변경된 인천광역시 및 경기서북부, 강원도 철원군에 대하여 처리집단(Treatment group)으로 보아 Treat＝1 (변동이 없는 경우는 Treat＝0, 통제집단(Control group))으로 처리하였다.

〈표 5〉 표본 선정 절차

표본선정기준	표본수
2014년부터 2023년 TS2000에서 자료가 조회되는 기업－년도	297,891
제외 :	
① 금융업 및 SPC 등 기업－년도	(80)
② 12월 외 결산 기업－년도	(3,646)
③ 표본기간동안 연속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년도	(174,465)
④ 본점의 주소지가 실험설계 대상의 범위가 아닌 표본	(82,770)
⑤ 이상치 제거(EBT, GAAP ETR, CASH ETR 음수 등)	(15,230)
최종 표본에 사용된 기업－년도	21,700

전체표본에서 처리집단은 34.2% 통제집단은 65.8%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도별, 산업별 분포는 아래 <표 6>과 같다. 이중차분법 모형을 적용하기 전에 처리집단과 통제집단간의 산업분표도를 보면 제조업이 1순위(각 64%, 63%)로 표본집단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순위로는 도매 및 소매업이 11%로 2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처리집단과 통제집단간의 산업별 분포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산업별 특성이 조세회피 측청치인 유효세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된다. 극단치를 제거함에 따라 연도별 표본갯수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으나, 처리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EBT) 음수값(코로나19영향)이 제거되면서 전반적으로 연도별 표본갯수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표 6〉 표본의 산업별, 연도별 분포현황

패널 A : 산업별 분포

산업	처리집단 (인천청 관할지역)		통제집단 (중부청 관할지역)		전체	
	빈도수	백분율	빈도수	백분율	빈도수	백분율
농업, 임업 및 어업	7	0%	45	0%	52	0%
광업	41	1%	76	1%	117	1%
제조업	4,785	64%	8,973	63%	13,758	63%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77	1%	132	1%	209	1%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139	2%	202	1%	341	2%
건설업	471	6%	920	6%	1,391	6%
도매및 소매업	840	11%	1,556	11%	2,396	11%
운수 및 창고업	237	3%	523	4%	760	4%
숙박 및 음식점업	29	0%	127	1%	156	1%
정보통신업	109	1%	279	2%	388	2%
부동산업	389	5%	520	4%	909	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62	1%	306	2%	368	2%
사업시설 관리, 사원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28	0%	131	1%	159	1%
교육서비스업	–	0%	10	0%	10	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95	3%	404	3%	599	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22	0%	65	0%	87	0%
합계	7,431	100%	14,269	100%	21,700	100%

패널 B : 연도별 분포

연도	처리집단 (인천청 관할지역)		통제집단 (중부청 관할지역)		전체	
	빈도수	백분율	빈도수	백분율	빈도수	백분율
2015	951	13%	1,849	13%	2,800	13%
2016	994	13%	1,895	13%	2,889	13%
2017	962	13%	1,811	13%	2,773	13%
2018	954	13%	1,785	13%	2,739	13%
2019	899	12%	1,799	13%	2,698	12%
2020	882	12%	1,656	12%	2,538	12%
2021	897	12.%	1,770	12%	2,667	12%
2022	892	12%	1,704	12%	2,596	12%
합계	7,431	100%	14,269	100%	21,700	100%

Ⅳ. 실증분석 결과

1. 기술통계량

실증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은 <표 7>과 같다. 표본의 Cash ETR은 평균 17.8%, Gaap ETR은 17.5%으로 Cash ETR이 미세하게 더 높은 것으로 산출되었다. 표본기업의 총자산이익률(ROA)은 약 5.9%, 평균부채비율(LEV)은 51.7%였다. 산업별 분류표에서 제조업이 과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듯이, 유형자산비율(CAP)은 평균 40.1%로 총 자산을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통제변수들의 평균값이 중간값보다 크다는 점에서 우측으로 꼬리가 긴 비대칭 분포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극단치에 대해서 1%수준에서 Winsorization반영하여 비대칭을 조절하였다.

〈표 7〉 기술통계량 (N=21,700)

Variables	Mean	Std.Dev	Min	P25	Median	P75	Max
Cash ETR	0.178	0.155	0.000	0.063	0.178	0.230	1.000
Gaap ETR	0.175	0.140	0.000	0.072	0.182	0.227	1.000
SIZE	17.424	0.839	16.124	16.820	17.247	17.847	20.438
ROA	0.059	0.060	0.001	0.017	0.040	0.080	0.325
LEV	0.517	0.242	0.043	0.331	0.537	0.693	1.156
CAP	0.401	0.258	0.000	0.192	0.392	0.590	0.971
INTAN	0.009	0.028	0.000	0.000	0.000	0.003	0.210
OCF	0.066	0.095	−0.209	0.014	0.058	0.113	0.404
RE	0.350	0.303	−0.701	0.152	0.332	0.568	0.940
CR	2.163	2.799	0.040	0.784	1.280	2.311	18.510
TAT	1.093	0.791	0.032	0.590	0.940	1.390	4.423
BIG4	0.109	0.312	0.000	0.000	0.000	0.000	1.000

<표 8>은 처리집단과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평균차이분석(T−test)한 결과를 제시한다. 회귀분석결과에 사용되는 통제변수들(Winsorization)의 다변량 분석결과 부채비율(LEV)은 각 0.519, 0.51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무형자산비율(INTAN)은 둘 다 0.00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반면 총 자산(SIZE), 총자산이익률(ROA), 유형자산비율(CAP), 영업현금흐름비율(CFO), 이익잉여금비율(RE), 유동비율(CR), 총자산회전율(TAT),

대형회계법인감사여부(BIG4=1)에서는 두 집단간의 평균차이가 유의적인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기술할 강건성검증에서 성향점수기법을 통해 통제변수간의 불균형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

〈표 8〉 다변량분석

Variables	처리집단 (인천청 관할지역)	통제집단 (중부청 관할지역)	t-value
	Mean	Mean	
SIZE	17.399	17.437	3.204***
ROA	0.057	0.059	2.162**
LEV	0.519	0.516	-1.146
CAP	0.412	0.396	-4.415***
INTAN	0.009	0.009	0.789
OCF	0.064	0.067	2.286**
RE	0.356	0.347	-2.197**
CR	2.112	2.186	1.658*
TAT	1.059	1.110	4.493***
BIG4	0.087	0.121	7.498***

주1) ***, **, *은 각각 1%, 5%, 10%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2. 상관관계

변수들 간의 Pearson 상관계수는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Cash ETR과 Gaap ETR는 SIZE(총 자산), OCF(영업현금흐름비율), CR(유동비율), TAT(총자산매출회전율), RE(이익잉여금비율), BIG4(대형회계법인감사여부) 등이 1% 수준에서 양(+)의 상관계수를 보이며 반대로 ROA(총자산이익률), LEV(부채비율), CAP(유형자산비율), INTAN(무형자산비율) 은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음(-)의 관계가 보인다. 이는 수익성이 좋거나, 부채비율이 높고,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비중이 높은 회사일수록 조세회피에 적극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편, 회귀모형에 포함된 통제변수들 간의 다중공산성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개별 통제변수의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ction factor, VIF)계산한 결과, 계수값은 모두 4이하의 값으로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통제변수들 간의 다중공산성이 회귀분석 결과를 왜곡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9〉 상관계수표 (N = 21,70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Cash ETR	1											
[2] Gaap ETR	0.869 ***	1										
[3] SIZE	0.186 ***	0.182 ***	1									
[4] ROA	−0.048 ***	−0.043 ***	0.065 ***	1								
[5] LEV	−0.010 ***	−0.106 ***	−0.140 ***	−0.307 ***	1							
[6] CAP	−0.118 ***	−0.118 ***	−0.094 ***	−0.259 ***	0.248 ***	1						
[7] INTAN	−0.065 ***	−0.065 ***	0.028 ***	−0.042 ***	0.090 ***	−0.101 ***	1					
[8] OCF	0.020 ***	0.022 ***	0.009	0.414 ***	−0.159 ***	−0.033 ***	0.037 ***	1				
[9] RE	0.156 ***	0.168 ***	0.085 ***	0.317 ***	−0.799 ***	−0.309 ***	−0.154 ***	0.159 ***	1			
[10] CR	0.037 ***	0.046 ***	0.075 ***	0.178 ***	−0.557 ***	−0.308 ***	−0.039 ***	0.075 ***	0.457 ***	1		
[11] TAT	0.089 ***	0.081 ***	−0.163 ***	0.140 ***	0.123 ***	−0.330 ***	−0.029 ***	0.121 ***	−0.029 ***	−0.121 ***	1	
[12] BIG4	0.104 ***	0.083 ***	0.327 ***	0.113 ***	−0.121 ***	−0.143 ***	0.1 ***	0.098 ***	0.006	0.063 ***	0.073 ***	1

1) *, **, ***은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2) 각 통제변수는 극단치를 1%수준에서 조정함(winsorization).

3. 회귀분석

<표 10>은 본 연구의 가설인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이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한 이중차분법 모형의 회귀분석 실증결과를 나타낸다.

이중차분법 모형에서 관심있는 변수는 β_3(Treat×Post) 계수값으로, 이중차분 인과효과로 인천지방국세청 신설 이후로 처리집단의 유효세율이 통제집단의 유효세율에 비하여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해서는 관심변수인 β_3 값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10〉 회귀분석결과

$$\mathbf{TAV}_{i,t} = \alpha_0 + \beta_1 \mathbf{Treat}_i + \beta_2 \mathbf{Post}_t + \beta_3 (\mathbf{Treat}_i \times \mathbf{Post}_t) + \beta_4 \mathbf{SIZE}_{it} + \beta_5 \mathbf{ROA}_{it} + \beta_6 \mathbf{LEV}_{it} + \beta_7 \mathbf{CAP}_{it} + \beta_8 \mathbf{INTAN}_{it} + \beta_9 \mathbf{OCF}_{it} + \beta_{10} \mathbf{RE}_{it} + \beta_{11} \mathbf{CR}_{it} + \beta_{12} \mathbf{TAT}_{it} + \beta_{13} \mathbf{BIG4}_{it} + \sum \mathbf{YEAR} + \sum \mathbf{INDUS} + \varepsilon_{it} \quad \textbf{(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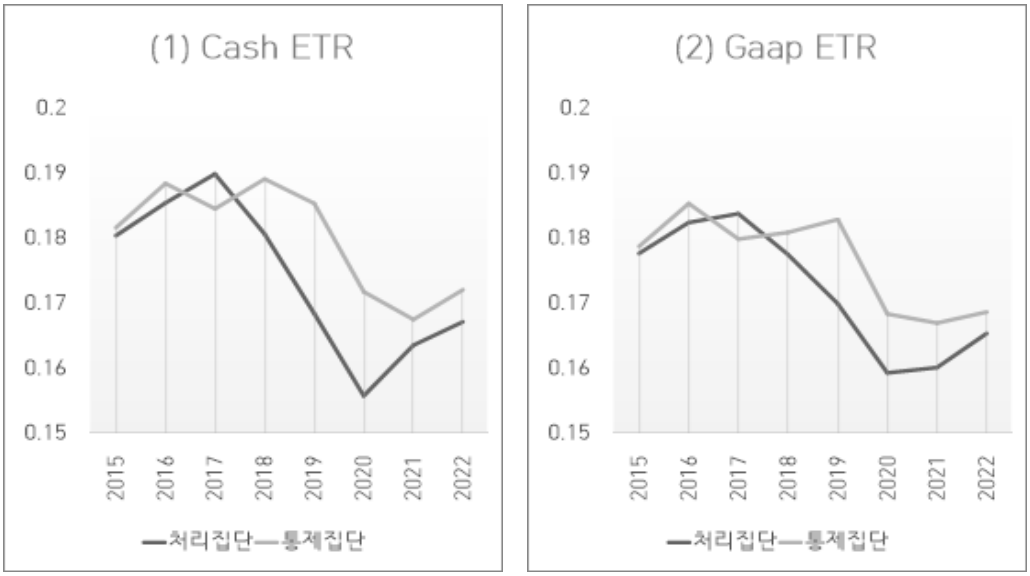
Variables	(1) 현금유효세율(Cash ETR)		(2) 유효세율(Gaap ETR)	
	Co−eff	t−stat	Co−eff	t−stat
Treat	−0.001	−0.23	−0.000	−0.17
POST	−0.017***	−4.11	−0.014***	−3.75
Treat×Post	−0.010**	−2.38	−0.008**	−2.21
SIZE	0.032***	23.43	0.029***	23.02
ROA	−0.451***	−22.87	−0.397***	−22.23
LEV	0.022***	2.87	0.024***	3.39
CAP	−0.040***	−7.61	−0.039***	−8.30
INTAT	−0.278***	−7.55	−0.222***	−6.64
OCF	0.068***	5.82	0.065***	6.10
RE	0.122***	20.87	0.118***	22.32
CR	−0.002***	−5.29	−0.002***	−4.86
TAT	0.020***	12.36	0.016***	11.19
BIG4	0.024***	6.63	0.014***	4.22
Constant	−0.398***	−12.44	−0.340***	−11.71
Fixed Effect	Industry and Year		Industry and Year	
Adj R^2	12.66%		12.63%	
N	21,700		21,700	

주1) ***, **, *은 각각 1%, 5%, 10%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1)열은 종속변수를 Cash ETR, (2)열은 종속변수를 Gaap ETR로 회귀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Post계수의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1% 수준에서 각각 −0.017, −0.014 음(−)의 계수값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2019년 이후로 비상장기업의 Cash ETR, Gaap ETR이 전반적으로 감소함을 의미한다. 기타 통제변수의 전반적인 방향은 선행연구와 유사하다.

β_3값은 통계적으로 5% 유의한 수준에서 각각 −0.01, −0.008의 음(−)의 값이 제시되었다. 이는 인천지방국세청 신설 이후에 처리집단의 Cash ETR, Gaap ETR이 낮아졌다는 의미이고, 이전보다 조세회피가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 Kubick et al.(2017)의 실증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해당 논문에 따르면 기업의 조세회피는 감독기관과 기업의 본사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기업의 조세회피가 증가하는데 이는 지리적 근접성이 감독기관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정보우위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림 3〉 처리집단과 통제집단의 연도별 Cash ETR, Gaap ETR 비교



<그림 3>은 처리집단과 통제집단의 연도별 Cash ETR, Gaap ETR 평균값 추세를 보여준다. 2019년 이후로 처리집단과 통제집단의 유효세율 격차의 폭이 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처리집단의 유효세율이 더 큰 폭으로 하락함을 확인할 수 있다.

위 결과를 종합해보면 처리집단의 기업들은 인천지방국세청 신설 이후로 유효세율이 감소하였고 이는 조세회피가 증가하였음을 나타낸다. 인천지방국세청이 신설되기 전보다 신설된 이후에 처리집단의 조세회피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는 본 연구의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결과이다.

한편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인천지방국세청 신설로 인해 기업이 정보적 우위를 점하게 되고 이를 이용하여 조세회피방안을 잘 설정한 결과일지도 모르지만, 조직행동론 관점에서 행정조직의 신설효과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 앞서 연구배경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인천지방국세청은 신입국세공무원의 비중이 많고 경력직의 비중이 낮을뿐더러 출범초기단계로 행정시스템이나 조직체계가 완전히 정립되지 않아 업무적 비효율성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가분석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4. 강건성 및 추가분석

가. 성향점수기법(Propensity Score Matching)

보다 세밀한 분석을 위해 PSM 비복원추출 방법을 이용하여 처리집단과 비슷한 총 자산(SIZE), 유형자산비율(CAP), 총자산회전율(TAT) 등 재무적 특성이 유사한 통제 집단을 1 : 1 로 대응하여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이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 분석하였다.

(1)열은 종속변수가 Cash ETR, (2)열은 종속변수가 Gaap ETR인 경우의 회귀분석 결과값을 제시하는데, β_3값은 −0.011, −0.01 으로 통계적으로 5% 유의적인 수준에서 여전히 음(−)의 계수값을 나타낸다. 이는 <표 10>의 값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표 11〉 PSM 1 : 1 추출방법

패널 A : PSM 다변량분석

Variables	처리집단 (인천청 관할지역)	통제집단 (중부청 관할지역)	t−value
SIZE	17.399	17.403	−0.363
ROA	0.057	0.058	−0.914
LEV	0.519	0.516	0.836
CAP	0.412	0.409	0.771
INTAN	0.009	0.009	−0.170
OCF	0.064	0.067	−1.848*
RE	0.356	0.347	1.852*
CR	2.120	2.159	−0.859
TAT	1.060	1.061	−0.132
BIG4	0.872	0.109	−4.496***

〈표 11〉 PSM 1 : 1 추출방법 (계속)

패널 B : PSM 회귀분석결과

Variables	(1) 현금유효세율(Cash ETR)		(2) 유효세율(Gaap ETR)	
	Co−eff	t−stat	Co−eff	t−stat
Treat	0.001	0.29	0.001	0.31
Post	−0.015***	−2.83	−0.011**	−2.28
Treat×Post	−0.011**	−2.25	−0.010**	−2.35
SIZE	0.030***	18.01	0.028***	18.29
ROA	−0.444***	−18.80	−0.394***	−18.20
LEV	0.014	1.54	0.020**	2.36
CAP	−0.042***	−6.82	−0.040***	−6.98
INTAT	−0.319***	−7.25	−0.263***	−6.50
OCF	0.071***	5.05	0.068***	5.27
RE	0.119***	16.70	0.119***	18.15
CR	−0.002***	−4.03	−0.002***	−3.84
TAT	0.021***	10.48	0.018***	10.11
BIG4	0.028***	6.17	0.017***	4.06
Constant	−0.349***	−9.12	−0.318***	−9.05
Fixed Effect	Industry and Year		Industry and Year	
Adj R^2	12.38%		12.43%	
N	14,862		14,862	

주1) ***, **, *은 각각 1%, 5%, 10%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표 11> 다변량 분석값 역시 <표 8>과 비교하였을때, 처리집단과 통제집단이 영업현금흐름비율(OCF), 이익잉여금비율(RE), BIG4(대형회계법인감사여부)의 변수 이외에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재무적 특성이 비슷한 기업끼리 매칭이 잘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재무적 특성이 유사한 기업들간의 이중차분법 회귀분석에서도 여전히 β_3값이 음(−)의 계수값을 나타내며 이는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결과이다.

나. 이중차분법 모형의 확장

(1) 인천지방국세청과 그 외 지방국세청과의 비교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이 미치는 효과가 통제집단을 확대하여도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중부지방국세청 관할뿐만 아니라 5개 지방국세청 관할에 속하는 기업들을 포함하여 이중차분법 모형을 설계하였다. (1)열과 (2)열의 β_3값은 −0.006으로 음(−)의 계수값을 보이며Gaap ETR이 종속변수인 경우에만 10%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집단을 나머지 지방국세청으로 설정하여도 β_3값이 여전히 음의 값을 가지므로, 이 역시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결과이다.

〈표 12〉 인천지방국세청과 그 외 지방국세청의 회귀분석

Variables	(1) 현금유효세율(Cash ETR)		(2) 유효세율(Gaap ETR)	
	Co−eff	t−stat	Co−eff	t−stat
Treat	0.001	0.21	0.001	0.60
Post	−0.022***	−9.15	−0.018***	−8.64
Treat×Post	−0.006	−1.50	−0.006*	−1.69
SIZE	0.028***	37.41	0.023***	35.76
ROA	−0.519***	−45.29	−0.436***	−43.36
LEV	0.024***	5.55	0.020***	5.38
CAP	−0.049***	−17.22	−0.043***	−17.26
INTAT	−0.204***	−8.65	−0.148***	−7.14
OCF	0.074***	11.18	0.063***	10.91
RE	0.116***	34.57	0.112***	38.09
CR	−0.002***	−9.47	−0.002***	−11.58
TAT	0.012***	21.86	0.016***	21.66
BIG4	0.027***	13.74	0.018***	10.56
Constant	−0.323***	−19.11	−0.249***	−16.77
Fixed Effect	Industry and Year		Industry and Year	
Adj R^2	11.86%		12.07%	
N	68,162		68,162	

주1) ***, **, *은 각각 1%, 5%, 10%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주2) 전체 표본집단은 처리집단은 7,431(11%), 통제집단은 60,731(89%)으로 구성됨
주3) <표 12>의 처리집단은 인천청, 통제집단은 서울청, 중부청, 부산청, 대전청, 대구청, 광주청을 의미함.

(2) 인천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과 그 외 지방국세청과의 비교

중부지방국세청은 인천지방국세청이 분리됨에 따라 오히려 지역담당 범위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업무 효율성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천지방국세청 신설로 인한 처리효과(Treatment Effect)를 같이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중부지방국세청과 인천지방국세청을 같은 처리집단으로 구분하고 그외 지방국세청을 통제집단으로 설정하여 이중차분법 모형을 설계하였다. 그 결과 (1)열과 (2)열의 β_3값 각각 0.002, 0.001로 양(+)의 계수를 나타낸다. 인천지방국세청의 지리적 근접성 및 업무적 숙련도 미숙으로 인한 유효세율 감소효과와 중부지방국세청의 업무효율성 개선으로 인한 유효세율 증가효과가 복합적으로 내재되어있으며, 규모와 세수적인 측면에서 중부지방국세청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계수값이 양(+)의 값을 나타낸 것으로 추정된다.

〈표 13〉 인천, 중부지방국세청과 그 외 지방국세청의 회귀분석

Variables	(1) 현금유효세율(Cash ETR)		(2) 유효세율(Gaap ETR)	
	Co-eff	t-stat	Co-eff	t-stat
Treat	0.001	0.54	0.002	1.11
Post	-0.023***	-9.31	-0.019***	-8.72
Treat×Post	0.002	0.86	0.001	0.42
SIZE	0.028***	37.47	0.023***	35.83
ROA	-5.194***	-45.32	-0.437***	-43.40
LEV	0.023***	5.53	0.020***	5.36
CAP	-0.049***	-17.28	-0.043***	-17.32
INTAT	-0.205***	-8.69	-0.149***	-7.18
OCF	0.074***	11.22	0.063***	10.95
RE	0.116***	34.51	0.112***	38.04
CR	-0.002***	-9.45	-0.002***	-11.56
TAT	0.018***	21.89	0.016***	21.69
BIG4	0.027***	13.79	0.018***	10.60
Constant	-0.324***	-19.14	-0.250***	-16.83
Fixed Effect	Industry and Year		Industry and Year	
Adj R^2	11.86%		12.07%	
N	68,162		68,162	

주1) ***, **, *은 각각 1%, 5%, 10%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주2) 전체 표본집단은 처리집단은 21,700(32%), 통제집단은 46,462(68%)으로 구성됨.
주3) <표 13>의 처리집단은 인천청+중부청, 통제집단은 서울청, 부산청, 대전청, 대구청, 광주청을 의미함.

다. 상장기업의 회귀분석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이 기업의 조세회피를 증가시키는 검증결과가 상장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확인해보기 위하여, TS2000에서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를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표본의 구성방법, 기술통계량, 연도별・산업별분포, Pearson상관계수 값은 부록에 상세히 기술하였다.

(1)열은 종속변수를 Cash ETR, (2)열은 종속변수를 Gaap ETR로 회귀분석한 결과를 나타내는데, β_3계수값이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0.006 , 0.008의 계수값이 제시되었다. 상장기업의 경우 종속변수별로 계수의 부호방향이 일치하지 않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적이지 않은 값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인천지방국세청 신설 이전, 이후로 처리집단의 유효세율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으며 조세회피변동폭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4〉 회귀분석결과 − 상장기업

Variables	(1)현금유효세율(Cash ETR)		(2) 유효세율(Gaap ETR)	
	Co−eff	t−stat	Co−eff	t−stat
Treat	−0.018	−1.36	−0.015	−1.49
Post	−0.028*	−1.96	−0.018*	−1.71
Treat×Post	−0.006	−0.31	0.008	0.54
SIZE	0.024***	6.71	0.022***	8.09
ROA	−1.149***	−13.89	−0.669***	−10.8
LEV	0.080**	2.45	0.062**	2.54
CAP	−0.094***	−3.57	−0.100***	−5.06
INTAN	−0.735***	−5.14	−0.551***	−5.16
OCF	0.128*	2.34	0.083**	2.02
RE	0.118***	7.14	0.084***	6.80
CR	−0.004**	−2.86	−0.004***	−3.73
TAT	0.024*	2.31	0.004	0.54
BIG4	0.004	0.47	−0.004	−0.60
Constant	−0.289**	−2.81	−0.192**	−2.49
Fixed Effect	Industry and Year		Industry and Year	
Adj R^2	0.16		0.13	
N	2,466		2,466	

주1)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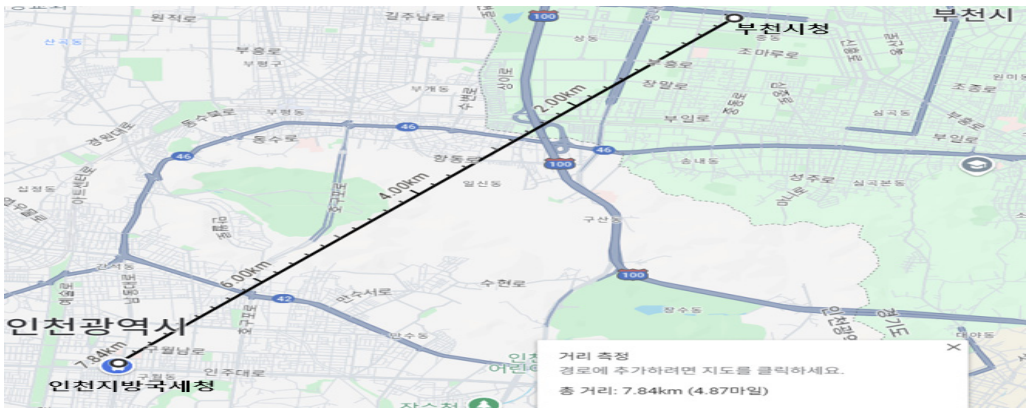
주요 관심변수인 β_3 계수가 비상장기업에서만 유의적인 영향이 나타나는 것은 다수의 선행 논문과 일치한다. Croker and Slemrod(2005)외 다수에 따르면 실패한 세무계획은 부정적인 현금흐름, 이익, 명성비용을 기업, 경영자, 특히 세무임원들에게 부과한다. 세무임원은 조세회피의 잠재적인 비용과 위험 및 기대효익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며 이러한 현상은 상장기업의 임원에게서 더 두드러진다. 또한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모니터링이나 평판 문제 등에 따라 경영자의 재량적인 조세계획이 어려울 것이나, 중소기업은 활용할 수 있는 조세제도가 많기 때문에 경영자가 재량적으로 이를 활용한 유인이 크다는 논문 결과와도 같다(신영효.오광욱 2018). 따라서 오히려 상장기업에서는 귀무가설을 지지하는 결과값이 제시되었다.

라. Distance 변수를 통한 OLS회귀분석

앞서 살펴본 것처럼, 거리라는 요소는 조세회피에 대해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복합적인 측면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거리만으로는 유의미한 결과를 확보하기 어렵고, 결국은 조직 신설효과와 결부시켜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중차분법 모형에서 나아가서,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의 원인을 세부적으로 판단해보기 위하여 거리변수(Distance)를 추가하였다.

표본대상기업이 방대하여 현실적으로 기업의 본점과 지방국세청까지의 거리를 모두 측정할 수는 없었으나 통상적으로 도심의 중심지에 시청, 구청 등의 행정기관이 위치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아래 <그림 4>처럼 기업의 본점이 위치한 시,군,구의 행정기관과 인천지방국세청까지의 거리를 구글지도에서 직선거리를 산출하였으며 이를 새로운 독립변수로 추가하였다.

〈그림 4〉 거리변수(Distance) 측정방법의 예시



출처 : https://www.google.co.kr/maps

기본연구모형의 결과에 따르면 거리변수(Distance)가 커질수록(즉, 멀어진다면) 기업의 조세회피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대로 (Distance)가 작아질수록(즉, 가까워진다면) 기업의 조세회피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인천지방국세청 신설로 감독기관의 거리가 변동된 기업은 처리집단이므로, 해당 집단을 표본으로 구성하였으며 총자산이익률(ROA)과 같은 재무적 통제변수 및 산업별, 연도별 고정효과는 기존 회귀분석과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mathbf{TAV}_{i,t} = \alpha_0 + \alpha_1 \boldsymbol{Distance} + \alpha_k \boldsymbol{Controls} + \boldsymbol{industry\ and\ year\ dummies} + \varepsilon \quad \textbf{(1)}$$

〈표 15〉 직선거리를 측정한 경우의 회귀분석

Variables	(1) 현금유효세율(Cash ETR)		(2) 유효세율(Gaap ETR)	
	Co-eff	t-stat	Co-eff	t-stat
Distance	0.000	0.36	-0.000	-0.25
SIZE	0.031***	13.10	0.029***	13.14
ROA	-0.461***	-13.60	-0.411***	-12.94
LEV	0.004	0.31	0.013	1.04
CAP	-0.047***	-5.42	-0.043***	-5.24
INTAT	-0.268***	-4.42	-.227***	-3.99
OCF	0.071***	3.52	0.065***	3.44
RE	0.121***	11.73	0.116***	12.01
CR	-0.003***	-3.67	-0.002**	-2.31
TAT	0.020***	7.22	0.020***	7.67
BIG4	0.015**	2.25	0.011*	1.74
Constant	-0.334***	-4.58	-0.303***	-4.43
Fixed Effect	Industry and Year		Industry and Year	
Adj R^2	12.81%		12.52%	
N	7,431		7,431	

주1) ***, **, *은 각각 1%, 5%, 10%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OLS 회귀분석의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수준에서 0에 가까운 계수값이 제시되었다. 이는 거리변수(Distance)가 유효세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물론 기업의 본점에서 인천지방국세청까지의 거리를 정확히 계산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추가분석 결과는 귀무가설 기각에 대한 사유가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한 효과보다는 조직변경으로 인한 세무공무원의 숙련도,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Ⅴ. 결 론

인천지방국세청 개청후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지방국세청 및 일선세무서 증설로 인해 국세공무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국세청 재정지출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10] 국세청은 고금리로 침체된 불안정한 경기로 인해 사상최대 세수부족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11].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이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설계되었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비상장기업 중 한국상장사협의회에서 재무자료를 확인할 수 총 21,700 기업－연도를 대상으로 인천청 신설효과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타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중차분법 모형과 성향점수기법을 등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는 지리적 근접성이 가까워질수록 더 공격적인 세무계획을 세우는 경향이 존재하며 이러한 음(－)의 계수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ubick et al.(2017) 선행논문의 결과와 일치한다. 지리적 근접성이 가까워질수록 감독기관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정보획득이 수월해지는 데, 현재로서는 감독기관의 전문성이 아직 충분하지 않아[12] 기업들이 정보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비조세비용(명성비용 등)으로 인해 상장기업은 감독기관과의 지리적 근접성이 가까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무계획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방국세청 신설 이후로 인접한 기업들의 조세회피경향이 증가하였지만, 그렇다고 하여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이 부적절하다고 단정짓는 것은 아직 이르다. 최기호(2018)에 따르면 기업의 조세회피 행태는 단일요인만으로는 완전히 설명할 수 없고, 본 연구의 결과는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지리적 접근성에 대한 부분만 제한적으로 제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세수확보라는 측면에서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납세자에게 있어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은 부정적인 결과라기보다는 여러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세부담을 경감 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여지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천지방국세청은 설립 그 자체만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존재한다. 납세자입장에서는 물리적 거리 감소로 전반적인 납세편의가 올라가고 고충민원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세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보여진다.

---

10) 2018년 지출금액 16,388→2023년 지출금액 19,003 (출처 : 재정정보공개시스템, 단위 : 억원).

11) “올해 국세수입 전년比 9.4조원 줄었다…법인세만 16.8조원 감소”. 세정일보. 2024.09.30

12) 2022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지방국세청의 경우 5년미만 근무 공무원이 다른 곳에 비하여 10%정도 높은 수준이며, 퇴직률도 굉장히 높아 지적받은 사례가 존재함.

심충진(2017)은 국세청의 존재 이유는 단순히 세금징수 및 관리나 납세자 서비스 기능에 한정하지 않고 납세자 권익보호뿐만 아니라 행복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안정적인 세수확보, 납세자 권리보호, 사회복지성 기능 확대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현재는 인천지방국세청의 전문성이 다소 불충분하기 때문에, 납세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이러한 문제점은 인천지방국세청의 전문성이 향상되면 개선될 여지가 존재한다. 노종호·김상묵(2014)의 연구는 플로리다 국세청의 역량 증진국사례를 검토하고 정부조직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고민하였다. 조직발전의 결정요인으로서 조직구조, 조직기술, 리더쉽, 조직문화에 대해 논의하고, 이 4가지 요소들의 전략적 개입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며 조직발전을 위해 상호 연결되어 있기에 성공적인 조직발전을 위해서는 4가지 요소들을 상호 연계시키면서 적절하게 배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창현(1991)은 공무원의 조직몰입도를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직무만족도를 진작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기회의 확대와 불확실한 상황을 피하게 해줄 수 있늠 명확한 규칙, 규정 및 절차를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부서비스의 성공적 제공은 정부관료제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으므로 이를 개별 행정부처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융통성을 발휘해 적용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인천지방국세청은 아직 설립된 지 5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이 기업의 조세회피를 통제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감독당국의 전문성이 향상된다면 달라질 수 있다. 인천지방국세청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신규직원들의 주요 분야 근무 기회를 확대하고, 비세원분야 배치를 제한하는 등의 체계적인 보직관리를 통해 근무동기를 고취해야 한다. 또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직무교육을 꾸준히 제공하는 등 우수한 인력으로 성장시켜 안정적인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향후 세무공무원들의 전문성이 확보되면 인천지방국세청이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고 이를 통해 국가세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다음의 측면에서 공헌점을 지닌다. 첫째, 이중차분법 및 거리변수를 통해 지방국세청 신설이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선행논문과 차별점을 갖는다. 둘째, Kubick et al.(2017)의 미국논문결과가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경험적인 의의가 있다. 셋째, 기업의 조세회피에 국세공무원들의 전문성의 중요함을 피력하고, 향후 지방국세청의 개선방안과 관련해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앞서 본 유익한 공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본 연구가 표본대상으로 설정한 2015－2022년 기간동안 코로나19라는 예기치못한 중대한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연도고정효과를 반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효과가 실증분석

에 내생성 문제를 초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의 표본대상의 자료출처는 한국상장사협의회 TS2000로 기업의 본사 주소지 기준이 현재 시점으로만 조회된다는 점에서 표본기간동안 본사의 이전이 있었던 기업들의 효과를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완전한 모형으로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조세회피추정치로 사용하는 종속변수(Cash ETR, Gaap ETR)의 측정에 관한 문제이다. 개별기업들의 정확한 법인세 납부세액 정보는 완전히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재무자료를 통해 Cash ETR, Gaap ETR과 같은 추정치를 조세회피 대용치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조세회피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제약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내생성 최소화, 조세회피추정치 보완 등 세밀한 연구방법을 통해 추가적인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참고문헌

국세청.「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국세청.「국정감사보고서 업무현황보고서」. 각 연도
국세청. 2022.「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김진회・정재욱. 2006. “기업의 재무적 특성이 조세회피행위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제23권 제4호 : 97－123.
김호정. 2002. “행정조직문화가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보. 제36권 제4호 : 87－105.
남혜정・최종학. 2010. “기업의 지리적 위치와 재무분석가의 수 및 이익예측오차와의 관계”. 세무와 회계저널. 제11권 제4호 : 275－304.
노종호・김상묵. 2014. “조직발전을 위한 전략적 개입에 관한 연구 : 미국 플로리다주 국세청 역량증진국 사례의 시사점”. 국가정책연구. 제28권 제4호 : 35－62.
류은영・류병곤. 2012. “공・사 조직의 조직구조와 조직효과성간의 비교연구 : 다차원적 조직몰입의 매개효과검증”. 지방정부연구. 제16권 제3호 : 437－468.
박미영. 2012. “감사인 특성과 조세회피”. 세무와 회계저널. 제13권 제3호 : 191－219.
박종국・홍영은. 2009. “조세회피와 외국인지분율”. 세무학연구. 제26권 제1호 : 105－135.
배성호・오광욱. 2016. “외부감사인의 노력과 조세절감 성향간의 관련성”. 세무와회계저널. 제17권 제4호 : 63－91.
신영효・오광욱. 2018. “최저한세 납부 기업의 회계정보의질적특성 : 본원적발생액과 재량적발생액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제19권 제3호 : 77－104.
심충진・김유찬. 2017. “국세행정 기능의 효율성과 개념체계에 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제17권 제3집 : 7－36.
이명건・박우진. 2017. “기업의 위치와 실제이익조정과의 관계”. 지역발전연구. 제26권 제1호 : 117－143.
임영규. 2012. “납세순응 행위의 이론변수에 대한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세무회계연구. 제34호 : 1－20.
장은미. 1997. “경력 몰입이 조직몰입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이중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인사・조직연구. 제5권 제2호 : 217－253.
정홍준・최용득・이동섭. 2013. “조직변화에 대한 저항과 조직몰입 :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 및 노조수단성과 절차적 공정성의 조절효과”. 인사・조직연구. 제21권 제2호 : 1－36.
조경호. 1993. “한국공무원의 조직몰입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27권 제4호 : 103－122.
최기호. 2018. “조세회피와 관련된 세무회계 실증 연구 동향”. 세무학연구. 제35권 제4호 : 207－275.
최보람. 2012. “장기조세회피와 이익조정이 장기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제 29권 제3

호 : 9－43.

최창현. 1991. “조직구조, 권위주위에 대한 태도,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도의 관계에 대한 경로분석적 연구 : 선형구조관계(LISREL) 모형의 적용”. 한국행정학보. 제25권 제2호 : 515－531.

Audretsch, D., and M. Feldman. 1996. R&D spillover sand the geography of innovation and produc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86(3) : 630－640.

Beck, M., Gunn. J. and Hallman. N. 2015. Does Distance Matter? Geographic Distance as a Barrier to Uniform Audit Quality. Unpublished workingpaper. University of Missouri at Columbia.

Brown, J., 2011. The spread of aggressive corporate tax reporting : a detailed examination of the corporate－owned life insurance shelter. *Accounting Review* 86 : 23－57.

Coval, J., and T. Moskowitz. 1999. Home bias at home : Local equity preference in Domestic portfolios. *Journal of Finance* 54 : 2045－2073.

DeFond, M., Francis. J. and Hallman. N. 2015. Awareness of SEC enforcement and auditor reporting decisions. Unpublished working papers.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niversity of Missouri at Columbia.

French, Kenneth R., and James M. Poterba. 1991. Investor diversification and international and equity markets. *American Economic Review* 81 : 222－226.

Hoopes, J., D. Mescall, and J. Pittman. 2012. Do IRS audits deter corporate tax avoidance?. *Accounting Review* 87(5) : 1603－1639.

Ivkovic, Z., and S. Weisbenner. 2005. Local does as local is : information content of the geography of individual investors’ common stock investments. *Journal of Finance* 60 : 267－306.

Kang, J., and Kim. J. 2008. The geography of block acquisitions. *Journal of Finance* 63 : 2817－2858.

Katz, D., and Kahn. R. L. 1978. *The Social Psychology of Organizations*. Wiley.

Kedia. S., and S. .Rajgopal. 2011. Do the SEC's enforcement preferences affect corporate misconduct?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51 : 259－278.

Keith, J. Crocker and Joel Slemrod. 2005. Corporate tax evasion with agency cost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9(9－10) : 1593－1610.

Kotter. J. P. 1996. *Leading Change*. Harvard Business Review Press.

Thomas, R. Kubick., Lockhart. Brandon, Mills. Lillian F, and Robinson, John R. 2017. IRS and corporate taxpayer effects of geographic proximity.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63(2－3) : 428－453.

Li, Y., and D. Yermack. 2014. Evasive shareholder meetings. NBER working paper.

Malloy, C. 2005. The geography of equity analysis. *Journal of Finance* 60 : 719－755.

Pfeffer, J. 1992. Managing with Power : Politics and Influence in Organizations.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The Impact of the Establishment of NTS Regional Office on Tax Avoidance

Minju Choi*

<Abstract>

The National Tax Service expects the establishment of the Incheon Regional Tax Office to secure stable tax revenues and strengthen tax source management, but some are concerned that it will end up with a simple expansion of the organization siz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verify the effect of establishing the Incheon Regional Tax Office through changes in tax avoidance behavior of neighboring companies before and after the establishment. The establishment of the Incheon Regional Tax Office improves the geographical proximity of supervisory agencies and companies. This can increase supervisory efficiency and ultimately suppress tax avoidance, but on the contrary, there is a possibility that companies will also actively use supervisory trends or internal information to avoid tax. Kubick et al. (2017) argue that which of the conflicting effects of distance proximity depends on the expertise of the supervisory authority.

This study used a double difference method that compares the effective tax rates of companies before and after the incident, starting with the cas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Incheon Regional Tax Office. Companies in Incheon, northern Gyeonggi－do, and Cheorwon, Gangwon－do, which were changed from the jurisdiction of the Central Regional Tax Office to the jurisdiction of the Incheon Regional Tax Office, were classified into treatment groups, and companies in southern Gyeonggi－do and Gangwon－do, which remain unchanged, were classified into control groups. A total of four years from 2019 when the Incheon Regional Tax Office was opened to 2022 were treated as the Post＝1 group, and the previous four years (2015－2018) were treated as the Post＝0 group. The double difference was calculated by subtracting the difference in the effective tax rate between the treatment group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Incheon Regional Tax Office and the effective tax rate after the establishment. Cash ETR and Gap ETR, which are widely used in previous domestic and foreign papers, were applied as tax avoidance estimates, and 21,700 company－year were set as analysis targets.

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negative (－) values were presented a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of 5% for both Cash ETR and Gaap ETR in unlisted companies. The same result value was presented even when the treatment group and the control group were matched 1∶1 through the propensity score method. This means that the effective tax rate of unlisted companies has

* Accountant, Samhwa Accounting Firm, Choimj225@gmail.com, First Author Ph D.

decreased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Incheon Regional Tax Office, and that tax avoidance has increased compared to before. This is consistent with the results of a previous paper by Kubick et al. (2017). These empirical analysis results are interpreted that companies are preempting information superiority over supervisory agencies because the supervisory authority's expertise is still insufficient. However, in listed companies, the coefficient value converged to almost zero, and it was concluded that i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which is interpreted that this is because listed companies are limited in their behavior due to non-tax costs such as reputation costs.

Alth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Incheon Regional Tax Office has not been able to confirm the effect of suppressing or controlling corporate tax avoidance, these results are expected to change if the skills of national tax officials are improved in the long run and expertise is strengthened through education.

This paper has contributions in the following aspects. First, it differs from previous papers in that it confirmed the effect of the establishment of a new local tax office on corporate tax avoidance through the difference-in-differences method and distance variables. Second, it is of empirical significance in that it confirmed that the results of Kubick et al.'s (2017) American paper can be applied equally to Korea. Third, it expresses the importance of the expertise of national tax officials in corporate tax avoidance, and presents policy implications for future improvement measures of local tax offices.

However, this study requires attention to interpretation because it contains essential limitations of tax avoidance measures, the impact of COVID-19 during the study period, the inability to grasp the details of the headquarters movement during the study period due to limitations in data collection.

<Key words> NTS Incheon regonal office, tax avoidance, geographic proximity, expertise

부 록

1. 인천지방국세청 신설로 확장된 분야의 업무범위

분야	세목	업무분장
감사관	감사관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국세청장을 보좌한다. 1. 복무 및 업무감사 2. 비위공무원의 조사 3. 공무원 징계자료의 조사 4. 각종 정보의 수집 5. 기타 청장이 감사 및 민원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성실납세지원국	부가가치세과장	부가가치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가가치세 부과·감면 및 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업무 2. 신고내용 확인·분석 및 세액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3. 신용카드영수증 등 거래증명자료의 수집 및 활용 4.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분석, 대책 수립 및 집행 5. 부가가치세의 과세자료 수집 및 분석 6. 부가가치세의 신고·경정에 관한 업무 7. 사업자등록 업무 및 납세번호 부여 8.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매입자납부 제도에 관한 업무 9. 부가가치세 세무협력단체의 육성·지도 10.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제도 홍보 및 활용에 관한 업무 11. 소비제세와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농어촌특별세의 부과·감면에 관한 업무 12. 과세유흥장소의 관리 13.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와 면허업체의 관리·감독 및 주류업체의 지도·감독 14. 소비제세 과세물품의 분석·감정 및 조사·연구 15. 소비제세와 관련된 제조장의 점검 및 범칙행위의 단속 16. 주류, 유사석유제품 및 농·어업용 면세유류에 대한 유통과정 조사대상자 선정·분석 및 조사계획의 수립·집행 1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분야	세목	업무분장
성실납세지원국	소득재산세과장	소득재산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득세(양도소득세를 포함한다),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신고·경정에 관한 업무, 신고내용 확인 및 세액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2. 소득세(양도소득세를 포함한다),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감면, 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업무 및 과세자료수집·분석 3.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수입금액의 신고관리 및 무신고자 결정·관리에 관한 사항 4.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 및 납세번호 부여 4의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제도 홍보·활용 5. 계산서 수수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분석 및 대책 수립 6. 납세조합, 사업용계좌에 관한 사항 및 세무대리인의 관리·감독 7. 개인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8. 부동산 지정지역 및 부동산투기우려지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9. 부동산거래동향의 파악 및 투기대책의 수립·집행 10. 토지초과이득세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11.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집행 기본계획 수립, 신청안내, 집행 결과 분석 및 보고에 관한 업무 12.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심사·결정·지급, 사후관리 및 자영업자 소득검증에 관한 업무 1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관련 기본계획 수립·집행 및 상환대상자 관리에 관한 업무 14.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에 대한 체납정리 및 장기미상환자 관리에 관한 업무 15. 간이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안내, 사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집행결과 분석에 관한 업무

분야	세목	업무분장
성실납세지원국	법인세과장	법인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인세, 원천세, 교육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부과·감면 및 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업무 2. 세금신고 사후검증·분석 및 세액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3. 법인세의 신고내용에 대한 서면조사 4. 법인의 장부기록 확인 및 실태조사 5.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6. 외국법인·외국인투자법인·외국인투자자 및 비거주자에 대한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업무 7. 법인세, 원천세 및 국제거래와 관련된 과세자료의 수집·처리 8. 법인세, 원천세, 교육세와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경정에 관한 업무 9. 법인 사업자등록 업무 및 납세번호 부여 10. 외국법인, 외국인투자법인, 외국인투자자 및 비거주자에 대한 내국세의 신고·경정에 관한 업무 11. 조세협약의 집행 12. 외국진출 사업자 및 기업에 대한 납세관리
성실납세지원국	정보화관리팀장	정보화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산화업무에 대한 시스템 분석과 프로그램 개발·유지, 보수업무 및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전산장비의 운영·관리 2. 관할 세무서에 대한 전산업무 교육 3. 신고서 등 과세자료 전산입력 및 오류정정
징세송무국	체납추정과장	체납추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액체납액의 정리 2.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업무 3. 체납처분면탈범 고발업무 4.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업무

출처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 21조, 제 22조의 2, 제 23조 [기획재정부령 제 1068호, 2024.6.21. 일부개정]

2. 강건성 검증에 사용된 상장기업의 기술통계량

2-1. 표본구성

표본선정기준	표본수
2014년부터 2023년 TS2000에서 자료가 조회되는 기업-년도	22,818
제외 :	
① 금융업 및 SPC 등 기업-년도	(787)
② 12월 외 결산 기업-년도	(324)
③ 표본기간동안 연속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년도	(4,087)
④ 본점의 주소지가 실험설계 대상의 범위가 아닌 표본	(11,990)
⑤ 이상치 제거 (EBT, GAAP ETR, CASH ETR 음수 등)	(3,164)
최종 표본에 사용된 기업-년도	2,466

2-2. 표본의 분포

표본의 구성현황	처리집단 (인천청 관할지역)		통제집단 (중부청 관할지역)		전체	
처리집단	400	(16.2%)	2,066	(83.8%)	2,466	(100%)

패널 A : 산업별 분포

산업	처리집단 (인천청 관할지역)		통제집단 (중부청 관할지역)		전체	
	빈도수	백분율	빈도수	백분율	빈도수	백분율
제조업	334	84%	1,541	75%	1,875	7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8	2%	6	0%	14	1%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6	2%	1	0%	7	0%
건설업	11	3%	36	2%	47	2%
도매 및 소매업	16	4%	115	6%	131	5%
운수 및 창고업	7	2%	15	1%	22	1%
숙박 및 음식점업	-	0%	5	0%	5	0%
정보통신업	2	1%	181	9%	183	7%
금융 및 보험업	-	0%	6	0%	6	0%
부동산업	-	0%	8	0%	8	0%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1	3%	144	7%	155	8%
사업시설 관리, 사원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	0%	8	0%	8	0%
교육서비스업	5	1%	-	0%	5	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0%	6	0%	6	0%
합계	400	100%	2,066	100%	2,466	100%

패널 B : 연도별 분포

연도	처리집단(인천지방 국세청 관할지역)		통제집단(중부지방 국세청 관할지역)		전체	
	빈도수	백분율	빈도수	백분율	빈도수	백분율
2015	52	13%	288	14%	340	14%
2016	53	13%	273	13%	326	13%
2017	48	12%	258	12%	306	12%
2018	52	13%	254	12%	306	12%
2019	48	12%	253	12%	301	12%
2020	38	10%	226	11%	264	11%
2021	60	15%	265	13%	325	13%
2022	49	12%	249	12%	298	12%
합계	400	100%	2,066	100%	2,466	100%

2－3. 기술통계량

상장기업(N＝2,466)

Variables	Mean	Std.Dev	Min	P25	Median	P75	Max
Cash ETR	0.233	0.185	0.000	0.121	0.208	0.285	1.000
Gaap ETR	0.212	0.136	0.000	0.142	0.205	0.253	1.000
SIZE	19.255	1.234	17.093	18.401	19.077	19.832	24.056
ROA	0.061	0.05	0.002	0.024	0.047	0.083	0.255
LEV	0.326	0.183	0.032	0.166	0.308	0.469	0.749
CAP	0.256	0.167	0.001	0.136	0.235	0.361	0.745
INTAN	0.017	0.026	0.000	0.004	0.008	0.017	0.159
OCF	0.065	0.075	－0.134	0.018	0.059	0.107	0.301
RE	0.415	0.277	－0.636	0.259	0.424	0.611	0.993
CR	3.133	3.296	0.322	1.221	1.943	3.636	19.354
TAT	0.779	0.432	0.033	0.479	0.714	1.027	2.220
BIG4	0.431	0.495	0.000	0.000	0.000	1.000	1.000

주1) ***, **, *은 각각 1%, 5%, 10%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2－4. 다변량분석

Variables	처리집단 (인천청 관할지역)	통제집단 (중부청 관할지역)	t－value
	Mean	Mean	
SIZE	19.288	19.249	－0.585
ROA	0.055	0.062	2.456**
LEV	0.364	0.319	－4.449***
CAP	0.270	0.254	－1.817***
INTAN	0.015	0.017	1.717***
OCF	0.056	0.067	2.834***
RE	0.388	0.420	2.135
CR	2.742	3.208	2.593
TAT	0.757	0.784	1.159
BIG4	0.46	0.425	－1.277

주1) ***, **, *은 각각 1%, 5%, 10%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2－5. 피어슨 상관계수

상장기업 (N＝2,46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Cash ETR	1.000											
[2] Gaap ETR	0.588 ***	1.000										
[3] SIZE	0.197 ***	0.240 ***	1.000									
[4] ROA	－0.262 ***	－0.214 ***	－0.065 ***	1.000								
[5] LEV	0.100 ***	0.104 ***	0.216 ***	－0.224 ***	1.000							
[6] CAP	0.027	0.004	0.078 ***	－0.088 ***	0.260 ***	1.000						
[7] INTAN	－0.083 ***	－0.092 ***	－0.012	0.040 **	0.029	－0.076 ***	1.000					
[8] OCF	－0.048 **	－0.040 **	0.032	0.419 ***	－0.141 ***	0.148 ***	0.094 ***	1.000				
[9] RE	0.073 ***	0.072 ***	0.083 ***	0.219 ***	－0.536 ***	0.000	－0.090 ***	0.226 ***	1.000			
[10] CR	－0.101 ***	－0.124 ***	－0.237 ***	0.101 ***	－0.636 ***	－0.257 ***	－0.027	0.027	0.310 ***	1.000		
[11] TAT	0.015	－0.002	－0.071 ***	0.100 ***	0.343 ***	0.098 ***	－0.020	0.107 ***	－0.085 ***	－0.254 ***	1.000	
[12] BIG4	0.113 ***	0.097 ***	0.392 ***	－0.024	0.111 ****	－0.031	0.060 ***	0.017	－0.013	－0.097 ***	－0.018	1.000

주1) ***, **, *은 각각 1%, 5%, 10%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주2) 각 통제변수는 극단치를 1%수준에서 조정함(winsorization).

지역별 탈세제보율이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전 소 미
(교보증권)

지역별 탈세제보율이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전소미*

〈요 약〉

탈세제보는 세무조사를 유발하여 적발위험을 높인다. 나아가 직접적인 탈세제보가 아닌 경우에도 사회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등을 통해 개인이나 집단에 이익을 주는 무형자산인 “사회적 자본”이 탈세제보와 기업의 조세회피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되어 조세회피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세청이 탈세제보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기준을 완화하고 있어 탈세제보의 영향력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탈세제보에 대한 선행연구는 탈세제보포상금에 국한되어있으며 문헌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탈세제보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그 관계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국세청 통계자료인 탈세제보자료 처리 현황을 이용하여 지방청별 관할지역의 인구수로 나눈 탈세제보율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조세회피의 대용치인 GAAP_ETR과 CASH_ETR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그 관계성을 입증하기 위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대상 기업 중 비상장기업(이하 “비상장기업”)의 2012~2023년 기간에 대한 총 189,045개의 기업연도 표본을 대상으로 한다.

실증연구 결과 지역별 탈세제보율이 높을수록 조세회피가 1% 유의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기업규모별로 나누어 분석한 경우와 독립변수를 변경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연도별 횡단면 차이 분석에서는 전국 탈세제보가 전년 대비 증가한 해는 대체로 음(−)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고 감소한 해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확인되어 탈세제보의 활성화 정도가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국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이하 “상장기업”)에 대한 추가분석의 경우에는 탈세제보율과 조세회피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게 확인되어 상장기업의 공시의무와 정기세무조사 등의 영향에서 비롯된 차이라고 해석하였다. 그 외에도 사회적 자본이 매개체로써 기능 하는지에 대한 매개효과 검증과 지역효과 분석을 통해 회귀분석 결과를 보충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탈세제보에 대한 선행연구가 주로 탈세제보포상금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탈세제보와 조세회피의 관계를 실증분석을 통해 입증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또한 탈세제보가 이미 발생한 조세회피 행위의 적발 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 따라서 탈세제보 활성화 정책의 의사결정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방청별 탈세제보율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는데 지방청은 전국 7곳에 불과하여 지역범위가 너무 넓다는 문제점이 있고 지방청 구분의 기준이 되는 본점주소가 당시 주소가 아닌 현재 주소인 점 등 활용데이터의 한계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나아가 기업규모 중 중견기업이 가장 유의한 결과를 보이게 된 원인을 찾고 납세자 유형별·지역별 탈세제보 자료를 통해 세분화된 연구를 진행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정책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주제어〉 탈세제보, 조세회피, 세무조사, 사회적 자본

* 교보증권, caspo12@naver.com, 주저자

Ⅰ. 머리말

국세청은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의 정착과 발전의 지원을 위하여 탈세감시체계를 활성화하고자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다(국세청 보도자료, 2018). 탈세제보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시민 탈세감시단인 '바른세금 지킴이'를 출범하여 생활 속 탈세행위와 업종별·지역별 세원동향 정보 등을 수집하기도 한다(국세청 보도자료, 2012).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탈세제보건수는 매년 2만건에 육박하고 있다(국세청 통계자료[1], 각 연도). 이를 활용한 처리건수도 매년 2만건에 달하고 그 영향으로 징수세액은 연 전체 세수입의 0.4%(최근 10년 평균)에 해당한다(국세청 통계자료, 각 연도).[2][3] 국세청은 꾸준히 포상금 제도의 한도액 및 지급범위 확대를 추진해오고 있어 탈세제보는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그 영향력 또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탈세제보는 세무조사를 유발하여[4] 적발위험을 증가시킨다. 만약 직접적인 탈세제보가 없더라도 사회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등을 통해 개인이나 집단에 이익을 주는 무형자산인 "사회적 자본"이 탈세제보와 기업의 조세회피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되어 기업의 조세회피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탈세제보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탈세제보포상금 제도에 대한 연구에 국한되어있다. 탈세제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업의 조세회피에 영향을 주고 탈세제보 활성화 정책에 따라 그 영향력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탈세제보가 범죄를 줄이는 것을 넘어 기업 스스로 탈세를 하면 안된다고 인식하고 적발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짐으로써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실증적인 의문을 해소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기존 선행연구의 틀을 벗어나 탈세제보와 조세회피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입증하고 탈세제보가 이미 발생된 조세회피 행위를 적발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대상 기업 중 비상장기업(이하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012~2023년의 기간에 대해 총 189,045개의 기업연도 표본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국세청 통계자료인 탈세제보자료 현황과 지방청별 관할지역의 인구수 자료를 활용하여 인구수 천명당 탈세제보건수(이하 탈세제보율)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조세회피는 기업의 세무조정에 관한 자료가 공시되지 않는 관계로 다수의 조세회피 실증연구에서 활용된

1) 국세청 통계자료 중 탈세제보자료 처리 현황을 통해 확인하였다.
2) 국세청 통계자료 중 탈세제보자료 처리 현황 및 세무서별·세목별 세수 현황을 통해 확인하였다.
3) 금액으로는 평균 약 1조 2천억원(최근 10년 평균)에 육박한다.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GAAP_ETR과 CASH_ETR을 조세회피의 대용치로 사용하였다.

실증연구 결과 탈세제보율과 ETR이 1% 유의수준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지역별 탈세제보율이 클수록 기업의 조세회피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규모별로 나누어 분석하거나 독립변수를 변경해도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도별 회귀분석을 실시해본 바, 전국 탈세제보가 전년 대비 증가한 해는 대체로 유의적인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감소한 해는 유의적이지 않은 결과가 확인되어 회귀분석 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한편 국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이하 “상장기업”)은 탈세제보율과 조세회피 간의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상장기업이 다양한 공시의무의 이행으로 공개된 정보가 많고 정기세무조사 등을 통해 적발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가짐에 따라 비상장기업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적으로 사회적 자본이 탈세제보율과 기업의 조세회피 사이에 매개체로써 효과를 가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Baron et al.(1986)에 의한 3단계 검증을 적용하였고 그 결과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나아가 지방청별 횡단면 차이분석과 지역고정효과, 지역변수 추가를 통해 지역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방청별 횡단면 차이 분석과 지역고정효과 분석에서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탈세제보율의 영향력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고자 지역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는데, 지역변수를 추가하여 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탈세제보율이 1% 유의수준의 음(−)의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탈세제보율이 종속변수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력을 갖는다고 해석하였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탈세제보에 대한 선행연구가 주로 탈세제보포상금에 집중되어 있는 것에서 나아가 탈세제보와 조세회피의 관계성을 실증분석을 통해 입증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또한 탈세제보가 이미 발생한 조세회피 행위의 적발 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역할 또한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는 것에 공헌점이 있다. 탈세제보 활성화를 추진하는 정책의 방향에 맞추어 정책에 참고할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정책 의사결정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 탈세제보제도와 관련한 선행연구 및 탈세제보와 조세회피와의 관계, 가설을 살펴보고 제Ⅲ장에서 연구모형과 변수 및 표본 등을 살펴본다. 제Ⅳ장에서는 기술통계・상관관계 분석 및 회귀분석 결과를 확인하며 제Ⅴ장에서는 회귀분석 결과를 보충해주는 추가분석을 확인하고 마지막 제Ⅵ장에서는 본 연구의 공헌점과 한계점을 시사하면서 결론을 맺는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탈세제보제도

가. 취지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탈세수법이 지능적이고 고도화되어 탈세사실을 포착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국세청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탈세감시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국세청 보도자료, 2018). 이러한 탈세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세청은 탈세제보 포상금제도 및 시민탈세감시단 등의 탈세제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국세청 보도자료, 2018). 이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구현과 성실납세문화를 형성하고자 한다(국세청 보도자료, 2018).

나. 운용현황

국세청은 탈세제보를 통해 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탈루세액 추징에 활용하고 있다.[5] 제보내용과 제보자의 신원은 과세정보 이용이 가능한 업무담당자 이외에는 이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관기간 관리를 통하여 기간 경과 시 파기하는 등의 과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가 국세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다.[6] 이를 위반하여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징수될 수 있다.[7] 국세청은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한정된 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선정에 의한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8]

국세청은 다양한 채널[9]을 통하여 탈세제보를 접수받고 있으며 제공된 자료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는 경우 추징된 탈루세액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10][11] 주로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관계가 확인 가능하며 이를 통해 탈루세액 추징을 위한 국세행정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자료들이 이에 해당된다.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탈루세액이 실제 납부·추징되었고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된 경우 추징된 세액의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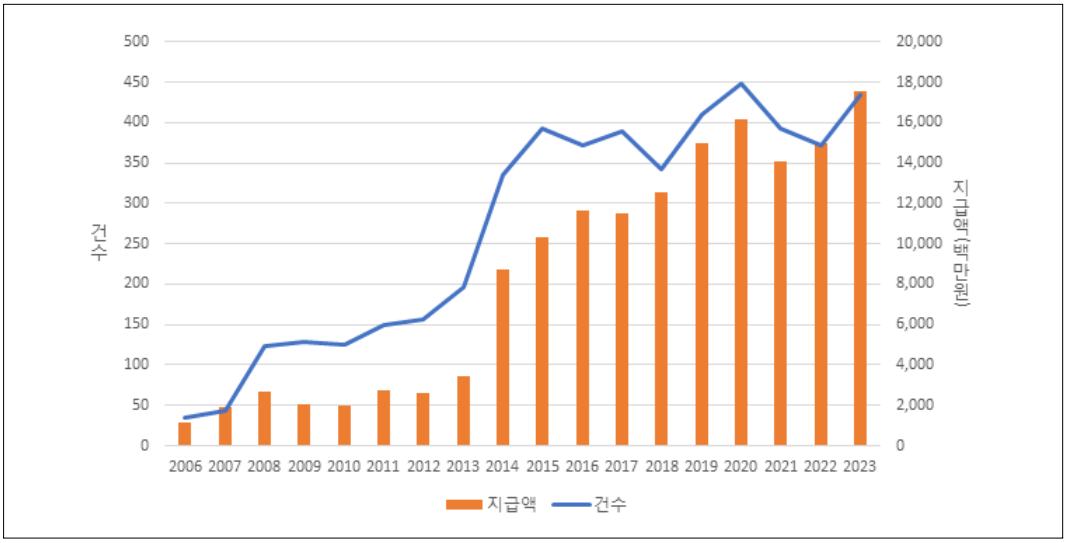
5) 탈세제보대상은 <부록 표 1>과 같다.
6)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7) 국세기본법 제90조
8)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9) 방문, 우편, 인터넷홈페이지(홈택스), APP(손택스), 전화(ARS) 등
10)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11)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의 판단기준은 <부록 표 2>와 같다.

20%를 적용하여 최대 40억 한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12].

국세청은 탈세제보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을 개정해왔다.[13] 2013년 이후 꾸준히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완화하고 포상금 한도액을 늘려온 결과 <그림 1>에서처럼 포상금의 지급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최고치를 달성하였다. 또한 2012년부터는 시민 탈세감시단인 '바른세금 지킴이'를 운영하여 일상생활에서 발견된 세금탈루 정보와 업종별·지역별 세원동향 및 국세행정에 대한 의견을 제공받아 정책 및 제도개선에 활용할 의지를 밝히기도 하였다(국세청 보도자료, 2012).

〈그림 1〉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액 및 지급건수

(단위 : 건, 백만원)



※ 출처 : TASIS 국세통계포털(탈세제보포상금 지급 현황)

다. 관련 연구

정철화 외(2020)는 탈세제보포상금에 대한 주요 법적 쟁점(중요한 자료, 탈루세액, 지급시기)을 중심으로 판례 등을 검토하고 해외 제도를 살펴보아 우리나라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유종남(2018)은 탈세제보포상금에 대한 소송사례를 통해 다툼의 원인을 살펴보고 동일한 쟁점에 대한 미국의 제도 및 대응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진호(2017)는 탈세제보포상금 규모의 증가가 탈세제보건수 및 추징세액

12)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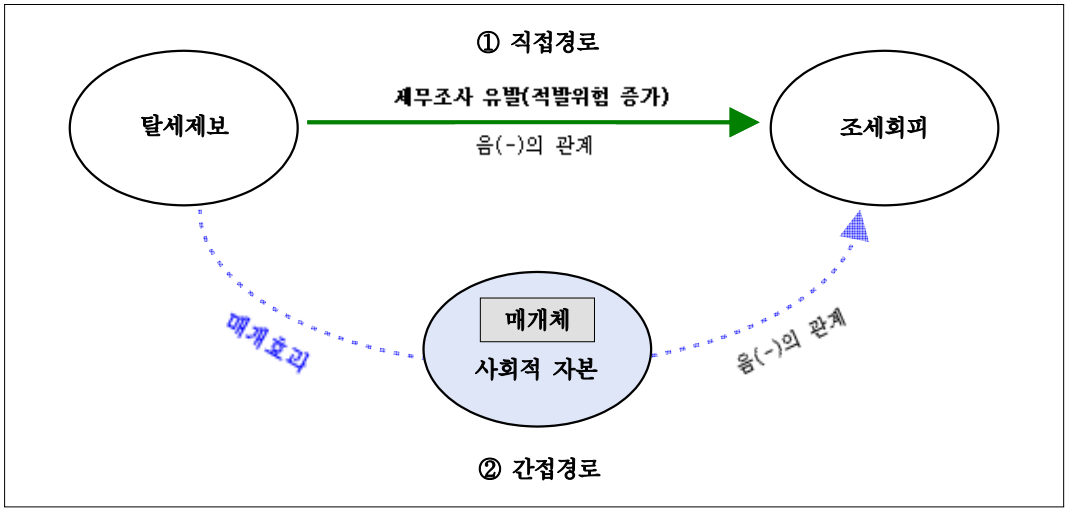
1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개정 현황은 <부록 표 3>과 같다.

의 규모에 영향을 주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포상금제도가 실효성있게 운영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박훈 외(2015)는 탈세제보 및 포상금 제도의 운영 현황 등을 살펴보고 타기관 및 해외 사례를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탈세제보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주로 탈세제보포상금을 주제로 이루어졌으며 포상금 제도에 대한 문헌연구나 효과성에 대한 실증연구가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탈세제보와 조세회피의 관계

탈세제보와 조세회피의 관계를 직접경로와 간접경로로 나누어 확인해본다.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탈세제보에 따른 세무조사를 유발하게 되어 적발위험을 증가시킴에 따라 기업의 조세회피가 감소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사회구성권 간의 상호작용과 협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개인이나 집단에 이익을 주는 무형자산인 “사회적 자본”이 탈세제보와 기업의 조세회피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되어 기업의 조세회피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탈세제보가 없었던 경우에도 사회적 자본의 영향을 통해 기업 스스로 탈세를 하면 안된다고 인식하고 적발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짐으로써 탈세제보가 간접적으로도 기업의 조세회피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된다. 따라서 탈세제보가 성실납세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탈세제보와 조세회피의 관계



※ 저자 작성

가. 세무조사와 적발위험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정기선정에 의한 세무조사 이외에 비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4] 즉, 탈세제보는 세무조사를 유발한다. 한편, 세무조사와 조세회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지병규 외(2018)는 세무조사 이후 기업의 조세회피 여부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세무조사는 조세순응과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무조사로 인해 조세회피가 감소하고 신고소득률은 높아졌으며 세무조사 추징세액이 클수록 그 효과가 커졌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세무조사에 대한 두려움과 세금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느껴 발생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예지 외(2017)는 우리나라 상장기업 세무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세금 절감을 위한 의사결정 시 고려사항으로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91.64%로 뽑혀 선택지 중 2번째로 높은 고려요소였음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조세회피를 위한 의사결정 시 세무조사를 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세무조사 선정률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심해린 외(2019)에서도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에서 유사한 규모의 준거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률이 높을수록 기업들의 조세회피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종업원의 직접적인 내부고발과 조세회피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도 존재한다. Wilde(2017)는 OSHA 내부고발 사례를 이용하여 종업원의 내부고발이 기업의 재무보고 왜곡과 공격적 조세회피를 억제하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 내부고발 기업들이 통제기업과 비교하여 회계오류 발생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공격적 조세회피가 유의하게 줄어들었음을 보여준다. 심지어 내부고발의 억제효과가 고발 이후 최소 2년간 유지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내부고발이 추가적인 감시의 확률에 대한 경영자 인식을 높여 공격적 조세회피를 억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세무조사와 적발위험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수 존재하고 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탈세제보자료 처리 현황' 자료를 통해 탈세제보와 이를 활용한 과세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을 보면 매년 약 2만건 전후의 탈세제보가 발생하고 국세청 또한 매년 비슷한 규모로 처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탈세제보자료를 활용하여 추징한 세액은 연도마다 상이하지만 적게는 9천억부터 많게는 1조 6천억원에 달하는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전체 세수입의 평균 약 0.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를 통해 탈세제보가 세무조사를 유발하고 이는 조세회피 행위의 적발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국세청 통계자료, 각 연도).[15][16]

---

14)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15) 국세청 통계자료 중 탈세제보자료 처리 현황 및 세무서별·세목별 세수 현황을 통해 확인하였다.

16) 금액으로는 평균 약 1조 2천억원(최근 10년 평균)에 육박한다.

〈표 1〉 탈세제보건수·처리건수·추징세액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기간구분	당년건수	처리건수주1)	추징세액(a)	전체 세수입(b)	비중(a/b)*100
2014	19,442	18,627	1,530,132	195,727,144	0.782
2015	21,088	19,895	1,653,035	208,161,525	0.794
2016	17,268	18,112	1,211,033	233,329,122	0.519
2017	15,628	15,173	1,306,495	255,593,190	0.511
2018	20,319	17,873	1,305,392	283,535,518	0.460
2019	22,444	23,210	1,316,131	284,412,645	0.463
2020	21,147	18,921	924,536	277,275,291	0.333
2021	20,798	22,097	1,022,298	334,471,443	0.306
2022	17,777	19,903	1,046,613	384,249,472	0.272
2023	19,763	20,034	745,563	335,672,348	0.222
합계	195,674	193,845	12,061,228	2,792,427,698	0.431

※ 출처 : TASIS 국세통계포털(탈세제보자료 처리 현황)
주1) 당년접수건수와 이월건수를 합산하여 처리한 건수

나. 사회적 자본과 명성비용

해당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탈세제보만이 기업의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칠까? 그렇지는 않다. 탈세에 대한 고발의식과 그에 걸맞은 제보행위의 활성화는 사회에 '탈세는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을 만든다. 이는 사회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간의 감시기능을 조성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탈세제보가 아닌 경우에도 적법하게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윤리의식과 잘못된 행위(탈세)의 발각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그들의 행동을 제약하게 될 것이라 판단된다. 이와 같이 사회구성권 간의 상호작용과 협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개인이나 집단에 이익을 주는 무형자산인 "사회적 자본"은 탈세제보와 기업의 조세회피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이 높은 지역에서는 기업 스스로 탈세를 잘못된 행위로 인식하고 적발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껴 직접적인 탈세제보가 없었던 경우에도 조세회피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Hasan(2017)은 사회적 자본이 높은 지역사회에서는 기업의 조세회피 행동을 시민규범과 관련된 가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여기기 때문에 규범에 어긋나는 것으로 인식할 것이므로 사회적 자본이 높은 지역사회에 본점을 둔 기업들은 조세회피 의사결정에 있어 높은 심리적 비용과 사회적 제재를 예상하여 조세회피를 꺼리게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지역별 사회적 자본과 해당 지역에 본점을 둔 기

업의 조세회피를 실증분석한 결과, 사회적 자본 수준이 높은 지역사회에서 기업의 조세회피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지역 내 생성된 사회적 관습과 가치관, 집단행동은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탈세제보가 아니더라도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 자본의 기본요소인 신뢰, 규범, 네트워크는 조세회피를 막는 환경적 요인이자 탈세를 목격했을 때 탈세제보를 행동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때 탈세제보 행위는 그러한 환경에 더하여 다시 기업의 윤리적 행동을 압박하게 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오늘날에는 기업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ESG 공시가 의무화되고 있어 기업의 윤리적인 행동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Hoi et al.(2013)은 공격적인 조세회피가 기업과 경영진의 평판 하락, 정치 및 언론에서의 압력 증가, 잠재적인 벌금과 처벌 그리고 소비자들의 불매운동과 같은 부정적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실증분석을 통하여 CSR 활동에 무책임한 기업이 적극적인 조세회피 성향을 보인다는 것(특히 CSR 활동에 과도하게 무책임한 기업)을 시사하며 CSR이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문화 중 하나의 측면으로 간주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정환 외(2021)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의 ESG점수를 기업의 CSR활동으로 설정하여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CSR 성과가 높을수록 조세회피가 줄어들었고 특히 사회(S) 항목의 활동점수가 높은 기업에 영향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조세회피로 인해 기업의 평판이 추락하거나 경영권 상실, 소비자 불매운동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CSR 활동에 적극적인 기업이 평판유지를 위해서라도 조세회피를 시도하지 않은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서갑수 외(2017)는 CSR 활동에 적극적인 기업은 최고경영자 교체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조세회피는 음(−)의 관계가 나타나 조세회피성향이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명성비용에 대한 연구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상민 외(2021)는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탈세 논란 기사[17]를 수집하여 출현빈도를 토대로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누적출현빈도는 기업가치에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는 12개월 동안 점진적으로 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이 절세 또는 세무전략의 수립에 있어 탈세 논란이 기업가치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김임현 외(2019)는 브랜드가치와 조세회피의 유의미한 음(−)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명성비용이 존재할 경우 기업이 적극적인 조세회

17) 키워드 : 탈루, 탈세, 조세범, 조세회피(세금회피), 세금포탈(조세포탈), 세무조사, 재산은닉, 이중장부, 차명계좌, 신고누락

피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토대로 기업의 윤리적 행동은 그들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선택이 아닌 필수요소가 되었고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행동을 감시받는 오늘날의 환경에서 기업의 명성비용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윤리적 행동에 대한 인식이 높고 탈세제보가 자유로운 지역사회에 위치한 기업들은 해당 기업을 향한 직접적인 탈세제보가 아니더라도 그들의 행동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3. 가설설정

본 연구에서는 지방청별 탈세제보가 지방청별 관할지역에 본점을 둔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가설 : 탈세제보율이 높은 지방청의 관할지역 내 본점이 있는 기업의 조세회피는 감소한다.

탈세제보가 활발한 지역에 기업의 본점이 위치한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탈세제보가 세무조사를 유발하고 적발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이예지 외(2017)는 우리나라 상장기업 세무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조세회피를 위한 의사결정 시 세무조사를 높은 수준에서 의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세무조사 선정률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심해린 외(2019)에서도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에서 유사한 규모의 준거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률이 높을수록 기업들의 조세회피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Wilde(2017)는 종업원의 내부고발이 공격적 조세회피를 유의하게 줄이고 그 억제효과가 고발 이후 최소 2년간 유지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해당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탈세제보가 아니더라도 기업은 지역 내 사회적 자본의 영향으로 조세회피 행동을 제한하게 될 수 있다. Hasan(2017)에서도 동일한 접근방법으로 사회적 자본 수준이 높은 지역사회에서 기업의 조세회피가 낮은 것을 확인한 바 있다. 기업의 CSR 활동과 조세회피의 관계에 있어서 Hoi et al.(2013)는 공격적 조세회피로 인한 평판 하락 등의 부정적 제재를 피하고자 조세회피가 감소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김임현 외(2019)는 브랜드가치와 조세회피의 유의미한 음(－)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명성비용이 존재할 경우 기업이 적극적인 조세회피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직접경로 또는 간접경로를 통해 탈세제보율이 높은 지방청의 관할지역 내 본점이 있는 기업의 조세회피가 감소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한편, 탈세제보가 기업의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을 예상할 수도 있다. Davis et al.(2016)는 오히려 세금을 덜 내는 것이 더 큰 사회적 편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인식 아래 CSR

활동의 일환으로 세금 납부를 고려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Marjit et al.(2017)은 현대 비즈니스의 복잡성으로 탈세와 탈세가 아닌 조세회피 사이의 법적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전 세계 세무당국은 탈세와 탈세가 아닌 조세회피 사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기업들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정교한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렇게 복잡하고 정교한 탈세 행위가 이루어지면 탈세제보 자체가 어렵거나 제보가 있더라도 적발될 위험이 낮아질 수 있다. 또한 국내 탈세제보의 대부분이 개인의 탈세에 대한 제보라는 점에서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18]

Ⅲ. 연구설계

1. 연구모형과 변수 설정

가설의 검정을 위한 회귀모형은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begin{aligned} ETR_{it} = {} & \beta_0 + \beta_1 TEWBR_{it} + \beta_2 SIZE_{it} + \beta_3 LEV_{it} + \beta_4 OCF_{it} + \beta_5 ROA_{it} \\ & + \beta_6 PPE_{it} + \beta_7 CASH_{it} + \beta_8 NOL_{it} + \beta_9 BIGAUDIT_{it} \\ & + \sum ES + \sum IND + \sum YEAR + \epsilon_{it} \end{aligned} \quad (1)$$

종속변수는 조세회피의 대용치로써 법인세비용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으로 나누어 계산한 GAAP_ETR과 법인세비용에 이연법인세비용[19]을 차감하여 계산한 CASH_ETR로 설정하였다. GAAP_ETR과 CASH_ETR은 1과 0 사이로 윈저라이징 하였으며 결과값 해석의 직관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1을 곱하였다. 따라서 본 회귀분석 결과에서 종속변수인 GAAP_ETR과 CASH_ETR이 0에 가까울수록 조세회피가 큰 것으로 해석되며 −1에 가까울수록 조세회피가 작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독립변수와의 관계가 음(−)의 관계로 나타나면 가설처럼 탈세제보율이 기업의 조세회피 감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독립변수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탈세제보자료 처리 현황' 자료를 통해 지방청별 당년접수 건

18) 최근 10년(2014~2023년)간의 탈세제보건수 중 평균 약 72%가 개인에 대한 탈세제보이다.

19) 이연법인세부채변동액(당년도 − 전년도 이연법인세부채) − 이연법인세자산변동액(당년도 − 전년도 이연법인세자산)

수를 확인하여 지방청별 관할지역[20]의 총 인구수(천명)로 나누어 계산한 탈세제보율(인구수 천명당 탈세제보건수)로 설정하였다.[21][22] 지역별 크기와 인구수, 경제규모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탈세제보건수를 그대로 독립변수로 적용하지 않았다. 지역성을 반영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지역경제규모, 인구, 포상금 규모 등 다양하지만 그 중 탈세제보는 사람의 행위로 이루어지므로 해당 지역의 인구수를 활용하여 인구수 천명당 탈세제보건수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당년도의 탈세제보율을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나 Wilde(2017)에서 종업원의 내부고발에 따른 조세회피 억제효과가 고발 이후 최소 2년간 유지된다는 점을 감안하고 탈세제보와 조세회피 사이의 내생성을 방지할 목적으로 시차를 반영하여 전년도 탈세제보율과 당년도 탈세제보율을 합산한 2년 합산 탈세제보율을 보조 독립변수로 추가 설정하였다.

통제변수는 기존 조세회피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확인된 변수들을 참고하여 설정하였다. 기업의 크기와 재무구조를 감안하여 보편적으로 설정하는 통제변수인 자산규모(SIZE), 부채비율(LEV), 영업활동현금흐름(OCF), 총자산순이익률(ROA)를 고려하였다. 이는 최재호 외(2021), 심해린 외(2019), 서갑수 외(2017) 등 조세회피를 종속변수로 실증분석을 진행한 다양한 논문에서 적용된 변수들이다. 이 중 자산규모(SIZE)는 자연로그값으로 측정한다. 더하여 감가상각 및 투자세액공제 등을 통해 조세회피에 활용할 수 있는 유형자산 비중을 고려하여 유형자산집중도(PPE)를 설정하였다. 최재호 외(2021) 및 김임현 외(2019)는 유형자산이 많을수록 조세회피 수준이 높았음을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현금보유수준(CASH) 변수를 설정하였는데 고윤성 외(2014)에 의하면 현금보유수준이 낮을수록 조세로 인한 현금유출을 줄이기 위해 조세회피에 더욱 적극적일 것으로 예상하였고 결과적으로도 현금보유수준이 높을수록 조세회피수준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위 변수들은 모두 극단치로 인한 분석결과의 오인을 막고자 1%로 윈저라이징 하였다. 한편, 전기이월결손금여부(NOL)와 Big4회계법인감사여부(BIGAUDIT)를 더미변수로 설정하여 해당되면 1 아니면 0으로 설정하였고 업종 및 연도별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기업규모와 산업, 연도에 대하여 고정효과를 설정하였다. 이때 산업의 경우에는 상장협 산업분류상 중분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23]

---

20) 지방청별 관할지역은 <부록 표 4>를 참고

21) 지방청별 탈세제보건수 및 탈세제보율은 <부록 표 5>와 <부록 그림 1>을 참고

22) 본점 주소 데이터가 당시가 아닌 현재 기준으로만 제공되어 본점이 다른 지방청 관할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적합하지 않은 탈세제보율이 독립변수로 적용될 수 있다.

23) 변수 설정에 대한 세부 내용은 <부록 표 6>을 참고

2. 표본선정

본 연구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TS－2000을 통해 추출한 2012년～2023년간의 비상장기업에 대한 기업연도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상장기업의 경우 각종 정기공시 및 수시공시 제도의 의무이행에 따라 기업의 주요 재무구조와 영업활동 등이 공개되어 있으며 주기적인 정기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므로 조세회피의 발생 가능성이 비상장기업에 비해 낮거나 이미 적발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아 표본에서 제외하였다.[24] 또한 사업 범위가 특정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아 지역사회의 영향을 적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탈세제보의 간접 경로를 통한 영향에 있어서도 적합하지 않은 대상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려 영향을 받을만한 비상장기업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공개된 데이터가 있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대상 기업(이하 “외감기업”) 중 비상장기업을 표본의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탈세제보 활성화의 일환으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기준 완화 정책이 2013년부터 2024년까지 꾸준히 진행되어온 바, 연도별 탈세제보 변화수준을 포함하고 표본 수를 확대하는 것을 통해 결과의 신뢰를 높이고자 12개년치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회계기준은 IFRS 데이터의 결측치가 많아 GAAP 데이터를 적용하였다. 또한 12월 말 결산법인이 아닌 경우는 제외하였고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금융업인 경우를 제외하였다. 지방청에 본점이 소재한 기업이 분석대상에 해당하므로 본점이 해외인 경우 또한 제외하였다. 종속변수로 활용한 ETR과 관련하여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GAAP_ETR, CASH_ETR이 음수(－)이거나 0인 경우 및 ROA가 음수(－)인 경우는 잘못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그 외에도 변수로 활용되는 데이터 중 결측치가 있는 경우도 모두 제외하여 총 189,045개의 관측치를 최종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표 2〉 표본선정

구 분	표본 수
TS－2000 비상장기업(2012～2023년)	376,770
(－) 12월 말 결산법인이 아닌 경우	(9,621)
(－) 금융업인 경우	(10,736)
(－) 본점이 해외인 경우	(14)
(－) 변수에 결측치가 있는 경우 등	(167,354)
합 계	189,045

24) 발행시장공시로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등의 공시의무가 있으며 유통시장공시로 사업보고서·분기보고서 등의 정기공시와 특수공시, 영업양수도 및 합병·분할 등의 주요사항보고서를 비롯한 각종 수시공시 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표 3>을 통해 표본의 산업·지방청별 분포 현황을 확인해볼 수 있다.[25] 표본의 절반가량이 제조업에 해당하였으며 그 외 도소매 및 부동산업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청의 경우에는 서울청, 중부청, 부산청이 가장 많은 데이터 건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산업·지방청별 표본 분포 현황

구분	분류	데이터 건수	비율(%)
산업	제조업	84,695	44.8
	도매 및 소매업	27,247	14.4
	부동산업	22,586	11.9
	건설업	16,395	8.7
	운수 및 창고업	8,010	4.2
	정보통신업	6,482	3.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732	3.0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5,570	2.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927	1.6
	숙박 및 음식점업	2,369	1.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2,092	1.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652	0.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227	0.7
	농업, 임업 및 어업	791	0.4
	광업	620	0.3
	교육 서비스업	564	0.3
	기타	86	0.1
	합 계	189,045	100
지방청	서울청	53,408	28.3
	중부청	51,286	27.1
	부산청	32,207	17.0
	대전청	17,493	9.3
	대구청	14,735	7.8
	광주청	11,415	6.0
	인천청	8,501	4.5
	합 계	189,045	100

주1) 회귀분석에서는 산업을 중분류로 사용하였으나 본 표에서는 중분류 항목으로 표기하기에 내용이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대분류로 작성함

25) 산업 구분 데이터가 당시가 아닌 현재 기준으로만 제공되어 실제 산업과 표에 표기된 산업 구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Ⅳ. 실증분석 결과

1.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분석

실증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는 <표 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GAAP_ETR의 평균(절대값)은 16.9%이며 CASH_ETR의 평균(절대값)은 17.3%이다. 중간값(절대값)은 GAAP_ETR이 17.2%로 CASH_ETR의 16.7%보다 크고 표준편차는 CASH_ETR이 0.158로 더 크다. 독립변수인 TEWBR은 당년의 경우 평균 0.401이다. 이는 1천명의 인구인 경우 0.401건의 탈세제보가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2년 합산의 평균은 0.790이다. 당년은 최소 0.122부터 최대 0.793이며 2년 합산은 0.222부터 1.509이다. 자산규모를 보여주는 SIZE의 평균은 17.166이며 부채비율(LEV)은 평균 56.6%, 총자산순이익률(ROA)은 평균 7%로 나타났다. 영업활동현금흐름(OCF)의 평균은 7.6%이며 유형자산집중도(PPE)의 평균은 17.5%, 현금보유수준(CASH)의 평균은 13.4%이다. 전기이월결손금여부(NOL)를 확인하여 전체 표본 중 16.7%가 결손금이 있는 표본임을 알 수 있으며 Big4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는 기업(BIGAUDIT)은 전체 표본 중 11.2%를 차지하고 있다.

〈표 4〉 기술통계표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	1분위	중간	3분위	최대
GAAP_ETR	189,045	−0.169	0.144	−1	−0.223	−0.172	−0.060	0
CASH_ETR	189,045	−0.173	0.158	−1	−0.226	−0.167	−0.052	0
TEWBR1(당년)	189,045	0.401	0.162	0.122	0.290	0.359	0.542	0.793
TEWBR2(2년)	189,045	0.790	0.322	0.222	0.571	0.701	1.086	1.509
SIZE*	189,045	17.166	0.940	15.150	16.539	16.977	17.629	20.385
LEV*	189,045	0.566	0.270	0.028	0.362	0.591	0.759	1.275
OCF*	189,045	0.076	0.155	−0.423	0.006	0.057	0.130	0.710
ROA*	189,045	0.070	0.081	0.001	0.016	0.042	0.091	0.456
PPE*	189,045	0.175	0.181	0	0.031	0.123	0.260	0.810
CASH*	189,045	0.134	0.160	0	0.020	0.071	0.187	0.736
NOL	189,045	0.167	0.373	0	0	0	0	1
BIGAUDIT	189,045	0.112	0.315	0	0	0	0	1

주1) *은 1% 윈저라이징을 적용한 변수임

변수들의 상관계수는 <표 5>와 같다. 종속변수인 GAAP_ETR과 CASH_ETR은 이연법인세비용(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의 증감액)의 반영여부만 차이가 있어 유사한 변수이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1% 유의수준에서 0.8769로 높게 확인되고 있다. 독립변수인 TEWBR 또한 당년과 2년 합산이 1% 유의수준에서 0.9682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독립변수인 TEWBR과 종속변수 GAAP_ETR 및 CASH_ETR은 1% 수준의 유의적인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통제변수 또한 모두 종속변수와 1% 유의수준의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자산규모(SIZE), 영업활동현금흐름(OCF), 현금보유수준(CASH), Big4회계법인감사여부(BIGAUDIT)가 종속변수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부채비율(LEV), 총자산순이익률(ROA), 유형자산집중도(PPE), 전기이월결손금여부(NOL)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표 5〉 상관계수표(n=189,04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GAAP_ETR	1											
[2] CASH_ETR	0.8769 ***	1										
[3] TEWBR1(당년)	−0.0719 ***	−0.0753 ***	1									
[4] TEWBR2(2년)	−0.0716 ***	−0.0745 ***	0.9682 ***	1								
[5] SIZE	−0.1311 ***	−0.1433 ***	0.0707 ***	0.0761 ***	1							
[6] LEV	0.1417 ***	0.1303 ***	−0.0643 ***	−0.0646 ***	−0.1716 ***	1						
[7] OCF	−0.0171 ***	−0.0173 ***	0.0145 ***	0.0178 ***	−0.0231 ***	−0.1269 ***	1					
[8] ROA	0.0543 ***	0.0620 ***	0.0603 ***	0.0692 ***	0.0154 ***	−0.2306 ***	0.3697 ***	1				
[9] PPE	0.1198 ***	0.1153 ***	−0.2017 ***	−0.2088 ***	−0.0295 ***	0.1907 ***	0.0176 ***	−0.2004 ***	1			
[10]CASH	−0.0730 ***	−0.0685 ***	0.1328 ***	0.1406 ***	−0.0188 ***	−0.3880 ***	0.2942 ***	0.3182 ***	−0.2788 ***	1		
[11] NOL	0.2763 ***	0.2646 ***	−0.0204 ***	−0.0198 ***	−0.0972 ***	0.4137 ***	−0.0249 ***	0.0437 ***	0.0863 ***	−0.1159 ***	1	
[12] BIGAUDIT	−0.0919 ***	−0.1088 ***	0.1027 ***	0.0963 ***	0.3545 ***	−0.1335 ***	0.0638 ***	0.0729 ***	−0.0230 ***	0.1140 ***	−0.0253 ***	1

주1) $*p<0.10$, $**p<0.05$, $***p<0.01$

2. 회귀분석 결과

가설 검정을 위한 회귀모형(1)의 실증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2종류의 종속변수(GAAP_ETR, CASH_ETR)와 2종류의 독립변수(탈세제보율 당년, 탈세제보율 2년 합산)를 각각 적용하여 총 4건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종류와 상관없이 4건의 분석결과가 독립변수와 모든 통제변수에 대하여 종속변수와 1% 유의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독립변수인 탈세제보율은 종속변수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종속변수 GAAP_ETR과 독립변수 탈세제보율(당년)의 경우 계수는 −0.0136으로 확인되며 이는 탈세제보율(당년)이 1단위 증가할 때 평균적으로 종속변수인 GAAP_ETR은 0.0136만큼 감소한다는 의미로 인구수(천명)당 1건의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기업의 GAAP_ETR은 1.36%만큼 증가하여(기존 ETR에 음수를 곱하였으므로) 조세회피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구수를 1명으로 환산하였을 때에는 0.00136%에 해당한다.

통제변수들을 살펴보면 자산규모(SIZE), 영업활동현금흐름(OCF), 현금보유수준(CASH), Big4 회계법인감사여부(BIGAUDIT)는 독립변수와 마찬가지로 종속변수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자산규모(SIZE)가 크고 영업활동현금흐름(OCF)과 현금보유수준(CASH)이 많으며 Big4회계법인의 감사(BIGAUDIT)를 받는 경우 조세회피가 유의적으로 감소한다. 반면 부채비율(LEV), 총자산순이익률(ROA), 유형자산집중도(PPE), 전기이월결손금여부(NOL)은 종속변수와 양(+)의 상관관계로 부채비율(LEV), 총자산순이익률(ROA), 유형자산집중도(PPE)가 낮으며 전기이월결손금(NOL)이 없는 경우 조세회피가 유의적으로 감소한다. 회귀분석 결과 지방청별 탈세제보율이 높을수록 각 지방청에 본점을 둔 기업의 조세회피가 1% 유의수준에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본 연구의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표 6〉 회귀분석 결과

$$ETR_{it} = \beta_0 + \beta_1 TEWBR_{it} + \beta_2 SIZE_{it} + \beta_3 LEV_{it} + \beta_4 OCF_{it} + \beta_5 ROA_{it} + \beta_6 PPE_{it} + \beta_7 CASH_{it} + \beta_8 NOL_{it} + \beta_9 BIGAUDIT_{it} + \sum ES + \sum IND + \sum YEAR + \epsilon_{it}$$

변수	[1] 종속 : GAAP_ETR 독립 : 당년		[2] 종속 : GAAP_ETR 독립 : 2년		[3] 종속 : CASH_ETR 독립 : 당년		[4] 종속 : CASH_ETR 독립 : 2년	
	계수	t값	계수	t값	계수	t값	계수	t값
TEWBR	−0.0136 ***	−5.90	−0.0068 ***	−5.78	−0.0185 ***	−7.23	−0.0093 ***	−7.18
SIZE	−0.0094 ***	−22.42	−0.0094 ***	−22.41	−0.0111 ***	−24.06	−0.0111 ***	−24.05

〈표 6〉 회귀분석 결과 (계속)

변수	[1] 종속 : GAAP_ETR 독립 : 당년		[2] 종속 : GAAP_ETR 독립 : 2년		[3] 종속 : CASH_ETR 독립 : 당년		[4] 종속 : CASH_ETR 독립 : 2년	
	계수	t값	계수	t값	계수	t값	계수	t값
LEV	0.0092 ***	6.46	0.0092 ***	6.46	0.0046 ***	2.90	0.0046 ***	2.91
OCF	−0.0328 ***	−14.75	−0.0328 ***	−14.75	−0.0391 ***	−15.94	−0.0391 ***	−15.94
ROA	0.1664 ***	38.23	0.1665 ***	38.24	0.1990 ***	41.42	0.1991 ***	41.43
PPE	0.0627 ***	29.95	0.0627 ***	29.95	0.0677 ***	29.31	0.0677 ***	29.30
CASH	−0.0258 ***	−11.10	−0.0258 ***	−11.10	−0.0268 ***	−10.47	−0.0268 ***	−10.46
NOL	0.0979 ***	103.28	0.0979 ***	103.28	0.1035 ***	98.96	0.1035 ***	98.96
BIGAUDIT	−0.0124 ***	−10.59	−0.0124 ***	−10.59	−0.0170 ***	−13.18	−0.0170 ***	−13.17
Ent−SIZE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DUSTRY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YEAR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Adj.R^2$	0.1336		0.1336		0.1319		0.1319	
표본 수	189,045		189,045		189,045		189,045	

주1) $*p<0.10$, $**p<0.05$, $***p<0.01$

3. 횡단면 차이 분석

위 회귀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2가지 횡단면 차이 분석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는 기업규모(ES)별로 회귀분석을 진행하여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의 기업구분에 따라 기업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두 번째는 연도별 회귀분석을 진행하여 국세청의 탈세제보 활성화 정책을 토대로 전국 탈세제보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 또는 감소한 연도의 경우 변동성 방향에 부합되는 결과가 뒷받침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가. 기업규모별 회귀분석

통제변수 중 기업규모(ES)는 상장협 TS－2000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타로 구분되는 코드이다.[26] 이 코드별로 대기업인 경우와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인 경우의 표본만을 추려 회귀모형(1)의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때, 종속변수는 GAAP_ETR이고 독립변수는 탈세제보율(당년)을 적용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모두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대하여 1% 유의수준의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계수의 크기는 대기업 －0.0332, 중견기업 －0.0342, 중소기업 －0.0094로 확인되며 t값은 각각 －2.82, －6.56, －3.58로 확인된다. 계수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유사하게 보이나 t값으로는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기업순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계수와 t값을 종합해보았을 때 기업규모별 분석에 있어서 중견기업이 탈세제보율에 따른 조세회피 감소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판단된다. t값만을 고려하였을 때에는 기업규모가 대기업인 경우 규모가 더 작은 다른 기업에 비해 가장 상관도가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각 규모별 표본 수에 차이가 크고 계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기업의 경우 영향도가 가장 낮다고 단정 지어 해석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견기업이 계수, t값, 표본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도 영향력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대체로 대기업만큼 사업 범위가 넓지 않아 인근 지역에 영향을 주고받기 쉽고, 중소기업에 비해 일정기준 이상의 매출액과 자산총액을 보유함에 따라 기업의 명성비용을 고려하기 적절한 환경에 놓여 있음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26) 기업규모(ES)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원지원본부 정보사업팀 유선확인).

기업규모명	코드	대상기업
대기업	10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대규모기업집단
중견기업	30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중견기업 정보마당'의 중견기업 기준 중 업종별 규모기준에 충족하는 기업(후보기업 포함)
중소기업	20	기업규모 적용 대상기업 중 대기업·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기타	90	금융업, 공기업 등 기업규모 미적용 대상기업

〈표 7〉 기업규모별 회귀분석 결과

$$ETR_{it} = \beta_0 + \beta_1 TEWBR_{it} + \beta_2 SIZE_{it} + \beta_3 LEV_{it} + \beta_4 OCF_{it} + \beta_5 ROA_{it} + \beta_6 PPE_{it} + \beta_7 CASH_{it} + \beta_8 NOL_{it} + \beta_9 BIGAUDIT_{it} + \sum IND + \sum YEAR + \epsilon_{it}$$

(종속변수) GAAP_ETR / (독립변수) TEWBR1

변수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계수	t값	계수	t값	계수	t값
TEWBR1	−0.0332 ***	−2.82	−0.0342 ***	−6.56	−0.0094 ***	−3.58
SIZE	−0.0064 ***	−4.10	−0.0063 ***	−8.10	−0.0102 ***	−19.35
LEV	−0.0074	−1.01	−0.0209 ***	−6.11	0.0130 ***	8.06
OCF	−0.0373 ***	−2.72	−0.0168 ***	−3.35	−0.0371 ***	−14.80
ROA	0.3554 ***	13.51	0.2622 ***	26.76	0.1408 ***	28.51
PPE	0.0356 ***	3.51	0.0513 ***	8.92	0.0653 ***	28.14
CASH	−0.0311 ***	−2.75	−0.0206 ***	−3.92	−0.0244 ***	−9.16
NOL	0.0836 ***	17.30	0.1006 ***	39.35	0.0985 ***	94.11
BIGAUDIT	−0.0037	−0.83	−0.0065 ***	−3.63	−0.0155 ***	−9.35
INDUSTRY	Included		Included		Included	
YEAR	Included		Included		Included	
$Adj.R^2$	0.1352		0.1278		0.1202	
표본 수	5,325		26,710		156,363	

주1) $*p<0.10$, $**p<0.05$, $***p<0.01$

나. 연도별 회귀분석

국세청은 탈세제보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왔다. 그 영향으로 2013년과 2018년은 전국 탈세제보의 합이 전년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다. 전년 대비 전국 탈세제보의 변동성이 큰 경우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보기 위하여 연도별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큰 증가폭을 띈 해는 2012, 2013, 2018년이다. 그 중 2013년은 탈세제보포상금의 한도액과 지급률, 지급범위가 모두 대폭

확대된 해이며 전년 대비 69.3%나 탈세제보가 증가하였다. 2013년에 해당하는 표본만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처리한 결과 1% 유의수준의 음(−)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어 조세회피의 감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2년도에도 전년 대비 20.4%가량 탈세제보가 증가하였고 2013년과 동일하게 1% 유의수준의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한편 2018년은 약 30%가량 탈세제보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대로 전년 대비 감소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2016년과 2022년은 유의적이지 않은 결과를 보여 전국 탈세제보가 전년 대비 활발하지 않을 경우 기업의 조세회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결과적으로 전국 탈세제보가 활성화된 해는 대체로 기업의 조세회피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활성도가 떨어진 해는 기업의 조세회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 탈세제보가 기업의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보충하여 설명해주고 있다.

한편,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전국 탈세제보가 증가하면 해당년도에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감소할 경우 유의성이 사라지는 패턴을 보이며, 2017년부터 2023년까지는 전년도에 탈세제보가 증가하면 익년도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전년도에 탈세제보가 감소하면 익년도에 유의성이 사라지는 패턴을 보여 Wilde(2017)에서 종업원의 내부고발이 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를 억제하고 그 억제효과가 고발 이후 최소 2년간 유지된다는 점을 확인했던 것처럼 탈세제보 활성화 추세가 기업의 조세회피에 당년 또는 익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해본다. 다만 우연하게 발생한 패턴인지 다른 누락변수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결과를 강건하게 입증하기 위한 추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8〉 연도별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GAAP_ETR / (독립변수) TEWBR1

연도	전국 탈세제보 증감 (전년 대비)		표본 수	$Adj.R^2$	계수	t값
2012	증가	20.43%	11,446	0.1657	−0.0466582***	−3.33
2013	증가	69.30%	12,254	0.1510	−0.0372263***	−4.71
2014	증가	3.58%	13,155	0.1334	−0.0155373**	−2.44
2015	증가	8.47%	13,613	0.1328	−0.0131273*	−1.79
2016	감소	−18.11%	14,914	0.1278	−0.0006067	−0.07

〈표 8〉 연도별 회귀분석 결과 (계속)

연도	전국 탈세제보 증감 (전년 대비)		표본 수	$Adj.R^2$	계수	t값
2017	감소	−9.50%	15,660	0.1215	−0.0128862 *	−1.66
2018	증가	30.02%	16,284	0.1304	−0.0030639	−0.32
2019	증가	10.46%	15,323	0.1362	−0.0121477 **	−1.98
2020	감소	−5.78%	16,531	0.1380	−0.0268186 ***	−3.14
2021	감소	−1.65%	18,601	0.1381	−0.0100966	−1.09
2022	감소	−14.53%	20,412	0.1294	−0.0029767	−0.33
2023	증가	11.17%	20,852	0.1167	0.0041447	0.42

주1) $*p<0.10$, $**p<0.05$, $***p<0.01$
주2) 전년 대비 증감은 전국 합산 기준이며 모든 지역이 전년 대비 증감하였음을 의미하지는 않음

Ⅴ. 추가분석

1. 상장기업 대상 회귀분석

상장기업은 공시의무로 인해 공개된 정보가 많고 정기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므로 주회귀분석에서는 비상장기업을 표본대상으로 삼았었다. 예상과 같이 상장기업인 경우 지역별 탈세제보율과 조세회피 간의 영향이 없는지 추가분석을 통해 확인해본다. 비상장기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TS−2000을 통해 추출한 2012년~2023년간의 상장기업에 대한 기업연도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다.

상장기업의 경우 합병이나 분할 등으로 인한 이중데이터 발생 가능성을 막고자 상장폐지사는 제외하였으며 표본 수 확보를 통해 분석결과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상장 이전자료도 포함하였다. 비상장기업과 동일하게 12월 말 결산법인이 아닌 경우와 금융업인 경우 및 본점이 해외인 경우는 제외하였다.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GAAP_ETR, CASH_ETR이 음수(−)이거나

0인 경우 및 ROA가 음수(−)인 경우, 결측치가 있는 경우도 동일하게 제외하여 총 11,675개의 관측치를 추가분석의 최종 표본으로 선정하였다.[27)]

추가분석에서는 비상장기업의 경우와 동일한 통제변수에 대주주지분율(CS)과 외국인지분율(FS)을 추가하였다.[28)] 상장기업 표본에서는 비상장기업에 비해 GAAP_ETR과 CASH_ETR의 평균(절대값)이 더 높고 결손금 비중은 더 적으며 대형회계법인의 감사대상 기업은 현저히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29)] 그 외 변수는 부채비율(LEV)이 비상장기업의 평균보다 낮은 것을 제외하면 유사하고 상장기업에만 적용되는 변수인 대주주지분율과 외국인지분율은 각각 평균 57.8%와 8.3%로 확인되었다. 한편 독립변수인 TEWBR은 비상장기업과 상장기업 모두 동일한 지방청별 탈세제보율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최소값과 최대값이 동일하다.

상장기업의 경우에도 독립변수인 TEWBR과 종속변수 GAAP_ETR 및 CASH_ETR은 모두 1% 수준의 유의적인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30)] 통제변수는 유형자산집중도(PPE)를 제외한 통제변수들이 종속변수와 1% 유의수준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영업활동현금흐름(OCF), 현금보유수준(CASH)이 비상장기업과 다르게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부채비율(LEV)은 반대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추가된 대주주지분율(CS)과 외국인지분율(FS)은 1% 유의수준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회귀분석 결과는 <표 9>와 같다. 독립변수인 탈세제보율과 종속변수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4종류의 회귀분석에서 모두 동일하게 확인되었다. 이는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에서는 모든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 결과에서 1% 유의수준의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 것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31)] 해당 결과를 통해 상장기업은 지역별 탈세제보율이 해당 지역에 본점을 둔 기업의 조세회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장기업은 비상장기업에 비해 공시를 통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받고 다수의 주주들에게

27) 상장기업 산업·지방청별 표본 분포 현황은 <부록 표 7>과 같다.

28) 소액주주지분율 데이터 중 2건이 각각 997, 998로 대주주지분율 계산 시 −897, −898이라는 이상수치가 확인되어 이러한 오류를 제거하고자 음수인 경우는 0으로, 100을 초과하는 경우는 100으로 설정하였다.

29) 상장기업 기술통계표는 <부록 표 8>과 같다.

30) 상장기업 상관계수표는 <부록 표 9>와 같다.

31) 상장기업에 대해서도 기업규모별 회귀분석을 돌려보았으나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종속변수 : GAAP_ETR, 독립변수 : 탈세제보율(당년))

기업규모	표본 수	계수	t값	p값	$Adj.\ R^2$
대기업	1,487	0.0238615	0.95	0.342	0.1061
중견기업	6,191	−0.0086096	−0.75	0.455	0.0974
중소기업	3,965	−0.0132738	−0.82	0.415	0.0982

평가받으며, 상장조건을 유지해야 함에 따라 기업의 건전성을 항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정기세무조사를 통해 비상장기업에 비해 높은 적발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결과의 차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9〉 회귀분석 결과

$$ETR_{it} = \beta_0 + \beta_1 TEWBR_{it} + \beta_2 SIZE_{it} + \beta_3 LEV_{it} + \beta_4 OCF_{it} + \beta_5 ROA_{it} + \beta_6 PPE_{it} + \beta_7 CASH_{it} + \beta_8 NOL_{it} + \beta_9 BIGAUDIT_{it} + \beta_{10} CS_{it} + \beta_{11} FS_{it} + \sum ES + \sum IND + \sum YEAR + \epsilon_{it}$$

변수	[1] 종속 : GAAP_ETR 독립 : 당년		[2] 종속 : GAAP_ETR 독립 : 2년		[3] 종속 : CASH_ETR 독립 : 당년		[4] 종속 : CASH_ETR 독립 : 2년	
	계수	t값	계수	t값	계수	t값	계수	t값
TEWBR	0.0003	0.03	0.0003	0.08	0.0031	0.26	0.0002	0.04
SIZE	−0.0097***	−6.50	−0.0097***	−6.51	−0.0124***	−6.04	−0.0124***	−6.02
LEV	−0.0713***	−9.04	−0.0713***	−9.04	−0.0864***	−7.98	−0.0863***	−7.97
OCF	−0.0768***	−4.69	−0.0768***	−4.69	−0.0767***	−3.41	−0.0768***	−3.42
ROA	0.4551***	17.97	0.4552***	17.97	0.7377***	21.20	0.7375***	21.20
PPE	0.1003***	8.46	0.1004***	8.47	0.1118***	6.86	0.1114***	6.84
CASH	−0.0249**	−2.55	−0.0250**	−2.56	−0.0358***	−2.67	−0.0356***	−2.66
NOL	0.0596***	12.54	0.0596***	12.54	0.0870***	13.33	0.0870***	13.33
BIGAUDIT	0.0000	−0.01	0.0000	−0.02	−0.0035	−0.96	−0.0035	−0.95
CS	0.0000	−0.23	0.0000	−0.23	−0.0003***	−2.74	−0.0003***	−2.73
FS	−0.0001	−1.00	−0.0001	−1.00	−0.0001	−0.58	−0.0001	−0.57
Ent−SIZE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DUSTRY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YEAR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Adj.R^2$	0.1274		0.1274		0.1367		0.1367	
표본 수	11,675		11,675		11,675		11,675	

주1) $*p<0.10$, $**p<0.05$, $***p<0.01$

주2) CS, FS는 상장기업의 경우에만 적용함

2. 강건성 분석

기존 회귀분석에서는 탈세제보건수에 해당 지방청 관할지역의 인구수를 나누어 계산한 인구수 천명당 탈세제보건수를 독립변수로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고자 탈세제보건수를 나누는 분모를 탈세제보와 지역성을 감안한 다른 요인으로 변경하여 회귀분석 결과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새로운 독립변수는 탈세제보건수에 지방청 관할지역의 지역내총생산(GRDP)을 나누어 적용하였다. 지역내총생산(GRDP)는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하는 '시도별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의 지역내총생산(시장가격)의 명목금액을 백억단위로 환산하여 적용하였다. 지방청별 관할지역 중 강원도와 경기도는 일부는 중부청, 일부는 인천청으로 나뉘므로 국가통계포털의 '경기도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과 '강원도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자료를 통해 분리하여 적용하였다. 독립변수만 변경하여 회귀모형(1)을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비상장기업은 기존 회귀분석과 동일하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대하여 1% 유의수준의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상장기업 또한 기존 회귀분석 결과와 동일하게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며 회귀분석 결과의 강건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표 10〉 회귀분석 결과(독립변수 변경)

$$ETR_{it} = \beta_0 + \beta_1 TEWBR_{it} + \beta_2 SIZE_{it} + \beta_3 LEV_{it} + \beta_4 OCF_{it} + \beta_5 ROA_{it} + \beta_6 PPE_{it} + \beta_7 CASH_{it} + \beta_8 NOL_{it} + \beta_9 BIGAUDIT_{it} + \beta_{10} CS_{it} + \beta_{11} FS_{it} + \sum ES + \sum IND + \sum YEAR + \epsilon_{it}$$

변수	[1] 표본 : 비상장기업 종속 : GAAP_ETR 독립 : GRDP(백억)당 탈세제보건수		[2] 표본 : 비상장기업 종속 : CASH_ETR 독립 : GRDP(백억)당 탈세제보건수		[3] 표본 : 상장기업 종속 : GAAP_ETR 독립 : GRDP(백억)당 탈세제보건수		[4] 표본 : 상장기업 종속 : CASH_ETR 독립 : GRDP(백억)당 탈세제보건수	
	계수	t값	계수	t값	계수	t값	계수	t값
TEWBR	−0.0544 ***	−5.09	−0.0741 ***	−6.26	−0.0197	−0.50	−0.0432	−0.79
SIZE	−0.0107 ***	−22.46	−0.0123 ***	−23.26	−0.0104 ***	−6.13	−0.0106 ***	−4.50
LEV	0.0066 ***	4.09	0.0005	0.26	−0.0808 ***	−9.13	−0.0938 ***	−7.62
OCF	−0.0332 ***	−13.05	−0.0390 ***	−13.85	−0.0771 ***	−4.15	−0.0840 ***	−3.25
ROA	0.1698 ***	33.97	0.2053 ***	37.09	0.4694 ***	16.42	0.7965 ***	20.03

〈표 10〉 회귀분석 결과(독립변수 변경) (계속)

변수	[1] 표본 : 비상장기업 종속 : GAAP_ETR 독립 : GRDP(백억)당 탈세제보건수		[2] 표본 : 비상장기업 종속 : CASH_ETR 독립 : GRDP(백억)당 탈세제보건수		[3] 표본 : 상장기업 종속 : GAAP_ETR 독립 : GRDP(백억)당 탈세제보건수		[4] 표본 : 상장기업 종속 : CASH_ETR 독립 : GRDP(백억)당 탈세제보건수	
	계수	t값	계수	t값	계수	t값	계수	t값
PPE	0.0627 ***	26.61	0.0674 ***	25.83	0.0993 ***	7.57	0.1078 ***	5.90
CASH	−0.0253 ***	−9.42	−0.0289 ***	−9.73	−0.0271 **	−2.44	−0.0343 **	−2.22
NOL	0.0994 ***	92.64	0.1053 ***	88.65	0.0630 ***	11.56	0.0948 ***	12.52
BIGAUDIT	−0.0107 ***	−8.32	−0.0162 ***	−11.34	0.0002	0.08	−0.0043	−1.03
CS	Not included		Not included		−0.0001	−0.58	−0.0003 **	−2.17
FS	Not included		Not included		−0.0001	−0.87	−0.0001	−0.57
Ent−SIZE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DUSTRY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YEAR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Adj.R^2$	0.1355		0.1345		0.1312		0.1355	
표본 수	147,781		147,781		9,484		9,484	

주1) $*p<0.10$, $**p<0.05$, $***p<0.01$

주2) CS, FS는 상장기업의 경우만 적용함

주3) 지역내총생산(GRDP) 자료가 2021년까지만 존재하여 표본 수 감소(2022, 2023년 표본 제외됨)

3. 매개효과 검증

지역별 탈세제보율이 사회적 자본을 매개체로 기업의 조세회피에 영향을 줄 것을 예상한 바 있다. Baron et al.(1986)에서는 매개체가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이 맞는지 검증하는 방법으로 3단계를 제안하였다. 1단계는 독립변수가 매개체인 매개변수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고, 2단계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마지막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경우 독립변수가 종속

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데에도 불구하고 매개변수가 투입되었을 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지게 된다.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독립변수로만 단순회귀분석을 돌렸을 때에 비해 매개변수를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돌렸을 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가 작아지게 된다. 대체로 여러 원인이 있는 현상을 다룸에 따라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경우보다는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경우가 현실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은 수치화할 수 없는 개념이므로 사회적 자본을 비추어볼 수 있는 몇 가지 대용치들을 매개변수로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매개변수는 국가통계포털에서 시·도 지역별로 나누어 제공하는 데이터인 헌혈, 자원봉사, 현금기부, 사회적관계망[32]에 대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자원봉사 및 현금기부, 사회적관계망은 통계청 사회조사로써 2년 단위로 생산되는 통계자료이며 인구 및 가구 등을 기준으로 특정한 가중값을 적용하여 추정한 비율이다. 따라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연도는 보간법을 이용하여 보충 적용하였다.[33] 헌혈은 지역별 인구수 대비 헌혈실적을 계산한 헌혈률이다. 지역의 구분에 있어서도 헌혈의 경우 일부 지자체가 묶여 제공되고 있어 나머지 3개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34] 이에 따라 4가지의 사회적 자본 대용치들을 각각 값이 큰 순서대로 순위를 매긴 후 마지막 순위로 나누어 정규화하고, 정규화된 4가지 데이터를 합산하여 평균한 값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35]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의 신뢰를 높이고자 종속변수 GAAP_ETR과 독립변수 탈세제보율(당년)도 동일하게 순위를 매긴 후 정규화하였다.

검증결과는 <표 11>과 같다. 1단계 탈세제보율과 매개변수 간에는 1% 유의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2단계 탈세제보율과 GAAP_ETR 간의 단순 회귀분석 결과 1% 유의수준의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탈세제보율과 매개변수를 함께 적용하여 종속변수인 GAAP_ETR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을 처리한 결과 탈세제보율은 종속변수에 대해 여전히 1% 유의수준의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나 t값은 −34.42에서 −28.06으로 낮아진 것을 확인하였다.[36] 이는 Baron et al.(1986)의 연구에 비추어보아 매개변수가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32) 사회적관계망은 아래 3가지 항목에 대한 평균값으로 적용하였다.
1.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있음
2. 갑자기 많은 돈을 빌려야 할 경우 −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있음
3.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있음

33) 전년도 비율+(익년도 비율−전년도 비율)/2

34) 사회조사 데이터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로 총 17곳으로 나뉘어져 제공되며 헌혈의 경우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이 묶여져 총 13곳으로 나뉘어져 제공된다.

35) 예를 들어 100개의 표본이 있는 경우 순위는 큰 순서대로 1부터 순차 적용되며 정규화는 해당 순위에 100을 나눈다. 따라서 1순위의 경우는 정규화 시 1/100=0.01로 표기된다.

36) 매개변수도 종속변수에 대해 1% 유의수준의 음(−)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t값 −22,52).

보이며 사회적 자본이 지역별 탈세제보율의 매개체로서 기업의 조세회피에 영향을 전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독립변수인 탈세제보율은 지역을 지방청 기준으로 나누었는데 반해 매개변수는 지역을 시·도로 나누어 적용했음에 따라 지역을 구분하는 기준이 상이하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

〈표 11〉 매개효과 검증

(종속변수) GAAP_ETR / (독립변수) TEWBR1

구분		매개변수(n=147,781)			충족 여부
		$Adj.R^2$	계수	t값	
1단계	독립변수 → 매개변수	0.0326	0.1105 ***	70.63	Y
2단계	독립변수 → 종속변수	0.0062	−0.082 ***	−34.42	Y
3단계	독립+매개변수 → 종속변수	0.0105	−0.073 ***	−28.06	Y (부분매개효과)

주1) $*p<0.10$, $**p<0.05$, $***p<0.01$
주2)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도 순위를 매겨 정규화를 적용하였다.
주3) 자원봉사 자료의 경우 2021년까지만 존재하여 표본 수 감소(2022, 2023년 표본 제외됨)

4. 지역효과 분석

주회귀분석의 결과를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지방청별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지방청별로 회귀모형(1)을 분석한 결과는 <표 12>의 패널A와 같다. 주회귀분석에서 지역별 탈세제보율과 기업의 조세회피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 것과는 다르게 지방청별로 나누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는 인천청 이외에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인천청의 경우에도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지만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독립변수인 탈세제보율이 지방청별로 제공되는 데이터임에 따라 전국의 지역을 단 7곳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세분화된 지역의 탈세제보 현황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연도고정효과를 제거하고 지방청을 고정효과로 넣은 경우에도 <표 12>의 패널B에 확인되는 바처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유의성도 1%에서 10% 이내로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효과가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탈세제보율도 지역의 한 특성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될 수 있고 탈세제보율 자체가 종속변수인 ETR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적 특징을 가지는 변수로 매개효과 검증에 사용된 4종류의 사회적 자본 대용치들을 통제변수로 추가하여 분석하였다.[37] 분석결과는 <표 12>의 패널B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변수를 추가한 후에도 여전히 탈세제보율이 1% 유의수준의 음(−)의 상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사회적 자본 관련 변수를 추가하여 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탈세제보율 자체가 종속변수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력을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지역 누락변수의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진행된다면 탈세제보율의 설명력을 보다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12〉 지역효과 분석

(종속변수) GAAP_ETR / (독립변수) TEWBR1					
패널A : 지방청별 회귀분석 결과					
	구분	표본 수	$Adj.R^2$	계수	t값
1	서울청	53,408	0.1341	0.1477348 ***	9.05
2	중부청	51,286	0.1332	0.0447566 **	2.51
3	인천청	8,501	0.1313	−0.1144665	−0.90
4	대전청	17,493	0.1297	0.0724819 ***	2.84
5	광주청	11,415	0.1414	0.1052798 ***	2.77
6	대구청	14,735	0.1229	0.1280304 ***	3.44
7	부산청	32,207	0.1386	0.1021024 **	4.77

37) 매개효과 검증 시에는 변수를 하나로 합쳐야 하기 때문에 순위 및 정규화를 적용하였으나 본 추가분석에서는 순위적용 없이 기존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표 12〉 지역효과 분석 (계속)

패널B : 회귀분석 결과(지역고정효과, 지역변수 추가)

변수	주회귀분석		지역고정효과		지역변수 추가	
	계수	t값	계수	t값	계수	t값
TEWBR1	−0.0136 ***	−5.90	0.0084 *	1.94	−0.0090 ***	−2.64
B_DONATION					−0.0412 **	−2.36
C_DONATION					−0.0045	−0.31
VOLUNTEER					0.0287	1.20
NETWORK					0.0213	1.20
SIZE	−0.0094 ***	−22.42	−0.0081 ***	−19.54	−0.0107 ***	−22.28
LEV	0.0092 ***	6.46	0.0100 ***	7.03	0.0066 ***	4.08
OCF	−0.0328 ***	−14.75	−0.0338 ***	−15.17	−0.0333 ***	−13.09
ROA	0.1664 ***	38.23	0.1684 ***	38.61	0.1698 ***	33.97
PPE	0.0627 ***	29.95	0.0601 ***	28.60	0.0628 ***	26.58
CASH	−0.0258 ***	−11.10	−0.0211 ***	−9.09	−0.0249 ***	−9.26
NOL	0.0979 ***	103.28	0.0977 ***	102.80	0.0994 ***	92.57
BIGAUDIT	−0.0124 ***	−10.59	−0.0153 ***	−13.15	−0.0106 ***	−8.20
INDUSTRY	Included		Included		Included	
YEAR	Included		Not included		Included	
REGION	Not included		Included		Not included	
$Adj.R^2$	0.1336		0.1295		0.1356	
표본 수	189,045		189,045		147,781	

주1) $^{*}p<0.10$, $^{**}p<0.05$, $^{***}p<0.01$

주2) B_DONATION=헌혈, C_DONATION=현금기부, VOLUNTEER=자원봉사, NETWORK=사회적관계망, REGION=지방청 고정효과

주3) 지역변수 추가분석의 경우 추가된 자원봉사 자료가 2021년까지만 존재하여 표본 수 감소(2022, 2023년 표본 제외됨)

Ⅵ.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TS－2000을 통해 추출한 2012년~2023년간의 비상장기업에 대한 기업연도 데이터를 대상으로 지방청별 탈세제보가 지방청별 관할지역에 본점을 둔 기업의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탈세제보 현황자료를 이용하여 관할지역의 인구수로 나눈 탈세제보율을 독립변수로 활용하고 기업의 ETR을 조세회피의 대용치로 설정하여 두 변수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지역별 탈세제보율이 높아질수록 기업의 조세회피가 1% 유의수준에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업규모별 횡단면 차이분석을 실시한 바,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모두 1% 유의수준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으며 그 중 중견기업이 가장 강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한편, 연도별 분석에서는 대체로 전국 탈세제보가 전년 대비 증가한 해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감소한 해는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는데 그 영향이 당년에 미치거나 익년으로 지연되어 미치는 듯한 패턴을 보여 주었다.

추가분석을 통해 상장기업을 분석한 결과 비상장기업과는 달리 지역별 탈세제보율과 조세회피 간에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상장기업은 공시의무 이행에 따라 공개된 정보가 많고 정기세무조사를 통해 비상장기업에 비해 적발위험이 더 높은 것에 따른 차이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가설은 비상장기업의 경우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지역별 탈세제보율이 해당 지역에 본점을 둔 기업의 조세회피를 유의하게 감소한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며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가설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사회적 자본이 탈세제보율과 기업의 조세회피 사이에 매개체로써 효과를 가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Baron et al.(1986)에 의한 3단계 검증을 적용하였고 그 결과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나아가 지역효과를 확인해보기 위하여 지방청별 횡단면 차이분석과 주회귀분석 상 연도고정효과를 제거하고 지역고정효과를 적용하여 추가분석 하였다. 그 결과 지방청별로 회귀분석을 적용하였을 때에는 주회귀분석과는 다르게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되거나 유의하지 않은 음(－)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지역고정효과를 추가하였을 때에도 탈세제보율의 유의성이 떨어지고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탈세제보율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고자 매개효과 검증에 사용된 사회적 자본의 대용치를 지역변수로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역변수를 추가하여 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탈세제보율이 1% 유의수준의 음(－)의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탈세제보율이 종속변수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력을 갖는다고 해석하였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탈세제보에 대한 선행연구가 주로 탈세제보포상금에 집중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문헌연구를 통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제도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는 것에서 나아가 탈세제보와 조세회피의 관계를 실증분석을 통해 입증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또한 탈세제보가 이미 발생한 조세회피 행위의 적발 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역할 또한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는 것에 공헌점이 있다. 탈세제보 활성화를 추진하는 정책의 방향에 맞추어 정책에 참고할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정책 의사결정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첫 번째로 지방청별 탈세제보건수를 활용하였는데 지방청은 전국 7곳에 불과하여 지방청별 관할지역 면적이 매우 넓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여 더 작은 지역단위(세무서별, 지자체별 등)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한다면 통계적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로는 종속변수인 ETR은 조세회피의 대용치로써 조세회피 자체를 측정할 수 없음에 따라 기업의 조세회피 의도와 행동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세 번째는 지방청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본사 주소와 통제변수로 활용된 산업분류가 당시 데이터가 아닌 현재 데이터라는 한계가 있다. 본사 이전이나 산업분류 변경이 흔히 발생하는 일은 아니지만 주요한 기준값임에 따라 당시 데이터가 제공된다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연구방향으로는 기업규모별 횡단면 분석에서 중견기업이 가장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그 주원인이 명성비용에 관한 것인지, 사업범위에 관한 것인지 또는 주로 탈세제보의 대상이 되는 경우인 것인지 등 그 원인을 조명하는 후속연구가 진행된다면 정책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납세자유형별・지역별 탈세제보 자료가 생산된다면 직접적인 탈세제보가 기업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에 대한 추가분석이 가능하여 보다 세분화된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통계자료〉

국세청. 세무서별・세목별 세수 현황. 각 연도(2014～2023).

국세청. 탈세제보자료 처리 현황. 각 연도(2011～2023).

대한적십자사. 시・도별 인구대비 헌혈실적. 각 연도(2011～2023).

통계청. 강원특별자치도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각 연도(2011～2021).

통계청. 경기도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각 연도(2011～2021).

통계청. 고령인구비율(시도/시/군/구). 각 연도(2011～2023).

통계청. 사회적 관계망 (13세 이상 인구). 각 연도(2011, 2013, 2015, 2017, 2019, 2021, 2023).

통계청. 시도별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각 연도(2011～2021).

통계청. 자원봉사활동 (지난 1년간, 복수응답, 13세 이상 인구). 각 연도(2011, 2013, 2015, 2017, 2019, 2021).

통계청. 현금기부 인구 (지난 1년간, 복수응답, 13세 이상 인구). 각 연도(2011, 2013, 2015, 2017, 2019, 2021, 2023).

한국상장회사협의회. TS－2000. 각 연도(2011～2023)

〈보도자료〉

국세청 보도자료. 2012. 시민과 함께하는 탈세감시체계를 확립한다 －국세청『바른세금 지킴이』출범－.

국세청 보도자료. 2018. 국민의 참여와 관심이 탈세를 막을 수 있다 － 국민 참여 탈세감시제도 활성화 추진 －.

국세청 보도자료. 2018. 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 활성화 및『바른세금 지킴이』개편 － 국민이 참여하는 탈세감시체계가 성실납세문화 이끌어! －.

〈국내문헌〉

고윤성・기은선. 2014. “최고경영자 교체와 조세회피”. 경영학연구 제43권 제4호 : 1169－1196.

김임현・김진수. 2019. “브랜드가치와 조세회피”. 회계정보연구 제37권 제3호 : 259－280.

김진호. 2017. “탈세제보 포상금제도가 탈세제보 및 세수에 미치는 영향분석 －탈세정보 포상금 규모의 영향분석－”. 가천대학교 대학원.

박훈・허원. 2015. “탈세제보와 포상금에 대한 연구”. 조세와 법 제8권 제2호 : 141－189.

서갑수・최미화. 2017. “기업의 CSR성과, CEO교체 및 조세회피”. 경영과 정보연구 제36권 제3호 : 255－268.

심해린・구정은・최기호. 2019.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기업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제36권 제1호 : 81－111.

유종남. 2018. “탈세제보 제도에 관한 연구 : －포상금 관련 소송 원인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

교 세무전문대학원.
이상민・박명호・김병준・박대근. 2021.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인터넷 뉴스 포털에서의 탈세 논란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제22권 제5호 : 51－57.
이예지・최기호. 2017.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세무전략유형 분석”. 한국회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7(2) : 1－42.
이정환・조진형・김상희. 2021. “한국 시장에서의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조세회피”. 아태비즈니스연구 제12권 1호 : 195－208.
정철화・신호영. 2020. “탈세제보포상금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중요한 자료” 및 “탈루세액”의 범위를 중심으로－. 조세연구 제20권 제2집 : 129－162.
지병규・김성환. 2018. “세무조사가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회계와 정책연구 제23권 제4호 : 255－288.
최재호・김형국. 2021. “공공기관의 조세회피”. 세무회계연구 제67호 : 75－92.

〈외국문헌〉

Baron, R. M., and D. A. Kenny.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 1173－1182.
Davis, A. K., D. A. Guenther, L. K. Krull and B. M. Williams. 2016. “Do socially responsible firms pay more taxes”. *The Accounting Review* 91(1) : 47－68.
Djankov, S., T. Ganser, C. McLiesh, R. Ramalho and A. Shleifer. 2008. “The Effect of Corporate Taxes on Investment and Entrepreneurship”. Working paper,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Available at : http : //www.nber.org/papers/w13756.
Hasan, I., C. Hoi, Q. Wu and H. Zhang. 2017. “Does Social Capital Matter in Corporate Decisions? Evidence from Corporate Tax Avoidanc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55(3) : 629－668.
Hoi, C. K., Q. Wu and H. Zhang. 2013. “I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associated with tax avoidance? Evidence from irresponsible CSR activities”. *The Accounting Review* 88(6) : 2025－2059.
Ireland, R. D., M. A. Hitt, S. M. Camp and D. L. Sexton. 2001. “Integrating entrepreneurship and strategic management actions to create firm wealth”. *The Academy of Management Executive*. 15(1) : 49－63.
Marjit, S., A. Seidel and M. Thum. 2017. “Tax Evasion, Corruption and Tax Loopholes”. *German Economic Review* 18(3) : 283－301.
Wilde, J. H. 2017. “The Deterrent Effect of Employee Whistleblowing on Firms’ Financial Misreporting and Tax Aggressiveness”. *The Accounting Review* 92(5) : 247－280.
Yeganeh, H. 2020.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social impacts of large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the age of globalization”. *Critical Perspectives on International Business*. 16(3) : 193－208.

The Deterrent Effects of the Regional Tax Evasion Whistle Blowing Rate on the Corporate Tax Avoidance

<Abstract>

Tax evasion whistle blowing increases the risk of detection by causing a tax audit. Furthermore, even if it is not a direct tax evasion whistle blowing, “social capital,” an intangible asset that benefits individuals or groups through interactions between members of society, is expected to affect tax avoidance by becoming a medium connecting tax evasion whistle blowing and corporate tax avoidance. In addition, the influence of tax evasion whistle blowing is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as the National Tax Service is steadily easing the standards for payment of a reward for tax evasion whistle blowing to revitalize tax evasion whistle blowing. Prior research on tax evasion whistle blowing is limited to a reward for tax evasion whistle blowing, and literature research is the main focus.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prove the relationship by empirically analyzing the effect of tax evasion whistle blowing on tax avoidance.

Us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processing of tax evasion whistle blowing data, which is statistical data of the National Tax Service, the tax evasion whistle blowing rate divided by the number of people in the jurisdiction of each NTS’s regional office was set as an independent variable, and GAAP_ETR and CASH_ETR, which are substitutes for tax avoidance, were set as dependent variables, and a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prove the relationship. This study targets a total of 189,045 corporate year samples of unlisted companies from 2012 to 2023 among companies subject to audit under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unlisted companies”).

As a result of empirical studies, it was confirmed that the higher the tax evasion whistle blowing rate by region, the lower the tax avoidance by 1% significance level, and this remained the same even when the analysis was divided by company size and when the independent variable was changed. In the analysis of cross－sectional differences by year, negative (－) correlations were confirmed in the year when the national tax evasion whistle blowing increased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and insignificant results were confirmed in the year when the national tax evasion whistle blowing decreased, confirming that the degree of activation of tax evasion whistle blowing affects tax avoidance.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additional analysis of listed companies on the KOSPI market and KOSDAQ market (hereinafter referred to as “listed compani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ax evasion whistle blowing rate and tax avoidance was confirmed to be insignificant, which was interpreted as a difference arising from the influence of the disclosure obligation of listed companies and regular tax audits. In addition,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were supplemented through regional effect analysis and verification of the mediating effect on whether social capital functions as a medium.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ed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evasion whistle blowing and tax avoidance through empirical analysis in a situation where prior research on tax evasion whistle blowing is mainly focused on a reward for tax evasion whistle blowing. There is also a contributing point in that tax evasion whistle blowing has proved that it can play a role in preventing future tax evasion as well as detecting tax evasion activities that have already occurred. It is expected to be able to provide implications for decision-making on the policy to revitalize tax evasion whistle blowing. The tax evasion whistle blowing rate by NTS's regional offices was used as an independent variable, but there are limitations to the use of data, such as the problem that the scope of the region is too wide as only 7 NTS's regional offices nationwide, and the main address, which is the standard for classification of NTS's regional offices, is the current address, not the address at the time.

In this study, it is thought that if we find the cause of the most significant results for mid-size businesses and conduct a detailed study through tax evasion whistle blowing data by taxpayer type and region, we can help make policy decisions more effectively.

<Key words> Tax evasion whistle blowing, Tax avoidance, Tax audits, Social capital

부 록

〈부록 표 1〉 탈세제보 대상

항목	세부 내용
1.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신고	개발지역 토지 또는 분양권의 불법 전매, 양도 금액 허위 신고, 부당 공제감면 등 양도소득세 탈루 행위 등
2. 조세탈루 부당환급 제보	이중장부 작성, 차명계좌 사용 등으로 실제 매출금액을 축소하거나 가공 인건비를 계상하여 소득금액을 축소 신고하거나 부당하게 환급·공제받는 행위
3.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물품(또는 용역) 구입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가맹점이 발급을 거부하거나 거래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 (전문직 등 의무발급 업종 사업자는 소비자가 발급 요구를 하지 않아도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발급 의무가 있음)
4.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	소비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물품(또는 용역) 구입 시 신용카드 결제를 요구하였으나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5.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사업자 명의 외 타인 명의 금융계좌를 활용한 현금수입 탈루 행위
6.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체납된 세금의 추징(체납처분)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고자 친인척 또는 제3자 명의 등으로 재산을 숨기는 행위
7. 타인명의 사업장 신고	조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행위
8.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자임에도 신고 대상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행위
9.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장려금 수급요건(소득·재산·가구)을 허위로 신고하여 장려금을 부당하게 수급하거나, 부당하게 수급하도록 협조하는 행위

※ 출처 : 국세청 홈택스

〈부록 표 2〉 중요한 자료 판단기준

구분	해당 자료
1. 내부 문서	조세탈루 행위를 실행하기 위해 작성된 기안문, 품의서 및 이와 관련한 전표, 계정별 원장, 기타 자료로서 조세탈루 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 자료
2. 거래장부	거래처, 거래일,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거래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된 일일운영일지, 일별·월별 매출 현황표, 매출장부, 매입장부, 거래처 정산대장 등 각종 거래장부로서 매출누락, 가공경비 계상,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등 조세탈루 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자료 소재 정보	조세탈루 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보관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단, '재무팀 사무실' 등 구체성이 없는 일반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 자료 확보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
4. 원시자료	ERP자료, 매출·매입 데이터자료, 공사원가 데이터자료, 미수채권 상세현황 데이터자료 등 장부에 기입되기 이전의 자료로서 조세탈루 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계약서 등	거래 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서, 합의서, 확인서 등으로서 문서 명의인의 인적사항, 거래금액, 거래기간, 거래의 주요내용 등이 기재되어 조세탈루 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6. 금융거래자료	탈세제보서의 탈루사실을 뒷받침할 거래일자, 거래금액, 거래상대방, 거래수단 등이 기재된 금융거래 자료(단, 특정 계좌번호만을 제공한 경우 또는 일회성 송금내역 자료를 제공한 경우로서 금융거래 상세내역에 대한 별도의 조사과정이 필요한 것은 제외)
7. 공문서	법원 판결문,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기타 관공서에서 작성된 공문서로서 조세탈루 혐의자의 인적사항, 사실관계 등이 충실히 기재되어 구체적 탈루행위, 탈루기간 및 탈루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단, 제보 당시 국세청이 이미 확보하고 있었던 자료는 제외)
8. 기타	기타 피제보자의 구체적 탈루행위 사실, 조세탈루 수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탈루세액의 추징에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을 현저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 또는 해당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탈루세액의 추징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

※ 출처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별표1]

〈부록 표 3〉 국세청 훈령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개정 현황

개정연도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2013	한도액 인상	1억	10억
2013	지급률 인상	최고 5%	최고 15%
2013	지급범위 확대	탈루세액 1억원 이상	탈루세액 5천만원 이상
2014	한도액 인상	10억	20억
2015	한도액 인상	20억	30억
2018	한도액 인상	30억	40억
2018	지급률 인상	최고 15%	최고 20%
2024	지급범위 확대	일부[주1)] 가산세 제외	모든 가산세 포함

주1) 무신고가산세, 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부록 표 4〉 지방청별 관할지역

구분	관할지역
서울청	서울특별시 전체
중부청	경기도 일부 강원도(철원군 제외)
인천청	인천권(인천, 김포, 부천, 광명) 경기 북부권(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철원, 고양, 파주)
대전청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광주청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대구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부산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출처 : 국세청(전국세무관서)

〈부록 표 5〉 지방청별 탈세제보건수

패널A : 지방청별 탈세제보건수

기간구분	서울청	중부청	인천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합계
2012	4,042	3,315		856	639	732	1,503	11,087
2013	6,995	5,976		1,264	850	1,169	2,516	18,770
2014	7,850	5,746		1,329	980	1,237	2,300	19,442
2015	7,341	6,714		1,604	1,251	1,529	2,649	21,088
2016	5,824	5,639		1,341	929	1,146	2,389	17,268
2017	5,947	4,264		1,281	925	958	2,253	15,628
2018	6,067	6,140		2,159	1,328	1,369	3,256	20,319
2019	7,717	4,586	2,901	1,627	1,191	1,447	2,975	22,444
2020	6,177	4,559	2,610	1,646	1,231	1,426	3,498	21,147
2021	5,751	3,999	2,721	1,840	1,409	1,631	3,447	20,798
2022	5,110	3,470	1,899	1,618	1,109	1,504	3,067	17,777
2023	5,403	4,053	2,411	1,995	1,446	1,476	2,979	19,763
합계	74,224	58,461	12,542	18,560	13,288	15,624	32,832	225,5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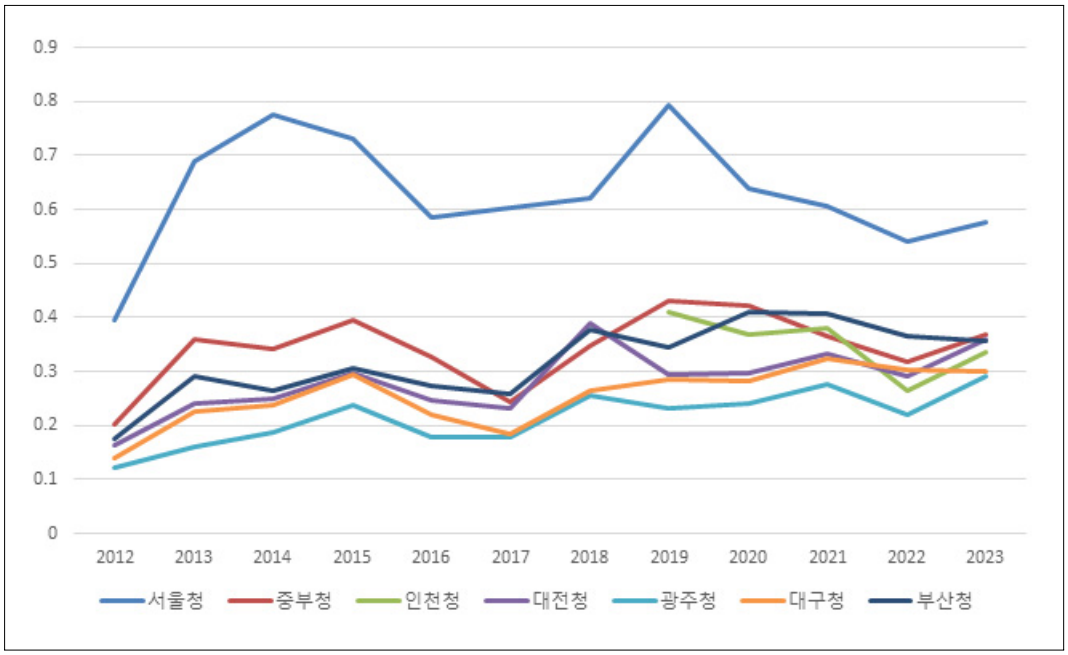
패널B : 탈세제보율(당년)

기간구분	서울청	중부청	인천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2012	0.396	0.201		0.164	0.122	0.141	0.175	
2013	0.690	0.359		0.240	0.162	0.225	0.292	
2014	0.777	0.342		0.249	0.187	0.238	0.266	
2015	0.732	0.395		0.298	0.238	0.295	0.305	
2016	0.586	0.328		0.246	0.177	0.221	0.275	
2017	0.603	0.245		0.233	0.177	0.185	0.260	
2018	0.621	0.349		0.390	0.256	0.266	0.377	
2019	0.793	0.430	0.410	0.294	0.232	0.284	0.346	
2020	0.639	0.422	0.368	0.297	0.241	0.282	0.409	
2021	0.605	0.366	0.382	0.332	0.278	0.325	0.407	
2022	0.542	0.317	0.266	0.292	0.221	0.303	0.366	
2023	0.576	0.369	0.337	0.359	0.290	0.299	0.358	

주1) 탈세제보율＝탈세제보건수/인구수(천명)

〈부록 그림 1〉 지방청별 탈세제보율

(단위 : 건)



주1) 탈세제보율＝탈세제보건수/인구수(천명)

〈부록 표 6〉 변수 설정

※ 종속변수(조세회피)
ETR : 유효세율(조세회피 대용치)
GAAP_ETR : 법인세비용/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CASH_ETR : 법인세납부액(=법인세비용−이연법인세비용[38])/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독립변수(탈세제보율)
TEWBR(Tax Evasion Whistle Blowing Rate) : 탈세제보율
TEWBR1(당년) : 당해 인구수 천명당 탈세제보건수(=탈세제보건수/관할지역인구수)
TEWBR2(2년) : 2년 합산 인구수 천명당 탈세제보건수[39]

※ 통제변수
SIZE : 총자산의 자연로그
LEV : 총부채/총자산
OCF :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기초자산
ROA : 당기순이익/총자산평잔(=기초자산+기말자산의 평균)
PPE : (유형자산 − 토지 − 건설중인자산) / 기말자산
CASH : (현금및현금성자산 + 단기금융상품) / 기말자산
NOL : 전기이월결손금이 있으면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으면 0
BIGAUDIT : BIG4 회계법인(삼일, 삼정, 한영, 안진) 감사대상이면 1, 아니면 0
ES : 기업규모(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기타) 더미
IND : 산업 더미
YEAR : 연도 더미
ϵ : 잔차항

* 윈저라이징 : GAAP_ETR(0～1), CASH_ETR(0～1), SIZE(1%), LEV(1%), OCF(1%), ROA(1%), PPE(1%), CASH(1%)

38) 이연법인세부채변동액(당년도 − 전년도 이연법인세부채) − 이연법인세자산변동액(당년도 − 전년도 이연법인세자산)

39) 해당년도와 전년도의 탈세제보율을 합산하여 계산(ex> 2021년은 2020～2021년)하였으며 탈세제보와 조세회피의 인과분석을 위하여 내생성을 고려해 전년 탈세제보율을 합산하였다.

〈부록 표 7〉 상장기업 산업·지방청별 표본 분포 현황

구분	분류	데이터 건수	비율(%)
산업	제조업	7,768	66.5
	정보통신업	1,298	11.1
	도매 및 소매업	829	7.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77	6.7
	건설업	354	3.0
	운수 및 창고업	177	1.5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47	1.3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01	0.9
	교육 서비스업	83	0.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	0.3
	부동산업	31	0.3
	농업, 임업 및 어업	26	0.2
	숙박 및 음식점업	23	0.2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7	0.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2	0.1
	합 계	11,675	100
지방청	서울청	4,400	37.7
	중부청	3,602	30.9
	부산청	1,216	10.4
	대전청	1,185	10.1
	대구청	698	6.0
	광주청	351	3.0
	인천청	223	1.9
	합 계	11,675	100

주1) 회귀분석에서는 산업을 중분류로 사용하였으나 본 표에서는 중분류 항목으로 표기하기에 내용이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대분류로 작성함

〈부록 표 8〉 상장기업 기술통계표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	1분위	중간	3분위	최대
GAAP_ETR	11,675	−0.212	0.132	−1	−0.252	−0.208	−0.145	0
CASH_ETR	11,675	−0.231	0.183	−1	−0.280	−0.207	−0.122	0
TEWBR1(당년)	11,675	0.434	0.174	0.122	0.299	0.369	0.586	0.793
TEWBR2(2년)	11,675	0.853	0.345	0.222	0.591	0.737	1.190	1.509
SIZE*	11,675	19.342	1.332	17.084	18.396	19.103	19.984	23.873
LEV*	11,675	0.328	0.181	0.027	0.176	0.314	0.465	0.748
OCF*	11,675	0.075	0.086	−0.161	0.025	0.066	0.117	0.374
ROA*	11,675	0.063	0.055	0.002	0.025	0.048	0.084	0.296
PPE*	11,675	0.140	0.120	0	0.046	0.110	0.204	0.560
CASH*	11,675	0.159	0.151	0.001	0.045	0.113	0.227	0.683
NOL	11,675	0.070	0.256	0	0	0	0	1
BIGAUDIT	11,675	0.484	0.500	0	0	0	1	1
CS	11,675	57.803	15.509	4.390	47.580	58.560	69.130	100
FS	11,675	8.377	11.974	0	1.160	3.390	10.520	100

주1) *은 1% 윈저라이징을 적용한 변수임

〈부록 표 9〉 상장기업 상관계수표(n=11,67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GAAP_ETR	1													
[2] CASH_ETR	0.5965***	1												
[3] TEWBR1 (당년)	−0.0593***	−0.0549***	1											
[4] TEWBR2 (2년)	−0.0467***	−0.0266***	0.8734***	1										
[5] SIZE	−0.1793***	−0.1609***	0.1664***	0.1945***	1									
[6] LEV	−0.1345***	−0.1306***	−0.0037	−0.0148	0.2372***	1								
[7] OCF	0.0470***	0.0714***	0.0015	−0.0093	−0.0155*	−0.1036***	1							
[8] ROA	0.1975***	0.2351***	−0.0224**	0.0017	−0.1039***	−0.2493***	0.4583***	1						
[9] PPE	0.0216**	0.0035	−0.1778***	−0.2038***	0.1300***	0.2422***	0.1536***	−0.0716***	1					
[10] CASH	0.0885***	0.0988***	0.0622***	0.0785***	−0.2929***	−0.3800***	0.3016***	0.3214***	−0.2598***	1				
[11] NOL	0.1429***	0.1515***	0.0088	0.0163*	−0.1537***	0.0971***	−0.0663***	−0.0002	−0.0509***	0.0145	1			
[12] BIGAUDIT	−0.0901***	−0.0999***	0.1431***	0.1089***	0.4048***	0.0841***	0.0410***	−0.0299***	0.0611***	−0.0849***	−0.0887***	1		
[13] CS	−0.0615***	−0.0848***	0.0542***	0.0235**	0.1269***	−0.1175***	−0.0073	−0.0325***	0.0164*	−0.0088	−0.2104***	0.1760***	1	
[14] FS	−0.0669***	−0.0516***	0.1242***	0.1220***	0.4800***	−0.0561***	0.1545***	0.1321***	0.0374***	0.0320***	−0.0966***	0.2723***	0.0508***	1

주1) $^{*}p<0.10$, $^{**}p<0.05$, $^{***}p<0.01$

산업별 유효세율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김 병 용
(삼덕회계법인)

산업별 유효세율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김병용*

〈요 약〉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23년까지의 한국 기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조세정책과 기업특성이 산업별 유효세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목표는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유통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기업의 특성과 조세정책이 유효세율에 미치는 차이를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기업의 부채비율, 자산규모, 연구개발비 비율, 수익성 등 다양한 재무적 요인이 산업별로 유효세율에 어떻게 차별적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204,605개의 기업－연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세 가지 회귀모형을 구축하였다. 첫째, 산업별 고정효과만을 고려한 모형을 통해 산업 간 유효세율 차이를 분석하였고, 둘째, 주요 재무적 요인을 추가하여 기업 특성이 유효세율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셋째, 각 산업별 재무적 요인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여 산업 고유 특성이 유효세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Shapley Value 분석을 통해 각 요인이 유효세율 차이에 기여하는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제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유효세율을 보였으며, 이는 제조업이 연구개발비 및 감가상각 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더 많이 받는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유통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유효세율을 보였으며, 이는 유통업 특성상 자산이나 설비 투자와 같은 대규모 자본 지출이 상대적으로 작고, 자본집약적이지 않은 특성으로 인해 세제 혜택을 덜 받는 결과로 해석된다. 주요 재무 변수 중에서는 부채비율과 연구개발비가 유효세율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자산규모는 유효세율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본 연구의 기여는 한국의 산업별 유효세율 차이를 구체적으로 규명한 점과 각 산업의 특성에 맞는 조세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Shapley Value 분석을 통해 산업별 조세정책이 기업의 조세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하게 평가함으로써, 향후 맞춤형 조세정책 수립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유효세율, 조세정책, 기업특성, 조세회피, 산업별분석

* 삼덕회계법인

Ⅰ. 서 론

산업별 유효세율(Effective Tax Rate, ETR)은 기업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기업의 조세 전략과 정부의 조세 정책 효과성을 분석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법정 세율이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과 달리, 유효세율은 기업이 실제로 납부하는 세금의 비율을 보여줌으로써 조세 혜택의 실질적 적용 효과와 기업의 조세 회피 전략, 그리고 정부의 조세 정책이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조세정책은 산업별로 차별화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각 산업의 특성과 규제 환경에 맞추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조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산업별 유효세율의 차이를 분석하고 그 결정 요인을 규명하는 것은 조세정책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평가하고, 향후 조세 정책 수립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 동기는 산업별 유효세율의 차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산업별 유효세율 차이를 언급했으나,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23년까지의 데이터를 통해 이러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고, 그 차이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두 번째 연구 동기는 산업별 유효세율 차이가 왜 발생하며, 그 차이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각 산업의 유효세율은 기업의 재무적 특성(예 : 부채비율, 자산 규모 등)뿐만 아니라 정부의 조세 정책, 규제 환경 등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이 각 산업에서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여 유효세율 차이를 발생시키고, 그 차이가 장기적으로 유지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산업별 유효세율의 구조적 지속성과 차이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문적 및 실무적 기여를 제공한다. 첫째, 산업별 유효세율에 대한 체계적인 실증 분석을 통해, 실제로 산업별로 유효세율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차이가 오랜 기간 동안 일관되게 유지되는지를 검증한다. 둘째, 기업의 재무적 특성과 조세 정책이 산업별 유효세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각 산업에서 유효세율이 왜 다른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제조업의 경우 연구개발비와 자산집약도가 높은 특성으로 인해 세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유효세율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반면,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이 제조업에서는 유효세율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서비스업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셋째, 조세 정책의 산업 간 형평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여, 향후 조세 정책 수립 과정에서 산업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적 제언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구성된다. 제Ⅱ장에서는 유효세율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기존 연구들을 검토한다. 제Ⅲ장에서는 연구가설과 연구방법론을 제시하고, 제Ⅳ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각 결과를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결론과 한계점을 제시하고 본 연구의 시사점을 논의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이론적 배경

산업별 유효세율의 차이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며, 이러한 차이는 기업의 조세 전략과 정부의 조세 정책 효과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산업별로 세법의 적용 방식, 자산 및 수익 구조, 조세 회피 전략, 정부의 세금 집행 수준, 그리고 정치적 요인들이 서로 다르게 작용하여 유효세율에 차이를 가져온다. 이러한 차이는 산업별 조세정책의 형평성과 효과성을 평가하고, 향후 맞춤형 조세정책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산업별로 세법의 적용 방식과 세제 혜택이 다르게 적용된다. 특정 산업은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감가상각 혜택 등의 세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이는 해당 산업의 유효세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혜택은 주로 제조업과 같은 자본집약적 산업에 집중되며, 서비스업처럼 무형자산이 많은 산업은 상대적으로 이러한 혜택을 덜 받기 때문에 유효세율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Heitzman & Ogneva(2019)는 세제 혜택이 집중되는 산업에서 조세 회피 전략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을 지적하면서, 이는 산업별 유효세율의 차이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언급하였다.

산업별로 자산구조와 수익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세금 부담의 형태도 달라진다. 제조업과 같은 자본집약적 산업은 고정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공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어 유효세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반면, 서비스업은 무형자산의 비중이 높아 감가상각 혜택을 덜 받기 때문에 유효세율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자산구조와 수익구조의 차이는 각 산업의 유효세율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Heitzman & Ogneva, 2019).

동일한 산업 내의 기업들은 경쟁적 이유로 유사한 조세 회피 전략을 구사하는 경향이 있다. Heitzman & Ogneva(2019)에 따르면, 산업 내 선도 기업들이 특정 세금 절감 전략을 채택하면,

다른 기업들도 이와 유사한 전략을 구사하여 세금 부담을 낮추려고 한다. 이는 산업 내 기업들이 유사한 수준의 유효세율을 가지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산업별로 유사한 조세 회피 전략이 관찰된다. 이러한 현상은 특정 산업에서 조세 전략이 산업 내 다른 기업들에 의해 모방되고, 이는 결국 산업 전체의 유효세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다.

정부는 각 산업에 대해 상이한 세금 집행 및 감시 정책을 적용한다. Heitzman & Ogneva (2019)는 세금 회피 전략이 자주 사용되는 산업일수록 정부의 감시가 더 엄격하게 이루어진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엄격한 감시는 기업들이 보다 신중하게 조세 전략을 구사하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해당 산업의 유효세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반면, 정부의 감시가 덜한 산업에서는 보다 공격적인 조세 회피 전략이 가능하여 유효세율이 낮아질 수 있다.

정치적 요인과 법적 판례 또한 산업별 유효세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정 산업은 정치적 로비나 압력을 통해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산업의 유효세율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 Heitzman & Ogneva(2019)는 정치적 영향력이 큰 산업일수록 세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산업별 유효세율 차이에 기여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법적 판례가 특정 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산업의 유효세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추가적으로 Shapley Value 이론은 산업별 유효세율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각 요인들이 전체 유효세율 차이에 기여하는 정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 Shapley Value는 게임 이론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각 참여자가 전체 성과에 기여한 정도를 공정하게 배분하는 방법론이다(Shapley, 1953). 본 연구에서는 산업별 고정효과, 독립변수, 그리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 항목들이 유효세율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Shapley Value를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각 요인이 유효세율 차이에 미치는 기여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2. 선행연구 검토

기존 연구들은 주로 개별 기업의 특성에 따라 유효세율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산업별로 유효세율의 차이를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Gupta와 Newberry(1997)는 기업의 규모, 수익성, 자본 구조 등의 요인이 유효세율의 변동성을 설명한다고 제시하였으며, Derashid와 Zhang(2003)은 말레이시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부의 산업 정책이 특정 산업의 유효세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개별 기업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산업별 유효세율의 체계적 차이와 그 원인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Dyreng et al.(2014)는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세금 회피 전략이 유효세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각 산업이 공통적으로 구사하는 세금 전략이 유효세율의 결정 요인임을 밝혔다. 이 연구는 산업 간 세금 전략의 차이가 유효세율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Heitzman & Ogneva(2019)는 산업 내의 공통적인 세금 회피 전략이 산업 전체의 유효세율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산업별 유효세율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인임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의 산업별 유효세율을 분석하고, 각 산업의 특성에 따라 조세 정책의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세정책이 각 산업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평가하고, 향후 조세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Ⅲ. 연구가설 및 연구방법론

1. 연구가설

본 연구는 한국 기업의 산업별 유효세율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 한국 기업의 주요 산업별 유효세율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산업별로 유효세율이 다른 이유는 세법, 세제 혜택, 자산 및 수익 구조, 조세 회피 전략, 정부의 세금 집행 수준, 정치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차이가 체계적이고 장기간 유지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2 : 주요 재무적 요인(부채비율, 자산규모, 연구개발비 등)은 유효세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업의 재무적 특성이 유효세율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각 산업에서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는지를 분석한다. 예를 들어,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유효세율이 낮아지거나, 자산규모가 클수록 유효세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설 3 : 산업별 고정효과와 주요 재무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이 유효세율에 차별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산업별 특성과 재무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이 유효세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특정 산업에서 특정 재무적 요인이 유효세율을 더 크게 변화시키는지를 평가한다. 예를 들어, 제조업에서는 연구개발비가 유효세율을 크게 낮추는 반면, 서비스업에서는 그 효과가 적을 수 있다.

2. 연구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산업별 유효세율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회귀모형을 설정하였다. 각 모형은 산업고정효과, 주요 재무적 요인, 그리고 상호작용 항을 순차적으로 포함하여 분석하였으며, Shapley Value를 이용해 각 변수가 유효세율에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하였다.

가. 모형(1) : 산업별 고정효과만을 고려한 모델

$$ETR_{i,t} = \alpha + \sum_{i=1}^{n-1} \delta_{i,t} D_i + \varepsilon_{i,t} \quad (1)$$

α =기준 산업의 고정효과를 나타내며, 특정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평균 유효세율 수준을 의미
D_i =산업 고정효과로, 특정 산업에 속하는 기업의 유효세율이 기준 산업에 비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의미
$\delta_{i,t}$ =산업 고정효과의 계수
$\varepsilon_{i,t}$ =오차항으로, 모델에서 설명되지 않는 유효세율의 변동성을 나타냄

이 모형은 유효세율에 대해 산업별 고정효과만을 고려한 기본적인 모델로, 각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이 다른 산업에 비해 유효세율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한다.

나. 모형(2) : 산업별 고정효과와 주요 재무적 요인을 고려한 모델

$$ETR_{i,t} = \alpha + \sum_{i=1}^{n-1} \delta_{i,t} D_i + \beta \cdot X_{i,t} + \varepsilon_{i,t} \quad (2)$$

$\beta \cdot X_{i,t}$ =주요 재무적 요인들의 결합 효과
β =독립 변수에 대한 계수 벡터로, 각 계수 β_i는 특정 재무적 요인이 유효세율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
$X_{i,t}$ =주요 재무적 요인들(부채비율, 자산규모 등)에 대한 독립 변수 벡터

이 모형은 산업별 고정효과뿐만 아니라, 주요 독립 변수들이 유효세율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는 모델이다. 이를 통해 특정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의 유효세율이 재무적 특성에 의해 어떻게 조정되는지를 분석한다.

다. 모형(3) : 산업별 고정효과, 주요 재무적 요인, 그리고 상호작용 항을 고려한 모델

$$ETR_{i,t} = \alpha + \sum_{i=1}^{n-1} \delta_{i,t} D_i + \beta \cdot X_{i,t} + \sum_{i=1}^{n-1} \gamma_{i,t} (D_i \cdot X_{i,t}) + \varepsilon_{i,t} \quad (3)$$

$\gamma_{i,t}(D_i \cdot X_{i,t})$ =상호작용 항으로, 산업고정효과(D_i)와 주요 독립 변수($X_{i,t}$) 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냄
$\gamma_{i,t}$ =특정 산업에서 주요 독립 변수가 유효세율에 미치는 추가적인 영향
$D_i \cdot X_{i,t}$ =특정 산업에 속할 경우 독립 변수가 유효세율에 미치는 영향

이 모형은 산업별 고정효과와 주요 독립 변수뿐만 아니라, 각 독립 변수들이 산업에 따라 유효세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상호작용 항을 추가한 모델이다. 이는 특정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동일한 재무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해당 특성이 다른 산업에서 다르게 작용할 수 있음을 반영한다.

라. Shapley Value의 적용

Shapley Value[1]는 변수의 순서에 상관없이 각 변수의 기여도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모든 가능한 변수의 순열(permutation)을 고려하여 평균적인 기여도를 계산한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 고정효과, 주요 재무적 요인, 그리고 상호작용 항을 포함한 세 가지 변수군을 설

1) Shapley Value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계산된다.
$\Phi_i = \sum_{S \subseteq N \setminus \{i\}} \frac{|S|!(|N|-|S|-1)!}{|N|} [v(S \cup \{i\}) - v(S)]$ 여기서, Φ_i는 변수 i의 Shapley Value, 즉 변수 i의 기여도, S는 다른 변수들의 집합, N은 전체 변수들의 집합, $v(S)$는 변수 집합 S가 모형에서 설명하는 설명력, $v(S \cup \{i\})$는 변수 i가 추가된 후의 설명력을 의미한다(Shapley, 1953).

정하고, Shapley Value 분석을 통해 이들 변수들이 유효세율 변동성에 미치는 기여도를 평가하였다.

특히, Belnap, Hoopes, Wilde(2021)의 연구에서처럼, Shapley Value는 변수들이 모형에서 차지하는 설명력을 정확하게 분배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 이들은 각기 다른 내부 및 외부 요인들이 기업의 조세 결과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Shapley Value를 적용하였고, 그 결과 특정 내부적 요인이 외부 요인에 비해 더 큰 기여도를 가진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를 참고하여, 유효세율의 변동성에 대한 산업 고정효과, 재무적 요인, 그리고 이들 간 상호작용의 상대적 중요도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Shapley Value를 사용하였다.

Shapley Value는 변수의 순서를 바꾸어 모든 가능한 조합을 계산하며, 각 변수의 평균 기여도를 도출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 고정효과, 재무적 요인, 상호작용 항이라는 세 가지 주요 변수군을 설정하고, 이들의 모든 가능한 순열을 고려하여 총 6가지 순서의 조합에 따라 설명력을 순차적으로 계산하였다. 각각의 조합은 다음과 같다.

(1) 산업 고정효과 → 재무적 요인 → 상호작용 항
(2) 산업 고정효과 → 상호작용 항 → 재무적 요인
(3) 재무적 요인 → 산업 고정효과 → 상호작용 항
(4) 재무적 요인 → 상호작용 항 → 산업 고정효과
(5) 상호작용 항 → 산업 고정효과 → 재무적 요인
(6) 상호작용 항 → 재무적 요인 → 산업 고정효과

이러한 6가지 조합을 통해 각 변수를 추가할 때마다 모형의 설명력 변화를 계산하고, 그 차이를 해당 변수의 기여도로 본다. 이를 통해 재무적 요인이 유효세율 변동성에 미치는 가장 큰 기여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즉, 모든 순서에 대해 이 과정을 반복하고, 각 변수의 평균 기여도를 도출하여 최종적으로 각 변수군의 Shapley Value를 산출하였다.

Ⅳ. 실증분석

1. 표본선정과 산업별 분포

본 연구는 NICE평가정보(주)의 VALUE Search를 통해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포함한 외감기업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표 1>은 본 연구의 표본 선정 과정을 연도별로 나타내고 있다. 초기 표본은 총 512,031개의 기업－연도 데이터를 포함하였으나, 여러 단계의 필터링을 통해 최종적으로 204,605개의 표본이 사용되었다. 이 과정은 연구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다.

금융업 및 보험업은 재무 구조와 세무 전략이 다른 산업과 크게 달라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Kim & Limpaphayom(1998) 역시 금융업과 비금융업 간 유효세율 차이가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12월 결산 이외의 기업은 회계 기간 차이로 인해 세부담이 왜곡될 수 있어 분석에서 배제하였다.

재무자료가 불완전하거나 누락된 기업은 유효세율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어 제외되었고,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도 비정상적인 재무 상태로 인해 분석에서 배제되었다. 세전이익 또는 법인세비용이 음수인 기업도 유효세율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제외되었다. 또한, 유효세율이 50%를 초과하는 기업은 일시적 세금 납부 등의 극단값(outlier)으로 분석의 일관성을 해치므로 제외하였다. 이외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극단적인 값을 가진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제외되었다.

<표 2>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204,605개의 표본을 산업별 및 연도별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다. 표본은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유통업[2]으로 분류되며, 각 산업의 연도별 분포를 통해 해당 산업이 본 연구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경제적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산업별로 유효세율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제공한다.

---

2) 본 연구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라 제조업(C00000), 건설업(F00000), 도매 및 소매업(G00000), 금융 및 보험업(K00000)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을 서비스업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제조, 건설, 유통(도소매), 금융업이 경제 내에서 자본집약적 특성과 물리적 자산 활용도가 높은 반면, 나머지 산업군은 상대적으로 인적 자본 및 지식 기반 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예를 들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00000)이나 정보통신업(J00000)은 주로 인적 자원을 활용한 지식 제공 및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며, 운수 및 창고업(H00000)과 같은 산업도 물리적 제품의 직접 생산보다는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업으로 분류된 산업군은 공통적으로 서비스 중심의 경제적 활동을 기반으로 하며, 이와 대비되는 자본집약적 산업군과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이러한 분류를 적용하였다.

제조업은 본 연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으로, 전체 표본의 48.89%에 해당한다. 제조업은 한국 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높은 자본 집약도와 연구개발(R&D) 투자로 인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제조업의 유효세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제조업의 연도별 표본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제조업이 여전히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Gupta & Newberry(1997)의 연구에서도 제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유효세율 분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언급된 바 있다.

서비스업은 전체 표본의 25.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보인다. 서비스업은 무형자산이 많고, 감가상각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제조업에 비해 유효세율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서비스업의 표본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한국 경제에서 서비스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서비스업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건설업은 전체 표본의 7.81%를 차지하며, 가장 낮은 비중을 보인다. 건설업은 프로젝트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 비해 소득의 변동성이 크다. 또한, 건설업은 경기 변동에 민감하여 세금 부담이 다른 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건설업의 표본 수는 연구 기간 동안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건설업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안정적임을 나타낸다.

유통업은 전체 표본의 17.80%를 차지하고 있다. 유통업은 자산 집약도가 낮고, 영업 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세제 혜택을 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유통업은 대규모 자본 투자가 적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 비해 유효세율이 낮을 수 있다. 유통업의 표본은 연구 기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경제에서 유통업의 성장세를 반영한다.

〈표 1〉 표본선정과정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전체표본	39,387	39,387	39,387	39,387	39,387	39,387	39,387	39,387	39,387	39,387	39,387	39,387	39,387	512,031
금융업 등 제외	-1,942	-1,942	-1,942	-1,942	-1,942	-1,942	-1,942	-1,942	-1,942	-1,942	-1,942	-1,942	-1,942	-25,246
12월결산이외 제외	-1,054	-1,054	-1,054	-1,054	-1,054	-1,054	-1,054	-1,054	-1,054	-1,054	-1,054	-1,054	-1,054	-13,702
재무자료미비 제외	-22,443	-21,396	-20,128	-18,817	-17,634	-16,358	-15,529	-15,011	-14,346	-13,998	-12,787	-11,844	-12,562	-212,853
자본잠식 제외	-175	-171	-209	-197	-206	-318	-322	-338	-431	-497	-546	-661	-636	-4,707
세전이익(-) 제외	-969	-1112	-1,272	-1,406	-1,525	-1,561	-1,986	-2,220	-2,390	-2,931	-2,565	-3,117	-3,468	-26,522
법인세비용(-) 제외	-400	-444	-417	-436	-447	-487	-564	-585	-648	-806	-851	-1008	-1,034	-8,127
유효세율 50%초과 제외	-465	-439	-549	-622	-572	-659	-717	-790	-811	-723	-712	-834	-798	-8,691
기타 이상변수 제외	-431	-471	-495	-506	-535	-581	-597	-617	-607	-636	-738	-674	-690	-7,578
최종표본	11,508	12,358	13,321	14,407	15,472	16,427	16,676	16,830	17,158	16,800	18,192	18,253	17,203	204,605

〈표 2〉 표본의 산업-연도별 분포

산업명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백분율(%)
제조업	6,057	6,466	6,960	7,474	7,930	8,227	8,102	8,077	8,204	7,841	8,393	8,373	7,924	100,028	48.89
서비스업	2,472	2,736	2,981	3,331	3,662	4,123	4,274	4,356	4,513	4,469	5,072	5,238	4,937	52,164	25.49
건설업	1,043	1,059	1,108	1,161	1,250	1,299	1,345	1,336	1,314	1,330	1,322	1,271	1,149	15,987	7.81
유통업	1,936	2,097	2,272	2,441	2,630	2,778	2,955	3,061	3,127	3,160	3,405	3,371	3,193	36,426	17.80
합계	11,508	12,358	13,321	14,407	15,472	16,427	16,676	16,830	17,158	16,800	18,192	18,253	17,203	204,60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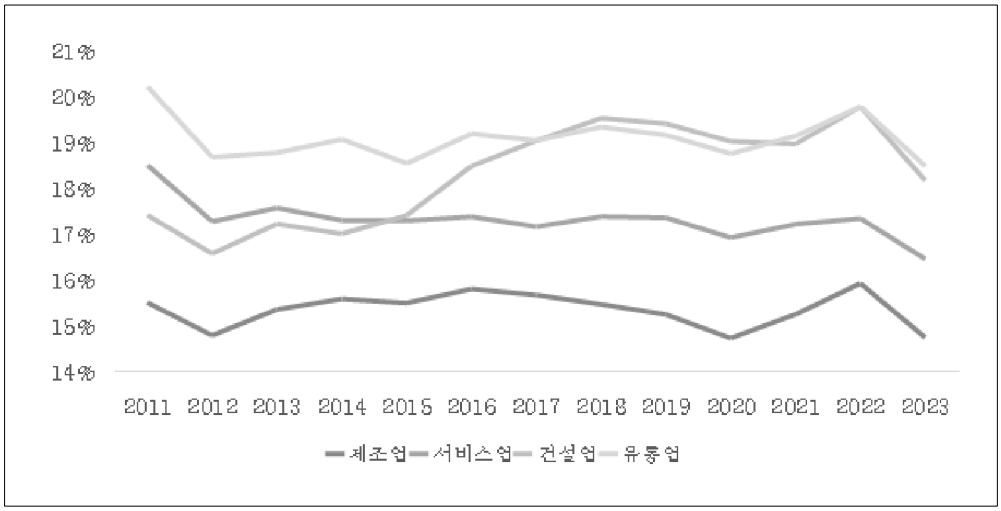
2. 산업별 유효세율 분석

<표 3>과 <그림 1>은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산업별 평균 유효세율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 표는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유통업의 평균 유효세율을 연도별로 비교하여, 각 산업의 유효세율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했는지 분석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표를 통해 한국 경제에서 각 산업의 조세 부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어떤 요인에 의해 발생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표 3〉 산업−연도별 평균유효세율

연도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유통업	평균
2011	0.1549	0.1852	0.1742	0.2023	0.1711
2012	0.1477	0.1729	0.1657	0.1869	0.1615
2013	0.1534	0.1758	0.1722	0.1879	0.1659
2014	0.1557	0.1731	0.1701	0.1908	0.1668
2015	0.1548	0.1731	0.1741	0.1856	0.1659
2016	0.1579	0.1739	0.1849	0.1920	0.1698
2017	0.1565	0.1718	0.1904	0.1905	0.1692
2018	0.1545	0.1740	0.1954	0.1935	0.1699
2019	0.1523	0.1737	0.1942	0.1917	0.1683
2020	0.1471	0.1693	0.1903	0.1877	0.1641
2021	0.1523	0.1723	0.1897	0.1915	0.1679
2022	0.1591	0.1735	0.1979	0.1979	0.1731
2023	0.1473	0.1647	0.1817	0.1849	0.1615
평균	0.1534	0.1727	0.1839	0.1909	0.1674

〈그림 1〉 산업-연도별 평균유효세율



제조업의 평균 유효세율은 15.34%로, 분석된 4개의 산업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다. 이는 제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고 있음을 나타내며, 특히 연구개발비(R&D) 세액 공제, 감가상각비 공제 등의 혜택이 제조업의 유효세율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제조업의 유효세율은 연구 기간 동안 대체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낮은 유효세율을 보이며, 다른 산업에 비해 변동성이 낮은 편이다. 이러한 안정성은 제조업의 조세 정책이 비교적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서비스업은 평균 유효세율이 17.27%로 제조업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며, 연구 기간 동안 소폭의 감소 경향을 나타낸다. 서비스업은 무형자산 비중이 높고, 제조업에 비해 세제 혜택이 적기 때문에 유효세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서비스업의 유효세율이 점진적으로 감소한 것은 조세 회피 전략이 개선되었거나, 정부의 조세 정책이 서비스업에 유리하게 적용된 결과일 수 있다.

건설업의 평균 유효세율은 18.39%로, 유통업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한다. 건설업은 프로젝트 기반으로 운영되며, 수익의 변동성이 크고,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세부담을 지고 있다. 또한, 대규모 자본 투자와 자산 감가상각이 많이 발생하지만, 프로젝트 특성상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 비해 세금 부담이 높을 수 있다. 이러한 높은 유효세율은 건설업의 경제적 불확실성과 정부의 세금 집행 강도가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볼 수 있다.

유통업의 평균 유효세율은 19.09%로, 다른 산업에 비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유통

업은 대규모 자본 투자가 적고, 자산 집약도가 낮아 세제 혜택을 덜 받기 때문에 유효세율이 높게 나타난다. 유통업의 유효세율은 연구 기간 동안 일관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유통업에서 세제 혜택을 활용할 기회가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4>는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유통업 간의 평균 유효세율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t통계 검정을 수행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 표는 각 산업 간 세금 부담이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세제 혜택이나 자산 구조, 정부의 세금 집행 강도 등에 의해 이러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조업은 유효세율이 다른 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제조업이 다양한 세액 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건설업과 유통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유효세율을 보였으며, 이는 자산 집약도가 낮고 프로젝트 기반의 수익 변동성이 큰 산업적 특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표 4〉 산업분류별 평균유효세율 차이

비교 산업군	평균 유효세율 차이	표준편차	t−value
건설업 vs 제조업	0.0304	0.0008	38.74***
유통업 vs 제조업	0.0375	0.0006	66.44***
서비스업 vs 제조업	0.0193	0.0005	38.75***
유통업 vs 건설업	0.0071	0.0009	8.07***
서비스업 vs 건설업	−0.0111	0.0008	−13.35***
서비스업 vs 유통업	−0.0182	0.0006	−28.89***

* p＜0.5, ** p＜0.1, *** p＜0.001

특히, 유통업과 제조업 간 유효세율 차이는 0.0375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며, 이는 세금 부담이 두 산업 간에 크게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차이도 0.019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역시 두 산업 간의 조세 전략 및 세법 적용 방식에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서비스업과 건설업, 유통업 간의 비교에서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유효세율이 낮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3.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는 산업별 유효세율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재무적 변수들을 사용하여 기업의

특성과 세금 부담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각 변수의 정의와 측정 방법은 기존 선행연구에서 자주 사용된 방식과 일치하며, 이는 연구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다음 <표 5>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들을 정리한 것으로, 각 변수의 정의와 측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표 5〉 주요 변수의 정의와 측정

표시기호	정 의	측 정
ETR	유효세율	법인세비용/세전이익
LEV	부채비율	총부채/총자산
SIZE	자산대용치	자연로그(총자산)
CAP	자본집약도	(유형자산－토지－건설중인자산)/총자산
R&D	연구개발비율	(경상개발비＋연구비＋경상연구개발비)/매출
ROA	총자산이익률	당기순이익/총자산
SALES	매출대용치	자연로그(총매출)
AGE	기수	기업연도－설립일＋1
LABOR	인건비율	[(판)인건비＋(제)노무비]/총자산

유효세율(ETR : Effective Tax Rate)은 법인세비용을 세전이익으로 나눈 비율로, 기업이 실제로 납부한 세금 부담을 나타낸다. 유효세율은 법정 세율과 달리 기업의 실제 세금 부담을 나타내며, 기업의 조세 회피 전략이나 세제 혜택의 실질적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이다. Gupta & Newberry(1997)와 같은 연구에서도 유효세율을 통해 기업의 조세 전략과 재무적 성과를 평가하였다.

부채비율(LEV : Leverage)은 총부채를 총자산으로 나눈 비율로, 기업의 자본구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설명 : 부채비율은 기업의 재무 안정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높은 부채비율은 조세 혜택(이자비용 공제 효과)을 통해 유효세율을 낮출 수 있지만, 동시에 재무적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Kim & Limpaphayom(1998)은 부채비율이 기업의 유효세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자산대용치(SIZE : Firm Size)는 기업의 총자산의 자연로그 값으로, 기업의 규모를 나타낸다. 자산대용치는 기업의 규모를 대표하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조세 회피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3)]

3) 기업의 규모와 관련한 선행연구로 정치적 비용 이론(Zimmerman, 1983)에 따르면, 대기업은 더 많은

자본집약도(CAP : Capital Intensity)는 유형자산에서 토지와 건설중인 자산을 제외한 값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기업의 자본집약도를 나타낸다. 자본집약도는 기업의 자산 구조를 평가하는 지표로, 제조업과 같은 자본집약적 산업에서 중요한 변수이다. Stickney & McGee (1982)와 같은 연구에서는 자본집약도를 통해 세제 혜택(감가상각 공제)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개발비율(R&D : Research & Development Intensity)은 경상개발비, 연구비, 경상연구개발비의 합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나타낸다. 연구개발비율은 기업의 혁신성과 기술 개발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제조업과 같은 기술 집약적 산업에서 중요하게 고려된다.

총자산이익률(ROA : Return on Assets)은 세당기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비율로, 기업의 수익성을 나타낸다. ROA는 기업의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높은 ROA는 기업의 재무적 건전성을 나타낸다. Hanlon et al.(2005)는 ROA와 유효세율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매출대용치(SALES : Sales)는 기업의 총매출의 자연로그 값으로, 기업의 매출 규모를 나타낸다. 매출대용치는 기업의 시장 점유율과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기수(AGE : Firm Age)는 기업연도에서 설립일을 뺀 값에 1을 더한 값으로, 기업의 나이를 나타낸다. 기업의 나이는 경험과 시장 내 안정성을 반영하는 지표로, 기업의 나이가 많을수록 조세 회피 전략을 더 많이 구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Zimmerman, 1983).

인건비율(LABOR : Labor Intensity)은 판관비와 제노무비의 합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기업의 인적 자원 의존도를 나타낸다. 인건비율은 서비스업과 같은 인적 자원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서 중요한 변수이다. Hanlon et al.(2005)와 같은 연구에서는 인건비율이 기업의 유효세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주요 변수들은 기업의 재무적 특성과 유효세율 간의 관계를 명확히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각 변수는 기존 연구에서 자주 사용된 방식에 따라 정의되고 측정되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한국 기업들의 산업별 유효세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고자 하였다.

<표 6>은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유통업 등 주요 산업별로 유효세율과 기타 주요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을 산업별로 나누어 보여준다. 이 표는 각 산업 간의 재무적 특성과 조세 전략의 차이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며, 산업별로 유효세율과 재무적 변수들이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비교할 수 있는 유용한 통계 자료이다.

정부 규제를 받고, 공적 감시와 비판에 노출되기 때문에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정치적 권력 이론(Siegfried, 1972)은 대기업이 자원을 활용하여 더 낮은 세율을 협상하거나, 유리한 입법을 촉진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표 6〉 주요 변수의 산업별 기술통계량

Panel A : 제조업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ETR	100,028	0.1534	0.0934	0.0000	0.4999
LEV	100,028	0.5116	0.2205	−0.1741	0.9998
SIZE	100,028	23.9230	1.3342	17.7987	33.1920
CAP	100,028	0.2005	0.1408	0.0000	0.9764
R&D	100,028	0.0186	0.0442	0.0000	7.0308
ROA	100,028	0.0752	0.0751	−0.4332	2.2915
SALES	100,027	23.9772	1.3768	0.0000	32.9870
AGE	100,028	18.5669	11.8379	0.0000	88.0000
LABOR	100,028	0.1196	0.1488	0.0000	10.9067
Panel B : 서비스업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ETR	52,164	0.1727	0.0946	0.0000	0.4999
LEV	52,164	0.5363	0.2555	0.0051	1.0000
SIZE	52,164	23.8368	1.4772	17.3485	31.0963
CAP	52,164	0.1892	0.2129	0.0000	0.9912
R&D	52,164	0.0138	0.6826	0.0000	117.1482
ROA	52,164	0.0857	0.1035	−0.3055	2.9932
SALES	52,164	23.2946	2.2890	0.0000	30.7004
AGE	52,164	17.4844	12.5627	0.0000	120.0000
LABOR	52,164	0.3889	0.9773	0.0000	39.2763
Panel C : 건설업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ETR	15,987	0.1839	0.0957	0.0000	0.4998
LEV	15,987	0.4419	0.2159	0.0052	0.9995
SIZE	15,987	23.6557	1.3288	18.1538	30.1051
CAP	15,987	0.0708	0.1058	0.0000	0.9444
R&D	15,987	0.0069	0.0263	0.0000	0.3276
ROA	15,987	0.0872	0.0833	−0.0235	1.1673
SALES	15,987	24.0273	1.7149	0.0000	30.0979
AGE	15,987	19.6201	11.4081	0.0000	80.0000
LABOR	15,987	0.4502	0.8146	0.0000	12.0796
Panel D : 유통업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ETR	36,426	0.1909	0.0838	0.0000	0.4995
LEV	36,426	0.5403	0.2277	0.0069	0.9999
SIZE	36,426	23.6074	1.2715	16.0218	31.4820
CAP	36,426	0.0918	0.1058	0.0000	0.9063
R&D	36,426	0.0172	2.9228	0.0000	557.8250
ROA	36,426	0.0856	0.0872	−0.2837	2.5491
SALES	36,426	24.2140	1.3544	0.0000	31.1143
AGE	36,426	16.4239	10.6855	0.0000	85.0000
LABOR	36,426	0.1234	0.1363	0.0000	3.9303

제조업의 평균 유효세율은 15.34%로 분석된 산업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제조업은 자본집약적 특성으로 인해 감가상각 및 연구개발(R&D) 세액 공제 혜택을 많이 받으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유효세율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제조업의 부채비율(LEV)은 평균 51.16%로, 이는 대규모 설비투자와 운영을 위해 제조업이 높은 부채비율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산 대용치(SIZE)는 평균 23.92로, 제조업의 자산 규모가 크고 자본집약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개발비 비율(R&D)은 1.86%로, 제조업에서 기술 혁신과 제품 개발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나타내며, 이는 제조업의 낮은 유효세율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서비스업의 평균 유효세율은 17.27%로, 제조업보다 높은 수치를 보인다. 이는 감가상각 혜택을 덜 받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서비스업의 부채비율(LEV)은 평균 53.63%로 다른 산업보다 높다. 이는 서비스업이 자금 조달에서 부채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건비 비율(LABOR)은 평균 38.89%로, 서비스업이 인적 자원에 크게 의존하는 산업임을 반영한다. 자산 대용치(SIZE)는 23.84로 자산 규모는 크지 않으나, 자본집약도가 낮아 유효세율이 높게 나타난다.

건설업의 평균 유효세율은 18.39%로, 제조업과 서비스업보다 높다. 건설업은 프로젝트 기반으로 운영되며, 자본집약도가 낮고 불확실성이 커 상대적으로 높은 유효세율을 기록한다. 부채비율(LEV)은 평균 44.19%로, 대규모 프로젝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높은 부채비율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건설업의 자본집약도(CAP)는 7.08%로 낮아, 프로젝트 중심 운영으로 유형자산의 비중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개발비 비율(R&D)은 0.69%로 매우 낮으며, 이는 기술 개발보다 대규모 프로젝트 자금 조달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유통업의 평균 유효세율은 19.09%로 분석된 4개 산업 중 가장 높다. 유통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세제 혜택이 적고, 자산 대용치(SIZE)는 23.61로 자산 규모는 크지 않지만, 매출 대용치(SALES)는 높다. 유통업의 부채비율(LEV)은 54.03%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유통업이 높은 영업 매출과 함께 자금을 운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개발비 비율(R&D)은 평균 1.72%로, 기술 개발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인건비 비율(LABOR)은 12.34%로 상대적으로 낮아, 유통업이 인건비 부담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7>은 유효세율과 주요 재무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각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를 통해 유효세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 분석은 각 변수들이 유효세율에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들이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표 7〉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변수	ETR	LEV	SIZE	CAP	R&D	ROA	SALES	AGE	LABOR
ETR	1								
LEV	−0.0851***	1							
SIZE	0.2800***	−0.148***	1						
CAP	−0.1227***	0.2200***	0.0682***	1					
R&D	−0.0081**	−0.0030*	0.0026*	−0.0001	1				
ROA	−0.0687***	−0.2998***	−0.1582***	−0.1856***	0.0017*	1			
SALES	0.2307***	−0.1198***	0.5596***	−0.0670***	−0.0143***	−0.0008***	1		
AGE	0.1552***	−0.2792***	0.4321***	−0.0333***	−0.0006***	−0.1561***	0.2961***	1	
LABOR	0.0288***	−0.0339***	−0.2551***	−0.1085***	−0.0016*	0.0705***	−0.0156***	−0.0432***	1

* $p<0.5$, ** $p<0.1$, *** $p<0.001$

먼저, 유효세율과 부채비율(LEV) 간 상관계수는 −0.0851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유효세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며, 기업들이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세금 공제로 활용해 유효세율을 낮추는 조세 전략을 시사한다. 기존 연구에서도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들이 이자비용 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인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Kim & Limpaphayom, 1998).

자산규모(SIZE)와 유효세율 간에는 0.2800의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 자산이 클수록 유효세율이 높아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는 대기업일수록 세법 준수 비용이 증가해 중소기업보다 조세순응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자본집약도(CAP)와 유효세율 간에는 −0.1227의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자본집약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감가상각 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여 유효세율을 낮출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제조업과 같은 자본집약적 산업에서 감가상각 혜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Stickney & McGee, 1982).

연구개발비율(R&D)과 유효세율 간에도 −0.0081의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연구개발이 활발한 기업일수록 세제 혜택을 통해 유효세율을 낮출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개발비용 세액 공제가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Hanlon et al.

(2005) 또한 연구개발비율이 높은 기업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총자산이익률(ROA)과 유효세율 간에도 −0.0687의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이는 수익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다양한 세제 혜택을 활용해 유효세율을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한다. 수익성 있는 기업들은 비과세 소득을 활용해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경향이 있다.

매출대용치(SALES)와 유효세율 간에는 0.2307의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이는 매출 규모가 클수록 유효세율이 높아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매출이 큰 기업일수록 조세순응도가 높아지기 때문일 수 있다. 기업 연수(AGE)와 유효세율 간에도 0.1552의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이는 설립 연수가 길수록 조세 전략의 변화가 적고 안정적인 세금 부담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비율(LABOR)과 유효세율 간에는 −0.0288의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인건비 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유효세율이 높아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인건비 비율이 높은 산업에서는 비과세 혜택이 제한적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4. 회귀분석 결과

본 장에서는 연구모형(1), (2), (3)을 통해 산업별 요인 및 주요 재무적 요인이 유효세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들 요인들이 산업별 특성에 따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Shapley Value 분석을 통해 각 요인이 유효세율 변동성에 기여하는 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가. 모형(1) : 산업별 고정효과만을 고려한 모델

〈표 8〉 모형(1) 회귀분석 결과

$$ETR_{i,t} = \alpha + \sum_{i=1}^{n-1} \delta_{i,t} D_i + \varepsilon_{i,t}$$

변수	계수	표준편차	t−value
D_1	−0.0375	0.0006	−66.44***
D_2	−0.0182	0.0006	−28.89***
D_3	−0.0071	0.0009	−8.07***
_cons	0.1909	0.0005	394.96***
R^2		0.0255	
Adj. R^2		0.0255	
F(sig.)		1,783.06***	
N		204,605	

* p<0.5, ** p<0.1, *** p<0.001

모형(1)은 산업별 고정효과만을 고려해 유효세율 차이가 산업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유통업을 기준으로 제조업(D_1), 서비스업(D_2), 건설업(D_3)의 유효세율을 비교하였다. 제조업(D_1)의 계수는 −0.0375로, 이는 제조업의 유효세율이 유통업보다 약 3.75%p 낮다는 뜻이다. 이는 제조업이 세제 혜택을 더 많이 받거나, 조세 회피 전략을 더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서비스업(D_2)은 유통업보다 약 1.82%p 낮은 유효세율을 보였고, 이는 서비스업에서도 세제 혜택이나 비용 처리의 유연성이 존재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건설업(D_3)은 유통업보다 유효세율이 약 0.71%p 낮아, 건설업이 자산 변동성과 대규모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통해 세부담을 낮추려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낸다. 모형의 설명력(R^2)은 0.0255로, 이는 산업별 고정효과가 유효세율 변동성의 약 2.55%를 설명하여, 산업 간 유효세율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나. 모형(2) : 산업별 고정효과와 주요 독립변수를 고려한 모델

〈표 9〉 모형(2) 회귀분석 결과

$$ETR_{i,t} = \alpha + \sum_{i=1}^{n-1} \delta_{i,t} D_i + \beta \cdot X_{i,t} + \varepsilon_{i,t}$$

변수	계수	표준편차	t−value
D_1	−0.0368	0.0006	−65.96***
D_2	−0.0127	0.0006	−19.64***
D_3	−0.0104	0.0008	−12.42***
LEV	−0.0167	0.0010	−17.57***
SIZE	0.0156	0.0002	75.55***
CAP	−0.0563	0.0013	−43.56***
R&D	−0.0005	0.0002	−3.54***
ROA	−0.0767	0.0025	−30.79***
SALES	0.0044	0.0002	29.21***
AGE	0.0001	0.0000	6.54***
LABOR	0.0011	0.0004	2.9**
_cons	−0.2673	0.0040	−67.07***
R^2		0.1308	
Adj. R^2		0.1308	
F(sig.)		2,800.05***	
N		204,605	

* p<0.5, ** p<0.1, *** p<0.001

모형(2)은 산업별 고정효과와 주요 재무적 요인들을 포함해 유효세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부채비율(LEV)은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쳐,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이자비용 공제를 통해 유효세율을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산규모(SIZE)는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대규모 기업일수록 조세 순응도가 높아 유효세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자본집약도(CAP)는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쳐, 자본집약도가 높은 기업은 감가상각 공제를 통해 유효세율을 낮출 수 있음을 나타낸다. 연구개발비 비율(R&D)은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쳤고, 이는 연구개발 세액 공제가 유효세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총자산이익률(ROA) 또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쳤으며, 수익성이 높은 기업은 다양한 세제 혜택을 통해 유효세율을 낮출 가능성이 높다. 매출(SALES)과 인건비 비율(LABOR)은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매출이 크거나 인건비 비율이 높은 기업이 조세 순응도가 높아 유효세율이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모형(2)의 설명력(R^2)은 0.1308로, 산업별 고정효과와 주요 재무적 요인들이 유효세율 변동성의 약 13.08%를 설명한다. 산업별 더미 변수(D_1, D_2, D_3) 역시 여전히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산업 특성이 재무적 요인과 결합해 유효세율에 미치는 영향을 잘 나타낸다.

다. 모형(3) : 산업별 고정효과, 주요 재무적 요인, 그리고 상호작용 항을 고려한 모델

〈표 10〉 모형(3) 회귀분석 결과

$$ETR_{i,t} = \alpha + \sum_{i=1}^{n-1} \delta_{i,t} D_i + \beta \cdot X_{i,t} + \sum_{i=1}^{n-1} \gamma_{i,t} (D_i \cdot X_{i,t}) + \varepsilon_{i,t}$$

변수	계수	표준편차	t-value
D_1	0.0150	0.0120	1.25*
D_2	0.0936	0.0124	7.53***
D_3	−0.0485	0.0176	−2.76**
LEV	−0.0220	0.0023	−9.47***
SIZE	0.0164	0.0006	27.5***
CAP	−0.0590	0.0044	−13.38***
R&D	−0.0002	0.0002	−1.49*
ROA	−0.0640	0.0060	−10.67***
SALES	0.0057	0.0005	11.45***
AGE	0.0000	0.0001	−0.4
LABOR	0.0213	0.0036	5.97***
D_1_LEV	−0.0091	0.0028	−3.29**
D_2_LEV	0.0161	0.0028	5.67***
D_3_LEV	0.0017	0.0042	0.4

〈표 10〉 모형(3) 회귀분석 결과 (계속)

변수	계수	표준편차	t-value
D_1_SIZE	−0.0049	0.0007	−6.67***
D_2_SIZE	−0.0019	0.0007	−2.74**
D_3_SIZE	0.0033	0.0010	3.45**
D_1_CAP	−0.0055	0.0049	−1.14*
D_2_CAP	0.0112	0.0048	2.35**
D_3_CAP	0.0063	0.0079	0.8*
D_1_R&D	−0.3040	0.0063	−48.53***
D_2_R&D	−0.0014	0.0006	−2.4**
D_3_R&D	−0.1913	0.0264	−7.24***
D_1_ROA	0.0034	0.0073	0.46
D_2_ROA	−0.0276	0.0072	−3.85***
D_3_ROA	−0.1355	0.0107	−12.63***
D_1_SALES	0.0033	0.0006	5.34***
D_2_SALES	−0.0030	0.0005	−5.73***
D_3_SALES	−0.0011	0.0007	−1.56*
D_1_AGE	0.0000	0.0001	0.09
D_2_AGE	0.0003	0.0001	4.31***
D_3_AGE	0.0000	0.0001	−0.21
D_1_LABOR	−0.0218	0.0041	−5.33***
D_2_LABOR	−0.0206	0.0036	−5.72***
D_3_LABOR	−0.0167	0.0037	−4.52***
_cons	−0.3130	0.0102	−30.65***
R^2		0.1457	
Adj. R^2		0.1456	
F(sig.)		997.15***	

* $p<0.5$, ** $p<0.1$, *** $p<0.001$

모형(3)은 산업별 고정효과, 주요 독립 변수, 그리고 이들 변수 간 상호작용 항을 고려한 분석 결과이다. 부채비율(LEV)과 유효세율 간 상호작용은 제조업(D_1)에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제조업이 부채를 통한 세금 공제 효과를 더 많이 활용함을 의미한다. 자산규모(SIZE)와 유효세율 간 상호작용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에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자산 규모가 클수록 조세 절감 효과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본집약도(CAP)와 유효세율 간 상호작용은 제조업(D_1)에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였으며, 자본집약적인 산업일수록 감가상각 공제를 통해 유효세율이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개발비(R&D)와 유효세율 간 상호

작용은 제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연구개발비가 높을수록 유효세율이 크게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제조업이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총자산이익률(ROA)과 유효세율 간 상호작용은 서비스업과 건설업에서 유의미한 음의 관계를 보여, 수익성이 높은 기업이 조세회피 전략을 통해 유효세율을 낮출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모형(3)의 설명력(R^2)은 0.1457로, 이는 산업별 고정효과와 재무적 요인, 그리고 이들 간 상호작용이 유효세율 변동성의 약 14.57%를 설명함을 나타낸다.

라. Shapley Value 분석

<표 11>에서 Shapley Value를 계산한 결과, 각 요인의 기여도는 다음과 같다.

〈표 11〉 각 요인의 기여도

순서	산업고정효과	재무요인	상호작용	Adj. R^2
산업고정효과→재무요인→상호작용	0.0254	0.1053	0.0149	0.1456
산업고정효과→상호작용→재무요인	0.0254	0.0166	0.1036	0.1456
재무요인→산업고정효과→상호작용	0.0238	0.1068	0.0149	0.1456
재무요인→상호작용→산업고정효과	0.0004	0.1068	0.0384	0.1456
상호작용→산업고정효과→재무요인	0.0452	0.0166	0.0838	0.1456
상호작용→재무요인→산업고정효과	0.0004	0.0614	0.0838	0.1456
평균(Shapley Value)	0.0201	0.0689	0.0566	0.1456

Shapley Value 분석 결과에 따르면, 유효세율을 결정하는 데 있어 주요 재무적 요인이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요인의 Shapley Value는 0.0689로, 이는 재무적 요인이 유효세율 변동성에 약 6.89%의 기여를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기업의 재무적 특성이 각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제조업의 경우 자본집약도가 높고 연구개발비에 대한 투자가 많아, 감가상각비 공제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통해 유효세율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반면, 유통업은 자산 규모가 크지 않고 자본투자나 연구개발 투자가 상대적으로 적어 세제 혜택을 덜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유효세율이 다른 산업보다 높은 경향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재무적 요인이 각 산업의 유효세율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또한, 산업 특성과 재무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이 유효세율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상호작용의 Shapley Value는 0.0566으로, 이는 상호작용이 유효세율 변동성에 약 5.66% 기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재무적 요인이 각 산업 내에서 다르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연구개발비가 제조업에서는 유효세율을 크게 낮추지만, 서비스업에서는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호작용 항의 높은 기여도는 산업의 특성과 재무적 요인이 결합하여 유효세율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 고정효과의 Shapley Value는 0.0201로, 이는 산업 고유의 특성이 유효세율 변동성에 약 2.01% 기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특정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동일 산업 내 다른 기업들과 유사한 세금 부담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산업별 세제 혜택이나 규제 차이에 의해 유효세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전체적으로, 재무적 요인, 산업 특성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산업 고정효과를 모두 포함한 모형의 설명력(Adj. R^2)은 0.1456로, 이 세 가지 요인이 유효세율 변동성의 약 14.56%를 설명하고 있다. 이는 산업별 유효세율 차이가 단순히 개별 기업의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무적 특성과 산업 고유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Shapley Value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별로 차별적인 조세정책의 영향이 크므로, 각 산업별 조세 혜택을 조정하여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무적 요인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세제 설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제조업의 경우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여 기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 간 조세정책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특정 산업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억제하고, 조세 회피 전략의 사용을 감시하고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한국의 조세정책이 각 산업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며,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세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5. 추가분석

가. 제조업 세부산업별 회귀분석

제조업 세부산업별 분석에서는 유효세율 차이를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제조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중분류 기준으로 25개의 세부 산업으로 구분하였다. 평균 유효세율을 기준으로 제조업 내 세부 산업을 네 그룹으로 분류하였으며, 유효세율이 가장 낮은 7개의 중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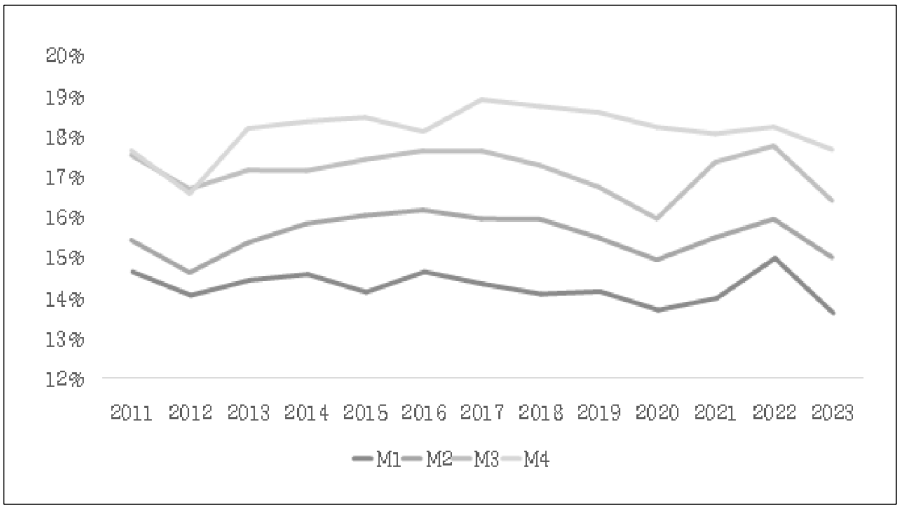
를 M_1 그룹, 그다음 6개의 중분류를 M_2 그룹, 그다음 6개의 중분류를 M_3 그룹, 그리고 유효세율이 가장 높은 6개의 중분류를 M_4 그룹으로 구분하였다.[4)]

<그림 2>는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제조업 세부 산업의 연도별 평균 유효세율 변화를 보여준다. 각 그룹 간 유효세율 차이는 시간이 지나도 지속되며, M_4 그룹은 연구 기간 내내 높은 유효세율을, M_1 그룹은 계속 낮은 유효세율을 유지하였다. 이는 구조적으로 지속되는 차이임을 시사한다.

<표 12>에서 회귀분석 결과, M_1 그룹의 평균 유효세율은 14.24%로 가장 낮았고, M_4 그룹은 18.18%로 가장 높았다. 이는 제조업 내에서도 세부 산업별로 유효세율 차이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M_1 그룹의 산업들은 다른 그룹보다 낮은 유효세율을 기록했으며, 이는 산업 고정효과와 재무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본 분석은 세부 산업별 유효세율의 구조적 차이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시도로, 자산구조, 자본집약도, 연구개발비 활용 정도에 따라 유효세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차별화된 조세 정책의 필요성을 암시한다.

〈그림 2〉 제조업 세부산업-연도별 평균유효세율



4) 본 연구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의 중분류 기준에 따라 제조업을 M_1, M_2, M_3, M_4로 구분하였다. M_1 그룹은 자본집약도가 높고 연구개발비 비중이 큰 산업(예 : 전자 부품, 전기장비, 자동차 제조업 등)으로, 높은 기술력과 자본 투자가 요구되는 산업군을 포함한다. M_2 그룹은 상대적으로 중간 자본집약도와 생산성 수준을 보이는 산업군(예 : 식료품, 화학제품,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 등)으로 분류하였다. M_3 그룹은 주로 자본집약도가 낮고 생산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덜 복잡한 제조업(예 : 의복, 목재, 펄프 및 종이 제품 제조업 등)을 포함하며, M_4 그룹은 자산 활용도가 낮고 세제 혜택이 적은 산업(예 : 음료, 담배, 가죽 및 신발 제조업 등)으로 구분하였다.

〈표 12〉 제조업 회귀분석 결과

$$ETR_{i,t} = \alpha + \sum_{i=1}^{n-1} \delta_{i,t} M_i + \beta \cdot X_{i,t} + \sum_{i=1}^{n-1} \gamma_{i,t} (M_i \cdot X_{i,t}) + \varepsilon_{i,t}$$

(1) 요약기술통계량

세부산업 구분	ETR	표준편차	N
M_1그룹	0.1424	0.0945	45,993
M_2그룹	0.1555	0.0906	32,897
M_3그룹	0.1713	0.0928	15,159
M_4그룹	0.1818	0.0881	5,979

(2) 회귀분석 결과

변수	계수	표준편차	t−value
M_1	−0.1221	0.0231	−5.28***
M_2	−0.1260	0.0239	−5.26***
M_3	−0.1033	0.0265	−3.9***
LEV	−0.0193	0.0056	−3.45**
SIZE	0.0088	0.0015	5.89***
CAP	−0.0965	0.0076	−12.72***
R&D	−0.7047	0.0683	−10.31***
ROA	−0.0968	0.0175	−5.54***
SALES	0.0081	0.0013	6.19***
AGE	0.0002	0.0001	1.68**
LABOR	−0.0059	0.0055	−1.08*
M_1_LEV	−0.0093	0.0060	−1.55*
M_2_LEV	−0.0197	0.0062	−3.19**
M_3_LEV	−0.0097	0.0068	−1.42*
M_1_SIZE	0.0053	0.0016	3.27**
M_2_SIZE	0.0021	0.0017	1.26*
M_3_SIZE	0.0034	0.0018	1.86**
M_1_CAP	0.0477	0.0082	5.82***
M_2_CAP	0.0321	0.0083	3.86***
M_3_CAP	0.0065	0.0095	0.68*
M_1_R&D	0.3720	0.0689	5.4***
M_2_R&D	0.5492	0.0691	7.95***
M_3_R&D	0.2404	0.0736	3.27**
M_1_ROA	0.0471	0.0185	2.55**
M_2_ROA	0.0401	0.0189	2.12**
M_3_ROA	0.0128	0.0208	0.62
M_1_SALES	−0.0016	0.0014	−1.09*
M_2_SALES	0.0025	0.0015	1.66**
M_3_SALES	0.0006	0.0016	0.37
M_1_AGE	−0.0003	0.0001	−2.95**
M_2_AGE	−0.0003	0.0001	−2.4**
M_3_AGE	−0.0001	0.0001	−0.98*
M_1_LABOR	0.0140	0.0062	2.25**
M_2_LABOR	0.0114	0.0068	1.66**
M_3_LABOR	0.0033	0.0072	0.45
_cons	−0.1909	0.0211	−9.03***

〈표 12〉 제조업 회귀분석 결과 (계속)

변수	계수	표준편차	t-value
R^2		0.1491	
Adj. R^2		0.1488	
F(sig.)		500.61***	

(3) Shapley Value

순서	산업고정효과	재무요인	상호작용	Adj. R^2
산업고정효과→재무요인→상호작용	0.0175	0.1276	0.0037	0.1488
산업고정효과→상호작용→재무요인	0.0175	0.1244	0.0069	0.1488
재무요인→산업고정효과→상호작용	0.0070	0.1381	0.0037	0.1488
재무요인→상호작용→산업고정효과	0.0002	0.1381	0.0105	0.1488
상호작용→산업고정효과→재무요인	0.0463	0.0079	0.0946	0.1488
상호작용→재무요인→산업고정효과	0.0002	0.0540	0.0946	0.1488
평균(Shapley Value)	0.0148	0.0984	0.0357	0.1488

* $p<0.5$, ** $p<0.1$, *** $p<0.001$

나. 대기업 제외 회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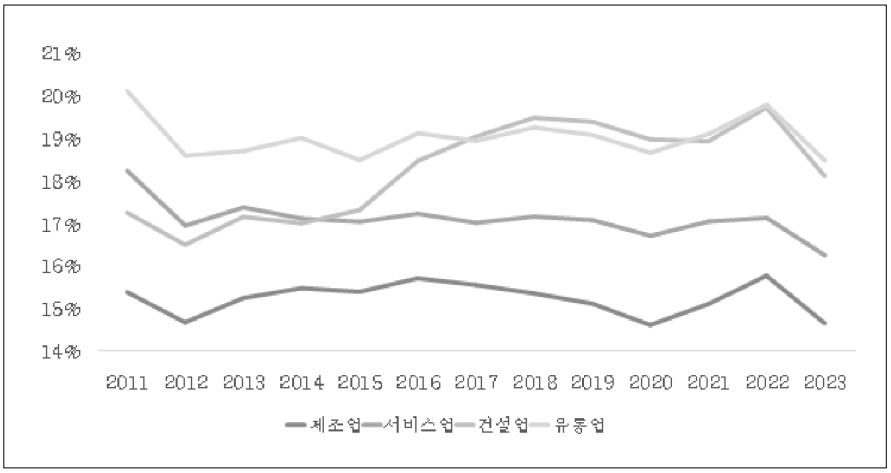
<그림 3>은 2011년부터 2023년까지 대기업을 제외한 주요 산업별 연도별 평균 유효세율 변화를 보여준다. 유통업은 분석 기간 내내 상대적으로 높은 유효세율을 기록했으며, 제조업은 지속적으로 낮은 유효세율을 유지했다. 이는 대기업을 제외해도 산업별 유효세율 차이가 구조적으로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3>에서 대기업을 제외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대기업을 포함한 회귀분석 <표 10>과 유사한 패턴이 나타난다. 제조업(D_1), 서비스업(D_2), 건설업(D_3), 유통업(D_4) 간 유효세율 차이는 여전히 뚜렷하며, 제조업의 평균 유효세율은 0.1523으로 가장 낮고, 유통업은 0.1902로 가장 높다.

부채비율(LEV), 자본집약도(CAP), 연구개발비 비율(R&D)가 유효세율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변수들의 상호작용 효과도 대기업 포함 분석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도 대기업처럼 세제 혜택을 활용하거나 조세 전략을 통해 유효세율을 낮추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부채비율(LEV)과 자본집약도(CAP)는 유효세율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연구개발비 비율(R&D)도 유사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에서도 자본 구조와 연구개발 전략이 유효세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대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별 특화된 조세 전략이 중소기업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조세 행태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음을 나타낸다.

〈그림 3〉 대기업 제외 산업-연도별 평균유효세율



〈표 13〉 대기업 제외 회귀분석 결과

$$ETR_{i,t} = \alpha + \sum_{i=1}^{n-1} \delta_{i,t} D_i + \beta \cdot X_{i,t} + \sum_{i=1}^{n-1} \gamma_{i,t} (D_i \cdot X_{i,t}) + \varepsilon_{i,t}$$

(1) 요약기술통계량

세부산업 구분	ETR	표준편차	N
제조업(D_1)	0.1523	0.0933	97,835
서비스업(D_2)	0.1704	0.0946	48,947
건설업(D_3)	0.1833	0.0957	15,655
유통업(D_4)	0.1902	0.0836	35,652

(2) 회귀분석 결과

변수	계수	표준편차	t-value
D_1	0.0184	0.0131	1.4^{*}
D_2	0.1100	0.0137	8.03^{***}
D_3	−0.0499	0.0189	-2.65^{**}
LEV	−0.0215	0.0024	-9.15^{***}
SIZE	0.0177	0.0006	28.83^{***}
CAP	−0.0588	0.0045	-13.06^{***}
R&D	−0.0002	0.0002	-1.48^{*}
ROA	−0.0621	0.0060	-10.28^{***}
SALES	0.0062	0.0005	12.42^{***}
AGE	0.0000	0.0001	-0.74^{*}
LABOR	0.0242	0.0036	6.68^{***}
D_1_LEV	−0.0079	0.0028	-2.82^{**}
D_2_LEV	0.0161	0.0029	5.58^{***}

〈표 13〉 대기업 제외 회귀분석 결과 (계속)

변수	계수	표준편차	t−value
D_3_LEV	0.0007	0.0043	0.17
D_1_SIZE	−0.0053	0.0008	−6.84***
D_2_SIZE	−0.0019	0.0007	−2.72**
D_3_SIZE	0.0039	0.0010	3.87***
D_1_CAP	−0.0075	0.0050	−1.51*
D_2_CAP	0.0133	0.0049	2.72**
D_3_CAP	0.0053	0.0081	0.65
D_1_R&D	−0.2992	0.0063	−47.47***
D_2_R&D	−0.0014	0.0006	−2.38**
D_3_R&D	−0.1910	0.0265	−7.2***
D_1_ROA	0.0029	0.0074	0.39
D_2_ROA	−0.0255	0.0073	−3.5***
D_3_ROA	−0.1342	0.0108	−12.41***
D_1_SALES	0.0035	0.0006	5.5***
D_2_SALES	−0.0037	0.0005	−6.92***
D_3_SALES	−0.0015	0.0007	−2.12**
D_1AGE	0.0000	0.0001	−0.29
D_2_AGE	0.0003	0.0001	4.43***
D_3_AGE	−0.0001	0.0001	−0.56
D_1_LABOR	−0.0227	0.0042	−5.45***
D_2_LABOR	−0.0231	0.0037	−6.31***
D_3_LABOR	−0.0194	0.0037	−5.18***
_cons	−0.3584	0.0112	−32.1***
R^2		0.1451	
Adj. R^2		0.1450	
F(sig.)		960.64***	

⑶ Shapley Value

순서	산업고정효과	재무요인	상호작용	Adj. R^2
산업고정효과→재무요인→상호작용	0.0259	0.1038	0.0153	0.1450
산업고정효과→상호작용→재무요인	0.0259	0.0167	0.1024	0.1450
재무요인→산업고정효과→상호작용	0.0245	0.1052	0.0153	0.1450
재무요인→상호작용→산업고정효과	0.0005	0.1052	0.0393	0.1450
상호작용→산업고정효과→재무요인	0.0451	0.0167	0.0832	0.1450
상호작용→재무요인→산업고정효과	0.0005	0.0613	0.0832	0.1450
평균(Shapley Value)	0.0204	0.0682	0.0565	0.1450

* $p<0.5$, ** $p<0.1$, *** $p<0.001$

다. 평균실효세율 및 세액공제 분석

<표 14>에서 대한민국 국세통계포털(TASIS) 데이터를 사용해 산업별 평균 실효세율을 분석한 결과, 제조업의 평균 실효세율은 15.82%로 다른 산업보다 낮았다. 반면, 건설업은 17.34%, 도소매업은 16.33%와 18.61%, 서비스업은 16.04%로 제조업보다 높은 실효세율을 보였다. 이는 제조업이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제조업의 낮은 실효세율은 자본 및 연구개발비 혜택을 적극 활용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건설업의 높은 실효세율은 세제 혜택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의 높은 실효세율은 인적 자원 중심의 산업 특성으로 인한 세금 부담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가설 1을 지지하며, 산업별로 실효세율 차이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특히, 제조업의 낮은 실효세율은 조세 형평성 논의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표 15>에서 산업별 법인당 평균 세액공제 및 감면 금액을 분석한 결과, 제조업이 평균 7,212만원으로 다른 산업보다 많은 세액공제를 받고 있었다. 반면, 건설업은 1,138만원, 도매업과 소매업은 각각 877만원과 762만원, 서비스업은 3,186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세액공제를 받았다. 제조업의 높은 세액공제는 연구개발비 세제 혜택을 적극 활용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건설업, 도소매업, 서비스업은 자본집약적이지 않거나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낮기 때문에 세액공제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본 연구의 가설 2와 3을 지지하며, 재무적 요인과 세제 혜택이 산업별로 다르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조업의 많은 세액공제는 산업 간 조세 부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각 산업에 맞춘 세제 혜택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표 16>은 대한민국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년 조세지출예산 분석』을 참고했다. 이 자료는 산업별 세액공제 적용을 분석한 보고서로, 제조업이 자본 및 연구개발 집약적 산업으로서 세액공제를 많이 받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세액공제는 유효세율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며, 특정 산업에 세제 혜택이 집중될 경우 조세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조세정책은 산업 간 형평성을 제고할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표 14〉 산업-연도별 평균실효세율

(단위 :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농・임・어업	14.66	13.72	14.12	12.73	11.92	13.54	13.40	14.70	13.21	11.20	13.17	13.87	13.72	13.38
광업	3.13	8.27	14.87	4.42	10.74	9.25	13.15	9.59	15.38	15.70	15.83	16.37	8.27	11.15
제조업	14.59	16.40	13.88	14.55	14.22	15.08	15.88	16.63	19.27	15.33	16.46	16.94	16.40	15.82
전기・가스・수도업	18.62	17.60	18.31	16.97	19.19	19.23	18.43	17.96	17.60	20.17	20.82	18.10	17.60	18.51
건설업	16.94	17.91	15.89	15.38	16.12	16.93	17.16	18.02	17.94	18.10	18.31	18.83	17.91	17.34
도매업	16.55	16.59	15.46	15.65	16.14	16.18	16.57	16.19	16.71	16.33	16.22	17.04	16.59	16.33
소매업	20.14	17.55	19.32	19.55	18.66	18.73	18.56	18.94	18.53	18.21	18.58	17.64	17.55	18.61
음식・숙박업	19.52	19.25	19.02	19.08	19.00	17.69	17.63	17.62	17.66	17.50	18.25	19.43	19.25	18.53
운수・창고・통신업	17.64	18.96	16.03	16.77	17.20	17.77	17.83	17.83	18.52	17.71	17.32	18.59	18.96	17.78
금융・보험업	20.93	22.59	20.83	20.62	20.44	20.47	20.78	20.88	22.42	22.69	22.85	23.00	22.59	21.62
부동산업	19.64	20.78	18.21	20.24	19.62	20.31	21.02	20.78	20.97	20.91	20.88	21.47	20.78	20.43
서비스업	16.70	15.63	15.88	15.85	15.56	15.63	15.68	16.41	16.22	15.84	16.07	17.38	15.63	16.04
보건업	16.85	19.25	16.07	16.58	16.73	16.88	17.27	17.15	16.86	16.43	16.30	18.31	19.25	17.23
기타 업종	20.96	18.20	16.27	16.29	16.57	14.08	16.36	17.16	17.29	18.03	17.23	17.39	18.20	17.23
평균	16.92	17.34	16.73	16.05	16.58	16.55	17.12	17.13	17.76	17.44	17.74	18.17	17.34	17.14

〈표 15〉 산업−연도별 법인당 평균 세액공제 및 감면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
농・임・어업	13.57	9.06	7.80	7.42	10.74	9.72
광업	162.70	20.50	19.97	17.77	18.15	47.82
제조업	85.72	63.69	83.13	48.52	79.56	72.12
전기・가스・수도업	275.93	85.53	69.03	55.61	36.29	104.48
건설업	11.59	11.90	11.97	9.89	11.55	11.38
도매업	10.12	7.49	8.63	8.97	8.63	8.77
소매업	5.78	8.07	7.98	7.79	8.49	7.62
음식・숙박업	23.99	22.45	19.51	10.92	17.39	18.85
운수・창고・통신업	24.99	27.11	18.88	22.81	19.96	22.75
금융・보험업	86.48	86.23	70.51	55.39	56.16	70.96
부동산업	29.47	4.85	5.03	4.08	6.19	9.92
서비스업	31.82	35.56	37.97	26.53	27.40	31.86
보건업	40.72	51.75	82.88	48.52	76.18	60.01
기타 업종	4.81	7.33	9.53	6.84	6.80	7.06
평균	57.69	31.54	32.34	23.65	27.39	34.52

〈표 16〉 조세지출 상위 20개 중 법인세 항목 현황 : 2022~2024년

(단위 : 억원, %)

항목	2022		2023e		2024e	
	실적	순위	전망	순위	전망	순위
통합투자세액공제	21,997	11	20,782	12	56,832	2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37,231	4	46,434	3	48,129	4
통합고용세액공제	29,574	7	35,931	6	38,036	7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3,489	10	25,361	10	26,474	11

Ⅴ. 결 론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의 주요 산업별 유효세율을 실증 분석하고, 조세정책과 기업의 특성이 산업별로 유효세율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을 대상으로 주요 재무 변수(부채비율, 자산 규모, 연구개발비, 수익성 등)가 유효세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세 가지 회귀모형을 통해 각 산업의 유효세율 차이를 검토하였다.

첫째, 가설 1에서 제시한 산업별 유효세율 차이는 명확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유효세율은 건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이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조세회피 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가설 2에서 검증한 바와 같이, 주요 재무 변수 중 부채비율과 연구개발비 비율이 유효세율을 낮추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반면 자산 규모와 수익성은 유효세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재무 구조와 조세 전략이 유효세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셋째, 가설 3에서 제시한 산업별 고정효과와 주요 재무 변수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분석에서는 각 산업에서 특정 변수들이 유효세율에 차별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제조업에서는 연구개발비가 유효세율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한 반면, 서비스업에서는 부채비율이 유효세율 감소에 기여하였다. 이는 산업별로 맞춤형 조세정책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넷째, 제조업 내에서도 세부 산업 간의 유효세율 차이가 존재하였다. 평균 유효세율이 가장 낮은 그룹(M1)이 다른 그룹보다 세제 혜택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제조업 내 세부 산업별로도 조세 정책의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에 대한 분석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관찰되었으며, 중소기업도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조세 혜택을 활용하여 유효세율을 낮추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기업들의 산업별 유효세율을 분석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여를 하였지만,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외감기업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체 한국 기업을 대표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특정 변수들의 측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회계처리 방식의 차이가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본 연구는 고정효과와 재무 변수, 상호작용 항을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조세정책의 동태적 변화를 반영하는 데

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조세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함으로써, 산업별로 차별화된 조세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제조업과 같은 자본집약적 산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유효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이들 산업이 세제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조세정책의 형평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구개발비와 자산집약도가 조세 혜택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므로, 이를 고려한 산업별 맞춤형 조세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Shapley Value 분석 결과는 산업 내 세부 영역에서도 차별적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어, 보다 세밀한 정책적 조정이 요구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산업별 조세행태를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동태적 모형이나 비재무적 요인들(예 : 경영진의 특성, CSR 활동 등)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조세정책의 장기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패널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간에 따른 변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국가나 지역의 사례와 비교하여 글로벌 조세정책의 효과를 탐구하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국세통계포털(https://tasis.nts.go.kr)

국회예산정책처. 2023.「2024년 조세지출예산 분석」.

Belnap, A., Hoopes, J. L., & Wilde, J. H. 2020. Who really matters in corporate tax? Evidence from linked IRS data.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70(2－3), 101341.

Derashid, C., & Zhang, H. 2003. Effective tax rates and the “industrial policy” hypothesis : Evidence from Malaysia. *Journal of International Accounting, Auditing and Taxation*, 12(1), 45－62.

Dyreng, S. D., Hanlon, M., & Maydew, E. L. 2008. Long－run corporate tax avoidance. *The Accounting Review*, 83(1), 61－82.

Gupta, S., & Newberry, K. 1997. Determinants of the variability in corporate effective tax rates : Evidence from longitudinal data.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16(1), 1－34.

Hanlon, M., & Heitzman, S. 2010. A review of tax research.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50(2－3), 127－178.

Heitzman, S., & Ogneva, M. 2019. Industry Tax Planning and Stock Returns. *The Accounting Review*, 94(5), 209－235.

Shapley, L. S. 1953. A value for n－person games. In H. W. Kuhn & A. W. Tucker (Eds.), *Contributions to the Theory of Games* (Vol. 2, pp. 307－317). Princeton University Press.

Siegfried, J. J. 1972.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structure and the effect of political influence : Empirical evidence from corporate tax rat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0(5), 1001－1020.

Zimmerman, J. L. 1983. Taxes and firm size.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5, 119－149.

Empirical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Industry-Specific Effective Tax Rates

Byungyong Kim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tax policies and firm characteristics on industry-specific effective tax rates, based on data from Korean companies from 2011 to 2023. The primary objective is to investigate how corporate characteristics and tax policies influence effective tax rates across various industries, including manufacturing, services, retail, and construction. This research empirically examines how various financial factors, such as debt ratio, asset size, R&D expenditure ratio, and profitability, differentially affect effective tax rates in each industry.

The study utilizes a dataset comprising 204,605 firm-year observations and constructs three regression models. First, a model considering only industry fixed effects is used to analyze the differences in effective tax rates between industries. Second, a model incorporating key financial variables is developed to measure the impact of firm characteristics on effective tax rates. Third, interaction effects between industry-specific financial factors and effective tax rates are analyzed to identify how industry-specific traits influence tax rates. Additionally, a Shapley Value analysis is conducted to quantitatively assess the contribution of each factor to the differences in effective tax rates.

The results reveal that the manufacturing industry has a significantly lower effective tax rate compared to other industries, which is attributed to the greater tax benefits it receives from R&D expenditure and depreciation deductions. In contrast, the retail industry shows a relatively higher effective tax rate, which is interpreted as a consequence of the industry's lower capital expenditures, such as in asset or facility investments, and its less capital-intensive nature, leading to fewer tax benefits. Among the key financial variables, the debt ratio and R&D expenditure are found to play a crucial role in reducing effective tax rates, while asset size contributes to an increase in effective tax rates.

This study contributes by specifically identifying the differences in effective tax rates across Korean industries and emphasizing the need for tax policies tailored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industry. In particular, through the Shapley Value analysis, the study provides detailed insights into the impact of industry-specific tax policies on corporate tax strategies, offering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customized tax policies in the future.

<Key words> Effective Tax Rate, Tax Policy, Corporate Characteristics, Tax Avoidance, Industry Analysis

부정적 언론보도가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이 선 호
(현대오토에버)

부정적 언론보도가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이선호*

〈요 약〉

본 연구는 부정적 언론보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의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총 11년간의 자료를 표본으로 선정하였으며, 언론보도의 정도와 빈도는 감성 분석 방법을 통해 수치화하였다. 또한 조세회피의 정도는 재무제표상의 유효세율(GAAP ETR)과 현금 유효세율(CASH ETR)을 통해 확인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정적 언론보도가 증가할수록 기업의 유효세율이 높아져 조세회피 수준이 감소하는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부정적 언론보도가 기업의 조세 전략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요소임을 시사한다. 둘째, 자산 크기와 업종 구분에 따라 부정적 언론보도와 기업의 유효세율이 어떠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지 확인했다. 그 결과, 규모가 큰 대기업에서는 유의적인 음(−)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으며, 소비재 업종 중에서도 경기소비재에서도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즉, 규모가 클수록, 경기소비재일수록 부정적 언론보도에 민감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언론보도와 조세회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감성 분석을 활용하여 언론보도의 어조를 수치화한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향후 연구에서는 부정적 언론보도가 기업의 조세 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표본의 수를 증가하는 등 다양한 연구로 확장하여 깊이 있게 탐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주제어〉 조세회피, 언론보도, 감성 분석

* 현대오토에버, sunholee310@gmail.com

Ⅰ. 서 론

기업들은 조세 전략을 수립할 때 단순히 비용 절감만을 목표로 조세회피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비조세비용도 함께 고려한다. (Scholes et al., 2015) 그 중 언론보도는 기업의 행동에 대해 주목을 끌어 기업의 평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비조세적 요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에서는 언론보도와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해외에서도 언론보도와 조세회피를 주제로 한 연구는 많지 않다. Chen et al.(2019)은 언론보도와 조세회피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나 언론보도의 범위를 세금 관련으로 한정하였고 그 결과 세금 관련 언론보도는 조세회피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후 Bona－Sanchez et al.(2023)가 세금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모든 언론보도와 조세회피의 상관관계로 그 범위를 확장하였고, 언론보도량이 많을 때 기업은 조세회피 전략을 강화하지만, 만약 그 보도의 어조가 부정적인 어조가 더 많아진다면 조세를 더 많이 부담하여 조세회피를 줄이는 경향이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때 부정적인 언론보도는 매년 특정 기업에 대해 언론에서 보도된 총 단어의 수 중 부정적인 톤을 가진 단어의 비율로 산출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에 대해서도 언론보도와 조세회피의 상관관계를 살펴볼 필요성을 느꼈다. 이때 언론보도를 세금 관련으로 한정하는 것은 비조세적 요소들을 고르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Bona－Sanchez et al.(2023)의 연구와 같이, 기업과 관련된 모든 종류의 언론보도로 그 대상을 확장하였다. 그리고 언론보도의 긍정 또는 부정적인 어조(tone)을 감성 분석을 통해 점수화하고 점수에 따라 유효세율에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하여 부정적 언론보도와 조세회피의 연관성을 확인하고자 했다.

실증분석 결과, GAAP ETR과 Cash ETR 모두에서 부정적인 언론보도가 증가할수록 기업의 조세회피가 감소하는 음(－)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GAAP ETR에서는 5% 유의수준에서, Cash ETR에서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으며, 이는 현금 유효세율이 더 직접적인 조세회피 수준을 반영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Dyreng et al. (2008)) 추가 분석으로는 자산 크기에 따라 부정적 언론보도와 조세회피가 상관관계가 다를지, 그리고 업종의 구분에 따라 다른 상관관계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규모가 큰 대기업의 경우에서만 부정적 언론보도와 조세회피 정도가 유의적인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업종의 구분별로는 소비재 업종 중에서도 경기소비재의 경우에서 부정적 언론보도와 조세회피 정도가 유의적인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업종별 추가 분석의 경우에는 분석 대상 표본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결과의 신뢰성이 우려되므로 해석의 주의를 요하며 향후 추가적인 표

본 확대와 재분석을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언론보도와 조세회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감성 분석을 활용하여 언론보도의 긍정 및 부정적 어조(tone)를 수치화한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향후 언론보도의 어조와 강도를 변수로 활용하는 실증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부정적인 언론보도의 빈도와 어조가 강해질수록 기업의 조세회피 정도가 낮아짐을 확인함으로써, 언론보도와 기업의 조세 전략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분석함에 의의가 있다. 다만 연구 과정에서 부정적 언론보도가 과세당국 및 규제 기관에 이목을 끌고 이를 인지한 기업이 조세 전략을 보수적으로 조정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였으나 실제로 과세당국이나 규제 기관이 언론보도의 영향을 받는지에 관하여는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점이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연구 배경과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가설을 설정한다. 제Ⅲ장에서는 연구모형과 각 변수를 설정한 뒤 표본의 구성과정을 설명한다. 제Ⅳ장에서는 위 연구모형으로 확인한 실증분석의 결과를 제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며, 추가 분석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본 연구의 공헌점과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연구가설

2.1 연구 배경

기업들은 조세 전략을 수립할 때 단순히 세금 비용만 고려하지 않는다. Austin and Wilson (2014)에 따르면 경영진은 정치적 비용과 평판에 따른 비용 모두를 중요한 비조세적 비용으로 간주하며 이러한 비용은 기업의 세금 회피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최기호(2018)는 조세회피 결정 요인 유형으로 i) 대리인 비용, ii) 적발위험, iii) 명성과 정치적 비용, iv) 경영자 선택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조세 전략 결정 요인에 비조세적 요인들이 크게 작용함을 보여준다.

Ullrich and Brunner(2015)에 따르면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브랜드에 대한 정보가 고객에게 강력한 설득 수단이 되므로, 언론보도 또한 기업의 평판을 결정하는 큰 요소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명성비용과 조세회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은 다수 있으나, 아직 언론보도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연구는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해외의 선행연구들을 살

펴보고 국내 기업에서도 언론보도와 조세회피에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2.2 선행연구

본 연구는 부정적 언론보도와 조세회피의 관계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Chen et al.(2019), Bona－Sanchez et al.(2023)의 연구와 유사한 연구 방향을 갖는다. 우선 Chen et al.(2019)은 언론보도의 범위를 세금 관련 보도로 한정하였으며 그 결과 세금 관련 언론보도는 조세회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 Bona－Sanchez et al.(2023)가 세금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모든 언론보도와 조세회피의 상관관계로 그 범위를 확장하였고 언론보도의 수가 증가할수록 기업은 조세회피 전략을 강화한다는 사실과 만약 그 보도의 어조가 부정적이라면 조세부담의 정도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언론 보도량으로만 조세회피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을 때는 주된 언론보도의 어조까지는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세회피 전략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보도의 어조까지 분석한다면 부정적 언론보도가 기업의 감시 역할을 하여 조세회피에 소극적인 전략을 취하게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Bona－Sanchez et al.(2023)는 매년 특정 기업에 대해 언론에서 보도된 총 단어의 수 중 부정적인 톤을 가진 단어의 비율로 부정적 언론보도를 수치화하였다.

반면 명성비용이 조세 전략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는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Graham et al.(2014)에 따르면 69%의 기업의 조세관련 임원들이 명성을 조세회피 전략을 채택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로 꼽았다. Dyreng et al.(2016)의 연구에서도 사회 운동가들의 타겟이 된 영국기업들의 조세회피가 감소하였음이 발견되었다. 또한 Austin and Wilson (2017)도 브랜드가치가 높은 기업일수록 조세회피에 소극적임을 확인하였다. 국내에서는 최보람, 이정미(2014)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의 기업평판자료를 이용하여 기업평판과 조세회피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기업의 평판이 긍정적일수록 조세회피 수준이 낮음을 발견했다. 이후 김임현, 김진수(2019)는 브랜드스탁에서 발표하는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 자료를 이용하여 브랜드가치가 높은 기업일수록 조세회피 수준이 낮아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박시훈, 김갑순(2020)은 명성비용을 위 두 연구의 방법 2가지를 포함한 4가지 방법으로 측정하였고, 그 결과 브랜드가치가 높을수록 조세회피 수준이 낮아진다는 주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브랜드가치나 평판이 높을수록 조세회피에 소극적이라는 일관된 결과를 보여준다. 그러나 해외의 연구사례와 같이 언론보도 자체와 조세회피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는 진행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부정적 언론보도가 조세회피와 연관성을 가지는지에 대

해 분석하고자 한다.

2.3 연구가설 설정

가. 본 연구에서 부정적 언론보도의 정의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부정적 언론보도란 Fearn－Banks(1996)의 정의를 따르며, 이는 기업의 명성, 제품, 서비스 등 기업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건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부정적 언론보도는 재무적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사 및 노무 문제와 사회적 사건・사고 등 기업의 전반적인 명성을 저해하는 모든 부정적 보도를 포함한다. 선행연구와 같이 기업의 전반적인 평판이 조세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본 연구는 재무적 보도 이상의 모든 부정적 보도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나. 연구가설 설정

부정적 언론보도와 조세회피 수준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두 가지의 예측이 가능하다. 첫째, 부정적 언론보도가 많은 기업은 이미 언론보도 관리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조세 전략에서도 평판 유지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있다. 즉 이러한 기업은 조세회피를 줄이기보다 기존의 조세 전략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부정적 언론보도가 많은 기업은 명성비용의 증가를 우려하고, 과세당국 등의 감시 가능성을 인식하여 보수적인 세무 정책을 채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여, 부정적 언론보도와 조세회피 수준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가설 : 부정적 언론보도가 많아질수록 기업들의 조세회피 정도는 줄어든다.

Ⅲ. 연구 방법 및 연구설계

3.1 언론보도의 수치화를 위한 감성 분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부정적 언론보도의 정도를 수치화하여 기업별 유효세

율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여 감정적 어조를 확인하는 감성 분석 기법을 사용하였다. 감성 분석은 주로 리뷰나 소셜 미디어와 같은 텍스트 형태의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할 때 사용되며, 자연어 처리 기술을 활용하여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감정을 판별하는 분석 방법이다. 감성 분석의 주된 방법으로는 머신러닝 기법과 사전 기반 접근방식이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사전 기반 접근방식을 사용하였고 기사 분석은 데이터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인 Python을 활용하였다. 언론보도의 부정적인 정도를 수치화하는 방법은 기사 수집과 제목 추출, 전처리, 감성 분석 순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단계별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기사 수집

본 연구에서는 뉴스 기사 데이터베이스 사이트인 BigKinds를 활용하여 총 6개 주요 일간지의 기업 관련 보도 기사를 수집하였다. 김현진 외(2021), 김성해 외(2010) 등 언론 관련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보수일간지와 진보일간지를 균형있게 포함하였다. 최종적으로 보수일간지 2개[1](「동아일보」, 「중앙일보」)와 진보일간지 2개(「경향신문」, 「한겨레」) 그리고 기업 관련 기사의 빈도가 높은 전문 경제일간지[2] 2개(「매일경제」, 「한국경제」)를 선정하였다.

분석 기간은 201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0년간으로 설정하였으며, 기사 제목(헤드라인)에 기업명이 포함된 경우로 한정하여 수집하였다. 기사 제목에는 기업명이 포함되지 않으나 본문에는 포함된 경우, 해당 기업과 관련이 없는 기사가 많았기 때문에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제외하였다.[3] 또한 기업명과 동일한 스포츠 팀에 관한 기사, 부고 기사 그리고 기업의 주가와 재무 실적에 관련한 기사는 제외하였다.[4] 그 결과 138개 기업의 10개년간 총 295,830건의 기사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나. 기사 전처리

전처리 과정은 비정형(unstructured) 텍스트를 감성 분석에 적합하도록 정제(cleaning)하는 작

---

1) 한국의 대표적인 보수일간지인 조선일보는 빅카인즈(Big Kinds)와 언론사 협약상 2018년도 이전 자료에 대해서는 제공하지 않으므로, 전체 대상 기간에 대한 수집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배제함.

2) 경제지는 기업 관련 기사의 빈도수가 다른 일간지에 비해 높기 때문에 분석에 포함함.

3) 본문에 기업명이 포함된 기사까지 확장할 경우, 해당 기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내용이 기사의 주된 내용인 경우들도 존재하여 기사 제목에 기업명이 포함된 기사만으로 분석 대상 기사 범위를 한정함.

4) 기업의 주가나 재무 실적을 다룬 기사를 포함하여 독립변수를 설정할 경우 조세회피를 종속변수로 하는 본 연구 분석에서 인과관계의 방향성이 모호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기사를 제외함.

업으로, 분석 데이터인 기사 제목에서 의미 없는 텍스트를 제거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 한글이 아닌 영문자, 문장부호(예 : 따옴표, 괄호 등), 숫자 등은 불용어로 처리해 삭제하였다. 그 결과, 전처리 후의 데이터는 “작성일자 – 매체명 – 제목 – 전처리 된 텍스트”의 형태로 변환되었다.

다. 감성 분석

기사 제목별 감성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전 기반의 감성 판별법을 적용하였다. 감성 분석에는 군산대학교 Data Intelligence Lab에서 개발한 ‘KNU 한국어 감성 사전’을 사용하였으며, 연구 목적에 맞게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 명사들을 추가하여 보완하였다.[5)]

텍스트의 의미가 부정적일수록 음의 점수(−)를, 긍정적일수록 양의 점수(+)를 부여하였고, 기사별로 감정 점수를 합산하여 각 기사의 최종 감성 점수를 산출하였다. 이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예시) 검찰, 삼성물산 하청업체 횡령의혹 수사 ‘공사비 빼돌린 혐의’→ −8점
검찰(−2)+횡령(−2)+의혹(−1)+수사(−2)+혐의(−1)= −8

산출에 사용된 단어별 점수는 <부록 1>에 제시하였으며, 기사별 감성 점수는 −11점부터 +9점 사이로 나타났다. 개별 기업의 연도별 감성 점수를 산출하기 위해 각 기업에 대해 해당 연도에 보도된 모든 기사의 감성 점수를 합산하였다. 이렇게 합산된 감성 점수는 해당 기업이 특정 연도에 언론보도로 인해 받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의 정도를 나타낸다. 최종적으로 분석 데이터는 “기업명 – 연도 – 총 감성 점수”형태로 정리되었으며, 이는 부정적 언론보도가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산출된 감성 점수는 각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보도의 강도와 빈도를 수치화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조세 전략과 부정적 언론보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

5) 예를 들어, 부정적 의미로는 KNU한국어 감성사전에는 포함되지 않은 ‘구속’, ‘압수수색’, ‘불법’ 등 기업 평판에 해를 끼치는 단어들을 감성사전에 추가함.

3.2 연구모형과 변수의 설정

가설 검증을 위해 다음과 같은 회귀모형을 설정하였다.

$$TaxAvoidance_{i,t} = \beta_0 + \beta_1 SCORE_{i,t} + \beta_2 SIZE_{i,t} + \beta_3 LEV_{i,t} + \beta_4 OCF_{i,t} + \beta_5 ROA_{i,t} + \beta_6 PPE_{i,t} + \beta_7 INT_{i,t} + \beta_8 CS_{i,t} + \beta_9 FS_{i,t} + \beta_{10} NOL_{i,t} + \beta_{11} BIGAUDIT_{i,t} + \sum IND + \sum YEAR + \epsilon_{i,t}$$

각 변수는 다음을 의미한다.

〈표 1〉 변수 설정

변수	변수설명	
종속변수	Tax Avoidance : t연도, i기업의 조세회피 변수로 GAAP ETR과 CASH ETR로 측정	
	GAAP ETR	회계상 유효세율×(−1)
	CASH ETR	현금 유효세율 ×(−1)
독립변수	SCORE	(i기업 t연도의 부정적 언론보도 점수 총 합계)/100×(−1)
통제변수	SIZE	기말총자산의 자연로그값
	LEV	부채비율(기말총부채/기말총자산)
	OCF	영업현금흐름 대비 기초총자산 비율(영업현금흐름/기초총자산)
	ROA	총자산이익율(당기순이익/총자산평잔)
	PPE	유형자산 집중도((유형자산−토지자산)/총자산)
	INTAN	무형자산 비율(무형자산/총자산)
	CS	대주주의 지분율
	FS	외국인주주의 지분율
	NOL	전기이월결손금이 있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의 더미변수
	BIGAUDIT	대형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의 더미변수
	IND	산업별 더미변수
	YEAR	연도별 더미변수

종속변수로는 조세회피의 측정치로 GAAP ETR과 CASH ETR을 사용하였다. GAAP ETR(회계상 유효세율)은 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산출하였다. CASH ETR(현금유효세율)은 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에 이연법인세자산부채변동액을 고

려한 뒤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측정하였다.[6] GAAP ETR과 CASH ETR은 유효세율의 측정오차를 줄이기 위해 0과 1을 벗어나는 값은 [0, 1]로 조정 (winsorization)하였으며 결과의 직관적인 해석을 위하여 −1을 곱하였다. 즉 종속변수 값이 −1과 가까운 작은 값일수록 조세회피 정도는 낮다고 해석하며 0과 가까운 큰 값일수록 조세회피 정도가 높다고 해석한다.

독립변수로는 앞서 2.3 가. 1) 부정적 언론보도의 수치화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개별 i기업 t연도에 부정적 언론보도의 수치화 점수 총합계를 사용하였으며, 종속변수인 유효세율과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값을 100으로 나눠 변수의 스케일(scale)을 조정하였다. 또한 결과의 직관적인 해석을 위하여 −1을 곱하였는데 이는 SCORE가 커질수록 부정적 언론보도 점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종속변수 GAAP ETR과 CASH ETR이 독립변수 SCORE와 음(−)의 관계 값이 발견되면 부정적 언론보도의 강도와 빈도가 커질수록 조세회피 정도는 낮아진다는 바가 검증될 수 있다.

통제변수로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기업의 자산구성비율 SIZE(자연로그값 이용), LEV(부채비율), PPE(유형자산집중도), INTAN(무형자산비율)과 현금흐름비율(OCF), 수익성비율(ROA), 지배주주별 지분율(CS, FS)을 사용하였다. 또한 전기 이월금결손금 여부(NOL)와 대형회계법인 감사여부(BIGAUDIT)를 더미변수로 사용하고 산업과 연도에 대한 고정효과를 설정하였다.

3.3 표본의 구성

본 연구는 최근의 경향을 반영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2023년까지의 11개년도를 분석 기간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제공하는 TS−2000을 통해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 중[7] 지주사와 금융업이 아닌 12월 결산법인을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변수 측정에 필요한 재무자료를 수집하였다.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12월 결산 상장법인 표본은 총 1,484개였는데 이 중 법인

6) 실제 법인세 신고액 및 납부액은 공시되지 않으므로, 재무제표상 이연법인세비용을 법인세비용에 가감하여 추정하였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 + 재무상태표상 이연법인세부채변동액 − 이연법인세자산변동액]과 같으며 이연법인세부채/자산변동액은 전기 대비 당기 증감액으로 계산하였다.

7) 지주사의 경우 산하에 다수의 법인이 존재하므로, 각 법인별 기사를 모두 취합하여 언론보도와 조세회피 간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어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세비용차감전손실이 발생한 경우(229개)를 1차로 제외한 뒤[8] 회귀모형의 통제변수에 결측치가 있는 표본을 2차로 제거하여 총 1,152개의 최종 표본을 선정하였다. <표 2>는 연도별 총 표본 수에서 최종 표본 수를 산출한 값을 단계별로 보여준다.

〈표 2〉 표본 수

연도	12월 결산 상장법인 표본수	법인세비용차감전손실이 발생한 표본 차감후	통제변수 결측치가 있는 표본 차감 후(최종 표본)
2013	129	102	78
2014	131	109	90
2015	131	108	98
2016	133	114	101
2017	135	116	104
2018	137	119	108
2019	137	112	106
2020	137	115	109
2021	138	121	119
2022	138	119	119
2023	138	120	120
합 계	**1,484**	**1,255**	**1,152**

Ⅳ. 실증분석 결과

4.1 기술통계

<표 3>은 실증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기술통계를 보여준다. GAAP ETR의 평균은 0.237이고 CASH ETR의 평균은 0.231로 GAAP ETR이 조금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표준편차는 GAAP ETR이 약 0.15, CASH ETR이 약 0.17로서 CASH ETR이 GAAP ETR보다 더 많은 변동성을

8) 법인세비용차감전손실이 발생한 경우 종속변수인 GAAP ETR과 CASH ETR을 산출할 때 오류값을 도출할 수 있으므로 표본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SCORE는 최소값 −7.99, 최대값 13.79 사이에서 평균이 −0.15이며 중간값은 −0.09으로 확인되어 전체적으로 기업에 긍정적인 언론보도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부채비율의 평균은 0.41, 유형자산과 무형자산비율의 평균은 각각 0.20, 0.03이었고 수익성 비율인 ROA의 평균은 약 0.014으로 확인되었다. 대주주와 외국인주주의 지분율은 평균적으로 각각 0.42와 0.22%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전기이월결손금이 있는 표본은 전체의 약 0.04, 대형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표본은 전체의 약 0.91로 표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표본 전체에 대한 기술통계(n=1,152)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최소	1분위	중간	3분위	최대
GAAP ETR	−0.2377	0.1497	−1	−0.2718	−0.2348	−0.1779	0
CASH ETR	−0.2313	0.1680	−1	−0.2773	−0.2304	−0.1558	0
SCORE	−0.1546	0.9137	−7.9900	−0.2750	−0.0900	−0.0100	13.7900
SIZE	22.0514	1.1732	18.5993	21.2167	21.8651	22.7255	26.4165
LEV	0.4130	0.1786	0.0328	0.2612	0.4326	0.5456	0.9368
OCF	0.0843	0.1458	−2.8845	0.0372	0.0711	0.1171	2.6815
ROA	0.0137	0.0137	−0.0077	0.0056	. 0103	0.0186	0.2000
PPE	0.2021	0.1521	0.0000	0.0874	0.1813	0.2828	0.8745
INTAN	0.0329	0.0500	0.0000	0.0053	0.0148	0.0399	0.4677
CS	0.4278	0.1682	0.0733	0.3011	0.4074	0.5430	1.1306
FS	0.2244	0.1517	0.1517	0.1072	0.1963	0.3079	0.8973
NOL	0.0373	0.1896	0	0	0	0	1
BIGAUDIT	0.9097	0.2867	0	1	1	1	1

본 연구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Pearson 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표 4>와 같다. 독립변수 SCORE는 종속변수 GAAP ETR과는 5%의 유의수준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가졌고, 종속변수 CASH ETR과는 1%의 유의수준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확인하여 부정적 언론보도와 조세회피 간의 연관성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통제변수들 중 수익성비율(ROA), 유형자산집중도(PPE), 전기이월결손금여부(NOL)은 종속변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4〉 상관계수표 (n=1,15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GAAP ETR	1												
[2] CASH ETR	0.8186***	1											
[3] SCORE	−0.0655**	−0.0914***	1										
[4] SIZE	0.0004	0.0163	−0.1804***	1									
[5] LEV	−0.0301	−0.0041	0.0485*	0.0491*	1								
[6] OCF	0.0281	0.0291	−0.0517*	0.0499*	−0.1044***	1							
[7] ROA	0.1659***	0.129***	−0.0851***	−0.064**	−0.3314***	0.3761***	1						
[8] PPE	0.1113***	0.0851***	0.0077	0.1407***	0.2127***	0.0646***	−0.0541**	1					
[9] INTAN	0.0394	0.0393	−0.0249	0.1235***	−0.0029	0.0737	−0.0123	−0.0263	1				
[10] CS	0.0016	−0.0098	0.1403***	−0.2664***	0.0661**	−0.1041***	−0.2065***	0.0424	−0.1113***	1			
[11] FS	−0.0248	−0.0265	−0.1494***	0.4362***	−0.2039***	0.1561***	0.2462***	0.0677***	0.1553***	−0.4628***	1		
[12] NOL	0.0968***	0.0762***	−0.0573*	0.0131	0.167***	0.1058***	−0.0218	0.0783***	−0.0269	−0.0435	−0.0844***	1	
[13] BIGAUDIT	−0.0391	−0.0182	−0.0356	0.2622***	−0.0788***	0.0712	−0.0305	−0.1186***	0.1563***	−0.0472	0.1725***	−0.0658*	1

주 1) $*p<0.10$, $**p<0.05$, $***p<0.01$

4.2 회귀분석 결과

<표 5>는 부정적 언론보도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표 5〉 회귀분석 결과

$$TaxAvoidance_{i,t} = \beta_0 + \beta_1 SCORE_{i,t} + \beta_2 SIZE_{i,t} + \beta_3 LEV_{i,t} + \beta_4 OCF_{i,t} + \beta_5 ROA_{i,t} + \beta_6 PPE_{i,t} + \beta_7 INTAN_{i,t} + \beta_8 CS_{i,t} + \beta_9 FS_{i,t} + \beta_{10} NOL_{i,t} + \beta_{11} BIGAUDIT_{i,t} + \sum IND + \sum YEAR + \epsilon_{i,t}$$

변수	GAAP ETR		CASH ETR	
	상관계수(Coef.)	t값(t−value)	상관계수(Coef.)	t값(t−value)
SCORE	−0.0086 *	−1.78	−0.0156 ***	−2.83
SIZE	−0.0022	−0.45	0.0018	0.32
LEV	−0.0271	−0.97	−0.0073	−0.23
OCF	−0.0689 **	−2.13	−0.0497	−1.35
ROA	2.1632 ***	5.78	1.9252 ***	4.52
PPE	0.1076 ***	3.04	0.0686 *	1.70
INTAN	0.2681 ***	2.77	0.2779	2.52
CS	0.0099	0.33	−0.0068	−0.20
FS	−0.0338	−0.87	−0.0645	−1.45
NOL	0.0777 ***	3.31	0.0584 **	2.19
BIGAUDIT	−0.0044	−0.27	−0.0033	−0.18
산업 Dummies	Included		Included	
연도 Dummies	Included		Included	
Adj. R^2	0.0905		0.0630	
표본 수	1,152		1,152	

주 1) $*p<0.10$, $**p<0.05$, $***p<0.01$
2) 변수설명은 <표 1> 참조

<표 5>와 같이 독립변수인 SCORE의 계수를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SCORE의 계수가 유의미한 음(−)의 값을 나타낸다는 것은, 부정적 언론보도의 강도와 빈도가 커질수록 조세회피 수준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GAAP ETR은 SCORE와 유의수준 10%에서 유의미한 음(−)의 값을 나타냈으며, CASH ETR은 유의수준 1%에서 유의미한 음(−)의 값을 나타내어 GAAP ETR보다 CASH ETR과의 관계가 더 강하게 확인되었다. 이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로 특히 현금 유효세율(CASH ETR)에서 부정적 언론보도의 영향이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즉, CASH ETR의 경우, 부정적 언론보도의 강도와 빈도가 커질수록 조세회피 정도가 약 0.0156 포인트 감소함을 의미한다.

다른 통제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GAAP ETR과의 관계에서는 수익성비율(ROA), 유형자산집중도(PPE), 무형자산비율(INTAN)과 전기이월결손금여부(NOL)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수익성이나 유무형자산비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전기이월결손금이 있는 기업일수록 기업의 조세회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이 통제변수들은 CASH ETR과의 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유의미한 정도가 낮았는데, 수익성비율(ROA)과 전기 이월결손금여부(NOL)은 유의미하게 증가함이 확인되었으나, 유형자산집중도(PPE)의 통계성 유의성은 낮았고 무형자산비율(INTAN)과는 통계적 유의성을 찾을 수 없었다. 또 다른 통제변수인 현금흐름비율은 GAAP ETR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현금흐름비율이 감소할수록 조세회피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종속변수가 CASH ETR일 때는 현금흐름비율과 통계적 유의성을 찾을 수 없었다.

4.3 추가분석

가. 자산 5분위 구간별 회귀분석

주요 연구에서는 기업규모를 고려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으나, 그 통계적 유의성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기업규모와 조세회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므로 규모 효과를 더욱 직접적으로 통제 및 반영하기 위하여 기말총자산을 5분위로 나누어 5개의 그룹에 대한 회귀분석을 재수행하였다. 이때 규모가 가장 작은 그룹은 1분위로 설정하였고 규모가 가장 큰 기업들을 5분위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Score가 Tax avoidance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지 추가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표 6>과 같이 독립변수 SCORE는 종속변수 Tax Avoidance에 대해 자산규모가 가장 큰 5분위 기업에서만 유의미하게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들이

부정적인 언론보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여 조세회피를 줄인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GAAP ETR에서는 5% 유의수준에서, CASH ETR에서는 1% 유의수준에서 각각 유의미한 음(−)의 값을 보여 현금 유효세율에서 더 강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반면, 자산규모가 작은 1~4분위 기업에서는 SCORE와 조세회피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대기업에서는 부정적인 언론보도가 강해지고 많아질수록 조세회피에 보수적이지만,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 규모 기업에서는 부정적인 언론보도가 조세회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6〉 자산 5분위 구간별 회귀분석에 대한 Tax Avoidance의 상관계수

$$Tax\,Avoidance_{i,t} = \beta_0 + \beta_1 SCORE_{i,t} + \beta_2 SIZE_{i,t} + \beta_3 LEV_{i,t} + \beta_4 OCF_{i,t} + \beta_5 ROA_{i,t} + \beta_6 PPE_{i,t} + \beta_7 INTAN_{i,t} + \beta_8 CS_{i,t} + \beta_9 FS_{i,t} + \beta_{10} NOL_{i,t} + \beta_{11} BIGAUDIT_{i,t} + \sum IND + \sum YEAR + \epsilon_{i,t}$$

자산 5분위	GAAP ETR		CASH ETR	
	상관계수(Coef.)	t값(t−value)	상관계수(Coef.)	t값(t−value)
1분위(n=231)	−0.0287	−0.74	−0.0059	−0.14
2분위(n=230)	−0.0431	−0.85	−0.0541	−0.92
3분위(n=231)	−0.0548	−1.1	−0.0871	−1.51
4분위(n=230)	0.0060	0.38	0.0108	0.61
5분위(n=230)	−0.0100 **	−2.05	−0.0162 ***	−2.73

주 1) $^{*}p<0.10$, $^{**}p<0.05$, $^{***}p<0.01$

2) 변수설명은 <표 1> 참조

3) 자산규모 작은 기업들은 1분위, 규모가 큰 기업들은 5분위

나. 기업의 업종 분류별 회귀분석

기업의 업종 분류에 따른 부정적 언론보도와의 상관관계도 추가로 분석하였다. 기업의 업종 구분에서는 특히 소비재 업종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소비재 기업들이 언론보도의 영향에 더 민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업종 분류는 FnGuide에서 개발한 FICS(FnGuide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 지표를 기준으로 사용하였다.[9] <표 7>은 본 연구의 표본을 대상으로 업종을 분류하였을 때 분포표를 나타낸다. 업종 구분은 소비재 업종에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구분은 필수소비재, 경기소비재 그리고 소비재 외로 분류하였다. 필수소비재는 음식 및 생활용품을 경기소비재는 자동차, 미디어, 의류, 서비스 등을 포함하며, 소비재 외의 분류는 자본재, 에너지, 운송과 같은 산업재가 대표적으로 포함된다.

〈표 7〉 업종 분류에 따른 표본 분포표

업 종(FICS기준)	표본 수(개)	비율(퍼센트%)	누적비율(퍼센트%)
필수소비재	128	11.11	11.11
경기소비재	289	25.09	36.20
소비재 외	735	63.80	100.00
합 계	1,152	100.00	

<표 8>에서는 <표 7>에서의 업종 구분을 통해 회귀분석을 수행한 값을 보여준다. 그 결과 부정적 언론보도와 조세회피는 필수소비재와 경기소비재에서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값을 가졌으나 각 상관관계는 양(+)의 상관관계와 음(−)의 상관관계로 상반되는 결과 값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음식 및 생활용품과 같은 필수소비재의 경우 양(+)의 상관관계를 가져 부정적인 언론보도가 증가할수록 오히려 조세회피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는 표본의 수가 다른 경우보다 적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로 해석될 수도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반면, 자동차, 미디어, 서비스 등과 같은 경기소비재의 경우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어 부정적인 언론보도가 증가할수록 조세회피가 감소한다는 본 연구의 주된 가설과 동일한 결과 값을 보여주었다. 특히 GAAP ETR과 CASH ETR 모두에서 10% 유의수준의 유의한 값을 보여주어 결과의 신뢰성을 높였다. 소비재 외의 산업에서는 GAAP ETR과 CASH ETR 모두에서 독립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음을 나타냈다.

본 추가분석은 특히 소비재 업종에서 부정적 언론보도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할수록 조세회피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각 업종별 표본 수는 상대적으로 적어 분석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추가분석의 분석 결과는 향후 추가적인 표본 확대와 재분석을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한계를 염두에 두고 해석되어야 한다.

9) 업종 상세 분류는 <부록 표 2>를 참고

〈표 8〉 소비재 구분별 회귀분석에 대한 Tax Avoidance의 상관계수

$$Tax\,Avoidance_t = \beta_0 + \beta_1 SCORE_t + \beta_2 SIZE_t + \beta_3 LEV_t + \beta_4 OCF_t + \beta_5 ROA_t + \beta_6 PPE_t + \beta_7 INTAN_t + \beta_8 CS_t + \beta_9 FS_t + \beta_{10} NOL_t + \beta_{11} BIGAUDIT_t + \beta_{12} FICS_t + \sum YEAR + \epsilon_t$$

소비재 분류	GAAP ETR		CASH ETR	
	상관계수(Coef.)	t값(t−value)	상관계수(Coef.)	t값(t−value)
필수소비재	0.0907 *	1.87	0.0719	1.44
경기소비재	−0.0155 *	−1.81	−0.0163 *	−1.92
소비재 외	−0.0050	−0.95	−0.0137	−1.33

주 1) $*p<0.10$, $**p<0.05$, $***p<0.01$
2) 변수설명은 <표 1> 참조, FICS는 업종별 분류 코드

Ⅴ. 결 론

본 연구는 부정적 언론보도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조세회피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 대상은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기업의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총 11년간의 자료 중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표본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부정적 언론보도의 정도와 빈도는 감성 분석 방법을 통해 측정하였다. 표본의 대상 기사들을 수집하고 전처리 과정을 거쳤고, 사전 기반 접근방식을 사용하여 정형화된 텍스트들에 각 값을 매겨 합산하는 방식으로 언론보도의 정도와 빈도를 수치화하였다. 조세회피의 정도는 많은 선행 연구들이 선택한 방식인 재무제표상 유효세율과 현금 유효세율을 통해 확인하였다. 즉, 재무제표상 유효세율은 손익계산서의 법인세비용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으로 나눈 GAAP ETR으로 구했고, 현금 유효세율은 법인세비용에 이연법인세비용을 고려한 금액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으로 나눈 CASH ETR로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부정적 언론보도가 증가할수록 기업의 유효세율은 높아져 조세회피 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정적 언론보도가 기업의 조세 전략 수립 시 중요한 고려 요소임을 시사한다. 추가로, 자산 5분위 구간별과 표본의 업종 구분별로 분석을 수행했는데, 그 결과

규모가 큰 대기업의 경우에서만 부정적 언론보도와 조세회피 정도가 유의적인 음(−)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또한 업종 구분별 분석에서는 소비재 업종 중에서도 경기소비재에서 부정적 언론보도와 조세회피 정도 간의 유의적인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업종별 추가분석의 경우, 분석 대상 표본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결과의 신뢰성이 우려되므로 해석의 주의가 필요하며, 향후 추가적인 표본 확대와 재분석을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언론보도와 조세회피의 관계에 대한 국내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감성 분석을 통해 우호적이거나 비판적인 언론보도의 어조를 수치화하고 이를 실증연구의 변수로 사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언론보도를 조세회피 실증연구에 사용하고자 하는 향후 연구에 유용한 분석 도구로 사용되리라 기대한다. 둘째, 실증분석의 결과에 따라 언론보도가 부정적일수록 기업의 조세회피에 소극적임을 검증하였다. 이는 부정적 언론보도가 조세회피 결정 요인 중에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추가분석에서 기업의 규모가 큰 대기업일수록 부정적 언론보도에 더 민감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주로 대기업들이 기타 중소기업들보다 규제 기관의 감시를 더 많이 받는다는 사실을 비추어볼 때, 부정적 언론보도가 증가하면 규제 기관이나 투자자들이 기업들의 세무리스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가능성이 크므로 기업은 보수적인 조세 전략을 채택할 수 있다는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부정적 언론보도가 증가할 때, 규제 기관이나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이를 인지한 기업이 조세 전략을 보수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였으나 실제로 과세당국이나 규제 기관이 언론보도의 영향을 받는지에 관하여는 아직 규명되지 않아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각 표본을 업종별로 구분할 경우 표본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분석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추가분석의 분석 결과는 향후 추가적인 표본 확대와 재분석을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셋째, 부정적 언론보도가 조세회피를 결정하는 독립된 요인이 아니라, 부정적 언론보도가 기업의 브랜드가치를 하락시키고 그 결과 조세회피 전략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내생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부분까지 포함되지는 않았으므로 이는 이후 연구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김성해, 송현진, 이나연, 이정한. 2010. 주류 미디어 공론장의 이상과 현실 : 국내 주요 신문의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커뮤니케이션이론 제6권, 제1호 : 144－190

김임현, 김진수. 2019. 브랜드가치와 조세회피. *한국회계정보학회.* 회계정보연구 제37권 제3호 : 259－280

김현진, 전창영. 2021. 빅데이터 토픽모델링과 감성 분석을 이용한 한국 언론의 러시아 보도 분석.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박시훈, 김갑순. 2020. 공격적 조세회피와 명성비용.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제21권 제6호 : 155－188

송현신, 김원배. 2018. 기업의 특성과 조세회피 관련성 연구 : 재무적・비재무적 특성을 종합하여. *전문경영인연구.* : 117－143

이광숙, 기은선. 2016. 조세회피의 비조세비용 －조세회피가 자본비용, 매출, 신용평가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회계학 연구.* 제41권 제4호 : 1－40

최기호. 2018. 조세회피와 관련된 세무회계 실증 연구 동향.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제35권 제4호 : 207 － 275

최보람, 이정미. 2014. 기업평판과 조세회피, 기업가치의 관계(The effect of tax avoidance on corporate reputation and its relation to firm value). *한국세무학회* 세무학 연구. 제31권 제3호 : 149－175

Austin, C., & R. Rego. 2017. An examination or reputational costs and tax avoidance : Evidence from firms with valuable consumer brands.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39 (1) : 67－93

Bona－Sanchez C, Perez－Aleman J., & Santana－Martin D. J. 2023. Media coverage and corporate tax burden in Spain. *Spanish Accounting Review.* 26 (1) : 138－149

Chen, S., Schuchard, K., & Stomberg B. 2019. Media Coverage of Corporate Taxes. *The Accounting Review.* vol. 94. No. 5 : 83－116

Dyreng, S., J. Hoopes., & J Wilde. 2016. Public pressure and corporate tax behavior.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54 (1) : 147－186

Fearn－Banks, K. 1996. Crisis communications : a casebook approach. Routledge

Graham, J., M. Hanlon, T. Shevlin, and N. Shroff. 2014. Incentives for tax planning and avoidance : Evidence from the field. *The Accounting Review* 89 (3) : Scholes, M., M. Wolfson, M. Erickson, M. Hanlon, E. Maydew, and T. Shevlin. 2015. Taxes and Business Strategy : A Planning Approach. 5th Edition. Upper Saddle River, NJ : Pearson.

Ullrich, S., & Brunner, C.B. 2015. Negative online consumer reviews : Effects of different responses. Journal of Product & Brand Management 24(1) : 66－77

Negative Media Coverage and Corporate Tax Avoidance

Sunho Lee*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impact of increasing negative media coverage on corporate tax avoidance. The sample consists of data from companies listed on the KOSDAQ and KRX markets from 2013 to 2023, totaling 11 years of data. The extent and frequency of media coverage were quantified using sentiment analysis methods. Additionally, the degree of tax avoidance was assessed through the effective tax rates reported in financial statements (GAAP ETR) and cash effective tax rates (CASH ETR).

The empirical analysis yield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as observed, indicating that as negative media coverage increases, the effective tax rate of companies rises, leading to a decrease in the level of tax avoidance.

This suggests that negative media coverage is an important factor to consider in the formulation of corporate tax strategies. Second, the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media coverage and corporate effective tax rates across different asset sizes and industry classifications. The results reveale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specifically for large corporations, with a similar trend identified within the consumer goods sector, particularly in cyclical consumer goods. This implies that larger firms and those in the cyclical consumer goods category are more sensitive to negative media coverage.

This research contributes to the limited body of literature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edia coverage and tax avoidance in South Korea by employing sentiment analysis to quantify the tone of media reports. Future research should expand on the influence of negative media coverage on corporate tax strategies, potentially by increasing the sample size and exploring various dimensions for a more in-depth investigation.

<Key words> Tax avoidance, Media coverage, Sentiment Analysis

* Hyundai AutoEver, sunholee310@gmail.com

부 록

〈부록 표 1〉

언론보도의 기사제목 구성단어별 점수
(강한 부정 : −2, 약한 부정 : −1, 강한 긍정 : +1, 강한 긍정 : +2)

점수	해당 단어(명사, 동사)						
−2	검찰	과징금	구속	구속기소	배임	분식회계	불법
	붕괴	비리	사망	소송	수사	압수수색	위반
	징계	징역	최악	추징	특검	횡령	
−1	갑질	결함	경쟁사 비방	경찰	공정위	과태료	급락
	꼼수	난항	논란	뇌물	당혹	대국민사과	리베이트
	리콜	마약	망신	무책임하다	물의	미달	벌금
	벌금형	부당	부당인사	부실	부정	부진	부진하다
	부패	분노	분쟁	불공정	불량	불매	불안
	불안감	불안하다	비상	사고	사태	실망	실패
	심각	아동학대	악재	악화	약세	어려움	엄벌
	영업정지	오명	오염	왜곡	우려	위법	위약금
	위축	위험	유죄	의혹	입건	재판	적발
	적폐	정리해고	조작	죄송하다	중단	지연	직격탄
	집행유예	차별	청탁	초비상	총파업	추락	침수
	타격	탈취	투신	파업	폭발사고	폭행	표절
	피소	하락	항소	행정소송	허위	혐의	
1	강화	개선	건강하다	고급스럽다	고도화	고성능	극복
	급등	긍정	기대하다	기부	대박	대세	돌파
	뜨겁다	무죄	무혐의	베스트	상승	상승세	선점
	성장	수주	승소	승승장구	앞장	우수	육성
	으뜸	인증	재능기부	잭팟	적법	증가	착하다
	첫	초고	특허	행복	허가	호조	화합
	확대	회복	회복하다	훈풍	휩쓸다	흥행	
2	최고	최대	최우수	최초			

〈부록 표 2〉

FICS(FnGuide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의 구조

Sector(10)	Industry Group(25)	Industry(62)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 시설 및 서비스, 석유 및 가스
소재	소재	화학, 건축소재, 용기 및 포장, 금속 및 광물, 종이 및 목재
산업재	자본재	건축자재, 건설, 전기장비, 복합 산업, 기계, 무역, 조선
	상업서비스	상업서비스
	운송	항공운수, 해상운수, 육상운수, 운송인프라
경기소비재	자동차 및 부품	자동차부품, 자동차
	내구 소비재 및 의류	내구소비재, 레저용품, 섬유 및 의복
	소비자 서비스	호텔 및 레저, 교육
	미디어	미디어
	유통	도소매, 온라인쇼핑, 백화점
필수소비재	음식료 및 담배	음료, 식료품, 담배
	생활용품	가정생활용품, 개인생활용품
의료	의료장비 및 서비스	의료장비 및 서비스
	제약 및 바이오	바이오, 제약
금융	은행	상업은행, 상호저축은행
	기타금융	창업투자 및 종금, 소비자 금융
	보험	보험
	부동산	부동산
	증권	증권
IT	소프트웨어	인터넷 서비스, IT 서비스, 일반 소프트웨어, 게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통신장비, 휴대폰 및 관련부품, 셋톱 박스,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전자 장비 및 기기, 보안장비, 사무기기
	반도체	반도체 및 관련장비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및 관련부품
통신서비스	통신서비스	유선통신, 무선통신
유틸리티	유틸리티	전력, 가스

제 8 분과

조세정책

장소 : 325호 사회자 : **임태균 교수** (전북대)

시 간	발표논문 제목	저자 및 발표자*	토론자
16:40 ~ 18:10	증권형 토큰의 도입에 따른 과세제도의 정비방안	**전병욱*** (서울시립대)	**박수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및 기업업무추진비의 매입세액불공제 개선방안	서정우 (강남대) **서정화*** (협성대)	**이창규** (중앙대)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한 합산분할과세 시나리오 분석	**이예지*** (서울시립대) 조형태 (홍익대) 차상권 (칼빈대)	**강민지** (경북대)

증권형 토큰의 도입에 따른 과세제도의 정비방안

전 병 욱
(서울시립대학교)

증권형 토큰의 도입에 따른 과세제도의 정비방안

전병욱*

〈요 약〉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장 규모에 비해 금투세의 폐지・유예 여부에 따라 장래에도 계속해서 상당한 과세상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증권형 토큰의 거래이익에 대해 자본시장법령 및 금융소득 과세제도의 세부적 검토와 함께 주요국의 과세 논의 등을 참고해서 합리적인 과세제도를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을 반영해서 본 연구는 토큰 증권으로 발행되는 개인투자자의 투자 약정에 대한 합리적 과세방안을 분석하였다.

증권형 토큰에 대한 현행 과세제도는 불명확한 근거법령과 자의적 과세실무로 인해 과도한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을 유발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과세제도의 정비방안으로는 먼저, 투자계약증권인 증권형 토큰에 별도로 적용하는 과세방식을 마련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투자계약증권의 이익의 분배는 소득세법의 유형별 포괄주의에 의해 배당소득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불확실한 법령해석의 한계로 인해 과세실무에서 다른 유형의 소득(기타소득 및 사업소득)으로 구분해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배당소득에 추가적으로 열거하는 명시적인 세법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비해 투자계약증권의 양도는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투세에서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기 때문에 금투세를 계획대로 시행할 경우에는 별도의 세법 개정은 필요하지 않지만, 금투세가 폐지・유예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익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추가적으로 열거하는 세법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자가 사업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른 수익을 배분할 권리인 채권적 청구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익명조합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데, 해당 익명조합 등이 적격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익의 분배와 함께 증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모두 배당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후자의 소득의 종류와 관련한 소득세법령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2025년 이후의 금투세 시행 여부에 따른 경우의 수를 구분해서 소득세법령을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이상의 정비방안과 별도로 공동사업에 대한 이익 분배의 약정을 바탕으로 하는 조각투자의 투자계약증권에 대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즉, 상당한 비율의 조각투자의 투자계약증권이 익명조합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동업기업과세특례의 대체적 과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정확하고 편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세실무를 정리하는 것과 함께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해서 증권형 토큰의 발행・유통을 통해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bwjun@uos.ac.kr

조각투자에 참가하는 투자자의 세금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기 위해 과세관청이 관련 근거법령을 개정하거나 유권해석을 생산함으로써 동(同)투자에 따른 잠재적 과세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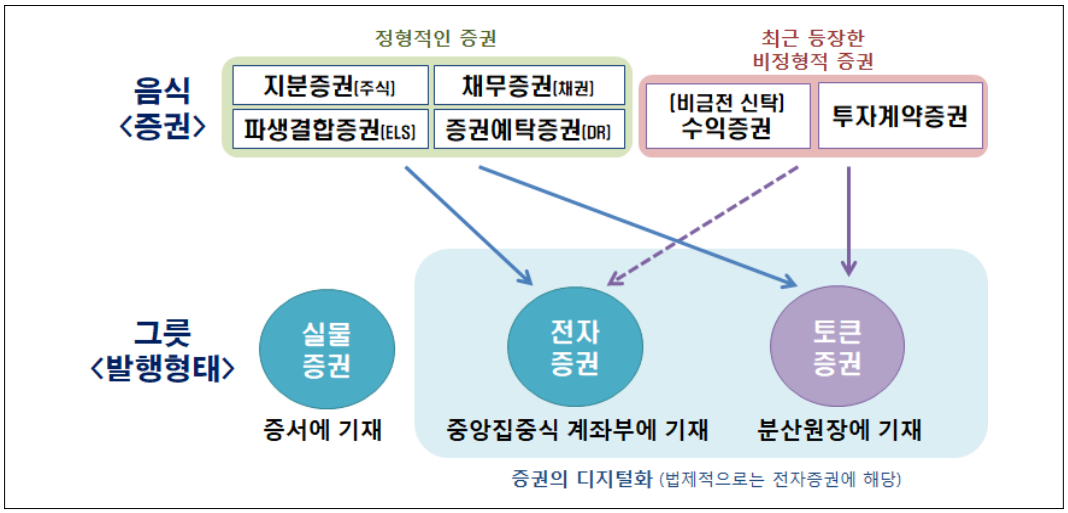
<주제어> 증권형 토큰, 투자계약증권, 금융투자소득세, 익명조합, 동업기업과세특례, 납세협력비용

Ⅰ. 연구의 배경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에서 “35.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에 의하면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을 위해 투자자 보호장치 등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가상자산을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구분하는 규제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즉, “국내 ICO 여건 조성”을 위해 증권형 코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시장여건 조성 및 규율체계를 확립하고, 비증권형 코인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의 규율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서 금융위원회는 2023.2.6.자 보도자료(“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STO를 허용하겠습니다”)에서 증권형 토큰이 자본시장법의 적용대상인 것과 함께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STO, security token offering)을 허용해서 최근 출현한 다양한 권리의 증권화를 지원하고,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 증권의 발행과 거래도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개선하겠다고 하였다. 즉, <그림 1>과 같이 “토큰 증권 발행(STO) 허용은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 음식 특성에 잘 맞는 그릇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인데, 발행인의 선택에 따라 주식・채권 등 정형적인 증권을 토큰 증권에 담거나 (비금전 신탁)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을 기존 전자 증권 형태로 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림 1〉 토큰 증권의 개념



* 자료 : 2023.2.6.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STO를 허용하겠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증권형 토큰이 포함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이익분배액은 배당소득인 반면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2025년 이후에는 동(同)양도차익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과세할 예정이지만, 정부는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 자산형성”을 위해 금투세를 폐지한다는 입장이다.

비교적 명확한 금투세의 과세방식(투자계약증권 양도차익과 다른 금융투자상품 손익과의 통산 및 결손금 이월 허용)에 비해 2025년 이후에도 유지될 수 있는 현행 과세체계에서 투자계약증권의 사업자들은 잠재적인 과세가능성에 대비해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증권형 토큰의 거래금액에 대해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해서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장 규모에 비해 금투세의 폐지·유예 여부에 따라 장래에도 계속해서 상당한 과세상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증권형 토큰의 거래이익에 대해 자본시장법령 및 금융소득 과세제도의 세부적 검토와 함께 주요국의 과세 논의 등을 참고해서 합리적인 과세제도를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을 반영해서 본 연구는 토큰 증권으로 발행되는 개인투자자의 투자약정에 대한 합리적 과세방안을 분석하도록 한다. “조각투자”의 방식으로 다수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증권형 토근의 투자이익에 대한 세부적 법령·제도 개편과 관련한 본 연구의 분석은 정부가 지향하는 금융산업 발전을 통한 국민경제의 성장 및 금융투자에 대한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장래의 입법적·정책적 논의에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Ⅱ. 증권형 토큰의 과세제도의 분석

1. 금융소득 과세제도의 개관

“금융소득”은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s)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이고, “금융상품”이란 금융산업에서 취급하는 상품이다.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은행업, 보험업 및 금융투자업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표 1>과 같이 금융상품도 각각의 업종에서 취급하는 수신상품, 보험상품 및 금융투자상품으로 구분되고, 관련 법규도 각각 은행법, 보험법 및 자본시장법으로 구분하고 있다.

〈표 1〉 금융산업별 금융상품의 구분

금융산업	은행업	보험업	금융투자업
금융상품	수신상품	보험상품	금융투자상품
정의	원본의 지급을 약정하는 금융상품	장래 위험발생에 따른 보상을 약정하는 금융상품	원본 손실가능성을 부담하는[1] 금융상품
근거법령	은행법 등	보험법	자본시장법

2009.2.4.부터 시행하는 자본시장법 제6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을 거래하는 행위인데, 동법 제3조는 금융투자업이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은행업 및 보험업에서 취급하는 수신상품이나 보험상품과는 특별히 구별하여 <표 2>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1) 경우에 따라서는 원본을 초과하는 손실가능성을 부담할 수 있다.

〈표 2〉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및 분류(자본시장법 제3조)

①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이[2]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3] 초과하게 될 위험(이하 “투자성”이라 한다)이 있는 것을 말한다[4].
② … 금융투자상품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
2. 파생상품 : 가. 장내파생상품 나. 장외파생상품

<표 2>와 같이 자본시장법은 이익획득이나 손실회피의 개념 외에 “투자성”이라는 기술적 개념을 사용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다른 금융상품인 수신상품이나 보험상품과 구별하는데, 이러한 구별은 금융투자상품이 은행법과 보험법에 의해 중복 규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비록 은행업이나 보험업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이라도 투자성을 가지면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게 됨을 의미한다[5].

여기서 “투자성”은 “투자원본의 손실위험”을 의미하는데[6], 이를 금융소득에 적용하면 금융

2) 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3) 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4) 다만,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나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처분 권한(신탁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처분 권한을 제외한다)이 부여되지 아니한 신탁(관리신탁)의 수익권은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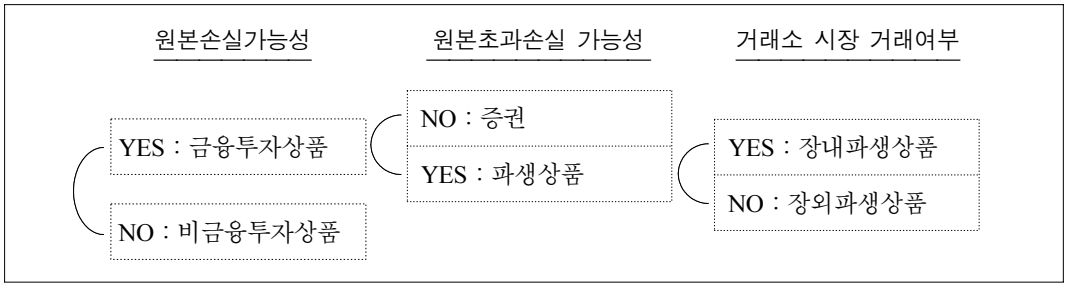
5) 자본시장법 제정 이전의 자본시장 관련 금융법은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를 사전적으로 열거하여 제한하고 있는 체제로, 유가증권은 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 주식, 출자증권, 수익증권, 주식연계증권(ELS) 등 21개를 열거했고, 파생상품은 유가증권,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으로 그 기초자산을 4가지로 열거했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는 금융투자상품으로 열거되어 있는 상품에 대해서만 금융기관의 취급이 허용되고 투자자 보호 규율이 적용되므로 증권회사가 특정 신용 금융상품을 설계하거나 매매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사전적으로 불확실하여 금융혁신의 발전을 제약하고, 신종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는 법령을 개정하여 규율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자본시장법은 ‘투자성(원본손실 가능성)’이라는 특징을 갖는 모든 금융상품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의 ‘금융투자상품’을 추상적으로 정의함으로써 동(同)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법의 규율대상(금융투자회사의 취급허용, 투자자 보호규율 적용)으로 하였고, 이렇게 정의된 ‘금융투자상품’을 금융상품의 특성(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 장외 파생상품, 장내 파생상품으로 분류한 후 각각의 개념도 추상적으로 정의하여 포괄주의 규율체제로 전환하였다(이상의 내용은 재정경제부(2006.6.30.)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설명자료”에서 인용한 것이다).

6) 투자성은 ‘원본손실이 발생하는 상품구조’나 ‘유통과정상의 가치변화(시장위험)’ 등을 포괄하여 판단한다(재정경제부, 2006). 다만, 가치변동이 있는 실물자산을 소비 목적으로 매입하는 경우 등과 같이 원본손실가능성이 있더라도 이익획득이나 손실회피 목적이 없을 경우에는 투자자로서 보호할 필요성

투자상품으로부터의 소득은 투자원본손실위험(“투자위험”)을[7] 부담하면서 획득하는 금융소득인 반면 수신상품이나 보험상품으로부터의 소득은 투자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획득하는 금융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자본시장법 제4조 및 제5조는 <그림 2>와 같이 금융투자상품 중에서 원본초과손실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증권”으로 구분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파생상품으로 구분하는데[8], 증권의 정의 및 분류는 <표 3>과 같다.

〈그림 2〉 금융상품의 경제적 실질에 따른 분류



〈표 3〉 증권의 정의 및 분류(자본시장법 제4조)

① …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를[9]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② … 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투자계약증권	5. 파생결합증권	6. 증권예탁증권

이 없으므로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하였다. 즉,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을 ‘계약상의 권리’로 정의하여 투자성을 가진 실물자산 등이 금융투자상품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였다.

7) 여기서 “투자원본손실위험”이란 자본시장법에서는 분명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금융투자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의미하는 개념이며, 금융투자상품을 발행하거나 거래하는 기관의 파산위험은 포함하지 않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8) 파생결합증권은 원본초과손실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증권으로 구분한다.

9) 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

2.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및 투자계약증권의 분석

<표 3>의 개별 증권 중에서 “수익증권”은 “제110조의 수익증권(신탁업자의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 제189조의 수익증권(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의 수익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이고(자본시장법 제4조 제5항), “투자계약증권”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한다.)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이다(동조 제6항)[10].

수익증권 중에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은 신탁의 대상이 금전 외의 재산인 수익증권인데, 자본시장법상 원칙적으로 신탁업자의 금전신탁 수익증권만을 허용하기[11]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의 근거가 없고, 예외적으로 조각투자에서 규제샌드박스의[12] 형태로

10)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증권들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수익증권 및 투자계약증권을 제외한 종류별 증권의 법률상 정의(자본시장법 제4조 제3항 내지 제8항)〉

종류	정 의
채무증권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함), 사채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
지분증권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유한회사·익명조합의 출자지분, 민법에 따른 조합의 출자지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
증권예탁증권	이상의 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

11) 자본시장법 제4조 제5항, 제110조 제1항 및 제189조 제1항. 즉, 자본시장법이 규율하는 신탁업자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증권의 발행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증권 등과 같이 개별 법률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남궁주현, 2022).

12) “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이다. 규제샌드박스는 2016년에 영국 정부가 처음으로 도입해서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60여개 국가에서 운영 중인 제도인데, 아이들이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것처럼 시장에서의 제한적 실증을 통해 신기술을 촉진하는 동시에 이 기술로 인한 안전성 문제 등을 미리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인용하였다.).

토큰 증권인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유통을 일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13]. 즉,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 상품과 관련한 권리가 자본시장법의 규제가 적용되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지 않아서 발행・유통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한시적으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는 방식을 권고하고 있다[14][15]. 그러나, 규제샌드박스는 특례의 허용기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조각투자 상품의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유통을 지속하지 못할 잠재적인 사업상 위험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금융위원회는 "종합재산관리 및 자금조달기능 강화를 위한 신탁업 혁신 방안"(금융위원회, 2022.10.13., 이하 "신탁업 혁신방안")에서 기업의 유연한 자금 조달 및 투자자 보호의 강화를 위해 조각투자와 관련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을 허용하고 제도화하겠다고 하였다[16].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신탁계약에 따르는데, 신탁법상 신탁의 대상은 "특정 재산"으로 신탁이 설정되면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대내외적으로 완전히 이전된다[17]. 즉, 위탁자가 보유하던 특정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수익권으로 전환되고,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분되어 독립적으로 관리되며,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 금지된다. 또한, 신탁의 종류와 관계없이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의 발행이 허용되고, 전자등록할 수 있으며, 권리추정력도 부여된다[18].

비금전신탁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는 <표 4>와 같이 투자자와 사업자 간에 내부거래 방식 및 사업구조를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예컨대, 특정 자산에 대한 지분 소유권으로 토큰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투자자와 사업자의 관계를 신탁계약으로 구성하면 수탁자가

---

13) 사업의 혁신성 및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고, 규제 적용의 특례를 인정받아 사업이 허용되며 지정기간은 최대 4년이다(최조 지정기간은 2년 이내이고, 심사를 거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조, 제5조 및 제10조).

14)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 2023. 2.6.)에 포함된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에서 인용하였다.

15) 단, 이와 같이 규제샌드박스로 지정되더라도 토큰 증권의 방식으로 발행된 권리에 전자증권법상 효력을 부여할 수는 없고, 사업자는 토큰과 1 : 1로 대응되는 전자증권을 발행하여 등록해야 한다. 또한, 토큰 증권 형태의 권리의 발행 및 유통의 겸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발행 증권의 특성에 따른 유통시장이 필요하되, 발행과 유통의 겸영을 통해서만 혁신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16) 구체적으로, 비금전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면 신탁의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은 예금으로 예치하도록 하고, 신탁이 운용 수단이 아니라 유동화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발행, 판매 및 운용 과정에서 단계별 규율을 마련할 예정이다.

17) 대법원 2021.11.11. 선고 2020다278170 판결

18) 신탁법 제22조 제1항, 제37조 제1항, 제65조, 제78조 제1항・제6항 및 제82조

관리・영업 등을 하고, 투자자는 수익권을 얻게 된다. 이에 반해 사업자가 주로 수행하는 특정 자산에 대한 공동사업에 투자자가 참여하면 그 증권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것이다.

〈표 4〉 비금전신탁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의 비교

구분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법적 근거	현행 자본시장법상 발행 불가(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19] 따른 규제샌드박스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임시 허용)	자본시장법 제4조 제6항
발행대상	금전 이외의 자산	제한 없음
내부구조	위탁자 및 수탁자의 신탁 관계	투자자 및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자
사례	저작인접권, 부동산 등	저작인접권, 한우, 미술품 등

구체적으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 2023.2.6.)에 포함된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이하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디지털자산”은 분산원장 또는 유사한 기술을 기반으로 발행되어 유통되는 권리・자산을 통칭하고,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가상자산)”과 “증권형 디지털 자산(토큰 증권)”으로 구분된다.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는 토큰 증권은 최근 등장한 비정형적 증권(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및 투자계약증권)의 발행 형태 중 한 가지인데, 토큰 증권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할

19) 현행 금융혁신지원 특별법(법률 제18117호, 2021.4.20. 일부개정, 2021.7.21. 시행)의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기술혁신이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금융산업 역시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한 핀테크 및 디지털 금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세계 각국은 핀테크 및 디지털 금융 육성을 위해 과감한 투자와 함께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는바, 한국 역시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통한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제정(법률 제16183호, 2018.12.31. 공포, 2019.4.1. 시행)하였으며, 2021년 3월 현재 총 139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음.
> 그러나, 혁신금융사업자가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을 통해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 안전성이 입증되더라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2+2년) 내에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이에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금융관련법령의 정비가 결정된 경우 지정기간이 연장되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경우에[20][21] "투자계약증권"으로 구분하는 판단기준은 <표 5>와 같다.

〈표 5〉 토큰 증권의 투자계약증권 판단 기준(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판단기준	내용
공동사업	수평적 공동성[22] 또는 수직적 공동성이[23] 있어야 함.
금전 등을 투자	반드시 법정 통화는 아니고, 법정 통화와의 교환 가능성 및 재산적 가치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주로 타인이 수행	타인(발행인)의 노력이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고,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필수적인 경영상의 노력이 있어야 함[24].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	장래에 특정한 객관적 조건이 달성되는 경우 포함하고, 수익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함.
투자자의 투자 이익 목적	

또한, 현행 제도에서는 증권을 특정 형태·방식으로만 발행·유통할 수 있고, 무권화 방식을[25] 특정하고 있어서 분산원장을 활용한 증권 발행이 불가능하고, 사실상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은 유통 대상 증권에서 제외되는데[26][27],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토큰 증권을 주식·

20) 증권의 해당 여부는 권리 표시의 방법·형식 및 특정 기술의 채택 여부 등에 관계없이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투자자와 사업자 간의 명시적 계약, 약관·백서의 내용, 묵시적 계약, 스마트 계약에 구현된 계약 체결·집행, 사업자가 제시한 광고, 권유 내용 및 여타 약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21) 디지털자산이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발행인이 투자자의 금전 등으로 사업을 수행하여 발생한 수익을 귀속시키고, 투자 모집시 발행인의 노력·경험과 능력 등에 대한 내용이 적극적으로 제시된 경우 등이다. 반대로 가능성이 낮은 경우는 현재 또는 미래의 재화·서비스의 소비·이용을 목적으로 발행되어 사용되거나, 지급결제 또는 교환매개로 발행되면서 상환을 약속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22) 2인 이상 투자자 간의 수익 관련성이 있는 경우

23) 투자자와 발행인 간의 수익 관련성이 있는 경우

24) 투자자 외에 사업 주체의 공동적·집단적 노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25) 실물증서를 발행하지 않고 증권에 대한 권리가 오로지 장부상에 전자기록 형태로 존재하도록 하여 장부상 기재를 통해 권리를 이전하는 것

26) 현행 규제샌드박스에서는 전자증권을 별도로 발행하고, 전자증권 및 토큰 증권의 발행과 거래가 대응해서 연계되며, 권리 추정력 등은 전자증권 등을 기준으로 하는 "미러링(mirroring)"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27) 토큰 증권 발행과 현행법상 허용되는 증권 발행 방식의 차이점은 사업자가 발행하고자 하는 증권의 발행 형식에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상 증권 발행에 포함되도록 하고, 토큰 증권을 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설립하며, 투자계약증권 및 수익증권을 거래하는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는 것이다[28]. 이와 같은 제도적 개선은 2023년 이후의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고, 개정 이전에는 규제샌드박스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신종 혁신사업을 지원하는데, 이들 법령의 개정은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3. 토큰 증권의 과세문제의 분석

(1) 우리나라의 과세제도의 분석

이상의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과 같이 토큰 증권은 증권의 특수한 발행수단이기 때문에 <표 3>의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의 분류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토큰 증권의 투자이익은 전술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또는 투자계약증권의 발행 형태별로 구분해서 분석해야 한다.

먼저, 투자계약증권의 발행 형태와 관련해서 금융위원회의 2022.4.20.자 보도자료(“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여부 판단 및 (주)뮤직카우에 대한 조치”)에 의하면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2022.4.20.에 (주)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2022.11.29.자 보도자료(“조각투자 시장의 규율을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가겠습니다.－(주)뮤직카우 제재면제”)에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금융위원회, 2022.4.28., 이하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동소유권을 부여하는

28)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체계의 구체적 정비방안은 아래와 같다.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체계 정비방안(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구분	내 용
발행	분산원장을 전자증권법상의 기존 계좌부 기재 또는 이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허용 토큰 증권에 대해 발행인의 직접 등록 허용(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요건 신설) 공모 규제를 완화해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발행인은 증권사 등을 통해 증권 발행 사모와 소액 공모 제도 개선(단, 토큰 증권은 공모 발행으로 간주)
유통	투자계약증권에 투자중개・매매업 인가, 거래소 허가, 유통 공시, 불공정 거래 등의 자본시장법의 유통 제도 적용 다자간 상대매매 플랫폼을 제도화해서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소규모 장외시장 형성(장외거래 중개 인가 단위의 신설) 한국거래소에 “디지털 증권시장”을 시범적으로 개설하여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이 대규모로 상장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 기존 증권 인프라를 활용

한우(1개사) 및 미술품(4개사)의 조각투자를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하였다[29].

이와 같은 구체적 사례에도 불구하고 현행 소득세법령은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해 규정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별도의 유권해석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합리적 법령해석을 바탕으로 투작계약증권의 이익의 분배 및 증권의 양도 단계의 과세 문제에 대해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이익의 분배와 관련해서는 유형별 포괄주의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개별적인 배당소득을 열거하면서 제9호에서 이들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했는데, 투자계약증권은 전술한 바와 같이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이기[30] 때문에 동항 제9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증권의 양도와 관련해서는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았기 때문에[31] 소

29) 동(同)보도자료는 이와 같은 판단을 통해 "소유권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투자자의 수익에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사업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증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증권성 판단원칙을 더욱 명확히 하였습니다."라고 언급하였다.

30) 자본시장법 제4조 제6항

31)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자산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구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부동산 및 이에 준하는 것(Ⅰ 그룹)	① 토지와 건물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지상권・전세권 및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③ 기타자산	영업권*1・이축권	
		특정시설물이용권	
		특정주식A	
		특정주식B	
유가증권(Ⅱ 그룹)	④ 주식 또는 출자지분	국내주식	주권상장주식 중 대주주 양도분과 장외양도분・비상장주식
		국외주식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내국법인 발행한 주식으로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파생상품(Ⅲ 그룹)	⑤ 일정한 파생상품		
신탁 수익권 (Ⅳ 그룹)	⑥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2		

*1 사업용 고정자산(①・②)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에 한정(그 외의 영업권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
*2 수익증권 및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은 제외

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32]. 단,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자가 사업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른 수익을 배분할 권리인 채권적 청구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상법의 익명조합 또는 합자조합(이하 "익명조합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데(정훈・김재경, 2023), 해당 익명조합 등이 <표 6>의 소득세법시행령의 집합투자기구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하에서 "적격집합투자기구" 및 "비적격집합투자기구")[33] 이익의 분배와 함께 증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배당소득("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34][35],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

〈표 6〉 집합투자기구의 요건(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각 호)

1.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기구")일[36] 것 2.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할 것[37] 3.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38]

32) 단, (주)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대한 2022.4.20.자 증선위의 판단에서 일부 위원(10인 중 3인)은 법률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경우 "청구권"이 "파생결합증권"에도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러한 의견에 의하면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및 증권의 실물양도의 거래방법을 통한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의2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3 제1항 제2호)이 배당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청구권의 양도를 통한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볼 여지는 있다.

33) 익명조합 등의 지분을 대가로 자금을 조성하고, 자본시장법의 집합투자업에 해당한다면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즉,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투자대상을 운용한 후에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조각투자는 집합투자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성희활, 2022). 또한, 집합투자업과 신탁업은 다른 금융투자업과 다르게 금융투자상품이 투자대상인 것이 요건이 아니므로(자본시장법 제6조 제1항 및 제4항)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면 발행한 증권도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는 것이다.

34)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취득한 증권으로서 특정 증권이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직접투자와의 과세형평을 고려해서 과세하지 않는다.

35)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각종 보수, 환매수수료, 판매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36) 다만, ① 자본시장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② 동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또는 ③ 동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동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동법 제9조 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7) 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38) 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구체적으로, <표 7>과 같이 구분되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환매・분배 및 양도를 통한 이익)은 <표 8>과 같이 적격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비적격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신탁・조합형은 소득의 원천에 따라 과세한다(도관과세). 또한, 집합투자기구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는 동업기업과세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데[39], 이를 적용하지 않는 사모투자전문회사는 회사형과 함께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되 귀속법인세 및 배당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한다[40]. 단,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일반적인 집합투자증권의 양도로 인한 이익과[41] 다르게 주가지수 단순추종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주식형 ETF") 및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의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서의 배당가능이익을 이전 사업연도에 모두 배당한 투자회사(이하 "전체이익 배당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비과세하고[42], 회사형 집합투자기구 중에서 주식・출자지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국내 설정・상장주식・소액주주・장내양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43]. 이상과 같이 조각투자의 권리가 집합투자에[44] 해당하면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데,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은 집합투자의 해당 여부에 대해 "제공하려는 서비스(사업)의 내용에 따라 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 등 인가・허가・등록이 필요할 수 있어 사업실질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것을 포함한다.

39) 다른 집합투자기구와 다르게 무한책임사원이 존재하고, 이들에 의한 자산운용이 가능해서 집단성과 간접성의 특징이 약한데,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40)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

41)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및 같은 법 제279조 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한다. (각 호 생략)

42)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의2 제5항 제3호 및 제4호

43)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의2 제5항 제1호

44) 자본시장법 제6조 제5항은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표 7〉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구분			자본시장법상 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업자가 운용)	신탁형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회사형	투자회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투자유한회사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투자합자회사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조합형	투자조합	민법에 따른 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투자익명조합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합자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특수한 집합투자기구 (운용주체 제한×)		사모투자전문회사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로서 지분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

〈표 8〉 현행 소득세법의 집합투자기구 거래이익의 과세방법

구 분			과세방법
환매·분배	적격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
	비적격집합투자기구	신탁·조합형	도관과세
		회사형	배당소득*
양도	주식형ETF·전체이익 배당 투자회사		비과세
	회사형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충족×	양도소득
		충족○	배당소득
	그 외		배당소득

* 귀속법인세 및 배당세액공제의 적용(이중과세의 조정)

현행 소득세법에 의한 이상의 과세방법과 별도로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금투세는 자본시장법 제4조 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 제87조의6 제1항 제3호)[45]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양도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해산

45) 해당 소득의 소득금액은 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하는데,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의 실지거래금액이고, 필요경비는 실지 취득가액에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 등을 포함한다(소득세법 제87조의10, 제87조의11 및 제87조의12).

(“환매등”)으로 발생한 이익”(제4호)을[46]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다.

투자계약증권과 구분해서 별도의 현행 법률상 발행 근거가 없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발행되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해서는 현행 소득세법령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서 전술한 바와 같이 수익증권은 “신탁업자의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 및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의 수익증권”과 함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을 포함하고(자본시장법 제4조 제5항), 회사형을 제외한(신탁・조합형인) 집합투자기구의 환매・분배로 인한 이익 중에서 <표 6>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비적격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소득의 원천에 따라 과세하기(도관과세) 때문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에 해당하면서 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서 <표 6>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이익의 분배 및 양도 단계에서 발생한 이익은 특정금전신탁과 같이 소득의 원천에 따라 과세하고, 증권의 양도로 인한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0667, 2020.5.27.)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라(즉,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따라)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부동산임대소득 등에 대한 신탁수익권을 증권화하여 유통하는 경우 신탁 부동산의 임대 및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과 함께 해당 신탁권 매매차익에 대해 모두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서 위와 다르게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해석은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이익의 분배와 관련해서는 투자계약증권과 같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의 유형별 포괄주의(“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와 유사한 성격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표 4>와 같이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투자계약증권과 구분되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해석이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주요 국가들의 과세제도의 분석

미국은 2014년의 국세청 고시(Notice 2014－21)를 통해 가상통화(virtual currency)에 대해 과세하는 반면 Howey test 등을 통한 투자계약의 증권성 판단 기준에도 불구하고 증권형 토큰에 대한 별도의 과세동향은 확인되지 않는다[47]. 이것은 가상통화의 과세가 자본자산으로 포섭되어

46) 해당 소득의 소득금액은 환매등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집합투자증권 취득시의 기준가격과 직전 결산분배 직후 기준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소득세법 제87조의14 제2항).

47) 미국은 2023년의 국세청 고시(Notice2023－27, Treatment of certain nonfungible tokens as collectibles)를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의 과세체계가 가상자산과 거의 차이가 없어서(즉, 증권형 및 다른 유형의[48] 토큰 간의 과세방식이 동일해서)[49] 양자의 구분이 유의미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정훈・김재경, 2023).

독일은 "가상자산과 여타 토큰의 소득세법상 처리에 대한 질의(Einzelfragen zur ertragsteuerrechtlichen Behandlung von virtuellen Währungen und von sonstigen Token)" 지침에서[50] 기본적으로 토큰이 양도성(transferability) 및 유통성(negotiability)을 가지고, 지급결제 수단이 아니며, 토큰에 부여된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증권화 여부와 관계없이 증권으로 본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관련 소득의 과세는 토큰의 형태에 따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제7호 또는 제2항 제1호・제7호를 적용하는데, 자본소득(Einkünfte aus Kapitalvermögen)에 대해 규정한 동조에서 제1항 및 제2항은 각각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것이고, 각 항의 제1호 및 제7호는 각각 통상적 이익참가권 및 불확실한 상황 등의 다른 자본자산에 대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증권형 토큰에 대해 배당과 유사한 배분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양도는 자본이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싱가포르는 금융법에서 디지털 토큰은 주식, 채권, 사업신탁의 수익권 및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및 집합투자증권의 수익권을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51]. 이러한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은 대개 기초자산에 대한 분할 소유권 또는 권리를 부여하고, 일정 수준의 통제 또는 경제적 권리를 수반하는데, 일반적으로 채무증권이나 형태로 발행되지만 집합투자증권과 같은 금융상품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형태도 있다. 따라서, 싱가포르에서 증권형 토큰은 기초한 권리와 의무에 따라 이자, 배당 및 그 밖의 분배를 결정해서 보유자에게 과세하고, 양도시 자본이득[52]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다[53].

프랑스는 금융시장감독원(Autorite des marches financiers, AMF)의 "토큰 증권(security token)에 대한 금융 규제 적용에 대한 분석 보고서"(2020)에서 토큰 증권은 블록체인에서 발행된 금

통해 NFT(Non－fungible token)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였다. 단, NFT는 분산원장을 사용하여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은 증권형 토큰과 유사하지만,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측면에서는 차이점이 있다.

48) 지급형 및 유틸리티형 등

49) 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frequently-asked-questions-on-virtual-currency-transactions,

50)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2022. Treatment of virtual currencies and other tokens under German Income Tax Law(Einzelfragen zur ertragsteuerrechtlichen Behandlung von virtuellen Wahrungen und von sonstigen Token).

51)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2020. A guide to digital token offering.

52) 싱가포르에서 자본이득은 과세되지 않는다(research.ibfd.org/#/doc?url＝/document/cta_sg_s_1.)

53)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2020. IRAS e－tax guide : Income tax treatment of digital tokens.

융상품의 성격을 가져서 EU 금융상품지침(MiFID II)이 정의하는 증권에 포함되어 규제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54]. 프랑스는 토큰 증권의 과세에 대한 별도의 법령이나 지침은 확인되지 않지만 증권거래에 대하여 자본이득으로 과세하고[55], 가상화폐의 거래에 대해서도 증권거래와 유사하게 자본이득으로 과세하기[56] 때문에 일반 증권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으로 보인다[57].

4.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과세실무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과세 실무는 이상의 분석과 다르게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투자계약증권의 양도시 비과세 적용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잠재적 과세위험을 반영했거나 <표 4>의 "수평적 공동성"의 개념을 적용하는 대신 기초자산에 대한 직접 소유와 동일하게 해석했을 가능성이 있다(정훈 · 김재경, 2023).

먼저, 뮤직카우는 2022.12.1.부터 개정되는 서비스이용약관에 따르는 투자백서에서[58]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으로[59]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된다고 기술하였다. 그러나, "세금 및 세금신고"에서는 매달 정산되는 저작권료와 저작권을 양도하여 획득하는 수입을[60] 모두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22%의 원천징수 이행을 안내하고 있는데, 이러한 안내는 뮤직카우에 투자하는 상품이 대부분 기타소득의 과세대상인 저작인접권이기[61]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뮤직카우의 조각투자에 대한 참여청구권인 투자계약증권이 아니라 기초자산인 저작인접권의 직접 소유를 전제로 한 과세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다른 조각투자들의 사례로, 미술품 등의 조각투자에 대한 4개 회사의[62] 플랫폼은 뮤직카우와

---

54) AMF. 2020. Etat Des Lieux Et Analyse Relative A L'Application De La Reglementation Financiere Aux Security Tokens.

55) www.impots.gouv.fr/particulier/lescessions-mobilieres.

56) kpmg.com/av/fr/avocats/eclairages/2022/04/fiscalite-des-crypto-actifs.html.

57) www.journaldeleconomie.fr/Fiscalite-des-tokens-ou-jetons-II_a10029.html.

58) 뮤직카우의 서비스이용약관은 2023.9.19.자로 최종적으로 개정되었는데, 투자백서는 추가적으로 개정되지 않았다.

59) 저작인접권의 등록은 (주)뮤직카우가 아니라 (주)뮤직카우의 저작권 소유 완전자회사인 (주)뮤직카우에셋이 한다.

60) 기타소득인 저작인접권의 양도대가에는 별도의 의제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

6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저작자 또는 실연자 · 음반제작자 · 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유사하게 투자계약증권의 발행 형태와 함께 기타소득의[63] 원천징수를 안내하는[64] 반면 한우에 투자하는 다른 1개의 회사는[65] 투자계약증권의 발행 형태와 함께 3.3%의 사업소득의 원천징수를 안내하고 있다. 단, 이들 회사들은 뮤직카우와 다르게 참여청구권이 아니라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지분을 직접 획득하는 방식의 사업구조를 안내하고 있다.

Ⅲ. 증권형 토큰의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앞선 장의 분석과 같이 증권형 토큰에 대한 현행 과세제도는 불명확한 근거법령과 자의적 과세실무로 인해 과도한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을 유발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과세제도의 정비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단,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을 허용하고 제도화하겠다는 "신탁업 혁신방안" 이후에 2년 이상의 기간 경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외적·한시적 규제샌드박스로 발행·유통을 허용하는 상태이고, 아직까지 동(同)증권의 실제 발행 사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동(同)증권의 발행을 통한 조각투자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은 별도로 분석하지 않았다.

---

62) (주)테사, (주)열매컴퍼니, (주)서울옥션블루 및 (주)투게더아트

63)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② 제1항 및 제19조 제1항 제2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은 기타소득으로 한다.
여기서 "서화·골동품"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 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양도가액이 6,000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또한,

> ① 서화, 골동품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 ㉡ 오리지널 판화, 인쇄화 및 석판화
> ㉢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
> ② 위 ①의 서화·골동품 외에 역사상·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골동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

* 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것은 없음.

64)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의제필요경비는 수입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서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는 80%이고, 그 외의 경우는 90%이다.

65) (주)스탁키퍼

1.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 여부에 따른 소득세법령의 정비

투자계약증권인 증권형 토큰으로 발행・유통되는 조각투자에 대한 과세방안으로는 우선 동(同)증권에 별도로 적용하는 과세방식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의 “유통 규율체계”는 비정형적 권리의 상장시장은 자본시장법상 허가받은 증권거래소인 한국거래소에 “디지털증권시장”을 시범개설하고, 다양한 비정형적 증권의 장외시장의 형성을 허용하는 계획을 제시했기 때문에 증권형 토큰인 투자계약증권도 상장시장과 장외시장으로 구분해서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주식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투자계약증권의 규율체계가 정비될 경우에는 투자계약증권의 이익의 분배를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주식・출자지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상장증권・소액주주・장내양도)을 만족하지 않는 증권의 양도를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과세체계의 정비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여기서 투자계약증권의 이익의 분배는 전술한 바와 같이 현행 소득세법의 유형별 포괄주의에 의해 배당소득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불확실한 법령해석의 한계로 인해 과세실무에서 다른 유형의 소득(기타소득 및 사업소득)으로 구분해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배당소득에 추가적으로 열거하는 명시적인 세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비해 투자계약증권의 양도는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투세에서도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기 때문에 금투세를 계획대로 시행할 경우에는 별도의 세법 개정은 필요하지 않지만, 금투세가 폐지・유예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익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추가적으로 열거하는 세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개선방안의 구체적 시행과 관련해서는 개별적 약정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기될 수 있다. 즉, 정형화된 증권의 발행을 통해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되는 채무증권 및 지분증권 등과 다르게 투자계약증권은 약정으로 인한 단순한 권리에 그쳐서 증권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사모 방식으로 모집・매출하는 경우에 해당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의 분쟁의 발생 가능성도 커지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물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증권의 종류를 판단하는 증선위에 개별적 판단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거래비용이 증가할 수 있거나 사모 방식에[66] 대해서는 판단에 대한 회신을 거절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자가 사업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른 수익을 배분할 권리인 채권적 청구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익명조합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데, 해당 익

66)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의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향”은 토큰 증권의 발행과 관련해서 전문투자자 사모 도입 및 소액공모 한도 확대 등과 같이 투자자 보호 관련 우려가 적은 증권을 발행할 때에는 공시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명조합 등이 적격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익의 분배와 함께 증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모두 배당소득(“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후자의 소득의 종류와 관련한 소득세법령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2025년 이후의 금투세 시행 여부에 따른 경우의 수를 구분해서 소득세법령을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즉,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양도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해산으로 발생한 이익”에서 “집합투자증권”에 괄호를 추가해서 “집합투자증권(자본시장법 제4조 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반대로 금투세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주식·출자지분과 동일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투자계약증권의 양도를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추가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선택적 적용

앞선 절의 정비방안과 별도로 공동사업에 대한 이익 분배의 약정을 바탕으로 하는 조각투자의 투자계약증권에 대해 소득세법의 공동사업 과세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단, 공동사업 과세는 투자자 중에 법인이 포함되면 적용할 수 없고, 투자자가 개인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도 이들이 모두 개인사업자라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67]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동사업이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대상 단체인[68] 동업기업(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67) 이와 함께 다수의 유권해석은 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익명조합에는 소득세법의 공동사업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

68)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대상 단체는 아래와 같다.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대상 단체〉

① 민법에 따른 조합 ②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및 익명조합
③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
④ 법무법인 및 법무조합, 특허법인, 노무법인, 법무사합동법인 및 전문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법무법인(유한)·회계법인·세무법인 및 관세법인
⑤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중 ⓐ ①−④의 단체와 유사한 단체 ⓑ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단체 ⓒ 설립된 국가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와 유사한 제도를 적용받는 외국단체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는데, 상법상 합자조합 및 익명조합이 동업기업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동사업의 운영 단체가 익명조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행 법령에서도 동(同)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익명조합의 본질적 요건은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해 출자하고 상대방은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고[69][70],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등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보며, 익명조합원은 대외적으로 제3자에 대해 권리나 의무가 없다[71]. 즉, 익명조합원은 익명조합 계약에 따른 채권자에 불과하고, 영업자에게 이익 분배를 청구할 수 있지만, 사업의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의 정의("특정 투자자가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에 따라 투자자가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공동사업의 사업자인 상대방은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익명조합 계약에 해당하는 것이다[72]. 이와 같이 익명조합의 구조와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은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동(同)증권이 익명조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투자계약증권이 상법상 합자조합에 해당할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합자조합은 출자가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유한책임조합원과 업무집행자인 무한책임조합원이 상호 출자해서[73]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74] 조합계약의[75] 관계이다[76]. 여

69) 상법 제78조

70) 손실 분배는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송옥렬, 2021).

71) 상법 제78조 내지 제80조

72) 인적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익명조합은 영업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그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는 주장(송옥렬(2021) 및 이상수(2022))이 있지만, 익명조합의 계약으로 다르게 정하거나 사전에 포괄적 동의로 인해 양도를 허용하였다고 보면 익명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정훈・김재경, 2023).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는 익명조합의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당사자들의 내부관계에 공동사업이 있는지, 조합원이 업무검사권 등을 가지고 조합의 업무에 관여하였는지 및 재산의 처분 또는 변경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1.11.24. 선고 2010도5014 판결).

73) 유한책임조합원은 합자회사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노무 및 신용 출자가 금지되지만, 조합계약에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출자가 가능하다고 한다(노태석, 2013).

74) 상법 제86조의2

75) 합자조합의 설립계약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 및 등기를 요하는 요식계약이다(상법 제86조의3 및 제86조의4).

76) 유한책임조합원도 조합계약에 의해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 유한책임조합원이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성명 등을 등기하도록 하고 있는다(상법 제86조의4 제1항 제1호). 이에 따르면 무한책임조합원의 경우에도 업무 집행을 하지 않는 명목상 업무집행조합원이 가능하고, 유한책임조합원도 업무집행권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석되는 것이다(양기진, 2012).

기서 무한책임조합원의 지분 양도를 제한하는 반면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은 조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 가능하고[77] 조합원의 합유로 보는[78] 출자 재산도 민법상 조합에 합자회사의 성격을 더한 합자조합에서는 내부 관계에서 사적 자치를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송옥렬, 2021) 투자조합을 합자조합으로 볼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상당한 비율의 조각투자의 투자계약증권이 상법상 합자조합 및 익명조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동업기업과세특례의 대체적 과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단, 전술한 현행 과세실무와 같이 투자자가 채권적 참여청구권이 아니라 대상자산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인 소유권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상법상 합자조합 및 익명조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동(同)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데, 이러한 과세상 제약은 조각투자의 운영사들이 채권적 청구권을 바탕으로 한 “투자계약증권의 발행”과 함께 이와 모순적인 대상자산의 직접 소유를 설명하는 사업구조의 미비점에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채권적 청구권을 바탕으로 투자의 약정을 정비하면서 “투자계약증권”의 명칭을 별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同)특례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정확하고 편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세실무를 정리하는 것과 함께 특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해서 증권형 토큰의 발행・유통을 통해 조각투자에 참가하는 투자자의 세금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기 위해 과세관청이 관련 근거법령을 개정하거나 유권해석을 생산함으로써 동(同)투자에 따른 잠재적 과세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Ⅳ. 결 론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장 규모에 비해 금투세의 폐지・유예 여부에 따라 장래에도 계속해서 상당한 과세상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증권형 토큰의 거래이익에 대해 자본시장법령 및 금융소득 과세제도의 세부적 검토와 함께 주요국의 과세 논의 등을 참고해서 합리적인 과세제도를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을 반영해서 본 연구는 토큰 증권으로 발행되는 개인투자자의 투자 약정에 대한 합리적 과세방안을 분석하였다.

77) 상법 제86조의7 제2항
78) 상법 제86조의8 제4항

증권형 토큰에 대한 현행 과세제도는 불명확한 근거법령과 자의적 과세실무로 인해 과도한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을 유발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과세제도의 정비방안으로는 먼저, 투자계약증권인 증권형 토큰에 별도로 적용하는 과세방식을 마련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투자계약증권의 이익의 분배는 소득세법의 유형별 포괄주의에 의해 배당소득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불확실한 법령해석의 한계로 인해 과세실무에서 다른 유형의 소득(기타소득 및 사업소득)으로 구분해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배당소득에 추가적으로 열거하는 명시적인 세법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비해 투자계약증권의 양도는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투세에서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기 때문에 금투세를 계획대로 시행할 경우에는 별도의 세법 개정은 필요하지 않지만, 금투세가 폐지·유예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익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추가적으로 열거하는 세법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자가 사업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른 수익을 배분할 권리인 채권적 청구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익명조합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데, 해당 익명조합 등이 적격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익의 분배와 함께 증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모두 배당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후자의 소득의 종류와 관련한 소득세법령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2025년 이후의 금투세 시행 여부에 따른 경우의 수를 구분해서 소득세법령을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이상의 정비방안과 별도로 공동사업에 대한 이익 분배의 약정을 바탕으로 하는 조각투자의 투자계약증권에 대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즉, 상당한 비율의 조각투자의 투자계약증권이 익명조합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동업기업과세특례의 대체적 과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정확하고 편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세실무를 정리하는 것과 함께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해서 증권형 토큰의 발행·유통을 통해 조각투자에 참가하는 투자자의 세금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기 위해 과세관청이 관련 근거법령을 개정하거나 유권해석을 생산함으로써 동(同)투자에 따른 잠재적 과세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조각투자”의 방식으로 다수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증권형 토근의 투자이익에 대한 세부적 법령·제도 개편과 관련한 본 연구의 분석은 정부가 지향하는 금융산업 발전을 통한 국민경제의 성장 및 금융투자에 대한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장래의 입법적·정책적 논의에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참고문헌

금융위원회. 2022.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금융위원회. 2022. 종합재산관리 및 자금조달기능 강화를 위한 신탁업 혁신 방안.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 2023.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남궁주현. 2022. 디지털 수익증권 발행신탁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소고. 신탁연구 제4권 제2호 : 1－25.

노태석. 2013. 합자조합에 대한 법적 연구. 비교사법 제20권 제3호 : 871－900.

성희활. 2022. 조각투자의 증권성에 대한 연구. 경제법연구 제21권 제3호 : 31－58.

송옥렬. 2021. 상법강의. 홍문사.

양기진. 2012. 개정상법상의 합자조합에 관한 연구－합자조합의 법적 실체성 및 조합원의 지위에 관하여. 홍익법학 제13권 제1호 : 633－661.

이상수. 2022. 상법기본강의. 피앤씨미디어.

재정경제부. 200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설명자료.

정훈・김재경. 2023. 토큰 증권으로 발행되는 투자계약증권의 과세방안－개인투자자 과세를 중심으로. 조세법연구 제29권 제1호 : 391－451.

Autorite des marches financiers. 2020. Etat Des Lieux Et Analyse Relative A L'Application De La Reglementation Financiere Aux Security Tokens.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2022. Treatment of virtual currencies and other tokens under German Income Tax Law(Einzelfragen zur ertragsteuerrechtlichen Behandlung von virtuellen Wahrungen und von sonstigen Token).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2020. IRAS e－tax guide : Income tax treatment of digital token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2020. A guide to digital token offering.

국가법령정보. www.law.go.kr.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taxlaw.nts.go.kr.

규제정보포털. www.better.go.kr.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glaw.scourt.go.kr.

삼일인포마인. www.samili.com.

research.ibfd.org.

www.irs.go.kr.

www.journaldeleconomie.fr.

www.kpmg.com.

www.impots.gouv.fr.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및 기업업무추진비의 매입세액불공제 개선방안

서 정 우 · 서 정 화
(강남대학교) (협성대학교)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및 기업업무추진비의 매입세액불공제 개선방안

서정우 (강남대학교 국제대학원 조교수)
서정화 (협성대학교 세무회계학과 조교수)

목차

I. 서론

II.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불공제 제도의 일반론

III.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기업업무추진비 매입세액불공제 제도의 문제점

IV. 주요국의 입법례를 통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개선방안

V. 결론

I. 서론

03

서론

1. 연구목적

- 과세사업자가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 그 부담이 다음 단계의 사업자나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이로 인해 부가가치의 흐름에 혼란이 발생하여 가격구조의 변화와 누적과세가 발생함.
- 그 결과, 부가가치세의 핵심시스템이 붕괴되어 일반매상세와 차이가 없게 됨.
- 본 연구는 「부가가치세법」 상 현행 매입세액불공제 규정 중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및 기업업무추진비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04

서론

2.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 본 연구는 문제가 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및 기업업무추진비 매입세액불공제 규정에 대해 대법원 판례와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주요국의 입법례를 분석함.
- 이를 바탕으로 매입세액불공제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05

II.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불공제 제도의 일반론

06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불공제 제도의 일반론

1. 매입세액공제 제도

매입세액공제의 요건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먼저 제1호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다루고 있음.
- 제2호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규정함.

07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불공제 제도의 일반론

매입세액공제의 요건

이를 정리하면:

① 사업자가,
② 자기의 사업을 위해,
③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④ 재화 또는 용역, 그리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임.

08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불공제 제도의 일반론

2. 매입세액불공제 제도

가. 매입세액불공제의 요건

-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만, 이를 위해서는 거래상대방 또는 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등 거래증빙서류로 입증되어야 함.

- 그러나 부가가치세의 이론적 이유나 조세정책상의 이유로 인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함.

09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불공제 제도의 일반론

나. 매입세액불공제의 현황 및 사유

- <표1>: 년도별 매입세액불공제 현황

<표1> 년도별 매입세액불공제 현황

(단위: 건,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건수	945,989	1,021,358	1,118,647	1,193,866	1,268,231
금액	192,980,577	211,019,080	223,565,343	246,678,630	259,495,239
세액	19,168,457	20,683,411	21,933,362	23,856,797	25,488,519

자료: 국세청, 「2023 국세통계연보(II)」, p.122.
주) 동 수치는 각 년도 제1기, 제2기의 합계임

- <표1>에 따르면, 2022년 매입세액불공제액은 1,268,231건, 25조 4,885억 1천9백만원으로, 매입세액공제액 8,819,473건, 440조 161억 1천9백만원 대비 건수 14.37%, 금액 5.79%에 달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010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불공제 제도의 일반론

- 한편, <표2>에서 제시된 8가지 사유는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됨.

<표2> 매입세액불공제 사유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및 부실기재된 매입세액
2.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부실기재 매입세액
3.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지출 관련 매입세액
4.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 임차와 유지 관련 매입세액
5.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 관련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포함)
7. 토지의 조성 등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8. 사업자 등록 전의 매입세액

011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불공제 제도의 일반론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 임차와 유지 관련 매입세액

- "비영업용소형승용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자동차와 캠핑용 자동차, 그리고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경차 제외), 이륜자동차, 전기승용자동차를 의미함.

-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및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의 경우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로 보지 않음.

- 이러한 경우들은 사업 관련 차량으로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012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불공제 제도의 일반론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 관련 매입세액

- “기업업무추진비”는 접대, 교제, 사례 등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된 자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출한 금액을 의미함.
- 이러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013

III.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기업업무추진비 매입세액불공제 제도의 문제점

014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기업업무추진비 매입세액불공제 제도의 문제점

1.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대법원 판례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매입세액불공제 규정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했는지에 대해 검토했다. 대법원은 2016년 3월 24일 대법원-2014-두-46430 판결에서, 영업용 소형승용차는 실제로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또한, 해당 법률조항이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 비례평등 원칙,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업무용으로 취득한 소형승용자동차가 사업용과 개인용으로 혼용되더라도, 각 용도에 사용된 비율을 측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한다. 또한, 사용 용도를 하나하나 따져서 과세하는 것은 과세기술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세무 행정의 한정된 자원을 고려할 때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설명한다.

015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기업업무추진비 매입세액불공제 제도의 문제점

대법원 판례

- 이와 함께, 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대해서만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다른 소형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법률조항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사업자는 비교 가능한 집단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동일한 차량이라도 거래대상으로서의 자동차가 매입될 때와 매각될 때 조세법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가지지 않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 부가가치세를 달리 취급한다고 해서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016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기업업무추진비 매입세액불공제 제도의 문제점

문제점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비영업용소형승용차 매입세액불공제 규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으며,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 기준은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다. 이에 따라 매입세액불공제 규정은 이러한 기준과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한 승용차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현재는 과세기술상 사업과 사적 사용을 구분하기 어려워 일괄적으로 불공제하고 있어, 이는 「부가가치세법」의 이론과 일치하지 않는다.

017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기업업무추진비 매입세액불공제 제도의 문제점

문제점

- 2016년부터 개정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 금액을 손금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그 외의 비용은 불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은 여전히 업무 관련 매입세액도 일률적으로 불공제하고 있어, 승용차를 매각할 때 중복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누적효과가 발생해 전단계세액공제법의 원리를 훼손하고, 세법간 상이한 규정으로 인해 납세자의 혼란과 조세저항을 유발할 수 있다.

018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기업업무추진비 매입세액불공제 제도의 문제점

2.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가. 의의

-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취지는 사치성 향락업종에서 접대행위가 주로 이루어짐으로써 과소비를 조장하고 비생산적이며, 또한 불필요한 접대를 억제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증대되어서 기업 경쟁력의 향상과 고용창출의 증대되는 등의 정책적 목적이 반영된다.

019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기업업무추진비 매입세액불공제 제도의 문제점

2.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나. 문제점

- 기업업무추진비 등은 생산과는 직접 관련된 비용은 아니지만 기업활동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으로 부가가치의 창출에 기여하는 것이 틀림없음.
-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을 사업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 지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있음.
- 이는 「부가가치세법」의 매입세액공제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업무와 관련된 비용의 매입세액공제를 전혀 인정하지 않게 되면 자기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액 이상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결과가 되어 매우 불합리한 것임.

020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기업업무추진비 매입세액불공제 제도의 문제점

2.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나. 문제점

- 그리고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는 바로 필요경비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간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고 있음.

- 결국, 기업업무추진비의 경우 기업업무추진비라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이중으로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음.

021

Ⅳ. 주요국의 입법례를 통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개선방안

022

주요국의 입법례를 통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개선방안

1.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개선방안

가. 주요국의 입법례

1) 영국

<표3>: 영국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여부

<표3>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제 가능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 매입세액
- 표준세율, 감면세율, 영세율에 의하여 거래된 재화 혹은 서비스 - 영국에서 생산됐지만 타 국가에 수출되어 영국 부가가치세의 범위를 벗어나는 상품 - 영국 이외의 국가에서 생산된 것으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영국에서 생산된 해외공급으로 구분되는 상품 - EU 외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제공되거나 EU 외 국가로의 재화 수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공되는 금융 및 보험서비스	- 구매 혹은 지출하였으나 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재화 및 서비스 - 배달료, 자동차 관련용품 등을 포함하는 자동차 사용료 - 건축업자가 영세율 혹은 감면세율을 적용하여 거래한 빌딩의 일부 시설물 - 접대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종류의 서비스 재회 및 서비스 제공 - 본인 혹은 미공개 대리인의 여행시설 구입 후 재판매 - 중고상품의 구매가격과 판매가격이 다른 경우(판매가격이 높은 경우)의 거래 - 사업에 귀속된 자산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 VAT guide (http://www.gov.uk)

023

주요국의 입법례를 통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개선방안

1) 영국

- 영국은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모두 환급되나, 승용차의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환급받을 수 없음.

- 다만,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려고 구입한 경우와,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택시업, 운전학원 등의 사업과 관련된 목적에 주로 사용할 의도로 구입한 경우에는 전액 환급이 가능함.

024

주요국의 입법례를 통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개선방안

1) 영국

- 영국에서는 다음에 열거된 운송수단 등은 소형승용차로 보지 않고 있다.

① 1인 혹은 운전자를 포함한 12인이 탑승할 수 있는 운송수단
② 차량의 중량이 3톤 이상인 경우
③ 화물을 1톤 이상 적재할 수 있는 운송수단
④ 카라반, 구급차, 죄수호송차
⑤ 아이스크림 밴, 모바일 매장, 연구차와 같은 특수한 목적으로 제작된 운송수단

025

주요국의 입법례를 통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개선방안

1) 영국

- 한편, 차량을 임차하는 경우에 임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50%를 환급하지만, 임차차량이 사업용으로만 사용된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임차한 차량을 택시업, 운전학원업 등의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를 환급받을 수 있다.

026

주요국의 입법례를 통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개선방안

1) 영국

- 차량의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경우에도 구입과 임차와 관련된 환급대상 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며, 구입한 차량을 사업목적과 사업 이외의 목적에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① 매입세액 전부를 환급신청하지 않고 차량의 처분시 매출세액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
② 매입세액 중 사업에 사용된 부분만 환급신청을 하고 차량의 처분시 사업에 사용한 분에 대한 매출세액만 신고하는 방법
③ 매입세액 전체를 환급신청하고 사업 이외의 사용분에 대한 매출세액과 재화의 처분시 그 전체가액에 대한 매출세액을 신고하는 방법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매입세액의 처리방법을 변경할 수는 없다.

027

주요국의 입법례를 통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개선방안

2) 프랑스

- 프랑스는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업목적과 사적이용에 겸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구입가액 또는 리스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공제되지 않는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로는

① 신차로 재판매될 차량
② 임대할 차량
③ 회사가 직원을 근무지로 운송하는데 사용되는 좌석이 8석 이상 (운전석 제외)인 차량
④ 운전교습용으로만 사용되는 차량
⑤ 트럭, 픽업트럭, 밴 등이 있다.

028

주요국의 입법례를 통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개선방안

2) 프랑스

-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차량의 스페어 부품과 액세서리, 그리고 정비, 수리 등의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며, 차량용 카폰은 액세서리로 간주되지 아니하고 사업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주차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및 디젤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80%와 같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법인소유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지만 구입시 부가가치를 실제로 환급받지 않았다면 과세 대상인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029

주요국의 입법례를 통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개선방안

3) 독일

- 매입세액 공제를 위하여는 기본적 전제조건인 "사업 연관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 "사업 연관성"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되거나, 수입 또는 역내 취득한 재화를 본인의 사업에 10% 미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위하여 이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사업자 또는 직원이 회사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최소 10% 이상을 업무에 사용하는 자동차의 취득, 운영, 임대관련 매입세액과 유지관련 매입세액은 일단 전액 공제하고, 추후 사적 사용분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030

주요국의 입법례를 통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개선방안

3) 독일

- 사적 사용분의 측정은 '1% 원칙에 의한 추정방법'과 '주행일지에 의한 방법'인 실제비용지출을 측정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 1% 원칙에 의한 추정방법은 사업용 사용 비율이 50%를 초과할 때 적용할 수 있으며, 매월 동종 신종 차량의 시세조건표상 가액, 종업원 자택과 사무실까지의 편도 통근거리 등을 고려하여 사적인 사용분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록하지 않으므로 납세협력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실제 사적 사용분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031

주요국의 입법례를 통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개선방안

3) 독일

- 반면에 주행일지에 의한 실제비용을 측정하는 방법은 장부에 계산된 총 차량 관련 비용을 차량 운행일지에 기록된 전체 연간 운행거리에 사적 운행거리의 비율을 곱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 주행일지에 기록된 실제 사적 사용분에 기초하여 측정되므로 사적 사용분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나, 주행일지의 기록 등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032

주요국의 입법례를 통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개선방안

4) 호주

- 호주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제가능한 매입은 아래의 4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이것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 수입에도 적용된다.

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목적(creditable perpose)"으로 무엇인가를 "취득(acquire)"하여야 하며,
② 사업자에 대한 어떤 것의 공급은 '과세대상 공급(taxable supply)'이어야 하며,
③ 사업자는 그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제공하거나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어야 하며,
④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등록의무가 있어야 한다.

033

주요국의 입법례를 통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개선방안

4) 호주

- 호주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공제가 가능하지만, 승용차의 GST(호주의 물품용역소비세)와 고급승용차세를 제외한 시장가치가 일정기준인 즉, 2019~2020년 현재 연료 효율적 차량은 75,526 호주달러(한화 약 6,797만원), 그 외 차량은 67,525 호주달러(한화 약 6,077만원)를 초과하면 업무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그 초과분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034

주요국의 입법례를 통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개선방안

4) 호주

- 2019~2020년 기준 시장가치 일정기준은 57,581 호주달러(한화 약 5,182만원)이며, 따라서 매입세액의 최대한도는 57,581 호주달러(한화 약 5,182만원)의 11분의 1인 5,234 호주달러(한화 약 471만원)이 된다.

- 한편, 시장가치 일정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승용차는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와 9인승 이하의 승객 탑승용 자동차이다.

035

주요국의 입법례를 통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개선방안

5) 캐나다

- 캐나다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상업활동에 사용한 비율 <표4>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한다.

<표4> 캐나다의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대한 매입세액

상업활동에 사용한 비율	법인과 공공기관	개인기업	금융기관
90% 이상	100%	100%	실제 사용비율
50% 초과 90% 미만	100%	자본공제율 × 비율	실제 사용비율
10% 초과 50% 미만	불공제	자본공제율 × 비율	실제 사용비율
10% 이하	불공제	불공제	실제 사용비율

036

주요국의 입법례를 통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개선방안

5) 캐나다

- 이 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는 「소득세법」에 따른 자동차(automobile)를 의미하며, 자동차는 운전자를 포함한 8인 이하로, 구급차, 경찰차, 의료차, 장례차, 픽업트럭, 밴 등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또한 캐나다는 법인과 공공기관이 구입하는 여객운송승용차의 가격 또는 대여하는 비용이 일정금액 이상인 즉, 여객운송승용차의 구입가격이 3만캐나다달러(한화 약 2,940만원) 이상이거나 대여 비용이 800캐나다달러(한화 약 78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037

주요국의 입법례를 통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개선방안

5) 캐나다

- 한편 차량한도액 심사대상이 원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는 전액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된다.

① 연료비 · 수리비 등의 유지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업무 사용을 전제로 함)
② 임차(lease or hire)와 관련된 매입세액 (업무 사용을 전제로 함)
③ 긴급구조용 차량, 장애인 특화용으로 제작된 차량, 비상업용 화물 차량과 관련된 매입세액
④ 중고차 매매업이나 택시사업 등 영업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038

주요국의 입법례를 통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개선방안

6) 주요국 입법례의 시사점

- 주요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전단계세액공제법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규정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 첫째,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독일의 경우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 전액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되, 부칙에서 불공제하는 사유를 두고 있다.
- 반면, 호주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이라면 전액 공제하지만 자동차의 가격 제한을 두어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자동차의 구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039

주요국의 입법례를 통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개선방안

6) 주요국 입법례의 시사점

- 영국과 프랑스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서조항에 의해 부분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 영국의 경우가 우리나라가 현재 채택하고 있는 방법과 유사하지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영업용의 범위가 우리나라 보다 더 넓고, 구입한 차량을 사업목적과 이외의 목적에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 계산과 신고방법을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리나라보다는 더욱 더 정교한 과세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둘째, 사업을 위하여 구입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취득, 임차, 유지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사적사용이 발생하는 경우의 과세문제는 독일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040

주요국의 입법례를 통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개선방안

6) 주요국 입법례의 시사점

- 이들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차량운행기록부와 유사한 주행일지 또는 차량운행일지의 기록에 의해 업무 사용분과 사적 사용분을 구분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 더욱이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고려하여 주행일지에 의한 실제비용측정법 또는 차량운행일지에 의한 실제차량비용법 대신 간편한 1% 원칙에 의한 추정법이나 기준거리비율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제도의 개선방안을 연구시에는 각국의 제도로부터 도출된 이러한 시사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041

주요국의 입법례를 통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개선방안

나. 개선방안

1)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임차에 관한 매입세액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임차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매입세액공제를 제안한다.
- 먼저 비영업용소형승용차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사적사용비율에 따라 만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에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차감한다.

042

주요국의 입법례를 통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개선방안

<표5>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납부세액 재계산 예시

매입세액 X (1-체감율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X 증감된 사적사용 비율

- 증감된 사적사용 비율은 업무용승용차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사용한다.

043

주요국의 입법례를 통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개선방안

나. 개선방안

2)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

- 만일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적사용비율은 100%로 해서, 현재처럼 매입세액 전액을 불공제한다

- 이는 사업자에게 운행일지 작성이라는 납세협력의무를 부담하지만, 정확한 운행일지 작성을 유도하여 실질과세 및 수평적공평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044

주요국의 입법례를 통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개선방안

나. 개선방안

3) 법률 개정안

<표6>「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규정 개정안

개정 전	개정 후
5.「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5.「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사적사용비율에 해당되는 매입세액 <개정>

045

주요국의 입법례를 통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개선방안

나. 개선방안

3) 법률 개정안

<표7>「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규정 개정안

개정 전	개정 후
법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① 법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 구입 및 임차에 관한 매입세액 매입세액 X (1-25%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X 증감된 사적사용 비율 가) 운행일지를 작성한 경우: 사적으로 사용한 운행거리를 총운행거리로 나눈 비율 나)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100% 다) 전기보다 사적사용비율이 감소한 경우: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확정신고 시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본다. 2.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 X 사적사용 비율 가) 운행일지를 작성한 경우: 사적으로 사용한 운행거리를 총운행거리로 나눈 비율 나)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00%

046

주요국의 입법례를 통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개선방안

2.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개선방안

가. 주요국의 입법례

1) 영국

- 영국은 사업상의 거래 및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접대를 목적으로 하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여기에서의 '접대'는 직원이 아닌 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접대를 대상으로 한다.
- 그러나 정상적인 사업수행 과정에서 부담하게 되는 호텔숙박비, 식음료의 제공, 영화 및 콘서트 티켓, 스포츠 행사 및 시설의 입장, 클럽 및 나이트클럽의 입장, 오락을 위하여 항공기 및 요트 등과 같은 자산 사용, 여비 등의 소요경비는 접대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때의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환급대상이 된다.
- 그 외의 경우에는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047

주요국의 입법례를 통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개선방안

2) 독일

- 독일은 접대비의 경우 「소득세법」 제4조 제5항 제2호을 준용하여 거래의 목적을 입증하면 거래상대방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접대비의 70%까지는 공제가능하다.
-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접대비용 전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
- 한편,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접대비는 비용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데, "적정성"에 대한 구체적 판정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048

주요국의 입법례를 통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개선방안

2) 독일

- "적정한" 접대비가 아니라고 할 때에는 지급한 비용과 급부와의 관계에는 "사업가적 동기"가 결여되어 매입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 따라서 접대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반드시 접대장소, 접대일시, 참가자, 행사내용, 비용내용 등을 기록하여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한편 종업원이나 정규 대리점을 제외한 거래 상대방에 대한 사업용 선물(business gifts)에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용 선물금액이 거래상대방 1명당 1년 기준으로 35유로(한화 약 51,800원)만 공제 되며, 그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전액불공제 한다.

049

주요국의 입법례를 통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개선방안

3) 프랑스

- 프랑스는 사적인 목적으로 지출한, 예를 들면 숙박비, 음식비, 접대비 및 극장요금 등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접대비라 하여도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행한 것은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고 있다.
- 이를 요약하면 <표8>과 같다.

<표8>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 요약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중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예외 (매입세액 공제 대상)
기업의 관리자(dirigeant)나 사용인의 이익을 위한 주택이나 숙소의 비용	건설현장 노동자, 공사건설 감독이나 안전원 또는 경비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여객운송 또는 다목적 차량 및 이와 관련된 부품	관광객 운송용 차량, 작업장으로 작업인부를 운송하는 9인 좌석 이상의 차량, 운전학원의 자동차, 유틸리티(utility)용 자동차
매입세액 공제가 불공제되는 재화에 부수하는 용역	-
무상으로 제공하는 재화	69유로(세금 포함, 한화 102,120원) 이하의 선물, 107유로(세금 포함, 한화 158,360원) 이하의 광고선전용 디스플레이어, 판매금지가 쓰여진 견본품 및 표본품, 광고선전품
휘발유 연료, 디젤연료, 최종소비자가 사용하는 오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는 차량에 대한 디젤연료와 휘발유 연료, 부탄가스, GPL, GNV, 관광용 차량의 연료(단, 80%까지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는 차량의 휘발유 및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은 차량의 연료(단, 20%까지만)

자료: 안창남·손승연, 「전게서」, p.59.

050

주요국의 입법례를 통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개선방안

4) 호주

- 호주는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해당 비용이 「소득세법」 상으로 비용 인정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그 공제 여부가 달라진다. 즉, 「소득세법」 상 접대비 등의 지출이 비용으로 인정되면 매입세액공제가 되며,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상 접대비는 일반적으로 접대가 제공된 이유에 관계없이 비용 공제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여기에서의 '접대 활동(entertainment)'이란 사업 논의나 처리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음·식료 및 레크리에이션의 제공, 이와 동반되는 숙박비 및 여행비의 지원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면 업무를 겸한 점심식사(business lunches)나 사교파티(social functions)는 접대 활동에 포함되나, 출장 중 제공되는 식사(meals on buisness travel overnight)는 접대 활동에 포함되지 않는다.

051

주요국의 입법례를 통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개선방안

5) 캐나다

- 캐나다는 상업활동과 관련한 합리적인 식사 및 접대비용에 대하여 <표9>의 비율로 매입세액을 청구할 수 있다.

- 여기에서의 접대비는 스포츠 행사나 연회의 입장권과 티켓, 사례금, 객실 사용료 등을 포함하여 사업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의 50%를 공제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과 자선단체를 대상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할 수 있다.

<표9> 캐나다의 식대 및 접대(entertainment)에 대한 매입세액

(단위 : %)

일반 사업자	공공기관과 자선단체를 대상으로 지출한 경우	장거리 트럭 운전자를 위한 식사 비용
70	100	80

052

주요국의 입법례를 통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개선방안

5) 캐나다

- 한편 장거리 트럭을 운전하는 기사의 식사비용은 사업 목적의 식대 및 접대비보다 높은 80%의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장거리 트럭은 화물을 운반하기 위해 설계되고 총 중량이 1만 1,788kg 이상인 트럭이나 트랙터이어야 한다.

- 동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적격 이동기간은 정기적으로 업무를 보고하는 고용주의 시설로부터 최소 160km 떨어진 지방 혹은 수도권에 운송할 목적으로 최소 24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말한다.

053

주요국의 입법례를 통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개선방안

6) 일본

- 일본에서 공제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는 "개별대응방식"과 "일괄비례배분방식"이라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 이들 방식을 적용하는 데 있어 이용되고 있는 것이 "과세매출비율"이다. "과세 매출비율"이라 함은, 과세기간 중 과세매출액(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제외)을 과세기간 중 총매출액(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제외)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간단히 식으로 나타내면 <표10>과 같다.

<표10> 과세매출비율 산식

과세매출비율 = 과세기간 중 과세매출액(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제외) / 과세기간 중 총매출액(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제외)

054

주요국의 입법례를 통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개선방안

6) 일본

- 원칙적으로 과세매입 관련 소비세액은 그 전액이 매입세액공제의 대상이 된다.
- 그러나 위의 산식에서 계산한 과세매출비율이 95% 미만인 경우 또는 과세기간의 과세매출액이 5억엔(한화 약 4,6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매출에 대응하는 부분의 매입세액만이 공제된다.

055

주요국의 입법례를 통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개선방안

7) 시사점

- 접대비의 경우에 있어 독일의 경우는 70%가 공제되고 있으며, 프랑스는 경영인과 종업원의 개인적인 욕망이나 필요에 의한 지출을 제외한 매입세액은 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영국은 불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따라서 영국 이외에는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영국도 일부는 공제되고 있어서 우리나라보다는 그 공제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다.

056

주요국의 입법례를 통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개선방안

나. 법률 개정안

- 주요국의 입법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주요국은 우리나라보다 넓은 범위로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고 있다.
- 그리고 최근에는 기업의 접대문화가 공연관람권 등과 같은 문화접대비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등 건전한 지출로 옮겨가고 있다.
- 또한 기업업무추진비는 기업의 홍보 또는 경영성과 증대에 기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치성 향락업종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까지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부적절한 것이다.
- 기업업무추진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 중 사치성 향락업종 등 사회통념 상 인정되기 어려운 것에 한하여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외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해주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057

주요국의 입법례를 통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개선방안

나. 법률 개정안

- 법조문이 개정안으로 변경된다면 사치성 향락 업종 등 사회통념상 건전하지 못한 기업의 접대행위는 자연스럽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문화접대 등 건전하고 사회통념상 건전한 접대행위로 유인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일정한 기업업무추진비의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만큼 개정 전보다 누적효과가 줄어들어서 최종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도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표1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 규정 개정안

개정 전	개정 후
6.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중 사치성 향락 업종 등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한 매입세액 <개정>

058

V. 결론

059

결론

- 비영업용소형승용차 및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은 부가가치세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은 제도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첫째, 비영업용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은 먼저 구입 및 임차에 관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하되, 운행일지에 따라 사적사용한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일정한 공식에 따라서 불공제하며, 과세기간마다 정산한다.
-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운행일지에 따라 사적사용한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한다. 만약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구입 및 임차에 따른 매입세액과 마찬가지로 전액 불공제한다.
- 이는 운행일지 작성을 통해 정확한 업무사용 비율을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과세함으로써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협력을 유도하고 실질과세 및 수평적 공평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060

결론

- 둘째,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전액 공제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치성 향락업종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한다.
- 이를 통해 사업자의 건전한 접대문화를 유도하고자 함과 동시에 일반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함으로써 누적효과를 완화할 수 있다.
- 위와 같이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재화와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최대한 공제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부가가치세가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이라는 정의에 부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또한 매입한 사업자가 상거래한 상대방의 원인으로 인하여 매입세액불공제의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고 사업할 수 있도록 법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061

감사합니다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한
합산분할과세 시나리오 분석

이 예 지 · 조 형 태 · 차 상 권
(서울시립대학교) (홍익대학교) (칼빈대학교)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한 합산분할과세 시나리오 분석

이예지* · 조형태** · 차상권***

〈요 약〉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사회적으로 오랜기간 동안 심각한 문제로 자리잡고 있고,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해결 기미가 없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자녀 관련 세제 지원이 OECD 주요 회원국 중 하위권이라는 비판이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조세 지원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 중 하나가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원칙인 개인단위 과세제도를 재검토하고 독일, 프랑스와 같은 소비단위의 합산분할과세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이러한 합산분할과세를 도입할 경우 각 세대의 소득세 부담세액 변화가 산출세액 수준에서 어느 정도될 것인지를 재정패널 미시자료를 토대로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누어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현행 개인단위과세제도 하에서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산출세액을 비교할 때, 홑벌이 가구가 부담하는 평균 산출세액이 맞벌이 가구의 평균 산출세액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독일 등과 같은 부부단위 과세제도를 도입할 경우 맞벌이 가구보다 홑벌이 가구의 산출세액의 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소득 구간 뿐만 아니라 저소득 구간에서도 산출세액의 감소가 나타났다. 프랑스와 같은 가족단위과세를 적용할 경우에도 홑벌이 가구에 대한 산출세액 감소효과가 컸고, 이러한 양상은 맞벌이 가구에 비해 넓은 소득 구간에서 산출세액 감소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단위과세 적용시 부양 자녀의 수가 클수록 감소효과가 두드러졌는데, 특히 부양자녀가 3명 이상일수록 감소효과가 크게 나타나 가족계수의 증분 정도가 중요함을 보였으며, 고소득자에 대한 산출세액 감소 효과가 홑벌이 가구에서 크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소득세 과세단위를 개인단위에서 소비단위로 변경할 경우 자녀 양육에 따른 소비부담을 반영하여 가구 전체의 소득세부담이 산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합산분할과세 논의시 조세의 혼인 중립성 훼손, 과세형평성, 세수감소, 납세협력비용 등의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저출산 문제 대응 목적으로 조세 측면에서 과세단위를 수정할 경우 부담세액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를 사전적으로 분석하여 정책 입안자들에게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공헌점이 있다. 다만, 분석 수준이 산출세액의 감소 정도까지만 분석되었고, 현행 소득공제가 그대로 적용됨을 가정하였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다.

〈주제어〉 저출산, 개인단위과세, 합산분할과세, 부부단위과세, 가족단위과세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 yeji0320@uos.ac.k
**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부교수, cht1212@hongik.ac.kr
*** 칼빈대학교 글로벌문화경영학과 조교수, sgcha01@hanmail.net

Ⅰ. 서 론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사회적으로 오랜기간 동안 심각한 문제로 자리잡고 있고,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해결 기미가 없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하여 정부 차원에서 다방면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4분기 합계 출산율은 0.6명대로 떨어졌고, 주요 외신들도 한국이 겪고 있는 이 문제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1)]

그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각종 수당 지급 등 정부의 재정 투입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세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각종 문헌에서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세제 측면에서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조세 감면폭이 OECD 주요 회원국 중에 최하위권이라는 연구[2)]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자녀 관련 공제제도가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으므로 재정지원정책 등과의 통합적 고려를 통해 조세 지원 정책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3)] 실제로 입법부에서도 기본공제대상 자녀 수에 따라 소득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법률안[4)]을 내놓는 등 조세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조세제도들에 대한 재검토가 논의되고 있으며 이 중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기저(基底)에 있는 개인단위 과세제도를 다시 살펴보고, 과세단위를 부부 또는 가족단위인 소비단위주의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5)]이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단위는 개인단위주의이며, 한때 자산소득(이자, 배당, 부동산임대소득)에 한하여 부부단위 합산비분할주의가 적용된 바가 있으나 위헌 판결로 인해 현재는 공동사업합산과세를 제외하면 개인단위 과세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생활의 기본단위가 부부 또는 가족단위라는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개인단위 소득세 과세제도는 동일한 소득을 가진 가구 단위 간에 세부담이 동일해야 한다는 가구

---

1) 연합뉴스 (2024.02.29.) '세계 최저' 한국 출산율… 일본 등 해외매체들 집중조명 (https://m.yonhapnewstv.co.kr/news/MYH20240229018400032)

2) 한국경제신문(2023. 7. 25.) "獨선 2자녀 땐 소득세 15%P 깎아줘…'출산율 꼴찌' 韓은 3%P 감면", OECD(2023)에서 2022년 기준으로 독신가구와 비교할 때 두 자녀를 둔 외벌이 가구의 세부담률은 OECD 평균 8.9%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폴란드가 21.7%로 가장 크게 감소하였고 독일과 미국은 각각 15%, 10.6% 낮아졌으나, 우리나라 감소 폭은 3.8%인 것으로 나타났다.(OECD(2023), p.30)

3) 국회예산정책처 NABO 재정추계&세제 이슈, "출산 혼인 양육 관련 조세지원 현황 및 입법 동향" (2023.08)

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1 (발의연월일 2024.06.07.)

5) 이세진・이예지(2023)

간의 공평성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오종현 등, 2024). 이러한 이유로, 자녀 양육에 따른 소비부담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소득세부담 과세체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소득세 과세단위를 개인단위에서 소비단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소비단위는 소득을 소비하는 부부 또는 가족 등을 과세단위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다(오종현 등, 2024).[6] 이와 관련하여 미국과 독일은 납세의무자가 개인단위와 부부단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과세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프랑스는 가족단위 소득세 과세체계를 이루고 있다. 미국과 독일은 소득세 과세단위를 납세의무자가 개인단위와 부부단위 중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누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산정시 부부단위소득의 분할 여부에 따라 그 방식에 차이가 존재한다. 이론적으로, 합산분할주의는 소비단위 구성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다시 구성원 별로 분할하여 각각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하는 방법이고, 합산비분할주의는 소비단위 세대 구성원의 소득을 합산한 후 분할하지 않고 합산소득 전체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독일은 전자인 합산분할주의로 합산한 부부의 소득을 부부 2명을 나타내는 2로 나눈 값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소득세율을 적용한 후에 다시 2를 곱하여 부부 전체의 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하는데, 이를 선택적 2분2승제라 일컫는다. 한편, 미국은 합산비분할주의로 부부합산소득을 2로 나누지 않고 대신 소득세 과세단위를 선택한 납세자 지위에 따라 세율을 4종으로 구분한다(이하, 복수세율표). 즉 연방소득세율은 10～37%(surtax 제외)로 동일하지만, 각 연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납세자가 선택한 과세단위가 부부단위인지 개인단위인지에 따라 다르다. 부부단위를 선택한 납세자의 각 연방소득세율에 대응되는 과세표준 구간은 개인단위 선택의 과세표준 구간의 약 2배이다. 이는 비록 합산분할주의와 합산비분할주의는 소비단위 구성원의 소득 합계액의 분할 여부 방식에 차이가 있지만, 초과누진세율 체계 하에서 개인단위 보다 세대 전체 소득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는 소비단위의 합산분할주의방식에 초점을 맞춘다.

아울러 가족단위 하에 소득세를 과세하는 프랑스는 가족 당 과세표준을 가족 전체 과세대상 순소득 합계액을 가족계수로 나누어 산정되고 계산된 가족 당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여기에 다시 가족계수를 적용하여 세대단위 당 산출세액을 산정한다. 이에 프랑스의 소득세 과세방법은 독일과 같은 합산분할주의에 해당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한 세대가 적용받는 소득세율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 가족계수(family quotient)라는 것이다. 가족계수는 결혼여부, 부양자녀 등에 따라 일정부분(part)의 계수가 부여되는데, 본인과 배우자는 각각 1계수가 적용되고,

6) 오종현 등(2024)

자녀의 경우 두 자녀까지는 각각 0.5계수가 추가로 적용되다가 세 번째 자녀부터는 0.5계수의 2배인 1계수가 적용된다. 세 번째 자녀부터 적용되는 가족계수의 확대 정책은 1980년, 당시 저출산 문제가 프랑스의 국가적 과제로 제기됨에 따라 시작되었고, 해당 조세정책이 프랑스의 출산율 증가에 기여한 요인 중 하나로 평가되기도 한다(Laroque and Salanie, 2014).

이에 본 논문은 초저출산 시대에서 우리나라의 개인단위 소득세 과세제도의 문제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미시자료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제공하는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세 과세단위를 개인단위에서 독일, 프랑스 등과 같은 소비단위의 합산분할과세를 적용할 경우 부양자녀가 있는 세대의 소득세 부담세액의 변화를 소득 구간・가구 유형 별(맞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로 분석한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납세 비용 등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으나, 소비단위의 소득세 과세체계가 개인단위와 가장 구별되는 차이점은 가구 전체 소득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조정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소득세 과세단위 변경시 가구 전체의 부담세액의 변화를 산출세액 측면에서 파악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정패널 미시자료를 토대로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산출세액을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현행 개인단위 과세제도 하에서 홑벌이 가구가 부담하는 평균산출세액이 맞벌이 가구의 평균산출세액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독일 등과 같은 부부단위 과세제도로 변경할 경우 맞벌이 가구보다 홑벌이 가구의 산출세액의 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홑벌이 가구의 한 개인납세자가 세대를 부양할 정도의 소득 수준에서 과세되다가, 2분 2승제로 과세표준이 감소하여 한계세율의 감소효과가 크게 발생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소득세 과세단위 변경에 따른 소득세 산출세액의 변화를 소득 10분위 구간 별로 살펴본 결과, 산출세액 감소율이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도 나타났다. 이는 소득세 과세단위를 개인단위에서 소비단위로 변경할 경우 그 효과가 고소득자에게만 국한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소비단위 유형별로 비교하면, 독일과 같은 부부단위 보다 프랑스와 같은 가족단위과세를 적용할 경우 홑벌이 가구의 산출세액 감소효과가 컸고, 그 효과가 맞벌이 가구에 비해 보다 넓은 소득 구간에서 나타났고, 고소득자에 대한 산출세액 감소 효과도 홑벌이 가구에서 크게 나타났다. 또한 프랑스 가족계수제도 하에서 소득세 산출세액의 감소정도는 부양 자녀의 수가 클수록 두드러졌는데, 특히 자녀가 3명 이상일수록 감소 정도가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독일의 2분2승제와 달리 프랑스 가족계수 제도 하에서 가족 당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가족계수는 부양자녀 수(특히 자녀 3명 이상)가 많을수록 증가하는 가족계수의 특징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현행 개인단위 과세 하에서 동일 소득・소비 전제 하에 맞벌이 가구보다 홑벌이 가구의 소득세 부담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합산분할과세

를 도입한다면 자녀 양육에 따른 소비부담이 반영된 가구 전체의 소득세부담이 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합산분할과세 도입 시 조세의 혼인 중립성 훼손, 과세형평성, 세수 감소, 납세협력비용 등의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개인단위과세제도와 합산분할과세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와 국내외 제도를 검토한다. 제Ⅲ장에서 시나리오 분석 방법 및 표본 선정을 설명한 후에 제Ⅳ장에서 시나리오 분석결과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시나리오 분석결과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고려사항에 대하여 서술한다.

Ⅱ. 소득세 과세단위에 대한 고찰

1. 관련 선행연구

개인소득세 과세단위의 변경을 포함한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한 조세 지원과 관련된 국내연구는 대부분 현행 국내제도에 대한 검토와 해외 제도에 대한 비교하는 선에서 연구가 이뤄졌고, 미시수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계량적으로 분석한 국내 연구는 없다.

우선 현행 혼인, 출산, 양육에 대한 세제지원 현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연구로 박성은(2023)은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을 비교하였다. 또한 과세표준 조정을 포함한 주요국의 조세지원 사례를 비교 검토하면서 우리나라의 공제제도가 주요국에 비해 지원 규모가 크지 않은 경향이 있어 재정지원정책 등과의 통합적 고려를 통해 조세지원정책의 적정 수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개인소득세 과세단위에 대한 연구로 김완석(2005)는 독일, 프랑스와 같은 주요 국가의 입법례를 검토하고, 소득세 과세단위의 결정에 있어 고려사항을 논하였다. 그에 대한 결론으로 기혼부부에 대한 소득세 과세단위는 개인단위주의와 부부단위 합산분할주의 중 납세자가 선택하게 하고, 부부단위 합산분할주의를 적용할 경우 2분2승제등을 도입하되, 복수세율표, 분할계수, 세액 경감한도를 설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 제도를 도입할 때 연대납세의무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오종현 등(2023)은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과세단위 유형별 세부담을 OECD(2023)의 평균임금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동일한 소득 수준이더라도 결혼여부, 자녀 유무, 가구의 노동공급 행태에 따라 달라짐을 보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프랑스 가족단위 과세제도가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불러일으킨다는 비판도 있음을 언급하였

다. 이세진・이예지(2023)는 현행 개인별 과세제도가 경제적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 혹은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다고 하면서, 소득공제 확대나 기본공제대상 자녀 수에 따른 차등적 세율 적용 등 적정 과세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해외 연구에서는 비교적 실증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세제가 출산률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연구가 있긴 하였는데, 특히 선진국임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프랑스 제도를 대상으로 연구한 경우가 적지 않다. Chen(2011)은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랑스의 주요 가족 계수(1945년) 등의 세제정책을 실증분석한 결과, 세후순가계소득이 1% 증가하면 평균적으로 자녀가 0.09명 증가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OECD(2011)은 OECD 국가의 출산율이 장기적으로 하락해 왔으나, 2000년대 초반 이후 일부 국가에서는 출산율이 소폭 상승하였다고 하면서도, 한국의 낮은 출산률의 경우 높은 주거비와 사교육비가 제약적인 요인라고 보았다. 해당 연구에서 출산율 지원 정책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면서 세제 혜택과 관련하여 프랑스를 들었는데, 프랑스가 대가족에 중점을 두어 출산율을 높이고 있다고 하면서 자녀가 많은 가정에 더 큰 세금 혜택을 주는 프랑스 조세 정책이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았다. Gauthier(2007)은 가족정책과 출산율 간의 관계를 분석한 타 연구를 검토하면서, 여러 연구가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소규모의 긍정적 영향이 발견되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찾지 못한 연구들도 있고, 일부 연구에서는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전체 출산율보다는 출산 시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Letablier(2008)은 프랑스의 사례를 살피면서 단일한 정책이 출산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여러 정책이 결합되어 부모가 원하는 만큼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친가족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대부분의 세제정책이 가족계수(quotient familial)제도와 연계되었다고 보았다. Laroque and Salanié (2014)는 재정적 인센티브가 프랑스에서 출산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면서 특히 셋째 아이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클 수 있음을 보였다. Thévenon(2011)은 28개 OECD 국가의 가족 정책 모델의 다양성(가족에 대한 재정 지원 등 포함)을 분석하였는데, 북유럽 국가들은 매우 어린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이 다른 국가들보다 앞서 있었고, 앵글로색슨 국가들은 저소득층과 대가족을 대상으로 한 재정 지원을 주로 유아 교육과 초기 초등 교육에 집중한 반면, 아시아 국가들의 가족 지원은 모든 차원에서 훨씬 더 낮았다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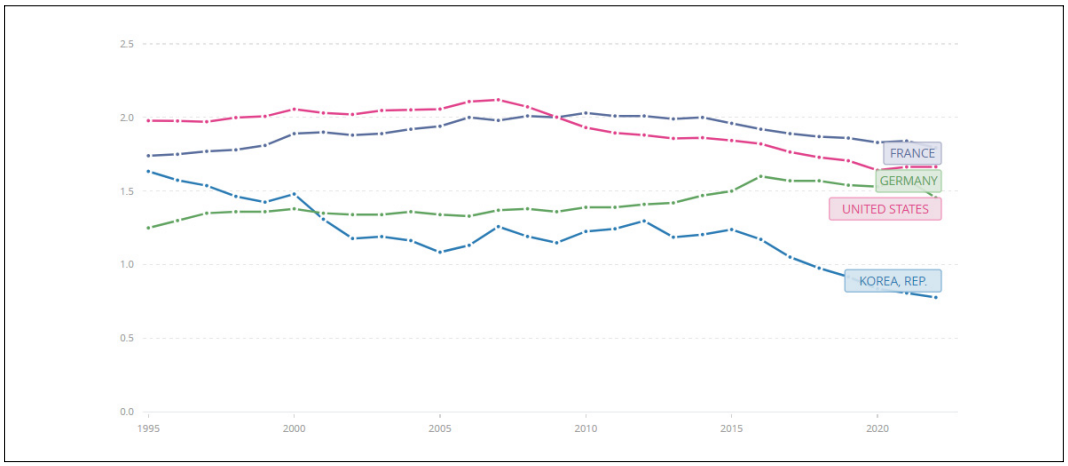
본 연구는 저출산 문제 대응 목적으로 조세 측면에서 과세단위를 수정할 경우 부담세액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를 사전적으로 분석하여 정책 입안자들에게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공헌점이 있다. 소득세 과세단위의 변화는 근원적인 세제의 변화이므로 해당 정책을 적용하기 전에 실증적 증거 자료의 검토는 필히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미시 수준 단위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2. 우리나라와 주요 국가의 소득세 과세단위제도

본 절에서는 개인단위과세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소비단위를 취하고 있는 미국과 독일(부부단위), 프랑스(세대 단위) 과세제도를 비교해 본다. 이들 국가는 여성 1명당 1.5 이상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국가(<그림 1 참조>[7])이면서도 세제에 있어서는 우리와 다른 소비단위 과세를 인정하고 있다.

〈그림 1〉 우리나라와 주요 국가의 출산율 비교



출처 : data.worldbank.org

가. 개인단위 과세제도 : 한국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개인을 과세단위로 두고 있고 소득세법상의 과세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개인은 각자의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소득세를 산정하여 신고 납부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8], 신고 납부시 다음과 같은 누진적인 소득세율[9]을 취하고 있다.

---

7)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P.DYN.TFRT.IN?end=2022&locations=KR-DE-FR-US&start=2000

8) 소득세법 제1조, 제2조

9) 소득세법 제55조

〈표 1〉 한국 소득세율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	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84만원＋1,400만원 초과분의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24만원, 5천만원 초과분의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36만원＋8,800만원 초과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06만원＋1억5천만원 초과분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06만원＋3억원 초과분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 7,406만원＋5억원 초과분의 42%
10억원 초과	3억 8,406만원＋10억원 초과분의 45%

과거에는 이러한 개인과세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자산소득 즉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부부단위로 합산하여 분할 없이 상기 소득세율을 적용한 후 과세(합산비분할과세)하였다. 따라서 자산소득이 있는 부부의 경우 개인단위과세할 경우에 비해 높은 한계세율의 적용을 받았었는데, 배우자간 자산소득합산과세의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10]로 인해 2002년부터 완전한 개인단위과세제도로 변화[11]하였다.

이러한 개인단위과세는 결혼에 대한 중립성 유지 등의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현재의 비혼 및 저출산 문제 그리고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감안할 때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김완석, 2005). 첫째, 과세 공평성 측면에서 소득세 납세의무를 결정함에 있어서 부부(또는 가족)단위 지급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개인 기준보다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실질과세 원칙 측면에서 부부가 협력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명의상 부부 일방에게 귀속된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부부 쌍방에게 귀속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조세회피 측면에서 개인단위주의와 초과누진세율 하에서는 부부 또는 가족 간 인위적 소득분산에 의하여 소득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으므로 소득분산을 하지 못한 납세의무자 간의 과세 형평성 문제가 있다. 넷째, 민법상 부부재산제와의 관계 측면에서 개인단위주의는 재산형성에 있어서 부부의 공동기여를 배려하고 있지 않으며, 이혼시 재산분할청구제도, 상속법상 기여분제도,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조화를 이룬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다[12].

10) 헌법재판소 2002.8.29. 2001헌바82

11) 개인단위과세제도의 예외로 공동사업소득에 대한 합산과세특례(소득세법 제43조)가 있는데, 개인 납세자와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규정이 있다.

12) 민법은 원칙적으로 계약재산제를 채택하여 부부의 재산문제를 정하도록 하되,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

나. 부부단위 과세제도 : 미국과 독일

(1) 미국 부부단위 과세제도의 개요

미국 연방소득세법하에서는 '복수세율표제'[13] 하에서 공동신고제 또는 별도신고제 중 선택할 수 있다.[14] 세율은 납세자 지위에 따라 개인단위과세 선택 기혼자(Married filing seperately), 공동신고 선택 기혼자(Married filing jointly), 독신자(Single) 및 독신세대주(Head of household) 4개로 아래와 같이 세분화되어 있다.

〈표 2〉 미국 연방소득세율

(단위 : 달러)

세율	2023 과세연도 기준, 과세소득 구간			
	독신자	공동신고 기혼자	별도신고 기혼자	독신 세대주
10%	0 ~ 11,000	0 ~ 22,000	0 ~ 11,000	0 ~ 15,700
12%	11,001 ~ 44,725	22,001 ~ 89,450	11,001 ~ 44,725	15,701 ~ 59,850
22%	44,726 ~ 95,375	89,451 ~ 190,750	44,726 ~ 95,375	59,851 ~ 95,350
24%	95,376 ~ 182,100	190,751 ~ 364,200	95,376 ~ 182,100	95,351 ~ 182,100
32%	182,101 ~ 231,250	364,201 ~ 462,500	182,101 ~ 231,250	182,101 ~ 231,250
35%	231,251 ~ 578,125	462,501 ~ 693,750	231,251 ~ 346,875	231,251 ~ 578,100
37%	578,126 ~	693,751 ~	346,876 ~	578,101~

주 : 2023 과세연도에 적용되는 미국 소득세 납세자 신분에 따른 세율 및 과세구간임

자료 : pwc, 「Worldwide Tax Summaries」, 2023.1.20.,<https://taxsummaries.pwc.com/united-states/individual/taxes-on-personal-income>

당초 미국의 연방소득세법은 개인단위주의를 채택하였으나, 연방대법원에서 부부공유재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주(State)에서 기혼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이등분한 금액을 각자의 소득으로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판결[15]함에 따라 1948년 부부의 경우 거주하는 주와 무관하게 연방소득세 신고시 각자의 소득을 별도신고 또는 2분2승제에 의하여 공동으로 신고(합산분할주

법정재산제인 부부별산제에 따른다(민법 제829조 내지 830조).

13) 독신자·부부 또는 가족과 같은 소비단위의 크기 등에 관계 없이 동일한 세율표를 적용하는 것을 단일세율표주의라 하며, 소득단위 크기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세율표를 적용하는 것을 복수세율표주의라 한다(김완석·정지선, 『소득세법론』, 서울 : 삼일인포마인, 2023, p.72).

14) 김완석, 앞의 글, p.188.

15) Poe v. Seaborn, 282 U.S. 101(1930)

의)[16]할 수 있는 '선택적 2분2승제'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2분2승제 방법은 세부담 측면에서 독신자에 비하여 기혼자, 그 중 홑벌이 부부에게 유리하여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제기되자, 1951년에 독신세대주를 위한 세율표를 제정하였고 1969년에 독신자용 별도세율을 도입하여 현행과 같은 연방소득세 과세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2) 독일 부부단위 과세제도의 개요

독일 연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개인단위와 2분2승제 중 선택한 방법에 따라 과세한다. 2분2승제는 부부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2로 나눈 금액을 부부 각자의 소득금액으로 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산출한 후 다시 그 산출세액에 2를 곱한 금액을 부부의 소득세 산출세액으로 하는 산정하는 방법이다.[17] 부부 일방이 개별과세 방법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기본적으로 합산분할과세를 선택한 것으로 간주한다. 독일연방소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다.

〈표 3〉 독일 소득세율

(단위 : 유로, %)

구간	과세표준		한계세율	세부담범위 (공동신고의 경우 2배)
	개인별 신고	공동 신고 (기혼자 또는 동성파트너)		
1	10,908 이하	21,816 이하	0	0
2	10,909 이상 15,999 이하	21,817 이상 31,998 이하	14～23.97	0～967
3	16,000 이상 62,809 이하	31,999 이상 125,618 이하	23.97～42	967～16,407
4	62,810 이상 277,825 이하	125,619 이상 555,650 이하	42	16,407～106,714
5	277,826 이상	555,650 이상	45	106,714～

주 : 1구간은 기본공제 구간으로 세액이 0이 되며, 2,3구간은 한계세율이 증가하고, 4,5구간은 한계세율이 일정함

자료 : 오종현 외(2023)

결혼한 부부의 합산 소득이 100,000 유로이고 이중 남편의 연소득이 80,000 유로(세율 42% 가정), 아내의 연소득이 20,000 유로(세율 30% 가정)세율 일 경우 개인단위로 신고를 한다면,

16) 합산분할주의는 소비단위 구성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다시 구성원별로 분할하여 각각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며, 합산비분할주의는 소비단위 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그대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하는 방법임(김완석 · 정지선, 앞의 글, p.72)

17) 김완석, 앞의 글, p.187.

남편이 납부하는 세금은 33,600 유로이고, 아내는 6,000 유로이어서 이 부부단위에서 납부하는 총세금은 39,600 유로가 된다. 반면 2분2승제를 선택하는 경우 남편과 아내의 합산 소득인 100,000유로의 절반인 50,000 유로에서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결정(세율 30% 가정)되고, 이에 따라 각각 산정되는 세금은 15,000유로(50,000유로×30%)가 되어 해당 부부단위에서 납부하는 총세금은 30,000 유로가 된다.

〈표 4〉 개인단위와 2분2승제 적용시 산출세액 산정 비교

구분	개인단위	2분2승제
남편	33,600 (=80,000*42%)	15,000(=(80000+20000)/2*30%)
아내	6,000 (=20,000*30%)	15,000(=(80000+20000)/2*30%)
세금합계	39,600	30,000

주 : 이해를 돕고자 2분2승제 적용시 남편, 아내가 부담할 세액을 총 세액의 절반으로 나누어 표기
출처 : 저자 작성

다. 가족단위 과세제도 : 프랑스

프랑스의 개인소득세 과세단위는 가족단위로, 가족 구성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적용되는 세율을 결정하며,[18] 부양자녀가 있는 세대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인적공제 대신에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단위의 개념을 반영한 가족계수제도(family coefficienty sytem)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전형적인 가족을 표준으로 설계한 것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의 세부담 경감과 출산율 제고를 위해 1945년에 도입되었다.[19] 이에 따라, 가족당 과세표준은 가족 전체의 과세대상 순소득[20] 합계액을 가족계수(family quotient)로 나누어 산정되고, 계산된 가족당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가족당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여기에 다시 가족계수를 곱하여 세대단위당 산출세액을 계산한다.[21] 소득세 과세표준은 가족 전체의 과세대상 순소득 합계액을 가족계수로 나누어 산정되므로, 부양자녀가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신윤정 2013 ; 안종석 · 박수진 · 이서현 2017).

가족계수제도에서 가족계수는 소득세산정의 중요한 요소로, 납세의무자의 결혼여부, 부양자

18) 안창남, 「주요국의 조세제도 : 프랑스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9, p.68.
19) 안종석 · 박수진 · 이서현, 「주요국의 근로소득세 공제체계 국제비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 17-03』, 2017, p.61.
20) 과세대상 순소득은 총소득(revenue brut)에서 공제액(déduction)을 차감하여 산출된다.
21) 위의 책, p.61.

녀 수 등에 따라 일정 계수가 부여된다.[22] 2023년 기준, 가족계수는 납세자 본인과 배우자는 각각 1단위의 계수이며 여기에 첫 번째 자녀와 두 번째 자녀까지는 0.5의 계수가 가산되고, 세 번째 자녀부터는 1의 계수가 가산된다(아래 <표 5> 참조).[23]

〈표 5〉 프랑스의 가족계수

부양자녀 수	부부	독신・이혼
0	2	1
1	2.5	1.5
2	3	2
3	4	3
4	5	4
3번째 자녀부터 자녀 1명 추가시	1	1

주 : 가족계수는 일반적인 경우의 부부합산과세, 독신・이혼한 세대의 부양자녀수에 따른 가족계수임
출처 : General Tax Code, Article 194, 프랑스 경제부<https://www.economie.gouv.fr/particuliers/quotient-familial>

예를 들어, 부양자녀가 없는 맞벌이 가족의 가족계수는 2가 되고, 독신의 가족계수는 1이 된다. 부양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족의 가족계수는 자녀 1명인 경우 2.5, 자녀 2명은 3, 자녀 3명은 4, 자녀 4명은 5 계수가 적용된다.[24] 사별한 경우 사별한 배우자의 가족계수가 부여되므로 가족계수는 달라지지 아니하고, 이혼한 경우 배우자의 가족계수는 부여되지 아니하고 본인의 부양자녀수에 대한 가족계수를 추가로 적용받는다. 가족계수제도로 인한 과도한 세부담 경감 문제 방지를 위한 가족계수제도 통합한도규정이 있는데(신윤정 2013 ; 안종석・박수진・이서현 2017), 상한액은 납세자 본인 가족계수 1(부부합산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총 가족계수 2)에 추가되는 0.5별 조세경감 한도액은 1,678 유로(2023년 기준)이다.[25] 프랑스의 과세소득 구간별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22) The General Tax Code, Article 193
23) 장애인 증명서를 보유하고 있는 부양자녀의 경우 0.5 계수가 추가된다.
24) 맞벌이 가정의 자녀가 2명인 경우 본인과 배우자 각 1계수에 부양자녀 2명에 대해 1계수가 추가(0.5×2)됨에 따라 가족계수는 3이며, 세 번째 자녀부터는 1계수가 추가된다.
25) The General Tax Code, Article 197 Ⅰ.2.

〈표 6〉 프랑스 소득세율

(단위 : 유로, %)

과세소득 구간		세율
2022년	2023년	
≤10,225	≤10,777	0%
10,226～26,070	10,778～27,478	11%
26,071～74,545	27,479～78,570	30%
74,546～160,336	78,571～168,994	41%
>160,337	>168,995	45%

주 : 소득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를 추가적으로 부과받는 바, 과세소득이 25만유로를 초과해 50만유로 이하일 경우 3%, 50만유로를 초과해 100만유로 이하일 경우 4%, 100만유로를 초과할 경우 4%를 추가적으로 부과함

출처 : 오종현 외(2023)

(1) 계산 예시[26)]

예를 들어, 결혼한 부부의 합산소득이 150,000 유로로 동일한 상황에서 부양자녀가 2명(Case A), 3명인 경우(Case B), 자녀가 없는 경우(Case C)의 현행 관련 세법에 따른 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부부의 합산소득은 동일하고 부양자녀수에 의해 Case A의 가족계수는 3, Case B는 4, Case C은 2가 된다.[27)]

가족계수로 인해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자녀가 2명인 경우 50,000 유로, 자녀가 3명인 경우 37,500 유로로 부양 자녀가 없는 경우의 과세표준 75,000 보다 각각 25,000 유로, 37,500 유로로 낮고 이에 가족단위 산출세액은 자녀 2명인 Case A는 25,781 유로, 자녀 3명인 Case B 19,375 유로, 자녀가 없는 Case C는 32,187 유로로 산정되어 각각 부양자녀가 없는 Case C 보다 6,406 유로, 12,812 유로의 세부담이 감소한다. 그러나 부양자녀에 따른 추가적인 가족계수 1당 한도액은 3,356 유로이므로 부양자녀가 2명인 Case A는 3,050 유로, 부양자녀가 3명인 Case B는 7,778 유로의 세금 감소분은 적용받을 수 없게 되어 최종 납부할 세액은 각각 28,831 유로, 27,153 유로가 된다.

26) 안창남(2009, p.120)의 사례를 최근 관련 법 규정을 적용하여 재작성함

27) 안창남(2009, p.120)의 사례를 최근 관련 법 규정을 적용하여 재작성하였다.

〈표 7〉 가족계수제도 적용 소득세 산출세액 산정 예시

(단위 : 유로)

구분	부양 자녀가 2명이 결혼한 부부 Case A	부양 자녀가 3명이 결혼한 부부 Case B	부양 자녀가 없는 결혼한 부부 Case C
가족계수	3	4	2
가족계수 1의 과세표준	50,000[1)]	37,500[2)]	75,000[3)]
세율	30%	30%	30%
가족계수1의 산출세액	8,594[4)]	4,844[5)]	16,094[6)]
가족계수3 또는 2의 경우 산출세액[7)]	25,781[8)]	19,375[9)]	32,187[10)]
가족단위 산출 이익	6,406[11)]	12,812[12)]	–
부양 자녀 2명에 대한 한도	3,356[13)]	5,034[14)]	–
한도초과액	3,050[15)]	7,778[16)]	–
납부할 세액	28,831[17)]	27,153[18)]	32,187

주 : 1) 150,000/3, 2) 150,000/4, 3) 150,000/2＝75,000, 4) (27,478－10,777)×11%＋(50,000－27,478)×30%, 5) (27,478－10,777)×11%＋(37,500－27,478)×30%, 6) (27,478－10,777)×11%＋(75,000－27,478)×30%, 7)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가족계수 3, 4의 산출세액,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가족계수 2의 산출세액을 의미함, 8) 8,594×3, 9) 4,844×4, 10) 16,094×2, 11) 32,187－25,781, 12) 32,187－19,375, 13) 1,678×2, 14) 1,678×3, 15) 6,406－3,356, 16) 12,812－5,034, 17) 25,781＋3,050, 18) 19,375＋7,778

출처 : 안창남, 「주요국의 조세제도 : 프랑스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9, p.120 사례를 참고하여 최근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재작성함

Ⅲ. 시나리오 분석 방법 및 표본 선정

1. 시나리오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세단위를 현재의 개인단위에서 독일과 같은 부부단위과세 또는 프랑스와 같은 가족단위로 변경할 경우 가구 전체의 소득세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소득세 산정에 필요한 가구원별 소득 관련 미시데이터가 필요한데, 본 논문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하되, 세법개정으로 인한 소득세 과세제도의 변화를 통제하고자 재정패널자료의 가장 최근 시점

인 제15차(2021 과세연도)를 대상으로 분석한다.

본 논문의 연구대상인 가구 전체의 소득세부담은 세액공제와 감면을 반영하여 계산되어야 하나, 세액공제·감면은 개별 가구의 소비 등에 영향을 받는다. 이에 본 논문은 비교가능성을 고려하여 소득세 과세단위 변경에 따른 소득세부담을 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소득세 산출세액으로 한다.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체계 하에서 소득세 산출세액은 소득의 종류(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본 논문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8〉 소득세 산출세액 방법

[각 개인별 소득세 산출세액]
=개인별 소득세 과세표준(=총급여액(재정패널자료 근로소득금액 코드(p15bb002))−소득세법 제47조의 근로소득공제액−소득공제(재정패널자료 근로소득 전체 소득공제금액(코드 p15ca002))×세율(6~45%) ····· (식 1−1)

[개인단위의 가구 전체 소득세 산출세액]
=∑ 각 개인별 소득세 산출세액 ····· (식 1−2)

[부부단위의 소득세 산출세액]
={∑개인별 소득세 과세표준÷2×세율(6~45%)}×2 ····· (식 2−1)

[가족단위의 소득세 산출세액]
={∑개인별 소득세 과세표준÷가족계수*×세율(6~45%)}×가족계수* ····· (식 2−2)
* <표 5>의 프랑스 가족계수

먼저, 개인단위 하에서 가구 전체 소득세 산출세액은 부부 개인별로 계산된 소득세 산출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개인별 근로소득금액은 재정패널자료의 근로소득금액[28]에서 2021 과세연도에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47조의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렇게 계산된 근로소득금액에서 재정패널자료에서 제공되는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합계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에 2021 과세연도의 소득세율(6~45%)[29]을 적용하여 개인별 소득세 산출세액을 추정하였다. 부부단위 적용(독일 모형)시 소득세 산출세액은 독일의 2분2승제 개념을 적용한다. 즉 앞서 살펴본 부부의 각 개인별 소득세 과세표준 합계액을

28) 재정패널데이터의 근로소득금액은 연봉 개념으로 비과세급여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나, 본 논문은 해당 금액이 「소득세법」상 비과세급여가 제외된 총급여액으로 가정한다.

29) 지방소득세는 고려하지 않았다.

2로 나눈 값이 부부단위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소득세율을 적용한 값에 다시 2를 곱하여 부부단위 하에서의 소득세 산출세액을 추정한다. 가족단위(프랑스 모형) 하에서의 소득세 산출세액은 2장에서 살펴본 프랑스 가족계수제도를 적용한다. 즉 가구원 개인의 소득세 과세표준 합계액[30]에 자녀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프랑스의 가족계수를 나눈 값이 가족단위의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소득세율을 적용한 값에 다시 가족계수를 곱하여 가족단위 하에서의 소득세 산출세액을 추정한다. 아울러 오종현 등(2023)의 연구방법에 따라, 부부·가족 단위의 소득세 산출세액 계산시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를 동일하게 적용받는 것으로 가정한다.

본 연구에서 소득세 과세단위에 따른 소득세 산출세액의 변화 정도를 재정패널 자료의 근로소득금액 데이터(즉 『소득세법』 제47조의 근로소득공제 차감 전 금액)를 기준으로 표본을 십분위로 나누어 각 소득구간 별로 비교한다. 아울러 개인단위 소득세 과세체계 하에서 가구 전체의 소득이 동일한 경우 맞벌이 보다 홑벌이 부부의 세부담이 불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소득세 과세단위 변경에 따른 세부담의 차이를 맞벌이 가구와 홑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맞벌이 가구는 재정패널데이터의 응답 가구원 수가 2명이면서 응답 가구원 2명 모두가 근로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로 정의하였다.

2. 표본 선정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15차 재정패널 자료의 자녀가 있는 기혼가구로 정하였다. 기혼가구는 재정패널데이터의 가구원 인적현황에서 혼인상태에 대한 응답을 활용하여 판단하였고,[31] 자녀 유무는 재정패널의 가구데이터에서 제공하는 만 18세 미만 가구원 수가 존재하면 자녀가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측정방법에 따라 기혼가구는 총 5,881 가구로 선정되었고, 여기에 자녀가 없는 가구 3,996 가구를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직계비속,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 유무가 소득세 산출세액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고자 가구원 구성이 부부와 18세 미만 자녀로 이루어진 표본으로 한정하고,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가구를 표본에서 제외하였다(848 가구). 이러한 표본 선정 절차에 따라 최종 표본은 1,037가구로 확인되었다.

<표 9>는 표본 분포 현황을 보여주는데, 전체 표본 중 맞벌이 가구와 홑벌이 가구의 비중은 각각 60%와 40%이다. 자녀 수별 표본 분포 현황을 보면, 자녀 1명이 전체 가구의 40%, 자녀 2명은 50%, 자녀 3명 이상은 10%으로 나타났다.

---

30) 본 논문의 표본은 부부와 소득이 없는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가구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부부 개인별 소득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된다.

31) 이혼 또는 사별가구는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표 9〉 표본 분포 현황

(단위 : 가구, %)

구분	자녀 1명		자녀 2명		자녀 3명 이상		합계	
	표본	비중	표본	비중	표본	비중	표본	비중
맞벌이 가구	263	60	283	60	43	50	589	60
홑벌이 가구	189	40	218	40	41	50	448	40
합계	452	100(40)	501	100(50)	84	100(10)	1,037	100(100)

주 : 괄호( )은 전체 표본 중 자녀 수별 표본이 차지하는 비중임

Ⅳ. 시나리오 분석결과

1. 기술적 통계

<표 10>은 각 소득분위별 표본 수, 자녀 수, 맞벌이 가구 비중, 그리고 표본의 각 구간별 총급여액, 과세표준, 산출세액의 평균을 보인 표인데, 표본 상의 평균 자녀 수는 1.7명, 맞벌이 가구는 전체 표본의 56.8%를 차지한다. 총급여액 평균은 7,302.2만원, 산출세액 평균은 626.8만원이며, 5분위 소득구간의 총급여액 평균은 6,353.6만원, 산출세액 평균은 378.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소득분위 구간별 주요 변수의 평균 값

(단위 : 가구, 명, %, 만원)

소득분위	N	자녀 수	맞벌이 가구 비중	소득세 개인단위 과세체계		
				총급여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1	104	1.6	26.0	2,433.4	857.1	65.5
2	104	1.7	23.1	3,863.7	1984.1	198.5
3	106	1.6	42.5	4,706.3	2,344.0	242.6
4	135	1.7	52.6	5,636.5	3,029.1	330.8
5	71	1.8	71.8	6,353.6	3,499.7	378.1
6	103	1.7	61.2	7,053.5	4,076.9	480.6
7	116	1.7	69.0	7,955.8	4,892.1	617.0
8	91	1.6	78.0	9,155.0	5,869.4	771.9

〈표 10〉 소득분위 구간별 주요 변수의 평균 값 (계속)

소득분위	N	자녀 수	맞벌이 가구 비중	소득세 개인단위 과세체계		
				총급여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9	104	1.7	73.1	10,775.8	7,183.9	1,049.3
10	103	1.5	78.6	15,567.2	11,512.6	2,183.4
합계	1,037	1.7	56.8	7,302.2	4,489.7	626.8

주 : (총급여액) 가구 내 개인별 총급여액(=재정패널자료 근로소득금액(코드 p15bb002))의 합계액, (과세표준) 가구 내 개인별 소득세 과세표준(=총급여액(재정패널자료 근로소득금액 코드(p15bb002)) −소득세법 제47조의 근로소득공제액−소득공제(재정패널자료 근로소득 전체 소득공제금액(코드 p15ca002))의 합계액, (산출세액) 가구 내 개인별 소득세 산출세액(=개인별 소득세 과세표준×소득세율(6~45%))의 합계액

<표 11>은 현행 소득세법(개인단위) 하에서 맞벌이가구와 홑벌이가구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출세액을 비교한 결과를 보여준다. 맞벌이 가구의 전체 평균 산출세액은 604.6만원, 홑벌이가구의 전체 평균 산출세액은 656만원으로 홑벌이가구의 산출세액이 맞벌이 가구보다 평균적으로 1.1배 높다. 동일 근로소득 구간별 맞벌이가구와 홑벌이가구의 산출세액의 차이를 비교하면, 소득 10분위 구간에서 홑벌이가구의 산출세액이 맞벌이 가구의 산출세액보다 평균적으로 2.5배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근로소득의 3분위(평균 총급여액 4,706.3만원)와 6분위(평균 총급여액 7,053.5만원) 구간에서 맞벌이 가구 보다 홑벌이 가구의 산출세액 부담이 1.9배로 2번째로 높게 나타난다. 이는 홑벌이 가구의 세부담이 맞벌이 가구의 세부담 보다 높은 정도는 고소득 구간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분포 구간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임을 보여준다. 다만, 1분위와 5분위 구간에서 맞벌이 가구 대비 홑벌이 가구의 산출세액 비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6배).

〈표 11〉 개인단위, 소득분위 구간별 맞벌이 가구와 홑벌이 가구의 소득세 산출세액 비교

(단위 : 가구, 만원)

소득분위	맞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				B/A
	N	총급여액	과세표준	가구 전체 산출세액(A)	N	총급여액	과세표준	가구 전체 산출세액(B)	
1	27	2,898.2	668.2	45.4	77	2,270.4	923.3	72.6	1.6
2	24	3,881.3	1,457.2	122.1	80	3,858.4	2,142.1	221.4	1.8
3	45	4,673.8	1,899.1	162.4	61	4,730.3	2,672.2	301.7	1.9
4	71	5,574.7	2,604.4	247.6	64	5,705.0	3,500.2	423.0	1.7

〈표 11〉 개인단위, 소득분위 구간별 맞벌이 가구와 홑벌이 가구의 소득세 산출세액 비교 (계속)

소득분위	맞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				B/A
	N	총급여액	과세표준	가구 전체 산출세액(A)	N	총급여액	과세표준	가구 전체 산출세액(B)	
5	51	6,364.3	3,237.6	320.5	20	6,326.6	4,168.0	525.1	1.6
6	63	7,056.0	3,514.6	357.3	40	7,049.7	4,962.5	674.9	1.9
7	80	7,956.8	4,483.6	503.1	36	7,953.7	5,800.0	870.2	1.7
8	71	9,157.1	5,582.4	670.7	20	9,147.3	6,888.0	1,131.1	1.7
9	76	10,738.1	6,806.7	886.7	28	10,878.0	8,207.9	1,490.7	1.7
10	81	14,741.9	10,374.0	1,641.5	22	18,605.5	15,704.8	4,178.7	2.5
합계	589	8,223.3	4,792.1	604.6	448	6,091.2	4,092.0	656.0	1.1

주 : <표 10>의 변수 정의 참고

2. 독일 제도(부부단위) 도입시 소득세 산출세액 변화

<표 12>는 부부단위 소득세 과세체계 하에서 개인단위과세 대비 맞벌이 가구와 홑벌이 가구의 소득세 산출세액의 감소율을 보여준다. 부부단위 과세의 경우 맞벌이 가구의 전체 산출세액 평균은 543.1만원으로 개인단위과세 대비 평균적으로 1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홑벌이 가구의 전체 산출세액 평균은 480만원으로 개인단위 대비 평균적으로 30% 감소하여 부부단위로 소득세 과세단위가 변경될 경우 맞벌이 가구보다 홑벌이 가구의 소득세 산출세액 감소정도(%)가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독일 제도(부부단위)를 도입할 경우 홑벌이 가구의 부담세액 경감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표본의 평균을 기준으로 비교할 때, 부부단위 적용시 홑벌이 가구의 소득세 산출세액이 맞벌이 가구의 산출세액의 0.9배로 나타나 개인단위과세에서 홑벌이 가구가 맞벌이 가구보다 높은 수준(1.1배)이 역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구간별로 살펴보면, 부부단위로 변경될 경우 개인단위 대비 소득세 산출세액의 감소율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낮은 소득 구간을 제외하고 소득 2분위에서 4분위 구간은 20% 감소하고 그 외의 소득구간에서는 1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홑벌이가구의 경우 가장 낮은 소득구간에서 10%로 감소율이 가장 낮았고, 소득 2분위(평균 총급여액 3,858만원)에서 소득세 산출세액의 감소율이 40%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홑벌이가구의 소득세 산출세액 감소율이 30%인 소득구간은 3분위(평균 총급여액 4,730만원)와 고소득 구간인 8~10분위(평균 총급여액 9,147만원~18,60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소득구간 4분위부터 7분위 구간의 평균 감소

율은 약 20%수준이었다.

위와 같은 결과는 다음의 시사점을 보여준다. 첫째, 현행 개인단위에서 부부단위로 소득세 과세단위가 변경될 경우 근로소득가구 기준으로 맞벌이 가구 보다는 홑벌이 가구의 산출세액 감소가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같은 점은 홑벌이 가구에서의 한 개인납세자가 해당 가구의 모든 가구원의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소득을 벌어들인다는 점에서 해당 개인납세자의 과세표준이 부부단위과세로 감소될 때 한계세율의 감소 혜택이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개인단위에서 부부단위로 변경시 세제혜택은 고소득 구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 구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분석 대상의 맞벌이 가구의 경우 평균적으로 10%의 산출세액 감소율을 보였으나, 소득구간별로 2분위에서 4분위 가구의 산출세액 감소율이 2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음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홑벌이 가구에도 이런 경향이 부분적으로 발견되는데, 산출세액 감소율이 평균적으로 30% 였지만, 2분위 홑벌이 가구의 산출세액 감소율이 40%로 나타나 저소득 가구도 세부담이 감소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12〉 소득세 과세단위 부부단위 변경시(독일 2분2승제 제도) 소득분위 구간별 맞벌이 가구와 홑벌이 가구의 소득세 산출세액 비교

(단위 : 가구, 만원)

소득분위	맞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					B/A
	N	총급여액	과세표준	산출세액(A)	증감률	N	총급여액	과세표준	산출세액(B)	증감률	
1	27	2,898.2	334.1	40.3	0.0	77	2,270.377	461.7	55.6	−0.1	1.4
2	24	3,881.3	728.6	88.8	−0.2	80	3,858.442	1,071.1	136.3	−0.4	1.5
3	45	4,673.8	949.5	122.5	−0.2	61	4,730.296	1,336.1	204.0	−0.3	1.7
4	71	5,574.7	1,302.2	201.3	−0.2	64	5,705.046	1,750.1	319.7	−0.2	1.6
5	51	6,364.3	1,618.8	275.6	−0.1	20	6,326.576	2,084.0	409.2	−0.2	1.5
6	63	7,056.0	1,757.3	323.8	−0.1	40	7,049.69	2,481.3	528.4	−0.2	1.6
7	80	7,956.8	2,241.8	461.9	−0.1	36	7,953.683	2,900.0	654.0	−0.2	1.4
8	71	9,157.1	2,791.2	621.4	−0.1	20	9,147.264	3,444.0	817.2	−0.3	1.3
9	76	10,738.1	3,403.4	807.8	−0.1	28	10,878.03	4,103.9	1,031.1	−0.3	1.3
10	81	14,741.9	5,187.0	1,480.7	−0.1	22	18,605.46	7,852.4	3,130.5	−0.3	2.1
합계	589	8,223.3	2,396.1	543.1	−0.1	448	6,091.222	2,046.0	480.0	−0.3	0.9

주 : (변수정의) 소득세 과세단위 부부단위로 변경시 소득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산정방법은 (식 2−1) 참고

(증감률) 개인단위 대비 부부단위 산출세액의 감소율

3. 프랑스 제도(가족단위) 도입시 소득세 산출세액 변화

<표 13>은 우리나라의 현행 개인단위과세가 프랑스의 가족단위과세(가족계수 적용)로 바뀔 경우 소득세 산출세액의 변화를 보여준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개인단위과세 대비 산출세액 감소율은 평균 20%로 나타났는데, 부부단위과세 적용시 평균 10%보다 10% point 정도 세제혜택이 높음 것으로 나타났다. 홑벌이 가구에서는 개인단위과세 대비 산출세액 감소율은 평균 30%로 부부단위과세 적용 시의 30% 수준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소득 구간별로 살펴보면, 저소득 1분위 구간에서 개인단위 대비 소득세 산출세액의 감소율은 홑벌이 가구에서 평균 10%로 나타났다. 그 외의 소득 구간에서 맞벌이 가구는 평균 20%~30% 수준이며, 홑벌이가구는 평균 40%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부부단위과세에서는 개인단위 대비 소득세 산출세액의 감소율이 가장 높은 소득 구간은 맞벌이가구는 2~4분위, 홑벌이가구는 2분위 소득구간인 것과 달리, 가족단위에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이는 소득 구간은 홑벌이 가구는 1분위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으로 확대되었고 맞벌이 가구는 4분위에서 6분위로 소득 구간이 높아 졌다.

〈표 13〉 소득세 과세단위 가족단위 변경시(프랑스 가족계수제도) 소득분위 구간별 맞벌이 가구와 홑벌이 가구의 소득세 산출세액 비교

(단위 : 가구, 만원)

소득분위	맞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					B/A
	N	총급여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증감률(A)	N	총급여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증감률(B)	
1	27	2898.2	235.8	40.3	0.0	77	2270.4	333.4	55.6	−0.1	1.4
2	24	3881.3	504.9	87.4	−0.2	80	3858.4	761.1	128.6	−0.4	1.5
3	45	4673.8	677.2	114.2	−0.2	61	4730.3	959.0	163.4	−0.4	1.4
4	71	5574.7	931.8	162.8	−0.3	64	5705.0	1210.6	241.6	−0.4	1.5
5	51	6364.3	1139.9	217.2	−0.3	20	6326.6	1398.0	308.9	−0.4	1.4
6	63	7056.0	1259.2	252.9	−0.3	40	7049.7	1676.3	419.9	−0.4	1.7
7	80	7956.8	1589.3	375.4	−0.2	36	7953.7	2039.1	555.3	−0.4	1.5
8	71	9157.1	1989.5	529.6	−0.2	20	9147.3	2493.7	730.8	−0.4	1.4
9	76	10738.1	2448.6	719.7	−0.2	28	10878.0	2867.0	928.4	−0.4	1.3
10	81	14741.9	3772.7	1294.3	−0.2	22	18605.5	5488.9	2678.3	−0.4	2.1
합계	589	8223.3	1719.3	465.3	−0.2	448	6091.2	1432.7	407.3	−0.3	0.9

주 : (변수정의) 소득세 과세단위 부부단위로 변경시 소득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산정방법은 (식 2−1) 참고

(증감률) 개인단위 대비 부부단위 산출세액의 감소율

프랑스 가족계수제도에서 소득세 과세표준 감소 효과가 자녀 수와 관련이 있음을 고려하여, 자녀 수별(1명, 2명, 3명이상)로 소득세 산출세액의 감소정도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14>의 Panel A와 같다. 가구의 자녀가 1명, 2명인 경우 각 소득 구간별로 개인단위과세 대비 프랑스 가족단위과세(가족계수적용) 적용시 소득세 산출세액의 감소율는 맞벌이가구의 경우 10%~30% 수준이고, 홑벌이가구의 경우 10%~40% 수준이었다. 그러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맞벌이 가구는 소득 5분위부터 9분위에서 자녀 2명 이하일 때 산출세액 감소율 20~30% 보다 높은 40%의 감소율을 보였고, 홑벌이 가구는 소득 3분위부터 8분위 구간에서 자녀 2명 이하일 때의 산출세액 감소율 30%~40% 보다 높은 50%로 나타났다. 이는 프랑스 가족계수 적용시 납세의무자가 적용받는 초과누진세율 감소효과가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셋째 자녀부터 가족계수 증가분(1)이 자녀 2명까지의 가족계수(0.5) 2배인 것과 관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부부단위과세(<표 14>, Panel B)의 경우에는 자녀 수의 변화에 따라 산출세액의 감소율에 크게 다른 양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다만 홑벌이가구의 자녀가 2명인 경우 상대적으로 다수의 구간에서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맞벌이 가구는 주로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 2분위에서 4분위 사이의 근로소득가구가 높은 산출세액 감소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자녀 수 별 소득세 과세단위 변경시 소득분위 구간별 맞벌이 가구와 홑벌이 가구의 소득세 산출세액 비교

(단위 : 만원)

Panel A : 가족단위과세(프랑스 모형)

소득분위	맞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					
	1명		2명		3명 이상		1명		2명		3명 이상	
	산출세액	감소율	산출세액	감소율	산출세액	감소율	산출세액	감소율	산출세액	감소율	산출세액	감소율
1	40.3	−0.1	36.3	0.0	49.3	0.0	55.5	−0.1	56.3	−0.1	50.9	−0.1
2	83.5	−0.2	89.9	−0.2	93.7	−0.1	129.0	−0.4	126.7	−0.4	141.0	−0.4
3	118.2	−0.2	116.3	−0.2	90.1	−0.2	159.4	−0.4	164.7	−0.4	188.6	−0.5
4	167.7	−0.3	148.7	−0.3	201.2	−0.3	283.1	−0.3	220.0	−0.4	228.4	−0.5
5	258.2	−0.3	198.0	−0.3	164.5	−0.4	335.9	−0.3	323.5	−0.4	247.9	−0.5
6	264.2	−0.3	248.8	−0.3	200.9	−0.4	467.6	−0.3	433.7	−0.4	296.8	−0.5
7	416.3	−0.2	354.4	−0.3	293.1	−0.4	646.4	−0.3	513.9	−0.4	422.9	−0.5
8	565.8	−0.2	519.5	−0.2	392.3	−0.4	748.4	−0.3	726.0	−0.4	598.1	−0.5
9	791.6	−0.2	684.6	−0.2	433.3	−0.4	1019.0	−0.3	883.0	−0.4	906.9	−0.4
10	1382.3	−0.2	1231.8	−0.2	726.5	−0.2	1911.2	−0.4	1310.8	−0.4	11849.8	−0.4
전체	497.2	−0.2	471.3	−0.2	230.2	−0.3	420.1	−0.3	315.8	−0.4	835.2	−0.4

〈표 14〉 자녀 수 별 소득세 과세단위 변경시 소득분위 구간별 맞벌이 가구와 홑벌이 가구의 소득세 산출세액 비교 (계속)

Panel B : 부부단위과세(독일 모형)

소득분위	맞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					
	1명		2명		3명 이상		1명		2명		3명 이상	
	산출세액	감소율	산출세액	감소율	산출세액	감소율	산출세액	감소율	산출세액	감소율	산출세액	감소율
1	40.3	−0.1	36.3	0	49.3	0	55.5	−0.1	56.3	−0.1	50.9	−0.1
2	83.5	−0.2	93.1	−0.2	93.7	−0.1	134.9	−0.4	135.6	−0.3	152.1	−0.4
3	124.3	−0.2	127.7	−0.2	95.3	−0.2	192.7	−0.3	209.9	−0.3	255.5	−0.3
4	199.6	−0.2	185.6	−0.2	286.9	0	332.9	−0.2	305.2	−0.2	355	−0.2
5	307.2	−0.1	265.7	−0.1	209.3	−0.3	389.9	−0.2	431.5	−0.2	400.5	−0.2
6	309.6	−0.1	341.8	0	291.3	−0.2	521.6	−0.2	541.7	−0.2	500.1	−0.2
7	467.5	−0.1	453.8	−0.1	486.9	−0.1	700.4	−0.3	621.9	−0.2	636.1	−0.2
8	618.6	−0.1	627.5	0	602.6	−0.1	802.4	−0.3	834	−0.3	814.1	−0.3
9	845.6	−0.1	790	0	649.3	−0.1	1082.5	−0.3	992.5	−0.3	1128.2	−0.3
10	1532.2	−0.1	1449	−0.1	942.5	0	2164	−0.3	1571.7	−0.3	14276.4	−0.2
전체	551.1	−0.1	567.6	−0.1	332.9	−0.1	467.2	−0.3	379.9	−0.3	1071.7	−0.2

Ⅴ. 시사점 및 고려사항

앞선 시나리오 분석을 토대로 현행 우리나라의 과세제도(개인과세제도)에서 독일 모형(부부단위과세) 또는 프랑스 모형(가족단위과세)으로 변경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이 예상된다. 우선 우리나라가 독일 모형(부부단위과세)으로 과세단위를 변경할 경우 맞벌이 가구 보다는 홑벌이 가구의 산출세액 감소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홑벌이 가구에서의 한 개인납세자가 해당 가구의 모든 가구원의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소득을 벌어들인다는 점에서 해당 개인납세자의 과세표준이 부부단위과세로 반감(半減)될 때 한계세율의 감소 혜택이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개인단위과세 체계에서 부부단위과세체계로 변경할 때의 세제혜택의 크기가 비율 측면에서 고소득 구간 못지 않게 저소득 구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우리나라가 프랑스 모형(가족단위과세)으로 변경할 경우 앞선 독일 모형과 동일하게 홑벌이 가구의 산출세액의 감소가 맞벌이 가구보다 높았고, 산출세액 감소율이 높은 구간도 넓게 나타났다. 특히, 홑벌이 가구 고소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뚜렷하게 발견되었는데, 이는 프랑스 가족계수제도가 고소득층의 세제혜택을 주어 그들의 출산률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OECD, 2011)의 결과와 연결된다. 그리고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 산출세액 감소율이 뚜렷하게 늘어났는데, 이는 가족계수의 증가폭이 자녀 3명 이상에서 급증(0.5→1)함에 따라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 권장되는 자녀의 수가 있다면 이 가족계수의 증가폭의 조정으로 해당되는 수만큼 자녀를 가진 가구에 높고, 넓은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부부단위과세에 비해 뚜렷하게 자녀수에 비례한 세제혜택이 뚜렷함을 보이고 고소득자에 대한 산출세액의 감소율도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러한 부부단위과세와 세대단위과세가 개인단위과세제도에 비해 분명 결혼 가구, 자녀가 있는 가구를 지원하는 세제로 보이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은 고려되어야 한다.[29] 초과누진세율 하에서 합산분할과세는 혼인의 조세 중립성 훼손 문제, 상이(相異)한 납세자 군(기혼부부와 독신자 또는 독신세대주, 기혼부부 중 맞벌이 부부와 홑벌이 부부) 간에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만약에 소득세 과세단위 변경시 독일, 미국과 같이 납세의무자가 개인단위와 소비단위 중 선택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행대로 소득공제와 세율구조 유지시 소득세 수입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공제제도 변경 등이 함께 요구[30]될 수도 있다. 원천

29) 김완석, 앞의 글, pp.190～216.

30) 안종범・전승훈・김동준, 「소득세 과세단위 변경의 경제적 효과」, 『한국경제연구』 제28권 제2호, 2010, p.171.

징수(특히 근로소득자) 관련 납세협력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어,[31] 연대납세의무를 강화 등의 보완책을 고려해야 할 수도가 있다. 또한 부부단위 과세방안은 민법상 부부별산제와 조화롭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이 제도를 적용할 경우 누진세율 구조에서 고소득자가 고세율의 한계세율에 노출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 있고, 절대 산출세액의 감소효과가 클 수 있으므로 과세단위 변경시 과도한 세부담 경감 방지를 위해 과세단위 변경에 따른 세부담 경감 한도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32]

본 연구는 저출산 문제 대응 목적으로 조세 측면에서 과세단위를 수정할 경우 소득세 산출세액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를 사전적으로 분석하여 정책 입안자들에게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공헌점이 있다. 소득세 과세단위의 변화는 근원적인 세제의 변화이므로 해당 정책을 적용하기 전에 실증적 증거 자료의 검토는 필히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미시 수준 단위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다만, 분석 수준이 산출세액의 감소 정도까지만 분석되었고, 현행 소득공제가 그대로 적용됨을 가정하였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다.

---

31) 2분2승제 도입시 근로소득 부부의 경우 원천징수방안은 부부 중 한 쪽이 주된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방안, 종전과 같이 부부 각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고 2분2승제 선택시 부부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방안이 있으나 두 방안 모두 개인주의보다 납세순응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김완석, 앞의 글, pp.191～192).

32) 예를 들어 프랑스는 가족계수제도로 인한 과도한 세부담 경감 문제 방지를 위한 가족계수제도 통합한도규정을 두고 있다(상한액은 납세자 본인 1(부부합산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총 2)에 추가되는 0.5 가족계수별 조세경감 한도액은 1,678 유로(2023년 기준)이다(The General Tax Code, Article 197 Ⅰ. 2.)).

참고문헌

김완석 · 정지선, 2023,『소득세법론』, 서울 : 삼일인포마인.

김완석, 2005, “소득세 과세단위의 개선에 관한 연구－선택적 2분2승제의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보고서.

박성은, 2023, “출산, 혼인, 양육 관련 조세지원 현황 및 입법 동향”, 국회예산정책처 NABO 재정추계&세제 이슈 (제2023호).

신윤정. 2013. “프랑스 가족 정책 개혁 동향과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안종석 · 박수진 · 이서현, 2017, “주요국의 근로소득세 공제체계 국제비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 (17－03).

안종범 · 전승훈 · 김동준, 2010, “소득세 과세단위 변경의 경제적 효과”, 한국경제연구 (제28권 제2호).

안창남, 2009,『주요국의 조세제도 : 프랑스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오종현 · 서동연 · 허윤영, 2023, “주요국의 소득세 과세단위 비교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 (23－03).

이세진 · 이예지, 2023, “소득세 과세단위 변경 논의의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2124호).

Chen, D. L., 2011, Can countries reverse fertility decline? Evidence from France’s marriage and baby bonuses, 1929－1981,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18 : 253－272.

Gauthier, A. H. ,2007, The impact of family policies on fertility in industrialized countries : a review of the literature.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26 : 323－346.

Laroque, G., & Salanié, B., 2014. Identifying the response of fertility to financial incentives. *Journal of Applied Econometrics* 29(2) : 314－332.

Letablier, M. T., 2008, Why France has high fertility : The impact of policies supporting parents. *The Japanese Journal of Social Security Policy* 7(2) : 41－56.

OECD, 2011, Doing Better for Families.

OECD, 2023, Indexation of Labor Taxation and Benefits in OECD Countries.

PWC, Worldwide Tax Summaries.

Thévenon, Olivier, 2011, Family Policies in OECD Countries : A Comparative Analysi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7(1) : 57－87.

Scenario Analysis of Joint Taxation Split for Addressing Low Birthrate Issues

Ye Ji Lee* · Hyeongtae Cho** · Sang-kwon Cha***

<Abstract>

The issue of low birth rates in our country has long been a serious social problem, and despite various governmental measures, it continues to worsen without any signs of improvement. In this context, there has been criticism that our country ranks low among major OECD member countries in terms of tax support related to children. Some have suggested that more proactive tax support policies should be implemented. One such proposal is to reconsider the individual-based taxation system, which is a principle of our income tax regime, and introduce a joint-splitting taxation system like that of Germany or France.

This study conducts a scenario analysis, dividing households into single-earner and dual-earner households, to estimate the potential changes in tax burdens based on data from the National Tax Panel, assuming our country adopts such a joint-splitting taxation system. The analysis shows that under the current individual-based taxation system, the average calculated tax burden for single-earner households is higher than that for dual-earner households. In such a situation, introducing a couple-based taxation system, like in Germany, would likely result in a greater reduction in the calculated tax burden for single-earner households compared to dual-earner households. Moreover, the reduction rate in calculated tax burden appears to be higher in lower-income brackets, indicating that the tax benefits would not be limited to high-income earners.

Even under a family-based taxation system, like in France, the reduction in the calculated tax burden for single-earner households was significant, with broader income ranges experiencing reductions compared to dual-earner households. Additionally, the larger the number of dependent children, the more pronounced the reduction effect, especially for single-earner households with three or more children,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the incremental value of family coefficients. The reduction in tax burden for high-income earners was also notably larger in single-earner households. If joint-splitting taxation is introduced, these effects of tax burden reduction should be considered, along with potential issues such as the disruption of tax neutrality regarding

* Ph.D., Graduate School of Science in Taxation, University of Seoul, yeji0320@uos.ac.kr
**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Hongik University, cht1212@hongik.ac.kr
*** Assistant Professor, The Department of Global Culture Management, Calvin University

marriage, fairness in taxation, and compliance costs for taxpayers.

This study contributes by providing policy insights to policymakers through a preliminary analysis of how changes in the tax unit, as a measure to address the low birth rate, would affect tax burdens. However,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is that the analysis was confined to the extent of the reduction in calculated tax burdens, and it assumed that current income deductions would remain in place.

〈Key words〉 Low Birth Rate, Individual－Based Taxation, Joint－Splitting Taxation, Couple－Based Taxation, Family－Based Taxation

제 9 분과

조세제도

장소 : 326호 사회자 : **이영한 교수** (서울시립대)

시 간	발표논문 제목	저자 및 발표자*	토론자
16:40 ~ 18:10	다국적 기업 과세소득 안분방식과 공평과세 : 미국 주(State)법인세와 디지털세의 안분방식과 과세단위를 중심으로	**차명기*** (미국 캘리포니아주 조세국) 김수성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	**문예영** (배화여대)
	특정법인을 통한 증여이익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김민경*** (서울시립대) 이상신 (서울시립대)	**박석진** (인덕대)
	농지 관련 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고윤성*** (한국외국어대) 이은자 (이은세무회계)	**홍성훈** (서울시립대)

다국적 기업 과세소득 안분방식과 공평과세

: 미국 주(State)법인세와 디지털세의 안분방식과 과세단위를 중심으로

차 명 기 · 김 수 성

(미국 캘리포니아주 조세국)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

다국적 기업 과세소득 안분방식과 공평과세
: 미국 주(State)법인세와 디지털세의 안분방식과 과세단위를 중심으로

차명기* · 김수성**

〈요 약〉

본 연구는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과 현금 유보를 통한 조세회피 전략에 대한 대안으로 기업집단을 법인세 신고 단위로 하고, 안분방식으로 각 국가별로 과세소득을 배분하는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러 국가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다국적 기업은 조세피난처나 저세율국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기업활동으로 수익을 얻는 과세지국에는 세부담을 줄이고 있는 형태가 만연되고 있다. 자본 수출국도 해외 자회사의 현금성 유보금액 누적으로 세수입이 문제를 앓고 있다. 이에 대해 몇몇 국가들이 개별적인 규정을 두어 다국적기업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중복 노력과 과세국간에 분쟁이 되고 있어 효과가 미비하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는 과세단위를 기업집단으로 하여 안분 계산 방식의 계산 사례들은 현행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해 근본적인 대안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과세단위와 안분방식에 대한 이론적 설명과 취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미국 제도를 중심으로 과세단위 신고가 개별기업이 아닌 왜 특수관계집단 기준인지와 매출기준 안분방식을 적용시에 다국적기업들이 소비지국에 안분율 줄이는 사례등을 판례로 제시하였다.

디지털세 시행초기에는 국가별로 조정과 국가와 다국적 국가간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선진국에서 다국적기업 세무조사기법으로 Arm's length 외에 과세소득 안분방식을 추가하고 있다. 따라서, OECD의 Pillar One/Two 규정 뿐만 아니라 관련 사례와 발생가능한 이론을 연구하여 다국적 기업에 대한 정확한 과세를 도모해야 한다.

〈주제어〉 다국적기업, 과세소득 안분, unity, 공평과세, Pillar I, 기업집단 기준 과세단위, 이전가격

* 미국 캘리포니아주 공무원, myungkic@usc.edu
**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 세무학박사, mercury@tp.or.kr

Ⅰ. 서 론

기업의 이익이 여러 과세지에서 발생된다면 각각의 과세지에서는 과세권이 있다. 각 과세지별로 독자적인 방식으로 과세할 것이고, 기업은 이에 대한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OECD가 다국적 기업에 적용할 디지털세는 기존의 국가별 법인소득세와 별개이며 과세소득을 안분 방식으로 각 과세지별 배분한다. 또한 디지털세의 신고 단위는 개별기업 단위가 아닌 연결집단을 과세단위로 하고, 연결집단에 속한 기업들의 이익을 해당 과세지들에 배분하는 방식의 핵심은 연결집단이익을 공식에 따라 안분하는 것이다. 연결대상 기업들의 이익을 안분 방식으로 각 국가가 가져가는지(배분)가 디지털세 제도의 근본 취지이다. 여기에서 공평이라는 것은 각 과세지별로 연결집단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다국적 기업에게 적절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OECD가 추진하는 디지털세는 이론적으로 모든 연결집단이익이 공식에 따라 배분되고 동일한 세율 등이 적용되므로 누락되는 이익이나 이익당 세액[1]도 동일하므로 현법인세 규정을 보완시켜 공평하다고 볼 수 있다.

디지털세에서 사용하는 안분과세방식은 이론적으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를 통한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을 제거할 수 있으며, 또한 저세율국에 유보된 현금성 잉여금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 제도이다. 이는 과세단위를 개별기업이 아닌 모기업과 그 특수관계법인으로 확대하여 기업집단군이 과세단위가 되게 하고, 이 기업집단군의 과세소득 합을 안분요인에 의해 각 과세지 별로 배분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현행 추진하려는 디지털세는 기존 법인세에 대한 추가적인 법인세이므로 이전가격 통제와 현금유보 과세에 미비한 효과가 있으나 이를 기존 법인세에 대체하거나 국제거래의 조사기법으로 적용한다면 가능하다.

기업집단기준 법인세 신고와 안분방식으로 과세표준을 배분하여 각 과세지 별로 분배하는 것은 미국 주 정부에서 100년 넘게 사용한 방법이다. 국제 조세상의 다국적 기업의 여러 국가에 과세지를 두므로 Multinational taxpayer이고 미국의 여러 주에 과세지를 두는 경우는 Multistate taxpayer가 된다. 미국 주는 독자적인 정부이므로 각각의 주가 과세지가 되고, 여러 주에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집단[2] 단위신고와 안분방식으로 과세소득을 계산하여 왔다. 이는 다국적 기업이 여러 자회사를 설립하여 전세계 국가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OECD와 EU에서는 미국 주 (State)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 방식을 모델로 하여 EU국가간의 법인세 계산과 디지털세를 실행 및 추진하고 있다.

---

1) Pillar One 에서 과세지별 실효세율이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에 Pillar Two 단계에게 추가세액을 부과한다.

2) 국제거래 시 다국적 기업과 특수관계법인과 미국 내 여러 주에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과 그 특수관계법인은 안분방식 개념상 동일하므로 이를 통일하여 다국적 기업, 기업집단, 연결대상기업으로 칭하도록 한다.

이론적으로는 매우 간단해 보이나 여러 과세지들에 과세표준으로 배분하는 방식은 복잡한 상황들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OECD가 추진하는 디지털세의 근본 개념인 과세단위 신고와 안분방식에 대해 이론적인 접근과 이들이 미치는 영향 중 일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기업집단 기준 과세단위

OECD의 안분방식을 살펴보면서 왜 다국적기업 및 그 특수관계법인을 포함한 기업집단의 이익을 배분대상으로 하는 지에 이해가 필요하다. 이는 연결회계상 연결대상 기업의 개념에 나오듯이 모기업과 그 특수관계법인들은 서로 간 내부거래나 영향을 주는 활동을 하고 이익을 공유하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시에서도 경제 공동체로 하여 신고단위를 전체로 보아야 공정한 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1. OECD의 과세단위(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연결대상 기업)

기업재무제표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며, 경제적 실체는 형식상의 법인과는 다를 수 있다. 투자자(투자기업)가 피투자기업에 지배력이 있다고 본다면 단일 경제실체 구성하게 되므로 기업집단을 단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OECD가 추진하는 디지털세는 근본적으로 연결대상기업을 과세단위로 하고 있다. 기업들 사이에는 지배력(Control)이 있는 경우 연결회계 대상이 된다. 즉, 지배력은 연결대상기업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는 IFRS 10의 내용에 근거하여 제정하였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를 따르면 동시에 IFRS 10을 따르는 것이 된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내용으로 연결대상기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준서에서는 보고기업이 하나 이상의 다른 기업을 지배하는 경우에 연결재무제표를 표시하고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업(피투자자)에 관여하는 성격과 관계없이, 투자자는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평가하여 자신이 지배기업인지를 결정한다.[3]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힘으로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자를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지배한다. 따라서 투자자는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피투자자를 지배한다.

(1) 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있다. (힘)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지시하는 권리가 힘이다. 통상 기업체 의결권으로 획득이 가능하다.

(2)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다. (이익)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관여하여 투자자의 이익이 피투자자의 성과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투자자는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3) 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이 있다. (힘과 이익의 연관)

투자자가 피투자자에게 대해서 힘(권리)이 있고 피투자자의 활동에 관여하여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또한 자신(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도록 권리를 사용한다.

2. 미국 주법인세법상 과세단위 : Unity

가. 과세소득의 과세지 별 안분방식

미국 주정부(과세지)에서는 처음부터 기업집단을 주법인소득세 과세단위로 한 것이 아니다. 초기에는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 과세지에 과세권이 있고, 또한 개별 기업단위로 세액을 계산하였다. 1884년 Union Pacific Railway Co판례[4]는 철도서비스가 여러 주 들을 경유하면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경유하는 주정부들(과세지)에 과세할 권리가 있음을 판결하였다. 판결문에서 철도서비스의 가치는 다른 고정자산과 달리 전체 운행구간에 의한다.[5] 철도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특정 과세지에 전체 운행구간 중 10%를 경유한다면 전체 구간을 단위로 10% 만큼에 대한 해당 주에서는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동 판례는 기업의 고정사업장이 아닌 철도서비스의 가치가 만들어지는 과세지들에 과세권이 있다는 것이다.

---

4) Union Pacific Railway Co. v. Ryan (1884) 113 U.S. 516.28 L. Ed. 1098, 5 S. Ct. 601

5) Union Pacific Railway Co. 판례. “The court noted that a railroad’s value, unlike land or buildings, depends upon the whole line as a unit ……”

나. 법인세 신고단위

과세단위에 대해 1941년 butler bros. 판례[6]에서는 여러 과세지에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해 여러 과세지에서의 활동을 단일과세 단위인 unity으로 보고 이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원고기업은 캘리포니아가 아닌 타주에서 설립되었고, 도매업을 주업으로 총 7개의 도매창고를 각각의 주들에 두고 경제활동을 하였다. 1935년 캘리포니아 도매창고에서는 $82,851의 적자가 발생하여 최저한세인 $25만을 납부하였다. 캘리포니아주 과세당국은 전체 7개 창고에서의 이익이 $1,149,677이므로 기업 활동에 기여하는 요소를 기준으로 캘리포니아 안분비율 약 8%에 해당하는 $95,000[7]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3,798를 고지하였다. 원고법인은 다른 6개 사업장의 이익은 캘리포니아의 손익과 합하여 안분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법원은 원고 기업의 7개 사업자의 성격은 ① 사업장간 소유권, ② 사업장간 구매, 광고, 회계, 경영 등의 운영, ③ 사업장들 간 경영진과 운영체계의 일원화로 주 법인세 신고단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원고기업의 사업장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철저하게 다른 주(다른 과세지)와 분리된 사업장이어서 그 이익이 개별회계방식으로 명확하고 정확하게 나온 것인 경우에만 개별사업장단위로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판결에서는 원고기업은 여러 주에 걸친 사업장들과 함께 여러 과세지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모든 기업 활동 중에서 해당 주 안에서 기업 활동만을 명확하게 분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므로, 전체 관계 사업장들을 주 법인세 신고 단위로 하여 적절한 요인을 바탕으로 공정한 배분방식을 채택해야한다고 했다.

1947년 Edison California Stores 판례[8]에서는 여러 관계법인들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을 결정하였다. 판례에서 원고인 “Edison California Stores”은 15개의 관계법인을 소유하고 있고, 캘리포니아주 뿐만 아니라 다른 주에서도 기업 활동을 하고 있었다.

법원은 원고 기업 단위의 성격은 ① 관계 기업 간 소유지분, ② 관계기업 간 구매, 광고, 회계, 경영등의 운영, ③ 관계기업들 간 경영진과 운영체계의 일원화로 주 법인세 신고단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원고기업이 해당 주에서 철저하게 다른 주(다른 과세지)와 분리된 기업이어서 그 이익이 개별회계방식으로 명확하고 정확하게 나온 것인 경우에만 개별기업단위로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법원에서는 원고기업은 관계기업들과 함께 여러 과세지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모든 기업활동 중에서 해당 주 안에서 기업활동만을 명확하게 분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므로, 전체 관계기업들 주 법인세 신고단위하여 적절한 요인을 바탕으로 공정한 배분방

6) Butler Bros. v. McColgan, 17 Cal. 2d 664.

7) 1,149,677의 에 기타 요인이 고려된 후 약 8%를 적용함.

8) Edison California Stores v. McColgan (1947) 30 Cal.2d 472,183 p.2d 16

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했다.

Superior Oil Co. v. Franchise Tax Board판례[9]에서는 법인이 여러 주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각 사업장이 다른 과세지(다른 주)에 있다하더라도 각 사업장간에 기여나 의존관계(Contribution or Dependency)가 있는 경우에 전체 사업장을 하나의 단위로 보아 신고해야 한다. 원고 법인은 켈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본사는 주로 제조와 캘리포니아 판매를 하고, 다른 주의 사업장에서는 판매만을 하였다. 원고법인은 캘리포니아 주에 주내 이익만을 신고하였으나, 법원은 과세표준을 전체 사업장간에 상호 기여나 의존관계가 존재하므로 전체 이익을 공정한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그 이유로는 여러 주에 사업장들 간에 상호 교류 및 의존을 하고 있으므로 특정주만의 이익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기업들의 경제활동이 한 개의 기업으로 한 과세지에서만 했었지만, 한 개의 기업이 여러 주(과세지)에서 영리활동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기업이 여러 기업들을 소유하는 집단형태로 영리활동을 여러 주에서 하는 게 보편화되었다. 주 정부에서는 공정한 방식으로 과세권을 갖기 위한 입법을 하였으며, 연방정부에서는 Commerce clause라는 규정 하에 “공정한 배분(fairly apportioned)된 방식” 만이 합헌임을 명시하였다.

다국적기업들과 같이 미국 내 기업들은 여러 주들에 걸쳐 경제적 활동을 하여 이익을 창출한다. 경제활동이 여러 과세지에서 발생하는 경우 과세소득에 대해 과세권은 누가 가지는지와 그 과세지에 얼마만큼의 과세소득을 배분해야하는지가 100여년에 걸쳐 연구되어 왔다. 위에서 언급한 한 개 이상의 과세지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법인들의 법인세 신고단위에서 보듯이 기업의 소유형태 및 통제 등으로 개별 회계를 바탕으로 계산된 과세 소득은 명확성과 정확성에서 신뢰가 떨어지므로 특수관계 법인을 한 개의 과세 단위로 신고하는 것이 합헌임을 대법원은 인정하고 있다.

Ⅲ. 과세소득의 안분방식

과세소득을 각 과세지 별로 안분하는 방법은 특정 과세지의 소득만을 별개로 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다국적기업 전체 과세소득을 합하여 각 과세지 별로 분배하는 것이다. 여러 과세지에서 이익활동을 하는 다국적 기업이 특수 관계기업 간 이익활동을 공유하는 경우에 적합한 과세지 별 과세소득 추정방식이다. 방식은 전체 안분 요인 금액에서 해당 과세지에

9) Superior Oil Co. v. Franchise Tax Board (1963) 34 Cal. Rptr. 545

해당되는 요인액 비율을 계산하는 공식으로 이루어진다. 과세소득의 안분과정의 목적은 여러 국가에서 발생되는 다국적 기업의 과세소득이 특정 국가(과세지)에서 기인되는 것을 공정하게 해주는 것이다. 과세소득은 특수관계법인 들의 과세소득의 합계이고, 각 국가별(과세지 별) 단독 회계자료의 연결 이익을 근거로 과세지 환율[10]을 적용한 것이므로 과세소득 자체는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각 과세소득을 국가(과세지)별로 공정하게 배분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는 있는 것이다.

다국적기업군에 대한 과세소득의 안분방식 분석은 무엇이 요인인지, 안분 공식에는 어떤 요인이 포함되었는지, 각 요인에 얼마의 가중치가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1. 안분방법

과세지에서는 기업이 창출한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과세지에서 이익을 창출하고 또한 이익창출활동이 특수관계법인 간에 공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어떻게 안분 하는지 다음과 같다.

(1) 다국적기업이 전체 과세지에서 하는 영리활동
(2) 다국적기업이 전체 과세지에서 하는 총 기업단위 활동 중,
(3) 해당 과세지 활동 비율
(4) 위 비율에 기업전체 과세소득을 적용하여 과세지에 소득을 분배

2. 안분요인

이론적으로 여러 과세지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각각의 과세지에 과세소득을 배분하는 게 공정한지에 대해서는 이익을 창출하는 활동이 고려되어 왔다. 기업의 가치 활동은 기업이 창출한 재화와 용역을 구매자인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즉, 기업이 물적 설비와 인적 설비를 바탕으로 재화와 용역이 만들어지고, 이런 가치는 고객에게 인도되거나 고객이 사용함으로써 기업의 이익이 완성된다. 물적 설비는 자산을, 인적 설비는 급여를, 고객이 치루는 대가는 매출이 되므로, 3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이익을 각각의 과세지에 배분하는 것이 보편화 되어 왔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에서는 3요인으로 배분하는 방식은 연방

10) 연결회계 작성시 환율을 과세지 화폐의 환율로 할지 아니면 국제 화폐(미화등)로 할지도 결정해야 한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과 그 이유로는 자산, 급여, 매출이 기업의 이익을 창출에 관여하는 요인이라는 점이라 설명하고 있다.[11] 최소한으로 연방헌법이 제한하는 것은 the Commerce Clause과 Due Process Clause 하에서 공정하게 배분된 것 이다. 특히 연방대법원은 특정 요인이 위헌인지에 대해서는 심리하는 것을 거부하고, 각 안분 요인의 결정에 대해 주(State) 행정부에게 재량이 있다고 판단한다.[12]

기업이 창출하는 가치를 만들어 주는 주요 요인인 자산, 노동, 그리고 판매를 동등하게 배분하는 기준으로 한다면, 특수관계법인 들의 과세소득을 자산요인 1/3, 노동 요인 1/3, 매출 1/3로 하여 배분한다.

> 해당 과세지의 안분율
> : (해당 과세지 자산액/전체 자산액＋해당 과세지 급여액/전체 급여액
> ＋해당 과세지 매출액/전체 매출액)/3

가. 자산 (무형자산(특정산업은 제외), 금융자산 제외) 요인

자산요인의 분자와 분모는 자산 평균가액으로 하는데, 기초와 기말 잔액의 평균액이다. 분자는 해당 과세지에서 사용되는 자산이고, 분모는 납세자인 전체 기업군의 자산합계이다.

나. 급여 (외주 용역 제외) 요인

급여는 해당 납세자에게 개인적인 노동을 제공하고 받는 임직원의 모든 보상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위치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주 용역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미국에서 연방정부 실업급여보험료 금액의 기준이 되는 임직원 수당을 급여로 사용한다. 미국주조세협의회의 급여 판정에서는 어떤 주의 급여로 할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순차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1) 과세지에서 근무를 전부하는 경우
(2) 과세지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이 다른 주에서 과세지 주의 업무에 부수적인 업무를 하는 경우
(3) 과세지주와 다른 주에서 근무한다면, 급여는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ㄱ) 임직원의 기본 활동지인 과세지

11) Container Corp of America v Franchise Tax Bd, 463 US 159, 170 (1983).
12) Moorman Mfg Co v Bair, 437 US 267 (1978)

ㄴ) 임직원 기본 활동지가 없다면, 지시되거나 통제하는 과세지.

(4) 임직원의 기본 활동지나 지시나 통제되는 장소가 없다면, 임직원의 거주지

다. 매출(도착지(소비지)) 요인

OECD에서는 도착지(소비지) 기준 매출요인을 안분공식의 단일요인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분자는 과세지에서 판매되는 판매금액이고, 분모는 납세자가 판매하는 매출액 총액이다. 매출의 범위는 납세의 기업 활동 과정에서 거래에서 받는 모든 금액(할인이나 반환은 제외)이다. 특정 거래 시 분자의 금액을 줄어들거나 분모금액을 늘어난다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유리하나 해당 과세지에서는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 매출 요인 방식과 관련된 거래 중 문제가 된 몇몇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헷지 거래액에 해당하는 분모 (매출가격의 폭락위험 방지위한 금액 자산 거래)

가격폭락이 심한 재화나 용역을 거래하는 다국적기업이나 여러 외국환을 통한 매출이 많은 다국적기업의 경우에는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출액에 상당하는 헷지 금융상품을 거래한다. 헷지 거래로 통상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고, 헷지 거래금액은 실제 매출액과 비슷할 수도 있다. 또한, 특정 과세지에서만 발생한다. 헷지거래의 과세지가 저세율 과세지라면 기업입장에서는 이를 악용할 소지도 있을 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General Mills[13] 판례를 살펴보면, General Mills는 곡물을 재판매하거나 밀가루를 제조하는 기업이다. General Mills는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곡물과 밀가루를 대상으로 금융선물계약을 체결해 왔고, 동 선물거래금액을 매출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선물계약금액을 매출에 포함시켜 분모는 거의 두 배가 늘어났고, 분자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판매요인의 비중은 심각하게 줄었고, 캘리포니아주 입장에서는 왜곡된 배분으로 보아 분모에 헷지거래액이 포함되는 것을 거부하였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판매금액이 아닌 거래이익을 매출 요인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전체 선물거래금액이 매출요인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로 헷지 목적의 선물거래와 실제 거래는 기업 활동의 통합(Integral)된 부분이며 기업에게 필요한 거래이므로 캘리포니아 정부의 주장을 거부하였다.

---

13) 208 Cal App 4th 1290 (2012),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

(2) Throwback Sales Rule

미국 주별 소득세에 대한 규정은 각각 다른데, 세율뿐만 아니라 소득세가 없는 주[14]도 있다. 특정 기업의 과세권 관련 Nexus(연계점)[15] 규정이 있는데, 다른 주에서만 활동하는 판매기업이 해당 주에 기업활동관련 직접적 기본적 접촉이 없는 경우에 과세권이 없다는 연방 Public Law (PL) 86－272 규정[16]이다. A주에서 출발한 재화가 B주에 판매된다면 기업입장에서는 매출요인에 해당되는 만큼 과세소득을 B주에 배분하여 B주 세율에 따라 주법인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이 B주에 Nexus가 없다면 B주 정부입장에서는 연방헌법에 따라 과세권이 없다. 그렇다면 B주에 판매된 만큼 기업입장에서는 안분비율이 줄어들어 전체적인 납부액이 줄 것이고[17], 이를 악용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B주에 판매된 금액이 A주의 매출로 본다는 게 “Throwback Rule” 개념이다.

(3) Throw－out Sales Rule

“Throw－out rule”은 위에서 설명한 상황인 도달지에서 과세가 되지 않는 경우 매출요인 안분계산 시, 동 매출액만큼 분자와 분모에서 줄여서(throw out) 배분율의 합을 100%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Throwback과 throw－out 규정은 매출 중에서 일부가 분자에서 제외되는 “Nowhere sale (income)”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18]. 즉, “Throwback Rule”은 특정 과세지에 도달된 매출이 과세가 되지 않는 경우 출발지 과세지의 분자에 포함시켜 출발지 과세지에서 과세하는 것이다. 이와 다르게 “Throw－out rule”은 특정과세지에 도달된 재화의 매출에 대해 과세지에서 과세가 되지 않으면, 매출요인의 분자와 분모에서 동 금액만을 줄여 동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권이

14) Alaska, Florida, Nevada, New Hampshire, South Dakota, Tennessee, Texas, Washington, and Wyoming

15) 미국 연방헌법은 주간 통상(Interstate commerce)에 대한 규제 권한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Nexus(연계점) 규정이다. 이는 특정 주와 다른 주의 거주민(법인)과 기본적인 연관이 없으면 특정주는 그 비거주민에 대해서 권한(Jurisdiction)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16) Public Law (PL) 86－272 potentially applies to companies located outside of California whose only in－state activity is the solicitation of sale of tangible personal property to California customers. Businesses that qualify for the protections of Public Law 86－272 are exempt from state taxes that are based on your net income.

17) “No where sale (income)” : If a company ships tangible personal property to a state but does not have “nexus” (a connection requiring an income tax filing) in that state (e.g., due to Public Law 86－272 protection), then those sales would not be included in the numerator of any state's sales factor, thus creating nowhere sales.

18) Throwback과 throw－out rules 개념은 OECD Pillar II 최저한세 규정에도 있다.

있는 과세지들에 동 매출액이 분배되게 된다.[19] 이해를 돕기 위해 계산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 예시) 기업 甲은 총 매출이 100인데, 乙 과세지에 20, 丙 과세지에 40, 丁 과세지에 50 만큼 매출하였다. 기업 갑은 을 과세지에 연방규정인 PL 86－272에 따라 기본적인 "Nexus"가 없어서 을 과세지는 갑 법인에 과세권이 없고, 병과 정 과세지는 이에 해당 되지않아 정상적인 과세권이 있다. 모든 재화는 戊 과세지에서 재조되어 보내졌다.

1) 위 가정 아래 갑법인 과세소득 안분을 위한 각과세지에서 Throw back/throw－out 규정 없는 경우 매출안분 요인 :

> 을 과세지 : 0% (0/100), 병 과세지 : 40% (40/100), 정 과세지 : 50% (50/100), 무 과세지 0%

2) 위 가정 아래 모든 과세지에서 Throwback rule이 적용되다면, 갑 법인 과세소득 안분을 위한 각 과세지에서의 매출안분 요인 :

> 을 과세지 : 0% (0/100), 병 과세지 : 40% (40/100), 정 과세지 : 50% (50/100), 무 과세지 : 10% (10/100)

3) 위 가정 아래 모든 과세지에서 Throw－out rule이 적용된다면, 갑 법인 과세소득 안분을 위한 각 과세지에서의 매출안분요인 :

> 을 과세지 : 0% (0/100), 병 과세지 : 44.4% (40/90), 정 과세지 : 55.6% (50/90), 무 과세지 : 0% (0/100)

4) 위 가정아래 병, 정 과세지는 Throw－out rule을 무 과세지는 Throwback rule이 적용된다면, 갑 법인 과세소득 안분을 위한 각 과세지에서의 매출안분요인 :

> 병 과세지 : 44.4% (40/90), 정 과세지 : 55.6% (50/90), 무 과세지 : 10% (10/100)

---

19) 동 상황에서는 과세권이 없는 매출액이므로 원래부터 분자에 배분되는 금액은 없으므로 규정으로 적용시 분모에서 동 금액이 들어들므로 동 기업에 과세권이 있는 과세지에서 그 부분만큼을 나눠갖는 효과가 생긴다.

위 예시에서 보듯이 “Nowhere sale(income)” 발생에 대해 각 과세지가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2), 3)의 경우에는 매출안분요인의 합계가 100% 이나, 각 과세지들이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4)의 경우와 같이 110% 또는 100% 보다 낮은 비율이 발생될 수 있다. 미국의 각 주들은 “Nowhere sale(income)” 발생에 대한 규정으로 대부분 Throwback rule 적용하고 있으나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주들도 있다. 이렇듯 통일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다국적 기업입장에서는 주별 안분요인율의 합계가 100%가 아니다. 그럼 왜 이런 통일되지 않은 규정을 서로 적용하는지에 대해선 각 주별 재정 수준이나 기업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업입장에서는 각 주별로 서로 다른 법인세 신고를 준비 작성해야하는 고충이 발생한다.

(4) “No where sale(income)”과 기업집단 별 신고 시 안분 문제

안분방식에 따른 과세지 별 과세소득의 배부는 여러 과세지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다국적기업이라 함은 모기업뿐만 아니라 그 특수관계법인 들을 포함한다. 위의 예에서 보듯이 “nexus”라는 연계점 개념에 따라 특정 과세지가 기업에 따라 과세권이 없을 수 있다. 그렇다면 특정과세지에서 다국적 기업군내 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권이 없고, 그 외 기업들에 대해선 과세권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안분계산 해야 하는지를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966년 Joyce사[20]는 오하이주에서 캘리포니아주로 신발을 판매했으나 직접적인 Nexus(연계점)는 없었고, 모회사인 US Shoe사는 기업집단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주에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US Shoe사는 기업집단 중 일부 기업은 캘리포니아주에 매출상 연계점이 있었다. 여기에서 논점은 Joyce사는 오하이주에서 캘리포니아로 신발 판매가 매출 요인 계산 시 분자에 포함되는지 였다. 캘리포니아주 정부에서는 미국 연방 규정인 PL 76－272의 해석에 대해, 기업군 신고 시 다른 기업이 연계점이 있더라도 Joyce사 자체가 연계점이 없으므로 Joyce사 매출을 분자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22년 뒤인 1988년도에 기업집단으로 신고한 Finnigan 기업군내 관계 기업인 Disc사가 캘리포니아에서 다른 주로 재화 매출시 을 주에서 연계점이 없었고, Finnigan사는 을 주에 연계점이 있었다. Finnigan사는 기업집단으로 신고 시 Disc사의 B주 매출을 매출요인의 분자에서 제외시켜 계산하였다. 캘리포니아주 소득세청은 이를 “No where sale(income)”으로 보아 throwback rule 을 적용하여 캘리포니아의 매출요인의 분자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의신청기관(The Board of Equalization)에서는 기업집단 중 일부기업이 B주에 연계점이 있기 때문에 Disc사가 B주에

20) “The Appeal of Joyce Inc” 1966년 캘리포니아주 행정부 내 이의신청심판기관인 The Board of Equalization 에서 결정한 내용임.

연계점이 없다하더라도 이를 매출요인의 분자로 포함해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이 해석으로 인해 과세단위 기업군 중 하나라도 연계점이 있다면, 과세집단내 연계점이 없는 기업의 매출도 안분대상이 되게 되었다.

3. 과세지(국)과 기업 입장에서의 안분요인 선택

과세지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는 우량한 기업을 과세지에 유인 또는 유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과세소득이라는 가치를 창출하는 요소로 유형자산, 인적 자원, 판매활동으로 보고 있다. 과세지 별로 각각의 가치창출 요인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뉴욕주나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자체 판매시장이 크므로 매출요인을 중요시 할 수 있고, 자체 시장 규모가 작은 과세지인 경우에는 매출요인 보다는 유형자산이나 인적 자원을 중요시 할 수 있다.

다국적기업 입장에서도 각 과세지의 안분방식에 따라 조세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 다국적기업 입장에서는 세율이 낮거나 없는 과세지를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현재 9개 주들이 주정부 법인소득세가 없으며, 각 주별로 다른 세율과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 9개 주나 세율이 낮은 주들로 다국적기업들이 이전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주정부들이 시행하는 안분요인에 대한 계속적인 변화로 저세율 과세지로 이전하는 장점이 줄어들었다. 그 이유는 주정부들이 3 가지 안분요인 중, 매출요인만을 고려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주정부에서는 소비 시장의 비탄력성과 기업 유치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3가지 요인 중에서 점차로 매출 요인의 비중을 늘이기 시작하였다. 초기에 3 요인을 1/3씩 균등한 비중으로 하여 안분율을 계산하였으나, 매출의 이중 가중 방식 (매출 요인 2/4, 자산요인 1/4, 급여요인 1/4)으로 한 후 2010년 이후 부터는 매출요인만으로 안분공식을 계산하여 과세소득을 배분하게 되었다.

매출요인에 비중을 점차 두는 이유는 짧은 기간 안에 소비 시장규모의 변동이 크지 않다는 점(비탄력성)이다. 왜냐하면 소비시장은 기본적으로 거주민과 영리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서 세율이라는 한 가지 요인 때문에 다른 과세지로 기업이나 거주민이 갑자기 이동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초기에는 소비시장이 큰 과세지에서 매출요인의 비중을 늘이기 시작하였다. 그 이유는 자산요인이나 급요요인 보다 매출요인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였다. 다른 주에 비해서 특정과세지에서 자산요인과 급여요인에 대한 비중이 크다면, 기업입장에서는 해당 과세지에서 영리활동을 할 유인이 줄어든다. 다른 여건이 동일하다면 자산요인과 급여요인이 적고, 매출요인이 큰 과세지로 사

업장을 이전할 유인이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모든 과세지가 매출요인만을 안분기준으로 한다면, 결국 소비시장이 큰 과세지가 큰 이득을 볼 것이다. 이를 예시로 이해하고자 한다.

> 갑기업은 매출이 1,000, 유형자산이 1,000, 급여가 1,000, 과세소득이 500이다. 을 과세지에 매출 500, 유형자산이 300, 급여 300, 병 과세지에 매출 300, 유형자산 400, 급여가 300, 정 과세지에 매출 200, 유형자산 400, 급여가 400이라고 가정한다.

아래 몇 가지 시나리오 따르면 각 요인별 비율과 안분율, 과세소득 500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나온다.

가. 을, 병, 정 과세지에서 3요인(매출, 자산, 급여) 균등 안분 시 과세소득 배분 :

〈표 1〉 3요인 동일 비율시 배분

구분	을 과세지	병 과세지	정 과세지
매출요인	500/1000	300/1000	200/1000
자산요인	300/1000	400/1000	400/1000
급여요인	200/1,000	300/1,000	400/1,000
안분율 (100%)	33.3%	33.3%	33.3%
과세소득 배분액	166	166	166

나. 을 과세지는 매출요인만, 병과 정 과세지는 3요인으로 과세소득 배분 :

〈표 2〉 안분요인이 과세지별 다를시 배분

구분	을 과세지	병 과세지	정 과세지
매출요인	500/1000	300/1000	200/1000
자산요인	–	400/1000	400/1000
급여요인	–	300/1,000	400/1,000
안분율 (100%)	50.0%	33.3%	33.3%
과세소득 배분액	250	166	166

다. 을, 병, 정 과세지는 모두 매출요인만으로만 과세소득 안분 :

〈표 3〉 매출 기준 안분요인만으로 배분

구분	을 과세지	병 과세지	정 과세지
매출요인	500/1000	300/1000	200/1000
자산요인	–	–	–
급여요인	–	–	–
안분율 (100%)	50.0%	30.0%	20.0%
과세소득 배분액	250	150	100

을과세지는 소비시장이 크고, 기업의 영리활동은 중간인 과세지이고, 병 과세지는 중간 정도의 소비시장과 영리활동이 있는 과세지이고, 정 과세지는 소비시장은 작고 영리활동은 큰 과세지로 가정하였다. 초기에는 기업 가치 창출 요인인 매출, 자산, 급여를 동등한 비중으로 하여 안분율을 구할 경우 과세소득의 안분율이 동일하므로 과세소득이 동등하게 배분된다. 즉, 기업가치 창출활동의 합계가 동일하다면 과세소득도 동일하게 배분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각 과세지에서 점차 매출 요인의 비중을 늘리기 시작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자산과 급여요인보다 소비시장이 큰 주에서는 당연히 매출 요인의 증가가 세수 증가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리활동 요인(자산, 급여)이 매출 요인보다 큰 과세지인 경우에도 점차 매출요인의 비중을 늘이기 시작하였다. 그 이유로는 기업입장에서 본다면 소비시장이 큰 과세지에는 매출액 기준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는데, 영리활동을 많이 하는 과세지에서 계속하여 3요인에 대해서 과세한다면 위 사례 2와 같이 배분율이 100%을 넘게 된다. 만약 기업이 3요인을 기준으로 하는 과세지에서 영리활동을 하다가 매출요인만 안분하는 주로 이전한다면 조세부담이 16.6%가 줄어들게 된다. 종업원 입장에서도 소비시장이 큰 과세지가 생활여건이 좋으므로 선호한다. 그렇다면 기업은 매출활동에 안분요인을 적용하는 과세지에 영리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소비시장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판매를 해야하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영리활동을 이전하는 수 밖에 없다. 이렇듯 소비시장이 작은 과세지에는 기업을 계속 유치하고 유인하기 위해서 사례3 과 같이 세수가 줄더라도 안분방식을 매출요인만으로 바꿀 수 밖에 없다. 즉, 자산, 급여, 매출의 기업 가치 창출과 관련된 요인으로 과세소득을 배분 받을 때보다 병 과세지는 9.6% (166 → 150), 정 과세지는 39.8% (166 → 100)만큼 세수가 줄어들게 된다. 이를 국제조세에 적용한다면 소비시장이 작은 국가 또는 생산활동에 비해서 소비시장이 작은 국가등에 안분 방식의 과세배분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OECD가 추진하는 디지털세는 미국의 주 법인세상의 과세소득 안분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고 있으나, 매출요인만을 안분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시장과 생산 요인

의 규모에 따라 과세지국별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자명하다.

Ⅳ.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이전가격, 현금유보)에 대한 대안

국제조세 입장에서 본다면, 미국의 연방법인세율이 과거 35% 까지 되었으므로 다국적 기업들은 저세율국으로 과세소득을 이전하는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조세전략을 행해왔다. 이로 대해 미국 정부등은 과세지별 영리활동에 맞는 소득신고와 현금성 잉여금에 대한 공정한 과세가 문제시 되어왔다.

OECD가 추진하는 디지털세는 다국적 기업 중 특히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조세피난처에 고정사업장을 두면서 실제 영리활동을 하는 과세지에는 과세소득을 적게 신고하여 조세피난처에 소득을 이전하는 것에 과세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제조세와 취지는 비슷하나 중점적인 규정은 대규모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영리활동 과세지에 공평한 소득신고와 과세권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국가별 법인세와는 별개로 추가적인 법인세성격이므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 전부 대응하는 규정이 될 수는 없다.

다국적기업이 특수 관계법인을 통한 이전가격으로 조세회피를 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방식이나 국제거래 조사 조사방법으로 OECD가 추진하는 국제적인 합의의 디지털세와 같이 안분방식에 따라 과세소득을 분배한다면 이론적으로 이를 방지할 수 있을 수 있다. 이전가격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각 과세지국별 법인세율이 차이가 있다는 것과 각 국가별 과세지 기준이 고정사업장이라는 점이다. 기업입장에서는 이를 회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저세율국의 특수관계법인을 통한 매출 가격의 이전과 유보된 현금성 자산의 미배당이다.

다국적기업에 대한 안분방식은 과세소득의 신고 단위가 모든 특수관계법인을 포함하기 때문에 국제거래에서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는 모두 상계된다. 이로 인해 다국적 기업 입장에서는 이전가격에 대한 유리한 점이 없어진다. 또한 과세소득은 다국적기업의 모든 특수관계법인의 소득 합계이며 이를 국가 간의 매출기준으로 분배하기 때문에 해외 특수관계 자 회사들이 배당을 하지 않더라도 당기 미배당 이익도 과세소득에 포함이 된다. 소비 시장 자체는 비탄력적이고 기업입장에서는 특수관계법인간 매출 조작이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조세회피전략이 어렵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의 공정한 조세에 문제가 되는 가격이전을 통한 조세회피를 막을 수 있다는 점과 저 세율에 유보된 미배당잉여금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이다.[21)]

21) 안분방식 이후부터 발생된 당기 현금 유보액만 해당되므로 기존에 미배당된 현금 유보금액은 일시적으로 과세해야 한다. 미국은 2017년부터 미국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보유한 현금성 유보금액에 대해

1. 안분방식 과세소득의 과세지별 분배의 장점

가. 해외 특수관계법인의 현금유보 형태(과세이연)의 조세회피－내부거래가 없는 경우

저세율국에 당기이익을 유보하는 경우 현행 법인세규정과 매출기준 안분방식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사례로 살펴본다. 갑법인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네덜란드와 싱가폴에 100% 자회사인 설립하고 모든 서비스를 자회사가 제공하고 있으며 소비시장별로 각 국가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내고 있다. 현재 미국에 60%, 네덜란드 10%, 한국에 30%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3년도에 총 매출은 1,000이고 과세소득은 500이다. 특수관계법인 간 내부 거래는 없다고 가정한다.

〈표 4〉 개별 기업의 세액계산(내부거래 없는 경우)

과세국 (세율)	미국 (30%)	네덜란드(5%)	싱가폴 (5%)	합계
매출	500	300	200	1,000
비용	400	60	40	500
세전이익	100	240	160	500
법인세	30	12	8	50
세후이익	70	228	152	450

(1) 현행 법인세법에 의해 배당을 100%, 50%, 0% 하는 경우 자본 수출국(미국)의 과세소득 및 세액

〈표 5〉 해외자회사가 배당시 모기업의 세액계산

배당율	100%	50%	0%
영업이익	100	100	100
배당수익	380	190	0
Gross－up 25%	－	－	－
세전이익	480	290	100
법인세액	144	87	30
외국납부세액공제	20	10	0
세후이익	356	213	70
당기 해외유보액	0	190	380

외국납부세액은 100% 공제되고, Gross－up 금액은 없다고 가정한다.

과세소득에 포함시켜 과세하고 있다.

현행 법인세 규정에서는 내부거래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에 해외 자회사의 비배당 이여금 (현금 유보액)에 따라 자본수출국의 세수입에 영향을 준다. 과세이연된 해외 유보액이 최종적으로 자본수출국에게 유입된다면 세수입이 자본수출국에만 증가된다. 그렇다면 해외자회사 및 미국 모회사의 영리활동이 전세계에서 이루어졌는데, 세수입이 자본수출국과 조세피난처에만 된다면 공평과세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다국적기업의 영리활동이 된 소비지국에서도 당연히 세수입을 공유해야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기존 법인세 규정에서는 각국가별 별도의 노력[22]을 해야만 이런 세수입을 공유할 수 있으며, 그런 개별적 노력은 많은 비용이 발생된다.

(2) 법인소득을 매출요인 안분방식에 연결대상 기업단위로 과세소득을 배분하는 경우

〈표 6〉 연결대상기업단위로 안분방식으로 세액계산

매출지 (세율)	미국 (30%)	네덜란드 (5%)	한국 (20%)	합계
연결집단 영업이익	500	500	500	500
매출기준 안분율	60%	10%	30%	100%
배분된 과세표준	300	50	150	500
법인세액	90	2.5	30	122.5
법인세차감후 이익	210	47.5	120	377.5
당기 해외유보액	0			0

과세소득을 <표 4>의 개별 회계 기준이 아닌, <표 6>과 같이 연결대상 기업으로 하고, 소비지국에서 과세권있다고 가정한다면, 과세지국별 세수입[23]에 변화가 크다. 일단 조세피난처의 세수입이 줄어들게 된다. 자회사가 있는 네덜란드는 12에서 2.5로, 싱가폴은 8에서 0이 된다. 한국의 경우 갑법인의 매출 중 한국에서 약 30%가 발생하였으나 자회사가 없거나 자회사가 가격이전을 하거나 개별적인 추징노력이 없다면 현행 법인세 규정에서는 0이었던 세수입이, 연결대상기업을 대상으로 매출기준 안분방식이 적용된다면 30의 과세권이 생긴다. 각국가별로 계산하면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지만 전세계 시장을 합하면 금액이 크다. 현행 법인세 규정상 많은 다국적 기업이 자회사를 통한 가격이전등으로 하므로 조세회피가 쉽고, 과세당국에서는 각각의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이를 조사를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자본수출국인 미국의 경우에는 모든 미배당 현금 유보액이 온다면 122의 세수입이 발생될 것이나 안분방식이 적용된다면 매출 안분율 60%인 90만큼만 세수입이 발생된다.

22) 프랑스, 인도 등 을 비롯한 국가에서 별도로 구글등에 소비지 매출 과세를 하고 있다.
23) 다국적 기업의 세부담이 된다.

나. 해외 특수관계법인의 현금유보 및 가격이전 형태의 조세회피－내부거래가 있는 경우

특수관계법인간에 내부거래가 있는 경우 현행 법인세 규정에서 다국적 기업이 가격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매출기준 안분방식을 적용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사례로 통해 살펴본다.

갑법인은 미국에 본사가 있으며, 라이센스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네덜란드의 100% 자회사인 을 법인은 라이선스를 500 구입하여 미국에 300, 중국에 500, 한국에 200 만큼 서비스를 공급하였다. 비용은 각각 400, 500이 발생하여 갑법인의 이익은 100, 을법인의 이익은 500이다. 세율은 미국이 30%, 네덜란드가 5%, 한국과 중국이 20%이다.

〈표 7〉 연결 손익(내부거래 있을시)

국가 (세율)	미국 (30%)	네덜란드(5%)	연결전 합계	연결회계
매출	500	1,000	1,500	1,000
비용	400	500	900	400
세전이익	100	500	600	600
법인세	30	25	55	180
세후이익	70	475	545	420

외국납부세액은 100% 공제된다고 가정한다.

(1) 현행 법인세 규정에 의해 배당을 100%, 50%, 0% 하는 경우 갑법인의 과세소득 및 세액

〈표 8〉 해외 자회사에서 모회사에 배당시 세액계산(내부거래 있을시)

배당율	100%	50%	0%
영업이익	100	100	100
배당수익	475	237.5	0
Gross－up 금액	－	－	－
세전이익	575	337.5	100
법인세액	172.5 (25)	101.25 (12.5)	30 (0)
외국납부세액공제	25	12.5	0
세후이익	427.5	248.75	70
당기 해외유보액	0	237.5	500

외국납부세액은 100% 공제되고, Gross－up 금액은 없다고 가정한다.

<표 8>은 현행 법인세 규정과 같이 개별 회계를 기준으로 자회사의 배당률에 따른 다국적 기

업의 세부담을 보여준다. 해외 자회사 배당을 100% 한다면 다국적 기업집단 입장에서 부담하는 세액은 147.5(=172.5−25) 이고, 배당을 50% 할 시 88.75(=101.25−12.5), 배당을 0% 할시 30이 된다. 다국적 기업의 세금 부담액은 저세율국에 설립된 해외 자회사의 배당률에 따라 좌우되고, 배당률과 모회사(자본수출국) 관할 과세지의 세율에 따라 다국적 기업의 세금 부담액이 달라진다. 해외 자회사를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후 위 사례의 배당 0% 같이 당기 이익이나 누적 잉여금을 전액 해외 자회사에서 유보한다면 조세회피나 과세이연이 가능하다.

현행 법인세 규정상 해외 자회사에서 내부거래의 이전가격도 세액계산에 영향을 주므로 고세율국에서 이익율을 적게 하고 저세율국에서 이익율을 크게 한 후 모기업에 배당을 하지 않는다면 조세회피가 가능하다. 하지만 다음 사례에서 보듯이 안분기준으로 다국적 기업집단의 과세소득을 안분한다면 이런 조세회피는 힘들게 된다.

(2) 법인소득을 매출요인 안분방식에 연결대상 기업단위로 과세소득을 배분하는 경우

〈표 9〉 연결대상기업단위로 안분방식으로 세액계산(내부거래 있을시)

매출지 (세율)	미국 (30%)	중국 (20%)	한국 (20%)	합계
연결 세전영업이익	600	600	600	600
매출기준 안분율	30%	50%	20%	100%
배분된 과세표준	180	300	120	600
법인세액	54	60	24	138
법인세차감후 이익	126	240	96	462
당기 해외유보액	0			0

<표 9>는 연결대상 기업을 과세단위로 하여 매출기준 안분공식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 것이다. 다국적기업은 소비지국의 세율에 따라 다국적 기업이 부담하는 세액이 달라진다. 소비지국이 자국의 조세정책에 따라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부담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세지국의 소비시장이 크고, 소비 탄력성이 적다면 세율을 높여 세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고, 자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세율을 낮출 필요도 없다. 세율과 투자 유치와는 큰 상관성이 없기때문이다. 이점이 현행 법인세 규정의 단점을 상당히 보완해주는 기능일 것이다.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자회사의 소재국과 실제 매출지국이 다를 경우 국가별 세수입에 변동이 발생된다.

납세자인 다국적 기업 입장에서는 특수관계법인간 조세회피 목적 이전가격 거래를 하더라도 과세단위내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되고, 매출지소재국에서 과세권이 있으므로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을 통한 조세회피 전략이 어려워진다. 소비시장의 조세정책에 따라 세금부담액이 달라지

므로 매출지를 조정하지 않고서는 조세회피전략이 힘들다. 무리하게 저세율국에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해외 자회사가 확보한 잉여금을 본국에 송환을 미루어 조세 회피 또는 과세이연을 할 유인도 없어지게 된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안분방식에 의해 다국적 기업집단의 과세소득을 안분한다면 원천징수나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복잡한 절차나 이중과세 등의 문제가 줄어들 수 있다.

2. 과세소득 안분방식에 의한 소비지국별 과세방식의 단점

위 사례와 설명에서 보듯이 안분방식으로 기업집단 과세소득을 과세지별 안분하는 것은 현행 법인세의 문제점을 상당히 보완하나 이를 실행하기 위해선 과세당국과 기업입장에서 노력이 필요하다.

가. 과세지국별 수준 차이

기업의 가치를 창출하는 요인들이 자산, 급여, 매출이며 이를 기준으로 과세지별 안분율을 계산한다. 하지만 과세의 편리성, 기업 투자의 유치와 기존 기업의 유지, 소비시장의 비탄력성등의 이유로 3가지 요인들 중에서 매출기준이 선호될 수 밖에 없다. 과세국별로 소비시장은 천차만별인데 직관적으로 본다면 소비시장이 큰 과세지일수록 선택 가능한 조세정책들이 더 다양할 것이다. 이는 주로 선진국에 유리할 수 있다. 통일된 규정을 만들려는 OECD의 디지털세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고, 또한 Pillar Ⅱ를 통한 최저한세를 여러 방법으로 부담시키는 것도 조세회피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는 방안이다. 하지만, 국제거래에 관여된 국가간에 동일한 방식의 안분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각 국가별 이해관계(경제 규모, 산업형태 등)가 다르기 때문에 통일된 안분방식등이 오히려 디지털세의 지속적인 존속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나. 과세지별 조세인력 및 규정

현행 법인세 규정을 안분방식의 소득 과세로 바꾸는 것 뿐만 아니라 OECD가 추진하는 법인세를 추가 부담시키는 디지털세 실시하는 것은 현행 국가별 시스템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다. 예로 다국적 기업집단이 자발적으로 신고 납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미신고시 이를 적발하는 Modelling 작업과 모든 계산이 연결회계에서 시작되므로 연결회계에 대한 전문 지식, 적용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조정과 조사기능이 별도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다국적 기업

중 상당 수는 이미 과세국에 개별회계로 신고납부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기 신고한 기업들이 중점 관리대상이 될 것인데, 기존 신고하는 방식과 추가적인 디지털세 간의 조정을 어떻게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 다국적기업집단의 납세 협력 비용

현행 법인세 규정을 안분방식의 소득 과세로 바꾸는 것 뿐만 아니라 OECD가 추진하는 법인세를 추가 부담시키는 디지털디지털세는 기본적인 사항만을 통일시키고 세부적인 것은 각 과세지국에 일임할 수 있고, 미처 입법이 안된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이는 납세자 입장에서 각 과세지국별 조세규정에 따른 신고 및 사후 관리를 해야 한다는 부담이 발생된다. 예로 다국적 기업집단이 80개가 넘는 국가에 디지털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면. 80개 과세지에 각각 대응을 해야 한다. 전세계에 이미 훈련된 인력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이다.

Ⅴ. 결 론

현행 국가별 법인세 규정은 여러 과세국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는 납세자인 다국적 기업입장에선 여러 선택 가능한 조세전략을 주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미국의 주 (State) 정부는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공평과세를 실시하기 위해 Unity라는 기업집단별 과세단위와 기업집단의 과세소득을 안분하는 방식을 해오고 있다. OECD의 디지털세는 다국적 기업의 부당한 조세전략에 대응하고 과세지국에 응익부담 (Pay to benefit) 원칙에 따른 공평 과세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정된 규정으로 특수관계법인간의 기업집단을 과세단위로 하고 소비지국 매출기준으로 과세지별 안분방식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실무적으로 다양한 사업 유형 및 특이 거래에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지와 미비한 규정의 한계에 부딪혀 혼란이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왜 다국적 기업은 기업집단으로 과세를 해야하고, 기업의 가치와 수익을 창출하는 요인이 무엇이며 이것이 과세지 및 기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기업집단 단위로 신고와 안분방식이 현행 국가별 법인세 규정의 문제점인 이전가격과 현금유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임을 간단한 예시로 증명하였다. 하지만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 적합한 방식이라 하더라도 과세지별 이해관계 차이와 과세당국의 시스템 신설과 다국적 기업의 협력 비용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현재 여러 선진국에서 다국적 기업들의 조사 기업을 Arm's length principle과는 별도로 기업집단 단위의 안분방식을 신설하여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방식이 점차 법인세 분야에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세의 규정의 이해뿐 만 아니라 안분방식 과세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이창희. 2023.『국제조세법』제3판. 박영사.
OECD. 2020. Tax Challenges Arising from Digitalization－Report on the Pillar One Blueprint.
Susan C. Morse. 2010. Revisiting Global Formular Apportionment. 29 Va Tax Rev. 593.
Susan Wolfe. 2022. Bender's State Taxation. Lexis Nexis.

Multinational Enterprises' Taxable Income and Tax Fairness

: Focusing on Apportionment Formula and Filing Unit of U.S. State Corporate Tax and Digital Tax

Myungki Cha* · Susung, Kim**

<Abstract>

With respect to Multinational Enterprises ("MNEs") which has utilized price－transfer and retained earnings to avoid tax liability, this study analyzes whether combined group as a tax filing unit and apportionment formula to combined taxable income could prevent MNEs from avoiding tax liability using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 ("BEPS"). MNEs perform across border activities. MNEs incorporated subsidiaries in low－tax jurisdiction and retained the earnings as possible as it can. Although high－tax jurisdiction where economic activities take place and value is generated is entitled to tax the profit of MNCs, current rule cannot provide the high－tax jurisdiction with appropriate tax assessment which were enacted for more than dozens of years.

This study analyzed U.S. exemplary cases related to company group subject to consolidated accounting of OECD Pillar One. In addition, regarding the apportionment formular factor, there are factors of property and payroll other than sales factor in OECD Pillar One. The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factors and revealed why sales factors is dominant among them. Due to different background among jurisdictions, uniformed code can cause reverse effect against OECD Pillar One and Two. Several examples without intercompany transaction and with it show that taxing methodology of combined group filing and apportionment formula of taxable income can eliminate opportunities for BEPS by MNEs.

Heading for a soft landing toward apportionment formular, combined income's fair apportionment among nations is one of the first and pivotal challenge because some formula would be favorable for some nations but, would be unfavorable for some others. To solve the conflict of interests through convincing reasoning, there must be theoretical researches as well as analysis of current OECD Pillar One and Two.

<Key words> BEP, Pillar one, apportionment formular, combined group tax, arm's length, transfer pricing

* Tax Auditor, State of California, Ph.D. of Accounting, CPA, myungkic@usc.edu, First Author

** Ph.D. of Taxation, Deputy department head of the Korean Teachers Pension, mercury@tp.or.kr, Corresponding Author

특정법인을 통한 증여이익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김 민 경 · 이 상 신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특정법인을 통한 증여이익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김민경* · 이상신**

〈요 약〉

특정법인을 통해 주주가 얻게 되는 증여이익의 법적 실질을 파악해보고, 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의제규정으로 과세하는 방법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특정법인 증여이익은 본래 포괄이익의 개념에는 포섭되지만,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적용으로 과세되는 증여의제이익은 포괄주의의 과세범위에서 벗어남을 확인하였다. 이 조항으로 과세되는 증여이익의 성격은 실질적 증여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 증여임에도 의제 규정의 특성상 과세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게 된다. 이렇듯 본래 이 제도의 취지와는 다르게 증여의 실질에 대한 과세이기보다 법인을 통해 이익을 분여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규제로서의 성격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숨겨진 제재적 기능은 특정법인 증여의제로 규율하는 과세 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정상적인 경제행위 자체에도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자본거래가 규제 대상 거래 범위에 들어오면서 불확정개념이 과세요건을 구성하게 되는 등 그 판단의 결과가 충분히 예측가능한 구체적 범위를 넘어서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하는 문제, 의제 규정에 따른 과세이기에 납세자로서는 반증의 기회가 허용되지 않는 문제 등이 예상된다. 이와 같은 논의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른 과세원칙 측면에서 특정법인 주주에 대한 간접증여 규정은 그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간접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납세자에게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특정법인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 방법을 추정 규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특정 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을 30%에서 과점주주와 같이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특정법인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넷째, 특정 법인과의 자본거래에 대해서도 간접증여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입법예고(안)에 대해서는 이를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유지하는 경우에도 그 구체적 유형을 열거하여, 열거한 거래 형태에 대해서만 과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주제어〉 상증법제45조의5, 특정법인, 간접증여, 증여의제, 포괄이익, 불확정개념, 과세요건명확주의, 재산권 침해

* 주저자,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과정, ctakimmk@gmail.com

** 교신저자,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sslee@uos.ac.kr

Ⅰ. 서 론

자(子) 을(乙)이 대주주인 법인 A에 부(父) 갑(甲)이 자산을 증여하거나 저가양도 한 경우 통상적으로는 A 법인에 대하여 자산수증익 등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다. 그런데 갑(甲)의 증여 또는 저가양도를 A에 대한 증여가 아니라 주주 을(乙)에 대한 증여로도 볼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보는 이유는 법인세율과 증여세율의 차이를 고려한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5 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은 법인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간접 증여 이익에 과세하는 제도이다. 주주 등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등 법에서 정한 거래를 하는 경우, 법인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후 법인의 주주 등에게도 이익의 분여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증여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조항이다. 과세하는 세금의 크기는 법인의 주주 개인으로서 이익을 분여받았을 때 납부했어야 할 증여세를 한도로 법인세를 제외한 만큼이다.

그러나 이 규정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어왔다. 예컨대 영리법인에 대한 증여를 주주에 대한 증여로 보기 위해서는 법인의 실체를 부인할 수 있어야 하거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1], 영리법인을 통한 간접 증여는 포괄이익 개념에 해당하고 각종 변칙적 증여에 활용되고 있으므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 중복과세 및 소득과세우선원칙 등의 문제는 입법 기술상의 문제이므로 설계 방법에 따라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견해[2], 법인이 특정거래로부터 얻은 이익 그 자체가 주주의 이익이 될 수 없고, 증여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견해[3] 등이 그것이다.

특히 입법예고된 개정세법안에 따르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자본거래가 규제 대상 거래 범위에 들어오면서 적용 거래 범위가 확대됨과 동시에,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불확정개념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과세요건 판단 시 선행하게 되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할 우려가 더 커지는 등 논란이 더욱 커질 상황이다. 자본거래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의제 규정의 특성 및 불확정개념이 과세요건을 구성하게 된다는 점 등은 헌법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 글에서는 특정법인을 통해 주주가 얻게 되는 증여이익의 법적 실질을 파악해보고, 법인의

---

1) 이준봉. 2014. “영리법인을 이용한 증여와 실질과세”. 「조세법연구」 제20권 제2호.

2) 이창희, 김석환, 양한희. 2015.09.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 흑자 영리법인을 이용한 간접 증여”. 「조세법연구」. 제21권 제3호

3) 김재승. 2017.1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스티스」. 통권 제163호.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의제규정으로 과세하는 방법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특정법인을 통한 간접증여에 대한 이론적 검토, 외국의 사례 및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다. 별항으로 설명한다.

Ⅱ. 특정법인을 통한 간접 증여 이익에 관한 이론적 개관

1.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개정 변천

특정법인 증여 관련 규정은 과세관청의 공격(과세)과 방어(법원의 판결)를 통해 계속적 개정이 있어 왔다. 과거 특정법인 증여의제는 그 적용 대상 법인의 범위가 결손법인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그 대상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직접·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비율이 30% 이상인 흑자법인으로 일원화되면서 확대되었다.

가. 최초 도입시－의제 규정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은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구 상증법이 최초였다. 비상장법인으로서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결손금이 있는 법인 또는 증여일 현재 휴업 중이거나 폐업 상태인 법인이 이익을 분여 받은 경우 법인세 부담 없이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 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이익의 분여로 인해 증가된 주식가치에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법인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하였다. 당시 법 조항은 법인에 증여한 이익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법인에 분여한 이익으로 인해 증가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치를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산정하였다.[4] 이 때 증여이익은 법인의 결손금을 한도로 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증여세가 과세되었다. 당시 법령으로 주식가치 증가분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채무초과 상태인 법인이 자산을 증여받은 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주식가치가 여전히 부수인 경우, 증가된 주식 등의 1주당 가액은 없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5] 법인세와 증여세 모두 과세할 수 없었다.

---

4) 2003.12.30. 개정전 상증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

5) 대법원 2003.11.28. 선고 2003두4249 판결 ; 대법원 2006.09.22. 선고 2004두4727 판결

나.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_예시규정으로 전환

(1) 적용대상 법인－결손법인 등

완전포괄주의 도입 전 상증세법은 증여의 범위를 민법상의 증여와 14가지 증여의제 유형 및 기타 유사한 경우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었다. 완전포괄주의가 2004.1.1.부터 시행되면서 부의 무상 이전의 범위가 확대되었다.[6] 이때, 법인을 통한 간접이익 증여 조항은 개정 전 증여의제 규정에서 증여예시 규정으로 전환되었지만, 법률의 세부 내용에 관한 조문의 내용은 그대로였기 때문에 예시 규정으로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방법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개정 전과 동일하게 거래 또는 행위를 제한하는 의제 규정으로 해석되는 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7]

법 제41조는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해서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를 전제로 하여 과세대상 증여 이익을 규정하면서, 시행령에 그 계산 방법을 위임하고 있었다.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에서는 특수관계자가 법인에 이익을 분여하여 증가된 주식 가치를 기준으로 보유 주식 수를 곱하여 계산하던 증여 이익 계산 방법이 특정 법인이 분여 받은 이익 자체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다. 증가된 주식 1주당 가액이 부수인 경우 계산상 증여이익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는 대법원의 입장[8][9]에 따라 생성된 판례로 거듭 과세가 불발되면서, 증여 이익을 계산하는 기준을 '주식가치 증가분'에서 특정법인이 '분여받은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다.

대법원은 구 상증세법 41조는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을 주주의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모법이 규율하고 있는 증여세 부과대상 범위를 벗어나 있어 시행령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10] 이 판결 이후, 2010.1.1.시행 법률 제9924호로 법 개정을 통해 '이익을 얻은 경우'하고 하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로 문언을 일부 개정하고 이익의 범위, 계산 등에 관한 내용을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하여 시행령 제31조 제6항을 유효한 규정으로 만들어 모법의 위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모법 조항의 규정 취지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이익의 계산만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인데, 모법의 위임을 받은 하위 시행령은 특정법인에 재산 또는 증여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 주주 등이 실제로 얻

---

6) 2004.1.1.시행, 대통령령 제18177호

7) 이창희, 김석환, 양한희. 전게 논문. 386면, 서울고등법원 2013.11.28. 선고 2013누1716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7.11. 선고 2012누37571 판결.

8) 임승순. 2023.「조세법」. 제23판. 박영사. 937면.

9) 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4727 판결.

10) 대법원 2009.3.19. 선고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

은 이익이 없는 경우까지 증여 이익의 계산 범위에 포함한 것이므로 해당 시행령 조항을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하였다.[11]

(2) 흑자법인으로 적용대상 법인 범위 확대

2014.1.1. 시행 법 제41조 및 2014.2.21.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흑자영리법인을 이용한 변칙적인 증여를 규제하고자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영리법인을 특정법인 규제대상 범위에 추가하였다. 아울러 이중과세를 조정하고자 특정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세 중 일부를 공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상증세법에서 정한 증여의 개념에 부합한다면 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완전포괄주의에 따라 과세가 가능하다고 하였지만, 개별적으로 규정된 예시 규정의 성격을 입법자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물로 해석하여 규정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하여 포괄 증여의 과세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12]

(3) 현재까지－의제 규정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 되기 전까지 예시 규정이었으나, 법 제41조를 삭제하고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로 신설하면서 이 조항의 과세상 지위가 '의제규정'으로 전환되었다. 개정 이유에 대해서는 특정법인이 그 법인의 주주 등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경우 '그 거래를 통한 특정법인 이익에 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정법인 증여이익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법45조의5 제1항에 "…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법조항에 이익의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동안 시행령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을 이유로 한 반복된 대법원 과의 의견 차이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한채 일단락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개정법률에서는 증여의 개념을 다시 명확하게 규정하면서 영리법인에게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으며, 만약 영리법인이 분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주 등에 대해서 상증세법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조문 체계를 정비하였다.[13]

---

11) 대법원 2017.4.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

12)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3두13266판결.

13) 기획재정위원회 2015.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검토보고서". 6면 및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 일부개정안의 개정이유

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 전까지 특정법인의 범위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상태인 법인, 지배주주[14] 및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으로 그 대상을 정하고 있었으나, 2020.1.1.부터 결손법인 등의 구분 기준을 없애고, 일률적으로 지배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비율이 30% 이상인 경우로 그 대상 법인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특정법인 증여의제로 인해 부담하는 법인세와 증여세가 직접 증여한 경우보다 커지지 않도록 한도를 신설하였다. 2024.1.1. 시행 법률 제19932호에서는 특정법인 증여의제 이익 산정시 특정법인의 이익에 곱하는 주식보유비율 산정시 지배주주 등이 직접 보유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개정하였다.

2. 과세요건

가. 특정 법인에 대한 증여 거래가 있을 것

특정 법인을 통한 간접 증여에 관한 규정은 법인을 통한 주주의 간접이익에 대해 증여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내용이다. 이 규정은 특정법인에게 증여함으로써 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세와 특정법인 주주에게 직접 증여할 때 부담하는 증여세 간 세율 차이를 없애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규정이다.[15] 특정법인의 최대주주와 그 친족이 그 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법인은 법인세를 부담한다. 특정 법인의 지배주주 등은 직접적으로 분여 받은 이익은 없지만, 법인이 얻은 이익에 대한 지분율만큼 이익을 분여 받은 것으로 보아 지배주주 등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특정법인 증여의제로 부과되는 증여세는 법인이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지배주주 등에게 주식보유비율 만큼의 증여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증여세가 과세 되는 특정 법인의 범위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

14) 유철형, “상증세법 제45조의5 주석집필분”, 온주 상속세및증여세법((2024년). 지배주주란 개인이 특정법인의 주식을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 중 보유주식비율이 가장 높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 보유주식비율이 가장 높은 경우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특정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산정시 직접 보유 및 간접 보유를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1인으로 이러한 지배주주의 의미는 법45조의3부터 법45조의5까지 모두 동일하다. 지배주주 판정시기에 대해서는 각 조항마다 차이가 있는데, 법45조의5에서는 거래한 날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15) 정재희. 2023.2. “포괄증여의 개념적 한계와 유형별 포괄주의에 관한 연구－완전포괄주의, 흑자법인 증여의제, 하이브리드 증여－”. 서울대학교대학원 법학박사 학위논문. 4면

식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비율[16]이 30% 이상인 법인이다.[17]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 유형은 법 제45조의5에서 열거하고 있는 3가지 및 시행령에 규정한 2가지 총 5가지 유형으로써 거래의 유형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가현물출자[18]를 제외하고는 손익거래 성격에 해당하는데,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통상적인 거래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 양도하는 거래, 현저하게 높은 대가로 양수하는 거래, 채무를 면제・인수・변제하는 거래, 저가현물출자 거래로 법령에 열거된 거래만을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다.

나. 특정 법인에 대한 익금 거래로 인정될 것

위와 같은 거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순자산 증가로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특정법인은 익금산입 후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지만, 법인세의 납부 여부는 본 조항의 직접적인 요건은 아니라고 본다. 부(父)인 갑(甲)이 자(子) 을(乙)에게 직접 증여한 경우의 증여세율과 특정법인 A에 대한 증여에 대한 법인세율의 차액만큼의 간접 증여를 과세하겠다는 취지이므로 법인세에 분여 된 이익에 대해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거래에 대해 이 조항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다. 증여세와 법인세 차액 만큼의 간접증여이익

특정법인의 주주 을(乙)은 특수관계자 갑(甲)의 증여거래로 인하여 간접 증여이익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예컨대 특정법인 A의 주주 을(乙)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갑(甲)이 특정법인 A에 재산을 증여하는 거래를 하였더라도 그 거래를 전후하여 주주 을(乙)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가액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그 주주 을(乙)이 얻은 증여 이익이 없으므로 개정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19] 법률이 존재하지도 않는 증여재산을 가공으로 만들어 낼 수 없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본다.[20]

---

16)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면서 특정법인 간접이익에 대한 과세 여부 판단시 간접적으로 보유한 주식비율도 산정대상으로 포섭되었다. 이때, 결손 법인 여부 등과 관계없이 지분율 요건 및 과세대상 주주 범위 등을에 대해 일률적 기준을 정함으로써 동일 유형의 증여에 대하여 과세방식을 동일하게 정비하고, 직접 증여한 경우보다 증여세액이 커지지 아니하도록 한도를 신설하였다.

17) 상속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18) 저가현물출자는 손익거래와 자본거래가 결합된 성격이다.

19) 대법원 2017.4.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

20) 이태로・한만수. 2018.「조세법강의」. 제13판. 박영사. 866면

이 경우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과세 대상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해당 거래로 인하여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을 계산하고,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여 1년이내 합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증여이익으로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21]

3. 과세효과

가. 개 관

법인단계에서 법인세를 부담하고, 이후 법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이 법인이 받은 이익에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이 직접·간접적으로 보유한 주식비율 만큼을 증여세로 부과한다. 주주단계에서 부담한 증여세는 미실현이익 성격으로 본래 주주 개인에게 배당소득세로 과세 되거나, 주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이 통상적 과세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특정법인 간접증여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는 부의 이전이 이루어지는 시점, 즉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선제적으로 과세가 이루어지다보니 미실현이익 상태에서 과세가 이루어진다. 특정법인에게 이익의 분여가 이루어지면 법인단계에서는 거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고, 해당 법인주주 및 출자자에게는 거래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하나의 증여 행위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두고 이중과세라는 비판도 있고,[22] 법인을 매개로 하여 주주에게 귀속되는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라는 의견도 있다.[23]

나. 법인세와의 이중과세 조정

상증세법에서는 수증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중복해서 부

---

21) 서면 – 2022 – 자본거래 – 4934, 2022.12.29.

22) 강남규. 2014.12.5.“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에 대한 포괄증여 과세의 법적 한계–일감몰아주기와 흑자법인 증여의 과세 근거규정을 통한 분석적 접근–”.「조세법연구」제21권 제1호. 226면.

23) 이준봉. 2014. “영리법인을 이용한 증여와 실질과세”.「조세법연구」제20권 제2호. 당시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 상증세법 제4조의2(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가 상증법상에 별도의 실질과세원칙으로써 규정되어 있었다.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현재 상증세법상 실질과세원칙 거래의 재구성과 관련한 조항은 분산되어 중복적으로 규정된 조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에 따라 삭제되어 현재 남아있지 않다.

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상증세법 제4조의2 ③),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으로 인해 만약 수증자에게 법인세나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상증세법제4조의2 ④) 하는 소득과세 우선원칙을 따르고 있다.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법인단계에서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특정법인의 이익을 주주가 분여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의제로 규율하고 있어서 법인에 법인세가 부과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한다. 특정법인 증여의제로 부과된 증여세액이 지배주주 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 부담하는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보게 하여 세금 부담 상한을 정하고 있어(법 제45조의5 ②) 특정법인을 통한 간접 증여의 경우, 부담세액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에 비해 더 많을 수는 없다. 일종의 세액공제 방식의 상한을 둔 것으로 이러한 조정 조항이 도입됨에 따라 법인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

다.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조정

지배주주 단계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간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자 특정법인 주주에게 법 제45조의5에서 정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주식 취득가액에 이를 가산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24],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이익 및 증여의제이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라. 배당소득세와의 이중과세 조정

특정법인 간접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시 주주의 배당소득세과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증여세로 과세되는 법인에 분여된 이익이 배당가능이익을 구성하게 되기 때문이다. 주주에게는 법인의 자산수증이익 등 특정법인 거래 이익에 주식보유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을 증여의제이익으로 보게 되어 있다. 법인의 배당가능이익 중 특정법인 거래 이익에 해당하는 부분 만큼에 대해서는 차감 조정하여 배당소득세를 산출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해 줄 필요가 있으나, 아직 입법화되지 않았다. 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소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에서는 지배주주 등이 수혜법인 및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 이익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당소득세와 증여세와의 이중과세 조정을 해주고 있다.[25]

---

24)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10항 제1호

25)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5항

4. 평 가

대법원은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등 법령에 열거된 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거래를 전후하여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면, 위와 같은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본다.[26]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그동안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다. 법에서 특정법인 간접증여의 과세대상으로 보는 증여의제이익과 대법원이 보는 증여이익에 대한 뚜렷한 입장차이로 인해 과세를 시도하고 과세를 무효화하는 과정을 거듭하면서 제도의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현재 이 조항의 표제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이다. 증여의제 규정의 특성상 부의 무상이전으로 인한 증여이익의 실질이 있다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재산이나 이익의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어 이 조항에 따른 과세가 증여의 실질을 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하나의 거래 사실에 관하여 법인세와 증여세를 동시에 부담하게 하는 구조를 지닌 세법 규정이 야기하는 문제는 이중과세의 문제뿐만은 아닐 것이다. 법인이 증여 받은 이익에 대한 소득과세 이후, 증여 이익의 실제 귀속자인 법인 내 주주로 납세의무자를 달리하여 법인세와 증여세 차이 부분에 대하여 증여를 의제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이 규정은 어디에 담세력을 둔 것인지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들게 한다. 재산 또는 이익의 이전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상증세법의 목적 내지 취지에 따르면 법인을 통해 증여받은 이익으로 주주에게 부의 이전 또는 재산이 이전되는 효과가 있게 되므로 담세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직접적인 수증자가 법인이고, 그 법인의 실체를 부인할 수 없다면 법인이 증여받은 이익은 법인세로 과세되는 것이 법 체계상 원칙적인 과세방법에 해당한다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질적인 부의 이전이 법인을 매개로 하여 주주에게 미쳤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실체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실체를 뚫고 주주에게까지 추가로 과세하는 예외적인 방식의 과세 조항은 법 체계상 해석에 혼란을 줄 수 밖에 없고, 그 과세대상 자체에 담세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까지 그 과세 범위가 미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헌법상의 한계를 넘어서는 과세가 될 수 있어 그 법적 정당성에 대해서까지 문제될 수 있다. 미국, 일본 등도 우리나라와 같이 완전포괄주의 증여 제도를 갖추고 있으므로[27] 이러한 외국의 사례를 검토한 후 현행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

26) 대법원 2017.4.20. 선고 2015두 45700 전원합의체 판결.

27) 박훈 · 채현석 · 허원. 2019.「상속 · 증여세 실무해설」. 삼일인포마인. 769면

Ⅲ. 외국의 사례

1. 미 국

미국세입법(I.R.C) 제2510조에서는 이 조항에 의해 부과되는 증여세는 재산의 이전이든, 신탁이든, 그 외의 것이든 관계없이 직접·간접적으로 동산·부동산, 유형·무형을 불문하고 적용한다고 하여 증여의 범위를 매우 넓게 보고 있다.[28] 증여의 범위는 넓지만, 공제금액[29]이 상당하여 실제로 증여세 납부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법인을 통한 간접증여의 경우 분여받은 이익을 법인의 주주에게 주식지분비율 만큼 증여한 것으로 본다.[30] 법인에 부의 무상이전이 이루어지더라도 증여세 단계에서는 법인의 존재는 무시되고 주주를 기준으로 증여세 부과 여부를 판단한다.[31] 다만 미국의 경우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증여자이기 때문에 부(父)인 갑(甲)이 자(子)인 을(乙)에게 직접 증여를 하든 아니면 특정법인 A에게 증여를 하든 증여세액의 차이는 없다. 수증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 수증자가 법인이면 법인세, 개인이면 증여세를 부과하는 우리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2. 일 본

일본 상속세법에서는 제4조에서 제8조까지 증여의 개별규정을 열거하고 있고, 제9조에서는 앞의 규정 외에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현저히 저가로 이익을 얻는 경우를 규정하는 포괄적 보충규정을 두고 있다. 일본 상속세법은 우리와 달리 증여추정이나 의제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이를 포괄하는 듯한 규정은 두고 있다. 즉 동족회사의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하면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세관청은 그 행위 또는 계산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정정 또는 결정을 할 수 있고(일본 상속세법 제64조①), 합병 등 자본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동조 ④). 이때 동족회사란 주주3인 이하가 회사 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회사를 말한다.[32] 즉, 일본에서는 특정법인의

---

28) 임승순. 전게서. 884면

29) 수증자별 1년에 15,000불과 증여통합세제공제로 11,700,000불까지 공제를 해준다.

30) 미국재무부 시행규칙 §25 2311－1(h)(1)

31) 정재희. 전게 논문. 124면 ; Richard B. Stephens, Guy B. Maxfield, Stephen A. Lind, Dennis A, Calfee and Robert B. Smith. 「Federal Estate and Gift Taxation」(8th edition), Warren, Gorham & Lamont. 2002. pp.6－10.

32) 일본 법인세법 제2조 제10호

주주에 대한 간접증여의 명문 규정은 없고 해석에 의해서 이를 규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상속세법 기본통달 9－2는 “동족회사의 주식이나 출자가액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증가한 경우에는 그 주주나 사원이 해당 주식이나 출자의 가액 중 증가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점에 다음의 자로부터 증여를 통해 취득한 것으로 취급한다. ①회사에 대하여 무상으로 재산이 제공된 경우 해당 재산을 제공한 자, ②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해당 현물출자를 한 자, ③대가를 받지 않고 회사의 채무면제, 인수 또는 변제가 있는 경우 해당 채무면제, 인수 또는 변제를 한 자, ④회사에 대하여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의 대가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해당 재산을 양도한 자” 등이다. 이 통달에 따라 일본에서는 동족회사에게 무상의 증여가 있은 후, 그 주식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 그 주주에게 증여로 받은 이익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33)]

그러나 기본통달 9－3에서는 “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의 가치는 회계상으로 무가치한 것이고, 그러한 회사에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채권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채무면제 등을 하였다 하여도, 주주가 가진 주식의 가치는 증가한 바가 없는 것이므로 이 경우 주주에게는 무상으로 받은 이익이 없다.”고 본다.[34)]

3. 시사점

간접증여도 증여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 미국과 일본의 기본원칙인 것 같다. 그럼에도 그 과세의 범위와 방법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예컨대 일본의 경우에는 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결국 과세를 하더라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조세공평의 관점에서 간접증여를 인정하더라도 그것은 본래 의미의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세법의 통일적 해석이나 체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특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간접증여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특정법인 증여이익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따라 과세를 하는 경우 무엇이 문제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33) 최원, 2024. “일본 증여세에 있어서 포괄주의 입법에 관한 연구”, 『세무와회계연구』(통권 제26호), 한국조세연구소(2021), 218면.

34) 최원, 전게 논문, 218면.

Ⅳ. 특정법인 증여이익의 법적 성격과 문제점

1. 특정법인 증여 이익의 법적 성격

가. 증여세의 과세대상 : 부의 무상이전

우리나라 증여세제는 포괄주의 과세 체계를 가지고 있다. 증여의 개념이 민법상 증여 개념보다 넓을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증여세는 상속세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 있다.[35]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계기로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다. 부의 무상이전이라면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지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 포괄과세의 취지이다. 증여로 인한 조세채무의 성립시기에 대해서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때”라고 정하고 있는 것[36]도 부의 무상이전이 개시되는 때를 포착하여 과세하기 위함이다.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무상 이전되는 이익이나 재산의 크기가 얼마의 금전적 가치를 지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법에 정해진 바대로 가치를 평가한 결과, 이전된 이익 또는 재산의 가치가 이전되기 전에도 ‘0’이고, 이전 후에도 ‘0’인 경우,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 조세법 기본원칙인 응능부담원칙에 부합한다라고 할 수 있다. 법에 정해진 방법대로 평가하여 무상이전 된 부의 금전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법에 의해 관념되는 실질적 증여이익은 없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대법원은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경제적・재산적 가치를 정당하게 산정한 가액을 기초로 하여 과세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증여로 인하여 아무런 경제적・재산적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37]고 판시하여 세법의 적용을 통해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는 이익 이나 재산의 이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법에서 정한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주식의 가치가 실질적인 주식의 가치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하고 하여 예컨대,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법인의 주식가치가 음수라고 해도 미래 기대 이익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면 이러한 기대를 반영한 개선된 평가방법으로 그 주식의 평가액이 음수가 아닌 양수가 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평가방법의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

35) 이창희. 2024.「세법강의」제22판. 박영사. 1270면.

36)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3호

37) 대법원 2017.4.20. 선고 2015두45700 판결.

다는 견해도 있다.[38] 하지만, 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해 법에 규정된 방식 외에 예외적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주식가치 산정의 기준을 정하게 된다면 평가의 객관성이나 적절성에 대해 충분히 합의가 있기 전에는 적용상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진다.

특정법인 간접증여의 개정 변천은 무상이전 된 이익이나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의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과세관청과 대법원의 견해 차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가액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이익이 없다'라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이러한 판결이 반복되면서 정부는 2015. 12. 15. 개정법률 제13557호로써 구법 제41조를 삭제하고 법45조의5를 신설하여 의제규정으로 과세하고 있다.

나. 법45조의5에 의한 증여의제가 포괄주의 증여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정법인을 통한 증여이익에 관한 규정이 예시적 성격이었을 때에는 특정법인 증여 규정상 과세요건에 포섭되지 않은 거래 등에 대해서도 포괄주의 과세 원칙이 의도한 과세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었다.[39] 그러나, 특정법인 간접이익에 관한 과세 규정이 의제 성격의 조항으로 전환되면서 이전과는 법의 적용 범위가 달라졌다.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는 포괄증여의 과세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는데, 상증세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예시 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로써 규정에서 정한 방법을 준용하여 증여이익을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포괄증여 조항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포괄 증여의 과세범위는 실질 증여의 과세 범위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데, 법인에 증여함으로서 간접적으로 주주에게 분여되는 이익의 성격이 개념상으로는 포괄주의 증여이익에는 부합하지만, 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된 경우, 그 법인의 주주 및 출자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는 법 규정상 법45조의3부터 법45조의5에 따라 증여의제 과세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증여세 과세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40] 그러므로, 법에서 정한 증여의제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포괄주의 증여로 인한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41] 법인을 통한 간접증여는 현행 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이기 때문에 포괄주의 원칙의 과세 범위에는 속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42]

---

38) 강석규. 2023.「조세법쟁론」제7판. 삼일인포마인. 1431면

39) 이창희, 김석환, 양한희. 전게논문. 385면. 당시 영리법인을 통한 증여 규정은 구법 제41조에 예시규정이었다.

4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 소득과세우선원칙 및 제4항

41) 정재희. 전게 논문. 95면

42) 정재희. 전게 논문. 102면

다. 상증세법 제45조의5로 과세하는 증여이익의 성격

(1) 실질적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인가

법 제45조의5를 통해 부담하는 세액은 개인이 개인에게 증여할 때 부담하는 증여세와 개인이 법인에 증여하는 때, 부담하는 법인세와의 세액 차이에 해당하므로.[43] 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을 통해 과세되는 증여세는 실질적인 증여 이익에 세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과세 목적을 두고 특수관계자가 법인에 이익 등을 증여한 행위에 대해 법인세 부과로 그치지 않고 법인의 주주에게까지 증여세 과세하는 것은 우리의 법 체계와는 어우러지지 않는다. 법인격이 존재하는데, 법인의 실체가 없는 듯한 세금 효과는 경제적 실질 뿐만 아니라 법적 실질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우리 세법체계와 맞지 않다.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그 형태를 불문하고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옳은 일지만, 그 과세대상에 실질적 증여이익이 없다면 부과할 세금은 없다고 보는 것이 효율과 공평이라는 세법의 지도이념상 타당하다. 특정법인 증여의제로 과세되는 증여이익에 실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격을 강조하여 증여세를 인정한 사례를 살펴보면 과세관청과 법원의 법인격에 대한 태도를 알 수 있다. 주주 본인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 동일 주주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특정법인에게 증여한 경우인데,[44] 서울고등법원은 특정법인 증여의제조항은 법인 주주 등이 특수관계인 법인의 증여 행위로 인한 실질적 증여이익을 얻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특수관계 법인과 특정법인의 주주인 망인 사이에 서로 타인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자기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결국 개인 1인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 동일한 개인이 지배하는 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행위에 대해 법인격을 그대로 인정, 실질적으로 동일인에 대한 이익의 분여 즉, 자기분여에 대해 특정법인 증여의제로서 과세한 것이다. 이 사례를 통해 의제로서 과세된 증여세가 실질적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가 아님을 더욱 뚜렷히 확인할 수 있다. 법인세에서 법인은 주주의 집합으로서 소득의 계산단위일 뿐이다.[45] 하나의 과세단위로서 법인을 의제하여 과세하는 이유는 세법 적

---

43) 통상적으로 증여세율(10%~50%)보다 법인세율(9%~19%)이 낮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발행한다.

44) 2023.04.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2760 판결(전심, 2022.06.23.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2543 판결)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망인이 발행주식의 86.6%(나머지는 자기주식) 소유하고 있던 A법인이 망인이 100% 지분율을 소유하고 있는 B법인에게 대여금 채권을 전액 면제해 준 사안에서 B법인 채무면제이익에 대해서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사안임. 원고는 망인이 B법인 주주로서 분여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이익은 A법인 가치하락에 기인하는 것으로 A법인 최대주주인 망인이 스스로에게 분여한 자기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 채무면제로 인해 망인이 얻은 이익은 없다고 하면서 상증법상 증여에도 해당하지 않고, 실질과세원칙에도 반하여 위법함을 주장함.

45) 이창희, 전게서, 606면

용과 집행상 편의 때문인데, '상증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에 의해 과세요건을 구성하면 여기에는 이러한 개념, 논리, 실질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져버린다.

(2) 제재적 성격의 세금인가

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적 증여 이익의 존재 여부를 불문하고 특수관계자가 법인에 증여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과세라고 볼 수 있으므로 납세자의 일정 행위, 여기에서는 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를 이전시키는 행위 자체를 억제할 필요성에 따라 증여의 실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위를 과세대상으로 삼아 의제로써 규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세법의 숨겨진 제재적 기능으로 작용하여 조세의 부과 자체가 간접적 제재로써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46] 정부는 이 조항에 의하여 증여세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이용해 재산 또는 이익을 분여하는 행위를 규제하고자 의도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특수관계자가 법인에 이 조항에 열거된 거래형태에 의해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그 법인 주주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증여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추가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적 합리성 있는 거래에 대해서도 무분별하게 제재를 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조세의 부과징수는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제재의 성격이 가중되면 응능부담원칙으로서의 공평과 효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헌법에서는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이러한 기능을 하는 세재의 위헌성을 심사하고 있다. 우리 세법에서 제재적 성격의 세금으로 분류되는 대표적 규정은 상증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를 들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실질과세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하며, 증여의제 규정이 가지는 제재적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거래의 실질이 증여인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47]라고 하고 있어 특정법인 증여의제를 통해 증여세가 부과되는 때, 실질 증여이익인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특정법인 증여의제의 경우 조세회피목적 여부와는 무관하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점은 명의신탁증여의제의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는 점[48]과는 차이가 있다.

---

46) 류지민. "조세의 숨은 제재적 기능과 헌법적 한계"「조세법연구」제20권 제1호 17면 : 정책적 조세의 기능을 설명하면서 납세자의 일정한 행위를 제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해당 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한다면 납세자에 대한 간접적 제재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47) 헌법재판소. 2004.11.25. 2002헌바170 결정.

48) 이창희. 전게서. 1321면

라. 완전포괄주의 내 예시규정과 의제규정의 법적 해석 차이

2003년 포괄증여 개념이 들어오기 전까지 특정법인 증여 관련 과세 규정은 일정한 증여의 형태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로 본다라는 의제 규정이었으나, 완전 포괄주의로 증여의 개념이 넓어지면서 포괄증여의 개념 중 일부에 해당하는 증여예시 성격의 조항으로 변화되었다.[49] 상증세법은 다른 세법에 비해 유독 다양한 의제·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과세대상 자체가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거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을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증여의 대상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50]

특정법인 증여이익은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지만, 직접적인 재산이나 이익의 이전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세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없어 발생되는 과세상 한계가 있다. 법의 적용과 해석에 있어서도 과세 여부가 극명하게 달라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구법 제41조 증여예시 규정이었을 때는, 이 조항에 따른 증여이익은 포괄주의 증여 체계 내 증여의 범위에 들어와 있어,[51] 증여의 실질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별할 수 있었으나, 상증세법45조5 증여의제 규정으로 전환되고 나서는 법 체계상 포괄증여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괄주의 증여의 범위에 포섭되는 경우 상증세법 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소득과세우선원칙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우선과세원칙의 예외사항으로 하는 규정(법인세가 과세된 경우에도 해당 법인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52])을 두고 있는 등 법 적용 범위가 달라지게 된다.

정부는 법인을 통한 간접증여를 통한 변칙적 증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률상 증여이익으로 의제하여 과세하고 있다. 이는 법 체계의 일반적 범위를 넘어서는 과세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서인데, 변칙적 증여의 경우 세법이 정하는 경계가 애매하거나, 경계를 넘어서 과세가 필요한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의제의 효과는 과세상 효과적이다. 하지만, 증여의제 규정은 납세자에게 반증의 기회를 허용하지 않는 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헌법의 규범에 합치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

49) 윤지현. 2010.2.17. “상속세 및 증여세의 간주 추정규정의 한계”. 「조세법연구」 제15권 제4호. 153면
50) 윤지현. 전게 논문. 156면
51) 정재희. 전게 논문. 97면
5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4항

2. 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의 문제점

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자가 법인에 이익을 분여하는 행위로 인해 법인세와 증여세가 동시에 부과되어 이중과세 논란이 있었으나, 현재 입법적으로 배당소득과의 이중과세 문제를 제외하고는 입법적으로 해결된 상태이다. 그러나 법에서 정한 주주의 이익으로 간주되는 증여이익에 담세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즉 증여의 실질에 대한 과세인가라는 의구심과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 의제 규정 자체로서 문제가 더욱 극대화되는 특성 등 과세상 검토해보아야 할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가. 담세력 기준과 부조화

세법은 국가를 운영하는데 드는 공통의 재원을 담세력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법치주의의 시발점이 된 마그나카르타 이후 조세부담에 있어서 국가와 국민과의 약속 내지는 협의가 지켜졌기 때문에 조세제도를 기반으로 현대국가가 지속될 수 있었다. 조세제도는 국가와 국민과의 약속이며, 법률로써 부과되어야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다. 조세제도가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면 국민의 조세회피 성향은 더욱 심화된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과세와 담세력을 기준으로 한 과세는 세법이 존재의 기반이 되는 이유이다.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특정법인 증여의제 조항은 증여의 실질이 없는 경우에도 과세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변칙적 증여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가지고 있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증여의 실질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과세될 수 있고, 정작 포괄과세의 개념에 속하지만, 의제 규정 특성상 열거된 과세요건 외에는 법의 적용이 제한되는 문제점으로 인해 법의 취지에 따라 효과적으로 과세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1) 평가의 문제와 세법 체계상 문제

이 조항에서 증여의제 대상으로 삼는 이익은 미실현이익 성격이다.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는 포괄증여이익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상증세법 하에서 이론상 타당한 점이 있다. 특정 법인 증여를 계기로 주주가 얻는 증여이익이 법 제2조 제6호에서 정의하는 포괄증여의 범위 중 '타인에게 간접적 이익을 이전시키는 등'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실현이익 과세는 세법 체계상, 과세 편의상 과세 방법을 현실적으로 세제 내 구현해 내는데 일정 부분 한계를 가지게 된다.

우선, 미실현이익의 평가에 관한 문제이다.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는 필연적으로 평가 문제를 야기한다. 미실현이익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증여이익의 적정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는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이어서 적절한 세금 부과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경제적 실질을 담지 못한다. 이러한 현실적 제약에 따라 조세체계는 실현이익을 기준으로 담세력을 정하고 있다. 그래서, 세법은 실현이익에 대해 과세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이것은 세법 체계에 관한 문제이다.

미실현이익까지 포함하여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 헤이그−사이먼즈 소득개념, 즉 수평적 공평에 타당할 것이다. 포괄증여이익 개념과도 체계상 적합하다고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세법상 실현이익만을 과세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문구도 없다. 그러나, 세법이 실현 원칙으로 과세하는 이유는 자산의 평가문제와 실현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 미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납세자에게 재정 부담을 지우는 일이 되는 등 조세 부과 및 징수상 편의성 때문이다.[53] 만약 실현 원칙을 폐기하고 매년 또는 임의로 어떤 시점을 정하여 과세 대상을 측정한다면 자산과세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인 양도소득세제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 만약, 매년 자산의 시가를 측정해서 과세를 하게 되면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가 생기지 않으므로[54]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현행법 체계상 실현이익을 과세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양도소득이라는 소득 구분이 필요한 것이다. 양도소득세제나, 배당소득세제도 이러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세법 체계를 존중하는 세제 운영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재산권 보호라는 가치를 침해하지 않게 한다.

주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익이 실현되는 시점은 배당시점과 양도시점이다. 세법은 배당시점에 배당을 계기로 실현된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양도시점에 거래로써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측정할 수 있게 되어 양도소득을 과세한다.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 이익을 통해 주식가치는 증가되고 주주에게 과세되는 이익은 미실현이익이다. 특수관계자가 법인에 이익을 분여하는 때 증여이익이 과세되는데, 거래 당사자는 특수관계자이어서 객관적인 시가를 확보하기 어렵고, 거래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법인이기 때문에 그 법인의 주주에게 귀속되는 부의 무상이전의 크기를 측정하기 어렵다.

2014년 세법개정 이후 흑자법인 과세가 가능해진 상황에서 1단계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 과세가 이루어졌다면 법인의 실제를 부인하지 않는 한, 과세 범위는 법인세에 한정하는 것이 원칙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에 따르면,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도 과세권이 미치고 있는데, 법인에 분여한 이익을 계기로 그 법인의 주주가 얻게 되는 이익을 무엇으로 보는지에 대해

53) 마쓰이 요시히로. 안좌진(번역). 2021.「조세법입문」초판. 박영사. 158면

54) 마쓰이 요시히로. 안좌진(번역). 전게서. 164면

법에서 정하는 바와 대법원에서 판단하는 바가 다르고,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의제로 과세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법인이 분여받은 이익을 통해 주주에게 실제 귀속된 부분 만큼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어야 담세력에 따른 세금부과라는 세법상 기본원리가 지켜지게 된다.[55]

(2) 증여이익을 산정하는 기준

특정법인에 이익의 분여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것이 곧바로 법인주주의 이익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가) 법인수증익 기준설[56]

특정법인에 특수관계자가 분여한 이익은 일시적, 우발적 성격이라 볼 수 있으므로. 법인이 이러한 이익을 얻기 위해 별도의 추가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도 얻어지는 이익이기 때문에 법인이 얻은 증여이익 자체를 기준으로 주주 및 출자자의 증여이익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나) 주식가치증가분 기준설

자산수증이익의 경우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므로 법인세가 부과되고,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용되는데는 통상적인 여러 운용비용이 발생되므로 분여받은 이익에서 제반 경비를 차감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법인 주주의 이익이 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특정법인에게 분여된 이익이 그대로 당해 법인 주주에게 지분율만큼 이익된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주주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의 주식가치 증가분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다. 의제규정의 한계

의제라는 것은 'A를 B로 본다'는 'A와 B는 본래 같지 않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으로서 '일정한 경우에 한하는 경우에 A와 B를 같은 것으로 취급한다'는 것이다.[57] 증여 의제 규정의 경우에는 증여의 실체가 없더라도 과세 가능하도록 조문의 체계가 구성된 것으로 의제 규정의 기본성격은 과세를 제한하는 성격이다. 원칙적으로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의제 규정은 지배주주 등이 실질적 증여이익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도 과세에서 벗어날 수 없어 조세행정의 편의만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58] 반대로 포괄증여

---

55) 양인준. 2024.07.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의 체계적 법해석과 입법대안에 관한 소고.「서울법학」제32권 제2호. 692면

56) 임승순. 전게서. 938면

57) 윤지현. 전게 논문. 151면

58) 부산고등법원 2016.10.07. 선고 2015누21384 판결

에 들어가더라도 이 조항에서 규정하는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현행법에서 과세하지 못하는 점도 문제이다.[59] 의제 규정은 그 적용에 있어서 실질과 괴리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납세자에게 반증의 기회를 허용하지 않게 되는 문제도 있어 신중한 입법이 요구된다.[60] 증여의제는 증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증여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과세를 정당화할 만한 근거가 필요하다.[61]

라. 자본거래로 적용범위를 확장하는 세법 개정안의 문제점

(1) 의제규정으로 인한 과세 범위의 확장과 재산권 침해

특정법인 간접증여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는 법령에 열거한 다섯가지 거래[62]를 한정해서 의제로 과세하고 있다. 손익거래와 자본거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저가현물출자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손익거래 성격이다.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거래는 이 조항에 의해 과세할 수 없다.[63] 입법예고된 개정안[64]에서는 특정법인 증여의제 대상 거래의 범위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자본거래까지 포섭하는 내용이 들어와 있다. 자본거래는 법인의 이익과 손실이 아닌 주주 사이 지분 이동에 관한 것으로 법인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안은 자본거래를 통한 변칙적 증여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으로 거래 범위를 확대하였다고 개정 취지를 밝히고 있다. 문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거래 유형에 열거된 자본거래의 범위는 매우 넓다는 것과, 거래 유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볼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하게 된다는 점이다. 현행법에서는 특정법인 증여의제를 적용하기 위해 증여세 회피 목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024년 개정안에 부당행위계산부인[65] 대상 자본거래가 증여의제 범위에 들어오게

---

59) 이창희. 전게서. 1314면

60) 정윤옥・김상기. 2017.11.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대법원 2017.4.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 가천법학 제6권 제4호.

61) 정재희. 전게 논문. 110면

6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 1호~3호의 거래 및 시행령 제34조의5 제6항 1, 2호에서 열거하는 거래로서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제공받거나, 현저하게 높은 대가로 제공하는 거래 및 법인의 채무를 면제, 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임.

63) 2017.05.17.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50, 2022.06.29. 사전－2021－법규재산－0940 특정법인이 주주인 법인A에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A의 주주 중 일부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하여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에 대해 법45조의5에 열거된 거래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함.

64) 기획재정부 2024.7.26. 상속세및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65) 법인세법에서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법법 제52조 제1항) 그 법

되면서 자본거래에 한하여서는 증여세 회피 목적이 있는지 여부가 필수적 판단요소가 되었다. 특정법인 증여 이익 과세에 관한 규정은 의제규정으로서 실질적인 증여 이익이 아니더라도, 과세할 수 있으며, 납세자에게 반증의 기회도 허용하지 않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확대된 과세 대상에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여지가 있다.

(2) 불확정 개념 도입에 따른 과세요건명확주의 위배

조세 행위 계산의 부당성에 대해 대법원은 납세자가 행한 거래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거래 유형들은 자신이 경제적 이익을 얻기보다는 특수관계인에게 오히려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거래이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기 마련이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자본거래에 대해서 의제로서 과세하게 되는데,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거래의 대가관계만을 고려하지 않고, 거래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사회통념 및 상관행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66]하고 있기 때문에, 불확정개념이 개입될 수 밖에 없어 그 판단의 결과가 충분히 예측가능한 구체적 범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도 상증법 제45조의3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의 과세요건 중 '정당한 사유'와 같은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유의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다툼을 초래하게 된다고[67] 하며 의제 규정에 의한 과세시 불확정 개념이 개입하게 되는 경우 과세요건을 구체적으로 한정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과세요건 명확주의는 과세요건에 대한 법 규정이 추상적이거나 불명확하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규정의 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확정개념이 과세요건을 구성하게 되는 경우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지고, 그 집행이 자유재량에 맡겨지도록 되어 있다면 그 규정은 과세요건 확정주의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68]

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과 관계없이 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조세회피 의도를 전제로 한다.

66) 대법원 2006.5.11. 선고 2004도 7993.

67) 헌법재판소 2018.6.28. 2016헌바347 결정

68) 이창희. 전게서. 23면

Ⅴ. 특정법인 증여이익 과세의 개선방안

1.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른 과세원칙의 재확인

과세원칙의 타당성은 국경이 없다. 조세는 반대급부 없는 금전급부로서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조세 부과는 정당한 합의가 있다고 받아들여질 때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다. 독일의 클라우스 팁케는 조세법의 정의 기준으로서 응능부담의 원칙을 제시했다. 이는 경제적 지불 능력에 따른 과세를 의미한다.[69] 응능부담의 원칙이 조세법의 전체 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원칙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조세에 있어서 정당한 합의는 법률이고 세법은 헌법 이념 내에서 존재할 수 있다. 미국 연방의회에서도 “해당 법률의 목적이 규제 목적인지, 과세 목적인지의 구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강제성의 정도가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 주된 목적이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고 응능부담원칙에 따라 세금 부담을 분배하려는 공공의 목적에서 정부의 수입이나 재원을 창출하는 것이라면 과세 목적의 법률인 것이라고 하면서 세법의 역할과 한계를 설명하고 있다.[70]

조세법률주의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근거하여 납세의무를 진다”(헌법 제8조)에 근거한다. 실질과세원칙은 조세평등주의에 근거하여 법률상 형식과 실질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경우 그 경제적 실질을 추구하여 그에 과세함으로써 공평한 조세의 부과를 위한 것이다.[71] 특정법인 주주에 대한 간접증여는 조세의 공평을 위해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동시에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등으로 응능부담 또는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예컨대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와의 세율 차이를 가정하여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것이지만 납세의무자가 법인으로 동일하고 실현되는 이익의 크기가 해당 자산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특정 법인 주주에 대한 간접증여는 납세의무자가 주주가 되고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서 나중에 실현이 예정된 이익에 대한 선제적 과세이기 때문에 이전된 부의 가치에 대한 이견과 해결되지 않은 이중과세 문제 등 불합리한 점이 있게 된다.

---

69) JOHANNA HEY. 2024. 07. “Klaus Tipke－Life and Tax Philosophy”. 13면

70) 류지민. 2017. 8. “조세 개념의 한계에 대한 소고 : 미국 연방대법원NFIBv.Sebelius의 조세・금전벌 구별 쟁점을 중심으로”. 「조세법연구」 제23권 제2호. 45－46면

71) 이준봉. 전게서. 841면

2. 법령 개정의 필요성

가. 증여의제 규율의 부적절성

법 제45조의5의 증여이익은 포괄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하다.[72] 현행 규정상 증여의제로 규정되어 있어, 법령에 열거된 과세요건에 한하여 과세되기 때문에 그 과세범위에 있어서 포괄증여의 범위에는 미치지 못한다. 의제로 과세하기에 실질적 증여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도 과세되고 있는데, 정부는 그 규율의 범위를 넓혀가는 추세이다. 의제규정으로서 규율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

첫째, 미실현이익을 과세대상으로 삼다보니 평가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과세이익의 적정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 조항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는 법체계의 경계를 넘어서는 과세로서 법 해석 및 적용에 혼란을 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논란을 극복하기 위해 의제적으로 이익의 범위를 일방적으로 정하는 과세 방법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둘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법 45조의5 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적 증여이익에 부과되는 성격의 제도가 아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사실로 보는 의제로 과세하게 되면 실질적 증여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무분별하게 과세될 수 있어 제도의 제재 적 성격만 강화될 수 있다.

셋째, 특정법인 증여 과세 대상 거래의 범위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자본거래까지 확대하는 세법개정안은 과세요건 판단시 불확정 개념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과세요건 명확주의 및 조세법률주의에 반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논란이 될 수 있는 과세 규정을 의제로서 정한다면 강압적 과세 성격이 가중되어 사회 전체적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

나. 증여 추정 규정으로의 전환

증여의제 규정으로 규율하는 경우에는 예컨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판정 시 불확정 개념에 대한 과세관청의 자의적 판단으로 과세되더라도 납세자는 반증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증여의제 규정이 아니라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의 기회를 주어 과세관청의 일방적인 과세 판단에 대해 반박할 수 있도록 증여추정 규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72) 이창희, 김석환, 양한희. 전게논문. 415면

다. 증여의제 규정 유지하는 경우와 적용 대상 범위의 축소

(1) 특정법인 범위를 지분 50% 초과로 축소

현행법상 특정법인의 범위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주식의 30% 이상 보유이다.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로 이익을 분여받은 법인은 증여이익이 있게 되지만, 증여자는 분여한 재산 또는 이익에 직접적인 손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증여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거래는 증여자 일방의 손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경영 위기에 따른 자구노력 등의 분명한 이유가 아니라면 30% 보다 높은 수준의 지배력이 요구된다고 본다.[73] 상법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를 모회사로 보고 있을 뿐 아니라(상법 제342조의2 ①), 세법상 과점주주의 개념도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법인주주의 배당금에 대한 100% 익금불산입율을 적용하는 경우의 주주 지분을 50% 초과하는 경우로 정하는 등(법인세법 제18조의2 ①) '주주가 출자자로서 책임 외에 법인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의 예외가 되려면 과점주주 정도의 지위를 가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이 조항의 특성이 부의 이전에 대해 증여의 실질이 있다고 보아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배주주 등이 직접·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의 30%를 특정법인으로 보아 의제로 과세하는 것은 지나친 제재라고 판단된다.

(2) 자본거래 적용의 재검토

개정 세법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불균등자본거래 등에 대해서도 특정법인의 주주에 대한 간접증여를 적용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되어 있다. 일본도 비슷한 취지의 규정이 있고 법인세법 등에도 불균등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이를 익금으로 보아 과세하는 규정이 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8호).

그러나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과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두 개'의 세목으로 과세하는 것이 되어 설사 과세하는 규정을 법률로 규정하는 경우에도 자연스럽지 못하다. 또한 특수관계자 甲이 특정법인 A의 주주 乙에게 직접 증여한 경우와 비교하여 甲이 특정법인 A에게 증여한 경우, 비록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하더라도 특정법인 A는 회사의 유보금이 커지는 등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기업 스스로 재정 건전성을 보강한

73) 정재희. 전게 논문. 129면. 지배주주 등이 직접·간접적으로 보유한 주식비율의 30%라는 기준은 법 제45조의4에서 규정하는 지배주주의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에 맞춘 것으로 보이나, 이는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특수관계법인은 손해를 예상하지 않고, 출연되는 재산도 없으므로 법 제45조의5에서 규정하는 이익 제공자와 같은 수준의 지배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다는 측면에서 사회 전체적으로 '간접증여로 하여 증여세를 무리하게 부과하는 것'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간접증여 거래 당시에 과세되지 않더라도 자산의 처분이나 상속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결국 처분익으로서 과세될 것이기 때문에 과세에서 누락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이연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가능하면 적용 범위를 축소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정법률안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자본거래로 되어 있으나 이는 해석상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거래 형태 등을 열거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Ⅵ. 결 론

우리법은 변칙적 증여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포괄증여과세를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복잡한 경제활동을 모두 과세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법 체계상 한계를 넘어서는 세법상 규제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게 하고, 납세자의 조세저항성을 더욱 높이게 될 것이다. 포괄증여조항만으로는 구체적인 과세요건을 파악할 수 없는 한계 때문에 상증세법 제2조 제6항이 독자적 과세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포괄증여 과세는 상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포괄증여의 예시규정을 체계화, 구체화해 나가는 입법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상증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 증여의제로 과세되는 증여이익은 실질적 증여이익이 아니다. 법인에 분여한 이익에 대해 그 법인 주주가 얻는 이익은 법인의 주식 가치 증가분에 해당한다.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부의 무상 이전에 대해 과세는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조세제도의 본질에서 벗어난 과세는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희생을 감안하면서까지 규제를 통해 국가 전체가 얻어지는 효익이 있다고 보여지지도 않는다. 법인을 통해 이익을 분여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규제는 정상적인 경제행위 자체에도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대간 부의 이전은 장려되어야 하고, 이러한 부의 이전에 있어서 적정한 세 부담은 필요하다. 이 조항의 무리한 적용은 법인에 증여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게 하게 하고, 무리한 규제로 기업은 자체 자생력을 위해 스스로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적 노력을 하는 등의 자연스러운 동력을 잃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대로 국가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른 과세원칙 측면에서 특정법인 주주에 대한 간접증여 규정은 그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간접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납세자에게도 반증의 기회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하여 특정법인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방법을 추정 규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특정 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을 30%에서 과점주주와 같이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특정법인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넷째, 특정 법인과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자본거래에 대해서도 간접증여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입법예고(안)에 대해서는 이를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유지하는 경우에도 그 구체적 유형을 열거하여, 열거한 거래 형태에 대해서만 과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강석규. 2023.「조세법쟁론」제7판. 삼일인포마인.

마쓰이 요시히로. 안좌진(번역). 2021.「조세법입문」. 초판. 박영사

박훈・채현석・허원. 2019.「상속・증여세 실무해설」. 삼일인포마인

이준봉. 2023.「법인세법강의」. 제2판. 삼일인포마인.

이창희. 2024.「세법강의」제22판. 박영사.

임승순. 2023.「조세법」. 제23판. 박영사

이태로・한만수. 2018.「조세법강의」. 제13판. 박영사.

논 문

강남규. 2014.12.5.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에 대한 포괄증여 과세의 법적 한계－일감몰아주기와 흑자법인 증여의 과세 근거규정을 통한 분석적 접근－”.「조세법연구」제21권 제1호.

김상기. 2020.5. “영리법인의 무상이익에 대한 과세문제 고찰”.「세무와 회계연구」제21호.

김재승. 2017.10.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저스티스」. 통권 제163호.

류지민. 2017. 8. “조세 개념의 한계에 대한 소고 : 미국 연방대법원NFIBv.Sebelius의 조세・금전벌 구별 쟁점을 중심으로”.「조세법연구」제23권 제2호.

류지민. 2014. 3. “조세의 숨은 제재적 기능과 헌법적 한계”「조세법연구」제20권 제1호.

안세준. 2020. 4. 21. “영리법인을 이용한 간접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식의 변천과정 및 미국의 과세방식과 비교를 통한 시사점”.「조세법연구」제26권 제2호.

유철형. 2012.10.31. “흑자법인에 대한 증여시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양인준. 2024.07.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의 체계적 법해석과 입법대안에 관한 소고.「서울법학」제32권 제2호

윤지현. 2010.2.17. “상속세 및 증여세의 간주 추정규정의 한계”.「조세법연구」제15권 제4호.

이준봉. 2014. “영리법인을 이용한 증여와 실질과세”.「조세법연구」제20권 제2호.

이창희 외2. 2015.09.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 흑자 영리법인을 이용한 간접 증여”.「조세법연구」. 제21권 제3호

정윤옥・김상기. 2017.11.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대법원 2017.4.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인권과정의」제470호.

정재희. 2023.2. “포괄증여의 개념적 한계와 유형별 포괄주의에 관한 연구 －완전포괄주의, 흑자법인 증여의제, 하이브리드 증여－”. 서울대학교대학원 법학박사 학위논문

최원, 2024. “일본 증여세에 있어서 포괄주의 입법에 관한 연구”,『세무와회계연구』(통권 제26호).

JOHANNA HEY. 2024. 07. “Klaus Tipke－Life and Tax Philosophy”.

기 타
기획재정위원회. 2015.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기획재정부. 2024.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대한민국 법원(www.scourt.go.kr)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law.nts.go.kr)

농지 관련 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고 윤 성 · 이 은 자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은세무회계)

농지 관련 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고윤성* · 이은자**

〈요 약〉

현행 농지 관련 세제는 농지의 보전 및 영농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감면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농지의 보전 및 영농 발전과는 상반된 규정이 혼재되어 있다. 그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지 관련 세제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농지 보전이라는 원칙을 존중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농지 관련 세제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 취득단계에서 비농업인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도 저율의 취득세가 적용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보유단계에서 사실상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에 해당하지 않는 임야의 경우 재산세 저율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하게 됨에 따라 실질과세원칙[1]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셋째, 이전단계에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매우 애매하며, 현실적인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과세당국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으며, 농업에서 철수하는 비농민에 대한 감면이기 때문에 농업을 지원 육성하려는 조세정책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득단계에서 영농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를 비과세해야 한다. 또한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이미 농작물의 경작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의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 둘째, 보유단계에서 농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의 감면이 적용된 농지의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100% 감면을 해야 한다. 셋째, 농지가 지속적으로 영농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 적용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개선방안을 적용하기 위하여 실제로 농업이 이루어졌는지를 명확하게 사후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향후 보다 엄밀한 분석을 통하여 세제변경에 따른 세수효과 등을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농지가 보존되고 영농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농지 관련 세제가 개선됨에 따라 식량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논의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주제어〉 농지, 농지 관련 세제, 감면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max0907@hufs.ac.kr

** 이은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psst114@hanmail.net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2항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Ⅰ. 서 론

본 연구는 농지와 관련된 조세를 취득단계의 취득세, 보유단계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이전단계의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대상으로 농지 관련 세제 및 감면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현행 농지 관련 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지법」 제3조에서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르고,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였고, 동 법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때 필요한 규제와 조정을 통하여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을 육성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국가의 농지 보전과 이용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현행 「농지법」의 규정상 농지 보전의 원칙은 농지의 소유권에 관한 경자유전의 원칙뿐만 아니라 농지가 가지고 있는 식량안보, 환경보전, 재해방지, 관광자원, 문화와 전통의 보전 등 다원적 기능에 비추어 농지를 보전하고 농지를 다원적 기능에 맞게 이용함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위와 같은 농지 보전 및 이용의 중요성에 기반하여 우리나라 농업 관련 조세정책의 핵심은 농업 종사자의 소득을 보전하고, 농업 생산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세 감면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농지에 관한 조세제도 중 취득단계의 취득세의 경우 다른 부동산보다 낮은 과세표준 및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경감 규정을 적용한다. 농지의 보유단계에서 재산세는 저율로 분리하여 과세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산세가 분리 과세된 농지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농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생전에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감면제도와 사후에 상속하는 경우 영농상속 공제를 적용하는 등 영농기간에 혜택을 줌으로써 농지 보전에 초점을 두고 세제를 운용하고 있으나 실무상 세제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또한 농지의 보전과는 무관한 농지의 이전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등 농지 보전의 법상 원칙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상황이다.

최근 농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한 농업인구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 부분의 핵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농지에 대한 단계별 조세체계를 재점

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성이 매우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라 실질적으로 농업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농촌의 활력을 유지하며 농지를 보전하여 안정적인 식량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농지 관련 조세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단계에서는 국내 농지 관련 조세체계 현황 파악을 위하여 취득단계, 보유단계, 이전단계별 농지 관련 조세체계 및 조세 감면제도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2단계에서는 농지 관련 조세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경자유전 원칙, 농지 보전 등의 농지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농지 관련 세제의 개선을 위한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진행된 농지 관련 조세체계 및 감면제도의 현황 및 도출된 문제점을 기반하여 단계별 농지 관련 세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농지에 대한 불합리한 조세 우대를 개선하여 농지에 대한 조세의 체계가 농지 보전 및 이용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에 따라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 이론적 고찰에서는 농지 관련 세제를 검토하고, 제Ⅲ장에서는 문제점을 도출 후 제Ⅳ장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마지막 제Ⅴ장에서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농지 관련 조세체계 및 감면제도

1. 생애주기별 농지 관련 조세체계

가. 취득단계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써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 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존재한다. 농지 취득 관련 취득세가 과세 될 때는 농어촌특별세(취득세율을 표준세율 2%로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 및 지방교육세(취득세 세율에서 20/100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20%)가 과세하며, 농지의 취득 원인에 따라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취득세율은 <표 1>과 같다. <표 1>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영농에 종사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세금 감면이 적용된다.

〈표 1〉 취득단계 농지 관련 세금 및 세율

(단위 : %)

구 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매 매	신 규	3	0.2	0.2	3.4
	2년 이상 자경	1.5[2)]	비과세[3)]	0.1	1.6
상 속		2.3	0.2	0.06	2.56
증 여		3.5	0.2	0.3	4

나. 보유단계

(1)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등 「지방세법」 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동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에서 정하는 분리 과세 대상 농지에 대해서는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70%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0.7/1000의 낮을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분리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써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70%를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여 과세표준 구간별로 2/1000～5/10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2)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분리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실제 영농에 사용하는 농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 지역(읍・면 지역은 제외)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내에 있는 농지 등을 포함한 종합합산과세 대상 농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이들 농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5억 원을 차감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2020년 90%, 2021년 95%, 2022년부터 100%)을 곱한 금액에 과세표준 구간별로 10/1000～30/10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며 여기에 농어촌특별세 20%를 가산한다.

---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감면(50% 감면)을 적용한 후의 세율

3)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등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함(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0의 4)

다. 이전단계

(1) 양도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소득세 기본세율(6%~45%)이 적용되지만, 농지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으면 비사업용토지로 판정하여 소득세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한다. 농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려면 농지 소유자가 도시지역 내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 소재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주말 또는 체험 영농 소유농지는 1,000㎡ 면적 이내)를 일정한 기간 기준[4]을 충족하여 재촌·자경해야 한다.

(2) 상속 및 증여

농지를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에서 정하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 상속재산 또는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2. 생애주기별 농지 관련 조세감면제도

가. 취득단계

(1) 자경농민의 농지[5] 및 농지조성 목적의 임야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6]

---

4)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보유기간 중 60%(2015.2.2. 이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5) 농지란 논, 밭, 과수원 및 목장 용지를 포함한다.

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1의 2

(2) 귀농인의 농지 및 농지조성 목적의 임야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 소재지,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30㎞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3) 농지개발확대를 위한 취득세 면제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 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개간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또한 「농어촌정비법」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교환·분합하는 농지,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분합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가 교환·분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7)]

(4) 농업법인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조성 목적을 위해 취득하는 임야에 대한 취득세 감면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청년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7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8)]

나. 보유단계

(1)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 대상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5에 따른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해서는 토지공시가격 6억 원까지에 대한 재산세를 100%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9)]

---

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

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9)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의2

다. 이전단계

(1) 농지의 교환 및 분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분합하는 농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 등으로서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 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1/4 이하인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10)]

(2)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일정한 거주자[11)]가 8년 이상(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26년 12월 31일(개인지방소득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12)] 즉, 농지를 양도한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2>의 현재 8년 이상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현황을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평균 예정신고 건수가 100,155건, 평균 예정신고 세액이 약 1조 588억 원이었고, 평균 확정신고분 건수가 4,975건, 평균 확정신고 세액이 약 457억 원으로 농지의 양도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매우 큰 금액의 조세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다.

---

10)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

11) 8년(또는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1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9조

〈표 2〉 8년 이상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예정신고		확정신고	
	건수	세액	건수	세액
2018년	100,837	1,398,896	5,658	44,621
2019년	91,408	1,389,511	5,902	50,112
2020년	104,824	1,600,517	5,011	45,291
2021년	116,295	2,018,310	4,708	49,532
2022년	87,410	1,486,034	3,597	39,270
평균	100,155	1,578,654	4,975	45,765

출처 : 국세통계연보(2023)

(3)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 상의 필요에 의하여 다른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대토란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또는 새로운 농지 취득일로부터 1년 또는 종전 농지를 양도한 후, 그 취득한 날 또는 종전 농지 양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써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 면적의 2/3 이상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1/2 이상인 경우이다.[13)]

(4) 영농 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경농민 등이 영농 자녀 등에게 4만 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등(해당 농지 등을 영농조합법인에 현물 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 포함)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여 할 때는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영농 자녀 등의 사망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취학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14)]

13)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동 법 시행령 제67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1조

14)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동 법 시행령 제68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2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상속개시일 10년(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이내에 피상속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써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5) 영농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영농의 상속에 해당하는 경우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30억 원 한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 요건, 상속인 요건 등을 모두 갖추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영농재산에 해당해야 한다. 우선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서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에 거주해야 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서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에 거주하거나 또는 영농후계자 등에 해당해야 한다.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의 사망, 해외 이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영농재산을 처분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15]

Ⅲ. 농지 관련 세제 및 감면제도 문제점

앞에서 살펴본 농지 관련 세제 및 감면제도를 보면 정책 목적에 일관성이 결여된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경작을 위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하는 반면에, 농지를 처분하고 이농하는 자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규정을 보면 조세체계가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농지에 관한 세제와 감면제도의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5)「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3, 동 법 시행령 제16조

1. 생애주기별 농지 관련 세제 문제점

가. 취득단계 : 취득세

취득세 과세대상 농지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취득 당시 공부상의 지목이 논, 밭,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가 아닌 부동산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산출한다. 농지는 「농지법」에 따라 취득 자격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취득 자격이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비농업인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하는 농지까지도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는 한 저율의 취득세가 적용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또한 세율적용에 있어서 상속은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 비자발적 취득임에 반해,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계약에 의해 효력이 성립하는 소유권 이전 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부담부증여 부분외의 순수증여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취득세 세율체계에서는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16] 문제점이 존재한다.

나. 보유단계 :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의 경우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저율로 분리과세한다. 또한 「지방세법」 상 재산세의 분리과세 대상 농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실상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에 해당하지 않는 임야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재산세 저율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도 과세한다.

그리고 「지방세법」에서 농지의 범위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 또는 농업법인 등이 소유하는 농지를 뜻하며, 그 농지의 소유자가 직접 경작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불법으로 농지를 임차하는 경우에도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재산세는 저율로 분리과세되고 종합부동산세도 과세 되지 않는다. 또한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땅이라 하더라도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토지와 합산하여 재산세가 과세 되는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 되고,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도 과세 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또한 「농지법」과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농지의 범위가 다르다. 「농지법」에서는 전·

16) 지방세법 제10조의 2 제6항

답·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농지와 앞의 토지의 유지(溜池), 양수·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 개량시설과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일정한 것으로 정하고 있다.[17] 반면, 「지방세법」에서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임야의 경우에만 재산세 저율 분리과세 대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민이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했지만, 「지방세법」에서는 지목이 전·답·과수원에 해당하지 않아 사실상 작물의 경작지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농지"로써 과세되지 않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것은 지방세 부과원칙 중의 하나인 실질과세원칙[18]에도 부합하지 않는 과세라 지적할 수 있다.

다. 이전단계

(1) 유상 이전 : 양도소득세

매매, 교환 등 농지를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때 농지 소유자가 일정 기간에 재촌 자경했던 농지의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일반세율로 과세하고, 그 기간이 8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1년에 1억 원, 5년간 2억 원 한도)[19]. 하지만 농지의 소유기간 중 재촌 및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앞에서 「농지법」과 「지방세법」에서의 농지의 범위가 차이가 있다고 언급했는데, 「소득세법」에서의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할 때 농지의 범위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의 범위도 차이가 난다. 「소득세법」에서는 토지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에 대해 중과세율로 무겁게 과세하겠다는 취지이고, 자경농지 감면 규정은 농민이 직접 농지로 사용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것으로써 입법 취지가 다르기는 하지만 각 법마다 규정을 동일 개념의 용어를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납세자는 비사업용토지인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등의 판단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그 판단이 잘못되면 결국 그 불이익은 납세자가 감당하고 있다.

---

17) 「농지법」 제2조 제1호

18)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2항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9)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표 3〉 농지법,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의 범위

법규	농지의 범위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	1.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두엄간·양수장·못·늪·농도(農道)·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
지방세법 시행령 102조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가.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면 지역은 제외)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나. 「농지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면 지역은 제외)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라. 관계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이 소비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마. 법인이 매립·간척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해당 법인 소유농지. 다만,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면 지역은 제외)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바. 종중(宗中)이 소유하는 농지 3. 목장용지 : 개인이나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에서 소유하는 토지
조특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받는 농지는 전,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조특법 제71조 증여세 감면	가. 농지 :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만㎡ 이내의 것 나. 초지 :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서 14만8천500㎡ 이내의 것 다. 이하 생략

(2) 무상 이전 : 증여세

농지를 증여계약에 따라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농지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부동산으로써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영농 자녀 등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2.다에서 언급하고자 한다.

(3) 무상 이전 : 상속세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가업으로써 농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600억 원의 한도 내에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영농 상속의 경우 동법 제18조의3에 규정에 따라 영농상소가 재산가액을 30억 원 한도 내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영농상속공제 규정은 가업상속공제 관련 규정과 함께 영농 대규모화를 통한 농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불합리하다고 지적된 문제점들이 지속해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 농지 관련 조세감면제도 문제점

가. 취득단계 : 지방세의 감면 관련 문제점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는데, 이때 농지가 실제 경작에 사용되고 있는지는 감면의 요건이 되지 않음으로써 농지가 농지로 사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감면받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는 지목상 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취득 당시 실제 경작 등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는 그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등이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 토지가 공부상 농지이나 실제 경작 등에 사용되던 토지가 아니라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사례(조심 2015지 654, 2016.7.11.)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나. 보유단계 :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공부상 지목이 논・밭・과수원에 해당하면 재산세를 저율 분리과세하고,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도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감면 규정은 없다. 그러나, 사실상은 영농에 사용되는 농지라 하더라도 공부상 지목이 임야・잡종지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되어 더 많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되고, 종합부동산세도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또한 농지에 대한 별도의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의 감면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사실상의 용도가 다른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더 많은 보유세를 부담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다. 이전단계

(1) 영농 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까지는 수증자가 농지 등 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 재촌해야 하는 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젊은 세대로 농업이 계속 이어지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에 따라 201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농지부터는 수증자 요건이 대폭 완화되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영농에 종사하기만 하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게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기한까지만 영농 종사를 조건으로 증여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은 농지 보전이라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2)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자경농지 감면 규정은 농민에 대한 대표적인 조세 지원정책으로써 과거 농업에 종사한 적이 있었으나 현재에는 농업을 중단하는 비농민에 대한 조세 지원이므로 농업을 지원 육성하려는 조세정책의 목적과는 배치된다는 문제점이 있다(박정우・이준규, 2013). 그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감면요건 중 “재촌”과 “자경”의 의미와 입증과 관련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끊임없는 다툼이 존재하고 있다.

감면요건 중 지속해서 논란이 되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주자는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재촌하여야 한다. 여기서 농지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이 지역에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그러나 통작거리를 교통수단, 도로의 발달 및 농업의 기계화 등을 고려하여

볼 때 30km 이내의 거리에 대한 합리적인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거주자는 해당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한다. 자경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농가부업소득 제외)과 근로소득의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경 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연간 소득이 3천700만 원 미만이어야 직접 경작 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20] 그런데 이 3천700만 원 기준의 근거를 찾아보면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금, 공익수당 등의 지원 요건 중에 소득요건이며, 예를 들어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2010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의 지원대상 요건 중에도 이 소득요건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최저임금의 인상,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면 현행 3천700만 원 기준은 현실과 괴리되는 기준으로 판단된다.

또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자경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21], 개념이 모호하여 납세자와 과세 관청 사이의 사실관계 판단에 있어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쟁점이다(김태완, 2019). 농업기술의 발달, 농업의 기계화 및 자동화로 인해 현대의 농업은 더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아니며 오히려 자본 집약적인 산업으로 변화되어 오고 있다. 더군다나 농업인의 고령화, 농촌의 지속적인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필요한 노동력을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현실인데,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농민이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산물을 경작 또는 재배해야만 자경으로 인정한다는 감면요건은 현실적이지 못하고, 객관적인 증빙을 확인하기 매우 어려운 기준이라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셋째,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대상 농지는 전・답으로써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재촌・자경 요건을 갖췄는지 아닌지에 대해 과세 관청과 납세자 사이에 다툼이 많고, 상당히 많은 사례가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 잡종지 또는 대지인 경우에 발생한다.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갖추어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납세자가 재촌・자경의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과세 관청에 제출하여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때 많은 경우 납세자가 객관적인 증거자료라고 하기에는 불분명한 인우보증서,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할 경우 과세 관청은 감면 적용을 부인한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객관적인 증빙이 매우 어

20)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2014.02.21. 신설되어 2014.07.01.부터 시행되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21) 「농지법」 제2조 제5호

려운 기준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논란의 소지를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다. 자경 감면에 관해 납세자와 과세 관청의 의견충돌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의 <표 4>에 제시된 농지로 인정되는 사례와 <표 5>에 제시된 농지로 인정이 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존재함으로써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 지속적인 갈등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표 4〉 농지 인정된 분쟁 사례

사건번호	공부상 지목	판 단
조심2023중9181, 2023.12.18	전	쟁점토지는 지목상 농지로 피상속인이 취득 후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농업 외에 별도의 직업이나 소득만을 이유로 자경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것이 처분청의 조사로 확인되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보유기간 중 최소한 1년 이상 경작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바, 처분청이 이를 배척하려면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으나, 처분청은 판독이 쉽지 않은 항공사진을 통해 쟁점토지를 임야로 단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6중0756, 2016.04.20	전	청구인은 1998.5.29. 귀농하여 2015년 쟁점토지를 양도할때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와 연접하여 거주하면서 쟁점토지 외에 연접한 지역의 농지(밭)을 계속 경작하고 있는 등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토지는 접근이 용이하고 상시 경작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로서 청구인이 자기노동력으로 8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감면적용이 타당
조심2023중7465, 2024.01.10	전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경작에 이용하다가 방치한 사실만 확인될 뿐 임대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사실상 농지 이외의 용도로 전용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1975.05.09.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은 처분청도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 당시 청구인의 건강상태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표 5〉 농지 불인정 분쟁 사례

사건번호	공부상 지목	판 단
조심2021부3281, 2021.11.09.	과수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토지특성조사표 및 농지원부 상 지목이 과수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토지현황은 다를 수 있고, 쟁점토지의 인터넷 사진 및 항공사진에 의하면 장기간 잡종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부7177, 2023.09.14.	임야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등을 보면, 쟁점토지에 나무가 심어져 있거나 쟁점토지가 밭농사에 사용된 흔적이 일부 보이나, 처분청이 제출한 로드뷰 등을 보면, 쟁점토지에 잡풀이 자라 있는 모습도 일부 촬영되어 있어 사진자료만으로는 8년의 기간동안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전7486, 023.07.18	임야	쟁점토지에 밤나무가 식재되었다고 하여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닌 점, 청구인은 밤나무 경작과 관련하여 영농관리에 들어간 퇴비, 비료, 농약, 농기자재 구입 등에 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수확물 판매 등과 관련한 증거서류 또한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에 밤나무 농작을 경작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현장사진 및 위성사진 등을 보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라고 보기 어렵고, 건강상의 이유라는 사정만으로 일시적 휴경상태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8192, 2023.04.05.	임야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직업, 소득내역, 쟁점토지의 면적, 세대원의 거주지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한 증빙 등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Ⅳ.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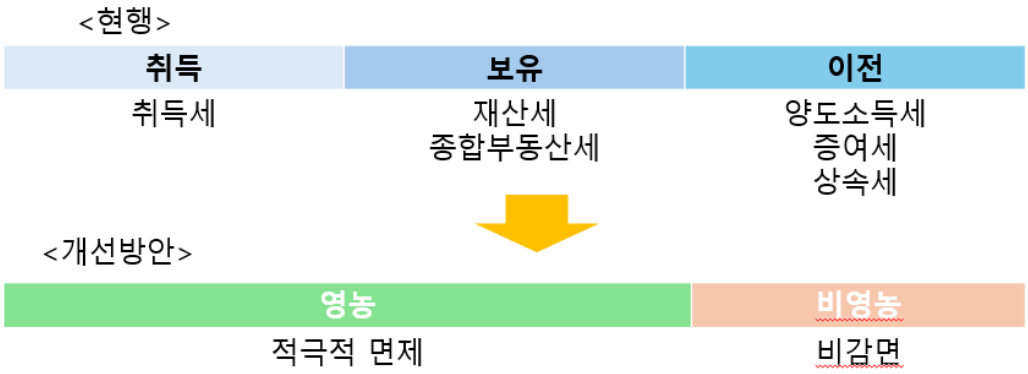
2021년 10월 14일에 시행된 농지법의 개정 이유는 「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와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서만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헌법」상 원칙에도 불구하고 전체농가 중 임차 농가가 51.4%로 자경 농가를 초과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지켜지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원칙의 변화가 없으므로「헌법」에 위배되는 상황이 현실이 되고 있다.

농업이 더는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이 아니고, 농촌인력의 고령화 및 농촌인구의 감소가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사회 속에서도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식량안보 정책 측면에서 농지를 보전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을 보호 및 지원할 필요는 분명하다. 따라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반드시 고수하는 것은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원칙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농지가 계속해서 영농에 활용되도록 세제를 운용할 것인지, 아니면 농지는 경작을 직접 하는 자만이 소유해야 하고 직접 경작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타인에 의한 경작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농지 관련 세제를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실질과세 원칙에 기반하고, 농지가 영농에 활용되는 것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그림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농지가 영농에 활용이 된다면 현재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조세부담을 면제하고, 농지가 영농에 활용되지 않는다면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농지 관련 세제의 원칙을 적립하고 운용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림 1〉 농지 관련 세제 개선 방향



1. 취득세

첫째, 원칙적으로 영농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면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농지의 취득에 대해서도 취득세는 과세하되 현재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취득 원인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감면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사람으로 정해두고 있는데, 이렇게 복잡한 조건을 두면 농업으로의 신규 진입 및 농업을 창업하려는데 지장이 될 수 있으니, 실제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다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감면요건을 최대한 단순화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 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및 임차하여 경작하지 않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직접 및 임차하여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사후관리 규정을 두고 있으니, 감면을 신청할 때 감면신청서와 함께 직접 및 임차 경작 및 경작에 사용할 것을 입증하는 자료의 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할 것이다.여 농지를 취득하는 시점에서 취득세의 감면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농지 소유자가 경작을 시작하는데 있어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넷째, 감면대상 농지의 범위를「지방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공부상 전·답·과수원인 토지로써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로 제한하고 있어서, 실제로는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지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지적공부상 전·답·과수원이 아닌 사실상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적용이 배제된다.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토지가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도 부합하게 될 것이다. 물론 지속적 영농 사용의 기준 및 증빙의 명확화를 위한 시스템도 동반하여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취득세 과세표준 관련 규정이 지속적으로 개정되면서 현재 유상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무상취득의 경우 개인·법인 모두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되, 시가인정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에 따라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개정의 결과로 농지의 취득원인에 따라 이미 취득세 과세표준이 차별적으로 적용되어 있는데 세율까지 차별적으로 달리 적용되는 것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미약하다. 따라서 취득세 세율구조를 단순하게 개정하여 합리적인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재산세 및 지방소득세

농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의 감면이 적용된 농지의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100% 감면을 해야 할 것이다. 농지가 농지로 계속 사용되어 농지 보전 및 식량안보에 기여하고 있다면 그 농지를 소유한 자에게 보유세의 부담을 제거해주는 것이 정책적인 측면에서 더욱더 합당할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농업이 이루어졌는지를 명확하게 사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3. 양도소득세

농지와 관련한 현행 조세체계 및 감면제도 중 가장 많은 비판 및 지적을 받는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농지 관련 조세제도의 운영 원칙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즉, 농업의 지속 유지의 경우 우대를 적용해주고, 농업의 종료 이후에는 우대조치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농지가 지속해서 영농에 사용되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폐지해야 할 것이다.

이미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농지의 보유기간 중 일정 기간 이상 실제 경작에 사용했는지에 따라 부담세액이 차별적으로 계산된다. 일정 기간 재촌·자경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반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농지를 처분하고 농업을 그만두는 자에게 이 정도의 우대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농업은 계속하지만, 농경지를 옮기기 위하여 구 농지는 처분하고 신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농지의 자발적 처분이 아니라 공익사업 등의 시행에 따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농업을 중단하고 이농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취지는 합당하지 않다.

그리고 앞에서 8년 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듯이 지적공부상의 지목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 시점에 사실상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한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소유자가 재촌·자경한 것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의 100%가 감면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감면요건을 갖췄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항상 쟁점이 되어 때로는 억울한 과세가 이루어지

기도 하고 때로는 부당한 감면을 적용받게 되는 결과도 초래되고 있다.

1996년 농지법 제정 이후 농업 개방화 및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농지취득 및 소유 관련 사전 규제를 완화해온 결과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하고 불법적으로 농지를 임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농어촌식품부 등 관계부처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따라서 농지를 보전하고 농업인을 보호, 농업의 발전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이농인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100% 감면 규정은 적용기한이 끝나는 2026년 12월 31일 이후 일몰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폐지에 따른 조세저항을 완화하기 위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농지의 보유기간 및 경작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다. 현재 토지의 경우에는 지목에 상관없이 보유기간 15년 이상이면 최대 양도차익의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반면 1세대 1주택의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구분하여 각각 10년 이상이면 40% 씩 적용하여 최대 양도차익의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농지의 경우 양도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에 해당한다면 보유기간과 자경기간을 구분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농지 보유기간과 영농기간이 각 10년 이상이면 25%씩 적용하여 최대 양도차익의 50%를 공제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농지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낮아진다면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농지 관련 세제 및 감면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현행 농지 관련 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함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현행 농지 관련 세제는 농지의 보전 및 영농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감면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농지의 보전 및 영농 발전과는 상반된 규정이 혼재되어 있다. 그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지 관련 세제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농지 보전이라는 원칙적인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농지 관련 세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 취득단계에서 비농업인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도 저율의 취득세가 적용되고 있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둘째, 보유단계에서 사실상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공부상 지목이 전 답·과수원에 해당하지 않는 임야의 경우 재산세 저율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도 해당하게 됨에 따라 실질과세원칙[22]에도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셋째, 이전단계에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매우 애매하며, 현실적인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과세당국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으며, 농업에서 철수하는 비농민에 대한 감면이기 때문에 농업을 지원 육성하려는 조세정책의 원칙에 위배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관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농지 관련 세제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득단계에서 영농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를 100%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며, 실제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다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감면요건을 최대한 단순화 해야 한다. 또한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이미 농작물의 경작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의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

둘째, 보유단계에서 농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의 감면이 적용된 농지의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100% 감면을 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서 실제로 농업이 이루어졌는지를 명확하게 사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농지가 지속적으로 영농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즉, 농업의 지속 유지의 경우 우대를 적용해주고, 농업의 종료 이후에는 우대조치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폐지에 따른 조세저항을 완화하기 위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농지의 보유기간 및 경작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사회 및 경제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농업의 중요성이 약화하고 있으나 식량안보의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에 따라 농지를 보전하고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농지 관련 세제는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라 「헌법」 등 농지 관련 법규의 개정이 이루어지는데 본 연구가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22)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2항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참고문헌

김보남 · 김현동, 2010, 농지에 대한 조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제7집
김태완, 2019,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영교육연구, 제34권 제1호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국세청, 2023, 국세통계연보
나성길 · 정찬우 · 정평조, 2018, 사례와 함께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설, 삼일인포마인
류지웅, 2016, 도의 법적 문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제76집
박명호, 전병힐, 2011,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개편방안, 조세재정연구원
박석두 · 채광석, 2013,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농지임대차 관리 방안, 농촌경제연구원
박정우, 이준규, 2013,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제도의 연구, 세무학연구 제30권 제4호
박 훈 · 정지선, 2009,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연구, 조세연구, 제9－3집
이기육, 2016,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회계연구 47권
임소영 · 원은송, 2019, 농업분야 조세감면 관련 제도개선 방안 연구, 농촌경제연구원
장기용, 2013, 현행 세법상 농지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의 합리적 개선밥안, 부동산학보, 제53집
정연식, 2011,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에 관한 연구, 세무회계저널, 제12권 제2호
채광석, 2016,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농지임대차 관리 방안
채광석 · 김홍삼 · 윤성은, 2016,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농지임대차 관리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채광석 · 박석두, 2012, 농지상속 실태와 정책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홍범교 · 이태호 · 이명헌, 2016, 2016 조세특례임의심층평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기획재정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 10 분과

조세일반

장소 : 119호 사회자 : **박상연 교수** (배재대)

시 간	발표논문 제목	저자 및 발표자*	토론자
16:40 ~ 18:10	한국 세무학회 창립과 세무학 학문의 정립	**서희열*** (강남대)	**송쌍종** (서울시립대)
	세무사 일부 보수의 표준화 필요성과 그 방안에 관한 연구	이전오 (성균관대) **황인규*** (강남대)	**김병일** (강남대)

한국 세무학회 창립과
세무학 학문의 정립

서 희 열
(강남대학교)

한국 세무학회 창립과 세무학 학문의 정립

서희열*

〈요 약〉

2024년 갑진년 올해는 한국세무학회가 1988년 창립된 지 35년이 되는 해이다. 한국세무학회가 오늘까지 이렇게 장족의 발전을 하게 된 것은 회원 여러분의 학회에 대한 사랑과 그동안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주신 역대 회장님들과 임원님들의 수고 때문이다. 앞으로도 한국세무학회가 계속 발전하여 세무학 학문과 우리나라 세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세무학은 조세정책학, 조세법학 그리고 세무회계학의 3개 연구분야가 서로 유기적으로 어우러져 세무학의 학문분야가 탄생하게 된다. 먼저 조세정책학은 조세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경제학적으로 접근하는 연구 분야이며, 이러한 조세정책학을 토대로 법학적으로 제도화 시킨 것이 조세법학의 분야가 되고, 이러한 제도의 활용하에서 회계학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진 분야 세무회계학이다. 이처럼 조세정책학, 조세법학 그리고 세무회계학의 각 연구 분야가 서로 유기적으로 어우러져 세무학이라는 학문분야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에서의 세무학 교육은 지난 1981년 2년제인 국립세무대학의 설립과 1984년에 4년제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가 개설된 이후이므로 실제로는 40년이 안되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동안 세무(관련)학과의 존폐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전문대학의 어려움은 매우 컸다.

전문대학의 세무(관련)학과는 최고 86개 대학에 개설되었다가 48개 대학이 폐과되어서 현재는 38개 대학에만 존속되어 있다. 그리하여 충북, 대전, 광주, 강원에는 2년제 세무(관련)학과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는 아마도 세무학이라는 학문의 어려움 때문에 학생들의 선호가 낮기 때문이라 평가한다.

교육부의 2024학년도 대학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에 따르면 우리 나라에 세무관련학과가 개설된 학교가 전문대학에 38개 대학, 4년제 대학에 23개 대학, 그리고 1개의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및 일반대학원 세무관련학과 그리고 법무대학원, 경영대학원 등 특수대학원이 수개의 대학교에 개설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1988년 창립한 한국세무학의 창립과정과 그동안의 연구 및 학습 활동에 대해 살펴보고, 세무학의 학문적 정립과 세무학의 연구 제 분야에 대해서도 연구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기존에 발행하였던 「한국세무학회보」를 참고하고, 확인하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주제어〉 한국세무학회, 창립과정, 세무학 학문, 조세정책학, 조세법학, 세무회계학

*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명예교수(suhhy810@naver.com)

Ⅰ. 서 론

2024년 갑진년 올해는 한국세무학회가 1988년 창립된 지 35년이 되는 해이다. 한국세무학회가 오늘까지 이렇게 장족의 발전을 하게 된 것은 회원 여러분의 학회에 대한 사랑과 그동안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주신 역대 회장님들과 임원님들의 수고 때문이다. 앞으로도 한국세무학회가 계속 발전하여 세무학 학문과 우리나라 세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세무학(the science of taxation)은 “조세를 적정하게 부과하고 이를 징수하는 것과 관련된 제 문제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세무학은 조세가 부과되고 납부되는 제반 과정을 그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문인 것이다[1].

세무학은 조세정책학, 조세법학 그리고 세무회계학의 3개 연구분야가 서로 유기적으로 어우러져 세무학의 학문분야가 탄생하게 된다. 먼저 조세정책학은 조세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경제학적으로 접근하는 연구 분야이며, 이러한 조세정책학을 토대로 법학적으로 제도화 시킨 것이 조세법학의 분야가 되고, 이러한 제도의 활용하에서 회계학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진 분야 세무회계학이다[2].

이처럼 조세정책학, 조세법학 그리고 세무회계학의 각 연구 분야가 서로 유기적으로 어우러져 세무학이라는 학문분야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조세는 현상적인 구조(structure) 또는 조직(system)으로서의 제도적 측면(institutional aspects)과 조세효과를 달성하도록 제도가 작용하는 실행적 측면(executive aspects) 즉, 제도와 실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세무학의 연구대상은 조세의 실행적 측면인 조세법학, 세무회계학은 물론이고 조세의 제도적 측면인 조세정책학의 부문도 포용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3].

한편 우리나라의 세무학 교육은 아주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별다른 발전없이 오직 단순한 개념전달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현실에 비추어 볼 때는 크게 뒤진 것이며, 대학교육의 근본목표인 진리탐구와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는 것이다. 더구나 세무학 교육은 과목의 특성상 이론과 실무를 동시에 연구해야 하므로 단순하게 이론만 가지고는 세무학 학문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4].

본 연구에서는 지난 1988년 창립한 한국세무학의 창립과정과 그동안의 연구 및 학습 활동에 대해 살펴보고, 세무학의 학문적 정립과 세무학의 연구 제 분야에 대해서도 연구하기로 한다.

---

1) 서희열 외, 「세무학개론」, 세학사, 2017, p.23
2) 서희열 외, 전게서, p.24
3) 서희열 외, 전게서, p.23
4) 서희열 외, 전게서, p.23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기존에 발행하였던 「한국세무학회보」를 참고하고, 확인하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편 적지않은 대학과 대학원에 세무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지만 아직도 세무학에 대한 학문적 정립과 세무학 교육 교과과정에 관한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매우 부족한 편이다.

Ⅱ. 한국세무학회 창립과 세무학과의 태동

1. 한국세무학회 창립

가. 창립과정

창립 35주년을 맞이한 한국세무학회의 오늘이 있기까지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필자는 더 늦기전에 한국세무학회의 창립과정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 따라 이 글을 쓴다. 한국세무학회는 지난 1988년 7월 2일 동국대학교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출발하였으며, 우리 학회의 탄생의 역사는 다음과 같다[5].

1985년 봄 성균관대학교에서 정년퇴임하신 이철성 교수가 주축이 되어 국세청 세무공무원 출신으로 대학 교수[6]와 대학에서 강의하는 시간강사, 그리고 연구자를 비롯한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분들과 같이 친목 모임을 갖자고 발기하여 그 해 여름 8월에 을지로 6가 소재 국립의료원 내에 소재하는 스칸디나비안 클럽에서 제1회 모임을 갖고, 앞으로 정기적으로 3개월에 한번씩 모임을 갖도록 결정하였다.

이렇게 3개월마다 당시 양재동에 소재한 한국조세연구원 등에서 수차례의 정기 모임을 가진 후, 이제 고인이 되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와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석좌 교수로 재직하시다가 타계하신 최명근 교수와 한양대학교에서 정년퇴임하신 이우택 교수 그리고 전주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이던 서희열을 포함해서 3인[7]이 중심이 되어 친목모임보다는 학문을 연구하는 학회로 발전하여, 조세학문의 연구에 전념하는 것이 학문을 하는 대학 교수로서의 자세가 맞다고 뜻을 모았다.

---

5) 서희열, 「세무학회의 20년사」, (사)한국세무학회, 2008, pp.55～56.

6) 당시 대학 전임 교수에는 성균관대 이철성 교수와 국세청 공무원 출신은 국립세무대학에 재직중인 오재선, 문병항 등 교수들이 있다.

7) 3인의 교수들은 1986년 2학기에 동시에 대학교수 임용을 받았다.

그리하여 기존의 친목모임 회원 중에 우리 3인과 뜻을 같이 하는 23인[8]이 모여 당시인 1988년 2월 13일 하오 5시부터 상기 스칸디나비안 클럽에서 세무학회 창립준비 모임을 가진 바 있다.

그 후 우리 3인은 수시로 만나 초대 한국세무학회 회장으로 어느 분이 적임한지를 상의한 결과, 이우택 교수와 같이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고 동국대학교에 재직중이셨던 고 윤종안 교수를 초대 한국세무학회 회장으로 모시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3인은 당시 윤종안 교수의 댁을 방문하고 한국세무학회의 창립 취지를 설명하면서 초대 회장을 맡아 주실 것을 부탁드렸으며, 고 윤종안 교수께서는 이를 흔쾌히 수락하셨다.

부학회장은 서울 소재 대학을 대표하여 윤계섭 서울대교수, 지방 소재 대학을 대표하여서는 선병완 전북대교수, 그리고 2년제 대학을 대표하여 장안실업전문대 김면규 교수, 이렇게 3인을 부회장으로 모시기로 하고, 상임이사는 5인 이내로 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이우택 교수가 초대 총무이사를, 고 최명근 교수가 편집이사를, 그리고 본인이 교육이사를 맡기로 하고 드디어 1988년 7월 2일, 동국대학교 상경대학에서 한국세무학회의 역사적인 창립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한국세무학회의 창립총회에는 70여명이 직접 참석하는 대 성황을 이루었으며, 참석하신 분들은 대부분 창립준비위원 23인과 이 분들이 초청하신 조세와 관련있는 분들이 많이 참석하셨다.

당시에는 조세를 학문대상으로 하는 세무학의 3대 연구 분야 즉, 조세정책학, 조세법학, 세무회계학 분야 중 조세정책학과 조세법학 분야를 연구하는 분들은 아주 극소수였다. 그래도 세무회계학 분야는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면서 회계학과나 경영학과에 재직하는 교수들이 다수 계셔서, 먼저 세무회계학 분야 교수들을 중심으로 우리 한국세무학회 회원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였다.

나. 한국세무학회 회원 현황

우리 한국세무학회 회원은 창립연도인 1988년에 82명이었으나 매년마다 그 숫자가 증가하여 서희열 교수가 학회장을 역임한 지난 2005년에 드디어 1,000명을 돌파하여 조세관련 학회[9]에서는 가장 큰 규모인 학회가 되었다.

---

8) 구동회(한양대 박사과정), 권해호(부산대 박사과정), 김동석(호남대 교수), 김면규(장안전문대 교수), 김완석(중앙대 박사과정), 김용기(한양대 박사과정), 김재길(경희대 박사과정), 김종식(한양대 박사과정), 문병항(세무대 교수), 서순종(경희대 박사과정), 서희열(전주대 교수), 오재선(세무대 교수), 유석규(강원대 교수), 이우택(한양대 교수), 이용진(한양대 박사과정), 이택용(명지대 박사과정), 정태인(건국대 박사과정), 채승룡(국세청), 최명근(서울시립대 교수), 최병로(수원대 교수), 최성열세무대 교수), 홍학표(건국대 교수), 황영현(단국대 박사과정)

9) 조세관련 학회는 조세정책학, 조세법학, 세무회계학을 연구대상으로 삼고있는 학회를 뜻한다.

올해인 2024년 1월을 기준으로 현재는 회원수가 4,498명으로 학술진흥재단에 등록되어 있는 국내의 사회계열 학회 중에서는 회원수 규모면에서 대형 학회중의 하나가 되었다. 회원을 직업별로 <표 1>을 통해 살펴보면 공인회계사가 638명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교수와 세무사가 같은 573명이다. 이어서 변호사(185명), 공무원(178명),연구원(167명) 순서이다.

또한 회원등급별 구분에서 보면 1. 인터넷 가입회원이 2985명으로 신규회원 대부분이 인터넷으로 회원가입을 하고 있고 2. 일반회원(연회원) 중 기간만료 회원은 669명이며, 3. 일반회원 19명, 4. 영구회원 786명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 1〉 한국세무학회 회원의 구분

(2024년 1월 기준)

회원등급		인원	직업별	인원
0		6	공무원	178
1	1. 인터넷 가입회원	2,985	공인회계사	638
2	2. 일반회원(연회원) 중 기간만료회원	669	관세사	7
3	3. 일반회원	19	교수	573
4	4. 영구회원	786	박사과정이상	502
5	5. 상임이사	14	변호사	185
6	6. 회장단	3	세무사	573
7			연구원	167
8		1		
9		1		
10	10. 홈페이지 업체 아이디	14	기타	1,675
계		4,498		4,498

자료 : 한국세무학회 회원 명부

2. 세무학과의 태동과 현황

가. 세무학과의 태동

우리나라 대학에서의 세무학 교육은 지난 1981년 2년제인 국립세무대학의 설립과 1984년에 4년제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가 개설된 이후이므로 실제로는 40년이 안되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동안 세무(관련)학과의 존폐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전문대학의 어려

움은 매우 컸다.

나. 세무학과의 현황

<표 2>에서 보면 전문대학의 세무(관련)학과는 최고 86개 대학에 개설되었다가 48개 대학이 폐과되어서 현재는 38개 대학에만 존속되어 있다. 그리하여 충북, 대전, 광주, 강원에는 2년제 세무(관련)학과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는 아마도 세무학이라는 학문의 어려움 때문에 학생들의 선호가 낮기 때문이라 평가한다.

교육부의 2024학년도 대학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에 따르면 우리 나라에 세무관련학과가 개설된 학교가 <표 2>, <표 3>과 같이 전문대학에 38개 대학, 4년제 대학에 23개 대학, 그리고 1개의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및 일반대학원 세무관련학과 그리고 법무대학원, 경영대학원 등 특수대학원이 수개의 대학교에 개설되어 있다.

〈표 2〉 전국 전문대학 세무회계 관련학과 개설 현황

지역	전문대학명	폐과 변동사항		
		합계	폐과	존속
서울	숭의여대, 한양여대, 배화여대, 명지전문대, 인덕대, 동양미래대, 백석예술대, 서일대	8	0	8
경기	장안대, 동남보건대, 수원과학대, 수원여대, 오산대, 안산대, 연성대, 동서울대, 신구대, 경민대, 경복대, 부천대, 유한대, 경인여대	24	10	14
충남	백석문화대	1	0	1
충북	－	4	4	0
대전	－	3	3	0
경북	구미대, 카톨릭상지대	8	6	2
울산	울산과학대	1	0	1
대구	계명문화대, 영진전문대	7	5	2
부산	경남정보대, 부산경상대	6	4	2
경남	문성대, 남해대학, 거창대학	8	5	3
전남	순천제1대, 청암대	4	2	2
광주	－	2	2	0
전북	전북과학대, 기전여대	5	3	2
강원	－	2	2	0
제주	제주국제대	3	2	1
합계		86	48	38

자료 : 각 대학 요람 참고

〈표 3〉 전국 4년제대학 세무(관련)학과 개설 현황

지역(대학 수)	대학명	지역(대학 수)	대학명
서울(2)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경희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경상남도(2)	창원대학교 세무학과 경상국립대학교 회계세무학부
경기도(3)	강남대학교 세무학전공 협성대학교 세무회계학과 한양대학교(에리카C) 회계세무학과	전라북도(2)	전주대학교 세무회계학과 원광대학교 회계세무학과
인천광역시(1)	인천대학교 세무회계학과	전라남도(1)	광주대학교 회계세무학과
충청남도(2)	남서울대학교 세무학과 건양대학교 금융세무학과	사이버 대학교(6)	경희사이버대 세무회계학과 고려사이버대 세무회계학과 서울디지털대 세무회계학과 세종사이버대 세무·회계·금융학과 숭실사이버대 세무회계학과 한양사이버대 세무회계학과
경상북도(2)	계명대학교 세무학과 안동대학교 회계세무전공		
대구광역시(2)	대구가톨릭대학교 회계세무학과 영남대학교 회계세무학과	총계	23개 대학

자료 : 각 대학 요람 참고

Ⅲ. 한국세무학회의 연구 및 학술활동

1. 연구 활동

가.「세무학연구」창간

한국세무학회는 1988.7.2. 창립한 이후로 학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학회지를 발간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창립 회원을 중심으로 2년뒤인 1990년 6월 21일자로 초대 윤종안 회장님(동국대)의 임기중에 학회지「세무학연구」창간호인 제1호를 발간하였다. 아래 <표 4>는 당시「세무학연구(제1호)」에 게재된 논문 제목과 연구진이다.

이후「세무학연구」는 제6호(1995.7.25.발간)까지는 1년에 1회 발행하였다가, 1996년 제7호 부터는 1년에 2회씩 발행하다가 2001년 8월 25일 발간된「세무학연구(제18권 제1호)」부터는 권호의 체계를 제대로 갖추어 2001년 12월 26일자로「세무학연구(제18권 제2호)」발간하였다.

이처럼「세무학연구」는 1년에 2회씩 발행하다가 2003년 제14대 회장 김광윤 교수(아주대) 임

기중에는 1년에 3회(제20권 제1호, 제20권 제2호, 제20권 제3호)를 발행하였으며, 현재와 같은 1년에 4회 분기별(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발행은 제15대 회장이셨던 박성배 교수(경원대) 임기중에 이루어졌다.

〈표 4〉 「세무학연구」 제1호(창간호) 논문제목 및 연구자 (1990.6)

논문 제목	연구자
자본이득세제 도입에 관한 연구	윤계섭(서울대)
세무학과 세무학 연구방법론	이우택(한양대)
회계변경의 정보유용성	조인선(전남대)
부의 무상이전과 자본이득과세와이 관계소고	최명근(서울시립대)
이연법인세회계시스템의 유용성에 대한 고찰	박인주(서경대)
기업의 사회적 책입보고모형의 유용성에 대한 고찰	윤종안(동국대)·황용호(동국대)·홍정화(가천대)
지방정부의 재정자원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선병완(전북대)
예산의 동기유발효과에 관한 기대이론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한문성(서경대)
회계에 있어서 정보효과분석에 관한 이론적 고찰	김범진(상지대)
세금계산서제도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희열(강남대)
조세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완석(서울시립대)

나.「세무와 회계저널」 창간

한국세무학회는 1988년에 창립되었지만 당시에는 세무학의 3대학문분야인 조세법학, 조세정책학, 세무회계학 전공교수들 중 조세정책학과 조세법학 전공교수는 극히 소수이었으며, 대다수 교수가 세무회계학 전공 교수들이었다.

그러나 세무회계학 전공교수들도 세무회계학 보다는 순수 회계학 전공교수(재무회계학, 관리계회학)의 숫자가 많은 편이었으며, 또한 재무회계학, 관리회계학 교수들이 학회지인 「세무학연구」에 논문 투고와 게재가 힘들다는 의견이 다수가 있어, 그렇다면 재무회계학, 관리회계학 교수들의 연구분야까지 포함시킬 수 있는 「세무와 회계저널」이라는 두 번째 학회지를 2000년 5월 29일자(제1권 제1회)로 제11대 회장인 이양현(중앙대)교수께서 창간하였다.

아래 <표 5>는 창간호 「세무와 회계저널(제1권 제1회)」에 게재되었던 논문명과 연구자들이다. 당시에는 「세무학연구」가 1년에 2회씩, 발행하였으므로, 「세무와 회계저널」도 1년에 11월, 5월 2회씩 발행키로 하고, 같은 해인 2000년 11월 29일 「세무와 회계저널」 제1권 제2호가 발간

되었다.

동「세무와 회계저널」학회지는 2005년 학회장 서희열교수(강남대)부터「세무학연구」와 같이 1년에 4회씩 발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하였다. 그러나「세무와 회계저널」에 많은 논문이 투고되어 이후인 2013년 부터 2개월에 1회씩 1년에 6회(2월 말일, 4월 30일, 6월 30일, 8월 31일, 10월 31일, 12월 31일)씩 발간되었으며, 금년인 2024년에 이르기 까지 1년에 6회씩 발행되고 있다.

〈표 5〉「세무와 회계저널」창간호(제1권 제1호, 2000.5) 논문 제목 및 연구자

논문 제목	연구자
한·미 조세제도의 비교연구 ; 지방세 구조를 중심으로	강경규(명지대)
세무행정에서의 전자신고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이우택(한양대)
우리나라 신용평가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국가별 비교를 중심으로	나영(중앙대)·진동민(오산대)
운용리스이용 실태와 운용리스정보가 기업의 위험평가에 미치는 영향	최명근(서울시립대)
지주회사 과세제도의 현황과 과세방안	박인주(서경대)
구조조정촉진제도에 대한 회계론적 평가	선병완(전북대)
자동화수준과 자동화도입동기간의 적합성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윤우영(계명문화대)·조영경·전재표(경동전문대)
우리나라 회계기준의 변천과정에 관한 역사적 고찰	홍정화(가천대)·윤태화(가천대)
우리나라 전자장부제도의 도입에 따른 세무조사에 관한 연구	서희열(강남대)·김상철(세무사)

2. 학술 활동

가. 한국·중국 세무학회 국제학술대회 개최

우리 학회는 학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학술교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1998년 6월 25일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연구발표회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우리나라 세제의 평가와 개편방향"이란 대제목으로 열었다. 또한 당시 서희열 부회장이 중심이 되어 중국 세무학회를 방문하고, 제1회 한국·중국 세무학회 국제학술대회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2000.8.10.~8.11 이틀에 걸쳐 뜻깊은 교류를 시작하였다.

이어 2000.12.15. 서울에서 중국 세무학회와 같이 “한중 세무학회 우호 협의결의서”를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격년제로 상호 국가를 방문하여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10], 그 내용은 <표 6>과 같다.

〈표 6〉 한중 국제학술대회 개최 일자 및 개최 장소

회차	개최 일자	개최 장소
1	2000.08.10. ~ 11.	중국 베이징
2	2001.07.09. ~ 10.	서울
3	2002.07.08. ~ 09.	중국 선전
4	2004.07.05. ~ 07.	제주도
5	2005.07.05. ~ 12.	중국 쓰촨성 청두시
6	2006.07.06. ~ 08.	경주 현대호텔
7	2007.07.02. ~ 10.	중국 윈난성 쿤밍시
8	2009.07.02. ~ 03.	부산
9	2010.07.05. ~ 09.	중국 산시성 시안시
10	2011.07.12.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11	2012.07.02. ~ 06.	중국 장쑤성 쑤저우
12	2013.07.05.	인천 송도 컨벤시아
13	2014.06.30. ~ 07.04.	중국 허난성 정저우시
14	2015.07.14.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회의실
15	2016.07.04. ~ 05.	중국 지린성 장춘시
16	2017.07.11.	서울 국회
17	2018.07.08. ~ 14.	중국 윈난성 쿤밍시
18	2019.08.27.	서울 여의도 헌정기년관
19	2024.07.09. ~ 13.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한편 올해인 2024.7.9.~7.13일에는 38명의 우리 회원이 참석한 제 19회 한중 국제학술대회를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에서 개최하고 한국 측 2편, 중국 측 2편의 논문 총 4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처럼 국제학술대회를 미치고 이어서 중국의 명산인 태산(泰山)과 공자의 묘가 있는 공묘(孔廟)를 방문하기도 했다.

10) 전세계적으로 밀어닥친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2023년 사이에는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지 못했다.

2024년 금년 학술대회는 전 세계적으로 창궐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2023년까지 개최하지 못했던 한중 국제학술대회의 속개를 위해 작년인 2023년 8월 한중 국제학술대회를 시작한 서희열 고문과 서정우 한중 교류위원장이 중국세무학회를 방문하여 2024년 제19차 한중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 협의한 결과에 따라 이루어졌다.

나. 국제학술대회 개최

한국세무학회는 국제학술대회의 개최를 통해 학회 위상을 높이기 위해 2005년 10월 21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경제의 글로벌화와 조세개혁" (globalization and Tax Reform)이란 제목으로 아래 <표 7>과 같이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발표 학자로는 미국 1명, 호주 2명, 독일 1명, 일본 1명, 중국 1명, 한국 1명 등 7명의 학자들이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행사에는 당시 김원기 국회의장,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이주성 국세청장이 축사를 하였다.

다. 정책보고서 발간

한국세무학회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우리나라 세제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매년 현행 세법의 내용 중 개정이 필요한 조문에 대한 개정 건의사항(제1부)과 우리나라 세제의 장·단기 개편방안 관련 논문(제2부)으로 구성된 정책보고서를 2006년부터 발간하여 세제실과 국회, 국세청 등에 전달하기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였다.

이에 따라 매년마다 세법개정이 필요한 사항과 장·단기 세제 개편 방안을 법인세제, 소득세제, 재산세제, 소비세제, 세무행정, 기타로 나누어 회원들로부터 공모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정책보고서」를 발간하여 우리나라의 세제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표 7〉 국제학술대회 발표주제 및 발표자

시간	발표 주제	발표자
09 : 45 ~ 10 : 30	The Withdrawals Tax	Patrick R. Colabella, Richard J. Coppinger, and Yeong C. Choi (St. John's University, USA)
10 : 30 ~ 11 : 15	Reform of Personal Income and Consumption Taxes in Australia : 2000－2005	Neil Warren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AUSTRALIA)
11 : 15 ~ 11 : 30	휴식	
11 : 30 ~ 12 : 15	Reforming the Taxation of Small Businesses in Australia : 2000－2005	Margaret McKerchar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AUSTRALIA)
12 : 15 ~ 13 : 00	Current Problems of Tax Policy in Germany	Christian Scheer (University of Hamburg, GERMANY)
14 : 20 ~ 15 : 05	Recent individual income and consumption tax reforms in Japan	Takashi Fukushima (National Graduate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JAPAN)
15 : 05 ~ 15 : 50	The Analysis on China Corporation Income Taxation Level	憑守東 박사 (Taxsation Association of Qingdao, CHINA)
15 : 50 ~ 16 : 05	휴식	
16 : 05 ~ 16 : 50	Korean Tax reform in a Global Economy	김재진 박사 (조세연구소)

라. 세무학 관련 학회에 공동 참여

사실 세무학이란 학문은 조세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법학적인 측면에서의 조세법학, 경제학 측면에서의 조세정책학, 그리고 회계학(경영학) 측면의 세무회계학이 어울어지는 종합 사회과학 학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 세무학회는 세무학 관련 학문인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조세법 학회에 각각 공동 참여하기로 하고 매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3년 8월 20일~22일 강원도 용평리조트에서 개최된 “2003 경영관련 통합 학술대회”에 참여를 시작으로, 2004.2.12.~13일 이화여대 국제교육관에서 개최된 “200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 참가했으며, 2005.6.21.무주 리조트에서 개최된 “통합회계학회 공동학술대회”에 참여하고, 이후인 2005.12.3. 개최된 “2005 조세법 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에도 참여하여, 세무학 관련 제반 학술대회에 참여하여 인접학문과의 학술교류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마. 여성부 창립기념 심포지엄 개최

2004년 12월 7일자로 창립된 여성부를 축하하며 여성부와 같이 “여성 관련 세제의 새편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이 12월 7일(화)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여성부의 후원으로 <표 8>과 같이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이후에도 우리나라 여성관련 세제개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표 8〉 여성부 창립 기념 심포지엄 주제 및 발표자

일정	주제	발표자
13 : 50 ~ 14 : 15	여성의 결혼, 이혼, 상속과 세제	김완석(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이전오(변호사, 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
14 : 15 ~ 14 : 40	여성의 자녀양육, 노년과 세제	홍기용(인천대학교 교수) 이기화(공인회계사, 여성공인회계사회 회장)
14 : 40 ~ 15 : 00	휴식	
15 : 00 ~ 15 : 25	여성의 사회활동과 세제	서희열(강남대학교 교수) 정덕주(서해대학교 교수)
15 : 25 ~ 15 : 50	조세행정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과 참여율 제고 방안	박성배(강원대학교 교수) 송동섭(단국대학교 교수) 고은경(세무사, 여성세무사회 부회장)

바. 개정세법 설명회 workshop 개최

1994년 12월 29일에 개최된 이사회(제6대회장, 윤계섭 서울대 교수)에서는 매년의 개정 세법 해설을 위한 workshop을 매년 개최하기로 재무부 세제실과 협의하고 1995년 2월 10일 서울대 선경경영관에서 재무부 세제심의관을 강사로 모시고 총 3시간에 걸쳐 세무학 workshop을 “1995년 개정 세법의 내용과 과제” 주제로 개최하였으며, 올해에도 2024.1.13.일 홍익대 홍문과 지하 4층 가람홀에서 workshop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사. 세무관리사제도의 도입과 폐지

우리 학회에서는 세무실무에 종사하는 세무전문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세무실무에 종사할 수 있는 수준을 갖춘 세무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납세자 및 세무행정당국의 효율적인 세무행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세무관리사제도를 도입하였다.

세무관리사는 「자격기본법」에 의하여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가 인증하는 민간자격으로 기업 등 세무실무 현장에서 세무전문인력을 채용할 때 세무실무전문가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이에 따라 제1회 세무관리사시험은 2000년 11월 5일(일) 중앙대학교 사범대 부속고등학교에서 시행되었으며, 응시인원은 1418명이었고 합격자는 361명으로 응시생과 대학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후 동 세무관리사 시험은 1년에 2회씩 실시하여 2001년 제2회부터 2002년 제4회까지 시행되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에서는 세무관리사시험에 문제를 제기하여 “세무관리사” 유사명칭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법원이 기각하자 한국세무사회에서는 이에 불복하여 본안소송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세무학회는 “세무관리사” 대신 “세무회계관리사”라는 명칭으로 제5회 세무회계관리사 시험을 시행하기로 했으나 한국세무사회의 유사명칭사용금지가처분 청구소송에 따른 서울지방법원 판결(2002.10.22.)에 의하여 「세무회계관리사」 명칭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험도 시행할 수 없게 되어 우리 학회에서는 2002년 11월 3일(일) 실시 예정인 제5회 세무회계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을 법원의 판결을 준수하기 위하여 취소하였다.

이처럼 우리 학회는 제4회까지 실시한 「세무관리사」 자격시험에 대하여 한국세무사회의 유사명칭사용금지가처분 청구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으로 「세무관리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어, (가칭) 세무회계관리사로 자격 명칭을 변경하여 자격시험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세무회계관리사」 명칭 또한 사용할 수 없으며 제5회 세무회계관리사시험도 시행할 수 없다는 서

울지방법원의 가처분 판결(2002. 10. 22. 판결, 2002. 10. 28. 학회접수)로 인해 제5회 세무회계 관리사 자격시험을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되었다.

Ⅳ. 세무학의 학문적 정립과 세무학의 연구 제 분야

1. 세무학의 의의

조세국가로서 우리 나라는 조세를 통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재정을 조달하고, 또한 여러가지 경제적 · 사회적 · 정치적 · 문화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론과 기법으로서 세무학 연구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세무학에 대한 학문적 정립은 아직까지도 미정립 상태이자 일반적으로 세무학의 학문분야는 크게 조세정책학과 조세법학, 세무회계학 3분야로 나뉘어져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조세정책학은 조세의 연구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경제학적으로 접근하는 연구분야이며, 이와 같은 조세정책학을 토대로 법학적으로 제도화시킨 학문이 조세법학 분야가 되고, 또한 이러한 제도의 활용하에서 회계학적으로 접근하여 이루어진 학문이 세무회계학인 것이다.

이처럼 조세정책학, 조세법학 그리고 세무회계학의 각 연구분야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세무학이란 하나의 학문분야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세무학의 흐름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세무학의 흐름도



따라서 한국세무학회 회원 모두는 조세정책학, 조세법학, 세무회계학을 폭넓게 연구하여 조세정책 학자는 경제학에 체증을 싣되 조세법과 세무회계학에 관한 기초적 지식을 가능한 한 알려고 노력해야 하고, 조세법학자는 법학에 체증을 싣되 조세정책과 세무회계에 관한 기초지식을 섭취해야 하며, 세무회계학자는 회계학에 체증을 싣되 조세정책과 조세법학에 관한 기초지식을 함께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결국 위 3자간의 협동 즉 학제간의 교류와 이해, 그리고 긴밀한 협동이 필요한 것이다.

2. 세무학 연구 제 분야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민주국가는 조세국가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조세에 의하여 조달하고 있으며, 또한 경제·사회·문화 등의 정책수단으로서 조세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그 결과 조세가 국민의 경제·사회·문화생활 등과 재정권에 미치는 영향 역시 매우 크고 다양할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조세에 관한 학문적 연구도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11] 세무학이 학문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제 연구분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조세의 경제학적 연구 － 조세정책학

조세제도 설정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설계하는 일을 조세정책학이라고 한다. 이를 건물의 건축에 비유하면 설계도(blue－prints)를 그리는 것과 같다. 그러나 건축물의 설계도를 그리려 한다면, 먼저 공업수학·건축학·건축구조역학·건축설계학·제도학 그리고 도시미학·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어느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처럼 한 국가의 조세제도에 관한 설계도를 그리려면 최소한 경제학에 관한 기본지식은 물론이고 이를 응용·활용하는 수준의 높은 지식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즉, 경제학에 관한 지식으로서 미시경제학·거시경제학의 튼튼한 기초위에 후생경제학의 지식을 갖춘 후에 조세론·재정학을 소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조세가 국가나 개인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효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통계학·계량경제학 등에 대한 지식도 폭 넓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12]

---

11) 부강행웅, 1978, p.21.

12) 최명근, 「세무학의 구조」, ㈜영화조세통람, 2005 p.5.

나. 조세의 법학적 연구 － 조세법학

조세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과세권을 가지고 있는 「헌법」 제 59조의 납세의무를 이행해야하는 공권력단체와 국민과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법률관계이다. 즉, 조세를 이렇게 보는 시각에서는 조세를 법학적으로 접근하게 된다. 이를 건축물의 건축에 비유하면, 조세제도를 구축하는 건축술(architecture)은 조세법학자가 제공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세입법은 조세정책학에서 나오는 샘물을 법률이라고 하는 제도의 그릇에 담는 작업이며, 이것이 조세입법이 된다. 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조세정책학과 조세법학의 관계



이와 같은 조세법학을 연구·학습하기 위하여는 최소한 「민법」·「상법」·「행정법」·「헌법」 등의 기본 지식을 소화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조세법학이 하나의 독립된 법분야를 형성한다고 전제할 때에, 조세법학은 법학에 관한 기본지식을 토대로 하여 경제학과 회계학에 대한 지식을 함께 응용해야만 바른 조세법 이론을 정립해서 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조세법학을 그 성질에 따라 크게 분류하면 1) 조세통칙법분야, 2) 조세실체법분야, 3) 조세절차법분야, 4) 조세구제법분야, 5) 조세형사법분야 등 5분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다. 조세의 회계학적 연구 － 세무회계학

회계학의 지식을 응용하여 세목별로 과세표준금액과 세액의 구체적 산정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을 세무회계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세무회계학은 조세에 관한 학문인 조세정책학·조세법학 등에 비하여 그 활용영역이 가장 넓은 응용적·기술적·실무적인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세무회계학을 산식으로 표시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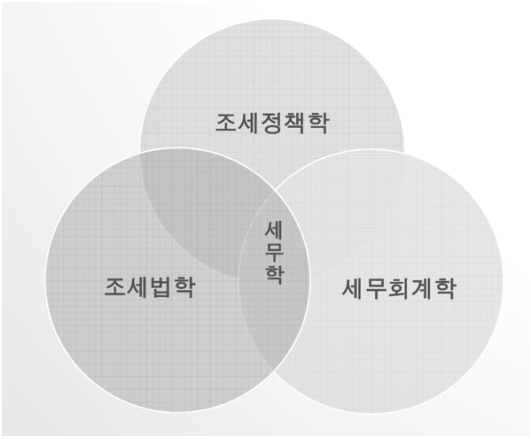
세무회계학 = 개별 세법 해설 + 회계학

이 되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세무회계학을 전공하는 사람은 조세법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져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세무회계학을 연구하거나 이해하려고 하면 최소한 회계원리·중급회계·회계이론 등 재무회계와 원가관리회계, 회계감사 및 기업평가 등에 관한 지식에도 통달해야 한다.

라. 조세정책학·조세법학·세무회계학의 상호관계

결론적으로 조세의 경제의 얼굴인 조세정책학과 조세의 법의 얼굴인 조세법학, 그리고 조세의 회계의 얼굴인 세무회계학은 상당한 부분이 아래 <그림 3>과 같이 서로 겹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조세정책가도 조세법률가도 그리고 세무회계전문가도 모두 다 서로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서로 다른 학문분야의 지식을 섭취해야 하는 것이다.[13]

〈그림 3〉 조세정책학·조세법학·세무회계학의 상호관계



13) 최명근, 「전게서」, pp.22～23.

결론적으로 조세정책학을 수립하는 자는 경제학에 체중을 싣되 조세법학과 세무회계학에 관한 기본적 지식을 가능한한 알려고 노력해야 하며, 조세법학자는 법학에 체중을 싣되 조세정책학과 세무회계학에 관한 기본지식을 섭취해야 하고, 세무회계학자는 회계학에 체중을 싣되 조세정책학과 조세법학에 관한 기본지식을 함께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조세법학과 세무회계학간의 학제적인 상호 의존관계는 특별히 현저하다고 할 수 있다.

마. 기타 세무학 연구의 제 분야

(1) 조세의 재정학적 연구 – 조세론

조세의 재정학적 학문적 연구는 일찌기 국가재정의 입장에서 국가의 세입문제와 관련하여 재정학의 학문 영역인 조세론에서 연구되어 왔다. 이와 같이 조세를 재정학적 측면에서 연구하는 경우에는 조세원칙론, 조세체계론, 조세효과, 조세공평, 조세정의 실현, 과세베이스, 조세부담 수준, 적정과세론 등이 주로 논의되고 연구된다.

(2) 조세의 국민경제적 연구 – 국민소득론

조세는 또한 국민소득론과 국민경제적 관점에서도 연구할 수 있다. 조세의 국민경제적 연구로서는 생활수준 및 자본축적과 관계되는 적정 조세부담의 문제, 징수한 조세의 사용관계인 자본적지출과 소비적지출의 비율 문제, 그리고 감세 또는 증세가 국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취급하게 된다.

(3) 조세의 경영학적 연구 – 세무관리

기업주체이론에서 볼 때 조세는 개별기업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비용항목이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성과를 양호하게 하기 위하여는 조세비용의 합리적인 지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게 된다. 또한 조세는 각 세목마다 여러가지 국가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조세지원규정이 장치되어 있으며, 이러한 조세지원규정은 아주 다양하며 납세자들이 세목마다 다르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4) 조세의 행정학적 연구 – 세무행정학

세무관계는 국가와 모든 국민과의 법률적 관계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무행정은 국가공공행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하여 세무행정은 보다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관리 운용되어서 징세비용(cost of collection)과 납세이행비용(cost of

compliance)이 최소화되어야 한다.[14)]

Ⅴ. 세무학의 학문적 교과목 시스템 분석

1. 세무학의 학문적 성격

모든 학문에 있어 학문적 연구성과의 목표는, 소속된 사회에 있어서의 현안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명하며 분석하고, 이들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개혁방향에의 제안을 하여 사회 현안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공헌하는 것을 지향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세무학은 조세문제나 회계문제를 추구하는 입장에서, 학문의 이론적 연구와 실천적인 실제적연구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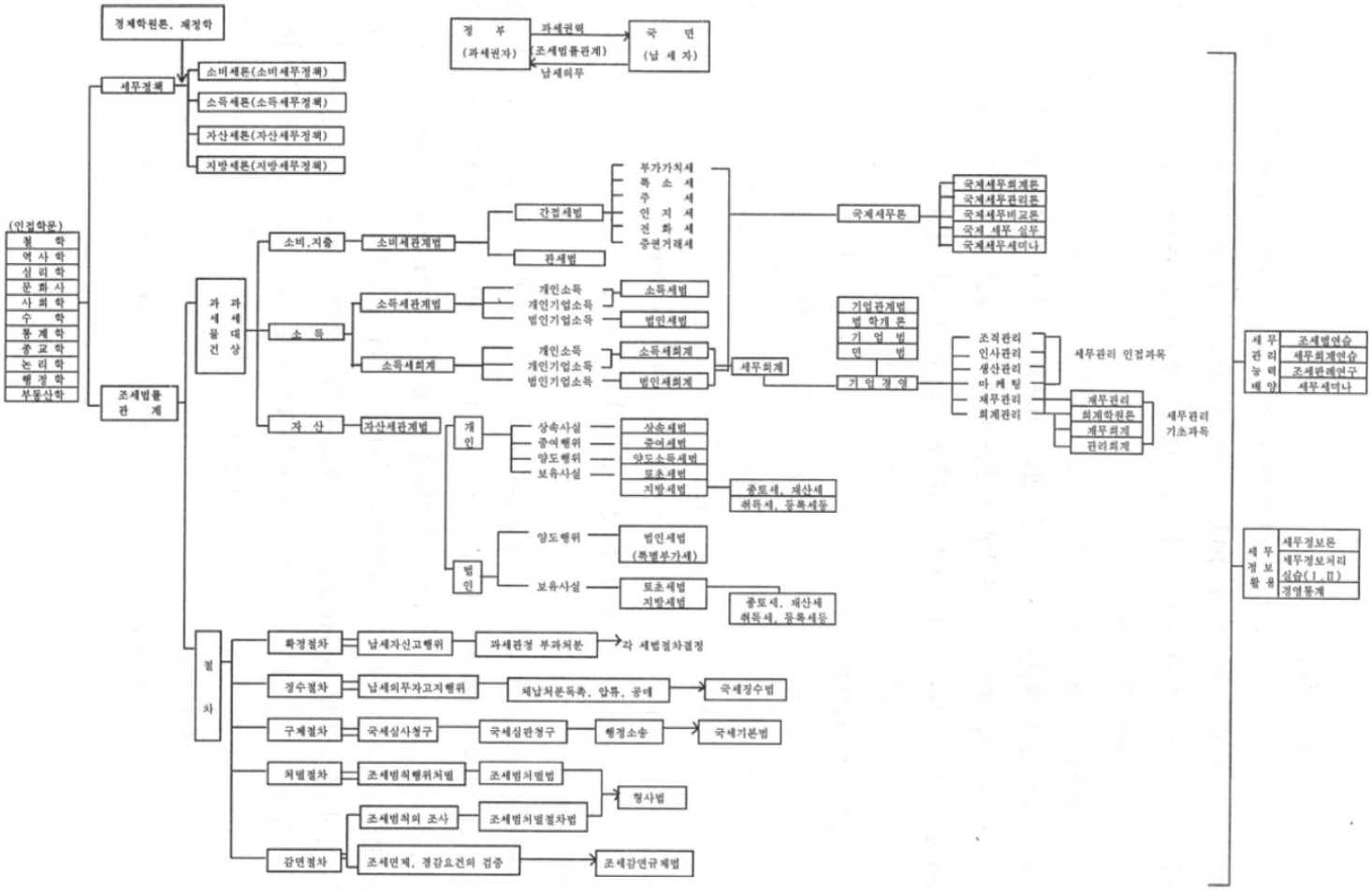
2. 세무학의 학문적 교과목 시스템 분석

세무학의 학문적 교과목 시스템을 조세정책학, 조세법학, 세무회계학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4>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세정책학은 소비조세정책, 소득조세정책, 자산조세정책, 지방조세정책으로 구분되며, 조세법학은 조세법률관계에 따라 과세물건・과세대상의 구분에 의해 소비・지출에 적용되는 소비세관계법, 소득에 적용되는 소득세관계법 (「소득세법」, 「법인세법」)과 소득세회계(소득세회계, 법인세회계), 자산에 적용되는 자산세관계법으로 나누어 진다.

14) 이우택, “세무학과 세무학 연구방법론에 관한 연구”, 「세무학 연구 (제1호)」, 1990, p.30.

〈그림 4〉 세무학의 학문적 시스템 분석도



* 본 분석도는 (故)최명근 교수와 서희열 교수가 작성한 것이다.

또한 조세법은 절차구분에 따라 확정절차규정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치세법」 등 각 개별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징수절차규정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며, 구체절차 규정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차별절차 및 감면절차는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각각 규제하고 있다.

한편 세무회계는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소득세회계, 법인세회계가 중심이 되며, ` 인사조직관리 등과 세무관리능력 배양과목(조세법연습, 세무회계연습 등)과 세무정보활용(세무정보론, 세무정보처리 실습, 경영통계 등) 과목으로 각각 구성된다.

Ⅵ. 결 론

2024년 갑진년 올해는 한국세무학회가 1988년 창립된 지 35년이 되는 해이다. 한국세무학회가 오늘까지 이렇게 장족의 발전을 하게 된 것은 회원 여러분의 학회에 대한 사랑과 그동안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주신 역대 회장님들과 임원님들의 수고 때문이다. 앞으로도 한국세무학회가 계속 발전하여 세무학 학문과 우리나라 세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세무학은 조세정책학, 조세법학 그리고 세무회계학의 3개 연구분야가 서로 유기적으로 어우러져 세무학의 학문분야가 탄생하게 된다. 먼저 조세정책학은 조세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경제학적으로 접근하는 연구 분야이며, 이러한 조세정책학을 토대로 법학적으로 제도화 시킨 것이 조세법학의 분야가 되고, 이러한 제도의 활용하에서 회계학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진 분야 세무회계학이다.

이처럼 조세정책학, 조세법학 그리고 세무회계학의 각 연구 분야가 서로 유기적으로 어우러져 세무학이라는 학문분야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세무학의 연구대상이 조세제도의 실행측면에 있다 하더라도 그 제도적 측면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세무학의 연구대상은 조세의 실행적 측면인 조세법학, 세무회계학은 물론이고, 조세의 제도적 측면인 조세정책학 부문도 포용하게 될 수 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우리 나라의 세무학 학문정립과 교과과정 개편에는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의 세무학 학문의 정의 및 세무학 교과과정의 현주소를 돌아본다는 것은, 앞으로 세무학연구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준비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1988년 창립한 한국세무학의 창립과정과 그동안의 연구 및 학습 활동에

대해 살펴보고, 세무학의 학문적 정립과 세무학의 연구 제 분야에 대해서도 연구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기존에 발행하였던「한국세무학회보」를 참고하고, 확인하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참고문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년도.
서희열 외, 「세무학개론」, 세학사, 2017.
서희열, 「세무학회의 20년사」, (사)한국세무학회, 2008.
이우택, “세무학과 세무학 연구방법론에 관한 연구”, 「세무학 연구 (제1호)」, 1990.
최명근, 「세무학의 구조」, ㈜영화조세통람, 2005.
한국세무학회, 「한국세무학회십년사」, 1999.
_____, 「한국세무학회이십년사」, 2009.
_____, 「한국세무학회 회보」, 각년 계간 발행.

A Study of the Founding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TAXATION(KAST)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Academic Discipline of Taxation

<Abstract>

2024 marks the 35th anniversary of KAST's founding in 1988. The reason KAST has been able to develop so far is due to the love of our members and the efforts of our past presidents and executives who have worked hard to develop the society. I hope that KAST will continue to develop and mak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study of tax and the development of Korea's tax system.

Tax is a field of study that organically harmonizes with three research fields : tax policy, tax law, and tax accounting. First, tax policy is a research field that approaches tax policy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and the field of tax law is the legal system based on tax policy, and tax accounting is a field that uses accounting approaches under the utilization of these systems.

In this way, the research fields of tax policy, tax law, and tax accounting are organically harmonious with each other, and the field of tax is born.

Tax education at Korean universities has a short history of less than 40 year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two-year National Tax University in 1981 and the four-year tax department at Seoul Metropolitan University in 1984.

There have been many difficulties in the abolition of tax (related) departments, especially those at professional universities.

Tax (related) departments at professional universities were established at a maximum of 86 universities, but 48 universities have been abolished and only 38 universities remain at present. As a result, two-year tax (related) departments are in full operation in Chungbuk, Daejeon, Gwangju and Gangwon. This is probably because students have low preference for tax due to the difficulty of the subject.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Education's 2024 academic year university admission quota by unit, there are 38 professional universities, 23 four-year universities, and one Seoul Metropolitan University tax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general graduate school tax related departments, law school, business school and other special graduate schools in Korea.

This study will investigate the founding process of Korean tax studies, which was established in 1988, and the research and learning activities to date, and will also study the academic establishment of tax studies and the research field of tax studies. In this study, the researcher conducted the study while referring to and checking the previously published Korean Tax Association Bulletin.

<Key words> KOREAN ACADEMIC SOCIETY OF TAXATION(KAST), Founding process, tax studies, tax policy, tax law, tax accounting

세무사 일부 보수의 표준화 필요성과 그 방안에 관한 연구

이 전 오 · 황 인 규
(성균관대학교) (강남대학교)

세무사 일부 보수의 표준화 필요성과 그 방안에 관한 연구

이전오* · 황인규**

초 록

1. 세무사 보수기준의 제정 필요성

세무사 업무 중 기장대리, 세무조정, 성실신고확인 등의 업무는 가장 기초적이자 핵심적인 세무대리업무로서 이들 업무가 정확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정확한 소득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실한 조세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고 탈세 또는 조세회피가 발생할 우려가 대단히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덤핑 등이 만연하면 납세자는 무조건 가격이 낮은 세무사 사무소를 찾아갈 가능성이 많고, 터무니 없이 불합리한 보수액으로 세무대리를 수임한 세무사 사무소는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성실하게 사건을 처리하기가 어렵게 된다.

그렇게 되면, 건전한 납세의식을 떨어뜨리고 성실납세 풍토를 해칠 뿐만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결국 세수의 누락을 초래하게 된다. 이것은 납세자 본인에 대하여서도 향후에 가산세를 포함한 누락된 세금의 추징은 물론이고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될 우려에도 처하게 된다. 결국, 기장대리 · 세무조정 · 성실신고확인처럼 정형적 · 반복적 업무이지만 가장 중요하고 많은 납세자가 관련된 세무대리업무에 관하여는 국가 또는 세무사 단체가 합리적인 보수기준을 제시하여 성실한 신고 · 납부를 유도함으로써 납세도의를 확립하고 아울러 세수누락도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성실납세와 국가 재정수입 확보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도 세무사 보수의 표준화에 대하여 찬성 의견이 76.2%로서 반대 의견 23.8%보다 훨씬 높았다.

*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 강남대학교 조교수

2. 세무사 보수기준제도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검토

법무사와 공인중개사의 보수기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추어 볼 때에, 세무사 보수 중 기장대리업무에 대한 보수, 조정업무에 대한 보수, 성실신고확인업무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보수표준화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세무사의 직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세무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작성 주체로서 한국세무사회와 협의하여 보수기준표를 확정할 뿐만 아니라, 보수표준화를 통하여 납세자의 성실신고・납세 유도, 납세자의 권익 도모, 조세제도의 건전한 발전 및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 나아가 국가의 안정적인 세수확보 등을 제도의 목표로 하므로 제도의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어서,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3. 구체적인 입법방안

보수표준화에 적합한 세무사의 업무를 가려내면, 기장대리 업무, 세무조정 업무, 성실신고확인 업무가 이에 해당한다. 나머지 업무들은 위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서 보수표준화에 적합하지 않다.

보수표준화의 구체적인 입법방법으로는 과세권자가 보수기준을 정하는 방안, 기획재정부장관이 한국세무사회와 협의하여 보수기준을 정하는 방안, 한국세무사회가 정부의 개입 없이 보수기준표를 정하여 이를 세무사들이 지키게 하는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으나, 기획재정부장관이 한국세무사회와 협의하여 보수기준을 정하는 방안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개정하여야 할 세무사법령의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세무사법 제15조의2 개정안

조문	현행	개정안
세무사법 제15조의2(보수)	신설	**제15조의2(보수)** ① 세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② 세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에게서 금품을 받지 못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의 업무 중 일부에 관하여 보수기준을 정할 수 있다. 그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④ 세무사와 위임인은 제3항에 따른 보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세무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조문	현행	개정안
세무사법 시행규칙 제○○조 (세무대리 보수 기준)	신설	**제○○조(세무대리 보수기준)** ① 법 제15조의2 제3항에 따라 보수기준을 정할 수 있는 업무는 기장대리업무, 세무조정업무, 성실신고확인업무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한국세무사회와 협의하여 위 제1항에 관한 보수기준을 정한다.

제1장 서 론

시민항쟁을 통하여 성립한 근대국가에서는 중세국가와 달리 국가는 그 자신의 재산을 원칙적으로 소유하지 않고, 모든 재산은 시민의 소유로 귀속되었다. 즉, 종래의 가산국가(家產國家)는 소유재산이 거의 없는 무산국가(無產國家)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 스스로의 재산으로 충당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부득이 국민이 납부하는 조세에 의존하는 조세국가로 국가 체제가 변하였다.[1)]

근대 시민국가를 탄생시킨 시민계급은 과거의 절대군주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시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강력히 주장함과 동시에 스스로의 필요에 의하여 조직한 공동체인 국가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조세를 부담하기로 동의하였다.[2)] 동의의 구체적인 발로형식이 바로, 조세의 세목・부과・징수・감면 등에 관하여서는 반드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만 가능하도록 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이다.

이렇게 본다면 조세는 독일의 전통적인 국고주의적 견해에서처럼 국가가 우월적 지위에서 과세권을 행사하여 국민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징수하는 금전적 급부라고 이해할 것이 아니라, 영미법상의 국민주권주의적 견해에 따라서 국민의 자발적 승인에 의하여 납부하는 금전급부가 바로 조세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다. 이와 같은 국민주권주의적 조세관에 입각한 헌법적 관점에서 조세를 정의하면, 조세는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이 국가의 유지・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자발

1) 최명근, 『세법학총론(2007 개정판)』, 세경사, 2008, 34면 참조.

2) 예컨대, 프랑스 인권선언 제14조는 “모든 시민은 스스로 또는 대표를 통하여 공공조세의 필요를 검토하며, 그것에 자유로이 동의하며, 그 용도를 추급(追及)하며, 또한 그 액수・기준・징수 및 존속기간을 실정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 동의의 발로(發露)인 법률에 따라서 평등하게 납부하는 것이다.[3)]

이처럼 근대국가의 물적 토대를 이루는 조세와 관련하여, 세무사는 납세자로 하여금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돕는 한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공공성을 지닌 조세전문가이다. 즉, 세무사는 영리 목적의 활동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인으로서의 직업인이 아니라, 나라 살림에 쓰이는 세금을 적법하게 징수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국가와 국민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세무행정의 원활화를 도모하는 공공성을 지닌 조세전문자격사이다.[4)]

세무사의 위와 같은 이중적 지위에 비추어 볼 때에, 세무사가 세무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의뢰인에게서 받는 보수에 관하여 보통의 상인처럼 시장논리에 따라 완전히 당사자간의 자율에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고 국가의 공공적 견지에서의 개입 내지 고려가 요구된다. 이런 까닭에 예컨대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관세사, 공인회계사 등이 의뢰인에게서 받는 보수에 관하여 국가는 직접 또는 해당 전문가단체를 통하여 보수기준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적절히 개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세무사 보수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준 설정 없이 완전히 세무사와 의뢰인 간의 계약에 맡기고 있는데, 예컨대 세무사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하기 위한 성실신고의 기초를 이루는 기장대리, 세무조정, 성실신고확인 등의 핵심적인 세무대리업무에 관하여 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아무런 보수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이로 말미암아 기장대행과 세무조정 등의 세무대리 업무를 둘러싸고 과당경쟁과 덤핑이 만연되고 있으며, 의뢰인은 무조건 보수가 낮은 세무사를 찾아가서 탈법 또는 편법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등의 폐해가 널리 퍼져있는 지경이다. 비록 기획재정부장관이 불성실 세무대리인에 대해 징계를 하고 있지만, 일부 세무사에 대한 징계만으로는 기장 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로 잡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상황 아래에서는 세무사가 전문성과 책임성이 고도로 요구되고 현실적으로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는 세무대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조건에 놓이게 된다.

이로 말미암아 세법상 성실납세를 담보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제도인 기장대행, 세무조정, 성실신고확인 등의 세무대리 품질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으며, 세무사가 공공성 있는 세무전문가로서 전문적이고 책임성 있는 세무대리를 통해 성실납세에 이바지하도록 한 법

---

3) 이전오, “납세자를 위한 사법적 구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8., 5～7면. 같은 취지로 松澤智, 「租稅法の基本原理」, 中央經濟社., 1993, 15－16면 ; 齊藤明, 「租稅行政爭訟の法理」, 敬文堂, 1988, 6－8면 등.

4)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https://www.kacpta.or.kr/kacpta_view/kac_people/doing_n.asp.

적 사명(세무사법 제1조의2)을 제대로 달성하기가 어려워졌으며, 그 결과 적정한 소득금액 계산과 성실신고가 제대로 되지 못하여 궁극적으로 성실납세와 국가 재정수입이 위협받고 있다.

한편, 위와 같은 문제점을 직시한 한국세무사회 제33대 집행부는 기장대행 등 세법상의 법정직무에는 국세청이 고시하는 법정보수기준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5)]

이 연구는 세무사 보수에 관한 위와 같은 문제점에 관하여 그 현실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살펴본 후에, 그 개선책으로 구체적이고 입법적인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제2장 세무사의 지위와 업무

제1절 세무사의 지위

세무사는 국민(납세자)과 국가(과세권자) 사이에서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돕는 한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공공성을 지닌 조세전문가이다. 즉, 세무사는 나라 살림에 쓰이는 세금을 적법하게 징수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국가와 국민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세무행정의 원활화를 도모하는 공공성을 지닌 조세전문자격사이다.[6)]

구체적으로, 세무사는 세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세금에 대한 상담과 자문을 하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세무에 대한 각종 서류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신고, 신청, 청구하는 등의 일을 한다.

세무사는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문제를 다루는 조세전문가로서 국민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는 최일선에 있다. 세무사는 납세자의 세금을 대신 신고하고 관리해 주는 대리인의 역할 뿐만 아니라, 세법지식이 부족한 국민(납세자)이 부당한 세금부과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사후 구제에 앞장서는 권익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다.[7)]

세무사의 지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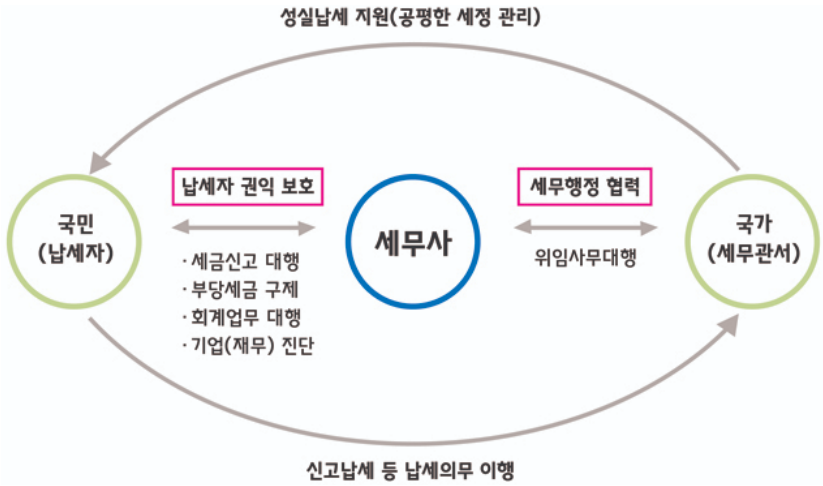
---

5) “제33대 한국세무사회 ‘3대 혁신 30대 약속’”, 2023. 7. 4. ; “제33대 집행부, 회원님께 인사 올립니다”, 2023. 7. 4. ; “한국세무사회장 2024 새해 인사말씀”, 2024. 1. 1. 등 참조.

6)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7)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그림 1] 세무사의 지위[8)]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세무사법 제1조) 세무사법은 다음과 같은 규정들을 두고 있다.

①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고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세무사법 제1조의2).

② 누구든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그 사원·직원에게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세무사법 제2조의2).

③ 세무사는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세무사법 제3조 제1호).

④ 세무사는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세무사법 제6조 제1항).

⑤ 세무사와 세무사였던 사람 또는 그 사무직원과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세무사법 제11조).

⑥ 세무사는 그 외에도 성실의무, 탈세 상담 등의 금지의무, 명의 대여 등의 금지의무, 금품 제공 등의 금지의무, 계쟁권리의 양수 금지의무,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 금지의무를 부담한다(세무사법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5조, 제16조).

위와 같이 세무사의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고 있는 세무사법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개별 사안에 따라 전문적인 세무지식을 활용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세무사의 활동은 간이·신속하고 외관을 중시하는 정형적인 영업활동, 자유로운 광고·선전을 통한 영업의 활성화 도모, 인적·물적 영업기반의 자유로운 확충을 통한 최대한의 효율적인 영리

8)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추구 허용 등을 특징으로 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세무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해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세무사를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고, 세무사의 직무는 상당한 정도로 공공성을 띤다고 할 수 있다.[9)]

제2절 세무사의 업무

Ⅰ. 세무사 업무 개관

1. 세무사법상 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법 제2조는 세무사의 업무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세무사법 제2조(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개정 2011. 5. 2., 2016. 1. 19., 2017. 12. 19.>
> 1.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 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 7.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 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 8.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
> [전문개정 2009. 1. 30.]

9)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다311111 판결 [청구이의].

2. 기타 법령상 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법 이외의 기타 법령에 나타난 세무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기업(재무)진단(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10] 등) 및 경영컨설팅

② 고용, 산재보험 관련 보험사무대행(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11])

③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세무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12])

---

10)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한 때에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2012. 6. 1., 2013. 3. 23., 2019. 4. 30.>
1. 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경우
2. 건설사업자 또는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1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보험사무대행기관) ① 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이하 “법인등”이라 한다)는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보험료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등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이하 “보험사무”라 한다)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및 법인등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2014. 3. 2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보험사무대행기관) 법 제33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 9. 24.>
1. 관계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한 법인
2.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2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
3.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2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2. 21.>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④ 성년후견인 업무(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한 신상 보호 및 재산 관리)

Ⅱ. 세무사의 기본업무

세무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업무이면서 또한 보수 표준화가 절실한 업무는 기장대리업무, 세무조정업무, 성실신고확인업무라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 차례대로 살펴본다.

1. 기장대리 업무

장부 기장이란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이유는 기업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이나 비용 등의 경제적 사건을 수치화하고, 이를 통하여 회사가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법에서는 법인 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로 장부 작성을 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회계 장부를 기초로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무기장대리업무는 대개 월 단위 '기장대리' 서비스 및 이에 따른 간단한 신고대리업무로서, 복식부기 기장을 통해 장부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세무신고를 대행해 주는 업무이다.

기장대리 및 신고대리업무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는 것이 통례이다.

① 복식장부 기장대리 : 회계장부 작성

가장 기본적인 업무로서, 1년 동안 주기적으로 세금계산서, 영수증, 금융 자료, 계약서 등 증빙 서류를 수령하여 복식부기로 회계장부가 작성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처리한다. 대표적인 회계장부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이다.

② 부가가치세 계산 및 신고대행

부가가치세 신고는 의뢰인으로부터 수령한 증빙 및 세무사 사무실에서 직접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법인은 분기별로 1년에 4번(1월 25일,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 신고하고, 개인 사업자는 반기별로 1년에 2번 신고(1월 25일, 7월 25일)한다.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령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대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의뢰인이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급여 계산 및 관련 신고대행 : 근로소득 원천세 계산 및 신고대행, 퇴직금 계산 및 신고대행

원천세란 직원의 급여나 인적용역 등의 대가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직원이나 인적용역 공급자가 내야 될 세금을 사업주가 미리 걷어서 납부하는 세금을 말한다. 따라서 직원이 있거나 인적용역 공급자에게 상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매달 원천세 신고를 하게 된다.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 시 그 금액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④ 정규직 및 비정규직 등 4대보험[13] 업무대행 : 피보험자격 취득 관리, 4대보험 관리 업무

회사에 직원이 있어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4대 보험에 가입 신고를 하게 되고, 직원이 입사·퇴사하는 경우에 해당 공단에 신고를 하게 된다.

4대 보험료 중 일정 부분은 직원 급여에서 차감하여야 하고, 일정 부분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된다.

회사가 급여 자료 제공 시 세무사가 급여대장을 작성 제공하여,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해야 할 4대 보험료를 적정하게 대응시켜 급여 순 지급액을 사업주가 알 수 있게 해준다.

⑤ 연말정산 신고대행 : 연말조정 안내서 발송, 소득공제자료 검토, 연말조정계산 신고서 작성

연말 정산이란 상근직 직원이 있는 경우, 직원이 납부해야 할 1년간의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여, 원천세 신고로 미리 납부한 직원의 세금과 비교해 보고, 미리 납부한 원천세가 많으면 돌려주고, 적으면 추가로 걷어서 납부하는 과정이다.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세액은 2월 급여에 반영시키고, 신고는 3월 10일까지 하게 된다.

2. 세무조정업무

세무조정이란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세법의 규정에 따라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즉, 세무조정이란 기업의 회계상의 이익을 세법상의 과세소득으로 조정하여 정확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조정 과정이다.

여기에서 결산이란 회사의 1년간의 수입 및 비용을 정리하여 순이익을 측정하고, 기업의 재산 상태를 확정하여 회계 보고서(장부)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결산 보고서는 회사의 과거 경영 성과와 기말 재무 상태를 평가할 수 있게 해주고, 경영자의 미래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며, 금융기관 등 외부에서 해당 기업을 평가하는 기본 서류이고, 법인세 또는 사업 소득세 신고의

13)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가리킨다.

기초 서류가 된다.

회사의 결산이 끝나면 마감된 회계장부를 토대로 세무조정을 수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해당 기업에 적용될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를 검토하여 적용하게 된다.

장부기장, 결산, 세무조정을 통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고 필요서류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

3. 성실신고확인업무

가. 성실신고확인제도 개관[14)]

(1)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의의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15)]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4)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4&cntntsId=7672.

15)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12. 27., 2012. 1. 1., 2014. 1. 1.>
1.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4.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5.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 수취명세서”라 한다)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2)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취지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에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2011년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되었다.

(3)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업종별	2014~2017귀속	2018귀속부터 포함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해당년도 수입금액 20억원 이상	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해당년도 수입금액 10억원 이상	해당년도 수입금액 7.5억원 이상
3.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별표 3의3] 사업서비스업[1]	해당년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해당년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1)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2012. 2.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단서 신설).

*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9항 관련)

구분	업 종
사업 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 비고 :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성실신고확인자

신고납세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3항).

(5)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시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 성실신고확인서{기획재정부 고시 제2012－6호(2012. 4. 26.)}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제3장 세무사 보수제도의 현황

제1절 세무사 보수제도의 연혁

1. 1999. 2. 5. 법률 제58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세무사법 제15조

1999. 2. 5. 개정되기 이전까지 세무사 보수에 관한 구 세무사법의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1999. 2. 5. 개정되기 이전까지 세무사 보수에 관한 세무사법의 규정 연혁

○ 1961. 9. 9. 법률 제712호로 제정되어 1961. 9. 9.부터 시행된 구 세무사법 제15조(계쟁권리의 양수금지 및 보수) ① 세무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할 수 없다. ② 세무사는 재무부장관이 지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받지 못한다.
○ 1989. 12. 30. 법률 제4166호로 개정되어 1990. 1. 1.부터 시행된 구 세무사법 제15조 (계쟁권리의 양수금지 및 보수) ① 세무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할 수 없다. ② 세무사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받지 못한다. <개정 1989. 12. 30.>
○ 1995. 12. 6. 법률 제4983호로 개정되어 1995. 12. 6.부터 시행된 구 세무사법 제15조(계쟁권리의 양수금지 및 보수) ① 세무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할 수 없다. ② 세무사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받지 못한다. <개정 1989. 12. 30., 1995. 12. 6.>

위 입법연혁에서 보듯이 1961. 9. 9. 세무사법이 제정되어 1999. 2. 5. 세무사법이 개정되기 이전까지 세무사보수는 재무부장관(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게 되어 있었다.

2. 카르텔일괄정리법의 제정

카르텔일괄정리법은 1995. 2. 5. 제정・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의 약칭이다.

기업연합 또는 부당공동행위로 불리는 카르텔은 공공카르텔과 사적카르텔로 구분되며, 사적카르텔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여러 가지 조건과 제한을 형성하는 것으로 각 국가들은 나름대로 독점금지법,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공공카르텔은 정부가 가격, 산출량 등에 대하여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 일명 정부카르텔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정부카르텔은 많은 나라에서 가격과 생산의 안정이나 산업구조의 합리화 및 생산능력 조절 등을 위하여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일본은 철강, 알미늄, 선박전조 및 화학분야 등에서 정부카르텔 규제를 인정해 왔으며, 미국은 1936년대 불황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석탄채취, 석유생산분야 등에서 정부카르텔 규제를 인정하였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법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 즉 정부카르텔에 대하여는 동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법령에 의한 관제카르텔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 결과 소비자의 피해가 초래되는 등 그 폐해가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1995. 2. 5. 카르텔일괄정리법을 제정・시행하여 전문직종에 대한 보수자율화를 추진하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노무사, 수의사, 행정사 등 9개 전문 자격사들의 법령에 의한 보수카르텔 및 수출입 관련 카르텔을 폐지하고,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단체수의계약 제도를 개선하는 등 법령에 규정된 20여 가지의 카르텔 조장규정의 정비를 일괄적으로 한 바 있다.[16)]

카르텔일괄정리법에 따라 정비된 카르텔은 사업자 간의 행위가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하지만 개별법령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당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공정거래법) 제58조[17)]에 따라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행위들이다. 그중에서 특히 당초의 도입목적이

16)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ftc.go.kr/callPop.do?url=/jargonSearchView.do?key=451&dicseq=605&titl=%EC%B9%B4%EB%A5%B4%ED%85%94%EC%9D%BC%EA%B4%84%EC%A0%95%EB%A6%AC%EB%B2%95.

17) 1999. 2. 5. 일괄정리법이 제정된 당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법령에 따른

이미 달성되었거나 원래의 취지와 달리 운영되는 카르텔이 정비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첫 번째 정비대상에 오른 것은 전문직 서비스의 보수를 해당 사업자단체가 정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는 공공카르텔이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행정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수의사, 건축사 등 9개 직종이 여기에 해당되었다.[18]

3. 1999. 2. 5. 법률 제5815호로 개정된 세무사법 제15조

1999. 2. 5. 개정된 세무사법은 제15조 제2항을 삭제하였다.

> 1999. 2. 5. 개정된 세무사법 제15조(계쟁권리의 양수금지) ① 세무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할 수 없다.
> ② 삭제 <1999. 2. 5.>

정부는 개정이유를 "종래 특정산업의 보호·육성등을 이유로 정부가 법령으로 허용하여 오던 공동행위 중에서 경쟁제한성이 크거나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공동행위 등을 폐지 또는 보완함으로써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제도를 폐지해 나가는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려는 것임."이라고 설명한다.

전문직 서비스에 대하여 종래에 보수결정의 공공카르텔을 허용한 이유는 수요자가 해당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잘 알 수 없다는 정보의 비대칭성과 전문직 서비스는 준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므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서비스에 대하여는 개별 전문자격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과 관계없이 해당 사업자단체가 정한 대로 보수가 거의 일정한 수준으로 결정되고 소비자들은 여기에 따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있었다.

그러나, 그동안에 전문직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전문직 서비스도 많은 서비스 중 하나이고, 경쟁이 도입되면 수수료 인하, 소비자의 선택범위 확대 등을 통해 수요자의 후생이 증

정당한 행위)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116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도 같은 내용이다.

18) 안희원, "카르텔일괄정리법의 주요내용과 기대효과", 「경쟁저널」 제42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1999. 2., 3~4면.

대될 수 있다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게 됨에 따라 카르텔일괄정리법이 제정되고[19] 그에 따라 정부가 세무사 보수를 정하는 방식도 폐지된 것이다.[20]

1999. 2. 5. 세무사법은 제15조 제2항을 삭제한 후로는 세무사법이나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의 수임료 또는 수수료율, 표준보수 등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세무대리업무 계약체결 및 보수 약정은 개별 세무사무소가 의뢰인과의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제2절 현행 세무사 보수 현황

현행 법령은 국가는 물론이고 한국세무사회도 세무사 보수에 관하여 그 액을 정하거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세무사 보수는 완전히 세무사와 의뢰인 간의 자유계약에 맡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의 서비스에 대하여도 세무사 보수는 천차만별이라 하겠다. 임의로 몇 군데의 세무사 사무실을 추출하여 보수를 비교하여 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첫째, 기본적인 세무사 업무인 기장대리, 세무조정, 성실신고확인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에 관하여는 각 사무실마다 보수기준이 매우 다르고 다양하였다.

둘째, 기본적인 업무 중 기장대리와 세무조정 업무에 관하여는 수입금액이나 자산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보수를 산정하였고, 성실신고확인 업무에 관하여는 업종 및 수입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보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모든 세무사 사무소가 원칙적인 보수기준을 제시하면서도 특정한 사정이 있으면 보수를 20%~30%, 심지어는 50%까지 가산할 수 있게 하였다.

넷째, 보수 가산사유로 제시된 것은 법인인 경우, 상장법인인 경우, 외부회계 감사대상인 경우, 원가계산을 필요로 하는 경우. 공제・감면세액이 있는 경우, 부동산임대 사업자인 경우, 변호사・변리사・의사 등 전문직종인 경우 등 매우 다양하였고, 사무소마다 달랐다.

다섯째, 위에서 말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에, 기본적인 업무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도 세무사 사무소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차이가 합리적임을 뒷받침할 증거는 찾기 어려웠다.

---

19) 카르텔일괄정리법 제4조(세무사법의 개정) 세무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제목중 “양수금지 및 보수”를 “양수금지”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

20) 안희원, 앞의 논문, 4면.

제4장 타 직역 전문가의 보수표준화 사례

제1절 서언

세무사 이외의 다른 전문직종 중에서는 보수를 의뢰인과 해당 전문가 간의 완전한 자율에 맡기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표준적인 보수기준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후자의 예로,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등을 들 수 있다. 본 발표문에서는 지면상의 제한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추후 발표자료에서 시각자료로 보완한다.

제2절 타 직역 보수 표준화의 시사점

공인중개사의 경우 법령(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보수의 상한을 규정하고, 그 상한 내에서 시·도 조례로 주택에 관한 중개보수액의 상한을 다시 정한 후에, 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하여 실제 중개보수액을 정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 조례를 보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과 내용이 동일하고 달리 규정된 예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중개보수는 법이 정한 기준을 상한으로 하여 당사자가 계약으로 정하고 있다. 실제로 계약할 때에는, 중개 대상물의 금액이 크지 않으면 시·도 조례로 정한 수수료 상한대로 하고, 중개 대상물의 금액이 크면 시·도 조례로 정한 수수료 상한보다 낮게 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합의하여 중개 수수료 금액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원칙대로 하자면,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계약으로 정할 것이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할 성격의 용역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중개보수의 상한을 정할 수 있게 한 것은 많은 국민이 관계된 영역으로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하여 통제를 가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감정평가사의 경우 감정평가보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감정평가법인 등과 의뢰인은 증액 또는 감액의 여지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보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국가가 감정평가보수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게 한 이유는, 감정평가는 국민 재산의 수용 또는 과세부과시의 근거자료가 되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토지 등의 관리·매입·매각·경매·재평가 등을 위하여 감정평가법인 등에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 및 금융기관·보험회사·신탁회사 등이 대출, 자산의 매입·매각·관리 또는 기업의 재무제표 작

성 등과 관련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처럼,[21] 대량으로 이루어지거나 평가의 객관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법률에서 감정평가법인 등과 의뢰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보수기준을 따를 것을 의무지우고 있고, 실제로도 감정평가법인 등과 의뢰인은 그대로 따르고 있다.[22]

법무사의 경우 법무사법에서 보수기준의 제정을 대한법무사협회에 위임하였기 때문에 대한법무사협회가 「법무사 보수기준」이라는 이름으로 구체적인 보수기준을 정하고 있다. 「법무사 보수기준」에서는 법무사의 업무내용을 10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영역마다 매우 구체적으로 보수기준을 정하고 있다.

'법무사 보수기준'에 정하여진 보수액은 상한액으로 법무사는 원칙적으로 이를 초과하여 보수를 받지 못하지만(법무사 보수기준 제2조 제5항), 사건이 중요하거나 복잡한 경우 등에는 증액하여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증액하는 경우의 상한은 따로 없고, 다만 '공정하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기준보수액에 보수를 증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법무사의 보수에 관하여는 법무사단체가 보수를 정하도록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고, 법무사 단체는 이에 상응하여 유형별로 매우 상세하게 보수기준을 정하면서 증액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법무사는 보수기준표에 정해진 대로 일률적으로 보수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

공인회계사의 경우 2019년부터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표준감사시간」에 따라 보수를 산정하고 있다. 외부감사의 품질은 회계투명성의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에 터잡아, 감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일정수준 이상의 감사시간 투입을 보장하고 감사보수를 현실화하려

---

2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감정평가의 의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토지등의 관리·매입·매각·경매·재평가 등을 위하여 토지등을 감정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② 금융기관·보험회사·신탁회사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대출, 자산의 매입·매각·관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을 포함한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등과 관련하여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31., 2018. 3. 20., 2020. 4. 7.>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자는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감정평가법인등에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 4. 7.>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뢰의 절차와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추천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수수료 등)
③ 감정평가법인 등과 의뢰인은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2021. 7. 20.>

는 취지에서 도입된 표준감사시간제도에 대하여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 제도를 통해 저가수임으로 인하여 적정한 감사시간이 투입되기 어려웠던 기존의 감사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표준감사시간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사시장의 과도한 수임경쟁을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5장 세무사 일부 보수의 표준화 방안

제1절 세무사 일부 보수의 표준화 필요성

1. 이론적 고찰

앞서 본 바와 같이, 세무사는 납세자로 하여금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돕는 한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공공성을 지닌 조세전문가이다. 즉, 세무사는 영리 목적의 활동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인으로서의 직업인이 아니라, 나라 살림에 쓰이는 세금을 적법하게 징수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국가와 국민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세무행정의 원활화를 도모하는 공공성을 지닌 조세전문자격사이다.

세무사의 위와 같은 이중적 지위에 비추어 볼 때에, 세무사가 세무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의뢰인에게서 받는 보수에 관하여 보통의 상인처럼 시장논리에 따라 완전히 당사자간의 자율에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고 국가의 공공적 견지에서의 개입 내지 고려가 요구된다.

세무사 이외의 다른 전문가인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관세사, 공인회계사 등이 의뢰인에게서 받는 보수에 관하여 국가는 직접 또는 해당 전문가단체를 통하여 보수기준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적절히 개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세무사 보수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준 설정 없이 완전히 세무사와 의뢰인 간의 계약에 맡기고 있는데, 예컨대 세무사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하기 위한 성실신고의 기초를 이루는 기장대리, 세무조정, 성실신고확인 등의 핵심적인 세무대리업무에 관하여 현재 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아무런 보수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이로 말미암아 기장대행과 세무조정 등의 세무대리 업무를 둘러싸고 과당경쟁과 덤핑이 만

연되고 있으며,[23] 의뢰인은 무조건 보수가 낮은 세무사를 찾아가서 탈법 또는 편법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등의 폐해가 널리 퍼져있는 지경이다. 이런 상황 아래에서는 세무사가 전문성과 책임성이 고도로 요구되고 현실적으로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는 세무대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조건에 놓이게 된다.

이로 말미암아 세법상 성실납세를 담보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제도인 기장대행, 세무조정, 성실신고확인 등의 세무대리 품질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으며, 세무사가 공공성 있는 세무전문가로서 전문적이고 책임성 있는 세무대리를 통해 성실납세에 이바지하도록 한 법적 사명(세무사법 제1조의2[24])을 제대로 달성하기가 어려워졌으며, 그 결과 적정한 소득금액 계산과 성실신고가 제대로 되지 못하여 궁극적으로 성실납세와 국가 재정수입이 위협받고 있다.

기장대리, 세무조정, 성실신고확인 등의 업무는 가장 기초적이자 핵심적인 세무대리업무로서 이들 업무가 정확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정확한 소득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실한 조세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고 탈세 또는 조세회피가 발생할 우려가 대단히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덤핑 등이 만연하면 납세자는 무조건 가격이 낮은 세무사 사무소를 찾아갈 가능성이 많고, 터무니 없이 불합리한 보수액으로 세무대리를 수임한 세무사 사무소는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성실하게 사건을 처리하기가 어렵게 된다.

그렇게 되면. 건전한 납세의식을 떨어뜨리고 성실납세 풍토를 해칠 뿐만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결국 세수의 누락을 초래하게 된다. 이것은 납세자 본인에 대하여서도 향후에 가산세를 포함한 누락된 세금의 추징은 물론이고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될 우려에도 처하게 된다. 결국, 기장대리・세무조정・성실신고확인처럼 정형적・반복적 업무이지만 가장 중요하고 많은 납세자가 관련된 세무대리업무에 관하여는 국가 또는 세무사 단체가 합리적인 보수기준을 제시하여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함으로써 납세도의를 확립하고 아울러 세수누락도 방지할 필요가 있다.

---

23) “기장료 20년 제자리…‘세무사업 끝났다’”?, 일간 NTN 국세신문, 2022. 10. 5.자 기사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 지난달 세무사의 위기 상황을 적나라하게 지적한 ‘시대와 물가에 유일하게 역행하는 건 세무비용 뿐’이라는 한 세무사의 세무사회 홈페이지 회원전용 세정・세법 게시판 글이 화제가 됐다.
> 세무사업이 처한 절박한 상황을 가감 없이 표현해 많은 세무사들의 공감을 받았고, 큰 울림을 줬다.
> 그는 “21년 전 개업 당시 기장료가 신규개인 11만원, 중견개인 18만원, 신규법인 22만원, 중견법인 33만원 이상이었다”고 운을 뗐다. “그런데 지금은 개인 5만원, 법인 8만원이라고 한다. 인터넷에선 개인 3만원, 법인 5만원이라는데 최저임금은 200만원에 육박한다”며 뒷걸음질하는 기장료에 절망감을 나타냈다.
> 그러면서 “음식점 기장관리 비용이 식당에 납품되는 계란, 채소값보다 못한 상황”이라며 “기장을 맡기는 음식점업 대표가 과연 세무사를 어떻게 인식할까 궁금하다”고 세무업의 암울한 현실을 한탄했다.

24) 세무사법 제1조의2(세무사의 사명)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2. 실증적 고찰

세무사 보수의 표준화와 관련하여서는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세무사 및 국민(납세자)의 공감을 얻어서 추진하는 것이 제도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세무사회는 보수표준화에 관하여 국민 및 세무사를 상대로 최근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는데 아래에서 그 요지를 소개한다.

가. 업무별 비중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무사가 얻는 전체 수익 중 기장대리 업무 비중이 43.9%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세무조정 업무 비중이 30.7%이고, 성실신고확인 업무 비중이 7.7%로서 이 세 가지 업무를 합하면 82.3%에 달한다.

나. 보수표준화에 관한 국민 인식

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들은 세무사 보수의 표준화에 대하여 찬성 의견이 76.2%로서 반대 의견 23.8%보다 훨씬 높았다.

다. 보수표준화에 관한 세무사들의 인식

세무사들은 세무사 업무 중 일부에 관한 보수표준화 방안에 관하여 96.6%라는 압도적 다수가 찬성하였다.

제2절 세무사 보수표준화의 허용 가능성에 관한 법적 검토

I. 헌법합치성 여부에 관한 검토

1. 문제의 소재

위에서 본 것처럼 세무사 일부 보수의 표준화 방안으로는 세무사의 여러 업무 중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할 뿐만 아니라, 계속적·정형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인 기장대리 업무, 세무조정 업무, 성실신고확인 업무에 관하여 한국세무사회가 보수기준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시행하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것은 법무사 모델과 유사하다.

이 경우에 우선 검토해야 할 것은 기장대리 업무, 세무조정 업무, 성실신고확인 업무에 관하여 한국세무사회가 보수기준표를 작성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준수하게 하는 것이 회원인 세무사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전문직 단체인 대한법무사협회가 보수기준표를 통하여 보수를 결정하는 법무사의 보수기준제도의 위헌성과 법령과 조례로 공인중개사의 수수료를 정하는 공인중개사 보수결정제도의 위헌성이 이미 문제된 적이 있으므로 아래에서 우선 이 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어서 그에 터잡아 공인회계사 보수 중 일부를 표준화하는 제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지를 검토한다.

2. 법무사 보수기준제도의 위헌성 여부

정부는 1995. 2. 5. 카르텔일괄정리법을 제정·시행하여 전문직종에 대한 보수자율화를 추진하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노무사, 수의사, 행정사 등 9개 전문 자격사들의 법령에 의한 보수기준제도를 폐지하면서도 법무사 보수기준제는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리하여, 법무사법 제19조는 법무사의 보수를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법무사가 회칙 소정의 보수를 초과하여 보수를 받거나 보수 외의 다른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법무사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나아가, 등기신청의 대리업무에 있어서 변호사에 대하여는 그 보수를 제한하지 않고 법무사에 대하여만 그 보수를 규제하는 것이 법무사를 차별함으로써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도 문제되었다.

그에 대한 논란이 '헌재 2003. 6. 26. 2002헌바3 법무사법 제19조 위헌소원'인데, 지면관계상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발표자료로 보완한다.

3. 공인중개사 보수기준제도의 위헌성 여부

현재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 보수는 중개 대상물에 따라 다른데, 주택이나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범위를 상한으로 하여 다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그밖의 토지·상가 등의 기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중개보수를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공인중개사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2호).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를 위와 같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시스템은 「공인중개사법」의 전신인 「부동산중개업법」이 제정될 때부터 시작되었다. 즉, 1983. 12. 30. 제정되어 1984. 1. 1.부터 시행된 「부동산중개업법」 제2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983. 12. 30. 제정 부동산중개업법 제20조(중개수수료 등) ①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개업자는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물건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실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그 내용에 관하여 내무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보수결정제도는 「부동산중개업법」이 2005. 7. 29. 법률 제7638호로 전부개정되어 2006. 1. 30.부터 시행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중개수수료 등) ①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③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법명이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어 2014. 7. 29.부터 시행되었는데, 중개보수 결정 체제는 그대로 지속되었다. 해당 규정은 아래와 같다. 그 내용은 지금까지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8.>
④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6. 13., 2013. 3. 23., 2014. 1. 28.>
[제목개정 2014. 1. 28.]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를 위와 같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제도가 헌법에 합치되는 여부를 둘러싸고 아래와 같이 두 번에 걸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발표자료로 보완하도록 한다.

가. 헌재 2002. 6. 27. 2000헌마642, 2001헌바12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등 위헌확인

나. 헌재 2016. 5. 26. 2015헌마248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4. 세무사 보수표준화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검토

법무사와 공인중개사의 보수기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참고하여, 세무사 보수 중 기장대리업무에 대한 보수, 조정업무에 대한 보수, 성실신고확인업무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정부 또는 한국세무사회가 보수기준표를 작성하는 방식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보수기준표와 관련하여서는 세무사의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 침해가 문제된다. 지면관계상 자세한 것을 논할 수는 없지만, 과잉금지 원칙의 요소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어디에도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헌법상의 문제는 없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사의 업무 중 기장대리 업무, 세무조정 업무, 성실신고확인 업무에 관하여 표준적인 보수기준표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Ⅱ.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

세무사 업무 중 일부 업무에 관한 보수표준화 제도가 헌법상의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 제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무사 업무 중 기장대리 업무, 세무조정 업무, 성실신고확인 업무의 보수에 관하여 한국세무사회가 보수표준화 제도를 시행한다면 일응 공정거래법 제51조 제1항 제3호가 금지하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세무사회가 완전히 독자적으로 보수기준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장관이 한국세무사회와의 협의를 통하여 보수기준표를 작성할 뿐만 아니라, 보수기준화를 통하여 납세자의 성실신고·납세 유도, 납세자의 권익 도모, 조세제도의 건전한 발전 및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 나아가 국가의 안정적인 세수확보 등을 제도의 목표로 하므로 제도의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어서,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할 것은, 기획재정부장관이 한국세무사회의 의견을 들어 협의 방식으로 보수기준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보수의 하한을 제시하면서 세무사와 의뢰인은 어떤 경우에도 그 하한 이하로 보수액을 결정할 수 없게 만들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이런 형식으로 하한을 강제하는 것은 세무사 간의 경쟁을 정면으로 억제하는 것이어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제3절 세무사 보수표준화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

세무사가 의뢰인(납세자)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하여 그 대가로 받는 보수에 관하여 보수기준제를 도입할 필요성에 관하여는 위에서 보았으므로 여기에서는 그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1. 보수표준화의 범위

세무사법 제2조는 세무사의 업무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열거하고 있다. 위에 열거된 모든 업무에 대하여 보수표준화를 시도한다면 세무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

고, 카르텔일괄정리법에 따라 전문직 자격사의 보수표준화 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한 이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는 채택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에 의하여 위 업무들 중 보수표준화가 필요한 업무를 가려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업무가 보수표준화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표 2〉 보수표준화에 필요한 업무 선택 기준

순번	판단요소
1	정형적·반복적 업무일 것
2	세무사에 따른 능력의 차이가 지나치게 나지 않는 업무일 것
3	조세제도의 건전한 발전 및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에 직결되는 업무일 것
4	납세자의 성실신고·납부 이행 유도 효과가 큰 업무일 것
5	과세권자의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보수표준화에 적합한 세무사의 업무를 가려내면, 기장대리 업무(위 ③항), 세무조정 업무(위 ②항), 성실신고확인 업무(위 ⑧항)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나머지 업무들은 위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서 보수표준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보수표준화가 된 업무 이외의 경영관리 및 컨설팅 업무나 불복업무 등에 대하여는 각 세무사가 자신의 능력대로 의뢰인과의 합의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보수를 받을 수 있게 한다면, 각 세무사는 그가 제공하는 세무서비스의 품질에 상응하여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기에 세무사들의 권익이나 영업의 자유가 침해되는 일도 없을 것이다.

2. 보수표준화의 구체적인 입법방법

위에서 말한 대로 세무사 업무 중 기장대리 업무, 세무조정 업무, 성실신고확인 업무에 관한 보수표준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면 그 구체적인 입법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 방안을 상정해 볼 수 있다. 각 방법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발표자료로 보완한다.

가. 과세권자가 보수기준을 정하는 방안

나. 한국세무사회와 과세권자가 협의하여 보수기준을 정하는 방법

다. 한국세무사회가 과세권자의 개입 없이 보수기준표를 정하여 이를 세무사들이 지키게 하는 방안

라. 검토

첫째 방안(과세권자가 보수기준을 정하는 방안)은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보수 방식과 유사하다. 감정평가사의 경우 감정평가보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감정평가법인 등과 의뢰인은 증액 또는 감액의 여지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보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국가가 감정평가보수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게 한 이유는, 감정평가는 국민 재산의 수용 또는 과세부과시의 근거자료가 되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토지 등의 관리·매입·매각·경매·재평가 등을 위하여 감정평가법인 등에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 및 금융기관·보험회사·신탁회사 등이 대출, 자산의 매입·매각·관리 또는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등과 관련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처럼, 대량으로 이루어지거나 평가의 객관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면 세무사 업무 중 기장대리 업무, 세무조정 업무,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반복적·정형적이기는 하지만, 감정평가 업무처럼 대량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전문가의 주관을 가급적 배제하고 객관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란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방안은 어떤 점에서는 공인중개사의 보수결정방식과도 유사하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법령(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보수의 상한을 규정하고, 그 상한 내에서 시·도 조례로 주택에 관한 중개보수액의 상한을 다시 정한 후에, 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하여 실제 중개보수액을 정하게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당사자 간 합의로 보수를 결정하게 되어 있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수의 상한을 법령의 형태로 규제한다는 점에서는 첫 번째 방안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의 보수를 법령으로 정하는 방식이 허용되는 이유는 많은 국민이 관계된 영역으로서 주택 등과 같은 경우에는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하여 통제를 가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 점에서 세무사 업무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방안(한국세무사회가 과세권자의 개입 없이 보수기준표를 정하여 이를 세무사들이 지키게 하는 방안)은 현행 법무사 보수 결정 시스템 및 공인회계사의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유사하다.

법무사의 경우 법무사법에서 보수기준의 제정을 대한법무사협회에 위임하였고, 대한법무사협회가 「법무사 보수기준」이라는 이름으로 구체적인 보수기준을 정하고 있다. 「법무사 보수기준」에서는 법무사의 업무내용을 10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영역마다 매우 구체적으로 보

수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처럼, 법무사의 보수에 관하여는 법무사단체가 보수를 정하도록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고, 법무사 단체는 이에 상응하여 유형별로 매우 상세하게 보수기준을 정하면서 증액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법무사는 보수기준표에 정해진 대로 일률적으로 보수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법무사 업무의 대종을 이루는 등기업무는 대단히 단순하고 기계적·반복적이며 많은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되어 있는 만큼 국가의 아무런 개입 없이 등기업무 보수를 대한법무사협회가 정하도록 한 입법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공인회계사의 경우 2019년부터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표준감사시간」에 따라 보수를 산정하고 있다. 이것은 빈번한 분식회계의 발생으로 인한 국가신뢰 하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도의 정책적 필요에서 나온 것으로서 다른 전문직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성질은 아니라고 본다. 현실적으로도 국회나 정책 당국이 카르텔일괄정리법 이전으로 돌아가서 공적 카르텔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결과가 되는 세 번째 방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이상의 논의를 고려하면 두 번째 방안(그 중에서도 기획재정부장관이 한국세무사회와 협의하여 보수기준을 정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 내용과 장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현실적으로 한국세무사회가 납세자를 고려하지 않은 채 세무사 업무 중 기장대리업무, 세무조정 업무, 성실신고확인 업무에 관하여 비합리적으로 높은 보수기준표를 만들 가능성은 희박하고, 그럴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적절히 통제할 수 있을 것이기에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또, 세무사 업무 전부가 아니라 그중 일부에 대하여만 보수표준제를 도입하는 것이므로, 카르텔일괄정리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3. 보수 상·하한을 둘 것인지 여부

위에서 말한 두 번째 방안, 즉 기획재정부장관이 한국세무사회와 협의하여 보수기준을 정하는 방안을 채택한다고 할 때, 보수기준을 가령 수입금액이나 자산규모 등 객관적 지표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단순하게 정하는 방법으로 할지 아니면 상한과 하한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할지를 선택해야 한다.

생각건대, 보수의 상한과 하한을 제시하는 방식도 나름이 장점이 있다고 보이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상한과 하한을 정한 후에 특히 하한을 준수하게 강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소지가 농후하다. 따라서, 수입금액이나 자산규모 등 객관적 지표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단순하게 제시하되 합리적인 사정이 있으면 일정 비율 안에서의 증액 및 감액을 허용하는 방법이

보수기준의 상한과 하한을 제시하는 방법보다 안전하고 낫다고 생각한다.

제6장 결 론

세무사는 납세자로 하여금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돕는 한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공공성을 지닌 조세전문가이다. 즉, 세무사는 영리 목적의 활동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인으로서의 직업인이 아니라, 나라 살림에 쓰이는 세금을 적법하게 징수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국가와 국민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세무행정의 원활화를 도모하는 공공성을 지닌 조세전문자격사이다.

세무사 일부 업무에 관하여 보수기준제를 채택한다면 세무사들의 직업활동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게 되지만, 그보다는 보수를 기준화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인 성실신고・납세의 유도, 납세자의 권익 도모, 조세제도의 건전한 발전 및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 나아가 국가의 안정적인 세수확보 등의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할 것이기에, 보수기준제가 법익의 균형성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세무사의 업무중 기장대리 업무, 세무조정 업무, 성실신고확인 업무에 관하여 표준적인 보수기준표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또한 한국세무사회가 완전히 독자적으로 보수기준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보수기준표를 확정할 뿐만 아니라, 보수기준화를 통하여 납세자의 성실신고・납세 유도, 납세자의 권익 도모, 조세제도의 건전한 발전 및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 나아가 국가의 안정적인 세수확보 등을 제도의 목표로 하므로 제도의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어서,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보수표준화가 된 업무 이외의 경영관리 및 컨설팅 업무나 불복업무 등에 대하여는 각 세무사가 자신의 능력대로 의뢰인과의 합의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보수를 받을 수 있게 한다면, 각 세무사는 그가 제공하는 세무서비스의 품질에 상응하여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기에 세무사들의 권익이나 영업의 자유가 침해되는 일도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상의 논의를 고려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한국세무사회와 협의하여 보수기준을 정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 내용과 장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현실적으로 한국세무사회가 납세자를 고려하지 않은 채 세무사 업무 중 기장대리 업무, 세무조정 업무, 성실신고

확인 업무에 관하여 비합리적으로 높은 보수기준표를 만들 가능성은 희박하고 그럴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적절히 통제할 수 있을 것이기에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또, 세무사 업무 전부가 아니라 그중 일부에 대하여만 보수표준제를 도입하는 것이므로, 카르텔 일괄정리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개정하여야 할 세무사법 및 세무사법 시행규칙의 내용은 다음 <표 3> 및 <표 4>와 같다.

〈표 3〉 세무사법 제15조의2 개정안

조문	현행	개정안
세무사법 제15조의2(보수)	신설	**제15조의2(보수)** ① 세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② 세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에게서 금품을 받지 못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의 업무 중 일부에 관하여 보수기준을 정할 수 있다. 그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④ 세무사와 위임인은 제3항에 따른 보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표 4〉 세무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조문	현행	개정안
세무사법 시행규칙 제○○조 (세무대리 보수 기준)	신설	**제○○조(세무대리 보수기준)** ① 법 제15조의2 제3항에 따라 보수기준을 정할 수 있는 업무는 기장대리업무, 세무조정업무, 성실신고확인업무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한국세무사회와 협의하여 위 제1항에 관한 보수기준을 정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논문 등】

권건보, “직업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주요 법리 분석”, 「아주법학」 제12권 제2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8.

김경용・정균범, “외부감사법상 표준감사시간제의 적용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회계정보학회 2020년 추계학술대회 발표집」, 2020. 11.

김기욱・유지선・신태섭, “표준보수제도 도입이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회계저널」 제30권 제2호, 2021. 4.

류인규・한민현, “활동기준원가계산을 고려한 세무대리서비스 보수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세무회계연구」 28권, 한국세무회계학회, 2011. 6.

문용주, “세무사제도의 연혁과 문제점”, 「계간 세무사」, 1994년 봄호.

신현윤, 「경제법(제8판)」, 법문사, 2020.

안희원, “카르텔일괄정리법의 주요내용과 기대효과”, 「경쟁저널」 제42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1999. 2.

이금주・한문성・홍정화, “세무대리서비스 보수 결정요인의 선호도에 관한 연구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업교육연구」 제21권, 한국상업교육학회, 2008. 9.

이민우・정기위, “감사환경에 따른 표준감사시간제도의 도입과 감사품질 개선 효과 : 감사시장의 경쟁강도와 비감사보수를 중심으로”, 「회계저널」 29권 3호, 한국회계학회 2020. 6.

이봉의, 「공정거래법」, 박영사, 2022.

이전오, “납세자를 위한 사법적 구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8.

이전오, 「공법소송실무」, 박영사, 2019.

이현진, “‘표준 세무대리’ 도입을 위한 논의”, 「계간 세무사」, 2022년 겨울호, 한국세무사회, 2023. 2.

정호열, 「경제법(제6판)」, 박영사, 2019.

조연주・김민희・전규안,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47권 2호, 2022. 4.

최명근, 「세법학총론(2007 개정판)」, 세경사, 2008.

한수웅・홍계정, “직업의 자유와 3단계이론”, 「중앙법학」 제12권 제3호(통권 37호), 중앙법학회, 2010. 9.

허영, 「한국헌법론(전정 19판)」, 박영사, 2023.

松澤智, 「租稅法の基本原理」, 中央經濟社, 1993.

齊藤明, 「租稅行政爭訟の法理」, 敬文堂, 1988.

【기타 자료】

「감정평가법인 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별표] 감정평가수수료 체계.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최근 3년간 외부감사 투입시간 등 현황 분석”, 2017. 7. 26.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
법무사 보수기준에 첨부된 부표(2020. 7. 23. 시행).
법제처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 2].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한국세무사회, “표준 세무대리 시간 및 비용 연구 보고서”, 2021. 6.
한국세무사회,「한국세무사회 60년사(1962～2022)」.
제33대 한국세무사회 ‘3대 혁신 30대 약속’, 2023. 7. 4.
“제33대 집행부, 회원님께 인사 올립니다”, 2023. 7. 4.
“한국세무사회장 2024 새해 인사말씀”, 2024. 1. 1. 등 참조.

【재결 · 판결 · 결정 등】

공정거래위원회 제3소회의 2004. 1. 19. 의결(약) 제2004－024호(2003제도2093).
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 2009. 3. 30. 의결 제2009－091호(2008서총2375).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2009. 6. 16. 재결 제2009－018호(2009협심1386).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2018. 8. 17. 의결 제2018－257호(2015서총1312).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150 판결 [법무사사업 제한행위 시정명령 취소 등].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두5347 전원합의체 판결 [의결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42605 판결 [청구이의].
헌법재판소 1991. 6. 3. 선고 89헌마204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1993. 5. 13. 선고 92헌마80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1997. 4. 24. 선고 95헌마273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1998. 10. 29. 선고 97헌마345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0. 12. 14. 선고 99헌마112 · 137(병합)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2. 4. 25. 선고 2001헌마614 [경비업법 제7조 제8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2. 6. 27. 2000헌마642, 2001헌바12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2. 7. 18. 선고 99헌마574 [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4항 단서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구 의료보험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조 제4항 및 제5항)].
헌법재판소 2003. 4. 24. 선고 2002헌마611 [의료법 제5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3. 6. 26. 2002헌바3 법무사법 제19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2헌마5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2002헌바41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1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2헌바80・87・88, 2003헌가22(병합)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4항 위헌소원 등].
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5헌바19 [형법 제34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9. 5. 28. 2006헌마618 [표준어규정 제1장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0. 5. 27. 선고 2008헌바110 [사법시험법 제4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9헌마638 [수산자원보호령 제9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3헌마585・786, 2013헌바394, 2015헌마199・1034・1107(병합)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2016. 5. 26. 2015헌마248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2헌마854 결정 [국어기본법 제3조 등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2018. 1. 25. 선고 2016헌바201, 2017헌바205(병합) 결정 [구 의료기기법 제1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등].

제 11 분과

세무회계

장소 : 327호 사회자 : **정희선 교수** (한양대)

시 간	발표논문 제목	저자 및 발표자*	토론자
16:40 ~ 18:10	ESG 지배구조(G) 반부패 활동 관점에서 살펴 본 조세관리 : 조세회피 측정치를 중심으로	신상훈 (청주대) **김선미*** (전남대)	**이동헌** (고려대)
	조세피난처 직접투자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	**왕 람*** (Zhejiang Industry Polytechnic College) 박희우 (가톨릭대)	**기은선** (강원대)
	취득세 세율의 인상 또는 인하가 부동산 매매거래에 미친 영향	박성욱 (경희대) 이종탁 (경희대) **김서현*** (경희대)	**권오현** (숭의여대)

ESG 지배구조(G) 반부패 활동 관점에서 살펴 본 조세관리

: 조세회피 측정치를 중심으로

신 상 훈 · 김 선 미
(청주대학교) (전남대학교)

ESG 지배구조(G) 반부패 활동 관점에서 살펴 본 조세관리
: 조세회피 측정치를 중심으로

신상훈* · 김선미**

Ⅰ. 서 론

본 논문은 ESG 지배구조(G)상의 항목인 반부패 관점에서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부패라 함은 해외에서는 “국내 및 외국공무원, 공적 국제기구 직원의 뇌물수수, 공무원의 횡령·배임과 그 밖의 재산 유용, 공무원의 영향력에 의한 거래, 직권남용, 부정축재, 민간부문의 뇌물수수 및 횡령, 범죄수익의 세탁 및 은닉, 사법방해를 포함한 범죄”[1]로 정의되거나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뇌물을 제공하거나 수락 또는 청탁하는 행위”[2] 혹은 “사적 이익을 위한 수탁 권리의 남용”[3]으로 정의된다. 국내에서도 협의의 의미에서 사익추구를 위한 활동부터 기업/사업주 이익을 위한 불법행위로 정의되는 광의의 부패, 최광의로 강압적/우월적 지위남용으로 정의된다.[4]

* 청주대학교 회계학과 조교수
** 전남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1) 유엔반부패협약 UNCAC
2) 세계은행World Bank
3) 국제투명성 기구 TI
4)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의 정의

부패개념 범위	부패/부정행위 유형	사례
협의 (사익추구 등)	거래관계에서 부여된 지위와 역할의 남용을 통한 사익추구	금품/금품/재물 등 뇌물수수, 배임죄
광의 (기업/사업주 이익을 위한 불법행위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 기준 위반	담합행위, 계열사 거래 등
	회계 및 공시 등 기관 내적 관리상 상법 관련 기준 위반	회계부정, 허위공시 등

이러한 부패 활동을 방지하는 활동을 반부패활동이라고 하며 ESG 프레임워크 내에서 기업의 반부패 활동은 지배구조(G)상의 핵심요소로서 사회(S) 및 환경(E)에 영향을 미치며, 청렴(Integrity)은 ESG 활동의 투명한 공시에 필수적 요소로 ESG 투자의 핵심이다.[5] 기업 내 부패는 최고경영진들의 의사결정 왜곡, 회계 조작에 따른 심대한 기업가치 하락 등과 같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며, 부패 사실이 드러날 경우 기업은 평판 손상, 재정손실, 시장 배제 등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기업의 부패 행위는 엔론 사례와 같이 기업의 파산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기업 재무 건전성의 주요 지표로 부패위험을 이해하여야 한다.[6] 일례로, 기업의 부패 행위는 뇌물 공여와 같은 직접적인 부정활동 뿐만 아니라 불공정한 업무수행, 회계원칙에 따라 회계자료를 정확히 기록·관리하지 않는 불공정한 거래행위, 이해상충 행위 및 금품수수 행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는 뇌물거래 방지 문제, 분식회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최근 회계처리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기업 내 회계부정, 자금횡령 등에 대한 예방책이자 해결책이기도 하다.[7][8] 즉,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활동은 ESG의 지배구조 관점에서 요구하는 반부패 활동과 그 맥이 닿아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회계정보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ESG의 지배구조 중 반부패 활동은 중요하다.

이에 EU는 지속가능보고지침(CSRD)과 지속가능금융공시(SFDR)에도 반부패 영역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하는 상장기업들이 GRI 가이드라인에 따라 GRI200(경제관련표준), GRI205－1, 205－2, 205－3이 부패방지관련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하고 있다.[9] 구체적으로, 국내 기업들은 기본윤리, 경영방침 준수, 투명경영 등과 관련된 윤리규범을 운영하고, ISO 37001과 같은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도입과 인증을 통해 뇌물수수 및 반부패 정책 운영에 대한 권한과 절차를 규정하는 등 반부패/윤리경영을 실천하고

부패개념 범위	부패/부정행위 유형	사례
광의 (기업/사업주 이익을 위한 불법행위	생산과 유통에 이르는 활동과정에서 소비자 및 사회일반의 이익보호 관련 법령 기준 위반	환경보호위반, 정보왜곡 등
최광의 (강압적/우월적 지위남용)	기관 내 구성원 또는 거래관련 상대와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의 남용과 행사	직원 또는 거래상대에 대한 강압 등

5) World Economic Forum(WEF) Annual Report. 2022.06

6) “ESG시대 반부패 역할 : 청렴에의 투자”,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2023.02, 국민권익위원회

7) “‘B→C급 강등’ KAI, 빛바랜 ESG 책임 경영”, EBN 산업경제, 2023.07.17

8) “[빛바랜 회계개혁] ④ 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로도 횡령 못막아”, 아시아경제, 2023.04.14

9) “ESG와 글로벌 반부패”, 전북의소리, 2023.01.03

이러한 반부패/윤리경영을 실천하는 조직을 내부감사 혹은 경영진단, 윤리경영 부서 등의 이름의 별도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반부패/윤리경영활동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는 기업의 경우 경영활동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를 파악하고, 각 이슈별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외부 지속가능성 관련 사회・환경적 관점뿐만 아니라 기업에 재무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이중중대성평가(Double materiality test)에서 윤리경영과 반부패활동 순위를 높게 두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이다. 이러한 반부패/윤리경영 활동을 기업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자율적으로 공시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ESG 활동 중 지배구조(G) 관점에서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과 윤리경영 추진 체계에 부합하도록 감사위원회를 최고의사결정기구로 두고, 실무조직으로 윤리경영위원회를 두는 형태로 부패방지 업무, 관련 규정 체계 수립과 유지, 구성원들에 대한 부패방지 교육훈련, 신고제도 운영, 주기적인 점검과 시정조치를 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다시 말해, 내부회계관리제도와 내부신고시스템을 통해 윤리경영・감독활동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각 부서의 내부통제 수행현황을 파악하는 등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감사위원회를 주축으로 내부통제 체제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을 통해 기업의 회계 신뢰성과 투명성을 향상 시키고자 노력한다는 것이다. 이에 기업의 윤리경영 활동은 ESG 지배구조(G) 관점에서 기업의 회계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반부패 활동과 그 의미가 닿아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세관리 관점에서 기업은 과세당국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세액의 정확한 산정 및 납부 등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등 투명한 조세보고를 위하여 관련 재무정보를 상세히 공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 일 수 있다. 즉, 기업은 사업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위험을 평가하는 노력을 통해 조세 관련 위험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조세전략을 수립하는 등의 윤리경영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일례로, SK gas는 윤리경영의 일환으로 세법을 준수하고 세무위험을 관리하는 활동은 국가재정에 기여하고, 투자자들의 이익을 개선하기 위한 주요한 요인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을 제시하고 있다.[10] 이와 같이 기업의 반부패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윤리경영・부패방지에 관련된 위험요인들을 파악하고, 내부감사 측면뿐만이 아닌 조세관리 관점에서도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부패방지 사후 조치 등을 하는 등 윤리경영실천을 통해 기업의 회계 신뢰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선행연구(이준일 등 2016 ; 김태중 등 2021 ; 최현정 2022 ; 윤회 등 2022)는 통합적인 지배구조(G) 활동의 일환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체 운영이나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

10) Governance＞윤리・준법 경영 및 부패방지＞조세관리 내역 내용 참고 (esg.skgas.co.kr).

수준 향상이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달성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 내부통제 일환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반부패 영역에 대한 직접적인 활동이 재무지표나 세무의사 결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의 반부패・윤리경영 관점에서 조세회피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세회피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세법에 열거된 공제 감면 규정을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조세를 경감시키는 행위(tax savings), 부정적인 측면에서 세법이 예정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법 형식을 사용하여 조세법령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탈세행위(tax evasion) 등 다양한 정의로 제시되고 있다(이준규와 김갑순 2012, 선정규 2013, 고윤성과 백혜원 2010, 유현수 등 2017). 본 연구는 조세회피를 비정상적인 법 형식을 사용하여 조세를 경감하려는 행위로 정의[11]하고, 지배구조 관점(G)에서 기업이 반부패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면 기업의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실증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특히,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기업 내 반부패 활동이 강화된다면 조세회피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ESG 지배구조(G)상의 반부패 활동의 관점에서 회계정보의 신뢰성 측면으로 조세회피의 관련성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에 추가적인 의미가 있겠다.

Ⅱ. 선행연구 및 가설설정

부패는 사회 전 분야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다. 국가기관에서의 부패는 공직자가 직무관련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 위반 등으로 이익을 도모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12]하고 있고, 기업에서의 부패는 기업가치와 미래 전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며 회계조작에 따른 기업가치 하락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뇌물수수, 갑질, 횡령, 분식회계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특히 횡령, 분식회계와 같은 회계측면에서의 부패 발생은 작게는 기업의 평판 하락에 따른 기업가치 훼손, 재정손실에서 크게는

11) 다만, 절세, 탈세와 엄격하게 구분하여 보지는 않는다. 이는 광의의 조세회피 개념에 절세와 탈세 개념의 혼재로 이에 대한 구분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신상훈과 차승민 2018).

12) 부패 행위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 기관의 예산 사용・공공 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 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 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위의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장 배제와 같은 기업의 존폐와 직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엔론, 대우조선, 오스템임플란트 사례 등에서 알 수 있다[13]. 이에 따라 반부패 활동은 국가차원에서 추진하는 활동으로 국내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주관부서로 하여 민간, 공공 분야에서 다양한 반부패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해외에서는 더욱 강력한 부패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제안하고 한국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 90여 개국이 서명한 '유엔 반부패 협약(UNCNC)'에 따라 2003년 10월 유엔총회에서 12월 9일을 '반부패의 날'로 제정하고 각 정부가 반부패기구를 만들어 선거 및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뇌물과 횡령 자금세탁 등을 불법화하고, 부패 지원 및 수사방해 행위를 범죄로 다를 것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라는 반부패법률을 통하여 부패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는데 회계와 관련된 조항은 FCPA의 근간을 지탱하는 조항으로 뇌물 관련 조항과 달리 고의 없어도 처벌하고 모든 회계장부 및 기록의 정확한 기재, 충분한 내부통제 기능 수립 및 시행과 더불어 강력한 형사처벌 기준(250만불 이하 벌금, 20년 이하 징역 등)등을 두고 있다. 영국도 부패방지법 중 가장 강력하다는 영국부패방지법(UK Bribery Act)라는 반부패법률을 제정하여 부패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해외활동 중 기업 임직원이 이러한 외국의 부패방지법에 해당되어 기업이 면책 받기를 원한다면 체계적인 준법감시(컴플라이언스 · Compliance)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추진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며, 반부패 가이드라인과 윤리강령의 수립 뿐 아니라, 반부패에 대한 정기 사내교육, 활용 여부, 임직원 대상 해외뇌물방지 서약서 수취 등 반부패 활동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고 뇌물 방지를 위한 내부조사도 강화해야 한다.[14] 관련하여 많은 기업들은 준법감시 활동과 더불어 조직의 부패 방지를 위해 2016년 국제표준화기구(ISO)가 국제 사회와의 합의를 바탕으로 구축한 반부패경영시스템 표준[15]인 ISO37001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반부패 활동과 관련된 활동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전사통제활동(ELC) 항목에도 적용되어 '경영진의 도덕성과 윤리적 가치에 대한 태도'로써 청렴성과 도덕성 측면에서 윤리규범(Code of Conduct), 내부고발 정책, 정기적인 윤리교육 항목으로 설계, 운영되고 있다.[16]

이와 더불어 반부패 활동은 ESG의 지배구조(G) 측면에서도 중요한 항목으로 자리하고 있다. '투명성 및 반부패에 관한 글로벌 미래 협의회(Global Future Council on Transparency and Anti－Corruption)가 2022년 6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 연간 컨퍼런스에서

13) "ESG시대 반부패 역할 : 청렴에의 투자", 2023.02. 청렴윤리경영브리프스. 국민권익위원회.

14) "[걸면 걸린다 FCPA]④ "소 잃고 외양간 고칠라" 국내 기업 FCPA 대비 미흡", 2014.04.30. 조선비즈

15) 한경 경제용어사전

16)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전사수준통제 의미는 무엇일까?", 2023.06. 삼일회계법인 내부회계자문센터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ESG프레임워크 내에서 기업의 부패는 지배구조(G)의 핵심 요소로서 측정가능한 동시에 사회(S) 및 환경(E)에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청렴(Integrity)'은 ESG의 투명한 공시에 필수이며 ESG 투자의 핵심이라고 강조하였다.[17] 이러한 ESG 상 반부패 평가는 2022년 12월에는 기업에 ESG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기관과 함께 수립한 K－ESG 가이드라인과 2024년부터 실시되는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에 보다 구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3년 12월에 제공된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반도체 등 4개 업종의 K－ESG에도 관련된 평가지표가 제시되었다.[18] 이에 따르면 반부패 활동은 기업의 내부감사(혹은 윤리경영) 부서에서 수행하며 반부패 관련 법률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19] 즉 ESG 지배구조(G)측면에서의 반부패 활동은 기업의 청렴(Integrity)활동이자 회계투명성과 신뢰성, 기업 가치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으며 내부감사 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본다. 한편 기업은 이러한 반부패/윤리경영 활동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자율적으로 공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는 기업이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 지속가능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국제기구)에서 제시하는 가이드에 따른 ESG 관련 각종 활동들이 담겨있다.[20] 이러한 활동 내역 중 기업의 반부패/윤리경영 활동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내용들

17) "ESG시대 반부패 역할 : 청렴에의 투자", 2023.02. 청렴윤리경영브리프스. 국민권익위원회.

18) K－ESG 가이드라인 4－4. 지배구조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G-윤리경영-추가1	지배구조	윤리경영
항목	윤리경영/반부패 관련 법규/행동강령 등 준수		
항목설명	조직이 윤리경영 및 부패방지 관련 법규, 행동강령 및 실천규범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		
성과 점검	윤리경영 및 부패방지 관련 법규, 행동강령 및 실천규범 위반 사례를 확인하여 감점하는 형태로 측정(기준 점수 100점)		

19) K－ESG G－5－1 지배구조 감사기구

20) 중대성 평가 및 반부패/윤리경영 활동 관련 GRI 가이드 상 지표

지표		지표내용
GRI 3 : 중대 이슈 2021	3－1	중대성 평가 수행 과정
	3－2	중대성 이슈 리스트
GRI 205 : 반부패 2016	205－1	사업장 부패리스크 평가
	205－2	반부패 정책과 절차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및 교육
	205－3	확인된 부패 사례 및 조치
GRI 206 : 반경쟁적 행위 2016	206－1	경쟁저해 및 독과점금지 위반 관련 소송

은 기업활동에서의 반부패/윤리경영 활동의 중요성 수준, 반부패/윤리경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세스나 시스템, 그리고 이를 수행할 조직의 존재 여부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 핵심리스크를 파악하여 대응하기 위해 이중중대성 평가를 통하여 도출된 중대성 이슈 항목에 반부패/윤리경영활동이 어느정도 순위로 평가되어 있는지 여부, 반부패경영활동시스템인 ISO37001와 같은 국제표준의 준수와 이의 인증 여부, 그리고 ESG 지배구조 중 반부패/윤리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 여부는 기업의 반부패/윤리경영 수준을 파악할 지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자율적으로 ESG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고 2026년 공시 의무회가 예정되어 있으나 아직 공시의 표준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반부패 활동의 중요성은 ESG 공시 내용에 기업마다 각기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부패와 이에 대비되는 개념인 청렴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국내외에 보고된 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지금까지는 기업의 부패와 반부패, 청렴도와 관련된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이 존재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김남욱(2022)은 조세부패에 대하여 세무조사, 조세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인한 탈세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엄격하게 처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부패가 감소되지 않고 특히 납세자가 조세법상 조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조세회피를 함으로써 납세자가 공평과세의 원칙이 훼손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신상훈과 차승민(2019)은 공기업의 청렴도 평가와 조세회피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공기업의 전체 청렴도(Integrity) 수준이 증가할수록 조세회피는 감소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즉 공기업의 청렴도 수준이 높을수록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동과 사적편익 추가가 감소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부패위험을 측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수행하는 반부패 활동이 활발할수록 조세회피는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신상훈과 이세철(2015)은 조직의 청렴도가 회계투명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공기업 청렴도 평가 도입 여부와 재량적발생액으로 측정한 이익조정과의 관계를 실증분석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공기업 청렴도 평가 실시 이후 이익조정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기업 청렴도 평가 도입이 이익조정을 억제할만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동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증결과에 대해 청렴도 평가가 회계처리 투명성에 대하여 적절하게 평가하지 못하고 있고 평가항목 역시 존재하지 않아 발생된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청렴도 관련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기업에서 부패와 반대되는 개념인 청렴도가 증가할수록 조세회피는 감소되며 이는 반부패 활동이 증가할수록 조세회피가 감소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한편 조세회피(Tax Avoidance)란 세법이 예정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법 형식을 사용하여 조세를 경감시키려는 행위로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정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절세와 탈세 개념의 혼재로 인한 구분의 어려움으로 조세회피를 비정상적인 법 형식을 사용하여 조세를 경감시키

는 행위로 정의한다(이준규와 김갑순 2012, 선정규 2013, 고윤성과 백혜원 2010, 신상훈과 차승민 2018). 먼저 ESG등급 이전에 사용되어진 사회적 책임, 즉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과 관련된 해외 연구로 Jones et al.(2017)은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 책임 기업은 공격적 조세회피에 음(－)의 관련성이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여 CSR 활동이 조세회피 성향을 억제한다고 주장하였다. Lopez－Gonzalez et al.(2019)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 및 환경 분야에서 기업의 성과가 조세회피와 음(－)의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심재우(2024)는 경영자 특성과 ESG등급과의 상호작용효과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ESG등급은 조세회피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ESG등급이 높은 기업은 조세회피를 억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기업이 ESG활동을 통하여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하며, 조세회피로 인하여 이미지 손상, 기업가치 하락 등의 부정적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오현주와 정재원(2022)은 ESG 통합지표와 ESG 구성항목인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의 요소별 지표를 사용하여 ESG가 이익조정과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ESG 통합지표는 조세회피와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보였으나 지배구조(G)는 조세회피와 유의하지 않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전체적으로 사회적 책임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은 이익조정 및 조세회피와 같은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홍희정과 박선영(2023)은 인지적 편향을 지닌 과신성향 경영자의 세무적인 의사결정과 기업의 투명성과 사회적 기여를 강조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라는 두 가지 요인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경영자의 과신성향과 조세회피의 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책임활동을 하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활동을 하지 않는 기업에 비해 경영자의 과신성향과 조세회피와의 양(＋)의 관련성을 더 약화시키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라는 긍정적 요인이 조세회피라는 부정적인 요인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경영자의 과신성향과 사회적 책임활동의 상호작용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의 변화를 과신성향이 높은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유의적인 양(＋)의 관계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과신성향을 억제・조절하는 효과로 나타나지만, 과신성향이 높은 경우에는 과신성향이 더 우세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유현수 외(2017)는 이익(회계)투명성이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한 대리인 관점의 조세회피 활동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 지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이익투명성이 낮을수록 조세회피 수준이 증가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의 이익(회계)투명성이 증가할 때 경영자의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한 공격적 조세정책을 억제한다는 점을 실증

적으로 제시하였고, 이익(회계)투명성이 낮은 기업 경영환경에서는 경영자가 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통제하는 장치가 중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ESG 등급이 높을수록 기업의 비윤리적 조세회피를 억제한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박종일과 이윤정(2022)은 ESG 및 그 구성인 환경(E), 사회적책임(S), 기업지배구조(G)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주로 E와 G에 기인하여 ESG 등급은 조세회피와 양(+)의 관계로 나타났으며 이는 ESG 등급이 높은 기업일수록 조세회피 성향이 더 높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경영을 수행하는 기업일수록 조세회피를 덜 수행하기보다는 오히려 조세회피 성향이 더 높고 적극적으로 조세회피행위를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ESG의 구성 중 기업지배구조(G)만 조세회피에 대한 조절효과에서 경영자 과신성향이 있을 때 기업지배구조(G) 등급이 높은 기업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조세회피가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우(2022)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내부통제활동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 책임은 조세회피 성향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 사회적 책임 비용 조달 목적으로 유출된 현금에 대해 지속가능경영 제원 마련 목적의 조세회피가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앞선 선행연구와는 달리 ESG 등급이 높거나 사회적 책임 활동이 활발할수록 각종 비용의 발생에 대한 부담으로 조세회피가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반부패/윤리경영과 조세회피에 관한 각종 법률과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ESG 등급과 조세회피와는 상반되는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으나 ESG활동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추론이 가능하다. 또한 ESG 중 지배구조(G)로 대변될 수 있는 반부패/윤리경영 활동의 수준은 비정상적인 법 형식을 사용하여 조세를 경감시키는 비윤리적인 행위인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역시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반부패/윤리경영 활동 수준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업 활동에서 반부패/윤리경영 활동이 이중중대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중대성 이슈 항목에 따라 기업과 이해관계자들이 판단하는 중요성 순위에 따라 상이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반부패/윤리경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세스나 시스템의 국제표준 준수 여부에 대한 ISO37001 인증 보유 여부,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담당하는 조직의 존재 여부 역시 주요한 반부패/윤리경영 활동의 지표로 간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지표가 기업의 조세회피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ESG 지배구조(G) 반부패/윤리경영 활동은 조세회피와 관련성이 있다.

[연구가설 1−1] 반부패/윤리경영의 이중중대성 순위는 조세회피와 관련성이 있다.

[연구가설 1-2] ISO 37001 인증 여부는 조세회피와 관련성이 있다.

[연구가설 1-3] 반부패/윤리경영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의 존재 여부는 조세회피와 관련성이 있다.

Ⅲ. 연구모형 설계

1. 연구모형

앞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업의 반부패・윤리경영 활동은 기업의 청렴도를 증가시키고 이는 기업의 세무계획 수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반부패・윤리경영 활동과 조세회피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연구모형을 사용한다.

[기업의 ESG 지배구조(G)관점의 반부패・윤리경영 활동과 조세회피]

$$TA_{i,t} = a_0 + a_1 ANTCORRUP_{i,t} + a_2 SIZE_{i,t} + a_3 ROA_{i,t} + a_4 LEV_{i,t} + a_5 LOSS_{i,t} + a_6 EXPORT_{i,t} + a_7 BTM_{i,t} + a_8 OCF_{i,t} + a_9 RATIO_RD_SALE_{i,t} + a_{10} INV_TA_{i,t} + a_{11} FA_{i,t} + a_{12} PTR_{i,t} + a_{13} BIG4_{i,t} + a_{14} LAR_{i,t} + a_{15} FOR_{i,t} + Yeardum + Inddum + \varepsilon_{i,t}$$

여기서,

TA	기업의 t년도 조세회피 대용치(ETR, CASHETR)
ANTCORRUP	반부패・윤리경영 활동
DMTEST_LEVEL	이중중대성 평가가 상위 3위, 5위 10위 안에 포함되는지 여부(M_RANK3, M_RANK5, M_RANK10)
ETHIC_DEPT	윤리경영 관련 위원회 또는 조직 보유 여부 (ETHCAL_COM, ETHCAL_DEP)
ISOCERT	ISO37001 인증 공시 여부
SIZE	당해연도의 자산총액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
ROA	총자산이익률(영업이익/자산총계) ;
LEV	부채비율(부채총계/전년도자산총계) ;
LOSS	당기순손실 여부 ;
EXPORT	수출비중(수출액/매출액) ;
BTM	장부가-주가비율 ;
OC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영업활동현금흐름/자산총계) ;
RATIO_RD_SALE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연구개발비/매출액) ;

INVE_TA	재고자산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 ;
FA	유형자산비율(유형자산(토지, 건설중인자산 제외)/자산총계) ;
PTR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을 총자본으로 나눈 값 ;
BIG4	대형회계법인감사여부 ;
LAR	최대주주지분율 ;
FOR	외국인지분율 ;
YEAR	연도별 더미변수 ;
IND	산업별 더미변수 ;

본 연구는 기업의 반부패・윤리경영 활동과 기업의 조세회피와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하여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대용치로는 선행연구(서정화 외 2017 ; 홍옥화 외 2018 ; 고종권 외 2020)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효법인세율(ETR)과 현금유효법인세율(CASHETR) 변수를 사용한다. 유효법인세율(ETR 또는 CASHETR)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측정되기에 과세이연이나 세법변경에 따른 추정오류를 감소시킨다는 이점이 존재한다. 유효법인세율(ETR)은 법인세비용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으로 나누어 계산하였으며, 현금유효법인세율(ETR)은 법인세납부액[21]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으로 나누어 계산하였으며, 유효법인세율(ETR 또는 CASHETR) 수치가 작을수록 조세회피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기에 해석 편의상 (−1)의 값을 곱하여 유효법인세율(ETR 또는 CASHETR)을 계산하였다.

본 연구의 관심변수인 기업의 반부패・윤리경영 활동(*ANTCORRUP*)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상 부패방지 관련 활동 내역인 반부패・윤리경영 활동을 핵심이슈로 인식(이중 중대성 평가)하고 있는지 여부, 관련 위원회와 지원조직을 구성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반부패・윤리경영(ISO37001) 인증서를 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대용치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여기서, 기업의 반부패・윤리경영 활동이 기업의 비윤리적인 활동을 방지하여 조세회피를 낮추도록 영향을 미친다면, 반부패・윤리경영 활동 특성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방향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규모(*SIZE*), 부채비율(*LEV*), 총자산순이익률(*ROA*), 영업활동현금흐름(*CFO*), 해외수출비중(*EXPORT*), 유형자산비율(*FA*), 장부가대비주가비율(*BTM*), 재고자산비중(*INV_TA*) 등을 통제변수들로 사용한다(박종국과 홍영은 2009 ; 김경화와 권순창 2014 ; 홍옥화 외 2018 ; 정현아와 유순미 2021 ; 홍희정과 박선영 2023 등). 기업의 정치적 비용 등의 발생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총자산의 자연로그 값을 기업규모(*SIZE*)변수로 설정하였다

21) 여기서 법인세납부액은 법인세비용에서 이연법인세자산 증감분을 더해주고, 이연법인세부채 증감분을 차감하여 계산하였다(홍옥화 외 2018 ; 홍희정과 박선영 2023).

(Gupta and Newberry 1997 ; 고윤성과 이정화 2008 ; 신상훈과 차승민 2018 등). 또한, 기업의 비용 발생은 조세 부담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며, 부채비율은 이자비용을 통해 세금 절감 효과를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제하기 위해 모형에 부채비율(LEV)을 포함하였다(박종국과 홍영은, 2009 ; 신상훈과 차승민, 2018). 선행연구(Gupta and Newberry 1997)에 따라 기업의 이익 수준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고자 이를 모형에 포함하였으며, 기업의 단기적 성과와 조세회피 관련성의 통제를 위하여 영업활동현금흐름(OCF) 변수를 모형에 추가하였다(신상훈과 차승민 2018 ; 신상훈과 김선미 2019). 한편 총자산 대비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의사결정이 기업의 조세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유형자산비율(FA)을 모형에 포함하였다(Stickney and McGee 1982 ; Gupta and Newberry 1997 ; 노현섭 외 2014). 이 외에도 국내 수출촉진 정책으로 인한 조세혜택이 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고자 수출비중(EXPORT) 변수를 모형에 포함하였으며(박승식 외 2006 ; 홍옥화 외 2018), 연구개발비 지출과 관련된 세제혜택 영향을 통제하고자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RATIO_RD_SALE)을 모형에 포함하였다. 그리고 최대주주지분율(LAR)과 외국인 지분율(FOR)에 따른 영향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고자 이를 모형에 포함하였다(강정연과 김영철 2012 ; 김은희와 김임현 2017 ; 이정희 외 2023). 또한, 대형회계법인에게 감사 받는 경우, 경영진에 대한 모니터링 효과로 인해 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을 완화하기에 이를 통제하고자 대형회계법인여부(*BIG4*)를 모형에 포함하였다(김은희와 김임현 2017). 마지막으로 연도별・산업별 차이가 본 연구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연도더미(*YEAR*)와 산업더미(*IND*)를 모형에 추가하였다.

2. 데이터 수집 및 표본선정

본 연구는 기업의 반부패・윤리경영 활동이 조세관리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이다. 본 연구검증을 위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자율공시)에 공시되는 반부패・윤리경영 활동 내역을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기업들은 GRI 가이드라인에 따라 GRI200(경제관련표준), GRI205－1, 205－2, 205－3에서 부패방지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있다. 이에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기업의 ESG 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반부패 활동을 살펴보고, 이러한 활동이 세무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이 외 본 연구검증을 위해 필요한 연간 재무자료는 VALUESearch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가설 검증을 위해 다음 1)－3)의 사항을 제외한 표본으로 구성한다.

1) 산업분류 중 금융산업으로 분류된 기업 및 12월 이외의 결산법인

2) 연구가설 검증에 필요한 재무정보를 입수할 수 없는 기업
3)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0보다 작은 기업

본 연구가설에 결산월의 차이가 미치는 영향을 조정하기 위해 결산월이 12월인 기업만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금융 관련 업종은 제조업과는 다른 영업 특성과 회계보고 특성을 지니고 있어 이를 본 연구가설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더불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이 발생한 기업의 경우, 조세회피 측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서정화 외 2017 ; 고종권 외 2020) 이를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아래 <표 1>의 PANEL A에 본 연구가설 검증을 위한 표본 선정 과정을 제시하였으며, 최종 88개 기업－연도 표본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표 1>의 PANEL B는 표본의 산업별 분포를 나타낸다.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제조업, 정보통신업, 도매 및 소매업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1〉 표본 선정 과정 및 표본 분포

PANEL A : 표본 선정 과정

구 분	전체표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자율공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유가증권상장기업 (공시일자 기준 2022년－2023년)	293
1) 산업분류 중 금융산업으로 분류된 기업 및 12월 이외의 결산법인	(64)
2) 조세회피 측정치 등 연구가설 검증에 필요한 재무정보를 입수할 수 없는 기업	(106)
3)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0보다 작은 기업	(35)
최종표본	88

PANEL B : 표본분포

산업별 분포

구 분	빈도	백분율
제조업	58	65.9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2	2.27
건설업	5	5.68
도매 및 소매업	8	9.09
운수 및 창고업	2	2.27
정보통신업	11	12.5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	2.27
합계	88	100

Ⅳ. 실증분석 결과

1.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

<표 2>는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량은 제시한다. 조세회피 측정치인 유효법인세율(ETR)과 현금유효법인세율(CASHSTR)의 평균 값은 −0.246과 −0.247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평균적으로 조세회피 성향이 낮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관심변수인 반부패/윤리경영 활동(ANTCORRUP) 중 이중 중대성 순위(M_RANK3, M_RANK5, M_RANK10)의 평균 값은 각가 17%, 31.8%, 75%의 비중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경영 관련 조직 보유여부(ETHCAL_COM, ETHCAL_DEP)의 평균 값은 각각 12.5%와 80.7%의 비중으로 나타났으며, ISO37001 인증 여부(ISOCERT)의 평균 값은 25%의 비중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제변수로 기업규모(SIZE)의 평균값은 29.624로 대체적으로 기업규모가 큰 경우 지속가능경영보고서(자율공시) 자료를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채비율(LEV)은 0.505로 분석표본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산 총계 대비 유형자산 비율(FA)은 평균값이 0.23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매출액 대비 수출액(EXPORT) 평균값은 0.367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지배구조 대용치로 사용된 최대주주지분율(LAR)은 30.5%의 비중을 보였으며, 장부가 대비 시가(BTM)의 평균값은 1.616으로 이는 기업의 장부가치에 비해 시장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나타낸다. 또한, 전체 기업의 3.4%만이 당기순손실을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변수		N	평균	최솟값	P50	최댓값	표준편차
TA	*ETR*	88	−0.246	−1.921	−0.223	0.000	0.307
	CASHETR	88	−0.247	−1.956	−0.223	0.000	0.308
DMTEST_LEVEL	*M_RANK3*	88	0.170	0.000	0.000	1.000	0.378
	M_RANK5	88	0.318	0.000	0.000	1.000	0.468
	M_RANK10	88	0.750	0.000	1.000	1.000	0.435
ETHIC_DEPT	*ETHCAL_COM*	88	0.125	0.000	0.000	1.000	0.333
	ETHCAL_DEP	88	0.807	0.000	1.000	1.000	0.397
ISOCERT		88	0.250	0.000	0.000	1.000	0.435
SIZE		88	29.624	27.190	29.398	31.641	1.192

〈표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계속)

변수	N	평균	최솟값	P50	최댓값	표준편차
ROA	88	0.050	−0.006	0.037	0.242	0.048
LEV	88	0.505	0.164	0.521	0.836	0.175
LOSS	88	0.034	0.000	0.000	1.000	0.183
EXPORT	88	0.367	0.000	0.000	2.631	0.683
BTM	88	1.616	0.126	1.169	6.148	1.342
OCF	88	0.067	−0.100	0.055	0.262	0.064
RATIO_RD_SALE	88	3.398	0.000	0.630	100.510	11.341
INV_TA	88	0.101	0.000	0.095	0.285	0.071
FA	88	0.238	0.032	0.247	0.581	0.139
PTR	88	0.124	0.003	0.108	0.485	0.098
BIG4	88	0.943	0.000	1.000	1.000	0.233
LAR	88	0.305	0.085	0.268	0.710	0.148
FOR	88	0.002	0.000	0.002	0.006	0.001

<표 3>은 주요변수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주요관심변수인 유효법인세율(ETR)과 현금유효법인세율(CASHSTR)은 반부패/윤리경영 활동(ANTCORRUP) 관련 변수들과 양(+) 또는 음(−)의 방향성을 가졌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통제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총자산순이익률(*ROA*)과 총자본 대비 세전이익 비율(PTR) 및 총자산순이익률(*ROA*)과 영업활동현금흐름(OCF) 변수 간 상관관계가 높으며, 기업지배구조를 대변하는 변수(LAR, FOR)간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주요변수들 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1)ETR	1																					
(2)CASHETR	0.999 0.000	1																				
(3)M_RANK3	−0.085 0.433	−0.086 0.426	1																			
(4)M_RANK5	−0.079 0.465	−0.079 0.467	0.664 0.000	1																		
(5)M_RANK10	0.022 0.840	0.020 0.857	0.262 0.014	0.394 0.000	1																	
(6)ETHCAL_COM	0.050 0.641	0.040 0.712	0.011 0.916	0.332 0.002	0.139 0.197	1																
(7)ETHCAL_DEP	0.154 0.153	0.151 0.161	−0.084 0.435	0.087 0.420	−0.017 0.878	−0.076 0.481	1															
(8)ISOCERT	−0.052 0.632	−0.049 0.649	0.227 0.034	0.225 0.035	0.212 0.047	0.099 0.358	0.083 0.442	1														
(9)SIZE	−0.041 0.704	−0.042 0.696	−0.088 0.415	−0.055 0.613	0.005 0.966	−0.125 0.247	0.156 0.147	−0.049 0.651	1													
(10)ROA	0.292 0.006	0.293 0.006	−0.215 0.045	−0.237 0.026	−0.101 0.351	−0.023 0.833	0.093 0.391	−0.168 0.117	−0.160 0.135	1												
(11)LEV	0.083 0.440	0.085 0.429	0.059 0.588	0.029 0.789	0.070 0.520	−0.077 0.474	0.141 0.189	−0.055 0.612	0.209 0.050	−0.364 0.001	1											
(12)LOSS	−0.800 0.000	−0.802 0.000	0.081 0.451	0.006 0.955	−0.036 0.738	−0.071 0.511	−0.067 0.537	0.036 0.738	−0.066 0.544	−0.211 0.048	−0.033 0.757	1										
(13)EXPORT	−0.019 0.863	−0.012 0.915	−0.063 0.562	−0.053 0.623	−0.221 0.038	−0.033 0.760	−0.042 0.695	−0.096 0.375	−0.088 0.413	0.180 0.093	−0.239 0.025	−0.056 0.601	1									
(14)BTM	−0.161 0.134	−0.168 0.117	−0.049 0.649	0.033 0.757	−0.038 0.727	0.284 0.007	0.055 0.609	−0.110 0.307	0.185 0.085	−0.327 0.002	0.284 0.007	0.038 0.727	−0.063 0.561	1								
(15)OCF	0.124 0.248	0.126 0.241	0.035 0.744	0.011 0.921	0.121 0.262	−0.050 0.645	0.048 0.655	−0.032 0.770	0.172 0.109	0.515 0.000	−0.216 0.043	−0.124 0.248	0.035 0.745	−0.316 0.003	1							

〈표 3〉 주요변수들 간 상관관계 (계속)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16)RATIO_RD_SALE	0.023	0.024	−0.047	0.105	0.042	−0.093	0.041	0.153	0.054	0.050	−0.119	−0.039	0.055	−0.212	−0.018	1						
	0.833	0.823	0.663	0.329	0.699	0.388	0.704	0.155	0.616	0.645	0.270	0.716	0.610	0.047	0.864							
(17)INV_TA	0.130	0.134	−0.111	−0.113	−0.056	−0.191	−0.083	−0.013	−0.183	0.101	0.081	−0.091	0.178	−0.151	−0.114	0.058	1					
	0.227	0.214	0.304	0.296	0.602	0.075	0.443	0.908	0.088	0.348	0.456	0.398	0.097	0.161	0.288	0.593						
(18)FA	−0.057	−0.056	0.003	0.064	0.156	0.100	0.128	−0.107	0.049	0.029	0.136	−0.113	−0.002	0.010	0.369	−0.105	−0.016	1				
	0.597	0.603	0.976	0.556	0.148	0.355	0.236	0.322	0.653	0.789	0.206	0.294	0.982	0.926	0.000	0.331	0.884					
(19)PTR	0.343	0.344	−0.238	−0.281	−0.061	−0.084	0.118	−0.203	−0.089	0.873	−0.053	−0.216	0.049	−0.310	0.474	−0.004	0.171	0.125	1			
	0.001	0.001	0.026	0.008	0.571	0.435	0.273	0.058	0.408	0.000	0.624	0.043	0.651	0.003	0.000	0.970	0.112	0.246				
(20)BIG4	0.219	0.211	0.111	−0.043	−0.142	0.093	0.004	0.028	0.128	−0.044	−0.008	−0.224	−0.219	0.059	−0.068	0.035	−0.006	0.008	−0.009	1		
	0.040	0.048	0.302	0.690	0.188	0.390	0.969	0.793	0.234	0.686	0.943	0.036	0.040	0.587	0.528	0.750	0.955	0.939	0.933			
(21)LAR	0.126	0.131	0.274	0.270	0.084	−0.012	−0.087	0.192	−0.430	−0.166	−0.021	−0.110	0.048	−0.147	−0.349	0.098	0.059	−0.020	−0.227	0.044	1	
	0.241	0.223	0.010	0.011	0.438	0.911	0.423	0.073	0.000	0.122	0.844	0.306	0.658	0.172	0.001	0.363	0.588	0.856	0.033	0.682		
(22)FOR	−0.069	−0.071	−0.160	−0.213	−0.072	−0.226	0.040	−0.040	0.551	0.135	−0.288	−0.018	−0.017	−0.142	0.391	−0.001	−0.023	0.021	0.099	0.087	−0.400	1
	0.523	0.513	0.138	0.046	0.505	0.035	0.712	0.712	0.000	0.211	0.007	0.865	0.872	0.188	0.000	0.996	0.835	0.843	0.361	0.421	0.000	

2. 회귀분석 결과

<표 4>는 가설1의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조세회피 측정치로 유효법인세율(ETR 및 CASHETR) 변수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반부패/윤리경영 이중중대성 평가순위(M_RANK3, M_RANK5, M_RANK10)과 음(－)의 방향성을 보였으며, 기업별 반부패/윤리경영에 대한 중대성을 상위 3 또는 5위 안으로 평가한 기업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기업의 반부패/윤리경영 활동이 조세회피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인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반부패・윤리경영(ISO37001) 인증서를 제시하고 있는지 여부(ISO_CERT) 변수와 일관된 음(－)의 방향성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다. 통제변수로, 부채비율(LEV)과 조세회피는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있음을 보였다. 또한, 총자산 대비 유형자산 비율(FA) 변수는 유효법인세율(ETR, CASHETR)과 최소 1% 수준에서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 기업의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의사결정이 조세회피 완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4〉 반부패/윤리경영 활동과 조세회피

PANEL A : 반부패/윤리경영 활동과 유효법인세율(ETR)

Variables	M_RANK3		M_RANK5		M_RANK10		ETHCAL_DEP		ETHCAL_COM		ISO_CERT	
	Coef.	t value	Coef.	t value	Coef.	t value	Coef.	t value	Coef.	t value	Coef.	t value
Intercept	0.564	1.010	0.667	1.260	0.668	1.180	0.666	1.180	0.632	1.140	0.589	1.060
M_RANK3	−0.113	−2.620**										
M_RANK5			−0.085	−2.630**								
M_RANK10					−0.038	−0.800						
ETHCAL_DEP							0.040	0.600				
ETHCAL_COM									0.064	1.250		
ISO_CERT											−0.074	−1.410
SIZE	−0.028	−1.370	−0.026	−1.390	−0.026	−1.250	−0.026	−1.240	−0.027	−1.350	−0.023	−1.140
ROA	−0.411	−0.530	−0.575	−0.700	−0.360	−0.440	−0.319	−0.360	−0.258	−0.290	−0.192	−0.230
LEV	0.493	2.350**	0.422	2.080**	0.452	2.050**	0.432	2.010**	0.493	2.160**	0.484	2.220**
LOSS	−1.352	−13.410***	−1.372	−13.490***	−1.392	−12.280***	−1.385	−12.610***	−1.371	−12.250***	−1.376	−11.900***
EXPORT	0.008	0.340	0.007	0.330	0.002	0.070	0.009	0.380	0.010	0.420	0.011	0.480
BTM	−0.040	−1.760*	−0.039	−1.670	−0.044	−1.650	−0.049	−2.050**	−0.050	−2.070**	−0.051	−2.100**
OCF	0.834	1.750*	0.807	1.710*	0.583	1.230	0.473	1.010	0.440	0.980	0.562	1.360
RATIO_RD_SALE	−0.003	−2.060**	−0.002	−1.240	−0.002	−1.910*	−0.002	−1.810*	−0.002	−1.830*	−0.002	−2.030**
INV_TA	0.355	0.960	0.291	0.780	0.309	0.820	0.309	0.800	0.381	0.960	0.328	0.870
FA	−0.530	−3.040***	−0.463	−2.670**	−0.476	−2.410**	−0.571	−3.050***	−0.568	−3.020***	−0.550	−3.000***
PTR	0.107	0.290	0.173	0.440	0.186	0.460	0.194	0.460	0.193	0.450	0.043	0.100
BIG4	0.037	0.530	0.000	0.000	−0.013	−0.160	0.011	0.150	−0.003	−0.040	−0.003	−0.030
LAR	0.765	2.850***	0.734	2.970***	0.622	2.460**	0.563	2.620**	0.596	2.530**	0.653	2.770***
FOR	48.755	2.280**	46.716	2.250**	46.220	2.050**	39.914	2.010**	48.809	2.190***	50.370	2.330**
YEAR dummies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dustry dummies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No. of Obs.	88		88		88		88		88		88	
Ajusted R-Square	0.7155		0.7149		0.7028		0.7021		0.7049		0.7081	

〈표 4〉 반부패/윤리경영 활동과 조세회피 (계속)

PANEL B : 반부패/윤리경영 활동과 현금유효법인세율(CASHETR)

Variables	M_RANK3		M_RANK5		M_RANK10		ETHCAL_DEP		ETHCAL_COM		ISO_CERT	
	Coef.	t value	Coef.	t value	Coef.	t value	Coef.	t value	Coef.	t value	Coef.	t value
Intercept	0.504	0.910	0.612	1.180	0.619	1.110	0.607	1.090	0.573	1.040	0.532	0.970
M_RANK3	−0.119	−2.770***										
M_RANK5			−0.089	−2.760***								
M_RANK10					−0.044	−0.950						
ETHCAL_DEP							0.038	0.560				
ETHCAL_COM									0.050	1.000		
ISO_CERT											−0.074	−1.400
SIZE	−0.025	−1.230	−0.023	−1.250	−0.023	−1.110	−0.022	−1.090	−0.023	−1.170	−0.019	−0.990
ROA	−0.414	−0.540	−0.586	−0.720	−0.374	−0.470	−0.308	−0.350	−0.248	−0.280	−0.185	−0.220
LEV	0.525	2.500**	0.449	2.220**	0.479	2.170**	0.465	2.160**	0.518	2.260**	0.514	2.360**
LOSS	−1.362	−13.470***	−1.383	−13.550***	−1.406	−12.310***	−1.396	−12.530***	−1.384	−12.130***	−1.388	−11.860***
EXPORT	0.011	0.490	0.011	0.480	0.004	0.140	0.013	0.530	0.014	0.590	0.015	0.630
BTM	−0.045	−2.050**	−0.045	−1.930	−0.049	−1.860*	−0.056	−2.300**	−0.056	−2.300**	−0.057	−2.370**
OCF	0.862	1.820*	0.831	1.780	0.608	1.290	0.481	1.040	0.458	1.030	0.569	1.380
RATIO_RD_SALE	−0.003	−2.140**	−0.002	−1.260	−0.003	−1.980*	−0.002	−1.870*	−0.002	−1.880*	−0.003	−2.090**
INV_TA	0.359	0.980	0.291	0.790	0.307	0.820	0.314	0.810	0.374	0.950	0.331	0.880
FA	−0.568	−3.320***	−0.497	−2.910***	−0.504	−2.570**	−0.607	−3.250***	−0.600	−3.160***	−0.589	−3.250***
PTR	0.080	0.220	0.150	0.380	0.166	0.420	0.169	0.400	0.163	0.390	0.019	0.050
BIG4	0.032	0.460	−0.006	−0.090	−0.022	−0.280	0.004	0.050	−0.009	−0.110	−0.009	−0.120
LAR	0.780	2.920***	0.747	3.050***	0.633	2.510**	0.569	2.670**	0.599	2.540**	0.657	2.810***
FOR	48.744	2.270**	46.591	2.240**	45.949	2.020**	40.225	2.000*	48.358	2.140**	50.267	2.300**
YEAR dummies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dustry dummies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No. of Obs.	88		88		88		88		88		88	
Ajusted R-Square	0.7208		0.7202		0.7072		0.7056		0.7068		0.7118	

Ⅴ. 결 론

본 연구는 ESG 프레임워크 내에서 기업의 부패가 지배구조(G)의 핵심 요소로서 측정가능한 동시에 사회(S)및 환경(E)에 영향을 미치며 청렴(Integrity)가 ESG 투자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상황에서 ESG 지배구조(G)상의 항목인 반부패 관점에서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지배구조(G)상의 부패 방지를 위한 반부패/윤리경영 활동을 대용치인 이중중대성 내 반부패/윤리경영 순위, ISO37001 인증여부, 반부패/윤리경영 조직 운영 여부를 통해 반부패/윤리경영 활동 수준과 비윤리적 조세회피와의 관계를 살펴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존 연구들은 ESG 전체 평가 등급과 조세회피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집중(심재우 2024 ; 홍희정과 박선영 2023 ; 박종일과 이윤정 2022 ; 심재우 2022 ; 오현주와 정재원 2022 ; 유현수 외 2017)한 반면 본 연구는 지배구조 상의 핵심 주제로 주목받고 있는 반부패/윤리경영 활동이 세무적 측면에서 비윤리적인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지배구조(G)상의 반부패 활동을 세무적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할 수 있겠다.

또한 기업의 ESG 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위험을 최소화하고, 부패방지 관련 교육, 법령 준수, 사후 관리를 통해 기업 내 윤리경영 문화 조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가진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율적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GRI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다.[22] 구체적으로 GRI200(경제관련표준), GRI205－1, 205－2, 205－3에 따라 부패방지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지배구조 관점에서 반부패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ESG 활동으로 환경과 사회적 활동에 비해 지배구조에 대한 대내외 평가는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일련의 임직원 배임・횡령 등의 사건은 ESG 워싱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지배구조 강화 차원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강조하고 있으나[23], 여전히 투명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사회의 책임 경영 활성화 방안과, 반부패 윤리경영 강화 확대 등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특히, 2030년 이후 국내 유가증권상장 기업은 의무적으로 ESG 공시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기준(CSRD, SFDR 등)이 반부패 영역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는 점은 기업지배구조 강화 차원에서 반부패・윤리경영 확대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 결과는 ESG 공시 투명성 등의 정책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공헌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기업 전사적 차원에서 내부통제 운영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제시할 수 있겠다.

---

22) 23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분석결과 및 모범사례 발표, 2023.12.28., 한국거래소 보도자료

23) "'B→C급 강등' KAI, 빛바랜 ESG 책임 경영", EBN 산업경제, 2023.07.17

참고문헌

고윤성. 이정화 2008. 산업별 조세회피요인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1권 제6호. 2823－2848.

고종권. 박희진. 윤성수. 2020.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소득이전과 조세회피, *회계학연구* 제45권 제3호. 137－171.

김경화. 권순창. 2014.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기업지배구조를 통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국제회계연구*. 제56권. 281－301.

김태중. 유용근. 이상혁. 2021.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재무제표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회계저널* 제30권 제6호. 141－167.

박종국. 홍영은. 조세회피와 외국인지분율. *세무학연구*. 제26권 제1호. 105－135.

박종일. 이윤정. 2022. 경영자 과신성향 및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 ESG 평가를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제39권 제1호. 9－59.

서정화. 이호영. 유현수. 모범납세자 선정 전・후의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 *회계저널*. 제26권 제4호. 77－112.

선정규. 2013. 조세회피행위가 자본구조에 미치는 영향, *국제회계연구*. 제51권. 47－74.

신상훈. 차승민. 2018. 내부감사품질과 조세회피－공기업 상임감사 직무수행 실적평가를 중심으로－. *세무와 회계연구* 제14호. 383－412.

신상훈. 차승민. 2019. 공기업의 청렴도와 조세회피.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제61권 제1호. 185－2085.

심재우. 2024. 경영자 특성과 ESG등급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상업교육연구*, 제37권 제 6호, 137－159.

심재우. 2022.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내부통제활동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경영학회지*. 제19권 제6호. 126－146.

오현주. 정재원. 2022. ESG경영이 이익조정 및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전산회계연구* 제20권 제2호. 125－153.

유현수. 최규담. 김새로나. 2017. 기업의 이익투명성이 조세회피 수준에 미치는 영향.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제59권 제3호. 165－212.

윤회. 김응길. 노희천. 2022.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 내부회계담당 인력의 역할. *세무와 회계저널* 제23권 제2호. 125－152.

이정희. 이유선. 전규안. 2023. 실제감사시간과 표준감사시간의 차이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48권 제1호. 69－109.

이준규. 김갑순. 2012. 기업의 *조세전략과 세무회계연구*. ㈜영화조세통람. 24－25.

이준일. 선우혜정. 최종학. 2016.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선행연구의 정리와 미래 연구방향의 제안. *회계학연구* 제41권 제5호. 201－268.

정현아. 유순미. 2021. ESG 경영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영교육학회* 제36권 제6호. 119－

144.

최현정. 2022.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회계 정보의 질에 미치는 영향. *산업경제연구* 35(4). 843－863.

홍옥화. 고종권. 박희진. 2018. 내부정보환경이 조세회피 및 세무위험에 미치는 영향. *회계저널*. 제27권 제2호. 79－112.

홍희정. 박선영. 2023. 경영자의 과신성향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회계저널*. 제32권 제3호. 1－36.

Gupta. S., and K. Newberry. 1997. Determinants of the variability in corporate effective tax rates : Evidence from longitudinal data.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pp.1－34.

Jones, S., Baker, M. and Lay, B.F. 2017. The relationship between CSR and tax avoidance :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Aust. *Tax Forum* 32 : 95－128

Lopez－Gonzalez, E., Martínez－Ferrero, J. and García－Meca, E. 2019. Doe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ffect tax avoidance : Evidence from family firm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26(4) : 819－831.

Stickney, C. P. and V. E. McGee, 1982. Effective corporate tax rates the effect of size, capital intensity, leverage, and other factors.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1(2) : 125－152.

조세피난처 직접투자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

왕 람 · 박 희 우
(Zhejiang Industry Polytechnic College) (가톨릭대학교)

조세피난처 직접투자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

왕람* · 박희우**

〈요 약〉

본 연구는 조세피난처 직접투자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 A주 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조세피난처 직접투자와 CSR활동 간에는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조세피난처 직접투자를 하는 기업이 CSR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한다는 의미로, 위험관리이론을 지지한다. 내생성 문제를 통제하기 위하여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기법을 이용하여 주요 분석을 재수행한 결과에서도 관심변수인 조세피난처 직접투자(haven)의 계수값은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여 결과가 질적으로 일치함을 보여주었다. 추가적으로 국유기업과 비국유기업 간의 이러한 관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국유기업 표본에서는 조세피난처 직접투자와 CSR활동 사이에 유의한 관계가 없는 반면, 비국유기업 표본에서는 조세피난처 직접투자와 CSR활동 사이에 유의한 양 (+)의 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선행 연구와 일치하여 국유기업은 CSR 활동의 도구 동기가 약한 반면, 비국유기업은 CSR 활동의 도구 동기가 더 강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이러한 자발적인 조세회피에 주목하면 기업이 주관적인 조세회피인지 객관적으로 조세우대를 누리는지 구분할 수 있으며, 선행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는 조세회피 측정치인 ETR과 BTD에서 기업이 객관적으로 얻은 세제혜택을 배제할 수 없다는 단점을 극복했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

〈주제어〉 조세피난처, 조세회피, CSR 활동, 국유기업

* 조교수 Zhejiang Industry Polytechnic College, Shaoxing China
** 가톨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Ⅰ. 서 론

본 논문에서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 A주 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조세피난처에 대한 직접투자와 CSR 활동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는 매우 공격적인 조세회피 행위이지만, 이러한 행동은 다국적 기업에서 매우 흔하다. 예를 들어, 애플(Apple)은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아일랜드의 조세피난처를 활용하여 10년 이상 법정 법인세율보다 훨씬 낮은 세금을 납부하였다(Barrera and Bustamante 2018). 또한, 스타벅스(Starbucks)는 영국에서 15년간 운영하면서 단 한 번만 영국에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합법적인 조세회피 방법을 통해 스타벅스 영국 회사는 매출액 조정, 라이센스료, 이자지출 등을 활용하여 과세수입을 다른 스타벅스 자회사로 이전시켜 더 낮은 세율로 과세되었다(Campbell and Helleloid 2016).

한편 중국의 국제화가 발전함에 따라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0년 중국 대외직접투자 통계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의 대외직접투자 흐름은 1537억 달러로 세계 1위, 재고 규모도 세계 3위(2. 58조 달러)이다. 그러나, 중국의 연간 해외직접투자의 약 70%는 조세피난처 지역으로 흘러갔다(Wei and Chen 2019). 조세피난처에 대한 투자는 주로 생산 및 운영보다는 조세회피를 위한 목적이다(Chen et al. 2022 ; Liu et al. 2019). 조세피난처에 직접 투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이전가격(고진저출)[1]과 독점우위수수료(무형자산수수료 지급)[2]의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조세피난처에서의 이익잉여금 비율을 높이고 다른 고세율 지역의 이익 점유율을 최소화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Ouyang et al. 2022). 이러한 조세회피 방법을 의도적으로 채택하여 세금을 줄이는 반면에 기업 정보의 투명성을 낮추고 대리 비용을 증가시킨다(Lewellen 2023). 또한 많은 다국적 기업들처럼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고 언론으로부터 부정적인 보도를 받아 세무조사까지 받았다(Col and Patel 2019). 그러나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에 대한 책임을 선언한다(Preuss 2010 ; 2012). 일례로 스타벅스(Starbucks)는 사회적 책임을 지고, 지역사회에서 좋은 시민이 되고, 개발도상국 직원들에게 공정한 임금을 지불하고, 커피 재배자들에게 공정한 가격을 지불할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해 왔다(Campbell and Helleloid 2016). 세법 내에서 가능한 세금을 줄이는 것은 악의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공격적인 조세회피는 많은 기업 행동규범 및 사회적 책임 옹호자의 성명에서 제기된 도덕적 주장과 큰 차이가 있다.

---

1) 모회사와 자회사, 자회사와 자회사 간의 상품 내부 거래를 위해 고세권에서는 '고진저출' 저세권에서는 '저진고출'의 이전가격을 채택하여 고세권에서는 장부이익을 낮추고 저세권에서는 이익을 남긴다.

2) 고세권 모회사에 특허기술, 컨설팅 서비스 등 무형자산을 고가에 판매하여 저세권 자회사에 이익을 이전한다.

본 연구에서 조세피난처 직접투자를 기업의 자발적인 조세회피 측정치로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ETR이나 BTD와 같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조세회피 측정치(신영효 등 2017)에는 세제혜택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기업이 세제혜택을 받았는지 자발적인 조세회피를 했는지 구분할 수 없으며, 중국 상장기업의 조세피난처 직접투자의 주요 목적은 조세회피(Liu et al. 2019)라고 주장되어지고 있다. 둘째, 중국 상장기업의 해외직접투자(OFDI)가 증가하면서 조세피난처 직접투자를 이용한 조세회피가 보편화되고 있지만 이러한 조세회피, 특히 조세피난처 직접투자와 CSR 활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본 연구의 주요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조세피난처 직접투자와 CSR활동 간에는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조세피난처 직접투자를 하는 기업이 CSR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한다는 의미로, 위험관리이론을 지지한다. 주요 결과들에 대한 내생성(endogeneity)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기업고정효과모형(firm fixed effects model) 분석,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분석, 독립변수 기간을 t−1년과 t−2년으로 확장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와 주요 결과 모두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추가적으로 국유기업과 비국유기업의 이러한 관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국유기업 표본에서는 조세피난처 직접투자와 CSR 사이에 유의한 관계가 없는 반면, 비국유기업 표본에서는 조세피난처 직접투자와 CSR 사이에 유의한 양(+)의 관계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며 국영기업은 CSR 활동의 도구동기가 약한 반면, 비국유기업은 CSR 활동의 도구동기가 더 강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주요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피난처 직접투자를 조세피난처 측정치로 활용하여 조세회피와 CSR활동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광범위한 선행 연구는 대부분 BTD 또는 ETR과 같은 조세회피 측정값을 사용하고 조세피난처에 대한 직접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조세회피 방법을 관찰할 필요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자발적인 조세회피에 주목하면 기업이 주관적인 조세회피인지 객관적으로 조세우대를 누리는지 구분할 수 있으며, 선행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는 조세회피 측정치인 ETR과 BTD에서 기업이 객관적으로 얻은 세제혜택을 배제할 수 없다는 단점을 극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둘째, 본 논문은 중국 상장기업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조세피난처 직접투자와 CSR활동 간의 관계를 연구하여 조세와 CSR 간의 중국 기업의 행동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조세와 CSR에 대한 연구를 위한 중국의 증거를 제공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선행연구와 가설에 대해 기술하고, 제Ⅲ장에서는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표본 구성을 설명한다. 제Ⅳ장에서는 실증분석결과 및 추가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제Ⅴ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본 논문을 결론 짓는다.

Ⅱ. 선행연구 검토 및 가설 설정

2.1 조세피난처 직접투자와 조세회피에 대한 선행연구

조세피난처의 주요 특징은 낮은 세율로, 회사는 이전가격 및 독점우위 수수료를 통해 이익을 조세피난처로 이전하고 국제 조세회피를 실현할 수 있다(Ouyang et al. 2022). 고종권 등(2020)은 한국 기업을 연구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조세피난처 특수관계자와의 매출·수익 거래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면 조세회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Liu et al. (2019)의 연구에 따르면 조세피난처에 투자한 중국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의 총이익은 조세피난처에 투자한 후 평균 12%에서 14%로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많은 선행 연구에서 조세회피가 기업이 조세피난처 직접투자를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임을 보여주었다(Hines Jr and Rice 1994 ; 안숙찬 2012 ; Chari and Acikgoz 2016 ; 고종권과 박희진 2017 ; Liu et al. 2019 등). 이러한 급진적인 조세회피는 다국적 기업의 막대한 세금지출을 감소시키는데, 예를 들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애플은 유명한 '아일랜드 네덜란드 샌드위치'라는 국제 조세회피 전략을 설계하여 전 세계 판매 수입을 조세피난처로 전환하고 440억 달러의 해외 수입에 대한 조세지출을 회피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세회피 행위는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선, 조세회피를 위해 외국 계열사와 외국인 투자지역의 세율인하를 사용하는 기업은 조세기반 침식 및 이익 이전문제(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가 많은 국가의 주요 감독 대상이기 때문에 조세회피 기업은 모국 또는 주최국(지역) 규제기관의 처벌을 받기 쉽고 기업 이미지에 영향을 미친다(고종권 등 2020). 한편,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는 조세회피는 복잡한 조직구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회사의 정보공개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고 대리문제를 증가시켜 기업가치를 더욱 떨어뜨리고(Kim et al. 2019) 자금조달 비용을 증가(Lewellen et al. 2021 ; Richardson et al. 2020)시키며 회사의 주가 폭락 위험을 증가시킨다(Choy et al. 2017).

2.2 CSR 활동과 조세회피에 관한 선행연구

CSR 활동과 조세회피라는 두 가지 독립적인 분야에 대한 연구가 점점 심화되면서 학계는 CSR 활동과 조세회피 간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CSR 활동과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는 대리이론(주주이익 극대화)에서 이해관계자 이론으로 시작되었다. 전통적인 대리이론은 회사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경영자와 주주 사이의 관계이며 CSR은 회사경영과 거의 관련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기업은 이익을 극대화할 때만 CSR 활동에 참여해야 하며, 이러한 활동의 비용은 일반적으로 대리이론에서 명성비용 또는 정치적 비용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해관계자의 관점에서 회사는 치열한 경쟁환경에서 생존해야 하는 '현실적' 실체이며, 정책, 전략 및 운영을 수립할 때 주주 중심적이지 않고 다른 이해관계자(예 : 정부기관, 정치단체, 노동조합, 커뮤니티, 직원, 공급업체 및 고객)와 전체 사회 구성원을 고려한다. CSR은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드는 비용뿐 아니라 합법적인 경영활동으로 간주 될 수 있다. 또한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부담하는 법인실체로서, 세금납부는 교육, 국방, 공중보건서비스, 대중교통 및 법 집행 등의 공공재(public goods)에 자금을 지원하는 중요한 기능을 구성하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CSR은 국가가 합법적으로 부과한 세금의 공정한 몫을 지불해야 하는 일종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업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금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으나, 기업이 단순히 조세비용만을 최소화하는 전략적 조세행위를 하는 것은 사회에 대한 무책임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Avi－Yonah, 2008). 따라서 회사가 CSR 활동을 선택한다면 적극적으로 세금을 회피할 가능성이 낮다. 왜냐하면 CSR 활동이 높은 기업의 경우 이해관계자 관점과 일관되지 않으며, CSR 활동으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Lanis and Richardson 2012, 2015 ; 기은선 2012 ; 이해성과 김갑순 2015). 따라서 조세를 사회적 책임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CSR 활동은 "올바른" 행동원칙에 대한 신념으로, 기업의 행동은 경제적 영향 이외에 사회적 영향, 환경영향 및 기타 외부 영향까지 고려하게 된다. 그런데도 사회적 책임을 지나치게 소홀히 하는 기업은 조세회피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Hoi et al. 2013). 그러나 조세는 복잡[3]하며, 기업은 반드시 사회적 책임의 시각에서 조세를 간주하지 않아도 된다. 기업의 이해관계자 중 일부가 세금을 중요한 사회적 책임활동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면, CSR 활동과 세금지출은 서로 대체될 수 있으며 기업은 세금납부와 사회복지를 촉진하는 다른 경제활동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것이다(Davis et al. 2016). 조세회피가 사회적 책임을 지지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논쟁 중인 문제이다(Dowling 2014). 그러나 보편적인 조세회피는 많은 기업행동 규범 및 사회적 책임 옹호자의 성명에서 제기된 도덕적 주장과 큰 차이가 있으며, 기업이 CSR 활동을 수행하거나 CSR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은 조세회피로 인한 정당성[4]상실을

3) 조세회피는 법적 관행이기 때문에 기업이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단순한 문장의 모호성을 드러내지만, 재무보고 및 세법의 복잡성으로 인해 광범위한 조세계획을 세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4) 법인세 공격성(기업의 공격적인 조세회피 행위)은 일반적인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정책으로, 대중에게는 사회적으로 무책임하고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되어 궁극적으로 기업의 정당성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정당성 이론(legitimacy theory)에 따르면 기업은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해 더 많은 CSR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Lanis and Richardson, 2013).

만회(Lanis and Richardson 2013)하고 조세회피로 인한 위험[5]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일 수 있다(Hoi et al. 2013 ; Lv et al. 2015 ; 정현아와 유순미 2021 등).

CSR 활동과 조세회피에 대한 논의가 심화함에 따라 기초적인 문제에 대한 논쟁이 노출되었다. 세금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가? 아니면 재무적 책임인가? 사회적 책임이면 기업은 법 규정을 넘어 공정하게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재무적 책임이면 기업은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법적 전략을 취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조세와 CSR 활동의 복잡성으로 인해 현재까지 일관된 결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실증 연구에서도 조세회피와 CSR 활동 간의 관계에 대한 상반된 증거가 있다(Whait et al. 2018 ; 한종수 등 2021).

2.3 가설 설정

위의 논의에서 조세회피와 CSR 활동의 관계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일 수 있어서 모호하다.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조세회피를 측정하는 선행 연구는 많지 않지만 이처럼 상반된 결론도 나오고 있다. Col and Patel (2019)은 미국기업 표본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기업의 CSR 등급이 조세피난처 지점을 처음으로 개설한 후 2년 동안 급격하게 상승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위험관리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공격적인 조세회피 행위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적극적인 CSR 활동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Lee(2020)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조세피난처에 본사를 둔 46개 미국 상장기업의 138개 기업－연도를 분석한 결과 조세피난처 본사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참여수준이 미국 본사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발견하였으며 이는 기업문화이론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기업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적극적인 조세회피와 CSR 간의 관련성을 확인했지만 연구 결과는 일관되지 않으며 위험관리이론과 기업문화이론이라는 두 가지 경쟁 이론을 지지한다. 위험관리이론에 따르면 조세피난처에 직접 투자하는 기업은 CSR 활동을 사용하여 자신의 명성을 보호하거나 규제기관 및 기타 이해관계자로부터 유리한 응답을 얻을 수 있다. 즉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조세회피를 하는 회사들은 CSR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이다. 기업문화이론에 따르면 기업의 '올바른' 행동방침으로서 기업문화의 공통된 신념과 가치관은 기업의 조세와 사회적 책임에 일관된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는 경우 CSR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

---

5) 공격적인 조세회피는 회사/임원의 평판 손상, 정치적/언론의 압력 증가, 잠재적 IRS 벌금 및 처벌, 심지어 소비자 불매운동과 같은 심각한 부정적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무책임한(책임 있는) CSR 활동을 감소(증가)시킴으로써 CSR 평판을 관리할 수 있으며, 공격적인 조세회피 행위와 관련된 예상 비용을 줄이고 CSR 활동을 활용하여 위험 관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Hoi et al. 2013).

중국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는 조세피난처를 통한 조세회피와 CSR 활동의 관계에 직접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Ge et al.(2023)이 해외직접투자(OFDI)가 있는 중국 상장기업을 표본으로 한 연구가 있다. 이에 따르면 조세피난처에서 직접투자를 하는 기업은 자선기부를 할 가능성이 더 높고 자선기부를 통해 조세피난처의 잠재적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결론으로 이는 위험관리이론을 지지하며, 다양한 조세회피 측정값(예 : ETR, BTD 등)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중국 기업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연구 결론과 일치한다(Lv et al. 2015 ; Yang et al. 2020 ; Wang et al. 2022). 또한 조세회피와 CSR 활동의 긍정적인 관계를 실증한 연구는 대다수 기업이 CSR 활동을 하는 목적이 정부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정치적 자원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중국을 배경으로 할 경우 조세회피와 CSR 활동은 도덕적 일관성이 없을 수 있지만 오히려 CSR 활동의 기회주의 또는 위험관리기능이 지배적이다. 위의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 조세피난처에 직접 투자하는 회사들은 CSR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Ⅲ. 연구방법론

3.1 연구모형의 설정

조세피난처 직접투자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의 관련성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모형은 다음과 같다.

$$CSR_{Ad_{i,t}} = \propto_0 + \propto_1 haven_{i,t} + \propto_k Controls_{i,t} + Year\&Firm\ \ Effects + \varepsilon_{i,t} \quad (1)$$

종속변수 : CSR_Ad=CSR 총점－이익점수－지불능력점수－법인세 점수
관심변수 : haven=기업이 조세피난처에 직접 투자이면1, 아니면0
통제변수 :
Size =ln(기말총자산)
LEV =기말총부채/기말총자산
Growth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전기매출액
ROA =당기순이익/기초기말평균총자산
PPE =고정자산/기말총자산
Board =이사회규모
IDR =사외이사비율

Big4 =감사법인이 Big 4 회계법인이면 1, 아니면 0
Year&Firm Effects=연도고정효과와 기업고정효과

Lu and Zhu(2021), Tang and Wang(2022)과 Wang et al.(2023)의 연구를 참고하여, 본 논문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을 측정하기 위해 hexun.com의 CSR 지수[6]를 사용하였다. hexun.com의 CSR 지수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hexun.com은 매년 모든 상장기업을 평가하고 CSR 지수를 계산할 때 상장기업의 공개 및 미공개 정보를 모두 고려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표본선택 오류의 영향을 덜 받을 것이다. 둘째, hexun.com의 CSR 지수는 가중합산방법을 사용하여 CSR 각 수준의 하위지표를 계산한다. 구체적인 하위지표에는 주주권익 책임(30%), 직원책임(10%－15%), 공급자, 고객 및 소비자 책임(15%－20%), 환경 책임(10%－30%), 사회적 책임(사회공헌가치, 10%－30%)이 포함[7]된다. 이러한 지표에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CSR 수행의 거의 모든 측면이 포함된다. 주주책임 중 일부(이익점수, 지불능력점수)와 재무지표, 사회적 책임 중 총이익 대비 법인세비율 점수는 세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지표를 제외하고 조정된 CSR 지수를 얻었으며 Watson(2015)의 연구를 참고하여 재무지표(이익, 지불능력)의 요인을 통제변수로 사용한다.

관심변수인 haven은 더미변수이며, 회사에 조세피난처[8]직접투자가 있는 경우 1, 아니면 0의 값을 갖는다. 선행 연구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영향을 미치는 회사규모(Size), 부채비율(LEV), 성장성(Growth), 수익성(ROA), 고정자산 비율(PPE) 등 기업의 기본적인 특징들을 통제변수로 추가하였으며, 이사회 규모(Board), 사외이사비율(IDR), 회계법인(Big4)과 같은 기업 지배구조 변수들을 포함하였다. 또한 연도별 고정효과 및 기업별 고정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연도별 더미변수(year fixed effects)와 기업별 더미변수(firm fixed effects)를 포함시켰다. 식(1)에

6) 1996년에 설립된 Hexun.com은 중국에서 금융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대 플랫폼 중 하나이다. Hexun.com은 2010년부터 중국 상장기업의 사회적 책임 점수와 평가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지표는 상하이 증권거래소와 선전 증권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연간 기업의 사회적 책임보고서와 상장기업의 연간보고서를 기반으로 Hexun.com에서 평가한다. 사회적 책임 점수에는 기업의 전반적인 사회적 책임 점수와 관련 5개 하위 항목, (1) 주주, (2) 직원, (3) 공급업체, 고객 및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 (4) 환경, (5) 지역사회가 포함된다. Hexun.com은 13개의 2차 수준 지표와 37개의 3차 수준 지표를 사용하고 가중치를 부여하고 집계하여 회사의 포괄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점수를 구한다. 그런 다음 업계 특성을 고려하여 점수를 완전히 조정한다. 기본적으로 가중치 외에 제조 및 소비재 산업에 약간의 가중치가 부여되며. CSR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CSR 참여도가 높아진다.

7) <appendix 1>은 hexun.com CSR 지수 지표를 자세히 설명한다.

8) 본 연구의 조세피난처 데이터는 CSMAR 데이터베이스에서 직접 가져온 것이다. 구체적인 조세피난처 목록은 주로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정한 조세피난처 목록, 2) '조세피난처 남용 중단 법안'이 정한 조세피난처 목록, 3) Hines and Rice(1994)에서 나온다.

서는 조세피난처 직접투자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따라서 관심변수인 haven의 회귀계수가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면 가설을 지지하게 된다.

3.2 표본의 선정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 A주 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연구대상으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표본을 선정하였다.

(1) 금융업이 아닌 기업
(2) ST와 ST*기업 제외
(3) 해외직접투자(OFDI) 가 있는 기업
(4) Hexun.com에서 CSR지수 입수가 가능한 기업
(5) CSMAR에서 재무자료 입수가 가능한 기업

조세피난처 직접투자와 재무자료는 CSMAR에서 산출하였으며, CSR은 Hexun.com CSR지수를 이용하였다.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최종 표본 12,576개 기업－연도가 본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변수 중 더미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상하 1% 수준으로 조정(winsorization)한 후 분석하였다.

<표 1>은 최종 표본의 연도별, 산업별 분포이다. Panel A : 연도별 표본의 분포를 보면 2010년에는 기업수가 315개이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1,879개의 기업이 표본에 포함되었다. 이 중 조세피난처에 투자하는 기업(haven)도 2010년 73개에서 2020년 658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Panel B : 산업별 표본의 분포를 보면 제조업의 비중이 69.3%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산업, 연도별 표본 분포

Panel A : 연도별 표본 분포

year	no haven	haven	기업수(개)	비중(%)
2010	242	73	315	2.5
2011	414	124	538	4.28
2012	538	166	704	5.6
2013	635	199	834	6.63

〈표 1〉 산업, 연도별 표본 분포 (계속)

year	no haven	haven	기업수(개)	비중(%)
2014	671	239	910	7.24
2015	788	304	1,092	8.68
2016	895	397	1,292	10.27
2017	1,046	461	1,507	11.98
2018	1,173	544	1,717	13.65
2019	1,199	589	1,788	14.22
2020	1,221	658	1,879	14.94
총계	8,822	3,754	12,576	100

Panel B : 산업별 표본 분포

Ind. code	산업 분류	기업－연도	비중(%)
A	Agriculture, forestry, animal husbandry and fishery	89	0.71
B	Mining	284	2.26
C	Manufacturing	8716	69.3
D	Electricity, heat, gas and water production and supply	199	1.58
E	Construction	331	2.63
F	Wholesale trade, Retail trade	533	4.24
G	Transportation,	355	2.82
H	Accommodation and catering	25	0.20
I	communications, and utilities	924	7.35
K	real estate	414	3.29
L	Leasing and business services	181	1.44
M	Scientific research and technology services	112	0.89
N	Water conservancy, environment and public facilities management	99	0.79
O	Service	8	0.06
P	Education	7	0.06
Q	Health and social work	41	0.33
R	Culture, sports and entertainment	157	1.25
S	comprehensive	101	0.80
총계		12,576	100

Ⅳ. 실증분석 결과

4.1 기술통계량 상관관계 분석

4.1.1 기술통계량

<표 2>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을 나타낸다. 종속변수인 조정 CSR지수(CSR_Ad)의 평균은 14.124이며, 분산은 12.959이다. 최솟값은 3.330, 25분위는 7.780, 50분위는 10.230, 75분위는 13.230이며, 최댓값은 61.650이다. 기업 대부분은 조정 CSR지수(CSR_Ad)의 점수가 낮지만, 기업간의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관심변수인 조세피난처 직접투자 더미변수(haven)의 평균값은 0.299로 약 30%의 연구표본이 조세피난처에 투자함을 알 수 있다.

〈표 2〉 기술통계량

Variables	Obs.	mean	min	p25	p50	p75	max	Std.
CSR_Ad	12576	14.124	3.330	7.780	10.230	13.230	61.650	12.959
haven	12576	0.299	0	0	0	1	1	0.458
Size	12576	22.497	20.082	21.556	22.297	23.240	26.530	1.338
LEV	12576	0.440	0.053	0.287	0.437	0.587	0.998	0.197
Growth	12576	0.178	−0.506	−0.008	0.118	0.279	2.255	0.373
ROA	12576	0.046	−0.276	0.019	0.045	0.079	0.236	0.069
PPE	12576	0.915	0.541	0.898	0.950	0.974	1.000	0.097
Board	12576	8.526	5	7	9	9	14	1.657
IDR	12576	37.774	33.330	33.330	36.360	42.860	57.140	5.509
Big4	12576	0.079	0	0	0	0	1	0.270

1) CSR_Ad＝CSR 총점－이익점수－지불능력점수－법인세 점수
2) haven ＝기업이 조세피난처에 직접 투자이면 1, 아니면 0
3) Size ＝ln(기말총자산)
4) LEV ＝기말총부채/기말총자산
5) Growth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전기매출액
6) ROA ＝당기순이익/기초기말평균총자산
7) PPE ＝고정자산/기말총자산
8) Board ＝이사회규모
9) IDR ＝사외이사비율
10) Big4 ＝감사법인이 Big 4 회계법인이면 1, 아니면 0

기업특성변수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기업규모(Size)는 22.497, 부채비율(LEV)은 0.440, 매출성장률(Growth)은 0.185, 이익률(ROA)은 0.046, 시장−장부가 비율(MB)은 0.626, 유형자산비율(PPE)은 0.915의 평균값을 보였다. 기업지배구조 변수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독립이사비율(IDR) 평균은 37.774다. 이는 표본에서 독립이사의 비율이 평균적으로 37.774%임을 나타내며, 중국 증권감독위원회의 상장기업에 대한 독립이사 임용비율 요구수준인 30%를 상회한다. 이사회 규모 (Board)의 평균은 8.526으로 상장기업의 이사회 규모는 대략 8~9명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대형회계법인(Big4)의 평균은 0.079로 약 8%만이 Big4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고 있다.

4.1.2 상관관계 분석

<표 3>은 pearson 상관계수를 보여준다. 종속변수인 CSR_Ad는 관심변수인 haven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통제변수는 독립이사비율 (IDR) 을 제외하고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설명변수 사이의 상관계수는 0.7 이하이며, 회귀분석시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 3〉 상관관계 분석

	(1) CSR_Ad	(2) haven	(3) Size	(4) LEV	(5) Growth	(6) ROA	(7) PPE	(8) Board	(9) IDR	(10) Big4
CSR_Ad	1									
haven	0.064***	1								
Size	0.262***	0.279***	1							
LEV	0.097***	0.154***	0.542***	1						
Growth	0.029**	0.016	0.016	0.013	1					
ROA	0.162***	−0.019*	0.009	−0.338***	0.233***	1				
PPE	0.081***	−0.056***	0.046***	0.132***	−0.174***	0.050***	1			
Board	0.156***	0.0555***	0.289***	0.159***	−0.034***	0.016	0.045***	1		
IDR	−0.004	0.034***	0.007	−0.015	0.004	−0.011	−0.013	−0.499***	1	
Big4	0.203***	0.136***	0.397***	0.130***	−0.015	0.052***	−0.005	0.115***	0.064***	1

1) 변수의 정의는 <표 2>에 제시된 것과 동일하다.
2) 괄호 안의 숫자는 t−값(t−statistics)을,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낸다.

4.2 회귀분석 결과

<표 4>는 독립변수로 조세피난처 직접투자(haven)를 사용하여 식(1)의 모형을 분석한 결과이다. (1)열부터 (3)열은 연도고정효과와 기업고정효과를, (4)열부터 (6)열은 연도고정효과와 산업고정효과를 포함하는 회귀분석의 결과이다. (1)열은 통제변수가 없고 (2)열은 회사특징 통제변수, (3)열은 회사특징과 회사지배구조 통제변수를 포함하였다. 관심변수인 조세피난처 직접투자(haven)의 계수값은 (1)열부터 (3)열까지 각각 1%, 5%, 5%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으며, (4)열부터 (6)열의 경우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이는 조세피난처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CSR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가설을 지지한다.

〈표 4〉 조세피난처 직접투자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관련성

	(1) CSR_Ad	(2) CSR_Ad	(3) CSR_Ad	(4) CSR_Ad	(5) CSR_Ad	(6) CSR_Ad
Haven	1.898***	0.914**	0.922**	2.335***	0.476**	0.427*
	(4.78)	(2.28)	(2.30)	(5.75)	(2.10)	(1.89)
Size		3.415***	3.409***		2.964***	2.585***
		(10.65)	(10.54)		(29.75)	(23.61)
LEV		2.524**	2.523**		−1.424**	−0.968
		(2.06)	(2.06)		(−2.03)	(−1.38)
Growth		−0.397	−0.383		−0.867***	−0.765***
		(−1.38)	(−1.33)		(−3.06)	(−2.71)
ROA		7.426***	7.421***		23.449***	23.333***
		(3.68)	(3.67)		(14.12)	(14.09)
PPE		−4.018**	−4.061**		3.087***	3.176***
		(−2.14)	(−2.16)		(2.80)	(2.89)
Board			−0.116			0.203***
			(−0.82)			(2.72)
IDR			0.036			0.023
			(1.06)			(1.07)
Big4			1.130			3.296***
			(1.21)			(8.13)
Constant	13.610***	−60.654***	−60.946***	21.873***	−46.483***	−41.416***
	(92.41)	(−7.88)	(−7.69)	(10.17)	(−17.35)	(−14.31)

〈표 4〉 조세피난처 직접투자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관련성 (계속)

	(1) CSR_Ad	(2) CSR_Ad	(3) CSR_Ad	(4) CSR_Ad	(5) CSR_Ad	(6) CSR_Ad
Observations	12,379[9)]	12,379	12,379	12,576	12,576	12,576
R-squared	0.537	0.546	0.546	0.212	0.294	0.298
Year FE	YES	YES	YES	YES	YES	YES
Industry FE	NO	NO	NO	YES	YES	YES
Firm FE	YES	YES	YES	NO	NO	NO

1) <표 4>는 조세피난처 직접투자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가설의 연구모형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CSR_{Ad_{i,t}} = \propto_0 + \propto_1 haven_{i,t} + \propto_k Controls_{i,t} + Year\&Firm\ Effects + \varepsilon_{i,t}$$

$$CSR_{Ad_{i,t}} = \propto_0 + \propto_1 haven_{i,t} + \propto_k Controls_{i,t} + Year\&Industry\ Effects + \varepsilon_{i,t}$$

2) 변수의 정의는 <표 2>에 제시된 것과 동일하다.

3) 괄호 안의 숫자는 t-값(t-statistics)을,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낸다.

4.3 내생성 검정

4.3.1 성향점수매칭 기법을 이용한 분석

본 연구의 주요 분석에서 조세피난처에 직접투자하는 기업들이 CSR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조세피난처 직접투자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의 특성이 조세피난처에 직접투자가 없는 기업과 달라 CSR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된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내생성 문제를 통제하기 위하여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기법을 이용하여 주요 분석을 재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조세피난처에 직접 투자하는 기업 표본(treatment sample)과 그렇지 않은 기업 표본(control sample)이 유사한 기업특성을 갖도록 매칭한다. 매칭표본에서도 조세피난처에 직접 투자하는 기업에서 CSR 지수가 높다면, 이러한 결과는 해당 기업의 고유 특성이 아닌 조세피난처 직접투자에 기인했음이 더욱 강력히 지지될 것이다.

먼저 기업이 조세피난처에 직접 투자했을 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 이 식(1) 모형에서 사용된 기업특성 요인 변수를 이용한 logit 모형을 바탕으로 조세피난처에 직접 투자했을 가능성에 대한 성향점수를 생성하였다.

9) dropped 197 singleton observations

$$haven_{i,t} = \propto_0 + \propto_1 Size_{i,t} + \propto_2 LEV_{i,t} + \propto_3 Growth_{i,t} + \propto_4 ROA_{i,t} + \propto_5 PPE_{i,t} + Year\&Industry\ \ Effects + \varepsilon_{i,t} \quad (2)$$

이후 조세피난처에 직접 투자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이러한 성향점수가 가장 비슷하도록 1 : 1로 (반경 0.05, Without Replacement) 매칭 하였다.[10] 그 결과 3,754개의 조세피난처에 직접 투자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과 매칭되어 총 6,820개의 표본[11]이 생성되었다.

<표 5>의 Panel A는 매칭 전, 후의 조세피난처에 직접 투자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의 특성을 비교하여 보여준다. 열(1)과 (2)는 매칭 전 조세피난처에 직접 투자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비교하였다. 열(3)은 이러한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t−statistics를 보고하고 있는데 특성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식 (2)를 바탕으로 조세피난처에 직접투자 성향점수에 따라 매칭한 표본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사라지는 것을 열(4)−(6)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조세피난처 직접투자가 있는 기업의 CSR 활동(CSR_Ad)이 그렇지 않은 기업의 CSR 활동(CSR_Ad)보다 매칭 전, 후 표본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세피난처 직접투자가 CSR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Panel B는 이처럼 비슷한 특성을 가진 기업끼리 결합한 표본을 바탕으로 조세피난처에 직접투자가 CSR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표 4>처럼, (1)열부터 (3)열은 연도고정효과와 기업고정효과를, (4)열부터 (6)열은 연도고정효과와 산업고정효과를 포함하는 회귀분석의 결과이다. (1)열은 통제변수가 없고 (2)열은 회사특징 통제변수, (3)열은 회사특징과 회사지배구조 통제변수를 포함하였다. 관심변수인 조세피난처 직접투자(haven)의 계수값은 (1)열부터 (3)열까지 각각 1%, 5%, 5%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으며, (4)열부터 (6)열의 경우 각각 10%, 5% 10%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이는 조세피난처에 직접투자가 있는 경우 CSR_Ad가 증가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표 4>의 결과와 질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12]

---

10) 본 논문의 구체적인 매칭방법을 보면 식 (2)를 이용하여 조세피난처에 직접 투자한 기업과 그렇지 않는 기업간 성향점수의 최대 차이가 0.05 이하가 되도록 중복 없이 일대일 매칭을 수행하였다. 식 (1)에 포함된 기업특성 통제변수를 식(2)에 모두 포함하며 <표 5>의 Panel A에 매칭 전후 표본의 특성을 비교하여 제시함으로써, 매칭으로 인해 두 집단 간 특성차이가 효과적으로 통제되었음을 보고하였다.

11) 전체 표본 중 344개의 조세피난처 직접투자 기업이 매칭되지 않아 3,410개의 조세피난처 직접투자 기업만이 매칭되었다.

12) 본 논문에서 매칭표본을 이용한 분석 <표 5>의 adjusted R^2값을 보면 <표 4>의 값보다 약간 높아, 전반적인 설명력은 확인할 수 있다.

〈표 5〉 성향점수매칭(PSM)분석

Panel A. Comparison of firm characteristics

	Unmatched			Matched		
	Haven=0 (8822) (1)	Haven=1 (3754) (2)	Mean Difference (3)	Haven=0 (3410) (4)	Haven=1 (3410) (5)	Mean Difference (6)
CSR_Ad	13.586	15.388	−7.152***	14.563	15.177	−1.854*
Size	22.253	23.069	−32.602***	22.858	22.852	0.193
LEV	0.42	0.485	−17.454***	0.473	0.472	0.249
Growth	0.174	0.187	−1.849*	0.2	0.193	0.694
ROA	0.047	0.044	2.134**	0.043	0.045	−0.716
PPE	0.918	0.906	6.334***	0.906	0.907	−0.35

Panel B. Results with matched sample

VARIABLES	(1) CSR_Ad	(2) CSR_Ad	(3) CSR_Ad	(4) CSR_Ad	(5) CSR_Ad	(6) CSR_Ad
haven	2.340***	1.720**	1.721**	0.552*	0.540**	0.509*
	(3.01)	(2.21)	(2.23)	(1.96)	(2.03)	(1.91)
Size		3.918***	3.846***		3.062***	2.764***
		(5.12)	(4.99)		(21.06)	(18.27)
LEV		5.694**	5.776**		−1.743*	−1.347
		(2.34)	(2.37)		(−1.77)	(−1.37)
Growth		−0.707**	−0.682**		−0.981***	−0.930***
		(−2.26)	(−2.18)		(−3.58)	(−3.44)
ROA		9.522***	9.514***		20.733***	20.625***
		(2.92)	(2.92)		(10.39)	(10.36)
PPE		−1.276	−1.322		2.295*	2.595**
		(−0.37)	(−0.38)		(1.89)	(2.14)
Board			0.454			0.577
			(0.17)			(0.64)
IDR			0.044			−0.017
			(0.50)			(−0.54)
Big4			1.266			2.913***
			(0.70)			(4.88)
Constant	13.933***	−77.348***	−78.484***	28.403***	−42.412***	−37.336***
	(34.18)	(−4.21)	(−3.98)	(13.80)	(−11.00)	(−8.60)

〈표 5〉 성향점수매칭(PSM)분석 (계속)

Panel B. Results with matched sample						
VARIABLES	(1) CSR_Ad	(2) CSR_Ad	(3) CSR_Ad	(4) CSR_Ad	(5) CSR_Ad	(6) CSR_Ad
Observations	6,361	6,361	6,361	6,820	6,820	6,820
R−squared	0.587	0.595	0.595	0.286	0.364	0.368
Year FE	YES	YES	YES	YES	YES	YES
Industry FE	NO	NO	NO	YES	YES	YES
Firm FE	YES	YES	YES	NO	NO	NO

1) Panel A는 매칭 전, 후 조세피난처에 직접 투자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의 특성을 비교하여 보여준다. Panel B는 이처럼 비슷한 특성을 가진 기업끼리 매칭한 표본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의 연구모형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CSR_{Ad_{i,t}} = \propto_0 + \propto_1 haven_{i,t} + \propto_k Controls_{i,t} + Year\&Firm\ \ Effects + \varepsilon_{i,t}$$

$$CSR_{Ad_{i,t}} = \propto_0 + \propto_1 haven_{i,t} + \propto_k Controls_{i,t} + Year\&Industry\ \ Effects + \varepsilon_{i,t}$$

2) 변수의 정의는 <표 2>에 제시된 것과 동일하다.

3) 괄호 안의 숫자는 t−값(t−statistics)을,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낸다.

4.3.2 독립변수 기간을 t−1년과 t−2년으로 확장

본 연구에서는 내생성(endogeneity)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표 6>에서 종속변수보다 1년 전과 2년 전 시점의 독립변수($haven_{t-1}$, $haven_{t-2}$)를 사용하여 각각 식(1)의 회귀분석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1)열부터 (3)열까지의 관심변수인 $haven_{t-1}$과 (4)열부터 (6)열까지의 관심변수인 $haven_{t-2}$ 계수가 유의한 양(+)의 값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내생성 문제가 완화되었을 경우에도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일관되게 유지됨을 보여준다.

〈표 6〉 독립변수 기간을 t−1년과 t−2년으로 확장 분석

	(1) CSR_Ad	(2) CSR_Ad	(3) CSR_Ad	(4) CSR_Ad	(5) CSR_Ad	(6) CSR_Ad
$haven_{t-1}$	2.248***	0.536**	0.485*			
	(5.44)	(2.15)	(1.94)			
$haven_{t-2}$				2.050***	0.527**	0.469*
				(4.92)	(1.96)	(1.75)
Size		2.729***	2.389***		2.457***	2.174***
		(24.88)	(19.82)		(20.90)	(16.83)
LEV		−1.540**	−1.151		−1.533*	−1.188
		(−1.97)	(−1.47)		(−1.82)	(−1.41)
Growth		−1.004***	−0.892***		−0.926**	−0.811**
		(−3.07)	(−2.73)		(−2.50)	(−2.19)
ROA		22.829***	22.758***		20.579***	20.551***
		(12.75)	(12.74)		(10.94)	(10.94)
PPE		2.682**	2.818**		2.986**	3.137**
		(2.23)	(2.35)		(2.35)	(2.47)
Board			0.188**			0.107
			(2.31)			(1.24)
IDR			0.031			0.021
			(1.34)			(0.85)
Big4			2.858***			2.491***
			(6.49)			(5.36)
Constant	23.764***	−39.032***	−34.962***	27.298***	−29.606***	−25.591***
	(13.24)	(−13.35)	(−11.06)	(12.38)	(−9.51)	(−7.60)
Observations	10,058	10,058	10,058	8,092	8,092	8,092
R−squared	0.232	0.307	0.310	0.248	0.316	0.318
Year FE	YES	YES	YES	YES	YES	YES
Industry FE	YES	YES	YES	YES	YES	YES

1) <표 6>은 조세피난처 직접투자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가설의 연구모형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CSR_{Ad_{i,t}} = \propto_0 + \propto_1 haven_{i,t-1} / \propto_1 haven_{i,t-2} + \propto_k Controls_{i,t} + Year\&Industry\ Effects + \varepsilon_{i,t}$$

2) 변수의 정의는 <표 2>에 제시된 것과 동일하다.

3) 괄호 안의 숫자는 t−값(t−statistics)을,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낸다.

4.4 추가 분석

중국 상장기업의 실제 지배주주의 상당 비율은 국유이며, 이는 중국 자본 시장의 중요한 특징이다. 중국을 배경으로 조세와 CSR 활동의 관계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국유기업과 비국유기업의 차이점을 탐구하는 많은 연구가 있다. Zou(2018)의 연구에 따르면 국유기업과 비교하여 비국유기업은 사회적 책임 정보를 공개하여 실제 세금부담을 줄이는 데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Yang et al.(2018)의 연구에 따르면 국유기업은 비국유기업에 비해 세금 민감도가 낮고 조세회피 정도가 낮다. 비국유기업과 비교하여 국유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개는 조세회피와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다. Shen et al.(2020)의 연구에 따르면 비국유기업과 비교하여 국유기업에서 자선기부와 조세회피 사이의 음(−)의 관계가 더 분명하다. Yang et al.(2020) 연구에 따르면 비국유기업의 조세회피는 환경책임과 양(+)의 관계가 있고 둘은 보완 관계인 반면, 국유기업의 조세회피는 환경책임과 관련이 없으며 둘은 독립적인 관계이다. Wang et al.(2022)은 국유기업이 조세회피와 CSR 활동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를 완화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분석결과는 일치하지 않으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비국유기업의 조세피난처와 CSR 활동이 더 적극적인 반면, 국유기업의 조세피난처와 CSR 활동 사이의 관계는 뚜렷하지 않거나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유기업은 이익을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고용, 공공서비스 및 시설제공, 사회안정유지 등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고 경제, 사회,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실현해야 하며,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여 정부의 조세정책 목표에 협조해야 하며 더 많은 사회적 책임을 주도적으로 져야 하기 때문이다(Wu et al. 2009). 이처럼 국유기업이 안고 있는 다중 책임은 이익 극대화에 대한 추구를 약화시켜 조세회피와 CSR 활동의 도구 동기가 약하다. 반면, 비국유기업은 경제성장과 기업가치 극대화를 주요 목표로 하는 경제 실체이며, 정부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국유기업보다 시장경쟁에서 뚜렷한 열세(Deng and Zeng 2011)이므로 조세회피와 CSR 활동의 도구 동기가 강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조세피난처 직접투자와 CSR 활동의 관계에서 국유기업과 비국유기업이 분명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며, 비국유기업에서는 둘의 관계가 더 분명하지만 국유기업에서는 둘 사이에 연관성이 없을 수 있다.

<표 7>은 표본을 국유기업과 비국유기업으로 나누고 각각의 그룹에 대해 식(1)의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비국유기업을 대상으로 한 (1)열부터 (3)열까지의 결과를 보면, 조세피난처 직접투자(haven) 계수는 각각 1.315, 0.798, 0.794로 각각 1%, 5%, 5%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였다. 하지만 (4)열부터 (6)열까지의 국유기업 결과를 보면, 조세피난처 직접투자(haven) 계수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들은 비국유기업에서 조세피난처에 직접 투자하는 회사들은 CSR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고, 비국유기업은 CSR 활동의 도구 동기가 국유기

업보다 강할 것이라는 예상과 일치한다.

〈표 7〉 조세피난처 직접투자와 조세회피의 관련성(국유기업과 비국유 기업)

	비국유기업			국유기업		
	(1) CSR_Ad	(2) CSR_Ad	(3) CSR_Ad	(4) CSR_Ad	(5) CSR_Ad	(6) CSR_Ad
Haven	1.351***	0.789**	0.794**	1.104	0.422	0.447
	(3.42)	(1.97)	(1.98)	(1.20)	(0.46)	(0.48)
Size		1.626***	1.612***		6.108***	6.034***
		(4.98)	(4.89)		(7.37)	(7.22)
LEV		3.503***	3.423***		−12.221***	−12.070***
		(2.95)	(2.89)		(−3.69)	(−3.63)
Growth		−0.101	−0.082		0.127	0.151
		(−0.36)	(−0.29)		(0.18)	(0.21)
ROA		9.171***	9.153***		14.472**	14.722**
		(4.83)	(4.82)		(2.36)	(2.40)
PPE		−3.158*	−3.221*		2.292	2.250
		(−1.82)	(−1.86)		(0.35)	(0.34)
Board			−0.216			0.053
			(−1.41)			(0.19)
IDR			0.022			0.058
			(0.58)			(0.87)
Big4			1.976*			0.460
			(1.88)			(0.26)
Constant	11.884***	−22.925***	−21.683***	18.408***	−120.352***	−121.428***
	(83.12)	(−2.97)	(−2.70)	(51.15)	(−5.89)	(−5.90)
Observations	8,668	8,668	8,668	3,661	3,661	3,661
R−squared	0.493	0.500	0.500	0.598	0.607	0.607
Year FE	YES	YES	YES	YES	YES	YES
Firm FE	YES	YES	YES	YES	YES	YES

1) <표 7>는 국유기업과 비국유기업 표본에서 조세피난처 직접투자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CSR_{Ad_{i,t}} = \propto_0 + \propto_1 haven_{i,t} + \propto_k Controls_{i,t} + Year\&Firm\ \ Effects + \varepsilon_{i,t}$

2) 변수의 정의는 <표 2>에 제시된 것과 동일하다.

3) 괄호 안의 숫자는 t−값(t−statistics)을,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낸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조세피난처 직접투자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위험관리이론에 따르면 공격적인 조세회피 행위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조세피난처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조세회피를 하는 회사들은 CSR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즉, 조세피난처 직접투자와 CSR 활동이 양(+)의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석 결과, 조세피난처 직접투자와 CSR 활동 간에는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조세피난처 직접투자를 하는 기업이 CSR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한다는 의미로, 위험관리이론을 지지한다. 또한 내생성을 완화하고 강건성을 확보하기 위한 분석에서도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국유기업과 비국유기업 간의 이러한 관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국유기업 표본에서는 조세피난처 직접투자와 CSR 사이에 유의한 관계가 없는 반면, 비국유기업 표본에서는 조세피난처 직접투자와 CSR 사이에 유의한 양 (+)의 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선행 연구와 일치하여 국유기업은 CSR 활동의 도구 동기가 약한 반면, 비국유기업은 CSR 활동의 도구 동기가 더 강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이러한 자발적인 조세회피에 주목하면 기업이 주관적인 조세회피인지 객관적으로 조세우대를 누리는지 구분할 수 있으며, 선행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는 조세회피 측정치인 ETR과 BTD에서 기업이 객관적으로 얻은 세제혜택을 배제할 수 없다는 단점을 극복했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 본 논문이 연구결과가 위험관리이론을 지지하고 있지만 조세피난처에서 직접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CSR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이 기업위험을 줄일 수 있는 지에 대하여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았으며 향후 연구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고종권, and 박희진. 2017. 조세피난처의 이용과 조세회피. 회계저널 26 (2) : 83－115.

고종권, 박희진, and 윤성수. 2020.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소득이전과 조세회피. 회계학연구 45 (3) : 131－171.

기은선. 2012.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조세회피 및 조세회피에 대한 시장반응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29 (2). 한국세무학회 : 107－136.

신영효, 황보영, 정규언. 2017. “법인세 추징세액을 이용한 조세회피측정치 비교 연구.” 세무학연구 34 (3). 한국세무학회 : 259－285.

안숙찬. 2012. 조세피난처의 이용과 기업특성. 세무학연구 29 (4) : 257－283.

이해성, 김갑순. 2015. “지속가능경영활동이 이익의 질과 조세회피 그리고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 회계저널 16 (5). 한국세무학회 : 209－242.

정현아, 유순미. 2021. “ESG경영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경영교육연구 36 (6) : 119－144.

한종수, 강정윤, 강소현. 2021.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회계실무 및 정책시사점 중심 문헌연구.” 회계저널 30 (5). 한국회계학회 : 263－336.

Avi－Yonah, R. S. 2008.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strategic tax behavior. In Tax and corporate governance : Springer, 183－198.

Barrera, R., and J. Bustamante. 2018. The rotten apple : Tax avoidance in Ireland. The International Trade Journal 32 (1) : 150－161.

Campbell, K., and D. Helleloid. 2016. Starbucks : Social responsibility and tax avoidance. Journal of Accounting Education 37 : 38－60.

Chari, M., and S. Acikgoz. 2016. What drives emerging economy firm acquisitions in tax haven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69 (2) : 664－671.

Chen Dong, Zhang Sifeng, and Zhou Lexin. 2022. Are Modified Audit Opinions Issued for Companies that Directly Invest in Tax Havens? Journal of Nanjing Audit University 19 (01) : 38－46.

Choy, S. K., T.－K. Lai, and T. Ng. 2017. Do tax havens create firm value? Journal of Corporate Finance 42 : 198－220.

Col, B., and S. Patel. 2019. Going to have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ax avoidance. Journal of business ethics 154 : 1033－1050.

Davis, A. K., D. A. Guenther, L. K. Krull, and B. M. Williams. 2016. Do socially responsible firms pay more taxes? The accounting review 91 (1) : 47－68.

Deng, J.P., and Zeng, Y. 2011. Financial Ecological Environment, Banking Connection and Debt Financing : An Empirical Study on Chinese Private Enterprises. Accounting Research (12) : 33－40＋96－97.

Dowling, G. R. 2014. The curious case of corporate tax avoidance：Is it socially irresponsible? Journal of business ethics 124：173－184.

Ge, F., P. Wu, Y. Feng, and L. Gao. 2023. Do enterprises with foreign direct investments in tax havens prefer charitable donations? Evidence from China. Asian Business & Management 22 (5)：2056－2076.

Hines Jr, J. R., and E. M. Rice. 1994. Fiscal paradise：Foreign tax havens and American busines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9 (1)：149－182.

Hoi, C. K., Q. Wu, and H. Zhang. 2013. I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associated with tax avoidance? Evidence from irresponsible CSR activities. The accounting review 88 (6)：2025－2059.

Kim, S., H. Jung, and H. Na. 2019. Tax haven investors, firm value and investor protection. Applied Economics Letters 26 (19)：1634－1640.

Lanis, R., and G. Richardson. 2012.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ax aggressiveness：An empirical analysis.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31 (1)：86－108.

Lanis, R., and G. Richardson. 2013.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ax aggressiveness：a test of legitimacy theory. Accounting Auditing & Accountability Journal 26 (1)：75－100.

Lanis, R., and G. Richardson. 2015. I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performance associated with tax avoidance? Journal of Business Ethics 127：439－457.

Lee, D. 2020.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f US－listed firms headquartered in tax haven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41 (9)：1547－1571.

Lewellen, C. M. 2023. Tax haven incorporation and financial reporting transparency. Review of accounting studies 28 (3)：1811－1855.

Lewellen, C. M., L. Mauler, and L. Watson. 2021. Tax haven incorporation and the cost of capital.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38 (4)：2982－3016.

Liu, Zhikuo, Chen, Zhao, Wu, Huihang, and Zhang, Yao. 2019.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in China’s Multinational Enterprises：China’s Experience with the Reconstruction of the International Tax System. Economic Research 54 (02)：21－35.

Lü Wei, Zhang Chun, and Zhou Leyan. 2015.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Risk Management Strategies and Tax Avoidance. Journal of Shanghai University (Social Sciences Edition) 32 (05)：97－107.

Lu, C., and K. Zhu. 2021. Do tax expenses crowd in or crowd ou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performance? Evidence from Chinese listed firms.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327：129433.

Ouyang, Yanyan, Cai, Hongbo, and Li, Zijian. 2022. Motivation, Mechanism and Scale of Firms’ Tax Avoidance Embodied in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Theory and Evidence. World Economy 45 (03)：106－133.

Preuss, L. 2010. Tax avoidance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you can't do both, or can you? Corporate Governance :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business in society 10 (4) : 365－374.

_____. 2012. Responsibility in paradise? The adoption of CSR tools by companies domiciled in tax havens. Journal of business ethics 110 : 1－14.

Prior, D., J. Surroca, and J. A. Tribó. 2008. Are socially responsible managers really ethical?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arnings manage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rporate governance : An international review 16 (3) : 160－177.

Richardson, G., G. Taylor, and I. Obaydin. 2020. Does the use of tax haven subsidiaries by US multinational corporations affect the cost of bank loans? Journal of Corporate Finance 64 : 101663.

Shen, Y., Xu, G., Lv, M., and Qian, M. (2020). Corporate Philanthropy and Tax Avoidance－－A Study Based on the Perceptive of Corporate CSR Culture. Management Review 32 (02) : 254－265.

Tang, M., and Y. Wang. 2022. Tax incentives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The role of cash savings from accelerated depreciation policy. Economic Modelling 116 : 106040.

Wang Jingfeng, Tian Hong, and Li Wenchao. 2022.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ax Aggressiveness "Signals of Justice" or "Tools of Cloaking"?. Taxation and Economy (03) : 50－59.

Wang, J., D. Ke, and X. Lai. 2023. Tax enforce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evidence from a natural experiment in China. Emerging Markets Finance and Trade 59 (2) : 542－560.

Watson, L. 2015.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ax avoidance, and earnings performance.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37 (2) : 1－21.

Wu, L.S. 2009. State Ownership, Preferential Tax, and Corporate Tax Burdens. Economic Research 44 (10) : 109－120.

Yang Jie, Chen Xiding, and Ying Limeng. 2020. Tax Avoidance and Corporate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 Complementary, Alternative or Independent. East China Economic Management 34 (02) : 112－121.

Yang Liqiang, Chen Aihua, and Chen Han. 2018. The CSR Report and Tax Avoidance Behavior. Investment Research 37 (08) : 4－25.

Zou Ping. 2018. Disclosur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Actual Tax Burden : Walking the Talk or Logging Rolling?. Business Management Journal 40 (03) : 159－177.

Direct Investment in Tax Havens and CSR Activities

Wang Lan* · Park Heewoo**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between direct investment in tax havens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activities. Using firms listed on China's A-share market from 2010 to 2020, we find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direct investment in tax havens and CSR activities. This suggests that firms with direct investment in tax havens are more active in CSR activities, supporting the risk management theory. Furthermore, when we examine the difference in this relationship between SOEs and non-SOEs, we find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direct investment in tax havens and CSR in the SOE sample, while there i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direct investment in tax havens and CSR in the non-SOE sample. These findings are consistent with prior research, suggesting that SOEs have weaker instrumental motivations for CSR activities, while non-SOEs have stronger instrumental motivations for CSR activities. Unlike previous studies, our contribution is that by focusing on voluntary tax avoidance, we are able to distinguish whether firms subjectively avoid taxes or objectively enjoy tax preferences, and overcome the shortcomings of the widely used measures of tax avoidance in the literature, ETR and BTD, which cannot exclude objectively obtained tax benefits.

<Key words> Tax havens, tax avoidance, CSR activities, SOEs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Finance and Economics, Zhejiang Industry Polytechnic College, Shaoxing China

** Professor, Department of Accounting,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ppendix〉

CSR지수(hexun.com)

항목	평가항목	지표
주주책임 Shareholder (30%)	이익	순자산이익률(2%)
		총자산이익률(2%)
		주영업이익률(2%)
		원가비용이익률(1%)
		주당순이익(2%)
		주당미처분이익(1%)
	지불능력	당좌비율(0.5%)
		유동비율(0.5%)
		현금비율(0.5%)
		주주자본비율(0.5%)
		자산부채율(1%)
	배당	배당금융비율(2%)
		배당률(3%)
		배당가능이익비율(3%)
	신용 승인	거래소에 의한 회사 및 관련 책임자 처벌 횟수(5%)
	혁신	제품 개발 지출(1%)
		기술혁신 컨셉(1%)
		기술혁신 항목 수(2%)
직원책임 (10%－15%)	성과	근로자 1인당 소득(4%) (3%)
		직원교육(1%)(1%)
	안전	안전점검(2%) (1%)
		안전교육(3%) (2%)
	직원 사랑하기	위로의식(1%) (1%)
		위문인(2%) (1%)
		위로금(2%) (1%)
공급자, 고객 및 소비자 권익 책임 (15%－20%)	제품 품질	품질관리 마인드(3%) (5%)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4%) (4%)
	애프터서비스	고객만족도조사(3%) (4%)
	상호 신뢰	공급업체 공정경쟁(3%) (4%)
		반기업 로비교육(2%) (3%)
환경 책임 (10%－30%)	환경 관리	환경보호의식(2%) (4%) (2%)
		환경관리체계 인증(3%) (5%) (2%)
		친환경 투입금액(5%) (7%) (2%)
		오염물질 배출종류 수(5%) (7%) (2%)
		에너지 절약 종류 수(5%) (7%) (2%)
사회적 책임 (10%－30%)	기여 가치	총이익 대비 법인세 비율(10%) (5%) (15%)
		공익기부금액(10%) (5%) (15%)

취득세 세율의 인상 또는 인하가 부동산 매매거래에 미친 영향

박 성 욱 · 이 종 탁 · 김 서 현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

취득세 세율의 인상 또는 인하가 부동산 매매거래에 미친 영향

박성욱* · 이종탁** · 김서현***

〈요 약〉

정부는 주택 거래가 과열되거나 침체되면 시장을 안정화 또는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 관련 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이러한 정책 시행 시 부동산 매매거래가 감소하였다가 증가하는 양상이 시장에 반복되어 나타나므로 부동산 정책은 시장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취득세율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시기별 정부의 정책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13년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법정취득세율을 영구적으로 인하하도록 세법을 개정하였다. 2020년 8월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다주택자와 법인사업자들의 주택 취득에 대한 개정도 이루어졌다. 이후 2021년 8월에 취득세 과세대상의 실질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취득세 부과 시 사실상 취득한 가격을 과세표준에 적용하도록 하는 입법예고가 이루어졌다. 이 제도가 발표된 후 2022년까지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취득세 과세표준 제도 변경에 대한 시행은 2023년 1월 윤석열 정부 때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이러한 취득세율이 인하 또는 인상되기 이전에 부동산 매매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2013년 법정취득세율이 영구적으로 인하됨에 따라 12월 26일 시행일 이후 2개월과 이후 3개월에서 매매거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 취득세율 인하가 시행됨에 따라 주택 수요자의 거래비용이 줄어들어 시행일 이후에 매매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2020년 다주택자와 법인사업자들의 주택 취득세율 인상의 시행일인 8월 12일 이전 1개월과 이전 2개월에서 매매거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주택자들이 주택 취득에 대해 증가되는 세부담을 피하기 위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외에도 본 연구는 취득세 과세표준의 변화가 부동산 매매거래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2021년에 취득세 과세대상의 실질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취득세 부과 시 사실상 취득한 가격을 과세표준에 적용하도록 하는 입법예고가 8월 11일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입법예고일 이후의 실증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매매거래가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도가 발표된 후 2022년까지 유예기간을 두었으므로 그 기간이 다소 길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유예기간 후에 2023년 취득세 과세표준 제도 변경에 대한 시행이 1월 1일에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실증분석결과, 시행일 이후 1개월 및 이후 2개월에서 매매거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실상 취득한 가격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이 변경되어 세부담이 증가하면서 부동산 매매거래가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회계·세무학과 교수, sopark@khu.ac.kr, 주저자
** 경희대학교 대학원 회계·세무학과 박사, 세무사, jtltax@naver.com, 교신저자
*** 경희대학교 대학원 회계·세무학과 박사(수료), ksh2019@khu.ac.kr, 공동저자

나아가 본 연구는 지역별 데이터를 확보함에 따라 17개 광역시도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취득세율 및 과세표준의 변화가 월별 매매건수에 미친 영향을 검증하였고, 그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본 연구는 취득세율의 인하 또는 인상에 초점을 맞추어 부동산의 매매거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세밀하게 분석한다는 점에서 공헌이 있다.

<주제어> 취득세, 세율, 과세표준, 부동산 매매거래

Ⅰ. 서 론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 중 하나로 부동산이나 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게 된다. 2022년을 기준으로 취득세 세수는 약 28조원으로 전체 지방세 세수 120조원에서 23.4%를 차지한다. 이는 지방세 세목 11개 중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2023 지방세통계연감』의 취득세 물건별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토지는 약 9조 2천억원, 주택은 약 7조 6천억원, 건축물은 약 5조원, 차량은 약 5조 5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가격과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상황에 따라 이러한 취득세에 대한 감면율을 증감 또는 폐지시키는 방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지방세수인 취득세에 대한 감면정책이 부동산 거래에 선순환으로 작용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이 줄어들어 지방재정에 차질을 초래할 수도 있기에 이러한 방법은 주의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주택의 유상취득에 대한 세율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1년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된 이후 정부는 주택 시장의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2013.8.28.에 주택 수요자의 거래비용의 부담을 감소시키려 주택에 대한 유상승계취득 세율을 1%~3% 영구적으로 인하하였다. 그 이후 주택 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다주택자와 법인과 증여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2020.8.12.「지방세법」이 개정되었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해서는 종전에 4주택 이상에서만 적용하였던 중과세율 4%를 확대하면서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로 세분화하여 세율이 적용되었다. 그리고 조정대상의 지역 내 공시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받아도 취득세 세율은 12%로 대폭 인상되었다.

한편 2021.8.11.에 취득세 과세대상의 실질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취득세 부과 시 실제 취득한 가격을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제도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이에 종전에는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에서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였지만

이를 사실상 취득한 가격으로 하고, 무상취득의 경우에도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유예기간을 거쳐 2023.1.1.부터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취득세 세율과 과세표준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부동산 매매거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는 2013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17개 광역시도의 월별 매매건수를 이용한다. 본 연구의 구성을 살펴보면 제Ⅰ장에서 연구목적을 제시한 후 제Ⅱ장에서 제도적 배경을 검토한다. 제Ⅲ장은 선행연구를 조사하고, 제Ⅳ장에서는 가설을 설정한 후 연구모형을 설계한다. 제Ⅴ장에서는 실증분석결과를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제Ⅵ장에서는 결과를 제시한다.

Ⅱ. 제도적 배경

취득세 세수현황을 행정안전부『2023 지방세통계연감』에서 살펴보면 2020년에 약 30조원, 2021년에 약 34조원으로 증가하다가 2022년 지방세 중 취득세 세수는 약 28조원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이는 전체 지방세 세수 약 120조원 중 23.4%를 차지하므로 지방세 11개의 세목 중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다. 취득세는 매매 등과 같은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부과되며, 이는 재산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담세력을 인정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이고, 취득행위를 과세의 객체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세를 의미하기도 한다. 특히 2011년 이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분리되어 과세됨에 따라 취득세의 표준세율의 경우 모든 취득세 과세대상에 2%의 단일비례세율을 적용하였다. 반면, 등록세의 세율의 경우 등기·등록 대상과 등기원인에 대한 보다 복잡한 세율구조를 갖고 있었다.

그 이후 2011년에 취득세 및 등록세가 통합되어 과세되면서 취득세에 부과되는 세목으로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있고, 취득세 표준세율은 종전 취득세와 등록세의 표준세율을 단순히 합산하는 세율로 개정되었다. 이에 취득세 세율은 과세대상 물건별, 취득의 유형별, 그리고 납세의무자별로 다르게 규정하면서 복잡한 세율체계를 갖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과세대상의 자산 중에서 주택 취득세 세율의 경우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2.8%이고, 증여 등 상속 외의 무상취득의 경우 3.5%이며, 비영리사업자의 증여 등에 의한 무상취득의 경우 2.8%이고, 원시취득의 경우 2.8%이고, 유상취득의 경우 4%의 법정세율이 적용되었다. 특히 주택에 대한 유상취득 세율은「지방세법」상 4% 단일비례세율로서 규정되었으며,「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주택거래에 대해 감면하는 식으로 규정되면서 실효세율의 경우 1%~4% 유지되었다. 이

감면율은 단기간 빈번하게 개정되면서 실효세율도 자주 변경되었고, 2013.8.28.(「지방세법」의 개정은 2013.12.26.)에 주택의 유상승계취득의 세율이 1%~3%로 영구적으로 인하되기 전까지 세율의 변화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2011.1.1.~2013.8.27.까지 주택 유상취득 시 취득세율

(단위 : %)

구분		2011.1.1.~ 2011.3.21.	2011.3.22.~ 2011.12.31.	2012.1.1~ 2012.9.23.	2012.9.24.~ 2013.6.30.	2013.7.1.~ 2013.8.27.
법정세율		4				
실효세율	6억 이하	2	1	2	1	2
	6억 초과~9억 이하					
	9억 초과~12억 이하	4	2	4	2	4
	12억 초과				3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1. 취득세 세율의 인하

정부는 주택 유상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감면하는 정책을 사용해왔다. 이는 주택 수요자의 거주 비용의 부담을 줄여줘서 거래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주택가격 및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상황에 따라 감면율을 증감 또는 폐지시키면서 당시 시장의 침체에 따라 2013.8.28. 주택의 유상승계취득 세율의 경우 1%~3% 영구적으로 인하하도록 8·28 전·월세 대책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주택가격 6억원 이하는 2%에서 1%로,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의 경우 2%로 유지하며, 그리고 9억원 초과의 경우에는 4%에서 3%로 영구 인하되었다. 이에 2013.11.4.에 취득세 인하를 8월 28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합의하면서 2013.12.26.에 「지방세법」 개정안이 공포되어 시행되었다. 이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하므로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되지 않았고, 이러한 유상거래는 개인이나 법인을 특정하지 않고 모든 납세자가 해당되었다. 다음의 <표 2>는 2013.8.28.~2019.12.31.까지 주택 유상취득 시 취득세율 정리한 것이다.

〈표 2〉 2013.8.28.~2019.12.31. 주택 유상취득 시 취득세율

(단위 : %)

매수가격	전용면적	취득세율	농어촌특별세율	지방교육세율	합계세율
6억 이하	$85m^2$ 이하	1	비과세	0.1	1.1
	$85m^2$ 초과	1	0.2	0.1	1.3
6억 초과~ 9억 이하*	$85m^2$ 이하	2	비과세	0.2	2.2
	$85m^2$ 초과	2	0.2	0.2	2.4
9억 초과	$85m^2$ 이하	3	비과세	0.3	3.3
	$85m^2$ 초과	3	0.2	0.3	3.5

* 2019.12.31.에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과세구간에서 취득가격에 따라서 세율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1%~3%의 사선형 세율이 적용되었다. 이는 6억원과 9억원 이전의 가격에서 거래량이 집중되는 문턱효과(threshold effect)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2. 다주택자의 취득세 세율 인상

주택 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다주택자와 법인과 증여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었다. 2019.12.31. 개정 시 1세대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할 때 1%~3%의 유상거래 세율의 적용이 배제되었고 4%의 단일세율이 적용되었다.[1] 이는 2020.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되었다.[2] 또한 정부가 2020.7.10.에 주택 시장에 대한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2020.8.12.에는 「지방세법」이 다시 개정되었다. 이에 다주택자와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증여를 통한 취득세율이 인상되었다.[3]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세율은 <표 3>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외와 조정대상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 1%~3%의 적용이 배제되었고, 부동산 취득 일반세율 4%에서 중과기준세율 2%의 2배나 4배를 가산하여 계산한 세율이 적용되었다. 따라서 법인의 주택 취득 시 취득지역이나 가액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중과세 세율 12%를 적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주어졌던 취득세의 감면 전환 혜택이 일부 수정됨에 따라 법인전환으로 조세를 회피한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의 경우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인 75%를 배제하게 되었다.

1)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 제1호이며, 동 개정규정은 표준세율을 4%로 한다.

2) 「지방세법」 부칙 (2019.12.31. 법률 제16855호) 제1조 및 제3조.

3) 「지방세법」 제13조의2를 신설해서 중과세 세율로 규정되었다.

〈표 3〉 다주택자 및 법인의 취득세 중과세율

(단위 : %)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 이상 · 법인
조정대상지역 이외	1～3	1～3	8	12
조정대상지역	1～3	8*1)	12*2)	12

*1) 일반세율 4%+중과기준세율 2%×2배.
*2) 일반세율 4%+중과기준세율 2%×4배.

한편, 주택의 상속 외 증여 등 무상취득 시에도 중과세 세율이 적용되었다. 2018년 및 2020년에 다주택자의 주택보유에 따른 세부담을 강화하여 기존에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를 유도하기 위해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상되었다. 하지만 주택소유자들은 절세전략으로 증여를 선택할 수 있기에 증여 대신에 양도를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는 증여 등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을 대폭적으로 인상하였다. 특히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인상이 발표[4] 된 이후 세부담을 회피하려 증여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2020년 8월에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의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증여취득 시 세율을 기존 3.5%에서 4%+중과기준세율(2%)×4배를 하여 12%로 인상하였다.[5] 이러한 「지방세법」 개정에 의한 다주택 취득과 법인의 취득과, 그리고 증여취득에 의한 중과세 규정은 2020.8.12.부터 시행되므로 2020.8.12. 이후 취득하는 주택분부터 적용하게되는 것이다.

3. 취득세 과세표준의 변경

2021.8.11.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의 실질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취득세 부과 시 실제 취득한 가격을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제도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6] 다음의 <표 4>를 보면 이전에는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에서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였으나 이후 2023.1.1.부터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사실상 취득한 가격으로 변경되었다.[7] 또한 부동산 무상취득의 경우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으로 취득세 과세표준

4)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인상의 입법예고일은 2020.7.28.이며, 시행일은 2021.6.1.이다.
5) 조정대상지역 외, 조정대상지역 내의 시가표준액 3억원 미만 주택에 대한 증여취득 시 세율은 그대로 3.5%이다.
6)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1.8.10.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지원 강화”.
7) 취득가격과 관련된 자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변경된 취득세 과세표준 제도에 대한 홍보를 위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3.1.1.에 시행되었다.

이 변경되었다. 이때 시가인정액은 「지방세법」 상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일 전 6개월~취득일 후 3개월 이내에 기준일이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과세표준가액을 말한다. 그리고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이 없을 경우 유사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시가표준액의 시세 반영률은 65~75% 수준으로 알려져 있지만 2023년에 시가인정액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시세 반영률이 100%가 되면서 30% 정도 세율인상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8] 이에 증여세 부담이 증가하므로 납세자가 매매를 증여로 전환할 유인은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제도 변경

구분	2022.12.31. 이전	2023.1.1. 이후
유상취득	• 개인 : Max(신고가액, 시가표준액) • 법인 : 사실상의 취득가격	• 개인・법인 : 사실상의 취득가격(실제 거래가격)
증여취득	• 개인・법인 : 시가표준액(공시가격)	• 개인・법인 :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등)

Ⅲ. 선행연구

지방세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취득세와 주택 거래량에 대해 연구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한재명・유태현(2011)은 취・등록세 인하에 대한 정책이 주택거래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택가격, 수요, 공급, 거시경제환경, 그리고 제도적 요인이 주택 거래량에 대표인 주거용 토지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을 전이함수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취・등록세 세율 인하조치가 2005년과 2006년에 걸쳐 이루어졌지만 서울의 강남권 지역을 포함한 각각의 지역에서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래세 인하를 통하여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키려는 정책이 성공적이지 못했고 지방자치단체 세입원 중 하나인 거래세수 감소를 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임대봉(2014)은 취득세가 주택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해 주택 거래량과 주택가격에 관한 연구를 하였는데, 취득세의 감면정책의 경우 아파트 거래량에 양(+)의 영향을

8) 한국세정신문. 2023.10.25. “무상취득에 대한 시가인정액제도, 증여거래 위축시켰다”.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61676.

미치나 가격에는 작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취득세 감면조치는 아파트거래를 활성화시켜 거래절벽을 해소하는데 의미있는 정책으로 보았다.

임상빈・김병남(2021)은 다주택에 대한 중과세 회피 수단으로 개인이 법인을 통해 주택 매수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주택 취득과 보유 시 세부담을 강화하는 6.17과 7.10 대책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이는 법인의 주택 취득 유인의 경우 감소시킬 수 있지만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거래량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거래법인의 거래비중은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강화 예고에 따른 정책 효과는 확인할 수 없었다.

본 연구는 취득세율의 인하 또는 인상과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제도의 변경이 주택의 매매거래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이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검증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점이 있다.

Ⅳ. 연구설계

1. 연구가설

주택가격과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13.12.26.「지방세법」 개정 시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율은 보유주택 수와는 상관없이 종전의 4%에서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경우 1%이고,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경우 2%이며, 그리고 9억원 초과의 경우 3%로 개정이 되었다. 이는「지방세특례제한법」상 한시적인 감면규정을 이용해서 과세표준구간별 단순 누진세율구조를 그동안 유지해 오던 것을「지방세법」상 표준세율에 직접 규정하여 주택 유상취득의 세율을 영구 인하한 것이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동 개정규정은 2013.8.28.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소급적용되었으며, 2013.12.26.에「지방세법」 개정안이 공포되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취득세 세율 인하로 주택 수요자에 대한 거래비용의 부담이 줄어들어 제도의 시행일 이후에 부동산 매매건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가설 1을 설정한다. 그리고 이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서 분석하고자 한다.

가설 1 : 취득세율 인하의 시행일 이후 부동산 매매건수는 증가한다.

가설 1-1 : 취득세율 인하의 시행일 이후 수도권의 부동산 매매건수는 증가한다.

가설 1-2 : 취득세율 인하의 시행일 이후 비수도권의 부동산 매매건수는 증가한다.

반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2020.8.12.에 「지방세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다주택자 및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와 증여에 한 주택 취득 시 세율이 대폭 인상되었다. 구체적으로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해서는 종전에 4주택 이상에서만 적용하였던 중과세율 4%를 확대하면서 2주택의 경우 8%, 3주택 이상의 경우 12%로 세분화하여 세율이 적용되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취득세 세율은 12%로 대폭 인상되었다. 따라서 다주택자들은 주택의 취득에 대해 증가되는 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시행일인 2020.8.12. 이전에 매매할 것으로 예상하고 가설 2를 설정한다.

가설 2 : 취득세율 인상의 시행일 이전 부동산 매매건수는 증가한다.

가설 2-1 : 취득세율 인상의 시행일 이전 수도권의 부동산 매매건수는 증가한다.

가설 2-2 : 취득세율 인상의 시행일 이전 비수도권의 부동산 매매건수는 증가한다.

한편 2021.8.11.에 취득세 과세대상의 실질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취득세 부과 시 실제 취득한 가격을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제도 도입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과세표준 제도의 변경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취득가격과 관련된 자료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소요될 시간을 고려하여 2022년까지 종전의 제도가 적용되도록 유예기간을 두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에서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였으나 2023.1.1.부터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사실상 취득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변경되었다. 이외에도 부동산 무상취득의 경우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이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2021.8.11.에 사실상 취득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제도가 입법예고된 후 2022년까지 유예기간을 두었기에 그 기간동안 부동산 매매건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므로 가설 3을 설정한다.

가설 3 : 취득세 과세표준 제도 변경의 입법예고일 이후 부동산 매매건수는 증가한다.

가설 3-1 : 취득세 과세표준 제도 변경의 입법예고일 이후 수도권의 부동산 매매건수는 증가한다.

가설 3-2 : 취득세 과세표준 제도 변경의 입법예고일 이후 비수도권의 부동산 매매건수는 증가한다.

반면, 취득세 과세표준 제도의 변경이 시행된 2023.1.1. 이후에는 반대로 세부담 증가로 부동

산 매매건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므로 다음과 같이 가설 4를 설정한다.

가설 4 : 취득세 과세표준 제도 변경의 시행일 이후 부동산 매매건수는 감소한다.

가설 4-1 : 취득세 과세표준 제도 변경의 시행일 이후 수도권의 부동산 매매건수는 감소한다.

가설 4-2 : 취득세 과세표준 제도 변경의 시행일 이후 비수도권의 부동산 매매건수는 감소한다.

이처럼 경기상황에 따라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해 취득세율이 인하 또는 인상되었으며 과세표준도 변경되었다. 관련된 개정내용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취득세율 및 과세표준의 변화

구분	개정사항	입법예고일	개정일	시행일
취득세 세율 인하	• 주택 유상승계취득 : 6억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2%, 9억 초과 3%	2013.8.28.	2013.12.26.	2013.12.26. **(가설 1 기준일)**
다주택자 취득세 세율 인상	• 주택 유상승계취득 : 8% 또는 12% • 주택 무상승계취득 : 12%	2020.7.24.	2020.8.12.	2020.8.12. **(가설 2 기준일)**
취득세 과세표준 변경	• 주택 유상취득·원시취득 : 사실상의 취득가격(실제 거래가격) • 주택 무상취득 :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등)	2021.8.11. **(가설 3 기준일)**	2021.12.28.	2023.1.1. **(가설 4 기준일)**

2. 연구설계

가. 표본선정

본 연구의 표본은 2013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17개 광역시도의 월별 매매등기건수이다. 예를 들면 서울지역의 2013년 1월의 매매등기건수는 하나의 샘플인 것이다. 이러한 지역샘플은 17개이고, 130개월로 총 표본수는 2,210개이다. 이는 매월 초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취합하는 한국부동산원 통계시스템 자료에 근거하였다. 통제변수의 경우 주택매매가

격지수는 2013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월별 전국 주택가격지수이며,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예금은행의 월별 및 지역별 주택담보대출규모이다. CD금리(91일물), 종합주가지수 변수도 모두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통해 수집하였다. 주택건설 인허가실적 변수는 국토교통통계누리 자료에 근거하였고, 연별 전국 지역내총생산 통계는 국가통계포털로부터 수집하였다. 이러한 시도별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변수만 연간 자료를 이용하였고, 이외에 나머지 통제변수들은 월별 자료를 이용하였다. 또한 극단치로 인해 결과가 왜곡될 수 있기에 모든 통제변수는 1% 수준에서 조정(winsorizing) 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총 2,210개의 표본이 추출되었다.

나. 연구모형

본 연구의 실증모형은 아래 식(1)의 회귀분석모형이다.

$$TRANS_{i,t} = \beta_0 + \beta_1 ADT_{i,j,t} + \beta_2 AIT_{i,j,t} + \beta_3 TBA_{i,j,t} + \beta_4 TBC_{i,j,t} + \beta_5 ESTATE_{i,t} + \beta_6 HOUSE_{i,t} + \beta_7 MG_{i,t} + \beta_8 INT_t + \beta_9 KOSPI_t + \beta_{10} GRDP_{i,t} + \varepsilon_{i,t} \quad \text{식(1)}$$

여기서,

- $TRANS_{i,t}$ = i지역, t월의 전국 주택매매등기건수(단위 : 동(호)수) ;
- $ADT_{i,j,t}$ = 2013.12.26. 이후 1개월, 이전 2개월, 이전 3개월은 1, 아니면 0(j=1,2,3) ;
- $AIT_{i,j,t}$ = 2020.8.12. 이전 1개월, 이전 2개월, 이전 3개월은 1, 아니면 0(j=1,2,3) ;
- $TBA_{i,j,t}$ = 2021.8.11. 이후 1개월, 이후 2개월, 이후 3개월은 1, 아니면 0(j=1,2,3) ;
- $TBC_{i,j,t}$ = 2023.1.1. 이후 1개월, 이후 2개월, 이후 3개월은 1, 아니면 0(j=1,2,3) ;
- $ESTATE_{i,t}$ = i지역, t월의 전국 주택매매가격지수의 자연로그 값(단위 : 2021.6=100) ;
- $HOUSE_{i,t}$ = i지역, t월의 전국 주택건설 인허가실적의 자연로그 값(단위 : 호, 가구수 기준) ;
- $MG_{i,t}$ = i지역, t월의 예금은행 지역별 주택담보대출 규모의 자연로그 값(단위 : 십억원) ;
- INT_t = t월의 CD(91일물)금리의 자연로그 값(단위 : 연%) ;
- $KOSPI_t$ = t월의 종합주가지수의 자연로그 값(단위 : 1980.1.4=100) ;
- $GRDP_{i,t}$ = i지역, t년의 시도별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의 자연로그 값(단위 : 백만원) ;
- $\varepsilon_{i,t}$ = 잔차항.

식(1)에서 *TRANS* 종속변수는 17개 광역시도에 소재한 주택의 월별 매매등기건수로 전국 주택 매매건수의 대용치이다. 그리고 네 가지 독립변수인 *ADT, AIT, TBA, TBC* 변수는 앞서 취득세 세율 및 과세표준 변화에서 제시한 주요 분석대상 사건들로 더미변수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른 세제정책과의 혼합효과(compounding effect)를 제거하기 위해 분석대상 사건일 이전(또는 이후) 1개월, 이전(또는 이후) 2개월, 그리고 이전(또는 이후) 3개월을 각각 분석한다.

먼저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한 *ADT* 변수는 주택 취득에 대한 세율 인하가 2013.8.28. 입법예고 되어 2013.12.26. 개정 및 시행되면서 해당 시행일인 2013.12.26. 이후 1개월, 이후 2개월, 그리고 이후 3개월에 해당하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다. 이러한 주택 취득에 대한

세율 인하는 주택 수요자의 거래비용을 경감시키므로 2013.12.26. 시행일 이후 주택의 매매가 증가한다면 *ADT* 변수의 계수부호는 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2020년에는 과열된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다주택자와 법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취득세 중과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에 *AIT* 변수는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취득세 세율이 종전보다 대폭 인상됨에 따라 시행일인 2020.8.12.을 기준으로 이전 1개월, 이전 2개월, 그리고 이전 3개월에 해당하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를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다주택자들이 주택의 취득에 대해 증가되는 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시행일 이전에 매매한다면 *AIT* 변수의 계수부호는 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21.8.11.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의 실질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취득세 부과 시 개인이든 법인이든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가격을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제도에 대한 입법예고가 이루어졌다. 이에 *TBA* 변수는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한 관심변수로 해당 입법예고일인 2021.8.11. 이후 1개월, 이후 2개월, 그리고 이후 3개월에 해당하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가진다. 이러한 제도가 발표된 후 2022년까지 유예기간을 두었기에 취득세 세부담이 더욱 증가하기 전 유예기간동안 주택의 매매건수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2021.8.11. 취득세 과세표준 제도 변경의 입법예고일 이후 주택의 매매가 증가한다면 *TBA* 변수의 계수부호는 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유예기간을 거쳐 취득세 과세표준 제도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고, 이는 2023.1.1.에 시행되었다. 이에 *TBC* 변수는 가설 4를 검증하기 위한 관심변수로 해당 시행일인 2023.1.1. 이후 1개월, 이후 2개월, 그리고 이후 3개월에 해당하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갖는다. 종전에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에서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였으나 이후 2023.1.1.부터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사실상 취득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면서 취득세 세부담이 증가한 것이다. 따라서 취득세 과세표준 제도 변경 이후에는 앞서 유예기간과는 반대로 주택의 매매건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가설 4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 제도 변경의 시행일 이후 매매가 감소한다면 *TBC* 변수의 계수부호는 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제변수의 경우 정운오・박성욱・이성실(2008)에서 *ESTATE* 변수를, 정운오・박성욱(2009)에서 *HOUSE, INT, KOSPI, GRDP* 변수를 참고하였다. 부동산 시장변수로는 주택매매가격종합지수*(ESTATE)*와 전국 주택건설 인허가실적*(HOUSE)*, 부동산과 관련된 금융정책 변수로는 예금은행 지역별 주택담보대출 규모*(MG)*를 식(1)에 포함한다. 그리고 금융자산 관련 변수로 CD금리 91일물*(INT)*과 종합주가지수*(KOSPI)*를 사용하며, 거시경제적인 통제변수로 지역내총생산*(GRDP)*도 사용한다. 이러한 6가지 통제변수는 변수의 특성을 고려하여 모두 자연로그를 적용한 값을 이용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므로 부동산 소유자들은 양도보다 증여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가격이 높을수록 주택 매매는 감소할

것이고 주택매매가격종합지수*(ESTATE)* 변수는 음(−)의 부호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주택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거래가 증가하게 되므로 전국 주택건설 인허가실적*(HOUSE)* 변수는 양(+)의 부호로 예상된다. 또한 대출규제는 주택 매매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기에 주택담보대출규모가 감소하면 매매거래가 감소할 것이므로 전국 주택담보대출규모*(MG)* 변수의 계수 값은 양(+)로 예상된다.

금융자산과 관련된 CD금리 91일물*(INT)* 및 종합주가지수*(KOSPI)*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금리가 상승하면 전반적으로 자산시장이 침체되고, 주택 시장의 침체에도 영향을 미쳐 매매거래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CD금리 91일물*(INT)* 변수의 회귀계수는 음(−)으로 예상된다. 또한 종합주가지수가 높으면 시중자금이 부동산에서 금융시장으로 이전되기에 매매거래가 줄어들 것이므로 *KOSPI*의 회귀계수는 음(−)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각 시도별로 경제활동으로 부가가치가 얼마나 발생되었는지 나타내는 지역내총생산*(GRDP)*이 클수록 매매거래도 늘어날 것이므로 회귀계수 값은 양(+)으로 예상된다.

앞서 취득세 세율 및 과세표준의 변화가 17개 광역시도의 월별 매매등기건수*(TRANS)*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고, 지역별 데이터를 확보하였기 때문에 더 나아가 이를 수도권 및 비수도권으로 나누어서 검증하고자 한다. 이에 식(1)의 *ESTATE, HOUSE, MG, GRDP* 변수 대신 식(2)에서는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주택매매가격종합지수[*MESTATE(NMESTATE)*]와 주택건설 인허가실적[*MHOUSE(NMHOUSE)*], 주택담보대출 규모[*MMG(NMMG)*], 그리고 지역내총생산[*MGRDP (NMGRDP)*] 변수로 변환하여 검증하며 그 이외는 식(1)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
\begin{aligned}
TMP(TNMP)_{i,t} = {} & \beta_0 + \beta_1 ADT_{i,j,t} + \beta_2 AIT_{i,j,t} + \beta_3 TBA_{i,j,t} + \beta_4 TBC_{i,j,t} \\
& + \beta_5 MESTATE(NMESTATE)_{i,t} + \beta_6 MHOUSE(NMHOUSE)_{i,t} \\
& + \beta_7 MMG(NMMG)_{i,t} + \beta_8 INT_t + \beta_9 KOSPI_t \\
& + \beta_{10} MGRDP(NMGRDP)_{i,t} + \varepsilon_{i,t} \qquad \text{식(2)}
\end{aligned}
$$

여기서,

$TMP(TNMP)_{i,t}$ = t월의 수도권(비수도권) 부동산 매매등기건수(단위 : 동(호)수) ;

$ADT_{i,j,t}$ = 2013.12.26. 이후 1개월 또는 이전 2개월 또는 이전 3개월은 1, 아니면 0(j=1,2,3) ;

$AIT_{i,j,t}$ = 2020.8.12. 이전 1개월 또는 이전 2개월 또는 이전 3개월은 1, 아니면 0(j=1,2,3) ;

$TBA_{i,j,t}$ = 2021.8.11. 이후 1개월 또는 이후 2개월 또는 이후 3개월은 1, 아니면 0(j=1,2,3) ;

$TBC_{i,j,t}$ = 2023.1.1. 이후 1개월 또는 이후 2개월 또는 이후 3개월은 1, 아니면 0(j=1,2,3) ;

$MESTATE(NMESTATE)_{i,t}$ = t월의 수도권(비수도권) 주택매매가격지수의 자연로그 값(단위 : 2021.6=100) ;

$MHOUSE(NMHOUSE)_{i,t}$ =t월의 수도권(비수도권) 주택건설 인허가실적의 자연로그 값(단위 : 호, 가구수 기준) ;
$MMG(NMMG)_{i,t}$ =t월의 수도권(비수도권) 예금은행 지역별 주택담보대출 규모의 자연로그 값(단위 : 십억원) ;
INT_t =t월의 CD(91일물)금리의 자연로그 값(단위 : 연%) ;
$KOSPI_t$ =t월의 종합주가지수의 자연로그 값(단위 : 1980.1.4=100) ;
$MGRDP(NMGRDP)_{i,t}$ =t월의 수도권(비수도권) 시도별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의 자연로그 값(단위 : 백만원) ;
$\varepsilon_{i,t}$ =잔차항.

Ⅴ. 실증분석결과

1. 기술통계량

다음의 <표 6>에서 종속변수인 17개 광역시도의 월별 평균 매매등기건수*(TRANS)*는 4471.03건이다. 또한 분석기간 동안 광역시도의 월별 주택매매가격지수의 자연로그 값*(ESTATE)*은 평균 4.52이며, 전국 주택건설 인허가실적의 자연로그 값*(HOUSE)*은 평균 9.13, 광역시도의 월별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규모의 자연로그 값*(MG)*은 평균 9.40로 나타났다. 또한, 월별 평균 CD금리 91일물의 자연로그 값*(INT)*은 0.54, 월별 평균 종합주가지수*(KOSPI)*는 7.72로 나타났다. 그리고 광역시도의 연별 지역내총생산*(GRDP)*은 평균 18.04로 나타났다.

〈표 6〉 기술통계량

Variable	N	Mean	Std	Min	Q1	Median	Q3	Max
TRANS	2,210	4471.03	5083.66	182.00	1954.00	2814.50	4615.00	26662.00
ADT	2,210	0.02	0.15	0.00	0.00	0.00	0.00	1.00
AIT	2,210	0.02	0.15	0.00	0.00	0.00	0.00	1.00
TBA	2,210	0.02	0.15	0.00	0.00	0.00	0.00	1.00
TBC	2,210	0.02	0.15	0.00	0.00	0.00	0.00	1.00
ESTATE	2,210	4.52	0.11	4.20	4.46	4.56	4.60	4.66
HOUSE	2,210	9.13	1.25	5.47	8.43	9.27	9.93	11.86
MG	2,210	9.40	1.19	6.94	8.62	9.08	10.02	12.32

〈표 6〉 기술통계량 (계속)

Variable	N	Mean	Std	Min	Q1	Median	Q3	Max
INT	2,210	0.54	0.46	−0.46	0.33	0.50	0.97	1.38
KOSPI	2,210	7.72	0.14	7.53	7.60	7.66	7.81	8.07
GRDP	2,210	18.04	0.90	15.97	17.59	18.07	18.46	20.03

주1) 위의 표본은 월별 전국 매매등기건수이며 분석기간은 2013년부터 2023년 10월까지이다.
주2) 변수의 정의
$TRANS_{i,t}$ =i지역, t월의 전국 주택매매등기건수(단위 : 동(호)수) ;
$ADT_{i,j,t}$ =2013.12.26. 이후 1개월, 이전 2개월, 이전 3개월은 1, 아니면 0(j=1,2,3) ;
$AIT_{i,j,t}$ =2020.8.12. 이전 1개월, 이전 2개월, 이전 3개월은 1, 아니면 0(j=1,2,3) ;
$TBA_{i,j,t}$ =2021.8.11. 이후 1개월, 이후 2개월, 이후 3개월은 1, 아니면 0(j=1,2,3) ;
$TBC_{i,j,t}$ =2023.1.1. 이후 1개월, 이후 2개월, 이후 3개월은 1, 아니면 0(j=1,2,3) ;
$ESTATE_{i,t}$ =i지역, t월의 전국 주택매매가격지수의 자연로그 값(단위 : 2021.6=100) ;
$HOUSE_{i,t}$ =i지역, t월의 전국 주택건설 인허가실적의 자연로그 값(단위 : 호, 가구수 기준) ;
$MG_{i,t}$ =i지역, t월의 예금은행 지역별 주택담보대출 규모의 자연로그 값(단위 : 십억원) ;
INT_t =t월의 CD(91일물)금리의 자연로그 값(단위 : 연%) ;
$KOSPI_t$ =t월의 종합주가지수의 자연로그 값(단위 : 1980.1.4=100) ;
$GRDP_{i,t}$ =i지역, t년의 시도별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의 자연로그 값(단위 : 백만원).
주3) ADT, AIT, TBA, TBC 변수는 이전(또는 이후) 1개월, 이전(또는 이후) 2개월, 이전(또는 이후) 3개월을 회귀분석하였으나 본 표에서는 이전(또는 이후) 3개월만 제시한다.

2. 회귀분석결과

본 연구는 취득세율 및 과세표준의 변화가 부동산 매매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때 종속변수는 이산변수인 매매등기건수이므로 계량경제학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음이항회귀분석(Negative Binomial Regression)을 이용한다. 이를 바탕으로 가설 1부터 가설 4까지 검증하기 위해 분석한 다음의 <표 7>은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한 이전(또는 이후) 1개월, 이전(또는 이후) 2개월, 그리고 이전(또는 이후) 3개월에 대한 각각의 회귀분석결과이다. 또한 이를 구체적으로 수도권 및 비수도권으로 나누어서 검증함에 따라 <표 8>은 수도권 및 비수도권에 대한 이전(또는 이후) 1개월, 이전(또는 이후) 2개월, 이전(또는 이후) 3개월에 대한 회귀분석결과이다.

〈표 7〉 음이항 회귀분석결과(Negative Binomial)

Variable	이전(또는 이후) 1개월		이전(또는 이후) 2개월		이전(또는 이후) 3개월	
	β	(Chi-sq)	β	(Chi-sq)	β	(Chi-sq)
INTERCEPT	4.255	47.65***	4.082	41.98***	4.256	43.77***
ADT	**0.080**	**0.60**	**0.206**	**7.72*** **	**0.265**	**18.92*** **
AIT	**0.172**	**2.82***	**0.164**	**4.91** **	**0.055**	**0.80**
TBA	**0.133**	**1.67**	**0.111**	**2.24**	**0.099**	**2.57**
TBC	**−0.435**	**17.04*** **	**−0.239**	**9.74*** **	**−0.068**	**1.12**
ESTATE	−0.808	50.60***	−0.809	50.59***	−0.807	50.03***
HOUSE	0.068	56.77***	0.072	63.08***	0.078	72.79***
MG	0.154	96.03***	0.155	97.09***	0.156	98.12***
INT	−0.413	346.63***	−0.407	313.48***	−0.426	322.42***
KOSPI	−0.824	101.77***	−0.798	92.14***	−0.815	92.89***
GRDP	0.664	897.80***	0.659	882.20***	0.653	862.89***
N of obs.	2,210					

주1) 변수의 정의는 <표 6> 참조
$ADT_{i,j,t}$ =2013.12.26. 이후 1개월, 이전 2개월, 이전 3개월은 1, 아니면 0(j=1,2,3) ;
$AIT_{i,j,t}$ =2020.8.12. 이전 1개월, 이전 2개월, 이전 3개월은 1, 아니면 0(j=1,2,3) ;
$TBA_{i,j,t}$ =2021.8.11. 이후 1개월, 이후 2개월, 이후 3개월은 1, 아니면 0(j=1,2,3) ;
$TBC_{i,j,t}$ =2023.1.1. 이후 1개월, 이후 2개월, 이후 3개월은 1, 아니면 0(j=1,2,3) ;
주2) 계수 옆의 수치는 각 변수별 회귀계수의 Chi-Square 값이다.
주3) ***, **, *는 1%, 5%, 10% 수준에서 각각 유의하다.
주4) 2013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30개월간 월별 전국 자료를 표본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표본수는 2,210개이다.

먼저 가설 1에 따라 취득세율 인하의 시행일인 2013.12.26. 이후 1개월, 이후 2개월, 이후 3개월*(ADT)* 각각의 기간에 부동산 매매거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행일 이후 1개월에서는 부동산 매매거래에 유의할 만한 변화가 없으며, 시행일 이후 2개월과 이후 3개월에서는 모두 매매거래가 1% 수준에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취득세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주택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 9억원 초과 또는 다주택자의 경우 4%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개정 이후 보유주택 수와는 상관없이 주택가격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 그리고 9억원 초과의 경우에는 3%로 영구적으로 인하되었다. 이처럼 취득세율 인하가 시행됨에 따라 주택 수요자의 거래비용이 줄어들어 시행일인 2013.12.26. 이후 2개월과 이후 3개월에서 부동산 매매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매매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회복되어 취득세 등의 지방세입도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부동산 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다주택자와 법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취득세 중과제도가 도입되어 최고세율이 12%가 되었다. 이에 취득세율 인상의 시행일인 2020.8.12. 이전 1개월, 이전 2개월, 이전 3개월*(AIT)* 각각의 기간 동안 매매거래가 증가하였는지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설 2에 따라 시행일 이전 1개월에서는 매매거래가 10% 수준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시행일 이전 2개월에서는 매매거래가 5% 수준에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2020.8.12.에 개정된 내용은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취득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1가구 2주택부터 8% 세율이 적용되었고, 3주택부터는 12%로 조정된 것이다. 따라서 다주택자들은 주택의 취득에 대해 증가되는 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시행일 이전에 매매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취득세율의 변화 외에도 취득세 과세표준 제도도 변경되었다. 종전에는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에서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였으나 과세대상의 실질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취득세 부과 시 사실상 취득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고, 이에 대한 입법예고가 2021.8.11.에 이루어졌다. 이후 취득세 과세표준 제도의 변경에 대한 홍보와 함께 취득가격과 관련된 자료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소요될 시간을 고려하여 2022년까지 유예기간을 두었다. 이에 가설 3에 따라 입법예고일인 2021.8.11. 이후 1개월, 이후 2개월, 이후 3개월*(TBA)* 각각의 기간 동안 매매거래가 증가하였는지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입법예고일 이후 매매거래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취득세 세부담이 더욱 증가하기 전 유예기간 동안에 주택의 매매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유예기간이 다소 길어서 입법예고일 이후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유예기간 후에 2023.1.1. 취득세 과세표준 제도 변경에 대한 시행이 이루어졌다. 이에 가설 4에 따라 2023.1.1. 이후 1개월, 이후 2개월, 이후 3개월*(TBC)* 각각의 기간 동안 매매가 감소하였는지 실증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시행일 이후 1개월과 이후 2개월에서 매매가 1% 수준에서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제도가 시행된 후 사실상 취득한 가격으로 과세표준이 변경되면서 취득세 세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앞서 유예기간과 반대로 부동산 매매거래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통제변수를 보면 주택매매가격지수*(ESTATE)*의 경우 취득세 관련 주요 사건일 이전(또는 이후) 1개월, 이전(또는 이후) 2개월, 이전(또는 이후) 3개월 모두 부동산 매매건수와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주택 소유자들은 양도보다 증여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기에 부동산 가격이 높을수록 매매

거래가 감소한다고 예측한 결과와 같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전국 주택건설 인허가실적*(HOUSE)*은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대로 모든 기간동안 매매건수와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전국 주택담보대출 규모*(MG)*는 취득세 관련 주요 사건일 이전(또는 이후) 1개월, 이전(또는 이후) 2개월, 이전(또는 이후) 3개월 모두 매매건수와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이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관련 금융정책이 강화되면 주택담보대출규모가 감소하여 매매거래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 것과 일관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금융자산 관련 변수인 CD금리 91일물*(INT)*도 금리가 상승하면 자산시장이 침체되고 주택 시장이 침체되면서 매매거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대로 취득세 관련 주요 사건일 이전(또는 이후) 1개월, 이전(또는 이후) 2개월, 이전(또는 이후) 3개월 모두 매매등기건수와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결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종합주가지수*(KOSPI)*가 높으면 시중자금이 부동산에서 금융시장으로 이전되기에 매매거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회귀분석 결과에서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도별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GRDP)*이 클수록 매매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대로 취득세 관련 주요 사건일 이전(또는 이후) 1개월, 이전(또는 이후) 2개월, 이전(또는 이후) 3개월 모두 매매등기건수와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택 가격과 공급의 증가, 주택담보대출과 CD금리 및 종합주가지수, 그리고 지역내총생산 모두 매매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식(2)에 따라 취득세 관련 주요 사건일 이전(또는 이후) 1개월, 이전(또는 이후) 2개월, 이전(또는 이후) 3개월에 대한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회귀분석결과를 <표 8>에 제시한다.

〈표 8〉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음이항 회귀분석결과(Negative Binomial)

[Panel A] 수도권의 음이항 회귀분석결과

Variable	이전(또는 이후) 1개월		이전(또는 이후) 2개월		이전(또는 이후) 3개월	
	β	(Chi−sq)	β	(Chi−sq)	β	(Chi−sq)
INTERCEPT	−0.304	0.02	−0.320	0.02	−0.121	0.00
ADT	**−0.267**	**2.32**	**−0.113**	**0.80**	**0.040**	**0.14**
AIT	**0.264**	**2.35**	**0.299**	**5.71****	**0.208**	**3.91****
TBA	**0.115**	**0.44**	**0.107**	**0.72**	**0.027**	**0.07**
TBC	**−0.278**	**2.43**	**−0.068**	**0.28**	**0.135**	**1.52**
MESTATE(NMESTATE)	−1.931	35.40***	−2.003	37.75***	−1.996	36.88***

〈표 8〉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음이항 회귀분석결과(Negative Binomial) (계속)

Variable	이전(또는 이후) 1개월		이전(또는 이후) 2개월		이전(또는 이후) 3개월	
	β	(Chi-sq)	β	(Chi-sq)	β	(Chi-sq)
MHOUSE(NMHOUSE)	0.070	16.73***	0.075	18.19***	0.089	25.13***
MMG(NMMG)	−0.860	34.94***	−0.858	34.57***	−0.846	33.31***
INT	−0.581	261.10***	−0.569	233.36***	−0.589	233.58***
KOSPI	0.123	0.57	0.172	1.08	0.175	1.08
MGRDP(NMGRDP)	1.380	92.58***	1.374	91.11***	1.347	86.89***
N of obs.	390					

[Panel B] 비수도권의 음이항 회귀분석결과

Variable	이전(또는 이후) 1개월		이전(또는 이후) 2개월		이전(또는 이후) 3개월	
	β	(Chi-sq)	β	(Chi-sq)	β	(Chi-sq)
INTERCEPT	2.359	12.27***	2.151	9.76***	2.369	11.35***
ADT	**0.136**	**1.44**	**0.252**	**9.68*** **	**0.292**	**19.19*** **
AIT	**0.195**	**3.03***	**0.180**	**4.94****	**0.067**	**0.98**
TBA	**0.135**	**1.43**	**0.113**	**1.93**	**0.125**	**3.46***
TBC	**−0.453**	**15.44*** **	**−0.257**	**9.46*** **	**−0.093**	**1.73**
MESTATE(NMESTATE)	−0.680	28.82***	−0.682	29.05***	−0.689	29.52***
MHOUSE(NMHOUSE)	0.067	46.47***	0.071	52.17***	0.076	58.62***
MMG(NMMG)	0.212	146.75***	0.213	148.51***	0.214	149.25***
INT	−0.370	231.83***	−0.363	208.53***	−0.382	215.50***
KOSPI	−0.854	95.05***	−0.824	85.36***	−0.846	86.86***
MGRDP(NMGRDP)	0.721	866.89***	0.716	857.52***	0.713	846.79***
N of obs.	1,820					

주1) 변수의 정의

$TMP(TNMP)_{i,t}$ =t월의 수도권(비수도권) 부동산 매매등기건수(단위 : 동(호)수) ;

$ADT_{i,t}$ =2013.12.26. 이후 1개월은 1, 아니면 0 ;

$AIT_{i,t}$ =2020.8.12. 이전 1개월은 1, 아니면 0 ;

$TBA_{i,t}$ =2021.8.11. 이후 1개월은 1, 아니면 0 ;

$TBC_{i,t}$ =2023.1.1. 이후 1개월은 1, 아니면 0 ;

$MESTATE(NMESTATE)_{i,t}$=t월의 수도권(비수도권) 주택매매가격지수의 자연로그 값(단위 : 2021.6=100) ;

$MHOUSE(NMHOUSE)_{i,t}$ =t월의 수도권(비수도권) 주택건설 인허가실적의 자연로그 값(단위 : 호, 가구수 기준) ;

$MMG(NMMG)_{i,t}$ =t월의 수도권(비수도권) 예금은행 지역별 주택담보대출 규모의 자연로그 값(단위 :

십억원) ;
INT_t =t월의 CD(91일물)금리의 자연로그 값(단위 : 연%) ;
$KOSPI_t$ =t월의 종합주가지수의 자연로그 값(단위 : 1980.1.4=100) ;
$MGRDP(NMGRDP)_{i,t}$=t월의 수도권(비수도권) 시도별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의 자연로그 값(단위 : 백만원).
주2) 계수 옆의 수치는 각 변수별 회귀계수의 Chi-Square 값이다.
주3) ***, **, *는 1%, 5%, 10% 수준에서 각각 유의하다.

먼저 주택 취득에 대한 세율의 영구 인하의 시행일인 2013.12.26. 이후 1개월, 이후 2개월, 이후 3개월*(ADT)* 각각의 기간에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주택 매매거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한 가설 1-1과 가설 1-2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증분석결과 수도권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비수도권에서는 시행일 이후 2개월과 이후 3개월에서는 모두 매매건수가 1% 수준에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득세 개정 이후 주택가격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 그리고 9억원 초과의 경우에는 3%로 영구적으로 인하됨에 따라 주택 수요자의 거래비용이 줄어들어 제도 시행일인 2013.12.26. 이후 2개월과 이후 3개월에서 주택의 매매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특히 표본에서 비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에 비수도권 매매의 유의한 결과가 전체 매매거래의 결과에 반영되어 전체적으로 매매건수가 증가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다.

반면, 주택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다주택자와 법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득세 중과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주택 취득에 대한 세율 인상의 시행일인 2020.8.12. 이전 1개월, 이전 2개월, 이전 3개월*(AIT)* 각각의 기간 동안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매매가 증가하였는지 조사한 가설 2-1과 가설 2-2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전 1개월에서는 비수도권에서만 10%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이 나타났으며, 이전 2개월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5% 수준에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전 3개월에서는 수도권에서 5% 수준에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1가구 2주택부터 8%, 3주택부터는 12%로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취득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증가되는 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제도 시행일 이전에 매매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과세대상의 실질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사실상 취득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일인 2021.8.11. 이후 1개월, 이후 2개월, 이후 3개월*(TBA)*에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매매가 증가하였는지 조사한 가설 3-1과 가설 3-2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입법예고일 이후 3개월에서만 비수도권에서 매매가 10% 수준에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예기간이 다소 길었기 때문에 주요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입

법예고일 이후 1개월 및 이후 2개월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유예기간을 거쳐 2023.1.1. 취득세 과세표준 제도 변경에 대한 시행이 이루어졌다. 시행일 이후 1개월, 이후 2개월, 이후 3개월*(TBC)* 기간 동안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매매가 감소하였는지 조사한 가설 4－1과 가설 4－2에 대한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행일 이후 1개월과 이후 2개월에서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매거래가 1% 수준에서 유의하게 감소하므로 주요 분석 결과와 질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통제변수의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식(2)의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주택매매가격종합지수[*MESTATE(NMESTATE)*]와 CD금리 91일물*(INT)*의 경우는 식(1)과 마찬가지로 취득세 관련 주요 사건일 이전(또는 이후) 1개월, 이전(또는 이후) 2개월, 이전(또는 이후) 3개월 모두 매매등기건수가 1% 수준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반면,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주택건설 인허가실적[*MHOUSE(NMHOUSE)*]과 지역내총생산[*MGRDP(NMGRDP)*]은 모든 기간동안 매매등기건수와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이 나타나서 주택 공급이 증가하면 주택 거래도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주택담보대출 규모[*MMG(NMMG)*]는 식(1)의 주요 분석결과와 달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취득세 관련 주요 사건일 이전(또는 이후) 1개월, 이전(또는 이후) 2개월, 이전(또는 이후) 3개월 모두 매매건수가 1% 수준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지만, 비수도권에서는 반대로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한편 종합주가지수*(KOSPI)*의 경우 수도권과 달리 비수도권에서만 모든 기간동안 매매등기건수가 1% 수준에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주택 가격 및 공급의 증가, 대출과 CD금리 및 종합주가지수, 그리고 지역내총생산 변수 모두 매매거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Ⅵ. 결 론

정부의 정책은 부동산 시장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므로 한국부동산원 통계시스템의 17개 광역시도의 월별 매매등기건수 자료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주택의 유상취득에 대한 취득세율 및 과세표준 변화가 부동산 매매거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2013년 정부는 주택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법정취득세율을 영구적으로 인하하도록 세법을 개정하였다. 종전에는 9억원 이하의 경우 2%, 9억원 초과의 경우 4%였으나 개정 후 취득한 주택 가격에 대비하여 1～3%로 세율이 인하된 것이다. 이는 2013.8.28. 이후 거래된

주택까지 소급하여 적용되었으며, 실증분석결과 2013.12.26. 시행일 이후 2개월과 이후 3개월에서 매매거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 취득에 대한 세율 인하가 시행됨에 따라 주택 수요자의 거래비용이 줄어들어 시행일 이후에 매매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이를 수도권 및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검증한 결과 수도권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비수도권에서 시행일 이후 2개월과 이후 3개월에서 모두 매매거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본에서 비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에 비수도권 매매거래의 유의한 결과가 전국 매매거래의 결과에 반영되어 전체적으로 매매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유추 해석할 수 있다.

이와 달리, 2020.8.12.에는 과열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주택자와 법인사업자들의 주택 취득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종전에 4주택 이상에서만 적용하였던 중과세율 4%를 확대하면서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로 세분화하여 세율이 적용되었다. 이에 대한 실증분석결과 세율 인상의 시행일인 2020.8.12. 이전 1개월과 이전 2개월에서 매매거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주택자들이 주택의 취득에 대해 증가되는 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수도권 및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검증한 결과를 살펴보면, 수도권에서는 세율 인상의 시행일인 2020.8.12. 이전 2개월과 이전 3개월에서, 비수도권에서는 이전 1개월과 이전 2개월에서 매매거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취득세 과세대상의 실질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취득세 부과 시 사실상 취득한 가격을 과세표준에 적용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고, 이에 대한 입법예고가 2021.8.11.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제도가 발표된 후 2022년까지 유예기간을 두었다. 실증분석결과 입법예고일 이후 매매거래가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예기간이 다소 길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수도권 및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검증한 결과 입법예고일 이후 3개월에서만 비수도권에서 매매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예기간 후에 2023.1.1. 취득세 과세표준 제도 변경에 대한 시행이 이루어졌고, 실증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시행일 이후 1개월과 이후 2개월에서 매매거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실상 취득한 가격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이 변경되면서 세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앞서 유예기간과 반대로 부동산 매매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수도권 및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취득세 과세표준의 변화가 매매거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면 주요 분석 결과와 질적으로 유사하게 시행일 이후 1개월과 이후 2개월에서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매거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취득세율 및 과세표준의 변화가 부동산 매매거래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분석한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

참고문헌

임대봉. 2014. “주택거래량과 주택가격에 관한 연구－지방세 (취득세) 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부동산학보 제58권 : 195－208.

임상빈・김병남. 2021. “법인 주택 과세강화 정책 효과 분석－6.17 및 7.10 부동산 조세정책 효과분석을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제38권 제3호 : 91－114.

정운오・박성욱・이성실. 2008. “종합부동산세제 및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의 변화가 부동산 증여에 미친 영향”. 세무학연구 제25권 제4호 : 29－51.

정운오・박성욱. 2009. “부동산세제의 강화가 부동산 매매거래에 미친 영향”. 경영학연구 제38권 제1호 : 269－293.

한재명・유태현. 2011. “거래세율 인하가 주택거래량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제25권 제2호 : 229－270.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국토교통통계누리 http://stat.molit.go.kr

국회예산정책처 https://www.nabo.go.kr/

한국부동산원 통계시스템 https://www.reb.or.kr/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행정안전부.『2023 지방세통계연감』, 2023.10.31.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1.8.10.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지원 강화”.

A Study on the Impact of Increases or Decreases in the Acquisition Tax Rate on Real Estate Sales Transactions

Sung Ook Park* · Jong Tak Lee** · Seo Hyun Kim***

<Abstract>

When housing transactions become overheated or stagnant,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policies to increase or decrease real estate-related tax rates as a measure to stabilize or revitalize the market. As these policies are implemented, a pattern of decreasing and then increasing real estate sales transactions repeatedly appears in the market, indicating that real estate policies can be seen as having a sensitive impact on the market.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policies analyzed in this study, which focuses on acquisition tax rates, are as follows. First, in 2013,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amended the tax law to permanently reduce the statutory acquisition tax rate as a measure to revitalize the real estate market. In August 2020, during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amendments were also made regarding the acquisition of housing by multiple homeowners and corporate entities. Subsequently, in August 2021, a legislative notice was issued to apply the actual acquisition price as the tax base when imposing acquisition tax, in order to reflect the real value of the taxable acquisition. After this system was announced, a grace period was set until 2022,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change to the acquisition tax base system took place in January 2023 during the Yoon Suk-yeol administration.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impact on real estate sales transactions before the acquisition tax rate was reduced or increased. Specifically, following the permanent reduction of the statutory acquisition tax rate in 2013, an increase in real estate sales transactions was observed in the two months after the implementation date on December 26, and in the subsequent three months. This indicates that the reduction in the housing acquisition tax rate led to a decrease in transaction costs for homebuyers, resulting in an increase in real estate sales transactions after the

* Professor, Department of Accounting and Taxation, School of Management, Kyung Hee University, sopark@khu.ac.kr, First Author

** Ph.D., Department of Accounting and Taxation, School of Management, Kyung Hee University, Tax Accountant, jtltax@naver.com, Corresponding Author

*** Ph.D. Candidate, Department of Accounting and Taxation, School of Management, Kyung Hee University, ksh2019@khu.ac.kr, Co-author

implementation date. Meanwhile, an increase in real estate sales transactions was observed in the one month and two months prior to the implementation date of the acquisition tax rate increase on housing acquisitions by multiple homeowners and corporate entities on August 12, 2020. This can be interpreted as a result of multiple homeowners attempting to avoid the increased tax burden on housing acquisitions.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d whether changes in the acquisition tax base affected real estate sales transactions. On August 11, 2021, a legislative notice was issued to apply the actual acquisition price as the tax base when imposing acquisition tax in order to reflect the real value of the taxable acquisition.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period following this legislative notice showed that there was no increase in real estate sales transactions. This is presumed to be because the grace period until 2022 was relatively long after the system was announced. Additionally, the implementation of the change to the acquisition tax base took place on January 1, 2023, after the grace period. An empirical analysis of this period showed a decrease in real estate sales transactions in the one month and two months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date. This can be seen as a result of the increased tax burden due to the change in the acquisition tax base to the actual acquisition price, leading to a decrease in real estate sales transactions.

Furthermore, this study, by securing regional data, divided the 17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into the metropolitan area and non－metropolitan areas to verify the impact of changes in the acquisition tax rate and tax base on the monthly number of real estate sales transactions. The results showed differential impacts between the metropolitan area and non－metropolitan areas. In this way, the study contributes by empirically analyzing the impact of reductions or increases in the acquisition tax rate on real estate sales transactions and by conducting a detailed analysis divided into the metropolitan area and non－metropolitan areas.

<Key words> Acquisition tax, Tax rate, Tax base, Real Estate sales transactions

제 12 분과

한국리츠협회 특별세션

장소 : 120호 사회자 : **유호림 교수** (강남대)

시 간	발표논문 제목	저자 및 발표자*	토론자
16:40 ~ 18:10	임대주택리츠 주거안정성 확보방안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중심으로	노희천 (숭실대) **김민희*** (숭실대) 김형준 (법무법인 지평)	**선우희연** (세종대)
	리츠의 배당가능이익 관련 세무상 이슈 및 개선방안	신일항 (가천대) **문태곤*** (연세대)	**조선애** (단국대)
	리츠활성화를 위한 배당유보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연구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김완용*** (한양사이버대)	**현지원** (서울과학기술대)

임대주택리츠 주거안정성 확보방안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중심으로

노 희 천 · 김 민 희 · 김 형 준
(숭실대학교) (숭실대학교) (법무법인 지평)

임대주택리츠 주거안정성 확보방안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중심으로

노희천* · 김민희** · 김형준***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주거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리츠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기대효과를 추정함에 있다. 임대주택리츠는 투기목적을 가진 법인 사업자와는 구별되는 공공성과 투명성을 지닌 건전한 법인 사업자이다. 따라서 임대주택리츠를 활용하면 정부가 규제하는 법적 절차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장기간 영위함으로 임차인의 주거안정성 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임대주택리츠를 통하여 인구증가 및 가구수 증가 등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인한 투기적 부동산 시장을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전환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임대주택리츠는 부동산 투자에 접근이 어려운 소액투자자에게 우량 부동산에 대한 투자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일반 국민에게 부동산 간접투자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처럼 정부의 주택공급계획 및 주거안정화 정책에 부합하는 임대주택리츠임에도 종합부동산세로 인해 사업확장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임대주택리츠의 장점을 활용하여 주거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첫째 건설형 임대주택리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통하여 건설기간 중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종합부동산세 납부 개연성을 감소시켜 건설형 임대주택리츠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 둘째, 임대주택리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로 주거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여 공시가격이 낮은 소형주택만 임대주택리츠에 편입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셋째 임대주택리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임대주택리츠를 통하여 주거선호지역(서울 또는 도심지)에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일 수 있다.

임대주택리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공공성이 확보된 주택도시기금 출자로 형성된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항목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둘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대한 공시가격의 기준 상향을 제안한다. 이와 같은 방안으로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임대주택리츠, 주거안정성, 종합부동산세

* 숭실대학교 교수
** 숭실대학교 겸임교수
*** 법무법인 지평 전문위원

Ⅰ. 서 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보유 부동산 유동화를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처음 도입된 국내 리츠(REITs : Real Estate Investment Trust)는 2001년 5월 7일 부동산투자회사법을 제정하여 처음 도입되었다.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1]에 따라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주식회사이다.

우리나라 부동산 가치는 약 1경 5천조원(2022년 기준, 통계청)이며, 개발・임대 분야 매출은 연간 약 190조원(부동산원)이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에서 개발・임대・매각 등으로 막대한 이익이 창출되고 있으나 많은 자금이 소요되어 일반 국민의 참여는 사실상 어렵다.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주는 리츠는 부동산 투자에 접근이 어려운 소액투자자에게 우량 부동산에 대한 투자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일반국민에게 부동산 간접투자기회를 제공하며, 인구 증가 및 가구수 증가 등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인한 투기적 부동산시장을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전환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한다.

건설형과 매입형 임대주택리츠는 투기목적을 가진 법인 사업자와 구별됨에도 불구하고 합산배제 대상에 대한 공시가격 기준(건설형 9억원, 매입형 6억원)이 존재한다. 임대주택리츠 종합부동산세 합산은 신규 매입의 경우 6억원 미만으로 리츠사업을 설계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건설형에서 매입형으로 전환되는 경우 6~9억원일 경우, 예를 들어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토지가액이 높아 전환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임대주택리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형 임대주택리츠의 경우 건설기간 중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가능성이 있으며 가격(공시가격)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건설형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 둘째, 임대주택리츠에서 주거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일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으로 인하여 공시가격이 낮은 소형주택만 임대주택리츠에 편입되는 현상이

---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 : “부동산투자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제45조 및 제49조의2 제1항에 적합하게 설립된 회사로서 다음 각목의 회사를 말한다.
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 제49조의2 제1항 각 호의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임대주택수요가 있는 지역에 임대주택리츠를 공급하는 방안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으로 인하여 선호지역(서울 또는 도심지)에 임대주택을 공급하지 못할 위험성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임대주택리츠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세제 정비를 통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리츠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통한 민간리츠사업자 유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임대주택리츠 구조 및 현황을 검토하고, 제Ⅲ장에서는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종합부동산세 전체 구조를 확인하여 임대주택리츠의 조세정책 상의 한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Ⅳ장에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의 기대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공헌점 및 한계점을 제시한다.

Ⅱ. 임대주택리츠 구조 및 현황

1. 임대주택리츠 구조

주택리츠의 종류와 특징은 아래 <표 1>과 같다. 이 중 공공임대주택은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를 그 목표로 함(공공주택특별법 제1조)으로 일반적으로 저가주택이 공급되어 종부세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주택 평균가격이 매우 높은 서울 등에서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이슈가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최근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환급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향후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국가(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급하는 주택으로 국가(지자체)가 직접 소유하는 경우는 종부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지만 대부분 임대주택은 한국주택도시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포함한 지방공사가 소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LH나 지방공사는 법인으로 종부세 납부의 무자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표 1〉 주택리츠의 종류 및 특징

유형	주요 특징 및 운용상 장단점
공공 주택 리츠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분양주택을 건설 매입하는 리츠이다. －공공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공공분양주택 : 국민주택규모(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또는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면 임차인 등에게 ‘분양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과 ‘분양 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나누어진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받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료 및 임대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건설(매입)하는 리츠이다.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는 공공의 지원을 바탕으로 민간의 임대주택리츠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임에도, 임대주택리츠에 대한 주요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저조해 공적기금이 그 공백을 채우고 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19세 이상 일반공급은 시세의 95% 이하(총 세대수의 80% 미만 공급),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전년도 가구원 수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의 소득요건을 갖춘, 청년(19～39세),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고령자(65세 이상)인 경우 시세의 85% 이하(총 세대수의 20% 이상) 가격에 공급 하고 있다.
민간임대 리츠	공공주택리츠와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에 해당하지 않으며, 임대나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매입)하는 리츠로서 대부분 민간자본으로 일반적인 주택을 임대하게 된다.

출처 : 한국주택학회(2021) 김상진, 전재범(2023) 부동산정책연구 26쪽

임대리츠란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리츠를 말한다. <표 2>는 임대리츠의 구분을 제시하였다. 공공임대주택을 기초로 한 공공임대주택리츠의 경우 반드시 합리적인 종합부동세 부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서민 주거 안정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다양한 유형, 계층, 지역 등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민간임대리츠 활성화가 긴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민간임대리츠에 초점을 맞추어 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료 산정의 제한을 받으면서 비중이 높은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의 활성화 방안을 일차적으로 염두해 두고 논의를 하고자 한다.

〈표 2〉 임대리츠의 구분

구분	정의
공공임대리츠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리츠(주택도시기금과 LH(또는 지방공사 등)가 출자)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리츠
정비사업 임대리츠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을 매입하여 공공지원형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리츠
토지임대부 임대리츠	토지를 임차하여 공공지원형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리츠
특화형 임대리츠	역세권 등에서 소형 평형 위주(전용 60㎡이하)로 공공지원형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리츠 (도심형 소형임대주택 공급 등)
사회임대주택 임대리츠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공지원형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리츠
토지지원리츠	보유한 토지를 토지임대부 임대리츠 등에 임대하는 리츠

출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

2.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리츠 구조[2)]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이하 민특법)에 따라, 공적지원과 공공성을 연계하여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①에게 역세권② 등에 중점 공급하고 주택도시기금 출자 지원, 용적률 건축규제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은 경우에 초기임대료 등을 규제하는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출자를 받아 이루어지지만 아래(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와 같이 다양한 사업이 가능하다.

〈표 3〉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①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출자를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②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또는 이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등으로 공급되는 토지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③ 제21조 제2호에 따른 용적률을 완화 받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용적률을 완화 받아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④ 제22조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3)]

출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

2)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참조하여 정리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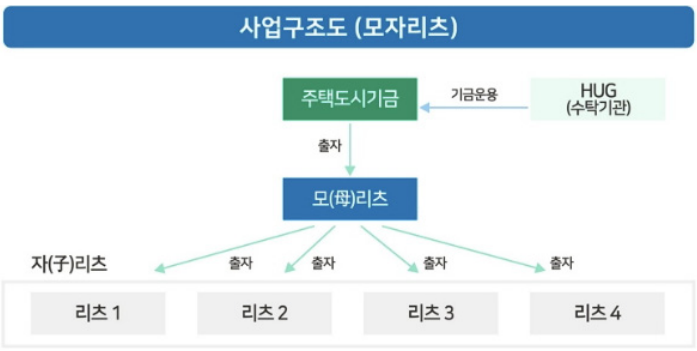
한편, 임대료는 일반공급은 시세의 95%이하로, 특별공급(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은 시세의 85%이하로 책정되어 진다.

대표적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리츠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용하고 있는 ㈜민간임대허브(종전 뉴스테이허브 포함)리츠 1~8호의 지원을 받고 있는 다수의 리츠가 있다. 즉, 임대사업자가 리츠(REITs)를 통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신청하고, 기금 수탁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리츠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심사 및 사후관리를 수행하는 구조이다.

이에따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일반적으로 모자리츠의 구조를 지닌다.

모자(母子)리츠는 주택도시기금이 '모리츠'(허브리츠)에 출자하고 '모리츠'가 다수의 '개별리츠'(자리츠)에 재출자하는 방식의 리츠구조로서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방안」('15.9.3)에 따라 기금의 리스크 분산 및 향후 母리츠 주식상장 등을 통한 기관투자자(FI)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 민간임대리츠는 '15.11월 이후부터 母子리츠 구조로 추진되어 왔다. 기본적인 사업구조도는 아래의 <그림 1>과 <그림 2>와 같다.

〈그림 1〉 민간임대주택리츠의 모자리츠 사업구조도



3) 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제1항 제10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융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자·융자 또는 보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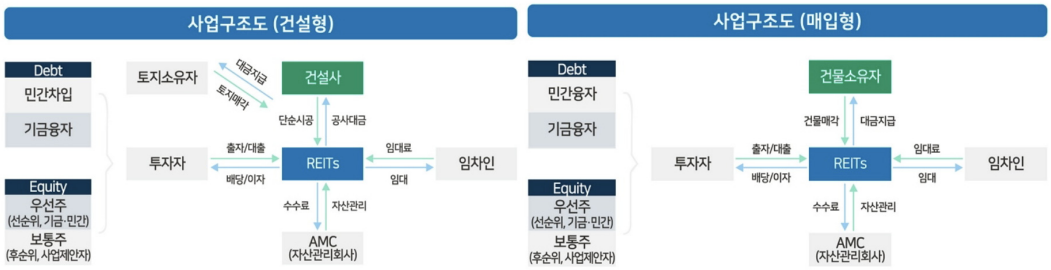
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용적률 완화

ⅲ.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융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융자(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7조)

- 사회임대주택 건설·매입자금 융자사업
- 집주인융자형 임대주택사업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또는 나목 사업에 대한 융자사업 중 주택도시기금 융자한도를 상향 적용받는 사업

한편, 각각의 자(子)리츠(모리츠의 자금을 받아 실제 운영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의 구조도(위 그림에서 리츠1, 리츠2, 리츠3, 리츠4)는 건설형과 매입형을 아래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위 모(母)리츠는 아래 도식에서 Equity 투자자 중 우선주 투자자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그림 2〉 건설형 및 매입형 임대주택리츠 사업구조도



3. 임대주택리츠 현황

가. 국내 임대주택리츠 현황

한국리츠협회의 상장 리츠 시장 현황에 따르면, 국내 운용리츠 개수는 373개이며, 운용 중인 리츠의 자산(AUM)은 95조원이다.

〈표 4〉 주택리츠 임대주택 공급세대수 추이현황 (2014~2022년)

년도	공공 임대리츠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민간 임대리츠	민간부문 (공공지원+민간)	민간부문 (%)	공급 세대수	
						세대수	증가율
2014	12,694	288	80	368	2.8%	13,062	–
2015	30,041	12,143	355	12,498	29.4%	42,539	225.7%
2016	56,008	35,237	829	36,066	39.2%	92,074	116.4%
2017	96,745	42,667	1,042	43,709	31.1%	140,454	52.5%
2018	99,995	48,794	2,089	50,883	33.7%	150,878	7.4%
2019	103,911	53,294	5,582	58,876	36.2%	162,787	7.9%
2020	103,911	61,548	7,787	69,335	40.0%	173,246	6.4%
2021	107,528	69,701	11,140	80,841	42.9%	188,369	8.7%
2022	107,528	83,612	12,735	96,347	47.3%	203,875	8.2%

출처 : 국토교통부 리츠정보시스템 김상진, 전재범(2023) 부동산정책연구 29쪽

〈표 5〉 주택리츠의 자산총계 및 리츠 수 현황 추이(2017~2022년)

(단위 : 억 원, 개수)

구분	공공임대리츠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민간임대리츠		주택리츠 합계	
	자산총계	개수	자산총계	개수	자산총계	개수	자산총계	개수
2017년	135,968.9	39	51,861.2	49	2,865.4	7	190,695.6	95
2018년	163,028.8	40	76,479.6	57	3,448.0	6	242,956.3	103
2019년	203,179.7	48	104,158.3	68	9,936.5	15	317,274.5	131
2020년	222,072.1	48	142,358.4	78	11,351.3	17	375,781.8	143
2021년	229,461.7	53	164,781.2	87	17,391.2	17	411,634.0	157
2022년	215,572.7	45	202,904.7	95	23,971.8	24	442,449.1	164

출처 : 국토교통부 리츠정보시스템

나. 주요 국가별 임대주택리츠 현황

국내 리츠 자산 규모는 약 98조원(상장리츠 8조원)으로, 지난 5년간 약 2배 성장하였으나, 최근 고금리 등으로 성장속도가 둔화되었다. 한편, 미국, 일본 등 선진 시장의 규모는 우리나라의 10배 이상이며, 주택・오피스 외 물류센터, 헬스케어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다.

〈표 6〉 리츠 주요국 시장 비교

구분	미국	일본	싱가포르	한국
도입시기	1960년	2000년	2002년	2001년
상장리츠 수	204	60	39	23
시총(조원)	1,604	152	93	8
시총/GDP(%)	6	3	20	0.3

출처 : 국토부(2024), 리츠 활성화 방안

<표 7>은 2023년 3월 말 기준의 주요 국가별 상장리츠 현황이다. 리츠제도는 미국에서 1960년에 최초 도입하였으며, 2000년 이후 자본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통합이 전 세계적인 추세로 발전하면서 부동산 유동화 및 증권화의 방편으로 리츠가 빠르게 확산되었다. 우리나라의 리츠의 경우에는 2001년 도입되었다.

〈표 7〉 주요 국가별 상장리츠 현황(2023년 3월말 기준)

구분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싱가포르
도입연도	1960년	1993년	1971년	2000년	2002년
상장리츠 수	204	36	47	60	39
시가총액	약 1,610조원	약 63조원	약 115조원	약 152조원	약 93조원
배당수익률	4.4%	5.4%	4.9%	6.8%	7.6%
Market Cap/GDP	5.9%	2.7%	6.3%	2.6%	19.7%
GDP	약 27,262조원	약 2,360조원	약 1,829조원	약 5,853조원	약 471조원

출처 : 한국리츠협회

<표 8>은 일본의 임대주택리츠 현황이다. 대부분 도심지역에 1인 중심의 소형아파트를 공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8〉 일본 임대주택리츠 현황

리츠명	상장일	배당 수익률	시가총액 (백만 ¥)	주택단지	임대 및 투자지역 특징
어드밴스 레지던스 리츠	2010.3	3.34%	478,517	271	1인, 소형아파트 82% 도쿄지역 39.2%
일본 숙박기금 리츠	2006.8	3.23%	327,256	134	싱글, 컴펙트 64% 도쿄지역 51.9%
Comforia 주거 리츠	2013.2	3.21%	258,680	157	1−2인 가구 90.5% 도쿄지역 53.9%
샘티 리츠	2015.6	4.73%	99,473	178	1인, 소형 가구 70.2% 지방 도시에 투자
스타즈 프로시드 리츠	2005.11	4.10%	63,105	107	1인−2인가구 80.0% 도쿄지역 27.3%
소계(평균)		3.72%	1,227,031	847	

출처 : 일본리츠협회(2023) 김상진, 전재범(2023) 부동산정책연구 37페이지

Ⅲ. 선행연구 검토 및 임대주택리츠 조세정책 현황

1. 선행연구 검토

가. 토지임대방식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의 임대가격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2015년 도입된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제공받았다. 또한 정부는 동 사업에 용적을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의 건축적 특례를 부여하면서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이후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지원이 공공성에 비해 과도하다는 비판으로 인해 정부는 기업형임대사업자 제도를 없애고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자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임대리츠의 운영비용을 줄여 임대리츠의 사업성을 개선함으로써 임대가격을 낮출 수 있는 토지임대방식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에, 강명기(2015)는 토지임대방식 민간임대리츠가 임대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어떠한 요인들이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실제 임대사업자에게 실현가능한 임대가격 책정을 위한 정책적 방향성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토지임대방식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의 임대가격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여 어떠한 접근방식이 임대가격 관련 정책에 유효한 방법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AHP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임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선행연구를 통해 상위계층 4개와 하위계층 요인 15개를 선정하여 전문가 설문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사업환경과 관련한 분양조건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다음으로 생산원가라고 할 수 있는 토지공급 요인과 건축관련 요인이 유사한 수준에서 임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공급자 기타요인의 영향이 가장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실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민감도 분석에서는 건축관련 요인과 분양조건 요인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층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나. 리츠 자본구조 특성에 대한 연구

김준형(2019)은 국내 리츠의 특징에 기초하여 자본조달 및 자본구조 특성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리츠의 규모 요인은 상충이론을 지지하였으며, 수익성 요인은 자본조달순서이론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투자자 특성과 관련하여, 기관투자자가 최대주주이거나 동시투자를 실행하는 경우, 리츠의 부채 사용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본조달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가산금리는 LTV 비율과 임대료수익률에 따라 일정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었으며, 담보 부동산의 특성, 주주 특성,

경제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주 특성과 관련하여, 기관투자자가 최대주주인 경우 출자비율의 증가는 리츠 운용에 안정성을 제공하여 가산금리를 하락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동시투자 및 자산운용사의 지분출자가 존재하는 경우 가산금리는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뉴스테이 리츠의 자본구조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요인 고찰로, 임대형 리츠와 운영면에서 차별성이 존재하는 뉴스테이 리츠를 대상으로 자본조달 특성이 수익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임대형 리츠의 경우 LTV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수익성이 증가하는 레버리지효과가 존재하였으나, 뉴스테이 리츠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또한, 기관투자자의 지분출자 증가는 뉴스테이 리츠 및 임대형 리츠의 운영 효율성을 증가시켜 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뉴스테이 리츠는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공성과 개발사업의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어 임대수익 기반의 임대형 리츠와 차별성이 관찰되었다.

한병호(2022)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리츠의 자본구조 특성과 부채비율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정책형 리츠의 확장성과 지속성을 위한 시사점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101개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리츠를 대상으로 현황분석, 사례분석 및 실증분석을 한 결과, 최적자본구조는 존재하지 않고 한정된 예산을 마중물로 제공하여 민간자본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수준에서 리츠의 특성과 현실 상황에 맞게 자본구조가 결정된다는 점을 밝혀냈다. 연구 결과에 따른 제언은 첫째, 각종 연기금과 민간자본의 참여확대를 통한 장기적인 지분 투자유치와 출자・융자 구조의 개선으로 위험에 따른 차등적 수익률 제시 등으로 다수의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자본조달구조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분양 전환형이 아닌 월세 기반의 안정적인 수익이 실현되는 임대주택시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리츠는 부동산 경기 하락 시 건설사의 미분양 물량을 할인 매입하는 등 주택수급은행의 기능 수행이 필요하다. 셋째, 국가・지방자치단체・지역사회 등 거버넌스(Governance) 체제구축이 필요하고, 공모・상장 등을 통한 대형화, 스폰서드 리츠 구조 등 질적 성장이 요구된다. 넷째, 개발과 운영을 분리하여 사업위험을 분산하고, 임차인 조합 등에 보통주 지분매각 등 출구전략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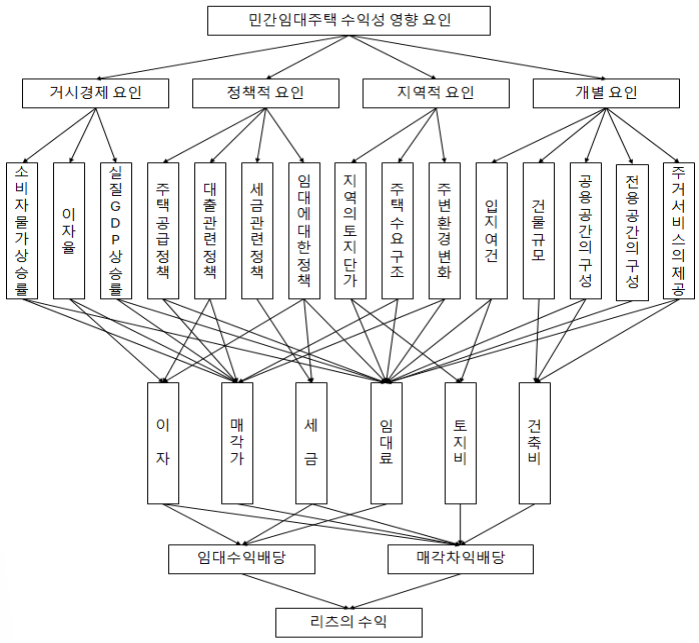
한병호와 김호철(2022)은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의 수익성, 안정성, 사업규모, 임대보증금 비중 등 재무적 요인과 사업유형이 부채비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 하였다. 연구 결과, 수익성, 안정성, 사업규모는 부채비율과 양(+)의 관계를 나타내고, 임대보증금 비중은 부채비율과 음(−)의 관계로 분석되었다. LH 택지공모사업은 여타 사업에 비해 부채비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융자, 민간의 출자, 임대보증금, 민간 융자금 순으로 자본을 조달하였다. 따라서 이 리츠는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최적자본구조가 존재하지 않고, 한정된 예산을 마중물로 제공하여 민간자본을 유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자본구조가 결정된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를 통해 주택도시기금 위주에서 연기금이나 재무적 투자자(FI)의 출자나 융자를 확대하는 방안과 출자·융자구조의 개선이 필요하고, 민간자본의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적정수준의 수익구조, 배당 가능성 제고 등이 필요함에 대해 정책적으로 제언하였다.

다. 리츠 수익성에 대한 연구

이수정(2021)은 민간임대주택 리츠의 적절한 정책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수익성 요인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2021년 9월 기준으로 설정된 모든 민간임대주택 리츠로 현황을 살펴보고, 실제 리츠에 참여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AHP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민간임대주택 리츠의 수익성 영향 요인은 <그림 3>과 같이 4개의 상위요인과 15개의 하위요인, 6개의 변수요인이 있다. 정책 제언은 첫째, 리츠가 운영수익을 배당하며 유지할 수 있도록 담보대출 대신 낮은 금리의 채권 형태의 자금 조달 제도를 보편화하고, 100세대 이상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없앤다. 둘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리츠를 적정 운영수익을 바탕으로 간접투자상품으로 만들어 일반 국민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발전시킨다. 셋째, 아파트에 대한 매입임대를 허용하고 거래세를 감면하여 상장리츠를 키우는 방향을 모색한다.

〈그림 3〉 민간임대주택 리츠 수익성 영향 요인 체계도



출처 : 이수정(2021) 박사학위 논문 37페이지

김민지(2023)는 위탁관리리츠를 통해 자금조달하여 수익용 부동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이익과 자본이익을 수익률로 산정한 리츠수익률에 거시경제변수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자체변수인 리츠수익률(GKRXINDEX, 정(+)의 효과)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되었고, 부동산심리지수 변화율(GCSI, 정(+)의 효과), 기준금리 변화율(GBR, 부(−)의 효과), 소비자물가상승률(GCPI, 부(−)의 효과), 통화량 변화율(GM2, 정(+)의 효과)의 순서대로 리츠수익률(GKRXINDEX)에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또한 소비자물가상승률(GCPI)과 부동산심리지수 변화율(GCSI)의 영향력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라. 리츠활성화에 대한 연구

김상진과 전재범(2023)은 리츠산업 발전과 임대주택공급확대 도모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민간부문 투자자와 연기금, 그리고 공제회 등의 주택리츠 투자를 유도하고, 민간부문 주택리츠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검토하였다. 민간부문 주택리츠 활성화를 위한 제언으로 첫째, 매입형 임대주택리츠는 투기성 법인과 구별이 되는 건전한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취급되어, 유형은 다르나 주택리츠이면서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등이 달리 적용됨에 따라 신규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매입형 주택리츠에 대해 건설형과 동일한 혜택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둘째, 적정수익률의 보전은 산업의 영속성을 위하여 필요함에도 주택리츠는 운용기간시 배당재원의 부족으로 배당을 시행하지 못하는 리츠가 많다. 이에, 주택임대료 인상 및 절차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셋째, 급격한 금리인상 등으로 주택의 매입수요는 줄고 임차수요는 증가추세에 있다. 이에, 미분양주택을 민간부문 주택리츠가 매입하여 운용한다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선제적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넷째, 지역주민이 주택리츠에 참여하여 특혜에 대한 논란 없이 개발이익을 지역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지역주빈 참여형 주택리츠의 도입을 제언하였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에 발맞추어 노인복지주택에 리츠가 참여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리츠의 노인복지 주택 활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신세지(2023)는 정책 및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국내 상장 리츠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리츠는 2000년도 초반에 일반 국민의 건전한 부동산 투자 기회 확대를 위하여 도입하였으나 취지와 다르게 사모리츠 중심으로 발전하며 구조적으로 성장의 한계를 보여왔다. 이에, 국내 상장리츠 시장을 본래의 도입 취지에 맞게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의 개선과 발전이 필요하다. 첫째, 정책적 측면에서 앵커리츠의 활성화, 상장 리츠 투자 시 부과되는 세금 등의 감면을 포함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고,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투자자 정보 공개의 투명성 강화, 운용 회사의 적극적인 역할 강화, 리츠 ESG 활성화와 같은 다양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2. 임대주택리츠에 적용되는 보유세 규정 현황

<표 9>는 주요 국가 리츠 부동산 관련 조세 과세방식을 살펴보았다. 한국의 임대주택리츠에 적용되는 부동산 관련 조세에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표 9〉 주요 국가 리츠 과세방식 비교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
	자기관리	위탁관리			
부동산 관련 조세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거래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	인지세
법인세율	10－25% 누진세율		21% 단일세율	23.2% 단일세율	17% 단일세율

출처 : 홍범교, 강문정, 허윤영, 부동산투자회사(REITs)과세제도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120면
신세지 석사학위논문 60페이지

<표 10>은 주택 취득세표이다.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은 12%이며, 지방교육세율은 중과세율 적용시 0.4%이다. 또한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시 농어촌특별세율은 1.0%이다.

〈표 10〉 주택 취득세표

주택	구분	취득가액	취득세율	농어촌특별세 (전용면적 85㎡초과만)	지방교육세
1주택자	6억이하		1%	0.20%	0.10%
	6억 초과 9억 이하		(취득가액×2/3억원－3)×1/100		취득세의 1/10
	9억 초과		3%		0.30%
2주택자	조정대상지역		8%	0.60%	0.40%
	조정대상 지역외	6억이하	1%	0.20%	0.10%
		6억 초과 9억 이하	(취득가액×2/3억원－3)×1/100		취득세의 1/10
		9억 초과	3%		0.30%
3주택자	조정대상지역		12%	1%	0.40%
	조정대상지역외		8%	0.60%	0.40%
4주택자 이상	조정대상지역		12%	1%	0.40%
	조정대상지역외		12%	0.60%	0.40%

<표 11>은 재산세 과세 기준표이다.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3억원 초과 시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세율을 적용한다.

〈표 11〉 재산세 과세 기준표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주택	6천만원 이하	0.10%
	1억 5천만원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억원 이하	19만 5천원+1.5억원 초과금액의 0.25%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건축물	골프장, 고급오락장	4%
	주거지역 및 지정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0.50%
	기타건축물	0.25%
나대지 등 (종합합산과세)	5천만원 이하	0.20%
	1억원 이하	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0.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0.5%
사업용토지 (별도합산과세)	2억원 이하	0.20%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0.3%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0.4%
기타토지 (분리과세)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0.07%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4%
	위 이외의 토지	0.20%

<표 12>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흐름 및 기준표이다.

〈표 12〉 종합부동산세 과세 흐름 및 기준표

세액계산흐름	주 택
공시가격	인별주택분공시가격합계(합산배제주택제외)
−	−
공제가격	9억원(1세대 1주택 12억원)
×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
과세표준	주택분 과세표준
×	×

〈표 12〉 종합부동산세 과세 흐름 및 기준표 (계속)

세액계산흐름	주 택
세율	[2주택 이하]
	3억원 이하 0.5%
	6억원 이하 0.7% (－60만)
	12억원 이하 1% (－240만)
	25억원 이하 1.3% (－600만)
	50억원 이하 1.5% (－1100만)
	94억원 이하 2% (－3600만)
	94억원 초과 2.7% (－1억180만)
	[3주택 이상]
	3억원 이하 0.5%
	6억원 이하 0.7% (－60만)
	12억원 이하 1% (－240만)
	25억원 이하 2% (－1440만)
	50억원 이하 3% (－3940만)
	94억원 이하 4% (－8940만)
	94억원 초과 5% (－1억8340만)
＝	＝
종합부동산세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	－
공제할 재산세액	9억원(1세대 1주택은 12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재산세액
＝	＝
산출세액	주택분 산출세액
－	－
세액공제	1세대 1주택자 세액 공제
	－ 고령자 세액공제(10～30%)
	－ 장기보유자 세액공제(20～40%)
－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종부세)×세부담상한율(150%)]를 초과하는 세액
＝	＝
납부할세액(합계)	주택분 결정세액＋종합합산 토지분 결정세액＋별도합산 토지분 결정세액
＋	＋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	자진납부세액

<표 13>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종류이다. 매입형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고, 건설형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허용하고 있다.

〈표 13〉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주택종류	전용면적	주택 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임대료
매입임대주택	–	전국 1호 이상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5년 이상[1]	연 증가율 5% 이하[6]
건설임대주택	149m^2 이하	전국 2호 이상	9억원 이하[5]	5년 이상[1]	연 증가율 5% 이하[6]
기존임대주택		전국 2호 이상	3억원 이하	5년 이상	
미임대 민간건설임대주택	국민주택 규모이하	–	9억원 이하[5]		
리츠・펀드 매입임대주택	149m^2 이하	비수도권 5호 이상	6억원 이하	10년 이상	
미분양 매입임대주택	149m^2 이하	비수도권 5호 이상	3억원 이하	5년 이상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 일반임대주택등[4]	–	전국 1호 이상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8년 이상[2] 10년 이상[3]	연 증가율 5% 이하
건설임대주택 중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등	149m^2 이하	전국 2호 이상	9억원 이하[5]	8년 이상[2] 10년 이상[3]	연 증가율 5% 이하

1) 2018.03.31.까지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으로 한정(2018.02.13. 단서 신설)
2) 2018.04.01.~2020.08.17.사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
3) 2020.08.18.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추가를 위한 변경신고 포함)한 경우부터 적용(2020.10.07.개정)
4) ① 개인 :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은 제외(2018.10.23. 단서 신설)
② 법인 :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이미 공고된 경우 2020.06.17.)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등을 신청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제외(2020.08.07. 단서 신설)
※ 2020.07.11.이후 종전의 민특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한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 중 아파트는 제외(2020.10.07. 단서 신설)
5) 영 시행일(2021.02.17.) 이후 신규 임대등록 주택분부터 적용(2021.02.17.개정)
6)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임대료등을 증액*하는 경우 5% 초과 가능(* 임차인 소득수준 변화 등)

Ⅳ. 임대주택리츠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종합부동산세 합산의 문제점 사례

<표 14>는 민간임대허브제4호리츠의 자회사인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현황이다. 위치적으로 지역 분포 범위가 넓어 관리가 어려움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양한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일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중대형 규모의 평형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기금승인출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분기를 기준으로 123개의 리츠가 98,384세대의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이중 서울지역을 사업장으로 하고 있는 리츠는 총 25개 리츠로 파악되며 12,081세대의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표 15>는 서울 소재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현황이다. 서울 소재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25개 중 6개가 청년주택사업으로 초소형 사업으로 보여진다. 뿐만 아니라 서울 소재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의 평형이 가장 큰 평형은 84형으로 구로구, 금천구, 중랑구에 각 1개로 25개 중 단 3개만이 3~4인 가구에 적합한 규모로 보여진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합산의 문제로 서울 소재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소형으로 운영되고 있어 3~4인 가구에게 적합한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14〉 민간임대허브제4호리츠의 자회사인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현황

순번	리츠명	출자사업장명 (시공사)	출자 세대수 (단위 : 세대)	출자 승인금액 (단위 : 억원)	부동산명	투자 대상	위치	완공일	취득일	주택형 (전용㎡)
1	용산대한뉴스테이	한강로 (호반건설)	763	526	용산 베르디움프렌즈	주택	서울시 용산구	21.03.05	21.04.09	19, 39, 44, 48, 49
2	서한하나뉴스테이	대구신서 (서한)	477	97	대구신서지구(A－4BL)	주택	대구시 동구	20.03.31	17.10.30	59
3	범양케이원 제7호	천안두정 (범양건영)	804	299	두정역 범양레우스알파	주택	충남 천안시	20.08.28	18.01.15	59, 71, 84
4	해피투게더하우스 제3호	장위동 (홍화)	145	110	자료없음					
5	대한제16호고덕	평택고덕 (금호산업)	660	390	평택고덕어울림스퀘어	주택	경기도 평택시	20.10.08	18.07.13	69, 84, 99, 105
6	이베데스다 제1호	이랜드신촌 (이랜드건설)	529	186	신촌 청년임대주택사업	주택	서울시 마포구	21.01.11	18.05.24	17, 29
7	신세계하나 제1호	울산학성 (신세계건설)	567	204	빌리브울산	주택	울산광역시 중구	21.05.10	18.05.04	51, 53, 55, 56, 62, 63, 64, 84
8	계룡하나동탄 1호	화성 동탄2 (계룡건설산업)	762	302	동탄호수공원리슈빌	주택	경기도 화성시	21.09.29	19.04.30	74, 84
9	서희대한 2호	시흥 장현 (서희건설)	887	388	시흥장현B－2BL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개발사업	주택	경기도 시흥시	자료 없음	19.10.18	74, 84
10	이베데스다 제2호	부산 부전 (이랜드건설)	299	124	이랜드 PEER 서면	주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2.01.13	19.03.06	18, 29
11	대한제22호 평택고평	평택 고평 (SK건설)	1,328	748	평택역 SK VIEW	주택	경기도 평택시	21.10.22	21.11.15	59, 72, 84
12	우미케이원 제10호	인천검단 AB－9BL (우미건설)	522	279	우미린 센터포레 아파트	주택	경기도 파주시	23.01.19	23.01.19	64, 74, 84
합계			7,743	3,653						

출처 : 각 리츠의 2023년 말 투자보고서를 토대로 작성

〈표 15〉 서울 소재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현황

순번	리츠명	출자사업장명(시공사)	출자세대수 (단위 : 세대)	출자승인금액 (단위 : 억원)	최대주주(종류주)	부동산명	투자대상	위치	완공일	취득일	주택형 (전용㎡)
1	케이비동자민간임대	동자동(쌍용건설)	567	342	자료 없음						
2	펨코제7호민간임대주택	길동(요진건설산업)	191	81	대한민국 (주택도시기금)	강동와이시티	주택	강동구	14.01.28	14.12.31	자료없음
3	하나스테이제1호	신당동(반도건설)	718	610	대한민국 (주택도시기금)	신당 파인힐 하나유보라	주택	중구	19.06.07	16.07.08	24, 30, 32, 59
4	해피투게더스테이제1호	대림동(KCC건설)	293	190	대한민국 (주택도시기금)	에이치하우스대림뉴스테이	주택	영등포구	17.06.27	17.09.22	36, 39, 48, 51, 54, 58
5	마스턴제14호	노량진동(이테크건설)	207	166	뉴스테이허브제1호	고려교육타워－어바니엘한강	주택	동작구	18.07.24	18.09.17	도시형생활주택(A～H)
6	서울개봉뉴스테이	구로개봉 (범양건영, 동부건설)	1,089	738	뉴스테이허브제3호	서울개봉뉴스테이	주택	구로구	20.07.31	20.08.28, 20.09.28	59, 74, 84
7	고척아이파크대한뉴스테이	서울남부교정시설 (현대산업개발)	2,205	1,500	뉴스테이허브제3호	고척아이파크대한 MD, RD	복합, 주택	구로구	22.08.31	22.08.31	64
8	엘티케이비문래제4호뉴스테이	문래동(롯데건설)	737	410	뉴스테이허브제3호	문래 롯데캐슬	주택	영등포구	20.03.24	20.05.22	23, 24, 51, 52, 53, 55, 59
9	엘티케이비금천제5호뉴스테이	독산동(롯데건설)	927	672	뉴스테이허브제3호	독산동기업형임대주택	주택	금천구	21.04.29	21.05.27	59, 84
10	용산대한뉴스테이	한강로(호반건설)	763	526	민간임대허브제4호	용산베르디움프렌즈	주택	용산구	21.03.05	21.04.09	19, 39, 44, 48, 49
11	해피투게더하우스제3호	장위동(홍화)	145	110	민간임대허브제4호	H HOUSE 장위청년임대주택	주택	성북구	20.03.09	20.04.13	자료없음
12	이베데스다제1호	이랜드신촌(이랜드건설)	529	186	민간임대허브제4호	신촌 청년임대주택사업	주택	마포구	21.01.11	18.05.24	17, 29
13	서울리츠제4호	신림동(현대엔지니어링)	139	94	뉴스테이허브제2호	힐스테이트관악뉴포레	주택	관악구	22.08.29	자료없음	44, 59
14	양원어울림대한제13호	서울양원(금호산업)	331	103	민간임대허브제6호	양원금호어울림포레스트	주택	중랑구	21.11.30	22.01.26	69, 84
15	엘티코크렙용산제6호	서울 원효로(롯데건설)	465	425	민간임대허브제6호	원효로임대주택	복합형	용산구	22.04.28	22.04.28	15, 33, 43
16	대한제37호	서울길동(서울청년주택)	386	242	민간임대허브제5호	강동구 길동 역세권 청년주택	주택	강동구	24.11.30	22.03.31	자료없음
17	카이트제25호	서울동교동(새천년종합건설)	195	144	자료 없음						
18	노량진제41호	서울 노량진(한신공영)	422	734	민간임대허브제7호	노량진 역세권 청년주택	주택	동작구	자료없음	23.05.03	자료없음
19	대한묵동	서울 묵동(이랜드건설)	447	335	민간임대허브제7호	묵동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주택	중랑구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20	카이트제23호	서울 도선동(한신공영)	244	418	자료 없음						
21	상봉대한제42호	서울 상봉동(유호산업개발)	178	186	민간임대허브제6호	상봉동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주택	중랑구	자료없음	23.08.02	자료없음
22	이베데스다대한제5호	서울 북가좌동 (이랜드건설)	271	327	민간임대허브제7호	북가좌동 임대주택	주택	서대문구	26.07.31 (예정)	23.12.22	자료없음
23	맹그로브제1호	서울 창천동(대성문)	196	170	주식회사 엠지알브이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24	대한제43호	서울 하월곡동(디앤시건설)	136	149	자료 없음						
25	엘비더함제1호	서울 노량진56－1(다우건설)	300	593	자료 없음						
합계			12,081	9,451							

출처 : 각 리츠의 2023년말 투자보고서를 토대로 작성

<표 14>와 <표 15>로 살펴본 민간임대허브제4호리츠의 자회사인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현황과 서울 소재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현황을 통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첫째,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는 매입형과 건설형이 모두 있지만 거의 대다수는 건설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차이(건설형 9억원, 매입형 6억원(수도권밖은 3억원))로 사업계획 수립 시 건설형에 치중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둘째,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공급하는 주택형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민간임대허브제4호리츠가 출자한 12개의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의 경우 가장 선호도가 높은 84형이 다수 공급됨을 알 수 있으며 99형, 105형까지 공급되고 있다. 유일하게 서울에 공급된 이베데스다제1호의 경우 서울시 마포구에 청년임대주택로 공급되었으며 주택형은 17, 29형으로 초소형에 그치고 있다.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은 전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리츠 123개 중 서울에 공급한 25개의 리츠를 분석해 보면 서울시 구로구, 금천구, 중랑구에서 공급된 4개의 리츠를 제외하고 모두 59형 이하의 소형이며, 투자보고서에 주택형 자료가 제공되지 않은 리츠의 사업내역이 대부분 청년임대주택 사업이므로 초소형으로 공급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임대주택리츠에서 주거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일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으로 인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공시가격이 낮은 소형주택이 주로 임대주택리츠에 편입되는 현상과 선호지역(서울, 도심)에서 필요로 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따라서 종부세 부과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계획 수립 시에 이러한 문제를 얼마나 야기시키는지에 대한 해외 세제와의 비교 등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종부세 이슈 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매입형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아직까지 종부세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은 것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종부세 이슈 가능성이 있는 사업지를 배제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시장 수요에 맞는 임대주택 공급이하는 사회적 후생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표 16>은 서울리츠 3호와 서울리츠 4호로 바라본 종합부동산세로 인한 문제점 사례이다.

〈표 16〉 문제점 사례

구분	내 용
서울리츠 3호	1. 공공임대주택리츠, 매입형리츠 2. 20년장기전세주택 44개단지 2,443세대 3. 자산규모 약 2조원, 자본금 약 2,300억원 4. 연간 비용지출 총액(영업비용, 금융비용 등, 감가상강충당금 제외) 260억원 내외 5. 종부세 – 1개단지 7세대 2022년 신규편입되면서 최초부과 3억원 – 상기 외 자산은 2016년 리츠 설립시 편입 및 합산배제 대상 등록완료 – 2023년 종부세법 변경으로 1.3억으로 축소 6. 결론적으로 리츠의 전체 비용구조에서 종부세 영향 매우 미미한 수준이고 향후 본 리츠 신규 자산편입 계획 없어, 종부세로 인한 예상 리스크 제한적
서울리츠 4호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리츠, 매입형리츠 2. 8년 임대 후 매각, 1개단지(구로힐스테이트) 139세대(단지전체규모 1100세대) 3. 자산규모 약 750억원, 자본금 약 138억원 4. 연간 비용지출 총액(영업비용, 금융비용 등, 감가상강충당금 제외) 260억원 내외 5. 종합부동산세 – 2022년 단지 준공 후 조합으로부터 리츠 자산편입 – 편입 당시 공시가 추정 7억 기준, 재산세+종부세 연간 55억 추산 – 8년간 단순 계산으로 450억 지출 – 공시가 6억 미만으로, 결론적으로 합산배세 6. 만일 종합부동산세 과세되었다면 리츠 존립 불가

2. 개선방안

국토교통부에서는 2024년 6월 17일에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 중 한가지로 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영하여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CR리츠가 미분양을 매입하고 임대 운영하는 동안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표 17>과 같이 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한다. 이처럼 공공성이 강한 주택도시기금 출자로 형성된 모(母)리츠의 자금을 받아 실제 운영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인 자(子)리츠에 대해서는 별도 항목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항목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경우에는 수도권 중심부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한도 금액을 상향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표 17〉 미분양 CR리츠 세제 지원 현황

구분	현행	세제 지원내용	적용대상
취득세	중과 적용(세율 12%) *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도입(2020.8)	중과배제 (세율 1~3%) * 취득가액 6억원 이하 1% 적용	2024.3.28~2025.12.31 취득분
종합부동산세	합산 적용	합산배제 (취득 후 5년간)	2024.3.28~2025.12.31 취득분 * 준공 前 미분양 포함

3.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대효과 추정

<표 18>은 가상의 투자로 인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효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100호의 건설형 임대주택리츠를 운영하는 경우, 호당 5억 원인 경우와 호당 10억 원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취득세와 재산세의 경우에는 동일세율이 적용되는 반면에, 호당 5억원의 건설형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요건에 충족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호당 10억 원의 건설형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법인 고정 세율 5%와 종합부동산세의 20%에 대해서 농어촌특별세율을 적용하여 호당 6억원을 초과하는 건설형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세금에 대한 부담이 가중됨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자 이후 리츠가 본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분양 수익은 2배 증가하는 반면 당해연도의 과세금액은 2.6배 증가하며 공시가격이 불변한다고 가정해도 사업기간인 10년간 임대한다면 과세금액 합계는 약 7배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공시가격이 낮은 소형주택만 임대주택리츠에 편입되는 현상과 선호 지역(서울 또는 도심지)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계획 수립이 불가능함을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표 18〉 국내 가상 시뮬레이션

구분			호당 5억 원	호당 10억 원
취득세	－상업용 부동산 : 4% －주택 : 전용면적 및 취득 당시 가액에 따라 1～3% －신축 : 2.8% 법인이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0년 8월 12일 취득분부터 주택수와 소재지와 무관하게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됨(지방세법 제13조의2)	금액	500,000,000원	1,000,000,000원
		취득세율	12%	12%
		호당 취득세	60,000,000원	120,000,000원
		100호 취득세	6,000,000,000원	12,000,000,000원
		지방교육세율	0.4%	0.4%
		호당 지방교육세	2,000,000원	4,000,000원
		농어촌특별세율	1%	1%
		호당 농어촌특별세	5,000,000원	10,000,000원
		호당 취득세 합계	67,000,000원	134,000,000원
		100호 취득세 합계	6,700,000,000원	13,400,000,000원
재산세	－토지 : 0.2～0.4% (별도합산과세 대상 구분 시) －건축물 : 0.25% －주택 : 0.1～0.4%	공시지가	500,000,000원	1,000,000,000원
		과세표준1)	300,000,000원	600,000,000원
		호당 재산세	570,000원	1,770,000원
		100호 재산세	57,000,000원	177,000,000원
		도시지역분세율	과세표준액의 0.14%	과세표준액의 0.14%
		호당 도시지역분	420,000원	840,000원
		지방교육세율	재산세액의 20%	재산세액의 20%
		호당 자방교육세	114,000원	354,000원
		호당 재산세 합계	1,104,000원	2,964,000원
		100호 재산세 합계	110,400,000원	296,400,000원
종합부동산세	－토지분 : 0.5～0.7% －주택분 : 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0% 단일세율	공시가격합산	50,000,000,000원	100,000,000,000원
		종부세 공제금액	건설형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합산배제 주택요건을 충족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0
		종부세 과세표준[1)]		60,000,000,000원
		종합부동산세율		법인 고정 세율 5.0%
		종합부동산세		3,000,000,000원
		재산세 중복분		10,906,290원
		중복분 차감후		2,890,937,100
		농어촌특별세율		종합부동산세의 20%
		농어촌특별세		578,187,420원
		호당 종합부동산세		37,655,245.2원
		100호 종부세 합산금액		3,765,524,520원
1년차 합계(6.1일 이후 취득 가정)			6,810,400,000원	17,461,924,520원
10년차 합계(공시가격 불변 가정 시)			6,700,000,000원 ＋110,400,000×10년 ＝7,804,000,000원	13,400,000,000원 ＋(296,400,000＋ 3,765,524,520)×10년 ＝54,019,245,200원

1) 과세표준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2) 소형주택 공급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은 별도 고려하지 않고 선호도 높은 주택형의 공급을 가정

Ⅴ. 결 론

본 연구는 임대주택리츠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임대주택리츠 구조 및 현황과 조세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임대주택리츠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대효과를 추정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리츠는 부동산 투자에 접근이 어려운 소액투자자에게 우량 부동산에 대한 투자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일반국민에게 부동산 간접투자기회를 제공하며, 인구 증가 및 가구수 증가 등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인한 투기적 부동산 시장을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전환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한다. 이처럼 임대주택리츠는 투기목적을 가진 법인 사업자와 구별됨에도 불구하고 합산배제 대상에 대한 공시가격 기준이 건설형의 경우에는 9억원, 매입형의 경우에는 6억원으로 존재한다. 이에 따라 건설형 임대주택리츠의 경우에는 건설기간 중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가능성이 있을수 있어 임대주택리츠의 공급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또한, 임대주택리츠에서 주거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일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으로 인하여 공시가격이 낮은 소형주택만 임대주택리츠에 편입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임대주택리츠를 공급하는 방안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으로 인해 서울과 같은 선호지역에는 임대주택을 공급하지 못할 위험성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리츠 주거안정성 확보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이처럼 공공성이 강한 주택도시기금 출자로 형성된 모(母)리츠의 자금을 받아 실제 운영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인 자(子)리츠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항목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둘째, 종합부동산세 합산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다양한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지 못하고, 소형주택의 공급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대한 공시가격의 기준 상향을 제안한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종합부동산세의 문제는 과표의 안정성과 연계되는 점을 고려하여 공시지가 안정화를 통하여 종합부동산세 과표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임대주택리츠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임대주택사업 전반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배제하는 방안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국토교통부(2024).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REITs) 활성화 방안」. 2024. 6.17.

강명기. 2023. “토지임대방식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의 임대가격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민지. 2023. “거시경제변수가 리츠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창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상진・전재범. 2023. “주택리츠 활성화를 위한 제언 :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부동산정책연구 24(1) : 25－49.

김준형. 2019. “국내 리츠의 자본조달 및 자본구조 특성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신세지. 2023. “국내 상장 리츠 활성화 방안 연구 : 정책 및 제도개선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수정. 2021. “민간임대주택 리츠의 수익성 영향 요인 분석”.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병호. 2022.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리츠의 자본구조 특성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병호・김호철. 2022.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의 자본구조에 관한 실증분석”. 지역개발연구 54(2) : 129－151.

리츠의 배당가능이익 관련 세무상 이슈 및 개선방안

신 일 항 · 문 태 곤
(가천대학교) (연세대학교)

리츠의 배당가능이익 관련 세무상 이슈 및 개선방안

신일항* · 문태곤**

〈요 약〉

리츠는 낮은 변동성과 더불어 높은 배당수익률과 환금성으로 주식과 채권의 대체투자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세무적 이슈로 인한 배당가능이익 금액의 변동성이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변동성 증가는 투자자들에게 주의가 요구되며, 리츠의 세무 환경과 관련 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최근 2023년 국내 리츠 시장에서의 화두인 코람코자산신탁에게 추가 법인세 사례를 통해 리츠 배당과 관련된 세무적 이슈를 검토하였다. 과세당국이 코람코자산신탁에게 추가 법인세를 부과한 이유는 회계상 감가상각비를 배당재원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해당 배당에 따른 법인세 감면 혜택까지 복수로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코람코자산신탁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근거하여 소득공제에 문제없음을 주장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과세전 적부심사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법인으로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다. 그러나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어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리츠의 배당가능이익은 단순히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의 총액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배당금의 배당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는 리츠의 법인세비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배당정책 수립 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리츠 배당의 세무상의 이슈는 상법, 법인세법 그리고 법인세법과 부동산투자회사법 사이의 배당가능이익 산출의 시각차에서 비롯된다. 상법과 법인세법의 배당가능이익의 산출방식 차이는 미실현이익의 시각 차이로 발생하며 법인세법과 부동산투자회사법 사이의 배당가능이익 차이는 감가상각비로 발생하는 이월결손금 초과배당 가능 여부 차이로 인해 발생한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두 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법인세법의 미실현이익 평가 대상 자산 범위를 상법과 동일하게 개정을 제안하며 이는 배당가능이익으로 인한 소득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논란을 완화할 수 있다. 둘째,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초과배당 시 이월된 결손금은 당기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예외를 적용하여 법인세법과 부동산투자회사법의 배당가능이익의 차이를 줄이도록 제안한다. 이러한 제안은 리츠가 장기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배당정책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으며, 투자자들에게도 장기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리츠 배당가능이익 관련 세무상 이슈 사례들로 하여, 각 관련 법들의 배당가능이익 산출방식과 충돌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배당가능이익 산출 시 이견이 없는 통일된 세법개정을 제안함으로써, 국내 리츠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리츠, 배당가능이익, 이월결손금, 미실현이익, 배당소득공제

* 가천대학교 회계세무학 교수, jayshih00@gachon.ac.kr, 주저자

** 연세대학교 박사과정, taegon.moon@yonsei.ac.kr, 교신저자

Ⅰ. 서 론

리츠(REITs :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운용수익 및 매각수익을 배당 또는 잔여 재산분배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의 영업인가(등록)를 받아 운영되는 부동산투자회사를 의미한다. 리츠는 자본시장과 부동산시장을 연결해 줌으로써 투자자가 자본시장을 통해 부동산에 투자할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즉 리츠 투자를 통해 불특정 다수가 모인 자본시장과 부동산시장을 연결해 줌으로써 개인투자자들이 소액으로도 대규모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리츠는 다수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오피스 등 부동산에 투자하고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료 수입 등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회사다. 따라서 배당가능이익의 90%를 투자자인 주주에게 배당해 꾸준한 배당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리츠의 장점이다. 더불어 투자대상이 실물자산인 부동산이므로 물가가 상승해도 투자가치의 하락 위험이 최소화되며, 최악의 경우 보유 부동산 처분으로 투자원금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상장된 리츠의 경우, 필요할 때 보유 주식을 팔아 현금화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또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법인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게 된다(법인세법 제51조의 2). 개인이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누진과세(최고 세율 0.7%) 적용되나, 리츠를 통한 투자의 경우 토지재산세가 0.2%의 단일 세율을 적용받아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지방세법 제106조 및 동법시행령 102조).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가 둔화 조짐을 보이면서 국내 리츠 시장의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부동산에 간접 투자해 투자 수익과 함께 배당 수익 또한 거둘 수 있는 리츠는 그간 고금리 기조와 부동산시장 침체로 고전을 면치 못하다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다시 주목받는 분위기다.

그런데 최근 국내 대형 리츠AMC(자산관리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의 6개 리츠에 170억 원 원규모의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된 사실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리츠 투자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미 고금리로 자금조달 비용이 커진 탓에 배당금이 줄었는데, 법인세 부담까지 늘어난다면 리츠의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3년 11월 삼성세무서는 코람코자산신탁의 6개의 리츠에 과거 6개월분 법인세 총 172억 원을 추가 납부를 통지하였다. 당국의 과세 논리는 초과배당으로 지급된 감가상각비로 인해 이월결손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잘못 적용되었다는 것이다. 코람코자산신탁에 부과된 법인 세액은 6개 리츠의 당기순이익에 36%에 달하는 금액이며 과세당국 논리대로라면 리츠에서 배당재원으로 사용된 감가상각비는 소득공제 취소 대상으로 전체 리츠 시장에 연간 3조 원까지 배당금이 줄어들 수 있다. 미국의 기준

금리 인하 시기가 기대와 달리 미뤄져 고금리 자금조달로 리츠에 배당금이 줄어든 상태에서 법인세 부담까지 늘어날 위험으로 인해 리츠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다. 코람코자산신탁은 국토교통부 법령해석을 기반으로 국세청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며 국세청은 코람코자산신탁의 손을 들어주었다.

본 연구는 한국 리츠 시장에서 발생한 리츠 배당 관련 세무적 이슈를 살펴봄으로써 배당가능이익 관련 법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국내 대체투자 시장 활성화 기여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리츠의 현황과 배당가능이익 관련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를 살펴보며 제Ⅲ장에서는 리츠 배당의 세무적 이슈를 살펴본다. 해당 연구에서는 배당가능이익 산출 시 발생하는 미실현이익과 이월결손금 시각 차이로 발생한 사례들을 통해 리츠 산업의 세무적 이슈를 살펴본다. 제Ⅳ장은 배당가능이익 관련 법규 개선방안 제시하였으며, 제Ⅴ장은 결론으로 앞에서의 논의를 정리하였다.

Ⅱ. 리츠산업 현황과 배당가능이익 관련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리츠의 정의 및 산업 현황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 및 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주식회사이다. 리츠의 유형은 투자대상이나 환매 여부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하여 분류할 수 있으나 부동산투자회사법은 리츠를 자기관리리츠, 위탁관리리츠, 기업구조조정리츠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로 자기관리리츠란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및 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로 정의하고 있다. 즉, 자산관리 및 운용기능이 부동산투자회사 내부에 존재하며 위탁관리리츠 및 기업구조조정리츠와 비교하여 책임의 소재가 수탁자에게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신탁형이라는 점에서 자기관리리츠도 자산운용 및 관리절차에 대하여 투자자가 직접 통제할 수 없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실체형 회사라는 점에서 법인세 감면 혜택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둘째, 위탁관리리츠는 자산의 투자 및 운용을 자산관리회사(AMC)에 위탁하는 회사로 자기관리리츠와는 달리 상근하는 임직원이 운용되는 명목회사이다. 이는 실체형 회사인 자기관리리츠의 법인세 감면 혜택 없다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2005년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상법 제46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

다. 초과배당금은 당해 연도의 감가상각비의 범위 안에서 배당하되, 초과배당으로 인하여 전기에서 이월된 결손금은 당기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특례사항을 제외한 회사의 설립, 투자 및 운용과 관련한 모든 기준은 자기관리리츠와 동일하다. 셋째, 기업구조조정 리츠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도록 도입된 제도로 기업이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부채 등을 상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 등을 투자대상으로 하여 자산의 투자 및 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이다. 2024년 3월 기준 국내 운용 리츠 개수는 373개이며 이중 위탁관리리츠가 355개로 시장에서 인식하는 리츠 대부분은 위탁관리리츠이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리츠는 총 23개로 주택(47.3%) 오피스(28.2%), 리테일(8.1%), 물류(7.4%) 자산이 구성되어 있으며 2022년 상장리츠의 배당수익률을 7.8%(시가기준)로 나타난다.[1)]

위와 같은 높은 배당수익률을 지속하기 위해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해당연도 배당가능이익[2)]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하며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L리츠의 손익계산서이다.

〈그림 1〉 L리츠 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제 10 기 2023.07.01 부터 2023.12.31 까지

제 9 기 2023.01.01 부터 2023.06.30 까지

제 8 기 2022.07.01 부터 2022.12.31 까지

(단위 : 원)

	제 10 기	제 9 기	제 8 기
영업수익 (주8,15,22,24)	59,415,198,441	58,664,677,147	57,920,144,213
영업비용 (주8,16,22)	23,281,628,216	23,899,281,227	23,812,030,108
영업이익(손실)	36,133,570,225	34,765,395,920	34,108,114,105
금융수익 (주18)	646,103,928	628,056,686	546,683,252
금융비용 (주18)	33,601,813,534	29,527,949,700	20,539,989,189
기타수익 (주17)	17,928	17,395	16,646
기타비용 (주17)	208	13	1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3,177,878,339	5,865,520,288	14,114,824,803
법인세비용(수익) (주19)	0	0	0
당기순이익(손실)	3,177,878,339	5,865,520,288	14,114,824,803
기타포괄손익	0	0	0
총포괄손익	3,177,878,339	5,865,520,288	14,114,824,803
주당이익(손실) (주14)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13.0	24.0	58.0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13.0	24.0	58.0

출처 : 전자공시시스템

1) 한국리츠협회(https://www.kareit.or.kr/index.php)

2) 상법 제462조 제1항

해당 리츠의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결산기는 6개월이며 법인세비용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리츠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였기 때문에 법인세법[3]에 따라 배당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어 법인세비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이유는 배당금액에 대한 리츠와 주주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이다. 따라서 리츠는 일반기업과 달리 법인세비용이 없다는 것이 일반기업과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2. 배당가능이익의 다양한 정의

리츠는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해야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배당가능이익 산출 방법과 정의에 따라 소득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배당가능이익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주주는 회사 청산 시 가장 후순위의 권리를 가지는 이해관계자로 우선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의 담보 가치를 무분별한 배당으로 인하여 훼손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채권자의 담보 가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자산을 보유해야 할 필요가 있어 배당가능이익을 자본, 지불불능(insolvency), 재무비율 기준으로 하여 제한하고 있다.

자본 기준은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배당가능이익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순자산의 자본금을 차감하는 잉여금 기준과 자본잉여금까지 제외하는 이익잉여금 기준이 있으며 이는 3가지 유의사항이 존재한다. 첫째, 잉여금 기준의 배당가능이익은 자본금을 제외한 회사의 잉여금을 이익배당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자본금의 산정 기준에 따라 채권자의 담보 가치 훼손을 초래하는 단점이 존재해 채권자 보호를 위해 적정한 최소자본금이 담보로 설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소자본금 제도는 건전성 규제(바젤3)가 강제인 금융회사인 경우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효율성에 문제가 있어 2011년 상법 개정에서 삭제되었다. 따라서 주주는 배당재원의 기준이 사라짐에 따라 부당하게 회사 재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증가함으로 해당 주주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주식 발행 시 자본금 산정에 따라 잉여금이 달라질 수 있다. 주식 발행 시 납입되는 자금(액면가, 액면초과발행금, 무액면주식)을 투자금에 귀속시킨다면 자본금 증가로 인해 채권자의 최소 담보로 제공될 수 있다. 그러나 액면초과발행금과 무액면주식발행으로 인한 투자금을 회사 재량을 통해 잉여금으로 귀속시키면 주주가 납입한 금액과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과의

3) 법인세법 제51조의2

괴리가 발생하고 이는 주주가 납입한 금액 일부는 배당을 통해 반환될 수 있으므로 주주유한책임원칙에 위배되는 단점이 있다.

셋째, 회사의 자본금 감소 시 채권자를 위한 책임자산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다. 예시로 미국 델라웨어 주에서는 자산이 채무 금액을 능가할 때만 자본금 감소를 허용한다. 따라서 자본금 변동 시 채권자의 보호제도가 수반되어야 하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익잉여금 기준은 잉여금 기준에서 자본잉여금까지 배당가능이익에서 차감한 기준으로 주주의 투자금액 모두를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는 기준으로 각 나라의 상법에 따라 해당 기준이 강화되거나 약화 될 수 있다. 우리 상법에서는 준비금의 경우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금액을 이익배당가능이익으로 인정하고 있다.

지급불능 기준은 자본 기준 대신 회사의 지급불능 가능 여부 판단을 통해 배당가능이익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지급불능의 대표적인 예시는 개정모범회사법(Revised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RMBCA))[4]으로 실질지급불능 기준과 재무상태표 기준인 지급불능기준(bankruptcy test)에 하나라도 미달 될 시 이익분배가 불가능하다. 지급불능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선 이익분배 후 자산의 합이 채무와 잔여재산 분배우선주식의 합 이상이어야 적법한 이익분배가 가능하다.[5]

마지막으로 재무비율기준은 자산과 부채의 비율로 배당가능이익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예시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회사법에서는 배당 후 총자산과 부채의 비율이 1.25 이상이며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를 초과할 경우 이익잉여금을 배당가능이익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배당가능이익 법규별 정의 및 소득공제요건

가. 상법 (제462조)

상법상의 배당가능이익은 재무상태표상 순자산액에서 1) 자본금, 2) 결산기까지의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결산기에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그리고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미실현이익의 대표적인 예는 단기매매금융자산 평가이익, 지분법평가이익, 파생상품평가이익, 외화환산이익 등이 있으며 해당 평가이익을 배당가능이익으로 편입 시 채권자 이익을 침해받을 수 있으므로 상법상 미실현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배당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계산 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은 상계하지 못하며 다만 파생상품평가손실의 경우에는 예외

4) RMBCA(1984) § 6.40(c).

5) RMBCA(1984) § 6.40(c)(2).

를 인정하여 서로 상계하여 처리한다. <표 1>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과 관련된 자본의 구성요소에 대한 상법과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을 비교한 표이다.

〈표 1〉 상법상 배당가능이익과 관련된 자본 구성요소에 대한 상법과 기업회계기준 비교

내역	상법	재무보고(기업회계기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자본금	자본금
자본거래에서 발행한 잉여금	자본준비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6]
지급배당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이익준비금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미실현이익	**미실현이익**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의 일부**

기업회계기준상 미실현이익은 크게 나누어 기타포괄손익에 누적된 금액과 당기손익에 반영되어 이익잉여금에 누적된 금액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주주와의 거래가 아닌 거래에서 발생한 순자산의 변동액 중 장기미실현손익으로 분류되어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못하는 항목의 누계잔액으로, 대표적인 예로서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유형자산재평가이익 등이 있다. 당기순이익에 반영된 후 이익잉여금에 누적된 미실현이익이 대표적이 예로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이익, 파생상품평가이익, 지분법평가이익 등이 있다. 결론적으로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의 계산은 재무보고상 이익잉여금에서 당기손익에 반영된 미실현이익 항목을 파악하고, 동 금액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여 구할 수 있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상 배당가능이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을 차감 후 이월이익잉여금과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과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에 유가증권 등의 평가손익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해당 평가손익 범위에는 주식, 채권 및 집합투자재산이 있으며 다만,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자회사 등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손익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된다. <표 2>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표이다.

6)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액으로 잔액이 양(+)이면 자본잉여금, 잔액이 음(−)이면 자본조정 항목으로 표시

〈표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 법 제18조 제8호에 해당하는 배당
2.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제73조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 다만, 제75조 제3항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자회사등의 제73조 제2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한다.

다. 부동산투자회사법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배당가능이익은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이익배당한도를 기초로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주총회로 결의되며 이익준비금은 차감하지 않는다. 해당 부동산투자회사법에도 불구하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따라 50% 이상을 배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할 때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배당금의 기준은 해당 연도 감가상각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제20조에 따라 상장된 부동산투자회사가 총자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이익을 배당할 때는 해당 사업연도 말 10일 전까지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 여부 및 배당 예정 금액을 결정하며 정관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 대신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을 시행할 수 있다. <표 3>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2조 초과배당의 범위를 설명한 표이다.

〈표 3〉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2조 초과배당 범위

제32조(초과배당의 범위 등) 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초과배당을 하려는 경우 초과배당금의 분배절차 및 시기 등을 포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미리 정하여야 한다.
② 초과배당은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의 범위에서 배당하되, 초과배당으로 인하여 전기(前期)에서 이월된 결손금(缺損金)은 당기(當期)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초과배당은 금전으로 하여야 한다.
④ 법 제28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신설 2013. 6. 17.>

라.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리츠는 부통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법인격을 부여받고 있으므로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다. 법인세 과세방식은 일반적인 법인과 동일한 과세방식으로 투자부동산 운용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부동산 처분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모두 합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인 경우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해당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어 사실상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리츠의 부동산 관련 조세는 리츠가 투자하는 부동산에 관한 세금으로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 보유 시 발생하는 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가 대표적이다.

이와 같은 소득공제의 이유는 배당소득과 관련된 이중과세 문제 때문이다. 리츠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로써 투자부동산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리츠 단계에서 과세함과 동시에 투자자 단계에서도 배당소득 과세로 인해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 이러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소득공제요건인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리츠는 해당 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반면, 리츠 투자자들은 리츠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에 대해 법인 주주는 익금불산입, 개인 주주는 배당세액 공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다. <표 4>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대상법인, 소득공제요건, 공제금액, 공제배제를 정리한 표이다.

〈표 4〉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구분	내 용
대상법인	1.「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3.「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5.「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6.「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7.「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8.「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소득공제요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표 4〉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계속)

구분	내 용
공제금액	다음과 같이 계산한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금액 배당가능이익=당기순이익+이월이익잉여금-이월결손금-상법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 * ㉠당기순이익 :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 *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유가증권평가에 따른 손익은 제외하되, 투자회사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손익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함 배당가능이익에서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따른 배당은 제외
공제배제	1. 배당을 받은 주주 등에 대하여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2.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사모방식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 개인 2인 이하 또는 개인 1인 및 그 친족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95% 이상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법인일 것. 다만, 개인 등에게 배당 및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청구권이 없는 경우를 제외함

출처 : 국세청

4. 배당가능이익에 관한 선행연구

배당가능이익에 관한 선행연구는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의 산출방식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되어왔으며 2012년 상법 개정 전후 선행연구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상법 개정 전 선행연구에서는 상법상 회계규정과 기업회계기준 사이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상법 개정 후 선행연구에서는 2011년 도입된 국제회계기준과 비교하여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우선 상법 개정 전 선행연구에서 김지홍과 박정우(1999)는 상법에서 규정한 회계규정과 기업회계기준 간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회계 처리의 혼란을 지적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자들은 상법상의 회계규정을 회계기준 개정 시기와 일치시키거나, 상법에서는 기본적인 항목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에 위임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박정우(2002)는 상법 제462조에 따른 순재산액 계산이 실무적인 어려움을 동반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당가능조정명세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을 통해 위법 배당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김광윤(2006)은 기업회계기준 및 외감법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상법상 회계규정의 개정 동향과 문제점을 지

적하였다.

상법 개정 후 연구에서는 배당가능이익 산출 시 새로이 차감하는 미실현이익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김광윤과 강경진(2014)은 2012년 개정된 상법의 배당가능이익 계산 규정이 의도와는 달리 미실현이익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개정된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 때 차감되는 미실현이익의 정의가 매우 포괄적이며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 모호성으로 인해 배당가능이익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배당가능이익 계산 시 차감하는 미실현이익 계산의 복잡성 그 비용에 대해 강조하였다. 미실현이익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후속 평가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지속해서 발생하는 관리비용으로 인해 정확한 배당가능이익을 산출하는 데 실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해당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배당가능이익의 계산 방법을 수정 필요성을 제안하였는데 배당가능이익을 산출할 때 미실현이익을 제거하고, 미실현손실을 가산하는 균형 방안과 함께 이익잉여금에 반영된 미실현이익은 배당가능이익 계산 시 별도로 고려되지 않아야 한다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미실현이익만을 차감하는 현행 계산 원칙의 변경이 어려운 경우, 최소한 상계 금지 원칙 제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더해 현재의 이익잉여금 처리 계산서는 배당 예정액만을 기재하고 있어 배당가능이익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존재하여 이익잉여금 처리 계산서를 상세히 기재하고 주석으로 배당가능이익 계산 내용을 공시할 필요성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하미혜 등(2015)은 배당가능이익은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중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회계기준은 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법상의 배당가능이익과의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며 이러한 상황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며, 투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결점으로 여겨졌다고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는 3개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배당가능이익 정보의 제공 현황을 분석하고, 배당가능이익과 상법상의 배당가능이익과의 일치 여부를 재무정보 이용자의 관점에서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상법상의 배당가능이익과 재무제표상의 배당가능이익의 일관된 기준이 있어야만 배당가능이익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공시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구체적인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심영(2014)은 주식회사에서 산출된 배당가능이익이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며 회사의 위법배당 가능성을 줄이고 감시 기능을 높이기 위해 공시제도가 필요성을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의 계산과정 설명을 통해 주장하였다. 산출된 배당가능이익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는 재무제표와 함께 배당가능이익의 구체적인 산정 내용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공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신현걸(2022) 상법상 배당가능이익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배당가능이익 간의 주요 차

이가 어떤 항목에서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자본조정 항목의 공제 여부에 집중하였다. 해당 연구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상장법인의 공시 재무제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태 분석을 수행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연구 결과, 순자산액에서 자본조정을 공제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배당가능이익과 미실현이익을 세후 금액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은 자본조정을 공제하지 않고 세전 미실현이익으로 계산한 배당가능이익과 상당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의 계산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상황에서도 각 기업이 서로 다른 배당가능이익을 산출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더불어 상법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이 공시되지 않음에 따라, 외부 정보 이용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정보를 통해 배당가능이익을 파악하나 상법상 배당가능이익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배당가능이익은 산출방식이 크게 다르므로 두 금액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며, 이러한 차이는 주로 임의적립금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는 외부 정보 이용자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근거로 기업의 배당능력을 판단한다면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와 같은 부정적인 이슈를 줄이기 위해 배당가능이익 산출 시 자본조정 항목의 공제를 포함하고, 공제되는 미실현이익은 세후 금액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공시 대신 계산 근거를 포함한 상법상 배당가능이익과 배당 예정액을 재무제표 주석으로 공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Ⅲ. 리츠 배당의 세무상 이슈

1. 상법과 법인세법 간 배당가능이익 관련 세무상 이슈

가. 상법과 법인세법 간 배당가능이익 범위 차이 : 미실현손실 제외 여부

배당가능이익이란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는 최대치의 이익배당금이다. 만일 주식회사가 주주에게 과도한 이익배당을 할 경우, 또 다른 이해관계자인 채권자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법[7]에서는 이익배당을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5>는 상법상의 배당가능이익 산출 관련 2011년 상법 개정 전후를 비교를 나타낸다.

7) 상법 제462조

〈표 5〉 상법 개정 전후 배당가능이익 산출 비교

	[법률 제6488호, 2001. 7. 24, 일부개정]	[법률 제10600호, 2011. 4. 14, 일부개정]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상법 개정 후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은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결산기까지의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법인세법상 배당가능이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을 차감 후 이월이익잉여금과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과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에 유가증권 등의 평가손익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유가증권 등 평가손익의 범위는 주식, 채권 및 집합투자재산으로 한정한다. 다만,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자회사 등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손익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한다. <표 6>은 상법과 법인세법 간 배당가능이익 계산식을 비교한 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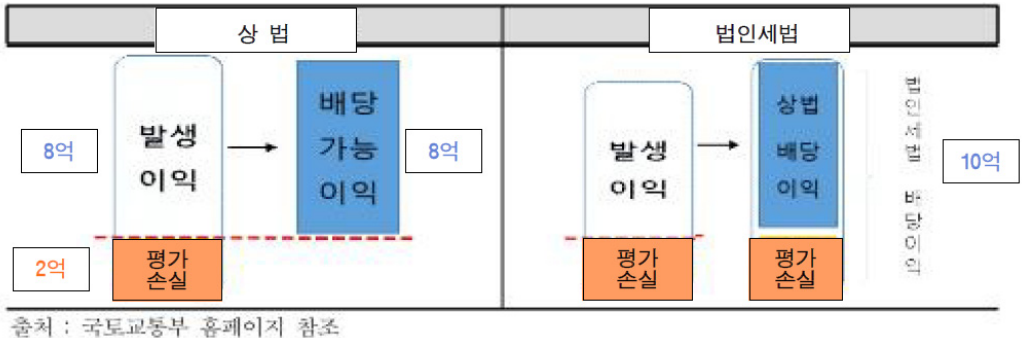
〈표 6〉 상법과 법인세법 간 배당가능이익 계산식 비교

상 법	법인세법
배당가능이익=순자산(자산−부채=자본총액)−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미실현이익 (원칙적으로 미실현손실과 상계 불인정)	배당가능이익=당기순이익(법인세 차감 후)+이월이익잉여금−이월결손금−이익준비금 적립액−유가증권 등의 평가손익

여기서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발생하는 법인세법과 상법 간의 차이는 미실현손실의 제외 여부에 있다. 상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가 불가능하지만, 법인세법의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다. 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법인세법은 배당가능이익을 상정할 때 유가증권 등의 평가손익과 평가손실 모두를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는 반면, 상법에서는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미실현이익은 제외하나 미실현손실은 원칙적으로 제외하

지 않고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뜻이다. 즉 상계하지 못한 미실현손실이 존재하는 경우,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이 법인세법상 배당가능이익보다 평가손실만큼 줄어들게 되어 배당가능이익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림 2>는 평가손실이 존재 시 상법과 법인세법상의 배당가능이익에 차이를 나타낸다.

〈그림 2〉 평가손실로 인한 상법과 법인세법 배당가능이익 차이 (단위 : 억 원)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참조

<그림 2>에서 해당 기업의 발생이익을 8억 원 평가손실을 2억 원으로 가정한다면 상법상의 배당가능이익은 평가이익은 제외하나 평가손실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기 때문의 평가손실만큼 배당가능이익에서 음(−)의 영향을 주어 총 8억 원의 배당가능이익을 산출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세법은 평가손익 손실 모두를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배당가능이익에 평가손실의 음(−)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법인세법 배당가능이익은 상법과 비교하여 평가손실만큼의 배당이익이 증가한 10억 원임을 알 수 있다.

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리츠 배당확대법)으로 인한 영향

2024년 2월 20일 상법과 법인세법과의 미실현손실로 인한 배당가능이익 차이를 완화하기 위해 배당가능이익 산출 시 평가손실을 고려하지 않도록 부동산투자회사법(제28조)를 개정하였다. 해당 개정안은 현행 상법상 “이익배당한도”를 “이익배당한도에서 자산의 평가손실(직전 사업연도까지 누적된 평가손실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금액”으로 개정하여 법인세법과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를 일치시켜 본 개정을 통해 미실현손실로 인한 배당가능이익의 차이가 해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8)]

8) 김수성 · 최경진(2024)는 본 개정안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표 7〉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전후 비교

	[법률 제19681호, 2023. 8. 16, 일부개정]	[법률 제20338호, 2024. 2. 20, 일부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배당)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아니한다.	제28조(배당)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자산의 평가손실(직전 사업연도까지 누적된 평가손실을 포함한다)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2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2.20>

다. 평가손익 및 미실현이익의 평가 대상 자산의 범위에 있어 차이

더불어 평가손익 및 미실현이익의 평가 대상 자산 범위에 차이로 배당가능이익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법인세법상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평가손익[9]은 주식, 채권 및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평가손익으로 열거하는 것에 반해 상법상 제외하도록 하는 미실현이익은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주식, 채권 및 집합투자재산 이외의 당기순이익에 반영된 평가이익 등이 있는 경우, 상법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이 법인세법에 따른 배당가능이익보다 평가이익만큼 작아진다. <그림 3>은 평가이익 따른 상법과 법인세법의 배당가능이익 차이를 설명한다.

〈그림 3〉 평가이익으로 인한 상법과 법인세법 배당가능이익 차이 (단위 : 억 원)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참조

9)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서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생 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가. 주식등
나. 채권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라.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 제3호의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기존 예시와 같이 해당 기업의 발생이익을 10억 원으로 가정할 때, 상법상의 미실현이익은 법인세법상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는 평가손익인 주식, 채권 및 집합투자재산를 포함하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순자산액이므로 주식, 채권 및 집합투자재산 이외의 당기순이익에 반영된 평가이익이 2억 원으로 가정할 때, 상법상의 배당가능이익은 8억 원이 되며 법인세법상의 배당가능이익은 평가이익을 포함한 10억 원이 됨을 알 수 있다.

라. 상법과 법인세법 간 배당가능이익 차이로 인한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배제 사례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게 된 배경은 2011년 상법을 개정할 당시 미실현이익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도록 한 효과를 법인세법에서도 동일하게 개정하지 못해 발생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법인세법상 소득공제대상 법인[10] 중에 배당가능이익 계산에 대하여 관련법에서 상법을 따르도록 하는 리츠의 경우에는 해당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한다. 즉 상법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이 법인세법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9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해당 사례는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상법상 미실현이익을 제외하고 배당한 금액이 법인세법상 배당가능이익의 90% 미달하는 경우 지급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여부에 관한 내용이다. 해당 리츠는 2014년 법인세 신고금액이 2015년 12월 8일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배당소득공제를 적용하여 2014년 법인세 납부 금액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이를 거부하였다. 과세당국에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유는 해당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이며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에 90% 이상을 배당하였을 때 배당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법인세법 시행령[11] 제75조 제3항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집합투

---

10) 대상법인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 제19항 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11) 제75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투자회사등이 보유한 제73조 제2호 다목의 자산은 시가법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같은 법 시행령 제242조 제2항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시가법 중 해당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그 방법을 이후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자재산 평가손익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므로 평가손익을 더한 배당가능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해당 리츠가 지급한 배당금액이 배당가능이익의 90%를 넘지 못하므로 배당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어 경정청구를 반대하였다. 반면, 해당 리츠의 주장에 따르면 2014년도 기업회계기준으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유형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 시 평가이익이 발생하였으나 부동산투자회사법은 배당한도액을 상법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법상 미실현이익인 투자부동산 평가이익을 제외하고 상법에 정해진 배당한도액 안에서 최대로 배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배당지급액은 법인세법상의 배당가능이익 상법상의 계산 방법 차이로 인해 법인세법상 배당가능이익의 90% 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규정하는 최대배당액까지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은 배당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본 사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표 8〉 미실현이익으로 인한 상법과 법인세법 간 배당가능이익 차이

구분	상법	법인세법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	100	100
미실현이익	**15(차감)**	**15(미차감)**
배당가능이익	85	100
배당금액	80	80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여부	**94.12%**	**80%**
배당소득공제 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출처 : 국세청

<표 8>은 법인세법과 상법의 미실현이익 차감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배당가능이익의 차이를 설명하는 예시이다. 해당 리츠에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이 100이라 가정한다면, 본 리츠가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유형자산을 공정가치 평가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 15는 상법상의 배당가능이익에서 차감하여 배당가능이익이 85가 되었으며 여기서 94.12%인 80을 배당한다. 해당 배당금액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하였기 때문에 배당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신청한 것이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법인세법에 따라 해당 미실현이익 배당가능이익에서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배당가능이익이 100이 된다. 따라서 상법상으로 배당가능이익의 90%가 넘던 배당금액 80은 법인세법에서는 90%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배당소득공제가 불가능하여 해당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다.

2. 법인세법과 부동산투자회사법 간 배당가능이익 관련 세무상 이슈

가. 법인세법과 부동산투자회사법 간 배당가능이익 차이 : 이월결손금

리츠의 영업수익은 해당 투자부동산의 임대료, 개발이익 등과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영업비용으론 부동산의 관리비용과 감가상각비가 존재한다. 감가상각비는 자산의 가치가 시간에 지남에 따라 감소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현금으로의 지출이 아닌 회계상의 지출 항목이다. 본 감가상각비가 중요한 이유는 일반기업인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감가상각비가 비용으로 처리되어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지 않지만,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 범위 안에서 초과배당이 가능하다.

해당 내용을 일반기업 A와 리츠 B의 가상 예시를 통해 일반기업과 리츠의 배당가능이익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기업 A는 2022년 설립되어 2022년 말 처음으로 손익을 결산하였으며 손익결산 후 당기 10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해당 100억 원은 당기순이익은 자본항목으로 이동하여 이익잉여금(누적) 기록되면 해당 이익잉여금[12] 처음으로 발생하였다. A는 30억 원을 배당하기로 하였으며 배당 결정액 3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잉여금 70억 원은 다음 결산기로 이월된다. A는 2023년 말 또다시 100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여 A의 이익잉여금이 170억 원(2022년에 이월이익잉여금 70억 원과 (2023년 당기순이익 100억 원의 합)으로 증가하였다. A는 2023년 50억 원을 배당 결정하여 이익잉여금이 120억 원으로 계상되고 이 금액은 다음 결산기인 2024년으로 이월된다. 이처럼 일반기업은 A는 매해 이익잉여금의 일부분을 배당하여 차기로 이월되는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여 이익잉여금의 누적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게 된다.

이에 반해 리츠는 매 결산기에 발생하는 순이익의 90% 이상을 배당으로 투자자에게 배분한다. 즉 일반기업과는 다르게 이월되는 이익잉여금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는 해당 예시의 리츠 기업의 초과배당과 이월결손금 미치는 영향을 정리한 표이다.

〈표 9〉 감가상각비 초과배당으로 인한 리츠 기업의 배당가능이익과 이월결손금

단위 : (억 원)	2022년	2023년	2024년
당기순이익	100	100	110
누적이익잉여금 (배당가능이익)	100	50	**(10)**
배당	150	170	190
감가상각비	50	70	80
차기이월결손금	**(50)**	**(120)**	**(200)**

12) 본 예시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이익잉여금을 법인세법상 배당가능이익으로 설정하였다. 배당가능이익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장에 설명하였다.

일반기업 A와 같은 조건으로 리츠 B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리츠 B는 2022년 A와 같은 10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다. 리츠 B는 해당 당기순이익인 100억 원의 90% 이상 배당하여야 하지만 리츠인 경우, 감가상각비 안에서 초과배당이 가능하다. 따라서 감가상각비 50억 원을 더하여 총 150억 원을 배당으로 지급하여 결손금 50억 원(당기순이익 100억 원과 배당금 150억 원 차이)이 발생하였으며 해당 결손금은 다음 결산기로 이월된다. 2023년 말 B는 A와 같이 10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으나 전기 결손금(50억 원) 이월로 인해 이익잉여금이 50억 원으로 축소된다. 더하여 2023년 감가상각비 70억 원을 초과로 배당하면서 총 170억 원(당기순이익 100억 원과 감가상각비 70억 원)을 배당한다. 결과적으로 120억 원의 결손금이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리츠는 순이익을 초과하여 배당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결손금이 증가하여 본 예시와 같이 2024년도 누적이익잉여금은 －10억 원을 기록, 이익잉여금(배당가능이익) 음(－)수인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차이점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기준 배당가능이익과 법인세법 시행령 기준 배당가능이익 관련 법 조항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다. 다음은 해당 관련 법상의 배당가능이익 개념과 배당가능이익 시각 차이에 따른 세무상 이슈인 코람코자산운용 사례를 살펴본다.

나. 법인세법과 부동산투자회사법 간 배당가능이익 차이로 인한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배제 사례

이월결손금으로 인한 법인세법과 부동산투자회사법 간 배당가능이익 차이를 다시 정리하면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리츠는 순이익을 초과하여 감가상각비만큼을 초과배당하며 초과배당하는 감가상각비만큼 이월결손금이 발생하고 이 차이는 법인세법상의 배당가능이익과 부동산투자회사법과 시행령 기준 배당가능이익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 차이로 인해 최근 삼성세무서가 국내 대형 리츠 자산관리회사(AMC)인 코람코자산신탁의 6개 리츠에 170억 원 규모의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리츠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었다. 삼성세무서에 따르면 해당 추가 법인세 부과 요인은 코람코자산신탁의 리츠가 배당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이월결손금 공제가 불가해 추가 법인세를 부과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삼성세무서는 해당 리츠가 회계상 감가상각비(이월결손금)를 배당재원으로 사용하면서 해당 배당에 따른 법인세 감면 혜택까지 복수로 적용받은 점을 문제로 삼았다. 즉 법인세법상으로 회사에 남아있어야 하는 감가상각비가 배당에 포함되었고 동시에 법인세를 감면받았으니 그동안 적게 부과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삼성세무서의 논리였다. 해당 이슈는 현재 고금리로 자금조달 비용이 늘어나 투자자들에 관심이 줄어든 리츠 시장 전반에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삼성세무서의 논리대로 배당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면 지금까지 모든 리츠에서 배당재원으로 사용된 감가상각비는 소득공제 취소 대상이 되며 연간 3조 원까지 투자

자들에게 배당될 배당금액이 줄어 리츠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코람코자산신탁은 국토교통부의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국토부의 법령해석은 2005년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리츠는 감가상각비의 범위에서 초과배당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해당 답변은 리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 따른 것이었다. 코람코자산신탁은 해당 국토부 법령해석을 기반으로 국세청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심사 결과 국세청은 리츠는 배당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일반 법인세법이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기반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코람코자산시탁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해당 결과는 리츠 업계와 부동산업계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리츠 배당 확대 정책에도 부합하는 결과라고 시장참여자들은 평가하였다.

코람코자산신탁 리츠 사례를 통해 배당가능이익을 산출할 때 부동산투자회사법과 법인세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하는지에 따라서 배당소득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감가상각비 초과배당으로 인한 이월결손금을 배당가능이익에 포함 여부에 대한 두 법 시각 차이로 인해 발생한 사례이다. 따라서 법인세법과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이월결손금 시각 차이로 인해 배당소득공제 여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예시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13]에서의 배당가능이익은 초과배당(감가상각비 범위 안에서 초과배당 가능)으로 발생한 전기의 이월된 결손금을 당기의 배당가능이익에 미차감 한다. 반면 법인세법[14] 시행령에서의 배당가능이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 또는 이월결손금을 차감하고, 이익준비금을 차감하는 금액이라 명시되어 있다. 정리하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은 이월결손금이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지만, 법인세법 시행령에서의 이월결손금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표 10>은 법인세법과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이월결손금 시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배당가능이익의 차이를 설명하는 예시이다.

〈표 10〉 이월결손금으로 인한 법인세법과 부동산투자회사법 간 배당가능이익 차이

구분	법인세법	부동산투자회사법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	100	100
이월결손금	**15(차감)**	**15(미차감)**
배당가능이익	85	100
배당소득공제 가능 배당금액 (90%)	**76.5**	**90**

출처 : 국세청

13)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2조(초과배당의 범위 등) 제2항

14)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항

위 표와 같이 리츠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이 100이라 가정하였을 때, 전기에 초과배당으로 인한 이월결손금 15는 법인세법 기준에서 배당가능이익에서 차감하지만,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는 배당가능이익에 해당 이월결손금이 포함된다. 따라서 법인세법상의 배당가능이익은 전기에 이월된 결손금 15를 차감한 85가 배당가능이익이 되며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배당가능이익은 이월결손금을 포함하기 때문에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인 배당가능이익이 100으로 같다. 즉 배당소득공제를 가능 배당금액이 76.5억 원과 90억 원으로 차이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리츠 시장을 위축시키기 충분한 영향력이 있는 사례임을 알 수 있다.

Ⅳ. 리츠 배당가능이익 관련 법규 개선방향

위 사례들을 종합해 볼 때 리츠 배당의 세무상 이슈는 법인세법과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산출방식 차이로 인해 발생한다. 배당가능이익이 리츠에서 중요한 이유는 첫째로 투자자에게 배분되는 배당금에 크기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리츠는 기존 투자상품인 주식과 채권과 비교하여 높은 배당수익률과 유동성을 자랑한다. 따라서 리츠 주주 관점에서 배당가능이익이 많을수록 더 많은 현금을 배분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위 사례들과 같이 관련 법에 따라 배당가능금액이 변동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위해 리츠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목적과는 상반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더불어 투자자산 평가손실만큼 순자산액 감소로 인해 이익배당한도가 축소되어 배당금액이 적어지고, 이에 따라 리츠는 배당하지 못한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면 해당 잔여 금액을 청산 시점까지 유보해야 하므로 청산 시점 주주들에게 이익이 이전되는 불공정한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더불어, 리츠 기업 관점에서 배당가능이익이 중요한 이유는 리츠의 배당소득공제 가능 여부가 배당가능이익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이다. 리츠는 배당가능이익 기준 90% 이상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해야만 배당소득공제를 받아 법인세비용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관련법상 통일된 기준이 없으므로 예상하지 못한 법인세비용이 부과되어 리츠의 장점인 배당의 안정성이 담보되지 못할 수 있다. 두 가지 이유 모두 투자자들에게 배분되어야 하는 배당금액의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리츠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종합해 보면, 해당 리츠 배당의 세무 이슈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1) 상법과 법인세법과 미실현이익 2) 법인세법과 부동산투자회사법과의 이월결손금으로 발생하는 배당가능이익의 차이를 최대한 일치시켜 세제지원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첫째, 평가손익 및 미실현이익의 평가 대상 자산 범위로 인해 발생하는 배당가능이익 차이는

2011년 상법을 개정할 당시 미실현이익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지 못해 발생한 차이이므로 법인세법에서도 동일하게 주식, 채권 및 집합투자재산 이외의 당기순이익에 반영된 평가이익 등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소득공제대상 법인인 리츠가 세제지원에 대한 논란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법인세법과 부동산투자회사법과의 이월결손금으로 인한 배당가능이익의 차이를 완화하기 위해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감가상각비 범위에서 초과배당할 경우 초과배당으로 인하여 이월된 결손금은 당기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차감하지 않는 예외를 적용이 필요하다. 해당 예외가 적용된다면, 법인세법과 부동산투자회사법과의 초과배당 범위 산출 시 불필요한 충돌에서 벗어나 코람코자산신탁 리츠 사례와 같은 시장의 혼란은 방지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배당 확대를 통해 미래 리츠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표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3 개정 방안

현 행	개정안
① 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① 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부동산투자회사가 감가상각비 범위에서 초과배당할 경우 초과배당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월된 결손금은 당기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차감하지 않는다)**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Ⅴ. 결 론

본 리츠 배당 관련 세무적 이슈들 사례를 요약하면,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기준으로 배당가능이익을 산출하여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의 배당금을 분배하여 소득공제를 받아 법인

세비용에서 벗어났으나 법인세법상 배당가능이익 산출법이 부동산투자회사법과 달라 배당금이 배당가능이익의 90% 초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행하여 그동안 받았던 소득공제에 문제가 공통적인 리츠 배당 관련 세무적 이슈이다. 따라서 해당 혼란을 줄이기 위해 법인세법과 부동산투자회사법과 충돌되는 배당가능이익 산출법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2024년 2월 리츠 배당확대법이 통과되면서 배당가능이익에서 기초자산의 평가손실을 차감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 본 결정은 배당가능이익의 증가로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배당이 분배가능함을 뜻하는 것은 물론 법인세법과 상법(부동산투자회사법)과의 배당가능이익 산출 시 미실현손실에 관한 이견이 없다는 점은 더 이상 배당소득공제 여부에 대한 충돌이 없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미실현이익의 평가 대상 자산 범위로 인해 발생하는 배당가능이익 차이와 법인세법과 부동산투자회사법과의 이월결손금으로 인한 배당가능이익의 차이 또한 완화하여 불필요한 시장의 혼돈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

리츠는 낮은 변동성과 더불어 높은 배당수익률과 환금성으로 주식과 채권의 대체투자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세무적인 이슈로 인해 배당가능이익 금액의 변동성이 증가한다면 해당 리츠의 장점이 유지되지 못하여 리츠의 투자 매력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견이 없는 통일된 세법개정을 통해 리츠 배당가능이익에 변동성을 억제함으로써 한국 리츠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김광윤, 강경진. 2014. “개정상법상 배당가능이익 계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회계・세무와감사연구 제59호 : 147－177.

김광윤. 2006. “최근 상법상 회계규정의 개정시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회계저널 제15권제4호 : 23－41.

김수성・최경진. 2024. “리츠(REITs) 배당가능이익에 대한 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조세논총 제9권 제1호 : 77－107.

김지홍・박정우. 1999. “기업회계원칙과 상법상의 기업회계규정에 나타난 차이인식 및 문제연구”. 회계저널 제8권 제1호 : 53－78.

박정우. 1999. “기업회계제도의 법적규제에 관한 연구”. 회계저널 제8권 제2호 : 141－169.

박정우. 2002. “상법상 계산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세무회계연구 제10권 : 91－118.

신현걸. 2022.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의 계산과 공시의 개선”. 상업교육연구 제36권 제5호 : 71－96.

심영. 2014. “주식회사의 배당가능이익 계산과 미실현이익”. 상사법연구 제33권 제3호 : 43－71.

하미혜・박경진・유영태. 2015 “재무보고상 배당가능이익과 상법상의 배당가능이익의 차이에 관한 연구”. 회계 저널 제24권 제3호 : 317－345.

Tax Issues and Improvement Measures Related to Distributable Profits of REITs

<Abstract>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REITs) have become an alternative investment to stocks and bonds due to their low volatility, high dividend yields, and liquidity. However, increased volatility in distributable profits due to tax issues has emerged, requiring investor caution. This study examines the tax issues related to REITs dividends through the recent case of Koramco Asset Trust, a prominent topic in the 2023 domestic REITs market. The tax authorities imposed additional corporate tax on Koramco Asset Trust, arguing that the carried-forward losses generated from depreciation, which is the source of excess dividends, should be excluded from income deductions. Koramco Asset Trust, however, asserted that there were no issues with income deductions based on the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and ultimately concluded that income deduction was possible.

As a corporation under the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REITs are obligated to pay corporate tax. However, if more than 90% of distributable profits are distributed as dividends, the amount is deducted from the taxable income, exempting the REITs from corporate tax. Therefore, the distributable profit of a REITs is crucial not only as the total amount of dividends paid to investors but also as the key criterion determining the eligibility for dividend income deduction. This significantly impacts the corporate tax expenses of REITs and is an essential factor in establishing dividend policies.

The tax issues related to REIT dividends stem from differences in the perspectives between the Commercial Act, the Corporate Tax Act, and the disparity between the Corporate Tax Act and the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regarding the calculation of distributable profits. The difference in the calculation of distributable profits between the Commercial Act and the Corporate Tax Act arises from their differing views on unrealized gains. Meanwhile,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rporate Tax Act and the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regarding distributable profits is due to the differing perspectives on whether it is permissible to distribute dividends in excess of retained earnings, which result from losses carried forward due to depreciation expenses.

This study proposes two improvement directions. First, it suggests amending the Corporate Tax Act to align the scope of assets subject to unrealized gains with that of the Commercial Act. This amendment could alleviate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deductibility of income due to distributable profits. Second, it recommends revising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to apply an exception where losses carried forward are not included in the current distributable profits during excess dividend distributions. This would help reduce the discrepancy

between the Corporate Tax Act and the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regarding distributable profits.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 long-term growth and stability of REITs' dividend policies, thereby ensuring long-term returns for investors. It examines various cases involving tax issues related to distributable profits in REITs are examined to understand the calculation methods and reasons for conflicts among the relevant laws. Based on this analysis, a unified amendment to the tax law is proposed to resolve differences in the calculation of distributable profits, which is expected to help revitalize the domestic REIT market.

<Key words> REITs, Distributable Profits, Carried-Forward Losses, Unrealized Gains and Losses, Dividend Income Deduction

리츠활성화를 위한 배당유보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연구

윤 성 만 · 김 완 용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양사이버대학교)

리츠활성화를 위한 배당유보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연구

윤성만(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완용(한양사이버대학교)

목차

Ⅰ. 서 론
Ⅱ. 국내 리츠제도의 현황 및 리츠 과세제도
Ⅲ. 리츠 재투자를 위한 배당유보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방안
Ⅳ. 조세지출액 추정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Ⅴ. 요약

Ⅰ. 서 론

1. 연구배경

- 연간 부동산 개발 및 임대 부문 매출 : (2022년 기준) 약 190조원 규모
- 국민들이 간접투자를 통해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2001년 리츠제도를 도입
- 2024.5월말 기준 인가·등록된 리츠는 375개이며, 이 중 상장리츠는 23개로 자산 규모는 약 98조원, (개인)투자자는 약 41만명 수준
- 고배당(약 8%), 세제 혜택(분리과세, 9%)으로 투자자 증가 : ('20년) 9만명 → ('23년) 41만명
- 국민은 리츠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얻고 있으며, 정부·지자체는 그간 리츠로써 18만호 임대주택을 공급하며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
- 기업 또한 리츠를 통해 부동산을 유동화하여 신산업 투자재원 마련
- 리츠 배당가능이익의 10% 이상을 배당유보시, 법인세법상 소득공제(90%이상 배당하여야 소득공제 적용)가 적용되지 않아 배당가능이익 전체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

3

Ⅰ. 서 론

2. 연구의 필요성

- 현재 부투법 제52조 제4의2호에 따라서 '부동산투자회사의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아니한 자 또는 이를 위반하여 배당결의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리츠의 투자여력 확충을 위해 통해 90% 이상 배당의무 위반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벌칙 폐지 등 배당유보 허용 추진 중
- 이와 관련하여 관계부처에서 이를 폐지하고자 개정작업 중에 있음
  - 다만, 부투법상 배당유보를 허용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소득공제 규정에서는 변화가 없어 제도개선의 체감도가 저하
  - 리츠가 재투자 등 일정한 요건 하에서, 배당을 유보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관련 과세특례의 필요성이 존재

4

Ⅱ. 국내 리츠제도의 현황 및 리츠 과세제도

1. 국내 리츠일반 및 관련 법제

- 국내 리츠의 도입
  - 부동산투자회사(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이하에서 '리츠')는 2001년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에서 '부투법')이 제정되면서 도입
  - 리츠는 1960년 미국에서 최초 도입을 시작으로 2000년 이후 유럽 및 아시아로 급속히 확산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보유 부동산 유동화를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부투법을 제정(2001.5.7)하여 처음 도입되었음
- 리츠의 도입목적
  - 일반인에게 부동산 간접투자 기회 제공 : 부동산 투자 접근이 어려운 소액투자자에게 우량 부동산에 대한 투자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일반인의 부동산 간접투자 기회제공
  - 부동산 가격 안정: 인구증가와 경제발전에 따른 지가상승 등에 의한 투기적 부동산 시장을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전환하여 부동산시장 가격안정 도모함
  - 건설시장 활성화 도모 : 외환위기 이후 건설산업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자본시장에서 안정적 자금조달이 가능한 투자도관체(conduit) 필요함
  - 부동산산업의 발전 : 상대적으로 낙후된 부동산시장을 선진화하고 우수 전문인력을 육성함으로써 대외개방에 따른 경쟁력을 제고하고 유동화하기 어려운 부동산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 도모함

5

Ⅱ. 국내 리츠제도의 현황 및 리츠 과세제도

1. 국내 리츠일반 및 관련 법제

- 리츠의 정의 :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주식발행 등을 통해 모은 자금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건 등에 투자·운용하여 얻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이 목적인 주식회사



  - 다수의 투자자 :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일반인의 청약에 제공(부투법 제14조의8제2항)
  - 부동산 : 총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건축 중인 건축물 포함)에 투자. 운용(부투법 제25조제1항)
  - 투자자에게 배당 :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의무(부투법 제28조)
  - 주식회사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적용(부투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6

Ⅱ. 국내 리츠제도의 현황 및 리츠 과세제도

1. 국내 리츠일반 및 관련 법제

- 리츠의 종류
  - 우리나라의 리츠는 부투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자기관리리츠와 위탁관리리츠 및 기업구조조정리츠로 구분됨
  - 우리나라의 경우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전문성 있는 자산관리회사가 운영관리하는 위탁관리리츠가 대부분
- 자기관리리츠
  - 리츠와 자산관리회사가 동일, 리츠가 실체적인 회사의 구조를 가짐,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및 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실체형 회사
- 위탁관리리츠
  - 자산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가 자산관리업무를 수행, 자산의 투자. 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명목형 회사
- 기업구조조정리츠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와 동일한 구조이나 투자대상 부동산이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으로 한정

7

Ⅱ. 국내 리츠제도의 현황 및 리츠 과세제도

종류	자기관리리츠	위탁관리리츠	기업구조조정리츠
투자대상	일반부동산 / 개발사업	일반부동산 / 개발사업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
영업개시	국토교통부 영업인가(공모, CR리츠는 금융위 사전협의)		
회사형태	실체회사(상근 임·직원)	명목회사(상근없음)	
최저자본금	70억원	50억원	
주식분산	1인당 50%이내		제한없음
주식공모	주식 총수의 30%이상		의무사항 아님
상장	요건충족시		의무사항 아님
자산구성 (매분기말)	부동산:70%이상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 80%이상)		기업구조조정부동산:70%이상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 80%이상)
자산운용 전문인력	5인 (리츠 상근 고용)	자산관리회사(5인)에 위탁운용	
배당	50%이상 의무배당(초과배당가능)	90%이상 의무배당(초과배당가능)	
처분제한	1년		제한없음
	개발사업후 분양하는 경우에는 처분 제한기간 없음		
자금차입	자기자본의 2배이내(주총 특별결의시 10배)		

* 자료 : 국토교통부 리츠정보시스템

8

Ⅱ. 국내 리츠제도의 현황 및 리츠 과세제도

3. 리츠 과세제도

- 부동산 간접투자기구가 '**독립적인 실체를 가지느냐**'에 대한 판단은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과세원칙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
  - 부동산 간접투자에 대한 과세는 부동산 간접투자재산의 운용성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를 세법상 독립적인 실체로 인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도관이론(conduit theory)과 실체이론(entity theory)으로 나누어짐
  - **실체이론**(entity theory) :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의 사회적, 경제적 주체로서의 역할을 인정하여 독립적인 과세상의 실체로 인정하는 이론
  - ✓ 실체이론에 의하면 운용의 성과 등에 대하여 부동산간접투자 기구의 성과로 인식하여 과세하고 실제의 투자자에게 분배되는 과정에서 다시 과세하게 되므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
  - **도관이론**(conduit theory)은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를 독립적인 과세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분배하기 위해 활용되는 도관(conduit)으로 보는 이론
  - ✓ 도관이론에 의하면 투자 대상인 부동산에서 발생한 이익이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에 귀속될 때 과세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분배될 때 그 소득의 원천별로 투자자에게 과세함(이중과세의 문제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게 됨)

9

Ⅱ. 국내 리츠제도의 현황 및 리츠 과세제도

3. 리츠 과세제도

- **우리나라 리츠에 대한 과세이론의 적용**
- 부투법에 따른 리츠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위탁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리츠는 해당 회사가 주주 등에게 각 사업연도의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함(「법인세법」 제51조의2)
  - 형식상으로는 실체이론이나 실질상 도관이론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자기관리 리츠는 실체형으로 법인세 과세 대상이며,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대상 법인에 해당되지 않음
  - 한편, 「소득세법」상 리츠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구분되어 실체이론의 입장에서 과세되고 있음(「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10

Ⅱ. 국내 리츠제도의 현황 및 리츠 과세제도

3. 리츠 과세제도

(1) 리츠에 대한 과세

- (**법인설립시 등록면허세**) 리츠는 법인 설립 및 증자시 0.48%(지방교육세 포함)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지방세법」 제28조)
  - 자기관리 리츠를 제외하고는 대도시 내 신규법인 설립(설립 후 5년 이내 자본 증가 포함)에 대한 3배 중과를 적용하지 않음(「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 (**법인세**) 리츠는 주식회사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다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리츠, 위탁관리 리츠는 해당 회사가 주주 등에게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그 금액을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함(「법인세법」 제51조의2)
  - 일반법인과 달리 영업을 위한 별도의 물적 시설이나 종업원을 두지 않는 일종의 명목회사로서 도관의 성격이 강한 점을 감안하여 리츠가 배당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사실상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음
  - 이 경우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아니함(「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 제1항)
  - 반면, 자기관리 리츠는 실체회사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과세 대상이며, 소득공제 적용대상 법인에 해당되지 않음

11

Ⅱ. 국내 리츠제도의 현황 및 리츠 과세제도

3. 리츠 과세제도

(2) 리츠 투자자에 대한 과세

- 리츠는 주식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이므로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은 리츠로부터 받은 분배금과 주식의 양도차익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법인 주주의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과세, 개인 주주의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의 형태로 소득세가 과세

가) 법인 주주

- (**분배소득**) 법인 주주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수입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과세됨
  - 법인은 소득의 종류와 관계없이 경제적 이익은 모두 익금으로 과세
  - 법인 주주의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의 일부를 익금불산입할 수 있음(「법인세법」 제18조의)
  - 일반적으로는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은 주식의 상장 여부, 지분율 등에 따라 30%, 50%, 100%의 차등적인 비율을 적용하여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음
  - 다만,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법인세법」 제51조의2)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수입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하지 않음(「법인세법」 제18조의2와 제18조의3)
  -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소득공제 적용법인은 기업구조조정 리츠와 위탁관리 리츠가 있음
- (**주식처분으로 인한 소득**) 법인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양도손익 유가증권처분손익으로 보아 당해 법인의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과세됨

12

Ⅱ. 국내 리츠제도의 현황 및 리츠 과세제도

3. 리츠 과세제도

나) 개인 주주

- **(분배소득)** 리츠가 개인 투자자에게 이익을 분배할 때 배당소득으로 보아 14%(지방소득세 포함 15.4%)의 세율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됨
  -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4%(지방소득세 포함 15.4%)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가 종결
  - 배당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된 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 자기관리 리츠는 일반법인과 동일한 법인 단계와 주주 단계에서의 이중과세 조정 방법이 적용되므로 종합소득금액에 배당소득이 포함되는 경우 배당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소득공제 적용 법인은 기업구조조정 및 위탁관리 리츠로부터 받은 배당은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 (**주식처분으로 인한 소득**) 개인 주주의 리츠 주식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은 대주주 및 상장 유무 등에 따라 과세 여부와 세율을 달리 적용하여 신고납부함
  - 개인 주주가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나, 대주주 및 장외에서 거래하는 상장주식 또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대주주 여부주식 여부·중소기업 여부 등에 따라 비과세 또는 10~30%의 세율이 적용됨(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13

Ⅱ. 국내 리츠제도의 현황 및 리츠 과세제도

3. 리츠 과세제도

-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제 시행시 상장 여부, 대주주 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든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하여 전면 과세할 예정임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출자지분은 집합투자증권으로 보며(「소득세법」, 제87의2, 제9조 제21항) 집합투자증권의 양도·환매로 인한 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함
    - 「자본시장법」 제9조 제21항의 집합투자증권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등에 따른 출자지분 또는 수익권은 집합투자증권으로 과세함
    -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특별법에 따른 출자지분 또는 수익권의 환매·양도를 포함함
  - 금융투자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5%를 적용함
  - 국내 상장주식 등의 경우 연간 5천만원, 해외주식·비상장주식 등의 경우 '기타금융투자소득'으로 보아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금액을 적용

14

Ⅱ. 국내 리츠제도의 현황 및 리츠 과세제도

3. 리츠 과세제도

<table>
<tr><th>구분</th><th>개인 투자자</th><th>법인 투자자</th></tr>
<tr><td>배당소득</td><td>- 원칙: 배당소득의 14% 원천징수
- 저율 분리과세: 공모리츠 등 투자 시 9%
- 종합과세: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 시
- 종합과세 시 배당세액공제 미적용
- 원천징수세액은 종합과세 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td><td>- 법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법인세납부
- 지급배당 소득공제 적용 대상(「법인세법」 제18조의2 및 3)은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규정 미적용</td></tr>
<tr><td>주식처분으로 인한 소득(거주자, 내국법인)</td><td><table><tr><td>국내 상장</td><td>대주주</td><td>양도</td></tr><tr><td></td><td>소액주주</td><td>과세 제외</td></tr><tr><td>비상장</td><td colspan="2">양도</td></tr></table></td><td>- 주식양도차익을 법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법인세 납부</td></tr>
</table>

15

Ⅱ. 국내 리츠제도의 현황 및 리츠 과세제도

3. 리츠 과세제도

(3) 리츠 관련 과세특례제도

(리츠 투자자 : 법인 주주)

- 내국법인이 공모리츠에 영업인가일로부터 1년 이내인 토지 또는 건물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법인세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음(「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8)
  - 현물출자를 통한 공모리츠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7년 신설되었으며, 적용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임

(리츠 투자자 : 개인 주주)

-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공모리츠 및 부동산펀드 보유 시 투자금액 5천만원을 한도로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배당소득세 9%와 주민세 0.9%)를 적용하고 있음(「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
-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뉴딜인프라 집합투자기구, 뉴딜펀드)로부터 2022년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9.9%(배당소득세 9%와 주민세 0.9%)의 세율로 소득세가 분리과세되는 특례규정이 운용 중임(「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
- 거주자가 대토보상권을 리츠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 리츠에 투자한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순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16

Ⅱ. 국내 리츠제도의 현황 및 리츠 과세제도

3. 리츠 과세제도

(4) 원천징수

- 리츠는「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므로 투자자가 주주의 지위에 해당하여 투자자에 대한 수익의 분배는 배당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며,「세법」상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받게 됨(「부동산투자회사법」 제3조 제1항)
  - 리츠가 개인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분배 시 원천징수 의무
  - 개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
  - 개인의 금융소득(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분 제외)이 개인별로 연간 2천만원(종합과세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와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
  -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
- 리츠가 법인 주주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분배 시 원천징수 의무가 없으나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 내국법인의 원천징수 대상소득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으로 납부 세목은 법인세

17

Ⅲ. 리츠 재투자를 위한 배당유보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방안

1. 리츠 배당유보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의 필요성

가. 투자회사 간 배당의무의 차별성 존재

- 현행 법인세법 제51조의2에서 규정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투자회사 유형이 8개가 존재함

구 분	근거법	배당의무조항	배당 관련 처벌조항
유동화전문회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
투자회사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	○	○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법	×	×
특수 목적 법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	×
문화산업전문회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	×

18

Ⅲ. 리츠 재투자를 위한 배당유보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방안

1. 리츠 배당유보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의 필요성

가. 투자회사 간 배당의무의 차별성 존재

- 유사 투자회사 관련법에서는 배당의무 및 배당 관련 처벌 조항이 없으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는 이러한 조항이 있어 차별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현행 부투법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익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하고 이를 배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 그러나 다른 유사 투자회사법에서는 이러한 배당의무 조항이 없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처벌 조항도 없는 상황
  - 부동산투자회사는 다른 투자회사와 동일하게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하지 않을 경우 현행 법인세법상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도 적용
- 결국, 배당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동산투자회사는 징역 또는 벌금과 함께 소득공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중의 징벌적 처분**을 받게 되는 결과
- 특히 상장 부동산투자회사는 계속기업으로 존속되는 실체로서 양질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의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주주가치를 높이는데 있어 현행 배당의무는 이에 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부동산투자회사는 단순 배당에만 집중하고 미래 주주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한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 장기적인 주주가치에는 부정적이라는 이론적 근거가 존재
  - 따라서 일정부분 미래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투자여력을 확보하도록 여건마련이 필요

Ⅲ. 리츠 재투자를 위한 배당유보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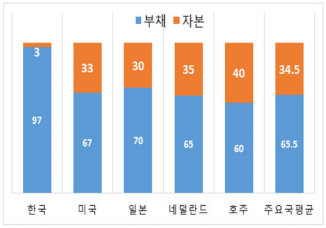
1. 리츠 배당유보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의 필요성

나. 부동산개발을 위한 리츠활성화 정책에 부합된 배당유보의 필요성

- (**부동산PF의 낮은 자기자본**) 주요 선진국은 부동산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이 30~40%로 우리나라 3% 수준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재무구조가 건실한 상황임(황순주, 2024)
- 미국에서는 금융회사가 PF대출을 취급할 때 자기자본이 총사업비의 최소 3분의 1(33%) 이상이 될 것을 요구하는 등 재무구조가 건실한 수준
- 일본, 네덜란드, 호주에서도 자기자본비율은 30~40% 수준으로 높은 편, 시행사는 전체 자기자본의 33~50% 정도를 직접 투입하고 나머지는 다른 지분투자자를 유치하여 조달
- 이처럼 우리나라의 부동산PF는 차입을 통한 자금조달이 대부분이어서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 열악한 수준

주요국과의 부동산PF의 재무구조 비교

(단위 : %)



자료 : 황순주(2024)

Ⅲ. 리츠 재투자를 위한 배당유보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방안

1. 리츠 배당유보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의 필요성

나. 부동산개발을 위한 리츠활성화 정책에 부합된 배당유보의 필요성

- 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자기자본을 통해 토지를 미리 확보한 후 공사비만 PF대출을 통해 조달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반면, 우리나라 PF의 자기자본은 토지의 10% 수준에 불과한 수준임
  - 미국과 네덜란드는 토지를 확보하고 인허가를 받은 다음 공사비만을 조달하기 위해 대출을 받거나 시행사가 토지 확보한 후 건축허가권을 취득한 후에야 비로소 은행 대출이 가능
  -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시행사의 자기자본이 극히 적기 때문에 토지비 대부분과 공사비 및 기타비용 전체를 PF대출을 통해 조달
  - 자기자본으로는 토지비의 10% 수준인 토지 계약금 정도만 충당하고, 토지비의 대부분인 토지 잔금은 브릿지론을 일으켜 지불
  - 이후 인허가를 취득하고 착공하는 시점에서 브릿지론을 본PF 대출로 차환하는 방식
-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인허가에 실패하거나 사업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본 PF로의 차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실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준
  - 그러나 주요국에서는 자기자본으로 토지비를 충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환 리스크가 높지 않은 수준

21

Ⅲ. 리츠 재투자를 위한 배당유보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방안

1. 리츠 배당유보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의 필요성

나. 부동산개발을 위한 리츠활성화 정책에 부합된 배당유보의 필요성

- (**부동산PF의 낮은 자기자본비율과 높은 보증 의존도의 영향**) 우리나라 부동산PF의 이러한 특성은 다양한 측면의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음
- 시행사의 영세화가 지속되어 시행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
  - 투입 자본은 적고 수익성은 높은 부동산PF는 영세 시행사가 난립하고 높은 자본력을 갖추고 부동산개발 경험을 장기간 축적한 신뢰할 수 있는 대형 시행사가 출현하기 어려운 구조
- 저자본·고보증 구조는 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를 부실화시킬 가능성을 내재
  - 부동산개발사업은 고위험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성 평가가 중요한 과정
  - 우리나라에서는 시행사가 자본확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분투자자 유치하지 않은 구조이고, 이러한 투자자로부터 사업성 평가를 받지 않음
  - 특히 신뢰성 높은 대형 건설사, 부동산신탁사 또는 증권사 등이 대출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기 때문에, 은행 등 금융기관은 거액을 빌려주면서도 사업성을 제대로 평가할 유인이 없음
  - 전문평가기관인 신용평가사는 일반적으로 사업주체의 의뢰를 받아 사업성을 평가하기 때문에 독립적이면서 객관적인 신용평가 가능성이 낮은 상황
- 이처럼 체계적이면서 객관적인 사업성 평가 없이 제3자의 보증에 의존하여 대출이 이루어지면서 거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문제도 발생
  - 보증이 있기 때문에 사업성 등 미시적인 요인들이 대출에서 크게 반영되지 않는 반면, 금리 및 부동산경기 등 거시변수가 주로 고려되면서 거시적 호경기에는 대출이 증가하고 불경기에는 대출이 급락하는 현상이 발생

22

Ⅲ. 리츠 재투자를 위한 배당유보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방안

1. 리츠 배당유보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의 필요성

나. 부동산개발을 위한 리츠활성화 정책에 부합된 배당유보의 필요성

- (**리츠를 활용한 부동산투자개발 정책의 필요성**) 미국에서는 리츠가 부동산개발사업의 최대 지분투자자이자 직접적인 시행사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처럼, 리츠를 부동산투자개발사업의 직접적인 시행주체로 설정하는 방안이 필요함
  - 리츠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여 사회화하는 특성
  - 리츠는 주식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해야 하는 법적 공모의무가 있다. 공모의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연기금 · 공제회 등 국민을 대리하는 공적 투자기관이 리츠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해야 하므로 이 경우에도 개발이익의 사회화가 가능
- 리츠는 부동산관리회사법에 따라 최소 자기자본비율 규제가 이미 적용되고 있어 자기자본비율이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높기 때문에 건전한 재무구조를 구축
  - 리츠는 자기자본의 2배까지만 차입이 가능한데, 이러한 차입규제를 총사업비(총자산=자본+부채) 대비 자기자본비율로 환산하면 최소 33%의 자기자본비율 수준
  -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출석주주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를 거치면 자기자본의 10배까지 차입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최소 9% 이상의 자기자본비율이 유지되는 격

23

Ⅲ. 리츠 재투자를 위한 배당유보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방안

1. 리츠 배당유보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의 필요성

나. 부동산개발을 위한 리츠활성화 정책에 부합된 배당유보의 필요성

- (**부동산PF 수준의 부동산투자회사 배당 및 투자여력 확보**) 이처럼 리츠가 부동산PF를 대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리츠의 투자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
-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법이나 법인세법은 당해연도 발생한 이익의 90% 이상을 무조건 투자자에게 배당함으로써 리츠의 재투자 여력을 상실케 규정
- 그러나, 리츠를 통한 투자를 유치하는 것과 더불어 리츠의 배당을 유보하여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
- 리츠 투자자의 결의를 통해 재투자를 위한 배당유보하는 경우에 한해 당해연도 이익의 일정부분에 한해 배당하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
- 이를 통해 현행 부동산PF 수준의 유연한 투자와 배당이 담보할 수 있어야만 부동산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음

24

Ⅲ. 리츠 재투자를 위한 배당유보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방안

2. 리츠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방안

- **개선안 1 : 재투자적립금 전입액의 손금산입과 배당가능이익에서 차감하는 방안**
- 가칭"재투자적립금"을 설정하고 적립액을 손금산입(△유보)한 후 2년 이내에 재투자로 사용하여 추인하고 적립액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차감하는 방안
  - 재투자적립금 전입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배당가능이익에서도 제외함으로써 2년 이내에 재투자에 활용되어야 하는 의무조건
  - 만약 2년 이내 재투자에 활용되지 않을 경우, 익금산입(유보) 후 과세하고 재정이자 상당액을 부과하는 동시에 배당가능이익에 포함시켜 배당해야 함
  - 재투자 미활용 환입액을 배당하더라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 이때 재투자적립금 명세서라는 부속서류로 관리하고, 재정이자율=기획재정부장관 고시 재정이자율 적용

25

Ⅲ. 리츠 재투자를 위한 배당유보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방안

2. 리츠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방안

- **개선안 2 : 배당가능이익에서 배당유보액을 차감하는 방안**
- 배당유보액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차감한 후의 금액의 90%를 배당하는 방안
  - 이 배당유보액은 2년 이내에 산업시설 및 주택, 설비증축 등에 투자해야 하는 의무조건
- 만약 2년 이내 투자에 활용되지 않을 경우, 배당가능이익에 추가 산입(환입)
  - 당기순이익을 포함한 과세소득에 배당액을 소득공제하는 현행 과세체계와 동일하기 때문에 배당유보액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결과
- 다만, 현행 배당가능이익에서 배당유보액이 차감되는 것

26

Ⅲ. 리츠 재투자를 위한 배당유보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방안

2. 리츠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방안

과세특례 방안별 비교

구분	현행	개선안 1. 재투자적립금 전입액 손금산입(△유보)	개선안 2 배당유보액 차감
배당가능이익	부동산투자회사법 상 이익배당한도 + 당기 감가상각비 등	현행 배당가능이익 - 재투자적립금 전입액	현행 배당가능이익 - 배당유보액
장점		·재투자 강제(체계적인 사후관리)	·세수효과 발생
단점		·체계적인 사후관리 ·조세지출이 발생	·재투자 미강제로 인한 사내유보 증가

27

Ⅳ. 조세지출액 추정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1. 부동산투자회사의 배당유보 관련 과세특례의 조세지출액 추정

- 부동산투자회사의 배당유보에 따른 조세지출액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최근 배당규모 기준 유보비율을 추정해야 하고, 이에 배당액 감소에 따른 배당소득 관련 조세지출과 유보에 따른 추가적인 세수를 추정해야 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회계기간이 일반적으로 3개월, 6개월 및 9개월로 설정되기 때문에 일괄 2024년 결산 투자보고서 상의 최근 4개 회계기간의 배당 관련 사항을 합산하여 그 배당가능액, 배당금액 및 배당한도 등을 산출
- 배당가능이익 = 부동산투자법상 이익배당한도 + 당기 감가상각비 등
  - 부동산투자회사법 상 이익배당한도 = 상법 상 이익배당한도에서 자산의 평가손실(직전 사업연도까지 누적된 평가손실을 포함)은 미고려
  - 당기 감가상각비 등 = 당기 감가상각비 + 전기이전 감가상각비 초과배당누적액

28

Ⅳ. 조세지출액 추정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1. 부동산투자회사의 배당유보 관련 과세특례의 조세지출액 추정

- 최근 4개 회계기간의 당기순이익은 총 14,268억원으로 상법상 이익배당한도 –10,176억원, 부동산투자법상 이익배당한도 –9,423억원 그리고 배당가능이익 22,856억원 수준으로 산출됨
  - 전체적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이익배당한도가 아닌 당기 감가상각비 등을 한도로 초과배당을 하고 있으며, 배당가능이익 22,856억원을 초과한 24,761억원의 배당금
  - 배당금은 평균 189억원으로 0~5,085억원 범위
- 재투자를 위한 배당유보비율은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영성과 및 재정상태에 따라 달리질 수 있는데, 본 연구는 현행 배당금의 일정비율이 유보된다는 가정을 하여 유보액과 세수효과의 크기를 추정하고자 함
  - 배당유보비율은 현행 배당금의 5%, 10%, 20% 및 30%로 가정하여 추가유보액과 세수효과를 추정
  - 세수효과는 배당유보로 인한 배당소득의 감소에 따른 법인세나 소득세가 감소하게 되는데, 본 연구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가 개인주주로서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받는 것으로 가정

2024년 결산기(4개 회계기간)의 배당 관련 사항

(단위 : 억원)

구 분	합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Q1.	중간값	Q3.	최대값
당기순이익	14,268	109	312	-266	-5	12	78	2,281
상법상 이익배당한도	-10,176	-78	598	-1,810	-134	-29	29	5,036
자산의 평가손실	752	6	41	-	-	-	-	418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이익배당한도	-9,423	-72	600	-1,810	-134	-26	32	5,036
당기 감가상각비 등	32,305	247	497	-	2	55	211	2,961
배당가능이익	22,856	174	594	-1,457	14	56	191	5,085
배당금	24,761	189	496	-	16	51	175	5,085

주1) 상법상 이익배당한도 : 순자산가액 - 자본금 - 자본준비금 - 상법 시행령 제19조의 미실현이익 - 기타(주식할인발행차금 상각액 등)
주2) 부동산투자회사법 상 이익배당한도 : 상법 상 이익배당한도에서 자산의 평가손실(직전 사업연도까지 누적된 평가손실을 포함)은 고려하지 아니함
주3) 당기 감가상각비 등 : 당기 감가상각비 + 전기이전 감가상각비 초과배당누적액
주4) 배당가능이익: 부동산투자회사법 상 이익배당한도 + 당기 감가상각비 등

Ⅳ. 조세지출액 추정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1. 부동산투자회사의 배당유보 관련 과세특례의 조세지출액 추정

- 개선안별 유보액과 세수효과를 추정한 결과, 1안의 경우 배당소득 관련 세수가 감소하는 반면 2안은 배당유보에 따른 법인세 세수가 증가하여 오히려 세수가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냄
  - 재투자를 위한 5% 배당유보비율의 경우 1,153억원의 유보액, 10%는 2,306억원, 20% 4,612억원 그리고 30% 6,918억원 수준으로 추정
  - 이에 따라 배당소득 감소에 따른 소득세 세수는 각각 161억원, 323억원, 646억원 및 969억원
  - 또한 2안의 경우, 배당유보액에 대한 법인세 세수가 각각 192억원, 416억원, 865억원 및 1,317억원으로 추정되어 결과적으로 전체 세수는 각각 30억원, 93억원, 219억원 및 348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

개선안별 유보액 및 세수효과 추정결과

(단위 : 억원)

구 분			현행	유보비율			
				5%	10%	20%	30%
1안	유보	재투자 유보액[1]	3,334	4,487	5,640	7,946	10,252
		추가 유보액		1,153	2,306	4,612	6,918
	세수	법인세 세수[2]	-	-	-	-	-
		소득세 세수[3]	3,466	3,305	3,144	2,821	2,498
		소계	3,466	3,305	3,144	2,821	2,498
		현행 대비 증감액		-161	-323	-646	-969
2안	유보	재투자 유보액[1]	3,334	4,487	5,640	7,946	10,252
		추가 유보액	-	1,153	2,306	4,612	6,918
	세수	법인세 세수[2]	-	192	416	865	1,317
		소득세 세수[3]	3,466	3,305	3,144	2,821	2,498
		소계	3,466	3,497	3,560	3,686	3,814
		현행 대비 증감액	-	30	93	219	348

주1) 재투자유보액=현행 배당액의 5%, 10%, 20% 및 30%를 재투자를 위하여 유보한 금액
주2) 법인세 세수 = 재투자유보액을 현행 법인세율로 과세한 세액
주3) 소득세 세수 = 주주가 개인주주라는 가정하여 14%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

Ⅳ. 조세지출액 추정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2.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시나리오 가정**) 부동산투자회사의 배당유보액을 재원으로 재투자가 이루어짐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
  - 첫째, 리츠 배당유보의 재투자는 직접적으로 건설업(건물건설 및 건축보수업, 토목 건설업)의 투자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 둘째, 리츠 배당유보의 재투자가 건설업의 투자활성화로 이어진 후 부동산업과 연관된 산업의 수요 변동에 영향
  - 이 같은 시나리오는 1·2차 모두 공급사슬 구조에서 전방으로부터의 경제적 파급이 후방산업으로 파급되는 경로를 구성할 것으로 가정
  - 따라서 건설업과 부동산업에의 파급효과가 동시에 발생하여 이 둘을 합한 효과가 결국 리츠의 배당유보로 인한 효과로 가정
- (**배당유보 비율의 가정**) 세수추계와 동일하게 본 연구는 배당유보의 크기를 최근 배당액의 5%, 10%, 20% 및 30% 수준으로 가정하고자 함
  - 개정예정인 부동산투자회사법 상 배당유보제가 시행될 경우, 유보비율은 회사마다 상이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본 연구는 배당액의 5%, 10%, 20% 및 30% 수준으로 가정하여 재투자를 위한 배당유보액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본분류
건설업	건물건설 및 건축보수업	주거용 건물 건설업	주거용 건물 건설업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건축보수업	건축보수업
	토목 건설업	교통시설 건설업	도로시설 건설업
			철도시설 건설업
			항만시설 건설업
		일반토목시설 건설업	하천사방 건설업
			상하수도시설 건설업
			농림수산토목 건설업
			도시토목 건설업
		산업시설 건설업	환경정화시설 건설업
			발전소 시설 건설업
			산업플랜트 건설업
		기타 건설업	기타 건설업
부동산업	부동산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
		기타 부동산 임대 및 개발, 공급업	기타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31

Ⅳ. 조세지출액 추정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2.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생산유발의 경우, 3,421억원~20,528억원 수준이 유발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중 직접효과는 2,350억원~14,101억원 수준으로 추정
  - 5%의 배당유보는 3,421억원, 10%는 6,843억원, 20%는 13,685억원 그리고 30%는 20,528억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중 직접효과는 배당유보액 대비 약 3배 수준
- 부가가치유발은 2,131억원~12,784억원 수준이 유발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중 직접효과는 1,408억원~8,447억원 수준으로 추정
  - 5%의 배당유보는 2,131억원, 10%는 4,261억원, 20%는 8,522억원 그리고 30%는 12,784억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중 직접효과는 배당유보액 대비 약 1.8배 수준
- 또한 고용유발의 경우에는 991명~5,943명으로 여기서 직접효과는 749명~4,496명 그리고 간접효과는 241명~1,447명 수준으로 분석

재투자를 위한 배당유보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결과

(단위 : 억원, 명)

구 분		배당유보액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고용유발
5% 배당유보	직접효과	1,153	2,350	1,408	749
	간접효과		1,071	723	241
	계		3,421	2,131	991
10% 배당유보	직접효과	2,306	4,700	2,816	1,499
	간접효과		2,142	1,446	482
	계		6,843	4,261	1,981
20% 배당유보	직접효과	4,612	9,401	5,631	2,997
	간접효과		4,285	2,891	965
	계		13,685	8,522	3,962
30% 배당유보	직접효과	6,918	14,101	8,447	4,496
	간접효과		6,427	4,337	1,447
	계		20,528	12,784	5,943

32

Ⅴ. 요약

- 리츠는 주식회사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다만, 명목회사로서 도관의 성격이 강한 점을 감안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리츠, 위탁관리리츠**는 해당 회사가 주주 등에게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그 금액을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사실상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음(「법인세법」 제51조의2)
  - **자기관리리츠**는 실체회사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과세 대상이며, 소득공제 적용대상 법인에 해당되지 않음

- **투자회사 간 배당의무의 차별성 존재**
  - 유사 투자회사 관련법에서는 배당의무 및 배당 관련 처벌 조항이 없으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는 이러한 조항이 있어 차별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배당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동산투자회사는 징역 또는 벌금과 함께 소득공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중의 징벌적 처분**을 받게 됨

- **부동산PF 수준의 부동산투자회사 배당 및 투자여력 확보 필요**
  - 리츠가 부동산PF를 대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리츠의 투자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

33

2024년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발 표 논 문 집

2024 년 10 월 19 일 인쇄
2024 년 10 월 19 일 발행

발행인 : 최 원 석
편집인 : 박 석 진
발행처 :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http://www.koreataxation.org
학회장 : 최 원 석 교수
총 무 : 김 완 용 교수
사무국 : 권 석 미 국장
(0373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7길 12
한국공인회계사회관 3층
전 화 : 02－365－4366
팩 스 : 02－365－4336
E-Mail : kast21@hanmail.net

편집 · 인쇄 : 세 학 사 (2231－4640)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안녕하세요, 배우 이영애입니다
제가 왜 KB GOLD & WISE the FIRST를 선택했는지 아시나요?

자산관리, 늘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2년 전, the FIRST를 만나고 마침내 해답을 찾았습니다

KB 최고의 금융전문가들이 팀을 이뤄
제 자산을 위한 가장 좋은 플랜을 제시해 주고
저와 가족의 라이프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었죠

덕분에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자산관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2년간 경험하고 신뢰하는 만큼
저 이영애는 여러분들께도
KB GOLD&WISE the FIRST를 추천합니다

KB GOLD & WISE the FIRST 고객
이 영 애



♦KB의 프리미엄 자산관리 the FIRST는 압구정과 반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KB GOLD & WISE the FIRST 특별한 자산관리 서비스

세무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등
각종 세무 관련 컨설팅

투자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및
투자 성과관리

부동산
보유 부동산 가치 분석 및
매각 타이밍 컨설팅

신탁
유언대용신탁, 가업승계,
증여신탁, 사후관리

금융자문
인수합병, 금융투자 자문,
가업 자문, 기업체 자문

법률자문
자산관리 업무 전반
법률 서비스 지원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상품, 서비스 가입 전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KB국민은행 고객센터 : 1588-9999, KB국민은행 홈페이지 : www.kbstar.com
•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2084호(2024.04.26.), 유효기간 2024.04.26.~2024.12.31.까지

KB 국민은행